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52-14

GOVP1201326934
L 344.035643 ㅂ413ㅇ

L
344.035643
ㅂ413ㅇ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 Prison Acts of Other Countries

법무부 교정본부
Korea Correctional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미래 우리 교정이 나아가야 할 길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번역되어 참고로 활용하였던 유엔「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2006년에 개정된 유럽평의회의「유럽형사시설규칙」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8개 국가의 교정관계 법령을 번역하여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1950년 행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정의 현주소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미래 우리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교정본부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자로부터 사회보호, 수형자의 교정과 개선, 수용자 처우의 선진화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 2007년 행형법 전면개정, 교정시설 현대화,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품격 있는 일류교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교정도 한 국가라는 테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 속에서 새로운 교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각 국의 교정관계 법령을 통하여 살펴본 바, 교정에 관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와 권리보호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앞서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에 헌신해 온 선배들의 노력과 현재 교정에 몸담고 있는 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발전에 더욱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와 개인, 직원과 수용자, 외국과의 교류 등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가지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세계의 흐름에도 항상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책이 교정공무원은 물론 검찰, 경찰, 학계 등 교정에 관심이 있는 모두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실무와 학문이 동시에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방대한 분량에 대하여 번역과 훌륭한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

# 교정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책에 실린 각국의 교정관계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게재하고 원문출처에 대하여 적시함으로써 이해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번역시 사용된 용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그 부속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중국「감옥법」에서 사용한 감옥이라는 용어와 일본의「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형무소와 형무관 등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번역된 선행 자료를 참고로 하였고, 각 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최신 법령과 일본 교정국에서 발간한 2000년 전후의 자료도 참고하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법제정연도를 법률제목에 포함시켜 표시하였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은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번역 · 감수하였으나 프랑스「행형법」과 이탈리아의「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중 2001년 이후 개정된 부분은 전문번역회사에 의뢰하여 번역한 후, 용어 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맞추어 교정하였습니다.

번역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의 교정관련 법을 포함한 부속 법령에 대한 번역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역자 일동(총괄 금용명)

# 목 차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007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유럽 평의회**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 037
The European Prison Rules(2006)

**영국** 형집행법(1952년) ····· 083
Prison Act 1952
형집행규칙(1999년) ····· 113
The Prison Rules 1999

**독일**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161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256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프랑스** 형집행법 ····· 307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1) NOR: JUSX0814219L

**이탈리아**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353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A 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A'.(Legge Gozzini)

**미국** 범죄와 형사절차 ····· 439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캐나다**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537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727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 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 983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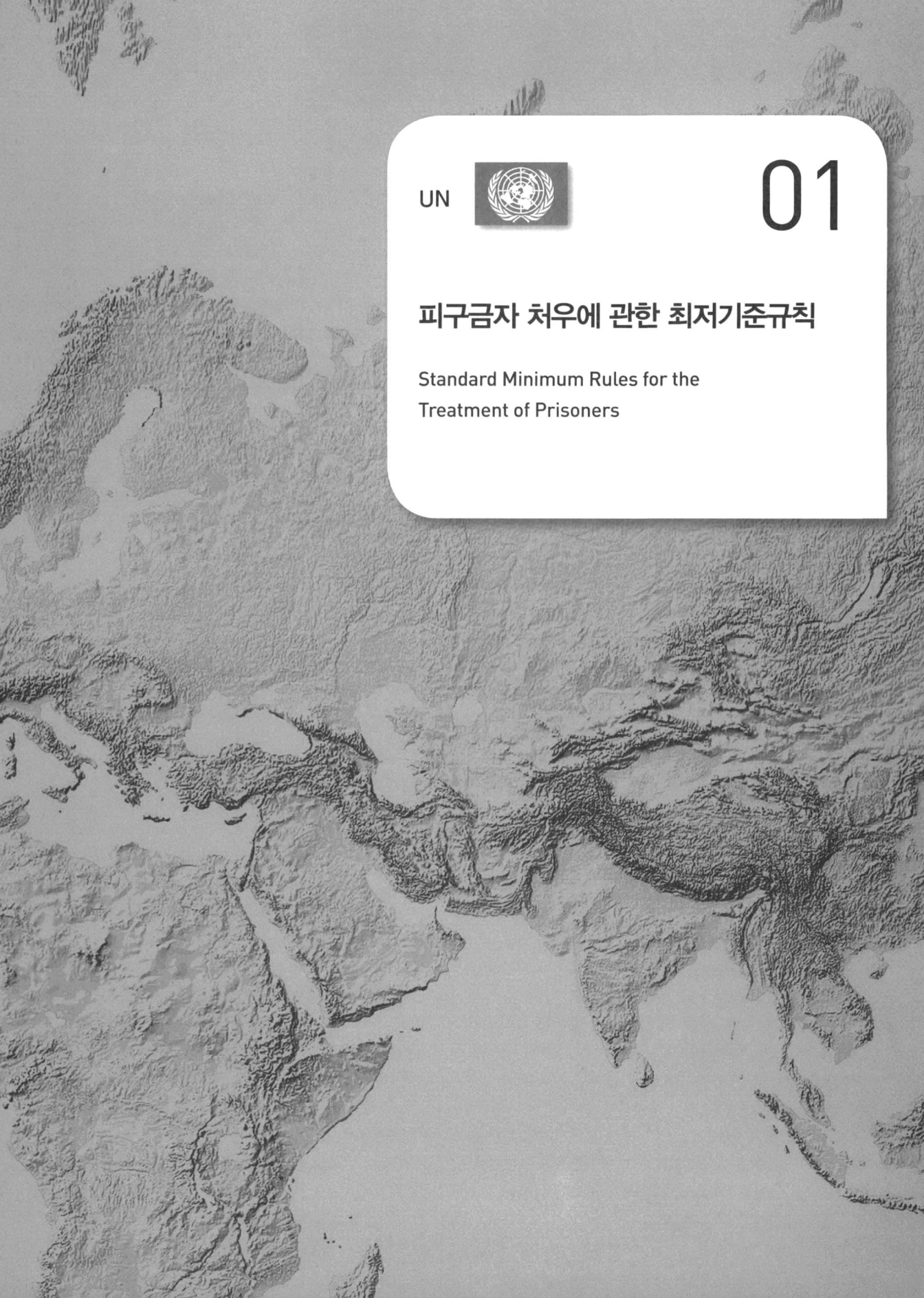

UN

01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서칙**
(제1조 ~ 제5조)

**제1부 통칙** ····· 010

기본원칙(제6조) ····· 010
등록(제7조) ····· 010
피구금자의 분리(제8조) ····· 010
거주설비(제9조 ~ 제14조) ····· 010
개인위생(제15조, 제16조) ····· 011
의류 및 침구(제17조 ~ 제19조) ····· 011
급식(제20조) ····· 011
운동 및 경기(제21조) ····· 011
의료(제22조 ~ 제26조) ····· 011
규율 및 징벌(제27조 ~ 제32조) ····· 012
보호장비(제33조, 제34조) ····· 013
정보 및 불복신청(제35조, 제36조) ····· 013
외부와의 교통(제37조 ~ 제39조) ····· 014
도서(제40조) ····· 014
종교(제41조, 제42조) ····· 014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제43조) ····· 014
사망 · 질병 · 이송 등에 대한 통지(제44조) ····· 015
피구금자의 이송(제45조) ····· 015
시설의 직원(제46조 ~ 제54조) ····· 015
감독(제55조) ····· 016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 016

A. 수형자 ····· 016
지도원리(제56조 ~ 제64조) ····· 016
처우(제65조, 제66조) ····· 018
분류 및 개별화(제67조 ~ 제69조) ····· 018
특전(제70조) ····· 018
작업(제71조 ~ 제76조) ····· 018
교육 및 오락(제77조, 제78조) ····· 019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제79조 ~ 제81조) ····· 019
B.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 020
(제82조, 제83조)
C. 미결수용자 ····· 020
(제84조 ~ 제93조)
D. 민사상의 피구금자 ····· 021
(제94조)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 021
(제95조)

**원문** ····· 022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에서 제95조가 새로 추가됨

## 서칙

**제1조** 규칙이 의도하는 바는 교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 · 사회적 ·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규칙의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본 규칙은 그것이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제3조** 한편, 본 규칙이 다루는 영역에서 시대의 흐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본 규칙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중앙교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본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된다.

**제4조** ① 본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 하에 있는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나 민사범(civil), 미결수(untried)나 수형자(convicted) 등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위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본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청소년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young prisoners)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아니된다.

---

1) 참고자료

앤드루 코일 저/ 장은명 번역/ 송태호 감수,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주한 영국대사관, 2004년

김화수/ 송태호/ 이영근/ 윤옥경 편역,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법무부 용역과제, 경기대학교, 2003년

# 제1부 통칙

## 기본원칙

**제6조** ①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

## 등록

**제7조** ①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c) 입소 및 석방 일시

②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이나 또는 시설내의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혼거실이 사용되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생활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조명은 피구금자의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구역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고 적합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며 또한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음료수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과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구와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모가 보살필 수 없는 시간에는 이곳에서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후 필요에 따라 진찰하고 검진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이 의심되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환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거나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에 의해서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음식의 양, 질, 조리상황 및 배식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환기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상태

(e) 체육 및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여부

② 소장은 제25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실시한 보고 및 조언을 참고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소장은 자기의 의견과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그러나 본 규칙은 특정한 사회적,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에게 맡기는 자치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는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징벌을 과할 권한이 있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을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이나 어두운 거실에 수용,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와 같은 원칙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모든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 보호장비

**제33조** 수갑, 사슬, 발목수갑 및 구속복 등 보호장비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사슬나 발목수갑은 보호장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밖의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a)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때.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때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때. 이 때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호장비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교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 시간을 경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규정,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방법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때에는 전 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그 밖의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

관청 또는 그밖의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또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 피구금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 항과 동일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교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가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실시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와 접견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그러한 방문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피구금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그의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그밖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망 · 질병 · 이송 등에 대한 통지

**제44조** ① 피구금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정신병치료시설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혼인한 피구금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이든 피구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근친자의 사망 또는 중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근친자가 위독한 경우 피구금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호 아래 또는 단독으로 문병갈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피구금자의 이송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중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 시설의 직원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직원과 국민의 마음속에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봉사라는 확신을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와 특수임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실시되는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교정시설의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임으로써 피구금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 교사 및 직업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상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

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인격, 행정능력, 적절한 교육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의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고 비상근으로 임명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소장은 시설의 부지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소장 한 사람의 관할 아래에 있는 때에는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그 밖의 직원 대다수는 가장 많은 수의 피구금자가 사용 또는 이해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 의무관의 근무를 필요로 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의무관 1명은 시설의 부지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고 응급상황에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전용구역으로 구분된 구역은 여자직원이 관리하고 그 구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전용으로 구분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방위, 피구금자의 도주기도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인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때에는 엄격히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특수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감독

**제55조** 교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 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 A. 수형자

### 지도원리

**제56조** 아래 지도원리는 교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이 초래하는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법을 준수하고 자활하는 삶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그 밖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로운 사회생활 사이의 상이점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또는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아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업무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63조** ①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시설에 나뉘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③ 폐쇄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

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지도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종교적 지도, 교육, 직업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생활환경조성,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도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망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가능한 한 다른 시설 또는 시설의 다른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정한 형기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의 개인적 필요와 능력,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마련하여 수형자들에게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무를 가지며, 그 작업은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통상 작업일에는 수형자가 활동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④ 제공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 특히 소년수용자를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⑥ 수형자는 적정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의 조직과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

생활환경에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들의 이익과 직업훈련은 시설 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가능한 한 교정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취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해당 지역의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에 따라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시에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형자 교육은 가능한 한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서로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석방 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

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러한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고, 또한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초기부터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그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82조** ①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아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그 밖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 수형자는 의료관리를 받는 전문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감독 아래에 있어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상응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사회-정신학적 사후보호를 위하여 석방 후 정신치료가 계속되도록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 미결수용자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이지만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본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차입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자복을 입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을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그밖의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수용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수용자는 법률적 자기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직원의 감시하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대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아니된다.

###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그 밖의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 관련 규정도 그 적용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교화개선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금중인 특수부류의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dopted by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eld at Geneva in 1955, and approv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y its resolution 663 C (XXIV) of 31 July 1957 and 2076 (LXII) of 13 May 1977

## Preliminary Observations

**1.** The following rules are not intended to describe in detail a model system of penal institutions. They seek onl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consensus of contemporary thought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most adequate systems of today, to set out what is generally accepted as being good principle and practice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2.** In view of the great variety of legal, social, economic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world, it is evident that not all of the rules are capable of application in all places and at all times. They should, however, serve to stimulate a constant endeavour to overcome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wa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knowledge that they represent, as a whole, the minimum conditions which are accepted as suitable by the United Nations.

**3.** On the other hand, the rules cover a field in which thought is constantly developing They are not intended to preclude experiment and practices, provided these are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s and seek to further the purposes which derive from the text of the rules as a whole. It will always be justifiable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authorize departures from the rules in this spirit.

**4.** (1) Part I of the rules covers the general management of institutions, and is applicable to all categories of prisoners, criminal or civil, untried or convicted, including prisoners subject to "security measures" or corrective measures ordered by the judge.

(2) Part II contains rules applicable only to the special categories dealt with in each section. Nevertheless, the rules under section A, applicable to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equally applicable to categories of prisoners dealt with in sections B, C and D, provided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rules governing those categories and are for their benefit.

**5.** (1) The rules do not seek to regulate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young persons such as Borst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schools, but in general part I would be equally applicable in such institutions

(2) The category of young prisoners should include at least all young persons who co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ourts. As a rule, such young persons should not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 PART I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 Basic principle

**6.** (1)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impartially.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ecepts of the group to which a prisoner belongs.

**Register**

**7.** (1) In every place where persons are imprisoned there shall be kept a bound registration book with numbered pages in which shall be entered in respect of each prisoner received:

(a) Information concerning his identity;

(b) The reasons for his commitment and the authority therefor;

(c) The day and hour of his admission and release.

(2) No person shall be received in an institution without a valid commitment order of which the details shall have been previously entered in the register.

**Separation of categories**

**8.** The different categories of prisoners shall be kept in separate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taking account of their sex, age, criminal record, the legal reason for their detention and the necessities of their treatment. Thus,

(a) Men and women shall so far as possib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in an institution which receives both men and women the whole of the premises allocated to women shall be entirely separate;

(b)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c) Persons imprisoned for debt and other civil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persons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offence;

(d) Young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ccommodation**

**9.** (1) Where sleeping accommodation is in individual cells or rooms, each prisoner shall occupy by night a cell or room by himself. If for special reasons, such as temporary overcrowding,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make an exception to this rule, it is not desirable to have two prisoners in a cell or room.

(2) Where dormitories are used, they shall be occupied by prisoners carefully selected as being suitable to associate with one another in those conditions. There shall be regular supervision by night, in keeping with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10.** All accommodation provided for the use of prisoners and in particular all sleeping accommodation shall meet all requirements of health, due regard being paid to climatic conditions and particularly to cubic content of air, minimum floor space, lighting, heating and ventilation.

**11.** In all places where prisoners are required to live or work,

(a) The windows shall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by natural light, and shall b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allow the entrance of fresh air whether or not there is artificial ventilation;

(b) Artificial light shall be provided sufficient for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without injury to eyesight.

**12.** The sanitary installations shall be adequate to enable every prisoner to comply with the needs of nature when necessary and in a clean and decent manner.

**13.** Adequate bathing and shower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in a temperate climate.

**14.** All parts of an institution regularly used by prisoner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scrupulously clean at all times.

**Personal hygiene**

**15.** Prisoners shall be required to keep their persons clean, and to this end they shall be provided with water and with such toilet articles as are necessary for health and cleanliness.

**16.** In order that prisoners may maintain a good appearance compatible with their self-respect,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per care of the hair and beard, and men shall be enabled to shave regularly.

**Clothing and bedding**

**17.** (1) Every prisoner who is not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shall be provided with an outfit of clothing suitable for the climate and adequate to keep him in good health. Such clothing shall in no manner be degrading or humiliating.

(2) All clothing shall be clean and kept in proper condition. Underclothing shall be changed and washed as often a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hygiene

(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ever a prisoner is removed outside the institution for an authorized purpose, he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or other inconspicuous clothing.

**18.** If prisoners are allowed to wear their own clothing, arrangements shall be made on their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to ensure that it shall be clean and fit for use.

**19.** Every prisoner shall, in accordance with local or national standards,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with separate and sufficient bedding which shall be clean when issued,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Food**

**20.** (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t the usual hours with food of nutritional value adequate for health and strength, of wholesome quality and well prepared and served.

(2) Drinking wat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whenever he needs it.

**Exercise and sport**

**21.** (1) Every prisoner who is not employed in outdoor work shall have at least one hour of suitable exercise in the open air daily if the weather permits.

(2) Young prisoners, and others of suitable age and physique, shall receive physical and recreational training during the period of exercise. To this end space, installations and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Medical services**

**22.** (1) At every institution there shall be availabl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medical officer who should have some knowledge of psychiatry. The medical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They shall include a psychiatric service

for the diagnosis and, in proper cases, the treatment of states of mental abnormality.

(2)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re hospital facilities 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 their equipment, furnishings and pharmaceutical supplies shall be proper for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of sick prisoners, and there shall be a staff of suitable trained officers.

(3) The services of a qualified dental offic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23.** (1) In women's institutions there shall be special accommodation for all necessary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treatment.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ver practicable for children to be born in a hospital outside the institution. If a child is born in prison, this fact shall not be mentioned in the birth certificate.

(2) Where nursing infant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institution with their mother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y are not in the care of their mothers.

**24.** The medical officer shall see and examin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and thereafter as necessary, with a view particularly to the discovery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he taking of all necessary measures; the segregation of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the noting of physical or mental defects which might hamper rehabilit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hysical capacity of every prisoner for work.

**25.** (1) The medical offic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ould daily see all sick prisoners, all who complain of illness, and any prisoner to whom his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2) The medical offic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he considers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has been or will be injurious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26.** (1) The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inspect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ce of food;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soners;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e) The observance of the rules conce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cases where there is no technical personnel in charge of these activities.

(2) The directo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officer submits according to rules 25 (2) and 26 and, in case he concurs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give effect to those recommendations. If they are not within his competence or if he does not concur with them, he shall immediately submit his own report and the advice of the medical officer to higher authority.

**Discipline and punishment**

**27.** Discipline and order shall be maintained with firmness, but with no more restriction than is necessary for safe custody and well-ordered community life.

**28.** (1) No prisoner shall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institution, in any disciplinary capacity.

(2) This rule shall not, however, impede the proper functioning of systems based on self-government, under which specified social, educational or sports activities or responsibilities are entrusted, under supervision, to prisoners who are formed into groups for the purposes of treatment.

**29.** The following shall always be determined by the law or by the regulation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a) Conduct constituting a disciplinary offence;

(b) The types and duration of punishment which may be inflicted;

(c) The authority competent to impose such punishment.

**30.** (1)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law or regulation, and never twice for the same offence.

(2)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unless he has been informed of the offence alleged against him and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defenc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3) Where necessary and practicable the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his defence through an interpreter.

**31.** Corporal punishment, punishment by placing in a dark cell, and all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s shall be completely prohibited as punishments for disciplinary offences.

**32.** (1) Punishment by close confinement or reduction of diet shall never be inflicted unless the medical officer has examined the prisoner and certified in writing that he is fit to sustain it.

(2) The same shall apply to any other punishment that may be prejudicial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 prisoner. In no case may such punishment be contrary to or depart from the principle stated in rule 31.

(3)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prisoners undergoing such punishments and shall advise the director if he considers the termination or alteration of the punishment necessary on grounds of physical or mental health.

**Instruments of restraint**

**33.** Instr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chains, irons and strait-jacket,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Furthermore,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Other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b)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c)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or from damaging property;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at once consult the medical officer and report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34.** The patterns and manner of use of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be decided by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Such instruments must not be applied for any longer time than is strictly necessary.

**Information to and complaints by prisoners**

**35.** (1) Every prisoner on admission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his category, the disciplinary requirements of the institution, the authorized methods of seeking information and making complaints, and all such other matters as are necessary to enable him to understand both his rights and his obligations and to adapt himself to the life of the institution.

(2) If a prisoner is illiterate, the aforesaid information shall be conveyed to him orally.

**36.** (1)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each week day of making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or the officer authorized to represent him.

(2) It shall be possible to make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inspector of prisons during his inspection. The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the inspector or to any other inspecting officer without the director or other members of the staff being present.

(3)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a request or complaint, without censorship as to substance but in proper form, to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he judicial authority or other proper authorities through approved channels.

(4) Unless it is evidently frivolous or groundless, every request or complaint shall be promptly dealt with and replied to without undue delay.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37.** Prisoners shall be allowed under necessary supervision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reputable friends at regular intervals, both by correspondence and by receiving visits.

**38.** (1)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2)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s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protect such persons.

**39.** Prisoners shall be kept informed regularly of the more important items of news by the reading of newspapers, periodicals or special institutional publications, by hearing wireless transmissions, by lectures or by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Books**

**40.**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categories of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both recreational and instructional books, an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it.

**Religion**

**41.** (1) If the institution contains a sufficient number of prisoners of the same religion,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n shall be appointed or approved. If the number of prisoners justifies it and conditions permit, the arrangement should be on a full-time basis.

(2) A qualified representative appointed or approv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llowed to hold regular services and to pay pastoral visits in private to prisoners of his religion at proper times.

(3) Access to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shall not be refused to any prisoner. On the other hand, if any prisoner should object to a visit of any religious representative, his attitude shall be fully respected.

**42.** So far as practicabl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atisfy the needs of his religious life by attending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institution and having in his possession the books of religious observance and instruction of his denomination.

**Retention of prisoners' property**

**43.** (1) All money, valuables, clothing and other effects belonging to a prisoner which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he is not allowed to retain shall on his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be placed in safe custody. An inventory thereof shall be signed by the prisoner. Steps shall be taken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2)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ll such articles and money shall be returned to him except in so far as he has been authorized to spend money or send any such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on hygienic grounds to destroy any article of clothing. The prisoner shall sign a receipt for the articles and money returned to him.

(3) Any money or effects received for a prisoner from outside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4) If a prisoner brings in any drugs or medicine, the medical officer shall decide what use shall be made of them.

**Notification of death, illness, transfer, etc.**

**44.** (1) Upon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or serious injury to a prisoner, or his removal to an institution for the treatment of mental affections, the director shall at once inform the spouse, if the prisoner is married, or the nearest relative and shall in any event inform any other person previously designated by the prisoner.

(2) A prisoner shall be informed at once of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any near relative. In case of the critical illness of a near relative, the prisoner should be authorized, whenever circumstances allow, to go to his bedside either under escort or alone.

(3)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right to inform at once his family of his imprisonment or his transfer to another institution.

**Removal of prisoners**

**45.** (1) When the prisoners are being removed to or from an institution, they shall be exposed to public view as little as possible, and proper safeguards shall be adopted to protect them from insult, curiosity and publicity in any form.

(2) The transport of prisoners in conveyances with inadequate ventilation or light, or in any way which would subject them to unnecessary physical hardship, shall be prohibited.

(3) The transport of prisoners shall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administration and equal conditions shall obtain for all of them.

**Institutional personnel**

**46.** (1)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for the careful selection of every grade of the personnel, since it is on their integrity, humanity, professional capacity and personal suitability for the work that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depends.

(2)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constantly seek to awaken and maintain in the minds both of the personnel and of the public the conviction that this work is a social service of great importance, and to this

end all appropriate means of informing the public should be used.

(3) To secure the foregoing ends, personnel shall be appointed on a full-time basis as professional prison officers and have civil service status with security of tenure subject only to good conduct, efficiency and physical fitness. Salaries shall be adequate to attract and retain suitable men and women, employment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favourable in view of the exacting nature of the work.

**47.** (1) The personnel shall possess an adequate standard of education and intelligence.

(2) Before entering on duty, the personnel shall be given a course of training in their general and specific duties and be required to pass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3) After entering on duty and during their career, the personnel shall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professional capacity by attending courses of in-service training to be organized at suitable intervals.

**48.** All members of the personnel shall at all times so conduct themselves and perform their duties as to influence the prisoners for good by their example and to command their respect.

**49.** (1) So far as possible, the personnel shall include a sufficient number of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2) The services of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shall be secured on a permanent basis, without thereby excluding part-time or voluntary workers.

**50.** (1) The director of an institution should be adequately qualified for his task by character, administrative ability, suitable training and experience.

(2) He shall devote his entire time to his official duties and shall not be appointed on a part-time basis.

(3) He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4) When two or more institutions are under the authority of one director, he shall visit each of them at frequent intervals. A responsible resident official shall be in charge of each of these institutions.

**51.** (1) The director, his deputy, and the majority of the other personnel of the institution shall be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greatest number of prisoners, or a language understood by the greatest number of them.

(2) Whenever necessary, the services of an interpreter shall be used.

**52.** (1) In institutions which are large enough to require the services of one or more full-time medical officers, at least one of them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2) In other institutions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and shall reside near enough to be able to attend without delay in cases of urgency.

**53.** (1) In an institution for both men and women,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shall be under the authority of a responsible woman officer who shall have the custody of the keys of all that part of the institution.

(2) No male member of the staff shall enter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unless accompanied by a woman officer.

(3) Women prisoners shall be attended and supervised only by women officers. This does not, however, preclude male members of the staff, particularly doctors and teachers, from carrying out their professional duties in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women.

**54.** (1) Officers of the institutions shall not, in their relations with the prisoners, use force except in self-defence or in cases of attempted escape, or active or passive physical resistance to an order based on law or regulations. Officers who have recourse to force must use no more than is strictly necessary and must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2) Prison officers shall be given special physical training to enable them to restrain aggressive prisoners.

(3)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staff performing duties which bring them into direct contact with prisoners should not be armed. Furthermore, staff should in no circumstances be provided with arms unless they have been trained in their use.

**Inspection**

**55** There shall be a regular inspection of penal institutions and services by qualified and experienced inspectors appoi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eir task shall be in particular to ensure that these institutions ar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 a view to bringing about the objectives of penal and correctional services.

## PART II RULES APPLICABLE TO SPECIAL CATEGORIES

### A. PRISONERS UNDER SENTENCE

**Guiding principles**

**56.** The guiding principles hereafter are intended to show the spirit in which penal institutions should be administered and the purposes at which they should aim,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made under Preliminary Observation I of the present text.

**57.** Imprisonment and other measures which result in cutting off an offender from the outside world are afflictive by the very fact of taking from the pers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Therefore the prison system shall not, except as incidental to justifiable segregation or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aggravate the suffering inherent in such a situation.

**58.**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deprivative of liberty is ultimately to protect society against crime. This end can only be achieved if the period of imprisonment is us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at upon his return to society the offender is not only willing but able to lead a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fe.

**59.** To this end, the institution should utilize all the remedial, educational, moral, spiritual and other forces and forms of assistance which are appropriate and available, and should seek to apply them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reatment needs of the prisoners.

**60.** (1) The regime of the institution should seek to minimize any differences between prison life and life at liberty which tend to less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ers or the respect due to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2)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it is desirable that the necessary steps be taken to ensure for the prisoner a gradual return to life in society. This aim may be achieved, depending on the case, by a pre-release regime organized in the same institution or in another appropriate institution, or by release on trial under some kind of supervision which must not be entrusted to the police but should be

combined with effective social aid.

**61.** The treatment of prisoners should emphasize not their exclusion from the community, but their continuing part in it. Community agencies should, therefore, be enlisted wherever possible to assist the staff of the institution in the task of social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There should be in connection with every institution social workers charged with the duty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all desirable relations of a prisoner with his family and with valuable social agencies. Steps should be taken to safeguard, to the maximum extent compatible with the law and the sentence, the rights relating to civil interests, social security rights and other social benefits of prisoners.

**62.** The medical services of the institution shall seek to detect and shall treat any physical or mental illnesses or defects which may hamper a prisoner's rehabilitation. All necessary medical, surgical and psychiatric services shall be provided to that end

**63.** (1) The fulfilment of these principles requires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nd for this purpose a flexible system of classifying prisoners in groups; it is therefore desirable that such groups should be distributed in separate institutions suitable for the treatment of each group.

(2) These institutions need not provide the same degree of security for every group. It is desirable to provide varying degrees of secur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Open institutions, by the very fact that they provide no physical security against escape but rely on the self-discipline of the inmates, provide the conditions most favourable to rehabilitation for carefully selected prisoners.

(3) It is desirable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closed institutions should not be so large that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is hindered. In some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opulation of such institutions should not exceed five hundred. In open institutions the population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4) On the other hand, it is undesirable to maintain prisons which are so small that proper facilities cannot be provided.

**64.** The duty of society does not end with a prisoner's release. There should, therefore, be governmental or private agencies capable of lending the released prisoner efficient after-care directed towards the lessening of prejudice against him and towards his so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65.** The treatment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shall have as its purpose, so far as the length of the sentence permits, to establish in them the will to lead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ves after their release and to fit them to do so. The treatment shall be such as will encourage their self-respect and develop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66.** (1) To these ends, all appropriate means shall be used, including religious care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education,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social casework, employment counselling, physic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moral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prisoner, taking account of his social and criminal history, his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and aptitudes, his personal temperament, the length of his sentence and his prospects after release.

(2) For every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the director shall receive,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full reports on all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foregoing paragraph. Such reports shall

always include a report by a medical officer, wherever possible qualified in psychiatry, on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

(3) The repor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shall be placed in an individual file. This file shall be kept up to date and classified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consulted by the responsible personnel whenever the need arises.

**Clas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67.** The purposes of classification shall be

(a) To separate from others those prisoners who, by reason of their criminal records or bad characters, are likely to exercise a bad influence;

(b) To divide the prisoners into class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treatment with a view to their social rehabilitation.

**68.** So far as possible separate institutions or separate sections of an institution shall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69.**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nd after a study of the personality of each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a programme of treatment shall be prepared for him in the light of the knowledge obtained about his individual needs, his capacities and dispositions.

**Privileges**

**70.** Systems of privileges appropriate for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and the different methods of treatment shall be established at every institution, in order to encourage good conduct,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ecure the interest and co-operation of the prisoners in their treatment

**Work**

**71.** (1) Prison labour must not be of an afflictive nature.

(2) All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required to work, subject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as determined by the medical officer.

(3) Sufficient work of a useful nature shall be provided to keep prisoners actively employed for a normal working day.

(4) So far as possible the work provided shall be such as will maintain or increase the prisoners, ability to earn an honest living after release.

(5) Vocational training in useful trades shall be provided for prisoners able to profit thereby and especially for young prisoners

(6)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proper vocational selection and with the requirements of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the prisoners shall be able to choose the type of work they wish to perform.

**72.** (1) Th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in the institutions shall resemble as closely as possible those of similar work outside institutions, so as to prepare prisoners for the conditions of normal occupational life.

(2) The interests of the prisoners and of their vocational training, however, must not be subordinated to the purpose of making a financial profit from an industry in the institution.

**73.** (1) Preferably institutional industries and farms should be operated directly by the administration and not by private contractors.

(2) Where prisoners are employed in work not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they shall always b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nstitution's personnel. Unless the work is for othe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full normal wages for such work shall be paid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persons to whom the labour is supplied, account being taken of the output of the prisoners.

**74.** (1) The precautions laid down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free workmen shall be equally observed in institutions.

(2) Provision shall be made to indemnify prisoners against industrial injury, including occupational disease, on terms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xtended by law to free workmen

**75.** (1) The maximum daily and weekly working hours of the prisoners shall be fixed by law or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local rules or custom in regard to the employment of free workmen.

(2) The hours so fixed shall leave one rest day a week and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required as part of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76.** (1) There shall b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2) Under the system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send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y.

(3) The system should also provide that a part of the earnings should be set aside by the administration so as to constitute a savings fund to be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his release

**Education and recreation**

**77.** (1)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further education of all prisoners capable of profiting thereby, including religious instruction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The education of illiterates and young prisoners shall be compulsory and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it by the administration.

(2) So far as practicable,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ountry so that after their release they may continue their education without difficulty.

**78.**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shall be provided in all institutions for the benefit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prisoners.

**Social relations and after-care**

**79.**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such relations between a prisoner and his family as are desirable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80.** From the beginning of a prisoner's sentenc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his future after release and he shall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maintain or establish such relations with persons or agencies outside the institution as may promote the best interests of his family and his own social rehabilitation.

**81.** (1) Services and agencies, governmental or otherwise, which assist released prisoners to re-establish themselves in society shall ensure, so far as is possible and necessary, that released prisoners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documents and identification papers, have suitable homes and work to go to, are suitably and adequately clothed having regard to the climate and season, and have sufficient means to reach their destination and maintain themselves in the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ir release.

(2) The approved representatives of such agencies shall have all necessary access to the institution and to prisoners and shall be taken into consultation as to the future of a prisoner from the beginning

of his sentence.

(3) It is desirable that the activities of such agencies shall be centralized or co-ordinated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secure the best use of their efforts.

## B. INSANE AND MENTALLY ABNORMAL PRISONERS

**82.** (1) Persons who are found to be insane shall not be detained in prisons and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remove them to mental institutions as soon as possible.

(2) Prisoners who suffer from other mental diseases or abnormalities shall be observed and treated in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medical management.

(3) During their stay in a prison, such prisoners shall be placed under the special supervision of a medical officer.

(4) The medical or psychiatric service of the penal institutions shall provide for the psychiatric treatment of all other prisoners who are in need of such treatment.

**83.** It is desirable that steps should be taken, by arrangement with the appropriate agencies, to ensure if necessary the continuation of psychiatric treatment after release and the provision of social-psychiatric after-care.

## C. PRISONERS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84.** (1)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who are detained either in police custody or in prison custody (jail) but have not yet been tried and sentenced, will be referred to as "untried prisoners," hereinafter in these rules.

(2) Unconvicted prisoners are presumed to be innocent and shall be treated as such.

(3) Without prejudice to legal rul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 or prescribing the procedure to be observed in respect of untried prisoners, these prisoners shall benefit by a special regime which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rules in its essential requirements only.

**85.** (1)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2) Young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nd shall in princip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86.** Untried prisoners shall sleep singly in separate rooms, with the reservation of different local custom in respect of the climate.

**87.**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the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untried prisoners may, if they so desire, have their food procured at their own expense from the outside, either through the administration or through their family or friends. Otherwise, the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their food.

**88.** (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if it is clean and suitable.

(2) If he wears prison dress, it shall be different from that supplied to convicted prisoners.

**89.** An untried prisoner shall always be offered opportunity to work,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work. If he chooses to work, he shall be paid for it.

**90.**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procure at his own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third party such books, newspapers, writing materials and other means of occupation as are compatible with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9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be visited and treated by his own doctor or dentist if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his application and he is abl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92.**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inform immediately his family of his detention and shall be given all reasonable facilities for communicating with his family and friends, and for receiving visits from them, subject only to restrictions and supervision as are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of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93.** For the purposes of his defence,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apply for free legal aid where such aid is available, and to receive visits from his legal adviser with a view to his defence and to prepare and hand to him confidential instructions. For these purposes, he shall if he so desires be supplied with writing material. Interviews between the prisoner and his legal adviser may be within sight but not within the hearing of a police or institution official.

## D. CIVIL PRISONERS

**94.** In countries where the law permits imprisonment for debt, or by order of a court under any other non-criminal process, persons so imprisoned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greater restriction or severity than is necessary to ensure safe custody and good order. Their treatment shall be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of untried prisoners, with the reservation, however, that they may possibly be required to work.

## E.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HARGE

**95.**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without charg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that accorded under part I and part II, section C. Relevant provisions of part II, section A, shall likewise be applicable where their application may be conducive to the benefit of this special group of persons in custody, provided that no measures shall be taken implying that re-education or rehabilitation is in any way appropriate to persons not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 여 백

유럽평의회

02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The European Prison Rules(2006)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The European Prison Rules(2006)


**제1부 기본원칙**(1 ~ 9)
적용범위와 적용(10 ~ 13) ····· 040

**제2부 구금조건**
수용(14 ~ 16) ····· 041
시설수용과 수용시설(17, 18) ····· 041
위생(19) ····· 042
의류와 침대(20, 21) ····· 042
영양(22) ····· 043
법률상담(23) ····· 043
외부사회와의 접촉(24) ····· 043
교정관리체제(25) ····· 044
교도작업(26) ····· 044
운동과 여가활동(27) ····· 045
교육(28) ····· 045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29) ····· 046
정보(30) ····· 046
수용자 소유물(31) ····· 046
수용자 이송(32) ····· 046
수용자 석방(33) ····· 046
여성수용자(34) ····· 047
구금된 청소년(35) ····· 047
유아(36) ····· 047
외국 국적자(37) ····· 047
소수인종 또는 소수언어 사용자(38) ····· 048

**제3부 건강**
보건(39) ····· 048
수용자 보건을 위한 기구(40) ····· 048
의료 및 보건 직원(41) ····· 048
의사의 의무(42 ~ 45) ····· 048
보건설비(46) ····· 050
정신건강(47) ····· 050
기타(48) ····· 050

**제4부 교정질서**
교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49, 50) ····· 050
보안(51) ····· 050
안전(52) ····· 050
특별한 고도의 보안 또는 안전수단(53) ····· 051
검사와 통제(54) ····· 051
범죄행위(55) ····· 051
규율과 징벌(56 ~ 62) ····· 052
이중위험(63) ····· 052
강제력의 사용(64 ~ 67) ····· 052
보호장비(68) ····· 053
무기(69) ····· 053
탄원과 고소(70) ····· 054

**제5부 관리와 교정직원**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정업무(71 ~ 75) ····· 054
교정직원의 선발(76 ~ 80) ····· 054
교정직원의 훈련(81) ····· 055
교정시설의 관리(82 ~ 88) ····· 055
전문직 직원(89) ····· 056
홍보(90) ····· 056
연구와 평가(91) ····· 056

**제6부 감사와 감시**
정부의 감사(92) ····· 056
독립적인 감시(93) ····· 056

**제7부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의 지위(94) ····· 056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근(95) ····· 057
수용시설(96) ····· 057
의류(97) ····· 057
법적 조언(98) ····· 057
외부사회와의 접촉(99) ····· 057
작업(100) ····· 057
기결수용자에 해당하는 교정처우의 적용(101) ····· 057

**제8부 기결수용자**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목적(102) ····· 057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시행(103) ····· 058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조직의 형태(104) ····· 058
기결수용자의 작업(105) ····· 058
기결수용자의 교육(106) ····· 059
기결수용자의 석방(107) ····· 059

**제9부 규정의 개정**(108) ····· 059

**원문** ····· 060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형사시설규칙 1에 대하여 각료위원회가 가맹국들에게 발한 권고 Rec(2006)2
(2006년 1월11일 제952차 각료대표회의시 각료위원회에서 채택)

각료위원회는 유럽심의회 헌장 제15조 b항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유럽협정(European Convention)과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에 유의하고,
「고문방지 및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처우와 징벌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와 특히 유럽위원회가 작성하여 보고한 기준에 대해 유의하고,
누구라도 최후의 수단이 아니거나 법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구금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및 규율에 대한 필요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교도소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수용자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유럽심의회 가맹국들이 교정정책과 관련한 공통적인 원칙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준수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주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공통적인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교정분야의 국제공조가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지난 20년 동안 유럽에서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형사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유럽심의회의 각료회의 권고안이 담고 있는 기준들 「교정정책 또는 운영상의 특정한 형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교도소의 학과교육내용에 대한 권고안 (89) 12」, 「교도소에서의 AIDS와 그와 관련한 보건상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교도소 및 형사학상의 대책을 다룬 권고안 (93) 6」, 「수용자 제재조치의 이행에 관계되는 직원에 대한 권고안 (97) 12」, 「윤리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교도소 보건의료 실태와 관계되는 권고안 (98) 7」, 「교도소 과밀화와 교도소 수용인구 증가와 관련 있는 권고안 (99) 22」, 「조건부 석방(가석방)에 관한 Rec(2003) 22, 「무기징역수형자 및 장기형 수형자 관리에 관한 Rec(2003) 23」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유념하며,
유럽형사시설규칙에 대한 각료위원회의 권고안 (87) 3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갱신함으로써 유럽에서 일어난 형사정책, 형벌의 양상 및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의 발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가맹국 정부는 유럽형사시설규칙에 대한 각료위원회의 권고안 (87) 3을 대체하는 이 권고안의 부록 규칙에 따라서 입법 및 교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이 권고안과 그에 따른 주석서가 가능한 한 많이 번역되고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법기관과 교정직원 및 개별 수용자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안 Rec(2006)2 에 대한 부록

# 제1부 기본원칙

1.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은 인권이 존중되도록 처우를 받아야 한다.
2.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선고와 그를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결정에 의해 적법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제한은 그 제한의 적법한 목적에 필요최소한으로 적정하여야 한다.
4.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도소 환경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5. 교도소의 수용생활은 가능한 한 사회의 실제생활모습과 비슷하게 근접하여야 한다.
6. 모든 구치소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7. 외부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의 교정참여는 가능한 한 장려되어야 한다.
8. 교도소 직원은 중요한 공공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채용,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은 그들이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고도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교도소는 정기적인 정부감사와 독자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용범위와 적용**

10.1 유럽형사시설규칙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과 유죄의 판결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10.2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구금되었거나 유죄판결에 의거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만이 교도소, 즉 위의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에 수용된다.

10.3 본 규칙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a. 다른 이유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

b. 사법기관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과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가 박탈된 사람과는 다른 이유로 다른 시설에 구금된 사람

10.4 교도소에 구금된 모든 사람 또는 유럽형사시설규칙 10.3 b에 언급된 방식으로 구금된 사람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로 본다.

11.1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교도소에 구금할 수 없고, 그러한 연령층을 위하여 특별하게 설치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11.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인교도소에 예외적으로 구금된 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지위와 그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2.1 수용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상태가 교도소의 구금과 양립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히 그러한 수용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용자가 예외적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상태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규정들은 어떠한 배경에서든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주장 또는 그 밖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배경, 사회적 소수자와의 관계 또는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제2부 구금조건

## 수용

14. 누구라도 적법하고 정당한 구금 명령이 없이는 시설에 수용자로서 수용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15.1 수용 시에는 수용자 개개인에 대해서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a. 수용자의 신원정보

b. 구금의 이유와 구금명령권자

c. 수용일시

d. 본 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수용자의 보유물품 목록

e. 외상 및 이전의 잘못된 치료행위에 대한 불만사항

f. 의료적 기밀사항 – 수용자 본인 또는 그 외의 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용자의 건강에 관한 모든 사항

15.2 수용 시 모든 수용자는 유럽형사시설규칙 30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5.3 수용 후 즉시 본 규칙 24.9에서 정하는 수용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16 수용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a. 수용개시 시 수용자 건강에 관한 정보는 본 규칙 42에 따른 의료적 조치에 의해 추가된다.

b.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보안등급은 본 규칙 51에 따라서 결정된다.

c. 수용자가 불러일으키는 안전에 대한 위협정도는 본 규칙 52에 따라서 결정된다.

d. 수용자에 관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는 해당 수용자의 개인적 또는 복지적인 요구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e.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8부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 시설수용과 수용시설

17.1 수용자는 가능한 한 그의 주소지 또는 사회재통합시설과 가까운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17.2 수용시설을 지정할 때 계속 중인 범죄수사의 필요성, 안전과 보안 그리고 모든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17.3 가능한 한 최초의 시설수용과 다른 시설로의 이송에 대하여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18.1 특히 침구류를 비롯하여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수용시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한 한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구비되어야 하며, 건강과 위생상의 필요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기후조건과 특히 거실바닥의 넓이, 거실 공간의 용적, 조명, 난방, 환기 등을 잘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8.2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작업하고 집합하는 모든 건물은,

a. 창문은 수용자들이 자연광으로 독서 또는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며, 적당한 에어컨 설비가 갖추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인공적인 조명은 승인된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c. 수용자가 직원을 지체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8.3 본 규칙 18.1과 18.2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법에 기술되어야 한다.

18.4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수용과밀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8.5 수용자는 통상적으로 독거실에서 취침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용시설을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8.6 수용시설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때에만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토록 하고 마음이 잘 맞는 수용자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8.7 수용시설을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토록 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당 수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8.8 특수한 교정시설에 수용하거나 교정시설 내 특수한 구역에 수용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a.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수용

b.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분리수용

c. 미성년수용자와 성년수용자의 분리수용

18.9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리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야간에는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다만, 수용자들 서로가 수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교정당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야간에도 수용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8.10 모든 수용자의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수용자의 도주, 자해 및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위험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19.1 모든 교정시설의 각 부분은 항상 청결하고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9.2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당해 수용자가 머무는 거실과 수용시설은 청결하여야 한다.

19.3 수용자는 언제라도 청결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4 수용자에게는 기후에 따라 적당한 온도의 목욕과 샤워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목욕과 샤워는 가능한 한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위생을 위하여 최소한 주 2회(또는 필요하면 더 자주) 이상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5 수용자는 그의 신체, 의류 및 침구류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9.6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위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화장비품 또는 청소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9.7 여성에게 필요한 위생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류와 침대**

20.1 자기 소유의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수용자에게는 기후에 맞는 의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20.2 그러한 의류는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0.3 모든 의류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 시 교체되어야 한다.

20.4 교정시설 밖으로 외출이 허가된 수용자는 수용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의류를 착용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1. 모든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개별적인 침대와 개별적인 적당한 침구류를 제공받아야 하고, 침대와 침구류는 좋은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청결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교체되어야 한다.

**영양**

22.1 수용자에게는 나이, 건강, 신체상태, 종교, 문화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2.2 영양가 있는 음식은 최소한의 열량과 단백질 함유량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22.3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22.4 하루 세 번의 식사가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

22.5 항상 깨끗한 음용수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2.6 의사 또는 자격있는 간호사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수용자에 대한 식단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상담**

23.1 모든 수용자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교정당국은 수용자들이 법률상담을 받기에 용이하도록 적정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3.2 수용자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자비부담으로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23.3 교정당국은 승인된 무료의 법률구조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3.4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서신교환 등의 통신활동은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23.5 사법관청은 중대한 범죄의 예방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등 특수한 때에만 위의 통신상의 비밀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3.6 수용자는 자신의 소송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물품으로 소지할 수 있다.

**외부사회와의 접촉**

24.1 수용자는 서신,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및 외부단체의 대표자와 가능한 한 자주 통신하는 것과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24.2 통신과 접견은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상 목적,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과 보안, 범죄예방,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 또는 감시될 수 있으나 사법기관이 명한 특별한 제한을 포함하는 이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와 외부사회와의 최소한의 접촉은 허용하여야 한다.

24.3 법률에는 수용자와의 통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국내 또는 국제단체 및 관련 임직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4.4 접견은 수용자로 하여금 가족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4.5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외부사회와 적절한 교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하여야 한다.

24.6 수용자의 근친의 사망 또는 중병소식이 접수되면 즉각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4.7 여건이 허용되면 수용자로 하여금 직원의 동행 또는 혼자서 병을 앓고 있는 친척 방문 및 장례식 참석 또는 다른 인도적 측면을 고려한 외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24.8 수용자는 수용사실, 다른 시설로의 이송 및 그가 걸릴 수 있는 중병 또는 중상해에 관하여 가족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4.9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때에는 교정당국은 해당 수용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배우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만약 수용자가 미혼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4.10 수용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별적인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한 신청에 따라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물 등을 구독하고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스스로 공적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24.11 교정당국은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한 수용자로 하여금 선거와 국민투표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공적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12 수용자는 공공이익에 있어서 안전과 보안의 유지하기 위하여 금지하거나 또는 범죄피해자, 다른 수용자 또는 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언론매체와 통신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정관리체제**

25.1 모든 수용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정관리체제는 균형을 가진 수용자 활동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5.2 이러한 교정관리체제는 모든 수용자가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적정한 수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하루일과 중 가능한 많은 시간을 거실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5.3 이러한 교정관리체제는 또한 수용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25.4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도작업**

26.1 교도작업은 교도관리체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접근되어야 하고,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6.2 교정당국은 유용한 성질의 교도작업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3 교도작업은 가능한 한 수용자가 출소 후에 생계를 꾸려갈 능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6.4 본 규칙 13에 따라 제공되는 교도작업형태에 있어서 성에 기초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6.5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교도작업은 그 작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6.6 수용자는 이용가능하고 적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바람직한 수용질서와 규율유지의 요구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도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26.7 교정당국의 교도작업의 구성과 방법은 수용자가 정상적인 직업생활의 영위를 준비하도록 가능한 한 일반사회의 작업과 유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6.8 교정시설내의 교도작업으로부터 재정적인 이익의 추구는 교도작업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물품의 질과 직업훈련의 적정성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하더라도 수용자의 이해가 그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아니된다.

26.9 수용자에 대한 교도작업은 교정당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교정시설 내외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6.10 어떠한 경우이든 수용자의 작업에 대하여 공평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26.11 수용자는 작업수당의 최소한 일정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허가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수당의 일정부분을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다.

26.12 수용자에 대하여 출소 시에 지급하거나 허가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수익을 저축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6.13 수용자를 위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책은 그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일반사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26.14 직업병을 포함하여 작업 중의 부상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건에 있어서 일반사회의 근로자들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것보다 덜 우호적이어서는 아니된다.

26.15 수용자에게 과하는 일일 또는 주간 최다 근로시간은 자유로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26.16 수용자는 최소한 주 하루의 휴일과 교육 및 다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26.17 가능한 한 작업수용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운동과 여가활동**

27.1 모든 수용자에게는 기상조건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 매일 1시간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7.2 기상이 좋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7.3 수용자의 신체건강을 증진하고, 적당한 운동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하게 조직된 단체활동은 교정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

27.4 교정당국은 적절한 장비 또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7.5 교정당국은 필요로 하는 수용자를 위하여 특별한 활동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7.6 스포츠, 게임, 문화활동, 취미 및 그 밖의 레저활동을 포함하여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수용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7 수용자는 운동과 여가활동시간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 만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교육**

28.1 모든 교정시설은 수용자 개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그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8.2 지식과 기본적 계산능력을 필요로 하며 기초적 또는 직업교육이 부족한 수용자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28.3 나이가 어린 수용자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8.4 교육은 교정행정에 있어서의 교도작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8.5 교정당국은 모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구비해야 하고 그 도서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오락적이고 교육적인 자료, 서적, 그 밖의 매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28.6 가능하면 교정시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도서관과 협력하에 있어야 한다.

28.7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a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어려움없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체제와 통합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b. 외부교육기관의 원조 아래에 운용되도록 한다.

###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29.1 수용자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29.2 교정당국은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가 종교활동을 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고, 승인된 종교대표자가 주도하는 종교집회나 회합에 참석할 수 있고, 해당 종파의 종교대표자의 개별방문을 받을 수 있고 종교와 관련한 서적이나 문학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3 수용자는 종교활동, 종교행사나 집회에의 참석, 종교의식에의 참가 또는 어떤 종교대표자로부터 방문을 받는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정보

30.1 모든 수용자에게는 수용 후 그리고 필요한 때 자주 교정시설의 규칙과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과 구두로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30.2 수용자에게는 교정시설에서 지급받은 문서형식의 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30.3 수용자는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소송절차와 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형기 및 조기석방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수용자 소유물

31.1 교정시설의 규정상 수용자에게 소유가 허가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유물은 교정시설의 승인 후 안전한 관리하에 둔다.

31.2 수용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영치하는 경우 영치품 목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31.3 영치품을 좋은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1.4 영치품을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은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1 5 수용자는 위생, 수용질서 및 보안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일반사회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음식이나 음료수 등을 포함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6 수용자가 의약품을 지니고 입소한 때에는 의무관이 그 의약품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7 수용자가 본인물품의 소지를 허용 받은 경우 교정당국은 안전한 보관을 원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수용자 이송

32.1 수용자가 교정시설간 이송 또는 법원이나 병원 등으로 호송되는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용자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2.2 적당하지 않은 환기나 채광 상태인 수송차량으로의 이송 또는 수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송은 금지된다.

32.3 수용자 이송은 공공기관의 비용과 관리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 수용자 석방

33.1 모든 수용자는 형기가 종료하거나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석방명령이 있으면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33.2 석방일자와 시각은 기록되어야 한다.

33.3 모든 수용자는 석방 후 자유사회에 복귀 시 그들을 원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에 대한 이익을 가진다.

33.4 수용자 석방 시에는 영치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모든 물품과 금전은 환부되어야 한다. 다만, 공인된 금

전인출 또는 교정시설 외부로의 공인된 물품송부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물품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5 수용자는 환부받은 물품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33.6 석방이 사전에 결정되면 수용자는 본 규칙 42에 따라 가능한 석방이 가까운 시기에 진료를 받는다.

33.7 석방시 수용자는 적정한 서류와 신분확인서류를 필요한 바에 따라 제공받고, 적당한 숙박과 직업을 구하는 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3.8 또한 석방되는 수용자에게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기후 및 계절을 고려한 적당한 의류 및 수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수용자**

34.1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본 규칙이 정한 특별한 규정 이외에 교정당국은 구금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적 · 직업적 · 사회적 · 정신적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4.2 여성수용자가 본 규칙 25.4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4.3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서 출산하는 때에는 교정당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금된 청소년**

35.1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예외적으로 성인교도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교정당국은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처우를 포함하여 청소년 수용자가 사회적 · 정신적 교육적 프로그램, 종교적 배려,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일반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처우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5.2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의 모든 청소년 수용자는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5.3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청소년 수용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5.4 청소년이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을 경우, 특히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의 수용자와 분리된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유아**

36.1 유아는 특히 유아에게 최상의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함께 교정시설에 머물 수 있다. 유아는 수용자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36.2 유아가 교정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보육관련 자격이 있는 직원이 배치된 특별한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부모가 유아의 대동 없이 활동할 때의 시설이어야 한다.

36.3 대동유아의 복지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 국적자**

37 1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지체없이 자국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와의 접촉을 요구할 권리에 관하여 고지되어야 하고 그들과 연락하기 위하여 적당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37.2 외교 또는 영사대표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수용자와 난민 또는 무국적수용자는 그들의 이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대표부 또는 그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 또

는 국제기구와 연락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37.3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교정당국은 해당 수용자를 대리하는 외교 또는 영사 대표와 충분히 협력하여야 한다.

37.4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법률적 조력과 관련한 특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7.5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자신의 형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되어야 한다.

**소수인종 또는 소수언어 사용자**

38.1 소수인종이나 소수언어사용에 속하는 수용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8.2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관습이 교정시설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8.3 능력있는 통역인과 해당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언어 범위에서 작성된 자료의 제공에 의해 언어소통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 제3부 건강

**보건**

39. 교정당국은 모든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용자 보건을 위한 기구**

40.1 교정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적인 보건기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조직되어야 한다.

40.2 교정시설의 보건정책은 국가의 보건정책에 통합되어야 하고 조화되어야 한다.

40.3 수용자는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없이 이용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권을 가진다.

40.4 교정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하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5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의료적 처우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내과적 · 외과적 · 정신과적 처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및 보건 직원**

41.1 모든 교정시설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자격있는 일반전문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1.2 응급상황에도 자격있는 일반전문의가 언제라도 지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1.3 상근하는 전문의가 없는 교정시설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야 한다.

41.4 모든 교정시설은 보건의료분야의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1.5 모든 교정시설은 자격있는 치과의사와 안과의사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의사의 의무**

42.1 의사 또는 의사에게 보고하는 자격있는 간호사는 입소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수용자를 면담하여야 하고, 명백하게 필요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42.2 의사 또는 의사에게 보고하는 자격있는 간호사는 출소를 앞둔 수용자가 요청 시 그를 진료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수용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42.3 수용자를 진료할 때 의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는 자격있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의료적 기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할 것

b.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진단과 그 치료 및 현재의 치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c. 수용자가 폭력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생각되는 표시나 흔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것

d. 마약,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한 금단증상의 치료

e. 자유박탈이라는 사실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또는 그 밖의 스트레스를 확인할 것

f. 전염이 의심되는 수용자 또는 전염가능기간 중인 수용자는 격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

g. HIV바이러스 보균자는 그러한 보균사실만으로는 격리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보장할 것

h. 출소 후에 사회적응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

i. 작업이나 운동에 대하여 수용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것

j. 해당 수용자가 그러한 절차에 동의하는 때,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필요한 의료적 · 정신과적 치료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3.1 의사는 수용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일반사회의 표준적인 보건관리에 부합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모든 환자수용자와 질병 또는 부상을 신고한 수용자 및 주의를 기울이도록 특별하게 지정된 수용자를 진찰하여야 한다.

43.2 의사 또는 의사에게 보고하는 자격있는 간호사는 독거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해당 수용자나 교도관의 요청 시 즉시 의료적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3 의사는 수용자가 지속적인 구금이나 독거구금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있는 담당자는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소장에게 조언한다.

a. 음식과 음용수의 양과 질, 준비 및 제공상태

b. 교정시설과 수용자의 위생 및 청결상태

c. 교정시설의 위생, 난방, 조명, 환기상태

d. 수용자 의류 및 침구류의 적정성 및 청결상태

45.1 소장은 본 규칙 43와 44에 따라 제출된 의사 및 자격있는 담당자의 권고안과 조언을 고려하여야 하고, 작성된 권고안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2 의사의 보고서가 소장의 재량 밖의 사항이거나 소장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장은 의사가 제출한 조언과 자신의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설비**

46.1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그와 같은 치료가 교정시설에서 불가능한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이나 민간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6.2 교정당국은 자체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그곳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원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

47.1 의료적 통제하에 특별한 교정시설이나 구역은 규칙 제12조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이나 정신이상으로 고통받는 수용자의 관찰과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7.2 교정시설의 보건의료담당부서는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그러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자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48.1 수용자는 동의 없이 어떠한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8.2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또는 건강상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실험에 수용자를 참여시키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 제4부 교정질서

**교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49. 교정시설에서의 질서는 수용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본 규칙 25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운데 보안, 안전과 규율의 필요를 고려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50. 질서와 안전 및 보안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는 일반적인 구금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교정당국과 대화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보안**

51.1 개별 수용자에게 대한 보안수단은 안전한 구금확보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1.2 물리적 방법과 다른 기술적인 수단에 의한 계호는 그의 통제하에 있는 수용자를 잘 아는 빈틈없는 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동적인 계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1.3 수용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평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도주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성

b. 스스로 또는 외부의 도움하에 도주를 기도할 위험성

51.4 각 수용자는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고려한 보안조건에 따라 수용된다.

51.5 필요한 보안등급은 해당 수용자의 구금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안전**

52.1 수용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 교정직원, 교정시설내의 근로자 또는 방문자 등에게 위험을 가할지 여부 또는 자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2.2 다른 수용자, 교정직원, 모든 방문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밖의 요

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52.3 모든 수용자가 안전한 가운데 일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2.4 수용자는 야간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직원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52.5 국가의 보건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특별한 고도의 보안 또는 안전수단**

53.1 특별한 고도의 보안 또는 안전수단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53.2 그러한 수단이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때에는 명백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53.3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수단의 내용, 기간 및 근거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53.4 개별 사안에 대한 그러한 수단의 적용은 특정한 기간 동안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53.5 승인된 기간의 연장을 위한 결정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새롭게 승인되어야 한다.

53.6 그러한 수단은 개별 수용자에게 적용하고 집단에게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3.7 그러한 수단이 적용된 수용자는 본 규칙 70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와 통제**

54.1 검사시에 직원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a. 수용자가 거주하고 작업하고 모이는 모든 장소

b. 수용자

c. 방문자 및 그들의 소지품

d. 직원

54.2 그러한 검사가 필요한 요건과 검사의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54.3 그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회피하거나 숨기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고, 동시에 검사대상과 개인소유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54.4 검신을 받는 사람은 검사과정에서 굴욕스러운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54.5 검신은 동성의 직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54.6 수용자의 신체내부에 대해서는 교정직원이 검사할 수 없다.

54.7 검사와 관련한 신체내부검사는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54.8 수용자는 그들의 소지품 검사시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수사기법상 또는 직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9 교정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는 방문자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4.10 법률대리인, 사회사업가, 의사 등과 같은 직업적인 방문자에 대한 검사절차는 교정시설의 보안과 안전 그리고 비밀의 직업적인 접근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직업인이 소속된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범죄행위**

55.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이 의심되는 범죄행위는 자유사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규율과 징벌

56.1 징벌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6.2 가능한 한 교정당국은 수용자와 함께 그리고 수용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복과 중재를 하여야 한다.

57.1 교정시설의 질서, 안전과 보안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이 규율위반행위로 정해져야 한다.

57.2 법률은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수용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b. 징벌을 위한 청문절차

c.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와 기간

d. 징벌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자

e. 불복의 절차를 담당하는 자와 그에 대한 접근

58. 수용자에 의한 규율위반에 대한 주장은 즉시 권한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지체없이 즉각 조사하여야 한다.

59.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는,

a. 즉시 위반내용에 대해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자세하게 고지해야 한다.

b. 방어준비를 위하여 적정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c. 법적 이익이 요구될 때 스스로 변론하거나 또는 법률적 조력를 통하여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d. 증인의 출석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증인을 신문하거나 수용자 자신을 위해 신문에 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 청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때에는 통역인의 무료통역을 받을 수 있다.

60.1 규율위반행위가 인정된 후에 부과되는 징벌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60.2 징벌의 정도는 규율위반내용에 비례하여야 한다.

60.3 집단징벌, 체벌, 암실에 수용하는 징벌 그리고 모든 유형의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징벌은 금지된다.

60.4 가족과의 접견을 완전히 금지하는 징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0.5 독거구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징벌로써, 가능한 한 짧게 특정된 기간 동안 행해진다.

60.6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1. 규율위반행위가 인정된 수용자는 자격이 있고 독립적인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62. 수용자는 징벌결정에 있어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권한이 주어져서는 아니된다.

### 이중위험금지

63. 수용자는 동일한 행위로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 강제력의 사용

64.1 교정직원은 그 자신의 방어, 수용자의 도주시도 시 또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저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64.2 사용되는 강제력은 필요최소한이어야 하고, 필요최단시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65.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a. 사용될 수 있는 강제력의 다양한 종류

b. 각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c. 각 강제력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구성원

d. 강제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e. 강제력이 사용되고 난 후 작성하여야 하는 보고서

66. 수용자를 직접 처우하는 직원은 공격적인 수용자를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받아야 한다.

67.1 다른 법집행기구에 소속된 직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를 처우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다.

67.2 교정당국과 그와 같은 다른 법집행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3 그러한 합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다른 법집행기관 소속의 직원이 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b. 다른 법집행기관 소속의 직원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가지게 되는 권한의 범위와 소장과의 관계

c 다른 법집행기관 소속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의 형태

d. 각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e. 각 강제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f. 강제력이 사용된 후 작성하여야 하는 보고서

**보호장비**

68.1 사슬과 족쇄(irons)의 사용은 금지된다.

68.2 수갑, 구속복 및 그 밖에 신체를 제압하는 보호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a. 이송 시 도주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용자가 재판이나 관리상의 권한 있는 자에게 출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자의 다른 결정이 없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수용자의 자해, 다른 수용자에 대한 상해의 방지 또는 기물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통제수단이 실패한 때 소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장은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8.3 보호장비는 엄격하게 제한된 시간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

68.4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률에 특정되어야 한다.

**무기**

69.1 비상작전 시를 제외하고는 교도직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69.2 수용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직원이 교도봉을 포함하여 무기를 교정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휴대하는 것은 금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여 안전과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3 무기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기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탄원과 고소**

70.1 수용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교도소장 또는 권한있는 자에게 탄원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70.2 중재가 적당한 때에는 먼저 중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70.3 탄원 또는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수용자는 독립된 권한있는 자에게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70.4 수용자는 탄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70.5 권한있는 자는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친척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70.6 수용자의 복지와 관련한 법률대리인이나 법률단체에 의한 고소는 관련 수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자를 대리하여 제기할 수 없다.

70.7 수용자는 고소와 항소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재판상 필요시에는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

## 제5부 관리와 교정직원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정업무**

71. 교정시설은 군, 경찰 및 범죄수사기관과는 분리된 공적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

72.1 교정시설은 모든 수용자를 인도적이고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는 윤리적 배경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72.2 교정직원은 교정제도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리자 측은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72.3 교정직원의 의무는 요구된 단순한 지침을 넘어서 형기종료 후 사회에 복귀하는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요구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는 적극적인 배려와 원조를 통하여 완성된다.

72.4 교정직원은 고도의 직업적 · 개인적 규범 아래 움직여야 한다.

73. 교정당국은 교정직원과 관련된 규칙의 준수상태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74. 일선의 교정직원과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수용자간와의 관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75. 교정직원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수용자를 감화시키고 그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도록 항상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정직원의 선발**

76. 교정직원은 신중하게 선발되어야 하고, 최초 임용 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전문직업인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으며 일반사회인이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

77. 새로운 직원을 선발할 때 교정당국은 성실성, 인간성, 전문적 능력 및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를 위한 개인적 적성 등에 대한 필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78. 전문적인 교정직원은 보통 상임제로 임명되어야 하고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바른 품행

과 좋은 업무능력 및 육체적 · 정신적 건강과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79.1 급료는 교정직원을 적정하게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

79.2 수당과 고용조건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힘든 업무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80. 임시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

**교정직원의 훈련**

81.1 업무수행 전에 교정직원은 일반적이고 특수한 업무와 관련한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론과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81.2 관리자는 모든 교정직원이 그들의 재직기간 동안 적정한 간격으로 계획된 현직훈련 및 자기개발과정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지식과 전문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81.3 외국인수용자, 여성, 미성년자, 정신질환수용자 등과 같은 특수한 수용자 집단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원은 특수한 업무에 따르는 특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81.4 모든 교정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는 국제 그리고 국내적 인권기구와 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특히 「유럽인권규약」, 「고문과 비인권적 처우의 방지 또는 비열한 처우 및 징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규약」 및 「유럽형사시설규칙」의 적용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관리**

82. 교정직원은 평등한 기준에서 선발되고 임명되며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국가 또는 사회적 배경, 소수민족과의 관련성, 재산, 출생이나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

83. 교정당국은 조직과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a.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인권기구의 기준에서 항상 고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정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b. 교정시설간 또는 각 교정시설 내의 계층별 교정직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수용자 처우와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시설 내부와 외부 양쪽의 모든 부서간 조정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84.1 모든 교정시설에는 소장이 있어야 하며 소장은 인격, 행정능력, 적합한 직업적 훈련과 경험에 의해 임명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84.2 소장은 상근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그의 공적임무수행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84.3 교정당국은 모든 교정시설이 소장, 부소장 또는 권한 있는 직원의 전적인 책임과 담당하에 항시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4 소장이 하나 이상의 교정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때에는 각각의 교정시설을 항상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보직하여야 한다.

85. 남성과 여성의 교정직원은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86. 관리자가 교정직원들과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환경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87.1 관리자, 교정직원, 외부기관 및 수용자 상호간에 최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87.2 소장, 관리자 및 교정시설의 과반 이상의 직원은 대다수의 수용자의 언어 또는 그들 대다수가 이해하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88. 민영으로 운영하는 교도소에는 모든 유럽형사시설규칙이 적용된다.

**전문직 직원**

89.1 가능한 한 충분한 수의 정신과의사, 정신분석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직업교육 · 체육강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9.2 언제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임시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수용자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홍보**

90.1 교정당국은 사회에 있어 교도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좋은 일반인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정제도의 목적과 교정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90.2 교정당국은 일반 사회인이 교정시설에 자원봉사자로서 적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연구와 평가**

91.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목적, 민주사회에서의 역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이나 평가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부 감사와 감시

**정부의 감사**

92. 교정시설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이들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독립적인 감시**

93.1 구금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독립된 기구에 의하여 감시를 받아야 하고, 감시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93.2 그와 같은 독립된 감시기구 또는 단체는 교정시설의 방문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제기구와 상호 연대하여 활동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제7부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의 지위**

94.1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사법기관에 의하여 공판, 판결 또는 선고 전에 구금된 자를 말한다.

94.2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그의 불복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한 미결수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근**

95.1 미결수용자에 대한 관리체제는 그가 장래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95.2 본 장에서의 규정은 미결수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한다.

95.3 미결수용자를 관리함에 있어 교정당국은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미결수용자가 이러한 규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수용시설**

96. 미결수용자에게는 가능한 한 독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른 미결수용자와 수용시설을 함께 사용함이 그자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또는 법원이 해당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대하여 특별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류**

97.1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착용함이 적합한 때에는 자기소유의 의류를 허용하여야 한다.

97.2 자기소유의 적당한 의류를 가지지 아니하는 미결수용자에게 기결수용자가 입는 의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적 조언**

98.1 미결수용자는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받아야 한다.

98.2 미결수용자가 방어준비를 하고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외부사회와의 접촉**

99. 미결수용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금지를 결정받지 아니하는 한,

a. 기결수용자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 및 그 밖의 사람들과 접견하고 교통을 허가되어야 하고

b. 추가적인 접견과 그밖의 형태의 교통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받고

c. 도서와 신문 및 그 밖의 뉴스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작업**

100.1 미결수용자는 작업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작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100.2 작업을 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작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규칙 26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기결수용자에 해당하는 교정처우의 적용**

101. 미결수용자가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정당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부 기결수용자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목적**

102.1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외에,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2.2 구금은 자유의 박탈로서 그 자체가 형벌이고, 그러므로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가 구금에 내재하는 고통을 증대시켜서는 아니된다.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시행**

103.1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해당 수용자가 기결수용자의 자격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됨과 동시에 시행되며, 이전부터 교정처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2 그러한 수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기결수용자의 개인적 상황, 각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계획 및 석방준비를 위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3.3 기결수용자는 개인별 형집행계획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03.4 그러한 계획에는 가능한 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 작업

b. 교육

c. 그 밖의 활동

d. 석방준비

103.5 사회사업, 의료적 및 정신과적 치료는 기결수용자의 교정처우에 포함될 수 있다.

103.6 기결수용자를 위한 전반적인 교정처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휴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103.7 동의를 하는 수용자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 범죄에 대한 배상절차에 포함될 수 있다.

103.8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형집행계획과 수용처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조직의 형태**

104.1 가능한 한 그리고 본 규칙 17에 따라서, 특이한 범주의 수용자에게 일반처우와는 상이한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데 용이하도록 독립된 교정시설이나 교정시설의 분리된 구역을 운영하여야 한다.

104.2 보고서와 관련하여 직원과 관련 수용자 사이에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상담을 고려한 후에 수용자의 개인별 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104.3 그와 같은 보고서는 항상 관련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정직원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결수용자의 작업**

105.1 체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05.2 일반적인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기결수용자는 의무관의 결정으로써 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적합성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105.3 기결수용자에게 작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작업조건은 일반사회에 적용되는 기준과 규제에 따라야 한다.

105.4 기결수용자는 작업시간 동안 그의 계획된 처우의 일부로써 교육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때에는 작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업수당을 지급한다.

105.5 기결수용자의 작업수당과 예탁금은 법원에 의한 명령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기결수용자의 교육

106.1 직업훈련교육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기결수용자의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래에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정처우가 되어야 한다.

106.2 기결수용자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06.3 기결수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수용자의 예상되는 구금기간에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

### 기결수용자의 석방

107.1 기결수용자는 석방 전 적당한 시기에 수용생활로부터 일반사회의 준법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특별프로그램에 의해 원조받아야 한다.

107.2 특별히 장기형을 집행받은 기결수용자에게는 자유사회생활에 점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107.3 이러한 목표는 교정시설의 석방 전 프로그램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과 결합된 보호관찰부의 부분적 또는 조건부 석방제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107.4 교정당국은 모든 기결수형자가 특히 가족생활과 고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그들 자신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석방된 수용자를 감시하고 원조하는 지원과 대리에 면밀히 노력하여야 한다.

107.5 그러한 사회적 원조와 대리에 관한 대표는 석방준비와 석방 후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교정시설과 수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제9부 규정의 개정

108. 유럽형사시설규칙은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 Note 1

이러한 권고를 채택하거나 각료대표회의를 위한 절차규정의 Article10.2c를 적용함에 있어 덴마크 대표는 자국 정부가 본 규칙 43의 2(권고안의 부록 내)에 따를 권리를 유보하였다. 그 이유는 독거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의무직원이 매일 방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실은 의무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용자의 독거구금을 양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독거구금기간을 연장하는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The European Prison Rules(2006)

23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6)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1

(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11 January 2006 at the 952nd 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

The Committee of Ministers, under the terms of Article 15.b of 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Having regar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ing regard also to the work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in particular the standards it has developed in its general reports;

Reiterating that no one shall be deprived of liberty save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prescribed by law;

Stressing that the enforcement of custodial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necessitate taking account of the requirements of safety, security and discipline while also ensuring prison conditions which do not infringe human dignity and which offer meaningful occupational activities and treatment programmes to inmates, thus preparing them for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Considering it important that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continue to update and observe common principles regarding their prison policy;

Considering, moreover, that the observance of such common principles will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Noting the significant social changes which have influenced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penal field in Europe in the course of the last two decades;

Endorsing once again the standards contained i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relate to specific aspects of penitentiary policy and practice and in particular No. R (89) 12 on education in prison, No. R (93) 6 concerning prison and criminological aspects of the control of transmissible diseases including AID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n prison, No. R (97) 12 on staff concern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nd measures, No. R (98) 7 concerning the ethical and organisational aspects of health care in prison, No. R (99) 22 concerning prison overcrowding and prison population inflation, Rec(2003)22 on conditional release (parole), and Rec(2003)23 on the management by prison administrations of life sentence and other long-term prisoners;

Bearing in min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Considering that Recommendation No. R (87) 3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 needs to be substantively revised and updated in order to reflect the developments which have occurred in penal policy, sentencing practice and the overall management of prisons in Europe,

Recommends that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 be guided in their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 by the rules contained in the appendix to this recommendation, which replaces Recommendation No. R (87) 3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
- ensure that this recommendation and the accompanying commentary to its text are translated and disseminated as widely as possible and more specifically among judicial authorities, prison staff and individual prisoners.

Appendix to Recommendation Rec(2006)2

# Part I Basic principles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2.**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retain all rights that are not lawfully taken away by the decision sentencing them or remanding them in custody.

**3.** Restrictions placed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he minimum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objective for which they are imposed.

**4.** Prison conditions that infringe prisoners' human rights are not justified by lack of resources.

**5.** Life in prison shall approximate as closely as possible the positive aspects of life in the community.

**6.** All detention shall be managed so as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into free society of persons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liberty.

**7.** Co-operation with outside social services and as far as possibl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prison life shall be encouraged.

**8.** Prison staff carry out an important public service and their recruitment, training and conditions of work shall enable them to maintain high standards in their care of prisoners.

**9.** All prisons shall be subject to regular government inspection and independent monitoring.

**Scope and application**

**10.1** The European Prison Rules apply to persons who have been remanded in custody by a judicial authority or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liberty following conviction.

**10.2** In principle, persons who have been remanded in custody by a judicial authority and persons who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following conviction should only be detained in prisons, that is, in institutions reserved for detainees of these two categories.

**10.3** The Rules also apply to persons:

a. who may be detained for any other reason in a prison; or
b. who have been remanded in custody by a judicial authority or deprived of their liberty following conviction and who may, for any reason, be detained elsewhere.

**10.4** All persons who are detained in a prison or who are detained in the mann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3.b are regarded a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11.1**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years should not be detained in a prison for adults, but in an establish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11.2** If children are nevertheless exceptionally held in such a prison there shall be special regulations that take account of their status and needs.

**12.1** Persons who ar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and whose state of mental health is incompatible with detention in a prison should be detained in an establish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12.2** If such persons are nevertheless exceptionally held in prison there shall be special regulations that take account of their status and needs.

**13.** These rules shall be applied impartially,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Part II Conditions of imprisonment

**Admission**

**14.** No person shall be admitted to or held in a prison as a prisoner without a valid commitment orde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15.1** At admission the following details shall be recorded immediately concerning each prisoner:

a. information concerning the identity of the prisoner;
b. the reasons for commitment and the authority for it;
c. the day and hour of admission;
d. an inventory of the personal property of the prisoner that is to be held in safekeeping in accordance with Rule 31;
e. any visible injuries and complaints about prior ill-treatment; and
f.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medical confidentiality, any information about the prisoner's health that is relevant to the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the prisoner or others.

**15.2** At admission all prisoners shall be give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30.

**15.3** Immediately after admission notification of the detention of the prisoner sha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Rule 24.9.

**16.**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 information about the health of the prisoner on admission shall be supplemented by a medical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42;
b. the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for the prisoner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ule 51;
c. the threat to safety that the prisoner pos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ule 52;
d. any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social situation of the prisoner shall be evaluated in order to deal with the immediate personal and welfare needs of the prisoner; and
e. in the case of sentenced prisoners the necessary steps shall be taken to implement programmes in accordance with Part VIII of these rules.

**Allocation and accommodation**

**17.1** Prisoners shall be allocated, as far as possible, to prisons close to their homes or places of social rehabilitation.

**17.2** Allocation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continuing criminal investigations, safety an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vide appropriate regimes for all prisoners.

**17.3** As far as possible, prisoners shall be consulted about their initial allocation and any subsequent transfer from one prison to another.

**18.1** The accommodation provided for prisoners, and in particular all sleeping accommodation, shall respect human dignity and, as far as possible, privacy,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health and hygiene, due regard being paid to climatic conditions and especially to floor space, cubic content of air, lighting, heating and ventilation.

**18.2** In all buildings where prisoners are required to live, work or congregate:

a. the windows shall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by natural light in normal conditions and shall allow the entrance of fresh air except where there is an adequate air conditioning system;

b. artificial light shall satisfy recognised technical standards; and

c. there shall be an alarm system that enables prisoners to contact the staff without delay.

**18.3** Specific minimum requirements in respect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set in national law.

**18.4** National law shall provide mechanisms for ensuring that these minimum requirements are not breached by the overcrowding of prisons.

**18.5** Prisoners shall normally be accommodated during the night in individual cells except where it is preferable for them to share sleeping accommodation.

**18.6** Accommodation shall only be shared if it is suitable for this purpose and shall be occupied by prisoners suitable to associate with each other.

**18.7** As far as possible, prisoners shall be given a choice before being required to share sleeping accommodation.

**18.8** In deciding to accommodate prisoners in particular prisons or in particular sections of a prison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 to detain:

a. untried prisoners separately from sentenced prisoners;

b. male prisoners separately from females; and

c. young adult prisoners separately from older prisoners.

**18.9** Exceptions can be made to the requirements for separate detention in terms of paragraph 8 in order to allow prisoners to participate jointly in organised activities, but these groups shall always be separated at night unless they consent to be detained together and the prison authorities judge that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all the prisoners concerned.

**18.10** Accommodation of all prisoners shall be in conditions with the least restrictive security arrangements compatible with the risk of their escaping or harming themselves or others.

**Hygiene**

**19.1** All parts of every prison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clean at all times

**19.2** When prisoners are admitted to prison the cells or other accommodation to which they are allocated shall be clean.

**19.3** Prisoners shall have ready access to sanitary facilities that are hygienic and respect privacy.

**19.4** Adequate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if possible daily but at least twice a week (or more frequently if necessary) in the interest of general hygiene.

**19.5** Prisoners shall keep their persons, clothing and sleeping accommodation clean and tidy.

**19.6**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provide them with the means for doing so including toiletries and general cleaning implements and materials.

**19.7** Special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sanitary needs of women.

**Clothing and bedding**

**20.1** Prisoners who do not have adequate clothing of their own shall be provided with clothing suitable for the climate.

**20.2** Such clothing shall not be degrading or humiliating.

**20.3** All clothing shall be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d when necessary.

**20.4** Prisoners who obtain permission to go outside prison shall not be required to wear clothing that identifies them as prisoners.

**2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separate and appropriate bedding, which shall be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Nutrition**

**22.1** Prisoners shall be provided with a nutritious diet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age, health, physical condition, religion, culture and the nature of their work.

**22.2** The requirements of a nutritious diet, including its minimum energy and protein content, shall be prescribed in national law.

**22.3** Food shall be prepared and served hygienically.

**22.4** There shall be three meals a day with reasonable intervals between them.

**22.5** Clean drinking water shall be available to prisoners at all times.

**22.6**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 qualified nurse shall order a change in diet for a particular prisoner when it is needed on medical grounds.

**Legal advice**

**23.1** All prisoners are entitled to legal advice, and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provide them with reasonable facilities for gaining access to such advice.

**23.2** Prisoners may consult on any legal matter with a legal adviser of their own choice and at their own expense.

**23.3** Where there is a recognised scheme of free legal aid the authorities shall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all prisoners.

**23.4** Consultations and other communications including correspondence about legal matters between prisoners and their legal advisers shall be confidential.

**23.5** A judicial authority ma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uthorise restrictions on such confidentiality to prevent serious crime or major breaches of prison safety and security.

**23.6** Prisoners shall have access to, or be allowed to keep in their possession, documents relating to their

legal proceedings.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24.1**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communicate as often as possible by letter, telephone or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ies, other persons and representatives of outside organisations and to receive visits from these persons.

**24.2** Communication and visits may be subject to restrictions and monitoring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of continuing criminal investigations, maintenance of good order, safety and security, prevention of criminal offence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but such restrictions, including specific restrictions ordered by a judicial authority, shall nevertheless allow an acceptable minimum level of contact.

**24.3** National law shall specify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officials with whom communication by prisoners shall not be restricted.

**24.4** The arrangements for visits shall be such as to allow prisoners to maintain and develop family relationships in as normal a manner as possible

**24.5** Prison authorities shall assist prisoners in maintaining adequat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and provide them with the appropriate welfare support to do so.

**24.6** Any information received of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any near relative shall be promptly communicated to the prisoner.

**24.7** Whenever circumstances allow, the prisoner should be authorised to leave prison either under escort or alone in order to visit a sick relative, attend a funeral or for other humanitarian reasons.

**24.8**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inform their families immediately of their imprisonment or transfer to another institution and of any serious illness or injury they may suffer.

**24.9** Upon the admission of a prisoner to prison,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or serious injury to a prisoner, or the transfer of a prisoner to a hospital, the authorities shall, unless the prisoner has requested them not to do so, immediately inform the spouse or partner of the prisoner, or, if the prisoner is single, the nearest relative and any other person previously designated by the prisoner.

**24.10**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keep themselves informed regularly of public affairs by subscribing to and reading newspapers, periodicals and other publications and by listening to radio or television transmissions unless there is a specific prohibition for a specified period by a judicial authority in an individual case.

**24.11** Prison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prisoners are able to participate in elections, referenda and in other aspects of public life, in so far as their right to do so is not restricted by national law.

**24.12**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communicate with the media unles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forbid this for the maintenance of safety and security,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order to protect the integrity of victims, other prisoners or staff

**Prison regime**

**25.1** The regime provided for all prisoners shall offer a balanced programme of activities.

**25.2** This regime shall allow all prisoners to spend as many hours a day outside their cells as are necessary for an adequate level of human and social interaction.

**25.3** This regime shall also provide for the welfare needs of prisoners.

**25.4**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needs of prisoners who have experienced physical, mental or sexual abuse.

**Work**

**26.1** Prison work shall be approached as a positive element of the prison regime and shall never be used as a punishment.

**26.2** Prison authorities shall strive to provide sufficient work of a useful nature.

**26.3** As far as possible, the work provided shall be such as will maintain or increase prisoners' ability to earn a living after release.

**26.4** In conformity with Rule 13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n the type of work provided.

**26.5** Work that encompasses vocational training shall be provided for prisoners able to benefit from it and especially for young prisoners.

**26.6** Prisoners may choose the type of employment in which they wish to participate, within the limits of what is available, proper vocational selection and the requirements of good order and discipline.

**26.7** The organisation and methods of work in the institutions shall resemble as closely as possible those of similar work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prepare prisoners for the conditions of normal occupational life.

**26.8** Although the pursuit of financial profit from industries in the institutions can be valuable in raising standards and improving the quality and relevance of training, the interests of the prisoners should not be subordinated to that purpose.

**26.9** Work for prisoners shall be provided by the prison authorities, either on their own or in co-operation with private contractors, inside or outside prison

**26.10** In all instances there shall be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26.11**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allocate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ies.

**26.12** Prisoners may be encouraged to save part of their earnings, which shall be handed over to them on release or be used for other approved purposes.

**26.13** Health and safety precautions for prisoners shall protect them adequately and shall not be less rigorous than those that apply to workers outside.

**26.14** Provision shall be made to indemnify prisoners against industrial injury, including occupational disease, on terms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xtended by national law to workers outside.

**26.15** The maximum daily and weekly working hours of the prisoners shall be fixed in conformity with local rules or custom regulating the employment of free workers.

**26.16** Prisoners shall have at least one rest day a week and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26.17** As far as possible, prisoners who work shall be included in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s.

**Exercise and recreation**

**27.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of at least one hour of exercise every day in the open air, if the weather permits.

**27.2** When the weather is inclement alternative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allow prisoners to exercise.

**27.3** Properly organised activities to promote physical fitness and provide for adequate exercise a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prison regimes.

**27.4** Prison authorities shall facilitate such activities by providing appropriate installations and equipment.

**27.5** Prison authorities shall make arrangements to organise special activities for those prisoners who need them.

**27.6** Recreational opportunities, which include sport, games, cultural activities, hobbies and other leisure pursuits, shall be provided and, as far as possible,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organise them.

**27.7**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associate with each other during exercise and in order to take part in recreational activities.

**Education**

**28.1** Every prison shall seek to provide all prisoners with access to educational programmes which are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and which meet their individual need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aspirations.

**28.2**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isoners with literacy and numeracy needs and those who lack basic or vocational education.

**28.3**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education of young prisoners and those with special needs.

**28.4** Education shall have no less a status than work within the prison regime and prisoners shall not be disadvantaged financially or otherwise by taking part in education.

**28.5**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a wide range of both recreational and educational resources, books and other media.

**28.6** Wherever possible, the prison library should be organised in co-operation with community library services.

**28.7** As far as practicable,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all:

a. be integrated with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the country so that after their release they may continue thei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without difficulty; and

b take place under the auspices of external educational institution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9.1** Prisoner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shall be respected.

**29.2** The prison regime shall be organised so far as is practicable to allow prisoners to practise their religion and follow their beliefs, to attend services or meetings led by approved representatives of such religion or beliefs, to receive visits in private from such representatives of their religion or beliefs and to have in their possession books or literature relating to their religion or beliefs.

**29.3** Prisoners may not be compelled to practise a religion or belief, to attend religious services or meetings, to take part in religious practices or to accept a visit from a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or belief

**Information**

**30.1** At admission, and as often as necessary afterwards all prisoners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and

orally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of the regulations governing prison discipline and of their rights and duties in prison.

**30.2**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keep in their possession a written version of the information they are given.

**30.3** Prisoners shall be informed about any legal proceeding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if they are sentenced, the time to be served and the possibilities of early release.

**Prisoners' property**

**31.1** All property that prisoners are not allowed to retain under the rules governing the prison shall be placed in safe custody on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31.2** A prisoner whose property is taken into safe custody shall sign an inventory of the property.

**31.3** Steps shall be taken to keep such property in good condition.

**31.4** If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destroy any such property, this shall be recorded and the prisoner informed.

**31.5** Prisoners shall,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hygiene, good order and security, be entitled to purchase or otherwise obtain goods, including food and drink for their personal use at prices that are not abnormally higher than those in free society.

**31.6** If a prisoner brings in any medicines, the medical practitioner shall decide what use shall be made of them.

**31.7** Where prisoners are allowed to keep possession of their property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take steps to assist in its safekeeping.

**Transfer of prisoners**

**32.1** While prisoners are being moved to or from a prison, or to other places such as court or hospital, they shall be exposed to public view as little as possible and proper safeguards shall be adopted to ensure their anonymity.

**32.2** The transport of prisoners in conveyances with inadequate ventilation or light, or which would subject them in any way to unnecessary physical hardship or indignity, shall be prohibited.

**32.3** The transport of prisoners shall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ublic authorities.

**Release of prisoners**

**33.1** All prisoners shall be released without delay when their commitment orders expire, or when a court or other authority orders their release.

**33.2** The date and time of the release shall be recorded.

**33.3** All prisoners shall have the benefit of arrangements designed to assist them in returning to free society after release.

**33.4** On the release of a prisoner all articles and money belonging to the prisoner that were taken into safe custody shall be returned except in so far as there have been authorised withdrawals of money or the authorised sending of any such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destroy any article on hygienic grounds.

**33.5** The prisoner shall sign a receipt for the property returned.

**33.6** When release is pre-arranged, the prisoner shall be offered a medical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42 as close as possible to the time of release.

**33.7** Step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on release prisoners are provided, as necessary, with appropriate documents and identification papers, and assisted in finding suitable accommodation and work.

**33.8** Released prisoners shall also be provided with immediate means of subsistence, be suitably and adequately clothed with regard to the climate and season, and have sufficient means to reach their destination.

**Women**

**34.1** In addition to the specific provisions in these rules dealing with women prisoners, the authorities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of women such as their physical, voca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when making decisions that affect any aspect of their detention.

**34.2** Particular efforts shall be made to give access to special services for women prisoners who have needs as referred to in Rule 25.4.

**34.3**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give birth outside prison, but where a child is born in prison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all necessary support and facilities.

**Detained children**

**35.1** Where exceptionally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years are detained in a prison for adults the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in addition to the services available to all prisoners, prisoners who are children have access to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religious care and recreational programmes or equivalents to them that are available to children in the community.

**35.2** Every prisoner who is a child and is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shall have access to such education.

**35.3** Additional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to children who are released from prison.

**35.4** Where children are detained in a prison they shall be kept in a part of the prison that is separate from that used by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that this i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fants**

**36.1** Infants may stay in prison with a parent only when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infants concerned. They shall not be treated as prisoners.

**36.2** Where such infants are allowed to stay in prison with a parent special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 parent is involved in activities where the infant cannot be present.

**36.3** Special accommodation shall be set aside to protect the welfare of such infants

**Foreign nationals**

**37.1**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their right to request contact and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ir state.

**37.2**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s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serve the interests of such persons.

**37.3** In the interests of foreign nationals in prison who may have special needs, prison authorities shall co-operate fully with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representing prisoners.

**37.4** Specific information about legal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to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37.5**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informed of the possibility of requesting that the execution of their sentence be transferred to another country.

**Ethnic or linguistic minorities**

**38.1** Special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prisoners who belong to ethnic or linguistic minorities.

**38.2** As far as practicable the cultural practices of different groups shall be allowed to continue in prison.

**38.3** Linguistic needs shall be met by using competent interpreters and by providing written material in the range of languages used in a particular prison.

## Part III Health

**Health care**

**39.** Prison authorities shall safeguard the health of all prisoners in their care.

**Organisation of prison health care**

**40.1** Medical services in prison shall be organised in close relation with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40.2** Health policy in prisons shall be integrated into, and compatible with, national health policy.

**40.3** Prisoners shall have access to the health services available in the country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their legal situation.

**40.4** Medical services in prison shall seek to detect and treat physical or mental illnesses or defects from which prisoners may suffer.

**40.5** All necessary medical, surgical and psychiatric services including those available in the community shall be provided to the prisoner for that purpose.

**Medical and health care personnel**

**41.1** Every prison shall hav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general medical practitioner.

**41.2**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ensure at all times that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is available without delay in cases of urgency.

**41.3** Where prisons do not have a full-time medical practitioner, a part-time medical practitioner shall visit regularly.

**41.4** Every prison shall have personnel suitably trained in health care.

**41.5** The services of qualified dentists and opticians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Duties of the medical practitioner**

**42.1**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 qualified nurse reporting to such a medical practitioner shall se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nd shall examine them unless this is obviously

unnecessary.

**42.2**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 qualified nurse reporting to such a medical practitioner shall examine the prisoner if requested at release, and shall otherwise examine prisoners whenever necessary.

**42.3** When examining a prisoner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 qualified nurse reporting to such a medical practitioner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a observing the normal rules of medical confidentiality;

b. diagnosing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aking all measures necessary for its treatment and for the continuation of existing medical treatment;

c. recording and reporting to the relevant authorities any sign or indication that prisoners may have been treated violently;

d. dealing with withdrawal symptoms resulting from use of drugs, medication or alcohol;

e. identifying any psychological or other stress brought on by the fact of deprivation of liberty;

f. isolating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for the period of infection and providing them with proper treatment;

g. ensuring that prisoners carrying the HIV virus are not isolated for that reason alone;

h. noting physical or mental defects that might impede resettlement after release;

i. determining the fitness of each prisoner to work and to exercise; and

j. making arrangements with community agencies for the continuation of any necessary medical and psychiatric treatment after release, if prisoners give their consent to such arrangements.

**43.1** The medical practition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all see, under the conditions and with a frequency consistent with health care standards in the community, all sick prisoners, all who report illness or injury and any prisoner to whom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43.2**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 qualified nurse reporting to such a medical practitioner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ealth of prisoners held under conditions of solitary confinement, shall visit such prisoners daily, and shall provide them with prompt medical assistance and treatment at the request of such prisoners or the prison staff.

**43.3** The medical practition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it is considered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is being put seriously at risk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including conditions of solitary confinement.

**44.** The medical practitioner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shall regularly inspect, collect information by other means if appropriate,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ng of food and water;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prisoners;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and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45.1** The director shall consider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submits according to Rules 43 and 44 and, when in agreement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implement them.

**45.2** If the recommendations of the medical practitioner are not within the director's competence or if the director does not agree with them, the director shall immediately submit the advice of the medical practitioner and a personal report to higher authority

**Health care provision**

**46.1**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s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n such treatment is not available in prison

**46.2** Where a prison service has its own hospital facilities, they shall be adequately staffed and equipped to provide the prisoners referred to them with appropriate care and treatment.

**Mental health**

**47.1** Specialised prisons or sections under medical control shall be available for the observa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or abnormality who do not necessarily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Rule 12.

**47.2** The prison medical service shall provide for the psychiatric treatment of all prisoners who are in need of such treatment and pay special attention to suicide prevention.

**Other matters**

**48.1** Prisoners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experiments without their consent.

**48.2** Experiments involving prisoners that may result in physical injury, mental distress or other damage to health shall be prohibited.

## Part IV Good order

**General approach to good order**

**49.** Good order in prison shall be mainta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security, safety and discipline, while also providing prisoners with living conditions which respect human dignity and offering them a full programme of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Rule 25.

**50.** Subject to the needs of good order, safety and security,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discuss matters relating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imprisonment and shall be encouraged to communicate with the prison authorities about these matters

**Security**

**51.1** The security measures applied to individual prisoners shall be the minimum necessary to achieve their secure custody.

**51.2** The security which is provided by physical barriers and other technical means shall be complemented by the dynamic security provided by an alert staff who know the prisoners who are under their control.

**51.3**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prisoners shall be assessed to determine:

a. the risk that they would present to the community if they were to escape;

b. the risk that they will try to escape either on their own or with external assistance.

**51.4** Each prisoner shall then be held in security conditions appropriate to these levels of risk.

**51.5** The level of security necessary shall be reviewed at regular intervals throughout a person's imprisonment.

**Safety**

**52.1**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prisoners shall be assessed to determine whether they pose a safety risk to other prisoners, prison staff or other persons working in or visiting prison or whether they are likely to harm themselves.

**52.2** Procedures shall be in place to ensure the safety of prisoners, prison staff and all visitors and to reduce to a minimum the risk of violence and other events that might threaten safety.

**52.3** Every possible effort shall be made to allow all prisoners to take a full part in daily activities in safety.

**52.4** It shall be possible for prisoners to contact staff at all times, including during the night.

**52.5** N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shall be observed in prisons

**Special high security or safety measures**

**53.1** Special high security or safety measures shall only be appli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53.2** There shall be clear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such measures are to be applied to any prisoner.

**53.3** The nature of any such measures, their duration and the grounds on which they may be applied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53.4**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in each case shall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53.5** Any decision to extend the approved period of time shall be subject to a new approval by the competent authority.

**53.6** Such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individuals and not to groups of prisoners

**53.7** Any prisoner subjected to such measures shall have a right of complaint in the terms set out in Rule 70.

**Searching and controls**

**54.1** There shall be detailed procedures which staff have to follow when searching:

a. all places where prisoners live, work and congregate;

b. prisoners;

c. visitors and their possessions; and

d. staff.

**54.2** The situations in which such searches are necessary and their nature shall be defined by national law.

**54.3** Staff shall be trained to carry out these searches in such a way as to detect and prevent any attempt to escape or to hide contraband, while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 dignity of those being searched and their personal possessions.

**54.4** Persons being searched shall not be humiliated by the searching process.

**54.5** Persons shall only be searched by staff of the same gender.

**54.6** There shall be no internal physical searches of prisoners' bodies by prison staff

**54.7** An intimate examination related to a search may be conducted by a medical practitioner only.

**54.8** Prisoners shall be present when their personal property is being searched unless investigating techniques or the potential threat to staff prohibit this

**54.9** The obligation to protect security and safety shall be balanced against the privacy of visitors.

**54.10** Procedures for controlling professional visitors, such as legal representatives, social workers and medical practitioners, etc., shall be the subject of consultation with their professional bodies to ensure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safety, and the right of confidential professional access.

**Criminal acts**

**55.** An alleged criminal act committed in a prison shall be investigated in the same way as it would be in free society and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Discipline and punishment**

**56.1** Disciplinary procedures shall be mechanisms of last resort.

**56.2** Whenever possible, prison authorities shall use mechanisms of restoration and mediation to resolve disputes with and among prisoners.

**57.1** Only conduct likely to constitute a threat to good order, safety or security may be defined as a disciplinary offence.

**57.2** National law shall determine:

a. the acts or omissions by prisoners that constitute disciplinary offences;
b.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at disciplinary hearings;
c. the types and duration of punishment that may be imposed;
d. the authority competent to impose such punishment; and
e. access to and the authority of the appellate process.

**58.** Any allegation of infringement of the disciplinary rules by a prisoner shall be reported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hall investigate it without undue delay.

**59.** Prisoners charged with disciplinary offences shall:

a. be informed promptly, in a language which they understand and in detail, of the nature of the accusations against them;
b.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their defence;
c. be allowed to defend themselves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d. be allowed to request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to examine them or to have them examined on their behalf; and
e.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y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at the hearing.

**60.1** Any punishment imposed after conviction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60.2** The severity of any punishment shall be proportionate to the offence.

**60.3** Collective punishments and corporal punishment, punishment by placing in a dark cell, and all other forms of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shall be prohibited.

**60.4** Punishment shall not include a total prohibition on family contact.

**60.5** Solitary confinement shall be imposed as a punishment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which shall be as short as possible.

**60.6**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61.** A prisoner who is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able to appeal to a competent and independent higher authority.

**62.** No prisoner shall be employed or given authority in the prison in any disciplinary capacity.

Double jeopardy

**63.** A prisoner shall never be punished twice for the same act or conduct.

**Use of force**

**64.1** Prison staff shall not use force against prisoners except in self-defence or in cases of attempted escape or active or passive physical resistance to a lawful order and always as a last resort.

**64.2** The amount of force used shall be the minimum necessary and shall be imposed for the shortest necessary time.

**65.** There shall be detailed procedures about the use of force including stipulations about:

a. the various types of force that may be used;
b. the circumstances in which each type of force may be used;
c. the members of staff who are entitled to use different types of force;
d. the level of authority required before any force is used; and
e. the reports that must be completed once force has been used.

**66.** Staff who deal directly with prisoners shall be trained in techniques that enable the minimal use of force in the restraint of prisoners who are aggressive.

**67.1** Staff of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shall only be involved in dealing with prisoners inside prison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67.2** There shall be a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prison authorities and any such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unless the relationship is already regulated by domestic law.

**67.3** Such agreement shall stipulate:

a. the circumstances in which members of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may enter a prison to deal with any conflict;
b. the extent of the authority which such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shall have while they are in the priso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irector of the prison;
c. the various types of force that members of such agencies may use;
d. the circumstances in which each type of force may be used;
e. the level of authority required before any force is used; and
f. the reports that must be completed once force has been used.

**Instruments of restraint**

**68.1** The use of chains and irons shall be prohibited.

**68.2** Handcuffs, restraint jackets and other body restraints shall not be used except:

a. if necessary,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unless that authority decides otherwise; or
b.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otect a prisoner from self-injury, injury to others or to prevent serious damage to property, provided that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medical practitioner and report to the higher prison authority.

**68.3**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applied for any longer time than is strictly necessary.

**68.4** The manner of use of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be specified in national law.

**Weapons**

**69.1** Except in an operational emergency, prison staff shall not carry lethal weapons within the prison perimeter.

**69.2** The open carrying of other weapons, including batons, by persons in contact with prisoners shall be prohibited within the prison perimeter unless they are required for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deal with a particular incident.

**69.3** Staff shall not be provided with weapons unless they have been trained in their use.

**Requests and complaints**

**70.1** Prisoners, individually or as a group, shall have ample opportunity to make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director of the prison or to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70.2** If mediation seems appropriate this should be tried first.

**70.3** If a request is denied or a complaint is rejected, reasons shall be provided to the prisoner and the prisoner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to an independent authority.

**70.4** Prisoners shall not be punished because of having made a request or lodged a complaint.

**70.5**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any written complaints from relatives of a prisoner when they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prisoner's rights have been violated.

**70.6** No complaint by a legal representative or organisation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prisoners may be brought on behalf of a prisoner if the prisoner concerned does not consent to it being brought.

**70.7** Prisoners are entitled to seek legal advice about complaints and appeals procedures and to legal assistance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require.

## Part V Management and staff

**Prison work as a public service**

**71.** Prison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authorities separate from military, police or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s.

**72.1** Prisons shall be managed within an ethical context which recognises the obligation to treat all prisoners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72.2** Staff shall manifest a clear sense of purpose of the prison system. Management shall provide leadership on how the purpose shall best be achieved.

**72.3** The duties of staff go beyond those required of mere guards and shall take account of the need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prisoners into society after their sentence has been completed through a programme of positive care and assistance.

**72.4** Staff shall operate to high professional and personal standards.

**73.** Prison authorities shall give high priority to observance of the rules concerning staff.

**74.**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manag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rst line prison staff

and the prisoners under their care.

**75.** Staff shall at all times conduct themselves and perform their duties in such a manner as to influence the prisoners by good example and to command their respect.

**Selection of prison staff**

**76.** Staff shall be carefully selected, properly trained, both at the outset and on a continuing basis, paid as professional workers and have a status that civil society can respect.

**77.** When selecting new staff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place great emphasis on the need for integrity, humanity, professional capacity and personal suitability for the complex work that they will be required to do.

**78.** Professional prison staff shall normally be appointed on a permanent basis and have public service status with security of employment, subject only to good conduct, efficiency, goo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an adequate standard of education.

**79.1** Salaries shall be adequate to attract and retain suitable staff.

**79.2** Benefit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hall reflect the exacting nature of the work as part of a law enforcement agency.

**80.** Whenever it is necessary to employ part-time staff, these criteria shall apply to them as far as that is appropriate.

**Training of prison staff**

**81.1** Before entering into duty, staff shall be given a course of training in their general and specific duties and be required to pass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81.2** Management shall ensure that, throughout their career, all staff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professional capacity by attending courses of in-service training and development to be organised at suitable intervals.

**81.3** Staff who are to work with specific groups of prisoners, such as foreign nationals, women, juveniles or mentally ill prisoners, etc., shall be given specific training for their specialised work.

**81.4** The training of all staff shall include instruction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standards, especiall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s well as in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Prison Rules.

**Prison management**

**82.** Personnel shall be selected and appointed on an equal basis,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83.**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introduce systems of organisation and management that:

a. ensure that prisons are managed to consistently high standards that a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b. facilitate good communication between prisons and between the different categories of staff in individual prisons and proper co-ordination of all the depart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rison, that provide services for prisoner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care and reintegration

of prisoners.

**84.1** Every prison shall have a director, who shall be adequately qualified for that post by character, administrative ability, suitable professional training and experience.

**84.2** Directors shall be appointed on a full-time basis and shall devote their whole time to their official duties.

**84.3**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every prison is at all times in the full charge of the director, the deputy director or other authorised official.

**84.4** If a director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one prison there shall always be in addition an official in charge of each of them.

**85.** Men and women shall be represented in a balanced manner on the prison staff.

**86.** There shall be arrangements for management to consult with staff as a body on general matters and, especially, on matters to do with their conditions of employment.

**87.1** Arrangements shall be in place to encourage the best possible communication among management, other staff, outside agencies and prisoners.

**87.2** The director, management and the majority of the other staff of the prison shall be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greatest number of prisoners, or a language understood by the majority of them.

**88.** Where privately managed prisons exist, all the European Prison Rules shall apply.

**Specialist staff**

**89.1** As far as possible, the staff shall include a sufficient number of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social and welfare workers, teachers and vocational,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structors.

**89.2** Wherever possible, suitable part-time and voluntary workers shall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o activities with prisoners.

**Public awareness**

**90.1**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continually inform the public about the purpose of the prison system and the work carried out by prison staff in order to encourage better publ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prison in society.

**90.2** The prison authorities should encourage members of the public to volunteer to provide services in prison where appropriate.

**Research and evaluation**

**91.**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support a programme of research and evaluation about the purpose of the prison, its role in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extent to which it is fulfilling its purpose.

## Part VI Inspection and monitoring

**Governmental inspection**

**92.** Prisons shall be inspected regularly by a governmental agency in order to assess whether they ar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se rules.

**Independent monitoring**

**93.1** The conditions of detention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shall be monitored by an independent body or bodies whose findings shall be made public.

**93.2** Such independent monitoring body or bodies shall be encouraged to co-operate with those international agencies that are legally entitled to visit prisons.

## Part VII Untried prisoners

**Status as untried prisoners**

**94.1**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untried prisoners are prisoners who have been remanded in custody by a judicial authority prior to trial, conviction or sentence.

**94.2** A state may elect to regard prisoners who have been convicted and sentenced as untried prisoners if their appeals have not been disposed of finally.

**Approach regarding untried prisoners**

**95.1** The regime for untried prisoners may not be influenced by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be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in the future.

**95.2** The rules in this part provide additional safeguards for untried prisoners.

**95.3** In dealing with untried prisoners prison authorities shall be guided by the rules that apply to all prisoners and allow untried prisoners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for which these rules provide.

**Accommodation**

**96.** As far as possible untried prisoners shall be given the option of accommodation in single cells, unless they may benefit from sharing accommodation with other untried prisoners or unless a court has made a specific order on how a specific untried prisoner should be accommodated.

**Clothing**

**97.1** Untried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wear their own clothing if it is suitable for wearing in prison.

**97.2** Untried prisoners who do not have suitable clothing of their own shall be provided with clothing that shall not be the same as any uniforms that may be worn by sentenced prisoners.

**Legal advice**

**98.1** Untried prisoners shall be informed explicitly of their right to legal advice.

**98.2** All necessary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to assist untried prisoners to prepare their defence and to meet with their legal representatives.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99.** Unless there is a specific prohibition for a specified period by a judicial authority in an individual case, untried prisoners:

a. shall receive visits and be allowed to communicate with family and other persons in the same way as convicted prisoners;
b. may receive additional visits and have additional access to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and
c. shall have access to books, newspapers and other news media.

**Work**

**100.1** Untried prisoners shall be offered the opportunity to work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work.

**100.2** If untried prisoners elect to work, all the provisions of Rule 26 shall apply to them, including those relating to remuneration.

Access to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101.** If an untried prisoner requests to be allowed to follow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the prison authori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ccede to this request.

## Part VIII Sentenced prisoners

**Objective of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102.1** In addition to the rules that apply to all prisoners,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shall be designed to enable them to lead a responsible and crime-free life.

**102.2** Imprisonment is by the deprivation of liberty a punishment in itself and therefore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shall not aggravate the suffering inherent in imprisonment.

**Implementation of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103.1**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shall commence as soon as someone has been admitted to prison with the status of a sentenced prisoner, unless it has commenced before.

**103.2** As soon as possible after such admission, reports shall be drawn up for sentenced prisoners about their personal situations, the proposed sentence plans for each of them and the strategy for preparation for their release.

**103.3** Sentence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drawing up their individual sentence plans.

**103.4** Such plans shall as far as is practicable include.

a. work;

b. education;

c. other activities; and

d. preparation for release.

**103.5** Social work, medical and psychological care may also be included in the regimes for sentenced prisoners.

**103.6** There shall be a system of prison leave as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103.7** Prisoners who consent to do so may be involved in a programme of restorative justice and in making reparation for their offences.

**103.8**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providing appropriate sentence plans and regimes for life sentenced and other long-term prisoners.

**Organisational aspects of imprisoning sentenced prisoners**

**104.1** As far as possible, and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ule 17, separate prisons or separate sections of a prison shall be used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different regimes for specific

categories of prisoners.

**104.2** There shall b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d regularly reviewing individual sentence plans for prisoners after the consideration of appropriate reports, full consultations among the relevant staff and with the prisoners concerned who shall be involved as far as is practicable.

**104.3** Such reports shall always include reports by the staff in direct charge of the prisoner concerned.

**Work by sentenced prisoners**

**105.1** A systematic programme of work shall seek to contribute to meeting the objective of the regime for sentenced prisoners.

**105.2** Sentenced prisoners who have not reached the normal retirement age may be required to work, subject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as determined by the medical practitioner.

**105.3** If sentenced prisoners are required to work, the conditions of such work shall conform to the standards and controls which apply in the outside community.

**105.4** When sentenced prisoners take part in education or other programmes during working hours as part of their planned regime they shall be remunerated as if they had been working.

**105.5** In the case of sentenced prisoners part of their remuneration or savings from this may be used for reparative purposes if ordered by a court or if the prisoner concerned consents.

**Education of sentenced prisoners**

**106.1** A systematic programme of education, including skills training,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prisoners' overall level of education as well as their prospects of leading a responsible and crime-free life, shall be a key part of regimes for sentenced prisoners.

**106.2** All sentence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take part in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106.3** Educational programmes for sentenced prisoners shall be tailored to the projected length of their stay in prison.

**Release of sentenced prisoners**

**107.1** Sentenced prisoners shall be assisted in good time prior to release by procedures and special programmes enabling them to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prison to a law-abiding life in the community.

**107.2** In the case of those prisoners with longer sentences in particular,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a gradual return to life in free society.

**107.3** This aim may be achieved by a pre-release programme in prison or by partial or conditional release under supervision combined with effective social support.

**107.4** Prison authorities shall work closely with services and agencies that supervise and assist released prisoners to enable all sentenced prisoners to re-establish themselves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family life and employment.

**107.5** Representatives of such social services or agencies shall be afforded all necessary access to the prison and to prisoners to allow them to assist with preparations for release and the planning of after-care programmes.

## Part IX Updating the Rules

**108.** The European Prison Rules shall be updated regularly.

**Note 1** When this recommendation was adopted, and in application of Article 10.2c of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meetings of the Ministers' Deputies, the Representative of Denmark reserved the right of his government to comply or not with Rule 43, paragraph 2, of the appendix to the recommendation because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 requirement that prisoners held under solitary confinement be visited by medical staff on a daily basis raises serious ethical concerns regarding the possible role of such staff in effectively pronouncing prisoners fit for further solitary confinement.

영국

# 03

##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중앙행정**

제1조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적 감독 ····· 085
제3조 교정감독관 소속 공무원 및 고용원 ····· 085
제4조 교정감독관의 일반적 직무 ····· 085
제5조 교정감독관의 연차보고서 ····· 086
제5A조 교도소의 수석시찰관의 임명 및 직무 ····· 086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

제6조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 ····· 086

**교도관**

제7조 교도관 ····· 087
제8조 교도관의 권한 ····· 087
제8A조 인가를 받은 계약피용자에 의한 검사권한 ····· 087
제9조 교회사의 직무직행 ····· 088
제10조 교도소 포교사의 임명 ····· 088
제11조 퇴거를 거절하는 교도관 및
그 가족에게 관사 퇴거명령 ····· 088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제12조 수용자의 구금장소 ····· 088
제13조 수용자의 법률상 구속 ····· 089
제14조 거실 ····· 089
제16조 수용자의 사진촬영 및 신체측정 ····· 089
제16A조 수용자에 대한 약물검사 ····· 089
제16B조 수용자에 대한 알코올검사를 실시하는 권한 ···· 090
제17조 고통을 수반하는 검사 ····· 090
제19조 판사가 교도소를 방문할 권리 ····· 091
제21조 교도소 이송비용 ····· 091
제22조 재판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수용자의 이송 ····· 091
제23조 경찰관 등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집행권한 ····· 091

**형기 및 허가장에 의한 석방 및 일시적 출소**

제24조 형기계산 ····· 092
제28조 건강불량을 이유로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출소시키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 092

**출소수용자**

제30조 출소수용자에 대한 수당 ····· 092

**교도소의 설치, 보수관리 및 폐쇄**

제33조 교도소를 설치하는 권한 등 ····· 093
제34조 집행관의 관할권 등 ····· 093
제35조 교도소의 재산 ····· 093
제36조 교도소를 위한 토지취득 ····· 094
제37조 교도소의 폐쇄 ····· 094

**범죄**

제39조 수용자의 도주원조 ····· 094
제40조 교도소 내 주류 또는 담배의 불법 운송 등 ····· 094
제41조 그 밖에 물품 불법 반입 ····· 095
제42조 형벌의 고지문 게시 ····· 095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보스탈 시설**

제43조 구치소, 단기 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 ····· 095

**교도소 및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7조 교도소, 구치소, 단기 수용소 및
보스탈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 ····· 096

**잡칙**

제49조 불법으로 자유가 된 자 ····· 097

**보칙**

제51조 의회에서 규정된 금액으로부터의 비용지불 ····· 098
제52조 명령,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행사 ····· 098
제53조 해석 ····· 098
제54조 본 법의 결과로서 개정, 폐지 및 유보 ····· 099
제55조 표제, 시행 및 적용범위 ····· 099

**원문** ····· 100

**형집행규칙(1999년)** ····· 113
**형집행규칙 원문** ····· 137

# 형집행법(1952년)

The Prison Act 1952(15 & 16 Ceo 6 and 1 Eliz 2 c 52)

1952년 10월 1일 시행

교정시설과 범죄자에 대한 그밖의 제도와 관련하고, 교정과 개선의 문제와 관련된 법을 통합하기 위해 법률통합(절차)법(1949년)에 따라 제정하였다.

## 중앙행정(Central administration)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적 감독)**

**제1조** 1877년 형집행법(the Prison Act 1877) 시행 이전에 다른 모든 관청이 행사할 수 있었던 교도소 및 수용자에 대한 모든 권한 및 관할권은 본 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조** [삭제][1]

**(교정감독관(Prison Commissioners) 소속 공무원 및 고용원)**[2]

**제3조** ① 법무부장관은 본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정원에 대한 재무부(the Treasury)의 승인을 얻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한 그 밖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② 본 조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 및 고용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규정된 금액으로 봉급을 지급하여 한다.

**(교정감독관의 일반적 직무)**[3]

**제4조**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 지휘를 하고 또한 교도소의 보호관리 및 수용자의 급양(maintenance)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체결 및 그 밖의 행위를 한다.

② 법무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권한을 적정하게 부여받은 자는 모든 교도소를 순시하고 건물상태, 교도관의 행동, 수용자 처우와 행동, 그 밖의 교도소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본 법 및 본 법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규칙의 규정이 적정하게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및 소속 공무원은 관습법(common law)에 의거하여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의회의 법률, 교정시설 방문판사(visiting justices of a prison)의 허가장(charter)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자료 日本法務省矯正局, 「一九五二年イギリス監獄法」, 1999年11月

1) 제2조(교정감독관)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2) 표제의 「교정감독관」이라는 자구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의 결과로서 「법무부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따라 또는 그 후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제2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3) 표제의 「교정감독관」이라는 자구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의 결과로서 「법무부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교정감독관의 연차보고서)**[4]

**제5조** ① 법무부장관은 모든 교도소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간행하고, 당해 보고서를 모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a) 각 교도소의 수용능력 및 구금된 수용자의 일일평균인원 및 최대인원에 관한 기록

(b) 교도작업 생산품의 종류 및 수량, 취업수용자를 포함하여 각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한 상세사항으로 의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c) 각 교도소에서 부과한 징벌 및 그 과벌대상이 된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기록

**(교도소의 수석시찰관의 임명 및 직무)**[5]

**제5A조** ① 여왕은 교도소의 수석시찰관(Chief Inspector of Prisons)으로 적당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석시찰관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는 교도소를 시찰하거나 또는 시찰준비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③ 수석시찰관은 수용자의 처우 및 교도소의 상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는 교도소 및 수용자와 관련된 특정안건을 수석시찰관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수석시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⑤ 수석시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무부장관은 당해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A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교정시설과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치시설(이민과 정치적 망명에 관한 1999년 법 제147조와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것에 한정된다)과 그러한 구치시설에 유치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⑥ 수석시찰관에게는 법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6]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7]

**제6조** ①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모든 교도소에 대하여 방문자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 중 2명 이상은 치안판사로 하여야 한다.

③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은 방문자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교도소를 자주 방문할 것, 수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불복을 청취할 것, 보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동 심의회의 위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방문자위원회의 위원은 언제든지 교도소에 출입할

4) 표제의 「교정감독관」의 자구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의 결과로서 「법무부장관」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된다 제1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따라 전부 개정되었다 제2항 (c)호는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5) 제5A조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6) 중간표제의 「순시위원회 및」의 어구는 1971년 법원법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표제의 「순시위원회 및」의 어구는 1971년 법원법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항 및 제3항은 1971년 법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수 있고 또한 교도소 내 모든 장소와 모든 수용자에게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다.

④ 삭제

## 교도관(Prison officers)

**(교도관)**[8]

**제7조** ① 모든 교도소에는 소장, 교회사, 의무관 및 그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여성을 수용하는 모든 교도소에는 충분한 수의 여성교도관을 두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대규모 교도소에는 부소장 또는 교회사보 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둘 수 있다.

④ 교회사 및 교회사보는 영국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의 목사이어야 하고 또한 의무관은 등록된 의학전문의이어야 한다.

⑤ 삭제

**(교도관의 권한)**

**제8조** 모든 교도관은 관직에서 집무하는 동안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직권, 비호권 및 특권을 보유한다.

**(인가를 받은 계약피고용자에 의한 검사권한)**

**제8A조**[9] ① 교도소의 계약피고용자로서 인가를 받은 자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그 자가 부정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본 조에 의거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검사를 함에 있어서 인가를 받은 계약 피고용자는,

(a) 외투, 상의, 모자, 장갑 및 신발 이외의 어떠한 옷에 대하여도 이를 탈의하도록 수용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b)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고,

(c) 검사 시 발견한 수용자의 부정한 휴대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차압하여 유치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서 "인가를 받은 계약피용자(authorized employee)"란 본 조가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소장이 현재 인가하는 범위의 계약피고용자를 말한다.

④ 교도소장은 현재 본 조가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가받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수용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서 수용자와 관련되는 "부정한 재물(unauthorized property)"이란 수용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내 특정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이 교도소규칙 또는 소장에 의해 인가되지 아니하는 재물을 말한다.

---

8) 제2항은 1975년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5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9) 제8A조는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교회사의 직무집행)**

**제9조** ① 2개의 교도소가 적당한 거리에 소재하고 그리고 그 두 교도소 모두 수용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두 교도소의 교회사로서 집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② 교도소에 교회사 또는 교회사보의 선임에 대해서는 당해 선임으로부터 1월 이내에 교도소 소재지 교구의 주교(bishop)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교의 허가서에 의거하지 아니하면 교회사 또는 교회사보는 교도소에서 근무해서는 아니된다.

**(교도소 포교사의 임명)**[10]

**제10조** ① 어떤 교도소에서도 영국 국교회 이외의 종파에 소속되어 있는 수용자의 수가 당해 종파의 포교사의 임명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관련 포교사를 그 교도소에 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 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포교사에게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국 국교회 이외의 포교사에 대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 당해 종파의 포교사를 임명하지 아니한 교도소에 그 포교사의 종파에 소속하고 있는 수용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어떠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 항에서 규정하는 포교사의 방문이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에게는 그 자가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예배식에 출석하거나 또는 교회사의 방문을 받을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⑤ 교도소장은 각 수용자의 입소 시 그 수용자가 소속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종파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본 조에 의거하여 그 교도소에 임명되거나 또는 그 교도소의 수용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받은 포교사에 대하여 그 포교사의 종파에 소속하고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수용자의 일람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포교사에게 그밖의 수용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퇴거를 거절하는 교도관 및 그 가족에게 관사 퇴거명령)**[11]

**제11조** ① 교도관이 그 관직을 이유로 자기 또는 가족에게 관사의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교도관을 사직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가족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에 의해 퇴거를 요구받은 때에는 당해 관사로부터 퇴거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 또는 가족이 전 항과 같은 통지의 교부 후 48시간 동안 당해 관사의 퇴거를 거절하거나 또는 태만히 한 때에는 2명의 치안판사가 통지의 교부를 정당화하는 여러 사실, 통지의 송달 및 이에 대한 태만 또는 거절을 소명하는 증거에 근거하여 서명날인한 영장으로 경찰에 지시하여 영장에 제시한 기간 내에 필요에 따라 당해 관사에 강제로 들어가 그 점유를 법무부장관의 대리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수용자의 구금장소)**

**제12조** ① 구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구류에 의해 또는 공판 대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교도소에 송치된 자는 교도소에 적법하게 구금할 수 있다.

---

10) 제3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11) 제1항 및 제2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②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수시로 지정하는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금형의 기간 중에는 수용자를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그자가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로부터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에게 발송된 영장, 증서 또는 그 밖의 법률상 문서와 상황에 의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충분한 기재사항에 의한 교도소의 지정은 그 교도소가 일반적으로 이것과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알려져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무효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수용자의 법률상 구속)**

**제13조**[12] ① 모든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법률상 구속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수용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또는 교도소로부터 또는 교도소에 인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관에 의해 구속 또는 관리하에 취업, 그 밖의 이유로 교도소 외에 있는 동안 및 본 법 또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따라 인치할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인가받은 장소에 인치되어 있는 동안 또는 위의 요구 또는 인가에 따라서 당해 장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법률상 구속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거실)**

**제14조** ① 법무부장관은 모든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충분한 설비가 제공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거실도 면적, 채광, 환기 및 비품이 건강상 적당하고 수용자가 교도관과 언제라도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는가에 대하여 시찰관(an inspector)이 인증하는 것이 아니면, 수용자의 구금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거실에 관해서 본 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인증에 있어서는 그 거실에 수용자를 단독으로 구금할 수 있는 기간 및 그 거실에서 수용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일일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인증은 인증에 관련한 거실을 숫자 또는 기호로 특정하여야 하고, 당해 거실의 보기 쉬운 곳에 당해 숫자 또는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찰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숫자 또는 기호를 변경한 한 때에는 인증은 실효된다.

⑤ 시찰관은 거실상태가 이미 인증으로 표시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실에 관한 본 조에 의거하여 행해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모든 교도소에는 반항적, 폭력적인 수용자의 일시적 수용을 위하여 특별거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5조** [삭제][13]

**(수용자의 사진촬영 및 신체측정)**

**제16조**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신체측정 및 사진촬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에는 수용자의 신체측정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는 시기, 방법 및 복장, 각 수용자의 측정결과 및 사진의 사본제작 수 및 교부처에 대해 정해져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약물검사)**[14]

**제16A조** ① 교도관은 당해 교도소에 대해 약물검사가 인가되어 있는 때에는 교도소규칙에 따라 그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어떠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 수용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표본을 제출

12) 제2항은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는 그 후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13) 제15조(남녀 분리)는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4) 제16A조는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제2항 중 「심부표본」이란 혈액, 정액 및 기타 모든 체액, 소변, 타액, 음모의 표본 또는 인체의 구멍에서 채취된 시험견본을 말한다 제3항의 「계호원」이란 외부위탁교도소(contracted out prisons 민영교도소)의 직원을 말한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의 인가에서 취지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에는 소변표본 대신 또는 그에 추가하여 당해 인가가 명시하는 다른 종류의 표본으로 심부표본(intimate sample)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출하도록 수용자에 대하여 요구할 권한을 포함한다.

③ 본 조에서

"인가"란 소장에 의한 인가를 말한다.

"약물"이란 1971년 약물남용단속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1년)의 적용상 규제약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약물을 말한다.

"심부표본"이란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5편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교도관"이란 1991년 형사재판법 제4편의 의미에서 계호직원(a prisoner custody officer)을 포함한다.

"교도소규칙(prison rule)"이란 본 법 제47조에 의거한 규칙을 말한다.

**(수용자에게 알코올검사를 실시하는 권한)**[15]

**제16B조** ① 교도관은 당해 교도소에 대하여 알코올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인가되어 있는 때에는 교도소규칙에 따라 당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어떠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자가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흡기표본(a sample of breath)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 인가에서 그 취지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a) 수용자에게 호흡기표본에 대신하거나 또는 그것에 추가하여 소변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b) 수용자에게 호흡기표본 또는 소변표본 또는 이 두 가지에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 추가하여 당해 인가가 명시하는 그 밖의 종류의 표본으로 심부표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③ 본 조에서

"인가"란 소장에 의한 인가를 말한다.

"심부표본"이란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5편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교도관"이란 1991년 형사재판법 제4편의 의미에서 계호원을 포함한다.

"교도소규칙"이란 본 법률 제47조에 의거한 규칙을 말한다.

**(고통을 수반하는 검사)**[16]

**제17조** 교도소의 의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순시위원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자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꾀병의 발견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고통이 따르는 검사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삭제][17]

---

15) 제16B조는 1997년 교도소(알코올검사)법(Prisons (Alcohol Testing) Act, 1997년)에 의해 추가되었다. 제2항의 「심부표본」이란 혈액, 정액 및 그밖의 모든 체액, 소변, 타액, 음모의 표본, 인체의 구멍에서 채취되는 시험견본을 말한다. 제3항의 「계호원」이란 외부위탁교도소(민영교도소)의 직원을 말한다.

16) 제17조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순시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제6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에서 적용이 있는 것은 방문자위원회뿐이다.

17) 제18조(교도소에서의 체벌)는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판사가 교도소를 방문할 권리)**[18]

**제19조** ① 주의 치안판사는 그 주에 있는 교도소 및 주 내에서 행해진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교도소 및 수용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교도소장이 보관하는 방문자 장부(the visitors book)에 교도소의 상태에 관한 소견 또는 폐해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교도소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 그 수용자와 연락을 취할 권한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방문할 권한을 치안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모든 교도소장은 순시위원회 또는 방문자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방문자 장부의 기재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19]

**(교도소의 이송비용)**

**제21조** 수용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자의 이송경비를 지불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재판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수용자의 이송)**[20]

**제22조** ① 본 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서는 1968년 형사상소법 제1편 의미의 상소자(an appellant)로 구속되어 있는 자에 관해서 동 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자에게 출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장소로, 형사항소법원(the Court of Criminal Appeal) 또는 동 법원 판사가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인치를 명령할 수 있는 장소로, 그자를 인치하고 구속하고 소환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a) [삭제]

(b) 위와 같이 수용되어 있는 자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수용자이든 의료상의 검사, 진료 또는 의료상 또는 외과치료상의 처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검사, 진료, 처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를 병원 또는 그밖의 적당한 장소에 인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수용자라도 본 조항 규정에 의거하여 어떤 장소에의 인치가 명령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다른 명령이 없는 한 그곳에 인치되어 있는 동안 및 법률에 따라 그자가 수용되어야 하는 교도소에 환소하는 동안은 그곳에 구속하여 두어야 한다.

**(경찰관 등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집행권한)**

**제23조** 당해 명령을 발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거하여 사람을 교도소에 또는 교도소로부터 인치할 목적을 위해서, 경찰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은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관할구역 외의 직무집행이었더라도 그 관직에 수반하는 권한, 직권, 비호 및 특권은 향유한다.

---

18) 제1항은 1972년 지방공공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972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3항의 「순시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제6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에서의 적용은 방문자위원회 뿐이다

19) 제20조(순회법원 또는 4계법원에 미결수용자의 일람표를 교부하는 소장의 의무)는 1971년 법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20) 제1항은 1968년 형사상소법(Criminal Appeal Act, 1968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동 조의 「형사항소법원」이라는 어구는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년)에 의해 「항소원형사부(the criminal division of the Court of Appeal)」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제2호는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2항 제2호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동 호의 「위와 같이 수용되어 있는」이란 폐지 전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연합왕국내 몇몇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형기 및 허가장에 의한 석방 및 일시적 출소

**(형기계산)**[21]

**제24조** ①구금형에서 "월"이란 예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역(曆)에 의한 월(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삭제][22]

**(건강불량을 이유로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출소시키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제28조** ①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그자를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자의 교도소에서의 생활태도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자의 석방을 일시적 · 조건부로 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명령에 의해 명시하는 기간 및 조건을 붙여 그 수용자의 일시적 출소(temporary discharge)를 인가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수용자에게 일시적 출소명령을 하는 때는 그 명령에는 당해 수용자의 사건에 관련된 소송절차로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의거하여 출소한 어떠한 수용자도 일시출소명령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명령에 명시된 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의 나중의 명령으로 설정한 연장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시 교도소로 환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환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하여 환소시킬 수 있다.

④ 선고를 받은 수용자가 일시적 출소의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한 때에는 명령에 따라 교도소로부터 출소한 날부터 교도소에 재수용되는 날까지 형의 진행(the currency of the sentence)은 정지한다. 이 경우 전자는 형의 일부로 산입되고 후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본 조에 의거하여 출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해서 수행하는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출소수용자

**제29조** [삭제][23]

**(출소수용자에 대한 수당)**[24]

**제30조** 법무부장관은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소로부터 석방된 자 또는 석방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자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1) 제2항은 198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22) 제25조(구금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행에 의한 면제 및 허가장에 의한 석방) 제2항 내지 제6항은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동 조 제1항 및 제7항은 199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각각 폐지되었다 제26조(교정훈련 또는 예방구금의 선고를 받은 자의 허가장에 의한 석방) 및 제27조(무기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의 허가장에 의한 석방)은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23) 제29조(출소 수용자에 의한 주거의 신고)는 198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 교도소의 설치, 보수관리 및 폐쇄

**(교도소를 설치하는 권한 등)**[25]

**제33조** ① 법무부장관은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교도소를 개축, 증축 또는 재건축하거나 새로운 교도소를 건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교도소로 고시함으로써 새로운 교도소를 설치할 수 있다.

(a) 그 목적을 위하여 건축되었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거나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b) 그 목적을 위해 건축되었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거나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수상건조물(floating structure)의 전부 또는 일부

③ 본 조의 고시에는 교도소로서 고시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음 조에 근거한 명령이 기존 교도소에 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다.

④ 본 조에 기초한 고시는 법무부장관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본 조의 기초한 고시는 건물의 재산권(the legal estate)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집행관의 관할권 등)**

**제34조** ① 1877년 교도소법에 근거한 교도소의 이관과 교도소 당국의 권한과 관할권의 이관 및 사계절법원 판사 및 방문판사의 사법권의 이관은, 집행관(sheriff) 또는 검시관(檢死官)의 관할권에 대해서 또는 이관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치안판사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의 관할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소가 주 또는 지역에 속해있음에 관한 법규, 법원칙(rule of law) 또는 관습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도에 소재하는 교도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주에 소재하는 교도소를 또는 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의해 설치된 교도소를 주 또는 지역의 교도소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교도소의 재산)**[26]

**제35조** ① 모든 교도소 및 교도소에 소속한 일체의 부동산 및 동산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하는 것이고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단독법인(a corporation sole)으로 간주한다.

③ 본 조가 적용되는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 관리, 처분에 관련하는 모든 법률문서(instrument)는 법무부차관 또는 그를 위한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에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법무부장관에 대리하여 작성되었다고 칭해지는 법률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그와 같이 대리해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전 항의 규정은 법률로 인가된 그 밖의 방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위와 같은 법률문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24) 제30조는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종전의 제30조(출소수용자의 보호단체의 인가증명), 제31조(출소 수용자에 대한 지급금) 및 제32조(출소수용자의 교도소로부터 귀주비용)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었다

25) 제2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전부 개정되었다 제5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26) 제35조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전부 개정되었다

**(교도소를 위한 토지취득)**[27]

**제36조**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의 개축, 증축, 재건축을 위하여 또는 새로운 교도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또는 교도소관리에 관련한 그 밖의 목적(교도관 또는 고용원을 위한 관사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강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1981년 토지취득법은 본 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 의한 강제적인 토지구입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본 조에 근거하여 합의에 의한 토지구입에 관해서는 1985년 강제구입법 제1편의 규정(적용 가능한 것에 한함)이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31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교도소의 폐쇄)**[28]

**제37조**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명령에 의해 교도소를 폐쇄할 수 있다.

② 어떤 교도소가 그 주(county) 유일한 교도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당해 명령에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교도소에 관하여 본 조에 기초하여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본 조에서 "주"란 용어는 일반적인 주를 의미한다.

④ 본 조 및 다음 조의 적용상 어떤 교도소가 구치소 및 소년범죄자시설 또는 폐쇄훈련소(secure training centres)의 사용에 전용되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교도소를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삭제][29]

## 범죄(Offence)

**(수용자의 도주원조)**[30]

**제39조**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는 것 또는 도주 기도를 도운 자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교도소 내에 또는 수용자에게 물품을 반입하거나 송부(우편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함) 또는 그것을 수용자에게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도소 외 어떤 장소에 물품을 놓아 둔 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구금형에 처한다.

**(교도소 내 주류 또는 담배의 불법 운송 등)**[31]

**제40조** 교도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거나 또는 발효성 음료 또는 담배를 교도소 내 또는 수용자 앞으로 보내거나 또는 운송을 기도한 자 그것을 수용자에게 소지하게 할 의도로 위의 음료 또는 담배를 교도소 밖의 어떤 장소에 놓아 둔 자 및 교도소 내에서 위의 음료 및 담배를 판매 또는 사용을 교도소규정에 위반하여 허가한 공무원은 약식 유죄에 의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구금형 또는 표준등급 3단계(level 3 on the standard scale)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 또는 그 모두에 처한다.

---

27) 제1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2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전부 개정되었다 그후 1981년 토지취득법(Acquisition of Land Act, 1981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3항은 1965년 강제구입법(Compulsory Purchase Act, 1965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28) 제4항은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는 그 후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동 항의 「단기수용소, 소년수용시설」의 어구는 1988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소년범죄자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29) 제38조(교도소를 폐쇄하는 경우의 재양도)는 197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30) 제39조는 1992년 교도소보안법(Prison Security Act, 1992년)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31) 제40조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표준등급 제3단계」는 1992년 10월 1일 이후 천파운드이다

**(그 밖에 물품의 불법반입)**[32]

**제41조** 교도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지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교도소 내 또는 교도소 밖으로 또는 수용자에게 보내거나 또는 운송을 기도한 자 또는 그것을 수용자에게 소지하게 할 의도로 위의 물품을 교도소 밖의 어떠한 장소에 놓아 둔 자는, 제39조와 제40조의 어느 것에 따른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식 유죄에 의해 표준등급 제3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형벌의 고지문 게시)**[33]

**제42조** 교정감독관은 모든 교도소에서 구외의 잘 보이는 곳에 제39조에서 제41조까지의 근거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되는 형벌에 대한 고지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보스탈(Borstal) 시설[34]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35]

**제43조**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a) 구치소(remmand centres), 즉 14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로 구류(remanded)되거나 또는 공판 또는 선고를 위해 구속된(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자를 수용하는 장소

(aa) 소년범죄자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s), 즉 소년범죄자시설수용 또는 무기구속(custody for life)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장소

(b) (c) [삭제]

(d) 폐쇄훈련소, 즉 12세 이상 17세 미만의 범죄자로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 제1조에 근거하여 폐쇄훈련소 수용명령(secure training orders)을 받은 자를 수용하여 훈련 및 교육을 받게 하고 석방준비를 위한 장소

② 법무부장관은 수시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21세 이상 여자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 또는 채무지불의무 불이행으로 교도소에 송치된 자에 대하

---

32) 제41조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표준 등급 제3단계」는 1992년 10월 1일 이후 천파운드이다

33) 「교정감독관은」 본 조도 직무를 포함하여 종전의 교정감독관의 직무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

34) 중간 표제역주의 「단기수용소」 및 「보스털 시설」의 어구는 1982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보스털 시설」은 「소년수용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1988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단기수용소」도 「소년수용시설」과 같이 「소년범죄자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 중간 표제는 「구치소 및 소년범죄자 시설」이라고 칭한다

35) 표제의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의 어구는 1988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소년범죄자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결국 표제는 「구치소 및 소년범죄자시설」이라고 읽혀진다 제43조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전부 개정되었다 그 후 개정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제1항 (aa)호는 1988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추가되어 그 후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동 호의 「무기구속」이란, 살인죄의 유죄로 인정되어 21년 미만의 범죄자(범행시 18세 이상)에게 필요적으로 과하는 외에 성인의 경우 최고형으로 무기구금형이 처해지는 범죄의 유죄로 인정된 18세 이상 21세 미만 범죄자에게도 과해질 수 있는 구금판결이다. 동 항 제2호 및 제3호는 1988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동 항 제4호는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제2항 제1호의 「소년수용시설」의 어구는 1988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소년범죄자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은 1988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는 그 후 199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4항의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의 어구는 1988년 형사재판법의 당연 결과로서 「소년범죄자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A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제5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5A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여 교도소 대신 구치소 또는 소년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

(b) 21세 이상 여자로 구류되거나 또는 공판이나 선고를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

(c)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로 구류되거나 또는 공판이나 선고를 위하여 구속된 자에 대하여 1948년 형사재판법 제27조 또는 1969년 아동 및 소년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대신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거나 또는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수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목적을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의 급식 및 가정적인 처우(domestic services)를 받게할 목적을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④ 본 법 제5A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 및 제36조는 교도소 및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 및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④A 본 법 제16조, 제22조 및 제36조는 교도소 및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쇄훈련소 및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⑤ 그 밖에 본 법 전 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 및 제3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교도소 및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 제4항에 명기된 종류의 시설 및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명기된 대체읽기(adaptations and modifications)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⑤A 그 밖에 본 법 전 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 제5A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28조 및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하고 교도소 및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쇄훈련소 및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명기된 대체 읽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⑥ 본 법 전 조까지의 규정이 본 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에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규정의 구금형이라는 문언에는 이러한 시설에 수용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⑦ 본 조의 규정은 1982년 형사재판법 제12조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 제46조** [삭제][36]

## 교도소 및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

### (교도소, 구치소, 단기 수용소 및 보스탈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37]

**제47조**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범죄자시설 또는 폐쇄훈련소의 각각의 총괄 및 관리에 관하여 또는 그곳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자의 분류, 처우, 작업, 규율 및 감독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본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에는 규율위반행위로 고발된 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해 진술할 적당한 기회를

36) 제44조(교도소와 보스탈 간의 수용자 이송), 제45조(보스탈 훈련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석방) 및 제46조(보스탈에 수용해야 할 자의 일시적 구금)은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37) 제1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고, 동 항 제4호는 동 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제4A항은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제5항은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한 그 후에는 순차로 1971년 법원법, 1982년 형사재판법,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주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본 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규칙에는 특별한 종류의 자에 대한 훈련 및 그러한 자를 그 목적을 위하여 적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이송구분(allocation)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에는 교도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관한 특별한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a) (b) (c) [삭제]

(d)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 복역하고 있는 자, 유죄결정에 의거하여 지불선고를 받은 채무의 지불의무불이행으로 수용되어 있는 자 및 유죄결정에 의거하여 구속되어 송치된 자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④A 본 조에 의거한 규칙에는 폐쇄훈련소의 시찰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폐쇄훈련소를 방문하고, 동 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수리해야 하는 제3자(independent persons)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범죄자 시설 또는 폐쇄훈련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로 형사법원(the Crown Court)의 공판을 위해 구속된 자, 형사법원의 선고 또는 그 밖의 처분 때문에 구속된 자 및 어떤 법원에 의해 구류된 자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관하여 그자의 일시적 석방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잡칙(Miscellaneous)

**제48조** [삭제][38]

**(불법으로 자유가 된 자)[39]**

**제49조** ① 구금형, 무기구속자 또는 소년수용시설 수용(youth custody)의 선고를 받은 자, 단기수용소 또는 소년범죄자시설에 수용명령을 받은 자 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송치된 자가 불법으로 자유가 된 때에는 경찰관은 영장없이 이들을 체포하여 그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수용되어야 할 장소에 인치할 수 있다.

② 구금형 또는 소년수용시설 수용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단기수용소 수용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선고 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되어야 하는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불법으로 자유가 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그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수용되어야 할 장소로부터 이탈한 시간은 그자가 위의 수용되어야 할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상기의 자가 당해 선고 또는 명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연합왕국 내 어느 법원의 그 밖의 판결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수용시설, 구치소 또는 단기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본 항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b), (c) [삭제]

---

38) 제48조(스코틀랜드와의 수용자 이송 또는 아일오브만, 채널아일랜드로부터 이입)는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39) 제1항은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 그 후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 동 항 제1호는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 그 후,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동 항 제2호는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동 항 제3호는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각각 폐지되었다. 제4항은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1994년 형사재판 및 공공질서법(제10 부록 제9절)에 의해, 제1항의 「소년범죄자시설」의 다음에 「또는 폐쇄훈련소」를 추가하고, 제2항 본문 중 밑줄친 부분을 「소년범죄자시설 또는 폐쇄훈련소」로 개정하고, 제2항 제1호 중간, 밑줄친 부분을 「구치소, 소년범죄자시설 또는 폐쇄훈련소」로 개정한다라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으로 시행일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③ 채무지불의무불이행으로 구속된 자는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간주하고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법 제4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석방된 후, 당해 선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되어야 할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자유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적용 상 그자의 일시적 석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당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환소명령을 한 때에 불법으로 자유가 된 자로 간주한다.

⑤ 본 조에서 "안전한 수용시설"이란,

(a) 청소년수용시설

(b) 폐쇄훈련소(secure training centers)

(c) 형사법원법(2000)의 권한(유치 및 훈련 규정)에 관한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의미 내에서 안전한 시설인 다른 수용시설

**제50조** [삭제][40]

## 보칙(Supplemental)

**(의회에서 규정된 금액으로부터의 비용지불)**[41]

**제51조** 교도소의 보수관리 및 수용자의 급양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및 본 법률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일체의 법무부장관의 비용은 의회에서 규정된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명령,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행사)**[42]

**제52조** ① 본 법에 의거한 규칙 또는 규정을 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본 법 제34조 또는 제37조에 의거하여 명령을 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제정명령(statutory instrument)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본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규정 또는 제37조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제정명령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법 제6조 또는 제34조에 의거하여 명령을 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에는 위의 명령을 파기 또는 변경할 권한을 포함한다.

**(해석)**[43]

**제53조** ① 본 법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출두소(Attendance centre)"란 1982년 형사재판법 제16조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에는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의 교도소를 포함한다.

[삭제]

---

40) 제50조(일정 규정의 지방구치소 및 출두(出頭)소에 대한 적용)는 1969년 아동 및 소년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한 본 법 제18조 폐지의 결과로서 삭제되었다

41) 제51조는 1963년 교정감독관 해산명령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42) 제2항은 1967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43) 제1항은 1982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동 항의 삭제부분에는 이전 「지방구치소」에 대한 정의를 두었지만 1969년 아동 및 소년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② 본 법의 적용상 수용자의 급양(maintenance)에는 교도소에의 송치시점부터 사망 또는 출소까지의 기간 동안 식료, 의류, 구속 및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로의 이송을 위하여 수용자에 발생하는 일체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③ 본 법에서 영국국교회라고 하는 문언에는 웨일스교회(the Church in Wales)라는 문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본 법에서 법규(enactment)라는 문언에는 다른 법규에 의해 개정된 당해 법규라는 문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법의 결과로서 개정, 폐지 및 유보)[44]**

**제54조** ① [삭제]

② [삭제]

③ 본 법의 결과로서의 폐지는 본 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규에 의거 제정된 규칙, 명령, 규정 또는 고시, 수여된 지시 또는 인증 또는 실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의 규칙, 명령, 규정, 지시, 인증 또는 사항으로 본 법 시행 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들은 본 법의 대응 규정에 의거 제정되고, 수여되고,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④ 본 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 또는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어떠한 문서도 본 법 또는 대응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항에 대한 본 조의 규정은 1889년 해석법(the Interpretation Act, 1889년) 제38조(이것은 폐지의 효력에 관한다)의 본 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표제, 시행 및 적용범위)[45]**

**제55조** ① 본 법은 1952년 교도소법으로써 인용할 수 있다.

② 본 법은 195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삭제]

④ 1961년 형사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은 스코틀랜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본 법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록

본 법 제1부록(출소수용자에 의한 경찰서에 주소등록 및 보고) 및 동 제2부록(아일랜드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에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은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동 제3부록(본 법률의 결과로서 개정)은 1993년 제정법률(폐지)법에 의해, 또한 동 제4부록(폐지되는 법률)은 1974년 제정법률(폐지)법에 의해 각각 폐지되었다.

44) 제1항은 1993년 제정법률(폐지)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2항은 1974년 제정법률(폐지)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45) 제3항은 1993년 제정법률(폐지)법(Statute Law(Repeal) Act, 1993년))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4항은 1961년 형사재판법에 의해 또, 그 후 1993년 제정법률(폐지)법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 Prison Act 1952

1952 CHAPTER 52 15 and 16 Geo 6 and 1 Eliz 2

An Act to consolidate certain enactments relating to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for offenders and related matters with corrections and improvements made under the Consolidation of Enactments (Procedure) Act 1949.

## Central administration

**1. General control over prisons**

All powers and jurisdiction in relation to prisons and prisoners which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 Act 1877 were exercisable by any other authority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be exercisable by the Secretary of State.

**2.** S. 2 repealed by S.I. 1963/597, Sch. 1

**3. Officers and servants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ppoint such officers and employ such other persons as he may, with the sanction of the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as to number, determine.

(2) There shall be pai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to the officers and servants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such salari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determine.

**4. General duties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the general superintendence of prisons and shall make the contracts and do the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risons and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2) Officers of the Secretary of State duly authorised in that behalf, shall visit all prisons and examine the state of buildings, the conduct of officers, the treatment and conduct of prisoners and all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f any rules made under this Act are duly complied with.

(3) The Secretary of State and his officers may exercise all powers and jurisdiction exercisable at common law, by Act of Parliament, or by charter by visiting justices of a prison.

**5. Annual report of Prison Commissioner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ssue an annual report on every prison and shall lay every such report before Parliament.

(2) The report shall contain

(a) a statement of the accommodation of each prison and the daily average and highest number of prisoners confined therein;

(b) such particulars of the work done by prisoners in each prison, including the kind and quantities of articles produced and the number of prisoners employed, as may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1) http //www legislation gov uk/ukpga/Geo6and1Eliz2/15-16/52/contents(2012 10 27 다운로드)

give the best information to Parliament;

(c) a statement of the punishments inflicted in each prison and of the offences for which they were inflicted.

**5A. Appointment and functions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Prisons**

(1) Her Majesty may appoint a person to be Chief Inspector of Prisons.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ief Inspector to inspect or arrange for the inspection of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and to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m.

(3) The Chief Inspector shall in particular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conditions in prisons.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fer specific matters connected with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and prisoners in them to the Chief Inspector and direct him to report on them.

(5) The Chief Inspector shall in each year submit to the Secretary of State a report in such form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and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lay a copy of that report before Parliament.

(5A) Subsections (2) to (5) apply to detention centres(as defined by section 147 of the 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 and including any in Scotland) and persons detained in such detention centres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6) The Chief Inspector shall be paid such salary and allowanc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 Visi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6. Visiting committees and boards of visitors**

(1) S. 6(1)(4) repealed by Courts Act 1971 (c. 23), Sch. 11 Pt. IV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ppoint for every prison a board of visitors of whom not less than two shall be justices of the peace.

(3) Rules made as aforesaid shall prescribe the functions of boards of visitors and shall among other things require members to pay frequent visits to the prison and hear any complaints which may be made by the prisoners and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ny matter which they consider it expedient to report; and any member of a board of visitors may at any time enter the prison and shall have free access to every part of it and to every prisoner.

(4)

## Prison officers

**7. Prison officers**

(1) Every prison shall have a governor, a chaplain and a medical officer and such other officers as may be necessary.

(2) Every prison in which women are received shall have a sufficient number of women officers.

(3) A prison which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is large enough to require it may have a deputy governor or an assistant chaplain or both.

(4) The chaplain and any assistant chaplain shall be a clergyman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medical

officer shall be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5) S. 7(5) repealed by S.I. 1963/597, Sch. 1

**8. Powers of prison officers**

Every prison officer while acting as such shall have all the powers, authority, protection and privileges of a constable.

**8A. Powers of search by authorised employees**

(1) An authorised employee at a prison shall have the power to search any prisoner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he has any unauthorised property on his person.

(2) An authorised employee searching a prisoner by virtue of this section.

(a) shall not be entitled to require a prisoner to remove any of his clothing other than an outer coat, jacket, headgear, gloves and footwear;

(b) may use reasonable force where necessary; and

(c) may seize and detain any unauthorised property found on the prisoner in the course of the search.

(3) In this section "authorised employee" means an employee of a description for the time being authorised by the governor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by this section.

(4)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take such steps as he considers appropriate to notify to prisoners the descriptions of persons who are for the time being authorised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by this section.

(5) In this section "unauthorised property", in relation to a prisoner, means property which the prisoner is not authorised by prison rules or by the governor to have in his possession or, as the case may be, in his possession in a particular part of the prison.

**9. Exercise of office of chaplain**

(1) A person shall not officiate as chaplain of two prisons unless the prisons are within convenient distance of each other and are together designed to receive not more than one hundred prisoners.

(2) Notice of the nomination of a chaplain or assistant chaplain to a prison shall, within one month after it is made, be given to the bishop of the diocese in which the prison is situate; and the chaplain or assistant chaplain shall not officiate in the prison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from the bishop.

**10. Appointment of prison ministers**

(1) Where in any prison the number of prisoners who belong to a religious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England is such as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require the appointment of a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such a minister to that prison.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pay a minister appointed under the preceding subsection such remuneration as he thinks reasonabl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low a minister of any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England to visit prisoners of his denomination in a prison to which no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has been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4) No prisoner shall be visited against his will by such a minister as is mentioned in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but every prisoner not belonging to the Church of England shall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in force in the prison in which he is confined, to attend chapel or to be visited by

the chaplain.

(5)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on the reception of each prisoner record the religious denomination to which the prisoner declares himself to belong, and shall give to any minister who under this section is appointed to the prison or permitted to visit prisoners therein a list of the prisoners who have declared themselves to belong to his denomination; and the minister shall not be permitted to visit any other prisoners.

**11. Ejectment of prison officers and their families refusing to quit**

(1) Where any living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a prison officer or his family by virtue of his office, then, if he ceases to be a prison officer or is suspended from office or dies, he, or, as the case may be, his family, shall quit the accommodation when required to do so by not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2) Where a prison officer or the family of a prison officer refuses or neglects to quit the accommodation forty-eight hours after the giving of such a notice as aforesaid, any two justices of the peace, on proof made to them of the facts authorising the giving of the notice and of the service of the notice and of the neglect or refusal to comply therewith, may, by warrant under their hands and seals, direct any constable, within a period specified in the warrant, to enter by force, if necessary, into the accommodation and deliver possession of it to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 Confin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12. Place of confinement of prisoners**

(1) A prisoner, whether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committed to prison on remand or pending trial or otherwise, may be lawfully confined in any prison. .

(2) Prisoners shall be committed to such pris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and may by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be removed during the term of their imprisonment from the prison in which they are confined to any other prison.

(3) A writ, warrant or other legal instrument addressed to the governor of a prison and identifying that prison by its situation or by any other sufficient description shall not be invalidated by reason only that the prison is usually known by a different description.

**13. Legal custody of prisoner**

(1) Every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egal custody of the governor of the prison.

(2) A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while he is confined in, or is being taken to or from, any prison and while he is working, or is for any other reason, outside the priso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an officer of the prison and while he is being taken to any place to which he is required or authorised by or under this Act or section 95, 98, 99 or 108(5)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to be taken, or is kept in custody in pursuance of any such requirement or authorisation.

**14. Cells**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atisfy himself from time to time that in every prison sufficient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all prisoners. .

(2) No cell shall be used for the confinement of a prisoner unless it is certified by an inspector that its size, lighting, heating, ventilation and fittings are adequate for health and that it allows the prisoner to

communicate at any time with a prison officer.

(3) A certificate give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cell may limit the period for which a prisoner may be separately confined in the cell and the number of hours a day during which a prisoner may be employed therein.

(4) The certificate shall identify the cell to which it relates by a number or mark and the cell shall be marked by that number or mark placed in a conspicuous position; and if the number or mark is changed without the consent of an inspector the certificate shall cease to have effect. .

(5) An inspector may withdraw a certificate give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cell if in his opinion the conditions of the cell are no longer as stated in the certificate. .

(6) In every prison special cells shall be provided for the temporary confinement of refractory or violent prisoners.

**15.** Ss. 15, 18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7 (c. 80), Sch. 7 Pt. I

**16. Photographing and measuring of prisoners**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gulations as to the measuring and photographing of prisoners and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the time or times at which and the manner and dress in which prisoners shall be measured and photographed and the number of copies of the measurements and photographs of each prisoner which shall be made and the persons to whom they shall be sent.

**16A. Testing prisoners for drugs**

(1) If an authorisation is in force for the prison, any prison officer may, at the prison, in accordance with prison rules, require any prisoner who is confined in the prison to provide a sample of urine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he has any drug in his body.

(2) If the authorisation so provides,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1) above shall include power to require a prisoner to provide a sample of any other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authorisation, not being an intimate sample, whether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a sample of urine.

(3) In this section

"authorisation" means an authorisation by the governor;

"drug" means any drug which is a controlled drug for the purposes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1;

"intimate samp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 of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rison officer" includes a prisoner custody officer within the meaning of Part IV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and

"prison rules" means rules under section 47 of this Act.

**16B. Power to test prisoners for alcohol**

(1) If an authorisation is in force for the prison, any prison officer may, at the prison, in accordance with prison rules, require any prisoner who is confined in the prison to provide a sample of breath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he has alcohol in his body.

(2) If the authorisation so provides,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1) above shall include power.

(a) to require a prisoner to provide a sample of urine, whether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a sample of breath, and

(b) to require a prisoner to provide a sample of any other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authorisation, not

being an intimate sample, whether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a sample of breath, a sample of urine or both.

(3) In this section

"authorisation" means an authorisation by the governor;

"intimate samp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V of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rison officer" includes a prisoner custody officer within the meaning of Part IV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prison rules" means rules under section 47 of this Act.

**17. Painful tests**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shall not apply any painful tests to a prisoner for the purpose of detecting malingering or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visiting committee or, as the case may be, board of visitors.

**18.** Ss. 15, 18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7 (c. 80), Sch. 7 Pt. I

**19. Right of justice to visit prison**

(1)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y commission area may at any time visit any prison in that area and any prison in which a prisoner is confined in respect of an offence committed in that area and may examine the condition of the prison and of the prisoners and enter in the visitors' book, to be kept by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y observations on the condition of the prison or any abuses

(2) Nothing in the preceding subsection shall authorise a justice of the peace to communicate with any prisoner except on the subject of his treatment in the prison, or to visit any prisoner under sentence of death.

(3) The governor of every prison shall bring any entry in the visitors' book to the attention of the visiting committee or the board of visitors at their next visit.

**20.** S. 20 repealed by Courts Act 1971 (c. 23), Sch. 11 Pt IV

**21. Expenses of conveyance to prison**

A prisoner shall not in any case be liable to pay the cost of his conveyance to prison.

**22. Removal of prisoners for judicial and other purposes**

(1) Rules made under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may provide in what manner an appellant within the meaning of Part I of the Criminal Appeal Act 1968 when in custody, is to be taken to, kept in custody at, and brought back from, any place at which he is entitled to be present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or any place to which the Court of Criminal Appeal or any judge thereof may order him to be taken for the purpose of any proceedings of that court.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a) S. 22(2)(a)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b) if he is satisfied that a person so detained requires medical investigation or observation or medical or surgical treatment of any description, direct him to be taken to a hospital or other suitable place for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bservation or treatment;

and where any person is directed under this subsection to be taken to any place he shall,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be kept in custody while being so taken, while at that place, and while being taken back to the prison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23. Power of constable etc. to act outside his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 person to or from any prison under the order of any authority competent to give the order a constable or other officer may act outside the area of his jurisdiction and shall notwithstanding that he is so acting have all the powers, authority, protection and privileges of his office.

## Length of sentence, release on licence and temporary discharge

**24. Calculation of term of sentence**

(1) In any sentence of imprisonment the word "month" shall, unless the contrary is expressed, be construed as meaning calendar month.

(2) S. 24(2)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25.** S. 25 repealed (1.10.1992) by Criminal Justice Act 1991 (c. 53, SIF 39:1), s. 101(2), Sch. 13; S.I. 1992/333, art. 2(2), Sch. 2

**26, 27.** Ss. 25(2)–(6), 26, 27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7 (c. 80), Sch. 7 Pt. I

**28. 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discharge prisoners temporarily on account of ill health**

(1) If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by reason of the condition of a prisoner's health it is undesirable to detain him in prison, but that, such condition of health being due in whole or in part to the prisoner's own conduct in prison, it is desirable that his release should be temporary and conditional only,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he thinks fi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y order authorise the temporary discharge of the prisoner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stated in the order.

(2) Where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is made in the case of a prisoner not under sentence, the order shall contain conditions requiring the attendance of the prisoner at any further proceedings on his case at which his presence may be required.

(3) Any prisoner discharged under this section shall comply with any conditions stated in the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and shall return to prison at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tated in the order, or of such extended period as may be fixed by any subsequent order of the Secretary of State, and if the prisoner fails so to comply or return, he may be arrested without warrant and taken back to prison.

(4) Where a prisoner under sentence is discharged in pursuance of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the currency of th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y on which he is discharged from prison under the order to the day on which he is received back into prison, so that the former day shall be reckoned and the latter shall not be reckoned as part of the sentence. .

(5)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the duties of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in respect of a prisoner whom the Secretary of State does not think fit to discharge under this section.

## Discharged prisoners

**29.** S. 29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30. Payments for discharged prisoners**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such payments to or in respect of persons released or about to be released from prison as h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 Provision, maintenance and closing of prisons

**33. Power to provide prisons, etc**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y alter, enlarge or rebuild any prison and build new prisons.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new prisons by declaring to be a prison

(a) any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built for the purpose or vested in him or under his control; or

(b) any floating structure or part of such a structure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r vested in him or under his control.

(3)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may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or part of a building declared to be a prison make the same provisions as an order under the next following section may make with respect to an existing prison.

(4)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may at any time be revoked by the Secretary of State.

(5)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sufficient to vest the legal estate of any building in the Secretary of State.

**34. Jurisdiction of sheriff, etc**

(1) The transfer under the Prison Act 1877 of prisons and of the powers and jurisdiction of prison authorities and of justices in sessions assembled and visiting justices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ffected the jurisdiction of any sheriff or coroner or, except to the extent of that transfer, of any justice of the peace or other officer.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rect that, for the purpose of any enactment, rule of law or custom dependent on a prison being the prison of any county or place, any prison situated in that county or in the county in which that place is situated, or any prison provided by him in pursuance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prison of that county or place.

**35. Prison property**

(1) Every prison and all real and personal property belonging to a prison shall be vested in the Secretary of State and may be disposed of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may determine.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 corporation sole.

(3) Any instrument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management or disposal of any property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ay be executed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by an Under-Secretary of State or any other person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that behalf; and any instrument purporting to have been so executed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deemed, until the contrary is proved, to have been so executed on his behalf.

(4)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execution of any such instrument as aforesaid, or of any other instrument, on behalf of the Secretary of State in any other manner authorised by law.

**36. Acquisition of land for pris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urchase by agreement or compulsorily, any land required for the alteration, enlargement or rebuilding of a prison or for establishing a new prison or for any other purpose connected

with the management of a pris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for officers or servants employed in a prison).

(2) The Acquisition of Land Act 1981 shall apply to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is section.

(3) In relation to the purchase of land by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Part I of the Compulsory Purchase Act 1965(so far as applicable) other than sections 4 to 8, section 10, and section 31, shall apply.

**37. Closing of prisons**

(1) Subject to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close any prison.

(2) Where a prison is the only prison in the county,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it except for special reasons, which shall be stated in the order.

(3) In this section the expression "county" means a county at large.

(4) For the purposes of this and the next following section a pri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closed by reason only of its appropriation for use as a remand centre, detention centre or youth custody centreor secure training centre

**38.** S. 38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72 (c. 71), Sch. 6 Pt. II

## Offences

**39. Assisting prisoner to escape**

Any person who aids any prisoner in escaping or attempting to escape from a prison or who, with intent to facilitate the escape of any prisoner, conveys any thing into a prison or to a prisoner sends any thing(by post or otherwise) into a prison or to a prisoner or places any thing anywhere outside a prison with a view to its coming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shall be guilty of felony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en years.

**40. Unlawful conveyance of spirits or tobacco into prison, etc**

Any person who contrary to the regulations of a prison brings or attempts to bring into the prison or to a prisoner any spirituous or fermented liquor or tobacco, or places any such liquor or any tobacco anywhere outside the prison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and any officer who contrary to those regulations allows any such liquor or any tobacco to be sold or used in the prison, shall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level 3 on the standard scale or both.

**41. Unlawful introduction of other articles**

Any person who contrary to the regulations of a prison conveys or attempts to convey any letter or any other thing into or out of the prison or to a prisoner or places it anywhere outside the prison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shall, where he is not thereby guilty of an offence under either of the two last preceding sections, be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3 on the standard scale.

**42. Display of notice of penalties**

The Prison Commissioners shall cause to be fixed in a conspicuous place outside every prison a notice of

the penalties to which persons committing offences under the three last preceding sections are liable.

##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 43.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youth custody centre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a) remand centres, that is to say places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not less than 14 but under 21 years of age who are remanded or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aa) young offender institutions, that is to say places for the detention of offenders sentenced to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or to custody for life;

(b), (c) S. 43(1)(b)(c)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88 (c. 33, SIF 39:1), s. 170, Sch. 8 para. 16, Sch. 16

Word in s. 43(1) repealed (1.3.1998) by 1994 c. 33, s. 168(3), Sch. 11; S.I. 1998/277, art. 3(3)

(d) secure training centres, that is to say places in which offenders in respect of whom detention and training orders have been made under section 100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Sentencing) Act 2000 may be detained and given training and education and prepared for their release.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a) that a woman aged 21 years or ov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who has been committed to prison for default shall be detained in a remand centre or a youth custody centre instead of a prison:

(b) that a woman aged 21 years or over who is remanded in custody or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shall be detained in a remand centre instead of a prison;

(c) that a person under 21 but not less than 17 years of age who is remanded in custody or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shall be detained in a prison instead of a remand centre or a remand centre instead of a prison, notwithstanding anything in section 27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48 or section 23(3) of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3)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bove, any person required to be detained in an institution to which this Act applies may be detained in a remand centre for any temporary purpose and a person aged 18 years or over may be detained in such a centr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maintenance and domestic services for that centre.

(4) Sections 5A, 6(2) and (3), 16, 22, 25 and 36 of this Act shall apply to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youth custody centres and to persons detained in them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4A) Sections 16, 22 and 36 of this Act shall apply to secure training centres and to persons detained in them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5)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preceding this section, except sections 28 and 37(2) above, shall apply to centres of the descriptions specified in subsection (4) above and to persons detained in them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but subject to such adaptation and modifications as may be specified in rule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5A)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preceding this section, except sections 5, 5A, 6(2) and (3), 12, 14, 19, 25, 28 and 37(2) and (3) above, shall apply to secure training centres and to persons detained in them as

they apply to prisons and prisoners, but subject to such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specified in rule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6) References in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ct to imprisonment shall, so far as those provisions apply to institutions provided under this section,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detention in those institutions.

(7)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taken to prejudice the operation of section 108(5)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44. ~ 46.** Ss. 44–46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82 (c. 48, SIF 39:1), Sch. 16

##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47.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remand centres, detention centres and Borstal instituti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ules for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prisons, remand centres, young offender institutions or secure training centres, and for the classification, treatment, employment, discipline and control of persons required to be detained therein.

(2)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make provision for ensuring that a person who is charged with any offence under the rules shall be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3)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raining of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and their allocation for that purpose to any prison or other institution in which they may lawfully be detained.

(4)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provide for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llowing persons whilst required to be detained in a prison, that is to say— .

(a), (b), (c) S. 47(4)(a)–(c)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7 (c. 80), Sch. 7 Pt. I

(d) any person detained in a prison, not being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r a person imprisoned in default of payment of a sum adjudged to be paid by him on his conviction or a person committed to custody on his conviction.

(4A)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provide for the inspection of secure training centres and the appointment of independent persons to visit secure training centres and to whom representations may be made by offenders detained in secure training centres.

(5)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emporary release of persons detained in a prison, remand centre young offender institution or secure training centre not being persons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before the Crown Court or committed to be sentenced or otherwise dealt with by the Crown Court or remanded in custody by any court.

## Miscellaneous

**48.** S. 48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49. Persons unlawfully at large**

(1) Any person who, having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custody for life or ordered to be detained in secure accomodation or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or having been committed to a prison or remand centre, is unlawfully at large, may be arrested by a constable without warrant and taken to the place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2) Where any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ordered to be detained in secure accomodation or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is unlawfully at larg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the sentence or order, then,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calculat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so detained, of any time during which he is absent from the place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Provided that—

(a)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iod during which any such person as aforesaid is detained in pursuance of the sentence or order or in pursuance of any other sentence of any court in the United Kingdom in a prison or remand centre, in secure accomodation or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b) S. 49(2)(b)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82 (c. 48, SIF 39:1), Sch. 16

(c) S. 49(2) proviso (c)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3) The provisions of the last preceding subsection shall apply to a person who is detained in custody in default of payment of any sum of money as if he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who, after being temporarily released in pursuance of rules made under subsection (5) of section forty-seven of this Act, is at larg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his sentenc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if the period for which he was temporarily released has expired or if an order recalling him has been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pursuance of the rules.

(5) In this section "secure accommodation" means

(a)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b) a secure training centre; or

(c) any other accommodation that is secure accommodation within the meaning given by 2section 107(1)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detention and training orders)

**50. Appl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to remand homes and attendance centres**

Subsection (1) of section eighteen of this Act shall apply to attendance centres as it applies to prisons.

## Supplemental

**51. Payment of expenses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All expenses incurred in the maintenance of prisons and in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and all other expenses of the Secretary of State incurred under this Act shall be defraye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52. Exercise of power to make orders, rules and regulations**

(1) Any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rules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and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section thirty-four or section thirty-seven of this Act shall be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2) Any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sixteen or an order made under section thirty-seven of this Act, shall be laid before Parliament.

(3)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section six or section thirty-four of this Act shall include power to revoke or vary such an order.

**53. Interpretation**

(1) In this Act the following expression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ttendance centre" means a centre provid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62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Prison" does not include a naval, military or air force pris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maintenance of a prisoner shall include all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the prisoner for food, clothing, custody and removal from one place to another, from the period of his committal to prison until his death or discharge from prison.

(3) References in this Act to the Church of England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references to the Church in Wales.

(4) References in this Act to any enactment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at enactment as amended by any other enactment.

**54. Consequential amendments, repeals and savings**

(1) S. 54(1) repealed (5.11.1993) by 1993 c. 50, s. 1(1), Sch 1 Pt. I Group1

(2) S. 54(2) repealed by Statute Law (Repeals) Act 1974 (c. 22), Sch. Pt. XI

(3) Nothing in this repeal shall affect any rule, order, regulation or declaration made, direction or certificate given or thing done under any enactment repealed by this Act and every such rule, order, regulation, direction, certificate or thing shall, if in force at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continue in force and be deemed to have been made, given or done under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this Act.

(4) Any document referring to any Act or enactment repealed by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is Act or to the corresponding enactment in this Act.

(5) The mention of particular matters in this section shall not be taken to affect the general application to this Act of section thirty-eight of the Interpretation Act 1889(which relates to the effect of repeals).

**55. Short title, commencement and extent**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rison Act 1952.

(2) This Act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the first day of October, nineteen hundred and fifty-two.

(3) S. 55(3) repealed (5.11.1993) by 1993 c 50, s. 1(1), Sch. 1 Pt. I Group 1

(4) Except as provided in the Criminal Justice Act 1961, this Act shall not extend to Scotland.

(5) This Act shall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

## SCHEDULES

**FIRST AND SECOND SCHEDULES**

F1Schs. 1, 2 repealed by Criminal Justice Act 1961 (c. 39), Sch. 5

**THIRD SCHEDULE**

Sch. 3 repealed (5.11.1993) by 1993 c. 50, s. 1(1), Sch. 1 Pt. I Group 1

**FOURTH SCHEDULE**

Sch. 4 repealed by Statute Law (Repeals) Act 1974 (c. 22), Sch. Pt. XI

# 형집행규칙(1999년)

1999년 3월 10일 제정
1999년 3월 11일 국회제출
1999년 4월 1일 시행

형집행법 1952년(1) 제47조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다.

## 제1장 해석

**(인용 및 시행)**

**제1조** 본 규칙은 1999년 형집행규칙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석)**

**제2조** ① 본 규칙에서 앞뒤의 문맥이 허용하는 때에는,

"규제약물(controlled drug)"이란 1971년 약물남용단속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1)의 적용상 규제약물에 해당하는 모든 약물을 의미한다.

"기결수용자(convicted prisoner)"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에 대하여 유죄결정을 받거나 또는 유죄 평결을 받은 수용자, 법정모욕죄로 구속되거나 또는 체포된 수용자, 또는 작위명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부작위 명령을 받고 실행하여 구속 또는 체포된 수용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미결수용자(unconvicted prisoner)"란 그에 대응해서 해석되는 자이다.

"소장(governor)"이란 일시적으로 교도소를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직원을 포함한다.

"변호인(legal adviser)"이란 수용자와 관련한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counsel or solicitor)를 의미하며, 사무변호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clerk)를 포함한다.

"직원(officier)"이란 교도소 직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제40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1991년 형사재판법 제89조에 따라 호송업무의 수행을 인가받은 계호직원을 포함한다.

"교도소 포교사(prison minister)"란 교도소와 관련한 포교사로 1952년 형집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도소에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단기수형자(short-term prisoner)" 및 "장기수형자(long-term prisoner)"란 1991년 형사재판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부여된 그리고 동 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해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② 본 규칙에서

1. 복역일수 연장처분(an award of additional days)이라고 하는 문언은 1991년 형사재판법 제42조의 효력으로서 본 규칙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복역일수연장처분을 의미한다.
2. 영국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라고 하는 문언은 웨일스교회(the Church of Wales)를 포함한다.

---

참고자료 日本法務省矯正局, 「一九九九年イギリス監獄規則」, 1999年11月

3. 번호로 조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본 규칙 중 당해 번호의 조를 가리키고, 그리고 조 가운데에서 번호로 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당해 조 당해 호의 항을 가리킨다.

## 제2장 수용자

### 총칙(General)

**(교도소의 훈련 및 처우의 목적)**

**제3조** 기결수용자의 훈련 및 처우는 수용자가 선량하고 유익한 수용생활을 보내도록 장려하고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

**제4조** ① 수용자 및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관계 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가족의 이익 및 자신의 사회복귀를 가장 원만하게 촉진하도록 외부 인사 또는 여러 기관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을 장려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갱생보호)**

**제5조** 수용자의 형의 집행개시부터 적절한 갱생보호기관과 협의하여 수용자의 장래에 대하여 및 그자의 석방 시와 석방 후에 주어져야 할 원조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질서 및 규율의 유지)**

**제6조** ① 질서와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구속 및 질서 있는 집단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이상의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용자를 감독하는 때에는 직원은 스스로 모범적 태도와 지도를 통하여 수용자를 감화시키고 적극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처우는 항상 수용자의 자존감 및 개인적 책임감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용자를 어떠한 규율상의 지위(disciplinary capacity)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수용자 분류)**

**제7조** ① 수용자는 연령, 체질 및 전력을 고려하여 양호한 질서유지 및 훈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결수용자의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의 훈련 및 처우의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모든 지시에 따라 수용자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1. 기결수용자와 같이 거주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기결수용자와 접촉시켜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기결수용자와의 거실의 공동사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정모욕죄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수용자 또는 작위를 명받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작위를 명받고 이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구속되거나 체포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1. 본 조 적용에 대해서는 독립 분류급으로 처우하여야 하고,
2.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다른 분류급 수용자와 집단처우를 허가할 수 있고,

3. 제20조 제5항, 제2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특권을 가진다.

④ 본 조의 규정은 수용자에게 다른 사람과 사회적 접촉을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우대처우)**

**제8조** ① 모든 교도소는 법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허가하는, 당해 교도소의 수용자의 분류에 따른 우대처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우대제도에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획득한 금전을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처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가된 우대처우제에는 본 조를 제외하고 본 규칙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통상 허가된 최저시간을 초과하여 수용자에게 거실 외에서 수용자 상호 접촉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처우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가된 우대처우제에는 수용자가 행동상 및 작업 또는 그 밖의 활동의 수행상의 소정의 기준을 달성한 때에만 또한 달성을 계속하는 기간만 우대 처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처우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인용된 종류의 처우를 포함하는 우대처우제에는 당해 처우의 부여 또는 그 부여의 계속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준수해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 절차에는 수용자에게 불리한 결정일 때에는 그 결정이유를,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자에게 고지받는 취지의 요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우대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본 조 이외의 본 규칙의 규정으로 그리고 우대처우를 박탈 또는 삭감하거나 다른 수용자와 집단처우를 수용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시석방)**

**제9조** ① 법무부장관은 본 조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② 수용자를 어떠한 기간이나 횟수 또한 어떠한 조건을 부여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석방될 수 있다.

1.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이유에 의거하거나 또는 의료상 처치를 받기 위하여
2. 고용 또는 임의 작업(voluntary work)에 종사하기 위하여
3. 교도소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지도 및 훈련을 받기 위하여
4. 법원에서 소송절차, 심판(tribunal) 또는 조사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5. 교도소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 그자가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6.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7. 교도소 간 수용자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 가족과 유대의 유지 또는 소내 생활로부터 자유사회로의 복귀를 원조하기 위하여
9. 제8조에 의거한 우대처우로서 그 수용자가 교도소의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④ 수용자가 석방 중 범죄를 범한 때 또는 석방조건의 준수를 태만히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본 조에 의거 석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구금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1. 당해 수용자가 이미 복역한 형의 기간 또는 비율 또는 당해 수형자가 복역하고 있는 복수의 형의 전부를 단일 형기로서 취급하도록 요청하는 제10항 규정의 적용이 없는 때에는 그자가 이미 복역한 어느 형의 기간 또는 비율 및
2. 당해 수용자가 본 조에 의거하는 일시적 석방을 이미 허가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그 수용자를 석방하면 사법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조에 의거 석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용자가 해당 기간(the relevant period) 동안 본 조에 따라 일시적 석방을 허가받고 그리고 석방 후 자유가 된 시기에 범한 형사상 범죄로 인해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유죄결정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자를 석방하여도 사법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한, 본 조에 의거 석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의 적용상 "해당 기간"이란,

1. 정기구금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당해 형에 대해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하고 또한 제10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복역하고 있는 복수의 형이 단일 형기로서 취급되지 않으면 그러한 복수의 형의 하나에 대해 1991년 형사재판법(이하 본 조에서 "1991년 법"이라 한다) 제2편에 의거하여 최후에 석방된 시점에서 그 이후의 기간으로 한다.
2. 부정기 구금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1997년 범죄(양형)법 제2편 또는 1991년 법 제2편에 의거한 허가장에 따른 석방을 허가받은 적이 있으면 당해 형에 대해서 그자의 교도소에의 마지막 호출일로부터 그 이후의 기간으로 하고, 또한 그 수용자가 위의 석방을 허가받은 적이 없으면 당해 형에 대해서 그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한다.
3. 그 밖의 이유로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 수용자가 당해 이유로 이미 수용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용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 대한 "해당 기간"은 적용가능한 각 호 중 보다 장기의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에 따른다.

⑧ 본 조에 의거하여 석방된 수용자는 석방조건의 위반 여부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수용자를 교도소로 환소시킬 수 있다.

⑨ 본 조는 공판 또는 어떤 형사법원(the Crown Court)에 의한 선고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구속된 자 또는 어느 재판소에 의해 구류된 자를 제외하고 그 외의 수용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⑩ 본 조에서 수용자의 형이라는 문언의 적용에 대해서는, 순차집행형기(consecutive terms) 및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동시집행(concurrent)형기에 관해서는 단일 형기로 취급한다. 다만, 이러한 형기가 선고받은 구금형의 형기라고 하는 1991년 법 제2편의 문언 적용에 대해 단일형기로서 취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⑪ 본 조에서

1. 구금형이라는 문언에는 수용 또는 구속의 선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2. 1991년법 제2편에 근거한 허가장에 의한 석방 또는 그 이외에 의한 석방이라는 문언에는 허가장에 의한 조기석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입법이든지 그러한 입법에 근거한 허가장에 의한 석방을 포함한다.

**(수용자에 대한 고지)**

**제10조** ① 모든 수용자에게 교도소에 입소 후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보수(earnings), 우대처우제 및 요구 및 적절한 불복신청방법을 포함하여 그 수용자가 알 필요가 있는 본 규칙 중의 규정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18세 미만 수용자의 경우 또는 18세 이상이라도 위 고지사항을 읽을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하는 직원은 그 자가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고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본 규칙의 복사본은 이것을 청구하는 어떠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 및 불복)**

**제11조** ① 수용자의 구금에 관한 요구 또는 불복은 그 수용자가 소장 또는 방문자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② 소장은 매일 제1항에 따라 자기에게 신청된 요구 및 불복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요구 또는 볼복은 비밀리에 요청할 수 있다.

## 여성수용자(Woman prisoners)

**(여성수용자)**

**제12조** ① 여성수용자는 통상 남성수용자와 격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붙여서 여성수용자에게 교도소 내에서 유아를 대동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유아의 양육 및 간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은 교도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종교

**(종파)**

**제13조** 수용자는 1952년 형집행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기록에 명기된 종파에 소속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사 후 당해 기록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교회사 및 교도소 포교사의 특별 직무)**

**제14조** ① 교도소 교회사 또는 교도소 포교사는,

1. 그 종파에 소속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에 입소 직후 및 석방 직전에 개별적으로 접견하여야 하고,
2. 별도 준비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수용자에 대해 그 종파에 속하는 장례의식으로 매장행사를 치르어야 한다.

② 교회사는 질병에 걸리고 보호장비가 착용되거나 또는 독거수용되어 있는 영국국교회에 속하는 모든 수용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교도소 포교사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기 종파에 속한 수용자에 대하여 매일 방문하여야 한다.

③ 그 수용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교회사는 질병에 걸리고 보호장비가 착용되거나 또는 독거수용되어 있는 영국국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수용자로 그가 속하는 종파의 포교사에 의한 정기 방문을 받고 있지 않는 수용자를 방문하

여야 한다.

**(포교사에 의한 종교상 정기방문)**

**제15조** ① 교회사는 영국국교회에 속하는 수용자를 방문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포교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그 종파에 속하는 수용자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 포교사가 임명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파에 속해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장은 그 수용자의 희망에 따라 그자가 속하는 당해 종파의 포교사에 의한 정기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종교행사)**

**제16조** ① 교회사는 영국국교회에 속하는 수용자를 위하여 매주 일요일과 크리스마스 및 성금요일(聖金曜日)에 적어도 한 번 예배식을 개최하여야 하고 성찬식 및 주일행사의 실시준비가 이루어지는 때에도 그것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포교사는 그 실시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때마다 그 종파에 속하는 수용자를 위하여 예배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교회사 또는 교도소 포교사의 대리)**

**제17조** ① 법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자는 교회사의 부재시 교회사에 대신하여 집무할 수 있다.

② 교도소 포교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신의 부재 시 대신해서 집무해야 할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일요일 작업)**

**제18조** 기독교에 속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일요일, 크리스마스 또는 성금요일 또한 그 밖의 종파에 속하는 수용자에게도 각각 인정되는 종교의식을 개최하는 날에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종교서적)**

**제19조** 종파에서 승인된 종교서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내에서의 이용을 인가한 것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용자자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

**(의료상의 배려)**

**제20조** ① 교도소 의무관은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의 심신건강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의 진료를 요구하는 수용자의 모든 요구은 그 신청을 받은 직원이 기록하고 그리고 신속히 의무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1983년 의료법(the Medical Act, 1983)의 의미에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업의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위 개업의사는 의무관의 일반적 감독하에 그 교도소에서 집무할 수 있다.

④ 의무관은 중대한 수술을 하기에 앞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개업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⑤ 미결수용자가 등록된 개업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치료를 희망하고 그리고 그 비용지불을 하려고 하는 때에 그 희망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때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소장은 의무관과 협의한 가운데 그 수용자에게 당해 개업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는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⑥ 개개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률절차의 당사자인 수용자가 스스로 선정하거나 또는 그 수용자를 위하여 선정된 등록개업의사는 당해 법률절차와의 관련에 있어서 그 수용자의 검사를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공여한다. 또한 위 개업의사는 직원의 시선 내에서 대화내용이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질병 및 상태)**

**제21조** ①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업의사는 구금의 계속 또는 구금의 형태로 인해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수용자가 있는 때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권고를 첨부하여 보고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정신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자의 감시 또는 간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제22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경우, 주소가 분명한 때에는 그 수용자의 배우자 또는 최근친자에게 대하여 또한 그 수용자가 통보를 요구하는 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장은 관할권을 가진 검시관, 방문자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물품지급 및 작업

**(의류)**

**제23조** ① 미결수용자는 그 의류가 상응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정결한 때는 자기의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에게는 충분한 수량의 청결한 의류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을 허가되어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 미결수용자에게는 그 자가 도주를 기도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한, 특별한 기호 또는 색채가 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간 눈에 띄는 품목의 의류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2. 미결수용자에게는 도주로 인하여 일반시민 및 국가의 치안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한, 본 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의류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 조의 규정은 기결수용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기결수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인가한 기준에 따라 보온 및 건강상 적당한 의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의류에는 필요한 때에는 취업 시에 착용하는 적당한 보호의를 포함한다.

⑤ 제40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결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때 또는 제8조에 근거하는 우대처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따라 제공되는 의류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의류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용자에게는 석방 시 필요한 때 상응하고 적당한 의류를 제공할 수 있다.

**(음식물)**

**제24조** 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수용자에게도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가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공되는 음식물은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있으며 잘 조리하여 담겨진, 적당히 다양하고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③ 의무관,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 또는 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조리 전후에 수시로 음식물을 검사하여야 하고 부족 또는 결함이 있으면 그 취지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서 "음식물"에는 음료를 포함한다.

**(알코올 및 담배)**

**제25조** ① 어떠한 수용자에게도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가 수용자의 이름과 제공량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명령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주류의 섭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수용자에게도 제8조에 의거한 우대처우로서 소장의 명령에 따라 그건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 흡연 또는 소지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침 설비)**

**제26조** ① 어떠한 방 또는 거실(room or cell)도 수용자의 구금을 위해 사용되는 거실의 경우에 관해서 1952년 형집행법 제15조가 요구하고 있는 방식에 따른 인증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수용자의 취침설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형집행법 제14조 또는 본 조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인증에는 당해 인증에 관련된 방 또는 거실에 한 번에 취침시키거나 또는 구금할 수 있는 수용자의 최대인원을 명기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명기된 인원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침대 및 침구)**

**제27조** 각 수용자에게는 보온 및 건강상 적절한 침대 및 침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

**제28조** ① 모든 수용자에게는 건강 및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세면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교환되어져야 한다.

② 모든 수용자에게는 적당한 빈도로 얼굴과 손을 씻고, 입소 시 및 그 후 적어도 주 1회 목욕, 또는 샤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의 두발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이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육)**

**제29조** ① 사정이 합리적으로 허락하는 한 21세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적어도 주 1시간, 체육에 참가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사정이 합리적으로 허락하는 한 21세 미만의 수용자에게 적용한다.

1. 야간 및 주말의 레크레이션 운동 외에 평일에 21세 미만 수용자를 위한 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체육 종목은 개인적 책임, 수용자의 관심 및 기술을 배양하고 석방 후 여가선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다.
2. 21세 미만 수용자 중 기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평균 주 2시간, 체육에 참가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치료적 운동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

④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체육 및 치료적 운동을 위한 적격성을 판정하여야 하고 또한 의료상의 이유로 위의 체육, 또는 치료적 운동으로부터 수용자를 면제시키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실외시간)**

**제30조**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리고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자에게는 적어도 매일 1회,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외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작업)**

**제31조** ① 기결수용자에게는 1일 10시간 이내 유용한 작업을 취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수용자가 거실 외에서 그리고 다른 수용자와 혼거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는 의료상의 이유로 수용자를 작업에서 면제할 수 있다. 어떠한 수용자도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에 의해 적격성이 판정된 업종 이외의 작업에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어떠한 수용자도 법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종류의 작업에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어떠한 수용자도 법무부장관의 인가 없이 다른 수용자 또는 직원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의해 기결수용자와 같은 작업에 취업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인가된 금액에 의거하여 작업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교육 및 도서실

**(교육)**

**제32조** ①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교육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용자에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학급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시간에 원격 학습(distance learning)에 의한 훈련, 개인적 공부 및 여가학급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을 희망하는 수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교육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자에게는 통상적으로 작업에 할당해야 할 시간대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1996년 교육법(the Education Act, 1996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수용자에게는 평일에 적어도 주 15시간, 교육 또는 훈련의 여러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도서실)**

**제33조** 모든 교도소에는 도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수용자에게는 도서실 도서의 소지 및 교환을 허락하여야 한다.

## 외부교통

### (외부교통에 관한 통칙)

**제34조** ① 법무부장관은 규율 및 질서 유지 또는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용자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허가되어야 할 서신 또는 그 밖의 외부교통에 대해서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칙을 방해함이 없이, 법무부장관은 개개의 접견 또는 일정한 유형의 접견에 대해서 수용자와 접견인 간 물리적 접촉을 제한하거나 또는 방지하는 특별히 만들어진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1952년 형집행법 제6조 및 제9조를 방해함이 없이,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외부 사람과 또는 외부 사람이 수용자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8조 규정의 우대처우로서 외부교통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가 수발하는 모든 서신 또는 그 밖의 외부교통은 소장 또는 소장의 대리자인 직원이 열독, 청취, 기록, 녹음하거나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소장은 어떠한 서신 또는 그 밖의 외부교통에 대해서도 내용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장문인 것을 이유로 하여 재량으로 그것을 압수할 수 있다.

⑤ 수용자에 대한 모든 접견은 법무부장관의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시선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에 대한 모든 접견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직원이 그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수용자가 접견을 받은 일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개개의 접견 또는 일정한 유형의 접견별로 지시를 할 수 있다.

⑧ 본 규칙의 "외부교통(communication)"이란 접견을 하고 있는 동안의 외부교통 또는 접견을 수단으로 하는 외부교통 또는 원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장치를 수단으로 하는 외부교통을 포함하고 또한 원거리 통신장치(telecommunication apparatus)란 1984년 "원거리 통신법" 제2부록 제2절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사적 서신 또는 접견)

**제35조** ① 제8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결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지시하는 조건하에 그자가 희망하는 서신을 수발하고 그리고 접견을 할 수 있다.

② 제8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결수용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도소 입소 시 및 그 후는 주 1회 서신을 수발하는 것
2. 4주에 2회 다만, 법무부장관이 취지를 지시한 때에는 4주에 1회 접견을 하는 것

③ 소장은 제8조에 근거하여 우대처우로서 또는 수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피수용자에게 회수를 늘려 서신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접견의 권리를 가지는 수용자에 대하여 접견에 대신하여 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독거 구금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수용자의 접견의 권리행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⑥ 방문자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수를 늘려 서신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통상 시간을 초과하여 접견을 연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개개의 수용자 또는 일정 유형의 수용자에 대하여 회수를 늘려 서신 및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⑧ 수용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의 접견을 받을 것을 본 조에 의거한 권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친족 또는 지인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73조에 의거한 금지가 과해져 있는 대상자로서 그 기간 중 모든 사람
2.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를 제외하고 친족이나 지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⑨ 본 규칙의 다음 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한 어떠한 서신이나 접견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서신 또는 접견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의 접견)**

**제36조** 경찰관은 경찰서장 또는 대리자에 의해 발해진 명령을 제시하고 자기와 접견을 희망하는 수용자와 접견을 할 수 있다.

**(석방의 확보)**

**제37조** 보석보증인이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금전지불의무 불이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그 교도소로부터의 석방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석보증인 또는 금전지불의 준비를 위하여 친족 또는 지인과 통신하고 그리고 평일 적당한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과 접견할 수 있다.

**(변호인)**

**제38조** ① 수용자가 당자자가 되어 있는 민사 또는 형사 법률절차에 대하여 그 수용자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절차에 관해서 수용자와 접견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변호인은 직원의 시선 내에서 그 대화가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로 위의 접견을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밖의 어떠한 법률상 사무에 관해서도 직원의 시선 내에서 대화가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용자와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 및 법원과의 통신)**

**제39조** ① 수용자는 자신의 변호인 및 어떠한 법원과도 통신할 수 있다. 위 통신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소장이 개봉 및 열독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본 조가 적용되는 통신은 부정 내용물을 동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것을 개봉할 수 있다. 위 내용물은 본 규칙의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조가 적용되는 통신은 그 내용이 교도소의 보안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그 외의 점에서 범죄적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개봉 및 열독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본 조가 적용되는 통신을 개봉하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입회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한 통신 또는 내용물의 열독 또는 금지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서 "법원"이란 유럽인권위원회, 유럽인권법원 및 유럽사법법원을 포함한다. "부정 내용물(illicit enclosure)"이란 그 소지가 본 규칙의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소지가 인가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그리고 당해 수용자, 그의 변호인 또는 법원을 제외한 그 밖에 사람과의 통신을 포함한다.

## 이송, 검사, 기록 및 재산

**(교도소 밖에서의 구속)**

**제40조** ① 구속상태에서 교도소에로, 또는 교도소로부터 인치되는 자는 가능한 한 일반 시민의 눈에 띄지 않도

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호기심 및 모욕으로부터 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속상태에서 교도소 밖의 어떤 장소로 인치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는 지명된 직원 또는 경찰관에 의해 그를 구속되어야 한다.

③ 구속상태에서 법원에 인치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에게는 그것이 출정인 때에는 사복 또는 소장이 제공하는 통상의 평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제41조** ① 모든 수용자는 직원의 구속하에 인치될 때, 교도소에 입소할 때 및 그 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시할 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용자는 은닉물품을 발견하는 데 충분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의 시선 내에서 또는 이성의 시선 내에서 나체로 검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사진)**

**제42조** ① 수용자의 개인적 기록은 법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수용자는 입소 및 그 후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의 복사본은 그것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어떠한 자에게도 교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용자의 재산)**

**제43조** 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결수용자는 방문자위원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동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는 동안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서, 신문, 필기용구 및 그밖의 업무의 수단(means of occuoation)을 자변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기사용을 위하여 소지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휴대하는 현금 이외의 물품으로 자기 사용을 위하여 소지가 허락되지 아니한 물건은 소장의 지시하에 영치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소유물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리고 수용자에게는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적당한 기회를 준 후 그 목록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휴대하는 현금은 소장이 관리하는 계좌에 불입하여야 하고 그리고 교도소의 장부상 그 금액을 해당 수용자의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출소하거나 또는 사망한 후 3년 이상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물품은 매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 그 매각순이익은 범죄자 보호 · 갱생 전국협회(Natıonal Associatı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에 대하여 일반적 용도를 위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입소 후 그자의 소유에 관한 것이라고 판명한 부정물품 또는 교도소 내 어떤 장소에 은닉 또는 방치된 부정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우송 현금 및 물품)**

**제44조** ① 우체국을 통해 기결수용자에게 송부된 현금 또는 그 밖의 물품(서신 또는 그 밖의 외부교통을 제외한다)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그리고 수용자에게 물품처리방식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현금에 대해서 소장의 재량에 따라

1. 제4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2. 송부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3. 송부인의 성명 및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범죄자 보호 · 갱생전국협회에 대하여 일반적 용도를 위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지불의무 불이행으로 교도소에 송치된 수용자에 관해서는 현금의 처리에 대해서 당해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충당을 거부하는 때를 제외하고 당해 현금은 그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로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금전에 대신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소장의 재량에 따라

1. 수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과 함께 교도소에 영치하고,
2. 송부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3. 현금화하고 그리고 그 현금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본 조가 적용되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장의 재량에 따라

1. 수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과 함께 교도소에 영치하고,
2. 송부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3. 송부인의 성명 및 주소가 불명한 경우 또는 그 물품이 반환하기에 부적당한 성질의 것인 때에는 매각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매각 순이익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특별감독, 시찰 및 약물검사

### (집단처우로부터 제외)

**제45조** ① 질서 또는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집단처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은 당해 수용자를 상응하는 방법으로 집단처우로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용자에게는 방문자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본 조에 의거하여 집단처우로부터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허가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것이어야 하지만 1월마다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 허가는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것이어야 하지만 수시로 같은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재량에 의해 전술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집단처우를 재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소장은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가 의료상의 이유로 그 취지를 권고하는 때에는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 조는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지시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중시찰구획)

**제46조** ① 질서 또는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직원, 수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집단처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당해 수용자를 상응하는 방법으로 집단처우로부터 제외하고 교도소의 집중시찰구획에 수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내려진 지시는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것이어야 하지만 같은 기간으로 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술한 수용자에 대하여 집중감시구획의 내부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집단처우를 재개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의거한 재량의 행사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관계되는 의료상의 고려사항이 판명되어 있으면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실력행사)**

**제47조** ① 수용자 처우를 담당하는 직원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용자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필요 이상의 실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를 도발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시적 구금)**

**제48조** ① 소장은 반항적 또는 폭력적인 수용자를 특별한 거실에 구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를 징벌로써 또는 반항적 또는 폭력적인 상태가 없어진 이후에는 위의 구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문자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무부장관하에 속하는 공무원(교도소 직원을 제외한다)이 부여하는 서면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면 24시간을 초과하여 특별독거실에 수용자를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지시에는 구금사유 및 구금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제49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재물손괴하거나 또는 소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위 명령을 한 때에는 즉시 방문자위원회 위원 및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업의사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 또는 제2항에서 말하는 개업의사는 위 통지를 수리한 때는 당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료상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본 항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방문자위원회 위원 또는 법무부장관하에 속하는 공무원(교도소 직원을 제외한다)이 부여하는 서면에 의한 지시가 아니면 24시간을 초과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지시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사유 및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전 항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에게는 이송 중 구속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개업의사의 지시에 의한 의료 상의 이유가 아니면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수용자에게도 징벌로써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보호장비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제식(製式)의 것이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강제적 약물검사)**

**제50조** ① 본 조는 1952년 형집행법 제16A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수용자에게 약물검사를 하는 권한)에 의거하

여 직원이 수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 내에 규제약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본 조에서 "표본"(sample)이란 소변표본 또는 그 밖에 종류의 표본으로 1952년 형집행법 제16A조의 목적을 위하여 소장에 의한 인가에서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③ 표본을 제출하도록 수용자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직원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수용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1952년 형집행법 제16A조에 의거하여 표본의 제출이 요구되어 있는 것일 것
2. 표본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자에 대하여 징벌 절차가 취해질 수 있을 것

④ 직원은 수용자에게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선한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표본을 요구하는 직원은 수용자에게 불순물 혼입 또는 변조의 방지 및 발견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제출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표본의 제출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그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할 수 있다.

⑦ 소변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표본을 제출할 때까지 다른 수용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의거하여 5시간 이상 그 수용자를 격리할 수 없다.

⑧ 소변표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수용자에게는 표본의 불순물 혼입 또는 변조의 방지 및 발견을 위하여 필요성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 표본제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성의 시선 내에서 위 표본을 제출하도록 수용자에 대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율위반행위

**(규율위반행위)**

**제51조** 수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1. 폭행을 한 때
2. 다른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때
3. 직원 또는 그곳에서 업무를 위하여 교도소에 있는 자(수용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교도소 어느 일부에 접근을 방해한 때
4.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때
5. 고의로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것에 대하여 주의하지 아니한 때
6. 고의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업무를 위하여 교도소에 있는 사람(수용자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7. 교도소로부터 또는 법률 상 구속으로부터 도주 또는 실종한 때
8. 제9조에 의거한 일시적 석방조건의 준수를 게을리 한 때
9. 규제약물을 자신에게 사용한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규제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저항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52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함)

10. 알코올 음료라는 것을 알면서 섭취하여 그 결과 만취한 때
11.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한 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이외의 알코올 음료라는 것을 알면서 섭취한 때
12.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a) 부정물품
    (b) 허가된 양을 초과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품
13. 부정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양도한 때
14. 자기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만 소지가 허가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양도한 때
15. 다른 사람 또는 교도소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부당하게 취득한 때
16. 교도소의 어느 일부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어부를 분분하고 그 밖의 재물에 고의 또는 주의없이 방화한 때
17. 교도소의 어느 일부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물을 파괴 또는 손괴한 때
18.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때
19. 직원 또는 그곳에서 업무를 위하여 교도소에 있는 자(수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교도소 방문자에 대하여 무례한 때
20. 협박적 · 학대적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때
21. 적절하게 작업하는 것을 고의로 나태한 때 또는 취업하도록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때
22. 적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3. 자기에게 적용되는 규칙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준수하는 것을 게을리 한 때
24. 접견(제38조에 규정한 접견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중에 규제약물을 수령하거나 또는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밖의 물품을 수령한 때
25. 전 항까지의 규율위반 행위의 어느 것을
    (a) 범하기 위해 기도한 때
    (b) 다른 사람이 범하는 것을 교사한 때
    (c) 다른 사람이 범하는 것 또는 범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조한 때

**(제51조 제9항에 대한 변명)**

**제52조** 제51조 제9항에 의거하여 규율위반행위로 고발된 수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한 때는 변명된 것으로 한다.

1. 당해 규제약물이 사용 이전에 적법하게 그 수용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또는 그 수용자에 대한 적법한 투약조치로써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
2. 그와 같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정 아래 당해 규제약물이 수용자에 의해 또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
3. 그 수용자가 그것에 저항함이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정하에서 당해 규제약물이 협박하에 그 수용자에 의해 또는 그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 또는 동의 없이 그 수용자에게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

**(규율상의 고발)**

**제53조** ① 수용자를 규율위반행위로 고발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규율위반행위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고발은 소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고발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또는 축일이 아닌 한 늦어도 고발제기일의 다음 날에 최초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규율위반행위로 고발된 수용자를 최초 조사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수용자와 격리할 수 있다.

**(고발된 수용자의 권리)**

**제54조** ① 수용자를 규율위반행위로 고발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장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보다 이전에 수용자에게 고발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에 대한 고발의 조사 시 수용자에게는 자기에 대하여 제기된 사실의 청취 및 주장의 진술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장에 의한 징벌)**

**제55조**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 및 제57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징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과할 수 있다.

1. 경고(caution)
2. 42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8조에 의거하는 우대처우의 박탈
3. 21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집단작업으로부터 제외
4. 8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그리고 42일분의 작업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작업보수의 정지 또는 삭감
5.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독거구금
6. 단기수형자 또는 장기수형자의 경우 42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역일수 연장처분(an award of additional days)
7. 통상은 권리를 가지는 수용자의 경우 일정기간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항에서 열거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권리의 박탈

② 경고처분은 하나의 고발에 대하여 이를 그밖의 징벌과 병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용자가 1개의 위반사실에 기인하는 1이상의 고발에 대하여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조에 의하는 복수의 징벌은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복역일수 연장처분의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연장기간이 42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독거구금의 처분의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에 의거하여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소장은 일정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통상 과하여야 할 징벌의 양을 정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시로 발표하는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복역일수 연장처분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감형일수 몰수)**

**제56조** ① 본 조에서 "현재 수형자에 해당하는 자(existing prisoner)" 및 "현재 허가장에 의한 석방을 허가 받은 자(existing licensee)"란 1991년 형사재판법 제12부록 제8절 (1)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② 현재 수형자인 자 또는 현재 허가장에 의한 석방을 허가받은 자로서 그 형에 대하여 감형일수몰수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관해서는 1991년 형사재판법 제2편의 규정은 그자의 몰수된 감형일수에 상당하는 일수의 복역일수 연장처분을 그자가 받은 것으로 하여 적용한다.

**(소년에 의한 규율위반 행위)**

**제57조** ① 규율위반행위 시에 21세 미만이었던 자(1982년 형사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자에 대해서는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간주하여 처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가 법무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범죄자는 제외한다)가 범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5조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효력을 가진다.

1. 제8조에 의거하여 우대처우의 박탈 상한기간은 21일로 할 것
2. 작업보수의 정지 또는 삭감의 상한기간은 42일로 하고 그 상한액은 21일분으로 할 것
3. 독거구금의 상한기간은 7일로 할 것

② 일정기간 소년구금소 수용 또는 소년범죄자 시설 수용의 선고를 받은 수용자로 1982년 형사재판법 제13조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당해 기간의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간주하여 처우를 받은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지시가 나오기 전에 그자가 규율위반행위로 과하여진 징벌에 대해서는 그 만료 또는 면제가 없는 한 그것은 제55조에 따라서 과하여진 것이라고 간주되며 또한 효력을 가진다.

**(독거구금의 징벌)**

**제58조** 독거구금의 징벌을 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의무관 또는 제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개업의사는 당해 수용자가 징벌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의료상의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본 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래 발효하는 복역일수 연장처분)**

**제59조** ① 단순히 구류로 수용된 수용자가 규율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수형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있지 아니한다(또는 규율위반 행위 시에는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복역일수 연장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복역일수 연장처분은 당해 수용자가 그 후에 단기 또는 장기 수형자가 되고 1967년 형사재판법 제67조에 의거하여 그 규율위반행위를 한 시점을 포함한 일정 기간이 그자의 형기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징벌의 집행정지)**

**제60조** 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규율상의 징벌(경고를 제외한다)을 과하는 권한에는 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시에서 명시된 기간(그 지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안 그 수용자가 다시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제2항에 의거하여 조치하는 때는 제외한다.

② 수용자가 제1항에 의거한 지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 규율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규율위반행위를 취급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집행정지된 징벌을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집행정지된 징벌기간 또는 양을 경감하고 그리고 경감된 징벌로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3. 당초 명시된 기간을 변경일로부터 늦어도 6월 이내 만료하는 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지시를 변경하는 것
4. 집행정지된 징벌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아니하는 것

**(징벌의 면제 또는 경감 및 규율위반 행위의 인정취소)**

**제61조** ① 법무부장관은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징벌을 면제하는 것 또는 그것을 경감하거나 또는 보다 가볍다고 인정하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벌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의 모든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장은, 소장 또는 방문자위원회가 과하는 징벌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3장 교도소 직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

**제62조** ① 본 규칙 및 교도소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것의 유지에 대하여 소장을 보좌하고 그리고 소장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는 것은 모든 직원의 직무로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알게 된 직권남용 또는 부정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증금품의 금지)**

**제63조** 어떠한 직원도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한 사례, 기증금품 또는 그 밖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직원의 검사)**

**제64조** 직원은 소장이 그러한 취지를 지시한 때에는 교도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에 승복하여야 한다. 위 검사는 은익물을 발견하는 데에 적합한 모든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수용자와 거래)**

**제65조** ① 어떠한 직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용자와 또는 수용자를 대신하여 상거래 또는 금전상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직원도 권한 없이 어떠한 물품이든 수용자에 대하여 또는 수용자를 위하여 반입 또는 반출을 하거나 이를 기도하고, 반입 또는 반출을 고의로 허가하거나 또는 수용자에게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소자와 접촉)**

**제66조** 어떠한 직원도 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출소자 및 수용자 또는 출소자의 친족 및 지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와 외부교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도기관에 대한 외부교통)**

**제67조** ① 어떠한 직원도 그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없이 보도기관의 대표 또는 그 밖의 사람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부교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직원도 허가 없이 1952년 형집행법 적용을 받은 시설운영 또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공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복무규정)**

**제68조** 법무부장관은 직원 일반 또는 소정의 종류의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규율위반행위에 관하여 내려지는 처분과 고발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는 복무규율을 인가할 수 있다.

**(긴급사태)**

**제69조** 긴급사태를 이유로 경찰관 또는 왕국군대의 구성원을 도입하여 통상 교도소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이들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도소 소장을 원조하는 때에는 본 규칙 제2편의 직원(소장을 제외한다)이라는 문구에는 위에 따라 도입되는 경찰관 또는 왕국군대의 구성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제4장 교도소에 출입하는 자

**(금지물품)**

**제70조** 어떠한 사람도 허가 없이 현금, 의류, 음식물, 담배, 편지, 신문, 도서, 공작 도구, 규제약물, 총기, 폭발물, 무기 또는 그 밖의 모든 물품을 교도소 내에 반입, 투기 또는 보관하거나 교도소 외에 반송 또는 투기하거나 수용자에게 보내거나 또는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에 따라 반송, 투기 또는 보관된 물품은 소장이 몰수할 수 있다.

**(사람 및 차량의 제한)**

**제71조** ① 교도소에 출입하는 어떠한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정지시켜 검사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위의 검사은 은닉물을 발견함에 적당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도소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교도소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교도소 참관)**

**제72조** ① 어떠한 외부 사람에게도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도소의 참관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도소를 참관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스케치하거나 또는 수용자와 외부교통을 취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방문자)**

**제73조** ① 교도소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그 밖의 권한을 방해함이 없이 그리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는 권한을 방해함이 없이 법무부장관은 규율 및 질서유지 또는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자에 의한 교도소의 방문 또는 교도소 내 수용자 접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 위원 또는 치안판사의 교도소방문 또는 수용자 접견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제38조에 의거한 접견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접견 또는 제35조 제6항에 의거하여 방문자위원회가 허가하는 접견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방문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4조** 교도소에 대한 물자 및 노무의 공급계약에 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교도소 방문자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위와 같은 계약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자는 위원으로서

의 직을 퇴임하여야 한다

**(방문자위원회)**

**제75조** ① 1952년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교도소 방문자위원회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년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3년 미만의 기간 그 직에 재임한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위원은 위원으로서 임명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임명된 날로부터 12개월간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으로 요구하는바에 따라 연수를 수강하여야 한다.

1. 어느 특정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에 처음 임명된 위원 또는
2. 1년 이상 및 그 위원으로서의 공백기간 후에 방문자위원회에 재임명된 위원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 임명을 해제할 수 있다.

1. 그자가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그자가 제2항에 의거 수강하도록 요구받은 연수를 당해 항에 명시하는 기간의 종기까지 수강하지 아니한 때
3. 그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결하하는 때
4. 그자가 형사상의 유죄로 되거나 또는 나쁜 행동을 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5. 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과 당해 위원의 이익 사이에 사적, 재산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

④ 법무부장관은

1. 교도소 방문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거하여 임명을 해제하여야만한 행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2. 그 사안에 관련된 조사 및 위원의 임명을 해제하여야 하는 여부의 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완료하기까지 동안, 방문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자에게 직무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받는 행동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의 실시 및 위원의 임명을 해제할지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필요 기간 동안 그자의 위원으로서의 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위 정지를 받은 위원에 대해서는 정지기간 중 본 항 및 제1항, 제3항이 적용되는 외에 방문자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문자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고 그러한 자은 방문자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1. 방문자위원회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그 직에 재임하여야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2. 그 후에는 당해 방문자위원회의 임기 중 최초의 회의일 전에 방문자위원회와 협의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3.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직에 우발적인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문자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신속히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방문자위원회 위원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임명을 해제할 수 있다.

1. 그 위원이 위원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직원남용이 있었던 때

**(방문자위원회의 의사)**

**제76조** ①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는 월 1회 교도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위원회가 그 결의에서 명기하는 이유로 회의의 빈도를 적어도 충분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횟수를 12개월에 8회보다 적지 아니하는 빈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방문자위원회는 의사를 위하여 3인 이상의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방문자위원회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방문자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결원 또는 위원의 임명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방문자위원회의 일반적 직무)**

**제77조** ①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는 교도소의 건물 상황, 교도소의 관리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실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위원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조사를 명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방문자위원회는 소장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그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문자위원회는 그 알게 된 직권남용에 대하여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자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칙에 의거 권한을 행사하기 앞서 규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 직무)**

**제78조** ①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 및 동 위원회 위원은 수용자가 동 위원회 또는 동 위원에 대하여 신청을 원하는 어떠한 불복 또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수용자의 음식물을 빈번하게 검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방문자위원회는 그것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의 보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자의 구금상태가 그자의 심신의 건강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의 교도소 방문)**

**제79조** ①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 위원은 빈번하게 교도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방문자위원회는 순번을 정하여 동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에 적어도 1인의 위원이 교도소를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위원회 위원은 언제라도 교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모든 수용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수용자에게도 직원의 시선 내에서 그리고 대화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접견을 할 수 있다.

③ 방문자위원회 위원은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연차보고)**

**제80조** ① 교도소의 방문자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도소의 상황 및 관리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조언과 제안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특정 보고서에 관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내리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거한 보고서에서 기재대상범위가 되어야 하는 기간
2. 위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빈도
3. 위 보고서가 기재대상범위로 하는 기간의 종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작성기한

다만, 지시가 12개월 마다 1회라고 하는 빈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빈도에서의 보고서 작성 또는 배포를 방문자위원회에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때에는 본 항에 의거한 지시가 내려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내려지는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방문자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연차보고서를 제1항에 의거 법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보고서는 위 일시를 종기로 하는 12개월의 기간을 또는 당해 기간 동안에 방문자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 내에 그 설치 이후의 기간을 각각 기재대상범위로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소장에 의한 위임)**

**제81조** 교도소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규칙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한 및 직무를 교도소의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도소의 외부위탁)**

**제82조** ① 법무부장관이 1991년 형사재판법(이하 본 조에서 "1991년법"이라 한다) 제84조에 의거하여 어떤 교도소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본 규칙은 다음에 열거하는 바꿔읽기에 따라 당해 교도소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문구에는 1991년법 제89조 제1항에 의거 자격을 인정받아 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호원(a prisoner custody officer)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
2. 본 규칙에서 소장(a governor)이라는 문구에는 1991년법 제85조 제1항 (a)호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한 관리책임자(a director)를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a)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 및 제81조에 있어서는 소장이라는 문구에는 1991년법 제85조 제1항 (b)호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감독관(controller)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b) 제62조 제1항, 제66조 및 제77조에 있어서는 소장이라는 문구에는 관리책임자 및 감독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
3. 제68조는 1991년법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아 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호원에 관해서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② 관리책임자가 긴급사태인 경우 1991년법 제85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권한(집단처우로부터 제외, 일시적 구금 및 보호장비)을 행사하는 때는 관리책임자는 즉시 그 취지를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도소의 일부 구획의 외부위탁)**

**제83조** 법무부장관이 1991년 형사재판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어떤 교도소의 일부 구획에 대한 운영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구획과 나머지 구획과는 본 규칙 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6장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교도소인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된다.

**(직영교도소에서 업무의 외부위탁)**

**제84조** ① 법무부장관이 1991년 형사재판법(이하 본 조에서 "1991년법"이라 한다) 제88A조에 의거하여 직영교도소의 어떠한 업무를 1991년법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가받은 계호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규칙의 직원이라는 문구에는 위 인가를 받아 당해 교도소의 목적 또는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외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호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8조의 직원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③ 본 조에서 "직영교도소(directly managed prison)"란 1991년법 제88조A조 제5항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폐지 및 유보)**

**제85조** 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규칙 부록에 열거하는 모든 규칙은 본 규칙의 제정에 의해 폐지된다.

② 1978년 해석법(the Interpretation Act, 1978년)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본 규칙의 시행 전에 1964년 교도소규칙 제47조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동 규칙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위의 위반행위로 당해 수용자를 고발하고, 위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율상의 절차를 계속하고 그리고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장은 징벌을 과할 수 있다.

③ 1978년 해석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본 조에 따라 폐지되는 모든 규칙의 규정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보되는 규칙에 의거하여 선고 또는 과하여지거나 또는 본 조에 의해 폐지되는 모든 규칙에 의거하여 선고되거나 또는 과하여진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해 취급된, 규율위반행위에 관련한 복역일수 연장처분 또는 그밖의 징벌 또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본 규칙 중의 대응규정에 의거하여 선고 또는 과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 The Prison Rules 1999

Made 10th March 1999

Laid before Parliament 11th March 1999

Coming into force 1st April 1999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upon me by section 47 of the Prison Act 1952(1), I hereby make the following Rules:

## PART I Citation and commencement

**Citation and commencement**

1. These Rules may be cited as the Prison Rules 1999 and shall come into force on 1st April 1999.

**Interpretation**

2. (1) In these Rules, where the context so admits, the expression

"controlled drug" means any drug which is a controlled drug for the purposes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1(1);

"convicted prisoner" mea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7(3), a prisoner who has been convicted or found guilty of an offence or committed or attached for contempt of court or for failing to do or abstain from doing anything required to be done or left undone, and the expression "unconvicted prisone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governor" includes an officer for the time being in charge of a prison;

"legal adviser" means, in relation to a prisoner, his counsel or solicitor, and includes a clerk acting on behalf of his solicitor;

"officer" means an officer of a prison and, for the purposes of rule 40(2), includes a prisoner custody officer who is authorised to perform escort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9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2);

"prison minister" means, in relation to a prison, a minister appointed to that prison under section 10 of the Prison Act 1952;

"short-term prisoner" and "long-term prisoner" have the meanings assigned to them by section 33(5)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as extended by sections 43(1) and 45(1) of that Act.

(2) In these Rules

(a) a reference to an award of additional days means additional days awarded under these Rules by virtue of section 42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b) a reference to the Church of England includes a reference to the Church in Wales; and

(c) a reference to a numbered rule is, unless otherwise stated, a reference to the rule of that number in these Rules and a reference in a rule to a numbered paragraph is, unless otherwise stated, a reference to the paragraph of that number in that rule.

---

1) http //www legislation gov uk/uksi/1999/728/contents/made(2012 10 27 다운로드)

# PART II PRISONERS GENERAL

**Purpose of prison training and treatment**

3. The purpose of the training and treatment of convicted prisoners shall be to encourage and assist them to lead a good and useful life.

**Outside contacts**

4. (1)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maintenance of such relationships between a prisoner and his family as are desirable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2) A prisoner shall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establish and maintain such relations with persons and agencies outside prison as may,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best promote the interests of his family and his own social rehabilitation.

**After care**

5. From the beginning of a prisoner's sentenc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in consultation with the appropriate after-care organisation, to the prisoner's future and the assistance to be given him on and after his release.

**Maintenance of order and discipline**

6. (1) Order and discipline shall be maintained with firmness, but with no more restriction than is required for safe custody and well ordered community life.

(2) In the control of prisoners, officers shall seek to influence them through their own example and leadership, and to enlist their willing co-operation.

(3) At all times the treatment of prisoners shall be such as to encourage their self-respect and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but a prisoner shall not be employed in any disciplinary capacity.

**Classification of prisoners**

7. (1) Prisoners shall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having regard to their age, temperament and record and with a view to maintaining good order and facilitating training and, in the case of convicted prisoners, of furthering the purpose of their training and treatment as provided by rule 3.

(2) Unconvicted prisoners:

(a) shall be kept out of contact with convicted prisoners as far as the governor considers it can reasonably be done, unless and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consented to share residential accommodation or participate in any activity with convicted prisoners; and

(b) shall under no circumstances be required to share a cell with a convicted prisoner.

(3) Prisoners committed or attached for contempt of court, or for failing to do or abstain from doing anything required to be done or left undone:

(a) shall be treated as a separate class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b)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rule, may be permitted to associate with any other class of prisoners if they are willing to do so; and

(c) shall have the same privileges as an unconvicted prisoner under rules 20(5), 23(1) and 35(1).

(4) Nothing in this rule shall require a prisoner to be deprived unduly of the society of other persons.

**Privileges**

8.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t every prison systems of privileges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appropriate to the classes of prisoners there, which shall include arrangements under which money earned by prisoners in prison may be spent by them within the prison

(2) Systems of privileges approved under paragraph (1) may include arrangements under which prisoners may be allowed time outside their cells and in association with one another, in excess of the minimum time which,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ese Rules apart from this rule, is otherwise allowed to prisoners at the prison for this purpose.

(3) Systems of privileges approved under paragraph (1) may include arrangements under which privileges may be granted to prisoners only in so far as they have met, and for so long as they continue to meet, specified standards in their behaviour and their performance in work or other activities.

(4) Systems of privileges which include arrangements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include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y of the privileges concerned shall be granted, or shall continue to be granted, to a prisoner; such procedures shall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prisoner be given reasons for any decision adverse to him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means by which he may appeal against it.

(5) Nothing in this rule shall be taken to confer on a prisoner any entitlement to any privilege or to affect any provision in these Rules other than this rule as a result of which any privilege may be forfeited or otherwise lost or a prisoner deprived of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Temporary release**

9.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rule, release temporarily a prisoner to whom this rule applies.

(2) A prisoner may be released under this rule for any period or periods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3) A prisoner may only be released under this rule:

(a) on compassionate grounds or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medical treatment;

(b) to engage in employment or voluntary work;

(c) to receive instruction or training which cannot reasonably be provided in the prison;

(d) to enable him to participate in any proceedings before any court, tribunal or inquiry;

(e) to enable him to consult with his legal adviser in circumstances where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for the consultation to take place in the prison;

(f) to assist any police officer in any enquiries;

(g) to facilitate the prisoner's transfer between prisons;

(h) to assist him in maintaining family ties or in his transition from prison life to freedom; or

(i) to enable him to make a visit in the locality of the prison, as a privilege under rule 8.

(4) A prisoner shall not be released under this rule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there would not be an unacceptable risk of his committing offences whilst released or otherwise failing to comply with any condition upon which he is released.

(5)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release under this rule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f, having regard to:

(a) the period or proportion of his sentence which the prisoner has served or, in a case where paragraph (10) does not apply to require all the sentences he is serving to be treated as a single term, the period or proportion of any such sentence he has served; and

(b) the frequency with which the prisoner has been granted temporary release under this rule,

the Secretary of State is of the opinion that the release of the prisoner would be likely to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6) If a prisoner has been temporarily released under this rule during the relevant period and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whilst at large following that release, he shall not be released under this rule unless his releas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is conviction, would not,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be likely to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7)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6), "the relevant period":

(a) in the case of a prisoner serving a determinate sentence of imprisonment, is the period he has served in respect of that sentence, unless, notwithstanding paragraph (10), the sentences he is serving do not fall to be treated as a single term, in which case it is the period since he was last released in relation to one of those sentences under Part II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the 1991 Act")(1);

(b) in the case of a prisoner serving an indeterminate sentence of imprisonment, is, if the prisoner has previously been released on licence under Part II of the Crime (Sentences) Act 1997(2) or Part II of the 1991 Act, the period since the date of his last recall to prison in respect of that sentence or, where the prisoner has not been so released, the period he has served in respect of that sentence; or

(c) in the case of a prisoner detained in prison for any other reason, is the period for which the prisoner has been detained for that reason;

save that where a prisoner falls within two or more of sub-paragraphs (a) to (c), the "relevant period", in the case of that prisoner, shall be determined by whichever of the applicable sub-paragraphs produces the longer period

(8) A prisoner released under this rule may be recalled to prison at any time whether the conditions of his release have been broken or not.

(9) This rule applies to prisoners other than persons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to be sentenced or otherwise dealt with before or by any Crown Court or remanded in custody by any court.

(10) For the purposes of any reference in this rule to a prisoner's sentence, consecutive terms and terms which are wholly or partly concurrent shall be treated as a single term if they would fall to be treated as a single term for the purposes of any reference to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a person has been sentenced in Part II of the 1991 Act.

(11) In this rule:

(a) any reference to a sentence of imprisonment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ny sentence to detention or custody; and

(b) any reference to release on licence or otherwise under Part II of the 1991 Act includes any release on licence under any legislation providing for early release on licence.

**Information to prisoners**

10. (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reception into prison, and in any case within 24 hours, with information in writing about thos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other matters which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know, including earnings and privileges, and the proper means of making requests and complaints.

(2) In the case of a prisoner aged less than 18, or a prisoner aged 18 or over who cannot read or appears to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so provided, the governor, or an officer deputed by him, shall so explain it to him that he can understand his rights and obligations.

(3) A copy of these Rules shall be made available to any prisoner who requests it.

**Requests and complaints**

11. (1) A request or complaint to the governor or board of visitors relating to a prisoner's imprisonment shall be made orally or in writing by the prisoner.

(2) On every day the governor shall hear any requests and complaints that are made to him under paragraph (1).

(3) A written request or complaint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in confidence.

## WOMEN PRISONERS

**Women prisoners**

12.(1) Women prisoners shall normally be kept separate from male prisoners.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subject to any conditions he thinks fit, permit a woman prisoner to have her baby with her in prison, and everything necessary for the baby's maintenance and care may be provided there.

## RELIGION

**Religious denomination**

13. A prisoner shall be treated as being of the religious denomination stated in the record made in pursuance of section 10(5) of the Prison Act 1952(3) but the governor may, in a proper case and after due enquiry, direct that record to be amended.

**Special duties of chaplains and prison ministers**

14. (1) The chaplain or a prison minister of a prison shall

(a) interview every prisoner of his denomination individually soon after the prisoner's reception into that prison and shortly before his release; and

(b) if no other arrangements are made, read the burial service at the funeral of any prisoner of his denomination who dies in that prison.

(2) The chaplain shall visit daily all prisoners belonging to the Church of England who are sick, under restraint or undergoing cellular confinement; and a prison minister shall do the same, as far as he reasonably can, for prisoners of his denomination.

(3) The chaplain shall visit any prisoner not of the Church of England who is sick, under restraint or undergoing cellular confinement, and is not regularly visited by a minister of his denomination, if the prisoner is willing.

**Regular visits by ministers of religion**

15. (1) The chaplain shall visit the prisoners belonging to the Church of England.

(2) A prison minister shall visit the prisoners of his denomination as regularly as he reasonably can.

(3) Where a prisoner belongs to a denomination for which no prison minister has been appointed, the governor shall do what he reasonably can, if so requested by the prisoner, to arrange for him to be visited regularly by a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Religious services**

16. (1) The chaplain shall conduct Divine Service for prisoners belonging to the Church of England at least once every Sunday, Christmas Day and Good Friday, and such celebrations of Holy Communion and weekday services as may be arranged.

(2) Prison ministers shall conduct Divine Service for prisoners of their denominations at such times as may be arranged.

**Substitute for chaplain or prison minister**

17. (1) A person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may act for the chaplain in his absence.

(2) A prison minister may, with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appoint a substitute to act for him in his absence.

**Sunday work**

18. Arrangements shall be made so as not to require prison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to do any unnecessary work on Sunday, Christmas Day or Good Friday, or prisoners of other religions to do any such work on their recognised days of religious observance.

**Religious books**

19. There shall, so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be available for the personal use of every prisoner such religious books recognised by his denomination as are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use in prisons.

## MEDICAL ATTENTION

**Medical attendance**

20. (1)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shall have the care of the health, mental and physical, of the prisoners in that prison.

(2) Every request by a prisoner to see the medical officer shall be recorded by the officer to whom it is made and promptly passed on to the medical officer.

(3) The medical officer may consult a medical practitioner who is a fully registered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Medical Act 1983(4). Such a practitioner may work within the prison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medical officer.

(4) The medical officer shall consult another medical practitioner, if time permits, before performing any serious operation.

(5) If an unconvicted prisoner desires the attendanc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or dentist, and will pay any expense incurred, the governor shall, if he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the request and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allow him to be visited and treated by that

practitioner or dentist in consultation with the medical officer.

(6) Subject to any directions given in the particular case by the Secretary of State,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selected by or on behalf of a prisoner who is a party to any legal proceedings shall be afforded reasonable facilities for examining him in connection with the proceedings, and may do so out of hearing but in the sight of an officer.

**Special illnesses and conditions**

21 (1)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hall report to the governor on the case of any prisoner whose health is likely to be injurious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any conditions of imprisonment. The governor shall send the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without delay, together with his own recommendations.

(2)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hall pay special attention to any prisoner whose mental condition appears to require it, and make any special arrangements which appear necessary for his supervision or care

**Notification of illness or death**

22. (1) If a prisoner dies, becomes seriously ill, sustains any severe injury or is removed to hospital on account of mental disorder, the governor shall, if he knows his or her address, at once inform the prisoner's spouse or next of kin, and also any person who the prisoner may reasonably have asked should be informed.

(2) If a prisoner dies, the governor shall give notice immediately to the coroner having jurisdiction, to the board of visitors and to the Secretary of State.

## PHYSICAL WELFARE AND WORK.

**Clothing**

23. (1) An unconvicted prisoner may wear clothing of his own if and in so far as it is suitable, tidy and clean, and shall be permitted to arrange for the supply to him from outside prison of sufficient clean clothing:

Provided that, subject to rule 40(3):

(a) he may be required, if and for so long a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re is a serious risk of his attempting to escape, to wear items of clothing which are distinctive by virtue of being specially marked or coloured or both, and

(b) he may be required, if and for so long as the Secretary of State is of the opinion that he would, if he escaped, be highly dangerous to the public or the police or the security of the State, to wear clothing provided under this rule.

(2) Subject to paragraph (1) above, the provisions of this rule shall apply to an unconvicted prisoner as to a convicted prisoner.

(3) A convicted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clothing adequate for warmth and health in accordance with a scale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4) The clothing provided under this rule shall include suitable protective clothing for use at work, where this is needed.

(5) Subject to rule 40(3), a convicted prisoner shall wear clothing provided under this rule and no other, except on the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or as a privilege under rule 8.

(6) A prisoner may be provided, where necessary, with suitable and adequate clothing on his release.

**Food**

24. (1)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no prisoner shall be allowed, except as authorised by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to have any food other than that ordinarily provided.

(2) The food provided shall be wholesome, nutritious, well prepared and served, reasonably varied and sufficient in quantity.

(3) The medical office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or any person deemed by the governor to be competent, shall from time to time inspect the food both before and after it is cooked and shall report any deficiency or defect to the governor

(4) In this rule "food" includes drink.

**Alcohol and tobacco**

25. (1) No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have any intoxicating liquor except under a written order of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pecifying the quantity and the name of the prisoner.

(2) No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moke or to have any tobacco except as a privilege under rule 8 and in accordance with any orders of the governor.

**Sleeping accommodation**

26. (1) No room or cell shall be used as sleeping accommodation for a prisoner unless it has been certified in the manner required by section 14 of the Prison Act 1952 in the case of a cell used for the confinement of a prisoner.

(2) A certificate given under that section or this rule shall specify the maximum number of prisoners who may sleep or be confined at one time in the room or cell to which it relates, and the number so specified shall not be exceeded without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Beds and bedding**

27 Each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with separate bedding adequate for warmth and health

**Hygiene**

28. (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toilet articles necessary for his health and cleanliness, which shall be replaced as necessary.

(2) Every prisoner shall be required to wash at proper times, have a hot bath or shower on reception and thereafter at least once a week.

(3) A prisoner's hair shall not be cut without his consent.

**Physical education**

29. (1) If circumstances reasonably permit, a prisoner aged 21 years or over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for at least one hour a week.

(2)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extent circumstances reasonably permit to a prisoner who is

under 21 years of age—

(a)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physical education of such a prisoner within the normal working week, as well as evening and weekend physical recreation; the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will be such as foster personal responsibility and the prisoner's interests and skills and encourage him to make good use of his leisure on release; and .

(b) arrangements shall be made for each such prisoner who is a convicted prisoner t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for two hours a week on average.

(3) In the case of a prisoner with a need for remedial physical activity, appropriate facilities will be provided.

(4)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hall decide upon the fitness of every prisoner for physical education and remedial physical activity and may excuse a prisoner from, or modify, any such education or activity on medical grounds.

**Time in the open air**

30. If the weather permits and subject to the need to maintain good order and discipline, a prisoner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pend time in the open air at least once every day, for such period as may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Work**

31. (1) A convicted prisoner shall be required to do useful work for not more than 10 hours a day, and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allow prisoners to work, where possible, outside the cells and in association with one another.

(2)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may excuse a prisoner from work on medical grounds, and no prisoner shall be set to do work which is not of a class for which he has been passed by the medical officer or by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as being fit.

(3) No prisoner shall be set to do work of a kind not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4) No prisoner shall work in the service of another prisoner or an officer, or for the private benefit of any person,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State.

(5) An unconvicted prisoner shall be permitted, if he wishes, to work as if he were a convicted prisoner.

(6) Prisoners may be paid for their work at rates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cases.

## EDUCATION AND LIBRARY

**Education**

32. (1) Every prisoner able to profit from the education facilities provided at a prison shall be encouraged to do so.

(2) Educational classes shall be arranged at every prison and,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reasonable facilities shall be afforded to prisoners who wish to do so to improve their education by training by distance learning, private study and recreational classes, in their spare time.

(3)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soner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if necessary they shall be taught within the hours normally allotted to work.

(4) In the case of a prisoner of compulsory school age as defined in section 8 of the Education Act 1996(5), arrangements shall be made for his participation in education or training courses for at least 15 hours a week within the normal working week.

**Library**

33. A library shall be provided in every prison and,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have library books and to exchange them.

##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generally**

34.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a view to securing discipline and good order 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the interests of any persons, impose restrictions, either generally or in a particular case, upon the letters or other communications to be permitted between a prisoner and other persons.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paragraph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quire that any visit, or class of visits, shall be held in facilities which include special features restricting or preventing physical contact between a prisoner and a visitor.

(3) Without prejudice to sections 6 and 9 of the Prison Act 1952(1), and except as provided by these Rules, a prisoner shall not be permitted to communicate with any outside person, or that person with him, without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or as a privilege under rule 8.

(4) Except as provided by these Rules, every letter or other communication to or from a prisoner may be read, listened to, logged, recorded or examined by the governor or an officer deputed by him, and the governor may, at his discretion, stop any letter or other communication on the ground that its contents are objectionable or that it is of inordinate length.

(5) Every visit to a prisoner shall take place within the sight of an officer,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6) Except as provided by these Rules, every visit to a prisoner shall take place within the hearing of an officer,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7) The Secretary of State may give directions, generally or in relation to any visit or class of visits, concerning the day and times when prisoners may be visited

(8) In this rule:

"communications" includes communications during or by means of visits or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system or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has the meaning assigned by paragraph 1 of Schedule 2 to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2).

**Personal letters and visits**

35. (1) Subject to paragraph (8), an unconvicted prisoner may send and receive as many letters and may receive as many visits as he wishes within such limits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either generally or in a particular case.

(2) Subject to paragraph (8), a convicted prisoner shall be entitled

(a) to send and to receive a letter on his reception into a prison and thereafter once a week; and .

(b) to receive a visit twice in every period of four weeks, but only once in every such period if the Secretary of State so directs.

(3) The governor may allow a prisoner an additional letter or visit as a privilege under rule 8 or where necessary for his welfare or that of his family.

(4) The governor may allow a prisoner entitled to a visit to send and to receive a letter instead.

(5) The governor may defer the right of a prisoner to a visit until the expiration of any period of cellular confinement.

(6) The board of visitors may allow a prisoner an additional letter or visit in special circumstances, and may direct that a visit may extend beyond the normal duration.

(7)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low additional letters and visits in relation to any prisoner or class of prisoners.

(8) A prisoner shall not be entitled under this rule to receive a visit from:

(a) any person, whether or not a relative or friend, during any period of time that person is the subject of a prohibition imposed under rule 73; or

(b) any other person, other than a relative or friend, except with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9) Any letter or visit under the succeeding provisions of these Rules shall not be counted as a letter or visit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Police interviews**

36. A police officer may, on production of an order issued by or on behalf of a chief officer of police, interview any prisoner willing to see him.

**Securing release**

37. A person detained in prison in default of finding a surety, or of payment of a sum of money, may communicate with and be visited at any reasonable time on a weekday by any relative or friend to arrange for a surety or payment in order to secure his release from prison

**Legal advisers**

38. (1) The legal adviser of a prisoner in any legal proceedings, civil or criminal, to which the prisoner is a party shall be afforded reasonable facilities for interviewing him in connection with those proceedings, and may do so out of hearing but in the sight of an officer.

(2) A prisoner's legal adviser may, subject to any directions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interview the prisoner in connection with any other legal business out of hearing but in the sight of an officer.

**Correspondence with legal advisers and courts**

39. (1) A prisoner may correspond with his legal adviser and any court and such correspondence may only be opened, read or stopped by the govern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ule

(2) Correspondence to which this rule applies may be opened if the governor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it contains an illicit enclosure and any such enclosures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provision of these Rules.

(3) Correspondence to which this rule applies may be opened, read and stopped if the governor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its contents endanger prison security or the safety of others or are otherwise of a criminal nature.

(4) A prisoner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present when any correspondence to which this rule applies is opened and shall be informed if it or any enclosure is to be read or stopped.

(5) A prisoner shall on request be provided with any writing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6) In this rule, "court" includes 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illicit enclosure" includes any article possession of which has not been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any correspondence to or from a person other than the prisoner concerned, his legal adviser or a court.

## REMOVAL, SEARCH, RECORD AND PROPERTY.

**Custody outside prison**

40. (1) A person being taken to or from a prison in custody shall be exposed as little as possible to public observation, and proper care shall be taken to protect him from curiosity and insult.

(2) A prisoner required to be taken in custody anywhere outside a prison shall be kept in the custody of an officer appointed or a police officer.

(3) A prisoner required to be taken in custody to any court shall, when he appears before the court, wear his own clothing or ordinary civilian clothing provided by the governor.

**Search**

41. (1) Every prisoner shall be searched when taken into custody by an officer, on his reception into a prison and subsequently as the governor thinks necessary or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2) A prisoner shall be searched in as seemly a manner as is consistent with discovering anything concealed.

(3) No prisoner shall be stripped and searched in the sight of another prisoner, or in the sight of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Record and photograph**

42. (1) A personal record of each prisoner shall be prepared and maintained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2) Every prisoner may be photographed on reception and subsequently, but no copy of the photograph shall be given to any person not authorised to receive it.

**Prisoners' property**

43. (1)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an unconvicted prisoner may have supplied to him at his expense and retain for his own use books, newspapers, writing materials and other means of occupation, except any that appears objectionable to the board of visitors or, pending consideration by them, to the governor.

(2) Anything, other than cash, which a prisoner has at a prison and which he is not allowed to retain for his own use shall be taken into the governor's custody. An inventory of a prisoner's property shall be kept, and he shall be required to sign it, after having a proper opportunity to see that it is correct.

(3) Any cash which a prisoner has at a prison shall be paid into an account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or and the prisoner shall be credited with the amount in the books of the prison

(4) Any article belonging to a prisoner which remains unclaimed for a period of more than 3 years after he leaves prison, or dies, may be sold or otherwise disposed of; and the net proceeds of any sale shall be paid to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for its general purposes.

(5) The governor may confiscate any unauthorised article found in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after his reception into prison, or concealed or deposited anywhere within a prison.

**Money and articles received by post**

44. (1) Any money or other article (other than a letter or other communication) sent to a convicted prisoner through the post offic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ule, and the prisoner shall be informed of the manner in which it is dealt with.

(2) Any cash shall,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or, be

(a)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rule 43(3);

(b) returned to the sender; or

(c) in a case where the sender's name and address are not known, paid to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for its general purposes:

Provided that in relation to a prisoner committed to prison in default of payment of any sum of money, the prisoner shall be informed of the receipt of the cash and, unless he objects to its being so applied, it shall be applied in or towards the satisfaction of the amount due from him.

(3) Any security for money shall,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or, be—

(a) delivered to the prisoner or placed with his property at the prison;

(b) returned to the sender; or .

(c) encashed and the cash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4) Any other article to which this rule applies shall,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or, be

(a) delivered to the prisoner or placed with his property at the prison;

(b) returned to the sender; or

(c) in a case where the sender's name and address are not known or the article is of such a nature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return it, sold or otherwise disposed of, and the net proceeds of any sale appl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 SPECIAL CONTROL, SUPERVISION AND RESTRAINT AND DRUG TESTING.

**Removal from association**

45. (1) Where it appears desirable, for the maintenance of good order or discipline or in his own interests, that a prisoner should not associate with other prisoners, either generally or for particular purposes, the governor may arrange for the prisoner's removal from association accordingly.

(2) A prisoner shall not be removed under this rule for a period of more than 3 days without the authority of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or of the Secretary of State. An authority given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but may be renewed from month to month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person aged less than 21 years who is detained in prison such an authority shall b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4 days, but may be renewed from time to time for a like period.

(3) The governor may arrange at his discretion for such a prisoner as aforesaid to resume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and shall do so if in any case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o advises on medical grounds.

(4) This rule shall not apply to a prisoner the subject of a direction given under rule 46(1).

**Close supervision centres**

46. (1) Where it appears desirable, for the maintenance of good order or discipline or to ensure the safety of officers, prisoners or any other person, that a prisoner should not associate with other prisoners, either generally or for particular purpose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the prisoner's removal from association accordingly and his placement in a close supervision centre of a prison.

(2) A direction give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but may be renewed from time to time for a like period.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that such a prisoner as aforesaid shall resume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either within a close supervision centre or elsewhere.

(4) In exercising any discretion under this rule,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take account of any relevant medical considerations which are known to him.

**Use of force**

47. (1) An officer in dealing with a prisoner shall not use force unnecessarily and, when the application of force to a prisoner is necessary, no more force than is necessary shall be used.

(2) No officer shall act deliberately in a manner calculated to provoke a prisoner.

**Temporary confinement**

48. (1) The governor may order a refractory or violent prisoner to be confined temporarily in a special cell, but a prisoner shall not be so confined as a punishment, or after he has ceased to be refractory or violent.

(2) A prisoner shall not be confined in a special cell for longer than 24 hours without a direction in writing given by a member of a board of visitors or by an officer of the Secretary of State (not being an officer of a prison). Such a direction shall state the grounds for the confinement and the time during which it may continue.

**Restraints**

49.(1) The governor may order a prisoner to be put under restraint where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damaging property or creating a disturbance.

(2) Notice of such an order shall be given without delay to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and to the medical officer or to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3) On receipt of the notice, the medical officer, or the medical practitioner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inform the governor whether there are any medical reasons why the prisoner should not be put under restraint. The governor shall give effect to any recommendation which may be made under this paragraph.

(4) A prisoner shall not be kept under restraint longer than necessary, nor shall he be so kept for longer than 24 hours without a direction in writing given by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or by an officer of the Secretary of State (not being an officer of a prison) Such a direction shall state the grounds for the restraint and the time during which it may continue.

(5)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restraint under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rule shall be forthwith recorded.

(6) Except as provided by this rule no prisoner shall be put under restraint otherwise than for safe custody during removal, or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or of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No prisoner shall be put under restraint as a punishment.

(7) Any means of restraint shall be of a pattern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shall be used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Compulsory testing for controlled drugs**

50. (1) This rule applies where an officer, acting under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16A of the Prison Act 1952(8) (power to test prisoners for drugs), requires a prisoner to provide a sample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he has any controlled drug in his body.

(2) In this rule "sample" means a sample of urine or any other description of sample specified in the authorisation by the governor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6A of the Prison Act 1952.

(3) When requiring a prisoner to provide a sample, an officer shall,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inform the prisoner:

(a) that he is being required to provide a samp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6A of the Prison Act 1952; and,

(b) that a refusal to provide a sample may lead to disciplinary proceedings being brought against him.

(4) An officer shall require a prisoner to provide a fresh sample, free from any adulteration.

(5) An officer requiring a sample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and give the prisoner such instructions for its provision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its adulteration or falsification.

(6) A prisoner who is required to provide a sample may be kept apart from other prisoners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hour to enable arrangements to be made for the provision of the sample.

(7) A prisoner who is unable to provide a sample of urine when required to do so may be kept apart from other prisoners until he has provided the required sample, save that a prisoner may not be kept apart under this paragraph for a period of more than 5 hours.

(8) A prisoner required to provide a sample of urine shall be afforded such degree of privacy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the sample as may be compatible with the need to prevent or detect any adulteration or falsification of the sample; in particular a prisoner shall not be required to provide such a sample in the sight of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 OFFENCES AGAINST DISCIPLINE

**Offences against discipline**

51. A prisoner is guilty of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if he

(1) commits any assault;

(2) detains any person against his will;

(3) denies access to any part of the prison to any officer or any person (other than a prisoner) who is at the prison for the purpose of working there;

(4) fights with any person;

(5) intentionally endangers the health or personal safety of others or, by his conduct, is reckless whether such health or personal safety is endangered;

(6) intentionally obstructs an officer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or any person (other than a prisoner) who is at the prison for the purpose of working there, in the performance of his work;
(7) escapes or absconds from prison or from legal custody,
(8) fail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 upon which he is temporarily released under rule 9;
(9) administers a controlled drug to himself or fails to prevent the administration of a controlled drug to him by another person (but subject to rule 52);
(10) is intoxicated as a consequence of knowingly consuming any alcoholic beverage;
(11) knowingly consumes any alcoholic beverage other than that provided to him pursuant to a written order under rule 25(1);
(12) has in his possession
(a) any unauthorised article, or
(b) a greater quantity of any article than he is authorised to have;
(13) sells or delivers to any person any unauthorised article;
(14) sells or, without permission, delivers to any person any article which he is allowed to have only for his own use;
(15) takes improperly any article belonging to another person or to a prison;
(16) intentionally or recklessly sets fire to any part of a prison or any other property, whether or not his own;
(17) destroys or damages any part of a prison or any other property, other than his own;
(18) absents himself from any place he is required to be or is present at any place where he is not authorised to be;
(19) is disrespectful to any officer, or any person (other than a prisoner) who is at the prison for the purpose of working there, or any person visiting a prison;
(20) uses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
(21) intentionally fails to work properly or, being required to work, refuses to do so;
(22) disobeys any lawful order;
(23) disobeys or fails to comply with any rule or regulation applying to him;
(24) receives any controlled drug, or, without the consent of an officer, any other article, during the course of a visit (not being an interview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38);
(25) (a) attempts to commit,
(b) incites another prisoner to commit, or
(c) assists another prisoner to commit or to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foregoing offences.

**Defences to rule 51(9)**

52. It shall be a defence for a prisoner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rule 51(9) to show that:
(a) the controlled drug had been, prior to its administration, lawfully in his possession for his use or was administered to him in the course of a lawful supply of the drug to him by another person;
(b) the controlled drug was administered by or to him in circumstances in which he did not know and had no reason to suspect that such a drug was being administered; or
(c) the controlled drug was administered by or to him under duress or to him without his consent in circumstances where it was not reasonable for him to have resisted

**Disciplinary charges**

53 (1) Where a prisoner is to be charged with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the charge shall be laid as soon as possible and,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in 48 hours of the discovery of the offence.

(2) Every charge shall be inquired into by the governor.

(3) Every charge shall be first inquired into not later,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n the next day, not being a Sunday or public holiday, after it is laid.

(4) A prisoner who is to be charged with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may be kept apart from other prisoners pending the governor's first inquiry.

**Rights of prisoners charged**

54. (1) Where a prisoner is charged with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he shall be informed of the charge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before the time when it is inquired into by the governor

(2) At an inquiry into a charge against a prisoner he shall be given a full opportunity of hearing what is alleged against him and of presenting his own case.

**Governor's punishments**

55. (1) If he finds a prisoner guilty of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the governor may, subject to paragraph (2) and to rule 57, impo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aution;

(b) forfeiture for a period not exceeding 42 days of any of the privileges under rule 8;

(c) exclusion from associated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21 days;

(d) stoppage of or deduction from earnings for a period not exceeding 84 days and of an amount not exceeding 42 days earnings;

(e) cellular confine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14 days;

(f) in the case of a short-term or long-term prisoner, an award of additional days not exceeding 42 days;

(g) in the case of a prisoner otherwise entitled to them, forfeiture for any period of the right, under rule 43(1), to have the articles there mentioned.

(2) An award of a caution shall 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unishment for the same charge.

(3) If a prisoner is found guilty of more than one charge arising out of an incident, punishments under this rule may be ordered to run consecutively but, in the case of an award of additional days, the total period added shall not exceed 42 days and, in the case of an award of cellular confinement, the total period shall not exceed 14 days.

(4) In imposing a punishment under this rule, the governor shall take into account any guidelin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issue as to the level of punishment that should normally be imposed for a particular offence against discipline.

**Forfeiture of remission to be treated as an award of additional days**

56. (1) In this rule, "existing prisoner" and "existing licensee" have the meanings assigned to them by paragraph 8(1) of Schedule 12 to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9).

(2) In relation to any existing prisoner or existing licensee who has forfeited any remission of his sentence,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shall apply as if he had been awarded such number of additional days as equals the numbers of days of remission which he has forfeited.

**Offences committed by young persons**

57. (1) In the case of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committed by an inmate who was under the age of 21 when the offence was committed (other than an offender in relation to whom the Secretary of State has given a direction under section 13(1)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82(2) that he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rule 55 shall have effect, but

(a) the maximum period of forfeiture of privileges under rule 8 shall be 21 days;

(b) the maximum period of stoppage of or deduction from earnings shall be 42 days and the maximum amount shall be 21 days;

(c) the maximum period of cellular confinement shall be 7 days.

(2) In the case of an inmate who has been sentenced to a term of youth custody or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and by virtue of a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13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82, is treated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at term, any punishment imposed on him for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before the said direction was given shall, if it has not been exhausted or remitted, continue to have effect as if made pursuant to rule 55.

**Cellular confinement**

58. When it is proposed to impose a punishment of cellular confinement, the medical officer, or a medical practitioner such as is mentioned in rule 20(3), shall inform the governor whether there are any medical reasons why the prisoner should not be so dealt with. The governor shall give effect to any recommendation which may be made under this rule.

**Prospective award of additional days**

59. (1) Subject to paragraph (2), where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is committed by a prisoner who is detained only on remand, additional days may be awarded notwithstanding that the prisoner has not (or had not at the time of the offence) been sentenced.

(2) An award of additional days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effect only if the prisoner in question subsequently becomes a short-term or long-term prisoner whose sentence is reduced, under section 67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3), by a period which includes the time when the offence against discipline was committed.

**Suspended punishments**

60. (1) Subject to any directions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power to impose a disciplinary punishment (other than a caution) shall include power to direct that the punishment is not to take effect unless, during a period specified in the direction (not being more tha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rection), the prisoner commits another offence against discipline and a direction is given under paragraph (2).

(2) Where a prisoner commits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during the period specified in a direction given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dealing with that offence may

(a) direct that the suspended punishment shall take effect;

(b) reduce the period or amount of the suspended punishment and direct that it shall take effect as so reduced;

(c) vary the original direction by substituting for the period specified a period expiring not later tha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variation; or

(d) give no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suspended punishment.

**Remission and mitigation of punishments and quashing of findings of guilt**

61.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quash any finding of guilt and may remit any punishment or mitigate it either by reducing it or by substituting another award which is, in his opinion, less severe.

(2) Subject to any directions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governor may remit or mitigate any punishment imposed by a governor or the board of visitors.

## PART III OFFICERS OR PRISONS

**General duty of officers**

62. (1)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officer to conform to these Rules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rison, to assist and support the governor in their maintenance and to obey his lawful instructions.

(2) An officer shall inform the governor promptly of any abuse or impropriety which comes to his knowledge.

**Gratuities forbidden**

63. No officer shall receive any unauthorised fee, gratuity or other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his office.

**Search of officers**

64. An officer shall submit himself to be searched in the prison if the governor so directs. Any such search shall be conducted in as seemly a manner as is consistent with discovering anything concealed.

**Transactions with prisoners**

65. (1) No officer shall take part in any business or pecuniary transaction with or on behalf of a prisoner without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2) No officer shall without authority bring in or take out, or attempt to bring in or take out, or knowingly allow to be brought in or taken out, to or for a prisoner, or deposit in any place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any article whatsoever.

**Contact with former prisoners**

66. No officer shall,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governor, communicate with any person whom he knows to be a former prisoner or a relative or friend of a prisoner or former prisoner.

**Communications to the press**

67. (1) No officer shall make, directly or indirectly, any unauthorised communication to a representative of the press or any other person concerning matters which have become known to him in the course of his duty.

(2) No officer shall, without authority, publish any matter or make any public pronouncement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any institution to which the Prison Act 1952 applies or to any of its inmates.

**Code of discipline**

68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rove a code of discipline to have effect in relation to officers, or such classes of officers as it may specify, setting out the offences against discipline, the awards which may be

made in respect of them and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charges

**Emergencies**

69. Where any constable or member of the armed forces of the Crown is employed by reason of any emergency to assist the governor of a prison by performing duties ordinarily performed by an officer of a prison, any reference in Part II of these Rules to such an officer (other than a governor)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a constable or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f the Crown so employed.

## PART IV PERSONS HAVING ACCESS TO A PRISON

**Prohibited articles**

70. No person shall, without authority, convey into or throw into or deposit in a prison, or convey or throw out of a prison, or convey to a prisoner, or deposit in any place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any money, clothing, food, drink, tobacco, letter, paper, book, tool, controlled drug, firearm, explosive, weapon or other article whatever Anything so conveyed, thrown or deposited may be confiscated by the governor.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71. (1) Any person or vehicle entering or leaving a prison may be stopped, examined and searched. Any such search of a person shall be carried out in as seemly a manner as is consistent with discovering anything concealed.

(2) The governor may direct the removal from a prison of any person who does not leave on being required to do so.

**Viewing of prisons**

72. (1) No outside person shall be permitted to view a prison unless authorised by statute or the Secretary of State.

(2) No person viewing the prison shall be permitted to take a photograph, make a sketch or communicate with a prisoner unless authorised by statute or the Secretary of State.

**Visitors**

73. (1)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owers to prohibit or restrict entry to prisons, and to his powers under rules 34 and 35,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a view to securing discipline and good order 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the interests of any persons, impose prohibitions on visits by a person to a prison or to a prisoner in a prison for such periods of time as he considers necessary.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any visit to a prison or prisoner by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of the prison, or justice of the peace, or to prevent any visit by a legal adviser for the purposes of an interview under rule 38 or visit allowed by the board of visitors under rule 35(6).

## PART V BOARDS OF VISITORS

**Disqualification for membership**

74.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interested in any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o a

prison, shall not be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for that prison and any member who becomes so interested in such a contract shall vacate office as a member.

**Board of visitors**

75. (1)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6(2) of the Prison Act 1952(1) shall subject to paragraphs (3) and (4) hold office for three years, or such lesser period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2) A member

(a) appointed for the first time to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articular prison; or

(b) reappointed to the board following a gap of a year or more in his membership of it,

shall, during the period of 12 month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he is so appointed or (as the case may be) reappointed, undertake such training as may reasonably be required by the Secretary of Stat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a member if he is satisfied that

(a) he has failed satisfactorily to perform his duties;

(b) he has failed to undertake training he has been required to undertake under paragraph (2), by the end of the period specified in that paragraph,

(c) he is by reason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or for any other reason, incapable of carrying out his duties;

(d) he has been convicted of such a criminal offence, or his conduct has been such, that it is not in the Secretary of State's opinion fitting that he should remain a member; or

(e) there is, or appears to be or could appear to be, any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member performing his duties as a member and any interest of that member, whether personal, financial or otherwise.

(4)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a) has reason to suspect that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may have so conducted himself that his appointment may be liable to be terminated under paragraph (3)(a) or (d); and

(b) is of the opinion that the suspected conduct is of such a serious nature that the member cannot be permitted to continue to perform his functions as a member of the board pending the comple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s investigations into the matter and any decision as to whether the member's appointment should be terminated,

he may suspend the member from office for such period or periods as he may reasonably require in order to complete his investigations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 should be so terminated; and a member so suspended shall not, during the period of his suspension, be regarded as being a member of the board, other tha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d paragraphs (1) and (3).

(5) A board shall have a chairman and a vice chairman who shall be members of the board.

(6)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 upon the constitution of a board for the first time, appoint a chairman and a vice chairman to hold offi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months;

(b) thereafter appoint, before the da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board in any year of office of the board, a chairman and vice chairman for that year, having first consulted the board; and

(c) promptly fill, after first having consulted the board, any casual vacancy in the office of chairman or vice chairman.

(7) The Secretary of State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a member as chairman or vice chairman of the board if he is satisfied that the member has—

(a) failed satisfactorily to perform his functions as chairman (or as the case may be) vice chairman;

(b) has grossly misconducted himself while performing those functions.

**Proceedings of boards**

76. (1)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shall meet at the prison once a month or, if they resolve for reason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that less frequent meetings are sufficient, not fewer than eight times in twelve months.

(2) The board may fix a quorum of not fewer than three members for proceedings.

(3) The board shall keep minutes of their proceedings.

(4)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shall not be invalidated by any vacancy in the membership or any defect in the appointment of a member.

**General duties of boards**

77. (1)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shall satisfy themselves as to the state of the prison premises, the administration of the prison and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2) The board shall inquire into and report upon any matter into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asks them to inquire.

(3) The board shall direct the attention of the governor to any matter which calls for his attention, and shall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ny matter which they consider it expedient to report.

(4) The board shall inform the Secretary of State immediately of any abuse which comes to their knowledge

(5) Before exercising any power under these Rules the board and any member of the board shall consult the governor in relation to any matter which may affect discipline.

**Particular duties**

78. (1)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and any member of the board shall hear any complaint or request which a prisoner wishes to make to them or him.

(2) The board shall arrange for the food of the prisoners to be inspected by a member of the board at frequent intervals.

(3) The board shall inquire into any report made to them, whether or not by a member of the board, that a prisoner's health, mental or physical, is likely to be injuriously affected by any conditions of his imprisonment.

**Members visiting prisons**

79. (1) The members of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shall visit the prison frequently, and the board shall arrange a rota whereby at least one of its members visits the prison between meetings of the board.

(2) A member of the board shall have access at any time to every part of the prison and to every prisoner, and he may interview any prisoner out of the sight and hearing of officers.

(3) A member of the board sha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of the prison.

**Annual report**

80. (1) The board of visitors for a prison shal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and (3) below, from time to time make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concerning the state of the prison and its administration, including in it any advice and suggestions they consider appropriate.

(2) The board shall comply with any directions given to them from time to time by the Secretary of State as to the following matters:

(a) the period to be covered by a report under paragraph (1);

(b) the frequency with which such a report is to be made; and

(c) the length of time from the end of the period covered by such a report within which it is to be made; either in respect of a particular report or generally; providing that no directions may be issued under this paragraph if they would have the effect of requiring a board to make or deliver a report less frequently than once in every 12 months.

(3) Subject to any directions given to them under paragraph (2), the board shall, under paragraph (1), make an annual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after 31st December each year, which shall cover the period of 12 months ending on that date or, in the case of a board constitut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at period, such part of that period during which the board has been in existence.

## PART VI SUPPLEMENTAL

**Delegation by governor**

81. The governor of a prison may, with the leave of the Secretary of State, delegate any of his powers and duties under these Rules to another officer of that prison.

**Contracted out prisons**

82. (1)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running of a prison under section 84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1) ("the 1991 Act") these Rules shall have effect in relation to that prison with the following modifications

(a) references to an officer in the Rules shall include references to a prisoner custody officer certified as such under section 89(1) of the 1991 Act and performing custodial duties,

(b) references to a governor in the Rules shall include references to a director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85(1)(a) of the 1991 Act except— .

(i) in rules 45, 48, 49, 53, 54, 55, 61 and 81 where references to a governor shall include references to a controller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85(1)(b) of the 1991 Act, and

(ii) in rules 62(1), 66 and 77 where references to a governor shall include references to the director and the controller;

(c) rule 68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a prisoner custody officer certified as such under section 89(1) of the 1991 Act and performing custodial duties

(2) Where a director exercises the powers set out in section 85(3) (b) of the 1991 Act (removal from association, temporary confinement and restraints) in cases of urgency, he shall notify the controller of that fact forthwith.

**Contracted out parts of prisons**

83.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running of part of a prison under section 84(1)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that part and the remaining part shall each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Parts II to IV and Part VI of these Rules as if they were separate prisons.

**Contracted out functions at directly managed prisons**

84. (1)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has entered into a contract under section 88A(1)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the 1991 Act") for any functions at a directly managed prison to be performed by prisoner custody officers who are authorised to perform custodial duties under section 89(1) of the 1991 Act, references to an officer in these Rules shall, subject to paragraph (2), include references to a prisoner custody officer who is so authorised and who is performing contracted out functions for the purposes of, or for purposes connected with, the prison.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references to an officer in rule 68.

(3) In this rule, "directly managed prison" has the meaning assigned to it by section 88A(5) of the 1991 Act.

**Revocations and savings**

85. (1) Subject to paragraphs (2) and (3) below, the Rules specified in the Schedule to these Rules are hereby revoked.

(2)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pretation Act 1978(2), where a prisoner committed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contrary to rule 47 of the Prison Rules 1964(3)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ese Rules, those rules shall continue to have effect to permit the prisoner to be charged with such an offence, disciplinary proceedings in relation to such an offence to be continued, and the governor to impose punishment for such an offence.

(3)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pretation Act 1978, any award of additional days or other punishment or suspended punishment for an offence against discipline awarded or imposed under any provision of the rules revoked by this rule, or those rules as saved by paragraph (2), or treated by any such provision as having been awarded or imposed under the rules revoked by this rule, shall have effect as if awarded or imposed under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these Rules

Jack Straw

One of Her Majesty's Principal Secretaries of State

Home Office

10th March 1999

독일

# 04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및 연방통일행정규칙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제1장 적용범위**(제1조) ····· 163

**제2장 자유형의 집행** ····· 163
제1절 원칙(제2조 ~ 제4조) ····· 163
제2절 행형계획(제5조 ~ 제16조) ····· 164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제17조 ~ 제22조) ····· 166
제4절 접견 · 서신수수 및 특별한 동기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제23조 ~ 제36조) ····· 167
제5절 작업 · 교육 및 보수교육(제37조 ~ 제52조) ··· 170
제6절 종교활동(제53조 ~ 제55조) ····· 175
제7절 위생(제56조 ~ 제66조) ····· 176
제8절 자유시간(제67조 ~ 제70조) ····· 178
제9절 사회원조(제71조 ~ 제75조) ····· 179
제10절 여성행형에 관한 특별규정 (제76조 ~ 제80조) ····· 179
제11절 안전과 질서(제81조 ~ 제93조) ····· 180
제12절 직접강제(제94조 ~ 제101조) ····· 183
제13절 징벌처분(제102조 ~ 제107조) ····· 185
제14절 권리구제(제108조 ~ 제121조) ····· 186
제15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제122조) ····· 189
제16절 사회치료시설(제123조 ~ 제128조) ····· 190

**제3장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 190
제1절 보안구금(제129조 ~ 제135조) ····· 190
제2절 정신의료시설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제136조 ~ 제138조) ····· 191

**제4장 교정당국** ····· 192
제1절 교정시설의 종류 및 설비 (제139조 ~ 제150조) ····· 192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제151조, 제153조) ····· 193
제3절 교정시설의 내부조직(제154조 ~ 제161조) ··· 194
제4절 시설자문위원회(제162조 ~ 제165조) ····· 195
제5절 행형에 있어서 형사학적 연구(제166조) ····· 195

**제5장 교정시설에서 그 밖의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 ····· 196
제1절 교정시설에서의 유치집행 (제167조 ~ 제170조) ····· 196
제2절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및 강요구류의 집행(제171조 ~ 제175조) ····· 196
제3절 소년교정시설 및 미결구금의 집행에 있어서의 작업보수(제176조 ~ 제177조) ····· 197
제4절 교정시설에서의 직접강제(제178조) ····· 197
제5절 정보보호(제179조 ~ 제187조) ····· 198
제6절 연방법의 조정(제188조, 제189조) ····· 202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제190조 ~ 제195조) ·· 20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실시(제196조 ~ 제202조) ···· 207

**원문** ····· 210

**연방통일행정규칙** ····· 256

**연방통일행정규칙 원문** ····· 278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1)]

제정 1976년 3월 16일

개정 2009년 7월 29일 법 제2장 개정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은 밑줄로 표시함

## 제1장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에서의 자유형의 집행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2장 자유형의 집행(Vollzug der Freiheitsstrafe)

### 제1절 원칙

### 제2조 행형의 임무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형의 집행은 그 후의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공(Allgemeinheit)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3조 행형의 형성

① 수형 중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사회의 생활상태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유박탈에 의한 유해한 효과는 배제되어야 한다.

③ 행형은 수형자가 자유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원조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제4조 수형자의 지위

① 수형자는 처우의 구체화 및 행형목적의 달성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이에 대한 수형자의 마음가짐을 일깨우고 촉진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자유의 제한에 복종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형자에게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또는 시설의 질서에 중대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한만을 과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1997년
日本法務省矯正局, 「ドイツ行刑法及び關係行政規則」, 2003년
김화수/ 송태호/ 이영근/ 윤옥경 편역,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법무부 용역과제, 경기대학교, 2003년

## 제2절 행형계획(Vollzugsplan)

### 제5조 수용절차

① 입소절차 시에는 다른 수형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수형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지를 받는다.

③ 수형자는 입소 후,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시설의 장 또는 수용관구 책임자의 상담을 받는다.

###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① 입소절차 후 수형자의 인격 및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수용 중인 수형자의 계획적 처우 및 그 자의 석방 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정을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제174조에서 제180조까지 또는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선고된 수형자는 사회치료시설에 이송지시가 적당한지 여부를 특히 주의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처우계획안은 당해 수형자와 함께 검토한다.

### 제7조 처우계획

① 처우조사(제6조)에 의거하여 처우계획이 작성된다.

② 처우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시설 또는 개방시설에의 수용
2. 사회치료시설에의 이송
3. 수용집단 및 처우집단의 지정
4. 작업지정 및 직업훈련 또는 직업보수교육 조치
5. 보수교육과정에의 참가
6. 특별한 원조조치 및 처우조치
7. 집행의 완화
8. 석방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처우계획은 수형자의 개선 및 그 후의 인격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처우계획은 적당한 기간이 예정되어야 한다.

④ 형법 제174조부터 제180조까지 또는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6월을 경과할 때마다 사회치료시설에의 이송에 대하여 새롭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 이송, 일시이송

①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처우 또는 석방 후 그 자의 사회복귀가 이송에 의해 촉진되는 때
2. 이송이 행형조직상의 이유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필요한 때

② 수형자는 중대한 이유에 의해서 다른 교정시설에 일시이송될 수 있다.

### 제9조 사회치료시설에의 이송

① 형법 제174조에서 제180조까지 또는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하는 유기자유형을 선고

받고, 제6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7조 제4항에 의해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지시가 내려진 수형자는 사회치료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수형자 자신에게 존재하는 이유로 처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수형자는 이전의 시설에 이송되어야 한다.

(2)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에서의 특별한 치료수단 및 사회원조가 지시된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사회치료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은 사회치료시설의 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제8조 및 제85조는 이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개방시설 및 폐쇄시설

(1) 수형자가 개방시설에의 수용을 위한 특별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그 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려 하거나 또는 개방시설에서의 기회를 범죄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개방시설 또는 개방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 수형자는 폐쇄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수용이 그 자의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수형자를 폐쇄시설에 수용하거나 그곳으로 재이송할 수 있다.

### 제11조 행형의 완화

(1) 행형의 완화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특히 지시할 수 있다.

1. 수형자가 시설 밖에서 규칙적으로 교정직원의 감독하에 작업에 종사는 것(구외작업) 또는 교정직원의 감독없이 작업에 종사(외부통근작업)할 수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일과 중 어느 특정 시간에 교정직원의 감독하에 시설을 떠나거나(동행외출) 또는 교정직원의 감독없이 교정시설을 떠날 수(외출) 있는 경우

(2) 이러한 완화는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행형의 완화가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없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허가될 수 있다.

###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행외출

수형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동행외출할 수 있다.

### 제13조 구금중의 휴가

(1) 수형자에게는 연 21일까지 구금중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휴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최소한 6월 이상 복역한 경우에 처음으로 주어져야 한다.

(3) 종신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는, 선행하는 미결구금 및 그 밖의 자유박탈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또는 개방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에 휴가를 줄 수 있다.

(4) 개방처우에 적합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폐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개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다.

(5) 휴가에 의하여 형집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지시 · 취소

(1) 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행형의 완화 및 휴가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행형의 완화 및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이 추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수형자가 그 조치를 악용한 때

3. 수형자가 그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시설의 장은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래에 대한 효력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석방준비**

① 석방준비를 위해서는 행형이 완화되어야 한다(제11조).

② 행형의 완화가 석방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수형자를 개방시설 또는 개방구역(제10조)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석방 전 3개월 이내에 석방준비를 위하여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Sonderurlaub)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④ 외부통근자(제11조 제1항 제1호)에게는 석방전 9월 이내에 월 6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제3항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석방시기**

① 수형자는 그의 형기종료일의 가능한 한 이른 시각에, 어떠한 경우에도 오전중에는 석방되어야 한다.

② 형기종료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공휴일, 부활절 또는 성령강림제 후 첫번째 주일 또는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형기에 의해 허용되고 동시에 보호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형자는 이러한 날 또는 기간에 선행하는 평일에 석방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자신의 사회복귀를 위해 조기석방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2일의 한도 내에서 석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Ernährung)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수용**

① 수형자는 혼거하여 작업한다. 직업훈련, 직업보습교육(berufliche Weiterbildung) 및 작업시간 중의 작업치료적 노작 및 그 밖의 노작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자유시간 중에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공동집회에의 참가에 대해서 시설의 장은 시설의 장소, 직원 및 조직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③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혼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에 있을 때. 다만,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에 필요한 때

4. 수형자가 동의하는 때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①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 단독으로 자신의 거실에 수용된다. 혼거수용은 수형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때에 한해서 허용된다.

② 개방시설에서 수형자는 악풍감염의 우려가 없는 때, 휴식시간 중 그의 동의하에 혼거수용할 수 있다. 폐쇄시설에서는 휴식시간 중의 혼거수용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허용된다.

### 제19조 수형자에 의한 거실의 장식 및 개인소지품

① 수형자는 자신의 거실을 적당한 범위내에서 자신의 물품으로 장식할 수 있다. 근친자의 사진 및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기념품은 수형자에게 간직하게 한다.

② 거실의 시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준비수단 및 물품은 제외할 수 있다.

### 제20조 의복

① 수형자는 수형자복을 착용한다. 자유시간을 위하여 수형자는 특별한 상의를 지급받는다.

② 시설의 장은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행외출 시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가한다 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정기적인 교환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때 또는 그 밖의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1조 교정시설의 음식물의 지급

시설의 급식내용(Zusammensetzung) 및 영양가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급식이 제공된다. 수형자에게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식사계율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22조 구입

① 수형자는 자용금(제47조) 또는 자신의 용돈(제46조)으로 시설에서 주선한 공급품 중에서 식료품 및 기호품 그리고 신체위생용 약제를 구입할 수 있다. 시설은 수형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급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물품은 구입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수형자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태롭게 할 우려가 특정식품 및 기호품의 구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에 지시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 병사 및 의료구역(Krankenabteilung)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식품 및 기호품의 구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용금 또는 용돈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적당한 범위에서 영치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제4절 접견 · 서신수수 및 특별한 동기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 제23조 원칙

수형자는 이 법의 규정범위 내에서 시설 밖에 있는 사람과 교통할 권리를 가진다. 시설 밖에 있는 사람과의 교통은 장려되어야 한다.

### 제24조 접견권리

① 수형자는 정기적으로 접견을 할 수 있다. 전체 접견시간은 최소한 월 1시간으로 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접견은 수형자의 처우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수형자의 서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제3자에 의해 대리할 수 없을 때 또는 수형자 석방 시까지 연기될 수 없는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용무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그 기간 이상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③ 보안상의 이유에서, 접견은 접견자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제25조 접견금지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접견자가 수형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변호인에 의한 접견 및 수형자에 관한 법률문제(Rechtssache)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에 의한 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변호인이 휴대하는 문서 및 그 밖의 휴대물(Unterlagen)에 대한 내용검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은 이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7조 접견감시

① 접견은 개별사안에서 감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우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상의 이유에서 감시할 수 있다. 개별사안에서 대화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만 감시할 수 있다.

② 접견은 접견자 또는 수형자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지시에 위반하는 때에는 중지될 수 있다. 접견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때에는 경고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인 접견은 감시받지 아니한다.

④ 물건은 접견 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변호인의 접견 시 전달되는 문서 그리고 그 밖의 부속물 및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 시 수형자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달하는 문서와 그 밖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 시 그 교부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상의 이유에서 허가에 의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8조 서신수수의 권리

① 수형자는 제한없이 서신을 보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특정한 사람과의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와의 서신수수가 수형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제29조 서신수수의 검열

① 수형자와 그 변호인과의 서신수수는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29조a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129조b 제1항에 관련되는 동종 범죄행위가 자유형 집행의 의거가 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및 제148조a를 준용한다. 그러나 수형자가 개방집행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후단에 의한 행형의 완화 또는 제13조나 제15조 제3항에 의한 휴가가 주어져 있고, 시설의 장에게 제14조 제2항에 의한 완화 및 휴가의 철회나 취소를 할 이유가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문은 수형자에게 자유형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a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129조b 제1항에 관련하는 동종 범죄행위에 의한 자유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나아가 연방 및 각 주의 의회, 그 의회의원에게 보내는 수형자의 서신은, 그 서신이 이와 같은 의회를 수신처로 하여 발신된 것이고 발신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한 검열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유럽의회 및 그 의원,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위원회,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처우 또는 형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ruopäische Ausschuß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Behandlung oder Strafe) 및 연방과 각 주의 정보보호담당자 수신의 서신에 준용한다. 수형자에게 보내진 제1문 및 제2문에 열거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서신은 발신자의 신분이 의심할 바 없이 정확한 때에는 검열받지 아니한다.

③ 그 밖의 서신수수는 처우상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여 필요한 때 검열할 수 있다.

### 제30조 서신의 처리절차 · 영치

①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수령은 시설에 의해 중개되어야 한다.

② 접수된 서신 및 발송하는 서신은 지체없이 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수형자는 다른 허가가 없는 한 접수된 서신을 개봉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 서신을 봉인하여 영치할 수 있다.

### 제31조 서신의 금지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행형의 목적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
2. 그 서신내용을 아는 가운데 하는 발송 또는 교부(Weitergabe)가 형법 또는 범금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우려가 있는 때
3. 그 서신이 시설의 상황에 대하여 현저히 잘못되거나 또는 현저히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
4. 그 서신이 매우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그 서신이 다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
6. 그 서신이 암호로 쓰여져 있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뚜렷한 이유없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

②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발송서신은 수형자가 그 발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첨부서신(Begleitschreiben)을 동봉할 수 있다.

③ 서신이 금지된 때에는 그 취지를 수형자에게 고지한다. 금지된 서신은 발송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 또는 특별한 이유에서 불필요한 때에는 시설에 보관한다.

④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검열이 제외된 서신은 금지할 수 없다.

### 제32조 전화 및 전보

수형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전보를 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에 대하여는 접견에 관한 규정을, 전보에 대해서는 서신수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된 감청에 대하여 전화가 접속된 직후에 교정당국 또는 수형자에 의해 수형자와의 통화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수형자에게는 전화개시 전 적당한 때에 제3문의 예정된 감청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33조 소포

① 수형자는 연 3회 적당한 간격으로 식료품 및 기호품이 든 소포 1개를 수령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송부 및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시기 및 최대한도량을 규정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소포 또는 그 내용물을 포함하는 소포의 수

령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물품의 제외에 대해서는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소포는 수형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외된 물품은 영치시키거나 또는 송부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교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반송 또는 보관 시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물적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수형자에게 고지한다.

③ 소포의 수령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④ 수형자에게는 소포의 발송을 허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그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제34조 (폐지)**

**제35조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외출을 허가하거나 또는 7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질병을 사유로 하거나 또는 친족의 사망 이외의 다른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는 연 7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는 통상의 휴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하여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때, 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동행외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동행외출이 처우 또는 사회복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6조 재판기일**

① 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소환에 응하고 도주 또는 악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형자에 대하여 재판기일에의 출석을 위한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 경우에 이에 준용한다.

② 수형자가 법원의 기일에 소환되고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받지 못하는 때에는 도주 또는 악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을 이유로 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동의하에 기일에 동행외출을 허가한다. 구인장(Vorführungsbefhl)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 시설의 장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형자를 구인출석시킨다.

③ 교정당국은 법원에 그 사정에 대하여 통지한다.

## 제5절 작업 · 교육 및 보수교육(Weiterbidung)

**제37조 작업지정**

① 작업, 작업치료적 노작(arbeitsherapeutische Beschaftigung), 교육 및 보수교육은 특히 석방 후에 취업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고,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교정당국은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은 작업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 때 수형자의 능력, 기능 및 소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적성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 직업보수교육 또는 그 밖의 교육적 또는 보수교육적 조치에 참가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은 작업이나 제3항에 따른 조치에의 참가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 적정한 노작이 할당된다.

⑤ 수형자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은 작업을 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는 작업치료적 노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수업

① 중등학교(Hauptschule)를 수료하지 아니한, 능력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중등학교 수료를 위한 학과수업 또는 특수학교(Sonderschule)에 상당하는 수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수업이 계획되어야 하고, 이것은 직업보수교육에 대해서도 그 조치의 종류에 따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② 수업은 작업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 제39조 자유로운 노동조건, 자영직업활동

① 수형자에게는 행형계획의 범위 내에서 석방 후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목적에 도움이 되고 행형의 중요한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 밖의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의거하여 작업, 직업훈련 또는 직업보수교육에 취업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1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자영직업활동[2]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교정당국은 작업보수가 수형자를 위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0조 수료증

교육적 또는 보수교육적 조치에 관한 수료증에 참가자의 수형사실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작업의무

① 수형자는 신체상태를 감안하여 수행가능하다고 하여 지정된, 그 자의 신체능력에 적합한 작업 또는 작업요법적 노작, 그 밖의 작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에게는 연 3개월의 한도 내에서 시설의 보조활동(Aufstatigkeiten)[3]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절 및 제2절은 65세 이상인 수형자 및 취업 중인 모의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취업금지 중인 임신 및 산후의 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 제3항에 의한 조치에의 참가는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는 개인적 사정으로 철회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기업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공장(제149조 제4항)에의 취업에는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의 철회는 작업장소가 다른 수형자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경우 늦어도 6주간 후에는 처음 효력이 발생한다.

###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① 수형자가 1년 동안 제37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작업 또는 제41조 제2항 제2절에 따른 보조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수형자는 18일의 작업일에 대하여 작업의무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수형자가 질병에 의해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은 연 6주의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통산된다.

---

2) 작업시간 중에 자기의 수입과 지출로 예술창작, 저작 등을 실시하는 것

3) 청소, 영선작업 등

② 구금으로부터 휴가(제13조, 제35조)는 그것이 작업시간 내이고 동시에 친족의 생명에 관련된 질병 또는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한, 면제기간에 산입된다.

③ 수형자에게는 면제기간 동안 그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수입을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④ 행형 이외의 노동관계의 휴가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작업보수, 작업휴가 및 면제의 석방시기에의 산입**

① 수형자의 작업은 작업보수 및 작업면제에 의해 평가되며, 작업면제는 구금으로부터의 휴가(작업휴가)로 사용되거나 또는 석방시기에 산입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지정된 작업, 그밖의 노작 또는 제41조 제1항 2절에 따른 보조활동을 한 때에는 작업보수를 받는다. 작업보수의 산정은 사회복지법(Sozialgesetzbuch) 제4편 제18조에 따라 수급액의 제200조에 정하는 기준액에 의거해야 한다. 일일 급여액은 기준보수의 250분의 1로 하지만 작업보수는 시급액에 의해서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작업보수는 수형자의 작업성적 및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단계를 부여할 수 있다. 수형자의 작업성적이 최저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준보수의 100분의 75를 하회할 수 있다.

④ 수형자가 지정된 작업요법적인 노작을 수행하는 때에는 그 자는 작업의 종류 및 실적에 상응하는 작업보수를 받는다.

⑤ 작업보수는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⑥ 수형자가 2개월에 걸쳐 연속하여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작업 또는 제41조 제1항 제2절에 따른 보조작업을 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하루의 취업일을 작업으로부터 면제한다. 제42조의 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형자가 질병, 동행외출, 외출, 구금으로부터의 휴가, 작업의무의 면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작업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제1절에 의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월에 미달하는 취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⑦ 수형자는 제6항에 따른 작업면제를 구금으로부터의 휴가형식으로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작업휴가).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서 5항까지 및 제14조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⑧ 제42조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⑨ 수형자가 제6항 제1문 또는 제7항 제1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7항 제2문에 따라서 작업면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항 제1문에 따른 면제는 시설에 의해 수형자의 석방시기에 산입된다.

⑩ 제9항에 따른 산입은 다음의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1. 종신 자유형 또는 보안구금에 처해져서 석방시기가 미정인 때
2. 자유형 또는 보안구금의 남은 기간의 보호관찰부 집행정지(Aussetzung der Vollsterckung)에 해당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석방까지 남겨진 기간으로는 산입이 불가능한 때 그 한도
3. 자유형 또는 보안구금의 남은 기간이 보호관찰부 집행정지에 해당하고 수형자의 생활환경 또는 집행정지에 의해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작용이 특정시기까지의 집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법원이 명한 때
4. 형사소송법 제456조a[4] 제1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 때
5. 수형자가 사면에 의해 구금이 해제된 때

4) 2000년 8월 2일 개정 후 규정

⑪ 제10항에 따라 산입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는 석방될 때 제2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보상(Ausgleichsentschädigung)으로서, 그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또는 제44조 따라 주어지는 교육보조금의 100분의 15를 부가적으로 받는다. 그 청구권은 석방 시에 최초로 발생하고, 석방 전 그 청구권은 무이자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될 수 없다.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산입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Ausgleichszahlung)은 종신자유형 또는 보안구금 10년의 복역을 마칠 때마다 그 자가 그 시기 이전에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영치금(제52조)으로서 그 자의 계좌에 기입되고, 형법 제57조 제4항을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제44조 교육보조금

① 수형자는 직업훈련, 직업보수교육 또는 수업에 참가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작업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일반인이 그와 같은 기회에 주어지는 생활비의 급부를 받을 수 없는 한 교육보조금을 받는다.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회부조의 후순위는 이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교육보조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수형자가 작업기간 중에 시간단위 또는 일단위로 수업 또는 그 밖의 지정된 제37조 제3항에 의거한 조치에 참가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가 상실하게 되는 작업보수액 정도의 교육보조금을 받는다.

### 제45조 휴업보상

① 근로능력이 있는 수형자에게 당해 수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1주일 이상에 걸쳐 작업 또는 제37조 제4항에 의한 의미의 작업을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수형자는 휴업보상을 받는다.

② 작업 또는 노작개시 후 수형자가 질병에 의해 1주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그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휴업보상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한 교육보조금 또는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③ 임신중의 부녀로 작업 또는 제37조의 의미의 노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에 이르기까지, 조산아 및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산후 12주까지 휴업보상을 받는다.

④ 휴업보상은 수형자가 불취업 또는 질병 전에 제43조 제2항의 최저보수에 미달한 경우에만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기준부수의 60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⑤ 휴업보상은 전조 제3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연간 합산하여 최고 6주까지 지급된다. 그 후의 휴업보상은 수형자가 새로이 적어도 1년 동안 작업보수 또는 교육보조금을 받을 때에 최초로 지급된다.

⑥ 수형자가 라이히보험법 제566조 제2항에 따라 일시보조금(Übergangsgeld)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의 청구권은 중지된다.

### 제46조 용돈

수형자가 자신의 책임없이 작업보수나 교육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적당한 용돈을 받는다.

### 제46조 용돈

수형자가 노령 또는 신체적 허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휴업수당이 주어지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수형자는 필요한 때에 적당한 용돈을 받는다. 제37조 제5항에 의한 노작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47조 자용금

①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수입으로부터 매월 7분의 3(자용금) 및 용돈(제46조)을,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영직업활동(제39조 제2항)이 허가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의 보수에서 적당한 자용금이 정해진다.

### 제47조 자용금

①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수입으로부터 매월 최소 30마르크(자용금) 및 용돈(제46조)을,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용금의 최저액은 매월 수입이 300마르크를 초과할 때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한다. 행형관청은 갱생자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영직업활동(제39조 제2항)이 허가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의 보수에서 적당한 자용금의 액이 정해진다.

### 제48조 법규명령

연방법무부는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ı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장관의 이해 하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43조 내지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수등급에 관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49조 생활부조금

①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법적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수입에서 권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자용금 및 생활부조금 공제후의 수형자 소득이 구금비용 분담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때는 생활부조금은 민사소송법 제850조c에 따라 압류금지액까지로 한다. 제1문에 따른 표준적인 금액 산정에 있어 피부양자의 수가 1명 감소된다.

### 제50조 구금비용 분담금

① 범죄행위에 대한 형, 그 밖의 처분의 집행(형사소송법 제464조a 제1항 제2문)의 비용의 일부로서 교정시설은 수형자로부터 구금비용분담금을 징수한다. 구금비용분담금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수입을 받을 때
2.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작업할 수 없을 때
3. 작업의무를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작업하지 아니한 때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1월을 초과하여 연속한 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없는 수형자 또는 작업의무를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작업하지 아니하는 수형자가 이 기간에 분배된 소득을 가지는 때에는 분배된 소득액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의 구금비용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형자에게는 주(州)의 교정시설의 평균적인 작업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남겨져야 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청구권의 행사는 보류될 수 있다.

② 구금비용분담금은 사회복지법 제4편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물급여의 평가로서 평균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정도에서 징수된다. 연방법무부는 매년의 평균액을 전년의 10월 1일에 적용되는 현물급여의 평가에 따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3조에 적시된 지역 및 그에 가맹의 발효 전에 이미 행형법이 적용된 지역마다 분리하여 확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연방공보(Bundesanzeiger)에 공시한다. 급식이 자변인 경우에는 급식을 위하여 예정된 금액은 제외된다. 숙박장소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수용능력이 기준이 된다. 구금비용분담금은 수입의 압류금지부분에서도 충당될 수 있지만 자용금 및 부양친족의 청구권의 부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3) 베를린주에서는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된 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액이 균일하게 적용된다.

(4) 자영직업활동(제39조 제2항)은 수형자가 구금비용분담금을 제2항에 열거된 기준액까지 매월 사전에 지불하는 것에 소요되도록 할 수 있다.

(5) 구금비용분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주정부는 법규명령에 따라 다른 재판관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금비용분담금은 사법행정용 공용물의 사용료이고,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09조에서 제12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1조 갱생자금

(1)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 및 자유노동관계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영직업활동(제39조 제2항)을 허가받은 수형자의 수입으로부터 수형자의 석방 후 최초 4주 동안 본인 및 그의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갱생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갱생자금은 자유사회로 석방 시 수형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교정당국은 갱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찰관(Bewährungshelfer) 또는 석방자보호를 담당하는 관서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금전이 석방 후 최초 4주 내에 어떻게 수형자에게 지불되는가에 대하여 결정한다. 보호관찰관 및 석방자보호를 담당하는 관서는 갱생자금을 그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의 동의하에 갱생자금은 피부양자에게 위탁될 수도 있다.

3. 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위하여 갱생자금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갱생자금의 지급청구권는 압류할 수 없다. 갱생자금이 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차액을 한도로 영치금의 지급청구권도 압류하지 못한다.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지급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이유로 지급된 피석방자가 소지하는 현금은 4주가 경과하기까지는 압류유예기간의 청구권의 일부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여 석방 후 4주 동안은 압류되지 아니한다.

5.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850조d 제1항 제1문에 열거된 부양청구권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석방자에게는 그 자의 필요한 생활비 및 그 밖의 법률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은 석방 후 4주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압류유예기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제52조 영치금

자용금, 구금비용분담금, 생활부조금 및 갱생자금으로 청구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의 수입은 영치금으로 그 자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 제6절 종교활동(Riligionsaunübung)

### 제53조 종교교회

(1) 수형자에게는 그가 소속하는 종교단체의 교회사(Seelsorger)에 의한 종교상의 보호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수형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종교단체의 교회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수형자는 기본종교서적을 소지할 수 있다. 그 종교서적은 중대한 남용의 경우에만 박탈할 수 있다.

(3) 수형자에게는 적정한 범위에서 종교상 사용하는 물품이 주어져야 한다.

### 제54조 종교행사

(1) 수형자는 그가 속하는 종파의 종교예배 및 그 밖의 종교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다른 종교단체의 종교예배 또는 종교행사에 대해서도 수형자는 그 교회사가 동의하는 때에는 참가가 허용된다.

(3) 수형자는 안전 또는 질서상의 중대한 이유에서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를 예배 또는 그 밖의 종교행사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회사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55조 사상단체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제7절 위생(Gesundheitsfürsorge)

### 제56조 일반규정

(1) 수형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배려되어야 한다. 제101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형자는 건강관리 및 위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57조 건강검진, 의학적 예방조치

(1) 35세를 초과한 수형자는 2년마다 질병의 조기발견, 특히 심장 · 순환기질환 및 신장질환, 당뇨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의사의 건강검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수형자는 여성의 경우 최소 20세 초부터, 남성의 경우 최소 45세부터 많게는 연 1회 암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병에 관한 것일 때
2. 그러한 질병의 전구기 또는 초기단계가 진단조치에 의해 파악될 수 있을 때
3. 여러 징후가 의학적 · 기술적으로 충분히 명백하게 파악될 때
4. 발견된 의심스러운 질병을 상세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의사의 수 및 설비가 있을 때

(4) 여성수형자는 함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에 대하여 6세에 이르기까지 자의 신체 또는 정신발달에 적지않은 위험을 미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14세 이상 아직 20세에 이르지 아니하는 수형자는 치과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6월에 1회 치과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그 진찰은 치과소견, 사명의 원인해명 및 방지, 구강위생, 치육의 상태 및 충치가 되기 쉬운 것에 대한 진단적 비교의 제공, 구강손질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시 및 이의 법랑질 경화를 위한 처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6) 수형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의 처치 및 의약품, 붕대, 치료약 및 보조구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조만간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건강악화를 방지하는 경우
2. 자의 건전한 성장발육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3. 계호의 필요를 회피하는 경우

### 제58조 질병치료

수형자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악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질병치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질병치료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사의 치료
2. 의치지급을 포함한 치과의사의 치료
3. 의약품, 붕대, 치료약 및 보조기구의 지급
4. 행형상의 이익이 이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재활을 위한 의학적 및 보충적 급부 및 부하시험(Belastungserprobung) 및 작업요법

### 제59조 보조구의 지급

수형자는 보조구의 지급이 자유박탈이 단기인 것을 고려하여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보조구가 일상생활의 일반적 실용품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경우, 질병치료의 효과가 확실하거나 또는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개별사안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나안시력 보조구, 청력 보조구, 신체보조기구, 정형용 및 그 밖의 보조구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요구에는 행형상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구의 필요한 변경, 수리 및 보충품의 제공 및 그 사용법의 훈련도 포함된다. 나안시력 보조구의 지급을 요구하는 새로운 권리는 적어도 0.5 지옵트 시력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콘택트렌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의학적으로 불가결하게 필요로 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존재한다.

### 제60조 휴가중 질병치료

휴가 또는 외출 중에는 수형자는 교정당국에 대하여 관할 교정시설에서 질병치료를 요구할 권리만을 가진다.

### 제61조 급부의 방법 및 범위

건강검사 및 의학적 예방급부의 방법 및 이러한 급부범위 및 보조구의 지급을 포함하는 질병치료를 위한 급부범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사회복지법의 규정 및 이러한 규정에 의거한 관계규칙이 적용된다.

### 제62조 의치 및 치관을 대한 보조금

주법무부는 일반행정규정에 따라 의치의 지급시 치과의사의 치료 및 치과기공의 급부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를 정한다. 주법무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제62조a 청구권의 정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른 급부를 요구할 권리는 수형자가 자유로운 노동관계(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은 정지한다.

###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수형자의 동의하에 교정당국은 사회복귀를 증진시키는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 또는 보정적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이것이 그의 경제상태에서 볼 때 정당하고 이에 따라 처우목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64조 시설 밖 체류

수형자가 시설 밖에서 작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기가 적절한 때 수형자에게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시설 밖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제65조 이송

① 질병에 걸린 수형자는 시설의 병사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적당한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질병을 교정시설 또는 시설병사에서 진단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는 때 또는 수형자를 적당한 시기에 시설병사에 이송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수형자는 시설 밖의 병원에 보내져야 한다 수형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형집행이 중단된 때에는 법률상의 건강보험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필요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① 수형자가 중병에 걸린 때에는 친족 및 수형자가 신뢰하는 1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형자가 그 밖의 자에게도 통지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응하여야 한다.

## 제8절 자유시간

### 제67조 총칙

수형자는 그의 자유시간에 노작할 기회를 가진다. 수형자에게는 스포츠를 포함하는 수업, 통신교육, 보수교육의 강습 및 그 밖의 행사, 자유시간을 위한 모임, 집단토의 및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68조 신문 및 잡지

① 수형자는 적정한 범위에서 시설의 주선으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② 배부가 형벌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되는 신문 및 잡지는 제외된다.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 또는 부분이 행형목적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형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수형자는 시설의 라디오프로그램을 청취하고, 텔레비전의 공동시청에 참가할 수 있다. 방송은 국민적 정보, 교양 및 오락에 대한 희망이나 필요성을 알맞게 고려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은 그것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또는 개별 수형자에게 금지할 수 있다.

② 개인의 라디오 수신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는 제70조의 요건하에 허용된다.

### 제70조 자유시간 노작을 위한 물품소지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또는 자유시간노작을 위한 도서 및 그밖의 물건을 소지할 수 있다.

② 이것은 물건의 소지, 양도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형벌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되는 때
2. 행형의 목적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

③ 허가는 제2항의 조건하에 취소될 수 있다.

## 제9절 사회원조(Soziale Hilfe)

### 제71조 원칙

수형자는 일신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사회적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원조는 수형자가 그 용무를 스스로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제72조 수용시 원조

① 수용 시에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친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시설 밖의 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원조가 주어진다.

② 수형자에게는 사회보험의 유지에 대하여 조언이 행해져야 한다.

### 제73조 수용 중 원조

수형자는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특히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고, 피부양자를 부양하며,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원조를 받는다.

### 제74조 석방을 위한 원조

석방준비를 위하여 수형자에게는 그의 개인적, 경제적 및 사회적 용무의 정리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 조언에는 사회급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서의 명칭도 포함된다. 수형자에게는 석방 후의 시기에 대비하여 직장, 숙박장소 및 개인적인 지원자를 찾도록 원조를 받을 수 있다.

### 제75조 석방원조금

① 수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때 시설로부터 귀가여비의 원조 및 갱생원조금(Überbrückungsbeihilfe)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충분한 의복을 지급받는다.

② 갱생원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유박탈 기간, 수형자 자신의 작업상황 및 수형중의 자신의 영치금 및 자용금의 절약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1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은 이에 준용한다. 갱생원조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부양권리자에게 위탁될 수도 있다.

③ 귀가여비의 원조청구권 및 지급된 귀주여비(Reisebeihilfe)는 압류할 수 없다. 갱생원조금의 청구권 및 수형자에의 갱생원조금 지불후의 현금에 대하여는 제51조 제4항 제1문 및 제3문,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0절 여성행형에 관한 특별규정

### 제76조 임신시 및 출산시 급부

① 임신 또는 출산 직후 수형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한다. 직업을 가진 모의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의 작업장소의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이 경우에 준용된다.

② 여자수형자는 임신 중, 출산 시 및 출산 후 교정시설 의사의 처치 및 조산사의 원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임신 중 의사의 처치에는 특히 임신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 및 이화학 전문의의 진찰(laborärztlıchen Untersuchung)을 포함한 사선검사가 포함된다.

③ 출산을 위하여 임신부는 교정시설 밖의 병원에 보내져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산은 산부인과가 있는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시에는 조산원에 의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는다.

### 제77조 의약품, 붕대재료 및 치료약

임신 중의 고통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의약품, 붕대재료 및 치료약이 지급된다.

### 제78조 임신 및 출산시 급부 방법, 범위 및 정지

제60조, 제61조, 제62조a 및 제65조는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급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9조 출생신고

출생신고서에는 수형자의 자녀 출생지로서의 시설, 출생신고인과 시설과의 관계 및 모의 수형사실이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① 여자수형자의 자녀가 아직 의무교육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녀의 복지 적합한 때에는 체류결정권자(Inhaber des Aufenthaltsbestimmungsrechts)의 동의하에 자녀를 모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수용에 앞서 소년보호소(Jugendamt)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수용은 그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가진 자의 자의 비용으로 한다. 이를 관철하는 경우 모와 자녀의 혼거수용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용보상청구권(Kostenersatzanspruch)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11절 안전과 질서

### 제81조 원칙

① 시설에서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에 대한 수형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형자에 부과되는 의무 및 제한은, 그것이 그 목적에 정당한 관련이 있고 수형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 제82조 행동규칙

① 수형자는 시설의 일과시간(작업시간, 자유시간, 휴게시간)에 따라야 한다. 수형자는 교정직원, 동료수형자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자기의 행동에 의해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형자는 예컨대 그것을 까다로운 것이라고 느끼는 때에도 교정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형자는 허가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형자는 그의 거실 및 시설에서 자신에게 교부된 물건을 정돈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④ 수형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에 대하여 현저하게 위험한 상황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83조 개인적 보관, 영치금

① 수형자는 교정당국으로부터 또는 관청의 동의하에 자신에게 교부된 물품만을 보관하거나 또는 수취할 수 있다. 수형자는 사소한 가치의 물품일 경우 동의없이 다른 수형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도 수취 및 보관을 그의 동의에 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보관할 수 없는 휴대물은 종류 및 크기에 의해 영치가 가능한 때 그 자를 위하여 영치하여야 한다. 금전은 영치금으로서 그 자의 계정에 기입된다. 수형자에게는 수형기간 동안 또는 석방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또는 갱생자금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는 때 자신의 영치금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

③ 수형자가 종류 및 크기 때문에 영치할 수 없는 휴대물을 시설로부터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때에는 교정당국은 그 물품을 수형자의 비용으로 교정시설에서 철거할 권한을 가진다.

④ 시설의 보안상 예방수단이 알려지게 되는 도면 및 그 밖의 물품은 교정당국에서 폐기하거나 사용불능으로 할 수 있다.

### 제84조 검사

① 수형자의 물품 및 거실은 검사할 수 있다. 남성수형자의 검사는 남직원에 의해서만, 여성수형자의 검사는 여직원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수치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위험이 목전에 있는 때 또는 개별 사안에서 시설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탈의를 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은 남성수형자에 대해서는 남직원의 입회하에서만, 여성수형자에 대해서는 여직원의 입회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수형자가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입소 시, 접견자와의 접촉 후 및 시설 밖에서 안으로 돌아올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제85조 확실한 수용

수형자는 고도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그밖의 자의 행동 또는 상태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이 되는 때에는 그 자의 확실한 수용을 위하여 보다 적당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제86조 인식업무상의 조치

① 집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식업무상의 조치로서 다음의 것이 허용된다.

1. 지문 및 장문(掌文)의 채취
2. 수형자에게 고지한 후 사진촬영
3. 신체의 외모적 특징의 확인
4. 체위측정

② 얻어진 인식업무상의 자료는 수용기록부(Gafangenen-personalakten)에 수록된다. 그것은 형사경찰기록 수집소(kriminalpolizeiliche Sammlungen)에도 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제1항, 제87조 제2항 및 제180조 제4호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인식업무상의 조치가 취해진 자는 석방된 후, 수용의 의거가 되었던 법원판결의 집행이 종료한 다음 인식업무상의 자료사진 및 신체적 특징의 기록을 제외한 자료들을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에게 인식업무상의 조치를 실시할 때 및 석방 시에 이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86조a 사진

①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수형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를 함께 기록할 수 있다. 사진은 수형자에게 알린 후에만 촬영할 수 있다.

② 이 사진은 단지,

1. 수형자 본인 확인이 그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 교정직원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2. a) 시설내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연방 및 각 주의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고,
   b)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③ 이 사진은 수형자가 석방된 후 또는 다른 시설에 이송된 후에는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87조 체포권

① 도주 또는 그 밖에 허가없이 시설 밖에 머무르고 있는 수형자는 교정당국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체포하여 시설에 다시 수용할 수 있다.

② 본인 확인 또는 체포를 위하여 제86조 제1항 및 제86조a, 제179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그것이 도주 또는 그 밖에 허가없이 시설 밖에 머무르는 수형자의 수색 및 체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형집행기관 및 형사소추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 제88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① 수형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정신상태로 인해 고도의 도주의 위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물품의 박탈 또는 유치
2. 야간시찰
3.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
4. 실외체류의 제한 및 금지
5. 위험한 물품이 없는 특별히 견고한 거실에의 수용
6. 보호장비의 사용

③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까지에 의한 조치는 제3자에 의한 해방(Befreiung)의 위험 또는 시설규율의 현저한 장애를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 없을 때에도 허용된다.

④ 동행외출, 구인 또는 호송(Transport)에 있어 제1항에서 열거한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고도의 도주위험이 존재하는 때에도 보호장비의 사용이 허용된다.

⑤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는 그 목적에 필요한 때에 한해서 허용된다.

### 제89조 독거수용

① 수형자의 계속적인 격리(독거구금)는 그것이 수형자 자신에게 존재하는 이유로 인해 불가결한 때에만 허용된다.

② 1년 중 통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독거구금은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기간은 수형자가 종교예배 또는 자유시간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한다

### 제90조 보호장비의 사용

원칙적으로 보호장비(Fesseln)는 양손 또는 양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이익를 위하여 시설의 장은 다른 방법에 의한 구속을 지시할 수 있다. 보호장비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 제91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지시

①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는 시설의 장이 지시한다. 급박한 위험 시에는 시설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조치를 임시로 지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장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형자가 의사의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받고 있거나, 그의 정신상태가 그러한 조치의 원인인 때에는 사전에 의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급박한 위험 때문에 그러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견을 지체없이 얻어야 한다.

### 제92조 의사의 감독

① 수형자가 특별히 견고한 거실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보호장비가 사용된 때에는(제88조 제2항 5호 및 6호),

시설의 의사는 즉시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그 수형자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는 동행외출, 구인 또는 호송 중 보호장비의 사용에는(제88조 제4항)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의사는 수형자가 매일의 실외체재가 금지되어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제93조 비용배상

① 수형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해 또는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교정당국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밖의 법률에 따른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일급여액의 세배를 초과하는 자용금의 부분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열거된 청구권을 위해서는 통상의 소송방법이 취해진다.

④ 제1항에 열거된 청구권에 의거한 상쇄 또는 집행은 이로 인하여 수형자의 처우 또는 그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류하여야 한다.

## 제12절 직접강제(Unmittelbarer Zwang)

### 제94조 일반적 요건

① 교정시설의 직원은 행형상 및 보안상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수형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시설구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려고 기도하는 때 또는 허가없이 시설 내에 머무르는 때에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에 의거한 직접강제의 권한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5조 정의

① 직접강제란 유형력(körperliche Gewalt), 그 보조수단 및 무기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작용을 말한다.

② 유형력이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신체적 작용을 말한다.

③ 유형력의 보조수단이라 함은 주로 보호장비를 말한다.

④ 무기란 직무상 허용된 칼, 총기 및 자극물질을 말한다.

### 제96조 비례의 원칙

① 복수의 가능하고 적절한 직접강제 조치 중, 개인 및 일반을 침해하는 것이 가장 적다고 예견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그로 인해 예견되는 침해가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 균형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 제97조 명령에 의한 행동

① 직접강제가 상관 또는 그밖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명해진 때에는, 교정직원은 그 명령이 인간의 존엄(Menschenwürde)를 손상하거나 또는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발해지는 것이 아닌 때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② 명령은 그로 인해 범죄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직원이 그에 따른 때에는 그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가 지득한 사정에 의해 명백한 때에만 그

에게 책임이 있다.

③ 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교정직원은 명령자에 대하여 그 사정에 따라 가능한 때 제의하여야 한다. 상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문의 신고에 관한 일반공무원법상 이와 상이한 규정(공무원법 Beamtenrechtsrahmengesetz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경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경고하여야 한다. 경고는 사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행위를 저지하거나 또는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강제가 즉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만,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 총기 사용에 관한 일반규정**

① 총기는 직접강제 외의 조치로는 효과가 없거나 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물건에 대한 무기의 효과에 의해서는 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② 총기는 지정된 교정직원만이 그리고 공격 또는 도주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총기의 사용은 제3자가 총기사용에 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다.

③ 총기사용은 사전에 경고하여야 한다. 위협사격도 경고로 간주된다. 총기는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경고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00조 총기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① 수형자에 대하여 총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1. 수형자가 무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기구를 버리라는 되풀이 되는 요구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2. 수형자가 폭동(형법 제121조)을 기도하는 때
3. 수형자의 도주를 저지시키거나 또는 수형자를 체포하기 위한 때

개방시설로부터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기가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는 그 자가 수형자를 폭력으로 도주하게 하거나 또는 폭력에 의해 시설에 침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 보건상의 강제조치**

① 의학적인 검사, 치료 및 급양은 생명의 위험, 수형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그 밖의 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는 때에만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그 관계자[5]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교정당국은 수형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표시할 수 있는 동안은 이러한 조치의 실시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강제적인 신체검사는 건강보호 및 위생을 위하여 그것이 신체의 손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

5) 당해 수형자, 조치를 하는 의사, 그 보조자 등

③ 이러한 조치는 의사가 적시에 도착할 수 없고, 그리고 연기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의 응급조치와는 별도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제13절 징벌처분(Disziplinarmaßnahmen)

### 제102조 요건

① 수형자가 이 법에 의하거나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그 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형자에게 훈계하는 것으로 충분한 때에는 징벌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③ 징벌처분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하여 형사절차 또는 과료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제103조 징벌의 종류

① 허용되는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Verweis)
2. 3월 이내의 자용금 사용 및 물품구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2주 이내의 독서물(Lesestoff)[6]의 제한 또는 금지 및 3개월 이내의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의 제한 또는 금지. 다만, 동시의 금지는 2주까지로 한한다.
4. 3월 이내의 자유시간노작을 위한 물품 또는 공동행사에의 참가의 제한 또는 금지
5. 4주 이내의 자유시간 중 격리수용
6. (폐지)
7. 이 법에 규정된 수입의 정지 중 4주 이내의 지정된 작업 또는 노작의 금지
8. 3월 이내의 시설 밖의 사람과의 외부교통을 긴급한 용무에 한정하는 제한
9. 4주 이내의 금치(Arrest)

② 금치는 중대하거나 또는 수 회 반복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에 의해서만 과할 수 있다.

③ 여러 종류의 징벌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3호 내지 8호에 의한 처분은 가능한 한 위반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권능(Befugnisse)과 서로 관련하는 때에만 명해져야 한다. 이것은 금치의 병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4조 징벌의 집행, 관찰을 위한 유예

① 징벌은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한다.

② 징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관찰을 위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③ 자용금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저축되는 자용금은 갱생자금으로 가산된다.

④ 수형자가 시설 밖의 자와의 외부교통이 제한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는 그 자와 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상시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수신인, 연방공화국 법원, 법무부 및 수형사에 관한 법률사건의 변호사 및 공증인과의 서신교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6) 도서, 신문 등 읽을 수 있는 모든 것

⑤ 금치는 독거수용하여 집행한다. 수형자는 특별한 징벌실(Arrestraum)에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징벌실은 주야간 수용을 위하여 지정된 거실에 필요로 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68조 내지 제70조에 따른 수형자의 권한은 정지된다.

### 제105조 징벌권한

① 징벌처분은 시설의 장이 명한다. 다른 시설에 이송하기 위한 호송도중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수한 시설의 장이 권한을 가진다.

② 수형자의 위반행위가 시설의 장에 대하여 행해진 때는 감독관청이 결정한다.

③ 수형자에 대하여 다른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미결구금 동안 명해진 징벌처분은 의뢰에 의해 집행한다. 제104조 제2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6조 절차

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수형자의 해명은 청취된다. 사실조사(Erhebung)는 조서에 기록되고, 수형자의 변명(Einlassung)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②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결정에 앞서 수형자의 처우에 참가하는 자와의 회의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부녀에 대한 징벌은 그 처분에 앞서 시설 내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결정은 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구두로 고지한다. 그리고 간단한 이유가 기록된 서면을 작성한다.

### 제107조 의사의 참가협력

① 금치가 집행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치기간 동안 수형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② 금치의 집행은 수형자의 건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된다.

## 제14절 권리구제(Rechtsbehelfe)

### 제108조 불복신청권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처우에 대하여 시설의 장에게 희망의 개진(Wünsch), 문제제기(Anregungen) 및 불복신청(Beschwerde)을 할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면담시간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감독관청의 대표자가 시설을 시찰하는 때에는 수형자는 자신과 관계있는 처우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직무감독권자에 대한 불복신청(Dienstaufsichtsbeschwerde)할 수 있는 것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9조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① 행형 영역의 개개의 사안을 규제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신청과 함께 거부되거나 또는 중단되어 있는 처분의 실시를 의무지우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신청자(Antragsteller)가 처분 또는 그 거부 또는 중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주 법은 신청이 선행하는 행정전치절차(Verwaltungsvorverfahren) 후에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제110조 관할

신청에 대해서 관계 교정당국의 소재지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형집행부(Strafvollstreckungskammer)가 결정한다. 제109조 제3항 따른 행정전치절차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형집행부의 관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111조 당사자

① 법원 절차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
2. 다툼이 되고 있는 처분을 명하거나 또는 신청된 처분을 거부 또는 중단한 행정관청

② 고등법원 또는 연방최고재판소(Bundesgerichtshof)대한 절차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청자는 이것을 관할하는 감독관청이다.

### 제112조 신청기간, 원상회복

① 신청은 처분 또는 처분거부의 송달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또는 법원 서기과의 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전치절차(제109조 제3항)가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재결(Widerspruchsbescheid)의 송달 또는 서면에 의해 고지와 함께 시작된다.

② 신청자가 귀책사유 없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받은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자에게 종전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청은 장해가 해소된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은 신청 시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흠결된 법률행위는 신청기간 내에 추완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해진 때에는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신청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청은 그것이 1년의 기간 만료 전에 불가항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13조 작위의 신청

① 신청자가 처분의 부작위(Unterlassen einer Maßnahme)에 대하여 다투는 때,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조기에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당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후 3월을 경과하기까지는 할 수 없다.

② 신청된 처분이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된 처분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해지는 때 본안소송(Rechtsstreit in der Hauptsache)은 종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1년 기간의 경과선의 신청이 불가항력 때문에 어쩔수 없거나 또는 개별 사안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후 1년 경과 시까지만 허용된다.

### 제114조 처분의 중지

①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처분유예의 효력(aufschiebende Wirkung)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신청자의 권리실현이 저해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고, 보다 높게 평가해야 할 즉각적인 실행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투고 있는 처분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가처분명령(einstweilige Anordnung)를 발할 수 있고,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제123조 제1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다툴수 없고 법원에 의해서 언제라도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제기 전에 허용된다.

### 제115조 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결정은 사건 및 분쟁상태를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략하게 감경한다. 변호인 서류에 사건 및 분쟁상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 통일을 위해 유래와 날짜에 따라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는 재판기록문서 상의 관련서류들을 참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다툼이 된 판단(Entscheiden)에 논거가 뒤따르고 그 판단에서 이를 확인하는 한 판단논거에 대한 서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처분이 위법하고 신청인이 이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때,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행정전치절차가 선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재결을 취소한다. 그 처분이 이미 집행된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을 위하여 성숙되는 동안 행정관청이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다.

③ 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해결된 경우라도 신청자가 그 확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함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처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고 동시에 신청자가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이 결정을 위해 성숙한 때에는 신청이 있었던 직무행위를 행해야 하는 원행정관청의 의무를 선고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법적 견해를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회답하여야 할 의무를 선고한다.

⑤ 교정당국이 재량으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그 처분 또는 처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재량의 법적한계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권한부여의 목적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량을 행사했기 때문에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 제116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① 지방법원 형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리의 형성을 위한(zur Fortbildung des Rechts) 또는 통일적 판례의 확보를 위한(zur Sicher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prechung) 재심사(Nachprüfung)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허용된다.

②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결정이 법률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된 때에는 위반이 있다.

③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처분유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14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④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때 항고(Beschwerde)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7조 항고에 관한 관할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내에 형집행부의 소재지가 있는 고등법원의 형사부(Strafsenat)가 결정한다.

### 제118조 방식, 기간, 이유

①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그 다툼이 되는 결정을 한 법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송달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내에 어떤 범위에서 결정을 다투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진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는 이유가 부기되어야 한다.

② 이유에는 그 결정이 절차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그밖의 법규위반의 어느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가가 명확하

게 적시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자를 포함하는 사실이 주장되어야 한다.

③ 항고인(Beschwerdeführer)으로서의 신청자는 이 사실을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거나 또는 법원 서기과의 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 제119조 항고에 대한 결정

① 형사부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② 형사부의 심리는 항고신청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또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그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의 이유 중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③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형사부가 그 항고를 전원일치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툼이 있는 결정은 취소된다. 형사부는 사건이 결정을 함에 성숙된 때에는 형집행부에 대신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은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형집행부에 환송된다.

⑤ 형사부의 결정은 종국재판으로 한다.

### 제12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① 이 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송비용구조(Prozeßkostenhilfe)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1조 절차의 비용

①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에서는 절차의 비용 및 필요경비가 누구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패소하거나 또는 그 신청을 취하하는 때에는 그 자는 절차의 비용 및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처분이 제1항에 따라 결정전에 신청의 취하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한 재량에 의하여 절차의 비용 및 필요비용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 제2문은 제115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64조 내지 제4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09조에 따른 절차의 비용을 위하여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기준보수일액의 3배를 초과하는 자용금(제47조)의 부분도 청구할 수 있다.

## 제15절 형집행(Strafvollstrechung) 및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 제122조

① 미결구금이 형집행 목적을 위하여 중단되거나 또는 수형자에게 대하여 그 밖의 사건에 대한 미결구금이 명해진 때에는 그 수형자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의 목적으로부터 필요하다고 하는 자유의 제한에도 복종한다. 필요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의해 관할을 가지는 판사가 명한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6항 제2문 및 제3문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제148조a는 적용된다.

### 제16절 사회치료시설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동 구획**

① 제9조에 의한 집행을 위하여 그 밖의 교정시설과는 분리된 사회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 내에도 사회치료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구획에는 사회치료시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① 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준비를 위하여 6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5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휴가가 주어진 자에게는 휴가를 위한 지시가 주어져야 한다. 그 자에게는 시설이 지정한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시가 있을 때 단시간 내에 시설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4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휴가는 철회된다.

**제125조 자유의사에 따른 수용**

① 이전에 피수용자(Gefangene)였던 자로 그에 대한 처우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의 신청에 따라 그 자를 일시적으로 다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그 수용은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② 수용된 자에 대한 행형상의 조치는 직접강제에 의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수용된 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제126조 예후적 보호**

사회치료시설의 전문가의 수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는 한 수형자의 예후적 보호도 보장되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제127조 (폐지)**

**제128조 (폐지)**

## 제3장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 제1절 보안구금

**제129조 수용의 목적**

보안구금자(Sicherungsverwahrte)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수용된다. 그 자에게는 자유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원조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13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보안구금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제126조까지, 제179조에서 제187조까지)을 준용한다.

**제131조 설비**

보안시설(Sicherungsanstalt)의 설비, 특히 거실의 설비 및 원조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의미있게 형성하도록 피수용자를 원조하고 그 자를 장기의 자유박탈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자의 개인적인 필요성은 가능한 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32조 의복

수용된 자는 보안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복 · 내의 및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탁, 수선 및 정기적인 교환은 자비로 한다.

### 제133조 자영직업활동, 용돈

① 피수용자에게는 자영직업활동이 석방 후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고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보수를 받는 자영직업활동이 허가된다

② 용돈(제46조)은 월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 일일급여의 3배를 하회해서는 아니된다.

### 제134조 석방준비

석방을 시행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형을 완화하거나 또는 1개월까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사회치료시설에 있는 피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24조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5조 여성시설에의 보안구금

여성의 보안구금은 그 시설에 보안구금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여성시설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

## 제2절 정신의료시설(psychiatrischen Krankenhaus) 및 금단치료시설(Entziehungsanstalt)에의 수용

### 제136조 정신의료시설에의 수용

정신의료시설에서의 피수용자의 처우는 의학적 견해에 따른다. 가능한 한 그 자는 치유받거나 또는 그 자의 상태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기까지 교정을 받아야 한다. 그 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보호 및 간호가 주어진다.

### 제137조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금단치료시설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목적은 그 자의 상습성을 치료하고 그 원인이 된 잘못된 사고(Fehlhaltung)를 제거함에 있다.

### 제138조 그 밖의 규정의 적용

① 정신의료시설 또는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연방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주법에 따른다. 제51조 제4항 및 제5항 및 제75조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수용비용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항 제2문에 대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가능하게 된 작업을 하는 것이 수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는 제50조 제1항 제4문에 대하여 공공시설에서 생활하고 그 체재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부조수급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받는 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수용자에게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50조를 준용한다. 노작을 작업으로 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는 처분실행(Maßregelvollzug)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징수는 형집행관이 담당하지만 주정부는 법규명령에 따라 다른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그 비용은 사법행정용공공물의 사용료로 징수된다.

③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09조에서 제12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장 교정당국(Vollzugsbehörden)

## 제1절 교정시설(Justizvollzugsanstalt)의 종류 및 설비

### 제139조 교정시설

자유형 및 보안구금에의 수용은 주사법행정부의 사법집행시설에서 집행한다.

### 제140조 분리수용

① 보안구금에의 수용은 자유형 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교정시설과는 분리된 시설 또는 분리된 구역에서 집행한다.

② 여성는 남성과 분리하여 특별한 여성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성을 위하여 남성시설내에 분리된 구역을 둘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구획의 처우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1조 다양화

①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다양한 필요성에 따른 처우가 보장되는 구금장소(Haftplätze)가 각종 시설 또는 구역에 마련되어야 한다.

② 폐쇄시설은 보안이 강화된 수용설비를 갖추고, 개방시설시설은 도주에 대한 예방수단을 전혀 아니하거나 또는 보다 가벼운 예방수단만을 둔다.

###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여성을 위한 시설에서는 모가 그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3조 시설의 규모와 형태

① 교정시설은 개개인의 필요성에 맞는 처우가 보장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은 수형자를 구성원의 개괄적 파악이 가능한 보호 및 처우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③ 사회치료시설 및 여성을 위한 교정시설에 예정된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제144조 거실의 규모 및 구조

① 휴식시간과 자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실 및 공동생활실과 접견실은 거주하기에 편안하거나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상응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충분한 통풍시설을 갖추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난방 및 환기, 바닥면적 및 창문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연방사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법규명령에 따라 거실의 통풍시설, 환기, 바닥면적, 창문면적 및 난방 및 설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 제145조 수용능력의 설정

감독관청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수용능력을 휴식시간(제18조) 동안 적정한 수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때에는 작업, 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한 장소 및 종교교회, 자유시간, 운동, 치료조치 및 접견을 위한 거실 수가 충분하게 확보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① 거실에는 정해진 수 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이에 대한 예외는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감독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석방준비를 위하여 폐쇄시설에는 개방설비(offene Einrichtungen)가 부설되거나 또는 분리된 개방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148조 작업공급,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

① 교정당국은 노동 및 경제활동 단체 및 관서와 협력하여 모든 작업능력을 가진 수형자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자가 직업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받고 중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적당한 조직상의 조치에 따라서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이 직업상담, 직업훈련중계 및 노동중계와 같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49조 시설공장, 직업훈련을 위한 설비

① 시설에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및 직업훈련(제37조 제3항) 및 작업요법적 노작(제37조 제5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열거한 공장 및 그 밖의 설비는 시설 밖의 조건과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보호 및 재해방지규칙(Arbeitsschutz und Unfallverüütungsvorschriften)은 준수되어야 한다.

③ 직업훈련 및 작업요법적 노작은 사기업의 적당한 시설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공장 및 그 밖의 설비에서는 기술적 및 전문적 지도를 그 기업에 소속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0조 행형공동체

제139조에서 제149조까지에 의거한 교정시설을 위하여 각 주는 행형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다.

##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 제151조 감독관청

① 주사법행정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을 한다. 주사법행정부는 감독권한을 교정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작업활동(Arbeitswesen)에 대한 감독 및 공공작업(Sozialarbeit), 보수교육, 보건 및 그밖의 전문적인 것에 의거한 수형자 처우에 대한 감독에는 본래의 전문직원이 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청이 본래의 전문직원을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적인 조언(fachliche Beratung)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2조 집행계획서

① 주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장소적 및 사물적 관할을 형집행계획에 규정한다.

② 집행계획서는 형확정자에 대하여 분류시설 또는 분류구획(Einweisungsanstalt oder abteilung)에 수용하는가를 정한다. 그 후의 행형을 위한 이송에 대해서는 처우상 및 사회복귀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관할은 일반적 표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제153조 이송에 대한 권한

주법무부는 이송에 대한 결정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그것을 중앙관서(zentrale Stelle)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절 교정시설의 내부조직

### 제154조 협동관계

① 행형에 종사하는 자는 전원이 협동관계에 있고 행형임무의 달성에 참여 · 협력한다.

② 석방자보호(Entlassenenfürsorge), 보호관찰(Bewahrungshilfe) 관청 및 부서, 행상감독을 위한 감독관서, 직업안정소(den AgenturenfürArbeit),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담당기관, 그밖의 관청의 원조부문 및 사적인 후생복지사업단체(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spflege)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그 영향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사람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5조 교정직원

① 교정시설의 임무는 교도관(Vollzugsbeamte)에 의해 수행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는 교정시설의 그 밖의 직원 및 겸직 또는 계약에 의해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② 각각의 시설에는 그 임무에 상응하는 각종 직종의 직원, 특히 일반행형직, 사무직 및 작업직의 직원과 교회사, 의사, 교육전문가, 심리전문가 및 공공복지담당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156조 시설관리

① 모든 교정시설에는 고위직(höherer Dienst) 공무원이 전문의 시설장에 임명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시설은 특정 상급직(gehobener Dienst)의 공무원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외부에 대하여 시설을 대표한다. 시설의 장은 특정한 직무범위가 다른 교정직원의 책임 또는 그들의 공동책임에 관계되는 것으로 위임되지 아니하는 한 행형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88조에 따른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및 제103조에 따른 징벌처분을 명하는 권한은 감독관청의 동의하에서만 위임할 수 있다.

### 제157조 종교교회

① 교회사는 각각의 종교단체의 협력을 얻어 전임으로 임명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② 종교단체에의 소속원이 소수여서 제1항에 따른 교회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교회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의 동의하에 시설교회사는 무소속의 교회보조자(freie Seelsorgehelfer)를 채용하거나 또는 종교예배 및 그 밖의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교회사를 외부로부터 초빙할 수 있다.

### 제158조 의료적 배려

① 의료적 배려는 전임의 의사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겸임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의무가 있는 의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② 환자의 간호는 간호법(Krankenpflegegesetz)에 따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1문의 의미의 자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호에 관한 그 밖의 양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행정직 직원을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159조 회의

행형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를 위하여 그리고 행형상 중요한 결정의 준비를 위하여 시설의 장은 처우에 지도적으로 관여하는 자와의 회의를 개최한다.

### 제160조 수형자 공동책임

수형자 및 피수용자에게는 그 특성 및 시설의 임무에 비추어 그러한 자의 참여와 협력이 적합한 공통의 이익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책임을 나누거나 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161조 시설 내 규칙

① 시설의 장은 시설 내 규칙을 정한다. 그것은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시설 내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견시간, 접견의 횟수 및 간격
2. 작업시간,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3. 각종 신청 및 불복신청 또는 감독관청의 대표자에게 상담하는 시기, 장소 및 시간

③ 시설 내 규칙에 대한 인쇄물은 각 거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절 시설자문위원회(Anstaltsbeirat)

### 제162조 자문위원회의 조직

① 교정시설에는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② 교정직원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세부사항은 각 주가 정한다.

### 제163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행형의 형성 및 수형자의 보호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그 구성원은 문제제기 및 개선제안으로 시설의 장을 지원하고 수형자의 석방 후의 사회복귀를 원조한다.

### 제164조 권한

①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특히 희망, 문제제기 및 고충(Beanstandungen)을 수리할 수 있다. 그 구성원은 수용, 취업, 직업훈련, 급식, 의료적 배려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수형자 및 피수용사를 그 자의 거실에서 방문할 수 있다. 대화 및 서신수수는 감시받지 아니한다.

###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직무 외에 성질상 비밀로 하여야 하는 모든 사항, 특히 수형자 및 피수용자의 성명과 신상(Persönlichkeit)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그 자의 직무가 종료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 제5절 행형에 있어서 형사학적 연구

### 제166조

① 형사학부문(kriminologischer Dienst)은 연구시설과 협동하여 행형, 특히 처우방법을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형사사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한다.

② 제186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제5장 교정시설에서 그 밖의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

## 제1절 교정시설에서의 유치(Strafarrest)집행

### 제167조 원칙

교정시설에서의 유치집행에 대하여는 아래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제122조까지, 제179조에서 제187조까지)을 준용한다. 제50조는 제39조에서 언급된 취업의 경우만 적용된다.

### 제168조 구금,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동안의 혼거수용(제17조 및 제18조)은 수형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는 유치가 형사구금(Strafhaft) 또는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수용을 중단하고 집행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수용자에게는 매주 1회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접견 및 서신수수는 그것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의 이유상 필요한 때에만 금지 또는 감시할 수 있다.

### 제169조 의류, 내의 및 침구

피수용자는 보안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복 · 내의 및 자신의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비로 세탁, 수선 및 정기적인 교환을 할 수 있다.

### 제170조 구입

피수용자는 식품, 기호품 및 신체위생용 약제를 적당한 범위에서 시설의 중개에 의해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

## 제2절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및 강요구류의 집행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 제171조 원칙

법원이 명한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강요구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구금의 특성 및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하에서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제199조 제5항 및 제6항) 그리고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제49조까지, 제51조에서 제122조까지, 제179조에서 제187조까지)을 준용한다.

### 제172조 수용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중의 혼거수용(제17조 및 제18조)은 피구류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이는 질서구류가 형벌구금 또는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수용을 중단하고 집행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73조 의류, 내의 및 침구

피구류자는 보안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복, 내의 및 자신의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비로 세탁, 수선 및 정기적인 교환을 할 수 있다.

### 제174조 구입

피구류자는 식품 및 기호품과 신체위생용 약제를 적당한 범위에서 시설의 중개에 의해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

### 제175조 작업

피구류자는 작업, 노작 또는 보조활동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3절 소년교정시설 및 미결구금의 집행에 있어서의 작업보수

### 제176조 소년교정시설

① 소년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가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자는 위탁작업 및 단순반복작업에 관한 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über die Akkord und Fließarbei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작업보수를 받는다. 그밖의 지정된 노작 및 보조활동을 한 때에는 노작의 종류 및 작업성적에 상응하는 한에서 제1문에 따른 작업보수를 받는다. 제43조 제5항에서 제11항까지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② 작업능력이 있는 수형자로 자신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에서 작업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제4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 및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임신중의 모는 휴업보상을 받는다. 휴업보상의 금액 및 기간은 제45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수형자가 책임없이 작업보수나 교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하는 때에는 적당한 용돈을 받는다.

③ 허약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거나 이미 주어지지 아니하는 수형자는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적당한 용돈을 받는다. 제1항 제2문에 따라 노작 또는 보조활동에 의해 작업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4조 및 제49조에서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77조 미결구금

미결구금자(Untersuchungsgefangene)가 그 자에게 지정된 작업, 노작 또는 보조활동을 한 때에는 그 자는 제43조 제2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정되어 고지된 작업보수를 받는다. 작업보수의 산정은 제200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 제4편 제18조에 따른 수급액의 100분의 5에 그 의거를 두어야 한다(기준보수). 제43조 제6항에서 제11항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년 및 연장(heranwachsend)[7]의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제176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을 준용한다.

## 제4절 교정시설에서의 직접강제

### 제178조

① 직접강제에 관한 본법 제94조에서 제101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해 행형법의 적용범위(제1조) 외에 있는 교정직원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② 미결구금 및 형사소송법 제126a조에 의한 가수용(einstweilige Unterbringung)의 집행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5항 및 제6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년구금(Jugendarrest), 유치집행 및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및 강요구류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주를 좌절시키거나 또는 재체포를 위하여(제100조 제1항 3호) 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유치집행 또는

7) 18세 이상 21세 미만

질서구류, 보전구류, 강제구류 또는 강요구류가 미결구금, 형벌구금 또는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수용을 중단하고 집행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주 법은 특히 소년형(Jugendstrafe)의 집행에 있어서 무기사용 권한에 대한 새로운의 제한을 정할 수 있다.

## 제5절 정보보호

### 제179조 정보수집

① 교정당국은 신상관계정보(personenbezogene Daten)를 아는 것이, 이 법에 따라 임무로 되어 있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이것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신상관계정보는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본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수집, 다른 자 또는 관서로부터의 수집 및 지적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 1항a가 적용된다.

③ 수형자가 아닌 자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수형자의 처우, 시설의 안전 및 자유형의 집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동시에 수집방법이 본인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본인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교정당국의 외부의 사람 또는 관서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④ 수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신상관계정보의 수집은, 그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한 목적이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는 때 그 정보에 기록된 본인에게 통지한다. 정보가 다른 사람 또는 관서로부터 수집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그 성질상 특히 제3자의 우월적인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때
2. 통지비용이 보호의 목적과 규형을 잃고, 또한 본인의 우월적인 보호해야 할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제180조 처리 및 사용

① 교정당국은 이 법률에 따라 그 임무로 되어 있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신상관계정보를 처리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시설의 보안 및 규율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때 수형자에게 사진이 딸린 신분증명서의 휴대를 의무지울 수 있다.

②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신상관계정보의 처리 및 사용은 그것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허용된다.

1. 외국세력을 위하여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 또는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법의 적용지역 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폭력행사 또는 그에 대한 준비활동을 위한 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a)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안전에 반하는 때
   b) 연방 또는 주의 헌법기관(Verfassungsorgane) 또는 그 구성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기도하는 때
   c)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때
2. 공공의 복지에 대한 현저한 불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3. 다른 사람의 권리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4.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소추하기 위하여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규율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추궁하기 위하여
5. 형의 집행에 관계되는 처분 또는 형집행법상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③ 사법적 권리보호가 제109조에서 제121조까지에 정하는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또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열거된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처리 또는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목적에 추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할 공공관서(offentliche Stelle)는 신상관계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1. 재판보조(Gerichtshilfe), 소년심판보조(Jugendgerichtshklfe), 보호관찰 또는 행상감독의 처분
2. 사면사건(Gnadensachen)의 결정
3. 법률에서 정해진 사법통계
4.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따라 정지되거나 감소하는 급부에 대한 결정
5. 수형자의 친족(형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원조조치의 개시
6. 군입대 및 제대와 관련한 연방국방군의 직무상 처분
7. 외국인법에 의한 처분
8. 과세의 실시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제공도 다른 법의 규정이 그것을 정하고 그 법에서 수형자의 신상관계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공공관서 및 공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nicht-öffentliche Stelle)에 대하여 교정당국은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구금사실, 1년 이내의 석방의 예상 및 시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할 수 있다.

1. 공공관서가 소관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
2. 공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통지를 받는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 있고, 또한 수형자가 정보제공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을 때

또한,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법률상 청구권의 확인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서면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수형자의 석방지 주소 또는 재산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통지에 앞서 수형자의 의견을 묻는다. 다만, 그로 의해 신청자의 이익추구가 좌절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 우려되는 때 및 비교형량의 결과 신청자의 이익이 수형자의 사전 의견청취의 이익에 우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청취가 행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형자에게는 교정당국의 통지가 사후에 고지된다.

⑥ 신상관계정보서류는 다른 행정관청, 직무감독, 전문적 감독 또는 직무상의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 관청, 행형, 형의 집행 및 형법상의 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법원과 형집행 및 형사소추관청에 대해서만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공공관서에의 대출은 정보제공이 부당하게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관서의 설명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정보에서 불충분한 때 한하여 허용된다. 이것은 교정당국에 의해 감정을 위탁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의 서류대출에 대해서 준용한다.

⑦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신상관계정보가 본인 또는 제3자의 그밖의 신상관계정보와 결합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때에만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그 비밀유지에 대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우월하지 아니하는 때 이러한 정보의 제공도 허용되지만 정보수령인에 의한 이러한 정보의 처리 또는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⑧ 접견 또는 서신수수의 검사시 및 소포의 내용 검사 시에 알게된 신상관계정보는 제2항에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제109조에서 제121조까지에 따른 재판절차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의견청취 후의 처우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⑨ 제17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형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수집된 신상관계정보는 그 수집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또는 현저하게 중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또는 소추를 위해서만 처리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⑩ 신상관계정보의 제공은 제182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제한 또는 특별한 법률상의 사용규정에 반하는 때 실시하지 아니한다.

⑪ 제공허가의 대한 책임은 교정당국이 진다. 제공이 공공관서의 요청에 의한 때에는 당해 관서가 그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교정당국은 제공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특별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공요청이 정보수령인의 직무범위 내의 것이지 여부 및 제공이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제181조 목적에의 구속**

교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상관계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 또는 사용될 수 있다. 정보수령인은 그 정보를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도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때에 한하여 정보수령자는 그 정보를 위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보수령인인 때에는 제공자인 교정당국이 동의한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비공공적 지위에 있는 정보수령인에게 제1문에 따른 목적의 구속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182조 특별한 정보의 보호**

① 수형자의 종교적 신조 및 사상적 신조 및 의사의 진찰 시에 얻어진 신상관계정보는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서는 아니된다. 수형자에 관한 그 밖의 신상관계정보는 그것이 시설내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80조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는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자가 수형자가 비밀로 하고 털어놓은 신상관계정보, 또는 수형자에 대하여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 신상관계정보는 교정당국에 대해서도 비밀로 한다.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자는 그것이 교정당국의 임무수행을 위하거나 또는 수형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장에게 이것을 개시하여야 한다. 의사는 그것이 교정당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거나 또는 수형자나 제3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건업무의 범위 내에서 알게된 비밀을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그 밖의 공개권한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수형자에게는 신상조사 등에 앞서 제2문 및 제3문에 따른 공개권한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서 공개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된 목적을 위해서만 또는 공개가 허용될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동시에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자가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 아래서만 처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특정 시설직원에 대하여 직접 공개할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 밖의 의사 또는 심리전문가가 수형자의 진찰 또는 처우를 위촉받은 때, 위촉을 받은 의사 또는 심리전문가도 시설의 의사 또는 수형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시설의 심리전문가와 같이 정보공개의 권한을 가진다는 조건 아래에서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83조 서류 및 데이터파일 속의 정보보호

① 개개의 교정직원은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을 위하거나 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협동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신상관계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② 신상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서류 또는 데이터파일은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불법접근 및 불법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건강관리관계서류 및 병력진료기록카드는 그 밖의 서류와 구별되어 취급되고 특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한 연방정보보호법 제9조가 적용된다.

### 제184조 정정, 삭제 및 차단

① 데이터파일에 기록된 신상관계정보는 수형자의 석방 또는 다른 시설에의 이송으로부터 늦어도 2년 후에 삭제되어야 한다. 수형자신분장부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수형자의 가족성, 이름, 출생시 성, 생년월일, 출생지, 입소일 및 출소일에 수형자 신분장부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서류중의 신상관계정보는 수형자의 석방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는 그것이 다음에 열거하는 목적을 위하여 불가결한 때 제공 또는 사용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소추하기 위한 경우
2. 제186조에 의거하여 학술적 연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현존하는 입증곤란(Beweisnot)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4.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한 법률상의 청구권을 확인하고, 집행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이러한 사용제한은 수형자가 자유형 집행을 위하여 새롭게 수용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때에 종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의 보존은 다음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수형자 신분장부, 건강관리관계서류 및 병력진료기록카드 20년
2. 수형자 명부 30년

이것은 특정사실에 의거하여 제2항 제1문에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계속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존기간은 서류의 성질에 따라서 별도 보관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된다. 연방 및 각 주의 공문서법의 규정은 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행하여진 것을 확인된 때, 그것이 본인에게 가치가 있는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실을 정보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관계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연방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제8항까지가 적용된다.

### 제185조 본인에 대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수형자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에 준거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가 그의 법률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때문에 열람을 필요로 하는 때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중의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담당자의 직무는 정보보호를 위한 주담당자가 대신하여 실시하고, 최상급의 연방관청의 직무는 상응하는 주 관청이 대신하여 실시한다.

### 제186조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학술목적을 위한 정보개시 및 서류의 열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76조를 준용한다.

###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공공관서 및 공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제2조), 그 밖의 개념규정(제3조), 본인동의의 취득 및 그 방식(제4조 a 제1항 및 제2항), 정보의 비밀(제5조), 본인의 절대적 권리(unabdingbare Rechte)(제6조 제1항) 및 정보보호의 실시(제1조 제2항)에 대한 연방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 형벌규정 및 과료규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주담당자에 의한 감독규정에 관하여,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절 연방법의 조정

### 제188조 (폐지)

### 제189조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관한 법률

1975년 8월 20일 재판비용법, 집행관의 비용에 관한 법률, 연방변호사수수료법 및 그 밖의 규칙의 개정을 위한 법률(연방법률공보(Bundesgesetzblatt) I 2189페이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1940년 2월 14일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관한 법률(라이히관보 I 357페이지)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①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행형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금비용분담금은 다음 경우에 징수된다.

1. 수형자 또는 피수용자가 자신에게 지정되거나 또는 가능한 작업 또는 노작을 하지 아니하는 때
2. 그 자가 행형의 계속기간 중 받는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때는 구금비용분담금은 그 소득액까지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청구는 법률상 부양청구권 및 용돈, 자용금 및 갱생자금(행형법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1항)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신의료시설 또는 금단치료시설의 피수용자로부터는 피수용자가 자신에게 지정되거나 또는 가능한 작업을 한 때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금비용분담금이 징수되어야 한다.」

##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 제190조 라이히보험법

라이히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3조 다음에 장의 명칭인「제5장a, 피수용자」및 다음 제163조a를 추가한다.

「제163조a 이 법상 의미에서의 피수용자란 미결구금,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이 집행중인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6조a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그 자가 이

법에 따라서 유상의 피고용자로 간주되는 때는 각각의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주가 고용자로 간주된다.」

2. 제165조b 다음에 다음 제165조c를 추가한다.

「제165조c ①작업보수, 교육보조금 또는 휴업보상(행형법 제43조에서 제45조까지, 제176조 및 제177조)을 받는 피수용자(제163조a)도 제165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미의 유상의 피고용자로 간주된다. 이 자의 보험가입의무에 대한 전제조건은 그 자가 제165조 제1항 제3호, 제315조a 및 라이히광산공제조합법 제 1항 제4호과 제5호 및 제49조를 제외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가입의무가 과해지지 아니한 것이다.

② 제169조, 제17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3조 및 제174조에 열거된 자가 관리법상의 규정 또는 원칙에 따라 보조자격을 가지는 때는 그동안 보험가입 외로 한다.

③ 건강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위하여 및 그 자에게 가족질병간호 의무가 있는 친족을 위하여 질병원조의 급부에 의한 종류에 따라 계약급부를 받는 자는 신청에 의거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제173조a 제2항은 이 경우에 적용된다.

④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금을 제외한 급부의 산정은 노동보수로 하고 전년도 양성중인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노동자(Arbeiter) 및 종업원(Angestellte)의 연금보험의 모든 피보험자의 평균적인 노동보수의 100분의 90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거가 되어야 한다. 월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12분의 1일이, 또한 일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360분의 1이 의거가 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는 그 자가 최종적으로 구성원이었던 보험조합에 소속한다. 보험계약이 존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5조에 따른 가족원조의 청구권을 가진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일반건강보험조합의 구성원이 된다. 그와 같은 친족이 없는 때에는 각각의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최상급 사법관청의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일반건강보험조합의 구성원이 된다.」

3. 제189조 제1문 가운데 종지부(Punkt)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의 문장을 추가한다.

「행형법 제45조에 따른 실업보상은 노동보수와 동등으로 한다.」

4. 제200조c 제2항 제1문 중 종지부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의 문장을 추가한다.

「행형법 제45조에 따른 휴업보상은 노동보수와 동등으로 한다.」

5.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1. 피보험자가 수형자로서 행형법에 따른 보건상의 부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거나 또는 그 밖의 보건상의 부조를 받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그 친족을 노동불능으로 되기 직전에 그 자의 작업보수 또는 휴업보상에 의해 주로 부양하고 있었던 때는 그 한도에서 건강보험금이 주어지고 그 친족에게 지불된다.」

6. 제381조 제1항 제2문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매월의 보수가 노동자의연금보험의 월수에 적용되는 보험료산정한도(제1385조 제2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 지원에 의한 사회봉사명령[8]의 촉진을 위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sozialen Jahres) 상 의미의 지원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행하는 피보험자, 제165조 제1항 제2호 a에 따른 피보험자 및 제165조c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자가 단독으로 보험료를 부담

8) 17세에서 25세까지의 사회봉사

한다.」

7. 제385조 중의 제3항a 다음에 다음의 제3항b를 추가한다.

「(3b) 제165조c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작업불능의 경우에 적어도 6주의 그 자의 작업보수의 계속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액은 2분의 1로 감경된다.」

8. 제393조b의 현재의 문언은 제1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제2항을 추가한다.

「②연방노동사회장관(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은 제165조 c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법규명령에 따라 연방참의원의 동의 아래 보험료지불을 위한 일괄적 보험료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지불방법을 규제하고 제출의무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

9. 제514조 제2항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②제165조c, 제257조a, 제257조b, 제257조c, 제306조 제2항 및 제3항, 제311조, 제312조 제2항, 제313조 제2항, 제315조a, 제316조, 제31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381조 제1항 제2문, 제385조 제3항b 및 제393조b 제2항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0. 제520조 제1항 제2문 중의 종지부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의 문장을 추가한다.

「제165조c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자는 보험료를 보상조합(Ersatzkasse)에 지급하여야 한다.」

11. 제566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법률에 의거하여 명해진 자유박탈 중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5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석방 후 일시보조금의 산정에 대해 그것이 권리자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제5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12. 제57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1항 다음에 다음의 제2항을 추가한다.

「②행형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작업보수 및 교육보조금은 제1항의 의미의 노동소득(Arbeitseinkommen)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이 된다.

13. 제1227조에 다음 제3항을 추가한다.

「③그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험가입의무가 과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작업보수, 교육보조금 또는 휴업보상(행형법 제43에서 제45조까지, 제176조 및 제177조)을 받는 피수용자(제163조a)도 제1항 제1호의 의미상 유상의 피고용자로 간주된다.」

14. 제1236조 제1항에 다음 제2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제163조a)에 대해 행형상의 이익이 그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줄 수 있다.」

15. 제1240조에 다음 제3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제163조a)의 일시보조금청구권은 교정시설에서의 그 자의 수용계속동안은 정지하지만, 피수용자가 그 친족을 갱생보호를 위한 조치의 개시직전에 그 자의 작업보수 또는 그 자의 휴업보상에 의해 주로 부양하고 있었던 때에는 일시보조금이 주어지고, 이는 친족에게 지불된다.」

16. 제1255조 중의 제6항 다음에 다음 제6항 a를 추가한다.

「(6a)제1227조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65조c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은 작업보수로 간주된다.」

17. 제130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1항 제4문은 삭제한다.

b) 제8항 중「제1227조 제1항 제1문 제6호, 제7호 및 제8호a」의 문언은「제1227조 제1항 제1문 제6호, 제7호, 제8호a 및 제3항」의 문언으로 대체한다.

18. 제138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3항중 g)의 다음의 종지부는 쉼표로 대체하고 다음의 h)를 추가한다.

「h) 제1227조 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제165조 c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

b) 제4항 중 g)의 다음의 종지부는 쉼표로 대체하고 다음의 h)를 추가한다.

「h) 제1227조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의해 단독으로」

c) 제5항의 다음에 다음의 제6항을 추가한다.

「6 고용자는 제1227조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종업원의 연금보험을 위한 보험료와 합산한 총계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연방노동사회장관은 법규명령에 따라 연방참의원의 동의하에 그 총계액의 일괄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이 금액의 개개의 보험부문에의 배분 및 지불방법을 규제할 수 있다 」

## 제191조 종업원보험법

종업원보험법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에 다음 제3항을 추가한다.

「3)작업보수. 교육보조금 또는 휴업보상(행형법 제43조에서 제45조까지, 제176조 및 제177조)을 받는 피수용자(라이히보험법 제163조 a)도 그 자가 교정시설에 수용전에 최종적으로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때에 제1항 제1호의 의미의 유상의 피고용자로 간주된다.」

2. 제13조 제1항에 다음 제2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라이히보험법 제163조 a)에 대해 행형의 이익이 그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 이것을 줄 수 있다.」

3. 제17조에 다음 제3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라이히보험법 제163조a)의 일시보조금의 청구권은 교정시설에 그 자의 수용계속 동안은 정지하지만 피수용자가 그 친족을 갱생보호를 위한 조치의 개시 직전에 자신의 작업보수 또는 휴업보상에 의해 주로 부양하고 있었던 때에는 일시보조금이 주어지고, 이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4. 제32조 중의 제6항 다음에 다음 제6항a를 추가한다.

「(6a)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라이히보험법 제165조 c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작업보수로 간주된다.」

5. 제8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1항 제4문은 삭제한다.

b) 제8항중「제2조 제1항 제8호, 제9호 및 제10호a」의 문언은「제2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a 및 제3항」의 문언으로 대체한다.

6. 제1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3항 중 h)의 다음의 종지부는 쉼표로 대체하고 다음의 i)를 추가한다.

「i) 제2조 제3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라이히보험법 제165조c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

b) 제4항 중 h) 다음의 종지부는 쉼표로 대체하고 다음 i)를 추가한다.

「i)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의해 단독으로.」

c) 제5항 다음에 다음의 제6항을 추가한다.

「⑥고용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노동자의 연금보험을 위한 보험료와 합산한 총계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연방노동사회장관은 법규명령에 따라 연방참의원의 동의하에 그 총계액의 일괄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이 금액의 개개 보험부문에의 배분 및 지불방법을 규제할 수 있다.」

7. 제205조 중「제157조, 제158조(외국입법)」의 문언 다음의 종지부는 쉼표로 대체하고,「제163조a(피수용자)」의 문언을 추가한다.

## 제192조 라이히광산공제조합법

라이히광산공제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의 다음에 다음의 제18조a를 추가한다.

「제18조a ①라이히보험법 제165조c 제1항에 열거된 피보험자는 그 자가 최종적으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때에는 연방광산공제조합(Bundesknappschaft)의 구성원이다.

② 라이히보험법 제165조c에 열거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라이히보험법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제35조 제1항에 다음 2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라이히보험법 제163조a)에 대해 행형상 이익이 그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 이를 줄 수 있다.」

3. 제39조에 다음 제3문을 추가한다.

「피수용자(라이히보험법 제163조 a)의 일시보조금의 청구권은 교정시설에서 그 자의 수용계속 동안은 정지하지만 피수용자가 그의 친족을 갱생보호를 위한 조치의 개시 직전에 그 자의 작업보수 또는 그 자의 휴업수당에 의해 주로 부양하고 있었던 때에는 일시보조금이 주어지고, 이는 친족에게 지불된다.」

## 제193조 농업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1975년 12월 18일 예산구성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연방법률공보 I 3091페이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1972년 8월 10일의 농업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1433페이지)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 제2문중의 제5호의 마지막의 종지부는 쉼표로 바꾸고 다음 제6호를 추가한다.

「6. 라이히보험법 제165조 c 제1항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때」

2. 제20조 제4항 제1문중의 종지부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행형법 제45조에 따른 휴업보상은 노동보수와 동등하다.」

3. 제30조 제2항 제1문중의 종지부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의 문장을 추가한다.

「행형법 제45조에 따른 휴업보상은 노동보수와 동등하다 」

4.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1항 제1문 제2호는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2. 피보험자가 수형자로서 행형법에 의한 보건상의 부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거나 또는 그 밖의 보건상의 부조를 받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그 친족을 노동불능이 되기 직전에 자신의 작업보수 또는 휴업보상에 의해 주로 부양하고 있었던 때는 그한에서 제19조에 따른 건강보험금이 주어지고 이는 그 친족에게 지불된다.」

b) 제1항 제2문 중의「제2호 및」의 문장은 삭제한다.

5. 제49조a의 다음에 다음의 제49조b를 추가한다.

「제49조b ①라이히보험법 제165조c 제1항에 열거된 피보험자는 그 자가 최종적으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때는 농업건강보험조합(landwirtschaftlichen Krankenkasse)의 구성원이다.

② 라이히보험법의 보험계약, 구성원의 자격, 보고 및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은 라이히보험법 제165조 c에 열거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이히보험법 제385조 제3항 b에 열거하는 보험료액에 대신하여, 노동불능의 경우에 적어도 6주의 작업보수의 계속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농업건강보험조합 소재지의 지역건강보험조합 보험료액의 2분의 1이 그 보험료액이 된다.」

**제194조 (폐지)**

**제195조 보험료 분담금의 공제**

교정당국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연방고용청을 위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피수용자가 피고용자로서 그 수입을 받은 때에는 교정당국은 작업보수, 교육보조금 또는 휴업보상 중에서 보험료로 그 자의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실시(Inkrafttreten)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이 법에 따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및 2문의 기본권(신체의 불가침 및 인신의 자유) 및 제10조 제1항의 기본권(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그 적용이 제한된다.

**제197조 (폐지)**

**제198조 시행**

① 이 법은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199조 및 제201조에도 불구하고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작업지정

제39조 제1항 : 자유로운 노동관계

제41조 제2항 : 보수교육적 조치시 동의의 필요

제149조 제1항 : 시설공장, 직업훈련을 위한 설비

제162조 제1항 : 심의회

③ 다음의 규정은 특별연방법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된 법개정에 맞추어 시행한다.

제41조 3항 : 사기업체에서의 취업 시 동의의 필요

제45조 : 휴업보상

제46조 : 용돈

제47조 : 자용금

제49조 : 생활부조금

제50조 : 구금비용분담금

제65조 제2항 제2문 : 병원체류시의 건강보험급부

제93조 제2항 : 자용금의 청구

제176조 제2항 및 제3항 : 소년행형에 있어서의 휴업보상 및 용돈

제189조 : 비용에 관한 명령

제190조 1호에서 10호까지 및 13호에서 18호까지, 제191조에서 제193조까지 : 사회보험

④ 제41조 제3항(사기업 경영공장에서의 취업시 동의의 필요)의 시행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201조 제1호(개방시설에의 수용)의 적용연장에 대해서는 제198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다.

### 제199조 경과조치

① 제198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연방법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제46조(용돈)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업보수 및 교육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필요한 때는 그에게 적당한 용돈을 지급한다.」

2. 제47조(자용금)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①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그 자의 수입으로부터 매월 7분의 3(자용금) 및 용돈(제46조)을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두어지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영직업활동(제39조 제2항)이 허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의 수입으로부터 적정한 자용금의 금액이 정해진다.」

3. (폐지)

4. 제93조 제2항(자용금의 청구)는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이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일액의 3배를 초과하는 자용금(제47조)의 부분도 요구할 수 있다.」

5. 제176조 제3항(소년행형에 있어서의 용돈)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③ 수형자가 그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업보수 및 교육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필요한 때는 그에 대하여 적당한 용돈을 지급한다.」

6. (폐지)

②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 제1항 제1문은 다음의 문장으로 한다.

「형법 제174조에서 제180조까지 또는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하는 유기자유형을 선고받고 제6조 제2항 제2문 또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회치료시설의 처우지시를 받은 수형자는 사회치료시설에 이송되어야 한다.」

### 제200조 작업보수의 범위

제43조에 따른 보수의 산정은 사회복지법 제4편 제18조에 의한 수급액의 100분의 9가 의거가 되어야 한다.

### 제201조 현존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부터 그 건조가 개시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장소, 직원 및 조직상의 시설사정상 필요로 하는 동안 수형자는 전적으로 폐쇄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2.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동안 혼거수용도 시설의 장소, 직원 및 조직상의 사정상 필요로 하는 동안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작업시간 동안의 혼거수용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만으로 한다.
3. 제18조에소 불구하고 수형자는 휴식시간 동안 또는 시설의 장소사정상 필요로 하는 동안 혼거수용될 수 있다. 8인을 초과하는 혼거수용은 1985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4.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은 개인의 필요성에 맞춘 처우를 보장하고 또한 수형자를 구성원의 개괄적 파악이 가능한 보호 및 처우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구조되고 또한 그렇게 구분되어야 한다.
5.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용능력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제202조 독일민주공화국의 자유형 및 소년구류

① 독일민주공화국의 형법에 따라 소년(Jugendiche)[9] 및 연장소년(Heranwachsene)[10]에 대하여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년형의 실행에 대한 규정이 적용하고 소년구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년구금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그 밖의 경우에 독일민주공화국 형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선고된 자유형 및 구류형(Haftstrafe)[11]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행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9) 14세 이상 18세 미만
10) 18세 이상 21세 미만
11) 6주까지의 자유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Ausfertigungsdatum: 16.03.1976

Vollzitat:

"Strafvollzugsgesetz vom 16. März 1976 (BGBl. I S. 581, 2088), das zuletz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9. Juli 2009 (BGBl. I S. 2274) geändert worden ist"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2 G v. 29.7.2009 I 2274

**Fußnote**

(+++ Textnachweis Geltung ab: 1.1.1977 +++)
(+++ Maßgaben aufgrund EinigVtr vgl. StVollzG Anhang EV;
die Maßgaben sind nicht mehr anzuwenden +++)

Wegen des Inkrafttretens der einzelnen Vorschriften und wegen einzelner Übergangsfassungen wird auf die §§ 198, 199 verwiesen

**Eingangsformel**

Der Bundestag ha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 Erster Abschnitt Anwendungsbereich

**§ 1**

Dieses Gesetz regelt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in Justizvollzugsanstalten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Zweiter Abschnitt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Erster Titel Grundsätze

### § 2 Aufgaben des Vollzuges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oll der Gefangene fähig werden, kü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ühren (Vollzugsziel). Der Vollzug der Freiheitsstrafe dient auch dem Schutz der Allgemeinheit vor weiteren Straftaten.

### § 3 Gestaltung des Vollzuges

(1) Das Leben im Vollzug soll den allgemeinen Lebensverhältnissen soweit als möglich angeglichen werden.
(2) Schädlichen Folgen des Freiheitsentzuges ist entgegenzuwirken.
(3) Der Vollzug ist darauf auszurichten, daß er dem Gefangenen hilft,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edern.

**§ 4 Stellung des Gefangenen**

(1) Der Gefangene wirkt an der Gestaltung seiner Behandlung und an der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mit. Seine Bereitschaft hierzu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2) Der Gefangene unterliegt den in diesem Gesetz vorgesehenen Beschränkungen seiner Freiheit. Soweit das Gesetz eine besondere Regelung nicht enthält, dürfen ihm nur Beschränkungen auferlegt werd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zur Abwendung einer schwerwiegenden Störung 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sind.

## Zweiter Titel Planung des Vollzuges

**§ 5 Aufnahmeverfahren**

(1) Beim Aufnahmeverfahren dürfen andere Gefangene nicht zugegen sein.
(2) Der Gefangene wird über seine Rechte und Pflichten unterrichtet.
(3) Nach der Aufnahme wird der Gefangene alsbald ärztlich untersucht und dem Leiter der Anstalt oder der Aufnahmeabteilung vorgestellt.

**§ 6 Behandlungsuntersuchung.**
**Beteiligung des Gefangenen**

(1) Nach dem Aufnahmeverfahren wird damit begonnen, die Persönlichkeit und die Lebensverhältnisse des Gefangenen zu erforschen. Hiervon kann abgesehen werden, wenn dies mit Rücksicht auf die Vollzugsdauer nicht geboten erscheint.
(2) Die Untersuchung erstreckt sich auf die Umstände, deren Kenntnis für eine planvolle Behandlung des Gefangenen im Vollzug und für die Eingliederung nach seiner Entlassung notwendig ist. Bei Gefangenen, die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verurteilt worden sind, ist besonders gründlich zu prüfen, ob di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ngezeigt ist.
(3) Die Planung der Behandlung wird mit dem Gefangenen erörtert.

**§ 7 Vollzugsplan**

(1) Auf Grund der Behandlungsuntersuchung (§ 6) wird ein Vollzugsplan erstellt.
(2) Der Vollzugsplan enthält Angaben mindestens über folgende Behandlungsmaßnahmen:
1. die Unterbringung im geschlossenen oder offenen Vollzug,
2. di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3. die Zuweisung zu Wohngruppen und Behandlungsgruppen,
4. den Arbeitseinsatz sowie Maßnahmen der beruflichen Ausbildung oder Weiterbildung,
5. die Teilnahme a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6. besondere Hilfs- und Behandlungsmaßnahmen,
7. Lockerungen des Vollzuges und
8. notwendige Maßnahm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3) Der Vollzugsplan ist mit der Entwicklung des Gefangenen und weiteren Ergebnissen der Persönlichkeitserforschung in Einklang zu halten. Hierfür sind im Vollzugsplan angemessene Fristen vorzusehen.

(4) Bei Gefangenen, die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sind, ist über ein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jeweils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eu zu entscheiden.

**§ 8 Verlegung. Überstellung**

(1) Der Gefangene kann abweichend vom Vollstreckungsplan in eine andere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ständige Anstalt verlegt werden,

1. wenn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nach der Entlassung hierdurch gefördert wird oder
2. wenn dies aus Gründen der Vollzugsorganisation oder aus anderen wichtigen Gründen erforderlich ist.

(2) Der Gefangene darf aus wichtigem Grund in eine andere Vollzugsanstalt überstellt werden.

**§ 9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1) Ein Gefangener ist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zu verlegen, wenn e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zeitiger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Behandl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nach § 6 Abs. 2 Satz 2 oder § 7 Abs. 4 angezeigt ist. Der Gefangene ist zurückzuverlegen, wenn der Zweck der Behandlung aus Gründen, die in der Person des Gefangenen liegen, nicht erreicht werden kann.

(2) Andere Gefangene können mit ihrer Zustimm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verlegt werden, wenn die besonderen therapeutischen Mittel und sozialen Hilfen der Anstalt zu ihrer Resozialisierung angezeigt sind. In diesen Fällen bedarf die Verlegung der Zustimmung des Leiters d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3) Die §§ 8 und 85 bleiben unberührt

**§ 10 Offener und geschlossener Vollzug**

(1) Ein Gefangener soll mit seiner Zustimmung in einer Anstalt oder Abteilung des offenen Vollzuges untergebracht werden, wenn er den besonderen Anforderungen des offenen Vollzuges genügt und namentlich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er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Möglichkeiten des offenen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2) Im übrigen sind die Gefangene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zubringen. Ein Gefangener kann auch dan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oder dorthin zurückverlegt werden, wenn dies zu seiner Behandlung notwendig ist

**§ 11 Lockerungen des Vollzuges**

(1) Als Lockerung des Vollzuges kann namentlich angeordnet werden, daß der Gefangene

1. außerhalb der Anstalt regelmäßig einer Beschäftigung unter Aufsicht (Außenbeschäftig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zugsbediensteten (Freigang) nachgehen darf oder
2. für eine bestimmte Tageszeit die Anstalt unter Aufsicht (Ausführ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zugsbediensteten (Ausgang) verlassen darf.

(2) Diese Lockerungen durf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angeordnet werden, wenn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der Gefangene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Lockerungen des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 12 Ausführung aus besonderen Gründen**

Ein Gefangener darf auch ohne seine Zustimmung ausgeführt werd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otwendig ist.

**§ 13 Urlaub aus der Haft**

(1) Ein Gefangener kann bis zu einundzwanzig Kalendertagen in einem Jahr aus der Haft beurlaubt werden. § 11 Abs. 2 gilt entsprechend.
(2) Der Urlaub soll in der Regel erst gewährt werden, wenn der Gefangene sich mindestens sechs Monate im Strafvollzug befunden hat.
(3) Ein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r Gefangener kann beurlaubt werden, wenn er sich einschließlich einer vorhergehenden Untersuchungshaft oder einer anderen Freiheitsentziehung zehn Jahre im Vollzug befunden hat oder wenn er in den offenen Vollzug überwiesen ist.
(4) Gefangenen, die sich für den offenen Vollzug eignen, aus besonderen Gründen aber in einer geschlossenen Anstalt untergebracht sind, kann nach den für den offenen Vollzug geltenden Vorschriften Urlaub erteilt werden.
(5) Durch den Urlaub wird die Strafvollstreckung nicht unterbrochen.

**§ 14 Weisungen, Aufhebung von Lockerungen und Urlaub**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für Lockerungen und Urlaub Weisungen erteilen.
(2)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widerrufen, wenn
1. er auf Grund nachträglich eingetretener Umstände berechtigt wäre, die Maßnahmen zu versagen,
2. der Gefangene die Maßnahmen mißbraucht oder
3. der Gefangene Weisungen nicht nachkommt.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zurücknehm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ihre Bewilligung nicht vorgelegen haben.

**§ 15 Entlassungsvorbereitung**

(1)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 der Vollzug gelockert werden (§ 11).
(2) Der Gefangene kann in eine offene Anstalt oder Abteilung (§ 10) verlegt werden, wenn dies de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dient.
(3) Innerhalb von drei Monaten vor der Entlassung kann zu deren Vorbereitung Sonderurlaub bis zu einer Woche gewährt werd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4) Freigängern (§ 11 Abs. 1 Nr. 1) kann innerhalb von neun Monaten vor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Tagen im Monat gewährt werd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Absatz 3 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 16 Entlassungszeitpunkt**

(1) Der Gefangene soll am letzten Tag seiner Strafzeit möglichst frühzeitig, jedenfalls noch am Vormittag entlassen werden
(2) Fällt das Strafende auf einen Sonnabend oder Sonntag, einen gesetzlichen Feiertag, den ersten Werktag nach Ostern oder Pfingsten oder in die Zeit vom 22. Dezember bis zum 2. Januar, so kann der Gefangene an dem

diesem Tag oder Zeitraum vorhergehenden Werktag entlassen werden, wenn dies nach der Länge der Strafzeit vertretbar ist und fürsorgerische Gründe nicht entgegenstehen.
(3) Der Entlassungszeitpunkt kann bis zu zwei Tagen vorverlegt werden, wenn dringende Gründe dafür vorliegen, daß der Gefangene zu seiner Eingliederung hierauf angewiesen ist.

## Dritter Titel Unterbringung und Ernährung des Gefangenen

### § 17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und Freizeit

(1) Die Gefangenen arbeiten gemeinsam. Dasselbe gilt für Berufsausbildung, berufliche Weiterbildung sowie arbeitstherapeutische und sonstige Beschäfti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2) Während der Freizeit können die Gefangenen sich in der Gemeinschaft mit den anderen aufhalten. Für die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kann der Anstaltsleiter mit Rücksicht auf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besondere Regelungen treffen.
(3)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kann eingeschränkt werden,

1. wenn ein schädlicher Einfluß auf andere Gefangene zu befürchten ist,
2. wenn der Gefangene nach § 6 untersucht wird, aber nicht länger als zwei Monate,
3. wenn es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t oder
4. wenn der Gefangene zustimmt.

### § 18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1) Gefangene werden während der Ruhezeit allein in ihren Hafträumen untergebracht.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ist zulässig, sofern ein Gefangener hilfsbedürftig ist oder eine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eines Gefangenen besteht.
(2) Im offenen Vollzug dürfen Gefangene mit ihrer Zustimmung während der Ruhezeit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wenn eine schädliche Beeinflussung nicht zu befürchten ist. Im geschlossenen Vollzug ist ein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zur Ruhezeit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r vorübergehend und aus zwingenden Gründen zulässig.

### § 19 Ausstattung des Haftraumes durch den Gefangenen und sein persönlicher Besitz

(1) Der Gefangene darf seinen Haftraum in angemessenem Umfang mit eigenen Sachen ausstatten. Lichtbilder nahestehender Personen und Erinnerungsstücke von persönlichem Wert werden ihm belassen.
(2) Vorkehrungen und Gegenstände, die die Übersichtlichkeit des Haftraumes behindern oder in anderer Weis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ausgeschlossen werden.

### § 20 Kleidung

(1) Der Gefangene trägt Anstaltskleidung. Für die Freizeit erhält er eine besondere Oberbekleidung.
(2) Der Anstaltsleiter gestattet dem Gefangenen, bei einer Ausführung eigene Kleidung zu trag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r nicht entweichen wird. Er kann dies auch sonst gestatten, sofern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 21 Anstaltsverpflegung

Zusammensetzung und Nährwert der Anstaltsverpflegung werden ärztlich überwacht. Auf ärztliche Anordnung wird besondere Verpflegung gewährt. Dem Gefangenen ist zu ermöglichen, Speisevorschriften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zu befolgen.

### § 22 Einkauf

(1) Der Gefangene kann sich von seinem Hausgeld (§ 47) oder von seinem Taschengeld (§ 46) aus einem von der Anstalt vermittelten Angebot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kaufen. Die Anstalt soll für ein Angebot sorgen, das auf Wünsche und Bedürfnisse der Gefangenen Rücksicht nimmt.
(2) Gegenstände, die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vom Einkauf ausgeschlossen werden. Auf ärztliche Anordnung kann dem Gefangene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 und Genußmittel ganz oder teilweise untersagt werden,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seine Gesundheit ernsthaft gefährden. In Krankenhäusern und Krankenabteilungen kan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 und Genußmittel auf ärztliche Anordnung allgemein untersagt oder eingeschränkt werden.
(3) Verfügt der Gefangene ohne eigenes Verschulden nicht über Haus- oder Taschengeld, wird ihm gestattet, in angemessenem Umfang vom Eigengeld einzukaufen.

## Vierter Titel Besuche, Schriftwechsel sowie Urlaub, Ausgang und Ausführung aus besonderem Anlaß

### § 23 Grundsatz

Der Gefangene hat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verkehren. Der Verkehr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st zu fördern.

### § 24 Recht auf Besuch

(1) Der Gefangene darf regelmäßig Besuch empfangen. Die Gesamtdauer beträgt mindestens eine Stunde im Monat. Das Weitere regelt die Hausordnung.
(2) Besuche sollen darüber hinaus zugelassen werden, wenn sie die Behandlung o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rn oder persönlichen, rechtlichen oder geschäftlichen Angelegenheiten dienen, die nicht vom Gefangenen schriftlich erledigt, durch Dritte wahrgenommen oder bis zur Entlassung des Gefangenen aufgeschoben werden können
(3) Aus Gründen der Sicherheit kann ein Besuch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sich der Besucher durchsuchen läßt.

### § 25 Besuchsverbot

Der Anstaltsleiter kann Besuche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Besucher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n.

### § 26 Besuche von Verteidigern, Rechtsanwälten und Notaren

Besuche von Verteidigern sowie von Rechtsanwälten oder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sind zu gestatten. § 24 Abs. 3 gilt entsprechend. Eine inhaltliche Überprüfung der vom Verteidiger mitgeführt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ist nicht zulässig. § 29 Abs. 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 § 27 Überwachung der Besuche

(1) Die Besuche dürfen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wacht werden, es sei denn, es liegen im Einzelfall Erkenntnisse dafür vor, daß es der Überwachung nicht bedarf. Die Unterhaltung darf nur überwacht werden, soweit dies im Einzelfall aus diesen Gründen erforderlich ist.
(2) Ein Besuch darf abgebrochen werden, wenn Besucher oder Gefangene ge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oder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getroffenen Anordnungen trotz Abmahnung verstoßen Die Abmahnung unterbleibt, wenn es unerläßlich ist, den Besuch sofort abzubrechen.
(3) Besuche von Verteidigern werden nicht überwacht.
(4) Gegenstände dürfen beim Besuch nur mit Erlaubnis übergeben werden. Dies gilt nicht für die bei dem Besuch des Verteidigers übergeben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sowie für die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zur Erledigung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übergebend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kann die Übergabe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von der Erlaubnis abhängig gemacht werden. § 29 Abs. 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 § 28 Recht auf Schriftwechsel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unbeschränkt Schreiben abzusenden und zu empfangen.
(2) Der Anstaltsleiter kann den Schriftwechsel mit bestimmten Personen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Persone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der Schriftwechsel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 29 Überwachung des Schriftwechsels

(1) Der Schriftwechsel des Gefangenen mit seinem Verteidiger wird nicht überwacht. Liegt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ine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zugrunde, gelten § 148 Abs. 2, § 148a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dies gilt nicht, wenn der Gefangene sich in einer Einrichtung des offenen Vollzuges befindet oder wenn ihm Lockerungen des Vollzuges gemäß § 11 Abs. 1 Nr. 1 oder 2 zweiter Halbsatz oder Urlaub gemäß § 13 oder § 15 Abs. 3 gewährt worden sind und ein Grund, der den Anstaltsleiter nach § 14 Abs. 2 zum Widerruf oder zur Zurücknahme von Lockerungen und Urlaub ermächtigt, nicht vorliegt. Satz 2 gilt auch, wenn gegen einen Strafgefangenen im Anschluß an die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grundeliegende Verurteilung eine Freiheitsstrafe wegen einer Straftat nach § 129a, auch in Verbindung mit § 129b Abs. 1, des Strafgesetzbuches zu vollstrecken ist.
(2) Nicht überwacht werden ferner Schreiben des Gefangenen an Volksvertretung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owie an deren Mitglieder, soweit die Schreiben an die Anschriften dieser Volksvertretungen gerichtet sind und den Absender zutreffend angeben. Entsprechendes gilt für Schreibe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und dessen Mitglieder,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die Europäische Kommission für Menschenrechte, den Europäischen Ausschuß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Behandlung oder Strafe und die Datenschutzbeauftrag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chreiben der in den Satzen 1 und 2 genannten Stellen, die an den Gefangenen gerichtet sind, werden nicht überwacht,

sofern die Identität des Absenders zweifelsfrei feststeht.
(3) Der übrige Schriftwechsel darf überwacht werden, soweit es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 § 30 Weiterleitung von Schreiben. Aufbewahrung

(1) Der Gefangene hat Absendung und Empfang seiner Schreiben durch die Anstalt vermitteln zu lassen, soweit nichts anderes gestattet ist.
(2) Eingehende und ausgehende Schreiben sind unverzüglich weiterzuleiten.
(3) Der Gefangene hat eingehende Schreiben unverschlossen zu verwahren, sofern nichts anderes gestattet wird; er kann sie verschlossen zu seiner Habe geben.

### § 31 Anhalten von Schreiben

(1) Der Anstaltsleiter kann Schreiben anhalten,

1. wenn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wenn die Weitergabe in Kenntnis ihres Inhalts einen Straf- oder Bußgeldtatbestand verwirklichen würde,
3. wenn sie grob unrichtige oder erheblich entstellende Darstellungen von Anstaltsverhältnissen enthalten,
4. wenn sie grobe Beleidigungen enthalten,
5. wenn sie die Eingliederung eines anderen Gefangenen gefährden können oder
6. wenn sie in Geheimschrift, unlesbar, unverständlich oder ohne zwingenden Grund in einer fremden Sprache abgefaßt sind.

(2) Ausgehenden Schreiben, die unrichtige Darstellungen enthalten, kann ein Begleitschreiben beigefügt werden, wenn der Gefangene auf der Absendung besteht
(3) Ist ein Schreiben angehalten worden, wird das dem Gefangenen mitgeteilt. Angehaltene Schreiben werden an den Absender zurückgegeben oder, sofern dies unmöglich oder aus besonderen Gründen untunlich ist, behördlich verwahrt.
(4) Schreiben, deren Überwachung nach § 29 Abs 1 und 2 ausgeschlossen ist, dürfen nicht angehalten werden

### § 32 Ferngespräche und Telegramme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Ferngespräche zu führen oder Telegramme aufzugeben. Im übrigen gelten für Ferngespräche die Vorschriften über den Besuch und für Telegramme die Vorschriften über den Schriftwechsel entsprechend. Ist die Überwachung der fernmündlichen Unterhaltung erforderlich, ist die beabsichtigte Überwachung dem Gesprächspartner des Gefangenen unmittelbar nach Herstellung der Verbindung durch die Vollzugsbehörde oder den Gefangenen mitzuteilen. Der Gefangene ist rechtzeitig vor Beginn der fernmündlichen Unterhaltung über die beabsichtigte Überwachung und die Mitteilungspflicht nach Satz 3 zu unterrichten.

### § 33 Pakete

(1) Der Gefangene darf dreimal jährlich in angemessenen Abständen ein Paket mit Nahrungs- und Genußmitteln empfangen. Die Vollzugsbehörde kann Zeitpunkt und Höchstmengen für die Sendung und fur einzelne Gegenstande festsetzen. Der Empfang weiterer Pakete oder solcher mit anderem Inhalt bedarf ihrer Erlaubnis. Für den Ausschluß von Gegenständen gilt § 22 Abs. 2 entsprechend.
(2) Pakete sind in Gegenwart des Gefangenen zu öffnen. Ausgeschlossene Gegenstände können zu seiner

Habe genommen oder dem Absender zurückgesandt werden. Nicht ausgehändigte Gegenstände, durch die bei der Versendung oder Aufbewahrung Personen verletzt oder Sachschäden verursacht werden können, dürfen vernichtet werden. Die hiernach getroffenen Maßnahmen werden dem Gefangenen eröffnet.
(3) Der Empfang von Paketen kann vorübergehend versagt werden, wenn dies wegen Gefährd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4)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Pakete zu versenden. Die Vollzugsbehörde kann ihren Inhalt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prüfen.

### § 34 Verwertung von Kenntnissen

(weggefallen)

### § 35 Urlaub, Ausgang und Ausführung aus wichtigem Anlaß

(1) Aus wichtigem Anlaß kann der Anstaltsleiter dem Gefangenen Ausgang gewähren oder ihn bis zu sieben Tagen beurlauben; der Urlaub aus anderem wichtigen Anlaß als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wegen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darf sieben Tage im Jahr nicht übersteigen. § 11 Abs. 2,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Der Urlaub nach Absatz 1 wird nicht auf den regelmäßigen Urlaub angerechnet.
(3) Kann Ausgang oder Urlaub aus den in § 11 Abs. 2 genannten Gründen nicht gewährt werden, kann der Anstaltsleiter den Gefangenen ausführen lassen. Die Aufwendungen hierfür hat der Gefangene zu tragen. Der Anspruch ist nicht geltend zu machen, wenn dies die Behandlung oder di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 36 Gerichtliche Termine

(1) Der Anstaltsleiter kann einem Gefangenen zur Teilnahme an einem gerichtlichen Termin Ausgang oder Urlaub erteilen, wenn anzunehmen ist, daß er der Ladung folgt und keine Entweichungs- 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 2) besteht. § 13 Ab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Wenn ein Gefangener zu einem gerichtlichen Termin geladen ist und Ausgang oder Urlaub nicht gewährt wird, läßt der Anstaltsleiter ihn mit seiner Zustimmung zu dem Termin ausführen, sofern wegen Entweichungs- 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 2) keine überwiegenden Gründe entgegenstehen. Auf Ersuchen eines Gerichts läßt er den Gefangenen vorführen, sofern ein Vorführungsbefehl vorliegt.
(3) Die Vollzugsbehörde unterrichtet das Gericht über das Veranlaßte.

## Fünfter Titel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 § 37 Zuweisung

(1)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dienen insbesondere dem Ziel,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ie Vollzugsbehörde soll dem Gefangenen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zuweisen und dabei seine Fähigkeiten, Fertigkeiten und Neigungen berücksichtigen.
(3) Geeigneten Gefangenen soll Gelegenheit zur Berufsausbildung, beruflichen Weiterbildung oder Teilnahme an anderen ausbildenden oder weiterbildenden Maßnahmen gegeben werden.
(4) Kann einem arbeitsfähigen Gefangenen kei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oder die Teilnahme an Maßnahmen nach Absatz 3 zugewiesen werden, wird ihm eine angemessene Beschäftigung zugeteilt.

(5) Ist ein Gefangener zu wirtschaftlich ergiebiger Arbeit nicht fähig, soll er arbeitstherapeutisch beschäftigt werden.

### § 38 Unterricht

(1) Für geeignete Gefangene, die den Abschluß der Hauptschule nicht erreicht haben, soll Unterricht in den zum Hauptschulabschluß führenden Fächern oder ein der Sonderschule entsprechender Unterricht vorgesehen werden. Bei der beruflichen Ausbildung ist berufsbildender Unterricht vorzusehen; dies gilt auch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soweit die Art der Maßnahme es erfordert.
(2) Unterricht soll während der Arbeitszeit stattfinden.

### § 39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Selbstbeschäftigung

(1)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er Arbeit, Berufsausbildung o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auf der Grundlage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außerhalb der Anstalt nachzugehen, wenn dies im Rahmen des Vollzugsplan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und nicht überwiegende Gründe des Vollzuges entgegenstehen. § 11 Abs. 1 Nr 1, Abs 2 und § 14 bleiben unberührt
(2)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3) Die Vollzugsbehörde kann verlangen, daß ihr das Entgelt zur Gutschrift für den Gefangenen überwiesen wird.

### § 40 Abschlußzeugnis

Aus dem Abschlußzeugnis über eine ausbildende oder weiterbildende Maßnahme darf die Gefangenschaft eines Teilnehmers nicht erkennbar sein

### § 41 Arbeitspflicht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eine ihm zugewiesene, seinen körperlichen Fähigkeiten angemessene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oder sonstige Beschäftigung auszuüben, zu deren Verrichtung er auf Grund seines körperlichen Zustandes in der Lage ist. Er kann jährlich bis zu drei Monaten zu Hilfstätigkeiten in der Anstalt verpflichtet werden, mit seiner Zustimmung auch darüber hinaus.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Gefangene, die über 65 Jahre alt sind, und nicht für werdende und stillende Mütter, soweit gesetzliche Beschäftigungsverbote zum Schutz erwerbstätiger Mütter bestehen
(2) Die Teilnahme an einer Maßnahme nach § 37 Abs 3 bedarf der Zustimmung des Gefangenen. Die Zustimmung darf nicht zur Unzeit widerrufen werden
(3)

**Fußnote**

§ 41 Abs. 1 Satz 1 (iVm § 37 Abs. 2 u 4, § 43 Abs. 1 u. 2, § 198 Abs 3): Nach Maßgabe der Entscheidungsformel mit GG (100-1) vereinbar gem. BVerfGE v. 1 7.1998 I 2208 (2 BvR 441/90 u.a.)

### § 42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1) Hat der Gefangene ein Jahr lang zugewiesene Tätigkeit nach § 37 oder Hilfstätigkeiten nach § 41 Abs 1 Satz 2 ausgeübt, so kann er beanspruchen, achtzehn Werktage von d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zu werden.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infolge Krankheit an seiner Arbeitsleistung verhindert war, werden auf das Jahr bis zu sechs Wochen jährlich angerechnet

(2) Auf die Zeit der Freistellung wird Urlaub aus der Haft (§§ 13, 35) angerechnet, soweit er in die Arbeitszeit fällt und nicht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erteilt worden ist.
(3) Der Gefangene erhält für die Zeit der Freistellung seine zuletzt gezahlten Bezuge weiter.
(4) Urlaubsregelungen d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ßerhalb des Strafvollzuges bleiben unberührt.

### § 43 Arbeitsentgelt, Arbeitsurlaub und Anrechnung der Freistellung auf den Entlassungszeitpunkt

(1) Die Arbeit des Gefangenen wird anerkannt durch Arbeitsentgelt und eine Freistellung von der Arbeit, die auch als Urlaub aus der Haft (Arbeitsurlaub) genutzt oder auf den Entlassungszeitpunkt angerechnet werden kann.
(2) Übt der Gefangene eine zugewiesene Arbeit, sonstige Beschäftigung oder eine Hilfstätigkeit nach § 41 Abs. 1 Satz 2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ist der in § 200 bestimmte Satz der Bezugsgröße nach §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zu Grunde zu legen (Eckvergütung). Ein Tagessatz ist der zweihundertfünfzigste Teil der Eckvergütung; das Arbeitsentgelt kann nach einem Stundensatz bemessen werden
(3) Das Arbeitsentgelt kann je nach Leistung des Gefangenen und der Art der Arbeit gestuft werden. 75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dürfen nur dann unterschritten werden, wenn die Arbeitsleistungen des Gefangenen den Mindestanforderungen nicht genügen.
(4) Übt ein Gefangener zugewiesen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5) Das Arbeitsentgelt ist dem Gefangenen schriftlich bekannt zu geben.
(6) Hat der Gefangene zwei Monate lang zusammenhängend eine zugewiesene Tätigkeit nach § 37 oder eine Hilfstätigkeit nach § 41 Abs. 1 Satz 2 ausgeübt, so wird er auf seinen Antrag hin einen Werktag von der Arbeit freigestellt. Die Regelung des § 42 bleibt unberührt. Durch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ohne sein Verschulden durch Krankheit, Ausführung, Ausgang, Urlaub aus der Haft,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oder sonstige nicht von ihm zu vertretende Gründe an der Arbeitsleistung gehindert ist, wird die Frist nach Satz 1 gehemmt. Beschäftigungszeiträume von weniger als zwei Monaten bleiben unberücksichtigt.
(7) Der Gefangene kann beantragen, dass die Freistellung nach Absatz 6 in Form von Urlaub aus der Haft gewährt wird (Arbeitsurlaub). § 11 Abs. 2, § 13 Abs. 2 bis 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8) § 42 Abs. 3 gilt entsprechend.
(9) Stellt der Gefangene keinen Antrag nach Absatz 6 Satz 1 oder Absatz 7 Satz 1 oder kann die Freistellung nach Maßgabe der Regelung des Absatzes 7 Satz 2 nicht gewahrt werden, so wird die Freistellung nach Absatz 6 Satz 1 von der Anstalt auf den Entlassungszeitpunkt des Gefangenen angerechnet
(10) Eine Anrechnung nach Absatz 9 ist ausgeschlossen,

1. soweit ein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oder Sicherungsverwahrung verbüßt wird und ein Entlassungszeitpunkt noch nicht bestimmt ist,
2. bei einer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Freiheitsstrafe oder einer Sicherungsverwahrung zur Bewährung, soweit wegen des von der Entscheidung des Gerichts bis zur Entlassung verbleibenden Zeitraums eine Anrechnung nicht mehr möglich ist,
3. wenn dies vom Gericht angeordnet wird, weil bei einer Aussetzung der Vollstreckung des Restes einer Freiheitsstrafe oder einer Sicherungsverwahrung zur Bewährung die Lebensverhaltnisse des Gefangenen oder die Wirkungen, die von der Aussetzung für ihn zu erwarten sind, die Vollstreckung bis zu einem

bestimmten Zeitpunkt erfordern,

4. wenn nach § 456a Abs. 1 der Strafprozessordnung von der Vollstreckung abgesehen wird,
5. wenn der Gefangene im Gnadenwege aus der Haft entlassen wird.

(11) Soweit eine Anrechnung nach Absatz 10 ausgeschlossen ist, erhält der Gefangene bei seiner Entlassung für seine Tätigkeit nach Absatz 2 als Ausgleichsentschädigung zusätzlich 15 vom Hundert des ihm nach den Absätzen 2 und 3 gewährten Entgelts oder der ihm nach § 44 gewährten Ausbildungsbeihilfe. Der Anspruch entsteht erst mit der Entlassung; vor der Entlassung ist der Anspruch nicht verzinslich, nicht abtretbar und nicht vererblich. Einem Gefangenen, bei dem eine Anrechnung nach Absatz 10 Nr. 1 ausgeschlossen ist, wird die Ausgleichszahlung bereits nach Verbüßung von jeweils zehn Jahren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oder Sicherungsverwahrung zum Eigengeld (§ 52) gutgeschrieben, soweit er nicht vor diesem Zeitpunkt entlassen wird; § 57 Abs. 4 des Strafgesetzbuches gilt entsprechend.

### § 44 Ausbildungsbeihilfe

(1) Nimmt der Gefangene an einer Berufsausbildung, beruflichen Weiterbildung oder an einem Unterricht teil und ist er zu diesem Zweck von sein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so erhält er eine Ausbildungsbeihilfe, soweit ihm keine Leistungen zum Lebensunterhalt zustehen, die freien Personen aus solchem Anlaß gewährt werden. Der Nachrang der Sozialhilfe nach § 2 Abs. 2 des Zwölften Buches Sozialgesetzbuch wird nicht berührt.

(2) Für die Bemessung der Ausbildungsbeihilfe gilt § 43 Abs. 2 und 3 entsprechend.

(3) Nimmt der Gefangene während der Arbeitszeit stunden- oder tageweise am Unterricht oder an anderen zugewiesenen Maßnahmen gemäß § 37 Abs. 3 teil, so erhält er in Höhe des ihm dadurch entgehenden Arbeitsentgelts eine Ausbildungsbeihilfe.

### § 45 Ausfallentschädigung

(zukünftig in Kraft)

### § 46 Taschengeld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 § 47 Hausgeld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drei Siebtel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 1) oder anderweitig verwenden.

(2)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 § 48 Rechtsverordn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r Durchführung der §§ 43 bis 45 Rechtsverordnungen über die Vergütungsstufen zu erlassen.

### § 49 Unterhaltsbeitrag

(zukünftig in Kraft)

## § 50 Haftkostenbeitrag

(1) Als Teil der Kosten der Vollstreckung der Rechtsfolgen einer Tat (§ 464a Abs. 1 Satz 2 der Strafprozessordnung) erhebt die Vollzugsanstalt von dem Gefangenen einen Haftkostenbeitrag. Ein Haftkostenbeitrag wird nicht erhoben, wenn der Gefangene

1. Bezüge nach diesem Gesetz erhält oder
2. ohne sein Verschulden nicht arbeiten kann oder
3. nicht arbeitet, weil er nicht zur Arbeit verpflichtet ist.

Hat der Gefangene, der ohne sein Verschulden während eines zusammenhängenden Zeitraumes von mehr als einem Monat nicht arbeiten kann oder nicht arbeitet, weil er nicht zur Arbeit verpflichtet ist, auf diese Zeit entfallende Einkünfte, so hat er den Haftkostenbeitrag für diese Zeit bis zur Höhe der auf sie entfallenden Einkünfte zu entrichten. Dem Gefangenen muss ein Betrag verbleiben, der dem mittleren Arbeitsentgelt in den Vollzugsanstalten des Landes entspricht. Von der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ist abzusehen, soweit dies notwendig ist, um die Wiedereingliederung des Gefangenen in die Gemeinschaft nicht zu gefährden.

(2) Der Haftkostenbeitrag wird in Höhe des Betrages erhoben, der nach § 17 Abs. 1 Nr. 4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durchschnittlich zur Bewertung der Sachbezüge festgesetzt ist.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tellt den Durchschnittsbetrag für jedes Kalenderjahr nach den am 1. Oktober des vorhergehenden Jahres geltenden Bewertungen der Sachbezüge, jeweils getrennt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und für das Gebiet, in dem das Strafvollzugsgesetz schon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gegolten hat, fest und macht ihn im Bundesanzeiger bekannt. Bei Selbstverpflegung entfallen die für die Verpflegung vorgesehenen Beträge. Für den Wert der Unterkunft ist die festgesetzte Belegungsfähigkeit maßgebend. Der Haftkostenbeitrag darf auch von dem unpfändbaren Teil der Bezüge, nicht aber zu Lasten des Hausgeldes und der Ansprüche unterhaltsberechtigter Angehöriger angesetzt werden.

(3) Im Land Berlin gilt einheitlich der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geltende Durchschnittsbetrag.

(4) Die Selbstbeschäftigung (§ 39 Abs. 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ss der Gefangene einen Haftkostenbeitrag bis zur Höhe des in Absatz 2 genannten Satzes monatlich im Voraus entrichtet.

(5) Für die Erhebung des Haftkostenbeitrages können die Landesregierungen durch Rechtsverordnung andere Zuständigkeiten begründen. Auch in diesem Fall ist der Haftkostenbeitrag eine Justizverwaltungsabgabe; auf das gerichtliche Verfahren finden die §§ 109 bis 121 entsprechende Anwendung.

## § 51 Überbrückungsgeld

(1) Aus d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und aus den Bezügen der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ist ein Überbrückungsgeld zu bilden, das den notwendigen Lebensunterhalt des Gefangenen und seiner Unterhaltsberechtigten für die ersten vier Wochen nach seiner Entlassung sichern soll.

(2) Das Überbrückungsgeld wird dem Gefangenen bei der Entlassung in die Freiheit ausgezahlt. Die Vollzugsbehörde kann es auch ganz oder zum Teil dem Bewährungshelfer oder einer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n Stelle überweisen, die darüber entscheiden, wie das Geld innerhalb der ersten vier Wochen nach der Entlassung an den Gefangenen ausgezahlt wird. Der Bewährungshelfer und die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 Stelle sind verpflichtet, das Überbrückungsgeld von ihrem Vermögen gesondert zu halt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kann das Überbrückungsgeld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taltsleiter kann gestatten, daß das Überbrückungsgeld für Ausgaben in Anspruch genommen wird, die 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dienen.
(4) Der Anspruch auf Auszahlung des Überbrückungsgeldes ist unpfändbar. Erreicht es nicht die in Absatz 1 bestimmte Höhe, so ist in Höhe des Unterschiedsbetrages auch der Anspruch auf Auszahlung des Eigengeldes unpfändbar. Bargeld des entlassenen Gefangenen, an den wegen der nach Satz 1 oder Satz 2 unpfändbaren Ansprüche Geld ausgezahlt worden ist, ist für die Dauer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insoweit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als es dem Teil der Ansprüche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der vier Wochen entspricht.
(5) Absatz 4 gilt nicht bei einer Pfändung wegen der in § 850d Abs. 1 Satz 1 der Zivilprozeßordnung bezeichneten Unterhaltsansprüche. Dem entlassenen Gefangenen ist jedoch so viel zu belassen, als er für seinen notwendigen Unterhalt und zur Erfüllung seiner sonstigen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en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bedarf.

### § 52 Eigengeld

Bezüge des Gefangenen, die nicht als Hausgeld, Haftkostenbeitrag, Unterhaltsbeitrag oder Überbrückungsgeld in Anspruch genommen werden, sind dem Gefangenen zum Eigengeld gutzuschreiben.

## Sechster Titel Religionsausübung

### § 53 Seelsorge

(1) Dem Gefangenen darf religiöse Betreuung durch einen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nicht versagt werden. Auf seinen Wunsch ist ihm zu helfen, mit einem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in Verbindung zu treten.
(2) Der Gefangene darf grundlegende religiöse Schriften besitzen. Sie dürfen ihm nur bei grobem Mißbrauch entzogen werden.
(3) Dem Gefangenen sind Gegenstände des religiösen Gebrauchs in angemessenem Umfang zu belassen.

### § 54 Religiöse Veranstaltungen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am Gottesdienst und an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seines Bekenntnisses teilzunehmen.
(2) Zu dem Gottesdienst oder zu religiösen Veranstaltungen einer anderen Religionsgemeinschaft wird der Gefangene zugelassen, wenn deren Seelsorger zustimmt.
(3) Der Gefangene kann von der Teilnahme am Gottesdienst oder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ausgeschlossen werden, wenn dies aus überwiegenden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geboten ist; der Seelsorger soll vorher gehört werden

### § 55 Weltanschauungsgemeinschaften

Für Angehörige weltanschaulicher Bekenntnisse gelten die §§ 53 und 54 entsprechend.

# Siebter Titel Gesundheitsfürsorge

## § 56 Allgemeine Regeln

(1) Für die körperliche und geistige Gesundheit des Gefangenen ist zu sorgen. § 101 bleibt unberührt.

(2) Der Gefangene hat die notwendigen Maßnahmen zum Gesundheitsschutz und zur Hygiene zu unterstützen

## § 57 Gesundheitsuntersuchungen, medizinische Vorsorgeleistungen

(1) Gefangene, die das fünfunddreißigste Lebensjahr vollendet haben, haben jedes zweite Jahr Anspruch auf eine ärztliche Gesundheits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insbesondere zur Früherkennung von Herz-Kreislauf- und Nierenerkrankungen sowie der Zuckerkrankheit.

(2) Gefangene haben höchstens einmal jährlich Anspruch auf eine 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ebserkrankungen, Frauen frühestens vom Beginn des zwanzigsten Lebensjahres an, Männer frühestens vom Beginn des fünfundvierzigsten Lebensjahres an.

(3) Voraussetzung für die Untersuch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ist, daß

1. es sich um Krankheiten handelt, die wirksam behandelt werden können,
2. das Vor- oder Fruhstadium dieser Krankheiten durch diagnostische Maßnahmen erfaßbar ist,
3. die Krankheitszeichen medizinisch-technisch genugend eindeutig zu erfassen sind,
4. genügend Arzte und Einrichtungen vorhanden sind, um die aufgefundenen Verdachtsfälle eingehend zu diagnostizieren und zu behandeln

(4) Gefangene Frauen haben für ihre Kinder, die mit ihnen in der Vollzugsanstalt untergebracht sind, bis zur Vollendung des sechsten Lebensjahres Anspruch auf Untersuchung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die die körperliche oder geistige Entwicklung ihrer Kinder in nicht geringfügigem Maße gefährden.

(5) Gefangene, die das vierzehnte, aber noch nicht das zwanzigste Lebensjahr vollendet haben, können sich zur Verhütung von Zahnerkrankungen einmal in jedem Kalenderhalbjahr zahnärztlich untersuchen lassen. Die Untersuchungen sollen sich auf den Befund des Zahnfleisches, die Aufklärung über Krankheitsursachen und ihre Vermeidung, das Erstellen von diagnostischen Vergleichen zur Mundhygiene, zum Zustand des Zahnfleisches und zur Anfälligkeit gegenuber Karieserkrankungen, auf die Motivation und Einweisung bei der Mundpflege sowie auf Maßnahmen zur Schmelzhärtung der Zähne erstrecken.

(6)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ärztliche Behandlung und Versorgung mit Arznei-, Verband-, Heil- und Hilfsmitteln, wenn diese notwendig sind,

1. eine Schwächung der Gesundheit, die in absehbarer Zeit voraussichtlich zu einer Krankheit führen würde, zu beseitigen,
2. einer Gefährdung der gesundheitlichen Entwicklung eines Kindes entgegenzuwirken oder
3. Pflegebedürftigkeit zu vermeiden.

## § 58 Krankenbehandlung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Krankenbehandlung, wenn sie notwendig ist, um eine Krankheit zu erkennen, zu heilen, ihre Verschlimmerung zu verhüten oder Krankheitsbeschwerden zu lindern. Die Krankenbehandlung umfaßt insbesondere

1. ärztliche Behandlung,
2. zahnärztliche Behandlung einschließlich der Versorgung mit Zahnersatz,
3. Versorgung mit Arznei-, Verband-, Heil- und Hilfsmitteln,

4 medizinische und ergänzende Leistungen zur Rehabilitation sowie Belastungserprobung und Arbeitstherapie,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 § 59 Versorgung mit Hilfsmitteln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Versorgung mit Seh- und Hörhilfen, Körperersatzstücken, orthopädischen und anderen Hilfsmitteln, die im Einzelfall erforderlich sind, um den Erfolg der Krankenbehandlung zu sichern oder eine Behinderung auszugleichen, sofern dies nicht mit Rücksicht auf die Kürze des Freiheitsentzugs ungerechtfertigt ist und soweit die Hilfsmittel nicht als allgemeine Gebrauchsgegenstände des täglichen Lebens anzusehen sind. Der Anspruch umfaßt auch die notwendige Änderung, Instandsetzung und Ersatzbeschaffung von Hilfsmitteln sowie die Ausbildung in ihrem Gebrauch,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Ein erneuter Anspruch auf Versorgung mit Sehhilfen besteht nur bei einer Änderung der Sehfähigkeit um mindestens 0,5 Dioptrien. Anspruch auf Versorgung mit Kontaktlinsen besteht nur in medizinisch zwingend erforderlichen Ausnahmefällen.

### § 60 Krankenbehandlung im Urlaub

Während eines Urlaubs oder Ausgangs hat der Gefangene gegen die Vollzugsbehörde nur einen Anspruch auf Krankenbehandlung in der für ihn zuständigen Vollzugsanstalt.

### § 61 Art und Umfang der Leistungen

Für die Art der Gesundheitsuntersuchungen und medizinischen Vorsorgeleistungen sowie für den Umfang dieser Leistungen und der Leistungen zur Krankenbehandlung einschließlich der Versorgung mit Hilfsmitteln gelten die entsprechenden Vorschriften des Sozialgesetzbuchs und die auf Grund dieser Vorschriften getroffenen Regelungen.

### § 62 Zuschüsse zu Zahnersatz und Zahnkronen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bestimmen durch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 die Höhe der Zuschüsse zu den Kosten der zahnärztlichen Behandlung und der zahntechnischen Leistungen bei der Versorgung mit Zahnersatz. Sie können bestimmen, daß die gesamten Kosten übernommen werden.

### § 62a Ruhen der Ansprüche

Der Anspruch auf Leistungen nach den §§ 57 bis 59 ruht, solange der Gefangene auf Grund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 39 Abs. 1) krankenversichert ist.

### § 63 Ärztliche Behandlung zur sozialen Eingliederung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soll die Vollzugsbehörde ärztliche Behandlung, namentlich Operationen oder prothetische Maßnahmen durchführen lassen, die seine soziale Eingliederung fördern. Er ist an den Kosten zu beteiligen, wenn dies nach sein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gerechtfertigt ist und der Zweck der Behandlung dadurch nicht in Frage gestellt wird.

### § 64 Aufenthalt im Freien

Arbeitet ein Gefangener nicht im Freien, so wird ihm täglich mindestens eine Stunde Aufenthalt im Freien ermöglicht, wenn die Witterung dies zu der festgesetzten Zeit zuläßt.

### § 65 Verlegung

(1) Ein kranker Gefangener kann in ein Anstaltskrankenhaus oder in eine für die Behandlung seiner Krankheit besser geeignete Vollzugsanstalt verlegt werden.
(2) Kann die Krankheit eines Gefangenen in einer Vollzugsanstalt oder einem Anstaltskrankenhaus nicht erkannt oder behandelt werden oder ist es nicht möglich, den Gefangenen rechtzeitig in ein Anstaltskrankenhaus zu verlegen, ist dieser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 § 66 Benachrichtigung bei Erkrankung oder Todesfall

(1) Wird ein Gefangener schwer krank, so ist ein Angehöriger, eine Person seines Vertrauens oder der gesetzliche Vertreter unverzüglich zu benachrichtigen. Dasselbe gilt, wenn ein Gefangener stirbt.
(2) Dem Wunsch des Gefangenen, auch andere Personen zu benachrichtigen, soll nach Möglichkeit entsprochen werden.

## Achter Titel Freizeit

### § 67 Allgemeines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in seiner Freizeit zu beschäftigen. Er soll Gelegenheit erhalten, am Unterricht einschließlich Sport, an Fernunterricht, Lehrgängen und sonstige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an Freizeitgruppen, Gruppengesprächen sowie an Sportveranstaltungen teilzunehmen und eine Bücherei zu benutzen.

### § 68 Zeitungen und Zeitschriften

(1) Der Gefangene darf Zeitungen und Zeitschriften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beziehen.
(2) Ausgeschlossen sind Zeitungen und Zeitschriften, deren Verbreitung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ist. Einzelne Ausgaben oder Teile vo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können dem Gefangenen vorenthalten werden, wenn sie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heblich gefährden würden.

### § 69 Hörfunk und Fernsehen

(1) Der Gefangene kann am Hörfunkprogramm der Anstalt sowie am gemeinschaftlichen Fernsehempfang teilnehmen. Die Sendungen sind so auszuwählen, daß Wünsche und Bedürfnisse nach staatsbürgerlicher Information, Bildung und Unterhaltung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er Hörfunk- und Fernsehempfang kann vorübergehend ausgesetzt oder einzelnen Gefangenen untersagt werden, wenn dies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2) Eigene Hörfunk- und Fernsehgeräte werde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70 zugelassen.

### § 70 Besitz von Gegenständen für die Freizeitbeschäftigung

(1) Der Gefangene darf in angemessenem Umfang Bücher und andere Gegenstände zur Fortbildung oder zur Freizeitbeschäftigung besitzen.
(2) Dies gilt nicht, wenn der Besitz, die Überlassung oder die Benutzung des Gegenstands
1.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wäre oder
2.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würde.

(3) Die Erlaubnis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widerrufen werden.

## Neunter Titel Soziale Hilfe

### § 71 Grundsatz

Der Gefangene kann die soziale Hilfe der Anstalt in Anspruch nehmen, um seine persönlichen Schwierigkeiten zu lösen. Die Hilfe soll darauf gerichtet sein, den Gefangenen in die Lage zu versetzen, seine Angelegenheiten selbst zu ordnen und zu regeln.

### § 72 Hilfe bei der Aufnahme

(1) Bei der Aufnahme wird dem Gefangenen geholfen, die notwendigen Maßnahmen für hilfsbedürftige Angehörige zu veranlassen und seine Habe außerhalb der Anstalt sicherzustellen
(2) Der Gefangene ist über die Aufrechterhaltung einer Sozialversicherung zu beraten.

### § 73 Hilfe während des Vollzuges

Der Gefangene wird in dem Bemühen unterstützt, seine Rechte und Pflichten wahrzunehmen, namentlich sein Wahlrecht auszuüben sowie für Unterhaltsberechtigte zu sorgen und einen durch seine Straftat verursachten Schaden zu regeln.

### § 74 Hilfe zur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ist der Gefangene bei der Ordnung seiner persönli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Angelegenheiten zu beraten. Die Berat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Benennung der für Sozialleistungen zuständigen Stellen. Dem Gefangenen ist zu helfen, Arbeit, Unterkunft und persönlichen Beistand für die Zeit nach der Entlassung zu finden.

### § 75 Entlassungsbeihilfe

(1) Der Gefangene erhält, soweit seine eigenen Mittel nicht ausreichen, von der Anstalt eine Beihilfe zu den Reisekosten sowie eine Überbrückungsbeihilfe und erforderlichenfalls ausreichende Kleidung
(2) Bei der Bemessung der Höhe der Überbrückungsbeihilfe sind die Dauer des Freiheitsentzuges, der persönliche Arbeitseinsatz des Gefangenen und die Wirtschaftlichkeit seiner Verfügungen über Eigengeld und Hausgeld während der Strafzeit zu berücksichtigen. § 51 Abs 2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Die Überbrückungsbeihilfe kann ganz oder teilweise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pruch auf Beihilfe zu den Reisekosten und die ausgezahlte Reisebeihilfe sind unpfändbar. Für den Anspruch auf Überbrückungsbeihilfe und für Bargeld nach Auszahlung einer Überbrückungsbeihilfe an den Gefangenen gilt § 51 Abs. 4 Satz 1 und 3, Abs. 5 entsprechend.

## Zehnter Titel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Frauenstrafvollzug

### § 76 Leistungen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1) Bei einer Schwangeren oder einer Gefangenen, die unlängst entbunden hat, ist auf ihren Zustand Rücksicht zu nehmen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über die Gestaltung des Arbeitspla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Gefangene hat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bei und nach der Entbindung Anspruch auf ärztliche Betreuung und auf Hebammenhilfe in der Vollzugsanstalt. Zur ärztlichen Betreuung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gehören insbesondere Untersuchungen zur Feststellung der Schwangerschaft sowie Vorsorgeuntersuchungen einschließlich der laborärztlichen Untersuchungen.
(3) Zur Entbindung ist die Schwangere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Ist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icht angezeigt, so ist die Entbindung in einer Vollzugsanstalt mit Entbindungsabteilung vorzunehmen. Bei der Entbindung wird Hilfe durch eine Hebamme und, falls erforderlich, durch einen Arzt gewährt.

### § 77 Arznei-, Verband- und Heilmittel

Bei Schwangerschaftsbeschwerden und im Zusammenhang mit der Entbindung werden Arznei-, Verband- und Heilmittel geleistet.

### § 78 Art, Umfang und Ruhen der Leistungen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Die §§ 60, 61, 62a und 65 gelten für die Leistungen nach den §§ 76 und 77 entsprechend.

### § 79 Geburtsanzeige

In der Anzeige der Geburt an das Standesamt dürfen die Anstalt als Geburtsstätte des Kindes, das Verhältnis des Anzeigenden zur Anstalt und die Gefangenschaft der Mutter nicht vermerkt sein.

### § 80 Mütter mit Kindern

(1) Ist das Kind einer Gefangenen noch nicht schulpflichtig, so kann es mit Zustimmung des Inhabers des Aufenthaltsbestimmungsrechts in der Vollzugsanstalt untergebracht werden, in der sich seine Mutter befindet, wenn dies seinem Wohl entspricht. Vor der Unterbringung ist das Jugendamt zu hören.
(2) Die Unterbringung erfolgt auf Kosten des für das Kind Unterhaltspflichtigen. Von der Geltendmachung des Kostenersatzanspruchs kann abgesehen werden, wenn hierdurch die gemeinsame Unterbringung von Mutter und Kind gefährdet würde.

## Elfter Titel Sicherheit und Ordnung

### § 81 Grundsatz

(1) Das Verantwortungsbewußtsein des Gefangenen für ein geordnetes Zusammenleben in der Anstalt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2) Die Pflichten und Beschränkungen, die dem Gefangenen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auferlegt werden, sind so zu wählen, daß sie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ihrem Zweck stehen und den Gefangenen nicht mehr und nicht länger als notwendig beeinträchtigen.

### § 82 Verhaltensvorschriften

(1) Der Gefangene hat sich nach der Tageseinteilung der Anstalt (Arbeitszeit, Freizeit, Ruhezeit) zu richten. Er darf durch sein Verhalten gegenüber Vollzugsbediensteten, Mitgefangenen und anderen Personen das geordnete Zusammenleben nicht stören.
(2) Der Gefangene hat die Anordnungen der Vollzugsbediensteten zu befolgen, auch wenn er sich durch sie beschwert fühlt. Einen ihm zugewiesenen Bereich darf er nicht ohne Erlaubnis verlassen.

(3) Seinen Haftraum und die ihm von der Anstalt überlassenen Sachen hat er in Ordnung zu halten und schonend zu behandeln.
(4) Der Gefangene hat Umstände, die eine Gefahr für das Leben oder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Gesundheit einer Person bedeuten, unverzüglich zu melden.

### § 83 Persönlicher Gewahrsam. Eigengeld

(1) Der Gefangene darf nur Sachen in Gewahrsam haben oder annehmen, die ihm von der Vollzugsbehörde oder mit ihrer Zustimmung überlassen werden. Ohne Zustimmung darf er Sachen von geringem Wert von einem anderen Gefangenen annehmen, die Vollzugsbehörde kann Annahme und Gewahrsam auch dieser Sachen von ihrer Zustimmung abhängig machen.
(2) Eingebrachte Sachen, die der Gefangene nicht in Gewahrsam haben darf, sind für ihn aufzubewahren, sofern dies nach Art und Umfang möglich ist. Geld wird ihm als Eigengeld gutgeschrieben. Dem Gefangenen wird Gelegenheit gegeben, seine Sachen, die er während des Vollzuges und für seine Entlassung nicht benötigt, abzusenden oder über sein Eigengeld zu verfügen, soweit dieses nicht als Überbrückungsgeld notwendig ist.
(3) Weigert sich ein Gefangener, eingebrachtes Gut, dessen Aufbewahrung nach Art und Umfang nicht möglich ist, aus der Anstalt zu verbringen, so ist die Vollzugsbehörde berechtigt, diese Gegenstände auf Kosten des Gefangenen aus der Anstalt entfernen zu lassen.
(4) Aufzeichnungen und andere Gegenstände, die Kenntnisse über Sicherungsvorkehrungen der Anstalt vermitteln, dürfen von der Vollzugsbehörde vernichtet oder unbrauchbar gemacht werden.

### § 84 Durchsuchung

(1) Gefangene, ihre Sachen und die Hafträume dürfen durchsucht werden. Die Durchsuchung männlicher Gefangener darf nur von Männern, die Durchsuchung weiblicher Gefangener darf nur von Frauen vorgenommen werden. Das Schamgefühl ist zu schonen.
(2) Nur bei Gefahr im Verzug oder auf Anordnung des Anstaltsleiters im Einzelfall ist es zulässig, eine mit einer Entkleidung verbundene körperliche Durchsuchung vorzunehmen. Sie darf bei männlichen Gefangenen nur in Gegenwart von Männern, bei weiblichen Gefangenen nur in Gegenwart von Frauen erfolgen. Sie ist in einem geschlossenen Raum durchzuführen. Andere Gefangene dürfen nicht anwesend sein.
(3) Der Anstaltsleiter kann allgemein anordnen, daß Gefangene bei der Aufnahme, nach Kontakten mit Besuchern und nach jeder Abwesenheit von der Anstalt nach Absatz 2 zu durchsuchen sind.

### § 85 Sichere Unterbringung

Ein Gefangener kann in eine Anstalt verlegt werden, die zu seiner sicheren Unterbringung besser geeignet ist, wenn in erhöhtem Maß Fluchtgefahr gegeben ist oder sonst sein Verhalten oder sein Zustand eine Gefahr fü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darstellt.

### § 86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1) Zur Sicherung des Vollzuges sind als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zulässig
1. die Abnahme von Finger- und Handflächenabdrücken,
2. die Aufnahme von Lichtbildern mit Kenntnis des Gefangenen,
3 die Feststellung äußerlicher körperlicher Merkmale,
4 Messungen.

(2)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werden zu den Gefangenenpersonalakten genommen. Sie können auch in kriminalpolizeilichen Sammlungen verwahrt werden. Die nach Absatz 1 erhobenen Daten dürfen nur für die in Absatz 1, § 87 Abs. 2 und § 180 Abs. 2 Nr. 4 genannten Zwecke verarbeitet und genutzt werden.

(3) Personen, die aufgrund des Absatzes 1 erkennungsdienstlich behandelt worden sind, können nach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verlangen, daß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mit Ausnahme von Lichtbildern und der Beschreibung von körperlichen Merkmalen vernichtet werden, sobald die Vollstreckung d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die dem Vollzug zugrunde gelegen hat, abgeschlossen ist. Sie sind über dieses Recht bei der erkennungsdienstlichen Behandlung und bei der Entlassung aufzuklären.

### § 86a Lichtbilder

(1) Unbeschadet des § 86 dürfen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und Ordnung der Anstalt Lichtbilder der Gefangenen aufgenommen und mit den Namen der Gefangenen sowie deren Geburtsdatum und -ort gespeichert werden. Die Lichtbilder durfen nur mit Kenntnis der Gefangenen aufgenommen werden.

(2) Die Lichtbilder dürfen nur

1. genutzt werden von Justizvollzugsbediensteten, wenn eine Überprüfung der Identität der Gefangenen im Rahmen ihrer Aufgabenwahrnehmung erforderlich ist,
2. übermittelt werden
   a) an die Polizeivollzugs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oweit dies zur Abwehr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erhebliche Rechtsgüter innerhalb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b) nach Maßgabe des § 87 Abs. 2.

(3) Die Lichtbilder sind nach der Entlassung der Gefangenen aus dem Vollzug oder nach ihrer Verlegung in eine andere Anstalt zu vernichten oder zu löschen.

### § 87 Festnahmerecht

(1) Ein Gefangener, der entwichen ist oder sich sonst ohne Erlaubnis außerhalb der Anstalt aufhält, kann durch die Vollzugsbehörde oder auf ihre Veranlassung hin festgenommen und in die Anstalt zurückgebracht werden.

(2) Nach § 86 Abs. 1 erhobene und nach §§ 86a, 179 erhobene und zur Identifizierung oder Festnahme erforderliche Daten dürfen den Vollstreckungs- und Strafverfolgungs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Zwecke der Fahndung und Festnahme des entwichenen oder sich sonst ohne Erlaubnis außerhalb der Anstalt aufhaltenden Gefangenen erforderlich ist.

### § 88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1) Gegen einen Gefangenen können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angeordnet werden, wenn nach seinem Verhalten oder auf Grund seines seelischen Zustandes in erhöhtem Maß Fluchtgefahr oder die Gefahr von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oder Sachen oder die Gefahr des Selbstmordes oder der Selbstverletzung besteht.

(2) Als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sind zulässig:

1. der Entzug oder die Vorenthaltung von Gegenständen,
2. die Beobachtung bei Nacht,
3. die Absonderung von anderen Gefangenen,
4. der Entzug oder die Beschränkung des Aufenthalts im Freien,

5. die Unterbringung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ohne gefährdende Gegenstände und
6. die Fesselung.

(3) Maßnahmen nach Absatz 2 Nr. 1, 3 bis 5 sind auch zulässig, wenn die Gefahr einer Befreiung oder eine erhebliche Störung der Anstaltsordnung anders nicht vermieden oder behoben werden kann.
(4) Bei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beim Transport ist die Fesselung auch dann zulässig, wenn aus anderen Gründen als denen des Absatzes 1 in erhöhtem Maß Fluchtgefahr besteht.
(5)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dürfen nur soweit aufrechterhalten werden, als es ihr Zweck erfordert.

### § 89 Einzelhaft

(1) Die unausgesetzte Absonderung eines Gefangenen (Einzelhaft) ist nur zulässig, wenn dies aus Gründen, die in der Person des Gefangenen liegen, unerläßlich ist.
(2) Einzelhaft von mehr als drei Monaten Gesamtdauer in einem Jahr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Diese Frist wird nicht dadurch unterbrochen, daß der Gefangene am Gottesdienst oder an der Freistunde teilnimmt.

### § 90 Fesselung

In der Regel dürfen Fesseln nur an den Händen oder an den Füßen angelegt werden. Im Interesse des Gefangenen kann der Anstaltsleiter eine andere Art der Fesselung anordnen. Die Fesselung wird zeitweise gelockert, soweit dies notwendig ist.

### § 91 Anordnung besonderer Sicherungsmaßnahmen

(1)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Gefahr im Verzug können auch andere Bedienstete der Anstalt diese Maßnahmen vorläufig anordnen. Die Entscheidung des Anstaltsleiters ist unverzüglich einzuholen.
(2) Wird ein Gefangener ärztlich behandelt oder beobachtet oder bildet sein seelischer Zustand den Anlaß der Maßnahme, ist vorher der Arzt zu hören Ist dies wegen Gefahr im Verzug nicht möglich, wird seine Stellungnahme unverzüglich eingeholt.

### § 92 Ärztliche Überwachung

(1) Ist ein Gefangener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untergebracht oder gefesselt (§ 88 Abs. 2 Nr. 5 und 6), so sucht ihn der Anstaltsarzt alsbald und in der Folge möglichst täglich auf. Dies gilt nicht bei einer Fesselung während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eines Transportes (§ 88 Abs 4).
(2) Der Arzt ist regelmäßig zu hören, solange einem Gefangenen der tägliche Aufenthalt im Freien entzogen wird.

### § 93 Ersatz von Aufwendungen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der Vollzugsbehörde Aufwendungen zu ersetzen, die er durch eine vorsätzliche oder grob fahrlässige Selbstverletzung oder Verletzung eines anderen Gefangenen verursacht hat. Ansprüche aus sonstigen Rechts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ein den drei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 2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3)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4) Von der Aufrechnung oder Vollstreckung wegen der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abzusehen, wenn hierdurch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t würde

## Zwölf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 § 94 Allgemeine Voraussetzungen

(1) Bedienstete der Justizvollzugsanstalten dürfen unmittelbaren Zwang anwenden, wenn sie Vollzugs- und Sicherungsmaßnahmen rechtmäßig durchführen und der damit verfolgte Zweck auf keine andere Weise erreicht werden kann.
(2) Gegen andere Personen als Gefangene darf unmittelbarer Zwang angewende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zu befreien oder in den Anstaltsbereich widerrechtlich einzudringen, oder wenn sie sich unbefugt darin aufhalten.
(3) Das Recht zu unmittelbarem Zwang auf Grund anderer Regelungen bleibt unberührt

### § 95 Begriffsbestimmungen

(1) Unmittelbarer Zwang ist di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durch körperliche Gewalt, ihre Hilfsmittel und durch Waffen.
(2) Körperliche Gewalt ist jede unmittelbare körperlich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3) Hilfsmittel der körperlichen Gewalt sind namentlich Fesseln
(4) Waffen sind die dienstlich zugelassenen Hieb- und Schußwaffen sowie Reizstoffe.

### § 96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1) Unter mehreren möglichen und geeigneten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sind diejenigen zu wahlen, die den Einzelnen und die Allgemeinheit voraussichtlich am wenigsten beeinträchtigen
(2) Unmittelbarer Zwang unterbleibt, wenn ein durch ihn zu erwartender Schaden erkennbar außer Verhältnis zu dem angestrebten Erfolg steht

### § 97 Handeln auf Anordnung

(1) Wird unmittelbarer Zwang von einem Vorgesetzten oder einer sonst befugten Person angeordnet, sind Vollzugsbedienstete verpflichtet, ihn anzuwenden, es sei denn, die Anordnung verletzt die Menschenwürde oder ist nicht zu dienstlichen Zwecken erteilt worden.
(2) Die Anordnung darf nicht befolgt werden, wenn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urde. Befolgt der Vollzugsbedienstete sie trotzdem, trifft ihn eine Schuld nur, wenn er erkennt oder wenn es nach den ihm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ist, daß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ird.
(3) Bedenken gegen die Rechtmäßigkeit der Anordnung hat der Vollzugsbedienstete dem Anordnenden gegenüber vorzubringen, soweit das nach den Umständen möglich ist. Abweichend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Beamtenrechts über die Mitteilung solcher Bedenken an einen Vorgesetzten (§ 36 Abs. 2 und 3 des Beamtenstatus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 § 98 Androhung

Unmittelbarer Zwang ist vorher anzudrohen. Die Androhung darf nur dann unterbleiben, wenn die Umstande sie nicht zulassen oder unmittelbarer Zwang sofort angewendet werden muß, um eine rechtswidrige Tat, di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erfüllt, zu verhindern oder eine gegenwartige Gefahr abzuwenden.

### § 99 Allgemein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Schußwaffen dürfen nur gebraucht werden, wenn andere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bereits erfolglos waren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Gegen Personen ist ihr Gebrauch nur zulässig, wenn der Zweck nicht durch Waffenwirkung gegen Sachen erreicht wird.
(2) Schußwaffen dürfen nur die dazu bestimmten Vollzugsbediensteten gebrauchen und nur, um angriffsoder fluchtunfähig zu machen. Ihr Gebrauch unterbleibt, wenn dadurch erkennbar Unbeteiligte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gefährdet würden.
(3) Der Gebrauch von Schußwaffen ist vorher anzudrohen. Als Androhung gilt auch ein Warnschuß. Ohne Androhung dürfen Schußwaffen nur dann gebraucht werden, wenn das zur Abwehr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erforderlich ist.

### § 100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Gegen Gefangene dü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1. wenn sie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trotz wiederholter Aufforderung nicht ablegen,
2. wenn sie eine Meuterei (§ 121 des Strafgesetzbuches) unternehmen oder
3 um ihre Flucht zu vereiteln oder um sie wiederzuergreifen.

Um die Flucht aus einer offenen Anstalt zu vereiteln, dürfen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2) Gegen andere Personen du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gewaltsam zu befreien oder gewaltsam in eine Anstalt einzudringen

### § 101 Zwangs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Gesundheitsfürsorge

(1) Medizinische Untersuchung und Behandlung sowie Ernährung sind zwangsweise nur bei Lebensgefahr, bei schwerwiegender Gefahr für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oder bei Gefahr für die Gesundheit anderer Personen zulässig; die Maßnahmen müssen für die Beteiligten zumutbar und dürfen nicht mit erheblicher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des Gefangenen verbunden sein. Zur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ist die Vollzugsbehörde nicht verpflichtet, solange von einer freien Willensbestimmung des Gefangenen ausgegangen werden kann.
(2) Zum Gesundheitsschutz und zur Hygiene ist die zwangsweise körperliche Untersuchung außer im Falle des Absatzes 1 zulässig, wenn sie nicht mit einem körperlichen Eingriff verbunden ist.
(3) Die Maßnahmen dürfen nur auf Anordnung und unter Leitung eines Arztes durchgeführt werden, unbeschadet der Leistung erster Hilfe für den Fall, daß ein Arzt nicht rechtzeitig erreichbar und mit einem Aufschub Lebensgefahr verbunden ist.

## Dreizehnter Titel Disziplinarmaßnahmen

### § 102 Voraussetzungen

(1) Verstößt ein Gefangener schuldhaft gegen Pflichten, die ihm durch dieses Gesetz oder auf Grund dieses Gesetzes auferlegt sind, kann der Anstaltsleiter gegen ihn Disziplinarmaßnahmen anordnen.
(2) Von einer Disziplinarmaßnahme wird abgesehen, wenn es genügt, den Gefangenen zu verwarnen.
(3) Eine Disziplinarmaßnahme ist auch zulässig, wenn wegen derselben Verfehlung ein Straf- oder Bußgeldverfahren eingeleitet wird.

## § 103 Arten der Disziplinarmaßnahmen

(1) Die zulässigen Disziplinarmaßnahmen sind:

1. Verweis,
2.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und des Einkaufs bis zu drei Monaten,
3.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s Lesestoffs bis zu zwei Wochen sowie des Hörfunk- und Fernsehempfangs bis zu drei Monaten; der gleichzeitige Entzug jedoch nur bis zu zwei Wochen,
4.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Gegenstände für eine Beschäftigung in der Freizeit oder der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bis zu drei Monaten,
5 die getrennte Unterbringung während der Freizeit bis zu vier Wochen,
6. (weggefallen)
7. der Entzug der zugewiesenen Arbeit oder Beschäftigung bis zu vier Wochen unter Wegfall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
8. die Beschränkung des Verkehrs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auf dringende Fälle bis zu drei Monaten,
9. Arrest bis zu vier Wochen.

(2) Arrest darf nur wegen schwerer oder mehrfach wiederholter Verfehlungen verhängt werden.

(3) Mehrere Disziplinarmaßnahmen können miteinander verbunden werden.

(4) Die Maßnahmen nach Absatz 1 Nr. 3 bis 8 sollen möglichst nur angeordnet werden, wenn die Verfehlung mit den zu beschränkenden oder zu entziehenden Befugnissen im Zusammenhang steht. Dies gilt nicht bei einer Verbindung mit Arrest.

## § 104 Vollzug der Disziplinarmaßnahmen. Aussetzung zur Bewährung

(1) Disziplinarmaßnahmen werden in der Regel sofort vollstreckt.

(2) Eine Disziplinarmaßnahme kann ganz oder teilweise bis zu sechs Monaten zur Bewährung ausgesetzt werden.

(3) Wird die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beschränkt oder entzogen, ist das in dieser Zeit anfallende Hausgeld dem Überbrückungsgeld hinzuzurechnen.

(4) Wird der Verkehr des Gefangenen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eingeschränkt, ist ihm Gelegenheit zu geben, dies einer Person, mit der er im Schriftwechsel steht oder die ihn zu besuchen pflegt, mitzuteilen. Der Schriftwechsel mit den in § 29 Abs. 1 und 2 genannten Empfängern,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in der Bundesrepublik sowie mit Rechtsanwälten und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bleibt unbeschränkt.

(5) Arrest wird in Einzelhaft vollzogen. Der Gefangene kann in einem besonderen Arrestraum untergebracht werden, der den Anforderungen entsprechen muß, die an einen zum Aufenthalt bei Tag und Nacht bestimmten Haftraum gestellt werden. Soweit nichts anderes angeordnet wird, ruhen die Befugnisse des Gefangenen aus den §§ 19, 20, 22, 37, 38, 68 bis 70.

## § 105 Disziplinarbefugnis

(1) Disziplinar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einer Verfehlung auf dem Weg in eine andere

Anstalt zum Zwecke der Verlegung ist der Leiter der Bestimmungsanstalt zuständig.
(2) Die Aufsichtsbehörde entscheidet, wenn sich die Verfehlung des Gefangenen gegen den Anstaltsleiter richtet.
(3) Disziplinarmaßnahmen, die gegen einen Gefangenen in einer anderen Vollzugsanstalt oder während einer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worden sind, werden auf Ersuchen vollstreckt. § 104 Abs. 2 bleibt unberührt.

### § 106 Verfahren

(1) Der Sachverhalt ist zu klären. Der Gefangene wird gehört. Die Erhebungen werden in einer Niederschrift festgelegt; die Einlassung des Gefangenen wird vermerkt.
(2) Bei schweren Verstößen soll der Anstaltsleiter sich vor der Entscheidung in einer Konferenz mit Personen besprechen, die bei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mitwirken. Vor der Anordnung einer Disziplinarmaßnahme gegen einen Gefangenen, der sich in ärztlicher Behandlung befindet, oder gegen eine Schwangere oder eine stillende Mutter ist der Anstaltsarzt zu hören
(3) Die Entscheidung wird dem Gefangenen vom Anstaltsleiter mündlich eröffnet und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schriftlich abgefaßt.

### § 107 Mitwirkung des Arztes

(1) Bevor der Arrest vollzogen wird, ist der Arzt zu hören. Während des Arrestes steht der Gefangene unter ärztlicher Aufsicht.
(2) Der Vollzug des Arrestes unterbleibt oder wird unterbrochen, wenn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gefährdet würde.

## Vierzehnter Titel Rechtsbehelfe

### § 108 Beschwerderecht

(1)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mit Wünschen, Anregungen und Beschwerden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treffen, an den Anstaltsleiter zu wenden Regelmäßige Sprechstunden sind einzurichten.
(2) Besichtigt ei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die Anstalt, so ist zu gewährleisten, daß ein Gefangener sich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treffen, an ihn wenden kann
(3) Die Möglichkeit der Dienstaufsichtsbeschwerde bleibt unberührt.

### § 109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1) Gegen eine Maßnahme zur Regelung einzelner Angelegenheiten auf dem Gebiet des Strafvollzuges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t werden. Mit dem Antrag kann auch die Verpflichtung zum Erlaß einer abgelehnten oder unterlassenen Maßnahme begehrt werden.
(2)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ist nur zulässig, wenn der Antragsteller geltend macht, durch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in seinen Rechten verletzt zu sein.
(3) Das Landesrecht kann vorsehen, daß der Antrag erst nach vorausgegangenem Verwaltungsvorverfahren gestellt werden kann

### § 110 Zuständigkeit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n deren Bezirk die beteiligte Vollzugsbehörde

ihren Sitz hat. Durch die Entscheidung in einem Verwaltungsvorverfahren nach § 109 Abs 3 ändert sich die Zuständigkeit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nicht.

### § 111 Beteiligte

(1) Beteiligte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1 der Antragsteller,

2. die Vollzugsbehörde, die die angefochtene Maßnahme angeordnet oder die beantragte abgelehnt oder unterlassen hat.

(2) In dem Verfahren vor dem Oberlandesgericht oder dem Bundesgerichtshof ist Beteiligte nach Absatz 1 Nr. 2 die zuständige Aufsichtsbehörde.

### § 112 Antragsfrist. Wiedereinsetzung

(1) Der Antrag muß binne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oder schriftlicher Bekanntgabe der Maßnahme oder ihrer Ablehnung schriftlich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gestellt werden.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 109 Abs. 3) durchzuführen ist, beginnt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oder schriftlichen Bekanntgabe des Widerspruchsbescheides.

(2) War der Antragsteller ohne Verschulden verhindert, die Frist einzuhalten, so ist ihm auf Antrag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zu gewahren.

(3)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st binnen zwei Wochen nach Wegfall des Hindernisses zu stellen. Die Tatsachen zur Begründung des Antrags sind bei der Antragstellung oder im Verfahren über den Antrag glaubhaft zu machen. Innerhalb der Antragsfrist ist die versäumte Rechtshandlung nachzuholen. Ist dies geschehen, so kann die Wiedereinsetzung auch ohne Antrag gewährt werden

(4) Nach einem Jahr seit dem Ende der versäumten Frist ist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unzulässig, außer wenn der Antra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 § 113 Vornahmeantrag

(1) Wendet sich der Antragsteller gegen das Unterlassen einer Maßnahme, kann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vor Ablauf von drei Monaten seit dem Antrag auf Vornahme der Maßnahme gestellt werden, es sei denn, daß eine frühere Anrufung des Gerichts wegen besonderer Umstände des Falles geboten ist.

(2) Liegt ein zureichender Grund dafür vor, daß die beantragte Maßnahme noch nicht erlassen ist, so setzt das Gericht das Verfahren bis zum Ablauf einer von ihm bestimmten Frist aus. Die Frist kann verlängert werden. Wird die beantragte Maßnahme in der gesetzten Frist erlassen, so ist der Rechtsstreit in der Hauptsache erledigt.

(3) Der Antrag nach Absatz 1 ist nur bis zum Ablauf eines Jahres seit der Stellung des Antrags auf Vornahme der Maßnahme zulässig, außer wenn die Antragstellun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oder unter den besonderen Verhältnissen des Einzelfalles unterblieben ist.

### § 114 Aussetzung der Maßnahme

(1)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2) Das Gericht kann den Vollzug der angefochtenen Maßnahme aussetzen, wenn die Gefahr besteht, daß die Verwirklichung eines Rechts des Antragstellers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ird und ein höher zu bewertendes Interesse an dem sofortigen Vollzug nicht entgegensteht. Das Gericht kann auch eine einstweilige

Anordnung erlassen; § 123 Abs. 1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st entsprechend anzuwenden. Die Entscheidungen sind nicht anfechtbar; sie können vom Gericht jederzeit geändert oder aufgehoben werden.
(3) Der Antrag auf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2 ist schon vor Stellung des Antrag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zulässig.

### § 115 Gerichtliche Entscheidung

(1) Das Gerich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Der Beschluss stellt den Sach- und Streitstand seinem wesentlichen Inhalt nach gedrängt zusammen. Wegen der Einzelheiten soll auf bei den Gerichtsakten befindliche Schriftstücke, die nach Herkunft und Datum genau zu bezeichnen sind, verwiesen werden, soweit sich aus ihnen der Sach- und Streitstand ausreichend ergibt. Das Gericht kann von einer Darstellung der Entscheidungsgründe absehen, soweit es der Begründung der angefochtenen Entscheidung folgt und dies in seiner Entscheidung feststellt.
(2) Soweit die Maßnah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hebt das Gericht die Maßnahme und,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vorhergegangen ist, den Widerspruchsbescheid auf Ist die Maßnahme schon vollzogen, kann das Gericht auch aussprechen, daß und wie die Vollzugsbehörde die Vollziehung rückgängig zu machen hat, soweit die Sache spruchreif ist.
(3) Hat sich die Maßnahme vorher durch Zurücknahme oder anders erledigt, spricht das Gericht auf Antrag aus, daß die Maßnahme rechtswidrig gewesen ist, wenn der Antragstell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ieser Feststellung hat.
(4) Soweit di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der Maßnah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spricht das Gericht die Verpflichtung der Vollzugsbehörde aus, die beantragte Amtshandlung vorzunehm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Anderenfalls spricht es die Verpflichtung aus, den Antragsteller unter Beachtung der Rechtsauffassung des Gerichts zu bescheiden.
(5) Soweit die Vollzugsbehörde ermächtigt ist, nach ihrem Ermessen zu handeln, prüft das Gericht auch, ob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rechtswidrig ist, weil die gesetzlichen Grenzen des Ermessens überschritten sind oder von dem Ermessen in einer dem Zweck der Ermächtigung nicht entsprechenden Weise Gebrauch gemacht ist.

### § 116 Rechtsbeschwerde

(1) Gegen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ist die Rechtsbeschwerde zulässig, wenn es geboten ist, die Nachprüfung zur Fortbildung des Rechts oder zur Sicher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prechung zu ermöglichen.
(2) Die Rechtsbeschwerde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die Entscheidung auf einer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e. Das Gesetz ist verletzt, wenn eine Rechtsnorm nicht oder nicht richtig angewendet worden ist.
(3) Die Rechtsbeschwe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114 Abs. 2 gilt entsprechend.
(4) Für die Rechtsbeschwerde gelten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über die Beschwerde entsprechend,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 117 Zuständigkeit für die Rechtsbeschwerde

Über die Rechtsbeschwerde entscheidet ein Strafsenat des Oberlandesgerichts, in dessen Bezirk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hren Sitz hat.

## § 118 Form. Frist. Begründung

(1) Die Rechtsbeschwerde muß bei dem Gericht, dessen Entscheidung angefochten wird, binnen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eingelegt werden. In dieser Frist ist außerdem die Erklärung abzugeben, inwieweit die Entscheidung angefochten und ihre Aufhebung beantragt wird. Die Anträge sind zu begründen.
(2) Aus der Begründung muß hervorgehen, ob die Entscheidung wegen Verletzung einer Rechtsnorm über das Verfahren oder wegen Verletzung einer anderen Rechtsnorm angefochten wird. Ersterenfalls müssen die den Mangel enthaltenden Tatsachen angegeben werden
(3) Der Antragsteller als Beschwerdeführer kann dies nur in einer von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tun

## § 119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beschwerde

(1) Der Strafsena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Seiner Prüfung unterliegen nur die Beschwerdeanträge und, soweit die Rechtsbeschwerde auf Mängel des Verfahrens gestützt wird, nur die Tatsachen, die in der Begründung der Rechtsbeschwerde bezeichnet worden sind.
(3) Der Beschluß, durch den die Beschwerde verworfen wird, bedarf keiner Begründung, wenn der Strafsenat die Beschwerde einstimmig für unzulässig oder für offensichtlich unbegründet erachtet.
(4) Soweit die Rechtsbeschwerde für begründet erachtet wird, ist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aufzuheben. Der Strafsenat kann an Stelle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entscheid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Sonst ist die Sache zur neuen Entscheidung an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zurückzuverweisen
(5) Die Entscheidung des Strafsenats ist endgültig.

## § 120 Entsprechende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Soweit sich aus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ergibt, sind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2) Auf die Bewilligung der Prozeßkostenhilfe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 § 121 Kosten des Verfahrens

(1) In der das Verfahren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ist zu bestimmen, von wem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zu tragen sind.
(2) Soweit der Antragsteller unterliegt oder seinen Antrag zurücknimmt, trägt 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Hat sich die Maßnahme vor einer Entscheidung nach Absatz 1 in anderer Weise als durch Zurücknahme des Antrags erledigt, so entscheidet das Gericht üb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nach billigem Ermessen.
(3) Absatz 2 Satz 2 gilt nicht im Falle des § 115 Abs. 3.
(4) Im übrigen gelten die §§ 464 bis 473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5) Für die Kosten des Verfahrens nach den §§ 109ff kann auch ein den drei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 2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 Fünfzehnter Titel Strafvollstreckung und Untersuchungshaft

**§ 122**

(weggefallen)

## Sechzehnter Titel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 § 123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Abteilungen

(1) Für den Vollzug nach § 9 sind von den übrigen Vollzugsanstalten getrennt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vorzusehen.

(2)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auch sozialtherapeutische Abteilungen in anderen Vollzugsanstalten eingerichtet werden. Für diese Abteilungen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entsprechend.

### § 124 Urlaub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Monaten gewähren. § 11 Abs. 2 und § 13 Abs. 5 gelten entsprechend.

(2) Dem Beurlaubten sollen für den Urlaub Weisungen erteilt werden. Er kann insbesondere angewiesen werden, sich einer von der Anstalt bestimmten Betreuungsperson zu unterstellen und jeweils für kurze Zeit in die Anstalt zurückzukehren.

(3) § 14 Abs. 2 gilt entsprechend Der Urlaub wird widerrufen, wenn dies für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notwendig ist.

### § 125 Aufnahme auf freiwilliger Grundlage

(1) Ein früherer Gefangener kann auf seinen Antrag vorübergehend wieder in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ufgenommen werden, wenn das Ziel seiner Behandlung gefährdet und ein Aufenthalt in der Anstalt aus diesem Grunde gerechtfertigt ist. Die Aufnahme ist jederzeit widerruflich.

(2) Gegen den Aufgenommenen dürfen Maßnahmen des Vollzuges nicht mit unmittelbarem Zwang durchgesetzt werden.

(3) Auf seinen Antrag ist der Aufgenommene unverzüglich zu entlassen.

### § 126 Nachgehende Betreuung

Die Zahl der Fachkräfte fü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ist so zu bemessen, daß auch eine nachgehende Betreuung der Gefangenen gewährleistet ist, soweit diese anderweitig nicht sichergestellt werden kann

**§§ 127 und 128 ----**

# Dritter Abschnitt Besonder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Erster Titel Sicherungsverwahrung

### § 129 Ziel der Unterbringung

Der Sicherungsverwahrte wird zum Schutz der Allgemeinheit sicher untergebracht. Ihm soll geholfen werden,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edern.

### § 130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3 bis 126,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 131 Ausstattung

Die Ausstattung der Sicherungsanstalten, namentlich der Haftraume, und besondere Maßnahmen zur Förderung und Betreuung sollen dem Untergebrachten helfen, sein Leben in der Anstalt sinnvoll zu gestalten, und ihn vor Schäden eines langen Freiheitsentzuges bewahren. Seinen personlichen Bedürfnissen ist nach Möglichkeit Rechnung zu tragen.

### § 132 Kleidung

Der Untergebrachte darf eigene Kleidung, Wa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Untergebracht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 133 Selbstbeschäftigung, Taschengeld

(1) Dem Untergebrachten wird gestattet, sich gegen Entgelt selbst zu beschäftigen, wenn di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as Taschengeld (§ 46) darf den dreifachen Tagessatz der Eckvergutung nach § 43 Abs. 2 im Monat nicht unterschreiten.

### § 134 Entlassungsvorbereitung

Um die Entlassung zu erproben und vorzubereiten, kann der Vollzug gelockert und Sonderurlaub bis zu einem Monat gewährt werden Bei Untergebrachten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bleibt § 124 unberührt.

### § 135 Sicherungsverwahrung in Frauenanstalten

Die Sicherungsverwahrung einer Frau kann auch i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Frauenanstalt durchgeführt werden, wenn diese Anstalt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eingerichtet ist.

## Zweiter Titel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 § 136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Die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richtet sich nach arztlichen Gesichtspunkten Soweit möglich, soll er geheilt oder sein Zustand so weit gebessert werden, daß er nicht mehr gefährlich ist. Ihm wird die nötige Aufsicht, Betreuung und Pflege zuteil

### § 137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Ziel der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r Entziehungsanstalt ist es, ihn von seinem Hang zu heilen und die zugrunde liegende Fehlhaltung zu beheben

### § 138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einer Entziehungsanstalt richtet sich nach Landesrecht, soweit Bundes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 § 51 Abs. 4 und 5 sowie § 75 Abs. 3 gelten entsprechend.
(2) Für die Erhebung der Kosten der Unterbringung gilt § 50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ss in den Fällen des § 50 Abs. 1 Satz 2 an die Stelle erhaltener Bezüge die Verrichtung zugewiesener oder ermöglichter Arbeit tritt und in den Fällen des § 50 Abs. 1 Satz 4 dem Untergebrachten ein Betrag in der Höhe verbleiben muss, der dem Barbetrag entspricht, den ein in einer Einrichtung lebender und einen Teil der Kosten seines Aufenthalts selbst tragender Sozialhilfeempfänger zur persönlichen Verfügung erhält. Bei der Bewertung einer Beschäftigung als Arbeit sind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des Maßregelvollzugs zu berücksichtigen. Zuständig für die Erhebung der Kosten is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urch Rechtsverordnung andere Zuständigkeiten begründen. Die Kosten werden als Justizverwaltungsabgabe erhoben.
(3) Für das gerichtliche Verfahren gelten die §§ 109 bis 121 entsprechend.

## Vierter Abschnitt Vollzugsbehörden

## Erster Titel Arten und Einrichtung der Justizvollzugsanstalten

### § 139 Justizvollzugsanstalten

Die Freiheitsstrafe sowie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erden in Anstalt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Justizvollzugsanstalten) vollzogen.

### § 140 Trennung des Vollzuges

(1)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ird in getrennten Anstalten oder in getrennten Abteilunge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Vollzugsanstalt vollzogen.
(2) Frauen sind getrennt von Männern in besonderen Frauenanstalten unterzubringen.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für Frauen getrennte Abteilungen in Anstalten für Männer vorgesehen werden.
(3) Von der getrennten Unterbring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darf abgewichen werden, um dem Gefangenen die Teilnahme an Behandlungsmaßnahmen in einer anderen Anstalt oder in einer anderen Abteilung zu ermöglichen.

### § 141 Differenzierung

(1)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ind Haftplätze vorzusehen in verschiedenen Anstalten oder Abteilungen, in denen eine auf die unterschiedlichen Bedürfnisse der Gefangenen abgestimm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2) Anstalten des geschlossenen Vollzuges sehen eine sichere Unterbringung vor, Anstalten des offenen Vollzuges keine oder nur verminderte Vorkehrungen gegen Entweichungen.

### § 142 Einrichtungen für Mütter mit Kindern

In Anstalten für Frauen sollen Einrichtungen vorgesehen werden, in denen Mütter mit ihren Kindern untergebracht werden können.

### § 143 Größe und Gestaltung der Anstalten

(1) Justizvollzugsanstalten sind so zu gestalt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2) Die Vollzugsanstalten sind so zu gliedern,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3) Die für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für Justizvollzugsanstalten für Frauen vorgesehene Belegung soll zweihundert Plätze nicht übersteigen.

### § 144 Größe und Ausgestaltung der Räume

(1) Räume für den Aufenthalt während der Ruhe- und Freizeit sowie Gemeinschafts- und Besuchsräume sind wohnlich oder sonst ihrem Zweck entsprechend auszugestalten. Sie müssen hinreichend Luftinhalt haben und für eine gesunde Lebensführung ausreichend mit Heizung und Lüftung, Boden- und Fensterfläche ausgestattet sein.
(2)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urch Rechtsverordnung Näheres über den Luftinhalt, die Lüftung, die Boden- und Fensterfläche sowie die Heizung und Einrichtung der Räume zu bestimmen.

### § 145 Festsetzung der Belegungsfähigkeit

Die Aufsichtsbehörde setzt die Belegungsfähigkeit für jede Anstalt so fest, daß eine angemessene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 18) gewährleistet ist.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eine ausreichende Anzahl von Plätzen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sowie von Räumen für Seelsorge, Freizeit, Sport, therapeutische Maßnahmen und Besuche zur Verfügung steht.

### § 146 Verbot der Überbelegung

(1) Hafträume dürfen nicht mit mehr Personen als zugelassen belegt werden.
(2) Ausnahmen hiervon sind nur vorübergehend und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zulässig.

### § 147 Einrichtungen für die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en den geschlossenen Anstalten offene Einrichtungen angegliedert oder gesonderte offene Anstalten vorgesehen werden.

### § 148 Arbeitsbeschaffung, Gelegenheit zur beruflichen Bildung

(1) Die Vollzugsbehörde soll im Zusammenwirken mit den Vereinigungen und Stellen des Arbeits- und Wirtschaftslebens dafür sorgen, daß jeder arbeitsfähige Gefange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ausüben kann, und dazu beitragen, daß er beruflich gefördert, beraten und vermittelt wird.
(2) Die Vollzugsbehörde stellt durch geeignete organisatorische Maßnahmen sicher, daß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die ihr obliegenden Aufgaben wie Berufsberatung, Ausbildungsvermittlung und Arbeitsvermittlung durchführen kann.

### § 149 Arbeitsbetrieb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1) In den Anstalten sind die notwendigen Betriebe für die nach § 37 Abs. 2 zuzuweisenden Arbeiten sowie die erforderlichen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 37 Abs. 3) und arbeitstherapeutischen Beschäftigung (§

37 Abs. 5) vorzusehen.
(2) Die in Absatz 1 genannten Betriebe und sonstigen Einrichtungen sind den Verhältnissen außerhalb der Anstalten anzugleichen. Die Arbeitsschutz- und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sind zu beachten
(3) Die berufliche Bildung und di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können auch in geeigneten Einrichtungen privater Unternehmen erfolgen.
(4) In den von privaten Unternehmen unterhaltenen Betrieben und sonstigen Einrichtungen kann die technische und fachliche Leitung Angehörigen dieser Unternehmen übertragen werden.

### § 150 Vollzugsgemeinschaften

Für Vollzugsanstalten nach den §§ 139 bis 149 können die Länder Vollzugsgemeinschaften bilden.

## Zweiter Titel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 § 151 Aufsichtsbehörde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führen die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Sie können Aufsichtsbefugnisse auf Justizvollzugsämter übertragen
(2) An der Aufsicht über das Arbeitswesen sowie über die Sozialarbeit, die Weiterbildung, die Gesundheitsfürsorge und die sonstige fachlich begründete Behandlung der Gefangenen sind eigene Fachkräfte zu beteiligen, soweit die Aufsichtsbehörde nicht über eigene Fachkräfte verfügt, ist fachliche Beratung sicherzustellen.

### § 152 Vollstreckungspla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 regelt die örtliche und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einem Vollstreckungsplan.
(2) Der Vollstreckungsplan sieht vor, welche Verurteilten in eine Einweisungsanstalt oder -abteilung eingewiesen werden Über eine Verlegung zum weiteren Vollzug kann nach Gründen der Behandlung und Eingliederung entschieden werden.
(3) Im übrigen ist die Zuständigkeit nach allgemeinen Merkmalen zu bestimmen.

### § 153 Zuständigkeit für Verlegungen

Die Landesjustizverwaltung kann sich Entscheidungen über Verlegungen vorbehalten oder sie einer zentralen Stelle übertragen.

## Dritter Titel Innerer Aufbau der Justizvollzugsanstalten

### § 154 Zusammenarbeit

(1) Alle im Vollzug Tätigen arbeiten zusammen und wirken daran mit, die Aufgaben des Vollzuges zu erfüllen.
(2) Mit den Behörden und Stellen der Entlassenenfürsorge, der Bewährungshilfe, den Aufsichtsstellen für die Führungsaufsicht, den Agenturen für Arbeit, de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Sozialhilfe, den Hilfeeinrichtungen anderer Behörden und den Verbände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ist eng zusammenzuarbeiten. Die Vollzugsbehörden sollen mit Personen und Vereinen, deren Einfluß die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rn kann, zusammenarbeiten.

### § 155 Vollzugsbedienstete

(1) Die Aufgab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werden von Vollzugsbeamten wahrgenommen.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sie auch anderen Bedienstet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sowie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Personen übertragen werden.
(2) Für jede Anstalt ist entsprechend ihrer Aufgabe die erforderliche Anzahl von Bediensteten der verschiedenen Berufsgruppen, namentlich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des Verwaltungsdienstes und des Werkdienstes, sowie von Seelsorgern, Ärzten, Pädagogen, Psychologen und Sozialarbeitern vorzusehen.

### § 156 Anstaltsleitung

(1) Für jede Justizvollzugsanstalt ist ein Beamter des höheren Dienstes zum hauptamtlichen Leiter zu bestellen. Aus besonderen Gründen kann eine Anstalt auch von einem Beamten des gehobenen Dienstes geleitet werden.
(2) Der Anstaltsleiter vertritt die Anstalt nach außen. Er trägt die Verantwortung für den gesamten Vollzug, soweit nicht bestimmte Aufgabenbereiche der Verantwortung anderer Vollzugsbediensteter oder ihrer gemeinsamen Verantwortung übertragen sind.
(3) Die Befugnis, die Durchsuchung nach § 84 Abs. 2, die besonderen Sicherungsmaßnahmen nach § 88 und die Disziplinarmaßnahmen nach § 103 anzuordnen, darf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übertragen werden.

### § 157 Seelsorge

(1) Seelsorger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r jeweiligen Religionsgemeinschaft im Hauptamt bestellt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
(2) Wenn die geringe Zahl der Angehörigen einer Religionsgemeinschaft eine Seelsorge nach Absatz 1 nicht rechtfertigt, ist die seelsorgerische Betreuung auf andere Weise zuzulassen
(3) Mit Zustimmung des Anstaltsleiters dürfen die Anstaltsseelsorger sich freier Seelsorgehelfer bedienen und für Gottesdienste sowie für andere religiöse Veranstaltungen Seelsorger von außen zuziehen.

### § 158 Ärztliche Versorgung

(1) Die ärztliche Versorgung ist durch hauptamtliche Ärzte sicherzustellen. Sie kann aus besonderen Gründen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Ärzten übertragen werden.
(2) Die Pflege der Kranken soll von Personen ausgeübt werden, die eine Erlaubnis nach dem Krankenpflegegesetz besitzen. Solange Personen im Sinne von Satz 1 nicht zur Verfügung stehen, können auch Bedienstete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eingesetzt werden, die eine sonstige Ausbildung in der Krankenpflege erfahren haben.

### § 159 Konferenzen

Zur Aufstellung und Überprüfung des Vollzugsplanes und zur Vorbereitung wichtiger Entscheidungen im Vollzug führt der Anstaltsleiter Konferenzen mit an der Behandlung maßgeblich Beteiligten durch.

### § 160 Gefangenenmitverantwortung

Den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soll ermöglicht werden, an der Verantwortung für Angelegenheiten von gemeinsamem Interesse teilzunehmen, die sich ihrer Eigenart und der Aufgabe der Anstalt nach für ihre Mitwirkung eignen.

### § 161 Hausordnung

(1) Der Anstaltsleiter erläßt eine Hausordnung. Sie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2) In die Hausordnung sind namentlich die Anordnungen aufzunehmen über

1. die Besuchszeiten, Häufigkeit und Dauer der Besuche,
2. die Arbeitszeit, Freizeit und Ruhezeit sowie
3. die Gelegenheit, Anträge und Beschwerden anzubringen, oder sich an eine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zu wenden.

(3) Ein Abdruck der Hausordnung ist in jedem Haftraum auszulegen.

## Vierter Titel Anstaltsbeiräte

### § 162 Bildung der Beiräte

(1) Bei den Justizvollzugsanstalten sind Beiräte zu bilden

(2) Vollzugsbedienstete dürfen nicht Mitglieder der Beiräte sein.

(3) Das Nähere regeln die Länder.

### § 163 Aufgabe der Beiräte

Die Mitglieder des Beirats wirken bei der Gestaltung des Vollzuges und bei der Betreuung der Gefangenen mit. Sie unterstützen den Anstaltsleiter durch Anregung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und helfen bei der Eingliederung der Gefangenen nach der Entlassung.

### § 164 Befugnisse

(1)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namentlich Wünsche, Anregungen und Beanstandungen entgegennehmen. Sie können sich über die Unterbringung, Beschäftigung, berufliche Bildung, Verpflegung, ärztliche Versorgung und Behandlung unterrichten sowie die Anstalt und ihre Einrichtungen besichtigen.

(2)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die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in ihren Räumen aufsuchen. Aussprache und Schriftwechsel werden nicht überwacht.

### § 165 Pflicht zur Verschwiegenheit

Die Mitglieder des Beirats sind verpflichtet, außerhalb ihres Amtes über alle Angelegenheiten, die ihrer Natur nach vertraulich sind, besonders über Namen und Persönlichkeit der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Verschwiegenheit zu bewahren. Dies gilt auch nach Beendigung ihres Amtes.

## Fünfter Titel Kriminologische Forschung im Strafvollzug

### § 166

(1) Dem kriminologischen Dienst obliegt es, in Zusammenarbeit mit den Einrichtungen der Forschung den Vollzug, namentlich die Behandlungsmethoden, wissenschaftlich fortzuentwickeln und seine Ergebnisse für Zwecke der Strafrechtspflege nutzbar zu machen.

(2) Die Vorschriften des § 186 gelten entsprechend

# Fünfter Abschnitt Vollzug weiterer freiheitsentziehender Maßnahmen in Justizvollzugsanstalten, Datenschutz, Sozia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Schlußvorschriften

## Erster Titel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 § 167 Grundsatz

Für den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gelten § 119 Abs. 5 und 6 der Strafprozessordnung sowie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2 bis 121,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50 findet nur in den Fällen einer in § 39 erwähnten Beschäftigung Anwendung.

### § 168 Unterbringung, Besuche und Schriftverkehr

(1)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Freizeit und Ruhezeit (§§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2)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mal wöchentlich Besuch zu empfangen.
(3) Besuche und Schriftwechsel dürfen nur untersagt oder überwacht werd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notwendig ist.

### § 169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 170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 Zweiter Titel Vollzug vo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 § 171 Grundsatz

Für den Vollzug einer gerichtlich angeordnete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gelten § 119 Abs 5 und 6 der Strafprozessordnung sowie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3 bis 49, 51 bis 121,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nicht Eigenart und Zweck der Haft entgegenstehen oder im folgenden etwas anderes bestimmt ist.

### § 172 Unterbringung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Freizeit und Ruhezeit (§§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Ordn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 § 173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 174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 § 175 Arbeit

Der Gefangene ist zu einer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nicht verpflichtet.

## Dritter Titel Arbeitsentgelt in Jugendstrafanstalten und 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 § 176 Jugendstrafanstalten

(1) Übt ein Gefangener in einer Jugendstrafanstalt eine ihm zugewiesene Arbeit aus, so erhält er unbeschadet der Vorschriften des Jugendarbeitsschutzgesetzes über die Akkord- und Fließarbeit ein nach § 43 Abs. 2 und 3 zu bemessendes Arbeitsentgelt. Übt er eine sonstige zugewiesene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nach Satz 1,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 43 Abs 5 bis 11 gilt entsprechend.
(2) (zukünftig in Kraft)
(3)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4) Im übrigen gelten § 44 und die §§ 49 bis 52 entsprechend.

### § 177 Untersuchungshaft

Übt der Untersuchungsgefangene eine ihm zugewiesene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nach § 43 Abs. 2 bis 5 zu bemessendes und bekannt zu gebendes Arbeitsentgelt.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ist abweichend von § 200 fünf vom Hundert der Bezugsgröße nach §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zu Grunde zu legen (Eckvergütung). § 43 Abs. 6 bis 11 findet keine Anwendung. Für junge und heranwachsende Untersuchungsgefangene gilt § 176 Abs. 1 Satz 1 und 2 entsprechend.

## Vierter Titel Unmittelbarer Zwang in Justizvollzugsanstalten

### § 178

(1) Die §§ 94 bis 101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gelt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Absätze auch für Justizvollzugsbedienstete außerhalb des Anwendungsbereichs des Strafvollzugsgesetzes (§ 1).
(2) Beim Vollzug des Jugendarrestes, des Strafarrestes sowie 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dürfen zur Vereitelung einer Flucht oder zur Wiederergreifung (§ 100 Abs. 1 Nr. 3)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o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oder

Erzwing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Untersuchungshaft,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3) Das Landesrecht kann, namentlich beim Vollzug der Jugendstrafe, weitere Einschrankungen des Rechtes zum Schußwaffengebrauch vorsehen.

## Fünfter Titel Datenschutz

### § 179 Datenerhebung

(1) Die Vollzugsbehörde darf personenbezogene Daten erheben, soweit deren Kenntnis für den ihr nach diesem Gesetz aufgegeben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rforderlich ist.
(2) Personenbezogene Daten sind bei dem Betroffenen zu erheben. Für die Erhebung ohne Mitwirkung des Betroffenen, die Erhebung bei anderen Personen oder Stellen und für die Hinweis- und Aufklärungspflichten gilt § 4 Abs. 2 und 3 und § 13 Abs. 1a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3) Daten über Personen, die nicht Gefangene sind, dürfen ohne ihre Mitwirkung bei Personen oder Stellen außerhalb der Vollzugsbehörde nur erhoben werden, wenn sie für die Behandlung eines Gefangenen, die Sicherheit der Anstalt oder die Sicherung des Vollzuges einer Freiheitsstrafe unerläßlich sind und die Art der Erhebung schutzwürdige Interessen der Betroffenen nicht beeinträchtigt.
(4) Über eine ohne seine Kenntnis vorgenommene Erhebung personenbezogener Daten wird der Betroffene unter Angabe dieser Daten unterrichtet, soweit der in Absatz 1 genannte Zweck dadurch nicht gefährdet wird. Sind die Daten bei anderen Personen oder Stellen erhoben worden, kann die Unterrichtung unterbleiben, wenn

1. die Daten nach einer Rechtsvorschrift oder ihrem Wesen nach, namentlich wegen des überwiegenden berechtigten Interesses eines Dritten, geheimgehalten werden müssen oder
2. der Aufwand der Unterrichtung außer Verhältnis zum Schutzzweck steht und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beeinträchtigt werden

### § 180 Verarbeitung und Nutzung

(1) Die Vollzugsbehörde darf personenbezogene Daten verarbeiten und nutzen, soweit dies für den ihr nach diesem Gesetz aufgegeben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rforderlich ist. Die Vollzugsbehörde kann einen Gefangenen verpflichten, einen Lichtbildausweis mit sich zu führ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2)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soweit dies

1. zur Abwehr von sicherheitsgefährdenden oder geheimdienstlichen Tätigkeiten für eine fremde Macht oder von Bestrebungen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ie durch Anwendung von Gewalt oder darauf gerichtete Vorbereitungshandlungen
   a)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gerichtet sind,
   b) eine ungesetzliche Beeinträchtigung der Amtsführung de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ihrer Mitglieder zum Ziele haben oder
   c) auswärtige Belan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fährden,
2. zur Abwehr erheblicher Nachteile für das Gemeinwohl oder einer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3. zur Abwehr einer schwerwiegenden Beeinträchtigung der Rechte einer anderen Person,
4.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sowie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urch welche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erden, oder

5 für Maßnahmen der Strafvollstreckung oder strafvollstreckungsrechtliche Entscheidungen erforderlich ist.

(3)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liegt nicht vor, soweit sie dem gerichtlichen Rechtsschutz nach den §§ 109 bis 121 oder den in § 14 Abs 3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genannten Zwecken dient.

(4) Über die in den Absätzen 1 und 2 geregelten Zwecke hinaus dürfen zuständigen öffentlichen Stellen personenbezogene Dat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1. Maßnahmen der Gerichtshilfe, Jugendgerichtshilfe, Bewährungshilfe oder Führungsaufsicht,
2 Entscheidungen in Gnadensachen,
3. gesetzlich angeordnete Statistiken der Rechtspflege,
4. Entscheidungen über Leistungen, die mit der Aufnahme in einer Justizvollzugsanstalt entfallen oder sich mindern,
5. die Einleitung von Hilfsmaßnahmen für Angehörige (§ 11 Abs. 1 Nr 1 des Strafgesetzbuchs) des Gefangenen,
6. dienstliche Maßnahmen der Bundeswehr im Zusammenhang mit der Aufnahme und Entlassung von Soldaten,
7. ausländerrechtliche Maßnahmen oder
8 die Durchführung der Besteuerung

erforderlich ist. Eine Übermittlung für andere Zwecke ist auch zulässig, soweit eine andere gesetzliche Vorschrift dies vorsieht und sich dabei ausdrücklich auf personenbezogene Daten über Gefangene bezieht.

(5) Öffentlichen und nicht-öffentlichen Stellen darf die Vollzugsbehörde auf schriftlichen Antrag mitteilen, ob sich eine Person in Haft befindet sowie ob und wann ihre Entlassung voraussichtlich innerhalb eines Jahres bevorsteht, soweit

1 die Mitteilung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öffentlich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oder
2. von nicht-öffentlichen Stellen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ieser Mitteilung glaubhaft dargelegt wird und der Gefangen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ß der Übermittlung hat

Dem Verletzten einer Straftat können darüber hinaus auf schriftlichen Antrag Auskünfte über die Entlassungsadresse oder die Vermögensverhältnisse des Gefangenen erteilt werden, wenn die Erteilung zur Feststellung oder Durchsetzung von Rechtsansprüchen im Zusammenhang mit der Straftat erforderlich ist.

Der Gefangene wird vor der Mitteilung gehört, es sei denn, es ist zu besorgen, daß dadurch die Verfolgung des Interesses des Antragstellers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erden würde, und eine Abwägung ergibt, daß dieses Interesse des Antragstellers das Interesse des Gefangenen an seiner vorherigen Anhörung überwiegt. Ist die Anhörung unterblieben, wird der betroffene Gefangene über die Mitteilung der Vollzugsbehörde nachträglich unterrichtet

(6) Akten mit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nur anderen Vollzugsbehörden, den zur Dienst- oder Fachaufsicht oder zu dienstlichen Weisungen befugten Stellen, den für strafvollzugs-, strafvollstreckungs- und strafrechtliche Entscheidungen zuständigen Gerichten sowie den Strafvollstreckungs- und Strafverfolgungsbehörden überlassen werden; die Überlassung an andere 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soweit die Erteilung einer Auskunft einen unvertretbaren Aufwand erfordert oder nach Darlegung der Aktenansicht

begehrenden Stellen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 nicht ausreicht. Entsprechendes gilt für die Überlassung von Akten an die von der Vollzugsbehörde mit Gutachten beauftragten Stellen.
(7) Sind mit personenbezogenen Daten, die nach den Absätzen 1, 2 oder 4 übermittelt werden dürfen, weitere personenbezogene Daten des Betroffenen oder eines Dritten in Akten so verbunden, daß eine Trennung nicht oder nur mit unvertretbarem Aufwand möglich ist, so ist die Übermittlung auch dieser Daten zulässig, soweit nicht berechtigte Interessen des Betroffenen oder eines Dritten an deren Geheimhaltung offensichtlich überwieg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dieser Daten durch den Empfänger ist unzulässig.
(8) Bei der Überwachung der Besuche oder des Schriftwechsels sowie bei der Überwachung des Inhaltes von Paketen bekanntgewordene personenbezogene Daten dürfen nur für die in Absatz 2 aufgeführten Zwecke, für das gerichtliche Verfahren nach den §§ 109 bis 121, zur Wahr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oder nach Anhörung des Gefangenen für Zwecke der Behandlung verarbeitet und genutzt werden.
(9) Personenbezogene Daten, die gemäß § 179 Abs. 3 über Personen, die nicht Gefangene sind, erhoben worden sind, dürfen nur zur Erfüllung des Erhebungszweckes, für die in Absatz 2 Nr. 1 bis 3 geregelten Zwecke oder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erheblicher Bedeutung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10) Die Übermittl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unterbleibt, soweit die in § 182 Abs. 2, § 184 Abs. 2 und 4 geregelten Einschränkungen oder besondere 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11)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Vollzugsbehörde. Erfolgt die Übermittlung auf Ersuchen einer öffentlichen Stelle, trägt diese die Verantwortung. In diesem Fall prüft die Vollzugsbehörde nur, ob das Übermittlungsersuchen im Rahmen der Aufgaben des Empfängers liegt und die Absätze 8 bis 10 der Übermittlung nicht entgegenstehen, es sei denn, daß besonderer Anlaß zu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besteht.

### § 181 Zweckbindung

Von der Vollzugsbehörde übermittelte personenbezogene Daten dürfen nur zu dem Zweck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zu dessen Erfüllung sie übermittelt worden sind. Der Empfänger darf die Daten für andere Zwecke nur verarbeiten oder nutzen, soweit sie ihm auch für diese Zwecke hätten übermittelt werden dürfen, und wenn im Falle einer Übermittlung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die übermittelnde Vollzugsbehörde zugestimmt hat. Die Vollzugsbehörde hat den nicht-öffentlichen Empfänger auf die Zweckbindung nach Satz 1 hinzuweisen.

### § 182 Schutz besonderer Daten

(1) Das religiöse oder weltanschauliche Bekenntnis eines Gefangenen und personenbezogene Daten, die anläßlich ärztlicher Untersuchungen erhoben worden sind, dürfen in der Anstalt nicht allgemein kenntlich gemacht werden. Andere personenbezogene Daten über den Gefangenen dürfen innerhalb der Anstalt allgemein kenntlich gemacht werden, soweit dies für ein geordnetes Zusammenleben in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 180 Abs. 8 bis 10 bleibt unberührt.
(2) Personenbezogene Daten, die den in § 203 Abs. 1 Nr. 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n Personen von einem Gefangenen als Geheimnis anvertraut oder über einen Gefangenen sonst bekanntgeworden sind, unterliegen auch gegenüber der Vollzugsbehörde der Schweigepflicht. Die in § 203 Abs. 1 Nr. 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n Personen haben sich gegenüber dem Anstaltsleiter zu offenbaren, soweit dies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Vollzugsbehörde oder zur Abwehr von erheblichen Gefahren für Leib oder Leben des Gefangenen oder Dritter erforderlich ist. Der Arzt ist zur Offenbarung ihm im Rahmen der allgemeinen

Gesundheitsfürsorge bekanntgewordener Geheimnisse befugt, soweit dies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Vollzugsbehörde unerläßlich oder zur Abwehr von erheblichen Gefahren für Leib oder Leben des Gefangenen oder Dritter erforderlich ist. Sonstige Offenbarungsbefugnisse bleiben unberührt. Der Gefangene ist vor der Erhebung über die nach den Sätzen 2 und 3 bestehenden Offenbarungsbefugnisse zu unterrichten.

(3) Die nach Absatz 2 offenbarten Daten dürfen nur für den Zweck, für den sie offenbart wurden oder für den eine Offenbarung zulässig gewesen wäre, und nur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unter denen eine in § 203 Abs. 1 Nr. 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 Person selbst hierzu befugt wäre. Der Anstaltsleiter kann unter diesen Voraussetzungen die unmittelbare Offenbarung gegenüber bestimmten Anstaltsbediensteten allgemein zulassen.

(4) Sofern Ärzte oder Psychologen außerhalb des Vollzuges mit der Untersuchung oder Behandlung eines Gefangenen beauftragt werden, gilt Absatz 2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daß der beauftragte Arzt oder Psychologe auch zur Unterrichtung des Anstaltsarztes oder des in der Anstalt mit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betrauten Psychologen befugt sind.

### § 183 Schutz der Daten in Akten und Dateien

(1) Der einzelne Vollzugsbedienstete darf sich von personenbezogenen Daten nur Kenntnis verschaff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Aufgabe oder für die Zusammenarbeit nach § 154 Abs. 1 erforderlich ist.

(2) Akten und Dateien mit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durch die erforderlichen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Maßnahmen gegen unbefugten Zugang und unbefugten Gebrauch zu schützen. Gesundheitsakten und Krankenblätter sind getrennt von anderen Unterlagen zu führen und besonders zu sichern. Im übrigen gilt für die Art und den Umfang der Schutzvorkehrungen § 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 184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1) Die in Dateien gespeicherten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spätestens zwei Jahre nach der Entlassung des Gefangenen oder der Verlegung des Gefangenen in eine andere Anstalt zu löschen. Hiervon können bis zum Ablauf der Aufbewahrungsfrist für die Gefangenenpersonalakte die Angaben über Familienname, Vorname, Geburtsname, Geburtstag, Geburtsort, Eintritts- und Austrittsdatum des Gefangenen ausgenommen werden, soweit dies für das Auffinden der Gefangenenpersonalakte erforderlich ist.

(2) Personenbezogene Daten in Akten dürfen nach Ablauf von zwei Jahren seit der Entlassung des Gefangenen nur übermittelt oder genutzt werden, soweit dies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2. für die Durchführung wissenschaftlicher Forschungsvorhaben gemäß § 186,
3. zur Behebung einer bestehenden Beweisnot,
4. zur Feststellung, Durchsetzung oder Abwehr von Rechtsansprüchen im Zusammenhang mit dem Vollzug einer Freiheitsstrafe

unerläßlich ist. Diese Verwendungsbeschränkungen enden, wenn der Gefangene erneut zum Vollzug einer Freiheitsstrafe aufgenommen wird oder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3) Bei der Aufbewahrung von Akten mit nach Absatz 2 gesperrten Daten dürfen folgende Fristen nicht überschritten werden:

| | |
|---|---|
| Gefangenenpersonalakten, Gesundheitsakten und Krankenblätter | 20 Jahre, |
| Gefangenenbücher | 30 Jahre. |

es gilt nicht, wenn auf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die Aufbewahrung für die in Absatz 2 Satz 1 genannten Zwecke weiterhin erforderlich ist. Die Aufbewahrungsfrist beginnt mit dem auf das Jahr der aktenmäßigen Weglegung folgenden Kalenderjahr. Die archivrechtlichen Vorschrif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bleiben unberührt.
(4) Wird festgestellt, daß unrichtige Daten übermittelt worden sind, ist dies dem Empfänger mitzuteilen, wenn dies zur Wahrung schutzwürdiger Interessen des Betroffenen erforderlich ist.
(5) Im übrigen gilt für die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personenbezogener Daten § 20 Abs. 1 bis 4 und 6 bis 8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 185 Auskunft an den Betroffenen, Akteneinsicht

Der Betroffene erhält nach Maßgabe des § 1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skunft und, soweit eine Auskunft für die Wahrnehmung seiner rechtlichen Interessen nicht ausreicht und er hierfür auf die Einsichtnahme angewiesen ist, Akteneinsicht. An die Stelle des Bu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in § 19 Abs. 5 und 6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tritt der La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an die Stelle der obersten Bundesbehörde tritt die entsprechende Landesbehörde.

### § 186 Auskunft und Akteneinsicht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Für die Auskunft und Akteneinsicht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gilt § 476 der Strafprozessordnung entsprechend.

### § 187 Anwend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Die Regelung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über öffentliche und nicht-öffentliche Stellen (§ 2), weitere Begriffsbestimmungen (§ 3), Einholung und Form der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 4a Abs. 1 und 2), das Datengeheimnis (§ 5), unabdingbare Rechte des Betroffenen (§ 6 Abs. 1) und die Durchführung des Datenschutzes (§ 18 Abs. 2) gelten entsprechend Die Landesdatenschutzgesetze bleiben im Hinblick auf die Schadensersatz-,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sowie die Bestimmungen über die Kontrolle durch die La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unberührt.

## Sechster Titel Anpassung des Bundesrechts

### § 188

(weggefallen)

### § 189 Verordnung über Kosten im Bereich der Justizverwaltung

## Siebter Titel Sozia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 § 190 Reichsversicherungsordnung

### § 191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

### § 192 Reichsknappschaftsgesetz

-

### § 193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der Landwirte

-

### § 194

(weggefallen)

### § 195 Einbehaltung von Beitragsteilen

Soweit die Vollzugsbehörde Beiträge zur Kranken- und Rentenversicherung sowie zur Bundesagentur für Arbeit zu entrichten hat, kann sie von dem Arbeitsentgelt, der Ausbildungsbeihilfe oder der Ausfallentschädigung einen Betrag einbehalten, der dem Anteil des Gefangenen am Beitrag entsprechen würde, wenn er diese Bezüge als Arbeitnehmer erhielte.

## Achter Titel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Inkrafttreten

### § 196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urch dieses Gesetz werden die Grundrechte aus Artikel 2 Abs. 2 Satz 1 und 2 (körperliche Unversehrtheit und Freiheit der Person) und Artikel 10 Abs. 1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des Grundgesetzes eingeschränkt.

### § 197

(weggefallen)

### § 198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tritt unbeschadet der §§ 199 und 201 am 1. Januar 1977 in Kraft, soweit die Absätze 2 und 3 nichts anderes bestimmen

(2) 1. Am 1. Januar 1980 treten folgende Vorschriften in Kraft:

| | |
|---|---|
| § 37 | - Arbeitszuweisung - |
| § 39 Abs. 1 | -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
| § 41 Abs. 2 -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weiterbildenden Maßnahmen - |
| § 42 | -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 |
| § 149 Abs. 1 | - Arbeitsbetrieb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 |
| § 162 Abs. 1 | - Beirate -. |

2.

3.

(3) Durch besonderes Bundesgesetz werden die folgenden Vorschriften an inzwischen vorgenommene Gesetzesänderungen angepaßt und in Kraft gesetzt:

| | |
|---|---|
| § 41 Abs. 3 |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
| § 45 | - Ausfallentschädigung - |

| | |
|---|---|
| § 46 | - Taschengeld - |
| § 47 | - Hausgeld - |
| § 49 | - Unterhaltsbeitrag - |
| § 50 | - Haftkostenbeitrag - |
| § 65 Abs. 2 Satz 2 | - Krankenversicherungsleistungen bei Krankenhausaufenthalt - |
| § 93 Abs. 2 | - Inanspruchnahme des Hausgeldes - |
| § 176 Abs. 2 und 3 | - Ausfallentschädigung und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
| § 189 | - Verordnung über Kosten - |
| § 190 Nr 1 bis 10 und 13 bis 18, §§ 191 bis 193 | - Sozialversicherung -. |

(4) Über das Inkrafttreten des § 41 Abs 3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wird zum 31. Dezember 1983 und über die Fortgeltung des § 201 Nr. 1 -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 wird zum 31. Dezember 1985 befunden.

## § 199 Übergangsfassungen

(1) Bis zum Inkrafttreten des besonderen Bundesgesetzes nach § 198 Abs. 3 gilt folgendes:

1. § 46 - Taschen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2. § 47 - Haus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drei Siebtel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 1) oder anderweitig verwenden.
   (2)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a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 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 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3. (weggefallen)
4. § 93 Abs 2 - Inanspruchnahme des Hausgeldes - erhält folgende Fassung: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ein den drei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 2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5. § 176 Abs. 3 -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erhält folgende Fassung:
   "(3)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6. (weggefallen)

(2) Bis zum 31. Dezember 2002 gilt § 9 Abs. 1 Satz 1 in der folgenden Fassung:
"Ein Gefangener soll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verlegt werden, wenn e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zeitiger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Behandl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nach § 6 Abs. 2 Satz 2 oder § 7 Abs. 4 angezeigt ist."

## § 200 Höhe des Arbeitsentgelts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nach § 43 sind 9 vom Hundert der Bezugsgröße nach §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zu Grunde zu legen.

## § 201 Übergangsbestimmungen für bestehende Anstalten

Für Anstalten, mit deren Errichtung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gonnen wurde, gilt folgendes:

1. Abweichend von § 10 dürfen Gefangene ausschließlich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Anstaltsverhältnisse dies erfordern.
2. Abweichend von § 17 kan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auch eingeschränkt werden, wenn und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jedoch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8.
3. Abweichend von § 18 dürfen Gefangene während der Ruhezeit auch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Ein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von mehr als acht Personen ist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5 zulässig.
4. Abweichend von § 143 Abs. 1 und 2 sollen Justizvollzugsanstalten so gestaltet und gegliedert werd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und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5. Abweichend von § 145 kann die Belegungsfähigkeit einer Anstalt nach Maßgabe der Nummern 2 und 3 festgesetzt werden.

## § 202 Freiheitsstrafe und Jugend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Für den Vollzug der nach dem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 Jugendliche und Heranwachsende erkannten Freiheitsstrafe gelten die Vorschriften für den Vollzug der Jugendstrafe, für den Vollzug der Jugendhaft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s Jugendarrestes.

(2) Im übrigen gelten für den Vollzug der nach dem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tskräftig erkannten Freiheitsstrafe und der Haftstrafe die Vorschriften des Strafvollzugsgesetzes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1]

1991년 3월 1일 법무부장관

2004년 11월 20일 최근개정까지

I

형벌집행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과 형벌집행을 위한 근무 및 안전규정은 부란덴부르크주에 있어서는 1991년 3월 1일 시행된다. 다만, 이는 공무원의 형벌집행업무에 대한 숙지가 예견되는 행정규칙이 먼저 주공무원법의 시행과 존재에 근거하여 적합한 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다.

II

형집행법을 위한 연방통일행정규칙과 형벌집행을 위한 근무 및 안전규정은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과 함께 1976년 3월 16일 별쇄로 발간되고, JVA rheinbach(Nordhein Westfalen)로 1991년 3월 1일에 옮겨질 수 있다.

Potsdam, den 1 Marz 1991

법무부장관 Dr. Brautigam

2004년 10월 1일 현재

### 제5조 관계 행정규칙

의사의 진찰에 의해 신장, 체중 및 치아의 상태를 포함한 수형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상태가 집행에 적합한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지, 작업이 가능한지, 운동에의 참가에 적합한지, 또한 어떠한 범위에서 그러한지 여부 및 독거수용에 대한 건강상의 의심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진찰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 관계 행정규칙

수용기간이 1년 이내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처우조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8조 관계 행정규칙

1) (1) 일시이송을 위한 중대한 사유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a. 현재 시설에서는 접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할 때 접견실시

b. 다른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근처지에의 동행외출 및 외출

c. 다른 시설 소재지 또는 근처지에의 구인(Vorführung) 및 신병인도(Ausantwortung)

1) 참고자료 日本法務省矯正局, 「ドイツ行刑法及び關係行政規則」 2003년

d. 감정 또는 의사의 진료

(2) 일시이송은 받는 시설의 동의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구인 및 신병인수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유가 있는 신청에 의거하여 경찰관서에 기한을 정하여 수형자를 인도할 수 있다.

### 제10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다음의 수형자는 개방시설수용에서 제외된다.

a.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 법원구성법(GVG) 제74조a에 따른 합의제 형사부에서 또는 동법 제102조에 따른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형벌이 집행되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자

b 미결구금, 인도구금(Auslieferungshaft) 또는 강제퇴거구금(Abschiebungshaft)을 명받은 자

c. 행형법의 적용영역에서 집행가능한 국외퇴거결정(Ausweisungsverfügung)이 존재하여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 자

d. 자유박탈이 따르는 교정 및 보안처분 또는 그 밖의 수용이 재판상 명해지고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자

(2) (1)의 a, c 및 d의 경우에는 감독관청(Aufsichtsbehörde)의 동의 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a의 경우에는 형집행관청(Vollstreckungsbehörde)의, d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c의 경우의 예외는 관할 외국인출입국관리관청(Ausländerbehorde)의 양해를 필요로 한다.

② (1) 다음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시설에서의 수용은 부적합하다.

a. 현저한 약물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

b.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에 도주한 자, 단순도주(Flucht)를 시도한 자, 폭력도주(Ausbruch)를 기도한 자 또는 수형자폭동(Gefangenenmeuterei)에 참가한 자

c. 최근의 휴가 내지 외출로부터 자발적으로 귀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최근의 휴가 내지 외출 동안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충분한 사실근거가 인정되는 자

d. 퇴거절차, 강제절차, 수사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계속중인 자

e.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특히 다른 수형자의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이것에 관한 이유는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d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동안 사람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에 의한 형벌,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범죄로 인한 형벌 또는 마약물질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미의 물건의 거래에 의한 형벌이 집행되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수형자 또는 행형 중에 이러한 물건의 거래 또는 반입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에서의 수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특히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조직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1) 개방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다음의 경우 폐쇄시설로 보내져야 한다.

a. 그 자가 개방시설의 수용에의 동의를 철회한 때

b. 그 자가 개방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된 때

c. 1에 의한 개방시설에 수용을 제외할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

(2) 수형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송이유는 서면으로 명백히 하고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폐쇄시설에의 이송은 개방시설의 새로운 수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 (1) 개방시설에의 이송 및 폐쇄시설에의 이송(환송)에 대해서는 주법무부(Landesjustizverwaltun)가 지정한 관서가 결정한다.

(2)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수용에 관한 결정은 제159조에 따른 회의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회의내용은 기록하고, 감정의견은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용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관계 행정규칙**

① 행형의 완화는 행형법 적용구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구외작업 중 수형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교정직원이 감시한다.

③ (1) 외부통근 수형자가 취업장소에 정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허가없이 취업장소를 이탈하거나 또는 그밖의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발병 또는 음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지체없이 통보할 것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무지우는 방법에 의해서도 명할 수 있다.

(2) 시설은 외부통근 동안 수형자의 행동을 수시로 점검한다.

④ (1) 시설의 장은 특히 적정한 직원에게 수형자의 동행외출을 맡긴다.

(2) 구외작업 및 동행외출에 앞서 시설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한다.

⑤ (1) 종신자유형의 집행의 완화결정은 제159조에 의한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회의내용은 기록되고, 감정의견은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완화는 원칙적으로 제13조 제3항의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완화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1)은 상시 · 직접적인 감시하의 동행외출 및 구외작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1) 구외작업, 외부통근 및 외출은 다음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a.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에 법원구성법 제74조a에 따른 합의제 형사부에서 또는 동법 제120조에 따른 고등법원의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형벌이 집행되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자

b. 미결구금, 구인구금 또는 강제퇴거구금을 명받은 자

c. 행형법의 적용구역에서 실행가능한 국외퇴거결정이 존재하고,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 자

d.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 또는 그 밖의 수용이 재판상 명하여지고,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자

(2) (1)의 a, c 및 d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동의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a의 경우에는 형집행관청의, d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c의 경우의 예외에는 관할 외국인출입국관리청의 양해를 필요로 한다.

⑦ (1) 구외작업, 외부통근작업 및 외출은 수형자가 이러한 처우에 적합하고, 특히 악용의 우려가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결정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행형중의 행동을 통하여 행형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 ·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1)에 의한 완화에는 부적당하다.

a. 현저한 약물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

b.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에 도주한 자, 단순도주를 시도한 자, 폭력도주를 기도한 자 또는 수형자 폭동

에 참가한 자

c. 최근의 휴가 또는 외출로부터 자발적으로 귀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최근의 휴가 또는 외출 동안에 처벌되어야 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근거가 인정된 자

d. 퇴거절차, 인도절차, 수사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계속 중인 자

e.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특히 다른 수형자의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이유는 서면에 의해 명백히 하여야 한다. d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 사람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에 의한 형벌,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범죄로 인한 형벌 또는 마약물질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의미의 물건의 거래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수형자, 또는 행형중의 이러한 물건의 거래 또는 그 소지로 인하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행형의 완화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조직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

⑧ 수형자가 이러한 처우에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완화의 지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계 행정규칙

제11조 관계 행정규칙 4 및 제35조 관계 행정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 제13조 관계 행정규칙

① 휴가는 행형법의 적용지역 내에서만 주어진다.

② (1) 휴가는 분할될 수 있다. 휴가일수는 휴가기간 중 모든 역일로 한다. 수형자가 휴가에 들어간 날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휴가단위년(Urlaubsjahr)은 형의 집행 단위년(Vollstreckungsjahr)으로 한다. 휴가는 다음 해에 이월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행형관청의 책임에 귀속하는 이유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 휴가를 줄 수 없었던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속이 예상되는 수용기간의 각각의 월초에는 최고기간(제13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2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휴가가 할당된다.

(4) 수형자가 휴가부여를 위한 요건(제13조 제2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휴가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휴가부여가 수형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휴가가 주어져서는 아니된다.

③ (1) 다음 수형자는 휴가로부터 제외된다.

a.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에 법원구성법 제74조a에 의거하여 합의제 형사부에서 또는 동 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의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형벌이 집행되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자

b. 미결구금, 인도구금 또는 강제퇴거구금을 명받은 자

c. 행형법의 적용지역에서 실행가능한 국외퇴거결정이 존재하고,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 자

d.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 또는 그 밖의 수용이 재판상 확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는 자

(2) (1)의 a, c 및 d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동의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a의 경우에는 형집행관청이, d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의견을 요구해야 하고, d의 경우의 예외에는 관할 외국인출입국관리관청의 양해를 필요

로 한다.

④ (1) 휴가는 수형자가 이 처우에 적당하고, 특히 악용의 우려가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결정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행형중의 행동을 통하여 행형목적달성을 위하여 참여 ·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부적당하다.

a. 폐쇄시설에 처해지고, 예상되는 석방시기까지 아직 18개월을 초과하는 자유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자

b. 현저한 약물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

c.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에 도주한 자, 단순도주를 시도한 자, 폭력도주를 기도한 자 또는 수형자 폭동에 참가한 자

d. 최근의 휴가 또는 외출로부터 자발적으로 귀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최근의 휴가 또는 외출 중에 처벌되어야 하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근거가 인정되는 자

e. 퇴거절차, 인도절차, 수사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계속 중인 자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의 예외가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e의 경우에는 관한 관청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4) 자유박탈의 계속기간 중, 사람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로 인한 형벌,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범죄로 인한 형벌 또는 마약물질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의미의 물건의 거래로 형벌을 집행받거나 또는 집행되어야 하는 수형자, 또는 행형중 이러한 물건의 거래 또는 그 소지에 대하여 이유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휴가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조직적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⑤ (1)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것이 우려되는 사회환경 또는 사람에게로의 휴가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수형자는 그 휴가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 (1) 수형자는 사복으로 휴가를 간다.

(2) 휴가기간 동안의 여비, 생활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수형자 자신의 자용금 또는 영치금 중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1조 관계 행정규칙 2 (1)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수형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부족한 경우 국고에서 휴가기간 중의 원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휴가기간 중 원조금의 지출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제75조를 준용한다.

⑦ (1) 휴가는 신청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신청은 휴가개시 1월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명백히 하고 또한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한 휴가부여에 관한 결정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휴가허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59조에 의한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회의내용은 기록되고, 감정의견은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휴가부여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⑧ (1) 휴가를 부여받은 수형자는 휴가증명서를 받는다. 휴가증명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사항을 기재되어야 한다.

(2) 휴가개시 전에 수형자에게는 휴가의 철회 및 취소의 요건, 주어진 지시의 의미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행형의 완화 및 휴가를 위하여 개별사정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한다.

(2) 수형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시설 밖에서의 체재 또는 지정된 활동에 관한 명령에 따를 것

b. 정해진 시각에 지정된 장소 또는 사람에 신고할 것

c. 수형자에게 그 후의 새로운 범죄행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d. 수형자에게 그 후의 새로운 범죄행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것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물품을 소유 및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할 것

e. 알콜성 또는 그 밖의 취하게 하는 음료 그리고 물품 및 특정음식점 또는 특정지역을 피할 것

② (1) 제14조 제1항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사실근거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철회 및 취소는 그 결정이 수형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휴가지에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형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철회 또는 취소의 결정에 앞서 그렇게 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때에는 장애가 없게 된 후 지체없이 의견청취가 뒤따라야 한다.

(3) 철회 및 취소의 이유는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하고, 요구가 있으면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수색조치는 철회 또는 취소의 발효 전에 개시하고 집행할 수 있다.

### 제15조 관계 행정규칙

(1) 석방준비는 자유사회로의 석방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2) 제15조 제3항의 의미의 특별휴가는 반복되는 경우에 합하여 1주에 달하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휴가를 승인할 때에 예상되는 석방시기와는 다른 시기에 석방이 된 때에도 적용된다.

(3) 제15조 제4항에 따른 특별휴가는 외부통근이 허용되어 이것이 실행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허가될 수 있다.

### 제16조 관계 행정규칙

(1) 제1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수형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또는 사면조치에 의거하여 예정보다 빨리 석방되어야 하는 때

b. 석방시기의 단축에 의해 형벌 또는 대체자유형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때

c. 작업면제(제43조 제6항 제1문)가 제43조 제9항에 따라 석방시기에 우선적으로 산입될 때

(2) 형기가 문제되는 경우 수형자가 예정된 석방시점까지 적어도 1월 중단되지 아니하고 행형에 처해진 때에는 석방의 단축이 용인된다.

### 제21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수형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의 급식을 지급받는다. 음식물의 지급은 시설의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에서 다른 지시를 한 때 또는 종교상의 식사계율을 고려하여 다른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같이 한다.

(2) 시설의 급식은 현대적 영양학의 지식에 따라 수형자의 충분한 영양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수형자가 종교상의 식사계율에 따르는 때에는 그의 신청으로 먹어서는 아니되는 시설의 급식부분은 다른

식품과 교환되어야 한다.

② 크리스트교 종교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식사계율이 준수되어야 하는 종교단체의 신앙상의 중요한 축제일(hoben Glaubensfeste) 동안에는 해당 수형자는 행형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비로 같은 신자로부터도 급식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구입금액은 개별사정에 따라 산정된다. 그 때에는 특히 수형자가 그 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용금의 액수, 앞으로 적립해야 할 갱생자금의 액수, 특별한 개인적 필요성(예를 들면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의 의한) 및 구입 또는 제3자로부터 송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식품 및 기호품 가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2) (1)에 따라 충분한 확인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1월에 기준보수(Eckvergütung)(제43조 제2항) 일액의 4배까지의 금액, 6월 후에는 6배까지의 금액을 그의 영치금으로부터 사용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허용된다.

(3) 알콜성 음료의 구입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예외로 개개 시설 및 시설구역 및 수형자의 특정집단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허가할 수 있다.

② (1) 시설 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그 밖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형자는 자신의 자용금, 용돈 및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영치금에서의 구입은 그 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83조 제2항 제3문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24조 관계 행정규칙

① 접견은 수형자가 거부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1) 모든 접견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견자의 신분이 이미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견은 접견자가 접견시 신분증명서를 시설에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접견자에게는 접견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④ 환자구역 또는 시설병사(Anstaltskrankenhaus)에 수용되어 있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의 접견에 앞서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접견에 반대하는 의사의 염려는 접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병실에서의 접견은 의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⑤ 외국 국적을 가지는 수형자와 그 모국의 외교상 또는 영사관과의 접견교통에 대해서는 형법상 안건의 외국과의 교통을 위한 지침이 적용된다(Nr. 136 RiVASt).

### 제26조 관계 행정규칙

(1) 변호인은 시설에 대하여 변호인이라는 것을 수형자의 위임장 또는 법원의 선임명령서(Bestellungsanordnung)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및 공증인은 수형자의 법률문제로 접견하는 것을 희망하는 취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2) 변호사, 공증인, 소송대리인 및 사법연수생은 요구가 있으면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28조 관계 행정규칙

① 외국 국적을 가지는 수형자가 그 모국의 외교상 또는 영사관의 대표자와 연락하는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 외국과의 교통을 위한 지침이 적용된다(Nr. 135 RiVASt).

② 연락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수형자가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은 적당한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변호인은 시설에 대하여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수형자의 위임장 또는 법원의 선임명령서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우편물에는 명백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2) 변호인의 우편물이라고 표시되어 온 개인 이름의 서신으로, 그 자에 대하여 변호인자격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자격 증명이 없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미개봉의 상태로 발신자에게 반송한다. 수형자의 동의하에 그 서신을 개봉하여 검사한 후 수형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1) 서신수수의 검열이 허용되는 한, 시설의 장은 검열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시설의 장은 그 검열을 몇몇의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신은 필요한 때에 번역된다.

(2) 서신수수의 검열이 허용되는 때 수형자는 서신을 개봉한 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열에 임하는 직원은 서신에 주를 달거나, 선을 그어 말소하거나 또는 판독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검사필의 표시는 허용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서신번역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제31조 관계 행정규칙**

① 수형자에게는 금지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금지된 서신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은 수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첨부서신에는 정정에 도움이 되는 기재만을 포함할 수 있다. 수형자에게는 첨부서신을 붙이는 목적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금지된 서신으로 시설의 보안상의 예방수단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제83조 제4항 참조).

**제32조 관계 행정규칙**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그 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은 적당한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소포의 수령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수형자가 선택하는 그 밖의 시기에(예를 들면 생일) 각 1회 허용된다.

(2) 크리스트교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게는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의 소포에 대신하여 그 자가 신봉하는 종교의 중요한 축제일에 각각 1개의 소포수령을 허가할 수 있다.

② (1) 포장을 함하여 크리스마스 소포의 중량은 5킬로그램을, 그 밖의 2회의 소포는 각각 3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소포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알콜 및 그 밖의 주류물질 및 의약품과 알약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사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소포의 내용물은 의사의 의견을 구한 후 비로소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포의 수령은 특히 수업 및 보수교육 용구, 석방시 의류 및 자유시간 노작용 물품의 송부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각 소포에는 내용목록이 동봉되고 발송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시설로부터 발행된 소포표지의 사용을 지

시할 수 있다.

⑤ (1) 소포는 1에 열거된 시기의 2주 전 또는 2주 후의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시설은 (1)의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중량을 초과하여 도착한 소포 또는 그 수령이 허가되지 아니한 –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국에서 접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 소포의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시설은 수형자에게 수취를 거절한 사실 및 그 이유를 고지한다.

(3) (2)는 외국인 수형자에 대하여 행형법의 적용지역 외로부터 송부된 소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량제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소포가 허가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자가 그 가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자용금에서 갱생자금 또는 영치금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중량초과소포의 내용물 및 불허가 소포의 내용물을 수형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83조 제3항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 중량초과 소포의 내용물 및 불허가 소포의 내용물은 수형자의 영치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⑥ (1) 소포를 받지 아니하는 수형자는 그 대신 식품 및 기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체구입을 위하여 기준보수(제43조 제2항) 일액의 7배까지의 금액, 크리스마스 소포의 경우에는 9배까지의 금액을 영치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3조 제2항 제3문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대체품 구입 후 수형자에 대하여 5(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소포가 도착한 때에 대체품 구입에 사용한 것과 같은 금액을 자용금에서 갱생자금 또는 영치금에 편입시키는 것에 수용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 소포를 그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포는 반송되어야 한다. ⑤ (3)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1) 소포의 내용물은 금지물품인지에 대하여 검사한다. 내용목록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품목을 검사하여야 하고, 그 차이는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형자는 소포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소포의 송부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설은 적당한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⑨ 수형자에게는 수용 후 즉시 설명서의 교부에 의해 소포를 수령하고 발송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제35조 관계 행정규칙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관계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② (1) 동행외출에 있어서 시설의 장은 사안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적당한 특별 보안상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동행외출을 범죄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행외출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동행외출이 수형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직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6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수형자가 소환장을 제시하고 재판기일에 출두를 신청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이를 위한 외출 내지 휴가를 줄지 또는 동행외출시킬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시설의 장이 그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

② (1) 법원이 시설에 대하여 수형자를 재판기일에 출석시키도록 요청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소환에 응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환에 동의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그 수형자에게 외출 내지 휴가를 줄지 또는 동행외출시킬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시설의 장은 법원에 사정을 통보하고 수형자가 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수형자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행외출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1)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시설에 구인을 요청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재판기일에 수형자를 구인하여 출석시킨다.

(2) 구인에 앞서 시설의 장은 사안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하고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5) 시설의 장은 시설의 소재지에 있는 시·군법원의 직무감독을 담당하는 판사와 협의하여, 시설에서 법원 서기과 공무원과 동행외출할 기회가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때를 정한다.

### 제37조 관계 행정규칙

(1) (삭제)

(2) 노작은 그 성과가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비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때 제37조 제4항의 의미에서 적합하다.

(3) (1) 작업 또는 적당한 노작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 각각의 활동을 위하여 수형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준량(Anforderung)을 조사하여 정한다. 이 때 충분한 실습 및 훈련을 받은 자유로운 피고용자(Arbeitnehmer)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고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달성이 예상되는 일의 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형의 특별한 사정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할당된 작업량(Soll-Leistung)은 점검한다. 그리고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다수의 수형자들이 그 할당량을 초과달성하거나 또는 그 설정이 너무 높은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각 경우에 따라 새로이 정한다. 그것은 작업방법의 변경, 기술적 개선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작업량은 점검되고 각 경우에 따라 새롭게 정하여야 한다

(4) (1)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공무상 규칙적인 1주의 근무시간에 따라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수형자의 규칙적인 작업시간은 자유로운 피고용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최고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미룰수 없는 작업이 아닌 한 면업한다. 원칙적으로 토요일에도 그러하다

(3) 잔업 및 (2)에 의한 작업은 가능한 한 다른 취업일에 취업을 면제하여 조정해야 한다.

(4) 자신의 신조(Glaubensbekenntnisses)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일에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형자는 희망하는 날의 작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를 일반 면업일에 미룰 수 없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5) 수형자는 그것에 적당하고, 다른 해를 미치는 것(Unzurtraglichkeiten)[2]이 예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형시설을 위한 일(Tatigkeit)에 취업할 수 있다. 직원, 수형자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인사기록, 재판기록 또는 행정기록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수형자에게 맡겨져서는 아니된다.

2) 부차문화의 유해성

### 제39조 관계 행정규칙

① (삭제)

② (1) 시설 외부에서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취업하는 것이 허가된 수형자는 폐쇄시설의 수형자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2) 수형자와 그 고용자 또는 직업훈련의 실시자와의 사이에는 서면에 의한 계약(노동계약, 직업훈련계약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이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특히 그 노동관계는 수형자에게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어진 허가가 실효하는 경우, 통지 없이 종료한 때 및 노동관계로부터의 수입은 자유박탈 기간 중에는 면제적 효력(befreiende Wirkung)를 가지고 시설이 동의한 계좌에만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해야 한다. 시설은 그것이 공법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는 출연(Zuwendung)[3]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을 보장한다.

(3) 수형자의 수입은 아래에 적시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a. 교통비, 작업용 의류, 시설 밖에서의 식사 및 그 밖의 작업상 필요한 지출을 위한 수형자의 경비

b. 자용금 및 갱생자금

c. 신청에 따른 수형자의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

d. 구금비용분담금

e. 신청에 따른 수형자의 그 밖에 의무의 이행

f. 수형자의 영치금

(4) 수형자는 그 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밖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되어져야 한다. 수형자가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또는 그 밖의 자가 사회부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설이 알고 있을 때 그 노동관계 및 수입액을 사회부조의 담당기관에 통지한다. 또한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의 추가납부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수형자에게는 알려야 한다.

③ (1) 자영직업활동은 그것이 중요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행형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정기적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2) 자영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필요한 용품을 조달할 수 있을 때에만 허가되고, 시설 내에서의 자영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설이 용품의 조달을 중개한다.

(3) 수형자와 제3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자영직업활동에 의한 수입에 대해서는 2의 (2)에서 (4)까지를 준용한다. 행형법 제199조 제2항 제3호 본문 하의 제50조 제3항은 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아니한다.

(4) 수형자는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되어야 한다. 수형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영직업활동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 제42조 관계 행정규칙

① 제42조 제1항은 수형자가 임의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1년의 기간 내에 그 작업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작업의무 면제의 청구를 인정한다.

② 당해 년(제42조 제1항)에는 나아가 다음 기간이 산입된다.

a. 수형자가 사회복지법 제7편 제47조 제6항에 의한 상해수당금을 받고 있었던 기간

3) 보조금, 원조금 등

b. 수형자가 질병 이외의 이유로 제42조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그러한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 3주까지

c. 작업의무의 면제기간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산입되어야 하는 구금으로부터의 휴가기간

d. 제43조 제6항에 따라 작업을 면제받은 기간 및 제43조 제7항에 따른 작업휴가의 기간

(3) (1)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이 아닌 모든 월일은 취업일(제42조 제1항 제1절)로 간주된다.

(2) 수형자가 작업의무의 면제기간 중에 질병에 걸린 때에는 작업불능일수는 면제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4) (1) 면제는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새로운 면제는 선행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한 후 빨라도 3월이 지나야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근 면제로부터 빨라도 3년 후에 청구할 수 있다.

(5) 작업의무의 면제는 수형자가 적어도 1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6) 면제시기의 설정에 있어서는 면제기간 중 작업경영상의 이익, 교육적 또는 보수교육적 조치의 상황 및 행형형성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제42조 제3항에 의한 수입액의 산정은 면제전의 자유형을 집행하고 있는 수형자가 취업한 최근 3월 동안의 매월 청구액(drei abgerechneten Monate)의 평균액에 의거를 두어야 한다.

(8) 제41조 제1항 제3절 또는 제175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1에서 7까지를 준용한다.

### 제43조 관계 행정규칙

(1) (1) 수형자가 청산기간(Abrechnungszeitraum) 동안 상이한 보수등급에 속하는 작업을 한 때에는 주요한 작업부분에 상당하는 보수등급에 의해 작업보수가 산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형자가 다른 공장에서 작업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형자가 단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다른 평가를 받는 작업을 한 때에는 다음 청산기간의 개시 시 상당한 보수등급에 편입되어야 한다.

(2) (1) 작업보수는 시간급 또는 능률급의 형식으로 산출된다.

(2) 작업에 숙련되기까지의 기간은 시간급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3) 시간급에서 수형자가 그때그때마다의 보수등급의 요구내용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는 각각의 보수등급의 기준액을 하회할 수 있다. 제43조 제3항 제2절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작업보수 외에 작업운영상의 개선제안에 대한 급여금을 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작업운영상의 개선제안에 대한 급부금을 자용금, 갱생자금 또는 영치금의 각각에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4) (1) 수형자가 자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때에는 제4조 제3항 제1문의 의미의 취업시간은 종료한다. 새로운 취업과 함께 그 기간은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제43조 제6항 제3문의 의미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따라 2월의 기간이 정지되는 경우, 달성에 필요로 하는 2월의 기간은 취업하지 아니한 취업일의 일수만 연장한다.

(5) (1) 작업면제의 부여에 대해서는 제42조 관계행정규칙 3(2), 4(1), 5 및 6을 준용한다.

(2) 일요일, 법정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취업일(제43조 제6항 제1문)로 간주된다. 6(2)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3) 제43조 제8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42조 관계 행정규칙 7을 준용한다. 3월 미만으로 청산하는 때에는 그것에 의거를 두어야 한다.

⑥ (1) 제43조 제7항에 따른 휴가에 대해서는 제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관계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2) 수형자의 동의하에 일요일, 법정 휴일 및 토요일에도 작업휴가를 줄 수 있다.

**제44조 관계 행정규칙**

직업발견을 위한 조치(Berufsfindungsmaßnahme)로서 중앙도입시설(Einweisungseinrichtung)의 도입과정(Einweisungsverfahren)에의 수형자 참가도 고려할 수 있다.

**제46조 관계 행정규칙(제199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의)**

(1) 용돈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된다.

(2) 용돈은 기준보수(제43조 제2항)의 100분의 14의 액수로 한다. 용돈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용금 및 영치금액을 고려한다. 제33조 제1항 제1절의 의미의 소포 대신에 식품 및 기호품의 자변구입용으로서 수형자를 위하여 예치된 금액은 대체품 구입을 위해 정해진 최고액에 달하기까지는 그 달 및 길어도 다음 달 용돈 산정시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3) 수형자는 그 달 중에 자용금 및 영치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용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용돈을 필요로 한다.

**제47조 관계 행정규칙**

수형자는 이 법률에 규정된 출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곳에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금액(예를 들면 증인에 대한 보상(Zeugenentschädigung, 상해금)을 출연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 관계 행정규칙**

(1) 수형자가 휴가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시설에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구금비용분담금의 부분을 또한 징수하여야 한다.

(2) 공공에 관한 법률규정(예를 들면, 작업장려법)에 따라 수입의 허락에서 그 참가가 조건인 경우, 교육이나 보습교육처분에 참가하는 동안은 구금비용분담금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작업보수 및 교육보조금은 그것을 수형자가 자용금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갱생자금이 아직 적당한 금액(제51조 제1항)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 갱생자금에 편입된다.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있거나 또는 자영직업활동이 허가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1문에 따라 갱생자금에 편입되어야 하는 수입부분이 정해져야 하고, 그 부분은 자유노동관계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용금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갱생자금의 적당한 정도는 주법무부에 의해 정해진다. 그 금액은 연방사회부조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지는 매월 최저액의 4배를 하회해서는 아니된다. 시설의 장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 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자유사회에로의 석방 시 적당한 금액의 갱생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될 때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갱생자금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2)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지출은 특히 석방 후 취업장소 및 숙박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제56조 관계 행정규칙

① 시설에는 보건소에 의한 감독을 위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② 시설의 의사는 시설 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및 사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직원은 보건상의 위험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때 이를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시설의 의사는 연방전염병법(Bundesseuchengesetz)의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감염성 질병을 관할 보건소에서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수형자를 격리하여야 한다. 또한 석방 시에 전염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아직 치료를 종료하지 아니한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필요에 따라 그 자를 관할 공립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 제57조 관계 행정규칙

수형자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받을 기회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청에 따라 실시된다.

### 제58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질병을 호소한 수형자, 재해를 만난 수형자, 자살시도를 하거나 또는 자해한 수형자 및 외견 또는 태도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한 직원이 서면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시설의 의사에게 신고한다. 의사의 조치가 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는 질병을 호소한 수형자를 다음 번 진료시간에 진찰한다.

(2) 의사는 수형자가 환자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누워있게 하는 질병인지, 어떠한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특별한 장소에의 수용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수용이 부적격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한다.

② (1) 시설의사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긴급한 때는 다른 의사를 호출한다.

(2) 시설의사는 사안의 성질 및 곤란성에 따라 필요로 한 때는 다른 의사 또는 전문의의 참가를 요구한다.

③ 시설의 장은 시설의사의 의견을 구한 후 수형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의 비용으로 조언을 하는 의사(beratender Arzt)의 초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허가는 수형자가 예정된 의사 및 시설의 의사에 대하여 상호 의사의 비밀준수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만 주어져야 한다. 진료를 실시하는 시기의 선택 및 빈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소, 직원 및 조직상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1) 의사의 처방은 정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의약품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의 복용지시의 준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 인격장애가 있는 수형자의 경우 및 강력한 효력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시키기 위하여 직원의 면전에서 의약품이 복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악용위험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녹인 상태에서 투여함으로써 수형자가 그 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의사는 독물 및 그 밖의 강력한 효력의 의약품을 항상 확실하게 시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의약품은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시설 의사가 예외를 인정한 때를 제외하고 시설에 의해 조달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자유로운 노동관계에 두어져 있는 수형자가 입수한 의사의 처방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0조 관계 행정규칙

관할 시설에의 복귀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행형시설에서 그 수형자에 대하여 외래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5조 관계 행정규칙

(1) 행형시설 밖 병원에서 형집행을 계속함이 있어서는 수형자의 인격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거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교정직원에 의한 감시를 필요로 한다. 오직 그 병상을 고려하여 감시가 중단된 때에는 병원에 대하여 도주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수형자의 용태 개선에 대하여 시설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감시의 계속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행형시설 밖 병원에서만 수형자의 적절한 치료 또는 경과관찰의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 당해 병원에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결정은 입원의 긴급성 및 도주의 위험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호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그 결과 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입원치료는 사정에 따라서는 연기되어야 한다.

### 제66조 관계 행정규칙

(1)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 감독관청에 통지된다.

(2) 사망한 수형자의 시설회계담당부서에 보관된 저축 및 그의 소유물은 권리자에게 교부된다.

### 제67조 관계 행정규칙

제39조 관계행정규칙 ② (4)의 제1문 및 ③ (4)의 제1문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 제68조 관계 행정규칙

① 신문 및 잡지는 시설을 통하여 수형자 또는 제3자가 주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연방신문서비스(Postzeitungsdienst) 또는 예약구입에 의해서만 구독할 수 있다.

② 수형자는 신문지 및 잡지 구독을 위하여 그 자의 자용금, 용돈 및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신문지 및 잡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스크랩을 다른 수형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행형목적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지할 수 있다.

④ 열독을 마친 신문 및 잡지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폐기되지만 이것을 계속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영치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수형자는 신문 및 잡지의 구독취소, 변경 또는 전달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 시설은 전달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석방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에 이송된 수형자에게로 신문지 또는 잡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 수형자가 시설에 의해 이용 또는 폐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전송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설은 그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⑥ 신문 또는 잡지가 구독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형자에게 고지한다.

### 제69조 관계 행정규칙

① 시설관리자는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수상기가 헤드폰으로만 사용된다는 사실 및 휴식시간 동안은 이러한 기기를 거실 밖으로 내놓도록 명할 수 있다.

② (1)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수상기는 그것이 현행 규칙 및 요건에 적합하고, 금지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실한 때에만 교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필요한 개조는 수형자의 비용으로 시설에 의해 행해진다.

(2) 악용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는 기기의 봉인을 명할 수 있다.

(3) 수리는 시설의 중개에 의해서만 허가된다.

③ 수형자는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수상기의 사용에 관련하는 필요한 신청을 스스로 하여야 하고, 요금납부의무가 면해지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요금납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이에 대하여 고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형자는 다른 허가가 없는 한 그의 거실 내에서만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수상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수형자는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수상기의 입수, 검사, 필요한 개조, 수리 및 사용을 위한 비용을 자신의 자용금, 용돈 및 영치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4조 관계 행정규칙**

수형자가 석방 시 보호관찰관의 감독 또는 행상감독(Führungsaufsicht)하에 있는 때에는 시설은 수형자를 위한 원호조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관할 관서와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75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여비란 귀주지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비를 말한다.

(2) 여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기관의 가장 저렴한 차량등급의 운임에 따라 결정된다.

(3) 수형자에게는 가능한 한 승차권의 교환권이 교부되어야 한다.

② 수형자는 귀주지에 도달하기까지 4시간 이상 필요한 때 희망에 따라 여행식비를 받는다.

③ 갱생원조금은 수형자가 자신의 일에 따라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예를 들면 노동촉진법, 연방사회부조법)에 의거한 급부금에 따라 그것을 조달할 수 있기까지 동안 필요한 생활비(숙박비, 식비 등)를 다른 곳으로부터의 자변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연방사회부조법이 정하는 급부금의 금액이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④ (1) 수형자는 사복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의류는 필요한 때 수형자의 비용으로, 비용이 없는 자는 시설의 비용으로 세탁하고 수선한다.

(2) 의류가 계절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한 때에는 수형자는 적당한 시기에 그 자의 친족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의류를 송부받도록 또는 시설의 중개에 의해 자비로 구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의류를 조달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로부터 제공받는다.

⑤ 신체위생용에 필요한 물품 그 밖의 준비에 대해서는 4항을 준용한다.

**제76조 관계 행정규칙**

제65조 관계 행정규칙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83조 관계 행정규칙**

① 영치해야 할 물품은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귀중품 및 중요서류(예를 들면 신분증명서류(Personalpapiere, 보험증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품은 봉인하여 보관되고 봉인이 수형자의 면전 또는 그 밖의 직원의 입회하에서만 개봉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영치된 물품은 혼동, 분실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된다. 귀중품은 그 밖의 물품과는 분리되고 특히 확실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의류 및 내의는 필요로 하는 때 세탁되고 멸균된다.

② 석방 시 교부 또는 수형자에 의해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휴대물(예를 들면, 무기, 절도용구)은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시가 없는 때에는 이러한 물품은 석방 시 수형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발송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83조 제4항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수형자의 특정지출을 위하여 예탁된 영치금은 그 용도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갱생자금으로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관계 행정규칙 (2) 제3문의 의미의 금액은 대체품 구입을 위하여 정해진 최고액에 달하기까지는 마찬가지로 갱생자금으로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84조 관계 행정규칙

1. (1) 폐쇄시설에서는 교정직원은 불시의 검사에 의해 수형자가 사용하는 거실 및 그 비품이 손상되지 아니한지,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특히 공격 또는 도주의 준비가 행해지지 아니하는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실은 자주 짧은 간격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위험한 수형자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를 명할 수 있다. 출입문, 거실문, 철격자 및 시정장치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히 주의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2) 위험한 수형자,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 및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그 소지품과 마찬가지로 보다 빈번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2. 개방시설에서는 시설의 임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5조 관계 행정규칙

수형자를 형집행계획에 따라 지정된 이외의 시설에 이송해야 하는 때에는 그 이송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제87조 관계 행정규칙

(1) 수형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엄중하게 추적하여야 한다. 시설의 조치로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 및 필요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 추적 또는 시설이 실시한 수색에서 즉시 체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기관에 이후의 조치를 맡겨야 한다.

(2) 도주 및 도주자의 체포를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 원칙적으로 미리 전화로 – 보고한다. 시설의 장은 도주한 수형자의 체포 또는 자발적인 환소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3) 도주경위는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는 도주자에게 원조자가 있었는지 여부, 도주가 직원의 직무위반행위 또는 시설설비의 하자에 그 원인을 돌릴수 있는지 여부에까지 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감독관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조사결과 및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한다.

### 제88조 관계 행정규칙

(1) 다른 방법에 의해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때는 복수의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를 병행하여 명할 수 있다.

(2)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떠한 범위에서 계속하여야 하는가를 적당한 간격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특히 견고한 거실에의 수용 및 보호장비의 사용을 3일을 초과하여 계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9조 관계 행정규칙

제89조 제2항의 경우 감독청이 기간 경과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0조 관계 행정규칙

(1)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형자는 실외에 있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수형자로부터 분리된다.

(2) 수갑은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발목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지장이 없도록 완화한다.

### 제92조 관계 행정규칙

(1) 시설의 의사에게는 시설 내의 수형자 보호장비 사용 및 견고한 거실에의 수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의사가 부재인 때에는 간호근무의 경험이 있는 직원이 그 수형자를 방문한다.

(3) 방문 및 얻어진 소견은 문서로 남겨져야 한다.

### 제93조 관계 행정규칙

제199조 제1항 제4호에 기초하여,

(1) 수형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시설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자해를 한 수형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수형자가 그 주의 다른 시설로 이송된 때에는 그 시설에 그 후의 징수를 위한 청구권이 통지된다. 수형자가 다른 주의 시설에 이송된 때에는 이송받은 시설은 청구권에 대한 그 후의 징수를 관청공조의 방법에 따라 요청한다.

### 제94조 관계 행정규칙

(1) 직접강제를 실시할 때에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구호를 실시하고, 의사의 진료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에 우선한다.

(2) 직접강제 또는 그 밖의 실력행사에 의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그 현장에 변경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 직접강제 또는 그밖의 실력행사시의 총기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직접강제를 실시한 모든 사안은 시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melden)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무기사용(제95조 제4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감독관청에 보고(berichten)하여야 한다.

### 제96조 관계 행정규칙

강제적 조치의 목적이 달성된 때 또는 그것이 달성될 수 없을 때는 그 실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97조 관계 행정규칙

(1) (1) 복수의 교정직원이 공동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때는 그 중에서 직원을 지휘하는 자만이 직접강제를 명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다. 직무를 지휘하는 직원이 지정도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여된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최고 계급의, 같은 계급의 경우는 보다 고참의, 근무년수가 같은 경우는 최연장자인 교정직원이 그 지위에 오른다. 긴급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되는 교정직원은 누구라도 우선 그 지휘를 할 수 있다. 지휘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직접강제를 명하거나 또는 이것을 제한하는 보다 상급의 상관의 권한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1) 사건현장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사건현장을 지배하는 사정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요건에

대하여 과오의 우려가 없을 때만 직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명령과 그 실행과의 사이에 사실관계가 변하고 명령이 실행되기 이전에 명령자가 상황을 알 수 없게된 때에는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직원이 직접강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한다. 명령자에게는 지체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2) 무기사용은 사건현장에서만 명할 수 있다.

**제100조 관계 행정규칙**

특정한 종류별 구금에서의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제178조 제3항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제101조 관계 행정규칙**

(1) 의사의 강제적 조치와의 관련에서 중요한 수형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기록되고 수형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서명을 거부한 때는 마찬가지로 그 취지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구두의 의사표시는 증인의 면전에서 청취되고 본인 또는 증인의 서명이 있는 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서면의 의사표시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의 각서는 건강관리 관계서류 및 수형자 신분대장에 편철되어야 한다.

(2) 시설의 의사는 증인의 면전에서 수형자에 대하여 의료조치의 필요성 및 강제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치료의 불실시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명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음식의 섭취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수형자는 의사에 의해 경과관찰된다.

**제104조 관계 행정규칙**

(1) 관찰기간(제104조 제2항)은 그 경과전에 단축하거나 또는 허용된 최고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관찰을 위한 유예는 수형자가 그 의거가 되는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관찰을 위한 유예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은 관찰기간이 경과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5조 관계 행정규칙**

징벌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시점에서 수형자가 속하는 시설의 장이 권한을 가진다. 그 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점의 시설장의 권한에 속한다.

**제106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수형자는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고지받는다.

(2) 불리한 사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경감하는 사정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는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유책성의 문제에까지 미치고 그 한도에서 시설의 의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징벌처분의 결정 전에 수형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② 1인의 수형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단되는 복수의 위반행위는 하나의 결정에 의해 처벌된다.

③ 시설의 장은 조사의 실시 및 수형자의 사정청취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가 그 다른 직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07조 관계 행정규칙**

의사의 판단 결과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108조 관계 행정규칙**

① (1) 수형자는 언제라도 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2) 적당한 양의 면접시간이 적어도 주 1회 마련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소내 규칙으로 정한다.

(3) 감독관청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 시찰(제151조 관계 행정규칙 1 (2) ) 시에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상담을 사전에 신청한 수형자 명부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1) 형식 및 내용이 관청과의 교통시 통상 요구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4], 또는 단순한 반복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불복신청 및 직무감독권자에의 불복신청은 회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수형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의 권한에 따른 심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시설의 장의 명령 및 조치에 대한 직무감독권자에의 불복신청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명백하게 관할 외 또는 관할에 의문이 있는 행형관청에 행해진 불복신청은 시설의 장이 이것을 관할 행형관청에 회부한다.

### 제125조 관계 행정규칙

(1) (1) 수용된 자는 특별거실에 수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하에 그 자가 이전에 소속하고 있었던 집단 속에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기간은 처우의 필요성에 따른다.

(2) 자유의사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사법행정비용규칙(Justizverwaltung-kostenordnung) 제10조를 준용한다.

(3) 자유의지에 따른 피수용자는 사회치료시설에서 가능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 제130조 관계 행정규칙

행형의 완화 및 휴가는 보안구금자에 대하여 제134조에도 불구하고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이 명해진 수형자와 같이 허용된다.

### 제131조 관계 행정규칙

(1) 접견의 총시간은 적어도 월 2시간이 되게 한다.

(2) 휴업일에는 보안피구금자에 대하여 적어도 2시간 실외에서 보내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시정된 거실집단에의 수용이 행해지는 한, 그곳에 수용된 보안피구금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시간 동안 시설의 장이 보안 규율유지의 이유에서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또는 개개 피수용자에 대하여 이것과 다른 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거실의 문을 열어둔다.

(4) 보안구금자에 대해서는 제22조 관계 행정규칙 1 (2) 에서 정해진 금액은 기준보수(제43조 제2항) 일일급여액의 6배로 상향한다.

(5) 보안구금자에게는 수형자에게 허용되는 소포 외에 소포의 수령을 허가할 수 있다. 중량은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3조 관계행정규칙이 적용된다.

### 제133조 관계 행정규칙

보안구금자의 용돈은 기준보수(제43조 제2항)의 100분의 43의 금액으로 한다.

### 제134조 관계 행정규칙

(1) 석방시행 개시의 시기 및 석방준비의 개시 시기는 개별 사정에 따른다.

(2) 석방준비를 위하여 개방시설시설 또는 구획에의 이송도 고려된다.

---

4) 예를 들면 제3자를 위하여 하는 청원

(3) 형집행부는 예정된 조치에 앞서 의견을 요구한다.

**제141조 관계 행정규칙**

① 폐쇄시설에서는 수형자는 실외에 있는 때, 특히 비교적 넓은 혼거실에서의 집회시, 시설구내 및 그 밖의 실외에 있는 때에는 상시 직접적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특별한 지침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시설의 장은 어떠한 범위에서 감독이 완화되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다.

② (1) 개방시설에서는 건축구조적 및 공학적인 보안상의 예방수단, 특히 주벽, 창문철격자 및 특별히 견고한 문은 생략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직접적인 감독이 행해지지 아니한다.

(2) 개방처우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a. 수형자는 시설 내에서는 관계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b. 수용동의 출입문은 일시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휴식시간 동안 수형자의 거실을 열어둘 수 있다.

**제149조 관계 행정규칙**

시설 내에서의 사기업경영공장에 소속하는 사람의 행동범위는 지침서에서 정하고, 그 종업원은 그 지침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51조 관계 행정규칙**

① 감독관청은 모든 시설을 자주 방문하여 행형 전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법무부는 민간인의 시설방문 및 보도기관(신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대표자와 수형자와의 교통을 규제한다.

**제152조 관계 행정규칙**

형집행계획에서는 어떠한 시설 및 시설구획이 개방시설시설인가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한다.

**제156조 관계 행정규칙**

① 감독관청은 시설의 자의 대리인을 정한다.

② (1) 시설의 장은 어떠한 직원이 시설의 장의 위임을 받고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2) 시설의 장은 교회사, 의사, 교육전문가, 심리전문가 및 사회복지전문가의 직무상의 전문적 안건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3) 시설의 장은 제2항에 열거한 전문가에 의한 조치의 실시가 시설의 보안, 관리상의 규율 또는 수형자의 합목적적 처우를 위태롭게 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관계자 간의 협의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관청의 결정이 있기까지 이것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특수한 사건 및 일반적인 규칙의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156조 제1항 제2문의 의미의 특정 직무범위의 위임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59조 관계 행정규칙**

시설의 다른 교정직원과의 그 밖의 직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71조 관계 행정규칙**

① 민사구류의 집행에서는 그것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만 단순

한 자유박탈을 초과하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민사구류가 미결구금, 형벌구금 또는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으로서의 수용을 중단하고 집행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1) 수용 및 석방시에는 피구류자는 시설의 의사에 의해 진찰을 받는다.

(2) 시설의 장은 제1항 제1문의 경우 피구류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내에서 그 자가 선택하는 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1) 그 강요(Erzwingung), 집행(Erwirkung) 또는 달성을 위하여 구금이 명해진 피구류자가 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동행외출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구류자의 출석에는 구금을 명한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동의는 전화로 얻을 수 있다. 출석비용은 피구류자가 부담한다.

④ 1에서 3까지는 관청협조의 방법에 의해 강제퇴거구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76조 관계 행정규칙

제199조 제1항 제5호의 본문에 따라,

① (1) 18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보수는 시간급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2) 그밖의 지정된 노작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경비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작업보수가 주어진다.

(3)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 관계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② 용돈에 대해서는 제46조 관계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③ 자용금에 대해서는 제47조(제199조 제1항 제2호의 본문에 따른다.) 및 동조 관계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④ (1) 자유 노동관계에 있는 것이 수형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때는 제39조 관계 행정규칙 2를 준용한다.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제50조 및 제51조 관계 행정규칙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7조 관계 행정규칙

(1) 지정된 노작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비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작업보수가 주어진다.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 관계 행정규칙 1에서 3까지를 준용한다.

### 제195조 관계 행정규칙

제195조에서 정해진 보험료분담분은 공제된다 부당하게 가혹한 경우에는 보험료분담금의 공제를 보류할 수 있다.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Allgemeine Verfügung des Ministers der Justiz
Vom 1. März 1991
zuletzt geändert durch Allgemeine Verfügung
Vom 20. November 2004
(4400-IV.7)

I.

Die bundeseinheitlichen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VVStVollzG) und die Dienst- und Sicherheitsvorschriften für den Strafvollzug (DSVollz) setze ich zum 1. März 1991 für den Bereich des Landes Brandenburg mit der Maßgabe in Kraft, daß die Verwaltungsvorschriften, die eine Wahrnehmung von Vollzugsaufgaben durch Beamte vorsehen, insoweit erst nach Einführung eines Landesbeamtengesetzes und dem Vorhandensein geeigneter Personen wirksam werden

II.

VVStVollzG und DSVollz erscheinen zusammen mit dem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 vom 16. März 1976 als Sonderdruck und können bei der JVA Rheinbach (Nordrhein-Westfalen) bezogen werden.

Potsdam, den 1. März 1991

Dr. Bräutigam
Minister der Justiz

#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Stand: 1. Oktober 2004

**VV zu § 5**

Durch die ärztliche Untersuchung soll der Gesundheitszustand des Gefangenen einschließlich der Körpergröße, des Körpergewichts und des Zustands des Gebisses festgestellt werden; insbesondere ist zu prüfen, ob der Gefangene vollzugstauglich, oder er ärztlicher Behandlung bedürftig, ob er seines Zustandes wegen anderen gefährlich, ob und in welchem Umfang er arbeitsfähig und zur Teilnahme am Sport tauglich ist und ob gesundheitliche Bedenken gegen die Einzelunterbringung bestehen.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 ist schriftlich niederzulegen.

**VV zu § 6**

Bei einer Vollzugsdauer bis zu einem Jahr ist eine Behandlungsuntersuchung in der Regel nicht geboten.

## VV zu § 8

1

(1) Wichtige Gründe für eine Überstellung sind namentlich

a. Besuchszusammenführung, wenn ein Besuch in der zuständigen Anstalt nicht oder nur mit erheblichen Schwierigkeiten möglich ist,
b. Ausführung und Ausgang am Ort oder in Ortsnähe einer anderen Anstalt,
c. Vorführung und Ausantwortung am Ort oder in Ortsnähe einer anderen Anstalt;
d. Begutachtung und ärztliche Untersuchungen;

(2) Überstellungen sind nur im Einvernehmen mit der aufnehmenden Anstalt zulässig. Dies gilt nicht bei Vorführungen und Ausantwortungen.

2

Auf begründeten Antrag darf der Gefangene einer Polizeibehörde befristet ausgeantwortet werden.

## VV zu § 10

1

(1) Vom offenen Vollzug ausgeschlossen sind Gefangene,

a.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welche gem. § 74 a GVG von der Strafkammer oder gemäß § 120 GVG vom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 verhängt worden ist,
b. gegen die Untersuchungs-, Auslieferungs- oder Abschiebungshaft angeordnet ist,
c. gegen die eine vollziehbare Ausweisungsverfügung für den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besteht und die aus der Haft abgeschoben werden sollen,
d. gegen die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e sonstige Unterbringung gerichtlich angeordnet und noch nicht vollzogen ist.

(2) In den Fällen des Abs 1 Buchstaben a, c und d sind Ausnahmen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zulässig.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a is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es Buchstabens d das zuständige Gericht zu hören;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c bedürfen Ausnahmen des Benehmens mi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2

(1) Für die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ungeeignet sind der Regel namentlich Gefangene,

a. die erheblich suchtgefährdet sind,
b.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ntwichen sind, eine Flucht versucht, einen Ausbruch unternommen oder sich an einer Gefangenenmeuterei beteiligt haben,
c. die aus dem letzten Urlaub oder Ausgang nicht freiwillig zurückgekehrt sind oder bei den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gegeben sind, dass sie während des letzten Urlaubs oder Ausgangs eine strafbare Handlung begangen haben,
d. gegen die eine Ausweisungs-, Auslieferungs-, Ermittlungs- oder Strafverfahren abhängig ist,
e. bei denen zu befürchten ist, dass sie einen negativen Einfluss ausüben, insbesondere die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bei anderen Gefangenen gefährden würden.

(2) Ausnahmen von Absatz 1 können zugelassen werden, wenn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Gründe hierfür sind aktenkundig zu machen. In den Fällen des Buchst. d ist die zuständige Behörde zu hören.

(3) Bei Gefangenen,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wegen grober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wegen einer Straftat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wegen Handels mit Stoffen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en Verkehr mit Betäubungsmitteln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oder die im Vollzug in den begründeten Verdacht des Handels mit diesen Stoffen oder des Einbringens dieser gekommen sind, bedarf die Frage, ob eine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zu verantworten ist, besonders gründlicher Prüfung. Dies gilt auch für Gefangene, über die Erkenntnisse vorliegen, dass sie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zuzurechnen sind.

3

(1) Ein Gefangener, der sich im offenen Vollzug befindet, ist in den geschlossenen Vollzug zurückzuverlegen, wenn

a. er seine Zustimmung zur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zurücknimmt,
b. er sich für den offenen Vollzug als nicht geeignet erweist,
c. Umstande bekannt werden, die nach Nummer 1 einer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entgegengestanden hätten.

(2) Dem Gefangenen ist Gelegenheit zu Äußerung zu geben. Die Gründe für die Verlegung sind aktenkundig zu machen und dem Gefangenen bekanntzugeben

(3) Die Verlegung in den geschlossenen Vollzug schließ eine erneute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nicht aus.

4

(1) Über die Verlegung in den offenen Vollzug sowie die (Rück-)Verlegung in den geschlossenen Vollzug entscheidet die von der Landesjustizverwaltung bestimmte Stelle.

(2) Die Entscheidung über die Unterbringung eine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n Gefangenen ist in einer Konferenz nach § 159 StVollzG vorzubereiten. Über die Konferenz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gutachterliche Äußerungen sind aktenkundig zu machen. Die Unterbringung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 VV zu § 11

1

Lockerungen des Vollzuges werden nur zum Aufenthalt inn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Strafvollzugsgesetzes gewährt.

2

Bei der Außenbeschäftigung wird der Gefangene entweder ständig und unmittelbar oder ständig oder in unregelmäßigen Zeitabständen durch einen Vollzugsbediensteten beaufsichtigt.

3

(1) Freigang kann auch in der Weise angeordnet werden, dass ein Dritter schriftlich verpflichtet wird, die Anstalt unverzüglich zu benachrichtigen, wenn der Gefangene an der Beschäftigungsstelle nicht rechtzeitig erscheint, sich ohne Erlaubnis entfernt oder sonst ein besonderer Anlass (z. B. Erkrankung, Trunkenheit) hierzu besteht.

(2) Die Anstalt überprüft das Verhalten des Gefangenen während des Freiganges in unregelmäßigen Abständen.

4

(1) Der Anstaltsleiter überträgt die Ausführung des Gefangenen besonders geeigneten Bediensteten.

(2) Vor der Außenbestätigung und der Ausführung erteilt er den Bediensteten die nach Lage des Falles erforderlichen Weisungen.

5

(1) Die Entscheidung über Lockerungen im Vollzug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ist in einer Konferenz nach § 159 StVollzG vorzubereiten. Über die Konferenz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gutachterliche Äußerungen sind aktenkundig zu machen. Lockerungen sind in diesen Fällen in der Regel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13 Abs 3 StVollzG zulässig. Sie bedürfen der Zustimmung der Aufsichtbehörde.

(2) Absatz 1 gilt nicht für die Ausführung und die Außenbeschäftigung unter ständiger und unmittelbarer Aufsicht.

6

(1) Außenbeschäftigung, Freigang und Ausgang sind ausgeschlossen bei Gefangenen,

a.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welche gemäß § 74a GVG von der Strafkammer oder gemäß § 120 GVG vom Oberlandesgericht in ersten Rechtszug verhängt worden ist,
b. gegen die Untersuchungs-, Auslieferungs- oder Abschiebungshaft angeordnet ist,
c gegen die eine vollziehbare Ausweisungsverfügung für den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besteht und die aus der Haft abgeschoben werden sollen,
d. gegen die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e sonstige Unterbringung gerichtlich angeordnet und noch nicht vollzogen ist

(2) In den Fällen des Abs. 1 Buchstaben a, c und d sind Ausnahmen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zulassig.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a ist die Vollstreckungsbehorde, des Buchstabens d das zuständige Bericht zu horen;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c bedurfen Ausnahmen des Benehmens mi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7

(1) Außenbeschäftigung, Freigang und Ausgang sind nur zulässig, wenn der Gefangene für diese Maßnahmen geeignet ist, insbesondere ein Missbrauch nicht zu befürchten ist Bei der Entscheidung ist zu berücksichtigen, ob der Gefangene durch sein Verhalten im Vollzug die Bereitschaft gezeigt hat, an der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mitzuwirken.

(2) Ungeeignet für eine Lockerung nach Absatz 1 sind in der Regel namentlich Gefangene,

a. die erheblich suchtgefährdet sind,
b. die wa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ntwichen sind, eine Flucht versucht, einen Ausbruch unternommen oder sich an einer Gefangenenmeuterei beteiligt haben,
c die aus dem letzten Urlaub oder Ausgang nicht freiwillig zurückgekehrt sind oder bei den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gegeben sind, dass sie während ihres letzten Urlaubs oder Ausgangs eine strafbare Handlung begangen haben,
d. gegen die ein Ausweisungs-, Auslieferungs-, Ermittlungs- oder Strafverfahren anhängig ist,
e. bei denen zu befürchten ist, dass sie einen negativen Einfluss ausüben, insbesondere die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bei anderen Gefangenen gefährden würden

(3) Ausnahmen von Absatz 2 können zugelassen werden, wenn besondere Umstande vorliegen; die Gründe hierfür sind aktenkundig zu machen.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d ist die zustandige Behörde zu hören

(4) Bei Gefangenen,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wegen grober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wegen einer Straftat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wegen Handels mit Stoffen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en Verkehr mit Betäubungsmitteln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oder die im Vollzug in den begründeten Verdacht des Handels mit diesen Stoffen oder des Einbringens dieser Stoffe gekommen sind, bedarf die Frage, ob eine Lockerung des Vollzuges zu verantworten ist, besonders gründlicher Prüfung. Dies gilt auch für Gefangene, über die Erkenntnisse vorliegen, dass sie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zuzurechnen sind.

8

Die Anordnung einer Lockerung ist aufzuheben, wenn der Gefangene seine Zustimmung zu dieser Maßnahme zurücknimmt.

## VV zu § 12

Die VV Nummer 4 zu § 11 und die VV zu § 35 sind zu beachten.

## VV zu § 13

1

Urlaub wird nur an einen Ort inn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Strafvollzugsgesetzes gewährt.

2

(1) Der Urlaub kann aufgeteilt werden. Urlaubstage sind alle Kalendertage, auf die sich der Urlaub erstreckt; der Tag, an dem der Gefangene den Urlaub antritt, wird nicht mitgerechnet.

(2) Urlaubsjahr ist das Vollstreckungsjahr. Der Urlaub ist nicht in das nächste Jahr übertragbar, dies gilt nicht, wenn der Urlaub aus Gründen, die die Vollzugsbehörde zu vertreten hat, nicht rechtzeitig gewährt werden konnte.

(3) Auf jeden angefangenen Kalendermonat der voraussichtlichen Vollzugsdauer entfallen im Rahmen der Höchstdauer (§ 13 Abs. 1 StVollzG), in der Regel nicht mehr als zwei Tage Urlaub.

(4)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urlaubung noch nicht erfüllt (§ 13 Abs. 2 StVollzG), können bei der Berechnung des Urlaubs berücksichtigt werden. Für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für eine Beurlaubung nicht geeignet ist, soll ihm Urlaub in der Regel nicht gewährt werden.

3

(1) Vom Urlaub ausgeschlossen sind Gefangene,

a.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welche gemäß § 74 a GVG von der Strafkammer oder gemäß § 120 GVG vom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 verhängt worden ist,
b. gegen die Untersuchungs-, Auslieferungs- oder Abschiebungshaft angeordnet ist,
c. gegen die eine vollziehbare Ausweisungsverfügung für den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besteht und die aus der Haft abgeschoben werden sollen,
d gegen die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e sonstige Unterbringung gerichtlich angeordnet und noch nicht vollzogen ist.

(2) In den Fällen des Abs. 1 Buchstaben a, c und d sind Ausnahmen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zulässig.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a is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es Buchstabens d das zuständige Gericht zu hören;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c bedürfen Ausnahmen des Benehmens mi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4

(1) Urlaub darf nur gewährt werden, wenn der Gefangene für diese Maßnahme geeignet, insbesondere ein Missbrauch nicht zu befürchten ist. Bei der Entscheidung ist zu berücksichtigen, ob der Gefangene durch sein

Verhalten im Vollzug die Bereitschaft gezeigt hat, an der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mitzuwirken

(2) Ungeeignet sind in der Regel namentlich Gefangene,

a. die sich im geschlossenen Vollzug befinden und gegen die bis zum voraussichtlichen Entlassungszeitpunkt noch mehr als achtzehn Monate Freiheitsstrafe zu vollziehen sind,
b. die erheblich suchtgefährdet sind,
c.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ntwichen sind, eine Flucht versucht, einen Ausbruch unternommen oder sich an einer Gefangenenmeuterei beteiligt haben,
d. die aus dem letzten Urlaub oder Ausgang nicht freiwillig zurückgekehrt sind oder bei den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gegeben sind, dass sie während des letzten Urlaubs oder Ausgangs eine strafbare Handlung begangen haben.
e. gegen die ein Ausweisungs-, Auslieferungs-, Ermittlungs- oder Strafverfahren anhängig ist.

(3) Ausnahmen von Absatz 2 können zugelassen werden, wenn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Gründe hierfür sind aktenkundig zu machen. In den Fällen des Buchstabens e ist die zuständige Behörde zu hören.

(4) Bei Gefangenen, gegen die während des laufenden Freiheitsentzuges eine Strafe wegen grober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wegen einer Straftag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oder wegen Handels mit Stoffen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en Verkehr mit Betäubungsmitteln vollzogen wurde oder zu vollziehen ist oder die im Vollzug in den begründeten Verdacht des Handels mit diesen Stoffen oder des Einbringens dieser Stoffe gekommen sind, bedarf die Frage, ob eine Beurlaubung zu verantworten ist, besonders gründlicher Prüfung. Dies gilt auch für Gefangene, über die Erkenntnisse vorliegen, dass sie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zuzurechnen sind.

5

(1) Der Gefangene darf in der Regel nicht in eine soziale Umgebung oder zu Personen beurlaubt werden, von denen aufgrund tatsächlicher Anhaltspunkte zu befürchten ist, dass sie seiner Eingliederung entgegenwirken.

(2) Der Gefangene hat seine Urlaubsanschrift anzugeben.

6

(1) Der Gefangene tritt den Urlaub in eigener Kleidung an.

(2) Reisekosten, Lebensunterhalt und andere Aufwendungen während des Urlaubs hat der Gefangene aus Mitteln des Haus- oder Eigengeldes zu tragen Nummer 2 Abs. 1 der VV zu § 51 gilt entsprechend. Soweit die eigenen Mittel des Gefangenen nicht ausreichen, kann eine Beihilfe für die Urlaubszeit aus staatlichen Mitteln gewährt werden.

(3) Für Art und Umfang einer Beihilfe für die Urlaubszeit gilt § 75 StVollzG entsprechend.

7

(1) Urlaub wird nur auf Antrag gewährt Der Antrag soll einen Monat vor Urlaubsbeginn schriftlich gestellt werden.

(2) Die Gründe für die Ablehnung des Antrags sind aktenkundig zu machen und dem Gefangenen bekannt zu geben.

(3) Die Entscheidung über die Beurlaubung eines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n Gefangenen ist in einer Konferenz nach § 159 StVollzG vorzubereit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Urlaubsgewährung nach § 13 Abs. 3 vorliegen. Über die Konferenz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gutachtliche Äußerungen sind aktenkundig zu machen. Die Beurlaubung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8

(1) Der beurlaubte Gefangene erhält einen Urlaubsschein. In dem Urlaubsschein sind Weisungen, soweit erforderlich, aufzuführen.

(2) Vor Antritt des Urlaubs ist der Gefangene namentlich über die Voraussetzungen des Widerrufs und der Rücknahme des Urlaubs sowie die Bedeutung der ihm erteilten Weisungen zu belehren.

## VV zu § 14

1

(1) Für Lockerungen und Urlaub werden die nach dem Umständen des Einzelfalles erforderlichen Weisungen erteilt.

(2) Der Gefangene kann namentlich angewiesen werden,

a. Anordnungen zu befolgen, die sich auf Aufenthalt oder bestimmte Verrichtungen außerhalb der Anstalt beziehen,
b. sich zu festgesetzten Zeiten bei einer bestimmten Stelle oder Person zu melden,
c. mit bestimmten Personen oder mit Personen einer bestimmten Gruppe, die ihm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nicht zu verkehren,
d. bestimmte Gegenstände, die ihm Gelegenheit oder Anreiz zu weiteren Straftaten bieten können, nicht zu besitzen, bei sich zu führen, zu benutzen oder verwahren zu lassen,
e. alkoholische oder andere berauschende Getränke und Stoffe sowie bestimmte Lokale oder Bezirke zu meiden

2

(1) Für das Vorliegen der in § 14 Abs. 2 StVollzG genannten Voraussetzungen müsse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gegeben sein.

(2) Widerruf und Rücknahme werden wirksam, wenn die Entscheidung dem Gefangenen mündlich, fernmündlich oder schriftlich bekannt gemacht oder unter der Urlaubsanschrift zugegangen ist. Dem Gefangenen ist Gelegenheit zur Äußerung zu geben. Ist dies vor der Entscheidung über den Widerruf oder die Rücknahme nicht möglich oder untunlich, so ist die Anhörung nach Wegfall des Hindernisses unverzüglich nachzuholen.

(3) Die Gründe für den Widerruf und die Rücknahme sind aktenkundig zu machen und dem Gefangenen auf Verlangen bekannt zu geben.

(4) Fahndungsmaßnahmen können bereits vor der Wirksamkeit des Widerrufs oder der Rücknahme eingeleitet und durchgeführt werden.

## VV zu § 15

(1) Die Entlassungsvorbereitungen sind auf den Zeitpunkt der voraussichtlichen Entlassung in die Freiheit abzustellen.

(2) Sonderurlaub im Sinne des § 15 Abs. 3 kann auch im Wiederholungsfall noch bis zu einer Gesamtdauer von einer Woche gewährt werden. Dies gilt auch, wenn die Entlassung zu einem anderen Zeitpunkt erfolgt, als bei der Bewilligung des Urlaubes angenommen wurde.

(3) Sonderurlaub nach § 15 Abs. 4 StVollzG kann auch einem Gefangenen gewährt werden, der zum Freigang zugelassen ist, ohne ihn auszuüben

## VV zu § 16

(1) § 16 gilt auch, wenn

a. der Gefangene aufgrund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oder aufgrund einer Gnadenmaßnahme vorzeitig zu entlassen ist,
b. eine Strafe oder Ersatzfreiheitsstrafe infolge der Vorverlegung des Entlassungszeitpunkts überhaupt nicht vollzogen wird,
c. Freistellung von der Arbeit (§ 43 Abs 6 Satz 1) auf den Entlassungszeitpunkt nach § 43 Abs. 9 vorrangig angerechnet wird.

(2) Soweit es auf die Länge der Strafzeit ankommt, ist die Vorverlegung der Entlassung vertretbar, wenn sich der Gefangene zum Zeitpunkt der beabsichtigten Entlassung wenigstens einen Monat ununterbrochen im Vollzug befindet.

## VV zu § 21

1

(1) Der Gefangene erhält Anstaltsverpflegung,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ie Verpflegung ist für alle Gefangenen gleich, wenn nicht der Anstaltsarzt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anderes verordnet hat oder mit Rücksicht auf religiöse Speisegebote eine andere Verpflegung angebracht ist.

(2) Die Anstaltsverpflegung soll eine vollwertige Ernährung der Gefangenen nach den Erkenntnissen der modernen Ernährungslehre gewährleisten.

(3) Unterliegt ein Gefangener religiösen Speisegeboten, sollen auf seinen Antrag Bestandteile der Anstaltsverpflegung, die er nicht verzehren darf, gegen andere Nahrungsmittel ausgetauscht werden.

2

Während der hohen Glaubensfeste anderer als christlicher Religionsgemeinschaften, bei denen besondere Speisegebote zu beachten sind, können die betreffenden Gefangenen auf ihren Antrag und auf ihre Kosten auch von Glaubensgenossen verpflegt werden, sofern wichtige Belange des Vollzuges nicht entgegenstehen.

## VV zu § 22

1

(1) Die Bemessung des Betrages für den Einkauf nach § 22 Abs. 3 richtet sich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Dabei sind insbesondere die Höhe des dem Gefangenen bish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geldes, die Höhe des noch anzusparenden Überbrückungsgeldes, besondere persönliche Bedürfnisse (z. B. weg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und der Wert der beim Zugang belassenen oder ihm von Dritten zugewendeten Nahrungs- und Genussmittel zu berücksichtigen

(2) Können hinreichende Feststellungen ach Absatz 1 nicht getroffen werden, so wird dem Gefangenen gestattet, im Monat einen Betrag bis zum vierfachen, nach sechs Monaten bis zum sechs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 43 Abs 2) aus seinem Eigengeld zu verwenden.

(3) Der Einkauf alkoholhaltiger Getränke ist nicht gestattet. Ausnahmen können von der Aufsichtsbehörde für einzelne Anstalten und Abteilungen sowie für bestimmte Gruppen von Gefangenen zugelassen werden.

2

(1) Für den Einkauf sonstiger Gegenstände, deren Besitz in der Anstalt gestattet ist, kann der Gefangene sein Hausgeld, sein Taschengeld und sein Eigengeld verwenden. Der Einkauf aus seinem Eigengeld kann der Höhe

nach beschränkt werden.
(2) § 83 Abs. 2 Satz 3 bleibt unberührt.

### VV zu § 24

1

Ein Besuch findet nicht statt, wenn ihn der Gefangene ablehnt.

2

(1) Jeder Besucher muss sich über seine Person ausweisen. Hiervon kann abgesehen werden, wenn der Besucher bereits bekannt ist.
(2) Der Besuch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ss der Besucher für die Dauer des Besuches seinen Ausweis bei der Anstalt hinterlegt.

3

Der Besucher wird in geeigneter Weise unterrichtet, wie er sich bei dem Besuch zu verhalten hat.

4

Vor dem Besuch eines kranken Gefangenen, der in einer Krankabteilung oder in einem Anstaltskrankenhaus untergebracht ist, ist der Arzt zu hören Ärztliche Bedenken gegen einen Besuch sind dem Besucher mitzuteilen. Besuche im Krankenraum bedürfen der Zustimmung des Arztes.

5

Für den Besuchsverkehr eines Gefangenen, der eine ausländische Staatsangehörigkeit besitzt, mit der diplomatischen oder konsularischen Vertretung des Heimatstaates gelten die Richtlinien fü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in strafrechtlichen Angelegenheiten (Nummer 136 RiVASt).

### VV zu § 26

(1) Der Verteidiger muss sich als solcher gegenüber der Anstalt durch die Vollmacht des Gefangenen oder die Bestellungsanordnung des Gerichts ausweisen Rechtsanwälte und Notare haben nachzuweisen, dass sie den Gefangenen in einer ihn betreffenden Rechtssache besuchen wollen.
(2) Rechtsanwälte, Notare, Rechtsbeistände und Rechtsreferendare haben ihre Eigenschaft auf Verlangen nachzuweisen

### VV zu § 28

1

Für den Schriftverkehr eines Gefangenen, der eine ausländische Staatsangehörigkeit besitzt, mit der diplomatischen oder konsularischen Vertretung des Heimatstaates gelten die Richtlinien fü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in strafrechtlichen Angelegenheiten (Nummer 135 RiVASt).

2

Die Kosten des Schriftverkehrs trägt der Gefangene. Kann der Gefangene sie nicht aufbringen, kann die Anstalt sie in begründeten Fällen in angemessenem Umfang übernehmen.

### VV zu § 29

1

(1) Der Verteidiger muss sich als solcher gegenüber der Anstalt durch die Vollmacht des Gefangenen oder die Bestellungsanordnung des Gerichts ausweisen Verteidigerpost muss deutlich sichtbar gekennzeichnet sein.

(2) Als Verteidigerpost gekennzeichnete eingehende Schreiben von Personen, bei denen die Verteidigerbereitschaft nicht nachgewiesen ist, werden in der Regel ungeöffnet an den Absender zurückgesandt mit dem Hinweis, dass der Nachweis der Verteidigereigenschaft fehlt Mit Einverständnis des Gefangenen kann das Schreiben geöffnet und nach Überprüfung ausgehändigt werden

2

(1) Soweit der Schriftwechsel überwacht werden darf, bestimmt der Anstaltsleiter Art und Umfang der Überwachung. Er darf mit der Überwachung einzelne andere Bedienstete beauftragen. Schreiben in fremder Sprache werden, soweit nötig, übersetzt.

(2) Soweit der Schriftwechsel überwacht wird, hat der Gefangene seine Schreiben in offenem Umschlag in der Anstalt abzugeben.

(3) Der überwachende Bedienstete darf in den Schreiben weder Randbemerkungen anbringen noch Stellen durchstreichen oder unkenntlich machen. Ein Sichtvermerk ist zulässig.

3

Die Kosten für die Übersetzung von Schreiben, die in fremder Sprache abgefasst sind, tragt in der Regel die Staatskasse.

## VV zu § 31

1

Dem Gefangenen sind die Gründe für das Anhalten mitzuteilen. Der unbedenkliche Inhalt eines angehaltenen Schreibens kann mit ihm bekannt gegeben werden

2

Ein Begleitschreiben darf nur Angaben enthalten, die der Richtigstellung dienen. Der Gefangene ist über die Absicht, ein Begleitschreiben beizufügen, zu unterrichten.

3

Angehaltene Schreiben, die Kenntnisse über Sicherungsvorkehrungen der Anstalt vermitteln, dürfen auch vernichtet werden (vgl. § 83 Abs. 4 StVollzG).

## VV zu § 32

Die Kosten trägt der Gefangene Ist er dazu nicht in der Lage, kann die Anstalt die Kosten in begründeten Fällen in angemessenem Umfang übernehmen.

## VV zu § 33

1

(1) Der Empfang eines Paketes ist zugelassen zu Weihnachten, zu Ostern und zu einem von dem Gefangenen zu wählenden weiteren Zeitpunkt (z. B. Geburtstag).

(2) Einem Gefangenen, der nicht einer christlichen Religionsgemeinschaft angehört, kann anstelle des Weihnachts- und des Osterpaketes der Empfang je eines Paketes aus Anlass eines hohen Feiertages seines Glaubens gestattet werden.

2

(1) Einschließlich der Verpackung darf das Gewicht des Weihnachtspaketes fünf Kilogramm, der beiden übrigen Pakete jeweils drei Kilogramm nicht übersteigen.

(2) Ein Paket darf Alkohol und andere berauschende Mittel in jeder Form sowie Medikamente und Tabletten

nicht enthalten

(3) In den Fällen einer ärztlichen Anordnung nach § 22 Abs. 2 darf der Inhalt des Paketes nur nach Anhörung des Arztes ausgehändigt werden.

3

Die Erlaubnis zum Empfang sonstiger Pakete kann namentlich für die Zusendung von Unterrichts- und Fortbildungsmitteln, Entlassungskleidung und Gegenständen für die Freizeitbeschäftigung erteilt werden.

4

Jedes Paket soll ein Inhaltsverzeichnis enthalten und den Absender erkennen lassen. Die Verwendung einer von der Anstalt ausgegebenen Paketmarke kann vorgeschrieben werden

5

(1) Das Paket soll innerhalb eines Zeitraumes von zwei Wochen vor oder nach den in Nummer 1 genannten Zeitpunkten eingehen.

(2) Die Anstalt kann die Annahme eines Paketes, das zur Unzeit (Absatz 1) oder mit Übergewicht eingeht oder dessen Empfang nicht zugelassen ist, - gegebenenfalls bereits auf dem Postamt - verweigern Sie teilt dem Gefangenen die Annahmeverweigerung und den Grund dafür mit.

(3) Absatz 2 gilt nicht für ein Paket, das einem ausländischen Gefangenen nicht aus dem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zugesandt wird. Wird das Höchstgewicht überschritten oder ist das Paket nicht zugelassen, kann der Mehrinhalt oder der Inhalt dem Gefangenen ausgehändigt werden, wenn dieser mit der Zuführung eines dem Wert entsprechenden, von der Anstalt festgesetzten Betrages aus dem Hausgeld zum Überbrückungsgeld oder Eigengeld einverstanden ist Anderenfalls ist der Mehrinhalt oder der Inhalt des Paketes zur Habe des Gefangenen zu nehmen, soweit er nicht mit dessen Zustimmung anderweitig verwendet oder soweit nicht nach § 83 Abs. 3 verfahren wird.

6

(1) Ein Gefangener, der keine Paket erhält, darf zum Ausgleich Nahrungs- und Genussmittel einkaufen. Für den Ersatzeinkauf darf ein Betrag bis zum siebenfachen, beim Weihnachtspaket bis zum neun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 43 Abs. 2) aus dem Eigengeld verwendet werden. § 83 Abs. 2 Satz 3 bleibt unberührt.

(2) Geht für einen Gefangenen nach dem Ersatzeinkauf in dem in Nummer 5 Abs. 1 bestimmten Zeitraum ein Paket ein, ist es ihm auszuhandigen, wenn er mit der Zuführung des gleichen Betrages, den er für den Ersatzeinkauf verwendet hat, aus dem Hausgeld zum Überbrückungsgeld oder Eigengeld einverstanden ist. Anderenfalls ist das Paket zurückzusenden Nummer 5 Abs. 3 bleibt unberührt

7

(1) Der Paketinhalt wird auf verbotene Gegenstände durchsucht. Liegt ein Inhaltsverzeichnis bei, ist die Vollzahligkeit zu prüfen; Abweichungen sind auf dem Verzeichnis zu vermerken

(2) Der Gefangene hat den Empfang des Paketes schriftlich zu bestätigen.

8

Die Kosten des Paketverkehrs trägt der Gefangene. Ist er dazu nicht in der Lage, kann die Anstalt die Kosten in begründeten Fällen in angemessenem Umfang übernehmen.

9

Der Gefangene soll alsbald nach der Aufnahme durch Aushändigung eines Merkblattes über die Möglichkeit, Pakete zu empfangen und zu versenden, unterrichtet werden.

## VV zu § 35

1

Die VV zu §§ 11, 13 und 14 gelten sinngemäß

2

(1) Bei einer Ausführung entscheidet der Anstaltsleiter über die nach Lage des Falles erforderlichen besonderen Sicherungsmaßnahmen.
(2) Eine Ausführung unterbleibt, wenn trotz Anordnung angemessener besonderer Sicherungsmaßnahmen zu befürchten ist, das der Gefangene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Ausführung zu Straftaten missbrauchen werde. Dies gilt nicht, wenn die Ausführung zur Abwendung einer unmittelbar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des Gefangenen unerlässlich ist.

## VV zu § 36

1

(1) Beantragt der Gefangene unter Vorlage einer Ladung die Teilnahme an einem gerichtlichen Termin, so entscheidet der Anstaltsleiter, ob er dem Gefangenen hierfür Ausgang oder Urlaub erteilt oder ihn ausführen lässt.
(2) Eine Pflicht des Anstaltsleiters, das Gericht über seine Entscheidung zu unterrichten, besteht nicht.

2

(1) Ersucht das Gericht die Anstalt, einen Gefangenen an einem gerichtlichen Termin teilnehmen zulassen, so klärt der Anstaltsleiter, ob der Gefangene der Ladung Folge leisten will Bejahendenfalls prüft der Anstaltsleiter, ob er dem Gefangenen Ausgang oder Urlaub erteilt oder ihn ausführen lässt
(2) Der Anstaltsleiter unterrichtet das Gericht, und zwar auch dann, wenn der Gefangene die Teilnahme an dem Termin ablehnt

3

Wird der Gefangene auf seinen Antrag oder überwiegend in seinem Interesse ausgeführt, so werden ihm in der Regel die Kosten auferlegt.

4

(1) Erlässt das Gericht einen Vorführungsbefehl und ersucht es die Anstalt um Vorführung, so lässt der Anstaltsleiter den Gefangenen zu dem gerichtlichen Termin vorführen.
(2) Vor der Vorführung erteilt der Anstaltsleiter die nach Lage des Falles erforderlichen Weisungen und entscheidet über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5

Im Benehmen mit dem Richter, der die Dienstaufsicht bei dem Amtsgericht führt, in dessen Bezirk die Anstalt liegt, setzt der Anstaltsleiter die Zeit fest, in der dem Gefangenen Gelegenheit gegeben wird, in der Anstalt dem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vorgeführt zu werden.

## VV zu § 37

1

Entfällt.

2

Eine Beschäftigung ist angemessen im Sinne des § 37 Abs 4, wenn ihr Ergebnis wirtschaftlich verwertbar ist

und in einem vertretbaren Verhältnis zum Aufwand steht.

3

(1) Soweit es die Art der Arbeit oder der angemessenen Beschäftigung zulässt, wird für jede Verrichtung die Anforderung ermittelt und festsetzt, die der Gefangene zu leisten hat. Dabei ist von der Leistung auszugehen, die von einem freien Arbeitnehmer nach ausreichender Einarbeitung und Übung ohne Gesundheitsstörung auf die Dauer erreicht und erwartet werden kann.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des Vollzuges sind angemessen zu berücksichtigen.

(2) Die Soll-Leistung wird überprüft und gegebenenfalls neu festgesetzt, wenn sie von der Mehrzahl der Gefangenen um mehr als vierzig vom Hundert überschritten wird oder sich die Festsetzung als zu hoch erweisen hat. Sie ist auch zu überprüfen und gegebenenfalls neu festzusetzen, wenn dies durch eine Änderung der Arbeitsmethoden, durch technische Verbesserungen oder ähnliches begründet ist.

4

(1) Die Arbeitszeit der Gefangenen soll sich nach der regelmäßigen wöchentlichen Arbeitszeit im öffentlichen Dienst richten, in dringenden Fällen darf die regelmäßige Arbeitszeit der Gefangenen bis zu der für freie Arbeitnehmer zugelassenen Höchstdauer überschritten werden.

(2) An Sonntagen und gesetzlichen Feiertagen, in der Regel auch an Samstagen, ruht die Arbeit, soweit nicht unaufschiebbare Arbeiten ausgeführt werden müssen.

(3) Mehrarbeit und Arbeit nach Absatz 2 sollen möglichst durch Freistellung von der Arbeit an anderen Arbeitstagen ausgeglichen werden.

(4) Gefangene, die nach den Vorschriften ihres Glaubensbekenntnisses an bestimmten Tagen nicht arbeiten dürfen, können an diesen Tagen auf ihren Wunsch von der Arbeit befreit werden. Sie können dafür an allgemein arbeitsfreien Tagen zu unaufschiebbaren Arbeiten herangezogen werden.

5

Ein Gefangener kann zu Tätigkeiten für die Vollzugsanstalt herangezogen werden, wenn er hierfür geeignet ist und Unzuträglichkeiten nicht zu erwarten sind Arbeiten, die Einblick in die persönlichen Verhältnisse von Bediensteten, Gefangenen oder Dritten oder in Personal-, Gerichts- oder Verwaltungsakten ermöglichen, dürfen einem Gefangenen nicht übertragen werden.

**VV zu § 39**

1

Entfällt.

2

(1) Gefangene, denen das Eingehen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außerhalb der Anstalt gestattet ist, sollen von Gefangenen des geschlossenen Vollzuges getrennt werden.

(2) Zwischen dem Gefangenen und seinem Arbeitgeber oder Ausbildenden ist ein schriftlicher Vertrag (Arbeitsvertrag, Berufsbildungsvertrag oder ähnliches) abzuschließen. In dem Vertrag ist besondere festzulegen, dass das Beschäftigungsverhältnis ohne Kündigung endet, wenn die dem Gefangenen nach § 39 Abs. 1 erteilte Erlaubnis endet, und dass die Bezüge aus dem Beschäftigungsverhältnis während des Freiheitsentzuges mit befreiender Wirkung nur auf das mit der Anstalt vereinbarte Konto gezahlt werden können. Die Anstalt stellt sicher, dass mit Zuwendungen aufgrund öffentlich-rechtlicher Bestimmungen entsprechend verfahren wird.

(3) Die Bezüge des Gefangenen werden in nachstehender Rangfolge für folgende Zwecke verwendet:

a. Auslagen des Gefangenen für Fahrtkosten, Arbeitskleidung, Verpflegung außerhalb der Anstalt und

andere im Zusammenhang mit seiner Beschäftigung notwendige Aufwendungen,

b. Hausgeld und Überbrückungsgeld,

c. Erfüllung einer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 des Gefangenen auf dessen Antrag,

d. Haftkostenbeitrag,

e. Erfüllung sonstiger Verbindlichkeiten des Gefangenen auf dessen Antrag,

f. Eigengeld des Gefangenen.

(4) Der Gefangene ist anzuhalten, seine Unterhaltspflichten zu erfüllen, den durch die Straftat verursachten Schaden wiedergutzumachen und seine sonstigen Verbindlichkeiten zu erfüllen. Ist der Anstalt bekannt, dass Angehörige oder andere Personen, denen der Gefangene unterhaltspflichtig ist, Sozialhilfe erhalten, wird der Träger der Sozialhilfe von dem Beschäftigungsverhältnis und der Höhe der Bezüge unterrichtet. Auf die Möglichkeit der Nachentrichtung von Beiträgen zur Sozialversicherung soll der Gefangene hingewiesen werden.

3

(1) Selbstbeschäftigung soll regelmäßig nur gestattet werden, wenn sie aus wichtigem Grunde geboten erscheint und im Rahmen des Vollzuges entgegenstehen.

(2) Selbstbeschäftigung wird in der Regel nur gestattet, wenn der Gefangene sich die nötigen Gegenstände aus eigenen Mitteln beschaffen kann, bei Selbstbeschäftigung innerhalb der Anstalt vermittelt die Anstalt die Beschaffung der Gegenstände.

(3) Für die Rechtsbeziehungen zwischen dem Gefangenen und einem Dritten sowie für die Bezüge aus der Selbstbeschäftigung gilt Nummer 2 Abs. 2 bis 4 entsprechend. § 50 Abs. 3 StVollzG in der Fassung des § 199 Abs. 2 Nr. 3 StVollzG bleibt unberührt.

(4) Der Gefangene ist anzuhalten, seiner Steuerpflicht nachzukommen. Erfüllt der Gefangene seine Anzeigepflicht nicht, so ist die Erlaubnis zur Selbstbeschäftigung zu widerrufen.

## VV zu § 42

1

§ 42 Abs. 1 Strafvollzugsgesetz gewährt einen Anspruch auf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sobald der Gefangene innerhalb eines zu einem beliebigen Zeitpunkt beginnenden Zeitraumes von einem Jahr seine Arbeitspflicht erfüllt hat

2

Auf das Jahr (§ 42 Abs. 1) werden ferner angerechnet

a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Verletzungsgeld nach § 47 Abs. 6 SGB VII erhalten hat,

b.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aus anderen als Krankheitsgründen eine Tätigkeit nach § 42 Abs. 1 nicht ausgeübt hat, in der Regel bis zu drei Wochen jährlich, wenn dies angemessen erscheint,

c. Zeiten einer Freistellung vor der Arbeitspflicht und Urlaub aus der Haft, der nach § 42 Abs. 2 anzurechnen ist,

d Zeiten einer Freistellung von der Arbeit nach § 43 Abs. 6 und Arbeitsurlaub nach § 43 Abs. 7

3

(1) Als Werktage (§ 42 Abs. 1 Satz 1) gelten alle Kalendertage, die nicht Sonn- oder gesetzliche Feiertage sind.

(2) Erkrankt ein Gefangener während der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werden die Tage der Arbeitsunfähigkeit auf die Zeit der Freistellung nicht angerechnet.

4

(1) Die Freistellung kann nur innerhalb eines Jahres nach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in Anspruch genommen werden.

(2) Eine erneute Freistellung kann frühestens ein Jahr nach Vorliegen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vorhergehende Freistellung und in der Regel frühestens drei Monate nach der letzten Freistellung in Anspruch genommen werden.

5

Die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ist von dem Gefangenen mindestens einen Monat vorher schriftlich zu beantragen.

6

Bei der Festsetzung des Zeitpunkts der Freistellung sind die betrieblichen Belange, der Stand einer Aus- oder Weiterbildungsmaßnahme und die Möglichkeiten der Vollzugsgestaltung während der Freistellung zu berücksichtigen.

7

Der Berechnung der Bezüge nach § 42 Abs. 3 ist der Durchschnitt der letzten drei abgerechneten Monate vor der Freistellung, in denen der Gefangene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tätig war, zugrunde zu legen.

8

Für Gefangene, die nach § 41 Abs. 1 Satz 3 oder § 175 nicht zur Arbeit verpflichtet sind, gelten § 42 und Nrn. 1 bis 7 entsprechend.

**VV zu § 43**

1

(1) Verrichtet ein Gefangener während eines Abrechnungszeitraumes Tätigkeiten, die verschiedenen Vergütungsstufen zuzuordnen sind, so ist das Arbeitsentgelt aus der Vergütungsgruppe zu ermitteln, die dem überwiegenden Teil der Tätigkeiten entspricht. Dies gilt nicht, wenn der Gefangene in verschiedenen Betrieben arbeitet

(2) Verrichtet ein Gefangener nicht nur vorübergehend eine anders bewertete Tätigkeit, so ist er mit Beginne des nächsten Abrechnungszeitraumes in die entsprechende Vergütungsstufe umzugruppieren.

2

(1) Das Arbeitsentgelt wird in der Form des Zeitlohnes oder des Leistungslohnes ermittelt.

(2) Zeiten einer Einarbeitung können im Zeitlohn vergütet werden.

(3) Im Zeitlohn kann der Satz der jeweiligen Vergütungsstufe unterschritten werden, wenn der Gefangene den Anforderungen der jeweiligen Vergütungsstufe nicht genügt. § 43 Abs. 3 Satz 2 bleibt unberührt.

3

Neben dem Arbeitsentgelt können Leistungen für betriebliche Verbesserungsvorschläge gewährt werden. Der Anstaltsleiter entscheidet, ob eine Leistung für einen betrieblichen Verbesserungsvorschlag als Hausgeld, Überbrückungsgeld oder Eigengeld gutgeschrieben wird

4

(1) Ein Beschäftigungszeitraum im Sinne des § 43 Abs. 6 Satz 1 endet, wenn ein Gefangener aus von ihm verschuldeten Gründen seine Tätigkeit unterbricht. Mit der erneuten Arbeitsaufnahme beginnt die Frist von Neuem.

(2) Wird die Zweimonatsfrist durch ein unverschuldetes Ereignis im Sinne des § 43 Abs 6 Satz 3 gehemmt,

so verlängert sich der Zeitraum zur Erfüllung des Zweimonatszeitraums um die Anzahl der ausgefallenen Arbeitstage

5

(1) Für die Gewährung der Freistellung von der Arbeit gelten Nr. 3 Abs. 2, Nr 4 Abs. 1, Nrn. 5 und 6 VV zu § 42 entsprechend.
(2) Als Werktage (§ 43 Abs. 6 Satz 1) gelten Kalendertage, die nicht Sonntage, gesetzliche Feiertage oder Samstage sind. Nr. 6 Abs. 2 gilt entsprechend.
(3) Für die Berechnung der Bezüge nach § 43 Abs. 8 gilt Nr. 7 VV zu § 42 entsprechend. Sofern weniger als drei Monate abgerechnet sind, sind diese zugrund zu legen.

6

(1) Fur Urlaub nach § 43 Abs. 7 gilt § 35 Abs 2 entsprechend. Die VV zu §§ 11, 13 und 14 gelten sinngemäß
(2)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kann Arbeitsurlaub auch an Sonntagen, gesetzlichen Feiertagen und Samstagen gewährt werden.

### VV zu § 44

Als Berufsfindungsmaßnahme kann auch die Teilnahme eines Gefangenen an einem Einweisungsverfahren in einer zentralen Einweisungseinrichtung in Betracht kommen.

### VV zu § 46

in der Fassung des § 199 Abs. 1 Nr. 1)
(1) Das Taschengeld wird nur auf Antrag gewährt.
(2) Das Taschengeld beträgt 14 v. H. der Eckvergütung (§ 43 Abs. 2). Bei der Berechnung des Taschengeldes werden Hausgeld und Eigengeld berücksichtigt. Ein Geldbetrag, der für einen Gefangenen statt eines Paketes im Sinne des § 33 Abs.1 Satz 1 zum eigenen Einkauf von Nahrungs- und Genussmitteln eingezahlt wird, bleibt bis zu dem für den Ersatzeinkauf festgesetzten Höchstbetrag bei der Berechnung des Taschengeldes für den laufenden und längstens den folgenden Monat berücksichtigt.
(3) Bedürftig ist eine Gefangener, soweit ihm im laufenden Monat aus Hausgeld und Eigengeld nicht ein Betrag bis zur Höhe des Taschengeldes zur Verfügung steht

### VV zu § 47

(in der Fassung des § 199 Abs. 1 Nr. 2)
Über Beträge, die als Ersatz für entgangene, in diesem Gesetz geregelte Zuwendungen gewährt werden (z. B. Zeugenentschädigung, Verletztengeld), kann der Gefangene wie über die Zuwendungen verfügen, an deren Stelle sie treten.

### VV zu § 50

(1) Der nicht auf die Kosten entfallende Anteil des Haftkostenbeitrages ist auch dann zu erheben, wenn sich Gefangene wegen Urlaubs oder aus sonstigen Grunden vorübergehend nicht in der Anstalt aufhalten.
(2) Während der Teilnahme am Maßnahmen der Ausbildung oder Weiterbildung wird von der Erhebung eines Haftkostenbeitrages abgesehen, wenn die Gewährung von Bezügen nach öffentlich-rechtlichen Bestimmungen (z. B. Arbeitsförderungsgesetz) hiervon abhängig gemacht wird.

## VV zu § 51

1

(1) Das Arbeitsentgelt und die Ausbildungsbeihilfe werden dem Überbrückungsgeld zugeführt, soweit sie dem Gefangenen nicht als Hausgeld zur Verfügung stehen und das Überbrückungsgeld noch nicht die angemessene Höhe (§ 51 Abs. 19 erreicht hat. Bei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ist der Anteil der Bezüge zu bestimmen, der gemäß Satz 1 dem Überbrückungsgeld zuzuführen ist; der Anteil soll bei den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den Betrag des Hausgeldes nicht überschreiten.
(2) Die angemessene Höhe des Überbrückungsgeldes wird von der Landesjustizverwaltung festgesetzt. Sie soll das Vierfache des nach § 22 Bundessozialhilfegesetz festgesetzten monatlichen Mindestbetrages des Regelsatzes nicht unterschreiten. Der Anstaltsleiter kan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mstände des Einzelfalles einen höheren Betrag festsetzen.

2

(1) Der Anstaltsleiter soll die Inanspruchnahme des Überbrückungsgeldes nach § 51 Abs. 3 nur gestatten, wenn zu erwarten ist, dass dem Gefangenen bei der Entlassung in die Freiheit ein Überbrückungsgeld in angemessener Höhe zur Verfügung steht.
(2) Ausgaben, die der Eingliederung dienen, sind insbesondere Aufwendungen zur Erlangung eines Arbeitsplatzes und einer Unterkunft nach der Entlassung.

## VV zu § 56

1

Für die Anstalten gelten die allgemeinen Vorschriften für die gesundheitsbehördliche Überwachung.

2

Der Anstaltsarzt achtet auf Vorgänge und Umstände, von denen Gefahren für die Gesundheit von Personen in der Anstalt ausgehen können. Jeder Bedienstete , der eine Gefahr für die gesundheitlichen Verhältnisse zu erkennen glaubt, ist verpflichtet, dieses unverzüglich zu melden.

3

Der Anstaltsarzt hat nach den Vorschriften des Infektionsschutzgesetzes meldepflichtige übertragbare Krankheiten dem zuständigen Gesundheitsamt anzuzeigen und den Gefangenen, soweit erforderlich ist, abzusondern. Kranke, bei denen zurzeit der Entlassung noch Ansteckungsgefahr besteht oder deren Behandlung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werden dem zuständigen Gesundheitsamt unverzüglich gemeldet. Gegebenenfalls ist zu veranlassen, dass sie in die zuständige öffentliche Krankenanstalt gebracht werden.

## VV zu § 57

Die Gefangenen sind auf die Möglichkeit von Maßnahm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hinzuweisen. Die Maßnahmen werden auf Antrag durchgeführt.

## VV zu § 58

1

(1) Einen Gefangenen, der sich krank meldet, einen Unfall erleidet, einen Selbstmordversuch begeht oder sich selbst beschädigt, sowie einen Gefangenen, dessen Aussehen oder Verhalten und Verdacht nahe legt, dass er körperlich oder geistig erkrankt ist, zeigt der die Feststellung treffende Bedienstet schriftlich, notfalls mündlich

voraus, dem Anstaltsarzt an. Wenn ärztliche Hilfe nicht sofort erforderlich erscheint, untersucht der Arzt den krankgemeldeten Gefangenen in der nächsten Sprechstunde.

(2) Der Arzt stellt fest, ob der Gefangene als krank zu führen ist, ob er bettlägerig krank ist, in welchem Umfange er arbeitsfähig ist, ob er einer besonderen Unterbringung oder speziellen Behandlung zu führen ist, ob er bettlägerig krank ist, in welchem Umfange er arbeitsfähig ist, ob er einer besonderen Unterbringung oder speziellen Behandlung bedarf oder ob er vollzugstauglich ist.

2

(1) Kann der Anstaltsarzt nicht erreicht werden, so wird in dringenden Fällen ein anderer Arzt herbeigerufen.

(2) Hält es der Anstaltsarzt nach Art oder Schwere des Falles für erforderlich, zieht er einen anderen Arzt oder Facharzt hinzu.

3

Der Anstaltsleiter kann nach Anhören des Anstaltsarztes dem Gefangenen ausnahmsweise gestatten, auf eigene Kosten einen beratenden Arzt hinzuzuziehen Die Erlaubnis soll nur erteilt, werden, wenn der Gefangene den in Aussicht genommenen Arzt und den Anstaltsarzt untereinander von der ärztlichen Schweigepflicht entbindet. Bei der Wahl des Zeitpunktes und der Bestimmung der Haufigkeit ärztlicher Bemühungen ist auf die besonderen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in der Anstalt Rücksicht zu nehmen.

4

(1) Die ärztlichen Verordnungen sind genau zu befolgen. Es ist darauf zu achten, dass Arzneimittel nicht missbraucht werden Für die Einhaltung der ärztlichen Einnahmevorschrift ist der Gefangene in der Regel selbst verantwortlich. Bei einem Gefangenen mit Persönlichkeitsstörung und für die Einnahme stark wirkender Arzneimittel kann angeordnet werden, dass Arzneimittel in Gegenwart eines Bediensteten einzunehmen sind. Bei Missbrauchsgefahr ist darauf zu achten, dass der Gefangene das Arzneimittel tatsächlich einnimmt, nach Möglichkeit durch Verabreichen in aufgelöstem Zustand.

(2) Gifte und andere stark wirkende Arzneimittel hat der Arzt ständig unter sicherem Verschluss aufzubewahren. Alle anderen Arzneimittel sind so sicher unterzubringen, dass sie Unbefugten nicht zugänglich sind.

(3) Es dürfen nur durch die Anstalt beschaffte Arzneimittel verwendet werden, es sei denn, der Anstaltsarzt lässt Ausnahmen zu. Diese Bestimmung gilt nicht für ärztlich verordnete Arzneimittel, die von einem Gefangenen beschafft werden, der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t.

### VV zu § 60

Dem Gefangenen kann in der nächstgelegenen Vollzugsanstalt ambulante Krankenpflege gewährt werden, wenn eine Rückkehr in die zuständige Anstalt nicht zumutbar ist.

### VV zu § 65

(1) In einem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ist eine Bewachung durch Vollzugsbedienstete bei Fortdauer der Strafvollstreckung nur dann erforderlich, wenn eine Flucht aufgrund der Persönlichkeit des Gefangenen oder der besonderen Umstände zu befürchten ist. Wenn auf eine Bewachung ausschließlich im Hinblick auf den Krankheitszustand verzichtet wurde, ist das Krankenhaus zu ersuchen, der Anstalt eine Besserung des Befindens mitzuteilen, die eine Flucht möglich erscheinen lässt.

(2) Kann die sachgemaße Behandlung oder Beobachtung eines Gefangenen nur in einem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das die gebotene Fortdauer der Bewachung nicht zulässt, durchgeführt werden, so sind bei der Entscheidung über eine Verlegung des Gefangenen in dieses Krankenhaus die Dringlichkeit

der Krankenhausunterbringung und die Entweichungsgefahr sowie di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gegeneinander abzuwägen. Eine nicht unverzüglich erforderliche stationäre Behandlung ist danach unter Umständen aufzuschieben.

### VV zu § 66

(1) Der Tod des Gefangenen wird der Aufsichtsbehörde angezeigt.
(2) Das Guthaben des verstorbenen Gefangenen bei der Anstaltszahlstelle und seine Habe werden an den Berechtigten ausgehändigt.

### VV zu § 67

Die VV Nummer 2 Abs 4 Satz 1 und Nummer 3 Abs 4 Satz 1 zu § 39 gelten entsprechend.

### VV zu § 68

1

Zeitungen und Zeitschriften können durch die Anstalt, den Gefangenen oder einen Dritten bestellt werden. Sie dürfen in der Regel nur über den Postzeitungsdienst oder im Abonnement bezogen werden

2

Der Gefangene kann für den Bezug vo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sein Hausgeld, sein Taschengeld und seinen Eigengeld verwenden.

3

Die Weitergabe vo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oder von Teilen und Ausschnitten an andere Gefangene kann untersagt werden, wenn sie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würde.

4

Gebrauchte Zeitungen und Zeitschriften werden anderweitig verwertet oder vernichtet; sie sind auf Antrag des Gefangenen zur Habe zu nehmen, fall dies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weiteren Aufbewahrung hat.

5

Der Gefangene hat die Abbestellung, Umbestellung oder Nachsendung vo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selbst zu veranlassen. Die Anstalt ist zur Nachsendung nicht verpflichtet Gegen für einen entlassenen oder in eine andere Anstalt verlegten Gefangene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ein, hat der Gefangene der Verwertung oder Vernichtung durch die Anstalt nicht zugestimmt und ist auch eine Nachsendung nicht beabsichtigt, so soll die Anstalt die Annahme verweigern.

6

Werde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vom Bezug ausgeschlossen oder einzelne Ausgaben oder Teile vo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vorenthalten, so wird dies dem Gefangenen mitgeteilt.

### VV zu § 69

1

Die Anstaltsleitung kann anordnen, dass Hörfunk- und Fernsehgeräte nur mit Kopfhörer betrieben und dass die Geräte während der Ruhezeit aus dem Haftraum entfernt werden.

2

(1) Hörfunk- oder Fernsehgeräte dürfen nur ausgehändigt werden, wenn feststeht, dass sie den geltenden

Bestimmungen und Auflagen entsprechen und keine unzulässigen Gegenstände enthalten. Die dazu erforderliche Überprüfung und etwa notwendige Änderungen werden durch die Anstalt auf Kosten der Gefangenen veranlasst

(2) Zur Verhinderung eines Missbrauchs kann die Anstaltsleitung die Verplombung der Geräte anordnen.

(3) Reparaturen sind nur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zulässig.

3

Die Gefangenen haben die notwendigen Anzeigen im Zusammenhang mit dem Betrieb des Hörfunkgerätes und des Fernsehgerätes selbst vorzunehmen und für die Entrichtung der entsprechenden Gebühren zu sorgen, sofern sie nicht von der Gebührenpflicht befreit sind. Hierauf sind sie hinzuweisen

4

Die Gefangenen dürfen das Hörfunkgerät und das Fernsehgerate ohne abweichende Erlaubnis nur in ihrem Haftraum betreiben.

5

Die Kosten für die Beschaffung, die Überprüfung, eine notwendige Änderung, die Reparatur und den Betrieb des Hörfunkgerätes und des Fernsehgerätes dürfen die Gefangenen aus ihrem Hausgeld, ihrem Taschengeld und ihrem Eigengeld bestreiten

## VV zu § 74

Wird der Gefangene bei der Entlassung einem Bewährungshelfer oder der Führungsaufsicht unterstellt, so hat die Anstalt unverzüglich mit den zuständigen Stellen Verbindung aufzunehmen, um die Betreuungsmaßnahmen für den Gefangenen abzustimmen.

## VV zu § 75

1

(1) Reisekosten sind die zum Erreichen des Entlassungszieles notwendigen Aufwendungen für die Fahrt

(2) Die Höhe der Reisekosten bestimmt sich grundsätzlich nach dem Tarif für die billigste Wagenklasse des in Betracht kommende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s

(3) Dem Gefangenen ist möglichst ein Gutschein für eine Fahrkarte auszuhändigen

2

Der Gefangene erhält auf Wunsch Reiseverpflegung, wenn er das Entlassungsziel erst nach mehr als vier Stunden erreichen kann

3

Die Überbrückungsbeihilfe soll den Gefangenen in die Lage versetzen, ohne Inanspruchnahme fremder Hilfe seinen notwendigen Lebensunterhalt (Unterkunft, Verpflegung u. ä.) zu bestreiten, bis er ihn aus seiner Arbeit oder aus Zuwendungen aufgrund anderer gesetzlicher Bestimmungen (z. B. Arbeitsförderungsgesetz, Bundessozialhilfegesetz) decken kann. Bei der Bemessung soll von den Leistungen ausgegangen werden, die das Bundessozialhilfegesetz für vergleichbare Fälle vorsieht.

4

(1) Der Gefangene soll in eigener Kleidung entlassen werden. Die Kleidungsstücke werden, soweit erforderlich, auf Kosten des Gefangenen, bei Mittellosigkeit auf Kosten der Anstalt, gereinigt und instand gesetzt.

(2) Entspricht die Kleidung nicht den billigerweise zu stellenden Anforderungen oder ist sie so mangelhaft, dass eine Herrichtung sich nicht lohnt, ist der Gefangene anzuhalten, sich rechtzeitig von seinen Angehörigen

oder Dritten ausreichende Bekleidungsstücke übersenden zu lassen oder sie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s eigenen Mitteln zu kaufen.
(3) Können Bekleidungsstücke auf diesem Wege nicht beschafft werden, werden sie von der Anstalt zur Verfügung gestellt.

5

Für die Ausstattung mit den zur Körperpflege notwendigen Gegenständen, mit Koffern u. ä. gilt Nummer 4 entsprechend.

### VV zu § 76

Die VV zu § 65 gilt entsprechend

### VV zu § 83

1

Die zu verwahrenden Sachen sind in ein Verzeichnis einzutragen. Davon kann, außer bei Wertsachen und wichtigen Schriftstücken (z. B. Personalpapiere, Versicherungsunterlagen), abgesehen werden, wenn die Habe verschlossen verwahrt und der Verschluss nur in Gegenwart des Gefangenen oder eines weiteren Bediensteten geöffnet wird. Die verwahrten Sachen werden vor Verwechslung, Verlust und Verderb geschützt. Wertsachen sind von den übrigen Sachen getrennt besonders sicher zu verwahren. Kleidungsstücke und Wäsche werden, soweit erforderlich, gereinigt und desinfiziert.

2

Eingebrachte Sachen, deren Aushändigung bei der Entlassung oder deren Absendung durch den Gefangenen nicht vertretbar erscheint (z. B. Waffen, Diebeswerkzeug), werden der zuständigen Behörde angezeigt. Trifft sie keine Verfügung, so werden die Sachen dem Gefangenen bei der Entlassung ausgehändigt oder zur Absendung freigegeben. § 83 Abs. 4 bleibt unberührt.

3

Eigengeld, das für einen Gefangenen zu einer bestimmten Verwendung eingezahlt wird, wird nicht als Überbrückungsgeld behandelt, wenn der Verwendungszweck 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dient. Ein Geldbetrag im Sinne des Absatzes 2 Satz 3 der VV zu § 46 wird bis zu dem für den Ersatzeinkauf festgesetzten Höchstbetrag nicht als Überbrückungsgeld behandelt.

### VV zu § 84

1

(1) In geschlossenen Anstalten haben sich die Vollzugsbediensteten durch unvermutete Durchsuchungen laufend davon zu überzeugen, dass die Räume, die von den Gefangenen benutzt werden, und ihre Einrichtungsgegenstände unbeschädigt sind, dass nichts vorhanden ist, was die Sicherheit oder Ordnung gefährden könnte, vor allem, das keine Vorbereitungen zu Angriffen oder Flucht getroffen werden. Diese Räume sind in kurzen Zeitabständen zu durchsuchen. Bei gefährlichen und fluchtverdächtigen Gefangenen kann eine tägliche Durchsuchung angeordnet werden. Türen, Tore, Gitter und Schlösser sind regelmäßig und besonders sorgfältig zu überprüfen.
(2) Gefährliche, fluchtverdächtige und solche Gefangene, bei denen die Gefahr des Selbstmordes oder der Selbstverletzung besteht, sind ebenso wie ihre Sachen häufiger zu durchsuchen.

2

Im offenen Vollzug sind die nach der Aufgabe der Anstalt notwendigen Maßnahmen zu treffen

### VV zu § 85

Die Verlegung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wenn der Gefangene in eine nach dem Vollstreckungsplan nicht zuständige Anstalt verlegt werden soll.

### VV zu § 87

(1) Entweicht ein Gefangener, ist er unverzüglich und nachdrücklich zu verfolgen. Reichen die Mittel, die der Anstalt zur Verfügung stehen, nicht aus, so ist die Hilfe der Polizei und gegebenenfalls anderer Stellen in Anspruch zu nehmen. Führt die unmittelbare Verfolgung oder die von der Anstalt veranlasste Fahndung nicht alsbald zur Wiederergreifung, so sind weitere Maßnahmen der Vollstreckungsbehörde zu überlassen

(2) Die Entweichung und die Maßnahmen, die zur Wiederergreifung des Entwichenen getroffen worden sind, zeigt der Anstaltsleiter unverzüglich - in der Regel fernmündlich voraus - der Aufsichtsbehörde an. Der Anstaltsleiter unterrichtet die Aufsichtsbehörde auch über die Wiederergreifung oder der freiwilligen Rückkehr eines entwichenen Gefangenen.

(3) Der Hergang der Entweichung ist festzustellen. Die Ermittlungen müssen sich darauf erstrecken, ob der Entwichene Helfer hatte und ob die Flucht auf pflichtwidriges Verhalten von Bediensteten oder auf Mängel von Anstaltseinrichtungen zurückzuführen ist Der Anstaltsleiter berichtet der Aufsichtsbehörde schriftlich über das Ergebnis der Ermittlungen und die getroffenen Maßnahmen

### VV zu § 88

(1) Mehrere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können nebeneinander angeordnet werden, wenn die Gefahr anders nicht abgewendet werden kann.

(2) Es ist in angemessenen Abständen zu überprüfen, ob und in welchem Umfang die besonderen Sicherungsmaßnahmen aufrechterhalten werden müssen.

(3) Die Unterbringung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und die Fesselung sind der Aufsichts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wenn sie länger als drei Tage aufrechterhalten werden.

### VV zu § 89

In den Fällen des § 89 Abs. 2 ist der Aufsichtsbehörde so rechtzeitig zu berichten, dass eine Entscheidung vor Ablauf der Frist möglich ist.

### VV zu § 90

(1) Der gefesselte Gefangene wird während des Aufenthaltes im Freien von nicht gefesselten Gefangenen getrennt gehalten.

(2) Zur Einnahme der Mahlzeiten und zur Verrichtung der Notdurft werden Handfesseln, nötigenfalls nach Anlagen von Fußfesseln, abgenommen oder so gelockert, dass der Gefangene nicht behindert ist.

### VV zu § 92

(1) Der Anstaltsarzt ist von der Fesselung eines Gefangenen innerhalb der Anstalt oder von der Unterbringung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unverzüglich zu unterrichten.

(2) Ist der Arzt nicht anwesend, sucht ein im Sanitätsdienst erfahrener Bediensteter den Gefangenen auf

(3) Jeder Besuch und der erhobene Befund sind zu vermerken.

### VV zu § 93

(in der Fassung des § 199 Abs. 1 Nr 4)

(1) Bestehen Zweifel an der Verantwortlichkeit des Gefangenen, ist hierzu eine Stellungnahme des Anstaltsarztes einzuholen. Dies gilt insbesondere bei Gefangenen, die sich eine Selbstverletzung zugefügt haben.

(2) Wird der Gefangene in eine andere Anstalt des Landes verlegt, ist dieser die Forderung zu weiteren Einziehung mitzuteilen. Wird der Gefangene in eine Anstalt eines anderen Landes verlegt, ist die aufnehmende Anstalt um die weitere Einziehung der Forderung im Wege der Amtshilfe zu ersuchen.

### VV zu § 94

(1) Den bei der Anwendung von unmittelbarem Zwang Verletzten ist Beistand zu leisten und ärztliche Hilfe zu verschaffen, sobald die Lage es zulässt. Diese Verpflichtung geht den Pflichten nach den Absätzen 2 und 3 vor.

(2) Ist jemand durch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oder durch sonstige Gewaltanwendung getötet oder erheblich verletzt worden, so sind am Ort des Vorfalls nach Möglichkeit keine Veränderungen vorzunehmen. Das gleiche gilt bei jeder Verletzung, die durch den Gebrauch einer Schusswaffe in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oder bei sonstiger Gewaltanwendung verursacht worden ist.

(3) Jeder Fall der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ist dem Anstaltsleiter unverzüglich zu melden und aktenkundig zu machen. über jeden Gebrauch von Waffen (§ 95 Abs. 4 StVollzG) ist der Aufsichtsbehörde zu berichten.

### VV zu § 96

Ist der Zweck einer Zwangsmaßnahme erreicht oder kann er nicht erreicht werden, so ist ihr Vollzug einzustellen.

### VV zu § 97

1

(1) Werden mehrere Vollzugsbedienstete gemeinsam tätig, so ist nur der den Einsatz Leitende befugt, unmittelbaren Zwang anzuordnen oder einzuschränken. Ist ein den Einsatz leitender Bediensteter nicht bestimmt oder fällt er aus, ohne dass ein Vertreter bestellt ist, tritt der anwesende dienstranghöhere, bei gleichem Dienstrang der dienstältere und bei gleichem Dienstalter der der Geburt nach älteste Vollzugsbedienstete an seine Stelle. Ist dies in dringender Lage nicht sofort feststellbar, darf jeder der hiernach in Betracht kommenden Vollzugsbediensteten die Führung einstweilen übernehmen. Die Übernahme der Führung ist bekannt zu geben.

(2) Das Recht höherer Vorgesetzter, unmittelbaren Zwang anzuordnen oder einzuschränken, bleibt unberührt.

2

(1) Wer sich nicht am Ort des Geschehens befindet, darf eine Anordnung über unmittelbaren Zwang nur treffen, wenn er sich ein genaues Bild von den am Ort des Geschehens herrschenden Verhältnissen verschafft hat, so dass ein Irrtum über die Voraussetzungen nicht zu befürchten ist. Ändern sich zwischen der Anordnung und ihrer Ausführung die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und kann der Anordnende vor der Ausführung nicht mehr verständigt werden, so entscheidet der örtlich leitende Bedienstete über die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Der Anordnende ist unverzüglich zu verständigen.

(2) Der Gebrauch von Waffen darf nur am Ort des Geschehens angeordnet werden.

### VV zu § 100

Bei bestimmten Haftarten gelten für den Schusswaffengebrauch die besonderen Vorschriften des § 178 Abs. 3.

### VV zu § 101

(1) Erklärungen des Gefangenen, die im Zusammenhang mit ärztlichen Zwangsmaßnahmen von Bedeutung sein können, sollen schriftlich festgehalten und von dem Gefangenen unterzeichnet werden. Verweigert der Gefangene seine Unterschrift, wird dies ebenfalls aktenkundig gemacht. Mündliche Willensbekundungen sollen in Gegenwart von Zeugen aufgenommen und in einem Vermerk festgehalten werden, der von dem oder den Zeugen zu unterzeichnen ist. Die schriftliche Erklärung oder der Vermerk über die mündliche Äußerung ist zu den Gesundheitsakten und zu den Gefangenenpersonalakten zu nehmen

(2) Der Anstaltsarzt belehrt den Gefangenen in Anwesenheit eines Zeugen über die Notwendigkeit der ärztlichen Maßnahmen und die Möglichkeit einer zwangsweisen Behandlung sowie über die gesundheitlichen Folgen einer Nichtbehandlung. Die Belehr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3) Ein Gefangener, der beharrlich die Aufnahme von Nahrung verweigert wird ärztlich beobachtet.

### VV zu § 104

(1) Die Bewährungszeit (§104 Abs. 2) kann vor ihrem Ablauf verkürzt oder bis zur zulässigen Höchstfrist verlängert werden

(2) Die Aussetzung zur Bewährung kann ganz oder teilweise widerrufen werden, wenn der Gefangene die ihr zugrundeliegenden Erwartungen nicht erfüllt.

(3) Wird die Aussetzung zur Bewährung nicht widerrufen, darf die Disziplinarmaßnahme nach Ablauf der Bewährungsfrist nicht mehr vollstreckt werden.

### VV zu § 105

Für die Verhängung einer Disziplinarmaßnahme ist der Leiter der Anstalt zuständig, der der Gefangene zurzeit der Verfehlung angehört. Für die nachfolgenden Entscheidungen ist der Leiter der Anstalt zuständig, in der der Gefangene sich zu diesem Zeitpunkt aufhält.

### VV zu § 106

1

(1) Der Gefangene wird darüber unterrichtet, welche Verfehlung ihm zur Last gelegt wird.

(2) Es sind sowohl die belastenden als auch die entlastenden Umstände zu ermitteln. Die Ermittlungen erstrecken sich erforderlichenfalls auch auf die Frage der Verantwortlichkeit des Gefangenen; insoweit ist der Anstaltsarzt zu hören.

(3) Vor der Entscheidung über eine Disziplinarmaßnahme erhält der Gefangene Gelegenheit, sich zu dem Ergebnis der Ermittlungen zu äußern.

2

Mehrere Verfehlungen eines Gefangenen, die gleichzeitig zu beurteilen sind, werden durch eine Entscheidung geahndet.

3

Der Anstaltsleiter kann mit der Durchführung der Ermittlungen und der Anhörung des Gefangenen einen

anderen Bediensteten beauftragen, jedoch nicht den, gegen den sich die Verfehlung richtet.

### VV zu § 107

Das Ergebnis der ärztlichen Beurteil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 VV zu § 108

1

(1) Der Gefangene kann sich jederzeit schriftlich an den Anstaltsleiter wenden.
(2) Sprechstunden von angemessener Dauer sind mindestens einmal wöchentlich einzurichten. Das Nähere regelt die Hausordnung
(3) Dem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ist bei Besichtigung (VV zu § 151 Nr. 1 Abs. 2) unaufgefordert eine Liste der Gefangenen vorzulegen, die sich für eine Anhörung nach § 108 Abs. 2 haben vormerken lassen.

2

(1) Eingaben, Beschwerden und Dienstaufsichtsbeschwerden, die nach Form oder Inhalt nicht den im Verkehr der Behörden üblichen Anforderungen entsprechen oder bloße Wiederholungen enthalten, brauchen nicht beschieden zu werden. Der Gefangene ist entsprechend zu unterrichten Eine Überprüfung des Vorbringens von Amts wegen bleibt unberührt
(2) Dienstaufsichtsbeschwerden gegen Anordnungen und Maßnahmen des Anstaltsleiters, denen nicht abgeholfen wird, sind unverzüglich der Aufsichtsbehörde vorzulegen.

3

Beschwerden, die an eine offenbar unzuständige oder nicht ohne weiteres zuständige Vollzugsbehörde gerichtet sind, leitet der Anstaltsleiter an die zuständige Vollzugsbehörde weiter.

### VV zu § 125

1

(1) Der Aufgenommene wird in einem besonderen Raum untergebracht In Ausnahmefällen kann er mit seinem Einverständnis in der Gruppe untergebracht werden, der er früher angehört hat.
(2) Die Dauer des Aufenthaltes richtet sich nach den Behandlungsbedürfnissen.

2

Im Falle der Aufnahme auf freiwilliger Grundlage gilt § 50 entsprechend.

3

Der auf freiwilliger Grundlage Untergebrachte erhält die in d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mögliche ärztliche Behandlung.

### VV zu § 130

Lockerungen des Vollzuges und Urlaub sind bei Sicherungsverwahrten unbeschadet des § 134 StVollzG zulässig wie bei Strafgefangenen, gegen die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ordnet ist.

### VV zu § 131

1

Die Gesamtdauer des Besuches beträgt mindestens zwei Stunden im Monat.

2

An arbeitsfreien Tagen soll dem Sicherungsverwahrten ermöglicht werden, sich mindestens zwei Stunden im Freien aufzuhalten.

3

Soweit die Unterbringung in abgeschlossenen Wohngruppen erfolgt, bleiben die Hafträume auf Wunsch des (der) darin untergebrachten Sicherungsverwahrten während der Freizeit zeitweise geöffnet, es sei denn, der Anstaltsleiter trifft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für bestimmte Zeiträume oder einzelne Untergebrachte eine abweichende Entscheidung

4

Für Sicherungsverwahrte erhört sich der in Nummer 1 Abs. 2 der VV zu § 22 festgesetzte Betrag auf den sechs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 43 Abs. 2).

5

Dem Sicherungsverwahrten kann über die für Strafgefangene zugelassenen Pakete hinaus der Empfang weiterer Pakete gestattet werden. Das Gewicht kann begrenzt werden. Im Übrigen gelten die VV zu § 33.

### VV zu § 133

Das Taschengeld des Sicherungsverwahrten beträgt 40 v H. der Eckvergütung (§ 43 Abs. 1 StVollzG).

### VV zu § 134

(1) Der Zeitpunkt des Beginns der Erprobung der Entlassung und der Zeitpunkt des Beginns de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richten sich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2)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kommt auch eine Verlegung in eine Anstalt oder eine Abteilung des offenen Vollzuges in Betracht.
(3)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st vor der beabsichtigten Maßnahme zu hören.

### VV zu § 141

1

Im geschlossenen Vollzug sind die Gefangenen außerhalb der Hafträume, insbesondere beim Zusammenkommen in größeren Gemeinschaftsräumen, auf den Höfen und sonst im Freien ständig und unmittelbar zu beaufsichtigen. Soweit nicht besondere Richtlinien entgegenstehen, kann der Anstaltsleiter bestimmen, in welchem Umfang die Aufsicht gelockert werden darf

2

(1) Im offenen Vollzug können bauliche und technische Sicherungsvorkehrungen, insbesondere Umfassungsmauer, Fenstergitter und besonders gesicherte Türen, entfallen. Innerhalb der Anstalt entfällt in der Regel die ständige und unmittelbare Aufsicht.
(2) Für die Gestaltung des offenen Vollzugs gelten folgende Grundsätze:

a. den Gefangenen wird ermöglicht, sich innerhalb der Anstalt nach Maßgabe der dafür getroffenen Regelungen frei zu bewegen
b. die Außentüren der Unterkunftsgebäude können zeitweise unverschlossen bleiben,
c. die Wohnräume der Gefangenen können auch während der Ruhezeit geöffnet bleiben.

### VV zu § 149

Der Tätigkeitsbereich der Angehörigen von Unternehmensbetrieben in den Anstalten wird in einer Anweisung

festgelegt; das Personal wird auf die Einhaltung dieser Anweisung verpflichtet.

### VV zu § 151

1

Die Aufsichtsbehörde sucht alle Anstalten so häufig auf, dass sie stets über den gesamten Vollzug unterrichtet bleibt.

2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regeln den Besuch von Anstalten durch anstaltsfremde Personen sowie den Verkehr von Gefangenen mit Vertretern von Publikationsorganen (Presse, Hörfunk, Film, Fernsehen).

### VV zu § 152

Im Vollstreckungsplan soll auch festgelegt werden, welche Anstalten und Abteilungen Einrichtungen des offenen Vollzuges sind.

### VV zu § 156

1

Die Aufsichtsbehörde bestimmt den Vertreter des Anstaltsleiters.

2

(1) Der Anstaltsleiter legt schriftlich fest, welche Bediensteten in seinem Auftrag Entscheidungen treffen können.
(2) Der Anstaltsleiter kann in fachlichen Angelegenheiten des Dienstes der Seelsorger, Ärzte, Pädagogen, Psychologen und Sozialarbeiter, die sich seiner Beurteilung entziehen, Auskunft verlangen und Anregungen geben.
(3)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r in Absatz 2 genannten Fachkräfte, die nach seiner Überzeugung die Sicherheit der Anstalt, die Ordnung der Verwaltung oder die zweckmäßige Behandlung der Gefangenen gefährden, kann der Anstaltsleiter bis zur Entscheidung der Aufsichtsbehörde aussetzen, wenn eine Aussprache zwischen den Beteiligten zu keiner Einigung führt

3

Der Anstaltsleiter berichtet unverzüglich der Aufsichtsbehörde über außerordentliche Vorkommnisse und über Angelegenheiten, die Anlass zur allgemeiner Regelung geben können

4

Die Übertragung bestimmter Aufgabenbereiche im Sinne des § 156 Abs. 2 Satz 2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 VV zu § 159

Weitere Dienstbesprechungen auch mit den anderen Vollzugsbediensteten der Anstalt finden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statt

### VV zu § 171

1

Im Vollzug der Zivilhaft dürfen über den bloßen Freiheitsentzug hinausgehende Beschränkungen nur angeordnet werden, soweit dies zur Abwendung einer Gefahr fü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Dies

gilt nicht, wenn Zivilhaft in Unterbrechung einer Untersuchungshaft, einer Strafta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2

(1) Bei der Aufnahme und der Entlassung wird der Gefangene vom Anstaltsarzt untersucht.
(2) Der Anstaltsleiter kann in den Fällen der Nummer 1 Satz 1 ausnahmsweise gestatten, dass der Gefangene sich auf eigene Kosten innerhalb der Anstalt von einem Arzt seiner Wahl behandeln lässt.

3

(1) Beantragt der Gefangene seine Ausführung zum Gericht, um die Handlung vorzunehmen oder die Erklärung abzugeben, zu deren Erzwingung, Erwirkung oder Erreichung die Haft angeordnet wurde, so ist der Antrag unverzüglich dem zuständigen Gericht zu übermitteln.
(2) Die Ausführung des Gefangenen bedarf der Zustimmung des Gerichts, das die Haft angeordnet hat. In Eilfällen ist die Zustimmung des Gerichts telefonisch einzuholen. Die Kosten der Ausführung trägt der Gefangene.

4

Nrn. 1 bis 3 finden keine Anwendung, wenn Abschiebungshaft im Wege der Amtshilfe vollzogen wird.

### VV zu § 176

(in der Fassung des § 199 Abs. 1 Nr. 5)

1

(1) Das Arbeitsentgelt eines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n Gefangenen wird in der Form des Zeitlohnes ermittelt.
(2) Für eine sonstige zugewiesene Beschäftigung wird ein Arbeitsentgelt gewährt, wenn ihr Ergebnis wirtschaftlich verwertbar ist und in einem vertretbaren Verhältnis zum Aufwand steht.
(3) Im Übrigen gelten die VV zu § 43 entsprechend.

2

Für das Taschengeld gelten die VV zu § 46 entsprechend.

3

Für das Hausgeld gelten § 47 (in der Fassung des § 199 Abs. 1 Nr 2) und die VV hierzu entsprechend.

4

(1) Nummer 2 der VV zu § 39 gilt entsprechend, soweit dem Gefangenen das Eingehen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gestattet ist. Die Rechte des gesetzlichen Vertreters sind zu beachten.
(2) Die VV zu §§ 50 und 51 gelten entsprechend.

### VV zu § 177

(1) Für eine zugewiesene Beschäftigung wird ein Arbeitsentgelt gewährt, wenn ihr Ergebnis wirtschaftlich verwertbar ist und in einem vertretbaren Verhältnis zum Aufwand steht.
(2) Im Übrigen gelten Nrn 1 bis 3 der VV zu § 43 entsprechend

### VV zu § 195

Der in § 195 bestimmte Beitragsanteil wird einbehalten. Bei unbilliger Härte kann von der Einbehaltung des Betrages abgesehen werden.

# 여 백

프랑스

05

#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1) NOR: JUSX0814219L

#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1) NOR: JUSX0814219L

**자유박탈형의 의미에 관한 예비장** ····· 309
(제1조)

**제1장 행형적 공익사업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규정** ····· 309
제1절 행형적 공익사업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 ····· 309
(제2조 ~ 제10조)
제2절 교정직원 및 민간교정예비역에 관한 규정 ····· 310
섹션 1 : 교정직원 업무 수행 조건(제11조 ~ 제16조) ····· 310
섹션 2 : 민간교정예비역(제17조 ~ 제21조) ····· 311
제3절 수형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312
섹션 1 : 총칙(제22조 ~ 제26조) ····· 312
섹션 2 : 작업 의무(제27조 ~ 제29조) ····· 313
섹션 3 : 시민권리 및 사회권리(제30조 ~ 제33조) ····· 313
섹션 4 : 사생활, 가족생활, 외부와의 관계(제34조 ~ 제42조) ····· 314
섹션 5 : 정보에의 접근(제43조) ····· 316
섹션 6 : 안전(제44조) ····· 316
섹션 7 : 건강(제45조 ~ 제56조) ····· 316
섹션 8 : 검사(제57조, 제58조) ····· 318
섹션 9 : 미성년 수형자(제59조 ~ 제61조) ····· 318
제4절 기타 규정 ····· 318
(제62조, 제63조)

**제2장 형의 선고, 임시구금에 대한 대안책, 자유 박탈형 조정 및 구금과 관련한 규정** ····· 319
제1절 형법 변경 조항 ····· 319
(제64조에서 제69조까지-형법 참조)
제2절 형사소송법 변경 조항 ····· 319
(제70조에서 제97조까지-형사소송법 참조)

**제3장 최종 규정** ····· 319
(제98조 ~제100조)

**원문** ····· 321

# 형집행법[1]

2009-1436호

2009년 11월 24일 시행

## 자유박탈형의 의미에 관한 예비장

### 제1조

자유박탈형 집행제도는 수형자가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형자의 사회복귀 또는 재복귀 준비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보호, 수형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의 이익을 조정한다.

## 제1장 행형적 공익사업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규정

### 제1절 행형적 공익사업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

### 제2조

행형적 공익사업은 형사판결 집행에 참여한다. 이 공익사업은 사회의 이익, 피해자의 권리 및 수형자의 권리를 준수하여 사법당국이 위탁한 사람들의 사회복귀 또는 재복귀와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한다. 이 공익사업은 수형자의 형벌의 개별화 및 조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 제3조

(1) 행형적 공익사업은 법무장관(garde des Sceaux), 법무부 산하에서 다른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및 그 외의 공익 · 민간 법인들과 협력하여 교정행정을 통해 수행된다.

(2) 교정시설의 관리, 감시 및 서기 업무는 교정행정에 의해 수행된다. 그 외의 업무들은 국가평의회 법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자격을 갖춘 공공법 또는 민간법의 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

자유박탈장소의 총감독관은 자유박탈자의 기본권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정행정에 위탁한 자유박탈자에 대한 처우 및 이송 조건을 감독한다. 제40조에 명시된 서신 감독 및 압류 가능성은 자유박탈장소의 총감독관과 수형자간에 교환한 서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5조

(1) 평가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기능조건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각각의 교정시설에 설치된다.

(2) 이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방식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 제6조

수형자가 공화국 옴부즈만을 제정한 1973년 1월 3일자 법 73-6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화국 옴부즈만은 각각의 교도소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지명한다.

---

1) 형집행법-법규집-2011년 12월 31일자 개정안

원문 주소 http //www legifrance gouv fr/affichTexte do?cidTexte=JORFTEXT000021312171&categorieLien=id

**제7조**

하나의 법령을 통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 판결 집행과 관련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별도의 연구소가 범죄범주 및 선고 · 집행된 형벌에 따른 재범 및 누범 비율 및 형벌에 대한 교도소별 비율 산정과 관련한 연간공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교도소별 자살률도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재범 및 누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교도소 내에서 시행되는 조치들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 대표, 협회 대표 및 그 외의 공공 · 민간 법인이 교정시설의 기능 평가 및 교정 정책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법령으로 정해진다.

**제9조**

① 국가는 시범적으로 본 법의 공포에 의거하여 1월 1일부터 최대 4년 동안, 합의를 통해서 지방 또는 코르시카 자치구에(해당 지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영토에 있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평생직업교육활동 조직 및 자금조달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이러한 시범활동으로 인해 각각의 시범 지역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및 인력의 추가부담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한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시범대상인 관할지역 업무에 참여하는 부서 또는 부서의 일부는 지방의 자유 및 책임에 대한 2004년 8월 13일자 법 2004-809호 제112조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결정해야 할 업무 할당 몫을 위하여 무상으로 시범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명시된 기한 종료 6월 전에, 국가는 국회에 이러한 시범활동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대법원장, 검찰총장, 예심재판장, 1심 법원장, 공화국 검사, 자유 및 구금 담당판사, 예심판사, 형벌적용판사, 유아담당판사는 자신의 관할 영토 내에 위치한 모든 교정시설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방문하여야 한다.

## 제2절 교정직원 및 민간교정예비역에 관한 규정

섹션 1 : 교정직원 업무 수행 조건

**제11조**

① 교정행정은 감독인력, 감시인력,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인력 및 행정 및 기술 인력을 포함한다.

② 국가평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정해진 교정시설의 직업윤리법은 앞서 언급한 직원들과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공 · 민간 법인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을 정한다.

③ 동 법령은 교정행정 직원의 선서 조건 및 내용도 정한다.

**제12조**

① 교정행정의 감시직원은 감독직원의 권한 하에서 내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국가가 가진 군대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감시직원은 자신의 안전 업무 차원에서 자유박탈자의 육체적인 온전성을 존중하고, 자유박탈자의 형벌의 개별화 및 사회복귀에 참여한다.

② 감시직원은 정당방위, 도주시도, 또는 지시 명령에 대하여 폭력 또는 육체적인 무반응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만 폭력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한다. 감시직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

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①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교정부서직원은 사법당국의 테두리 안에 놓인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 및 보호관찰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판결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② 이를 위하여, 이 직원은 사법당국의 테두리 안에 놓인 사람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담당하고, 수형자의 출소를 준비하면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제14조**

교정행정의 지방지소 직원은 자신의 직위에 따라 정해진 조건하에서 표현과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15조**

① 교정행정직원은 자신의 업무성격 및 변화에 맞추어 기본교육 및 평생교육을 받는다.

② 이 직원은 자신의 요청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립교정행정학교, 지방지소 또는 그 외의 모든 공공·민간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 또는 전문교육활동에 참여한다.

**제16조**

Ⅰ. 공무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자 법 83-634호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정행정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정부의 보호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를 책임진다.

이러한 정부보호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직계조상, 배우자, 동거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로 인해 협박, 폭력, 난폭행위, 폭언, 비방 또는 모욕의 피해를 당한 해당 공무원과 시민연대협약(PACS, 법적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Ⅱ. 내부안전에 관한 2003년 3월 18일자 법 2003-239호 제112조 제1항에서, 다음 문구 ≪교정행정부서직원,≫는 삭제된다.

### 섹션 2 : 민간교정예비역

**제17조**

① 법무부에 소속되어 보안강화업무 및 직원교육업무, 연구업무 또는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교정예비역을 창설한다. 이 민간교정예비역은 자신들의 보호관찰업무수행 중에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교정부서직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② 이러한 민간교정예비역은 교정행정시설 출신의 은퇴자 중에 자원자들로만 구성된다. 이 예비인력은 교정시설 직업윤리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된 업무수행과 양립불가한 사유로 인해 규율처벌대상자가 된 직원은 민간교정예비역에 자원할 수 없다.

**제18조**

제17조에서 언급한 직원은 교정시설과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민간교정예비역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원자는 법령이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보등록이 채택된 자원자는 갱신 가능한 최소한 1년 기한의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자원자는 일 년에 최소 150일 동안 법무부 산하의 해당 부서를 지원하게 된다.

### 제19조

제17조에서 언급한 직원은 자신의 요청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립교정행정학교, 지방분소 또는 그 외의 모든 공공 · 민간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 또는 전문교육활동에 참여한다.

### 제20조

① 자신의 근무시간 동안, 민간교정예비역으로써 제17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금근로자인 예비인력이 상용년마다 10일 이상 예비인력으로 일을 할 경우, 근로계약, 근로협약 또는 근로단체협약, 또는 고용자와 법무무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기인하는 보다 유리한 규정하에서 자신의 고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② 하나의 법령을 통해 본 조항의 적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법령은 특히 임금근로자가 본 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의 고용자에게 승인요청을 할 때의 형식 및 기한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며, 고용자는 임금근로자에게 거부(만일의 경우) 통보를 하고, 임금근로자는 이러한 고용자의 거부를 교정행정에 통보한다.

### 제21조

① 예비인력의 고용기한은 법령이 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을 받는다.

② 예비인력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민간교정예비역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기한 동안은 중단된다. 그렇지만 이 기한은 근속연수, 승진, 유급휴가, 사회용역에 대한 권한에 있어 법적 관례적 이점을 위하여 실제근무기한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직업적인 해고, 또는 제명, 규율에 대한 처벌이 본 예비인력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재를 이유로 해당 예비인력에게 선고될 수 없다.

③ 민간교정예비역으로서의 근무기간 동안, 해당 예비인력은 민간교정예비역으로써의 근무 이외에서는 면제되는 사회안전 및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법 제L. 161-8조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자신과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질병 · 출산 장애 사망보험혜택을 누린다.

## 제3절 수형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섹션 1 : 총칙

### 제22조

교정행정은 모든 수형자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수형자의 권리 행사는 구속, 안전유지 및 교정시설의 질서 확립, 재범방지, 피해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불가분한 제한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수형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은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장애, 인격을 고려한다.

### 제23조

교정시설 수용 시 수형자는 자신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구두 및 안내책자를 통해, 자신의 수용체계, 권리 및 의무, 자신이 작성할 수 있는 청원서 및 탄원서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교정시설에서의 적용규칙에 대하여서도 통보받아야 하며, 구속기간 동안 이러한 적용규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4조

모든 수형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각의 교정시설에 배치된 무료법률상담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제25조

모든 수형자는 자신의 변호사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

### 제26조

① 수형자는 표현, 신념 및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수형자는 교정시설조직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확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한사항 외에는 다른 제약 없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 섹션 2 : 작업 의무

### 제27조

① 수형자는 교도소장 및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작업 중에 최소한 한 개를 수행해야 한다. 교도작업의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며, 수형자의 나이, 능력, 장애 및 인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형자가 기초교육을 완전히 숙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의 우선권을 읽기, 쓰기, 산수를 익히는 것에 둔다. 수형자가 모국어(프랑스어)를 숙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의 우선권을 국어 학습에 둔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노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학습을 조정하여 조직한다.

### 제28조

교정시설의 질서 및 안전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작업은 남녀 혼성의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 제29조

교정시설의 질서 및 안전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수형자는 자신에게 제안된 작업에 대하여 교정행정의 상담을 받는다.

## 섹션 3 : 시민권리 및 사회권리

### 제30조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법률상의 주소를 선정할 수 있다. 수형자가 개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1. 수형자의 시민권리행사를 위함이다. 각각의 투표 전에, 교도소장은 대리인 투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관할 행정처와 함께 조직한다.
2. 수형자가 구속당시에 도움을 청할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활동 및 가족법의 제L. 121-1조에 명시된 권리의 혜택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3. 수형자의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 제31조

수입이 규정으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수형자는 국가로부터 생활의 물질적인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격의 원조를 받는다. 이러한 원조는 법령이 정한 조건하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 제32조

형사소송법 제717-3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항을 통해 보완된다.

≪수형자의 근로수당은 법령이 정하고, 근로법 제L. 3231-2조에 명시된 최소 상승 임금에 연동되는 시급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시급은 수형자가 고용된 체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33조

①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지정한 직업활동에 참여할 경우, 교정행정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된다. 이 계약서에는 교도소장 및 수형자가 서명을 하며, 수형자의 직업적인 권리 및 의무, 근로조건 및 근로수당이 명시된다.

② 특히, 이 계약서는 수형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하에서 근로계약서가 부재하더라도 노동법 제L. 5132-1조부터 제L. 5132-17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제활동에 의한 사회복귀에 관한 규정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본 조 적용 차원에서, 교도소장은 장애인 수형자를 위한 직업 활동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관한 처우의 공정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 섹션 4 : 사생활, 가족생활, 외부와의 관계

### 제34조

예심을 마치고,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법원 출석일까지 가족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제35조

①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유지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는 가족과의 면회를 통해 또는 수형자의 형사상 상황이 허락한다면, 교정시설을 나갈 수 있는 허가를 통해 수형자가 가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미결수용자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수형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의 면회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정당국은 질서 및 안전 유지 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유로만 수형자가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증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또한, 교정당국은 동일한 사유로 또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 면회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경우에 가족구성원과 다른 사람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허가증의 중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방문허가증은 사법당국이 발행한다.

④ 방문허가증 발행 거부결정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제36조

①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가족실 또는 가족면회실은 모든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수형자는 가족실 또는 가족면회실 방문을 최소한 1분기당 한 번 요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방문 기한은 방문자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이러한 권리는 관할 사법당국의 동의하에서만 행사된다.

### 제37조

I. 민법 제515-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제1항은 다음 문구로 보완된다.

   ≪또는, 당사자들 중의 한 명의 거주지가 관할 지역에 있어, 해당인의 정착에 심각한 방해가 있는 경우,≫

2. 제1항 후에, 다음과 같은 작성된 한 개의 항을 삽입한다.

   ≪심각한 방해가 있는 경우, 공화국 검찰은 법원 서기에게 시민연대협약(PACS) 등록을 위하여 당사자 중의 한 명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방문할 것을 요구한다.≫

3. 제2항에서는 다음 단어 ≪사람들≫이 다음 문구 ≪시민연대협약(PACS)을 체결한 사람들≫로 교체된다.

4. 마지막 항에서, 다음 문구 ≪두 번째 및 네 번째≫는 다음 문구 ≪세 번째 및 다섯 번째≫로 교체된다.

Ⅱ. 동 법 제515-5조 제1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다음 단어 ≪두 번째≫는 다음 단어로 교체된다. ≪세 번째≫

Ⅲ. 동법 제2499조에서, ≪다음 문구 "제1심 법원 서기과"≫에 이어 다음 문구를 삽입한다.

≪다음 문구 "제1심 법원 서기과"는 다음 문구 "제1심 법원 서기"로 교체된다≫

### 제38조

교정시설과 해당 도(道, 데파르망)간의 협약은 자녀와 함께 수용된 여성수형자에게 제안되는 사회적인 동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자녀의 사회성을 위하여 자녀가 교정시설 밖으로 정기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 제39조

(1) 수형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수형자는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 외의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가 허용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 미결수용자는 사법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전화통화는 질서 및 안전유지 또는 범죄예방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거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감독은 형사소송법 제727-1조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제40조

(1) 수형자는 사법당국이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자신이 선택한 모든 사람과 서면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이러한 서신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또는 질서 및 안전유지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 교정행정에 의해 감독을 받고 압류될 수 있다. 그 외에 미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사법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법당국에 통보된다.

(3) 수형자와 변호인, 프랑스 및 국제행정사법당국(해당 목록은 법령에 의해 정해짐) 및 교정시설이 동의한 부속사제 간에 주고받은 서신은 감독을 받거나 압류될 수 없다.

(4) 교정당국이 어떤 수형자의 서신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정당국은 해당 수형자에게 그 결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

(1) 수형자는 자신의 사진 또는 목소리 배포 또는 사용이 신원확인을 하기 위한 성격인 경우에 이러한 사진 또는 목소리 배포 또는 사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2) 교정행정은 수형자의 사진 또는 목소리 배포 또는 사용이 해당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 이상, 그리고 공공질서보호, 범죄예방, 피해자 권리보호, 또는 제삼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확인된 이상, 수형자 동의에 반하여 이러한 사진 또는 목소리 배포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미결수용자의 사진 또는 목소리의 배포 및 이용은 사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2조

모든 수형자는 개인자료의 기밀유지권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자료는 교정시설의 서기과에 제출하여 관련인에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수용기록사유를 명시한 서류는 수형자가 수용 즉시 서기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섹션 5 : 정보에의 접근

**제43조**

수형자는 종이출판물 및 영상출판물에 접근한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수형자가 시설 직원과 시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교도소 직원 및 협력자와 수형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나 징후를 담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섹션 6 : 안전

**제44조**

① 교정행정은 각각의 수형자에게 모든 공동장소 및 개별장소에서 수형자의 육체적인 온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② 잘못이 없더라도,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행위로 인한 수형자 사망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동료 수형자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행위의 피해자인 수형자는 모두 특별감시 및 구금체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수형자는 우선적으로 독방에 수용된다.

④ 수형자가 자살한 경우, 교정행정은 사망 정황에 대하여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절차들을 돕는다.

섹션 7 : 건강

**제45조**

교정행정은 보건법 제L. 614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의료 및 진료에 관한 비밀 권리를 존중한다.

**제46조**

① 수형자의 건강관리는 보건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보건법 제L. 6112-1조의 12°에 정해진 공공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시설이 담당한다.

② 진료의 질 및 연속성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형자에게 보장된다.

③ 지역보건소장, 지역간 교정업무담당자, 교도소장, 해당 보건시설의 장이 서명한 협약서는 수형자가 국민전체가 받는 혜택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하여 호출되는 의료진의 개입을 보장하는 조건을 정한다.

④ 수형자의 심리상태는 수용 당시와 수용기간 동안에 고려된다. 교정행정은 위생조치 및 교육에 관해 활동하는 여러 개입자 간의 공조가 잘 되도록 한다.

⑤ 교정행정은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질환예방에 적절한 숙박, 위생에 대한 이해, 영양 및 공동생활을 보장한다.

**제47조**

여성수형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보건정책을 여성수형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여성수형자를 여성수형자용 구역이나 전용시설에 구금한다.

**제48조**

교도소내로 개입하는 의사와 의료진에게 진료나 건강예방과 관련 없는 행위나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9조**

교정시설 직원의 입회 없이 수형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방문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법 제L. 1110-11조에 명시된 말기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2. 동법 제L. 1111-5조에 명시된 미성년인 환자들을 돌보는 성인
3. 동법 제L. 1111-6조에 명시된 환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4. 동법 제L. 1111-7조에 명시된 환자들의 진료차트 정보조회 시의 입회자
5. 동법 제L. 2212-7조 제3항에 명시된 사람들, 즉 중절 수술 시에 미성년인 수형자들을 보살피는 사람

**제50조**

(1) 보건법 제L. 1111-6-1조에 명시된 장애상태의 모든 수형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교정행정은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결정을 통해 보조자 선정에 반대할 수 있다.

**제51조**

수용시에 수형자에게 마약, 술, 담배 소비와 관련한 종합 검진을 제안한다. 이러한 종합검진은 예방차원에서 보건을 목적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며, 기밀은 유지된다.

**제52조**

모든 출산 또는 산부인과 검사는 여성수형자의 존엄성 준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직원의 입회 없이, 보호장비를 채우지 아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3조**

모든 수형자에게 출소 전 달에 왕진을 제공한다

**제54조**

본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 내에, 각각의 수형자에 대한 단일 전자진단서가 만들어진다.

**제55조**

병원개선 및 환자, 건강 및 국토에 관한 2009년 7월 21일 법 2009-879호 제118조에서 기인한 문구에서 보건법 제L. 1431-2조 2은 다음과 작성된 1를 통해 보완된다.

≪1) 이는 수형자의 건강상의 필요를 평가하고 확인한다. 이는 교정시설내에서의 진료공급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조절한다.≫

**제56조**

보건법 제L. 1434-9조의 4°에 의거하여, 앞서 언급한 2009년 7월 21일 법 2009-879호 제118조에서 기인한 문구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 5°를 삽입한다.

≪5. 교정시설 내에서의 진료공급에 관한 목적 및 방법≫

섹션 8 : 검사

**제57조**

① 신체검사는 범죄추정 또는 수형자의 거동이 교정시설내 사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가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한다. 신체검사의 성격과 횟수는 이러한 필요성과 수형자의 인격에 절대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② 전체 신체검사는 손으로 하는 간단한 신체검사 또는 전자감지기 사용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신체내부검사는 특별한 타당한 사유 없이는 금지된다. 신체내부검사는 이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 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사에 의해서만 시행 될 수 있다.

**제58조**

감시카메라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육체적인 온전성 침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 이 권리는 본 법의 시행 이후에 개방되는 모든 교정시설에는 하나의 의무가 된다.

섹션 9 : 미성년수형자

**제59조**

교정행정은 미성년수형자에게 유아에게 인정된 기본권리 준수를 보장한다.

**제60조**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미성년수형자는 교육성격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61조**

본 장의 적용방식은 국가평의회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 제4절 기타 규정

**제62조**

범죄변화에 따른 사법권의 적용에 관한 2004년 3월 9일자 법 2004-204호 제20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국가평의회 법령은 행정적 성격의 국립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신에게 위탁된 업무에 대해 협약을 통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전적인 작업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첫 문장 서두에서, 다음 문구 ≪이 기구≫는 ≪이 기관≫이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b) 두 번째 문장에서, 다음 문구 ≪이 기구≫ 는 ≪이 기관≫이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3. 마지막 항의 서두에서, 다음 문구 ≪법무부 공사작업감독기구(L'Agence de maîtrise d'ouvrage des travaux du ministère de la justice)[2]≫ 는 ≪이 기관≫이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제63조**

행형적 공익사업과 관련한 1987년 6월 22일자 법 87-432호 제1조는 폐기된다.

---

2)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써 사업 분야는 건축과 집수리이다 현재는 아피즈(APIJ, Agence Publique pour l'Immobilier de la Justice )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 제2장 형의 선고, 임시구금에 대한 대안책, 자유 박탈형 조정 및 구금과 관련한 규정

### 제1절 형법 변경 조항

(제64조에서 제69조까지 – 형법 참조)

### 제2절 형사소송법 변경 조항

(제70조에서 제97조까지 – 형사소송법 참조)[3)]

## 제3장 최종 규정

### 제98조

범죄예방에 관한 2007년 3월 5일 법 2007-297호 제5조의 끝에서 두 번째 항 전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 하나의 항을 삽입한다.

≪국가, 코뮌(commune, 주민자치), 코뮌들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도(道), 지방,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법인들에 의해 수행된 행동들은 이들이 수형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범죄예방을 위한 각부 자금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99조

Ⅰ. 본 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적용가능하다.

1.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 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98조를 제외하고,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 적용된다.
2. 제3조, 제21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 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98조를 제외하고, 월리스푸투나제도(Wallis and Futuna)에 적용된다.

Ⅱ. 제3조와 제8조 적용을 위하여, 뉴칼레도니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된다.

Ⅲ. 국가는 제46조 적용방식을 정의내리기 위하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의 관할청과 [2009년 11월 19일자 헌법법원 판결 2009-593 DC호를 통해 헌법에 위헌되는 규정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

Ⅳ. 제21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마요트섬에 적용된다.

Ⅴ. 제5조의 예외로, 단일평가위원회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교정시설 전체에 설치된다.

Ⅵ. 생피에르에미클롱과 월리스푸투나제도에서 제27조 적용을 위하여, 다음 문구 ≪그리고,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담당 부서장≫은 삭제된다.

Ⅶ. 월리스푸투나제도 및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제30조 2.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2. 수형자가 수용 당시에 개인주소가 없거나 이를 증빙할 수 없을 때, 지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을 통해 정해진 사회원조서비스 및 권리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기 위하여≫

3) 프랑스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년 11월) 참조

Ⅷ. 월리스푸투나제도 및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제45조 적용을 위하여, 다음 문구 ≪, 보건법 제L. 6141-5조의 제3항과 제4항을 준수하여≫는 삭제된다 .

Ⅸ. 제37조는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Ⅹ. 월리스푸투나제도 및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제38조 적용을 위하여, 다음 문구 ≪도(道)≫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기관들≫로 교체된다.

XI. 월리스푸투나제도 및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제46조 적용을 위하여, 다음 문구 ≪보건법에 의해≫는 ≪지역보건소장≫으로 교체되고, 다음 문구 ≪지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을 통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기관들≫로 교체된다.

XII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의 제49조 1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 문구 ≪, 보건법의 제L. 1110-11조가 대상으로 하는≫는 삭제된다.

## 제100조

1. 본 법의 공포일로부터 5년 내에, 교정시설의 내부 배치 또는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수로 인해 독거실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다는 타당한 요청하에 교도소에 독거실 설치에 대하여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하지만, 수형자 또는 정보담당 사법관의 동의하에 수형자는 독거실 수용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1) NOR: JUSX0814219L[1)]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ont adopté,
Vu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93 DC du 19 novembre 2009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a loi dont la teneur suit .

## TITRE PRELIMINAIRE DU SENS DE LA PEINE DE PRIVATION DE LIBERTE

**Article 1**

Le régime d'exécution de la peine de privation de liberté concilie la protection de la société, la sanction du condamné et les intérêts de la victime avec la nécessité de préparer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de la personne détenue afin de lui permettre de mener une vie responsable et de prévenir la commission de nouvelles infractions.

## TITRE IER : DISPOSITIONS RELATIVES AU SERVICE PUBLIC PENITENTIAIRE ET A LA CONDITION DE LA PERSONNE DETENUE

### CHAPITRE IER : DISPOSITIONS RELATIVES AUX MISSIONS ET A L'ORGANISATION DU SERVICE PUBLIC PENITENTIAIRE

**Article 2**

Le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participe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pénales. Il contribue à l'insertion ou à la réinsertion des personnes qui lui sont confiées par l'autorité judiciaire, à la prévention de la récidive et à la sécurité publique dans le respect des intérêts de la société, des droits des victimes et des droits des personnes détenues. Il est organisé de manière à assurer l'individualisation et l'aménagement des peines des personnes condamnées.

**Article 3**

Le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est assuré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avec le concours des autres services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s associations et d'autres 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

Les fonctions de direction, de surveillance et de greffe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sont assurées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Les autres fonctions peuvent être confiées à des personnes de droit public ou privé bénéficiant d'une habilitation dans des conditions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1) http://www legifrance gouv fr/affichTexte do?cidTexte=JORFTEXT000021312171&categorieLien=id

**Article 4**

Le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contrôle les conditions de prise en charge et de transfèrement des personnes privées de liberté confiées à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afin de s'assurer du respect de leurs droits fondamentaux.

La possibilité de contrôler et de retenir les correspondances prévue par l'article 40 ne s'applique pas aux correspondances échangées entre le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et les personnes détenues.

**Article 5**

Un conseil d'évaluation est institué auprès de chaque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afin d'évaluer les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e l'établissement et de proposer, le cas échéant, toutes mesures de nature à les améliorer.

La composi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ce conseil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Article 6**

Afin de permettre aux personnes détenues de bénéficier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73-6 du 3 janvier 1973 instituant un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le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désigne pour chaque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un ou plusieurs délégués affectés à cette mission.

**Article 7**

Un décre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un observatoire indépendant, chargé de collecter et d'analyser les données statistiques relatives aux infractions,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en matière pénale, à la récidive et à la réitération, établit un rapport annuel et public comportant les taux de récidive et de réitération en fonction des catégories d'infraction et des peines prononcées et exécutées, ainsi qu'une estimation de ces taux par établissement pour peines. Il comprend également le taux de suicide par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 rapport présente une évaluation des actions menées au sein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en vue de prévenir la récidive et la réitération, favoriser la réinsertion et prévenir le suicide.

**Article 8**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représentant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représentants des associations et autres 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 peuvent participer aux instances chargées de l'évaluation du fonctionnement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ainsi que du suivi des politiques pénitentiaires sont fixées par décret.

**Article 9**

L'Etat peut, à titre expérimental pour une durée maximale de trois ans à compter du 1er janvier suivant la publication de la présente loi, confier par convention aux régions ou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sur leur demande, l'organisation et le financement des action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es personnes détenues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itué sur leur territoire.

Six mois avant le terme de la période prévue au premier alinéa, le Gouvernement adresse au Parlement un rapport sur la mise en œuvre de cette expérimentation.

**Article 10**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le procureur général,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le juge des enfants visitent au moins une fois par an chaque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itué dans leur ressort territorial de compétence.

## CHAPITRE II : DISPOSITIONS RELATIVES AUX PERSONNELS PENITENTIAIRES ET A LA RESERVE CIVILE PENITENTIAIRE

### SECTION 1 : DES CONDITIONS D'EXERCICE DES MISSIONS DES PERSONNELS PENITENTIAIRES

**Article 11**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comprend des personnels de direction, des personnels de surveillance, des personnels d'insertion et de probation et des personnels administratifs et techniques.

Un code de déontologie du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établi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règles que doivent respecter ces agents ainsi que les agents des personnes de droit public ou privé habilitées en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3.

Ce même décret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gent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prêtent serment ainsi que le contenu de ce serment.

**Article 12**

Les personnels de surveillance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constituent, sous l'autorité des personnels de direction, l'une des forces dont dispose l'Etat pour assurer la sécurité intérieure.

Dans le cadre de leur mission de sécurité, ils veillent au respect de l'intégrité physique des personnes privées de liberté et participent à l'individualisation de leur peine ainsi qu'à leur réinsertion.

Ils ne doivent utiliser la force, le cas échéant en faisant usage d'une arme à feu, qu'en cas de légitime défense, de tentative d'évasion ou de résistance par la violence ou par inertie physique aux ordres donnés. Lorsqu'ils y recourent, ils ne peuvent le faire qu'en se limitant à ce qui est strictement nécessaire

**Article 13**

Les personnels des services pénitentiaires d'insertion et de probation sont chargés de préparer et d'exécuter les décisions de l'autorité judiciaire relatives à l'insertion et à la probation des personnes placées sous main de justice, prévenues ou condamnées.

A cette fin, ils mettent en œuvre les politiques d'insertion et de prévention de la récidive, assurent le suivi ou le contrôle des personnes placées sous main de justice et préparent la sortie des personnes détenues.

**Article 14**

Les personnels des services déconcentré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exercent leurs droits d'expression et de manifesta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ur statut.

**Article 15**

Les personnel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ont tenus de suivre une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adaptée à la nature et à l'évolution de leurs missions.

Ils participent, à leur demande ou à celle de l'administration, aux actions de formation ou de perfectionnement assurées par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les services déconcentrés ou

tout autre organisme public ou privé de formation.

**Article 16**

I. — La protection de l'Etat dont bénéficient les agents public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en vertu de l'article 11 de la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couvre les préjudices qu'ils subissent à l'occasion ou du fait de leurs fonctions.

Elle est étendue à leurs enfants, leurs ascendants directs, leurs conjoints, leurs concubins ou aux personnes auxquelles ils sont liés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orsque, du fait des fonctions de ces agents, ils sont victimes de menaces, violences, voies de fait, injures, diffamations ou outrages.

II. — Au premier alinéa du I de l'article 112 de la loi n° 2003-239 du 18 mars 2003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les mots : «les agents des servic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ont supprimés.

## SECTION 2 : DE LA RESERVE CIVILE PENITENTIAIRE

**Article 17**

Il est créé une 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destinée à assurer des missions de renforcement de la sécurité relevant du ministère de la justice ainsi que des missions de formation des personnels, d'étude ou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La 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peut également être chargée d'assister les personnels des services pénitentiaires d'insertion et de probation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de probation.

La réserve est exclusivement constituée de volontaires retraités, issus des corp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Les réservistes sont soumis au code de déontologie du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Un agent ayant fait l'objet d'une sanction disciplinaire pour des motifs incompatibles avec l'exercice des miss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ne peut se porter volontaire pour entrer dans la réserve civile.

**Article 18**

Les agents mentionnés à l'article 17 peuvent demander à rejoindre la 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dans la limite de cinq ans à compter de la fin de leur lien avec le service

Les volontaires doivent remplir des conditions d'aptitude fixées par décret. Ceux dont la candidature a été acceptée souscrivent un engagement contractuel d'une durée minimale d'un an renouvelable. Ils apportent leur soutien aux services relevant du ministère de la justice, dans la limite de cent cinquante jours par an.

**Article 19**

Les agents mentionnés à l'article 17 participent, à leur demande ou à celle de l'administration, aux actions de formation ou de perfectionnement assurées par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les services déconcentrés ou tout autre organisme public ou privé de formation.

**Article 20**

Le réserviste exerçant des fonctions salariées qui effectue les missions prévues à l'article 17 au titre de la 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pendant son temps de travail doit obtenir, lorsque leur durée dépasse dix jours ouvrés par année civile, l'accord de son employeur, sous réserve de dispositions plus favorables résultant du contrat de travail, de conventions ou accords collectifs de travail, ou de conventions conclues entre l'employeur et le ministre de la justice.

Un décre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Il fixe notamment l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élai dans lesquelles le salarié adresse sa demande d'accord à son employeur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mployeur notifie au salarié son refus éventuel et le salarié inform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de ce refus.

**Article 21**

Les périodes d'emploi des réservistes sont indemnisée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Dans le cas où le réserviste exerce une activité salariée, son contrat de travail est suspendu pendant la période où il effectue des missions au titre de la 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Toutefois, cette période est considérée comme une période de travail effectif pour les avantages légaux et conventionnels en matière d'ancienneté, d'avancement, de congés payés et de droits aux prestations sociales.

Aucun licenciement ou déclassement professionnel, aucune sanction disciplinaire ne peuvent être prononcés à l'encontre d'un réserviste en raison des absences résultant de la présente section.

Pendant la période d'activité dans la réserve, l'intéressé bénéficie, pour lui-même et ses ayants droit, des prestations des assurances maladie, maternité, invalidité et décè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61-8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du régime de sécurité sociale dont il relève en dehors de son service dans la réserve.

## CHAPITRE III :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ET DEVOIRS DES PERSONNES DETENUES

### SECTION 1 : DISPOSITIONS GENERALES

**Article 22**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garantit à toute personne détenue le respect de sa dignité et de ses droits. L'exercice de ceux-ci ne peut faire l'objet d'autres restrictions que celles résultant des contraintes inhérentes à la détention, du maintien de la sécurité et du bon ordre des établissements, de la prévention de la récidive et de la protection de l'intérêt des victimes. Ces restrictions tiennent compte de l'âge, de l'état de santé, du handicap et de la personnalité de la personne détenue.

**Article 23**

Lors de son admission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personne détenue est informée oralement, dans une langue compréhensible par elle, et par la remise d'un livret d'accueil,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son régime de détention, à ses droits et obligations et aux recours et requêtes qu'elle peut former. Les règles applicables à l'établissement sont également portées à sa connaissance et lui sont rendues accessibles pendant la durée de sa détention.

**Article 24**

Toute personne détenue doit pouvoir connaître ses droits et bénéficier, pour ce faire, d'un dispositif de consultations juridiques gratuites mis en place dans chaque établissement.

**Article 25**

Les personnes détenues communiquent librement avec leurs avocats.

**Article 26**

Les personnes détenues ont droit à la liberté d'opinion, de conscience et de religion. Elles peuvent exercer le culte de leur choix, selon les conditions adaptées à l'organisation des lieux, sans autres limites que celles imposées par la sécurité et le bon ordre de l'établissement

**SECTION 2 : DE L'OBLIGATION D'ACTIVITE**

**Article 27**

Toute personne condamnée est tenue d'exercer au moins l'une des activités qui lui est proposée par le chef d'établissement et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ès lors qu'elle a pour finalité la réinsertion de l'intéressé et est adaptée à son âge, à ses capacités, à son handicap et à sa personnalité.

Lorsque la personne condamnée ne maîtrise pas les enseignements fondamentaux, l'activité consiste par priorité en l'apprentissage de la lecture, de l'écriture et du calcul. Lorsqu'elle ne maîtrise pas la langue française, l'activité consiste par priorité en son apprentissage. L'organisation des apprentissages est aménagée lorsqu'elle exerce une activité de travail.

**Article 28**

Sous réserve du maintien du bon ordre et de la sécurité des établissements et à titre dérogatoire, des activités peuvent être organisées de façon mixte.

**Article 29**

Sous réserve du maintien du bon ordre et de la sécurité de l'établissement,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consultées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ur les activités qui leur sont proposées.

**SECTION 3 : DES DROITS CIVIQUES ET SOCIAUX**

**Article 30**

Les personnes détenues peuvent élire domicile auprès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

1° Pour l'exercice de leurs droits civiques, lorsqu'elles ne disposent pas d'un domicile personnel. Avant chaque scrutin, le chef d'établissement organise avec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une procédure destinée à assurer l'exercice du vote par procuration ;

2° Pour prétendre au bénéfice des droits mentionnés à l'article L. 121-1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lorsqu'elles ne disposent pas d'un domicile de secours au moment de leur incarcération ou ne peuvent en justifier ;

3° Pour faciliter leurs démarches administratives.

**Article 31**

Les personnes détenues dont les ressources sont inférieures à un montant fixé par voie réglementaire reçoivent de l'Etat une aide en nature destinée à améliorer leurs conditions matérielles d'existence. Cette aide peut aussi être versée en numéraire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décret.

**Article 32**

L'article 717-3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défini à l'article L. 3231-2 du code du travail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icle 33**

La participation des personnes détenues aux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rganisées dans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donne lieu à l'établissement d'un acte d'engagement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Cet acte, signé par le chef d'établissement et la personne détenue, énonce les droits et obligations professionnels de celle-ci ainsi que ses conditions de travail et sa rémunération.

Il précise notamment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la personne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adaptées à sa situation et nonobstant l'absence de contrat de travail, bénéfici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prévues aux articles L. 5132-1 à L. 5132-17 du code du travail.

Dans le cadre de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 chef d'établissement s'assure que les mesures appropriées sont prises afin de garantir l'égalité de traitement en matière d'accès et de maintien à l'activité professionnelle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détenues.

**SECTION 4 : DE LA VIE PRIVEE ET FAMILIALE ET DES RELATIONS AVEC L'EXTERIEUR**

**Article 34**

Les prévenus dont l'instruction est achevée et qui attendent leur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vent bénéficier d'un rapprochement familial jusqu'à leur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Article 35**

Le droit des personnes détenues au maintien des relations avec les membres de leur famille s'exerce soit par les visites que ceux-ci leur rendent, soit, pour les condamnés et si leur situation pénale l'autorise, par les permissions de sortir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Les prévenus peuvent être visités par les membres de leur famille ou d'autres personnes, au moins trois fois par semaine, et les condamnés au moins une fois par semaine.

L'autorité administrative ne peut refuser de délivrer un permis de visite aux membres de la famille d'un condamné, suspendre ou retirer ce permis que pour des motifs liés au maintien du bon ordre et de la sécurité ou à la prévention des infractions.

L'autorité administrative peut également, pour les mêmes motifs ou s'il apparaît que les visites font obstacle à la réinsertion du condamné, refuser de délivrer un permis de visite à d'autres personnes que les membres de la famille, suspendre ce permis ou le retirer.

Les permis de visite des prévenus sont délivrés par l'autorité judiciaire.

Les décisions de refus de délivrer un permis de visite sont motivées.

**Article 36**

Les unités de vie familiale ou les parloirs familiaux implantés au sein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peuvent accueillir toute personne détenue.

Toute personne détenue peut bénéficier à sa demande d'au moins une visite trimestrielle dans une unité de vie familiale ou un parloir familial, dont la durée est fixée en tenant compte de l'éloignement du visiteur. Pour les prévenus, ce droit s'exerce sous réserve de l'accord de l'autorité judiciaire compétente.

**Article 37**

I. — L'article 515-3 du code civil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ou, en cas d'empêchement grave à la fixation de celle-ci, dans le ressort duquel se trouve la résidence de l'une des parties» ;

2° Après le premier alinéa,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En cas d'empêchement grav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quiert le greffier du tribunal d'instance de se transporter au domicile ou à la résidence de l'une des parties pour enregistrer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

3° Au deuxième alinéa, le mot : «elles» est remplacé par les mots . «les personnes qui concluent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4° Au dernier alinéa, les mots : «deuxième et quatrièm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troisième et cinquième».

II. — A la prem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15-5 du même code, le mot : «deuxième» est remplacé par le mot : « troisième ».

III. — A l'article 2499 du même code, après les mots : «"greff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sont insérés les mots : «,les mots : "greffier du tribunal d'instanc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greffier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Article 38**

Une convention entr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le département définit l'accompagnement social proposé aux mères détenues avec leurs enfants et prévoit un dispositif permettant la sortie régulière des enfants à l'extérieur de l'établissement pour permettre leur socialisation.

**Article 39**

Les personnes détenues ont le droit de téléphoner aux membres de leur famille. Elles peuvent être autorisées à téléphoner à d'autres personnes pour préparer leur réinsertion. Dans tous les cas, les prévenus doivent obtenir l'autorisation de l'autorité judiciaire.

L'accès au téléphone peut être refusé, suspendu ou retiré, pour des motifs liés au maintien du bon ordre et de la sécurité ou à la prévention des infractions et, en ce qui concerne les prévenus, aux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Le contrôle des communications téléphoniques est effectué conformément à l'article 727-1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40**

Les personnes condamnées et, sous réserve que l'autorité judiciaire ne s'y oppose pas, les personnes prévenues peuvent correspondre par écrit avec toute personne de leur choix.

Le courrier adressé ou reçu par les personnes détenues peut être contrôlé et retenu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lorsque cette correspondance paraît compromettre gravement leur réinsertion ou le maintien du bon ordre et la sécurité. En outre, le courrier adressé ou reçu par les prévenus est communiqué à l'autorité 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qu'elle détermine.

Ne peuvent être ni contrôlées ni retenues les correspondances échangées entre les personnes détenues et leur défenseu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et judiciaires françaises et internationale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t les aumôniers agréés auprès de l'établissement.

Lorsqu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décide de retenir le courrier d'une personne détenue, elle lui notifie sa décision.

**Article 41**

Les personnes détenues doivent consentir par écrit à la diffusion ou à l'utilisation de leur image ou de leur voix lorsque cette diffusion ou cette utilisation est de nature à permettre leur identification.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peut s'opposer à la diffusion ou à l'utilisation de l'image ou de la voix d'une personne condamnée, dès lors que cette diffusion ou cette utilisation est de nature à permettre son identification et que cette restriction s'avère nécessaire à la sauvegarde de l'ordre public, à la prévention des infractions, à la protection des droits des victimes ou de ceux des tiers ainsi qu'à la réinsertion de la personne concernée. Pour les prévenus, la diffusion et l'utilisation de leur image ou de leur voix sont autorisées par l'autorité judiciaire.

**Article 42**

Toute personne détenue a droit à la confidentialité de ses documents personnels. Ces documents peuvent être confiés au greffe de l'établissement qui les met à la disposition de la personne concernée. Les documents mentionnant le motif d'écrou de la personne détenue sont, dès son arrivée, obligatoirement confiés au greffe

## SECTION 5 : DE L'ACCES A L'INFORMATION

**Article 43**

Les personnes détenues ont accès aux publications écrites et audiovisuelles. Toutefois, l'autorité administrative peut interdire l'accès des personnes détenues aux publications contenant des menaces graves contre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des établissements ou des propos ou signes injurieux ou diffamatoires à l'encontre des agents et collaborateurs du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ainsi que des personnes détenues.

## SECTION 6 : DE LA SECURITE

**Article 44**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doit assurer à chaque personne détenue une protection effective de son intégrité physique en tous lieux collectifs et individuels.

Même en l'absence de faute, l'Etat est tenu de réparer le dommage résultant du décès d'une personne détenue causé par des violences commises au sein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ar une autre personne détenue.

Toute personne détenue victime d'un acte de violence caractérisé commis par un ou plusieurs codétenus fait l'objet d'une surveillance et d'un régime de détention particuliers. Elle bénéficie prioritairement d'un encellulement individuel.

Lorsqu'une personne détenue s'est donné la mort,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informe immédiatement sa famille ou ses proches des circonstances dans lesquelles est intervenu le décès et facilite, à leur demande, les démarches qu'ils peuvent être conduits à engager

## SECTION 7 : DE LA SANTE

### Article 45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respecte le droit au secret médical des personnes détenues ainsi que le secret de la consultation, dans le respect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L. 614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Article 46

La prise en charge de la santé des personnes détenues est assurée par le service public hospitali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La qualité et la continuité des soins sont garanties aux personnes détenues dans des conditions équivalentes à celles dont bénéficie l'ensemble de la population.

Un protocole signé par le 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régionale de santé, le directeur interrégional des services pénitentiaires,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de santé concerné défini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est assurée l'intervention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appelés à intervenir en urgence dans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afin de garantir aux personnes détenues un accès aux soins d'urgence dans des conditions équivalentes à celles dont bénéficie l'ensemble de la population.

L'état psychologique des personnes détenues est pris en compte lors de leur incarcération et pendant leur détention.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favorise la coordination des différents intervenants agissant pour la prévention et l'éducation sanitaires.

Elle assure un hébergement, un accès à l'hygiène, une alimentation et une cohabitation propices à la prévention des affections physiologiques ou psychologiques.

### Article 47

Une prise en charge sanitaire adaptée à leurs besoins doit être assurée aux femmes détenues, qu'elles soient accueillies dans un quartier pour femmes détenues ou dans un établissement dédié.

### Article 48

Ne peuvent être demandés aux médecins et aux personnels soignants intervenant en milieu carcéral ni un acte dénué de lien avec les soins ou avec la préservation de la santé des personnes détenues, ni une expertise médicale.

### Article 49

Doivent être titulaires d'un permis de visite les autorisant à s'entretenir avec les personnes détenues, hors de la présence du personnel pénitentiaire :

1° Les personnes bénévoles intervenant auprès des personnes malades en fin de vie, visées à l'article L. 1110-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2° Les personnes majeures accompagnant les personnes malades mineures, visées à l'article L. 1111-5 du même code ;

3° Les personnes de confiance accompagnant et assistant les personnes malades, visées à l'article L. 1111-6 du même code ;

4°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consultation des informations du dossier médical des personnes malades, visées à l'article L. 1111-7 du même code ;

5° Les personnes, vis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2212-7 du même code, accompagnant les détenues mineures à l'occasion d'une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Article 50**

Toute personne détenue se trouvant dans la situation de handicap prévue par l'article L. 1111-6-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 le droit de désigner un aidant de son choix.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peut s'opposer au choix de l'aidant par une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Article 51**

Il est proposé à la personne détenue, lors de son incarcération, un bilan de santé relatif à sa consommation de produits stupéfiants, d'alcool et de tabac. Ce bilan, effectué à titre préventif, dans un but de santé publique et dans l'intérêt du patient, reste confidentiel.

**Article 52**

Tout accouchement ou examen gynécologique doit se dérouler sans entraves et hors la présence du personnel pénitentiaire, afin de garantir le droit au respect de la dignité des femmes détenues.

**Article 53**

Une visite médicale est proposée à toute personne condamnée dans le mois précédant sa libération.

**Article 54**

Dans 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a promulgation de la présente loi, un dossier médical électronique unique est constitué pour chaque personne détenue

**Article 55**

Le 2° de l'article L. 1431-2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dans sa rédaction résultant de l'article 118 de 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 est complété par un i ainsi rédigé :

«ı) Elles évaluent et identifient les besoins sanitaires des personnes en détention. Elles définissent et régulent l'offre de soins en milieu pénitentiaire.»

**Article 56**

Après le 4° de l'article L. 1434-9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dans sa rédaction résultant de l'article 118 de 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récitée, il est inséré un 5° ainsi rédigé :

«5° Les objectifs et les moyens dédiés à l'offre de soins en milieu pénitentiaire.»

**SECTION 8 : DE LA SURVEILLANCE**

**Article 57**

Les fouilles doivent être justifiées par la présomption d'une infraction ou par les risques que le comportement des personnes détenues fait courir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au maintien du bon ordre dans l'établissement. Leur nature et leur fréquence sont strictement adaptées à ces nécessités et à la personnalité des personnes détenues.

Les fouilles intégrales ne sont possibles que si les fouilles par palpation ou l'utilisation des moyens de détection électronique sont insuffisantes.

Les investigations corporelles internes sont proscrites, sauf impératif spécialement motivé Elles ne peuvent alors être réalisées que par un médecin n'exerçant pas au sein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requis à cet effet par l'autorité judiciaire.

**Article 58**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peuvent être installées dans les espaces collectifs présentant un risque d'atteinte à l'intégrité physique des personnes au sein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Cette faculté constitue une obligation pour l'ensemble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dont l'ouverture est postérieure à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loi

### SECTION 9 : DES MINEURS DETENUS

**Article 59**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garantit aux mineurs détenus le respect des droits fondamentaux reconnus à l'enfant.

**Article 60**

Les mineurs détenus, lorsqu'ils ne sont pas soumis à l'obligation scolaire, sont tenus de suivre une activité à caractère éducatif.

**Article 61**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CHAPITRE IV :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62**

L'article 205 de la loi n° 2004-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a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ainsi rédigé :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un établissement public national à caractère administratif peut exercer à la demande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pour les opérations qu'il lui confie,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convention, la maîtrise d'ouvrage de plein exercice.» ;

2° Le deuxième alinéa est ainsi modifié :

a) Au début de la première phrase, les mots : « L'agence »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Cet établissement» ;

b) A la dernière phrase, les mots «l'agenc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établissement» ;

3° Au début du dernier alinéa, les mots : «L'Agence de maîtrise d'ouvrage des travaux du ministère de la justic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établissement».

**Article 63**

L'article 1er de la loi n° 87-432 du 22 juin 1987 relative au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est abrogé

# TITRE II : DISPOSITIONS RELATIVES AU PRONONCE DES PEINES, AUX ALTERNATIVES A LA DETENTION PROVISOIRE, AUX AMENAGEMENTS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E ET A LA DETENTION

## CHAPITRE IER : DISPOSITIONS MODIFIANT LE CODE PENAL

**Article 64**

Le code pénal est modifi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 SECTION 1 : DES AMENAGEMENTS DE PEINES

**Article 65**

L'article 132-24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En matière correctionnelle, en dehors des condamnations en récidive légale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19-1, une pein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ne peut être prononcée qu'en dernier recours si la gravité de l'infraction et la personnalité de son auteur rendent cette peine nécessaire et si toute autre sanction est manifestement inadéquate ; dans ce cas, la peine d'emprisonnement doit, si la personnalité et la situation du condamné le permettent, et sauf impossibilité matérielle, faire l'objet d'une des mesures d'aménagement prévues aux articles 132-25 à 132-28.»

**Article 66**

I. — L'article 132-25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remplacé par six alinéas ainsi rédigés :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ou, pour une personne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un an, elle peut décider que cette peine sera exécutée en tout ou partie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à l'égard du condamné qui justifie :

«1°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même temporaire, du suivi d'un stage ou de son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à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à la recherche d'un emploi ;

«2° Soit de sa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sa famille ;

«3° Soit de la nécessité de suivre un traitement médical ;

«4° Soit de l'existence d'effort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résultant de son implication durable dans tout autre projet caractérisé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de nature à prévenir les risques de récidive.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e prononcé d'un emprisonnement partiellement assorti du sursis ou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orsque la partie ferme de la peine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ou, si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inférieure ou égale à un an. » ;

2° Au deuxième alinéa, les mots : «par l'alinéa précéden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aux alinéas précédents» ;

3° Le dernier alinéa est supprimé.

II. — L'article 132-26 est ainsi modifié :

1° A la prem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après le mot : «professionnelle», sont insérés les mots : «, à la recherche d'un emploi» et les mots : «ou au traitemen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 au traitement ou au projet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

2° Le deuxième alinéa est ainsi rédigé :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u placement à l'extérieur est astreint, sou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à effectuer des activités en dehors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III. — L'article 132-26-1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remplacé par six alinéas ainsi rédigés :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ou, pour une personne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un an, elle peut décider que la peine sera exécutée en tout ou parti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à l'égard du condamné qui justifie :

«1°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même temporaire, du suivi d'un stage ou de son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à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à la recherche d'un emploi ;

«2° Soit de sa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sa famille ;

«3° Soit de la nécessité de suivre un traitement médical ;

«4° Soit de l'existence d'effort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résultant de son implication durable dans tout autre projet caractérisé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de nature à prévenir les risques de récidive.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e prononcé d'un emprisonnement partiellement assorti du sursis ou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orsque la partie ferme de la peine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ou, si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inférieure ou égale à un an.» ;

2° La dernière phrase du second alinéa est supprimée.

IV. — L'article 132-27 est ainsi modifié :

1° Le mot : «grave» est supprimé ;

2° Les mots : «d'un an»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 deux ans, ou, si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égale ou inférieure à un an» ;

3° Le mot : «trois» est remplacé par le mot : «quatre»

## SECTION 2 : DU TRAVAIL D'INTERET GENERAL

### Article 67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8, les mots : «quarante à deux cent dix»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vingt à deux cent dix»

### Article 68

La dern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22 est remplacée par deux phrases ainsi rédigées :

«Ce délai es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le condamné est assigné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placé en détention provisoire, exécut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ou accomplit les obligations du service national. Toutefois,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eut être exécuté en même temps

qu'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qu'un placement à l'extérieur, qu'une semi-liberté ou qu'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69**

I. — L'article 132-54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ainsi rédigé :

«La juridiction peu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articles 132-40 et 132-41, prévoir que le condamné accomplira, pour une durée de vingt à deux cent dix heures,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on rémunéré au profit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s à mettre en œ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

2° Le deuxième alinéa est ainsi rédigé :

«La juridiction peut en outre soumettre le condamné à tout ou partie des obligations prévues à l'article 132-45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dix-huit mois.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vant la fin de ce délai ne met pas fin à ces obligations.»

II. —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2-55, le mot : «douze» est remplacé par le mot : «dix-huit».

III. — L'article 132-57 est ainsi modifié :

1° Après les mots : «le condamné accomplira», la fin de la première phrase est ainsi rédigée : «, pour une durée de vingt à deux cent dix heures,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on rémunéré au profit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s à mettre en œ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

2° Sont ajoutés trois alinéas ainsi rédigés :

«Le présent article est applicable aux peines d'emprisonnement ayant fait l'objet d'un sursis partiel, assorti ou non d'une mise à l'épreuve, lorsque la partie ferme de la peine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six mois. Dans ce cas, la partie de la peine avec sursis demeure applicable.

«Le présent article est également applicable aux peines d'emprisonnement inférieures ou égales à six mois résultant de la révocation d'un sursis, assorti ou non d'une mise à l'épreuve.

«En cas d'exécution partielle d'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la conversion de la partie non exécutée en jours-amende. »

## CHAPITRE II : DISPOSITIONS MODIFIANT LE CODE DE PROCEDURE PENALE

**Article 70**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st modifi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 SECTION 1 : DE L'ASSIGNATION A RESIDENCE AVEC SURVEILLANCE ELECTRONIQUE

**Article 71**

I. — L'intitulé de la section 7 du chapitre Ier du titre III du livre Ier est ainsi rédigé : «Du contrôle judiciaire,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et de la détention provisoire».

II. — L'article 137 est ainsi rédigé :

«Art. 137.-Toute personne mise en examen, présumée innocente, demeure libre.

«Toutefois, en raison d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ou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elle peut être astreinte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si celles-ci se révèlent insuffisantes, être assignée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 titre exceptionnel, si l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ne permettent pas d'atteindre ces objectifs, elle peut êtr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

III. — Les sous-sections 2 et 3 de la section 7 du chapitre Ier du titre III du livre Ier deviennent respectivement les sous-sections 3 et 4, l'article 143 devient l'article 142-4 et, après cet article 142-4, il est rétabli une sous-section 2 ainsi rédigée :

«Sous-section 2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 142-5.-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être ordonnée, avec l'accord ou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court une peine d'emprisonnement correctionnel d'au moins deux ans ou une peine plus grave.

«Cette mesure oblige la personne à demeurer à son domicile ou dans une résidence fixée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de ne s'en absenter qu'aux conditions et pour les motifs déterminés par ce magistrat.

«Cette obligation est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à l'aide du procédé prévu par l'article 723-8. Elle peut également être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à l'aide du procédé prévu par l'article 763-12, si la personne est mise en examen pour une infraction punie de plu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pour laquelle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Les articles 723-9 et 723-12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articles 763-12 et 763-13 sont applicables, le juge d'instruction exerçant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a personne peut être en outre astreinte aux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8.

«Art. 142-6.-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décidée par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stat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5.

«Elle peut également être décidée, sans débat contradictoire, par ordonnance statuant sur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Art. 142-7.-L'assignation à résidence est ordonnée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six mois. Elle peut être prolongée pour une même dur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42-6, sans que la durée totale du placement dépasse deux ans.

«Art. 142-8.-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39 et les articles 140 et 141-3 sont applicables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 personne qui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faire l'objet d'un mandat d'arrêt ou d'amener et êtr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1-2

«Art. 142-9.-Avec l'accord préalable du juge d'instruction, les horaires de présence au domicile ou dans les lieux d'assignation peuvent, lorsqu'il s'agit de modifications favorable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touchant pas à l'équilibre de la mesure de contrôle, être modifiés par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qui en informe le juge d'instruction.

« Art. 142-10.-En cas de décision de non-lieu, relaxe ou acquittement devenue définitive, la personne placée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 droit à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subi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49 à 150.

«Art. 142-11.-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assimilée à une détention provisoire pour l'imputation intégrale de sa durée sur cell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conformément à l'article 716-4.

«Art. 142-12.-L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peuvent prononcer, comme mesure alternative à la détention provisoire,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135-2, 145, 148, 201, 221-3, 272-1, 397-3, 695-34 et 696-19.

«Cette mesure peut être levée, maintenue, modifiée ou révoquée par l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que le contrôle judiciair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48-2, 148-6, 213, 272-1, 695-35, 695-36, 696-20 et 696-21.

«Art. 142-13.-Un décre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présente sous-section.»

## SECTION 2 : DES AMENAGEMENTS DE PEINES

### SOUS SECTION 1 : DU PRONONCE DES AMENAGEMENTS DE PEINES

**Article 72**

I. — La première phrase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7 est ainsi rédigée :

«A cette fin, les peines sont aménagées avant leur mise à exécution ou en cours d'exécution si la personnalité et l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du condamné ou leur évolution le permettent »

II. — L'article 707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En cas de délivrance d'u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l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peuvent être immédiatement aménag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sans attendre que la condamnation soit exécutoire conformément au présent article, sous réserve du droit d'appel suspensif du ministère public prévu par l'article 712-14.»

**Article 73**

I. — A l'article 498, les mots : «Sauf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505»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 Sans préjudice de l'article 505 ».

II. — L'article 505 est ainsi rédigé :

«Art. 505.-En cas de jugement de condamn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également former son appel dans le délai de vingt jours à compter du jour du prononcé de la décision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98 à 500, les autres parties ont alors un délai de cinq jours pour interjeter appel incident. Même en l'absence d'appel incident, la cour d'appel peut, en cas d'appel formé par le seul procureur général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prononcer une peine moins importante

que celle prononcé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

III. — L'article 548est abrogé

IV. —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49, la référence : «506»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 «505».

V. —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8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 quelle que soit sa nature».

**Article 74**

Après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12-6,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chaque fois qu'il l'estime nécessair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 juge ayant ordonné ce renvoi est membre du tribunal qui statu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7.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5**

L'article 712-8 est ainsi modifié :

1° Le mot : «troisième» est remplacé par le mot : «quatrième» ;

2° Il est ajout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Toutefois, pour l'exécution d'une mesure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à l'extérieur ou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our l'exécution de permissions de sort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ans sa décision, autoriser le chef d'établissement ou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s'agissant des mineurs, le directeur régional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à modifier les horaires d'entrée ou de sortie du condamné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de sa présence en un lieu déterminé, lorsqu'il s'agit de modifications favorables au condamné ne touchant pas à l'équilibre de la mesure. Il est informé sans délai des modifications opérées et peut les annuler par ordonnanc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6**

A l'article 712-19, après les mots : «suivi socio-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Article 77**

L'article 712-21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Lorsqu'elles concernent les infractions violentes ou de nature sexuelle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les expertises psychiatriques ordonnées préalablement aux mesures d'aménagement des peines conformément au présent article doivent se prononcer spécialement sur le risque de récidive du condamné.»

**Article 78**

L'article 712-22 devient l'article 712-23 et, après l'article 712-21, il est rétabli un article 712-22 ainsi rédigé :

«Art. 712-22 -Lorsqu'elles se prononcent sur l'octroi d'une des mesures prévues aux articles 712-6 et 712-7,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dans le même jugement, sur la demande du condamné, le relever en tout ou partie, y compris en ce qui concerne la durée, d'une interdiction résultant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pénale ou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soit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soit d'exercer une profession commerciale ou industrielle, de diriger, d'administrer, de gérer ou de contrôler à un titre quelconqu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our son propre compte ou pour le compte d'autrui, une entreprise commerciale ou industrielle ou une société commerciale.

«Cette décision peut également être pris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tatuant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préalablement à l'octroi d'une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afin de permettre ultérieurement son prononcé. Elle peut être prise par ordonnance sauf op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deux premiers alinéas, exclure d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les condamnations qui font obstacle au projet d'aménagement de peines.»

**Article 79**

I. — La prem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0-1 est ainsi modifiée :

1° Les mots : «un an»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ux ans» ;

2° Le mot : «grave» est supprimé ;

3° Le mot : «trois» est remplacé par le mot : «quatre».

II. —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0-1-1 est complété par une phrase ainsi rédigée :

«Toutefois, en cas d'urgence, lorsque le pronostic vital est engagé, la suspension peut être ordonnée au vu d'un certificat médical établi par le médecin responsable de la structure sanitaire dans laquelle est pris en charge le détenu ou son remplaçant.»

III. —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712-23, tel qu'il résulte de l'article 78 de la présente loi,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 soit en cas de délivrance du certificat médical visé à la seconde phrase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0-1-1».

**Article 80**

L'article 720-5 est ainsi modifié :

1° La première phrase est complétée par les mots : «ou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

2° Le début de la seconde phrase est ainsi rédigé :

«La semi-liberté ou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alors ordonné par le tribunal... (le reste sans changement).»

**Article 81**

I.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3 est ainsi rédigé :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u placement à l'extérieur est astreint, sou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à exercer des activités en dehors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II. — L'article 723-1 est ainsi rédigé :

«Art. 723-1.-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évoir que la peine s'exécutera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soit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soit lorsqu'il reste à subir par le condamné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ubordonner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du condamné à l'exécution, à titre probatoire, d'une mesure de semi-liberté ou de placement à l'extérieur, pour une durée n'excédant pas un an. La mesure de semi-liberté ou de placement à l'extérieur peut être exécutée un an

avant la fin du temps d'épreuve prévu à l'article 729. »

III.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3-7 est remplacé par deux alinéas ainsi rédigés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évoir que la peine s'exécutera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éfini par l'article 132-26-1 du code pénal soit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soit lorsqu'il reste à subir par le condamné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ubordonner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du condamné à l'exécution, à titre probatoire, d'une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our une durée n'excédant pas un an. La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être exécutée un an avant la fin du temps d'épreuve prévu à l'article 729.»

IV. — A l'article 723-11, les mots :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23-7» sont supprimés.

**Article 82**

L'article 729 est ainsi modifié :

1° La seconde phrase du premier alinéa est remplacée par six alinéas ainsi rédigés :

«Les condamnés ayant à subir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peuvent bénéficier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ils manifestent des effort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et lorsqu'ils justifient :

«1°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d'un stage ou d'un emploi temporaire ou de leur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ou à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

«2° Soit de leur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leur famille ;

«3° Soit de la nécessité de suivre un traitement médical ;

«4° Soit de leurs efforts en vue d'indemniser leurs victimes ;

«5° Soit de leur implication dans tout autre projet sérieux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

2° Il est ajout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 Lorsque le condamné est âgé de plus de soixante-dix ans, les durées de peines accomplie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et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ccordée dès lors que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du condamné est assurée, en particulier s'il fait l'objet d'une prise en charge adaptée à sa situation à sa sortie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s'il justifie d'un hébergement, sauf en cas de risque grave de renouvellement de l'infraction ou si cette libération est susceptible de causer un trouble grave à l'ordre public. »

**Article 83**

I. — Après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30,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Pour les demandes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concernant des personnes condamnées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égale ou supérieure à cinq ans ou à une peine de réclusion, l'avocat de la partie civile peut, s'il en fait la demande, assister au débat contradictoir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statuant en appel pour y faire valoir ses observations, avant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II. — Le dernier alinéa des articles 712-7 et 712-13 est supprimé.

III. — A la première phrase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12-13, les mots :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sont remplacés par le mot : «à».

**SOUS SECTION 2 : DES PROCEDURES SIMPLIFIEES D'AMENAGEMENT DES PEINES**

**Article 84**

I. — L'article 723-14 devient l'article 723-13-1, et l'intitulé de la section VII du chapitre II du titre II du livre V ainsi que l'article 723-15 sont remplacés par les dispositions suivantes :

«Section VII

«Des procédures simplifiées d'aménagement des peines

«Art. 723-14.-Les personnes condamnées à de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elles soient libres ou incarcérées, peuvent bénéficier de procédures simplifiées d'aménagement de ces peines dans les conditions et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aux articles 723-15 à 723-27.

«Ces procédures ne sont pas exclusives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712-4 et 712-6.

«Un décret détermin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et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 la présente section.

«Paragraphe 1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condamnés libres

«Art. 723-15.-Les personnes non incarcérées, condamnées à une peine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ou pour lesquelles la durée de la déten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ou pour lesquelles, en cas de cumul de condamnations, le total des peines d'emprisonnement prononcées ou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bénéficient, dans la mesure du possible et si leur personnalité et leur situation le permettent, suivant la procédure prévue au présent paragraphe, d'une semi-liberté, d'un placement à l'extérieur,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un fractionnement ou d'une suspension de peines,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ou de la conversion prévue à l'article 132-57 du code pénal.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Préalablement à la mise à exécution de la ou des condamnations, le ministère public inform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cette ou de ces décisions en lui adressant toutes les pièces utiles, parmi lesquelles une copie de la ou des décisions et le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de l'intéressé.

«Sauf s'il a déjà été avisé de ces convocations à l'issue de l'audience de jugem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474 du présent code, le condamné est alor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voqué en premier lieu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uis deva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ans des délais qui ne sauraient être respectivement supérieurs à trente et à quarante-cinq jours à compter de leur information par le ministère public, afin de détermin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sa peine les mieux adaptées à sa personnalité et à s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Art. 723-15-1.-Si, à l'issue de la convocation, une mesure d'aménagement ou la conversion de la peine lui paraît possible et si l'intéressé en est d'accord,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rdonne cette mesure ou cette convers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premier ou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6. Si le juge ne dispose pas des éléments d'information suffisants pour ordonner immédiatement cette mesure

ou cette conversion, il peut charger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examin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décision qu'il envisage de prendre et, le cas échéant, de lui présenter une autre proposition d'aménagement ou de conversion,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cette saisine. Au vu du rapport motiv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il peut ordonner l'aménagement ou la conversion de la peine du condamn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premier ou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6.

«Art. 723-15-2.-Si le condamné ne souhaite pas bénéficier d'un aménagement ou d'une conversion de sa peine ou si, au vu du rapport motiv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un tel aménagement ou une telle conversion ne lui paraît pas possib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fixer la date d'incarcération.

«A défaut de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s quatre mois suivant la communication de la copie de la décision, ainsi que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723-16, le ministère public peut ramener la peine à exécution.

«Si, sauf motif légitime ou exercice des voies de recours, la personne ne se présente pas aux convocation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informe le ministère public qui ramène la peine à exécution.»

II. — L'article 723-16 est ainsi modifié :

1° Au premier alinéa, après le mot : «procédure,», sont insérés les mots : «soit d'un risque avéré de fuite du condamné,» ;

2° Le second alinéa est ainsi rédigé :

«Il en informe immédiatem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i celui-ci a été saisi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3-15.»

III. — 1. Après l'article 723-18, il est inséré une division paragraphe 2 intitulée :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condamnés incarcérés».

2. Après l'article 723-19, la division section VIII et son intitulé sont supprimés.

3. Les articles 723-19 et 723-20 sont ainsi rédigés :

«Art. 723-19.-Les personnes détenues condamnées à une ou des peines d'emprisonnement dont le cumul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ou condamnées à une ou des peines d'emprisonnement dont le cumul est inférieur ou égal à cinq ans et dont le reliquat de peine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bénéficient, sauf impossibilité matérielle et si leur personnalité et leur situation le permettent, d'une semi-liberté, d'un placement à l'extérieur,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conformément à la procédure prévue par le présent paragraphe.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Art. 723-20.-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examine en temps utile le dossier de chacun des condamnés relevant de l'article 723-19, afin de déterminer, après avis du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la mieux adaptée à sa personnalité et à s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Sauf en cas d'absence de projet sérieux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ou d'impossibilité matérielle de mettre en place une mesure d'aménagement, le directeur, après avoir obtenu l'accord du condamné à la mesure qui lui est proposée, adress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vue de la saisin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e proposition d'aménagement comprenant, le cas échéant,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45 du code pénal.A défaut, il lui adresse, ainsi qu'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 rapport motivé expliquant les raisons pour lesquelles un aménagement de peine ne peut être proposé et en informe le condamné.

«S'il estime la proposition justifi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ransmet celle-ci pour homologation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lui-ci dispose alors d'un délai de trois semaine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requête le saisissant pour décider par ordonnance d'homologuer ou de refuser d'homologuer la proposition.

«S'il n'estime pas la proposition justifi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inform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lui transmettant cette proposition. Il avise également le condamné de sa posi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lors ordonner un aménagement de peine,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à la suite d'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du présent code Il peut également le faire après avoir reçu le rappor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

IV. — L'article 723-21 est abrogé.

V. — L'article 723-23 est abrogé.

VI. — L'article 723-24 est ainsi rédigé :

«Art. 723-24.-A défaut de répons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délai de trois semaines,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eut,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amener à exécution la mesure d'aménagement. Cette décision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Elle est préalablement notifié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VII. — A la première phrase de l'article 723-25, la référence : «723-21» est remplacée par les références : «723-20 ou de l'article 723-22» et la référence : «723-20»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 «723-19».

VIII. — L'article 723-27 est ainsi rédigé :

«Art. 723-27.-Pour les condamnés mentionnés à l'article 723-19 et afin de préparer une mesure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paragraphe,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eut adress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saisin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e proposition de permission de sorti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23-19 à 723-24. »

IX. — Après l'article 723-27, il est rétabli une division ainsi rédigée :

«Section VIII

«Modalités d'exécution des fins de peines d'emprisonnement en l'absence de tout aménagement de peine

«Art. 723-28.-Pour les peines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lorsqu'aucune mesure d'aménagement n'a été ordonnée six mois avant la date d'expiration de la peine, toute personne condamnée à laquelle il reste quatre mois d'emprisonnement à subir ou, pour les peines inférieures ou égales à six mois, à laquelle il reste les deux tiers de la peine à subir, exécute le reliquat de sa peine selon les modalités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sauf en cas d'impossibilité matérielle, de refus de l'intéressé, d'incompatibilité entre sa personnalité et la nature de la mesure ou de risque de récidive.

«Le placement est mis en œuvre par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sous l'autorité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peut fixer les mesures de contrôle et les obligations énumérées aux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auxquelles la personne condamnée devra se soumettre.

«En l'absence de décision de placement, la personne condamnée peut sais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qu'il statue par jugement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Un décre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85**

A l'article 723-29, le mot : «juge» est remplacé par le mot : «tribunal».

**SECTION 3 : DES REGIMES DE DETENTION**

**Article 86**

L'article 728 est ainsi rédigé :

«Art. 728.-Des règlements intérieurs types, prévu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nt les dispositions prises pour le fonctionnement de chacune des catégories d'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Article 87**

I. — Après l'article 715, il est inséré un article 715-1 ainsi rédigé :

«Art. 715-1.-Toutes communications et toutes facilités compatibles avec les exigences de la sécurité de la prison sont accordées aux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pour l'exercice de leur défense.»

II. — L'article 716 est ainsi rédigé :

«Art. 716.-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soumis à la détention provisoire sont placés en cellule individuelle. Il ne peut être dérogé à ce principe que dans les cas suivants :

«1° Si les intéressés en font la demande ;

«2° Si leur personnalité justifie, dans leur intérêt, qu'ils ne soient pas laissés seuls ;

«3° S'ils ont été autorisés à travailler ou à suivre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scolaire et que les nécessités d'organisation l'imposent.

«Lorsque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sont placés en cellule collective, les cellules doivent être adaptées au nombre des personnes détenues qui y sont hébergées. Celles-ci doivent être aptes à cohabiter. Leur sécurité et leur dignité doivent être assurées. »

**Article 88**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717 est ainsi modifié :

1° A la première phrase, les mots : «un an»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ux ans» ;

2° Sont ajoutées deux phrases ainsi rédigées :

«Toute personne condamnée détenue en maison d'arrêt à laquelle il reste à subir une peine d'une durée supérieure à deux ans peut, à sa demande, obtenir son transfèrement dans un établissement pour peines dans un délai de neuf mois à compter du jour où s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Cependant, elle peut être maintenue en maison d'arrêt lorsqu'elle bénéficie d'un aménagement de peine ou est susceptible d'en bénéficier rapidement.»

**Article 89**

I. — L'article 717-1 est ainsi modifié :

1° Avant le premier alinéa,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Dès leur accueil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à l'issue d'une période d'observation pluridisciplinaire, les personnes détenues font l'objet d'un bilan de personnalité. Un parcours d'exécution de la peine est élaboré par le chef d'établissement et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our les condamnés, en concertation avec ces derniers, dès que leur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e projet initial et ses modifications ultérieures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2° Le premier alinéa est complété par deux phrases ainsi rédigées :

«Leur régime de détention est déterminé en prenant en compte leur personnalité, leur santé, leur dangerosité et leurs efforts en matière de réinsertion sociale. Le placement d'une personne détenue sous un régime de détention plus sévère ne sau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3° A la première phrase du cinquième alinéa, les mots : «deuxième et troisièm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troisième et quatrième».

II. —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63-7, le mot : «second» est remplacé par le mot : «troisième».

**Article 90**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717-2 est ainsi rédigé :

«Il ne peut être dérogé à ce principe que si les intéressés en font la demande ou si leur personnalité justifie que, dans leur intérêt, ils ne soient pas laissés seuls, ou en raison des nécessités d'organisation du travail.»

**Article 91**

L'article 726 est ainsi rédigé :

«Art. 726.-Le régime disciplinaire des personnes détenues placées en détention provisoire ou exécutant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st déterminé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

«1° Le contenu des fautes disciplinaires, qui sont classées selon leur nature et leur gravité ;

«2° Les différentes sanctions disciplinaires encourues selon le degré de gravité des fautes commises. Le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le confin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ordinaire ne peuvent excéder vingt jours, cette durée pouvant toutefois être portée à trente jours pour tout acte de violence physique contre les personnes ;

«3° La composition de la commission disciplinaire, qui doit comprendre au moins un membre extérieur à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

«4° La procédure disciplinaire applicable, au cours de laquelle la personne peut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choisi ou commis d'office, en bénéficiant le cas échéant de l'aide de l'Etat pour l'intervention de cet avocat ;

«5°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a personne placée en cellule disciplinaire ou en confinement dans une cellule individuelle exerce son droit à un parloir hebdomadaire ;

«6°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maintien d'une mesure de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en confinement dans une cellule individuelle est incompatible avec l'état de santé de la personne détenue.

«Le placement, à titre exceptionnel, des détenus mineurs de plus de seize ans en cellule disciplinaire ne

peut excéder sept jours.

«En cas d'urgence, les détenus majeurs et les détenus mineurs de plus de seize ans peuvent faire l'objet, à titre préventif, d'un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d'un confin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Cette mesure ne peut excéder deux jours ouvrables.

«Lorsqu'une personne détenue est placée en quartier disciplinaire, ou en confinement, elle peut saisir le juge des référ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Article 92**

Après l'article 726, il est inséré un article 726-1 ainsi rédigé :

«Art. 726-1.-Toute personne détenue, sauf si elle est mineure, peut être plac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trois mois, à l'isolement par mesure de protection ou de sécurité soit à sa demande, soit d'office. Cette mesure ne peut être renouvelée pour la même durée qu'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au cours duquel la personne concernée, qui peut être assistée de son avocat, présente ses observations orales ou écrites.L'isolement ne peut être prolongé au-delà d'un an qu'après avis de l'autorité judiciaire.

«Le placement à l'isolement n'affecte pas l'exercice des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sous réserve des aménagements qu'impose la sécurité.

«Lorsqu'une personne détenue est placée à l'isolement, elle peut saisir le juge des référ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ECTION 4 : DISPOSITIONS DIVERSES ET DE COORDINATION**

**Article 93**

I. — A l'article 113-5, après les mots : « contrôle judiciaire », sont insérés les mots : «,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II. — L'article 138 est ainsi modifié :

1° L'avant-dernier alinéa est supprimé ;

2° Au dernier alinéa, les mots : «et a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sont supprimés.

III. —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43-1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ou d'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IV.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44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ou d'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V. — Après l'article 145-4, il est inséré un article 145-4-1 ainsi rédigé :

«Art. 145-4-1.-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prescrire, par ordonnance motivée, que la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soit soumise à l'isolement aux fins d'être séparée des autres personnes détenues, si cette mesure est indispensable aux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celle du mandat de dépôt et qui peut être renouvelée à chaque prolongation de la détention.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peu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lacement à l'isolement n'affecte pas l'exercice des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sous réserve des aménagements qu'impose la sécurité.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

VI. — L'article 179 est ainsi modifié :

1° A la première phrase du deuxième alinéa, après le mot : «provisoire», sont insérés les mots : «,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2° A la première phrase du troisième alinéa, après le mot : « détention », sont insérés les mots : «,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VII. — L'article 181 est ainsi modifié .

1° Le cinquième alinéa est ainsi rédigé :

«Le contrôle judiciaire ou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dont fait l'objet l'accusé continuent à produire leurs effets.» ;

2° A la première phrase du sixième alinéa, après le mot · « provisoire », sont insérés les mots : «,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VIII. —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86, après la référence : «137-3», sont insérées les références : «, 142-6, 142-7».

IX. — A la fin de la dern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07, les mots . «un contrôle judiciaire ou en modifie les modalités»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ou modifie un contrôle judiciaire ou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 — La seconde phrase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212 est complétée par les mots : «ou à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I —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4 est ainsi modifié :

1° A la première phrase du troisième alinéa, après le mot :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ou de le placer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2° A la dernière phrase, après le mot :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3° La deuxième phrase est ainsi rédigée .

«Ce magistrat peut, après audition du prévenu, son avocat ayant été avisé et entendu en ses observations, s'il le demande, prononcer l'une de ces mesures dans les conditions et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8, 139, 142-5 et 142-6.»

XII. —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396 est ainsi modifié :

1° La première phrase est complétée par les mots · «ou le placer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2° A la dernière phrase, après le mot :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III. — A la première phrase de l'article 397-7, après les mots : «contrôle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IV. — Aux première et dernière phrases de l'article 495-10, après les mots : «contrôle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V. — A l'article 501, après le mot :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VI. — A la première phrase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69, les mots . «prend fin»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et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rennent fin».

XVII. — Au 5° de l'article 706-53-2, après le mot . «judiciaire», sont insérés les mots :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VIII. — La seconde phrase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6-53-4 est complétée par les mots :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IX. — A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706-64, après le mot : «provisoire», sont insérés les mots : «,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XX. — L'article 706-71 est ainsi modifié .

1° Au troisième alinéa, après les mots : «juridiction de jugement,» sont insérés les mots : «à l'interrogatoire de l'accusé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272, à la comparution d'une personne à l'audience au cours de laquelle est rendu un jugement ou un arrêt qui avait été mis en délibéré ou au cours de laquelle il est statué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à l'interrogatoire par le procureur ou le procureur général d'une personne arrêtée en vertu d'un mandat d'amener, d'un mandat d'arrêt ou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

2° Après le troisième alinéa,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Elles sont de même applicables devant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s, dev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statuant sur les demandes de réparation d'une détention provisoire, devant la Commission nationale de réparation des détentions, devant la commission et la cour de révision et devant la commission de réexamen des condamnations.» ;

3° Le quatrième alinéa est ainsi modifié :

a) A la première phrase, le mot : «deux» est remplacé par le mot : «trois» ;

b) A la première phrase, les mots :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u magistrat, de la juridiction ou de la commission compétents» ;

c) La dernière phrase est complétée par les mots · «sauf si une copie de ce dossier a déjà été remise à l'avocat».

**Article 94**

I. —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471 est ainsi modifié :

1° La référence : «131-6» est remplacée par la référence : «131-5» ;

2° Après la référence : «131-11», sont insérées les références : «et 132-25 à 132-70».

II. — L'article 474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ainsi modifié :

a) Les mots : «un an» sont, deux fois, remplacés par les mots : «deux ans», et les mots : «être inférieur à dix jours ni» sont supprimés ,

b) Il est ajouté une phrase ainsi rédigée :

«Le condamné est également avisé qu'il est convoqué aux mêmes fins deva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ans un délai qui ne saurait être supérieur à quarante-cinq jours.» ;

2° Au deuxième alinéa, les mots : «Cet avis»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avis de convocation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les mots : «à cette convocation»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vant ce magistrat» ;

3° A la seconde phrase du troisième alinéa, les mots : «est convoqué devant »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 n'est convoqué que devant».

III. — L'article 702-1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seul magistrat exerçant les pouvoirs du président. Il en est de même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ou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est composée de son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Ce magistrat peut toutefois, si la complexité du dossier le justifi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u dossier devant la formation collégiale de la juridiction. Le magistrat ayant ordonné ce renvoi fait alors partie de la composition de cette juridiction.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IV. — L'article 710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auf en matière de confusion de peine,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seul magistrat exerçant les pouvoirs du président. Il en est de même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ou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est composée de son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Ce magistrat peut toutefois, si la complexité du dossier le justifi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u dossier devant la formation collégiale de la juridiction. Le magistrat ayant ordonné ce renvoi fait alors partie de la composition de cette juridiction.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V. — L'article 712-4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Si la durée de la peine prononcée ou restant à subir le permet, ces mesures peuvent également être accordées selon les procédures simplifiées prévues par les articles 723-14 à 723-27.»

VI. — A la dern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1-3, les mots : «à l'avant-dernier»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au neuvième».

VII. — L'article 733-1 est complété par un alinéa ainsi rédigé :

«Cette décision peut également intervenir à la suite de l'exécution partielle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VIII.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47-2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ou de l'article 723-15».

IX.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75-1 est complété par une phrase ainsi rédigée :

«Les juridictions compétentes sont alors composé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2-1.»

**Article 95**

I. — A la fin de la deuxième phrase de l'article 709-2, les mots : «le premier jour ouvrable du mois de mai»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au plus tard le premier jour ouvrable du mois de mars».

II. — L'article 716-5 est ainsi modifié :

1° Avant le premier alinéa,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Afin d'assurer l'exécution d'une peine d'emprisonnement ou de réclus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procureur général peuvent autoriser les agents de la force publique à pénétrer au

domicile de la personne condamnée afin de se saisir de celle-ci. Cependant, les agents ne peuvent s'introduire au domicile de la personne avant 6 heures et après 21 heures.» ;

2° Au deuxième alinéa, à la première phrase du quatrième alinéa et au cinquième alinéa, après les mots :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sont insérés les mots : «, ou le procureur général,».

III. — A l'article 719, après les mots : « Les députés et les sénateurs», sont insérés les mots : «ainsi que l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élus en France».

IV. — 1.L'article 727 est abrogé.

2. A l'article 58 de la loi n° 83-520 du 27 juin 1983 rendant applicables le code pénal,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certain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les mots : «l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27,» sont supprimés.

**Article 96**

I. — Après l'article 844, sont insérés deux articles 844-1 et 844-2 ainsi rédigés :

«Art. 844-1.-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e condamné est mineur, le service chargé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enf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Art. 844-2.-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II. — Après l'article 868-1, il est inséré un article 868-2 ainsi rédigé :

«Art. 868-2.-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e condamné est mineur, le service chargé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enfance ou son directeur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selon les ca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à son directeur.»

III. — Après l'article 868-1, sont insérés deux articles 868-3 et 868-4 ainsi rédigés :

«Art. 868-3.-Pour son application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éfini localement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ou de la Nouvelle-Calédonie.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 868-4.-Pour son application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éfini à l'article 95 de la loi n° 52-1322 du 15 décembre 1952 instituant un code du travail dans les territoires et territoires associés relevant des ministères de la France d'outre-mer.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IV. — Après l'article 901-1, il est inséré un article 901-2 ainsi rédigé :

«Art. 901-2.-Pour son application à Mayotte,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défini à l'article L. 141-2 du code du

travail applicable à Mayotte.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V. — Après l'article 926, il est inséré un article 926-1 ainsi rédigé :

«Art 926-1.-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à Saint-Pierre-et-Miquelon,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VI. — Après l'article 934, sont insérés deux articles 934-1 et 934-2 ainsi rédigés :

«Art. 934-1.-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723-15, 723-24 et 723-27 à Saint-Pierre-et-Miquelon,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selon les ca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à son directeur.

«Art. 934-2.-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23-20 à Saint-Pierre-et-Miquelon, le premier alinéa de cet article est ainsi rédigé :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xamine en temps utile le dossier de chacun des condamnés relevant de l'article 723-19 afin de déterminer la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la mieux adaptée à leur personnalité."»

**Article 97**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st ainsi modifié :

I. – L'article 222est abrogé.

II. —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7-1, les mots . «que les personnes détenues ont été autorisées à passer»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s personnes détenues».

## TITRE III : DISPOSITIONS FINALES

**Article 98**

Avant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5 de la loi n° 2007-297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Les actions conduites par l'Etat, les commun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ainsi que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chargé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ne sont éligibles au fonds interministériel pour la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que s'ils proposent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destinés aux personnes condamnées.»

**Article 99**

I. — La présente loi est applicable :

1° En Nouvelle-Calédonie et en Polynésie française, à l'exception des deuxième à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21,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3, de l'article 55, de l'article 56 et de l'article 98 ;

2°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à l'exception de l'article 3, des deuxième à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21,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3, de l'article 55, de l'article 56 et de l'article 98.

II. —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3 et 8, la Nouvelle-Calédonie est regardée comme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III. — L'Etat peut conclure avec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ispositions déclarées non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par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93 DC du 19 novembre 2009]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 la Nouvelle-Calédonie une convention afin de définir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rticle 46.

IV. — Les deuxième à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21 sont applicables à Mayotte.

V — Par dérogation à l'article 5, un conseil d'évaluation unique est institué en Polynésie française auprès de l'ensemble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VI. —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7 à Saint-Pierre-et-Miquelon et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les mots : «et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sont supprimés

VII — Pour son application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 2° de l'article 30 est ainsi rédigé :

«2° Pour prétendre au bénéfice des droits et des prestations d'aide sociale prévu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lorsqu'elles ne disposent pas d'un domicile personnel au moment de l'incarcération ou ne peuvent en justifier;».

VIII. –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5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mots : «, dans le respect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L 614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sont supprimés.

IX. – L'article 37 n'est pas applicable en Polynésie française.

X. –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38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mots · «le départemen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 la collectivité».

XI.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6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mots · «par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 et les mots · «le 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régionale de santé» sont remplacés respectivement par les mots :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t par les mots : «les institutions compétentes de la collectivité»

XII. Pour l'application du 1° de l'article 49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mots : «, visées à l'article L. 1110-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sont supprimés.

**Article 100**

Dans la limite de cinq an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e la présente loi, il peut être dérogé au plac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dans les maisons d'arrêt au motif tiré de ce que la distribution intérieure des locaux ou le nombre de personnes détenues présentes ne permet pas son application.

Cependant, la personne condamnée ou, sous réserve de l'accord du magistrat chargé de l'information, la personne prévenue peut demander son transfert dans la maison d'arrêt la plus proche permettant un plac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La présente loi sera exécutée comme loi de l'Etat.

이탈리아

06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A 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A'.(Legge Gozzini)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A 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A'.(Legge Gozzini)


**제1장 교정처우(Trattamento penitenziario)** ····· 355

제1절 지도원리(제1조 ~ 제4조의2) ····· 355

제2절 일반조건(제5조 ~ 제12조) ····· 356

제3절 처우의 형태(제13조 ~ 제31조) ····· 359

제4절 교정제도(제32조 ~ 제44조) ····· 369

제5절 원호(제45조, 제46조) ····· 373

제6절 구금에 대체하는 조치 및 책무의 면제(제47조 ~ 제58조의4) ····· 374

**제2장 교정조직에 관한 규정** ····· 382

제1절 교정시설(제59조 ~ 제67조) ····· 382

제2절 감독사법관(제68조 ~ 제70조의3) ····· 384

제2절의2 감독사건(제71조 ~ 제71조의6) ····· 386

제3절 보호관찰소 및 원호(제72조 ~ 제78조) ····· 387

제4절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제79조 ~ 제91조) ····· 390

**원문** ····· 394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ozzini 법)[1]

제정 1975년 7월 26일 법률 제354호(1975년 8월 9일 제212호 관보 부록에 게재)

## 제1장 교정처우(Trattamento penitenziario)

### 제1절 지도원리

**제1조 처우 및 재교육**

① 교정처우는 인권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고 또한 인간존엄의 존중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처우는 국적, 인종,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 정치적 의견과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절대 공평하게 실시한다.

③ 시설 내에서는 질서와 규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상기의 요청과 맞지 아니하는 제한 또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재판상의 목적에서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할 수 없다.

④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고 표시된다.

⑤ 미결피구금자의 처우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죄가 있는 것(colpevoli)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⑥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하여서는,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도 그들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교육처우가 실시되어야 한다. 처우는 피수용자의 특별한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화의 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2조 형 및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비용**

① 형 및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형자 측의 급양비 상환은 형법 제145조,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와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 처분피수용자 측의 급양비 상환은 형법 제2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작업보수의 일부 공제에 따르거나 또는 형법 제2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입원비의 상환에 관하여 정한 것에 따라 실시한다.

④ 급양비란 식사 및 의류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⑤ 급양비의 상환은 실제 비용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로 실시한다. 사법부장관은 모든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화국의 모든 시설에 대한 피구금자의 평균 급양액을 정한다.

**제3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 사이의 조건의 평등성**

교정시설에는 피구금자와 처분피수용자 사이에 생활조건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돈(自己用金) 및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품의 총액에 관한 제한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권리행사**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금치산 상태에 있는 때에도 본 법에서 유래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다.

---

1) 참고자료 日本法務省矯正局, 「イタリア行刑法, 1991年 現在」, 2000년 5월

### 제4조의2 일정한 범죄에 의한 수형자의 사회적 위험성의 확인

1. 구외작업에의 취업, 보상귀휴 및 제4절에서 정하는 구금대체조치는 조직범죄 또는 사회전복사범과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테러행위 또는 입헌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범죄로 인한 수형자, 형법 제416조의2가 정하는 결사활동을 원조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로 인한 수형자 및 형법 제416조의2, 제630조 및 1990년 10월 9일부 대통령령 제309조에 따라 승인된 마약 또는 향정신약의 규제 및 마약의존관련 증상의 예방, 치료, 재활 등에 관한 법률의 통일법전 제74조가 정하는 범죄 등에 의한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형법 제575조, 제628조 제3항 및 제629조 제2항이 정하는 범죄에 의한 수형자의 경우 1990년 대통령령 제309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기 통일법전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중사안에 한하여 상기 혜택은 조직적 또는 사회전복범죄와의 관련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혜택을 허가함에 있어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은 수형자가 수용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공안위원회로부터 얻어진 상세한 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당해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신청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시점에는 결정을 한다. 동 위원회에 교정시설의 장이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2-2. 전 항의 네 번째 문장에서 정하는 혜택을 허가함에 있어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은 도경찰국장이 제공하는 상세한 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신청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시점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동 위원회가 특별한 안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즉 지역 이외 또는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과의 연결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에게 그 통지를 하고, 전 항에서 정하는 기한은 소관 중앙기관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30일 연장한다.

3-3. 구외작업에의 취업, 보상귀휴 및 제6절에서 정하는 대체구금조치는 마피아수사사법관 또는 지방검사의 자체적인 판단 또는 수형자가 수용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공안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고의적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조직범죄와의 관련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형자에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절 일반조건

### 제5조 교정건축의 특징

① 교정시설은 많지 않은 수의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물은 개인생활의 필요에 따르는 장소 이외에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 제6조 체재장소[2] 및 거실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작업 및 독서가 가능하도록 자연채광과 조명으로 밝게 비치는 충분한 넓이이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통풍이 좋고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품위가 있고 합리적인 종류의 위생설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2) 체재장소(locali di so ggiorno)란 공장, 독서실, 오락실 등을 가리킨다

되어야 한다.

② 거실은 독거실과 혼거실로 이루어진다.

③ 혼거실에 수용하는 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④ 미결피구금자에게는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독거실 수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각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그 침대에 상응하는 필수품을 지급한다.

**제7조 의류 및 필수품**

① 각 피수용자에게는 보존이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이며, 생활의 정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족한 내의, 의류 및 일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복은 단일 색깔의 것으로, 품위가 있는 모양의 것으로 한다. 신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작업복이 인정된다.

③ 미결피구금자 및 1년 미만의 자유형 수형자는 청결하고 그에 합당한 것이라면 개인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미결피구금자에게 지급되는 의류는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와 어느 정도 다른 것이어야 한다.

④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자변의 필수품 및 정서적 또는 감정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위생**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세면장 및 욕실 또는 샤워, 그 밖에 개인위생과 건강에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사용을 보장한다.

② 각 시설에는 정기적인 이발과 면도를 위한 서비스 기관을 둔다. 개인용 전기면도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발과 면도는 보건위생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를 과할 수 있다.

**제9조 식사**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연령 · 성별 · 건강상태 · 작업 · 계절 및 기후에 맞는 식사로서 신선하고 충분한 것을 보장한다.

② 식사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지급한다.

③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언제라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매일의 식사의 양과 질은 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일람표로 결정한다.

⑤ 식료품 조달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정당국이 직접 실시한다.

⑥ 매월마다 추첨을 통하여 선출된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대표자는 식사표의 적용 및 식사준비를 감독한다.

⑦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비용으로 식료품 및 기호품(conforto)의 구입이 인정된다. 식료품 또는 기호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교정당국이 직접 경영하는 매점 또는 시 · 군 · 구의 감독가격으로 판매하는 점포에 위탁하여야 한다. 가격은 시설 소재지의 시가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대표자는 시설의 직원 중에서 선발된 시설의 장의 대리자와 공동으로 시설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질과 가격을 감독한다.

**제10조 거실 밖으로 나가는 것**

① 거실 밖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실외에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이 시간은 특별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하루에 1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거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33조 및 제39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단으로 실시하고 가능하면 운동으로 한다.

**제11조 의료업무**

① 각 교정시설에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보건과 진료의 필요에 따르는 의무실과 약국을 설치한다. 또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② 시설의 의무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치료 또는 진료가 필요한 때는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감독사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민간병원 그 밖에 외부의 치료시설에 이송한다. 미결피구금자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 후는 감독사법관이,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식 예심중인 경우 예심판사가, 간이예심 중으로 직행공판의 경우 공판에 피고인이 출두하기까지는 검사가, 공판준비 중이거나 공판진행 중에는 재판장이, 치안판사의 관할 소송 중에는 치안판사가, 중죄법원의 공판준비 중으로 중죄법원의 소집까지는 고등법원 재판장이, 중죄법원의 소집 이후에는 중죄법원의 재판장이 각각 명한다.

③ 전 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법당국은 관련 명령 또는 긴급 상황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이 내리는 명령에 의하여 민간병원이나 그 외의 외부 치료시설에 이송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도주의 위험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변보호가 요청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감시를 받지 아니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시설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형법 385조 1항에 의해 처벌된다.

⑤ 시설에 수용되는 때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진찰을 실시하고 시설에 수용되는 기간 중에도 당사자의 신청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진료를 자주 실시한다.

⑥ 의사는 매일 환자 및 신청이 있는 자를 진료하여야 하고 또한 특수검사 및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발견 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수용자가 취업하고 있는 작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즉시 격리한다. 정신병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학적 치료 및 정신위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다.

⑧ 모든 여자교정시설에는 임신부 및 산모에 대한 진료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다.

⑨ 산모에게는 자녀가 만 3세에 이를 때까지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을 인정한다. 유아의 보살핌과 양육을 위하여 육아실을 분리하여 마련한다.

⑩ 교정당국은 의무실의 조직 및 기능을 위하여 주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방의 병원 및 그 밖의 치료시설, 공공의료기관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⑪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뢰하는 의사의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결피구금자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있기까지는 검사의 사전허가가 요구된다.

⑫ 시도의 의사는 보건위생상태, 교정의료진이 실시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의 타당성 및 시설의 개략적인 보건위생상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적어도 연 2회 교정시설을 방문한다.

⑬ 시도의 의사는 자신이 행한 방문의 결과 및 채택하여야 할 방책을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주정부의 담당 관리 및 감독사법관에게 통보한다.

### 제12조 작업,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설비 일체

① 교정시설에는 처우의 필요에 따라 작업, 교과교육 및 직업교육, 여가활동, 문화적 활동, 그 밖의 모든 집단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 일체를 마련한다.

② 그 밖에 시설에는 제16조 제2항의 위원회가 선정한 도서 및 잡지를 갖춘 도서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대표자는 도서실 업무의 운영에 참가한다.

## 제3절 처우의 형태

### 제13조 처우의 개별화

① 교정처우는 각 피수용자 인격의 특별한 필요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그 밖에 사회적 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인격에 대한 과학적 분류를 실시한다. 이 분류는 집행 초에 실시하고 집행 중에도 계속하여 실시한다.

③ 분류의 결과에 의거하여 각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를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재교육 처우에 도움이 되는 지시를 수립하고 이에 관한 계획표를 편집한다. 이 계획표는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 증보하거나 또는 수정한다.

④ 처우의 일반적 지시 및 특별지시는 재판, 경력 및 건강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개인기록부(cartella personale)에 편철한다. 이 기록부에는 실시된 처우의 경과 및 그 결과를 계속하여 기입한다.

⑤ 분류 및 처우활동은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수용분류, 처우분류 및 종류

① 시설 및 구획에 수용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수를 제한하여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와 처분피수용자를 각 시설에의 수용분류(assignment) 및 각 시설구획으로의 처우분류(grouping)시에는 집단적 재교육 실시 및 상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여 실시한다. 또한 수용분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미결피구금자는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로부터, 25세 미만자는 그 이상의 연령층으로부터, 수형자는 처분피수용자로부터, 구류수형자는 징역수형자로부터 반드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④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하여 본래 속하는 처우분류와는 다른 집단이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⑤ 여성은 별개의 시설 또는 동일 시설의 분리된 구획에 수용한다.

### 제14조의2 특별감독제도

1. 다음에 열거하는 수형자, 처분피수용자 및 미결피구금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걸쳐 1회에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회의 연기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특별감독하에 둘 수 있다.
   a. 그 행동이 시설 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질서를 교란하는 자
   b. 폭력 또는 위하를 통해 다른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구금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
   c. 시설 내의 생활에 있어서 다른 피구금자를 복종시켜 이용하는 자
2. 전 항의 조치는 제80조 제4항에서 정하는 2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규율위원회의 견해를 자문한 후 정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교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3. 미결피구금자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하는 때는 관할 사법당국에도 자문을 구한 가운데 실시한다.
4. 필요하고 긴급한 때에는 교정당국은 제2항의 위원회의 견해를 자문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당국은 특별감독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 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가운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는 실효한다.
5. 이전의 수용 시 태도 또는 범죄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불구속하에서 보인 다른 구체적인 태도에 의거하여 수형자, 처분피수용자 또는 미결피구금자를 그 시설에 입소 시부터 특별감독하에 둘 수 있다. 사법당국은 교정당국에게 그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통지하고, 교정당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조치의 채택에 있어 결정을 내린다.
6. 본 조가 정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독사법관에게 그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즉시 연락을 한다.

**제14조의3 불복신청**

1. 특별감독조치의 실시 또는 기간연장에 대하여 그 대상자는 조치결정의 통지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신청은 조치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2. 감독법원은 불복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판사실의 명령에 따라 조치를 강구한다.
3. 전 항의 절차는 변호인과 검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다. 대상자와 교정당국은 비망록을 제출할 수 있다.
4.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의2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14조의4 특별감독제도의 내용**

1. 특별감독하에서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또는 교정당국이 정한 처우규칙에 대하여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과한다.
2. 교정당국은 사전에 관할 사법당국에 정당한 이유에 의한 승인을 받아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제한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특별감독을 명하는 지시 중에 규정할 수 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본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위생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식사, 의류 및 일용품, 내부규칙에 따라 인정된 물품의 안전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소지, 구입 및 수취,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구독, 예배, 허가된 종류의 라디오 기기, 제10조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1일 최저 2시간의 실외시간, 배우자 · 동거자 · 자녀 · 양친 및 변호인과의 접견
5.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가 수용된 시설에서 특별감독을 할 수 없는 때는 교정당국은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조치에 따라 감독사법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 변호 및 가족에 대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다른 상당한 시설에의 이송을 명할 수 있다. 감독사법관은 이송의 원인이 된 이유가 근거를 결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처우의 내용**

①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처우는 주로 교육, 작업, 종교, 문화활동, 여가활동 및 운동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고, 아울러 외부와의 접촉기회 및 가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재교육 처우를 위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작업을 보장한다.

③ 미결피구금자에게는 그 신청에 따라 교육활동,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것,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법관청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희망에 따르는 것으로 그리고 그 재판상의 지위에 상응하는 조건하에서 작업적 활동 또는 직업보도(職業輔導)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 제16조 시설의 내규

① 각 시설에 있어서 교정처우는 교정당국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각 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처우의 형태는 내규로 정한다. 이 내규는 감독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 의사 1인, 교회사 1인, 작업주임 1인, 분류교관(educatore)[3] 및 사회복지사(assistente sociale)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고 또한 수정한다. 위원회는 제8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③ 또한 내규는 어떤 명목으로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지켜야하는 규제를 정한다.

④ 내규 및 그 수정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17조 재교육 활동에의 지역사회의 참가

①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사회복귀는 재교육 활동에의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참가를 촉진시키고 조직하는 것에 의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② 피구금자의 재사회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사회와 자유사회 사이의 접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모든 자는 허가를 얻고 감독판사의 지시에 따르고 시설의 장의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 교정시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인정된다.

③ 전 항에 열거하는 자는 시설의 장에게 감독을 받아 활동한다.

### 제18조 접견, 통신 및 정보

1.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소송활동을 하는 목적이라도 친족, 그 밖의 자와 접견 및 통신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접견은 계호직원의 시선내에 그 내용은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3. 가족과의 접견에는 특별한 배려를 기울인다.
4. 교정당국은 통신에 필요한 문구를 준비하지 아니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필요한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5.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 이외의 자와의 관계에서 규정이 정하는 형태 및 주의에 따라 전화에 의한 통신을 허가할 수 있다.
6.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원하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신문, 잡지 및 도서를 소지하고 그 밖의 정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7. (폐지)
8. 미결피구금자에 대하여서는 접견의 허가, 통신검열 및 전화통신의 허가는 경우에 따라 감독사법관 및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법관청의 권한에 속한다.
9. (폐지)

### 제18조의2 수사 목적의 접견

1. 1991년 10월 29일 법령 제345호 제3조를 수정 · 보완한 1991년 12월 30일 법률 제410호가 정하는 마피아전문수사부와 1991년 5월 13일 법령 제12조를 수정 · 보완한 1991년 7월 12일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

3) 분류교관의 권한에 대하여서는 제82조를 또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에 대하여서는 제81조 참조

및 도의 기관 소속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부서와 기관의 책임자가 임명한 사법경찰관은 교정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본 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의 접견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1-2. 위 제1호의 규정은 테러리즘에 관한 수사에 연루된 경우 국내 · 외의 테러리즘에 관련되거나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경찰 또는 군인경찰의 도 지역 이상 기관 및 부서 소속의 책임자, 국가정부의 책임자가 임명한 사법경찰관 그리고 테러리즘의 자금적인 면에 연관된 경우에는 국가정부의 책임자가 임명한 재정경찰관에게도 적용된다.

2. 위 제1호와 제1-2호에서 열거하는 경찰 소속원의 경우 다음의 기관에 접견허가를 신청한다.

a. 처분피수용자, 수형자, 미결피구금자의 접견허가는 법무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한다.

b. 수사 대상인의 접견허가는 검사에게 신청한다.

3. 위 제2호에서 열거하는 접견허가를 내리는 당국은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록부를 마련한다.

4. 내무부장관 또는 그 대리인 경찰국장의 명에 의해 특수 긴급상황이라고 확인된 경우 제2호 a에서 정하는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접견사실은 해당 관청에 직접 통보하여 제3호의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5. 또한 마피아수사사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71-2조가 정하는 긴급협조권을 행사하여 당국에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1조 제3-2항에 열거된 범죄에 관련된 수사 대상자나 미결피구금자 및 수형자를 제2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접견하는 모든 경우는 마피아수사사법관에 통보된다.

**제18조의3 통신에 대한 규제 및 검열**

1. 사전수사와 범죄예방, 즉 보안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하여 최고 6개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서신 및 전보를 통한 우편물과 간행물의 수신 제약

b. 통신내용의 사전검열인장제도

c. 통신내용을 제외한 이에 동봉된 내용물의 검열

2. 서신 및 전보의 수신인이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5항에 해당하거나 사법당국, 본 법의 제35조가 열거하는 당국, 국회의원,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 대표, 이탈리아가 속하는 인권보호 성격의 국제행정기구 및 국제사법기구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3. 제1호의 조치는 검사의 요청이나 시설 장의 제안에 따라 이유를 명시한 법령에 의해 시행된다.

a.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 또는 제1심 판결선고 후의 미결피구금자를 대상으로 감독사법관이 명한다.

b. 제1심 판결선고 이전의 미결피구금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제279조가 정하는 사법관이 명하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판소장이나 중죄법원이 담당한다.

4. 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법당국은 통신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인장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설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임명한 교정당국의 일원이 담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5. 사전검열인장제도를 통해 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법당국이 수신인이 접해서는 안 되는 우편물 및 간행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전달되지 않으며 이 사실은 해당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통보된다.

6. 제1호와 제5호의 조치에 대하여 그 대상자는 제14조의3이 열거하는 절차에 따라 감독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은 감독사법관이 조치를 내린 경우 감독사법관에게 제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실행한 사법관이 속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조치를 내린 사법관 자신은 합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본 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666조에 따른다.

7. 제1호의 c에 따라 우편물에 동봉된 내용물을 검열할 때에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앞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19조 교육**

① 교정시설에서 문화적 및 직업적 교육은 의무교육과정 및 직업교육과정을 조직하여 시행 중인 지도 방침에 따르고 피수용자의 조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25세 미만 피구금자의 문화적 교육 및 직업교육에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③ 교정시설에는 학교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scuole di instruzione secondaria di secondo grado)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학과정 및 그와 동등한 과정의 공부를 하는 데 대하여 원조를 한다. 또한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교육과정을 받는 것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⑤ 도서를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도서실에 들어가서 도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 작업**

① 교정시설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취업과 직업교육에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업을 조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주정부가 허가한 사립기관이 주도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교도작업은 처벌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여 보수를 동반한다.

③ 작업은 수형자, 농업집단 및 노작소의 보안처분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④ 치료감호소 및 사법정신병원의 보안처분에 처해진 자에게는 치료목적과 부합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교도작업의 조직 및 방법은 사회복귀를 원조하고 피수용자에게 통상의 노동조건에 상응하는 직업적 준비를 마련하도록 일반사회의 노동조직 및 방법을 반영해야 한다.

⑥ 피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본 법 제14-2조에서 열거하는 특별감독 대상인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를 제외하고 구금 및 수용 중 실업기간이 긴 순서부터 부양가족수와 직업근성, 경력사항, 출소 이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⑦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작업의 부과는 일반적인 사항과 기술 및 직업에 따라 등급을 매긴 두 개의 특정 명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⑧ 각 시설은 위 명단의 등급 설정과 취업관련 기관에 대한 허가업무를 위하여 시설의 장과 각 분야에서 선발된 교정경찰 소속 조사관 또는 감독관 1명과 교육담당자 1명, 전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공동지명한 대표 1명, 해당 지역의 취업추진위원회가 지명한 대표 1명, 해당 지역 노동조합의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한다.

⑨ 이 위원회의 회의에는 각 시설의 내규에 따라 추첨으로 선출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대표 1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제정권은 갖지 않는다.

⑩ 각 구성원은 상기한 기준에 따라 대리인을 선출 및 지명한다.

⑪ 구외작업에는 일반 및 농업 분야의 취업에 관한 일반법규와 1987년 2월 28일 법률 제56호가 적용된다.

⑫ 본 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는 취업 일반법규를 적용한다.

⑬ 교정행정기관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은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사기업, 사회협동조합과 협의안을 체결한다. 이 협의사항에는 작업의 내용 및 조건, 교육,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제외한 보수가 포함된다.

⑭ 국가일반회계규정 및 특별회계규정의 예외조치에 따라서 교정시설 당국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제품을 인근지역에서 거래되는 유사제품의 판매가를 가능한 고려하여 원가에 준하거나 그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⑮ 특별한 수공기술, 문화 또는 예술적 능력을 지닌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작업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수공기술, 지적 또는 예술적 활동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⑯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수를 받는 견습공이 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⑰ 작업시간은 노동관련 현행법이 정하는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노동관련 현행법에 비추어 휴일의 면업과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 제1항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해당 주정부의 예산에 따른 보험과 그에 관련된 기타 현행법에 의거한 보호정책의 대상이 된다.

⑱ 작업관계의 형성과 진행 그리고 1991년 11월 8일 법률 제381호가 정하는 사회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획득에 대한 본 법의 효력에는 형사 및 민사 처벌로 인한 자격박탈이 적용되지 않는다.

⑲ 매년 3월 31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피구금자의 작업에 대한 법률 규정이 실행된 양상에 관하여 국회에 면밀히 보고한다.

### 제20조의2 작업 조직양식

1. 교정당국의 주정부감독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정당국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사에게 작업에 대한 전문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들은 작업에 대한 책임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처분피수용자의 기술자격 획득을 도모한다. 또한 필요 시에는 공기업 및 사기업이 제공하는 기획을 매입하여 새로운 종류의 작업을 시험 삼아 도입할 수 있다.
2. 그 외에도 교정당국은 제20조 제11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교도작업 생산품의 판매를 장려하며 이를 위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공기업 및 사기업과 사전 협의를 맺을 수 있다.
3. 시설당국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개인이 교정당국에 상품의 제공을 주문하는 경우 대금은 국가일반회계법규 및 특별회계법규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1942년 7월 3일 법률 제971호 제1조와 1920년 5월 16일 칙령 제1908호 제611조의 규정은 폐지한다.

### 제21조 구외작업

1.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제15조가 규정하는 목적의 정당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건하에서 구외작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하나에 의해 징역형이 과해진 자의 경우 형기 중 적어도 3분의 1이 경과한 후 또는 5년을 복역한 후 최초로 구외작업을 명할 수 있다. 무기징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복역한 후에 최초로 구외작업을 명한다.
2. 외부작업에 종사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호 없이 작업장에 내보낼 수 있다. 미결피구금자는 관할 사법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어 구외작업에 보낼 수 있다.
3. 사기업에서의 작업은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당국의 직접 감시하에 실시하여야 하

며, 시설당국은 이를 위해 임직원 및 보호관찰관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4. 각 수형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에 대한 구외작업의 허가처분은 감독사법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가능하게 된다.

4-2. 상기 항이 열거하는 규정과 제20조 16항 두 번째 문장의 규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허가를 받은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 제21조의2 미성년 자녀의 구외양육

1. 여성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제21조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만 1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 허가를 얻을 수 있다.
2. 구외작업에 관한 모든 규정 중 특히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녀의 구외양육은 모가 사망했거나 모나 그 외의 어떤 친인척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부에게도 허용될 수 있다.

### 제22조 임금의 결정

1. 취업자의 분류별 임금은 실제 행해진 작업의 양과 질 및 피국금자의 작업조직 및 종류에 의거하여 단체노동협약에서 정하는 임금조건의 3분의 2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평하게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교정시설 총감독관 1명, 기획재정부 대표자 1명, 고용노동부 대표자 1명 및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직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한다.
2. 교정시설 총감독관은 위원회의 서기를 맡는다.
3. 위원회는 견습공의 임금조건을 정한다.
4. 또한 동 위원회는 의무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과정이 교정시설 내에서 통상의 작업시간대에 실시되는 경우, 시설 내 또는 구외작업 또는 시설봉사작업에 종사하는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가 허가를 받아서 보수가 지급되는 노동에 취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최대시간, 그 이용조건 및 방법을 정한다.

### 제23조 보수 및 부양가족수당

① 작업에 종사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한도 및 형태에서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수당은 규정이 정하는 형태에 따라 부양가족에게 직접 송부한다.

### 제24조 보수의 담보가능성 및 차압가능성

① 수형자에게 귀속하는 보수에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의 상환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귀속하는 보수에서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모든 경우에 수형자를 위하여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담보 또는 차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양비 부담액의 공제 또는 교정당국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공제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분피수용자 및 미결 피구금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담보 또는 차압되지 아니한다. 다만, 급양비 부담액의 공제 또는 교정당국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가한 손해배상액의 공제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영치금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영치금은 전 조에 따라 유보한 보수부분,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금전, 그들의 소유물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 가족 및 그 밖의 자로부터의 송금 및 상금 또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② 영치금을 구성하는 금액에는 법정이자가 붙는다

③ 영치금은 시설당국이 보관한다.

④ 보관형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또는 가족이나 동거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과 출소 시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25조의2 교도작업 주정부위원회**

1. 교도작업을 담당하는 주정부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의 장은 교정당국의 주정부감독관이 담당하고 해당 지역의 기업연합 대표 및 협동조합연합 대표와 해당 주의 직업 및 직업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사회복지부 소속 행정관 1인이 주정부의 직업 및 취업 담당부서에 개입하게 된다.
2. 교도작업은 교도작업 주정부위원회의 의견과 각 시설의 규정을 수렴하여 교정당국의 주정부감독관이 채택한 지시에 따라 조직된다.
3. 작업에 종사하는 교도인원은 각 시설의 실질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내용과 수를 조절해야한다. 시설당국은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산업, 농업, 시설 내 서비스직으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 종사할 인원을 명시한 표를 게시한다.
4. 제3항의 표에는 공기업 및 사기업과 협동조합연합에서 제공하는 구외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사기업 및 협동조합연합이 시설 내부에서 진행하고자하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 또한 게시한다.
5. 매년 시설당국은 피구금자와 시설의 직원 및 재직 가능한 교정경찰의 수, 생산시설의 규모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을 세워 지시한다.
6. 위 표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간 작업계획은 교도당국의 주정부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7. 각 시설은 보안체제가 느슨한 곳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종교 및 예배**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교의를 배우며 예배에 출석하는 자유를 가진다.

② 시설 내에서는 카톨릭교 예배의 거행을 보장한다.

③ 각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교회사를 배치한다.

④ 카톨릭교 이외의 종교의 신자는 그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종파의 성직자의 방문을 받고 또한 예배를 거행할 수 있다.

**제27조 문화활동, 여가활동 및 운동**

① 시설 내에서는 문화활동, 운동, 여가활동 및 그 밖에 재교육 처우의 틀 내에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인격형성을 위한 활동을 돕고 조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이외에 분류교관, 사회복지사,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각 대표자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전 항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28조 가족과의 관계**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9조 수용형태, 이송, 질병 및 사망시 연락**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친족 및 자기가 지정하는 그 밖의 자에게 교정시설 입소 또는 이송을 즉시 알릴 수 있다.

②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사망,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의 경우에는 친족 및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절한 때 통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 항에 열거하는 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때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0조 귀휴

① 가족 또는 동거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수형자 및 피처분용자에 대해서는 감독사법관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위문하기 위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미결피구금자에 대해서는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까지는 미결피구금자를 외부의 치료소에 이송하는 것을 명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관청이 귀휴를 허가한다.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이, 또한 대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귀휴를 허가한다.

② 특별히 중대한 가족의 일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귀휴기간의 종료 시까지 시설에 돌아오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3시간을 초과하고 12시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징벌을 과한다. 12시간 이상인 때에는 형법 제385조[4] 제1항에 따라 벌하고 그리고 같은 조 마지막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휴기간이 종료하고 3시간 후에 시설에 돌아온 처분피수용자는 징벌을 과한다.

### 제30조의2 귀휴에 관한 결정 및 항고

① 권한을 가지는 관청은 귀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자가 귀휴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의 공안관청을 포함하는 공안관청을 통하여 신청과 관련되는 이유의 존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처분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③ 전 항의 결정은 정규의 방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전보 또는 전화 등에 의해 즉시 검사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검사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독사법관에 의해 결정이 행해진 때는 감독법원에, 그밖의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이 행해진 때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④ 감독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필요에 따라 간단한 조회를 한 가운데 항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전 항에 따라서 즉시 통지한다.

⑤ 감독사법관 또는 고등법원 재판장은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심리하는 합의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전 항의 규정의 적용에 따라 관할지의 사법감독관을 포함한 감독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때는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독법원을 통합한다.

⑦ 귀휴실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기까지 연기하고 또한 제4항의 절차 동안은 동 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종료까지 연기한다.

⑧ 전 항의 규정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귀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직원의 동행이 필요적이다.

---

4) 형법 제385조(도주) ① 범죄로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도주자가 형선고전에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한다

⑨ 고등법원 검사장은 허가된 귀휴 및 그 경과에 대하여 귀휴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3월마다 보고를 받는다.

**제30조의3 보상귀휴**

1. 본 조 제8항의 취지에 따라 태도가 정상으로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 감독사법관은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한번에 15일 이내의 기한으로 애정에 관한 사항, 문화적 사항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상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복역 매 1년에 대하여 합계 45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미성년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보상귀휴의 기간은 한번에 2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합계 복역 각 1년에 대하여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보상귀휴의 실시는 처우계획의 보완부분으로, 분류직원 및 사회복지사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의 협력을 얻어 감독을 실시한다.
4. 귀휴허가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a. 3년 이하의 구류수형자 또는 구류연결을 포함하는 징역수형자
   b.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수형자로 적어도 형기의 4분의 1을 복역한 자
   c.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하나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 적어도 형기의 2분의 1 또는 10년을 복역한 자
   d. 무기징역 수형자로 적어도 10년을 복역한 자
5. 형벌 또는 제한처분을 집행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복역 중 또는 개인의 자유제한처분집행 중에 일어난 고의의 범죄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건을 일으키고 2년을 경과한 후에 최초로 허가할 수 있다.
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에 대한 보장을 적용한다. 또한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7. 보상귀휴에 관한 조치는 제30조의 2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 감독법원에의 항고 대상이 된다.
8. 수형자의 태도는 구금 중에 시설에서 조직되는 활동에서 또는 노동 또는 문화적 활동에서 일관된 책임감과 정당한 개인적 행동을 보인 때 정상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의4 상습범에 대한 보상귀휴 허가**

1. 형법 제9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습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피구금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제30의3조 제4항에 대한 보상귀휴를 허가한다.
   a. 형기의 3분의 일이 경과한 후 a항에 적용한다.
   b. 형기의 2분의 일이 경과한 후 b항에 적용한다.
   c. 형기의 3분의 2가 경과한 후 또는 15년을 복역한 후 c와 d항에 적용한다.

**제31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구성**

제12조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대표자는 시설의 내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첨으로 선출한다.

## 제4절 교정제도

### 제32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행동규범, 손해배상의무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입소 시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속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 및 규율과 처우에 관한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을 고지한다.

② 피수용자는 교정생활을 규율하는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는 시설의 업무에 있어서 규율 권한에 관계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획득을 의미하는 일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④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자기의 자유사용에 맡겨진 물건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어떠한 손해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정당국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손해를 입힌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실시되어야 하는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33조 독거수용

교정시설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계속 독거구금을 허가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때
2. 집단활동에서 제외되는 제재의 집행 중인 때
3. 예심 중인 미결피구금자 및 보안처분 절차 중인 피체포자에 대해서는 사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34조 개인적 검사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보안상의 이유에서 개인적 검사에 복종한다.

② 개인적 검사는 인격을 완전히 존중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불복신청권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구두 또는 봉합된 서면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 순회점검관, 교정본부장 및 법무부장관
2. 감독사법관
3. 시설을 순시하는 사법관청 및 의료관청
4. 주 참사회(giunta regionale)[5] 의장
5. 국가원수[6]

### 제36조 규율(regime disciplinare)

규율은 책임감과 자기통제능력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실현한다. 규율은 피수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조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 제37조 우대조치

① 우대조치는 개인적 행동 및 시설 내에서 조직한 활동에서 나타난 책임감을 승인하는 것이다.

---

5) 지방의회란 주의 집행기관이다.

6)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Capo dello Stato)이다(헌법 제87조 제1항)

② 우대조치 및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규율위반**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규칙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본인의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징벌도 부과할 수 없다. 이 확인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다.

③ 징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 및 경중 외에 본인의 행상 및 일신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징벌은 인격을 존중하여 집행한다.

**제39조 징벌**

① 규율위반에 대하여서는 다음 징벌만을 과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의 주의(richiamo)
2. 직원 및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집단이 동석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시설의 장에 의한 훈계
3. 10일 이내의 여가활동 및 운동의 정지
4. 실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10일 이하의 금치(ısolamento)
5. 15일 이하의 집단활동에서 제외

② 집단활동 제외의 징벌은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가 없으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③ 집단활동 제외의 징벌은 임부, 산후 6개월 미만의 자 및 1세 미만의 본인의 자식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모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연기한다.

**제40조 징벌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는 직원**

① 주의 및 훈계의 징벌은 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그 밖의 징벌은 규율위원회(consıglıo dı dıscıplina)가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소장 또는 소장에게 지장이 있는 때에는 소장의 차순위자의 직원 외에 의사 1인 및 분류교관 1인으로 구성한다.

**제41조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수단의 사용**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력행위를 예방 또는 저지하기 위하여, 도주 기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지시된 명령의 집행에 대한 부작위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불가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건에 대하여 그 밖의 조사를 실시한다.

③ 어떠한 유형적 강제수단도 규칙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징계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가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본인의 신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제수단의 사용은 꼭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의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④ 시설의 계호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시설의 장이 명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제41조의2 긴급사태

1. 폭동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특수 상황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처우규칙을 중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중단조치는 질서와 안전을 회복하는 목적을 위해 취해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기간에 걸쳐 실시한다.
2. 또한 공안과 질서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2 제1항, 첫 문장이 명시하는 범죄의 하나에 의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한 통상적 처우규칙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중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중단조치는 조직범죄나 테러리즘 및 체제전복단체와의 관계를 확연히 드러내는 증거를 보이는 자를 대상으로 본 법에 근거한 시설의 처우규정이 보안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수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중단조치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 위 문장에서 열거한 조직 및 단체와의 관계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를 수반하게 된다.

2-2. 제2항의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수사 담당 검사국 또는 담당 사법관 소속 검사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경우에 따라 마피아수사사법관 및 국가경찰기관, 조직범죄와 테러리즘 및 체제전복단체 단속기관으로부터 기타 필수정보를 취득한 후 이유를 명시한 법령에 의해 시행한다. 이 조치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조직범죄나 테러리즘 및 체제전복단체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동일한 형식으로 1년마다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3. 만약 제2항의 중단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하거나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조건이 소멸된 경우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는 이유를 명시한 법령에 의해 이를 철회한다.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조치에 대해 제기한 이의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제2-5항 및 제2-6항에 의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30일이 지난 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제기된 이의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4. 제2항의 처우규칙 및 시설 내규의 중단조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특히 이전에 가담했거나 현재 가담중인 범죄조직과의 접촉이나 이와 대립하는 범죄조직 구성원과의 충돌 또는 동일 조직 및 협력관계에 있는 조직에 속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의 교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b. 한 달에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2회 이하의 접견을 허가하되 물건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시행한다. 접견대상은 가족과 동거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미결피구금자에 대해 해당 사법당국이 허가를 내리는 경우는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당국의 동기를 명시한 승인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접견내용은 청취 및 녹취를 통해 감시될 수 있다. 조치를 처음으로 취한지 6개월 후 시설의 장 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미결피구금자에 대해 해당 사법당국이 이유를 명시한 허가를 내리는 경우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매월 가족 및 동거인과 10분 이내의 전화상 접견이 가능하고 그 내용은 녹취된다. 본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외부로부터 수취 가능한 금액 및 동산, 물품에 대한 규제

d.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대표 배제

e. 법무 분야에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유럽당국 및 국가당국의 구성원과 통신을 제외한 우편물에 대한 사전 검열

f. 실외활동은 제10조 제1항의 최소제한을 준수하되 5인 이상의 무리를 이루거나 하루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한다.

2-5. 제2항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거나 연장한 대상인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또는 그 변호인은 취해진 조치에 대해 이의를 나타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불복은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권은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수용된 시설을 관할하는 감독법원이 지닌다. 불복신청은 조치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이후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이송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은 불변한다.

2-6. 2-5항의 불복 신청 후 10일 이내에 법원의 판사실은 형사소송법 제666조 및 제678조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조치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제2항의 요건에 부응하는 적합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이 내린 법률위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고등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 항고 신청은 조치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대법원에 정해진 기한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항고 내용이 수렴되어 취해진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명을 내리되 감독법원의 결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실이나 항고한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항고내용 중 일부만이 수렴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수렴된 일부사항을 이와 동일한 양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이송**

① 이송은 보안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에 따라 시설의 필요에 따르거나 또는 재판, 건강, 면학 및 가정사정에 따라 실시된다.

② 이송대상자는 가족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에 수용한다는 기준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이송 시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개인 소지품과 영치금 중 적어도 그 일부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마지막 두 항은 폐지한다)

**제42조의2 동행외출**

1. 동행외출은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 구류 또는 체포된 자 등 자유제한처분을 받은 모든 대상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동행하여 이동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2. 교정경찰이 동행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성인일 경우, 외출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은 관련 법률 및 규칙을 따른다. 여성의 경우 여성직원이 동반한다.
3. 청소년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대상을 동행 외출하는 경우, 교정경찰의 미성년자 담당부서 소속원이 부재할 때 여타 경찰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동행 시 그 대상을 일반인의 호기심 및 모든 종류의 공개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동행 대상에게 불필요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개인의 동행외출 시 그 대상이 위험인물이거나 도주의 위험성 또는 동행외출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 수갑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그 외의 경우 수갑이나 다른 어떠한 유형적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동행외출 대상인 피구금자나 처분피수용자가 위험인물인지 도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동행외

출을 결정하는 동시에 사법당국 및 해당 교정당국이 평가하고 경우에 따른 지시사항을 내린다.

6. 단체의 동행외출 시에는 부령이 규정하는 종류의 연결형 수갑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그 외의 다른 어떠한 유형적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7. 개인이나 단체의 동행외출 시 규정에서 허가하는 경우, 사복의 착용이 가능하다. 제3항에 속하는 동행외출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복을 착용한다.

**제43조 석방**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석방은 권한을 가지는 사법관청 또는 경찰관청의 문서에 의한 명령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지체없이 실시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소재지 및 본인이 거주지로 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에 적어도 3월 전에 석방을 통지함과 동시에 상응한 원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전달한다. 석방시기를 3월 전에 예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의 장은 석방결정을 안 후 즉시 위 사항을 통지한다.

③ 시설의 장은 본인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져야 할 때는 감독사법관 및 경찰관청에 미리 석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규율위원회는 석방 시 또는 그 후, 본인의 청구에 따라, 획득한 직업상의 자격 및 보유한 행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교부한다.

⑤ 개인의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복을 지급한다.

**제44조 출생, 혼인, 사망**

①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혼인, 출생 및 사망에 대하여서는 호적부에 시설의 기재는 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의 장은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사망을 소재지의 사법관청과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체는 친족의 자유로운 처분에 신속하게 위임한다.

## 제5절 원호

**제45조 가족에 대한 원조**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처우는 그 가족에 대한 원조활동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다.

② 가족에 대한 원조활동은 본인과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및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공공단체 및 보호사(privati qualificati nell'assistenza sociale)의 협력을 구한다.

**제46조 석방후 원호**

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석방직전 및 석방 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원호를 받는다.

② 자유사회로의 종국적인 복귀는 전 조에 열거하는 단체와의 협력에 의해서도 실시되는 보호관찰(servizio sociale)의 실시에 의해 원호한다.

③ 중대한 신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이상을 가지는 피석방자에게는 필요한 원호를 베풀기 위하여 공공보건기관에 보낸다.

## 제6절 구금에 대체하는 조치 및 책무의 면제

### 제47조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1. 선고된 자유형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수형자는 형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시설 외의 보호관찰소(social service)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설에서 최소 1개월의 공동생활을 통해 관찰되는 인격 및 행동양상에 의거하여 이 조치의 시행과 제5항의 준수사항을 통해 범죄자의 재교육을 돕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험위탁을 실시한다.
3. 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을 거치지 않은 수형자일지라도 전 항에서 언급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행동양상을 범행 후 지속적으로 보인 경우, 전 항의 관찰기간에 대한 절차 없이 보호관찰소에 바로 시험위탁이 가능하다.
4. 만약 수용명령의 집행 이후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시행된 지역을 관할하는 감독사법관에게 이에 대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신청자가 시험위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수용상태의 연장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탈출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수용명령의 집행중단과 수형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감독사법관은 이에 대한 사항을 감독법원에 즉각 통보하고 감독법원은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수용명령의 집행중단은 이 기간에만 효력을 지닌다. 신청 건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수용명령의 집행을 재개하며 이후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도 수용집행은 또 다시 중단될 수 없다.
5. 위탁시행 시 본인과 보호관찰소와의 관계, 거주지, 이동의 자유, 특정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노동에 관하여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서면을 작성한다.
6. 전 항의 준수사항에는 위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중 수형자가 하나 또는 수개의 특정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지 또는 하나의 특정 시군에만 거주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범죄를 범할 우려를 자아내는 행위나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7. 준수사항 중에는 대상자가 자신이 행한 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고 가족에의 원조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8. 위탁기간 중 감독사법관은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보호관찰소는 위탁대상자의 행동양상을 감시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가족이나 그 밖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조정을 도모한다.
10. 보호관찰소는 위탁 대상자의 행동양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사법관에게 보고한다.
11. 위탁 대상자의 행동양상이 법률이나 준수사항과 대립되는 경우 시험위탁은 취소된다.
12. 시험위탁 기간을 양호하게 마치면 형기와 함께 그 외의 형사상 효력이 소멸된다.[7)]

12-2. 보호관찰소에서의 시험위탁 기간 중 보인 인격 및 행동양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의해 사회복귀를 구체적

---

7) 본 조에 규정하는 보호관찰소로의 시험위탁(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 다른 말로 바꾸면,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가석방이라고도 하는 제도로 해석된다. 그것은 형법 제176조가 정하는 가석방의 요건이 1962년 11월 25일 법률 제1634호에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서도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허가하는 길을 연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형법상 가석방의 요건은 적어도 30개월과 형기의 1/2를 경과하고 잔형이 5년 이하일 것(형법 제176조 제1항), 누범의 경우에는 적어도 4년과 형기의 4분의 3을 경과(제2항), 무기징역 수형자에 있어서는 28년간 형에 복역하는 것이다(제3항)

으로 실행한 대상은 제54조에 근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제69조 제8항, 제69-2조, 제54조 제3항 또한 적용된다.

**제47조의2 특수한 경우의 시험위탁**

① 제47조 제1항의 조건 내에서 과하여진 자유형이, 구제계획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받도록 하고 있는 약물의존자 또는 알콜의존자에 대하여 집행되는 때에는, 대상자는 어떠한 때라도 1985년 6월 21일 법률 제297호가 된 1985년 4월 22일 잠정조치령 제144호 제1조의2에 규정된 지역보건위생국, 기관, 협회, 조합 및 민간과 합의한 계획에 의거하여 치료의 속행 또는 개시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위탁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약물의존상태 또는 알콜의존상태 및 수형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의된 계획이 적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공보건위생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는 수용명령이 집행된 후 신청이 제출된 때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치안판사가 수형자의 출소를 명한다.

③ 감독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을 지명하고 즉시 심리기일을 지정하며, 늦어도 5일 전까지는 신청자, 변호인 및 검사에게 통지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할 수 없고 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은 신청을 수리불능으로 선언한다.

④ 결정과 관련하여 감독법원은 절차문서의 사본을 입수하여, 합의된 치료계획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의존상태 또는 알콜의존상태 또는 구제계획의 실시가 혜택을 얻기 위하여 우선 야기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절차를 종료시키게 되는 명령에 관해서는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사 또는 치안판사에게 즉시 통지를 하고 위탁이 명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명령을 발한다.

⑥ 감독법원이 위탁을 명한 때에는 준수사항 중에 계획실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약물의존자 또는 알콜의존자가 계획을 속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 및 검사형식에 대하여서도 정한다. 준수사항의 서면에 기재일자부터 형의 집행은 개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⑦ 본 조의 취지에 따른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은, 두 번을 넘어서 명해질 수 없다.

⑧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법에 따라 정해진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이라고 하는 대체처분규정이 적용된다.

**제47조의3 재택구금**

01. 형법 제2편 제7장 제3절 제1부와 제609-2조, 제609-4조, 제609-8조, 형사소송법 제51조 제3-2항 그리고 본 법의 제4-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범죄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가 수용명령의 집행 초기나 집행 후 만 70세에 이르면 자택 또는 공공 치료기관 및 계호시설에서 복역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성향의 범죄자로 판정되지 않고 형법 제99조에 열거된 가중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장기형의 남은 형기부분이 4년 이하이거나 4년 이하의 징역형 및 구류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택 또는 그 밖의 사택, 공공의 치료기관, 계호시설에서 복역할 수 있다.
   a. 임산부 또는 만 10세 미만의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여성
   b. 모가 사망했거나 자녀를 절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만 10세 미만의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친권을 지닌 부

c. 극악한 건강상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하는 중환자

d. 부분적인 혹은 전체적인 장애를 지닌 만 60세 이상의 노인

e. 건강, 학업, 노동 및 가족에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지닌 21세 미만자

1. 1. 형법 제9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습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수형자는 장기형의 남은 형기부분이 3년 이하이거나 3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한해 자택구금을 허가한다.

1-2. 장기형의 남은 형기부분이 2년 이하이거나 2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경우 1항의 요건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이 행해지지 않고 수형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자택 또는 여타 사택, 공공의 치료기관, 계호시설에서 복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4-2조의 범죄에 의한 수형자나 형법 제99조 4항에 의거하여 상습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3. 형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의거하여 수용명령의 집행이 필요적 또는 재량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감독법원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형기를 선고받은 경우일지라도 특정기간에 걸친 자택구금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수용명령의 집행은 자택구금 집행 중 지속된다.

1-4. 수용명령의 집행이 시행된 이후에 자택구금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령한 감독사법관은 제1항 및 제1-2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이 조치를 임시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제47조 제4항의 규정 또한 적용한다.

2. 폐지

3. 폐지

4. 재택구금을 명함에 있어 감독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4조의 규정에 따라 그 형식을 정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협력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요청 지시를 내린다. 이러한 지시와 명령은 자택구금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감독사법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2. 재택구금을 명함에 있어 감독법원은 감시당국이 협조가 가능한 경우, 전자기기 및 첨단장비의 사용을 통해 지시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재택구금을 명받은 수형자는 본 법 및 관련 집행규칙이 정하는 교정제도에는 따르지 아니한다. 재택구금 중의 수형자의 식사, 생활 및 의료계호에 관해서는 교정당국은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재택구금은 대상자의 행위가 법률 또는 준수사항에 위반하고 처분의 속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지된다.

7. 본 조 제1항에 열거하는 조건에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택구금은 중지된다.

8. 자택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것에 의하여, 그 장소를 이탈한 수형자는 형법 제385조에 의해 벌해지고, 동조 최종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9. 전 항의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는 때에는 은혜는 정지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는 철회된다.

9-2. 만약 제1-2호의 조치가 철회된 경우 위의 항들에 의거하여 남은 형기는 다른 형식의 조치로 대체될 수 없다.

**제47조의4 완전히 진행된 에이즈 및 중증의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대체구금조치**

1. 제47조 및 제47조의3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형기를 선고받은 경우일지라도 형사소송법 제286-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완전히 진행된 에이즈나 중증의 면역결핍증에 걸린 환자로 확인된 경우 또는 병원 및 대학병

원의 전염병 전문 치료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에이즈 전문 기타 치료시설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을 의향을 지닌 경우, 제47조 및 제47조의3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관할 공공의료기관 또는 교정의료기관의 진단서 그리고 병원 및 대학병원의 전염병 전문 치료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에이즈 전문 기타 치료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중이거나 실행 가능한 치료 및 진료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대체 조치에 대한 집행의 지시에는 치료계획의 실행방식에 관련된 사항 또한 포함되어야한다.
4. 재택구금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성인 대상 보호관찰소는 위 계획의 실행에 대한 보조 및 감시 활동을 담당한다.
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만약 당사자가 이와 유사한 조치를 이미 받았고 지난 1년 이내에 취소된 경력을 지닌다면 사법관은 대체구금 조치를 다시 내리지 않을 수 있다.
6. 사법관은 제1항에 의거한 대체구금 혜택을 받은 이후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정하는 범죄 중 하나로 미결피구금 또는 계호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대체구금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7. 사법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이유로 대체구금조치를 부인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정시설에 구금할 것을 명한다.
8. 본 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4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 본 조의 규정에는 본 제2항, 제2-2항, 제3항에 명시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의2가 정하는 혜택 허가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본 조의 규정은 처분피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7조의5 특별자택구금**

1. 제47조의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이 형기의 3분의 일이 경과했거나 무기징역 형기의 15년을 복역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실질적인 위험이 없고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며 보살필 수 있도록 자택 또는 그 밖의 사택, 치료기관, 계호시설에서 복역할 수 있다
2. 이 조치로 특별자택구금 중인 여성수형자에 대한 생활비와 의료 및 치료비용의 일체는 교정당국이 부담하지 않는다.
3. 특별재택구금을 명함에 있어 감독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행형식과 더불어 재택구금지를 이탈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제한을 정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에 협조요청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 이러한 지시와 명령은 특별자택구금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감독사법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출소 시에 특별재택구금 조치의 대상이 보호관찰소와의 관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다.
5. 보호관찰소는 특별재택구금 대상자의 행동양상을 감시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가족이나 그 밖의 주변 환경과의 조정을 도모한다.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행동양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사법관에게 보고한다.
6. 특별재택구금 대상자의 행동양상이 법률이나 준수사항과 대립되는 경우 특별재택구금 조치는 취소된다.
7. 모가 사망했거나 자녀를 절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피구금자인 부에게도 모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하에 특별재택구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8. 자녀가 만 10세에 이르면 이미 특별재택구금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감독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제50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반자유제 적용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기 혜택을 연장한다.

b. 특별재택구금 기간 중 보호관찰소가 보고한 대상자의 행동양상 및 위 조치의 적용 기간과 남은 형기를 고려하여 제21조의2가 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구외양육을 허가한다.

**제47조의 6 정당사유 없는 재택구금지의 이탈**

1. 특별재택구금 조치를 받은 여성 수형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택구금지로부터 12시간 미만 동안 이탈하는 경우 위 조치에 대한 철회를 심사할 수 있다.
2. 이탈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된 경우 여성 수형자는 형법 제3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또한 형법 제385조의 마지막 항의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
3. 이탈에 대한 처벌로 혜택을 철회한다.
4. 본 조의 규정은 제47조의5 제7항에 의해 특별재택구금 조치를 받은 피구금자 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8조 반자유제**

① 반자유제(regime dı semılıberta)는 노동, 학업 또는 사회복귀의 모든 점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간에 시설외부에서 보내는 것을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

② 반자유제가 인정된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는 특별히 설치하거나 또는 보통의 시설과 분리한 독립구획에 수용한다. 이러한 대상자는 사회인의 복장을 착용한다.

**제49조 반자유제의 필요적 승인**

(삭제 1981년 10월 10일 법률 제689호)

**제50조 반자유제의 임의적 승인**

1. 구류 및 6월 이하의 징역은 수형자가 보호관찰소에로 시험위탁에 되지 아니한 때는 반자유제로 집행할 수 있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 수형자에게는 적어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제4조의2가 정하는 범죄 중 하나에 의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기의 3분의 2를 경과한 후, 반자유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소에의 위탁을 실시하는 때 동 조 제2항의 관찰결과가 위탁을 정당화하지 아니한 것이어도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이외의 범죄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반자유형을 허가할 수 있다.
3. 형기계산에 관하여는 자유형에 병과되어 법률에 따라 전환된 금전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반자유제는 처우의 진전에 의해 달성된 진보에 관계하고 그리고 본인의 점진적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승인한다.
5. 무기징역이 과해진 수형자는 적어도 20년을 복역한 후 반자유형을 허가할 수 있다.
6.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재적응하는 의사를 보인 때는 형에 복역하기 전에 반자유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7. 반자유제의 허가가 3세 미만의 자녀의 모인 피구금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자는 1976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431호 제92조 마지막 항의 취지에 따라 반자유제를 위한 숙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0조의2 상습범에 대한 반자유제 허가

1. 형법 제99조 4항에 의거하여 상습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피구금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가 경과한 후 반자유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본 법률의 제4-2조 제1항에서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조치가 가능하다.

### 제51조 반자유제의 정지 및 취소

① 반자유의 조치는 본인이 그 처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반자유제가 승인된 수형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12시간 이내의 한도에서 시설에 늦게 돌아온 자는 징벌에 처한다. 또한 그자에 대해서 승인취소를 발의할 수 있다.

③ 지각이 12시간을 초과한 때는 수형자는 형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벌한다. 또한 같은 조 마지막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전 항의 죄에 대한 고발은 이 혜택의 정지를 수반하며, 형의 선고는 이 혜택의 취소를 동반한다.

⑤ 반자유제가 승인된 처분피수용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3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에 늦게 돌아온 자에게는 제5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의2 새로운 자유박탈 범죄의 발생

1.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또는 재택구금 또는 반자유처분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을 집행하여야 하는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즉시 감독사법관에게 통지한다. 감독사법관은 형벌의 병합을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조건이 지금까지 인정되는 때에는 통달에 의해 집행중인 처분의 잠정적 계속을 명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처분 자체의 정지를 명한다. 감독사법관은 감독법원에 당해 문서를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20일 이내에 처분의 속행 또는 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1조의3 대체처분의 보전정지

1.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또는 반자유제 또는 재택구금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행해진 때에는, 사법관할권을 가지는 감독사법관은 이유를 붙인 통달에 의해 그 잠정적 정지를 요청하고 위반자를 시설에 연행하도록 명한다 또한 즉시 당해 문서를 감독법원에 대하여 관할결정을 위하여 송부한다.

### 제52조 반자유제가 승인된 수형자의 휴가

① 반자유제가 승인된 수형자는 1년에 총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또는 수회의 휴가를 우대조치로 받을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 수형자는 조건부 석방제와 동일한 감시를 받는다.

③ 휴가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반자유제 승인의 취소와는 별개로 휴가를 취소 조치할 수 있다.

④ 휴가기간의 종료까지 또는 휴가의 취소 후 시설에 복귀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는 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3조 처분피수용자의 휴가

①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위험성의 재조사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직접 미리 정한 기간 내에 6월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일신상 또는 가족의 중요한 필요가 있는 때, 15일 이하의 기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

다. 또한 사회재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30일 이하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또한 반자유가 승인된 처분피수용자에게는 우대처우로서 전 조 제1항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휴가기간 중 처분피수용자는 감시가 딸린 자유제도하에 둔다.

⑤ 휴가 중의 처분피수용자가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반자유의 취소와는 별도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종료시부터 3시간 후에 시설의 돌아온 처분피수용자는 징벌에 처한다. 반자유제의 처우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3조의2 귀휴 또는 휴가기간의 계산

1. 피구금자 또는 처분피수용자가 귀휴 또는 휴가 중에 보낸 시간은 대상자가 귀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혜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의 제한처분의 기간에 모두 산입한다. 상기의 경우는 감독사법관이 이를 붙인 통달에 의해 계산제외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 전 항의 통달에 대하여 대상자는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감독법원에 불복을 제출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한 사법관은 재판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4조 선시제[8]

1. 재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자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노력의 인지로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역한 반자유제의 반년마다 45일간의 형기단축을 인정한다. 이에는 보전계호 또는 재택구금의 상태로 경과한 기간도 고려한다.
2. 이 은혜의 부여는 형의 집행지휘를 한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검사국 또는 치안판사(pretore)에게 통지한다.
3. 이 은혜의 부여에 이어서 형의 집행 중에 범한 비과실 범죄에 의한 형의 선고는 이 은혜의 취소를 동반한다.
4. 보상귀휴, 반자유제 및 조건부 자유의 은혜의 허가에 필요한 형벌처분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한 형기는 복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무기징역형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

### 제55조 감시가 딸린 자유에의 보호관찰소의 개입

감시가 딸린 자유에 부하여진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28조[9]의 규정을 유효로 하면서 보호관찰소는 그자의 사회복귀의 목적을 지원하고 조력조치를 강구한다.

### 제56조 채무의 면제

① 소송비용 및 급양비의 채무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제30조의3 제8항에서 규정하는 양호한 행상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에 대하여서는 면제한다. 이 신청은 비용회수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

8) 본 조의 표제어는 《liberazione anticipata》 라고 되어 있다 직역하면 「예정보다 조금 이른 석방」 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형기의 단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시제」 라고 번역하였다

9) 형법 제228조(감시부자유) ① 감시가 딸린 자유상태에 있는 자의 감시는 경찰관청에 위임한다
② 재판관은 감시가 딸린 자유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기회를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③ 재판관은 이 준수사항을 사후적으로 변명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감시는 본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⑤ 감시가 딸린 자유의 기간은 1년 이하로 할 수 없다
⑥ 소년의 감시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여러 항의 규정의 예에 따른다

### 제57조 은혜의 청구권

수형자, 처분피수용자 및 그의 근친자는 제47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처우 및 은혜를 청구할 수 있다. 규율위원회는 이것을 발의할 수 있다.

### 제58조 경찰관청에의 통지[10]

제56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절에 정한 조치 및 감독사법관 또는 감독법원(sezione di sorveglianza) 감독법원에 대하여서는 제70조 참조이 강구한 조치는 법원 서기명의의 서신으로 즉시 지방의 경찰관청에 통지한다.

### 제58조의2 범죄기록보관소에의 기재

범죄기록보관소에는 자유형 대체처분의 선고 및 취소에 관한 감독법원국의 조치를 기록한다.

### 제58조의3 사법에 협력하는 자

1.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하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제21조 제1항, 제30조의3 제4항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유죄판결 후라도 범죄행위가 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위하여 노력한 자 또는 사실확인 및 범인의 특정 또는 체포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의 수집에 대하여 경찰당국 또는 사법당국을 구체적으로 조력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 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는 필요한 자료를 채택하고, 협력의 대상이 된 범죄를 관할하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감독법원이 확인한다.

### 제58조의4 혜택 허가 금지

1. 구외작업에의 취업, 보상귀휴,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재택구금 및 반자유제는 형법 제385조에 의거한 처벌 대상의 행위를 범한 수형자에게는 허가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47조 11항, 제47조의3 제6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대체처분의 취소가 명해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혜택 허가의 금지는 계호 또는 형의 집행이 재개되거나 또는 전 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조치가 명해진 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에 걸쳐 효력을 지닌다.
4. 형법 제289조의2 및 제630조에서 정하는 피불법감금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인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어떠한 혜택도 허가되지 않는다.

4-2. 형기의 최소한 3분의 2 또는 무기징역 형기 중 26년간을 실제 복역하지 않는다면 1항에 언급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이외에도 형법 제385조에 의거한 처벌 대상의 행위를 범했거나 또는 구외작업, 보상귀휴, 대체구금 중 제4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는 범죄로 인해 소송 중이거나 고의적 범죄로 인정되어 최고 3

10) 1981년 11월 24일 법률 제689호의 형벌체계개정법(Mocifiche al sistema penale)(1984년부터 성립)은 형벌체계에 중용한 개정을 기한 주목해야 하는 법률이지만 그 제3장 「단기자유형에 대체하는 제재」(Sanzioni sostitutive delle pene detentive brevi)에서 다음의 세가지 종류의 대체제재를 마련하였다

(a) 반구금(semidetenzione) 재판관은 6월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때는 대신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다

(b) 감독하의 자유(libertà controllata) 재판관은 3월 이하의 구금세에 대신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다

(c) 상응하는 종류의 금전형 재판관은 1월 이하의 구금형에 대신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다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의 경우 구외작업에의 취업, 보상귀휴, 제6절의 대체구금조치를 허가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혜택조치를 철회한다.

6.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위해 새로운 범행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당국은 미결피구금자가 마지막으로 수용된 지역의 관할 감독사법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7. 제5항의 혜택허가 금지규정은 구류 및 수용명령의 집행을 재개한 시점 또는 조치의 철회 명령을 내린 후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닌다.

7-2. 형법 제9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습범죄 가중처벌을 받은 수형자의 경우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이나 자택구금, 반자유제를 1회 이상 허가하지 않는다.

## 제2장 교정조직에 관한 규정

### 제1절 교정시설

#### 제59조 성인을 위한 시설

교정본부 소관에 속하는 성인을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미결구금시설
2. 형의 집행시설
3. 보안처분 집행시설
4. 분류소

#### 제60조 미결구금시설

(1) 미결구금시설은 만다멘토(mandamento)[11] 관할 시설(case mandamentali)과 군(郡)관할 시설(case circondariali)로 나누어진다.

(2) 만다멘토 시설의 소관은 치안판사에 명령에 따라 미결피구금자의 구금한다. 동 시설은 군관할 시설이 없는 만다멘토의 도청 소재지에 설치한다.

(3) 군관할 시설은 모든 사법관청의 명령에 따라 미결피구금자의 구금한다. 동 시설은 군청 소재지에 설치한다.

(4) 만다멘토관할 시설 및 군관할 시설은, 그 밖에 경찰관청 또는 사법경찰기관에 의해 구류 또는 체포된 자의 구금 및 이송 중인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를 구금한다.

(5) 수개의 만다멘토 또는 군에 대하여서 만다멘토관할 또는 군관할의 하나의 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

#### 제61조 형집행시설

(1) 형집행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구류형의 집행을 위한 구류시설(casa di arresto). 다만, 구류시설의 분소(sezioni)을 만다멘토 소관 또는 군 소관의 구류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2. 징역형의 집행을 위한 징역시설(casa di reclusione). 다만, 징역시설의 분시설을 군 관할구치소(casa di custodia)에 설치할 수 있다.

11) 만다멘토(mandamento)라고 하는 것은 군과 지역(市町村)과의 중간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⑵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는 규칙이 정한 한도 및 형태에 따라 구류 또는 징역의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징역수형자를 구류장에 수용할 수 있다.

**제62조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시설**

⑴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집단
2. 노작소
3. 치료감호소
4. 사법정신병원

⑵ 형법 제21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열거하는 보안처분은 전 항의 시설에서 집행한다.

⑶ 다음과 같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농업집단의 보안처분집행을 위한 지소를 노작소에 또는 그 반대로,
2. 치료감호소의 보안처분 집행을 위한 지소를 사법정신병원에,
3. 농업집단 및 노작소의 보안처분 집행을 위한 지소를 징역장에.

**제63조 분류시설**

⑴ 분류시설은 독립시설 또는 다른 시설의 지소로 설치한다.

⑵ 분류시설은 제13조의 분류를 직접 실시하고, 개개의 시설에서 실시되는 같은 형태 활동의 상담에 응한다.

⑶ 분류결과는 개인기록부에 기재한다.

⑷ 사법관청의 청구에 의거하여 법의학적 검사를 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부과된 자를 분류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⑸ 분류시설은 이외에 과학적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제64조 형의 집행시설 및 보안처분의 집행시설의 다양화**

개개의 시설은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법적지위 및 개인적 또는 집단적 처우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조직하여야 한다.

**제65조 환자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설**

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린 자 또는 신체장애자는 특별한 처우를 위한 시설 또는 특별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⑵ 전 항의 시설 또는 구역에는 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에 따라 일반시설의 제도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자를 수용한다.

**제66조 시설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교정시설 및 그 지소의 설치, 변경 및 폐지는 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시설의 방문**

⑴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은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a.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장
b. 장관, 헌법재판소 판사, 국무차관, 국회의원 및 최고사법회의 구성원
c. 고등법원 재판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재판소장, 지방검찰청 검사, 각각의 관할 구역에 있는 치안판사 및 감독사법관, 그 밖에 그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모든 사법관

d.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의회 의원 및 주담당의 정부변무관(commissario di Governo)

e. 종교적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 사교구의 사교(司教)

f. 도지사(知事) 및 경찰본부장, 도의 의사

g. 교정본부장, 그 직무 대행 사법관 및 직원

h. 교정본부 심의관

i. 교회사의 감독자

j. 교정당국의 직원(gli ufficiali del corpo degli agenti di custodia)

(2)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항에 열거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의 이유에 따라 동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직원은 직무상 필요가 있는 때는 사법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4) 카톨릭교, 그 밖에 종파의 성직자는 시설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 제2절 감독사법관

### 제68조 감독사무소

1. 감독사무소(uffici di sorveglianza)는 본 법의 별표 A에 열거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별표 A에 열거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2. 전 항의 사무소에는 제69조 및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열거하는 각각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 법원서기, 법원사무관 및 보조직원을 배치한다.
3.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는 판사는 고등법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전원 중 또는 지장이 있는 감독사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명할 수 있다.
4. 감독직무를 집행하는 판사에게는 다른 재판상의 직무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제69조 감독사법관의 직무 및 권한

1. 감독사법관은 교정시설의 조직을 감시하고 그리고 교정처우의 실현을 특별하게 고려한 각종 업무의 필요를 법무부에 제시한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외에, 감독사법관은 미결피구금자의 구금의 집행이 법률 및 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를 한다.
3. 감독사법관은 비구금적 대인보안처분의 집행을 감독한다.
4. 감독사법관은 보안처분에 대하여 형법 제20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위험성, 그 적용, 집행, 변경, 취소, 앞당김 등에 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상기의 조치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통달에 따라 형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제108조가 정하는 상습적, 직업적 또는 경향으로서의 범죄지정이 있는 때에는 취소를 한다.
5. 제13조 제3항의 처우계획을 승인하거나 또는 수형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권리침해가 되는 요인을 처우계획 중에 찾아낸 때는, 그것을 새롭게 작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붙여 수정한다. 감독사법관은 통달에 따라 구외작업에의 취업조치를 승인한다. 처우진행중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시를 내린다.

6. 감독사법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가 신청한 고충에 대하여, 대법원에만 상고가능한 명령에 따라 제14조의3의 절차에 따라 판결을 재정한다.
   a. 취업자격의 부여, 임금 및 보수에 관한 문제, 견습공 활동과 작업실시 및 사회보장
   b. 징계권의 행사조건, 징계기관의 구성 및 권한, 규율위반의 확인과 변명권
7. 감독사법관은 반자유제의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귀휴 및 휴가, 보호관찰소로에의 시험위탁 및 재택구금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통달에 따라 실시한다.
8. 감독사법관은 제56조에서 정하는 채무면제 및 형법 제148조가 정하는 수용[12]에 관하여 통달에 따라 결정한다.
9. 감독사법관은 피구금자의 은사의 발의 및 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의견을 진술한다.
10. 감독사법관은 상기의 외에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69조의2 조기석방 절차**

1. 조기석방 허가신청에 대해 감독사법관은 양측이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실이 결정한 사항을 명하며 이때 형사소송법 제127조가 열거하는 대상에게 시한 내에 통보 및 통지하도록 한다
2. 감독사법관은 검사에게 소견을 요청한지 적어도 15일이 지난 후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정을 내린다.
3. 제1항의 명령에 대한 대상자, 변호인, 검사는 그 통보 및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관할 감독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4. 감독법원은 형사소송법 제678조에 의기하여 심사한다. 제30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감독법원은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조기석방에 대한 허가신청이 제출된 경우 이건을 감독사법관에게 이양할 수 있다.

**제70조 감독법원의 직무 및 권한**

1. 고등법원의 각 관할구역 및 고등법원지부의 각 관할구역에 감독법원(sezione di sorveglianza)을 각각 설치한다. 동 법원은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재택구금, 반자유제, 조건부 자유, 선시제, 그러한 은혜의 취소 또는 정지, 형법 제146조 및 제14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자유형 집행의 필요적 또는 재량적 연기, 법률이 부여하는 그 밖의 일체의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감독법원은 항소에서도 제69조 제4항이 정하는 조치에 대한 상소에 있어 결정을 내린다. 조치를 명한 판사는 재판단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본 법원은 관할구역 또는 고등법원 지부의 관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사법관 전원 및 제8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직종 및 범죄과학의 학자 중에서 선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정규 및 임시의 전문가는 각 법원에서의 업무의 필요성에 적합한 인원 내에서 재임가능한 3년의 임기로 사법최고평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5. 법원의 조치는 재판장, 재판장의 부재 또는 지장이 있는 때는 직무대리순으로 차순위의 판사, 같은 직위에 수명이 있는 때는 연장자 순으로 차순위자 그리고 감독사법관 1인 및 전 항의 전문가 중 2명에 의해 구성되는 재판단에 의하여 채택된다.

12) 정신병이 갑자기 발생한 수형자를 사법정신병원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것을 정한 규정이다

6. 2인의 일반판사 중 1인은 수형자 또는 처분피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조치를 내리는 관할권을 가지는 감독사법관이 되어야 한다.
7. 심판을 내리는 재판단의 구성은 재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정한다.
8. 법원의 결정은 심판으로 하고 합의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재판단의 구성원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80조 제4항이 정하는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하는 전문가에게 인정되는 경제적 우대가 준비된다.

**제70조의2 감독법원의 재판장**

1. 감독법원 재판장의 직무는 대법원 판사 또는 고등법원 지부에 설립된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법원 판사에게 주어진다.
2. 재판장은 소속 감독사무소의 감독사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a. 감독법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직하는 것
   b. 법원의 권한사항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당해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감독사무소의 업무를 조직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
   c. 부재, 지장, 업무상의 긴급한 용건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각 감독사무소의 판사 및 보조직원의 배치를 명하는 것
   d. 고등법원 재판장에 대하여 제68조 제3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
   e. 사법최고평의회에 대하여 법원구성원인 정규 및 임시의 전문가의 임명을 발의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표를 작성하는 것
   f.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70조의3 새로운 명칭**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독법원」 및 「감독판사」의 명칭은 각각 「감독법원」 및 「감독사법관」으로 대체한다.
2. 제68조가 정하는 감독법원 및 감독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법성 예산의 소정의 자금으로부터 필요액을 충당하고 기금과 장비를 직접 배당한다.

## 제2절의2 감독사건

**제71조 통칙**

1.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감독법원의 권한에 의거한 조치, 채무면제, 형법 제148조에서 정하는 수용 및 보안처분의 적용, 집행, 변경, 앞당김 및 취소에 관한 감독사법관의 조치 및 이러한 처분을 목적으로 한 본인의 신분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아래 항 및 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2. 감독법원의 재판장 또는 감독사법관은 신청 또는 발의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이 취지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는 감독법원의 재판장 또는 감독사법관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한다. 이어서 감독법원의 재판장 또는 감독사법관은 통달에 따라 재판기일을 정하고 이는 적어도 5일 전까지 검사, 당사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3. 관할권은 신청 또는 반의가 있었던 때 또는 직권으로 감독사건을 채택한 때에 당사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감독법원 또는 감독사법관에 속한다.
4. 당사자가 피구금자나 처분피수용자가 아닌 때에는 관할권은 당사자가 주거를 가지거나 또는 주소가 있는 장소의 사법관할권을 가지는 감독법원 또는 감독사법관에 속한다. 상기의 방법에 따라 관할권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형사소송법 제6편 제5장 제1절의 규정은 본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41조는 동 법 제212조의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진다.

### 제71조의2 심리

(1) 심리는 변호인 및 검찰청의 대리인의 출석하에 실시한다. 당사자 본인은 심리에 출석할 수 있고 비망록을 제출할 수 있다.

(2) 검찰의 직무는 감독법원에서는 고등법원 검찰장관에 의해, 감독사법관의 면전에서는 감독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에 의해 수행된다.

(3) 감독법원 및 감독사법관은 관찰 및 처우의 관련 서류에 대한 심리에서 명확하게 된 사항에 의거하고 또한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확인을 거치고 처우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4) 감독사건의 종국결정은 심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당사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 제71조의3 항고

1. 감독법원 및 감독사법관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 당사자 및 제14조의3 및 제69조 제6항이 정하는 때에는 교정본부는 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4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31조 최종항도 적용된다.

### 제71조의4 통지

전 수 개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한 당사자에의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45조에 따라 실시한다.

### 제71조의5 (삭제)

### 제71조의6 수신불능

(1)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한 신청이 명백하게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이미 기각된 신청과 동일한 요건에 의거한 재제안에 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가운데 이유를 붙인 통달로 신청은 수신불능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감독사건의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2) 전 항의 통달은 당사자에게 5일 이내에 연락하고, 당사자는 연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심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 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독법원의 재판장은 감독사건의 심리를 개시한다.

## 제3절 보호관찰소 및 원호

### 제72조 구외수용명령집행 지방본부

1. 구외수용명령집행 지방본부(local offices of external penal execution)는 사법부 소속이며 그 조직은 1988년 8월 23일 법률 제400호 제17조 제3항 및 이후 개정조항에 의거하여 사법부장관이 도입한 규율에 의

해 규정된다.

2. 본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 및 변경,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조사활동을 담당한다.

b. 수형자에게 대체구금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족 및 사회관계 수사를 담당한다.

c. 사법당국에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및 자택구금을 신청한 수형자에게 적용할 처우계획을 제안한다.

d. 대체구금조치 허가 대상의 계획 실행 여부를 감시하여 사법당국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 및 철회 시행을 제안한다.

e. 교정시설당국의 요청에 따라 교정처우를 양호하게 향상하기 위한 자문을 담당한다.

f. 법률이나 규율이 정하는 그 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3. 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법률이나 규율에서 언급하는 성인 대상 보호관찰소는 구외수용명령집행 지방본부를 의미한다.

4. 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성인 대상 보호관찰소에 해당하는 자원 및 인사는 1항에 의거하여 구외수용명령집행 지방본부에 지원된다.

5. 본 조의 규정은 국가정부로부터의 새로운 재정지원이나 이에 대한 인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73조 피해자 구제원조금고[13]

① 교정본부에 범죄피해자 구제원조금고(cassa per il soccorso e l'assistenza alle vittime del delitto)를 설치한다.

② 동 금고는 법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국고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또한 국선변호의 지원을 구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예산,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서는 1932년 5월 9일 법률 제547호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금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운영한다.

1. 교정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 기획재정부 대표자 1인
3. 행정안전부 대표자 1인

⑤ 서기의 직무는 교정본부 원호과장이 한다.

⑥ 상기의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금고재산은 유산, 증여, 그 밖의 기부 외에 제23조의 임금과 보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한다.

⑧ 금고기금은 경제적 곤궁의 상태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원조에 충당된다.

### 제74조 법무보호복지공단

① 각 군의 군청소재지에 법무보호복지공단(consiglio di aiuto sociale)[14]을 설치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는 회장을 맡는 지방법원장 또는 그의 대행판사 외에 소년법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판사, 감독사법관, 시의 대표자, 도의 대표자, 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행정직원, 지역(市町村)의 장 또는 그 대행자, 도의 의사, 도의 직업안정소장

13) 피해자 구제원조금고 피수용자 및 범죄피해자의 가족과 교정시설 출소자에의 원호에 관한 업무는 1977년 7월 24일 공화국 대통령령 제616호에 의해 주로 이관되었고, 범죄피해자 구제원조금고는 1978년 10월 21일 법률 제641호에 의해 폐지, 청산되게 되었다

14) 본 조의 《consiglio di aiuto sociale》는 직역하면 「사회적 원호평의회」이지만 알기 쉽게 하기위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번역하였다

및 사교구의 사교 대리 각 1인 및 각 군의 교정시설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 외에 공공단체가 지명하는 자 및 보호사(privati qualificati nell'assistenza sociale)[15] 중에서 지방재판소장이 임명하는 6인도 그 구성원이 된다.

(2) 법무보호복지공단는 법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국선변호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구성원은 무상으로 그 임무를 행한다.

(4) 법무부장관의 발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 개의 법무보호복지공단를 한개의 단체로 통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교정적 원호 및 석방 후의 원호분야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충당한다.

1. 1932년 5월 9일 법률 제547호 제4조의 과료금고(casa delle ammende)의 배분
2. 1956년 5월 23일 법률 제491호에서 정하는 연간 할당금
3. 과료금고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할당되는 교도작업제품 수익
4. 예산의 통상 기금
5.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산을 구성하는 그밖의 금고

(6)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원조 분야에 있어서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에는 전조의 금고할당금 및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가 받은 유산, 증여 그밖의 기부로 충당한다.

(7)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내부조직 및 운영의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7인 이상의 구성원의 출석하에 심의한다.

**제75조 교정적 원호 및 석방 후의 원호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한다.

1. 적절한 상담 및 원호로써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방문하는 일
2. 석방예정자의 현실적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용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능력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
3. 군(郡)에 있어서 취업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77조의 위원회를 소개하며, 그 군에 주거를 가지거나 또는 주거를 정하는 피석방자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일
4. 직업상의 준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본인이 직업을 찾지 못하는 피석방자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의 협력을 얻기도 하고, 직업훈련 및 작업활동의 과정을 조직하는 일, 또한 주가 주최하는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의 통상과정에 피석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일
5.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도모하는 일
6.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요구를 관청 및 관계단체에 통지하는 일
7. 금전 또는 현물로 원조하는 일
8. 공사의 단체 및 협회의 원호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또한 피석방자 및 피구금자와 처분피수용자의 가족을 위하여 보다 유효하고 적절한 도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호 및 혜택의 업무를 하는 사람의 원호활동

15) privati qualificati nell'assistenza sociale에 대하여서도 직역하면 「사회원호에 대하여 자격을 가지는 민간인」이 되지만 「보호사」로 하였다.

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협력하는 일

### 제76조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원조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

법무보호복지공단는 현물 또는 금전에 의해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로 인한 고아를 위한 원조를 실시한다.

### 제77조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피원호자 취업을 위한 위원회

①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피석방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74조 제4항의 단체에,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피원호자 취업을 위한 위원회(comitato per l'occupazione degli assistiti dal consiglio di aiuto sociale)를 설치한다.

② 전 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 또는 그 대행자인 판사 외에 상공직농회의소(camera di commercio, industria, artigianato e agricoltura) 회장이 지명하는 그 밖의 공업, 상업, 농업 및 직업인을 각각 대표하는 4인, 사용자 대표 3인, 전국적 조직의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노동자 측 대표 3인, 자작농 대표 1인, 도의 직업안정소장, 교정당국의 지도담당직원 1인 및 제72조의 보호관찰소의 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한다.

### 제78조 교정위원

① 교정당국은, 감독사법관의 제안에 따라 원호 및 교육에 적임자에 대하여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정신적 지주역할 및 장래 사회생활에의 복귀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assistenti volontari)[16]은 시설의 장의 지도 하에 시설의 문화적 활동 및 여가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교정위원의 활동과 처우에 관련된 모든 직원의 활동을 조정한다.

③ 전 수개 항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④ 교정위원은 시험위탁, 반자유제, 피석방자 및 그 가족의 원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협력할 수 있다.

## 제4절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

### 제79조 형사처분이 부과된 18세 미만의 자. 감독사법관

① 본 법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형사처분이 부과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② 전 항의 소년 및 18세 미만인 때 죄를 범한 성인에 대한 감독법원 및 감독사법관의 직무는 소년법원 및 소년법원 소속 감독사법관이 각각 수행한다.

③ 소년계의 감독사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제6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0조 교정당국의 직원

① 교정시설에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직원 외에 성인을 위한 분류교관 및 제72조의 보호관찰소에 소속하는 사회

16) assistenti volontari는 직역하면 자원봉사자인 보조자이지만 알기쉽게 교정위원으로 번역하였다

복지사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정당국은 분류 및 처우를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매년 협정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비상근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3) 일당을 지급하는 비상근 직원에게는 그자에게 상응하는 비상근 직원에 대하여 정하는 일급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4) 분류 및 처우를 위하여, 교정당국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정신의학 및 임상범죄학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에게는 개개의 협력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5) 제59조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의 의료업무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는 직원에 의해 보장한다.

(6)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28일 법률 제775호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1971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275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 기술공무원(技官)[17] 정원은 전 항의 종류에 한하여 800인으로 증원한다. 이 정원은 640인의 기술공무원과 160인의 상급 기술공무원으로 나눈다.

(7) 전 항의 직원의 고용에 관한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1조 사회복지사의 권한

(1) 지도담당의 사회복지사(assistenti sociali)는 본 법 제72조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소에서도 1962년 7월 16일 법률 제1085호 제9조 내지 제11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심리담당의 사회복지사는 보호관찰소에서 본 법 제72조에서 정하는 활동을 한다. 상기의 사람은 구금에 대체하는 처분이 부과된 자에 대한 감독 및 원조업무, 감시가 딸린 자유에 처해진 자에 대한 원호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피석방자에 대한 원호활동에 참가한다.

### 제82조 분류교관의 권한

(1) 분류교관(educatori)은 재교육에 관한 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직원과 행동을 같이하고,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인격에 대한 과학적 분류를 위한 집단활동에 참가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재교육 처우에 종사한다.

(2) 분류교관은 승낙이 있는 때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해서도 재교육활동을 한다.

(3) 분류교관은 그 밖에 도서실 운영 및 도서, 잡지 및 신문의 비치에 협력한다.

### 제83조 보호관찰관 및 분류교관의 조직정원

(1) 1962년 7월 16일 법률 제1085호에 따라 정해진 지도담당직원의 조직표는 별표 B에 의해 대체된다.

(2) 성인전문 심리담당직의 조직정원 및 성인전문 사회원호담당직의 조직정원이 설치된다.

(3) 전 항에서 정하는 조직정원의 배치는 별표 C 및 D에 의해 각각 정해진다.

(4) 상기 조직정원에 관계되는 자에게는 국가민생공무원규약에 관련한 규정 및 1940년 7월 30일 칙령 제2041호 및 그 후의 개정부분이 적용된다. 동 직원은 교정본부 및 주변 부국에 직속한다.

(5) 1970년 7월 1일 시점에서 소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지도담당직원은 1972년 6월 30일 공화국 대통령령 제748호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무년수에 달한 때에는 제1급 관리자라고 하는 자격지정에 의해 상기 대통령령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교육과장에의 참가가 면제된다.

(6) 전 항의 지정은 정원 내에서 실시하고, 설명보고서 및 그 대상자가 받은 종합평가에 의거하여 감독국 평의회

17) 특별한 학술이나 기예부문을 맡은 공무원, 기술공무원

의 찬성의견을 얻은 가운데 부령에 의해 실시한다

### 제84조 성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심리담당직 특별채용시험

① 본 법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전 조에 따라 설치된 성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심리담당직에 관하여, 당해 직 조직정원의 50퍼센트의 제한 내에서 특별시험에 의한 채용심사회의 실시를 공시한다.

② 본 법의 발표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직 조직정원의 나머지 50퍼센트의 제한 내에서 일반채용심사회의 실시를 공시한다. 이 심사회는 1971년 6월 21일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 160명의 직장에 대한 채용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미성년전문보호관찰의 담당직에 충원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서도 이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심사회에의 참가는,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현행규정이 정하는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법 시행일에 성인전문교정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제2차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증서 및 사회봉사활동의 2년제 또는 3년제 학교가 발행한 전문자격증명서를 가지는 자에 한정된다.

④ 심사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구두시험으로 실시한다

1. 사회봉사활동 이론 및 실천
2. 심리학
3. 법률과 형사소송의 기본지식
4. 교정시설에 관한 규칙

⑤ 심사위원회는 교정본부장 또는 그 대리자가 되는 사법관이 의장이 되고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교정본부에서 근무하는 고등법원판사
2. 신경정신과학, 심리학, 범죄학 또는 범죄인류학전문의 대학교원
3. 교정본부 총감독관
4. 보호관찰소 관련 교육담당자

⑥ 서기의 임무는 교정본부 지도담당 직급 제2급 이상의 소장 자격을 가지는 관리업무직원이 수행한다.

⑦ 후보자는 10분의 6의 점수로써 심사에 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⑧ 심사의 합격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보수등급을 지정한다.

a. 본 조 제3항이 정하는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직 보수의 제1급
b. 상기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직 보수의 2급
c. 상기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직 보수의 제3급

⑨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 제1급 및 제2급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의 근속년수는 각각 2년 및 4년의 제한과는 별도로 그 직근 상위의 보수등급에 소속시키기 위한 계산에 포함시킨다.

⑩ 지명통달 공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심사합격자는 본 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위한 계산에 산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제85조 지도담당 보호관찰관의 채용

1962년 7월 16일 법률 제1085호 제5조 중「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또는 승인」이라고 하는 문언은 삭제한다.

### 제86조 감독사무소의 직원

기획재정부장관과 동의한 법무부장관의 발의에 의거한 대통령령에 따라 본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현재 조직

정원 총수의 제한 내에서 각 감독사무소에 배속하는 사법관 및 제68조의 직원 수를 결정한다.

### 제87조 시행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동의한 법무부장관의 발의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본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과도 동의하여 실시규칙을 공포한다

② 상기 규칙이 공포되기까지는 본 법 규정과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현행규칙이 적용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성인전문 분류교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심리담당직의 취업개시를 정하는 규정을 공포한다.

④ 보호관찰소에의 위탁 및 반자유제에 관한 규정은 본 법 관보게재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 제88조 정원의 충족

본 법에서 정하는 성인을 위한 심리담당 보호관찰관의 정원의 충족, 지도담당 보호관찰관 정원의 충족, 성인을 위한 심리담당 분류교관 정원의 충족 및 사법정신병원과 치료감호소의 전문직원 정원의 충족은 7년 이내에 실시한다.

### 제89조 폐지규정

형법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9조 및 제207조 최종항 및 형사소송법 제585조 및 본 법과 서로 맞지 않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 제90조 보안의 필요

(삭제 1986년 10월 10일 법률 제663호)

### 제91조 재정적 보장

① 1975회계년도에 250억 리라로 추정되는 본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동 회계년도에 기획재정부의 지출예산보고서 제6856호에 기재된 계상액으로부터 동 액을 차인하여 대처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령에 의해 필요한 예산변경을 승인한다.

③ 국새가 날인된 본 법은 법률 및 대통령령 수록집에 수록된다 국가법률로서 준수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지워진다.

LEGGE 26 luglio 1975 n. 354

*(pubblicata nella Gazzetta Ufficiale del 9 agosto 1975 n. 212, S.O.)*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A 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A'.(Legge Gozzini)

## TITOLO I Trattamento penitenziario

### CAPO I Principi direttivi

**Art. 1 Trattamento e rieducazione**

Il trattamento penitenziario deve essere conforme ad umanità e deve assicurare il rispetto della dignità della persona.

Il trattamento é improntato ad assoluta imparzialità, senza discriminazioni in ordine a nazionalità, razza e condizioni economiche e sociali, a opinioni olitiche e a credenze religiose.

Negli istituti devono essere mantenuti l'ordine e la disciplina Non possono essere adottate restrizioni non giustificabili con le esigenze predette o, nei confronti degli imputati, non indispensabili ai fini giudiziari.

I detenuti e gli internati sono chiamati o indicati con il loro nome.

Il trattamento degli imputati deve essere rigorosamente informato al principio che essi non sono considerati colpevoli sino alla condanna definitiva.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deve essere attuato un trattamento rieducativo che tenda, anche attraverso i contatti con l'ambiente esterno, al reinserimento sociale degli stessi. Il trattamento é attuato secondo un criterio di individualizzazione in rapporto alle specifiche condizioni dei soggetti.

**Art. 2 Spese per l'esecuzione delle pene e delle misure di sicurezza detentive**

Le spese per l'esecuzione delle pene e delle misure di sicurezza detentive sono a carico dello stato.

Il rimborso delle spese di mantenimento da parte dei condannati si effettua ai termini degli articoli 145, 188, 189 e 191 del codice penale e 274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Il rimborso delle spese di mantenimento da parte degli internati si effettua mediante prelievo di una quota della remunerazione a norma del penultimo capoverso dell' articolo 213 del codice penale ,ovvero per effetto della disposizione sul rimborso delle spese di spedalità, richiamata nell'ultima parte dell'articolo 213 del codice penale.

Sono spese di mantenimento quelle concernenti gli alimenti ed il corredo.

Il rimborso delle spese di mantenimento ha luogo per una quota non superiore ai due terzi del costo reale.

I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al principio di ogni esercizio finanziario, determina, sentito il ministro per il tesoro, la quota media di mantenimento dei detenuti in tutti gli stabilimenti della Repubblica.

1) http //www lavoro gow it/NR/rdonlyres/FDF48D0-FB7D-4D75-AD02-E95E2142DDF3/0/34_Legge26luglio1975n354 pdf

**Art. 3 Parità di condizioni fra i detenuti e gli internati**

Negli istituti penitenziari é assicurata ai detenuti ed agli internati parità di condizioni di vita. In particolare il regolamento stabilisce limitazioni in ordine all'ammontare del peculio disponibile e dei beni provenienti dall'esterno.

**Art. 4 Esercizio dei diritt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I detenuti e gli internati esercitano personalmente i diritti loro derivanti dalla presente legge anche se si trovano in stato di interdizione legale.

**Art. 4-bis Divieto di concessione dei benefici e accertamento della pericolosità sociale dei condannati per taluni delitti.**

1. Fermo quanto stabilito dall'art. 13-ter del decreto-legge 15 gennaio 1991, n. 8, convertito, con modificazioni, nella legge 15 marzo 1991, n. 82, l'assegnazione al lavoro all'esterno, i permessi premio, e le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previste dal capo VI della legge 26 luglio 1975, n. 354, fatta eccezione per la liberazione anticipata, possono essere concessi ai detenuti e internati per delitti commessi avvalendosi delle condizioni previste dall'art. 416-bis del codice penale ovvero al fine di agevolare l'attività delle associazioni previste dallo stesso articolo nonché per i delitti di cui agli articoli 416-bis e 630 del codice penale, 291-quater del testo unico approvato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23 gennaio 1973, n. 43 e all'art. 74,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9 ottobre 1990, n. 309, solo nei casi in cui tali detenuti e internati collaborano con la giustizia a norma dell'art. 58-ter. Quando si tratta di detenuti o internati per uno dei predetti delitti, ai quali sia stata applicata una delle circostanze attenuanti previste dagli articoli 62, numero 6), anche qualora il risarcimento del danno sia avvenuto dopo la sentenza di condanna, o 114 del codice penale, ovvero la disposizione dell'art. 116, secondo comma, dello stesso codice, i benefici suddetti possono essere concessi anche se la collaborazione che viene offerta risulti oggettivamente irrilevante purché siano stati acquisiti elementi tali da escludere in maniera certa l'attualità dei collegamenti con la criminalità organizzata. Quando si tratta di detenuti o internati per delitti commessi per finalità di terrorismo o di eversione dell'ordinamento costituzionale ovvero di detenuti o internati per i delitti di cui agli articoli 575, 628, terzo comma, 629, secondo comma del codice penale, 291-ter del testo unico approvato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23 gennaio 1973, n. 43, 416 realizzato allo scopo di commettere delitti previsti dal libro II, titolo XII, capo III, sezione I e dagli articoli 609-bis, 609-quater, 609-quinquies, 609-octies del codice penale nonché dall'art. 12, commi 3, 3-bis e 3-ter del testo unico di cui al decreto legislativo 25 luglio 1998, n. 286 e all'art. 73, limitatamente alle ipotesi aggravate ai sensi dell'art 80, comma 2, del predetto testo unico approvato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 309 del 1990, i benefici suddetti possono essere concessi solo se non vi sono elementi tali da far ritenere la sussistenza di collegamenti con la criminalità organizzata o eversiva.
2. Ai fini della concessione dei benefici di cui al comma 1,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o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decide acquisite dettagliate informazioni per il tramite del comitato provinciale per l'ordine e la sicurezza pubblica competente in relazione al luogo di detenzione del condannato. In ogni caso il giudice decide trascorsi trenta giorni dalla richiesta delle informazioni. Al suddetto comitato provinciale può essere chiamato a partecipare il direttore dell'istituto penitenziario in cui il condannato è detenuto

2. bis. Ai fini della concessione dei benefici di cui al comma 1, quarto periodo,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o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decide acquisite dettagliate informazioni dal questore. In ogni caso il giudice decide trascorsi trenta giorni dalla richiesta delle informazioni
3. Quando il comitato ritiene che sussistano particolari esigenze di sicurezza ovvero che I collegamenti potrebbero essere mantenuti con organizzazioni operanti in ambiti non locali o extranazionali, ne dà comunicazione al giudice e il termine di cui al comma 2 è prorogato di ulteriori trenta giorni al fine di acquisire elementi ed informazioni da parte dei competenti organi centrali.
3. bis. L'assegnazione al lavoro all'esterno, i permessi premio e le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previste dal capo VI, non possono essere concessi ai detenuti ed internati per delitti dolosi quando il Procuratore nazionale antimafia o il procuratore distrettuale comunica, d'iniziativa o su segnalazione del comitato provinciale per l'ordine e la sicurezza pubblica competente in relazione al luogo di detenzione o internamento, l'attualità di collegamenti con la criminalità organizzata. In tal caso si prescinde dalle procedure previste dai commi 2 e 3.

## CAPO II Condizioni generali

### Art. 5. Caratteristiche degli edifici penitenziari

Gli istituti penitenziari devono essere realizzati in modo tale da accogliere un numero non elevato di detenuti o internati.
Gli edifici penitenziari devono essere dotati, oltre che di locali per le esigenze di vita individuale, anche di locali per lo svolgimento di attività in comune.

### Art. 6 Locali di soggiorno e di pernottamento

I locali nei quali si svolge la vita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devono essere di ampiezza sufficiente, illuminati con luce naturale e artificiale in modo da permettere il lavoro e la lettura; aerati, riscaldati ove le condizioni climatiche lo esigono, e dotati di servizi igienici riservati, decenti e di tipo razionale. I detti locali devono essere tenuti in buono stato di conservazione e di pulizia.
I locali destinati al pernottamento consistono in camere dotate di uno o più posti.
Particolare cura é impiegata nella scelta di quei soggetti che sono collocati in camere a più posti.
Agli imputati deve essere garantito il pernottamento in camere ad un posto a meno che la situazione particolare dell'istituto non lo consenta.
Ciascun detenuto e internato dispone di adeguato corredo per il proprio letto.

### Art. 7 Vestiario e corredo

Ciascun soggetto é fornito di biancheria, di vestiario e di effetti di uso in quantità sufficiente, in buono stato di conservazione e di pulizia e tali da assicurare la soddisfazione delle normali esigenze di vita.
L'abito é di tessuto a tinta unita e di foggia decorosa. É concesso l'abito di lavoro quando é reso necessario dall'attività svolta.
Gli imputati e i condannati a pena detentiva inferiore ad un anno possono indossare abiti di loro proprietà, purché puliti e convenienti. L'abito fornito agli imputati deve essere comunque diverso da quello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I detenuti e gli internati possono essere ammessi a far uso di corredo di loro proprietà e di oggetti che

abbiano particolare valore morale o affettivo.

**Art. 8 Igiene personale**

É assicurato ai detenuti e agli internati l'uso adeguato e sufficiente di lavabi e di bagni o docce, nonché degli altri oggetti necessari alla cura e alla pulizia della persona.
In ciascun istituto sono organizzati i servizi per il periodico taglio dei capelli e la rasatura della barba. Può essere consentito l'uso di rasoio elettrico personale.
Il taglio dei capelli e della barba può essere imposto soltanto per particolari ragioni igienico-sanitarie.

**Art. 9 Alimentazione**

Ai detenuti e agli internati é assicurata un'alimentazione sana e sufficiente, adeguata all'età, al sesso, allo stato di salute, al lavoro, alla stagione, al clima.
Il vitto é somministrato, di regola, in locali all'uopo destinati.
I detenuti e gli internati devono avere sempre a disposizione acqua potabile.
La quantità e la qualità del vitto giornaliero sono determinate da apposite tabelle approvate con decreto ministeriale.
Il servizio di vettovagliamento é di regola gestito direttamente dalla 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Una rappresentanza dei detenuti o degli internati, designata mensilmente per sorteggio, controlla l'applicazione delle tabelle e la preparazione del vitto
Ai detenuti e agli internati é consentito l'acquisto, a proprie spese, di generi alimentari e di conforto, entro i limiti fissati dal regolamento. La vendita dei generi alimentari o di conforto deve essere affidata di regola a spacci gestiti direttamente dalla amministrazione carceraria o da imprese che esercitano la vendita a prezzi controllati dall'autorità comunale I prezzi non possono essere superiori a quelli comunemente praticati nel luogo in cui é sito l'istituto La rappresentanza indicata nel precedente comma, integrata da un delegato del direttore, scelto tra il personale civile dell'istituto, controlla qualità e prezzi dei generi venduti nell'istituto

**Art. 10 Permanenza all'aperto**

Ai soggetti che non prestano lavoro all'aperto é consentito di permanere almeno per due ore al giorno all'aria aperta. Tale periodo di tempo può essere ridotto a non meno di un'ora al giorno soltanto per motivi eccezionali.
La permanenza all'aria aperta é effettuata in gruppi a meno che non ricorrano i casi indicati nell' articolo 33 e nei numeri 4) e 5) dello articolo 39 ed é dedicata, se possibile, ad esercizi fisici.

**Art. 11 Servizio sanitario**

Ogni istituto penitenziario é dotato di servizio medico e di servizio farmaceutico rispondenti alle esigenze profilattiche e di cura della salut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dispone, inoltre, dell'opera di almeno uno specialista in psichiatria
Ove siano necessari cure o accertamenti diagnostici che non possono essere apprestati dai servizi sanitari degli istituti, i condannati e gli internati sono trasferiti, con provvedimento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in ospedali civili o in altri luoghi esterni di cura. Per gli imputati, detti trasferimenti sono disposti, dopo la pronunz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prima della pronunz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 giudice istruttore, durante l'istruttoria formale; dal pubblico ministero,

durante l'istruzione sommaria e, in caso di giudizio direttissimo, fino alla presentazione dell'imputato in udienza; dal presidente, durante gli atti preliminari al giudizio e nel corso del giudizio gli atti preliminari al giudizio e nel corso del giudizio; dal pretore, nei procedimenti di sua competenza; dal presidente della corte di appello, nel corso degli atti preliminari al giudizio dinanzi la corte di assise, fino alla convocazione della corte stessa e dal presidente di essa successivamente alla convocazione.

L'autorità giudiziaria competente ai sensi del comma precedente può disporre, quando non vi sia pericolo di fuga, che i detenuti e gli internati trasferiti in ospedali civili o in altri luoghi esterni di cura con proprio provvedimento, o con provvedimento del direttore dell'istituto nei casi di assoluta urgenza, non siano sottoposti a piantonamento durante la degenza, salvo che sia necessario per la tutela della loro incolumità personale.

Il detenuto o l'internato che, non essendo sottoposto a piantonamento, si allontana dal luogo di cura senza giustificato motivo é punibile a norma del primo comma dell'articolo 385 del codice penale

All'atto dell'ingresso nell'istituto i soggetti sono sottoposti a visita medica generale allo scopo di accertare eventuali malattie fisiche o psichiche L'assistenza sanitaria é prestata, nel corso della permanenza nell'istituto, con periodici e frequenti riscontri, indipendentemente dalle richieste degli interessati.

Il sanitario deve visitare ogni giorno gli ammalati e coloro che ne facciano richiesta, deve segnalare immediatamente la presenza di malattie che richiedono particolari indagini e cure specialistiche; deve, inoltre, controllare periodicamente l'idoneità dei soggetti ai lavori cui sono addetti.

I detenuti e gli internati sospetti o riconosciuti affetti da malattie contagiose sono immediatamente isolati.

Nel caso di sospetto di malattia psichica sono adottati senza indugio i provvedimenti del caso col rispetto delle norme concernenti l'assistenza psichiatrica e la sanità mentale.

In ogni istituto penitenziario per donne sono in funzione servizi speciali per l'assistenza sanitaria alle gestanti e alle puerpere.

Alle madri é consentito di tenere presso di sé i figli fino all'età di tre anni. Per la cura e l'assistenza dei bambini sono organizzati appositi asili nido.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er l'organizzazione e per il funzionamento dei servizi sanitari, può avvalersi della collaborazione dei servizi pubblici sanitari locali, ospedalieri ed extra ospedalieri, d'intesa con la regione e secondo gli indirizzi del ministero della sanità.

I detenuti e gli internati possono richiedere di essere visitati a proprie spese da un sanitario di loro fiducia.

Per gli imputati é necessaria l'autorizzazione del magistrato che procede, s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Il medico provinciale visita almeno due volte l'anno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allo scopo di accertare lo stato igienico- sanitario, l'adeguatezza delle misure di profilassi contro le malattie infettive disposte dal servizio sanitario penitenziario e le condizioni igieniche e sanitarie dei ristretti negli istituti.

Il medico provinciale riferisce sulle visite compiute e sui provvedimenti da adottare al ministero della sanità e a quello di grazia e giustizia, informando altresì i competenti uffici regionali e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rt. 12 Attrezzature per attività di lavoro di istruzione e di ricreazione**

Negli istituti penitenziari, secondo le esigenze del trattamento, sono approntate attrezzature per lo svolgimento di attività lavorative, di istruzione scolastica e professionale, ricreative, culturali e di ogni altra attività in comune.

Gli istituti devono inoltre essere forniti di una biblioteca costituita da libri e periodici, scelti dalla commissione prevista dal secondo comma dell' articolo 16 .
Alla gestione del servizio di biblioteca partecipano rappresentant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 CAPO III Modalità del trattamento

### Art. 13 Individualizzazione del trattamento

Il trattamento penitenziario deve rispondere ai particolari bisogni della personalità di ciascun soggetto.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é predisposta l'osservazione scientifica della personalità per rilevare le carenze fisiopsichiche e le altre cause del disadattamento sociale. L'osservazione é compiuta all'inizio dell'esecuzione e proseguita nel corso di essa.
Per ciascun condannato e internato, in base ai risultati della osservazione, sono formulate indicazioni in merito al trattamento rieducativo da effettuare ed é compilato il relativo programma, che é integrato o modificato secondo le esigenze che si prospettano nel corso dell'esecuzione.
Le indicazioni generali e particolari del trattamento sono inserite, unitamente ai dati giudiziari, biografici e sanitari, nella cartella personale, nella quale sono successivamente annotati gli sviluppi del trattamento pratico e i suoi risultati.
Deve essere favorita la collaborazione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alle attività di osservazione e di trattamento.

### Art. 14 Assegnazione, raggruppamento e categori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Il numero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negli istituti e nelle sezioni deve essere limitato e, comunque, tale da favorire l'individualizzazione del trattamento.
L'assegnazione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ai singoli istituti e il raggruppamento nelle sezioni di ciascun istituto sono disposti con particolare riguardo alla possibilità di procedere ad un trattamento rieducativo comune e all'esigenza di evitare influenze nocive reciproche. Per le assegnazioni sono, inoltre, applicati di norma i criteri di cui al primo ed al secondo comma dell' articolo 42.
É assicurata la separazione degli imputati dai condannati e internati, dei giovani al disotto dei venticinque anni dagli adulti, dei condannati dagli internati e dei condannati all'arresto dai condannati alla reclusione.
É consentita, in particolari circostanze, l'ammissione di detenuti e di internati ad attività organizzate per categorie diverse da quelle di appartenenza.
Le donne sono ospitate in istituti separati o in apposite sezioni di istituto.

### Art. 14-bis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1. Possono essere sottoposti a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per un periodo non superiore a sei mesi, prorogabile anche più volte in misura non superiore ogni volta a tre mesi, i condannati, gli internati e gli imputati:
   a. che con i loro comportamenti compromettono la sicurezza ovvero turbano l'ordine negli istituti;
   b. che con la violenza o minaccia impediscono le attività degli altri detenuti o internati;
   c. che nella vita penitenziaria si avvalgono dello stato di soggezione degli altri detenuti nei loro confronti.
2. Il regime di cui al precedente comma primo é disposto con provvedimento motivato della

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revio parere del consiglio di disciplina, integrato da due degli esperti previsti dal quarto comma dell'articolo 80.

3. Nei confronti degli imputati i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é disposto sentita anche l'autorità giudiziaria che procede
4. In caso di necessità ed urgenza l'amministrazione può disporre in via provvisoria la sorveglianza particolare prima dei pareri prescritti, che comunque devono essere acquisiti entro dieci giorni dalla data del provvedimento. Scaduto tale termine la amministrazione, acquisiti i pareri prescritti, decide in via definitiva entro dieci giorni decorsi i quali, senza che sia intervenuta la decisione, il provvedimento provvisorio decade.
5. Possono essere sottoposti a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fin dal momento del loro ingresso in istituto, i condannati, gli internati e gli imputati, sulla base di precedenti comportamenti penitenziari o di altri concreti comportamenti tenuti, indipendentemente dalla natura dell'imputazione, nello stato di libertà. L'autorità giudiziaria segnala gli eventuali elementi a sua conoscenza 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che decide sulla adozione dei provvedimenti di sua competenza
6 Il provvedimento che dispone il regime di cui al presente articolo é comunicato immediatamente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i fini dell'esercizio del suo potere di vigilanza.

**Art. 14-ter Reclamo**

1. Avverso il provvedimento che dispone o proroga i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può essere proposto dall'interessato reclamo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nel termine di dieci giorni dalla comunicazione del provvedimento definitivo. Il reclamo non sospende l'esecuzione del provvedimento.
2.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provvede con ordinanza in camera di consiglio entro dieci giorni dalla ricezione del reclamo
3. Il procedimento si svolge con la partecipazione del difensore e del pubblico ministero.
   L'interessato e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ossono presentare memorie.
4. Per quanto non diversamente disposto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 Capo secondo-bis del Titolo secondo.

**Art. 14-quater Contenuti de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1. I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comporta le restrizioni strettamente necessarie per il mantenimento dell'ordine e della sicurezza, all'esercizio dei diritt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e alle regole di trattamento previste dall'ordinamento penitenziario
2. Per quanto concerne la corrispondenza dei detenuti,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l'articolo 18-ter.
3. Le restrizioni di cui ai commi precedenti sono motivatamente stabilite nel provvedimento che dispone i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4 In ogni caso le restrizioni non possono riguardare: l'igiene e le esigenze della salute; il vitto; il vestiario ed il corredo; il possesso, l'acquisto e la ricezione di generi ed oggetti permessi dal regolamento interno, nei limiti in cui ciò non comporta pericolo per la sicurezza, la lettura di libri e periodici; le pratiche di culto; l'uso di apparecchi radio del tipo consentito, la permanenza all'aperto per almeno due ore al giorno salvo quanto disposto dall'articolo 10, i colloqui con i difensori, nonché quelli con il coniuge, il convivente, i figli, i genitori, i fratelli.
5. Se i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non é attuabile nell'istituto ove il detenuto o l'internato si

trova, la 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uò disporre, con provvedimento motivato, il trasferimento in altro istituto idoneo, con il minimo pregiudizio possibile per la difesa e per i familiari, dandone immediato avviso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Questi riferisce al ministro in ordine ad eventuali casi di infondatezza dei motivi posti a base del trasferimento.

**Art. 15 Elementi del trattamento**

Il trattamento del condannato e dell'internato é svolto avvalendosi principalmente dell'istruzione, del lavoro, della religione, delle attività culturali, ricreative e sportive e agevolando opportuni contatti con il mondo esterno ed i rapporti con la famiglia

Ai fini del trattamento rieducativo, salvo casi di impossibilità, al condannato e all'internato é assicurato il lavoro.

Gli imputati sono ammessi, a loro richiesta, a partecipare ad attività educative, culturali e ricreative e, salvo giustificati motivi o contrarie disposizioni dell'autorità giudiziaria, a svolgere attività lavorativa o di formazione professionale, possibilmente di loro scelta e, comunque, in condizioni adeguate alla loro posizione giuridica.

**Art. 16 Regolamento dell'istituto**

In ciascun istituto il trattamento penitenziario é organizzato secondo le direttive che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impartisce con riguardo alle esigenze dei gruppi di detenuti ed internati ivi ristretti. Le modalità del trattamento da seguire in ciascun istituto sono disciplinate nel regolamento interno, che é predisposto e modificato da una commissione composta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he la presiede, dal direttore, dal medico, dal cappellano, dal preposto alle attività lavorative, da un educatore e da un assistente sociale. La commissione può avvalersi della collaborazione degli esperti indicati nel quarto comma dell' articolo 80 .

Il regolamento interno disciplina, altresì, i controlli cui devono sottoporsi tutti coloro che, a qualsiasi titolo, accedono all'istituto o ne escono.

Il regolamento interno e le sue modificazioni sono approvati da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Art. 17 Partecipazione della comunità esterna all'azione rieducativa**

La finalità del reinserimento sociale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deve essere perseguita anche sollecitando ed organizzando la partecipazione di privati e di istituzioni o associazioni pubbliche o private all'azione rieducativa.

Sono ammessi a frequentare gli istituti penitenziari con l'autorizzazione e secondo le direttiv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u parere favorevole del direttore, tutti coloro che avendo concreto interesse per l'opera di risocializzazione dei detenuti dimostrino di potere utilmente promuovere lo sviluppo dei contatti tra la comunità carceraria e la società libera.

Le persone indicate nel comma precedente operano sotto il controllo del direttore.

**Art. 18 Colloqui, corrispondenza e informazione**

1. I detenuti e gli internati sono ammessi ad avere colloqui e corrispondenza con i congiunti e con altre persone, anche al fine di compiere atti giuridici.
2. I colloqui si svolgono in appositi locali sotto il controllo a vista e non auditivo del personale di custodia.
3. Particolare favore viene accordato ai colloqui con i familiari.

4.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one a disposizion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he ne sono sprovvisti, gli oggetti di cancelleria necessari per la corrispondenza.
5. Può essere autorizzata nei rapporti con i familiari e, in casi particolari, con terzi, corrispondenza telefonica con le modalità e le cautele previste dal regolamento.
6. I detenuti e gli internati sono autorizzati a tenere presso di sé i quotidiani, i periodici e i libri in libera vendita all'esterno e ad avvalersi di altri mezzi di informazione.
7. Abrogato.
8. Salvo quanto disposto dall'articolo 18-bis, per gli imputati i permessi di colloquio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e le autorizzazioni alla corrispondenza telefonica sono di competenza dell'autorità giudiziaria, ai sensi di quanto stabilito nel secondo comma dell'articolo 11. Dopo 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i permessi di colloquio sono di competenza del direttore dell'istituto.
9. Abrogato.

**Art. 18-bis Colloqui a fini investigativi**

1. Il personale della Direzione investigativa antimafia di cui all'art. 3 del decreto-legge 29 ottobre 1991, n. 345, convertito, con modificazioni, dalla legge 30 dicembre 1991, n. 410, e dei servizi centrali e interprovinciali di cui all'art. 12 del decreto-legge 13 maggio 1991, n. 152, convertito, con modificazioni, dalla legge 12 luglio 1991, n. 203, nonché gli ufficiali di polizia giudiziaria designati dai responsabili, a livello centrale, della predetta Direzione e dei predetti servizi, hanno facoltà di visitare gli istituti penitenziari e possono essere autorizzati, a norma del comma 2 del presente articolo, ad avere colloqui personali con detenuti e internati, al fine di acquisire informazioni utili per la prevenzione e repressione dei delitti di criminalità organizzata.

1. bis. Le disposizioni di cui al comma 1 si applicano anche ai responsabili di livello almeno provinciale degli uffici o reparti della Polizia di Stato o dell'Arma dei carabinieri competenti per lo svolgimento di indagini in materia di terrorismo, nonché agli ufficiali di polizia giudiziaria designati dai responsabili di livello centrale e, limitatamente agli aspetti connessi al finanziamento del terrorismo, a quelli del Corpo della guardia di finanza, designati dal responsabile di livello centrale, al fine di acquisire dai detenuti o dagli internati informazioni utili per la prevenzione e repressione dei delitti commessi per finalità di terrorismo, anche internazionale, o di eversione dell'ordine democratico.

2. Al personale di polizia indicato nei commi 1 e 1-bis, l'autorizzazione ai colloqui è rilasciata:
   a. quando si tratta di internati, di condannati o di imputati, dal Ministro di grazia e giustizia o da un suo delegato;
   b. quando si tratta di persone sottoposte ad indagini, dal pubblico ministero.
3. Le autorizzazioni ai colloqui indicate nel comma 2 sono annotate in apposito registro riservato tenuto presso l'autorità competente al rilascio.
4. In casi di particolare urgenza, attestati con provvedimento del Ministro dell'interno o, per sua delega, dal Capo della Polizia, l'autorizzazione prevista nel comma 2, lettera a), non è richiesta, e del colloquio è data immediata comunicazione all'autorità ivi indicata, che provvede all'annotazione nel registro riservato di cui al comma 3.
5. La facoltà di procedere a colloqui personali con detenuti e internati è attribuita, senza necessità di autorizzazione, altresì al Procuratore nazionale antimafia ai fini dell'esercizio delle funzioni di impulso

e di coordinamento previste dall'art. 371-bis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al medesimo Procuratore nazionale antimafia sono comunicati i provvedimenti di cui ai commi 2 e 4, qualora concernenti colloqui con persone sottoposte ad indagini, imputate o condannate per taluno dei delitti indicati nell'art. 51, comma 3-bis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ART. 18-ter Limitazioni e controlli della corrispondenza**

1. Per esigenze attinenti le indagini o investigative o di prevenzione dei reati, ovvero per ragioni di sicurezza o di ordine dell'istituto, possono essere disposti, nei confronti dei singoli detenuti o internati, per un periodo non superiore a sei mesi, prorogabile per periodi non superiori a tre mesi:
   a. limitazioni nella corrispondenza epistolare e telegrafica e nella ricezione della stampa;
   b. la sottoposizione della corrispondenza a visto di controllo;
   c. il controllo del contenuto delle buste che racchiudono la corrispondenza, senza lettura della medesima.
2. Le disposizioni del comma 1 non si applicano qualora la corrispondenza epistolare o telegrafica sia indirizzata ai soggetti indicati nel comma 5 dell'articolo 103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all'autorità giudiziaria, alle autorità indicate nell'articolo 35 della presente legge, ai membri del Parlamento, alle Rappresentanze diplomatiche o consolari dello Stato di cui gli interessati sono cittadini ed agli organismi internazionali amministrativi o giudiziari preposti alla tutela dei diritti dell'uomo di cui l'Italia fa parte.
3. I provvedimenti previsti dal comma 1 sono adottati con decreto motivato, su richiesta del pubblico ministero o su proposta del direttore dell'istituto:
   a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nonché nei confronti degli imputati dopo 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b. nei confronti degli imputati,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 giudice indicato nell'articolo 279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se procede un giudice collegiale, il provvedimento è adottato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o della corte di assise
4 L'autorità giudiziaria indicata nel comma 3, nel disporre la sottoposizione della corrispondenza a visto di controllo, se non ritiene di provvedere direttamente, può delegare il controllo al direttore o ad un appartenente 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designato dallo stesso direttore
5. Qualora, in seguito al visto di controllo, l'autorità giudiziaria indicata nel comma 3 ritenga che la corrispondenza o la stampa non debba essere consegnata o inoltrata al destinatario, dispone che la stessa sia trattenuta. Il detenuto e l'internato vengono immediatamente informati.
6. Contro i provvedimenti previsti dal comma 1 e dal comma 5 può essere proposto reclamo, secondo la procedura prevista dall'articolo 14-ter,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se il provvedimento è emess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ovvero, negli altri casi, al tribunale nel cui circondario ha sede il giudice che ha emesso il provvedimento. Del collegio non può fare parte il giudice che ha emesso il provvedimento. Per quanto non diversamente disposto dal presente comma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l'articolo 666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7. Nel caso previsto dalla lettera c) del comma 1, l'apertura delle buste che racchiudono la corrispondenza avviene alla presenza del detenuto o dell'internato.

**Art. 19 Istruzione**

Negli istituti penitenziari la formazione culturale e professionale, é curata mediante l'organizzazione dei corsi della scuola d'obbligo e di corsi di addestramento professionale, secondo gli orientamenti vigenti e

con l'ausilio di metodi adeguati alla condizione dei soggetti.
Particolare cura é dedicata alla formazione culturale e professionale dei detenuti di età inferiore ai venticinque anni.
Con le procedure previste dagli ordinamenti scolastici possono essere istituite scuole di istruzione secondaria di secondo grado negli istituti penitenziari.
É agevolato il compimento degli studi dei corsi universitari ed equiparati ed é favorita la frequenza a corsi scolastici per corrispondenza, per radio e per televisione.
É favorito l'accesso alle pubblicazioni contenute nella biblioteca, con piena libertà di scelta delle letture.

**Art. 20 Lavoro**

Negli istituti penitenziari devono essere favorite in ogni modo la destinazion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al lavoro e la loro partecipazione a corsi di formazione professionale. A tal fine, possono essere istituite lavorazioni organizzate e gestite direttamente da imprese pubbliche o private e possono essere istituiti corsi di formazione professionale organizzati e svolti da aziende pubbliche, o anche da aziende private convenzionate con la regione.
Il lavoro penitenziario non ha carattere afflittivo ed è remunerato.
Il lavoro è obbligatorio per i condannati e per i sottoposti alle misure di sicurezza della colonia agricola e della casa di lavoro.
I sottoposti alle misure di sicurezza della casa di cura e di custodia e dell'ospedale psichiatrico giudiziario possono essere assegnati al lavoro quando questo risponda a finalità terapeutiche.
L'organizzazione e i metodi del lavoro penitenziario devono riflettere quelli del lavoro nella società libera al fine di far acquisire ai soggetti una preparazione professionale adeguata alle normali condizioni lavorative per agevolarne il reinserimento sociale.
Nell'assegnazione dei soggetti al lavoro si deve tener conto esclusivamente dell'anzianità di disoccupazione durante lo stato di detenzione o di internamento, dei carichi familiari, della professionalità, nonché delle precedenti e documentate attività svolte e di quelle a cui essi potranno dedicarsi dopo la dimissione, con l'esclusione dei detenuti e internati sottoposti al regime di sorveglianza particolare di cui all'Art. 14-bis della presente legge.
Il collocamento al lavoro da svolgersi all'interno dell'istituto avviene nel rispetto di graduatorie fissate in due apposite liste, delle quali una generica e l'altra per qualifica o mestiere.
Per la formazione delle graduatorie all'interno delle liste e per il nulla-osta agli organismi competenti per il collocamento, è istituita, presso ogni istituto, una commissione composta dal direttore, da un appartenente al ruolo degli ispettori o dei sovrintendenti del Corpo di polizia penitenziaria e da un rappresentante del personale educativo, eletti all'interno della categoria di appartenenza, da un rappresentante unitariamente designato dalle organizzazioni sindacali più rappresentative sul piano nazionale, da un rappresentante designato dalla commissione circoscrizionale per l'impiego territorialmente competente e da un rappresentante delle organizzazioni sindacali territoriali.
Alle riunioni della commissione partecipa senza potere deliberativo un rappresentant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designato per sorteggio secondo le modalità indicate nel regolamento interno dell'istituto.
Per ogni componente viene indicato un supplente eletto o designato secondo i criteri in precedenza indicati.
Al lavoro all'esterno, si applicano la disciplina generale sul collocamento ordinario ed agricolo, nonché l'Art. 19 della legge 28 febbraio 1987, n. 56.

Per tutto quanto non previsto dal presente articolo si applica la disciplina generale sul collocamento.
Le amministrazioni penitenziarie, centrali e periferiche, stipulano apposite convenzioni con soggetti pubblici o privati o cooperative sociali interessati a fornire a detenuti o internati opportunità di lavoro. Le convenzioni disciplinano l'oggetto e le condizioni di svolgimento dell'attività lavorativa, la formazione e il trattamento retributivo, senza oneri a carico della finanza pubblica.
Le direzioni degli istituti penitenziari, in deroga alle norme di contabilità generale dello Stato e di quelle di contabilità speciale, possono, previa autorizzazione del Ministro di grazia e giustizia, vendere prodotti delle lavorazioni penitenziarie a prezzo pari o anche inferiore al loro costo, tenuto conto, per quanto possibile, dei prezzi praticati per prodotti corrispondenti nel mercato all'ingrosso della zona in cui è situato l'istituto.
I detenuti e gli internati che mostrino attitudini artigianali, culturali o artistiche possono essere esonerati dal lavoro ordinario ed essere ammessi ad esercitare per proprio conto, attività artigianali, intellettuali o artistiche.
I soggetti che non abbiano sufficienti cognizioni tecniche possono essere ammessi a un tirocinio retribuito.
La durata delle prestazioni lavorative non può superare i limiti stabiliti dalle leggi vigenti in materia di lavoro e, alla stregua di tali leggi, sono garantiti il riposo festivo e la tutela assicurativa e previdenziale.
Ai detenuti e agli internati che frequentano i corsi di formazione professionale di cui al comma primo è garantita, nei limiti degli stanziamenti regionali, la tutela assicurativa e ogni altra tutela prevista dalle disposizioni vigenti in ordine a tali corsi.
Agli effetti della presente legge, per la costituzione e lo svolgimento di rapporti di lavoro nonché per l'assunzione della qualità di socio nelle cooperative sociali di cui alla legge 8 novembre 1991, n. 381, non si applicano le incapacità derivanti da condanne penali o civili.
Entro il 31 marzo di ogni anno il Ministro di grazia e giustizia trasmette al Parlamento una analitica relazione circa lo stato di attuazione delle disposizioni di legge relative al lavoro dei detenuti nell'anno precedente.

**Art. 20 - bis Modalità di organizzazione del lavoro**

1. Il provveditore regionale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uò affidare, con contratto d'opera, la direzione tecnica delle lavorazioni a persone estranee 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le quali curano anche la specifica formazione dei responsabili delle lavorazioni e concorrono alla qualificazione professionale dei detenuti, d'intesa con la regione. Possono essere inoltre istituite, a titolo sperimentale, nuove lavorazioni, avvalendosi, se necessario, dei servizi prestati da imprese pubbliche o private ed acquistando le relative progettazioni.
2.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inoltre, applicando, in quanto compatibili, le disposizioni di cui all'undicesimo comma dell'articolo 20 , promuove la vendita dei prodotti delle lavorazioni penitenziarie anche mediante apposite convenzioni da stipulare con imprese pubbliche o private, che abbiano una propria rete di distribuzione commerciale.
3. Previo assenso della direzione dell'istituto, i privati che commissionano forniture 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ossono, in deroga alle norme di contabilità generale dello statoe a quelle di contabilità speciale, effettuare pagamenti differiti, secondo gli usi e le consuetudini vigenti.
4. Sono abrogati l'articolo 1 della legge 3 luglio 1942, n. 971 , e l'articolo 611 delle disposizioni approvate con regio decreto 16 maggio 1920, n. 1908

**Art. 21 Lavoro all'esterno**

1. I detenuti e gli internati possono essere assegnati al lavoro all'esterno in condizioni idonee a garantire l'attuazione positiva degli scopi previsti dall'articolo 15. Tuttavia, se si tratta di persona condannata alla pena della reclusione per uno dei delitt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icolo 4- bis, l'assegnazione al lavoro all'esterno può essere disposta dopo l'espiazione di almeno un terzo della pena e, comunque, di non oltre cinque anni.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all'ergastolo l'assegnazione può avvenire dopo l'espiazione di almeno dieci anni.
2. I detenuti e gli internati assegnati al lavoro all'esterno sono avviati a prestare la loro opera senza scorta, salvo che essa sia ritenuta necessaria per motivi di sicurezza. Gli imputati sono ammessi al lavoro all'esterno previa autorizzazione della competente autorità giudiziaria.
3. Quando si tratta di imprese private, il lavoro deve svolgersi sotto il diretto controllo della direzione dello istituto a cui il detenuto o l'internato é assegnato, la quale può avvalersi a tal fine del personale dipendente e del servizio sociale.
4. Per ciascuno condannato o internato il provvedimento di ammissione al lavoro all'esterno diviene esecutivo dopo la approvazion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4. bis. Le disposizioni di cui ai commi precedenti e la disposizione di cui al secondo periodo del comma sedicesimo dell'articolo 20 si applicano anche ai detenuti ed agli internati ammessi a frequentare corsi di formazione professionale all'esterno degli istituti penitenziari.

**Art. 21-bis Assistenza all'esterno dei figli minori**

1. Le condannate e le internate possono essere ammesse alla cura e all'assistenza all'esterno dei figli di età non superiore agli anni dieci, alle condizioni previste dall'articolo 21.
2. Si applicano tutte le disposizioni relative al lavoro all'esterno, in particolare l'articolo 21, in quanto compatibili.
3. La misura dell'assistenza all'esterno può essere concessa, alle stesse condizioni, anche al padre detenuto, se la madre è deceduta o impossibilitata e non vi è modo di affidare la prole ad altri che al padre

**Art. 22 Determinazione delle mercedi**

1. Le mercedi per ciascuna categoria di lavoranti sono equitativamente stabilite in relazione alla quantità e qualità del lavoro effettivamente prestato, alla organizzazione e al tipo del lavoro del detenuto in misura non inferiore ai due terzi del trattamento economico previsto dai contratti collettivi di lavoro. A tale fine é costituita una commissione composta dal direttore general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che la presiede, dal direttore dell'ufficio del lavoro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della direzion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da un ispettore general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da un rappresentante del ministero del tesoro, da un rappresentante del ministero del lavoro e della previdenza sociale e da un delegato per ciascuna delle organizzazioni sindacali più rappresentative sul piano nazionale.
2. L'ispettore general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funge da segretario della commissione.
3 La medesima commissione stabilisce il trattamento economico dei tirocinanti.
4. La commissione stabilisce, altresì, il numero massimo di ore di permesso di assenza dal lavoro retribuite e le condizioni e modalità di fruizione delle stesse da part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addetti alle

lavorazioni, interne o esterne, o ai servizi di istituto, i quali frequentino i corsi della scuola d'obbligo o delle scuole di istruzione secondaria di secondo grado, o i corsi di addestramento professionale, ove tali corsi si svolgano, negli istituti penitenziari, durante l'orario di lavoro ordinario.

**Art. 23 Remunerazione e assegni familiari**

(Abrogati i primi tre commi)
Ai detenuti e agli internati che lavorano sono dovuti, per le persone a carico, gli assegni familiari nella misura e secondo le modalità di legge.
Gli assegni familiari sono versati direttamente alle persone a carico con le modalità fissate dal regolamento.

**Art. 24 Pignorabilità e sequestrabilità della remunerazione**

Sulla remunerazione spettante ai condannati sono prelevate le somme dovute a titolo di risarcimento del danno e di rimborso delle spese di procedimento. Sulla remunerazione spettante ai condannati ed agli internati sono altresì prelevate le somme dovute ai sensi del secondo e del terzo comma dell' articolo 2.
In ogni caso deve essere riservata a favore dei condannati una quota pari a tre quinti. Tale quota non é soggetta a pignoramento o a sequestro, salvo che per obbligazioni derivanti da alimenti, o a prelievo per il risarcimento del danno arrecato alle cose mobili o immobili della amministrazione.
La remunerazione dovuta agli internati e agli imputati non é soggetta a pignoramento o a sequestro, salvo che per obbligazioni derivanti da alimenti, o a prelievo per il risarcimento del danno arrecato alle cose mobili o immobili dell'amministrazione.

**Art. 25 Peculio**

Il peculio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é costituito dalla parte della remunerazione ad essi riservata ai sensi del precedente articolo, dal danaro posseduto all'atto dell'ingresso in istituto, da quello ricavato dalla vendita degli oggetti di loro proprietà o inviato dalla famiglia e da altri o ricevuto a titolo di premio o di sussidio.
Le somme costituite in peculio producono a favore dei titolari interessi legali.
Il peculio é tenuto in deposito dalla direzione dell'istituto.
Il regolamento deve prevedere le modalità del deposito e stabilire la parte di peculio disponibile dai detenuti e dagli internati per acquisti autorizzati di oggetti personali o invii a familiari o conviventi, e la parte da consegnare agli stessi all'atto della dimissione dagli istituti.

**Art. 25-bis Commissioni regionali per il lavoro penitenziario**

1. Sono istituite le commissioni regionali per il lavoro penitenziario. Esse sono presiedute dal provveditore regionale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e sono composte dai rappresentanti, in sede locale, delle associazioni imprenditoriali e delle associazioni cooperative e dai rappresentanti della regione che operino nel settore del lavoro e della formazione professionale. Per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a previdenza sociale interviene un funzionario in servizio presso l'ufficio regionale del lavoro e della massima occupazione.
2. Le lavorazioni penitenziarie sono organizzate, sulla base di direttive, dai provveditorati regionali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sentite le commissioni regionali per il lavoro penitenziario nonché le direzioni dei singoli istituti.

3. I posti di lavoro a disposizione della popolazione penitenziaria devono essere quantitativamente e qualitativamente dimensionati alle effettive esigenze di ogni singolo istituto. Essi sono fissati in una tabella predisposta dalla direzione dell'istituto, nella quale sono separatamente elencati I posti relativi alle lavorazioni interne industriali, agricole ed ai servizi di istituto.
4. Nella tabella di cui al comma 3 sono altresì indicati i posti di lavoro disponibili all'esterno presso imprese pubbliche o private o associazioni cooperative nonché i posti relativi alle produzioni che imprese private o associazioni cooperative intendono organizzare e gestire direttamente all'interno degli istituti.
5. Annualmente la direzione dell'istituto elabora ed indica il piano di lavoro in relazione al numero dei detenuti, all'organico del personale civile e di polizia penitenziaria disponibile e alle strutture produttive.
6. La tabella, che può essere modificata secondo il variare della situazione, ed il piano di lavoro annuale sono approvati dal provveditore regionale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sentita la commissione regionale per il lavoro penitenziario.
7. Nel regolamento di ciascun istituto sono indicate le attività lavorative che possono avere esecuzione in luoghi a sicurezza attenuata.

**Art. 26 Religione e pratiche di culto**

I detenuti e gli internati hanno libertà di professare la propria fede religiosa, di istruirsi in essa e di praticarne il culto.
Negli istituti é assicurata la celebrazione dei riti del culto cattolico. A ciascun istituto é addetto almeno un cappellano.
Gli appartenenti a religione diversa dalla cattolica hanno diritto di ricevere, su loro richiesta, la assistenza dei ministri del proprio culto e di celebrarne i riti.

**Art. 27 Attività culturali, ricreative e sportive.**

Negli istituti devono essere favorite e organizzate attività culturali, sportive e ricreative e ogni altra attività volta alla realizzazione della personalità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anche nel quadro del trattamento rieducativo.
Una commissione composta dal direttore dell'istituto, dagli educatori e dagli assistenti sociali e dai rappresentant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ura la organizzazione delle attività di cui al precedente comma, anche mantenendo contatti con il mondo esterno utili al reinserimento sociale

**Art. 28 Rapporti con la famiglia**

Particolare cura é dedicata a mantenere, migliorare o ristabilire le relazion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on le famiglie.

**Art. 29 Comunicazioni dello stato di detenzione, dei trasferimenti, delle malattie e dei decessi**

I detenuti e gli internati sono posti in grado d'informare immediatamente i congiunti e le altre persone da essi eventualmente indicate del loro ingresso in un istituto penitenziario o dell'avvenuto trasferimento.
In caso di decesso o di grave infermità fisica o psichica di un detenuto o di un internato, deve essere data tempestiva notizia ai congiunti ed alle altre persone eventualmente da lui indicate; analogamente I detenuti

e gli internati devono essere tempestivamente informati del decesso o della grave infermità delle persone di cui al comma precedente.

**Art. 30 Permessi**

Nel caso di imminente pericolo di vita di un familiare o di un convivente, ai condannati e agli internati può essere concess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il permesso di recarsi a visitare, con le cautele previste dal regolamento, l'infermo.

Agli imputati il permesso é concesso, durante il procedimento di primo grado, dalle medesime autorità giudiziarie competenti ai sensi del secondo comma dell'articolo 11 a disporre il trasferimento in luoghi esterni di cura degli imputati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urante il procedimento di appello provvede il presidente del collegio e, nel corso di quello di cassazione, il presidente dell'ufficio giudiziario presso il quale si é svolto il procedimento di appello.

Analoghi permessi possono essere concessi eccezionalmente per eventi familiari di particolare gravità.

Il detenuto che non rientra in istituto allo scadere del permesso senza giustificato motivo, se l'assenza si protrae per oltre tre ore e per non più di dodici, é punito in via disciplinare, se l'assenza si protrae per un tempo maggiore, é punibile a norma del primo comma dello articolo 385 del codice penale ed é applicabile la disposizione dell'ultimo capoverso dello stesso articolo

L'internato che rientra in istituto dopo tre ore dalla scadenza del permesso senza giustificato motivo é punito in via disciplinare.

**Art. 30-bis Provvedimenti e reclami in materia di permessi**

Prima di pronunciarsi sull'istanza di permesso, l'autorità competente deve assumere informazioni sulla sussistenza dei motivi addotti, a mezzo delle autorità di pubblica sicurezza, anche del luogo in cui l'istante chiede di recarsi.

La decisione sull'istanza é adottata con provvedimento motivato

Il provvedimento é comunicato immediatamente senza formalità, anche a mezzo del telegrafo o del telefono, al pubblico ministero e all'interessato, i quali, entro ventiquattro ore dalla comunicazione, possono proporre reclamo, se il provvedimento é stato emess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lla sezione di sorveglianza, o, se il provvedimento é stato emesso da altro organo giudiziario, alla corte di appello.

La sezione di sorveglianza o la corte di appello, assunte, se del caso, sommarie informazioni, provvede entro dieci giorni dalla ricezione del reclamo dandone immediata comunicazione ai sensi del comma precedente.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o il presidente della corte d'appello, non fa parte del collegio che decide sul reclamo avverso il provvedimento da lui emesso.

Quando per effetto della disposizione contenuta nel precedente comma non é possibile comporre la sezione di sorveglianza con i magistrati di sorveglianza del distretto, si procede all'integrazione della sezione ai sensi dell'articolo 68,terzo e quarto comma.

L'esecuzione del permesso é sospesa sino alla scadenza del termine stabilito dal terzo comma e durante il procedimento previsto dal quarto comma, sino alla scadenza del termine ivi previsto.

Le disposizioni del comma precedente non si applicano ai permessi concessi ai sensi del primo comma dell'articolo 30 in tale caso é obbligatoria la scorta.

Il procuratore generale presso la corte d'appello é informato dei permessi concessi e del relativo esito, con

relazione trimestrale, degli organi che li hanno rilasciati.

**Art. 30-ter Permessi premio**

1. Ai condannati che hanno tenuto regolare condotta ai sensi del successivo comma ottavo e che non risultano "socialmente pericolose",( inserite con articolo 1 d.l. 1991, n. 152 coordinato con la legge di conversione 1991, n. 203)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entito il direttore dell'istituto, può concedere permessi premio di durata non superiore ogni volta a quindici giorni per consentire di coltivare interessi affettivi, culturali o di lavoro. La durata dei permessi non può superare complessivamente quarantacinque giorni in ciascun anno di espiazione.
2. Per i condannati minori di età la durata dei permessi premio non può superare ogni volta i venti giorni e la durata complessiva non può eccedere i sessanta giorni in ciascun anno di espiazione.
3. L'esperienza dei permessi premio é parte integrante del programma di trattamento e deve essere seguita dagli educatori e assistenti sociali penitenziari in collaborazione con gli operatori sociali del territorio.
4. La concessione dei permessi é ammessa:
   a.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all'arresto o alla reclusione non superiore a tre anni anche se congiunta all'arresto;
   b.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alla reclusione superiore a tre anni, salvo quanto previsto dalla lettera c), dopo l'espiazione di almeno un quarto della pena;
   c.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alla reclusione per taluno dei delitti indicati nel comma primo dell'articolo 4-bis, dopo l'espiazione di almeno metà della penale, comunque, di non oltre dieci anni;
   d.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all'ergastolo, dopo l'espiazione di almeno dieci anni.
5. Nei confronti dei soggetti che durante l'espiazione della pena o delle misure restrittive hanno riportato condanna o sono imputati per delitto doloso commesso durante l'espiazione della pena o l'esecuzione di una misura restrittiva della libertà personale, la concessione é ammessa soltanto decorsi due anni dalla commissione del fatto.
6. Si applicano, ove del caso, le cautele previste per i permessi di cui al primo comma dell'articolo 30; si applicano altresì le disposizioni di cui al terzo e al quarto comma dello stesso articolo
7. Il provvedimento relativo ai permessi premio é soggetto a reclamo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secondo le procedure di cui all'articolo 30-bis.
8. La condotta dei condannati si considera regolare quando i soggetti, durante la detenzione, hanno manifestato costante senso di responsabilità e correttezza nel comportamento personale, nelle attività organizzate negli istituti e nelle eventuali attività lavorative o culturali.

**Art. 30-quater Concessione dei permessi premio ai recidivi**

1. I permessi premio possono essere concessi ai detenuti, ai quali sia stata applicata la recidiva prevista dall'articolo 99, quarto comma, del codice penale, nei seguenti casi previsti dal comma 4 dell'articolo 30-ter:
   a. alla lettera a) dopo l'espiazione di un terzo della pena;
   b. alla lettera b) dopo l'espiazione della metà della pena;
   c. alle lettere c) e d) dopo l'espiazione di due terzi della pena e, comunque, di non oltre quindici anni».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21 giugno-4 luglio 2006, n. 257, in G U. 1a s.s. 12/7/2006, n 28,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 30-quater).

**Art. 31 Costituzione delle rappresentanz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Le rappresentanz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previste dagli articoli 12 e 27 sono nominate per sorteggio secondo le modalità indicate dal regolamento interno dell'istituto.

## CAPO IV Regime penitenziario

**Art. 32 Norme di condotta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Obbligo di risarcimento del danno**

I detenuti e gli internati, all'atto del loro ingresso negli istituti e, quando sia necessario, successivamente, sono informati delle disposizioni generali e particolari attinenti ai loro diritti e doveri, alla disciplina e al trattamento.

Essi devono osservare le norme e le disposizioni che regolano la vita penitenziaria.

Nessun detenuto o internato può' avere, nei servizi dell'istituto, mansioni che importino un potere disciplinare o consentano la acquisizione di una posizione di preminenza sugli altri.

I detenuti e gli internati devono avere cura degli oggetti messi a loro disposizione e astenersi da qualsiasi danneggiamento di cose altrui.

I detenuti e gli internati che arrecano danno alle cose mobili o immobili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sono tenuti a risarcirlo senza pregiudizio dello eventuale procedimento penale e disciplinare.

**Art. 33 Isolamento**

Negli istituti penitenziari l'isolamento continuo é ammesso:

1. quando é prescritto per ragioni sanitarie;
2. durante l'esecuzione della sanzione della esclusione dalle attività in comune;
3. per gli imputati durante la istruttoria e per gli arrestati nel procedimento di prevenzione, se e fino a quando ciò sia ritenuto necessario dall'autorità giudiziaria.

**Art. 34 Perquisizione personale**

I detenuti e gli internati possono essere sottoposti a perquisizione personale per motivi di sicurezza.

La perquisizione personale deve essere effettuata nel pieno rispetto della personalità.

**Art. 35 Diritto di reclamo**

I detenuti e gli internati possono rivolgere istanze o reclami orali o scritti, anche in busta chiusa:

1. al direttore dell'istituto, nonché agli ispettori, al direttor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e a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2.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3. alle autorità giudiziarie e sanitarie in visita all'istituto;
4. al presidente della giunta regionale;
5. al capo dello stato.

**Art. 36 Regime disciplinare**

Il regime disciplinare é attuato in modo da stimolare il senso di responsabilità e la capacità di autocontrollo. Esso é adeguato alle condizioni fisiche e psichiche dei soggetti.

**Art. 37 Ricompense**

Le ricompense costituiscono il riconoscimento del senso di responsabilità dimostrato nella condotta personale e nelle attività organizzate negli istituti.
Le ricompense e gli organi competenti a concederle sono previsti dal regolamento.

**Art. 38 Infrazioni disciplinari**

I detenuti e gli internati non possono essere puniti per un fatto che non sia espressamente previsto come infrazione dal regolamento.
Nessuna sanzione può essere inflitta se non con provvedimento motivato dopo la contestazione dell'addebito all'interessato, il quale é ammesso ad esporre le proprie discolpe.
Nell'applicazione delle sanzioni bisogna tener conto, oltre che della natura e della gravità del fatto, del comportamento e delle condizioni personali del soggetto.
Le sanzioni sono eseguite nel rispetto della personalità.

**Art. 39 Sanzioni disciplinari**

Le infrazioni disciplinari possono dar luogo solo alle seguenti sanzioni:
1. richiamo del direttore;
2. ammonizione, rivolta dal direttore, alla presenza di appartenenti al personale e di un gruppo di detenuti o internati;
3. esclusione da attività ricreative e sportive per non più di dieci giorni;
4. isolamento durante la permanenza all'aria aperta per non più di dieci giorni;
5. esclusione dalle attività in comune per non più di quindici giorni.

La sanzione della esclusione dalle attività in comune non può essere eseguita senza la certificazione scritta, rilasciata dal sanitario, attestante che il soggetto può sopportarla. Il soggetto escluso dalle attività in comune é sottoposto a costante controllo sanitario.
L'esecuzione della sanzione della esclusione dalle attività in comune é sospesa nei confronti delle donne gestanti e delle puerpere fino a sei mesi, e delle madri che allattino la propria prole fino ad un anno.

**Art. 40 Autorità competente a deliberare le sanzioni**

Le sanzioni del richiamo e della ammonizione sono deliberate dal direttore.
Le altre sanzioni sono deliberate dal consiglio di disciplina, composto dal direttore o, in caso di suo legittimo impedimento, dall'impiegato più elevato in grado, con funzioni di presidente, dal sanitario e dall'educatore.

**Art. 41 Impiego della forza fisica e uso dei mezzi di coercizione**

Non é consentito l'impiego della forza fisica nei confront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se non sia indispensabile per prevenire o impedire atti di violenza, per impedire tentativi di evasione o per vincere la resistenza, anche passiva, all'esecuzione degli ordini impartiti.
Il personale che, per qualsiasi motivo, abbia fatto uso della forza fisica nei confronti dei detenuti o degli internati, deve immediatamente riferirne al direttore dell'istituto il quale dispone, senza indugio, accertamenti sanitari e procede alle altre indagini del caso.
Non può essere usato alcun mezzo di coercizione fisica che non sia espressamente previsto dal regolamento

e, comunque, non vi si può far ricorso a fini disciplinari ma solo al fine di evitare danni a persone o cose o di garantire la incolumità dello stesso soggetto. L'uso deve essere limitato al tempo strettamente necessario e deve essere costantemente controllato dal sanitario.
Gli agenti in servizio nell'interno degli istituti non possono portare armi se non nei casi eccezionali in cui ciò venga ordinato dal direttore.

**Art. 41-bis Situazioni di emergenza**

1. In casi eccezionali di rivolta o di altre gravi situazioni di emergenza, il ministro di grazia e giustizia ha facoltà di sospendere nell'istituto interessato o in parte di esso l'applicazione delle normali regole di trattamento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La sospensione deve essere motivata dalla necessità di ripristinare l'ordine e la sicurezza e ha la durata strettamente necessaria al conseguimento del fine suddetto.
2. Quando ricorrano gravi motivi di ordine e di sicurezza pubblica, anche a richiesta del Ministro dell'interno, il Ministro della giustizia ha altresì la facoltà di sospendere, in tutto o in parte, nei confronti dei detenuti o internati per taluno dei delitti di cui al primo periodo del comma 1 dell'articolo 4-bis, in relazione ai quali vi siano elementi tali da far ritenere la sussistenza di collegamenti con un'associazione criminale, terroristica o eversiva, l'applicazione delle regole di trattamento e degli istituti previsti dalla presente legge che possano porsi in concreto contrasto con le esigenze di ordine e di sicurezza. La sospensione comporta le restrizioni necessarie per il soddisfacimento delle predette esigenze e per impedire i collegamenti con l'associazione di cui al periodo precedente.
2. bis. I provvedimenti emessi ai sensi del comma 2 sono adottati con decreto motivato del Ministro della giustizia, sentito l'ufficio del pubblico ministero che procede alle indagini preliminari ovvero quello presso il giudice che procede ed acquisita ogni altra necessaria informazione presso la Direzione nazionale antimafia e gli organi di polizia centrali e quelli specializzati nell'azione di contrasto alla criminalità organizzata, terroristica o eversiva, nell'ambito delle rispettive competenze. I provvedimenti medesimi hanno durata non inferiore ad un anno e non superiore a due e sono prorogabili nelle stesse forme per periodi successivi, ciascuno pari ad un anno, purchè non risulti che la capacità del detenuto o dell'internato di mantenere contatti con associazioni criminali, terroristiche o eversive sia venuta meno.
2. ter. Se anche prima della scadenza risultano venute meno le condizioni che hanno determinato l'adozione o la proroga del provvedimento di cui al comma 2, il Ministro della giustizia procede, anche d'ufficio, alla revoca con decreto motivato. Il provvedimento che non accoglie l'istanza presentata dal detenuto, dall'internato o dal difensore è reclamabile ai sensi dei commi 2-quinquies e 2-sexies. In caso di mancata adozione del provvedimento a seguito di istanza del detenuto, dell'internato o del difensore, la stessa si intende non accolta decorsi trenta giorni dalla sua presentazione.
2. quater. La sospensione delle regole di trattamento e degli istituti di cui al comma 2 può comportare:
   a. l'adozione di misure di elevata sicurezza interna ed esterna, con riguardo principalmente alla necessità di prevenire contatti con l'organizzazione criminale di appartenenza o di attuale riferimento, contrasti con elementi di organizzazioni contrapposte, interazione con altri detenuti o internati appartenenti alla medesima organizzazione ovvero ad altre ad essa alleate;
   b. la determinazione dei colloqui in un numero non inferiore a uno e non superiore a due al mese da svolgersi ad intervalli di tempo regolari ed in locali attrezzati in modo da impedire il passaggio di

oggetti. Sono vietati i colloqui con persone diverse dai familiari e conviventi, salvo casi eccezionali determinati volta per volta dal direttore dell'istituto ovvero, per gli imputati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l'autorità giudiziaria competente ai sensi di quanto stabilito nel secondo comma dell'articolo 11. I colloqui possono essere sottoposti a controllo auditivo ed a registrazione, previa motivata autorizzazione dell'autorità giudiziaria competente ai sensi del medesimo secondo comma dell'articolo 11; può essere autorizzato, con provvedimento motivato del direttore dell'istituto ovvero, per gli imputati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i primo grado, dall'autorità giudiziaria competente ai sensi di quanto stabilito nel secondo comma dell'articolo 11, e solo dopo i primi sei mesi di applicazione, un colloquio telefonico mensile con i familiari e conviventi della durata massima di dieci minuti sottoposto, comunque, a registrazione. Le disposizioni della presente lettera non si applicano ai colloqui con i difensori;

c. la limitazione delle somme, dei beni e degli oggetti che possono essere ricevuti dall'esterno;

d. l'esclusione dalle rappresentanz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e. la sottoposizione a visto di censura della corrispondenza, salvo quella con i membri del Parlamento o con autorità europee o nazionali aventi competenza in materia di giustizia;

f. la limitazione della permanenza all'aperto, che non può svolgersi in gruppi superiori a cinque persone, ad una durata non superiore a quattro ore al giorno fermo restando il limite minimo di cui al primo comma dell'articolo 10.

2. quinquies. Il detenuto o l'internato nei confronti del quale è stata disposta o confermata l'applicazione del regime di cui al comma 2, ovvero il difensore, possono proporre reclamo avverso il provvedimento applicativo. Il reclamo è presentato nel termine di dieci giorni dalla comunicazione del provvedimento e su di esso è competente a decidere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che ha giurisdizione sull'istituto al quale il detenuto o l'internato è assegnato. Il reclamo non sospende l'esecuzione. Il successivo trasferimento del detenuto o dell'internato non modifica la competenza territoriale a decidere.

2. sexies. Il tribunale, entro dieci giorni dal ricevimento del reclamo di cui al comma 2-quinquies, decide in camera di consiglio, nelle forme previste dagli articoli 666 e 678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sulla sussistenza dei presupposti per l'adozione del provvedimento e sulla congruità del contenuto dello stesso rispetto alle esigenze di cui al comma 2. Il procuratore generale presso la corte d'appello il detenuto, l'internato o il difensore possono proporre, entro dieci giorni dalla sua comunicazione, ricorso per cassazione avverso l'ordinanza del tribunale per violazione di legge. Il ricorso non sospende l'esecuzione del provvedimento e va trasmesso senza ritardo alla Corte di cassazione. Qualora il reclamo sia stato accolto con la revoca della misura, il Ministro della giustizia, ove intenda disporre un nuovo provvedimento ai sensi del comma 2, deve, tenendo conto della decision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evidenziare elementi nuovi o non valutati in sede di reclamo. Con le medesime modalità il Ministro deve procedere, ove il reclamo sia stato accolto parzialmente, per la parte accolta.

**Art. 42 Trasferimenti**

I trasferimenti sono disposti per gravi e comprovati motivi di sicurezza, per esigenze dello istituto, per motivi di giustizia, di salute, di studio e familiari.

Nel disporre i trasferimenti deve essere favorito il criterio di destinare i soggetti in istituti prossimi alla residenza delle famiglie.

I detenuti e gli internati debbono essere trasferiti con il bagaglio personale e con almeno parte del loro peculio

(Abrogati gli ultimi due commi)

**Art. 42-bis Traduzioni**

1. Sono traduzioni tutte le attività di accompagnamento coattivo, da un luogo ad un altro, di soggetti detenuti, internati, fermati, arrestati o comunque in condizione di restrizione della libertà personale.
2. Le traduzion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adulti sono eseguite, nel tempo più breve possibile, dal corpo di polizia penitenziaria, con le modalità stabilite dalle leggi e dai regolamenti e, se trattasi di donne, con l'assistenza di personale femminile.
3. Le traduzioni di soggetti che rientrano nella competenza dei servizi dei centri per la giustizia minorile possono essere richieste, nelle sedi in cui non sono disponibili contingenti del corpo di polizia penitenziaria assegnati al settore minorile, ad altre forze di polizia.
4. Nelle traduzioni sono adottate le opportune cautele per proteggere i soggetti tradotti dalla curiosità del pubblico e da ogni specie di pubblicità, nonché per evitare ad essi inutili disagi. L'inosservanza della presente disposizione costituisce comportamento valutabile ai fini disciplinari
5. Nelle traduzioni individuali l'uso delle manette ai polsi é obbligatorio quando lo richiedono la pericolosità del soggetto o il pericolo di fuga o circostanze di ambiente che rendono difficile la traduzione. In tutti gli altri casi l'uso delle manette ai polsi o di qualsiasi altro mezzo di coercizione fisica é vietato. Nel caso di traduzioni individuali di detenuti o internati la valutazione della pericolosità del soggetto o del pericolo di fuga é compiuta, all'atto di disporre la traduzione, dall'autorità giudiziaria o dalla direzione penitenziaria competente, le quali dettano le conseguenti prescrizioni.
6. Nelle traduzioni collettive é sempre obbligatorio l'uso di manette modulari multiple dei tipi definiti con decreto ministeriale. É vietato l'uso di qualsiasi altro mezzo di coercizione fisica.
7. Nelle traduzioni individuali e collettive é consentito, nei casi indicati dal regolamento, l'uso di abiti civili. Le traduzioni dei soggetti di cui al comma 3 sono eseguite, di regola, in abiti civili.

**Art. 43 Dimissione**

La dimission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é eseguita senza indugio dalla direzione dell'istituto in base ad ordine scritto della competente autorità giudiziaria o di pubblica sicurezza.

Il direttore dell'istituto dà notizia della prevista dimissione, almeno tre mesi prima, al consiglio di aiuto sociale e al centro di servizio sociale del luogo in cui ha sede l'istituto ed a quelli del luogo dove il soggetto intende stabilire la sua residenza, comunicando tutti dati necessari per gli opportuni interventi assistenziali. Nel caso in cui il momento della dimissione non possa essere previsto tre mesi prima, il direttore dà le prescritte notizie non appena viene a conoscenza della relativa decisione.

Oltre a quanto stabilito da specifiche disposizioni di legge, il direttore informa anticipatamente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il questore e l'ufficio di polizia territorialmente competente di ogni dimissione anche temporanea dall'istituto.

Il consiglio di disciplina dell'istituto, all'atto della dimissione o successivamente, rilascia al soggetto, che lo richieda, un attestato con l'eventuale qualificazione professionale conseguita e notizie obiettive circa la condotta tenuta.

I soggetti, che ne sono privi, vengono provvisti di un corredo di vestiario civile.

**Art. 44 Nascite, matrimoni, decessi**

Negli atti di sto civile relativi ai matrimoni celebrati e alle nascite e morti avvenute in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non si fa menzione dello istituto
La direzione dell'istituto deve dare immediata notizia del decesso di un detenuto o di un internato all'autorità giudiziaria del luogo, a quella da cui il soggetto dipendeva e al ministero di grazia e giustizia.
La salma é messa immediatamente a disposizione dei congiunti.

## CAPO V Assistenza

**Art. 45 Assistenza alle famiglie**

Il trattamento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é integrato da un'azione di assistenza alle loro famiglie.
Tale azione é rivolta anche a conservare e migliorare le relazioni dei soggetti con i familiari e a rimuovere le difficoltà che possono ostacolare il reinserimento sociale
É utilizzata, all'uopo, la collaborazione degli enti pubblici e privati qualificati nell'assistenza sociale.

**Art. 46 Assistenza post-penitenziaria**

I detenuti e gli internati ricevono un particolare aiuto nel periodo di tempo che immediatamente precede la loro dimissione e per un congruo periodo a questa successivo.
Il definitivo reinserimento nella vita libera é agevolato da interventi di servizio sociale svolti anche in collaborazione con gli enti indicati nell'articolo precedente.
I dimessi affetti da gravi infermità fisiche o da infermità o anormalità psichiche sono segnalati, per la necessaria assistenza, anche agli organi preposti alla tutela della sanità pubblica.

## CAPO VI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e remissione del debito

**Art. 47 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1. Se la pena detentiva inflitta non supera tre anni, il condannato può essere affidato al servizio sociale fuori dell'istituto per un periodo uguale a quello della pena da scontare.
2. Il provvedimento è adottato sulla base dei risultati della osservazione della personalità, condotta collegialmente per almeno un mese in istituto, nei casi in cui si può ritenere che il provvedimento stesso, anche attraverso le prescrizioni di cui al comma 5, contribuisca alla rieducazione del reo e assicuri la prevenzione del pericolo che egli commetta altri reati
3.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può essere disposto senza procedere all'osservazione in istituto quando il condannato, dopo la commissione del reato, ha serbato comportamento tale da consentire il giudizio di cui al comma 2
4. Se l'istanza di 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è proposta dopo che ha avuto inizio l'esecuzione della pena,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ompetente in relazione al luogo dell'esecuzione, cui l'istanza deve essere rivolta, può sospendere l'esecuzione della pena e ordinare la liberazione del condannato, quando sono offerte concrete indicazioni in ordine alla sussistenza dei presupposti per l'ammissione all'affidamento in prova e al grave pregiudizio derivante dalla protrazione dello stato di detenzione e non vi sia pericolo di fuga. La sospensione dell'esecuzione della pena opera sino alla decision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cui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trasmette immediatamente gli atti, e che decide entro

quarantacinque giorni. Se l'istanza non è accolta, riprende l'esecuzione della pena, e non può essere accordata altra sospensione, quale che sia l'istanza successivamente proposta.

5. All'atto dell'affidamento è redatto verbale in cui sono dettate le prescrizioni che il soggetto dovrà seguire in ordine ai suoi rapporti con il servizio sociale, alla dimora, alla libertà di locomozione, al divieto di frequentare determinati locali ed al lavoro.
6. Con lo stesso provvedimento può essere disposto che durante tutto o parte del periodo di affidamento in prova il condannato non soggiorni in uno o più comuni, o soggiorni in un comune determinato; in particolare sono stabilite prescrizioni che impediscano al soggetto di svolgere attività o di avere rapporti personali che possono portare al compimento di altri reati.
7. Nel verbale deve anche stabilirsi che l'affidato si adoperi in quanto possibile in favore della vittima del suo reato ed adempia puntualmente agli obblighi di assistenza familiare.
8. Nel corso dell'affidamento le prescrizioni possono essere modificate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9. Il servizio sociale controlla la condotta del soggetto e lo aiuta a superare le difficoltà di adattamento alla vita sociale, anche mettendosi in relazione con la sua famiglia e con gli altri suoi ambienti di vita.
10. Il servizio sociale riferisce periodicamente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ul comportamento del soggetto.
11. L'affidamento è revocato qualora il comportamento del soggetto, contrario alla legge o alle prescrizioni dettate, appaia incompatibile con la prosecuzione della prova.
12. L'esito positivo del periodo di prova estingue la pena e ogni altro effetto penale.
12. bis. All'affida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che abbia dato prova nel periodo di affidamento di un suo concreto recupero sociale, desumibile da comportamenti rivelatori del positivo evolversi della sua personalità, può essere concessa la detrazione di pena di cui all'art. 54. Si applicano gli articoli 69, comma 8, e 69-bis nonchè l'art. 54, comma 3.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5 - 16 marzo 2007 n. 78, in G.U. 1° serie speciale n. 12 del 21 marzo 2007,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icolo 47, ove interpretati nel senso che allo straniero extracomunitario, entrato illegalmente nel territorio dello Stato o privo del permesso di soggiorno, sia in ogni caso precluso l'accesso alle misure alternative da essi previste).

**Art. 47-bis Affidamento in prova in casi particolari**

(Abrogato)

**Art. 47-ter Detenzione domiciliare**

01. La pena della reclusione per qualunque reato, ad eccezione di quelli previsti dal libro II titolo XII, capo III, sezione I, e dagli articoli 609-bis, 609-quater e 609-octies del codice penale, dall'art. 51, comma 3-bis,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e dall'art. 4-bis della presente legge, può essere espiata nella propria abitazione o in altro luogo pubblico di cura, assistenza ed accoglienza, quando trattasi di persona che, al momento dell'inizio dell'esecuzione della pena, o dopo l'inizio della stessa, abbia compiuto i settanta anni di età purché non sia stato dichiarato delinquente abituale, professionale o per tendenza né sia stato mai condannato con l'aggravante di cui all'art. 99 del codice penale.

1. La pena della reclusione non superiore a quattro anni, anche se costituente parte residua di maggior pena, nonché la pena dell'arresto, possono essere espiate nella propria abitazione o in altro luogo di privata dimora ovvero in luogo pubblico di cura, assistenza o accoglienza, quando trattasi di:

a. donna incinta o madre di prole di età inferiore ad anni dieci con lei convivente;
b. padre, esercente la potestà, di prole di età inferiore ad anni dieci con lui convivente, quando la madre sia deceduta o altrimenti assolutamente impossibilitata a dare assistenza alla prole;
c. persona in condizioni di salute particolarmente gravi, che richiedano costanti contatti con i presidi sanitari territoriali;
d. persona di età superiore a sessanta anni, se inabile anche parzialmente;
e. persona minore di anni ventuno per comprovate esigenze di salute, di studio, di lavoro e di famiglia.

1. 1. Al condannato, al quale sia stata applicata la recidiva prevista dall'art. 99, quarto comma, del codice penale, può essere concessa la detenzione domiciliare se la pena detentiva inflitta, anche se costituente parte residua di maggior pena, non supera tre anni.
1. bis. La detenzione domiciliare può essere applicata per l'espiazione della pena detentiva inflitta in misura non superiore a due anni, anche se costituente parte residua di maggior pena, indipendentemente dalle condizioni di cui al comma 1 quando non ricorrono i presupposti per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e sempre che tale misura sia idonea ad evitare il pericolo che il condannato commetta altri reati. La presente disposizione non si applica ai condannati per i reati di cui all'art. 4-bis e a quelli cui sia stata applicata la recidiva prevista dall'art. 99, quarto comma, del codice penale.
1. ter. Quando potrebbe essere disposto il rinvio obbligatorio o facoltativo della esecuzione della pena ai sensi degli articoli 146 e 147 del codice penale,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anche se la pena supera il limite di cui al comma 1, può disporre la applicazione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stabilendo un termine di durata di tale applicazione, termine che può essere prorogato. L'esecuzione della pena prosegue durante la esecuzione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1. quater. Se l'istanza di applicazione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é proposta dopo che ha avuto inizio l'esecuzione della pena,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ui la domanda deve essere rivolta può disporre l'applicazione provvisoria della misura, quando ricorrono i requisiti di cui ai commi 1 e 1-bis. Si applicano, in quanto compatibili, le disposizioni di cui all'art. 47, comma 4.
2. Abrogato
3. Abrogato
4.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nel disporre la detenzione domiciliare, ne fissa le modalità secondo quanto stabilito dall'art. 284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Determina e impartisce altresì le disposizioni per gli interventi del servizio sociale. Tali prescrizioni e disposizioni possono essere modificate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ompetente per il luogo in cui si svolge la detenzione domiciliare.
4. bis. Nel disporre la detenzione domiciliare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quando ne abbia accertato la disponibilità da parte delle autorità preposte al controllo, può prevedere modalità di verifica per l'osservanza delle prescrizioni imposte anche mediante mezzi elettronici o altri strumenti tecnici.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i cui all'art. 275-bis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5. Il condannato nei confronti del quale é disposta la detenzione domiciliare non é sottoposto al regime penitenziario previsto dalla presente legge e dal relativo regolamento di esecuzione. Nessun onere grava su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er il mantenimento, la cura e l'assistenza medica del condannato che trovasi in detenzione domiciliare.
6. La detenzione domiciliare é revocata se il comportamento del soggetto, contrario alla legge o alle prescrizioni dettate, appare incompatibile con la prosecuzione delle misure.

7. Deve essere inoltre revocata quando vengono a cessare le condizioni previste nei commi 1 e 1-bis.
8. Il condannato che, essendo in stato di detenzione nella propria abitazione o in un altro dei luoghi indicati nel comma 1, se ne allontana, é punito ai sensi dell'art. 385 del codice penale. Si applica la disposizione dell'ultimo comma dello stesso articolo.
9. La denuncia per il delitto di cui al comma 8 importa la sospensione del beneficio e la condanna ne importa la revoca.
9. bis. Se la misura di cui al comma 1-bis é revocata ai sensi dei commi precedenti la pena residua non può essere sostituita con altra misura.».

**Art. 47-quater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nei confronti dei soggetti affetti da AIDS conclamata o da grave deficienza immunitaria**

1. Le misure previste dagli articoli 47 e 47-ter possono essere applicate, anche oltre i limiti di pena ivi previsti, su istanza dell'interessato o del suo difensore, nei confronti di coloro che sono affetti da AIDS conclamata o da grave deficienza immunitaria accertate ai sensi dell'articolo 286-bis, comma 2,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e che hanno in corso o intendono intraprendere un programma di cura e assistenza presso le unità operative di malattie infettive ospedaliere ed universitarie o altre unità operative prevalentemente impegnate secondo i piani regionali nell'assistenza ai casi di AIDS.
2. L'istanza di cui al comma 1 deve essere corredata da certificazione del servizio sanitario pubblico competente o del servizio sanitario penitenziario, che attesti la sussistenza delle condizioni di salute ivi indicate e la concreta attuabilità del programma di cura e assistenza, in corso o da effettuare, presso le unità operative di malattie infettive ospedaliere ed universitarie o altre unità operative prevalentemente impegnate secondo i piani regionali nell'assistenza ai casi di AIDS.
3. Le prescrizioni da impartire per l'esecuzione della misura alternativa devono contenere anche quelle relative alle modalità di esecuzione del programma.
4. In caso di applicazione della misura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er adulti svolgono l'attività di sostegno e controllo circa l'attuazione del programma.
5. Nei casi previsti dal comma 1, il giudice può non applicare la misura alternativa qualora l'interessato abbia già fruito di analoga misura e questa sia stata revocata da meno di un anno.
6. Il giudice può revocare la misura alternativa disposta ai sensi del comma 1 qualora il soggetto risulti imputato o sia stato sottoposto a misura cautelare per uno dei delitti previsti dall'articolo 380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relativamente a fatti commessi successivamente alla concessione del beneficio.
7. Il giudice, quando non applica o quando revoca la misura alternativa per uno dei motivi di cui ai commi 5 e 6, ordina che il soggetto sia detenuto presso un istituto carcerario dotato di reparto attrezzato per la cura e l'assistenza necessarie.
8. Per quanto non diversamente stabilito dal presente articolo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l'articolo 47-ter.
9. Ai fini del presente articolo non si applica il divieto di concessione dei benefici previsto dall'articolo 4-bis, fermi restando gli accertamenti previsti dai commi 2, 2-bis e 3 dello stesso articolo.
10. Le disposizioni del presente articolo si applicano anche alle persone internate.

**Art. 47-quinquies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1. Quando non ricorrono le condizioni di cui all'articolo 47-ter, le condannate madri di prole di età non

superiore ad anni dieci, se non sussiste un concreto pericolo di commissione di ulteriori delitti e se vi è la possibilità di ripristinare la convivenza con i figli, possono essere ammesse ad espiare la pena nella propria abitazione, o in altro luogo di privata dimora, ovvero in luogo di cura, assistenza o accoglienza, al fine di provvedere alla cura e alla assistenza dei figli, dopo l'espiazione di almeno un terzo della pena ovvero dopo l'espiazione di almeno quindici anni nel caso di condanna all'ergastolo.

2. Per la condannata nei cui confronti è disposta 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nessun onere grava su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er il mantenimento, la cura e l'assistenza medica della condannata che si trovi in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3.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nel disporre 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fissa le modalità di attuazione, secondo quanto stabilito dall'articolo 284, comma 2,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precisa il periodo di tempo che la persona può trascorrere all'esterno del proprio domicilio, detta le prescrizioni relative agli interventi del servizio sociale. Tali prescrizioni e disposizioni possono essere modificate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ompetente per il luogo in cui si svolge la misura. Si applica l'articolo 284, comma 4,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4. All'atto della scarcerazione è redatto verbale in cui sono dettate le prescrizioni che il soggetto deve seguire nei rapporti con il servizio sociale.
5. Il servizio sociale controlla la condotta del soggetto e lo aiuta a superare le difficoltà di adattamento alla vita sociale, anche mettendosi in relazione con la sua famiglia e con gli altri suoi ambienti di vita; riferisce periodicamente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ul comportamento del soggetto.
6. 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è revocata se il comportamento del soggetto, contrario alla legge o alle prescrizioni dettate, appare incompatibile con la prosecuzione della misura.
7. 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può essere concessa, alle stesse condizioni previste per la madre, anche al padre detenuto, se la madre è deceduta o impossibilitata e non vi è modo di affidare la prole ad altri che al padre.
8. Al compimento del decimo anno di età del figlio, su domanda del soggetto già ammesso al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può:

   a. disporre la proroga del beneficio, se ricorrono i requisiti per l'applicazione della semilibertà di cui all'articolo 50, commi 2, 3 e 5;

   b. disporre l'ammissione all'assistenza all'esterno dei figli minori di cui all'articolo 21-bis, tenuto conto del comportamento dell'interessato nel corso della misura, desunto dalle relazioni redatte dal servizio sociale, ai sensi del comma 5, nonché della durata della misura e dell'entità della pena residua.

**Art. 47-sexies Allontanamento dal domicilio senza giustificato motivo**

1. La condannata ammessa al regime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che rimane assente dal proprio domicilio, senza giustificato motivo, per non più di dodici ore, può essere proposta per la revoca della misura.
2. Se l'assenza si protrae per un tempo maggiore la condannata è punita ai sensi dell'articolo 385, primo comma, del codice penale ed è applicabile la disposizione dell'ultimo comma dello stesso articolo.
3. La condanna per il delitto di evasione comporta la revoca del beneficio.
4. Le disposizioni di cui al presente articolo si applicano al padre detenuto, qualora la detenzione domiciliare sia stata concessa a questi, ai sensi dell'articolo 47-quinquies, comma 7.

**Art. 48 Regime di semilibertà**

Il regime di semilibertà consiste nella concessione al condannato e all'internato di trascorrere parte del giorno fuori dell'istituto per partecipare ad attività lavorative, istruttive o comunque utili al reinserimento sociale.

I condannati e gli internati ammessi al regime di semilibertà sono assegnati in appositi istituti o apposite sezioni autonome di istituti ordinari e indossano abiti civili

(Abrogato il terzo comma)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5 - 16 marzo 2007 n 78, in G U. 1° serie speciale n. 12 del 21 marzo 2007,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icolo 48, ove interpretati nel senso che allo straniero extracomunitario, entrato illegalmente nel territorio dello Stato o privo del permesso di soggiorno, sia in ogni caso precluso l'accesso alle misure alternative da essi previste).

**Art. 49 Ammissione obbligatoria al regime di semilibertà**

(Abrogato)

**Art. 50 Ammissione alla semilibertà**

1. Possono essere espiate in regime di semilibertà la pena dell'arresto e la pena della reclusione non superiore a sei mesi, se il condannato non è affida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2. Fuori dai casi previsti dal comma 1, il condannato può essere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soltanto dopo l'espiazione di almeno metà della pena ovvero, se si tratta di condannato per taluno dei delitti indicati dal comma 1 dell'Art. 4-bis, di almeno due terzi di essa L'internato può esservi ammesso in ogni tempo. Tuttavia, nei casi previsti dall'Art. 47, se mancano i presupposti per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il condannato per un reato diverso da quell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 4-bis può essere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anche prima dell'espiazione di metà della pena.
3. Per il computo della durata delle pene non si tiene conto della pena pecuniaria inflitta congiuntamente a quella detentiva.
4. L'ammissione al regime di semilibertà é disposta in relazione ai progressi compiuti nel corso del trattamento, quando vi sono le condizioni per un graduale reinserimento del soggetto nella società.
5. Il condannato all'ergastolo può essere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dopo avere espiato almeno venti anni di pena.
6. Nei casi previsti dal comma 1, se il condannato ha dimostrato la propria volontà di reinserimento nella vita sociale, la semilibertà può essere altresì disposta successivamente all'inizio dell'esecuzione della pena. Si applica l'Art. 47, comma 4, in quanto applicabile.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5 - 16 marzo 2007 n. 78, in G.U. 1° serie speciale n. 12 del 21 marzo 2007,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icolo 50, ove interpretati nel senso che allo straniero extracomunitario, entrato illegalmente nel territorio dello Stato o privo del permesso di soggiorno, sia in ogni caso precluso l'accesso alle misure alternative da essi previste).

**Art. 50-bis Concessione della semilibertà ai recidivi**

1. La semilibertà può essere concessa ai detenuti, ai quali sia stata applicata la recidiva prevista dall'articolo 99, quarto comma, del codice penale, soltanto dopo l'espiazione dei due terzi della pena ovvero, se si tratta di un condannato per taluno dei delitt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icolo 4-bis della

presente legge, di almeno tre quarti di essa»

**Art. 51 Sospensione e revoca del regime di semilibertà**

Il provvedimento di semilibertà può essere in ogni tempo revocato quando il soggetto non si appalesi idoneo al trattamento.

Il condannato,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che rimane assente dall'istituto senza giustificato motivo, per non più di dodici ore, é punito in via disciplinare e può essere proposto per la revoca della concessione.

Se l'assenza si protrae per un tempo maggiore, il condannato é punibile a norma del primo comma dell' articolo 385 del codice penale ed é applicabile la disposizione dell'ultimo capoverso dello stesso articolo.

La denuncia per il delitto di cui al precedente comma importa la sospensione del beneficio e la condanna ne importa la revoca.

All'internato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che rimane assente dall'istituto senza giustificato motivo, per oltre tre ore,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l'ultimo comma dell' articolo 53 .

**Art. 51-bis Sopravvenienza di nuovi titoli di privazione della libertà**

1. Quando durante l'attuazione del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o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o del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o del regime di semilibertà sopravviene un titolo di esecuzione di altra pena detentiva, il direttore dello istituto penitenziario o il direttore del centro di servizio sociale informa immediatamente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e questi, tenuto conto del cumulo delle pene, rileva che permangono le condizioni di cui al comma primo dello articolo 47 o ai commi 1 e 1-bis dell'articolo 47-ter o ai commi 1 e 2 dell'articolo 47-quinquies o ai primi tre commi dell'articolo 50, dispone con decreto la prosecuzione provvisoria della misura in corso; in caso contrario dispone la sospensione della misura stessa.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trasmette quindi gli atti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che deve decidere nel termine di venti giorni la prosecuzione o la cessazione della misura.

**Art. 51-ter Sospensione cautelativa delle misure alternative**

1. Se l'affida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o l'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o di detenzione domiciliare o di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pone in essere comportamenti tali da determinare la revoca della misura,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nella cui giurisdizione essa é in corso ne dispone con decreto motivato la provvisoria sospensione, ordinando l'accompagnamento del trasgressore in istituto. Trasmette quindi immediatamente gli atti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per le decisioni di competenza. Il provvedimento di sospension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essa di avere efficacia se la decision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non interviene entro trenta giorni dalla ricezione degli atti.

**Art. 52 Licenza al condannato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Al condannato ammesso al regime di semilibertà possono essere concesse a titolo di premio una o più licenze di durata non superiore nel complesso a giorni quarantacinque all'anno.

Durante la licenza il condannato é sottoposto al regime della libertà vigilata.

Se il condannato durante la licenza trasgredisce agli obblighi impostigli, la licenza può essere revocata indipendentemente dalla revoca della semilibertà.

Al condannato che, allo scadere della licenza o dopo la revoca di essa, non rientra in istituto sono

applicabili le disposizioni di cui al precedente articolo.

**Art. 53 Licenze agli internati**

Agli internati può essere concessa una licenza di sei mesi nel periodo immediatamente precedente alla scadenza fissata per il riesame di pericolosità.
Ai medesimi può essere concessa, per gravi esigenze personali o familiari, una licenza di durata non superiore a giorni quindici; può essere inoltre concessa una licenza di durata non superiore a giorni trenta, una volta all'anno, al fine di favorirne il riadattamento sociale.
Agli internati ammessi al regime di semilibertà possono inoltre essere concesse, a titolo di premio, le licenze previste nel primo comma dell'articolo precedente.
Durante la licenza l'internato é sottoposto al regime della libertà vigilata.
Se l'internato durante la licenza trasgredisce agli obblighi impostigli, la licenza può essere revocata indipendentemente dalla revoca della semilibertà.
L'internato che rientra in istituto dopo tre ore dallo scadere della licenza, senza giustificato motivo, é punito in via disciplinare e, se in regime di semilibertà, può subire la revoca della concessione.

**Art. 53-bis Computo del periodo di permesso o licenza**

1. Il tempo trascorso dal detenuto o dall'internato in permesso o licenza é computato a ogni effetto nella durata delle misure restrittive della libertà personale, salvi i casi di mancato rientro o di altri gravi comportamenti da cui risulta che il soggetto non si é dimostrato meritevole del beneficio. In questi casi sull'esclusione dal computo decide, con decreto motivato,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2. Avverso il decreto può essere proposto dall'interessato reclamo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secondo la procedura di cui all'articolo 14-ter. Il magistrato che ha emesso il provvedimento non fa parte del collegio.

**Art. 54 Liberazione anticipata**

1. Al condannato a pena detentiva che ha dato prova di partecipazione all'opera di rieducazione é concessa, quale riconoscimento di tale partecipazione, e ai fini del suo più efficace reinserimento nella società, una detrazione di quarantacinque giorni per ogni singolo semestre di pena scontata. A tal fine é valutato anche il periodo trascorso in stato di custodia cautelare o di detenzione domiciliare.
2. La concessione del beneficio é comunicata all'ufficio del pubblico ministero presso la corte d'appello o il tribunale che ha emesso il provvedimento di esecuzione o al pretore se tale provvedimento é stato da lui emesso.
3. La condanna per delitto non colposo commesso nel corso dell'esecuzione successivamente alla concessione del beneficio ne comporta la revoca.4. Agli effetti del computo della misura di pena che occorre avere espiato per essere ammessi ai benefici dei permessi premio, della semilibertà e della liberazione condizionale, la parte di pena detratta ai sensi del comma primo si considera come scontata. La presente disposizione si applica anche ai condannati all'ergastolo.
4. Agli effetti del computo della misura di pena che occorre avere espiato per essere ammessi ai benefici dei permessi premio, della semilibertà e della liberazione condizionale, la parte di pena detratta ai sensi del comma primo si considera come scontata. La presente disposizione si applica anche ai condannati all'ergastolo.

**Art. 55 Interventi del servizio sociale nella libertà vigilata**

Nei confronti dei sottoposti alla libertà vigilata, ferme restando le disposizioni di cui allo articolo 228 del codice penale, il servizio sociale svolge interventi di sostegno e di assistenza al fine del loro reinserimento sociale.

**Art. 56 Remissione del debito**

Abrogato

**Art. 57 Legittimazione alla richiesta dei benefici**

Il trattamento ed i benefici di cui agli articoli 47 ,50,52,53,54 possono essere richiesti dal condannato, dall'internato e dai loro prossimi congiunti o proposti dal consiglio di disciplina.

**Art. 58 Comunicazione all'autorità di pubblica sicurezza**

Dei provvedimenti previsti dal presente capo ed adottati dal magistrato o dalla sezione di sorveglianza, é data immediata comunicazione all'autorità provinciale di pubblica sicurezza a cura della cancelleria.

**Art. 58-bis Iscrizione nel casellario giudiziale**

Nel casellario giudiziale sono iscritti i provvedimenti della sezione di sorveglianza relativi alla irrogazione e alla revoca delle misure alternative alla pena detentiva.

**Art. 58-ter Persone che collaborano con la giustizia**

1. I limiti di pena previsti dalle disposizioni del comma 1 dell'art. 21, del comma 4 dell'art. 30-ter e del comma 2 dell'art. 50, concernenti le persone condannate per taluno dei delitt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 4-bis, non si applicano a coloro che, anche dopo la condanna, si sono adoperati per evitare che l'attività delittuosa sia portata a conseguenze ulteriori ovvero hanno aiutato concretamente l'autorità di polizia o l'autorità giudiziaria nella raccolta di elementi decisivi per la ricostruzione dei fatti e per l'individuazione o la cattura degli autori dei reati.
2. Le condotte indicate nel comma 1 sono accertate dal tribunale di sorveglianza, assunte le necessarie informazioni e sentito il pubblico ministero presso il giudice competente per i reati in ordine ai quali è stata prestata la collaborazione.".

**Art. 58-quater Divieto di concessione di benefici**

1. L'assegnazione al lavoro all'esterno, i permessi premio,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nei casi previsti dall'art. 47, la detenzione domiciliare e la semilibertà non possono essere concessi al condannato che sia stato riconosciuto colpevole di una condotta punibile a norma dell'art. 385 del codice penale.
2. La disposizione del comma 1 si applica anche al condannato nei cui confronti é stata disposta la revoca di una misura alternativa ai sensi dell'art. 47, comma 11, dell'art 47-ter, comma 6, o dell'art. 51, primo comma.
3. Il divieto di concessione dei benefici opera per un periodo di tre anni dal momento in cui é ripresa l'esecuzione della custodia o della pena o é stato emesso il provvedimento di revoca indicato nel comma 2.

4. I condannati per i delitti di cui agli articoli 289-bis e 630 del codice penale che abbiano cagionato la morte del sequestrato non sono ammessi ad alcuno dei benefic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
4. bis se non abbiano effettivamente espiato almeno i due terzi della pena irrogata o, nel caso dell'ergastolo, almeno ventisei anni.
5. Oltre a quanto previsto dai commi 1 e 3, l'assegnazione al lavoro all'esterno, i permessi premio e le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previste dal capo VI non possono essere concessi, o se già concessi sono revocati, ai condannati per taluni dei delitti indicati nel comma 1 dell'art. 4-bis, nei cui confronti si procede o é pronunciata condanna per un delitto doloso punito con la pena della reclusione non inferiore nel massimo a tre anni, commesso da chi ha posto in essere una condotta punibile a norma dell'art. 385 del codice penale ovvero durante il lavoro all'esterno o la fruizione di un permesso premio o di una misura alternativa alla detenzione.
6. Ai fini dell'applicazione della disposizione di cui al comma 5, l'autorità che procede per il nuovo delitto ne dà comunicazione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del luogo di ultima detenzione dell'imputato.
7. Il divieto di concessione dei benefici di cui al comma 5 opera per un periodo di cinque anni dal momento in cui é ripresa l'esecuzione della custodia o della pena o é stato emesso il provvedimento di revoca della misura.
7. bis.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nei casi previsti dall'art. 47, la detenzione domiciliare e la semilibertà non possono essere concessi più di una volta al condannato al quale sia stata applicata la recidiva prevista dall'art. 99, quarto comma, del codice penale.».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n. 436/1999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dell'art. 58 quater nella parte in cui si riferisce ai minorenni).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5 - 16 marzo 2007 n. 78, in G.U. 1° serie speciale n. 12 del 21 marzo 2007,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icolo 58-quater, nella parte in cui non prevedono che i benefici in essi indicati possano essere concessi, sulla base della normativa previgente, nei confronti dei condannati che, prima della entrata in vigore della citata legge n. 251 del 2005, abbiano raggiunto un grado di rieducazione adeguato ai benefici richiesti.)

# TITOLO II Disposizioni relative alla organizzazione penitenziaria

## CAPO I Istituti penitenziari

### Art. 59 Istituti per adulti

Gli istituti per adulti dipendenti d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si distinguono in:
1. istituti di custodia preventiva;
2.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pene;
3.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misure di sicurezza;
4. centri di osservazione.

### Art. 60 Istituti di custodia preventiva

Gli istituti di custodia preventiva si distinguono in case mandamentali e circondariali.
Le case mandamentali assicurano la custodia degli imputati a disposizione del pretore. Esse sono istituite nei capoluoghi di mandamento che non sono sede di case circondariali.

Le case circondariali assicurano la custodia degli imputati a disposizione di ogni autorità giudiziaria. Esse sono istituite nei capoluoghi di circondario.
Le case mandamentali e circondariali assicurano altresì la custodia delle persone fermate o arrestate dall'autorità di pubblica sicurezza o dagli organi di polizia giudiziaria e quella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in transito.
Può essere istituita una sola casa mandamentale o circondariale rispettivamente per più mandamenti o circondari.

**Art. 61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pene**

Gli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pene si distinguono in:
1. case di arresto, per l'esecuzione della pena dell'arresto.
   Sezioni di case di arresto possono essere istituite presso le case di custodia mandamentali o circondariali;
2. case di reclusione, per l'esecuzione della pena della reclusione.
   Sezioni di case di reclusione possono essere istituite presso le case di custodia circondariali.

Per esigenze particolari, e nei limiti e con le modalità previste dal regolamento, i condannati alla pena dell'arresto o della reclusione possono essere assegnati alle case di custodia preventiva; i condannati alla pena della reclusione possono essere altresì assegnati alle case di arresto.

**Art. 62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misure di sicurezza detentive**

Gli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misure di sicurezza detentive si distinguono in:
Colonie agricole;
Case di lavoro;
Case di cura e custodia;
Ospedali psichiatrici giudiziari.
In detti istituti si eseguono le misure di sicurezza rispettivamente previste dai numeri 1,2 e 3 del primo capoverso dell' articolo 215 del codice penale .
Possono essere istituite:
Sezioni per l'esecuzione della misura di sicurezza della colonia agricola presso una casa di lavoro e viceversa;
Sezioni per l'esecuzione della misura di sicurezza della casa di cura e di custodia presso un ospedale psichiatrico giudiziario;
Sezioni per l'esecuzione delle misure di sicurezza della colonia agricola e della casa di lavoro presso le case di reclusione.

**Art. 63 Centri di osservazione**

I centri di osservazione sono costituiti come istituti autonomi o come sezioni di altri istituti.
I predetti svolgono direttamente le attività di osservazione indicate nell' articolo 13 e prestano consulenze per le analoghe attività di osservazione svolte nei singoli istituti.
Le risultanze dell'osservazione sono inserite nella cartella personale.
Su richiesta dell'autorità giudiziaria possono essere assegnate ai detti centri per la esecuzione di perizie medico-legali anche le persone sottoposte a procedimento penale.
I centri di osservazione svolgono, altresì, attività di ricerca scientifica.

**Art. 64 Differenziazione degli istituti per l'esecuzione delle pene e delle misure di sicurezza**

I singoli istituti devono essere organizzati con caratteristiche differenziate in relazione alla posizione giuridica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e alle necessità di trattamento individuale o di gruppo degli stessi.

**Art. 65 Istituti per infermi e minorati**

I soggetti affetti da infermità o minorazioni fisiche o psichiche devono essere assegnati ad istituti o sezioni speciali per idoneo trattamento.
A tali istituti o sezioni sono assegnati i soggetti che, a causa delle loro condizioni, non possono essere sottoposti al regime degli istituti ordinari.

**Art. 66 Costituzione, trasformazione e soppressione degli istituti**

La costituzione, la trasformazione, la soppressione degli istituti penitenziari nonché delle sezioni sono disposte con decreto ministeriale.

**Art. 67 Visite agli istituti**

Gli istituti penitenziari possono essere visitati senza autorizzazione da:

a. il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e il presidente della corte costituzionale;
b. i ministri, i giudici della corte costituzionale, i sottosegretari di stato, i membri del parlamentoe i componenti del 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
c. il presidente della corte di appello, il procuratore generale della repubblica presso la corte d'appello, il presidente del tribunale e il procuratore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il pretore, i magistrati di sorveglianza, nell'ambito delle rispettive giurisdizioni, ogni altro magistrato per l'esercizio delle sue funzioni,
d. i consiglieri regionali e il commissario di governo per la regione, nell'ambito della loro circoscrizione;
e. l'ordinario diocesano per l'esercizio del suo ministero;
f. il prefetto e il questore della provincia; il medico provinciale;
g. il direttor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e i magistrati e i funzionari da lui delegati;
h. gli ispettori generali de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i l'ispettore dei cappellani;
l. gli ufficiali del corpo degli agenti di custodia.

L'autorizzazione non occorre nemmeno per coloro che accompagnano le persone di cui al comma precedente per ragioni del loro ufficio e per il personale indicato nell'articolo 18- bis.
Gli ufficiali e gli agenti di polizia giudiziaria possono accedere agli istituti, per ragioni del loro ufficio, previa autorizzazione dell'autorità giudiziaria.
Possono accedere agli istituti, con l'autorizzazione del direttore, i ministri del culto cattolico e di altri culti.

## CAPO II Giudici di sorveglianza

**Art. 68 Uffici di sorveglianza**

1. Gli uffici di sorveglianza sono costituiti nelle sedi di cui alla tabella a allegata alla presente legge e hanno giurisdizione sulle circoscrizioni dei tribunali in essa indicati.
2. Ai suddetti uffici, per l'esercizio delle funzioni rispettivamente elencate negli articoli 69, 70 e 70-

bis, sono assegnati magistrati di cassazione, di appello e di tribunale nonché personale del ruolo delle cancellerie e segreterie giudiziarie e personale esecutivo e subalterno.

3.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corte di appello può essere temporaneamente destinato a esercitare le funzioni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mancante o impedito un giudice avente la qualifica di magistrato di cassazione, di appello o di tribunale
4. I magistrati che esercitano funzioni di sorveglianza non debbono essere adibiti ad altre funzioni giudiziarie.

**Art. 69 Funzioni e provvedimenti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1.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vigila sulla organizzazion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e prospetta al ministro le esigenze dei vari servizi, con particolare riguardo alla attuazione del trattamento rieducativo.
2. Esercita, altresì, la vigilanza diretta ad assicurare che l'esecuzione della custodia degli imputati sia attuata in conformità delle leggi e dei regolamenti.
3. Sovrintende all'esecuzione delle misure di sicurezza personali.
4. Provvede al riesame della pericolosità ai sensi del primo e secondo comma dell' articolo 208 del codice penal, nonché all'applicazione, esecuzione, trasformazione o revoca, anche anticipata, delle misure di sicurezza. Provvede altresì, con decreto motivato, in occasione dei provvedimenti anzidetti, alla eventuale revoca della dichiarazione di delinquenza abituale, professionale o per tendenza di cui agli articoli 102, 103, 104, 105 e 108 del codice penale.
5. Approva, con decreto, il programma di trattamento di cui al terzo comma dell'articolo 13, ovvero, se ravvisa in esso elementi che costituiscono violazione dei diritti del condannato o dell'internato, lo restituisce, con osservazioni, al fine di una nuova formulazione. Approva, con decreto, il provvedimento di ammissione al lavoro all'esterno. Impartisce, inoltre, nel corso del trattamento, disposizioni dirette ad eliminare eventuali violazioni dei diritti dei condannati e degli internati
6. Decide con ordinanza impugnabile soltanto per cassazione, secondo la procedura di cui all'articolo 14-ter, sui reclam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oncernenti l'osservanza delle norme riguardanti:
   a. l'attribuzione della qualifica lavorativa, la mercede e la remunerazione nonché lo svolgimento delle attività di tirocinio e di lavoro e le assicurazioni sociali;
   b. le condizioni di esercizio del potere disciplinare, la costituzione e la competenza dell'organo disciplinare, la contestazione degli addebiti e la facoltà di discolpa.
7. Provvede, con decreto motivato, sui permessi, sulle licenze ai detenuti semiliberi ed agli internati, e sulle modifiche relative al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e alla detenzione domiciliare.
8. Provvede con ordinanza sulla riduzione di pena per la liberazione anticipata e sulla remissione del debito, nonché sui ricoveri previsti dall'articolo 148 del codice penale.
9. Esprime motivato parere sulle proposte e le istanze di grazia concernenti i detenuti.
10. Svolge, inoltre, tutte le altre funzioni attribuitegli dalla legge.

(La Corte costituzionale, con sentenza 23 ottobre-27 ottobre2006, n. 341, in G.U. Ed. straordinaria del 2/11/2006, ha dichiarato l'illegittimità costituzionale dell'art. 69, sesto comma, lettera a).

**Art. 69-bis Procedimento in materia di liberazione anticipata**

1. Sull'istanza di concessione della liberazione anticipata,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provvede con

ordinanza, adottata in camera di consiglio senza la presenza delle parti, che è comunicata o notificata senza ritardo ai soggetti indicati nell'articolo 127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2.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decide non prima di quindici giorni dalla richiesta del parere al pubblico ministero e anche in assenza di esso.
3. Avverso l'ordinanza di cui al comma 1 il difensore, l'interessato e il pubblico ministero possono, entro dieci giorni dalla comunicazione o notificazione, proporre reclamo al tribunale di sorveglianza competente per territorio.
4.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decide ai sensi dell'articolo 678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 quinto e del sesto comma dell'articolo 30-bis.
5.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ove nel corso dei procedimenti previsti dall'articolo 70, comma 1, sia stata presentata istanza per la concessione della liberazione anticipata, può trasmetterla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rt. 70 Funzioni e provvedimenti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1. In ciascun distretto di corte d'appello e in ciascuna circoscrizione territoriale di sezione distaccata di corte d'appello é costituito un tribunale di sorveglianza competente per l'affidamento in prova al servizio sociale, la detenzione domiciliare, la detenzione domiciliare speciale, la semilibertà, la liberazione condizionale, la revoca o cessazione dei suddetti benefici nonché della riduzione di pena per la liberazione anticipata, il rinvio obbligatorio o facoltativo dell'esecuzione delle pene detentive ai sensi degli articoli 146 e 147, numeri 2) e 3), del codice penale, nonché per ogni altro provvedimento ad esso attribuito dalla legge.
2. Il tribunale di sorveglianza decide inoltre in sede di appello sui ricorsi avverso i provvedimenti di cui al comma quarto dell'articolo 69. Il magistrato che ha emesso il provvedimento non fa parte del collegio.
3. Il tribunale é composto da tutti i magistrati di sorveglianza in servizio nel distretto o nella circoscrizione territoriale della sezione distaccata di corte d'appello e da esperti scelti fra le categorie indicate nel quarto comma dell'articolo 80, nonché fra docenti di scienze criminalistiche
4. Gli esperti effettivi e supplenti sono nominati dal 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 in numero adeguato alle necessità del servizio presso ogni tribunale per periodi triennali rinnovabili.
5. I provvedimenti del tribunale sono adottati da un collegio composto dal presidente o, in sua assenza o impediment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he lo segue nell'ordine delle funzioni giudiziarie e, a parità di funzioni, nell'anzianità; da un magistrato di sorveglianza e da due fra gli esperti di cui al precedente comma quarto
6. Uno dei due magistrati ordinari deve essere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otto la cui giurisdizione é posto il condannato o l'internato in ordine alla cui posizione si deve provvedere.
7. La composizione dei collegi giudicanti é annualmente determinata secondo le disposizioni dell'ordinamento giudiziario.
8. Le decisioni del tribunale sono emesse con ordinanza in camera di consiglio; in caso di parità di voti prevale il voto del presidente.
9. Abrogato

**Art. 70-bis President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1 Le funzioni di president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sono conferite a un magistrato di cassazione o,

per i tribunali istituiti nelle sezioni distaccate di corte d'appello, a un magistrato d'appello.

2. Il presidente del tribunale, fermo l'espletamento delle funzioni di magistrato di sorveglianza nell'ufficio di appartenenza, provvede:
   a. a dirigere e ad organizzare le attività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b. a coordinare, in via organizzativa, in funzione del disbrigo degli affari di competenza del tribunale, l'attività degli uffici di sorveglianza compresi nella giurisdizione del tribunale medesimo;
   c. a disporre le applicazioni dei magistrati e del personale ausiliario nell'ambito dei vari uffici di sorveglianza nei casi di assenza, impedimento o urgenti necessità di servizio;
   d. a richiedere al presidente della corte di appello l'emanazione dei provvedimenti di cui al comma terzo dell'articolo 68;
   e a proporre al 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 la nomina degli esperti effettivi o supplenti componenti del tribunale e a compilare le tabelle per gli emolumenti loro spettanti;
   f. a svolgere tutte le altre attività a lui riservate dalla legge e dai regolamenti.

**Art. 70-ter Nuove denominazioni**

1. Le denominazioni "sezione di sorveglianza" e "giudice di sorveglianza" di cui alle leggi vigenti sono rispettivamente sostituite dalle seguenti: "tribunale di sorveglianza" e "magistrato di sorveglianza".
2. Per il funzionamento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nonché degli uffici di sorveglianza di cui allo articolo 68 si provvede con assegnazioni dirette di fondi e di attrezzature mediante prelievo delle somme necessarie dagli appositi capitoli del bilancio di previsione del ministero di grazia e giustizia.

## CAPO II-BIS Procedimento di sorveglianza.

**Art. 71 Norme generali**

1. Per l'adozione dei provvedimenti di competenza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espressamente indicati nei commi primo e secondo dello articolo 70, nonché dei provvedimenti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in materia di remissione del debito, di ricoveri di cui all'articolo 148 del codice penale , di applicazione, esecuzione, trasformazione o revoca anche anticipata delle misure di sicurezza e di quelli relativi all'accertamento dell'identità personale ai fini delle dette misure, si applica il procedimento di cui ai commi e agli articoli seguenti.
2. Il presidente del tribunale o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 seguito di richiesta o di proposta ovvero di ufficio, invita l'interessato ad esercitare la facoltà di nominare un difensore. Se l'interessato non vi provvede entro cinque giorni dalla comunicazione dell'invito, il difensore é nominato di ufficio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o d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uccessivamente il presidente del tribunale o il magistrato di sorveglianza fissa con decreto il giorno della trattazione e ne fa comunicare avviso al pubblico ministero, all'interessato e al difensore almeno cinque giorni prima di quello stabilito.
3. La competenza spetta al tribunale o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he hanno giurisdizione sull'istituto di prevenzione o di pena in cui si trova l'interessato all'atto della richiesta o della proposta o all'inizio d'ufficio del procedimento.
4. Se l'interessato non é detenuto o internato, la competenza spetta al tribunale o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che hanno giurisdizione nel luogo in cui l'interessato ha la residenza o il domicilio. Nel caso in cui non sia possibile determinare la competenza secondo il criterio sopra indicato, si applica la

disposizione del secondo comma dell'articolo 635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5. Le disposizioni contenute nel capo primo del titolo quinto del libro quarto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sono applicabili in quanto non diversamente disposto dalla presente legge. L'articolo 641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resta in vigore limitatamente ai casi di cui all'articolo 212 dello stesso codice.

**Art. 71-bis Udienza**

L'udienza si svolge con la partecipazione del difensore e del rappresentante dello ufficio del pubblico ministero. L'interessato può partecipare personalmente alla discussione e presentare memorie. Le funzioni di pubblico ministero sono esercitate, davanti alla sezione di sorveglianza, dal procuratore generale presso la corte di appello e, davanti al magistrato di sorveglianza, dal procuratore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lla sede dell'ufficio di sorveglianza.

I provvedimenti della sezione 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ono emessi sulla base dell'acquisizione in udienza dei documenti relativi all'osservazione e al trattamento nonché, quando occorre, svolgendo I necessari accertamenti ed avvalendosi della consulenza dei tecnici del trattamento.

L'ordinanza che conclude il procedimento di sorveglianza é comunicata al pubblico ministero, all'interessato e al difensore nel termine di dieci giorni dalla data della deliberazione.

**Art. 71-ter Ricorso per cassazione**

1. Avverso le ordinanze del tribunale di sorveglianza 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il pubblico ministero, l'interessato e, nei casi di cui agli articoli 14-ter e 69, comma sesto,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ossono proporre ricorso per cassazione per violazione di legge entro dieci giorni dalla comunicazione del provvedimento.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del terzo comma dell'articolo 640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 Si applica, altresì, l'ultimo comma dello articolo 631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Art. 71-quater Comunicazioni**

Le comunicazioni all'interessato degli avvisi e dei provvedimenti previsti negli articoli precedenti sono effettuati ai sensi dell' articolo 645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Art. 71-quinquies Revoca**

(Abrogato)

**Art. 71-sexies Inammissibilità**

Qualora l'istanza per l'adozione dei provvedimenti indicati nel primo comma dell'articolo 71,appaia manifestamente infondata per difetto delle condizioni di legge, ovvero costituisca mera riproposizione di una istanza basata sui medesimi elementi, il presidente, sentito il pubblico ministero, emette decreto motivato con il quale dichiara inammissibile l'istanza e dispone non farsi luogo a procedimento di sorveglianza.

Il decreto é comunicato entro cinque giorni all'interessato, il quale ha facoltà di proporre opposizione nel termine di cinque giorni dalla comunicazione stessa facendo richiesta di trattazione. A seguito dell'opposizione, il presidente della sezione dà corso al procedimento di sorveglianza.

## CAPO III Esecuzione penale esterna ed assistenza

### Art. 72 Uffici locali di esecuzione penale esterna.

1. Gli uffici locali di esecuzione penale esterna dipendono dal Ministero della giustizia e la loro organizzazione è disciplinata con regolamento adottato dal Ministro ai sensi dell'articolo 17, comma 3,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e successive modificazioni.
2. Gli uffici:

   a. svolgono, su richiesta dell'autorità giudiziaria, le inchieste utili a fornire i dati occorrenti per l'applicazione, la modificazione, la proroga e la revoca delle misure di sicurezza,

   b. svolgono le indagini socio-familiari per l'applicazione delle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ai condannati;

   c. propongono all'autorità giudiziaria il programma di trattamento da applicare ai condannati che chiedono di essere ammessi all'affidamento in prova e alla detenzione domiciliare;

   d. controllano l'esecuzione dei programmi da parte degli ammessi alle misure alternative, ne riferiscono all'autorità giudiziaria, proponendo eventuali interventi di modificazione o di revoca;

   e. su richiesta delle direzioni degli istituti penitenziari, prestano consulenza per favorire il buon esito del trattamento penitenziario;

   f. svolgono ogni altra attività prescritta dalla legge e dal regolamento».
3. I riferimenti a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er adulti contenuti in disposizioni di leggi e di regolamenti si intendono effettuati, dalla data di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agli uffici locali di esecuzione penale esterna.
4. Le risorse e il personale previsti per 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er adulti alla data di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sono destinati agli uffici locali di esecuzione penale esterna di cui al comma 1.
5. Dalle disposizioni del presente articolo non devono derivare nuovi o maggiori oneri per il bilancio dello Stato.

### Art. 73 Cassa per il soccorso e l'assistenza alle vittime del delitto

Presso la direzion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é istituita la cassa per il soccorso e l'assistenza alle vittime del delitto.

La cassa ha personalità giuridica, é amministrata con le norme della contabilità di stato e può avvalersi del patrocinio dell'avvocatura dello stato

Per il bilancio, l'amministrazione e il servizio della cassa si applicano le norme previste dall' articolo 4 della legge 9 maggio 1932,n.547

La cassa é amministrata da un consiglio composto·

1. dal direttor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presidente;
2. da un rappresentante del ministero del tesoro;
3. da un rappresentante del ministero dell'interno.

Le funzioni di segretario sono esercitate dal direttore dell'ufficio della direzion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competente per l'assistenza.

Nessuna indennità o retribuzione é dovuta alle persone suddette.

Il patrimonio della cassa é costituito, oltre che dai lasciti, donazioni o altre contribuzioni, dalle somme costituenti le differenze fra mercede e remunerazione di cui all' articolo 23 .

I fondi della cassa sono destinati a soccorrere e ad assistere le vittime che a causa del delitto si trovino in condizioni di comprovato bisogno.

**Art. 74 Consigli di aiuto sociale**

Nel capoluogo di ciascun circondario é costituito un consiglio di aiuto sociale, presieduto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o da un magistrato da lui delegato, e composto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dei minorenni o da un altro magistrato da lui designato, da un magistrato di sorveglianza, da un rappresentante della regione, da un rappresentante della provincia, da un funzionario dell'amministrazione civile dell'interno designato dal prefetto, dal sindaco o da un suo delegato, dal medico provinciale, dal dirigente dell'ufficio provinciale del lavoro, da un delegato dell'ordinario diocesano, dai direttori degli istituti penitenziari del circondario. Ne fanno parte, inoltre, sei componenti nominati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fra i designati da enti pubblici e privati qualificati nell'assistenza sociale.

Il consiglio di aiuto sociale ha personalità giuridica, é sottoposto alla vigilanza del ministero di grazia e giustizia e può avvalersi del patrocinio della avvocatura dello stato.

I componenti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prestano la loro opera gratuitamente.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su proposta de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può essere disposta la fusione di più consigli di aiuto sociale in un unico ente.

Alle spese necessarie per lo svolgimento dei compiti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nel settore della assistenza penitenziaria e post-penitenziaria si provvede:

1. con le assegnazioni della cassa delle ammende di cui all' articolo 4 della legge 9 maggio 1932,n.547 ;
2. con lo stanziamento annuale previsto dalla legge 23 maggio 1956,n.491;
3. con i proventi delle manifatture carcerarie assegnati annualmente con decreto del ministro per il tesoro sul bilancio della cassa delle ammende nella misura del cinquanta per cento del loro ammontare;
4. con i fondi ordinari di bilancio;
5. con gli altri fondi costituenti il patrimonio dell'ente.

Alle spese necessarie per lo svolgimento dei compiti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nel settore del soccorso e dell'assistenza alle vittime del delitto si provvede con le assegnazioni della cassa prevista dall'articolo precedente e con i fondi costituiti da lasciti, donazioni o altre contribuzioni ricevuti dall'ente a tale scopo.

Il regolamento stabilisce l'organizzazione interna e le modalità del funzionamento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che delibera con la presenza di almeno sette componenti.

**Art. 75 Attività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per l'assistenza penitenziaria e post-penitenziaria**

Il consiglio di aiuto sociale svolge le seguenti attività:

1. cura che siano fatte frequenti visite ai liberandi, al fine di favorire, con opportuni consigli e aiuti, il loro reinserimento nella vita sociale;
2. cura che siano raccolte tutte le notizie occorrenti per accertare i reali bisogni dei liberandi e studia il modo di provvedervi, secondo le loro attitudini e le condizioni familiari;
3. assume notizie sulle possibilità di collocamento al lavoro nel circondario e svolge, anche a mezzo del comitato di cui all' articolo 77 ,opera diretta ad assicurare una occupazione ai liberati che abbiano o stabiliscano residenza nel circondario stesso;
4. organizza, anche con il concorso di enti o di privati, corsi di addestramento e attività lavorative per i liberati che hanno bisogno di integrare la loro preparazione professionale e che non possono

immediatamente trovare lavoro; promuove altresì la frequenza dei liberati ai normali corsi di addestramento e di avviamento professionale predisposti dalle regioni;
5. cura il mantenimento delle relazion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on le loro famiglie;
6. segnala alle autorità e agli enti competenti i bisogni delle famigli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che rendono necessari speciali interventi;
7. concede sussidi in denaro o in natura,
8. collabora con i competenti organi per il coordinamento dell'attività assistenziale degli enti e delle associazioni pubbliche e private nonché delle persone che svolgono opera di assistenza e beneficenza diretta ad assicurare il più efficace e appropriato intervento in favore dei liberati e dei familiari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Art. 76 Attività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per il soccorso e l'assistenza alle vittime del delitto**

Il consiglio di aiuto sociale presta soccorso, con la concessione di sussidi in natura o in denaro, alle vittime del delitto e provvede alla assistenza in favore dei minorenni orfani a causa del delitto.

**Art. 77 Comitato per l'occupazione degli assistiti dal consiglio di aiuto sociale**

Al fine di favorire l'avviamento al lavoro dei dimessi da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presso ogni consiglio di aiuto sociale, ovvero presso l'ente di cui al quarto comma dell' articolo 74 ,é istituito il comitato per l'occupazione degli assistiti dal consiglio di aiuto sociale.
Di tale comitato, presieduto dal presidente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o da un magistrato da lui delegato, fanno parte quattro rappresentanti rispettivamente dell'industria, del commercio, dell'agricoltura e dell'artigianato locale, designati dal presidente della camera di commercio, industria, artigianato e agricoltura, tre rappresentanti dei datori di lavoro e tre rappresentanti dei prestatori d'opera, designati dalle organizzazioni sindacali più rappresentative sul piano nazionale, un rappresentante dei coltivatori diretti, il direttore dell'ufficio provinciale del lavoro e della massima occupazione, un impiegato della carriera direttiva della 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e un assistente sociale del centro di servizio sociale di cui all' articolo 72.
I componenti del comitato sono nominati dal presidente del consiglio di aiuto sociale.
Il comitato delibera con la presenza di almeno cinque componenti.

**Art. 78 Assistenti volontari**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uò, su proposta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autorizzare persone idonee all'assistenza e all'educazione a frequentare gli istituti penitenziari allo scopo di partecipare all'opera rivolta al sostegno morale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e al futuro reinserimento nella vita sociale.
Gli assistenti volontari possono cooperare nelle attività culturali e ricreative dello istituto sotto la guida del direttore, il quale ne coordina l'azione con quella di tutto il personale addetto al trattamento.
L'attività prevista nei commi precedenti non può essere retribuita.
Gli assistenti volontari possono collaborare co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er l'affidamento in prova, per il regime di semilibertà e per l'assistenza ai dimessi e alle loro famiglie.

## CAPO IV Disposizioni finali e transitorie

### Art. 79 Minori degli anni diciotto sottoposti a misure penali. Magistratura di sorveglianza

Le norme della presente legge si applicano anche nei confronti dei minori degli anni diciotto sottoposti a misure penali, fino a quando non sarà provveduto con apposita legge.
Nei confronti dei minori di cui al comma precedente e dei soggetti maggiorenni che commisero il reato quando erano minori degli anni diciotto le funzioni della sezione di sorveglianza e del magistrato di sorveglianza sono esercitate, rispettivamente, dal tribunale per i minorenni e dal giudice di sorveglianza presso il tribunale per i minorenni Al giudice di sorveglianza per i minorenni non si applica l'ultimo comma dell'articolo 68.

### Art. 80 Personale dell'amministrazion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Presso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per adulti, oltre al personale previsto dalle leggi vigenti, operano gli educatori per adulti e gli assistenti sociali dipendenti da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revisti dall' articolo 72.
La 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uò avvalersi, per lo svolgimento delle attività di osservazione e di trattamento, di personale incaricato giornaliero, entro limiti numerici da concordare annualmente, con il ministero del tesoro.
Al personale incaricato giornaliero é attribuito lo stesso trattamento ragguagliato a giornata previsto per il corrispondente personale incaricato.
Per lo svolgimento delle attività di osservazione e di trattamento, 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può avvalersi di professionisti esperti in psicologia, servizio sociale, pedagogia, psichiatria e criminologia clinica, corrispondendo ad essi onorari proporzionati alle singole prestazioni effettuate.
Il servizio infermieristico degli istituti penitenziari, previsti dall'Art. 59,é assicurato mediante operai specializzati con la qualifica di infermieri
A tal fine la dotazione organica degli operai dell'amministrazion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di cui al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1 marzo 1971,n.275 ,emanato a norma dell' articolo 17 della legge 28 ottobre 1970,n.775 ,é incrementata di 800 unità riservate alla suddetta categoria. Tali unità sono attribuite nella misura di 640 agli operai specializzati e di 160 ai capi operai.
Le modalità relative all'assunzione di detto personale saranno stabilite dal regolamento di esecuzione.

### Art. 81 Attribuzioni degli assistenti sociali

Gli assistenti sociali della carriera direttiva esercitano le attribuzioni previste dagli articoli 9,10 e 11 della legge 16 luglio 1962,n.1085,anche nell'ambito dei centri di servizio sociale previsti dall'articolo 72 della presente legge.
Gli assistenti sociali della carriera di concetto esercitano le attività indicate nell'articolo 72 della presente legge nell'ambito dei centri di servizio sociale Essi espletano compiti di vigilanza e di assistenza nei confronti dei sottoposti a misure alternative alla detenzione nonché compiti di sostegno e di assistenza nei confronti dei sottoposti alla libertà vigilata; partecipano, inoltre, alle attività di assistenza ai dimessi.

### Art. 82 Attribuzioni degli educatori

Gli educatori partecipano all'attività di gruppo per l'osservazione scientifica della personalità dei detenuti

e degli internati e attendono al trattamento rieducativo individuale o di gruppo, coordinando la loro azione con quella di tutto il personale addetto alle attività concernenti la rieducazione.
Essi svolgono, quando sia consentito, attività educative anche nei confronti degli imputati.
Collaborano, inoltre, nella tenuta della biblioteca e nella distribuzione dei libri, delle riviste e dei giornali.

**Art. 83 Ruoli organici del personale di servizio sociale e degli educatori**

La tabella dell'organico del personale della carriera direttiva di servizio sociale, annessa alla legge 16 luglio 1962,n.1085 ,é sostituita dalla tabella b allegata alla presente legge.
Sono istituiti i ruoli organici delle carriere di concetto degli educatori per adulti e degli assistenti sociali per adulti.
Le dotazioni organiche dei ruoli, di cui al precedente comma, sono stabilite rispettivamente dalle tabelle c e d allegate alla presente legge.
Al personale delle carriere suddette si applicano le disposizioni concernenti lo statuto degli impiegati civili dello stato, nonché, in quanto compatibili, quelle di cui al regio decreto 30 luglio 1940,n.2041,e successive modificazioni; lo stesso personale dipende direttamente dall'amministrazione penitenziaria e dai suoi organi periferici.
Gli impiegati della carriera direttiva di servizio sociale che all'1 luglio 1970 rivestivano la qualifica di direttore, al conseguimento della anzianità di cui al primo comma dell' articolo 22 del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0 giugno 1972,n.748 ,sono esonerati, per la nomina alla qualifica di primo dirigente, dalla partecipazione al corso previsto dagli articoli 22 e 23 del decreto stesso.
La nomina é effettuata, nei limiti dei posti disponibili, con decreto del ministro, previo parere favorevole del consiglio di amministrazione sulla base dei rapporti informativi e dei giudizi complessivi conseguiti dagli interessati.

**Art. 84**

Concorso per esame speciale per l'accesso al ruolo della carriera di concetto degli assistenti sociali per adulti.
Entro sei mesi dalla data di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i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indirà un concorso, per esame speciale, di accesso al ruolo della carriera di concetto degli assistenti sociali per adulti, istituito dal precedente articolo, nel limite del cinquanta per cento della complessiva dotazione organica del ruolo stesso.
Entro trenta mesi dall'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sarà indetto un concorso pubblico di accesso al ruolo della carriera di concetto degli assistenti sociali per adulti, nel limite del residuo cinquanta per cento della complessiva dotazione organica del ruolo stesso. A tale concorso sono ammessi anche gli assistenti sociali immessi nel ruolo del servizio sociale per i minorenni per effetto del concorso a 160 posti di assistente sociale, di cui al decreto ministeriale 21 giugno 1971.
Il concorso previsto al primo comma é riservato, indipendentemente dai limiti di età previsti dalle vigenti disposizioni per l'accesso agli impieghi dello stato, a coloro i quali, alla data di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svolgano attività retribuita di assistente sociale presso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per adulti e siano forniti di diploma di istituto di istruzione di secondo grado nonché di certificato di qualificazione professionale rilasciato da una scuola biennale o triennale di servizio sociale.
Il concorso consiste in una prova orale avente per oggetto le seguenti materie:

1. teoria e pratica del servizio sociale;
2. psicologia;
3. nozioni di diritto e procedura penale;
4. regolamenti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La commissione esaminatrice é presieduta dal direttor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o dal magistrato che ne fa le veci ed é composta dai seguenti membri:

Un magistrato di corte d'appello addetto alla direzione generale per 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Un docente universitario in neuropsichiatria o in psicologia o in criminologia o in antropologia criminale,

Un ispettore generale dell'amministrazione d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Un docente di materie di servizio sociale.

Le funzioni di segretario sono esercitate da un impiegato del ruolo amministrativo della carriera direttiva della detta amministrazione con qualifica non inferiore a direttore alla seconda classe di stipendio (ex coefficiente 257).

La prova si considera superata dai candidati che hanno riportato un punteggio non inferiore a sei decimi.

I vincitori del concorso sono nominati:

a. alla prima classe di stipendio della qualifica di assistente sociale se abbiano prestato servizio continuativo ai sensi del terzo comma del presente articolo per almeno due anni;

b. alla seconda classe di stipendio della qualifica di assistente sociale se abbiano prestato tale servizio per almeno quattro anni;

c. alla terza classe di stipendio della qualifica di assistente sociale se abbiano prestato tale servizio per almeno otto anni.

Nei confronti di coloro che sono inquadrati nella prima o nella seconda classe di stipendio, ai sensi del comma precedente, gli anni di servizio di assistente sociale prestato in modo continuativo, ai sensi del terzo comma del presente articolo, oltre i limiti rispettivi di due e quattro anni sono computati ai fini dell'inquadramento nella classe di stipendio immediatamente superiore.

Entro tre mesi dalla data di pubblicazione del decreto di nomina i vincitori del concorso hanno facoltà di chiedere il riscatto degli anni di servizio prestato ai sensi del terzo comma del presente articolo, ai fini del trattamento di quiescenza e della indennità di buonuscita.

**Art. 85 Accesso alla carriera direttiva di servizio sociale**

Alla lettera e) dell' articolo 5 della legge 16 luglio 1962,n.1085, sono soppresse le parole "istituita o autorizzata a norma di legge".

**Art. 86 Personale per gli uffici di sorveglianza**

Con decreti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su proposta de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di concerto con il ministro per il tesoro, é determinato, entro sei mesi dalla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il contingente dei magistrati e del personale di cui all' articolo 68 da assegnare a ciascun ufficio di sorveglianza nei limiti delle attuali complessive dotazioni organiche.

**Art. 87 Norme di esecuzione**

Con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su proposta del ministro per la grazia e giustizia, di concerto con il ministro per il tesoro, entro sei mesi dalla 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sarà emanato il

regolamento di esecuzione. Per quanto concerne la materia della istruzione negli istituti di prevenzione e di pena il regolamento di esecuzione sarà emanato di concerto anche con il ministro per la pubblica istruzione.
Fino all'emanazione del suddetto regolamento restano applicabili, in quanto non incompatibili con le norme della presente legge, le disposizioni del regolamento vigente.
Entro il termine indicato nel primo comma dovranno essere emanate le norme che disciplinano lo ingresso in carriera del personale di concetto dei ruoli degli educatori per adulti e degli assistenti sociali per adulti.
Le disposizioni concernenti l'affidamento al servizio sociale e il regime di semilibertà entreranno in vigore un anno dopo la pubblicazione della presente legge nella gazzetta ufficiale.

**Art. 88 Attuazione dei ruoli del personale**

L'istituzione del ruolo organico del personale di concetto di servizio sociale per adulti, lo ampliamento del ruolo organico del personale direttivo di servizio sociale, l'istituzione del ruolo organico della carriera di concetto degli educatori per adulti e l'ampliamento del ruolo degli operai specializzati addetti agli ospedali psichiatrici e alle case di cura e di custodia, previsti dalla presente legge, saranno attuati entro un periodo di sette anni.

**Art. 89 Norme abrogate**

Sono abrogati gli articoli 141,142,143, 144,149 e l'ultimo capoverso dell'articolo 207 del codice penale, l'articolo 585 del codice di procedura penale nonché ogni altra norma incompatibile con la presente legge.

**Art. 90 Esigenze di sicurezza**

(Abrogato)

**Art. 91 Copertura finanziaria**

All'onere derivante dall'attuazione della presente legge, valutato in lire 25 miliardi per l'anno finanziario 1975,si provvede mediante riduzione di pari importo dello stanziamento iscritto al capitolo 6856 dello stato di previsione della spesa del ministero del tesoro per l'anno finanziario medesimo.
Il ministro per il tesoro é autorizzato a provvedere, con propri decreti, alle occorrenti variazioni di bilancio.
La presente legge, munita del sigillo dello stato, sarà inserita nella raccolta ufficiale delle leggi e dei decreti della repubblica italiana. É fatto obbligo a chiunque spetti di osservarla e di farla osservare come legge dello stato.

미국

# 07

## 범죄와 형사절차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범죄와 형사절차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3편 교도소와 수용자** ····· 441

**(PART III — PRISONS AND PRISONERS)**

제301장 총칙(제4001조 ~ 제4014조) ····· 441

제303장 교정국(제4041장 ~ 제4048조) ····· 445

제305장 구금과 이송(제4081조 ~ 제4086조) ····· 450

제306장 외국으로의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제4100조 ~ 제4115조) ····· 451

제307장 고용(제4121조 ~ 제4129조) ····· 458

제313장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을 지닌 범죄인(제4241조 ~ 제4248조) ····· 462

제315장 석방과 석방지출(제4282조 ~ 제4285조) ····· 472

제317장 여성수용자를 위한 시설(제4321조) ····· 473

제319장 미연방교정연구소(제4351조 ~ 제4353조) ····· 473

**제4편 소년범죄인의 교정** ····· 475

**(PART IV —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제401장 총칙(제5001조 ~ 제5003조) ····· 475

제403장 소년범죄(제5031조 ~ 제5042조) ····· 476

**원문** ····· 483

# 범죄와 형사절차[1]

# 제3편 교도소와 수용자

## 제301장 총칙

### 제4001조 구금상의 한계, 교도소의 통제

1 모든 시민은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미합중국에 의해 수용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2

(1) 연방교정시설의 통제와 관리는 육·해군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이 행한다. 법무장관은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명령을 발하고 공무원법과 수정된 분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거하여 모든 필요한 직원과 고용인을 임명한다.

(2) 법무장관은 공장, 농장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설립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수용자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규율, 처우, 보호, 사회복귀와 교정을 행한다.

### 제4002조 주 시설내의 연방수용자, 고용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모든 자의 계호, 보호·생계를 위하여 적당한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법무장관은 주, 보호령 또는 그 하위행정구역의 관계 기관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들의 구금·보호·생계 및 적절한 고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 연방수용자는 그들이 수용된 주 또는 하위행정구역을 위한 물품의 제조, 일용품의 생산, 토목공사, 그들이 수용된 주 또는 하위행정구역의 시설관리와 보호에 한하여 고용된다.

상기 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지불하는 사용료는 숙소설비의 성격, 위생상태 및 생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용료는 관리기관이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상당하고 위생적인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숙소와 생계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고무할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 제4003조 적당한 설비가 없는 주의 연방시설

주, 보호령 또는 그 하위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교도소, 소년원, 교정시설 그 밖에 적당한 시설을 통제하는 기관이 미합중국 수용자의 구금·보호·생계 또는 적절한 고용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또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무장관은 당해 주, 보호령 또는 관련 사법관할 내 또는 가까운 곳에 부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거하여 구금된 자와 그 밖에 법무장관의 의견으로 그러한 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적절한 자의 구금을 위하여 사용될 구치소, 소년원, 교도소, 교도소 내 공장시설, 수용소 그 밖에 구금장소를 설립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법령은 「미연방법률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중 「제18권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발췌한 것임
출처 http //www law cornell edu/uscode/text(다운로드 2012년 10월 15일)
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제4004조 선서와 승인

연방교정시설의 장과 감독관, 부소장과 부감독관, 사무장, 기록원은 당해 시설의 직원, 고용인, 수용자에게 선서시키고 그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4005조 의료구호, 비용

① 법무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방보안국장은 자살원조제한법 1997(Assisted Suicide Funding Restriction Act 1997)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교정시설에 의학적 · 정신병리적, 그 밖에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공중보건소의 정규 그리고 예비로 임명된 직원, 약제사, 임시의 보조의사와 그 밖에 공중보건소의 고용인을 법무성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파견된 직원의 보수, 수당과 비용은 공중보건소의 직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소의 적정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그 지출금은 법무성의 적정예산에서 충당된다. 법무장관은 공중보건소의 직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의거하여 파견된 직원의 보수, 수당과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유용하고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공중보건소에 기금을 할당하고 계정을 이전시킬 수 있다.

### 제4006조 수용자에 대한 생계

① 일반적 비용 – 법무장관은 미합중국의 모든 집행관의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용만을 허가하고 지급한다. 법무장관은 집행관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관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② 의료서비스 비용

(1) 일반적 비용 – 미연방보안관, 미국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은사회보장법 제18장에 따른 의료보험프로그램에 따른 유사한 건강관리항목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2) 완전한 최종비용 –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된 의료비용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지불로 간주한다.

### 제4007조 수용자의 비용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의 수용 및 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의 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고에서 지급한다.

### 제4008조 호송비용

수용자는 법무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지명하는 담당관이 호송한다.

호송, 필요한 생계 그리고 호송인과 담당관의 고용과 호송의 합리적인 비용은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예산에서 지급한다. 영사법원이나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수용자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국무성 또는 육군 · 해군 공군의 담당관에 의해 법원에서 구금장소로 호송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고에서 지급된다.

### 제4009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출금

법무장관은 본 편 제4003조에 따른 부지의 임차 또는 매입, 계획의 준비와 필요한 건물의 설립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Support of Unites States Prisons)" 예산의 미지출잔고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마다 $1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상기 한도 내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건물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현될 수 없을 때에는 법

무장관은 선택권을 확보하고 기초조사나 개략적인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미지출잔고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마다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적정부지의 선택에 대하여 법무장관은 그 매입비용과 그 위의 필요한 건물의 개축 · 신축 및 설비의 비용에 대한 견적을 연방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10조 추가토지의 취득

법무장관은 연방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때에는 시설에 근접한 또는 시설 부근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4011조 식사 · 세탁 등에 대하여 징수된 현금의 처분

식사 · 세탁 · 이발 제복 그 밖의 항목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연방교정시설의 관리와 활동을 위한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금이 징수된 때에는 징수현금은 그러한 항목에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국고의 계정의 대변에 예치할 수 있다.

### 제4012조 밀반입품의 즉시 압수와 몰수

교정국의 직원 또는 고용인은 교정국장이 발한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하여 연방교정시설내로 반입된 물건 또는 수용자가 소지한 불건은 교정국장의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 즉시 압수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은 미합중국에 몰수된다.

### 제4013조 연방시설 외의 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지원

① 법무장관은 연방시설이 아닌 장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를 위하여서 적절한 기금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에 대하여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1) 의복

(2) 의료비와 교도관의 고용

(3)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합의 또는 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연방법에 의해 연방재판소의 구금하에 있는 자에 대한 숙소와 안전에 관련된 비용

② 법무장관이 제정한 규칙과 제4006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연방수용자의 구금을 위하여 교도소 공간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주나 지방정부 관할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구금환경과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신축, 개축, 기자재 매입 등에 대해 당해 주, 보호령과 계약이나 협약을 맺은 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

(1) 본 조의 목적을 위한 비용은 연방교도소의 신축에 대한 수용자 1인당 평균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연방정부의 비용원조에 따라 제공된 시설은 연방수용자를 구금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3) 연방수용자를 위하여 지불되는 일일 비용은 계약이나 협약에 적시된 비용과 조건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1) 연방재판소는 제1항의 (3)에 따라 사적 구금시설에 대한 부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다음에 의거하여 선정할 수 있다.

(A) 그 지역의 연방수용자 수

(B) 연방교도소, 주교도소, 지방정부 교도소의 이용가능성

(2) 제1항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법과 연방예산에 따라 연방재판소의 구금하에 있는 자의 구금과 안전

을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하여 사기업은,

(A) 연방재판소에 의해 연방구금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B) 미국교정협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C) 해당 주와 지방정부의 법과 규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D) 소방, 안전, 비상탈출, 시위진압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연방재판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방재판소는 제1항의 (3)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연방시설 외의 시설에 구금된 연방수용자들에 대한 의료비

(1) 일반적 사항 - 제1항의 (3)에 의해 지불된 금액과는 별도로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연방수용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신탁자금 계좌로부터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A) 주정부나 지방정부와의 협약에 따라서 연방시설 외의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

(B) 비용은,

(ⅰ) 주 법에 따른다.

(ⅱ) 주수용자나 지방수용자의 의료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C) 의료서비스는

(ⅰ) 주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획득한 자에 의해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다.

(ⅱ) 진료를 위한 시설방문을 포함한다.

(ⅲ) 예방적 치료, 응급치료, 산전진료, 만성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정신과 치료나 약물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적 이유로 인한 치료 거부 불가 - 본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수용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A) 수용자의 계좌가 파산상태이거나

(B) 그 밖에 수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

(3) 수용자에게 법률에 대한 고지 - 수용자는 문서와 구두로 본 조가 있음과 수용자가 본 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 본 조의 다른 하위 조항과는 별도로 본 조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A) 교도소 수용자가 본 조에 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B)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한 비용

(4)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집행에 대한 수용자에게 고지 -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본 조의 집행이나 집행의 수정은 수용자가 이러한 실행에 대해 문서와 구두로 집행이나 집행의 수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기간 이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해서는 수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5) 청문회 고지 기간 - 본 조에 따른 집행이 공개적 의견수렴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의 내용을 문서와 구두로 연방수용자 지원단체와 그 집행을 받을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포괄적 HIV/AIDS 치료서비스의 요구 -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방수

용자에게 광범위한 HIV와 AIDS 관련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 제4014조 HIV검사

(1) 법무장관은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방범죄자가 전염병관리와 관련하여 연방교정국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면 복역을 시작한 후 HIV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 있는 연방범죄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HIV를 공무원이나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일반인에게 전염시켰을 경우에 법무장관은,

(1)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 같은 자를 즉시 검사받게 하고 그 결과를 검사받은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전염병관리와 관련하여 연방교정국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비밀이 보장된 논의를 할 수 있다.) 전염의 가능성과 예방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3) 바이러스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법무장관은 당사자에게 상담과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연방 또는 주의 형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 대한 반대증거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본 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장관은 본 조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동 규칙에는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하고,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연방교정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정시설 인사과에 알려야 한다는 것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303장 교정국

### 제4041조 교정국, 국장과 고용인

교정국은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법무장관에 직속된 국장이 관리한다.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과 고용인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제4042조 교정국의 의무

(1) 일반규정 - 교정국은 법무장관의 감독하에,

(1) 모든 연방교정시설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한다.

(2)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와 증인 등으로 소환된 모든 자의 계호, 보호와 생계를 마련하고 적당한 숙소를 제공한다.

(3)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의 보호, 교육과 규율을 제공한다.

(4) 주와 지방정부에 그들의 교정체계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자의 석방에 관한 고지를 한다.

(D) [1] 수용자를 돕는 석방 전 계획절차를 수립한다.

(ⅰ) 석방시 주와 연방 혜택 신청(사회보장카드, 사회보장연금, 퇴연군인수당을 포함)

(ⅱ) 법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에 따른 석방 전 신분증과 혜택 등 확보

(E) [2]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에서 연방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사회화 계획절차를 수립한다.

(ⅰ) 건강과 영양

(ⅱ) 고용

(ⅲ) 문맹퇴치와 교육

(ⅳ) 개인금융 및 소비자 기술

(ⅴ) 지역사회자원

(ⅵ) 개인성장과 발달

(ⅶ) 석방 요구사항 및 절차

② 수용자 석방에 대한 고지 -

(1) 수용자의 감독석방(supervised release)으로 석방되는 날 또는 감독석방 중 주소지가 새로운 관할지역으로 변경되는 날로부터 5일 전에는 석방이나 주소지 변경에 대해 주소지 관할 주와 지방의 사법집행관리에게 문서로 고지되어야 한다. 석방 전의 고지는 연방교정국의 국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독석방된 자의 주소지 변경에 대한 고지는 당사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나 연방법원행정국장에 의해 적시된 방법으로 한다. 본 조에 따른 고지의무는 제224조에 의해 보호되는 수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 (1)의 고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수용자의 성명

(B)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유형을 포함한 범죄기록

(C) 법 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또는 연방교정국이나 그 밖에 연방관청에 의해 석방과 함께 수용자에게 부과된 행위제한과 조건

(3) 여기서 말하는 수용자는 다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A) 마약거래(제924조의 제3항 (2)의 규정)

(B) 폭력범죄(제924조의 제3항 (3)의 규정)

③ 성범죄자의 석방에 대한 고지

(1) 아래 (3)에서 규정된 자가 석방되거나 보호관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A) 당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사법집행관리

(B) 당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 또는 지방관청

본 조에 따른 고지의무는 제2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석방고지에는 당사자의 제2항 (2)에 열거된 정보, 거주지, 성범죄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연방교정국의 국장은 연방교정국하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자에 대해 연방교정국이 알고 있는 석방 후 거주지를 석방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관찰관이나 법원행정국장이 적시된 방법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보호

관찰이나 감독석방 또는 가석방 동안 성범죄자가 그 거주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당사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행정국장은 적시된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관할지역의 사법집행관리와 성범죄자 등록업무를 하는 지방관청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연방교정국장은 성범죄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는 석방자와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석방고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폐지)

(5) 미국정부, 기관, 관리나 고용인이 본 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한 선의의 행동은 면책된다.

⑤ 본 조의 적용 - 본 조는 미육군 또는 해군 교정시설 또는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043조 연방교도소의 대표기금에 대한 증여와 유증의 인수

법무장관은 "연방교도소 대표기금(Commissary Fund, Federal Prisons)"에 현금의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본 조에 의한 증여와 유증은 1986년의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2(6) U.S.C 1 .ET seq.)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의 사용을 위한 증여와 유증이 된다.

### 제4044조 연방교정국에 기부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연방교정국이나 연방교정산업을 위하여 사용될 기금이나 재산의 기부를 법무부의 이름으로 기증받을 수 있다. 법무장관은 그러한 재산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합한 절차를 취할 수 있고, 금전과는 다른 재산을 매각, 배정,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제4045조 검시 권한

연방교정시설의 장은 연방교정국장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수용자가 살인이나 자살 · 질병 사고 또는 원인 미상으로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범죄를 밝혀내고 소내 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교도관의 불법행위 교정,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의 민사책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자에 대한 검시 및 과학적 ·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검시와 구체적인 과학적, 의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시와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조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 제4046조 충격구금

① 교정국은 12월 이상 30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가 동의하면 당사자에게 충격구금프로그램(shock incarceration)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의 초반부에 충격구금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용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요구된다.

(1) 엄격한 훈련과 질서, 육체적 단련, 중노동과 군대식 훈련을 제공하는 매우 조직적으로 짜여진 일과표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문맹퇴치프로그램 포함), 약물, 음주 등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정국장이 충격구금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평가한 수용자는 잔여형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 제4047조 교도소에 대한 영향평가

① 연방교정시설의 적정수용인원의 증감에 대한 사법부 또는 입법부의 법안제출에는 교도소에 대한 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제2항에 한정된다).

② 법무장관은 양형위원회 및 법원행정처와 논의하여 제3항에 따라 그리고 연방형사절차를 거쳐가는 피고인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중인 법안에 필요한 교도소 영향평가는 요청이 있은 지 21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교도소 영향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도소인구, 보호관찰 대상자 인구 및 석방후 감독대상 인구에 대한 동향

(2) (1)의 인구변화가 연방정부의 지출에 주는 재정적 영향

(3)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

(4)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데 채택되었던 방법론과 가설에 대한 기록

③ 법무장관은 매년 3월 1일까지, 그 전 해에 일어난 모든 법률개정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한 교도소 영향평가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48조 수용자를 위한 의료비용

① 정의 - 본 조에서

(1) "계좌"는 수용자의 신탁기금계좌 또는 동등한 제도를 의미한다.

(2) "국장"은 교정국장을 말한다.

(3)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A) 국장에 의해 의료서비스제공을 허가받은 사

(B) 그 허가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는 자

(4) "진료방문"은

(A) 국장의 결정으로 수용자가 제도적, 비제도적 진료를 제공하는 자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B) 수용자에 의해 요청된 방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교도소 직원에 의한 위탁, 또는

(ⅱ) 만성질병의 사후치료를 위하여 직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수용자"는

(A) 교정국 관할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

(B) 그 외 미국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 의료서비스 비용

(1) 일반적 사항 - 국장은 본 조의 규정과 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수용자에 의해 요청된 진료방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정하여 지불하게 할 수 있다.

(2) 예외 - 국장은 예방적 치료, 응급치료, 산전진료, 만성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정신과 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비용은 본 조에 따라 비용을 정하거나 지불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 - 본 조에 따라 평가된 비용은 국장이 다음의 계좌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진료방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용자

(2)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진료방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해를 가한 수용자

④ 금액 - 본 조에 따라 평가되고 징수된 비용은 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본 조에 따라 수용자의 계좌에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서는 수용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수용자에게 비용의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당해 수용자가 본 조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재기할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 불가 - 본 조를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 수용자의 계좌가 지불불능이라는 이유

(2) 그 밖에 수용자의 비용지불 불능

⑦ 금액의 사용

(1) 피해자보상 -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은 수용자로부터 국장에 의해 징수된 돈은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2) 다른 금액의 할당 -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로부터 국장에 의해 징수된 돈 중에서 배상명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A) 75%는 범죄피해자법 1984(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42 U.S.C. 10601)의 제14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범죄피해자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B) 25%는 본 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행정비용으로 법무장관이 사용한다.

⑧ 수용자에게 법률에 대한 고지 - 수용되거나 또는 수용자가 된 자는 문서와 구두로 본 조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하고, 본 조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평가되거나 징수되지 아니한다.

(1) 수용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될 때까지

(2)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된 진료서비스

⑨ 수용자에게 규칙에 대한 고지 -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국장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그 규칙의 개정은 그것이 교도소의 수용자에게 문서와 구두로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정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⑩ 여론수렴기간 전에 고지 - 본 조에 따라 제안된 규칙이 여론수렴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은 당해 수용자와 연방수용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문서와 구두로 규칙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⑪ 의회보고 - 연방수용자 의료비용 공동지불법 2000(the Federal Prisoner Health Care Copayment Act of 2000)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는 매년 국장은 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조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징수된 금액

(2) 본 조의 집행효과, 그리고 수용자에 의한 진료방문의 특징과 빈도

(3)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항목별 정리

(4) 시행 전년과 비교하여 현재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요인별 기술

(5) 법 시행 전 12개월 동안과 법 시행 후 12개월 동안의 수용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비교

⑫ 광범위한 HIV/AIDS 검사 - 교정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정국의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각 연방수용자에게 HIV와 AIDS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정국은 이 검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05장 구금과 이송

### 제4081조 수용자의 분류와 처우

연방교정시설은 범죄의 성질, 수용자의 성격과 정신상태 그리고 시설 내에 구금된 자에 대한 개별적인 규율보호와 배려 및 처우체계를 제공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요소에 따라, 연방수용자를 적절히 분류하고 개별처우를 할 수 있는 통일적 체계를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규모가 계획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 제4082조 법무장관하의 구금, 사회내 처우시설, 구금의 이탈, 일시취업

① 구금되어 있어야 할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구금상태를 이탈하거나 법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에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장관하의 구금으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본다.

②

(1) 법무장관은 중범죄를 저질러 주정부나 지방정부 관할지역의 사회내처우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그 주나 지역의 사법집행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정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신속하게 당해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A) 수용자의 성명

(B) 수용자가 거주하는 사회내처우시설의 주소

(C) 수용자의 생년월일

(D) 수용자에게 부여된 연방수사국 번호

(E) 수용자의 사진 및 지문

(F) 개별 범죄자가 선고받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의 특성 및 그러한 범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황

(2) 본 조에 따라 위의 정보를 접수한 사법집행기관은 그 정보를 기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시설"은 사회내처우시설을 포함한다. 그리고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의붓자녀, 양자 또는 수형자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지위에서 생활해 온 자녀를 포함한다), 부모(친부모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지위에서 생활해 온 자를 포함한다),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

### 제4083조 교도소 징역과 수형자 동의

미국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미국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다.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이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아니된다.

### 제4084조, 제4085조 (삭제)

### 제4086조 연방범죄자에 대한 일시적 계호

미합중국 집행관은 연방의회의 제정법률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구금된 자를 시설에 인치할 때까지 계호하여야 한다.

# 제306장 외국으로의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

## 제4100조 본 장의 범위와 한계

① 수용자의 인도에 관한 본 장의 규정은 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효력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 조약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또는 외국으로의 범죄자의 인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범죄자가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후에 조약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경우에 그 선고된 형은 그 범죄자 인도의 근거가 된 조약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미합중국에서 전부 집행한다.

② 범죄자는 본 장에 의거하여 범죄자의 시민권 또는 국적국가에 한해서만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될 수 있다. 미합중국의 시민이거나 국민인 범죄자만이 미합중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 범죄자는 자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선고를 받은 범죄가 본 장에 규정된 이중범죄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범죄자의 동의가 증명관에 의해 일단 증명된 후에는 그 동의는 취소할 수 없다. 인도 시에 범죄자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 후견인 또는 선고국가의 당해 법원의 인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인도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유죄판결이나 선고에 대한 상소 또는 부대적 소송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범죄자는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자가 특별사면, 감형 또는 일반사면을 받았다는 통지 또는 선고의 개량적 변경이나 취소가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형을 선고한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 미합중국은 선고국가가 취한 결정의 이익을 범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제410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

① "이중범죄성"이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시에 그가 선고를 받은 범죄가 인도국가와 인도받는 국가 모두에서 범죄임을 의미한다. 연방정부형태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행위가 연방법률이나 주 또는 주의 지방법률하에서 범죄가 된다면 그 행위는 그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한다.

② "자유형"이라 함은 개인을 시설에 구금시키는 법원이 부과하는 형을 의미한다.

③ "소년"이라 함은

(1) 18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2) 소년범죄행위로 인하여 본 편 제403장에 의한 절차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④ "소년범죄"라 함은

(1) 소년이 행한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성인이 행했더라면 범죄였을 행위나

(2)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주 또는 관련된 외국의 소년관계기관에 의한 감시나 처우가 부과된 소년에 의한 비범죄행위를 의미한다.

⑤ "범인"이라 함은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⑥ "가석방"이라 함은 석방당국이 부과하는 조건과 그의 감시에 의거하여 범죄인을 그의 형기만료 이전에 석방당국이 구금으로부터 사회로 석방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⑦ "보호관찰"이라 함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모든 형태의 자유형의 선고를 의미하며, 범죄인은 감시하에 그리고 조건에 따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며, 조건위반 시에는 유예되었던 자유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⑧ "선고"라 함은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형과 유죄의 판결, 또는 동 소송에서의 무죄의 판결 또는 소년범죄소송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동 소송상의 범죄주장의 각하를 의미한다.

⑨ "주"라 함은 미합중국의 각 주,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연방과 미합중국의 모든 영토와 부속령을 의미한다.

⑩ "인도"라 함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법원이 과한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조약"이라 함은 한 국가의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선고의 집행을 받기 위하여 그의 시민권 또는 국적국가로 인도될 수 있는 조약을 의미한다.

**제4102조 법무장관의 권한**

법무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조약상 관계 당국으로서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행위를 한다.

(2) 미합중국의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외국으로부터 인도된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인수하고, 그를 적절하게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감시를 위하여 가석방당국 또는 보호관찰당국에 인계한다.

(3)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을 그의 시민권 있는 국가나 국적국가로 인도한다.

(4) 본 장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5) 조약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와 보고서를 외국에 교부하고 외국으로부터 접수한다.

(6) 주의 구금 하에 있는 외국시민 또는 국민인 범죄인을 그의 시민권 있는 국가나 국적국가로 인도하고,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을 적절하게 주의 시설에 구금하기 위하여 협약에 따라 모든 주와 협의한다.

(7)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제3의 국가로 이송 중인 범죄인의 미합중국 영토통과 이송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영토통과의 비용은 이송을 요구하는 국가가 부담한다.

(8)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소년의 인도와 처우에 대하여 외국의 관할당국과 협력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그 비용은 소년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가가 부담한다.

(9) 범죄로 인하여 기소되었으나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자의 인도와 처우에 대하여 보건 · 교육 · 복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비용은 그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가가 부담한다.

(10) 외국의 법원이 과한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인도 중인 미합중국의 시민이나 국민을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외국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자를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직원을 지명한다. 상기의 직원은 범죄인과 동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구역에서는 그 범죄인의 이송과 계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미합중국 집행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외국의 영토 내에서 상기의 직원은 외국의 당국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진다.

(11)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법무부의 직원에게 위임한다.

### 제4103조 미합중국 법률의 적용가능성

수형자, 보호관찰 중인 자, 가석방자와 소년범에 관한 미합중국의 모든 법률은 조약이나 본 장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에 인도된 범죄인에게 적용한다.

### 제4104조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의 인도

① 법무장관은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하는 데 동의하기에 앞서, 미합중국의 관할 지방법원이 그 범죄인에 대한 감시를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당국으로부터 보호관찰관 중인 범죄인을 인계받은 때에는 법무장관은 그 범죄인을 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그 범죄인을 법원의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둔다. 그 범죄인은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하에서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④ 보호관찰은 본 편 제3653조와 연방 형사소송규칙에 의거하여 취소될 수 있다. 보호관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고법원이 부과한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⑤ 보호관찰의 취소에 따라 본 편의 제4105조와 제41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법무장관은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의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앞서, 그 자에 대한 관할권을 수행하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105조 자유형의 선고를 복역하는 범죄인의 인도

①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인도되어 법무장관하에 구금된 범죄인은 선고법원이 명한 기간 동안 법무장관에 의하여 구금된다.

② 인도된 범죄인은 형집행개시일 전에 범죄행위 또는 형이 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일수를 형집행으로부터 공제받는다.

③

(1) 인도된 범죄인은 선시와 노동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도 시 이미 집행된 기간에 대하여 인도국가가 행한 선고집행에서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 인도 후에 그 범죄인은 또한 외국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고 증명된 전 선고기간의 집행에 대하여 본 편 제4161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인도 시에 미집행된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된 선시공제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공제는 본 편 제4164조에 의한 범죄인의 석방일을 산정하는 데 포함된다.

(2) 범죄인을 인도한 국가가 선시공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편 제4161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선고법원이 부과하고 인도 시 집행이 증명된 선고를 감형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3)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 시로부터 본 편 제362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밖의 선시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인도된 범죄인이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동안에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받은 선고는 그 외국의 선고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의 선고에 합산한다.

### 제4106조 가석방 중인 범죄자의 인도, 가석방의 전환

① 외국의 당국으로부터 가석방 중인 범죄자를 인수한 후, 법무장관은 감독에 대하여 미국 가석방위원회(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에 당해 범죄자를 인계한다.

② 미국가석방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의장은 본장 또는 관련 조약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이송된 범죄자 또는 구금의 선고를 집행하거나 또는 이송 시 미합중국 법정에서 선고받은 것과 같은 가석방 중인 범죄자와 관련하여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4201조부터 4204조까지, 제4205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8항, 제4206조부터 제4215조까지, 그리고 제4218조 (1)은 본 조에 적용된다.

③ 구금의 선고를 위하여 미합중국에 이송된 범죄자는 가석방위원회가 결정한 시간에 가석방으로 석방될 수 있다.

④ 본 조는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재판에 회부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리고 본 조하에서의 가석방위원회의 책임의 이행은 1984년 종합범죄통제법(the Comprehensive Crime Control) 제235조에 따라야 한다.

**제4106A조 가석방 중인 범죄자의 인도, 인도된 범죄자의 가석방**

① 외국 당국으로부터 가석방 중인 범죄자를 인수한 후, 법무장관은 감독에 대하여 미국가석방위원회에 범죄자의 감독을 맡긴다.

②

(1)

(A) 미국가석방위원회는 미합중국에 인도된 범죄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구금의 선고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석방일자와 기간 그리고 감시하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B)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는 범죄자와 관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적용되는 지침의 범위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보호관찰위원회의 권고

(ⅱ) 인도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문서

(C) 위와 같은 결정의 결과인 구금과 감시하의 석방과의 통합기간은 당해 범죄자에 대한 외국법원에 의해 선고된 구금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D) 제355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미합중국 감찰관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는 인도된 범죄자에 대하여 미합중국보호관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A) 본 항의 미합중국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은 동 위원회의 결정 시 범죄자가 구금되어 있는 순회재판에 대하여 미합중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4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항소법원은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의해 선고된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제3742조에 따라 항소에 대하여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항에 따라 감시부 석방 동안 범죄자의 거주지 미합중국지방법원은 범죄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동의하거나 또는 1987년 11월 1일 이후의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제4107조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의 증명**

①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동의가 자발적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 치안판사나 법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② 증명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범죄인이 이해하고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범죄인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의 관할 법원만이 유죄판결 또는 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요청하는 모든 소송절차는 그 법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선고는 그가 인도될 국가의 법률과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그가 인도될 국가의 법원이 범죄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에서 조약이나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인도가 종료된 것이 아닐 때, 그는 미합중국이 그의 귀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귀환될 수 있다.

(4) 인도에 대한 그의 동의는 증명담당관이 일단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행하여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인에게 그의 변호인접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 동의에 앞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때에는 그가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소송은 계속될 것임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어떤 약속, 협박, 그밖에 부적절한 기망의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조건에 의한 인도를 승낙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동의와 승낙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⑤ 소송은 판결기록원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음향녹음장치로 녹음한다. 법무장관이 기록을 보관한다.

**제4108조 미합중국으로의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의 증명**

① 미합중국이 범죄인을 인수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동의가 자발적이고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행해졌다는 사실이 선고가 행해진 국가에서 미합중국 치안판사에 의하여 또는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5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 법관이 특별히 선정한 시민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정이나 기관의 고용인 또는 직원인 시민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 증명담당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된다는 사실을 범죄인이 이해하고 동의하는가 여부를 그 범죄인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1) 그에게 유죄판결과 선고를 행한 국가만이 그 유죄판결이나 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요구하는 모든 소송절차는 당해 국가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선고는 미합중국 법률과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미합중국 법원이 그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에서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인도가 완료된 것이 아닐 때 그는 선고를 한 국가가 그의 귀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당해 국가로 귀환될 수 있다.

(4) 인도에 대한 그의 동의는 증명담당관이 일단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행해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호인접견권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 동의에 앞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때에는 그가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소송은 계속될 것임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어떤 약속, 협박, 그밖에 부적절한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조건에 의한 인도를 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동의와 승낙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⑤ 소송은 판결기록원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음향녹음장치로 녹음한다 법무장관이 기록을 보관한다.

**제4109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선정**

①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절차에 있어 범죄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인이 재정적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1) 제4107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소송절차를 위한 변호인은 제3006A조에 의하여 선정한다. 그러한 선정은 위의 법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범죄사건에서의 선정으로 간주한다.

(2) 제4108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소송절차를 위한 변호인은 미합중국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증명담당관이 선정한다. 국무장관은 선정된 변호인의 보수와 비용을 증명담당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제3006A조에 따라 이 경범죄사건의 소송대리에 대하여 인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확대된 또는 복합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증명담당관이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초과지급액이 필요하다고 증명하고, 미합중국 순회항소법원의 법원장이 지급이 적정범위라고 승인한 때에는 인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정부산하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여행과 호송의 비용을 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그의 고용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편 제3324조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국무장관은 본 항에 따라 선정된 변호인에게 여행과 호송의 비용을 선불할 수 있다.

② 재정적으로 소송후견인의 보상과 여행경비를 제공할 수 없는 범죄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본 장 제4100조에 따라 입증공무원에 의해 임명된 소송후견인은 본 조 제1항 (1)에 따라 보상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범죄자는 본 장 제4106A조에 따른 미국 가석방위원회의 절차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범죄자가 재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절차에서 조언과 이의제기는 본 절 제3006조에 따른다.

**제4110조 소년의 인도**

미합중국이나 미합중국의 각 주에서 행해졌더라면 소년범죄가 되었을 범죄인은 관계조약이나 그 조약에 의하여 법무장관과 외국의 관계기관 간에 체결된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편 제403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4111조 외국의 판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소**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은 그를 기소하려는 관할 법원이 인도근거가 된 선고를 하였으면 소추가 금지되었을 범죄로 인하여 미합중국 각 주에 의하여 구금, 소추, 재판 또는 선고되지 아니한다. 또한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인도의 근거가 된 선고를 하였으면 그 인도된 범죄인을 소추하려는 관할 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기소가 금지되었을 경우도 같다.

**제4112조 권리의 상실, 자격상실**

외국법원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미합중국의 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의할 때 외국에서의 판결사실로부터 연유하는 내용과 다른 어떠한 시민권, 정치적 권리, 공민권의 상실이나 자격상실

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4113조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범죄인의 지위

(1)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되는 자로서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률(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40조B에 의거하여 임의출국이 허가되고,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본 장에 따라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률 제240조 의해 미합중국으로부터 배척과 추방명령을 받고 본 장에 의해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입국허가가 배척되고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114조 인도된 범인의 귀환

(1) 미합중국 법원이 범죄인이 미합중국 인수가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최종결정을 내리고 그 범죄인에게 미합중국에서의 형선고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 그 범죄인은 선고를 내린 국가가 그의 귀환을 요구할 때에는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인도한 국가로 귀환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범죄인의 석방을 명한 미합중국 법원의 최종 결정을 선고를 내린 국가의 관할 당국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선고국가가 범죄인의 귀환을 요청하여야 할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2) 석방이 명해진 범죄인을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소환한다는 요청을 선고국가로부터 접수한 경우, 법무장관은 그 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미합중국의 판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치안판사에게 당해 범죄인의 소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선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범죄인이 소환을 요구한 국가의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점, 그 범죄인은 형의 집행을 위하여 미합중국에 인도되었다는 점, 그 범죄인은 그의 인도가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이 종료하기 전에 미합중국 법원에 의해 석방이 명해졌다는 점, 그리고 선고국가 한 국가가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그의 소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이의에는 선고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범죄인의 석방을 명한 법원의 결정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범죄인에게 발부당국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소환장이나 영장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발부한다. 법관이나 치안판사는 출석한 자가 이의에 명기된 범죄인이며 이의에 주장된 사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범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인도가 있을 때까지 법무장관하에 구금한다. 선고국가의 관할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의 신병인도를 위한 귀환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관 앞에서 행한 모든 증언의 등본과 그에게 제출된 모든 기록의 등본과 판결문이 국무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이의는 범죄인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의하여 소환된 범죄인은 모든 경우에 그를 소환한 국가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5) 범죄인의 소환은 미합중국의 구속 또는 감시하에 있었던 기간을 선고의 집행에서 공제한다는 조건에 의한다.

(6) 본 편의 제3186조, 제3188조 내지 3191조와 제3195조는 본 조에 의한 범죄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다만, 본 조에 의하여 소환된 범죄인은 어느 경우에도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7) 본 조에 의거하여 소환되는 범죄인은 각 소송단계에서 자신의 보증금으로 보석이나 석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4115조 반환이나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선고의 집행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한 국가의 형사소송에서 받은 선고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지불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형벌 또는 손해배상은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이 행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다. 지급이 명해진 금액의 징수절차는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서 법무장관이 수행한다. 그 절차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분배를 위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인도한 국가의 조약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307장 고용

### 제4121조 연방교도작업, 관리자위원회

콜롬비아 특별구 정부법인인 "연방교도작업공사(Federal Prison Industries)"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근무하도록 대통령이 보수없이 임명하는 6인의 관리자위원회가 관리한다.

관리자는 각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1) 산업계

(2) 노동계

(3) 농업

(4) 소매상인과 소비자

(5) 국방장관

(6) 법무장관

### 제4122조 연방교도작업의 관리

(1) 연방교도작업공사는 연방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비 또는 미합중국의 각 주와 산하기관에의 판매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방교정시설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산업적 운영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사기업과 경쟁하여 국민에 대한 판매는 할 수 없다.

(2)

(1) 연방교도작업공사의 관리자위원회는 미합중국 교정시설 내 육체적 능력이 있는 모든 수용자를 고용하고, 실용적인 한도에서 교도작업의 운영을 다양하게 하며, 어떤 사기업도 교도소 공장의 생산품으로 인하여 부당한 경쟁의 부담을 감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사기업이나 자유노동자와의 경쟁을 최소화하도록 교도작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연방교도작업공사는 경제적인 이득을 산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품을 생산하여 단지 연방정부에만 조달하여야 한다.

(3) 연방교도작업공사는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하여 그 판매범위를 연방전역으로 넓게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생산품의 물량을 높이려는 연방교도작업공사의 결정은 관리자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관리자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에 교도작업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법인은 새로운 생산품이나 증대된 물량이 교도작업과 자유노동에 미칠 가능한 영향력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연방정부의 생산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인의 수

(ⅱ) 당해 생산품에 대한 영세기업, 소수자에 의한 영세기업, 잉여노동이 많은 지역에서의 기업과 비교한 연방정부의 점유비율

(ⅲ) 당해 생산품에 대한 연방정부시장과 연방 외의 시장의 규모

(ⅳ) 당해 생산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장목표

(ⅴ) 연방교도작업과 사기업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연방정부 시장의 예측된 능력

(B) 법인은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된 출판물을 이용해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자들에게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존 생산품의 물량 증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C) 법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역단체에 자신들이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 또는 기존 생산품의 생산량의 증대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직접 알려야 하며 사기업들에게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D) 법인은 관리자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A)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존 생산품의 생산량 증대 계획에 대한 분석

(ⅱ) 계획에 대하여 회사에 제출된 의견

(ⅲ)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회사의 권고. 덧붙여서 관리자위원회는 계획에 대한 최종결정 전에 교역단체나 다른 이해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들로 하여금 계획에 대한 의견을 관리자위원회에 직접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연방교도작업공사는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 생산품의 생산량 증대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해 출판하여야 한다.

(6) 연방교도작업공사는 매 6개월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배출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연방교도작업공사의 관리자위원회는 자격있는 수용자에게 그들의 작업상 또는 그 밖에 할당업무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④

(1) 본 장의 규정은 국방장관, 법무장관과 연방교도작업공사의 관리자위원회가 합의한 범위와 기간, 조건에 의거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각 주 또는 국방성 산하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의 작업취업과 훈련에 대하여 준용한다.

(2) 각 주와 국방성 산하기관은 본 항 제1문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설비를 재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할 수 있다.

⑤

(1) 본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특별구의 장관, 법무장관,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가 합의한 범위와 기간, 조건에 의거하여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의 작업취업과 훈련에 준용한다.

(2)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은 본 조 제5항 제1문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이용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설비를 재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할 수 있다.

(3) 본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 특별구정부와 그밖에 다른 목적을 위한 교도작업기금을 국고에 적립하기 위한 법률"이라 명명된 1964년 10월 3일 승인된 법률(D.C Code, Section 24-51 dt seq.)의 규정에 해석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4123조 새로운 작업

본 장에 의거하여 신설된 작업은 기존의 병기공장, 해군공창 또는 그 밖에 정부공장의 생산이 감소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석방 후의 생계마련의 수단을 제공할 직업상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연방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시설은 교정시설의 구내 또는 임대차, 매입 그 밖에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세울 수 있다.

### 제4124조 연방정부기관의 교도작업생산품의 구입

① 일부의 연방주와 정부기관 및 그 밖에 모든 정부시설은 본 장에 의하여 허가된 작업제품으로서 그들의 수요에 충당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산품을 현재의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생산품의 가격, 품질, 성질 또는 적합성에 관한 분쟁은 감사원장, 일반조달청장과 대통령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중재한다. 그들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③ 각 연방정부의 국, 청, 그리고 기관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도작업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해 다른 구입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연방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조달청에 의해 발생되는 보고서에는 연방국, 청, 기관에 의해 보고된 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연방교도작업회사의 매출은 정부 내 이동으로 본다. 연방교도작업회사의 매출에 대한 보고는 보고기간 동안 연방정부에 의해 구입된 물품에 대한 초괄적인 개관을 제공하기 위하여서이다."

④ 본 조가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교도작업회사는 판매물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출판하여야 한다. 이러한 카탈로그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만큼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제4125조 공공노역, 수형자캠프

① 법무장관은 각 주와 장관의 상호 합의한 기간 조건 · 보수에 의거하여 도로건설과 보수, 공공토지의 청소와 관리, 재조림, 제방건축 그밖에 공공도로의 신설과 보수, 그리고 전부 또는 대부분이 연방의회가 책정한 재원으로 충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주의 장관에게 미합중국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무장관은 인디언 보호지역을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한 부지에 캠프를 신축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리할 수 있고, 그 캠프를 미합중국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의 캠프에서의 수용자의 이송과 관리비용 그리고 캠프관리비용은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예산에서 지급되며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④ 캠프의 관리 비용의 일부로서 법무장관은 그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전수입을 그가 제정한 규칙과 명령에 의하여 수용자나 그의 부양자에 대한 지급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수용자의 구금, 이송, 통제, 규율, 도주, 석방에 관한 미합중국의 그 밖의 모든 법률과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합중국의 그 밖의 모든 법률은 캠프에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4126조 교도작업기금, 회계의 이용과 결산

① 연방교도작업공사의 통제에 의한 모든 금전 또는 그 작업의 생산품과 부산물의 판매수입금 또는 연방수용자의 노무제공으로 받은 수입금은 미합중국 국고의 교도작업기금 계정에 예치 또는 납부되고, 일반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처분장이나 처분증명서에 의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② 위의 기금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유효한 청구권과 책무는 법인이 인수한다.

③ 정부부처와 시설의 지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은 기금과 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수입금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본 장에 의해 부여된 의무의 수행

(2) 교도작업용 건물과 설비의 보수 · 대체 · 건설 · 관리

(3) 수용자의 작업상 또는 그 밖에 할당작업에 관계없는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4) 작업에 취업된 수용자와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봉사를 행한 수용자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발한 명령과 규칙에 의한 보상기금 또는 구금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활동 또는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한 수용자나 그 부양자에게의 보상지급 등의 운영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지급금은 제5편의 제81장에 규정된 것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④ 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감사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산과 정산을 위하여 일반회계사무소에 제출한다. 회계는 지출된 금액, 자본, 다른 출처로부터의 수입금을 포함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회계에는 충당된 현금과 자본 그리고 영수증까지 법인의 모든 재정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시설의 매입, 보수, 개조 등이 본 장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사업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교도소나 제4125장에 따른 캠프 등 교정시설을 건설하고 매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4127조 연방의회에 대한 교도작업보고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는 각회계연도의 당해 법인의 사업실적과 법인기금의 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는 각 회계연도의 제4129조 제1항 (1)에 따라 발표된 의무에 대한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에 발표되는 의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4128조 법무장관에 의한 의무수행

연방교도작업공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은 법률이 그에게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4129조 대출과 투자의 권한

①

(1) 관리자위원회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연방교도작업은 재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에게 채권을 발생할 권한이 있다. 재무장관은 재량에 따라 연방교도작업의 채권총액이 법인의 순가치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에 동의할 수 있다.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재무장관은 31권 제31장하에 발행된 증권의 판매를 공공부채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재무장관의 채권구입은 미국의 일반시장에서의 채권에 대한 현행 이자율을 고려해서 재무장관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배당을 줄 수 있도록 그 조건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본 호 제1분의 목적을 위한 연방교도작업공사의 한계가치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자본을 포함한다.) 양이다.

(2) 재무장관은 정해진 조건하에서 재무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본 조에 따라 재무장관에 의해 획득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재무장관의 채권매각 및 매입은 미국에서의 공공부채의 거래로 간주하여야 한다.

② 연방교도작업공사는 재무장관에게 연방교도기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투자는 관리자위원회가 정한 법인의 필요에 맞는 만기일을 가진 공공부채증권으로 하여야 하는데, 현행 시장에서의 채권에 대한 이윤율을 고려하여 내무장관이 결정한 이윤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309장 (폐지)

## 제311장 (폐지)

## 제313장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을 지닌 범죄인

### 제4241조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 범죄로 인하여 소추가 개시된 후 피고에 대한 선고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 또는 검사는 피고의 정신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드는 정신적 결함이나 정신병을 현재 갖고 있다고 믿는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위의 심리를 명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법원은 심리기일 전에 피고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보고서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분 – 심리결과, 법원이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 무능력하게 하는 정신병이나 정신적 결함을 현재 갖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적당한 시설에 처우를 위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피고를 입원시켜야 한다.

(1) 그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2) 다음 중 빠른 기간까지의 상당한 추가기간

(A) 법원이 추가기간 내에 그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 때

(B) 그에 대한 현 기소가 법률에 따라 처결될 때까지 지정된 기간의 만료 시

피고의 정신적 상태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된 때에는 피고는 제42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석방 – 제3항에 의하여 피고를 입원시킨 시설의 장은 피고가 그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판정한 때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감호를 명했던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 증명의 등본을 피고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적격여부 판정하기 위하여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입원시설로부터 즉시 퇴원할 것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정한다. 퇴원에 있어서 피고는 제207장과 제227장의 규정에 의한다.

6 적격인정의 채택 – 법원이 피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피고는 기소된 범죄에 대한 방어로 자신의 정신이상을 제기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의 사실인정은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 제4242조 범죄시 정신이상의 존재에 대한 판정

(1) 재판시의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에 대한 신청 –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정신이상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보고서 또는 심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2) 특별평결 – 피고의 신청 또는 정부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22조에 규정된 바의 통지에 따라 정신이상이 쟁점으로 제기된 때에는 배심은 피고에게 다음이 인정된다는 설시를 받아야 하고,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유죄

(2) 무죄

(3)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한 무죄

### 제4243조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하여 무죄가 인정된 자의 입원

(1)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현재의 정신상태의 판정 – 기소된 범죄당시의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하여 무죄가 인정된 자는 제5항에 의한 석방적격을 갖출 때까지 적당한 시설에 감호된다.

(2)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제3항에 의한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을 명한다.

(3)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특별평가 후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4) 입증책임 – 본 조 제3항에 의거한 심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수반하거나 그러한 상해 또는 손실의 사실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정신이상의 이유만으로 무죄로 인정된 자는,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써 자신의 석방이 현재의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 밖의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의 우세에 의한 입증책임을 진다.

(5) 판정과 처결 – 심리 후에 법원은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그 자의 석방이 현재의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한다. 법무장관은 그의 주소지 또는 재판이 행하여진 지역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

여 위의 주 관계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수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

(1) 당해 수가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또는

(2) 그의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자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된 때까지

그 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수가 그에 대한 감호 치료 및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6 석방 – 무죄로 인정된 자가 제5항에 의거하여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가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의 처방요법,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서를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무죄가 인정된 그 장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 후에 법원은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1) 그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그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법원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의료적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석방에 대한 명시적 조건으로 그에게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심리를 거쳐서 의료적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7 조건부 석방의 취소 – 무죄가 인정되어 제6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요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의 장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무장관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또는 그가 의료적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계속되는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재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⑧ 일시석방의 제한 - 범행 시 정신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어 제5항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떠날 수 있다.

(1) 사건담당 법원의 승인, 검사와 당사자에게 고지, 그리고 청문회 후

(2) 긴급시

(3) 연방사법관리에 의해 수행될 때(이에 관해서는 제115조에 한한다.)

⑨ 콜럼비아특별구에서 정신이상으로 판명된 자

(1) 법무장관에게 신병양도 - 콜럼비아특별구 법 제24편 제301조 제8항과 본 편의 제4247조 제10항과는 별도로 컬럼비아 특별구법 제24편 제301조 제4항 (1)에 따라 정신병으로 입원한 자는 법무장관에게 신병이 양도되고 법무장관은 당사자를 적절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시켜야 한다.

(2) 신청

(A) 일반 - 법무장관은 미연방지방법원에 신병이 인도된 자가 본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B) 고지 - 법무장관은 당사자과 당사자의 가족 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합법적인 자에게 당사자의 신병인도에 대해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은 15일 내에 신병인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는 신병인도가 당사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C) 명령 - 법원은 법무장관의 신청서를 받으면 신병의 인도가 당사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법무장관에로의 신병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D) 효과 - 본 조에 있는 어떤 내용도

(ⅰ) 청문회개최에 대한 관심이나 고지에 대한 자유를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다.

(ⅱ) 미국정부 또는 미국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항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ⅲ)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인도된 자를 이동하고 양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정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6항과 제7항 그리고 제4247조는 본 조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신병이 인도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244조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입원**

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의 판정을 위한 신청 - 유죄가 인정된 피고 또는 검사는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피고가 선고를 받기 전에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심리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그 피고에 대한 선고 전에 위의 심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에 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료와 더불어 추가로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요구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관의 의견이 그 보고에 첨부된 때에는 그 보고는 또한 피고에게 필요로 하는 처우의 종류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선고방안에 관한 검사관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에 따라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자유형의 선고에 대신하여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한 적당한 시설에 감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피고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피고를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그러한 감호는 당해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으로 자유형이 가선고된 것으로 본다.

⑤ 석방 – 피고가 제4항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피고가 더 이상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그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당해 피고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시에 제4항에 따라 부과된 가선고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하고 가선고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245조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수형자의 입원

① 수형자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의 판정을 위한 신청 –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서면 또는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이송되는 것을 반대하는 때에는 검사는 그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심리를 당해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본 조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의 이송이 연기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그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그가 더 이상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감호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또는 자유형의 선고가 만료될 때까지 양자 중 빠른 기간까지 그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⑤ 석방 – 그가 제4항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가 더 이상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그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 시에 그에게 부과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자유형의 형기의 만료시까지 그를 재구금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4246조 석방되어야 할 자로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자의 입원

① 소송절차의 개시 – 형기종료가 임박한 자 또는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된 자 또는 정신적 상태에 관련된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상의 소추가 기각된 자가 입원되어 있는 시설의 장은 그러한 자가 현

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주의 감호와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가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그가 구금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와 검사에게 그리고 그가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감호된 경우에는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증명이 접수된 때에는 본 조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의 석방이 연기된다.

(2) 정신적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판정과 처분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그의 주소지 또는 재판이 행해졌던 지역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는 때에는 그를 석방하여 그 주의 관계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무장관은,

(1) 당해 주가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또는,

(2) 그의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그 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5) 석방 – 그가 제4항에 의거하여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의 석방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효과에 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를 거친 후에 법원은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1) 그의 석방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그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법원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B) 석방에 대한 명시적 조건으로 그에게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심리를 거쳐서 의료적 정신병적 물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조건부 석방의 취소 –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요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의 장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무장관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또는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계속되는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재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일정한 자에 대한 주로의 석방 –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모든 소추가 기각된 자를 본 조에 의거하여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법무장관에게 증명한 때에는 법무장관은 주의 민사상의 구금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그의 주소가 있거나 그에 대한 재판이 행해졌던 주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를 석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당해 주가 위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당해 주로부터 위의 책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의 접수는 시설의 장의 증명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정의 – 본 장에서 주는 콜럼비아특별구를 포함한다.

### 제4247조 본 장의 총칙

① 정의 – 본 장에 사용되는 용어

(1)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개인이 그가 복귀할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범죄의 중대성과 그것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교육훈련

(B) 개인이 그가 복귀할 사회에 공헌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훈련

(C) 개인이 자신의 심신적 의존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 알코올, 그밖의 것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D) 조직적인 신체적 운동과 오락프로그램

(2) "적당한 시설"이라 함은 범죄의 성실과 피고의 성격에 따른 치료 또는 처우를 제공하기에 적당한 시설을 의미한다.

(3) "주"는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한다.

(4) "신체상해"는 성적학대를 포함한다.

(5)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 함은 성적위반행동 또는 아동추행을 하거나 관여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위험한"이란 석방될 경우 성적위반행동 또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결과로써 심각한 정신적 질병, 이상 또는 혼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 - 본 장에 의거하여 명해진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가를 받은 정신병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실시한다. 다만,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명검사관이 행한다. 각 검사관은 법원이 지명한다. 다만, 제4245조 또는 제4245조에 따라 검사가 명해진 경우, 피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추가로 1명의 검사관을 지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4241조, 제4244조, 제4245조의 명령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제4242조, 제4243조, 제4246조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적당한 시설에서 법무장관의 보호하에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장 근접한 적당한 시설에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시설의 장은 피고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추가기간이 필요하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제4241조, 제4244조, 제4245조에 있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제4242조, 제4243조, 제42465조에 있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상당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 - 본 장에 의하여 명령된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는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명된 검사관이 준비하여 검사를 받는 자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송달할 등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 자의 경력과 현재의 증후

(2) 사용된 정신병적 · 심리적 · 의료적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

(3) 검사관의 사실인정

(4) 진단, 예단에 관한 검사관의 의견

(A) 제4241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해진 때에는 그 자가 그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적절하게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 무능력에 처하게 하는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B) 제4242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때에는 그가 기소된 범죄 당시에 정신이상이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C)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때에는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D) 검사가 제4248조에 따라 명해지는 경우 성적으로 위험한 자인지 여부

(E) 제4244조 또는 제4245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때에는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F) 검사가 대배심의 기소를 위한 조사의 일부분으로 명해진 때에는 피고의 정신적 상태가 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검사관의 권고

④ 심리 – 본 장에 의하여 명해진 심리에서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심리의 대상이 된 자는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며, 그가 재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적당한 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제3006조 A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변호인이 선정된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와 심리에 출석한 증인과 대면하여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⑤ 정기보고와 정보요구

(1)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은,

(A) 제4241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매 6월마다 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B)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 의거한 때에는 그 자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보고를 그의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추천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는 그 시설에의 그의 감호를 명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의 등본은 법원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 의하여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입원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비디오테이프기록 – 피고측 변호인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4항에 의거한 정기보고의 근거가 된 피고의 증언이나 면담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로 기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비디오테이프기록은 정기보고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해받지 아니하는 인신보호영장 –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규정된 어떤 규정도 그 조항에 따라 구금된 자가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자신의 불법구금을 주장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⑧ 석방 –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 각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제출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의 변호인이나 법률적 후견인은 그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제든지 감호를 명한 법원에 대하여 그가 당해 시설로부터 석방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신청은 그가 계속 입원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180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없다. 신청의 등본은 그를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과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

법무장관은,

(A) 본 장에 의하여 그의 보호에 위탁된 자의 구금, 입원, 치료 또는 처우와 그에 대한 봉사의 제공을 위하여 주, 하위행정구역, 지방 또는 사설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그의 보호에 위탁된 자에 대한 주 법에 따른 민사구금을 신청할 수 있다.

(C)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시설에 수용하기 전에 그 시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D) 본 장의 규정의 일반적인 이행과 본 장을 이행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보건성장관(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본 장은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의회의 법률 또는 군사법무에 관한 통일법령집에 의한 소추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248조 성적위험자에 대한 시민적 책무

① 절차의 개시 – 형기종료가 임박한 자 또는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된 자 또는 정신적 상태에 관련된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상의 소추가 기각된 자가 입원되어 있는 자와 관련하여,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자 또는 시설의 장은 그가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그가 구금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자와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분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가 성적으로 위험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그의 주소지 또는 재판이 행해졌던 지역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는 때에는 그를 석방하여 그 주의 관계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무장관은 다음 중 더 빠른 시기까지 적당한 시설에 처우를 위하여 그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1) 당해 주가 책임을 인수할 때 또는,

(2) 그자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위험이 없거나 또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 그의 상태가 개선될 때

⑤ 석방 – 그가 제4항에 따라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장은 그의 석방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으로 위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효과에 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를 거친 후에 법원은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1) 그가 조건없이 출소하는 경우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으로 위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즉시 그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2) 그가 의료적, 정신병적,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하에 석방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위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A) 그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법원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석방에 대한 명시적 조건으로 그에게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심리를 거쳐서 의료적 · 정신병적 · 물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조건부 석방의 취소 -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요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의 장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무장관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또는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계속되는 석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재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일정한 주로의 석방 -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모든 소추가 기각된 자를 본 조에 의거하여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그가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증명한 때에는 법무장관은 주의 민사상의 구금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그의 주소가 있거나 그에 대한 재판이 행해졌던 주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를 석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당해 주가 위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당해 주로부터 위의 책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의 접수는 시설의 장의 증명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14장 (삭제)

## 제315장 석방과 석방지출

**제4281조** (삭제)

**제4282조 체포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자**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지역에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소되었더라도 유죄평결을 받지 아니한 자, 제207장에 따라서 구금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재량으로 미국연방지방재판관에게 법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4283조** (삭제)

**제4284조** (삭제)

**제4285조 재판진행 중 석방되는 자**

제207장의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추후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할 경우, 판사나 치안판사는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출두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수단을 마련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될 때에 미국연방재판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에 대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요금을 마련하게 할 수 있고, 제5편의 제570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1일 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출두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갈 때까지의 숙식비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 제317장 여성수용자를 위한 시설

### 제4321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법무장관, 교정국장, 연방여자교도소 소장과 함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4명의 일반시민이 4년 임기의 무보수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여성수용자의 석방 후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절한 훈련과 교육수단과 방법을 권고하여야 한다. 결원이 생긴 때에는 남은 임기동안을 위하여 새로운 시민을 임명한다.

## 제319장 미연방교정연구소

### 제4351조 설치,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보수, 관리, 위원회, 권한위임, 국장

① 교정국내에 교정연구소를 설치한다.

② 교정연구소의 정책과 운영은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의 6인은 직권상 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한다; 연방교정국장, 사법지원국장, 양형위원회 의장, 연방사법센터 소장,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의 부소장, 의료복지교육국의 인간개발분야 부서장

③ 나머지 10인의 위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1) 법무장관은 처음에 5인을 임명하고 그 중 1인은 1년의 임기로, 1인은 2년의 임기로, 3인은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각 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법무장관은 각 3년 임기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은 연방, 주, 지방정부 차원의 교정, 보호관찰, 가석방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법무장관은 처음에 5인을 임명하고 그 중 1인은 1년의 임기로, 3인은 2년의 임기로, 1인은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각 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법무장관은 각 3년 임기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은 경제계, 노동계, 교육계의 자로서 교정, 보호관찰, 가석방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국정부의 고용된 직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미국정부의 직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부가적인 보수없이 일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일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식비, 그밖에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 제5편의 제5332조의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1~2인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기술위원이나 그밖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미연방의 공무원이 아니면서 연구소에 자문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미국 연방법률 제5편 제5332조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권한을 적절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연구소는 위원회와 논의 하에 법무장관이 임명한 소장의 감독하에 있다. 소장은 조직, 직원, 재정적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공무원법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나 교수, 행정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소장은 토지와 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고 연구소를 위하여 기부금이나 신용재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를 도와줄 컨설턴트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소장은 그 권한을 적절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352조 연구소의 권한, 시간, 수혜인 기록

① 미연방교정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교육기관,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기금을 만들고 계약을 한다.

(2) 교정관련정보 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재범, 교정직원들에 대한 훈련,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재활과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전파하는 정보센터로서 기능한다.

(3) 연방법원, 주 법원, 지방법원이나 정부기관들에게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 훈련, 처우, 재활을 위한 개발과 유지, 조정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5) 여러 지역에서 사법집행관리, 판사, 법원직원, 보호관찰과 가석방관련 직원, 교정관련 직원, 사회복지사, 전과자, 법률보조원에게 범죄인의 처우와 재활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등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6) 수용자, 가석방자, 보호관찰대상자, 그밖에 범죄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훈련팀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7) 범죄원인, 예방, 진단, 처우를 포함하는 교정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8)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교정관련 기관, 조직, 인력들을 위하여 교정정책과 목표, 기준과 권고안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한다.

(9) 교정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채용된 새로운 관점, 기술, 체계, 프로그램, 고안물에 대한 효과측정을 하는 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

(10) 연구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 자료, 프로그램 보고서, 그 밖의 문서를 연방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일을 한다.

(11) 연방정부기관의 장과 인력, 설비, 기구의 사용에 대해 조정하고 지불하는 일을 한다.

(12) 주정부나 기방정부,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13) 연구소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계약을 맺는 일을 한다.

(14) 미연방법률 제5편 제3109조에 따라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을 하고, 그 비용은 미국 연방법률 제5편 제5332조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② 삭제

③ 본 장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연구소가 규정한대로 지원금액, 프로젝트의 총액, 프로젝트 중 다른 기관에 의해 지원받은 액수의 비율 등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여 효과적인 회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와 미연방의 감사관 또는 그들의 위임자는 본 장에 따라 기금을 받은 수혜자의 서적 · 문서 · 논문 · 기록 등에 대해 회계하고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본 조의 내용은 본 편에 의해 지원받은 모든 수혜자에게 해당한다. 즉 연구소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연구소와의 계약자 또는 직접 수혜자로부터 하청계약을 맺은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제4353조** (삭제)

# 제4편 소년범죄인의 교정

## 제401장 총 칙

### 제5001조 주 당국에의 인도, 비용

21세 이하의 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혐의로 체포되어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원에 기소된 경우, 법무성의 조사결과, 그 소년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고 또한 인수하여 그를 구금하고 당해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그를 처리하려고 하는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률에 의할 때 그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또는 범인라고 간주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합중국과 그 소년범죄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가 체포된 지역의 미합중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여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그 지역의 미합중국 집행관은 미합중국 검사의 서면명령에 따라 그를 당해 주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에 이송하고, 이미 그곳에 있는 때에는 그곳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며, 그곳의 관계기관에 그를 인도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본 조에 따라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로부터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에로 이송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이 그러한 귀환에 대한 용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귀환되어야 하는 주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의 행정당국은 본 장 제3182조에 규정된 바의 기소장이나 선거진술서를 첨부한 요구를 미합중국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허가된 그러한 자의 이송에 부수하는 비용은 "임금, 수수료와 비용, 미합중국 집행관" 예산에 따라 지불된다.

**제5002조** (삭제)

### 제5003조 주 범죄인의 구금

(1)

(1) 교정국장은 어느 주 또는 지역의 법원에서 형사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 보호 · 생계 · 교육 · 처우와 훈련을 위하여 인력과 시설이 이용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 또는 지역의 관계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모든 비용과 그밖에 포함되는 모든 지출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그 전부를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B)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주나 지방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경우에는 제4082조 제2항 (1)에 규정된 지정에 의해 계약에서 타결된 형식과 조건을 따른다.

(c) 계약에 의해 협상할 수 있는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미합중국 법정에서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금전적 지불과 인수의 결합에 의해 미합중국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3) 어떠한 계약도, 그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주 또는 지방에로 인도되는 것보다는 미합중국에 의한 주 또는 지방에 수용된 수형자의 인수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그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기금은 그러한 업무에 대한 본래의 지출이 행하여졌던 국고의 계정의 대변에 예치할

수 있다.

③ 계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법무장관하에 구금된 자는 그에게 부과된 선고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주"는 미합중국의 모든 주와 영토, 속령 그리고 파나마 운하지구를 포함한다.

**제5003조 ~ 제5026조** (삭제)

## 제403장 소년범죄

### 제5031조 정의

"소년"이라 함은 본 장에 있어서는 아직 18회 생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소년범죄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한 본 장의 소송절차와 처결에 있어서는 아직 21회 생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소년범죄"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가 행한 미합중국의 법률위반으로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범죄가 되었을 행위를 말한다.

### 제5032조 지방법원에서의 범죄소송, 형사소추 위한 이송

소년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 소년은 미합중국의 영해와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법률위반으로 자유형의 법정최고형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장관의 조사를 거쳐서,

(1) 소년법원이나 그 밖에 주의 관할법원이 그 혐의를 받고있는 소년범죄행위에 관하여 위의 소년에 대한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의 인수를 거절하였다는 점

(2) 그 주에는 소년의 필요에 대하여 적당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설비가 없다는 점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중죄로 볼 수 있는 폭력범죄이거나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1003조, 1005조, 1009조, 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본 편의 제922조, 제924조에 규정된 범죄라는 점을 연방의 관할지방법원에 대하여 증명하고, 그 사건 또는 그 범죄에 있어서 연방 관할권의 집행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인 연방의 이익이 있는 경우 미합중국 연방법원에 기소된다

법무장관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소년은 그 주의 관계 사법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주"는 미 본토와 콜롬비아특별구, 속령을 포함한다.

혐의를 가진 비행소년이 본 조에 따라 관할 주 당국에 자수하지 아니하면 당해 안에 대한 모든 절차는 미연방의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언제든지 그 지역 내에서 판사실 그 밖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정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본 편 제3401조 제7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고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추도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범죄행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주 당국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성인으로서 기소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본 장에 의거하여 기소된다. 다만,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중죄로 볼 수 있는 폭력범죄 또는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1003조, 1005조, 1009조, 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본 편의 제922조, 제924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15번째 생일이 지난 후에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소년에 있어서는 연

방관할 지방법원이 심리를 거쳐서 이송이 정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에서의 법무장관의 이송신청에 의하여 그 피의행위에 근거한 형사소추가 개시될 수 있다. 선고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만일 폭력범죄가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11조, 제1113조하의 범죄이거나 제2111조, 제2113조, 제2241조 제1항, 제2241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소년이 범행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15세'라는 규정은 '13세'로 대체하고 '15번째'는 '13번째'로 대체한다. 제1152조와 제11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디안 부족정부의 형사관할 하에 있는 자는 연방 관할하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 사용의 기도, 사용의 협박을 범죄요소로 하는 중죄 또는 범죄의 본성상 범행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한 중죄 또는 본 편의 제32조, 제81조, 제84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2275조,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만16세 이후에 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 또는 연방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주의 중죄법령에 위반한 범죄가 되었을 행위로 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험이 있는 때에는 그 소년은 형사소추를 위하여 연방의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이 정의를 위하는 것인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고, 각 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은 기록되어야 한다. 당해 소년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 피의범죄의 특성, 과거 범행경력, 당해 소년의 현재의 지적 발전과 정신적 성숙도, 과거의 처우노력의 성질과 그 노력에 대한 당해 소년의 반응, 당해 소년의 행동상의 문제를 처우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당해 소년이 범죄조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규제약물이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행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사건을 성인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없더라도 성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의 심리에 대하여는 당해 소년,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리고 그의 변호인에게 상당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해 소년은 이송의 심리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밖에 소송상 주요한 모든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일단 소년이 유죄답변거래에 들어갔거나, 범죄 또는 피의소년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증거가 채택되기 시작한 단계에 도달한 때에는 그 피의소년의 범죄행위에 근거한 차후의 형사소추 또는 소년범 소송절차는 금지된다. 이송의 심리에 앞서 또는 심리 동안 소년이 행한 진술은 차후의 형사소추에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소년이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또는 그 소년이 일차적으로 기소되었더라면 이송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다른 범죄로 일차적으로 기소되었더라면 이송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년에 관한 차후의 소송절차는 본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본 장에 의한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수행되는 소년에 대한 소송절차는 당해 소년에 관한 과거의 소년법원기록이 그 법원에 전달될 때까지 또는 소년법원의 서기가 당해 소년이 전과가 없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당해 소년의 기록이 이용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증명할 때까지 제5037조에 따라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이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때에는 그 소년이 행하였다고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를 공식적인 소송기록의 일부로, 그리고 그 소년에 관한 공식기록의 일부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5033조 치안판사에의 출석이전의 구금

소년이 소년범죄행위의 혐의로 구금된 경우, 체포한 관리는 즉시 그 소년에게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고, 즉시 법무장관과 소년의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 소년의 권리와 혐의를 받은 범죄의 성질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소년은 즉시 치안판사에게 출석되어야 한다. 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판사에게 출석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5034조 치안판사의 의무

치안판사는 소년을 결정적인 소송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과 부모 후견인 · 관리인이 재정적인 이유로 적절한 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소년은 대리할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소년과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이 재정상으로는 적절한 대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고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지불을 명하거나 또는 소년, 그의 부모 · 후견인 · 관리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그 소년의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부모나 후견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 소년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이익과 소년의 이익이 반대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년이 치안판사에의 최초 출석이전에 아직 석방되지 아니한 때에는 치안판사는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심리를 거쳐서 당해 소년의 구금이 관할법원에의 적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소년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할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년을 그 법원에 출두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소년을 그의 부모 · 후견인 · 대리인 또는 그밖에 책임있는 당사자(피난 - 보호시설의 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에게 석방하여야 한다

### 제5035조 처결전의 유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은 소년시설 그 밖에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한하여 유치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고아원 또는 그의 거주가 있는 지역 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지역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에 유치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성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능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범은 이미 선고를 받은 소년범과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유치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 · 난방 조광 · 위생시설 · 침구 · 의류 · 오락 · 교육과 필요한 정신병적 심리적인 또는 그 밖의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5036조 신속한 재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유치되어 있는 소년범 피의자가 그 유치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받지 못한 때에는 법무장관이 당해 소년이나 그의 변호인에 의하여 추가적 지연이 야기되었다는 점 또는 당해 소년과 그의 변호인이 추가적 지연에 동의하였다는 점 또는 추가적 지연이 특히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는 소년범 피의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기각된다. 법원의 공소가건 과다만을 이유로 한 지연은 정의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의하여 기각된 공소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 제5037조 처결을 위한 심리

① 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이 제4항에 의거하여 조사의 계속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후 20일의 공판일 이내에 별도의 처결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처결심리 이후에 그리고 양형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관련 정책의 내용을 고려한 후에 법원은 소년범죄라는 결론을 유예하고 제3556조에 따라 배상명령에 들어가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공식구금할 수 있다. 처결 후 항소나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의 석방과 구금에 대해서는 법원은 제207장에 따라 진행시켜야 한다.

② 소년범죄로 결론이 내려진 소년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 18세미만인 경우,

(A) 소년이 2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B)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1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년이 18세 이상 21세 이하인 경우

(A) 3년

(B)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1조의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63조 및 제3564조에 명시된 보호관찰에 관한 조항은 소년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 적용할 수 있다. 소년이 집행유예기간 만료 또는 해지 전에 보호관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허가청문과 제28장 제994조에 따라 선고위원회에 의하여 공포된 관련정책문을 고려한 후 보호관찰기간을 취소하고 공식 구금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취소에 따른 공식구금기간은 제5037조 제3항 (2)의 (A)와 (B)의 허가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5037조 제3항 (2)의 (A)와 (B)의 해지절차의 처분 시 소년의 연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소년이 해지절차시 21세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3565조 제2항의 필수해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1세 이상의 소년의 처분은 제5037조 제3항 (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성인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때에는 A, B, C급 중죄가 선고되는 소년의 경우에 구금기간은 만26세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경우에는 구금기간은 소년의 24세를 초과할 수 없다. 구금기간은 소년의 보호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소년범죄자로 결론이 내려진 소년에게 명할 수 있는 공식구금의 기간은

(1) 18세 미만인 경우-

(A) 소년이 2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B) 제28장 제99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추가요소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유사한 상황의 성인피고인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C) 소년이 성인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인정되는 최대의 구금기간

(2) 소년이 18세 이상 21세 이하인 경우-

(A) 성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이 A급, B급, C급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 5년 또는

(ii) 제28장 제99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추가요소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밖의 유사한 상황의 성인피고인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B) 나머지 경우에는

(i) 3년

(ii)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의 징역

(iii) 소년이 기소되어 성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인정되는 최대의 구금기간

제3624조는 소년의 구금을 명하는 데도 적용된다.

4

(1) 법원은 구금기간의 명령 시 소년을 구금 후 소년의 감독기간에 붙일 것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비행소년으로 판명된 소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소년에 대한 감독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

(A) 1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년의 경우, 소년이 2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하는 기간

(B) 18세부터 21세까지의 소년의 경우, 선고된 공식적인 구금기간이 아닌 한 제5037조 제3항 (2) (A)조에서 규정된 구금기간의 최대를 초과하는 기간

(3) 제3563조 및 제3564조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련된 규정은 소년비행감독중인 소년을 구금하는 명령에 적용할 수 있다.

(4) 법원은 감독기간의 종료전 또는 감독기간 중 보호관찰의 조건의 최초의 지정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제3563조의 조건을 고려한 후 언제라도 소년비행감독 조건을 수정,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5) 소년이 감독기간의 종료 전 언제든지 소년비행감독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청문과 제18장 [1] 제994조에 따른 선고위원회(the Sentencing Commission)에 의해 공표된 관련 정책분장을 고려한 후 구금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소년비행감독의 취소에 따른 구금기간은 이전에 구금기간이 명해지지 아니하는 한 제5037조 제3항 (2) (A)과 (B)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5037조 제3항 (2) (A)과 (B)의 적용은 취소절차에 관한 준비 시 소년의 연령에 의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소년이 취소절차 시 21세를 초과하는 때에는 21세를 초과하는 소년의 처분은 성인으로써 선고를 받을 경우 A, B 또는 C급 중죄가 될 소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565조 제2항의 강제취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구금기간은 만 26세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경우에는 만 24세를 초과할 수 없다.

(6) 소년비행감독기간이 취소되고 소년을 구금하는 때에는 법원은 소년을 소년비행감독기간에 두는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최소절차 시 21세를 초과하는 소년에 대하여 최소에 따를 것을 명하는 소년비행감독 기간은 소년이 성인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A, B 또는 C급 중죄가 선고되는 소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037조 제4항 (1)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법원은 소년범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심리를 거친 후에 적정한 기관에 의한 관찰과 조사를 위하여 그를 법무장관하에 구금시킬 수 있다. 그러한 관찰과 조사는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입원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외래로 수행된다. 피의자인 소년에 있어서 입원조사는 당해 소년과 그의 변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명해질 수 있다. 기관은 그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에 대하여 그의 개인적 특성, 재능, 배경,

전과 또는 범죄경험, 정신적 신체적 결함, 그리고 그밖에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철저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법원이 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소년의 구금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소년과 정부의 변호인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38조 소년사건 기록의 사용

(1) 소년비행사건 절차의 진행과정동안 기록은 일반인에 대한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록은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까지만 공개되어야 한다.

(1) 다른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은 때

(2) 다른 법정에 사전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3) 정보에 대한 요청이 범죄에 대한 조사 또는 그 변호인의 입장과 관련있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4) 소년이 법원에 의해 구속된 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요청이 있는 때

(5)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려하는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

(6) 소년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제5037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그 소년의 최종처리와 관련되어 요청받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면 정보의 요구가 고용, 면허, 유대 또는 다른 시민적 권리나 특권과 관련하는 때에는 소년기록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년에 관한 사법권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는 사법기록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백하고 그리고 비기술적인 언어로 소년과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소년비행절차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직원 또는 그밖의 정부기관의 직원에 의해 공적의무로서 얻어지고 준비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은 판사, 청소년위원회, 정보 또는 본 조에 따라 소년기록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4) 소년에 의해, 성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통제물질에 관한 법(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제401조 또는 통제물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제1001조 제1항, 제1005조 또는 제1009조에 위험 또는 위반범죄인 중범죄가 되는 범죄가 발견되는 때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성인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는 제6항에 규정된 소년을 제외하고 소년에 대한 지문과 사진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성인으로 기소된 소년에 대한 지문과 사진은 성인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구속된 소년이 성인으로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비행절차와 관련하여 소년의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6) 소년이 두 개의 분리된 절차에서 성년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중대범죄가 되는 행위의 범죄, 또는 통제물질에 관한 법 제401조 또는 통제물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 제1001조 제1항, 제1005조 또는 제1009조에 규정된 위반이 되는 때 소년이 성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본 장 제5032조 네 번째 구절의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되는 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문제가 소년조정사건이라는 표시에 따라 이름과 판결일자, 법정, 범죄내용, 선고내용을 포함하는 판결문에 관한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전송하여야 한다.

### 제5039조 구금

법무장관하에 구금된 소년은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혐의로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수용된 성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성인교도소 또는 성인교도소에는 수용 내지 구금되지 아니한다.

구금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 · 난방 · 조광 · 위생시설 · 침구 의류 오락 상담 · 교육 · 훈련 그리고 필요한 정신병적 · 심리적인 또는 그밖에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법무장관은 소년을 고아원 또는 그의 주거가 있는 지역 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지역 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 제5040조 지원

법무장관은 그의 구금하에 있는 소년의 관찰과 조사, 구금과 보호를 위하여 공 · 사의 기관, 개인 그리고 지역 내의 숙소와 고아원 등의 지역 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장관은 필요한 규칙을 공포하고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 계정이나 그가 지정하는 그 밖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041조 (삭제)

### 제5042조 보호관찰의 취소

소년보호관찰관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취소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고지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1)]

## PART III—PRISONS AND PRISONERS

### CHAPTER 301—GENERAL PROVISIONS

**Section 4001 - Limitation on detention; control of prisons**

**(a)** No citizen shall be imprisoned or otherwise detained by the United States except pursuant to an Act of Congress.

**(b)**

(1)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except military or naval institutions, shall be vested in the Attorney General, who shall promulgate rules for the government thereof, and appoint all necessary offic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service laws, the Classification Act, as amended,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2)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and conduct industries, farms, and other activities and classify the inmates; and provide for their proper government, discipline, treatment, care, rehabilitation, and reformation.

**Section 4002 - Federal prisoners in State institutions;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itable quarters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with the proper authorities of any State,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and proper employment of such persons.

Such Federal prisoners shall be employed only in the manufacture of articles for, the production of supplie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for, and the maintenance and care of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in which they are imprisoned.

The rates to be paid for the care and custody of said person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 of the quarters furnished, sanitary conditions, and quality of subsistence and may be such as will permit and encourage the proper authorities to provide reasonably decent, sanitary, and healthful quarters and subsistence for such persons.

**Section 4003 - Federal institutions in States without appropriate facilities**

If by reason of the refusal or inability of the authorities having control of any jail, workhouse, penal, correctional, or other suitable institution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or proper employ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if there are no suitable or sufficient facilities available at reasonable cost, the Attorney General may

1) 출처 http://www law cornell edu/uscode/text(다운로드 2012년 10월 15일)
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II—PRISONS AND PRISONERS (SectionSection 4001–4353)
PART IV—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SectionSection 5001–5042)

select a site either within or convenient to the State, Territory, or judicial district concerned and cause to be erected thereon a house of detention, workhouse, jail, prison-industries project, or camp,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which shall be used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Act of Congress, and of such other persons as in the opinion of the Attorney General are proper subjects for confinement in such institutions.

**Section 4004 - Oaths and acknowledgments**

Th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associat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chief clerks, and record clerks, of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administer oaths to and take acknowledgments of officers, employees, and inmates of such institutions, but shall not demand or accept any fee or compensation therefor.

**Section 4005 - Medical relief; expenses**

**(a)** Upon request of the Attorney General an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ssisted Suicide Funding Restriction Act of 1997, the Federal Security Administrator shall detail regular and reserve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pharmacists, acting assistant surgeons, and other employee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and furnishing medical, psychiatric, and other 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to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b)** The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the personnel detailed under this section may be pai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uch appropriations to be reimburse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r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llotments of funds and transfer of credit to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such amounts as are available and necessary,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personnel so detail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ection 4006 - Subsistence for prisoners**

**(a) In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s applicable, shall allow and pay only the reasonable and actual cost of the subsistence of prisoners in the custody of any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and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of the marshals as will enable him to determine the actual and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1) In general.— Payment for costs incurred fo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for individuals in the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hall be the amount billed, not to exceed the amount that would be paid for the provision of similar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under the Medicare program under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2) Full and final payment.— Any payment for a health care item or service made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full and final payment.

**Section 4007 - Expenses of prisoners**

The expenses attendant upon the confinement of persons arrested or committ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upon the execution of any sentence of a court thereof respecting them, shall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Section 4008 - Transportation expenses**

Prisoners shall be transported by agents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reasonable expense of transportation, necessary subsistence, and hire and transportation of guards and agents shall be paid by the Attorney General from such appropriation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he shall direct.

Upon conviction by a consular court or court martial the prisoner shall be transported from the court to the place of confinement by agen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Army, Navy, or Air Force, as the case may be, the expense to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Section 4009 - Appropriations for sites and buildings**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leasing or acquiring a site, preparation of plans, and erection of necessary buildings under section 4003 of this title.

If in any instance it shall be impossible or impracticable to secure a proper site and erect the necessary buildings within the above limitation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options and making preliminary surveys or sketches.

Upon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ite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Congress an estimate of the cost of purchasing same and of remodeling, constructing, and equipping the necessary buildings thereon.

**Section 4010 - Acquisition of additional land**

The Attorney General may, when authorized by law, acquire land adjacent to or in the vicinity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f he considers the additional land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r safety of the inmates of the institution

**Section 4011 - Disposition of cash collections for meals, laundry, etc.**

Collections in cash for meals, laundry, barber service, uniform equipment, and other items for which payment is made originally from appropria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currently available for those items when the collection is made.

**Section 4012 - Summary seizure and forfeiture of prison contraband**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Bureau of Prisons may,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summarily seize any object introduced into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facility or possessed by an inmate of such a facility in violation of a rule, regulation or order promulgated by the Director, and such object shall be forfeited to the United States.

**Section 4013 -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a)** The Attorney General, i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is authorized to make payments from funds appropriated for Federal prisoner detention for—

(1) necessary clothing,

(2) medical care and necessary guard hire; and

(3) the housing, care, and security of persons held in custody of a United States marshal pursuant to Federal law under agreements with State or local units of government or contracts with private entities.

**(b)** The Attorney General, in support of Federal prisoner detainees in non-Federal institutions, is authorized to make payments, from funds appropriated for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ssistance, for entering into contracts or cooperative agreements with any State,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for the necessary construction, physical renovation, acquisition of equipment, supplies, or materials required to establish acceptable conditions of confinement and detention services in any State or local jurisdiction which agrees to provide guaranteed bed space for Federal detainees within that correctional syste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which are issu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are comparable to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section 4006 of this title, except that—

(1) amounts made available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the average per-inmate cost of constructing similar confinement facilities for the Federal prison population,

(2) the availability of such federally assisted facility shall be assured for housing Federal prisoners, and

(3) the per diem rate charged for housing such Federal prisoners shall not exceed allowable costs or other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ontract or cooperative agreement.

**(c)**

(1)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may designate districts that need additional support from private detention entities under subsection (a)(3) based on—

(A) the number of Federal detainees in the district; and

(B)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detention facilities.

(2) In order to be eligible for a contract for the housing, care, and security of persons held in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pursuant to Federal law and funding under subsection (a)(3), a private entity shall—

(A) be located in a district that has been designated as needing additional Federal detention fac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B) meet the standards of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C) comply with all applicable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D) have approved fire, security, escape, and riot plans; and

(E) comply with any other regulations that the Marshals Service deems appropriate.

(3)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a contract under subsection (a)(3).

**(d)** Health Care Fees For Federal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1) In general.— Notwithstanding amounts paid under subsection (a)(3), a State or local government may assess and collect a reasonable fee from the trust fund account (or institutional equivalent) of a Federal prisoner for health care services, if—

(A) the prisoner is confined in a non-Federal institution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 the fee—

(i) is authorized under State law; and

(ii) does not exceed the amount collected from State or local prisoners for the same services; and

(C) the services—

(i) are provided within or outside of the institution by a person who is licensed or certified under State law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and who is operating within the scope of such license;

(ii) constitute a health care visi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048(a)(4) of this title; and

(iii) are not preventative health care services, emergency services, prenatal care, diagnosis or treatment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s, mental health care,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2) No refusal of treatment for financial reasons.— Nothing in this subsection may be construed to permit any refusal of treatment to a prisoner on the basis that—

(A) the account of the prisoner is insolvent; or

(B) the prisoner is otherwise unable to pay a fee assessed under this subsection.

(3) Notice to prisoners of law.— Each person who is or becomes a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ubsection to the prison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ubsection,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such person—

(A)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such notices; and

(B)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4) Notice to prisoners of state or local implement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ubsection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ny amendment to that implement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at implementation (or amendment, as the case may be). A fee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a prisoner pursuant to such implementation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5) Notice before public comment period.— Before the beginning of any period a proposed implementation under this subsection is open to public comment, written and oral notice of the provisions of that proposed implementation shall be provided to groups that advocate on behalf of Federal prisoners and to each prisoner subject to such proposed implementation.

(6) Comprehensive hiv/aids services required.— Any State or local government assessing or collecting a fee under this subsection shall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services relating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to each Federal prisoner in the custody of such State or local government when medically appropriat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ubsection for providing such coverage.

**Section 4014 - Testing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 The Attorney General shall cause each individual convicted of a Federal offense who is sentenced to incarceration for a period of 6 months or more to be tested for the presence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s appropri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at incarceration, if such individual

is determined to be at risk for infection with such viru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relating to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b)** If the Attorney General has a well-founded reason to believe that a perso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for a Federal offense, or ordered detained before trial under section 3142(e), may hav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ransmitted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o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to any person lawfully present in a correctional facility who is not incarcerated there, the Attorney General shall—

(1) cause the person who may have transmitted the virus to be tested promptly for the presence of such virus and communicate the test results to the person tested; and

(2)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relating to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form any person (in, as appropriate, confidential consultation with the person's physician)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such virus, of the potential risk involved and, if warranted by the circumstances, that prophylactic or other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c)** If the results of a test under subsection (a) or (b) indicate the presence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vide appropriate access for counselling, health care, and support services to the affected officer, employee, or other person, and to the person tested.

**(d)** The results of a test under this section are inadmissible against the person tested in any Federal or State civil or criminal case or proceeding.

**(e)**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issue rules to implement this section. Such rules shall require that the results of any test are communicated only to the person tested, and, if the results of the test indicate the presence of the virus, to correctional facility personnel consistent with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Such rules shall also provide for procedures designed to protect the privacy of a person requesting that the test be performed and the privacy of the person tested.

## CHAPTER 303—BUREAU OF PRISONS

**Section 4041 - Bureau of Prisons; director and employees**

The Bureau of Prisons shall be in charge of a director appointed by and serving directly under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may appoint such additional officers and employees as he deems necessary.

**Section 4042 - Duties of Bureau of Prisons**

**(a) In General.**— The Bureau of Prison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1) have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all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2) provide suitable quarters and provide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held as witnesses or otherwise;

(3) provide for the protection, instruction, and disciplin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4)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improvement of their correctional systems,

(5) provide notice of release of prisoners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b) and (c);

(D) [1] establish prerelease planning procedures that help prisoners—

(i) apply for Federal and State benefits upon release (including Social Security Cards,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veterans' benefits), and

(ii) secure such identification and benefits prior to release,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 law; and

(E) [2] establish reentry planning procedures that include providing Federal prisoners with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areas:

(i) Health and nutrition.

(ii) Employment.

(iii) Literacy and education.

(iv) Personal finance and consumer skills.

(v) Community resources

(vi)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vii) Releas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b) Notice of Release of Prisoners.—**

(1) At least 5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a prisoner described in paragraph (3) is to be released on supervised release, or, in the case of a prisoner on supervised release, at least 5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prisoner changes residence to a new jurisdiction, written notice of the release or change of residence shall be provided to the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s of each State, tribal, and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risoner will reside. Notice prior to release shall be provided by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Notice concerning a change of residence following release shall be provided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released prisoner,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notice requirements under this subsection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prisoner being protected under chapter 224.

(2)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disclose—

(A) the prisoner's name;

(B) the prisoner's criminal history,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offense of which the prisoner was convicted; and

(C) any restrictions on conduct or other conditions to the release of the prisoner that are imposed by law, the sentencing court, or the Bureau of Prisons or any other Federal agency

(3) A prisoner i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if the prisoner was convicted of—

(A) a drug trafficking crime,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924(c)(2); or

(B) a crime of violence (as defined in section 924(c)(3)).

**(c) Notice of Sex Offender Release.—**

(1) In the case of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3), or any other person in a category specified by the Attorney General, who is released from prison or sentenced to probation, notice shall be provided to—

(A) the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 of each State, tribal, and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erson will reside; and

(B) a State, tribal, or local agency responsible for the receipt or maintenanc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information in the State, tribal, or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erson will reside. The notice requirements under this subsection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person being protected under chapter 224.

(2) Notice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b)(2), the place where the person will reside, and the information that the person shall register as required by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For a person who is released from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ose expected place of residence following release is known to the Bureau of Prisons, notice shall be provided at least 5 days prior to release by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For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probation, notice shall be provided promptly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person,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Notice concerning a subsequent change of residence by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3) during any period of probation, supervised release, or parole shall also be provided to the agencies and officers specified in paragraph (1)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person,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3)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shall inform a person who is released from prison and required to register unde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of the requirements of that Act as they apply to that person and the sam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a person sentenced to probation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supervision of that person.

[(4)Repealed. Pub. L. 109–248, title I, Section 141(h),July 27, 2006, 120 Stat. 604.]

(5) The United States and its agencies,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be immune from liability based on good faith conduct in carrying out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 (b).

**(d) Application of Sectio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military or nav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the persons confined therein.

**Section 4043 - Acceptance of gifts and bequests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s**

The Attorney General may accept gifts or bequests of money for credit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s". A gift or bequest under this section is a gift or bequest to or for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26 U.S.C. 1 et seq.).

**Section 4044 - Donations on behalf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Attorney General may, in accordance with rules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accept in the nam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y form of devise, bequest, gift or donation of money or property for use by the Bureau of Prisons or Federal Prison Industries. The Attorney General may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secure possession of such property and may sell, assign, transfer, or convey such property other than money.

**Section 4045 - Authority to conduct autopsies**

A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facility may, pursuant to rules prescribed by the Director, order an autopsy and related scientific or medical tests to be performed on the body of a deceased inmate of the facility in the event of homicide, suicide, fatal illness or accident, or unexplained death, when it is determined that such autopsy or test is necessary to detect a crime, maintain discipline, protect the

health or safety of other inmates, remedy official misconduct, or defend the United States or its employees from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 facilit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the autopsy or of specific scientific or medical tests, provisions of State and local law protecting religious beliefs with respect to such autopsies shall be observed. Such officer may also order an autopsy or post-mortem operation, including removal of tissue for transplanting, to be performed on the body of a deceased inmate of the facility, with the written consent of a person authorized to permit such an autopsy or post-mortem operation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facility is located.

**Section 4046 - Shock incarceration program**

**(a)** The Bureau of Prisons may place in a shock incarceration program any person who is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more than 12, but not more than 30, months, if such person consents to that placement.

**(b)** For such initial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as the Bureau of Prisons may determine, not to exceed 6 months, an inmate in the shock incarceration program shall be required to—

(1) adhere to a highly regimented schedule that provides the strict discipline, physical training, hard labor, drill, and ceremony characteristic of military basic training, and

(2) participate in appropriate job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literacy programs) and drug, alcohol, and other counseling programs.

**(c)** An inmate who in the judgment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period of shock incarceration shall remain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for such period (not to exceed the remainder of the prison term otherwise required by law to be served by that inmate),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he Bureau deems appropriate.

**Section 4047 - Prison impact assessments**

**(a)** Any submission of legislation by the Judicial or Executive branch which could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persons incarcerated in Federal penal institu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a prison impact statement (as defined in subsection (b))

**(b)** The Attorney General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prepare and furnish prison impact assessments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nd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Congress for information relating to a pending measure or matter that might affect the number of defendants processed through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A prison impact assessment on pending legislation must be supplied within 21 days of any request. A prison impact assessment shall include—

(1) projections of the impact on prison, probation, and post prison supervision populations;

(2) an estimate of the fiscal impact of such population changes on Federal expenditures, including those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and 5 succeeding fiscal years;

(3) an analysis of any other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cost of the measure and its impact on the operations of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4) a statement of the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utilized in preparing the assessment.

**(c)**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epare and transmit to the Congress, by March 1 of each year, a prison

impact assessment reflecting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relevant changes in the law taking effect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Section 4048 - Fees for health care services for prisoners**

**(a) Definitions.**— In this section—

(1) the term "account" means the trust fund account (or institutional equivalent) of a prisoner;

(2) the term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3) the term "health care provider" means any person who is—

(A) authorized by the Director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and

(B) operating within the scope of such authorization;

(4) the term "health care visit"—

(A) means a visit,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by a prisoner to an institutional or noninstitutional health care provider; and

(B) does not include a visit initiated by a prisoner—

(i) pursuant to a staff referral; or

(ii) to obtain staff-approved follow-up treatment for a chronic condition; and

(5) the term "prisoner" means—

(A) any individual who is incarcerated in an instit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ureau of Prisons; or

(B) any other individual, as designated by the Director, who has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b) Fees for Health Care Services.**—

(1) In general.—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with such regulations as the Director shall promulgate to carry out this section, may assess and collect a fee for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each health care visit requested by a prisoner.

(2) Exclusion.— The Director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ection for preventative health care services, emergency services prenatal care, diagnosis or treatment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s, mental health care,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c) Persons Subject to Fee.**— Each fee assess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llected by the Director from the account of—

(1) the prisoner receiving health car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 health care visit described in subsection (b)(1); or

(2) in the case of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a health care visit described in subsection (b)(1) that results from an injury inflicted on a prisoner by another prisoner, the prisoner who inflicted the injury,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d) Amount of Fee.**— Any fee assessed and collec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1.

**(e) No Consent Require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the consent of a prisoner shall not be required for the collection of a fee from the account of the prisoner under this section. However, each such prisoner shall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dispute the amount of the fee or whether the

prisoner qualifies under an exclusion under this section.

**(f) No Refusal of Treatment For Financial Reasons.**— Nothing in this section may be construed to permit any refusal of treatment to a prisoner on the basis that—

(1) the account of the prisoner is insolvent; or

(2) the prisoner is otherwise unable to pay a fee assessed under this section.

**(g) Use of Amounts.**—

(1) Restitution of specific victims.— Amounts collected by the Director under this section from a prisoner subject to an order of restitution issued pursuant to section 3663 or 3663A shall be paid to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restitution.

(2) Allocation of other amounts.— Of amounts collected by the Director under this section from prisoners not subject to an order of restitution issued pursuant to section 3663 or 3663A—

(A) 75 perc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Crime Victims Fund established under section 1402 of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42 U.S.C. 10601); and

(B) 25 percent shall be available to the Attorney General for administrative expenses incurred in carrying out this section.

**(h) Notice to Prisoners of Law.**— Each person who is or becomes a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ection to the prison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such person—

(1)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such notices; and

(2)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i)** Notice to Prisoners of Regulations.— The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Director under subsection (b)(1), and any amendments to those regulations,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ose regulations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a prisoner pursuant to such regulations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j)** Notice Before Public Comment Period.— Before the beginning of any period a proposed regulation under this section is open to public comment, the Director shall provide written and oral notice of the provisions of that proposed regulation to groups that advocate on behalf of Federal prisoners and to each prisoner subject to such proposed regulation.

**(k)** Reports to Congress.—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Prisoner Health Care Copayment Act of 2000, and annually thereafter, the Director shall transmit to Congress a report, which shall include—

(1) a description of the amounts collected under this section during the preceding 12-month period;

(2)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if any, on the nature and extent of heath care visits by prisoners,

(3) an itemization of the cost of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the program;

(4) a description of current inmate health status indicators as compared to the year prior to enactment, and

(5) a description of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to inmates during the preceding 12-month period, as compared with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such Act

(l) Comprehensive HIV/AIDS Services Required.— The Bureau of Prisons shall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services relating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to each Federal prisoner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en medically appropriate. The Bureau of Prisons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ection for providing such coverage.

## CHAPTER 305—COMMITMENT AND TRANSFER

**Section 4081 -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all be so planned and limited in size a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ystem which will assure the proper classification and segregation of Federal prisone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enses committed, the character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s, and such other factors as should be considered in providing an individualized system of discipline, care, and treatment of the persons committed to such institutions.

**Section 4082 - Commitment to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extension of limits of confinement; work furlough**

**(a)** The willful failure of a prisoner to remain within the extended limits of his confinement, or to return within the time prescribed to an institution or facility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hall be deemed an escape from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nishable as provided in chapter 35 of this title.

**(b)**

(1) The Attorney General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any law enforcement agency of a State or of a unit of local government in a State, make availabl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o such agency, with respect to prisoners who have been convicted of felony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who are confined at a facility which is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located in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such agency has jurisdic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Bureau of Prisons (to the extent that the Bureau of Prisons maintains such information)—

(A) the names of such prisoners;

(B) the community treatment center addresses of such prisoners;

(C) the dates of birth of such prisoners;

(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umbers assigned to such prisoners,

(E) photographs and fingerprints of such prisoners, and

(F) the nature of the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which each such prisoner has been convicted and the factual circumstances relating to such offenses.

(2) Any law enforcement agency which receives information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disseminate

such information outside of such agency

(c)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facility" shall include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and the term "relative" shall mean a spouse, child (including stepchild, adopted child or child as to whom the prisoner,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parent (including a person who,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brother, or sister.

**Section 4083 - Penitentiary imprisonment; consent**

Persons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by courts-martial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may be confined in any United States penitentiary.

A sentence for an offens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ess shall not be served in a penitentiar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SectionSection 4084, 4085. Repealed.]

Section 4084, act June 25, 1948, ch. 645, 62 Stat 850, related to delivery of prisoner with copy of commitment.

Section 4085, act June 25, 1948, ch. 645, 62 Stat. 850, related to authority, expense, etc., respecting transfer of Federal prisoner for State offense.

**Section 4086 - Temporary safe-keeping of federal offenders by marshals**

United States marshals shall provide for the safe-keeping of any person arrested, or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pending commitment to an institution.

## CHAPTER 306—TRANSFER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Section 4100 - Scope and limitation of chapter**

**(a)**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relating to the transfer of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only when a treaty providing for such a transfer is in force, and shall only be applicable to transfers of offenders to and from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uch a treaty.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ntry upon an offender who i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 treaty shall be subject to being fully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treaty under which the offender was transferred is no longer in force.

**(b)**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is chapter only to a country of which the offender is a citizen or national. Only an offender who is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may b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only with the offender's consent, and only if the offense for which the offender was sentenced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double criminality as defined in this chapter. Once an offender's consent to transfer has been verified by a verifying officer, that consent shall be irrevocable. If at the time of transfer the offender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is deemed by the verifying officer to be mentally incompetent or otherwise incapable of knowingly and voluntarily consenting to the transfer, the transfer shall not be accomplished unless consent to the transfer be given by a parent or guardian, guardian ad litem, or by an appropriate court of the sentencing country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ad litem shall be independent of the appointment of counsel under section 4109 of this title.

**(c)** An offender shall not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if a proceeding by way of appeal or of collateral attack upon the conviction or sentence be pending.

**(d)** The United States upon receiving notice from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has been granted a pardon, commutation, or amnesty, or that there has been an ameliorating modification or a revocation of the sentence shall give the offender the benefit of the action taken by the sentencing country.

**Section 4101 -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a)** "double criminality" means that at the time of transfer of an offender the offense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still an offense in the transferring country and is also an offense in the receiving country. With regard to a country which has a federal form of government, an act shall be deemed to be an offense in that country if it is an offense under the federal laws or the laws of any state or province thereof;

**(b)** "imprisonment" means a penalty imposed by a court under which the individual is confined to an institution,

**(c)** "juvenile" means—

(1) a person who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2)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position under chapter 403 of this title because of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 person who is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d)** "juvenile delinquency" means—

(1) a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thereof or of a foreign country committed by a juvenile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or

(2) noncriminal acts committed by a juvenile for which supervision or treatment by juvenile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thereof, or of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is authorized;

**(e)** "offender" means a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se or who has been adjud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f)** "parole" means any form of release of an offender from imprisonment to the community by a releasing authority prior to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subject to conditions imposed by the releasing authority and to its supervision, including a term of supervised release pursuant to section 3583;

**(g)** "probation" means any form of a sentence under which the offender is permitted to remain at liberty under supervision and subject to conditions for the breach of which a penalty of imprisonment may be ordered executed;

**(h)** "sentence" means not only the penalty imposed but also the judgment of conviction in a criminal case or a judgment of acquittal in the same proceeding, or the adjudication of delinquency in a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or dismissal of allegations of delinquency in the same proceedings,

**(i)**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j)** "transfer" means a transfer of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in one country of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another country, and

**(k)** "treaty" means a treaty under which an offender sentenced in the courts of one country may be

transferred to the country of which he is a citizen or national for the purpose of serving the sentence.

**Section 4102 -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1) to ac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s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a treaty;

(2) to receive custody of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transferr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as appropriate confine them in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assign them to the parole or probation authorities for supervision;

(3) to transfer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4) to make regulations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to make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chapter;

(5) to render to foreign countries and to receive from them the certifications and reports required to be made under such treaties,

(6) to make arrangements by agreement with the States for the transfer of offenders in their custody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foreign countries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and for the confinement, where appropriate, in State institutions of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7) to make agreements and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offenders convicted in a foreign country who are being transported to a third country for the execution of their sentences,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requesting the transportation;

(8) to make agre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juveniles who are transferred pursuant to treaty,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the juvenile is a citizen or national;

(9) in concert with the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 make arrang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individuals who are accused of an offense but who have been determined to be mentally ill;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such person is a citizen or national;

(10) to designate agents to receiv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he delivery by a foreign government of any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being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serving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the foreign country, and to convey him to the place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uch ag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of a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veral districts through which it may be necessary for him to pass with the offender, so far as such power is requisite for the offender's transfer and safekeep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such agent shall have such powers as the authorities of the foreign country may accord him;

(11) to delegate the authority conferred by this chapter to officer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Section 4103 - Applicability of United States laws**

All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appropriate, pertaining to prisoners, probationers, parolees, and juvenile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to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unless a treaty or this chapter provides otherwise

**Section 4104 - Transfer of offenders on probation**

**(a)**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termine that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is willing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of the offender.

**(b)**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on prob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cause the offender to be brought befor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hich is to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offender.

**(c)** The court shall place the offender under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of the court. The offender shall be supervised by a probation officer, under such conditions as are deemed appropriate by the court as though probation had been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The probation may be revok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565 of this title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A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f probation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revocation. If probation is revoked the suspended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shall be executed.

**(e)** The provisions of sections 4105 and 4106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following a revocation of probation.

**(f)**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obtain the assent of the court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probationer.

**Section 4105 - Transfer of offenders serving sentence of imprisonment**

**(a)**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in this section,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a foreign country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main in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an offender who had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eriod of tim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b)**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given credit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for any days,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spent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offense or acts for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c)**

(1)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entitled to all credits for good time, for labor, or any other credit toward the service of the sentence which had been given by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time served as of the time of the transfer. Subsequent to the transfer, the offender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to credits toward service of sentence for satisfactory behavior,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time remaining to be served at the time of the transfer and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for a sentence of the length of the total sentence imposed and certified by the foreign authorities. These credits shall be combined to provide a release date for the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3624(a) of this title.

(2) If the country from which the offender is transferred does not give credit for good time, the basis of computing the deduction from the sentence shall b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and

certified to be served upon transfer,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3) Credit toward service of sentence may be withheld as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4) Any sentence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imposed while the transferred offender is serving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aggregated with the foreign sentence, in the same manner as if the foreign sentence was one impos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Section 4106 - Transfer of offenders on parole; parole of offenders transferred**

**(a)**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who is on parole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assign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for supervision.

**(b)**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same powers and duties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who at the time of transfer is on parole as they have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convicted i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or in the pertinent treaty. Sections 4201 through 4204; 4205(d), (e), and (h); 4206 through 4215; and 4218 [1]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c)**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may be released on parole at such time as the Parole Commission may determine.

**(d)** This section shall apply only to offenses committed before November 1, 1987, and the Parole Commission's performance of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section 235 of the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Section 4106A - Transfer of offenders on parole; parole of offenders transferred**

**(a)**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who is on parole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assign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for supervision.

**(b)**

(1)

(A)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shall, without unnecessary delay, determine a release date and a period and conditions of supervised release for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as though the offender were convicted in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f a similar offense.

(B) In making such determination,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shall consider—

(i) any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bation Service, including any recommendation as to the applicable guideline range; and

(ii) any documents provided by the transferring country;

relating to that offender.

(C) The combined periods of imprisonment and supervised release that result from such determination shall not exceed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foreign court on that offender

(D) The duties conferred on a United States probation officer with respect to a defendant by section 3552 of this title shall, with respect to an offender so transferred, be carried out by the United States

Probation Service.

(2)

(A) A determination by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appealed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circuit in which the offender is imprisoned at the time of the determination of such Commission Notice of appeal must be filed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of such determination.

(B) The court of appeals shall decide and dispose of the appeal in accordance with section 3742 of this title as though the determination appealed had been a sentence impos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3) During the supervised release of an offender under this subsectio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offender resides shall supervise the offender.

**(c)** This section shall apply only to offenses committed on or after November 1, 1987.

**Section 4107 -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from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a judge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appropriat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may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such courts,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untry to which he is to be transferred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court in the country to which he is transferred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at country, he may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e United States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Section 4108 -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in the country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by a citizen specifically designated by a judge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The designation of a citizen who is an employee or officer of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at department or agency.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country in which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can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that country;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United States court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e returned to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at country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Section 4109 - Right to counsel, appointment of counsel**

**(a)** In proceedings to verify consent of an offender for transfer, the offender shall have the right to advice of counsel. If the offender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counsel—

(1)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7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006A of this title Such appointment shall be considered an appointment in a misdemeanor case for purposes of compensation under the Act; [1]

(2)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8 shall be appointed by the verifying officer pursuant to such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ke payments of fees and expenses of the appointed counsel, in amounts approved by the verifying officer, which shall not exceed the amounts authorized under section 3006A of this title for representation in a misdemeanor case. Payment in

excess of the maximum amount authorized may be made for extended or complex representation whenever the verifying officer certifies that the amount of the excess payment is necessary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and the payment is approved by the chief judge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ppropriate circuit. Counsel from other agencies in any branch of the Government may be appointe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ay counsel directly, or reimburse the employing agency for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Notwithstanding section 3324(a) and (b) of title 31, the Secretary may make advance payments of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to counsel appointed under this subsection.

**(b)** Guardians ad litem appointed by the verifying officer under section 4100 of this title to represent offenders who are financially unable to provide for compensation and travel expenses of the guardian ad litem shall be compensated and reimbursed under subsection (a)(1) of this section.

**(c)** The offender shall have the right to advice of counsel in proceed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under section 4106A of this title and in an appeal from a determination of such Commission under such section. If the offender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counsel, counsel for such proceedings and appeal shall be appointed under section 3006A of this title.

**Section 4110 - Transfer of juveniles**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an act which would have been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had it been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403 of this tit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relevant treaty or in an agreement pursuant to such treaty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authority of the foreign country.

**Section 4111 - Prosecution barred by foreign convic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tried, or sentenc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for any offense the prosecution of which would have been barred if the sentenc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by a court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or if prosecution would have been barred by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if the sentence 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issued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by a court of another State.

**Section 4112 - Loss of rights, disqualifica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rt shall not incur any loss of civil, political, or civic rights nor incur any disqualification other than those which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State in which the issue arises would result from the fact of the conviction in the foreign country.

**Section 4113 - Status of alien offender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a)** An alien who is deportable from the United States but who has been granted voluntary departure pursuant to section 24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nd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voluntarily departed from this country.

**(b)** An alien who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section 24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been removed from this country.

**(c)** An alien who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section 24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ho is transferred to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deemed for all purposes to have been excluded from admission and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Section 4114 - Return of transferred offenders**

**(a)** Upon a final decision by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transfer of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rdering the offender released from serving the sent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offender may be returned to the country from which he was transferred to complete the sentence if the country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requests his return.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within ten days, of a final decision of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dering the offender released. The notification shall specify the time within which the sentencing country must request the return of the offender which shall be no longer than thirty days.

**(b)** Upon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sentencing country that the offender ordered released be returned for the completion of his sentence, the Attorney General may file a complaint for the return of the offender with any justice or judge of the United States or any authorized magistrate judge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 offender is found. The complaint shall be upon oath and supported by affidavits establishing that the offender was convicted and sentenced by the courts of the country to which his return is requested; the offender wa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execution of his sentence; the offender was ordered released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before he had completed his sentence because the transfer of the offender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sentencing country has requested that he be returned for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There shall be attached to the complaint a copy of the sentence of the sentencing court and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which ordered the offender released.

A summons or a warrant shall be issued by the justice, judge or magistrate judge ordering the offender to appear or to be brought before the issuing authority If the justice, judge, or magistrate judge finds that the person before him is the offender described in the complaint and that the facts alleged in the complaint are true, he shall issue a warrant for commitment of the offender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til surrender shall be made. The findings and a copy of all the testimony taken before him and of all documents introduced before him shall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a Return Warrant may issue upon the requisition of the proper authorities of the sentencing country, for the surrender of offender.

**(c)** A complaint referred to in subsection (b) must be filed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ordering the release of the offender becomes final.

**(d)** An offender return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to which he is returned for all purposes.

**(e)** The return of an offender shall be conditioned upon the offender being given credit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for the time spent in the custody of o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States.

**(f)** Sections 3186, 3188 through 3191, and 3195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to the return of an offender under this section However, an offender returned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extradited for any purpose.

**(g)** An offender whose return is sought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be admitted to bail or be released on his own recognizance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Section 4115 - Execution of sentences imposing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or reparations**

If in a sentence issued in a penal proceeding of a transferring country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ordered to pay a sum of money to the victim of the offense for damage caused by the offense, that penalty or award of damages may be enforced as though it were a civil judgment render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Proceedings to collect the moneys ordered to be paid may be instituted by the Attorney General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Moneys recovered pursuant to such proceedings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treaty authority of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distribution to the victim.

## CHAPTER 307—EMPLOYMENT

**Section 4121 - Federal Prison Industries; board of directors**

"Federal Prison Industries", a government corpor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administered by a board of six directo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serve at the will of the President without compensation.

The directors shall be representatives of

(1) industry,

(2) labor,

(3) agriculture,

(4) retailers and consumers,

(5)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6) the Attorney General, respectively.

**Section 4122 - Administration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a)**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determine in what manner and to what extent industrial operations shall be carried on in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for consumption in such institutions or for sale to the departments or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for sale to the public in competition with private enterprise.

**(b)**

(1) Its board of directors shall provide employment for the greatest number of those inmates in the United States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who are eligible to work as is reasonably possible, diversify, so far as practicable, prison industrial operations and so operate the prison shops that no single private industry shall be forced to bear an undue burden of competition from the products of the prison workshops, and to reduce to a minimum competition with private industry or free labor.

(2)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conduct its operations so as to produce products on an economic basis, but shall avoid capturing more than a reasonable share of the market among Federal departments, agencies, and institutions for any specific product.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concentrate on providing to the Federal Government only those products which permit employment of the greatest

number of those inmates who are eligible to work as is reasonably possible.

(3)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diversify its products so that its sales are distributed among its industries as broadly as possible.

(4) Any decision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produce a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shall b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makes a final decision, the corporation shall do the following:

(A) The corporation shall prepare a detailed written analysis of the probable impact on industry and free labor of the plans for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In such written analysis the corporation shall, at a minimum, identify and consider—

(i) the number of vendors currentl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product;

(ii) the propor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market for the product currently served by small businesses, 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 or businesses operating in labor surplus areas;

(iii) the siz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non-Federal Government markets for the product;

(iv) the projected growth in the Federal Government demand for the product; and

(v) the projected a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market to sustain both Federal Prison Industries and private vendors

(B) The corporation shall announce in a publication designed to most effectively provide notice to potentially affected private vendors the plans to produce any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The announcement shall also indicate that the analysis prepared under subparagraph (A) is available through the corporation and shall invite comments from private industry regarding the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C) The corporation shall directly advise those affected trade associations that the corporation can reasonably identify the plans for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and the corporation shall invite such trade associations to submit comments on those plans

(D) The corporation shall provide to the board of directors—

(i) the analysis prepared under subparagraph (A) on the proposal to produce a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ii) comments submitted to the corporation on the proposal, and

(iii) the corporation's recommendations for action on the proposal in light of such comments.

In addition,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under this paragraph on a proposal, shall, upon the request of an established trade association or other interested representatives of private industry,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ch trade association or other representatives to present comments directly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proposal.

(5)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in the manner specified in paragraph (4)(B) the final decision of the board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of a new product or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6)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after the end of each 6-month period, a list of sales by the corporation for that 6-month period. Such list shall be made available to all interested parties.

**(c)** Its board of directors may provide for the vocational training of qualified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d)**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employ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victed by general courts-martial and confined in any instit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department or agency compris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Any department or agency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e)**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employ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fined in any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Commissioner,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the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e)(1) of this section.

(3)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Act approved October 3, 1964 (D C. Code, sections 24–451 et seq.), entitled "An Act to establish in the Treasury a correctional industries fund for the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for other purposes."

**Section 4123 - New industries**

Any industry establish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so operated as not to curtail the production of any existing arsenal, navy yard, or other Government workshop.

Such forms of employment shall be provided as will give the inmates of all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a maximum opportunity to acquire a knowledge and skill in trades and occupations which will provide them with a means of earning a livelihood upon release.

The industries may be either within the precincts of any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or in any convenient locality where an existing property may be obtained by lease, purchase, or otherwise.

**Section 4124 - Purchase of prison-made products by Federal departments**

**(a)** The several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all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purchase at not to exceed current market prices, such products of the industries authorized by this chapter as meet their requirements and may be available.

**(b)** Disputes as to the price, quality, character, or suitability of such products shall be arbitrated by a board consisting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and the President, or their representatives. Their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c)** Each Federal department, agency, and institu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shall separately report acquisitions of products and services from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as referred to in section 1122(a)(4) of title 41) in the same manner as it reports other acquisitions. Each report published by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System shall include a statement to accompany the information reported by the department, agency, or institu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as follows. "Under current law, sales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are considered intragovernmental transfers. The purpose of reporting sales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is to provide a complete overview of acquisitions by 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d)**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a catalog of all products and services which it offers for sale. This catalog shall be updated periodical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n the catalog is complete and accurate.

**Section 4125 - Public works; prison camps**

**(a)**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vailable to the heads of the several departments the services of United States prisoners under terms, conditions, and rates mutually agreed upon, for constructing or repairing roads, clearing, maintaining and reforesting public lands, building levees, and constructing or repairing any other public ways or works financed wholly or in major part by funds appropriated by Congress.

**(b)**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equip, and maintain camps upon sites selected by him elsewhere than upon Indian reservations, and designate such camps as places for confinement of persons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c)** The expenses of transferring and maintaining prisoners at such camps and of operating such camps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which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be reimbursed for such expenses.

**(d)** As part of the expense of operating such camps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the payment to the inmates or their dependents such pecuniary earnings as he may deem proper,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e)** All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the imprisonment, transfer, control, discipline, escape, release of, or in any way affecting prisoners, shall apply to prisoners transferred to such camps.

**Section 4126 - Prison Industries Fund; use and settlement of accounts**

**(a)** All moneys under the control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or received from the sale of the products or by-products of such Industries, or for the services of federal prisoners, shall be deposited or covered in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redit of the Prison Industries Fund and withdrawn therefrom only pursuant to accountable warrants or certificates of settlement issued b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b)** All valid claims and obligations payable out of said fund shall be assumed by the corporation.

**(c)** Th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enerally applicable to the expenditures of the several departments, agencies, and establishments of the Government, is authorized to employ the fund, and any earnings that may accrue to the corporation—

(1) as operating capital in performing the duties imposed by this chapter;

(2) in the lease, purchase, other acquisition, repair, alteration, erection, and maintenance of industrial

buildings and equipment;

(3) in the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4) in paying,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compensation to inmates employed in any industry, or performing outstanding services in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compensation to inmates or their dependents for injuries suffered in any industry or in any work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maintenance or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inmates are confined.

In no event may compensation for such injuries be paid in an amount greater than that provided in chapter 81 of title 5.

**(d)** Accounts of all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rendered to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for settlement and adjustment, as required by the Comptroller General.

**(e)** Such accounting shall include all fiscal transactions of the corporation, whether involving appropriated moneys, capital, or receipts from other sources.

**(f)** Funds available to the corporation may be used for the lease, purchase, other acquisition, repair, alteration, erection, or maintenance of facilities only to the extent such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operations of the corporation under this chapter Such funds may not be used for the construction or acquisition of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camps described in section 4125.

**Section 4127 - Prison Industries report to Congress**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during each fiscal year, and on the condition of its funds during such fiscal year. Such report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amount of obligations issued under section 4129(a)(1) during such fiscal year, and an estimate of the amount of obligations that will be so issued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Section 4128 - Enforcement by Attorney General**

In the event of any failure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act,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be limited in carrying out the duties conferred upon him by law.

**Section 4129 - Authority to borrow and invest**

**(a)**

(1) A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such extent and in such amounts as are provided in appropriations Acts, is authorized to issue its obligations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may purchase or agree to purchase any such obligations, except that the aggregate amount of obligations issued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under this paragraph that are outstanding at any time may not exceed 25 percent of the net worth of the corporation. For purchases of such obligation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use as a public debt transaction the proceeds of the sale of any securities issued under chapter 31 of title 31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ection, and the purposes for which securities may be issued under that chapter are extended to include such purchases Each purchase of obligation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o yield a return at a rate not less than a rat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average yield on outstanding marketab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comparable maturity. For

purposes of the first sentence of this paragraph, the net worth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is the amount by which its assets (including capital) exceed its liabilities

(2)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sell,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at such price or prices as the Secretary shall determine, any of the obligations acquir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subsection. All purchases and sale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f such obligation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treated as public debt transactions of the United States.

**(b)** Federal Prison Industries may reques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invest excess moneys from the Prison Industries Fund. Such investments shall be in public debt securities with maturities suitable to the needs of the corporation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bearing interest at rate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current market yields on outstanding marketab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comparable maturities.

**[CHAPTER 309—REPEALED]** (Section 4161_to_4166)

**[CHAPTER 311—REPEALED]** (Section 4201_to_4218)

## CHAPTER 313—OFFENDERS WITH MENTAL DISEASE OR DEFECT

**Section 4241 - Determination of mental competency to stand trial to undergo postrelease proceedings 1**

**(a) Motion To Determine Competency of Defendant.**—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a prosecution for an offense and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or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probation or supervised release and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the defendant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file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the mental competency of the defendant.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1) for such a reasonable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four months, a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proceedings to go forward; and

(2) for an additional reasonable period of time until—

(A) his mental condition is so improved that trial may proceed,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within such additional period of tim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proceedings to go forward; or

(B) the pending charges against him are disposed of according to law;

whichever is earlier.

If, at the end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t i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mental condition has not so improved as to permit the proceedings to go forward,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4246 and 4248.

**(e)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the competency of the defendant.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order his immediate discharge from the facility in which he is hospitalized and shall set the date for trial or other proceedings. Upon discharge,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s 207 and 227.

**(f) Admissibility of Finding of Competency.**— A finding by the court that the defendant is mentally competent to stand trial shall not prejudice the defendant in raising the issue of his insanity as a defense to the offense charged, and shall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a trial for the offense charged.

**Section 4242 -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a) Motion for Pretri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Upon the filing of a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defendant intends to rely on the defense of insanity, the court, upon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b) Special Verdict.**— If the issue of insanity is raised by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n motion of the defendant or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the court's own motion, the jury shall be instructed to find, or, in the event of a nonjury trial, the court shall find the defendant—

(1) guilty;

(2) not guilty, or

(3)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Section 4243 - Hospitalization of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 Determination of Present Mental Condition of Acquitted Person.**— If a person is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he shall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until such time as he is eligible for release pursuant to subsection (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the cour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A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and shall take place not later than forty days following the special verdict.

**(d) Burden of Proof.**— In a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of an offense involving bodily injury to, or serious damage to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or involving a substantial risk of such injury or damage, has the burden of proving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his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With respect to any other offense, the person has the burden of such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e)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ails to find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that the person's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f)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n acquitted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e)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acquitted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g)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n acquitted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f)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 Limitations on Furloughs.**— An individual who is hospitalized under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after being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of an offense for which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creates a burden of proof of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may leave temporarily the premises of the facility in which that individual is hospitalized only—

(1)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tting court, upon notice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such individual, and after opportunity for a hearing;

(2) in an emergency; or

(3) when accompanied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is title).

**(i) Certain Persons Found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1) Transfer to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Notwithstanding section 301(h)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ode, and notwithstanding subsection 4247(j) of this title, all persons who have been committed to a hospital for the mentally ill pursuant to section 301(d)(1)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ode, and for whom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ing financial responsibility, may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who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2) Application.—

(A) In general —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custody over such persons by filing an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demonstrating that the person to be transferred is a person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B) Notice.— The Attorney General shall, by any means reasonably designed to do so, provide written notice of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to such person or such person's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other lawful agent. The person to be transferred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not to exceed 15 days, to respond to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and may, at the court's discretion, be afforded a hearing on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Such hearing, if granted, shall be limited to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such person would be violated by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C) Order — Upon applic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e court shall order the person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less, pursuant to a hearing under this paragraph, the court finds that the proposed transfer would violate a right of such person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D) Effec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i) create in any person a liberty interest in being granted a hearing or notice on any matter;

(ii) create in favor of any person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iii) limit in any manner or degree the a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to move, transfer, or otherwise manage any perso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3) Construction with other sections.— Subsections (f) and (g) andsection 4247 shall apply to any person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ection 4244 - Hospitalization of a convict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Convicted Defendant.**— A defendant found guilty of an offense,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within ten days after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and prior to the time the defendant is sentenced, file a motion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if the motion is supported by substantial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at any time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c), if the report includes an opinion by the examiners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but that it is not such as to require his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report shall also include an opinion by the examiner concerning the sentencing alternatives that could best accord the defendant the kind of treatment he does need.

**(c)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nd that he should, in lieu of being sentenced to imprisonment,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Such a commitment constitutes a provisional sentence of imprisonment to the maximum term authorized by law for the offense for which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e)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provisional sentence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 (d)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proceed finally to sentencing and may modify the provisional sentence.

**Section 4245 - Hospitalization of an imprison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Imprisoned Person.**— If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bjects either in writing or through his attorney to being transferr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imprisoned, may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facility is located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A mo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transfer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 may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he is no longer in need of such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o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hichever occurs earlier.

**(e)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pon the person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order that the person be reimprisoned until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Section 4246 - Hospitalization of a person due for release but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Institution of Proceeding.**—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certifies that a person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ose sentence is about to expire, or who has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section 4241(d), or against whom all crimina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solely for reasons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nd that suitable arrangements for State custody and care of the person are not available, he shall transmit the certificate to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is confined.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if the person was committed pursuant to section 4241(d), to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ourt shall orde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 certificate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release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e)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f)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e)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g) Release to State of Certain Other Persons.**—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this chapter certifies to the Attorney General that a person, against whom al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for reasons not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 of State proceedings for civil commitment. If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upon receipt of notice from the State that it will not assume such responsibility, but not later than ten days after cer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h) Definition.**—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Section 4247 - General provisions for chapter**

**(a)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1) "rehabilitation program" includes—

(A) basic edu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understanding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and that will assist him in understanding the magnitude of his offense and its impact on society;

(B) vo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contributing to, and in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C) drug, alcohol, an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and other treatment programs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overcoming a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 or any condition that makes the individual dangerous to others; and

(D) organized physical sports and recreation programs;

(2) "suitable facility" means a facility that is suitable to provide care or treatment given the nature of the off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3)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4) "bodily injury" includes sexual abuse;

(5) "sexually dangerous person" means a person who has engaged or attempted to engage in sexually violent conduct or child molestation and who is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and

(6)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with respect [1] a person, means that the person suffers from a serious mental illness, abnormality, or disorder as a result of which he would have serious difficulty in refraining from sexually violent conduct or child molestation if released.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conducted by a licensed or certified psychiatrist or psychologist, or,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by more than one such examiner. Each examiner shall be designated by the court, except that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5, 4246, or 4248,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an additional examiner may be selected b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s of an examination pursuant to an order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the court may commit the person to be examined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and under section 4242, 4243, 4246, or 4248,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forty-five days,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place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less impracticable,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suitable facility closest to the court.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may apply for a reasonable extension, but not to exceed fifteen days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and not to exceed thirty days under section 4242, 4243, 4246, or 4248,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that the additional time is necessary to

observe and evaluate the defendant.

**(c)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s.**—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prepared by the examiner designated to conduct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with copies provided to the counsel for the person examin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shall include—

(1) the person's history and present symptoms;

(2) a description of the psychiatric, psychological, and medical tests that were employed and their results;

(3) the examiner's findings; and

(4) the examiner's opinions as to diagnosis, prognosis, and—

(A)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1,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2, whether the person was insane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C)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3 or 4246,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D)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8, whether the person is a sexually dangerous person;

(E)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4 or 4245,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or

(F)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as a part of a presentence investigation, any recommendation the examiner may have as to how the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should affect the sentence.

**(d) Hearing.**— At a hearing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the person whose mental condition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hall be represented by counsel and, if he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counsel shall be appointed for him pursuant to section 3006A. The person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to testify, to present evidence, to subpoena witnesses on his behalf, and to confront and cross-examine witnesses who appear at the hearing.

**(e) Periodic Report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1)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committed pursuant to—

(A) section 4241 shall prepare semiannual reports; or

(B) section 4243, 4244, 4245, 4246, or 4248 shall prepare annual reports concerning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and containing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need for his continued commitment.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that ordered the person's commitment to the facility and copies of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such other persons as the court may direct. A copy of each such report concerning a person committed after the beginning of a prosecution of that person for violation of section 871, 879, or 1751 of this title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Except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court, the Secret Service shall not use or disclose the information in these copies for any purpose other than carrying out protective duties under section 3056(a) of this title.

(2)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committed pursuant to section 4241, 4243, 4244, 4245, 4246, or 4248 shall inform such person of any rehabilitation programs that are available for persons committed in that facility.

**(f) Videotape Record.**— Upon written request of defense counsel, the court may order a videotape record made of the defendant's testimony or interview upon which the periodic report is based pursuant to subsection (e). Such videotape record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along with the periodic report.

**(g) Habeas Corpus Unimpaired.**— Nothing contained in section 4243, 4246, or 4248 precludes a person who is committed under either of such sections from establishing by writ of habeas corpus the illegality of his detention.

**(h) Discharge.**— Regardless of whether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committed has filed a certific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e) ofsection 4241, 4244, 4245, 4246, or 4248, or subsection (f) ofsection 4243, counsel for the person or his legal guardian may, at any time during such person's commitment, file with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discharged from such facility, but no such motion may be fi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f a court 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should continue to be committed. A copy of the motion shall be sent to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committ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A) may contract with a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ity, or a private agency for the confinement, hospitalization, care, or treatment of,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this chapter;

(B) may apply for the civil commitment, pursuant to State law, of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section 4243, 4246, or 4248;

(C) shall, before placing a person in a facil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1, 4243, 4244, 4245, 4246, or 4248, consider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y's rehabilitation programs in meeting the needs of the person; and

(D) shall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the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acilities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j)** Sections 4241, 4242, 4243, and 4244 do not apply to a prosecution under an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or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Section 4248 - Civil commitment of a sexually dangerous person**

**(a) Institution of Proceedings.**— 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or who has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section 4241(d), or against whom all crimina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solely for reasons relating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the Attorney General or any individual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may certify that the person is a sexually dangerous person, and transmit the certificate to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is confined.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if the person was committed pursuant to section 4241(d), to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ourt shall orde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is a sexually dangerous person. A certificate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release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erson is a sexually dangerous person,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plac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condition is such that he is no longer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or will not be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if releas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hichever is earlier.

**(e) Discharge.**—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plac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s condition is such that he is no longer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or will not be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if releas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person or, on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s condition is such that—

(1) he will not be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if released unconditionally,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e will not be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if releas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shall—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f)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The director of a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e)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he is sexually dangerous to others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g) Release to State of Certain Other Persons.**— I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or placed pursuant to this chapter certifies to the Attorney General that a person, against whom al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for reasons not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a sexually dangerous pers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 of State proceedings for civil commitment. If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upon receipt of notice from the State that it will not assume such responsibility, but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cer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 [CHAPTER 314—REPEALED] (Section 4251_to_4255)

## CHAPTER 315—DISCHARGE AND RELEASE PAYMENTS

[Section 4281. Repealed.]

Section, acts June 25, 1948, ch. 645, 62 Stat. 856; Sept. 19, 1962, Pub. L. 87–672, 76 Stat. 557, related to discharge from prison of a convicted person.

**Section 4282 - Arrested but unconvicted persons**

On the release from custody of a person arrested on a charge of violating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Territory of Alaska, but not indicted nor informed against, or indicted or informed against but not convicted, and detained pursuant to chapter 207, or a person held as a material witness, the court in its discretion may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for the district wherein he is released, pursuant to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to furnish the person so released with transportation and subsistence to the place of his arrest, or, at his election, to the place of his bona fide residence if such cost is not greater than to the place of arrest.

[SectionSection 4283, 4284. Repealed.]

Section 4283, act June 25, 1948, ch. 645, 62 Stat. 856, related to furnishing transportation when placing a defendant on probation.

Section 4284, added May 15, 1952, ch. 289, Section 1,66 Stat. 72; amended Sept. 13, 1982, Pub. L. 97–258, Section 3(e)(5), 96 Stat. 1064, related to advances for rehabilitation.

**Section 4285 - Persons released pending further judicial proceedings**

Any judge or magistrate judge of the United States, when ordering a person released under chapter 207 on a condition of his subsequent appearance before that court, any division of that court, or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another judicial district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are pending, may,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would be served thereby and the United States judge or magistrate judge is satisfied, after appropriate inquiry, that the defendant is financially un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transportation to appear before the required court on his own,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to arrange for that person's means of noncustodial transportation or furnish the fare for such transportation to the place where his appearance is required, and in addition may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to furnish that person with an amount of money for subsistence expenses to his destination, not to exceed the amount authorized as a per diem allowance for travel under section 5702(a)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When so ordered, such expenses shall be paid by the marshal out of funds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for such expenses.

## CHAPTER 317—INSTITUTIONS FOR WOMEN

**Section 4321 - Board of Advisers**

Four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prominence and distincti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serve without compensation, for terms of four years, together with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and the warden of the Federal Reformatory for Women, shall constitute a Board of Advisers of said Federal Reformatory for Women, which shall recommend ways and means for the discipline and training of the inmates, to fit them for suitable employment upon their discharge.

Any person chosen to fill a vacancy shall be appointed only for the unexpired term of the citizen whom he shall succeed.

## CHAPTER 319—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ection 4351. Establishment; Advisory Board; appointment of members; compensation; officers; committees; delegation of powers; Director, appointment and powers?**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Bureau of Prisons a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b)** The overall policy and oper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Advisory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sixteen members. The following six individuals shall serve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ex officio: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or his designee,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or his designee,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or his designee, the Director of the Federal Judicial Center or his designee, the

Associate Administrator for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 or his designee, and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uman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r his designee.

**(c)** The remaining ten members of the Board shall be selected as follows:

(1) Five shall be appointed initially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staggered terms; one member shall serve for one year, one member for two years, and three members for three years. Upon the expiration of each member's term, the Attorney General shall appoint successors who will each serve for a term of three years. Each member selected shall be qualified as a practitioner (Federal, State, or local) in the field of corrections, probation, or parole.

(2) Five shall be appointed initially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staggered terms, one member shall serve for one year, three members for two years, and one member for three years. Upon the expiration of each member's term the Attorney General shall appoint successors who will each serve for a term of three years. Each member selected shall be from the private sector, such as business, labor, and education, having demonstrated an active interest in corrections, probation, or parole.

**(d)**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not, by reason of such membership, be deemed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are full-tim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serve without additional compensation, but shall be reimbursed for travel, subsistence,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vested in the Board. Other members of the Board shall, while attending meetings of the Board or while engaged in duties related to such meetings or in other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is title, b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t the rate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ncluding traveltime, and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may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equal to that authorized by section 570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for persons in the Government service employed intermittently.

**(e)** The Board shall elect a chairman from among its members who shall serve for a term of one year.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also elect one or more members as a vice-chairman.

**(f)** The Board is authorized to appoint, without regard to the civil service laws, technical, or other advisory committees to advise the Institut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title as it deems appropriate. Members of these committees not otherwise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while engaged in advising the Institute or attending meetings of the committees,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t the rate fixed by the Board but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d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may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equal to that authorized by section 570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for persons in the Government service employed intermittently.

**(g)** The Board is authorized to delegate its powers under this title to such persons as it deems appropriate.

**(h)** The Institute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officer to be known as the Director,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oard. The Director shall have authority to supervise the organization, employees, enrollees, financial affairs, and all other operations of the

Institute and may employ such staff, faculty,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subject to the civil service and classification laws, as are necessary to the functioning of the Institute. The Director shall have the power to acquire and hold real and personal property for the Institute and may receive gifts, donations, and trusts on behalf of the Institute. The Director shall also have the power to appoint such technical or other advisory councils comprised of consultants to guide and advise the Board. The Director is authorized to delegate his powers under this title to such persons as he deems appropriate.

**Section 4352 - Authority of Institute; time; records of recipients; access; scope of section?**

**(a)** In addition to the other powers, express and implied,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hall have authority—

(1) to receive from or make grants to and enter into contracts with Federal, State, tribal, and general units of local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2) to serve as a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 center for the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corre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grams for prevention of crime and recidivism, training of corrections personnel, and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3) to assist and serve in a consulting capacity to Federal, State, tribal, and local courts, departments, and agencies in th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coordination of programs, facilities, and services, train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ith respect to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4) to encourage and assist Federal,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and programs and services of other public and private agenc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their eff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improved corrections programs;

(5) to devise and conduct, in various geographical locations,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judges, and judicial personnel, probation and parole personnel, correctional personnel, welfare workers, and other persons, including lay ex-offenders, and paraprofessional personnel, connected with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6) to develop technical training teams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within the several States and tribal communities, and with the State, tribal, and local agencies which work with prisoners, parolees, probationers, and other offenders;

(7) to conduct, encourage, and coordinate research relating to corrections, including the caus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criminal offenders;

(8) to formulate and disseminate correctional policy, goals,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Federal, State, tribal, and local correctional agencies,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personnel;

(9) to conduct evaluation programs which study the effectiveness of new approaches, techniques, systems, programs, and devices employed to improve the corrections system;

(10) to receive from any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such statistics, data, program reports, and other material as the Institute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Each such department or agency is authorized to cooperate with the Institute and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onsult with

and furnish information to the Institute;

(11) to arrange with and reimburse the heads of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for the use of personnel, facilities, or equipment of such departments and agencies;

(12) to confer with and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services, records, and facilities of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or private agenc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13) to enter into contracts with public or private agenc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functions of the Institute; and

(14) to procure the services of experts and consultan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09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at rates of compensation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b) Repealed. Pub. L. 97–375, title I. Section 109(a),Dec. 21, 1982, 96 Stat. 1820.]

**(c)** Each recipient of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shall keep such records as the Institute shall prescribe, including records which fully disclose the amount and disposition by such recipient of the proceeds of such assistance,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or undertaking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assistance is given or used, and the amount of that portion of the cost of the project or undertaking supplied by other sources, and such other records as will facilitate an effective audit.

**(d)** The Institute, and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shall have access for purposes of audit and examinations to any books, documents, papers, and records of the recipients that are pertinent to the grants received under this chapter.

**(e)** The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ll recipients of assistance under this title, whether by direct grant or contract from the Institute or by subgrant or subcontract from primary grantees or contractors of the Institute.

[Section 4353. Repealed.]

Section, added Pub. L. 93–415, title V, Section 521,Sept. 7, 1974, 88 Stat. 1141, authorized appropriations to carry out purposes of this chapter.

## PART IV—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Section 5001 - Surrender to State authorities; expenses**

Whenever any person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has been arrested, charged with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punishable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fter investigatio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t appears that such person has committed an offense or is a delinquent under the laws of any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can and will assume jurisdiction over such juvenile and will take him into custody and deal with him according to the laws of such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at it will b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juvenile offender, the United States attorney of the district in which such person has been arrested may forego his prosecution and surrender him as herein provided, unless such surrender is precluded under section 5032 of this title.

The United States marshal of such district upon written order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 shall convey

such person to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f already therein, to any other part thereof and deliver him into the custody of the proper authority thereof.

Before any person is conveyed from one State to another or from or to the District of Columbia under this section, he shall signify his willingness to be so returned, or there shall be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attorney a demand from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which the prisoner is to be returned, supported by indictment or affidavit as prescribed by section 3182 of this title.

The expense incident to the transportation of any such person, as herein authorized,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alaries, Fees, and Expenses, United States Marshals."

[Section 5002 - Repealed.]

Section,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4,64 Stat. 1090; amended Oct. 12, 1984, Pub. L. 98–473, title II, Section 223(p), 98 Stat. 2030, provided for creation of Advisory Corrections Council.

**Section 5003 - Custody of State offenders**

**(a)**

(1)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when proper and adequate facilities and personnel are available may contract with proper officials of a State or territory, for the custody, care, subsistence, education, treatment, and training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such State or territory.

(2) Any such contract shall provide—

(A) for reimbursing the United States in full for all costs or expenses involved;

(B) for receiving in exchange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serve their sentence in appropriate institutions or facilities of the State or territory by designation as provided in section 4082(b) [1] of this title, this exchange to be made according to formulas or conditions which may be negotiated in the contract; or

(C) for compensating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a combination of monetary payment and of receipt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formulas or conditions which may be negotiated in the contract.

(3) No such contract shall provide for the receipt of more State or territory prisoners by the United States than are transferred to that State or territory by such contract.

**(b)** Funds received under such contract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or appropriations from which the payments for such service were originally made.

**(c)**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contract, a person committed to the Attorney General hereunder shall be subject to all the provisions of law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sons committed for violations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not inconsistent with the sentence imposed.

**(d)** The term "State" as used in this section includes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anal Zone.

[SectionSection 5005, 5006 - Repealed.]

Section 5005,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6;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3, 90 Stat. 231, related to the making of youth correction decisions by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Section 5006,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6;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4, 90 Stat. 231, defined terms for the purpose of this chapter.

[SectionSection 5007 to 5009. Repealed Pub. L. 94233, Section 5, Mar. 15, 1976, 90 Stat. 231]

Section 5007,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6, provided for meetings and duties of members of Youth Correction Division.

Section 5008,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6, provided for appointment of officers and employees by Attorney General.

Section 5009,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6, provided for adoption and promulgation of rules governing procedure by Youth Correction Division

[SectionSection 5010 to 5026. Repealed.]

Section 5010,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7;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provided for imposition of a suspended sentence or sentence to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in the case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11,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7, provided for treatment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12,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7, provided for Director's certification of the availability of proper and adequate treatment facilities for youth offenders.

Section 5013,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7, authorized Director of Bureau of Prisons to contract for maintenance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14,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7; amended July 17, 1970, Pub. L. 91–339, Section 1, 84 Stat. 437;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6, 90 Stat. 231, related to classification studies and reports.

Section 5015,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8;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related to powers of Director as to placement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16,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8;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related to periodic reports which the Director was required to make on all committed youth offenders.

Section 5017,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8;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7, 9, 90 Stat. 232, related to release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18,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related to revocation of Commission orders.

Section 5019,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related to supervision of released youth offenders.

Section 5020,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July 17, 1970, Pub. L. 91–339, Section 2, 84 Stat. 437;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8, 90 Stat. 232, related to apprehension of released youth offenders.

Section 5021,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Oct. 3, 1961, Pub. L. 87–336, 75 Stat. 750; Mar. 15, 1976, Pub. L. 94–233, Section 9, 90 Stat. 232, related to issuance of certificates setting aside convictions of youth offenders.

Section 5022,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provided that this chapter would not apply to offenses committed before its enactment (Sept. 30, 1950).

Section 5023,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Apr. 8, 1952, ch. 163, Section 1,66 Stat. 45, related to relationship between this chapter and Prob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Acts.

Section 5024, added act Sept. 30, 1950, ch. 1115, Section 2,64 Stat. 1089; amended Apr. 8, 1952, ch. 163, Section 2,66 Stat. 45; June 25, 1959, Pub. L. 86–70, Section 17(a), 73 Stat. 144; July 12, 1960, Pub. L. 86–624, Section 13(b), 74 Stat. 413; Dec. 27, 1967, Pub. L. 90–226, title VIII, Section 801(a), 81 Stat. 741, provided that this chapter was applicable to State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District of Columbia.

Section 5025, added act Apr. 8, 1952, ch. 163, Section 3(a),66 Stat. 46; amended Dec. 27, 1967, Pub. L. 90–226, title VIII, Section 801(b), 81 Stat. 741, related to applicability of this chapter to District of Columbia.

Section 5026, added act Apr. 8, 1952, ch. 163, Section 3(a),66 Stat. 46, provided that this chapter did not affect parole of other offenders.

## Chapter 403 - JUVENILE DELINQUENCY

**Section 5031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juvenile" i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eighteenth birthday, or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posi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twenty-first birthday,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violation of a law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d by a person prior to his eighteenth birthday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or a violation by such a person of section 922(x).

**Section 5032. Delinquency proceedings in district courts; transfer for criminal prosecution**

A juvenile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other than a violation of law committed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which the maximum authorized term of imprisonment does not exceed six months, shall not be proceeded against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Attorney General, after investigation, certifies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t

(1) the juvenile court or other appropriate court of a State does not have jurisdiction or refuses to assume jurisdiction over said juvenile with respect to such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2) the State does not have available programs and services adequate for the needs of juveniles, or

(3) the offense charged is a crime of violence that is a felony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41), or section 1002(a), 1003, 1005, 1009, or 1010(b)(1), (2), or (3)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3, 955, 959, 960(b)(1), (2), (3)),section 922(x) orsection 924(b), (g), or (h) of this title, an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Federal interest in the case or the offense to warrant the exercise of Federal jurisdiction.

If the Attorney General does not so certify, such juvenile shall be surrendered to the appropriate legal authorities of such Stat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State" includes a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ny commonwealth,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If an alleged juvenile delinquent is not surrendered to the authorities of a State pursuant to this section, any proceedings against him shall be in an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such purposes, the court may be convened at any time and place within the district, in chambers or otherwise.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ceed by information or as authorized under section 3401(g) of this title, and no criminal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for the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except as provided below.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who is not surrendered to State authorities shall be proceeded against under this chapter unless he has requested in writing upon advice of counsel to be proceeded against as an adult, except that, with respect to a juvenile fifteen years and older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fif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41), or section 1002(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5, 959), or section 922(x) of this title, or in section 924(b), (g), or (h) of this title, criminal prosecution on the basis of the alleged act may be begun by motion to transfer of the Attorney General in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f such court finds, after hearing, such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sentence, if the crime of violence is an offense under section 113(a), 113(b), 113(c), 1111, 1113, or, if the juvenile possessed a firearm during the offense, section 2111, 2113, 2241(a), or 2241(c), "thirteen" shall be substituted for "fifteen" and "thirteenth" shall be substituted for "fifteenth". Notwithstanding sections 1152 and 1153, no person subject to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an Indian tribal government shall be subject to the preceding sentence for any offense the Federal jurisdiction for which is predicated solely on Indian country (as defined in section 1151), and which has occurred within the boundaries of such Indian country, unless the governing body of the tribe has elected that the preceding sentence have effect over land and persons subject to its criminal jurisdiction. However,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six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offense that has as an element thereof the use, attempted use, or threatened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or that, by its very nature, involves a substantial risk that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may be used in committing the offense, or would be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32, 81, 844(d), (e), (f), (h), (i) or 2275 of this title, subsection (b)(1)(A), (B), or (C), (d), or (e) of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2(a), 1003, 1009, or 1010(b)(1), (2), or (3)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3, 959, 960(b)(1), (2), (3)), and who has previously been found guilty of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have been one of the offenses set forth in this paragraph or an offense in violation of a State felony statute that would have been such an offense if a circumstance giving rise to Federal jurisdiction had existed, shall be transferred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criminal prosecution.

Evidence of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and findings with regard to each factor shall be made in the record, in assessing whether a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the age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juvenile;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juvenile's prior

delinquency record; the juvenile's present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maturity; the nature of past treatment efforts and the juvenile's response to such efforts; the availability of programs designed to treat the juvenile's behavioral problems.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ffense, as required by this paragraph,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juvenile played a leadership role in an organization, or otherwise influenced other persons to take part in criminal activities, involving the use or distribu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or firearms. Such a factor, if found to exist, shall weigh in favor of a transfer to adult status, but the absence of this factor shall not preclude such a transfer.

Reasonable notice of the transfer hearing shall be given to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nd to his counsel. The juvenile shall be assisted by counsel during the transfer hearing, and at every other critical stage of the proceedings.

Once a juvenile has entered a plea of guilty or the proceeding has reached the stage that evidence has begun to be taken with respect to a crime 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or juvenile proceedings based upon such alleged act of delinquency shall be barred.

Statements made by a juvenile prior to or during a transfer hearing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admissible at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s.

Whenever a juvenile transferred to district court under this section is not convicted of the crim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or another crime which would have warranted transfer had the juvenile been initially charged with that crime, further proceedings concerning the juvenile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juvenile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dult prosecution nor shall a hearing be held under section 5037 (disposition after a finding of juvenile delinquency) until any prior juvenile court records of such juvenile have been received by the court, or the clerk of the juvenile court has certified in writing that the juvenile has no prior record, or that the juvenile's record is unavailable and why it is unavailable.

Whenever a juvenile is adjudged delinqu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specific acts which the juvenile has been found to have committed shall be described as part of the official record of the proceedings and part of the juvenile's official record.

**Section 5033 - Custody prior to appearance before magistrate judge**

Whenever a juvenile is taken into custody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advise such juvenile of his legal rights, in language comprehensive to a juvenile,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juvenile'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such custod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also notify the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the rights of the juvenile and of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juvenile shall be taken before a magistrate judge forthwith. In no event shall the juvenile be detained for longer tha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being brought before a magistrate judge.

**Section 5034 - Duties of magistrate judge**

The magistrate judge shall insure that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before proceeding with critical stages of the proceedings. Counsel shall be assigned to represent a juvenile when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In cases where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but

have not retained counsel, the magistrate judge may assign counsel and order the payment of reasonable attorney's fees or may direct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to retain private counsel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magistrate judge may appoint a guardian ad litem if a parent or guardian of the juvenile is not present, or if the magistrate judge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arents or guardian will not cooperate with the juvenile in preparing for trial, or that the interests of the parents or guardian and those of the juvenile are adverse.

If the juvenile has not been discharged before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magistrate judge, the magistrate judge shall release the juvenile to his parents, guardian, custodian, or other responsible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irector of a shelter-care facility) upon their promise to bring such juvenil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when requested by such court unless the magistrate judge determines, after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hat the detention of such juvenile is required to secure his timely appearanc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or to insure his safety or that of others.

**Section 5035 - Detention prior to disposition**

A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may be detained only in a juvenile facility or such other suitable place as the Attorney General may designate. Whenever possible, detention shall be in a foster home or community 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cause any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to be detained or confined in any institution in which the juvenil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 persons convicted of a crime or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Insofar as possible, alleged delinquent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judicated delinquents. Every juvenile in custody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education,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Section 5036 - Speedy trial**

If an alleged delinquent who is in detention pending trial is not brought to trial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detention was begun, the information shall be dismissed on motion of the alleged delinquent or at the direction of the court, unless the Attorney General shows that additional delay was caused by the juvenile or his counsel, or consented to by the juvenile and his counsel, o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in the particular case. Delays attributable solely to court calendar congestion may not be considered in the interest of justice.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n information dismissed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reinstituted.

**Section 5037 - Dispositional hearing**

**(a)** If the court finds a juvenile to be a juvenile delinquent, the court shall hold a disposition hearing concerning the appropriate disposition no later than twenty court days after the juvenile delinquency hearing unless the court has ordered further study pursuant to subsection (d). After the disposition hearing, and after considering any pertinent policy statements promulgated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pursuant to 28 U.S.C. 994, the court may suspend the findings of juvenile delinquency, place him on probation, or commit him to official detention which may include a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to follow detention. In addition, the court may enter an order of restitution pursuant to section 3556. With respect to release or detention pending an appeal or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after disposition, the court shall

proce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207.

**(b)** The term for which probation may be ordered for a juvenile found to be a juvenile delinquent may not extend—

(1)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less than eighteen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A) the date when the juvenile becomes twenty-one years old; or

(B) the maximum term that would be authorized by section 3561(c)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or

(2)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between eighteen and twenty-one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A) three years; or

(B) the maximum term that would be authorized by section 3561(c)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The provisions dealing with probation set forth in sections 3563 and 3564 are applicable to an order placing a juvenile on probation. If the juvenile violates a condition of probation at any time prior to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term of probation, the court may, after a dispositional hearing and after considering any pertinent policy statements promulgated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28, revoke the term of probation and order a term of official detention. The term of official detention authorized upon revocation of probation shall not exceed the terms authorized in section 5037(c)(2)(A) and (B). The application of sections 5037(c)(2)(A) and (B) shall be determined based upon the age of the juvenile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the revocation proceeding. If a juvenile is over the age of 21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revocation proceeding, the mandatory revocation provisions of section 3565(b) are applicable. A disposition of a juvenile who is over the age of 21 yea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5037(c)(2),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f convicted as an adult would be convicted of a Class A, B, or C felony, no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6th birthday, and in any other case, no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4th birthday. A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include a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c)** The term for which official detention may be ordered for a juvenile found to be a juvenile delinquent may not extend—

(1)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less than eighteen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A) the date when the juvenile becomes twenty-one years old;

(B) the maximum of the guideline range,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28, applicable to an otherwise similarly situated adult defendant unless the court finds an aggravating factor to warrant an upward departure from the otherwise applicable guideline range; or

(C)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that would be authorized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or

(2)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between eighteen and twenty-one years old—

(A) who if convicted as an adult would be convicted of a Class A, B, or C felony, beyond the lesser of—

(i) five years; or

(ii) the maximum of the guideline range,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28, applicable to an

otherwise similarly situated adult defendant unless the court finds an aggravating factor to warrant an upward departure from the otherwise applicable guideline range; or

(B) in any other case beyond the lesser of—

(i) three years;

(ii) the maximum of the guideline range,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28, applicable to an otherwise similarly situated adult defendant unless the court finds an aggravating factor to warrant an upward departure from the otherwise applicable guideline range; or

(iii)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that would be authorized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Section 3624 is applicable to an order placing a juvenile under detention.

**(d)**

(1) The court, in ordering a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include the requirement that the juvenile be placed on a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after official detention.

(2) The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that may be ordered for a juvenile found to be a juvenile delinquent may not extend—

(A)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less than 18 years old, a term that extends beyond the date when the juvenile becomes 21 years old; or

(B)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between 18 and 21 years old, a term that extends beyond the maximum term of official detention set forth in section 5037(c)(2)(A) and (B), less the term of official detention ordered.

(3) The provisions dealing with probation set forth in sections 3563 and 3564 are applicable to an order placing a juvenile on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4) The court may modify, reduce, or enlarge the conditions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at any time prior to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term of supervision after a dispositional hearing and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3563 regarding the initial setting of the conditions of probation.

(5) If the juvenile violates a condition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at any time prior to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term of supervision, the court may, after a dispositional hearing and after considering any pertinent policy statements promulgated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994 of title 18,[1] revoke the term of supervision and order a term of official detention. The term of official detention which is authorized upon revocation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shall not exceed the term authorized in section 5037(c)(2)(A) and (B), less any term of official detention previously ordered. The application of sections 5037(c)(2)(A) and (B) shall be determined based upon the age of the juvenile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the revocation proceeding. If a juvenile is over the age of 21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revocation proceeding, the mandatory revocation provisions of section 3565(b) are applicable. A disposition of a juvenile who is over the age of 21 years ol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5037(c)(2),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f convicted as an adult would be convicted of a Class A, B, or C felony, no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6th birthday, and in any other case, no term of official detent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4th birthday.

(6) When a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is revoked and the juvenile is committed to official detention, the court may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juvenile be placed on a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Any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ordered following revocation for a juvenile who is over the age of 21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revocation proceeding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5037(d)(1),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f convicted as an adult would be convicted of a Class A, B, or C felony, no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6th birthday, and in any other case, no term of juvenile delinquent supervision may continue beyond the juvenile's 24th birthday.

**(e)** If the court desires more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an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it may commit him, after notice and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observation and study by an appropriate agency. Such observation and study shall be conducted on an out-patient basis,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inpatient observation and study are necessary to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In the case of an alleged juvenile delinquent, inpatient study may be order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juvenile and his attorney. The agency shall make a complete study of the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to ascertain his personal traits, his capabilities, his background, any previous delinquency or criminal experience, any mental or physical defect, and any other relevant factors.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the court and the attorneys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commitment of the juvenile, unless the court grants additional time.

**Section 5038 - Use of juvenile records**

**(a)** Throughout and upon the comple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the records shall be safeguarded from disclosure to unauthorized persons. The records shall be releas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mee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inquiries received from another court of law;

(2) inquiries from an agency preparing a presentence report for another court;

(3) inquiries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wher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or a position within that agency;

(4) inquiries, in writing, from the director of a treatment agency or the director of a facility to which the juvenile has been committed by the court;

(5) inquiries from an agency considering the person for a position immediately and directly aff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6) inquiries from any victim of such juvenile delinquency, or if the victim is deceased from the immediate family of such victim, related to the final disposition of such juvenile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7.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is section, information about the juvenile record may not be released whe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license, bonding, or any civil right or privilege. Responses to such inquiries shall not be different from responses made about persons who have never been involved in a delinquency proceeding

**(b)** District courts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any juvenile shall inform the juvenile, and his parent or guardian, in writing in clear and nontechnical language, of rights relating to his juvenile record.

**(c)** During the course of any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all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the proceeding, which are obtained or prepared in the discharge of an official duty by an employee of the court or an employee of any other governmental agency, shall not be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one other than the judge, counsel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or others entitled under this section to receive juvenile records.

**(d)** Whenever a juvenile is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1(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such juvenile shall be fingerprinted and photographed. Except a juvenile described in subsection (f),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not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in the manner applicable to adult defendants.

**(e)** Unless a juvenile who is taken into custody is prosecuted as an adult neither the name nor picture of any juvenile shall be made public in connection with a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f)** Whenever a juvenile has on two separate occasions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1(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or whenever a juvenile has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after his 13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n offense described in the second sentence of the fourth paragraph of section 5032 of this title, the court shall transmit t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djudications, including name, date of adjudication, court, offenses, and sentence, along with the notation that the matters were juvenile adjudications.

**Section 5039 - Commitment**

No juvenile committed, whether pursuant to an adjudication of delinquency or conviction for an offense,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may be placed or retained in an adult jai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h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s incarcerated because they have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are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Every juvenile who has been committed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counseling, education, training,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Whenever possible,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mmit a juvenile to a foster home or community-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Section 5040 - Support**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with any public or private agency or individual and such community-based facilities as halfway houses and foster homes for the observation and study and the custody and care of juveniles in his custody. For these purposes, the Attorney General may promulgate such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and may use the appropriation for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such other

appropriations as he may designate.

**Section 5041. Repealed.**

Section, added Pub. L. 93–415, title V, Section 511,Sept. 7, 1974, 88 Stat. 1138; amended Pub. L. 94–233, Section 11,Mar. 15, 1976, 90 Stat. 233, related to parole for juvenile delinquents

**Section 5042 - Revocation of probation**

Any juvenile probationer shall be accorded notice and a hearing with counsel before his probation can be revoked.

캐나다

# 08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약칭(제1조)

**제1편 시설내 및 사회내에서의 교정** ····· 539

해석(제2조, 제2.1조) ····· 539
목적과 원칙(제3조, 제4조) ····· 541
연방교정국(제5조 ~ 제10조) ····· 542
수용자의 입소(제11조 ~ 제15조) ····· 543
교정처우계획(제15.1조, 제15.2조) ····· 544
업무교환을 위한 협정(제16조) ····· 545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제17조) ····· 545
외부통근(제18조) ····· 546
조사(제19조 ~ 제21조) ····· 547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보상금(제22조) ····· 547
정보(제23조 ~ 제27조) ····· 547
수용자의 수용구분 및 이송(제28조, 제29조) ····· 550
경비분류급(제30조) ····· 551
처우상 격리(제31조 ~ 제37조) ····· 551
규율(제38조 ~ 제44조) ····· 553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제45조 ) ····· 555
검사 및 압수(제46조 ~ 67조) ····· 555
생활조건에 관한 통칙(제68조 ~ 제75조) ····· 562
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제76조 ~ 제78조) ····· 563
원주민 수형자(제79조 ~ 제84.1조) ····· 564
의료(제85조 ~ 제89조) ····· 565
불복신청 절차(제90조, 제91조) ····· 566
수용자의 석방(제92조, 제93조) ····· 566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제94조) ····· 567
연간보고서(제95조) ····· 567
규칙(제96조) ····· 567
규정(제97조) ····· 570
연방교정국장 통달(제98조) ····· 570

**제2편 조건부 석방, 수용계속 및 장기감독**

해석(제99조 ~ 제99.2조) ····· 570
목적 및 원칙(제100조 ~ 제102조) ····· 572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제103조 ~ 111조) ····· 573
주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제112조 ~ 제114조) ····· 575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제115조 ~ 제118조) ····· 576
가석방 자격(제119조 ~ 제121조) ····· 579
가석방 심리(제122조 ~ 제126.1조) ····· 582
법정석방(제127조, 제127.1조) ····· 585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효과(제128조) ····· 586
법정석방기간 중 수용계속(제129조 ~ 제132조) ····· 587
석방기간 중 준수사항(제133조, 제134조) ····· 594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제134.1조, 제134.2조) ··· 596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종결, 취소 및 실효(제135조 ~ 제138조) ····· 596
복수형(제139조) ····· 602
심리를 위한 청문(제140조) ····· 602
정보공개(제141조, 제142조) ····· 604
심리 및 결정에 관한 기록(제143조, 제144조) ····· 606
심리 및 증거(제145조) ····· 606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기구(제146조 ~ 155.2조) ····· 607
규칙(제156조) ····· 612

**제3편 교정감사관**

해석(제157조, 제157.1조) ····· 613
교정감사관(제158조 ~ 제163조) ····· 613
관리(제164조) ····· 614
직원(제165조) ····· 614
복무선서(제166조) ····· 615
임무(제167조, 제168조) ····· 615
홍보시책(제169조) ····· 615
조사(제170조 ~ 제174조) ····· 616
재결, 보고 및 권고(제175조 ~ 제181조) ····· 617
비밀유지(제182조 ~제184조) ····· 619
권한위임(제185조 ) ····· 620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86조) ····· 620
소송절차(제187조 ~ 제190조) ····· 620
범죄 및 처벌(제191조 ) ····· 621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제192조 ~ 제195조) ····· 621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제196조 ) ····· 622
규칙(제197조) ····· 623
여왕(제198조) ····· 623

**제4편 개정, 폐지 및 경과규정 및 시행일**

제199조~제231조(번역생략) ····· 623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제232조) ····· 623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제233조) ····· 624
시행일(제234조) ····· 624

**제1부록** ····· 624
**제2부록** ····· 626

**원문** ····· 628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1]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1992 S.C.Chap.20)

1992년 11월 1일 시행

2012년 10월 23일 개정

이 법은, 캐나다 상 · 하원 의회의 조언과 동의에 의한, 교정 및 수형자의 조건부 석방, 그리고 교정감사관 관직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다.

## 약칭

**약칭**

**제1조** 이 법은「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이라 부를 수 있다.

# 제1편 시설내 및 사회내에서의 교정

## 해석

**정의**

**제2조** ① 본 편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연방교정국장"이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연방교정국장을 말한다.

"금지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명정(酩酊)물질

(b) 무기, 무기의 조성물, 무기의 탄약 및 사람을 살상(殺傷) 또는 기능장애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설계 또는 변조된 일체의 것으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고 소지하는 물품

(c) 폭발물, 폭탄 또는 폭탄의 조성물

(d)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전으로, 사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것

(e) 위 (a)호부터 (d)호까지에서 열거한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소지하는 것

"주간가석방"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수용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a) 다음의 이유로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ⅰ)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있는 자

(ⅱ) 주간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대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부과한 준수사항에 따라 연방교도소에 있는 자

1) 원문 http //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
참고자료 , 日本法務省矯正局,「カナダ矯正及条件付き釈放法」, 2000년 11월

(b)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후,

(ⅰ) 본 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일시귀휴 또는 외부통근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연방교도소의 밖에 있는 자

(ⅱ)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 이외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연방교도소의 밖에서 직원 또는 연방교정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자

"연방교도소장"이란 연방교도소와 관련하여 그 교도소를 통상 관리하는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명정물질"이란 섭취하면 판단력, 행동, 현실인식능력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손상 또는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다만, 카페인, 니코틴 및 직원 또는 정규 의료종사자의 지시에 따라 복용이 허가된 약물은 제외한다.

"장기감독"이란 형법 제753.1조 제3항 (b)호, 제759조 제3항 (a)호 (ⅰ), 제759조 제4항 (a)호 (ⅱ) 또는 제759조 제4.2항 (a)호 (ⅰ)에 의거하여 명령된 장기감독을 말한다.

"연방법무부 장관"이란 캐나다법무부 장관을 말한다.

"수형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a) 수용자

(b)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에 의하여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후, 다음의 이유로 연방교도소 밖에 있는 자

(ⅰ)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하여

(ⅱ)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정에 의하여

(ⅲ)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가석방"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연방교도소"란

(a) 수용자의 감호 및 구속을 위하여 연방교정국이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및

(b)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도소로 고시된 모든 장소를 말한다.

"소정의"란 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연방가석방위원회"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행계호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형(刑)"이란 구금형을 말하고, 이것에는 수형자이송법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 이송된 캐나다인 수형자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과한 형도 포함한다.

"연방교정국"이란 제5편에서 정한 캐나다 연방교정국을 말한다.

"직원"이란 연방교정국의 피용자(被用者)를 말한다.

"법정석방"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란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범죄실행행위의 결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받은 자를 말하고, 만약 그 자가 사망, 질병 또는 불구가 된 때에는 다음의 사람을 포함한다.

(a) 그자의 배우자 또는 그자가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동거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b) 친족 또는 피부양자

(c)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관계에 있거나 그자의 간호 또는 부양책임을 지는 자

(d)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관계에 있거나 그자의 간호 또는 도움을 받는 그자의 피부양자

"방문자(來訪者)"란 수용자 또는 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근무일"이란 연방의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일을 말한다.

**권한 등의 행사**

② 본편 또는 제96조 (b)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a) 본편이 연방교정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 직무 및 임무에 대해서는 연방교정국장만이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연방교정국장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한 때 또는 그 보직이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방교정국장에 대리하여 직무하는 자가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또한

(b) 본편이 연방교도소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 직무 및 임무에 대해서는 연방교도소장만이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연방교도소장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한 때, 또는 그 보직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때는, 그 시점에서 당해연방교도소를 관리하는 직에 있는 자가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다.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제2.1조** 장기감독명령에 의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편의 적용상 이들을 수형자로 간주하고 제3조, 제4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5편 제56조, 제57조제2항, 제66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7조 (b)호,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자 및 그자의 장기감독에 적용한다.

## 목적과 원칙

**교정제도의 목적**

**제3조** 연방교정제도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공정하고 평온하며 안전한 사회유지에 공헌하는 것이다.

(a)수형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인간적인 구속 및 감독을 통하여 법원이 부과한 형을 집행하고, 그리고

(b) 연방교도소 내 및 사회 내에서 제공한 처우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준법적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것

**최우선의 고려사항**

**제3.1조** 사회방위는 교정의 단계에 있어서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다.

**연방교정국의 지도원리**

**제4조** 연방교정국이 제3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a) 형의 집행은 모든 이용가능한 관계정보(여기에는 선고를 한 판사가 판시한 이유 및 권고, 심리 또는 양형과정에서의 정보,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석방방침 및 견해 그리고 피해자 및 수형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고려하면서 집행하여야 한다.

(b) 연방교정국은 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형사사법부처와 시의적절하게 교환하고 수형자,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교정관계의 정책 및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소통과정을 통하여, 연방교정국의 유익성 및 공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c) 연방교정국은 일반시민과 직원 및 수형자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이 법의 목적에 상응하도록 필요

하고 적합한 최소제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수형자는 형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되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e) 연방교정국은, 연방교정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시민의 참가를 촉진시켜야 한다.

(f) 교정상의 모든 결정은, 수형자의 실효적인 불복신청절차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솔직하고 공정한 방식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g) 교정관계의 정책, 처우프로그램 및 실무는 성(性), 민족, 문화 및 언어의 차이를 존중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여성, 원주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 밖의 다른 사람 등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h) 수형자는 연방교도소의 규칙 및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및 법정석방, 장기감독명령을 규율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된 처우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j) 직원은 적정하게 채용되어 연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직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ⅰ) 직장경력의 확대를 도모할 기회

(ⅱ) 개인의 인격적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는 직장환경 및 그 밖에 양호한 근무여건

(ⅲ) 교정관계 정책 및 처우프로그램의 발전

## 연방교정국

### 연방교정국

**제5조** 캐나다는 교정담당 부국(部局)을 두며, 이것을 연방교정국이라 칭한다. 연방교정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a)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b)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처우프로그램의 제공

(c) 수용자의 석방을 위한 준비

(d) 수형자의 가석방 및 법정석방에 따르는 감독 및 장기감독

(e) 연방교정국의 운영에 대한 홍보시책의 추진

### 연방교정국장

**제6조** ① 총독은 연방교정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교정국장은 연방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연방교정국 및 연방교정국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한다.

중앙본부

② 연방교정국의 중앙본부 및 연방교정국장의 집무실은 "수도법(首都法)"의 부록에서 정하는 수도권에 둔다.

지방본부

③ 연방교정국장은 연방교정국의 지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연방교도소

**제7조** ①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교정국장은 명령으로 일정한 자 또는 일정유형의 집단에 한해서,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矯正院法)에 규정하는 주교도소를 연방교도소로 고시할 수 있고 또한 병원을 연방교도소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총독은 명령으로 어떠한 장소도 연방교도소로 고시할 수 있다.

주의 인가

③ 주의회의 법률권한에 의거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는 주교도소, 병원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주의 부총독이 지명하는 관리자의 인가가 없는 한, 이것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한 연방교도소로 고시할 수 없다.

**연방교도소를 구성하는 토지**

**제8조** 연방교도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에 대해서, 그 위치 또는 표기에 관한 문제가 캐나다 법원의 소송절차상 생긴 때에는 연방교도소를 구성하는 그 토지의 위치 또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연방교정국장이 서명한 증명서는 증거로 허용된다. 또한 반증이 없는 한 당해증명서에 그 위치가 표시 또는 표기되어 있는 토지가 연방교도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

**법률상의 구속**

**제9조** 확인을 위하여 규정하면, 제2조 중 "수용자"의 정의에 관한 (b)호 (ⅱ)에 따라 수용자가 된 자는 연방교정국의 법률상의 구속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제10조** 연방교정국장은 서면으로 성명 또는 계급을 지정하여 보안(peace officer)이 되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지명을 받은 직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해서 보안관이 법률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한, 비호 및 특권을 보유한다.

(a) 영장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 또는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

(b) 연방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수용자의 입소

**통칙**

**제11조**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는 어떠한 연방교도소에도 이들을 입소시킬 수 있다. 송치영장의 특정 연방교도소 지정은 아무런 집행력 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다.

**연행**

**제11.1조**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 전에 적법한 근거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다른 체포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연방교도소장은 영장에 의해 그자의 체포 및 연방교도소에의 연행을 허가할 수 있다.

**15일간의 유예**

**제12조** 연방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률상 연방교도소에 이송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소의 신청 또는 개인적 용무의 처리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들을 연방교도소에 입소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15일 경과 전에 연방교도소에 이송되는 것에 본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상의 증명서

**제13조** 연방교도소장은 정규 의료종사자의 서명이 있는 증명서에 제12조에 규정하는 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입수가능한 정보와 그자가 위험한 전염성 또는 보균성의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는지 여부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그자의 입소를 거절할 수 있다.

### 주 교정시설에의 구금

**제14조** ①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입소되지 아니하는 자는 주 교정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자의 인도를 받은 주 교정시설의 관리자는 다음의 시기 또는 기간 동안 이들을 구금한다.

(a) 연방교도소 송치영장의 제시를 받은 때로부터 또는

(b) 항소법원 또는 주 법원의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인증하거나 그자를 유죄로 한 법원의 서기관이 인증한 송치영장등본의 제시를 받은 때로부터 그자가 연방교도소에 송치될 때까지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속이 해제될 때까지

###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주

**제15조** ① 연방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 또는 연방교도소에 송치 또는 이송하는 것이 형법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뉴파운드랜드주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주의 부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자를 연방교도소에 입소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입소시키지 않은 자는, 왕립연방교도소로 칭해지는 뉴파운드랜드주의 주 교정시설에 이들을 구금한다. 이 자에게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한다.

경비에 관한 협정

③ 연방법무부 장관은 총독의 인가를 얻은 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금된 자에 관련된 수용경비를 뉴파운드랜드주에 지불하는 취지를 정한 협정을 뉴파운드랜드주와 체결할 수 있다.

## 교정처우계획

### 수용자 행동에 대한 목적

**제15.1조** ① 연방교도소장은 수용자 신입절차를 마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자와의 처우상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수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단계

(b) 다음 사항에 대한 목적

(ⅰ) 다음과 같은 범죄자의 행동

(A)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종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B) 교도소 규칙에 따르고 조건부 가석방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

(ⅱ) 프로그램에의 참가

(ⅲ) 부양아동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법률에서 내린 명령의 이행

### 처우계획의 유지

② 처우계획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석방 후 준법시민으로서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의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형자와 상담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목적에 부합되는 발전

③ 프로그램 선정 또는 수용자의 이송 및 조건부 가석방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정당국은 그들의 교정처우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용자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제15.2조** 연방교정국장은 범죄자의 교정처우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전을 위하여 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업무교환을 위한 협정

**주와의 협정**

**제16조** ①연방법무부 장관은 총독의 인가를 얻은 후에 다음의 협정을 주정부와 체결할 수 있다.

(a)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를 주 교정시설 또는 주의 병원에 구금하기 위한 협정

(b) 연방법 또는 그 하위규칙에 기초한 범죄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해당 구금으로 송치된 자를 연방교도소에 구금하기 위한 협정

구금의 효과

②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 (b)호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에게는 형법 제74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구금되어 있는 연방교도소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된다.

석방일

③ 제1항 (b)호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방교도소에 이송된 수형자에 대해서 그 석방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그 형으로부터 공제한다.

(a) 이송일 시점에 그 수형자의 기득점수로 계산되어 있는 감형일수

(b)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을 최대한의 감형일수

##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

**일시귀휴의 허가**

**제17조** ① 연방교도소장은 다음의 (a)호부터 (d)호까지 열거하는 모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형법 제746.1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e)호 또는 (f)호에 열거하는 기간 동안 일시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a) 수용자에게는 본 조에 입각하여 허가된 일시귀휴의 기간 중에 재범을 범하여 사회에 과도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의료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에 의하여 개선갱생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가족만남 또는 자기계발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부모로서의 책무이행 그 밖의 참작할 만한 이유로, 직원의 동행 또는 연방교도소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자가 동행하여 일시귀휴를 보내는 것이 수용자에 있어서 유익할 것

(c) 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에 비추어 일시귀휴를 허가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점이 없을 것

(d) 일시귀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

(e) 의료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는 무제한의 기간

(f) 의료상의 이유 이외의 이유에 의한 때는

(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ⅱ) 연방교정국장의 허가가 있는 때는 5일 초과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준수사항

② 연방교도소장은 일시귀휴시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철회

③ 연방교도소장은 그 개시의 전후 언제라도 일시귀휴를 철회할 수 있다.

이유의 고지

④ 연방교도소장은 일시귀휴의 허가, 불허가 또는 철회의 이유를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동시간

⑤ 수용자에게는 일시귀휴의 목적을 위하여 허가된 기간 외에 일시귀휴 중에 체재가 허가된 해당 장소에의 왕복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줄 수 있다.

주의 병원에의 권한 위임

⑥ 수용자가 제16조 제1항 (a)호에 입각한 협정에 의하여 병원 내에서 환자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정부운영의 병원에 수용된 경우에는, 연방교도소장은 당해 수용자에 대한 본 조에 입각한 연방교도소장으로서의 권한을, 그 기간 및 조건을 명시하여 당해 병원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외부통근

"외부통근"의 정의

**제18조** ① 본 조에서 "외부통근"이란 직원 또는 연방교도소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밖의 개인 및 단체의 감독 하에 소정의 기간 동안, (연방교도소 밖에서 취업 또는 사회봉사를 위하여) 석방하는 제도화된 처우프로그램을 말한다.

외부통근의 허가

② 연방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제2편 또는 형법 제746.1조의 규정에 따라,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때에,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수용자에게 외부통근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방교정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수용자에게 외부통근 기간 중에 재범을 범하여 사회에 과도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사회에서 취업 또는 사회봉사를 위하여 제도화된 처우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유익할 것

(c) 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에 비추어 외부통근을 허가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점이 없을 것

(d) 외부통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

준수사항

③ 연방교도소장은 외부통근 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일시정지 또는 철회

④ 연방교도소장은 그 개시의 전후 언제라도 외부통근을 일시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유의 고지

⑤ 연방교도소장은 외부통근의 허가, 불허가, 일시정지 또는 철회의 이유를 서면으로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영장

⑥ 외부통근의 개시 후에 외부통근이 일시정지 또는 철회된 경우, 연방교도소장은 그 수용자를 체포하여 연행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영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 조사

### 통칙

**제19조** ①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여부에도 불구하고 연방교정국은 즉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연방교정국장 또는 동 국장이 지명한 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감사관에게 부본제출

② 연방교정국은 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의 부본을 제3편에 정의된 교정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조사

**제20조** 연방교정국장은 연방교정국의 업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보고를 해야 하는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 행정감찰법의 적용

**제21조** 행정감찰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본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조사에 대하여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a) 위 행정감찰법의 해당 각 조에 "위원"이란 본 법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b) 그 밖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해당 각 조를 적용한다.

##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보상금

### 보상금을 지불하는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한

**제22조** 연방법무부 장관 또는 동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자의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해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a) 수용자

(b) 주간가석방자의 사망 또는 장애가 인가된 처우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에 기인한 때

## 정보

### 수형자에 관한 일정의 정보수집

**제23조** ① 연방교정국은,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에 관해 가능한 한 신속하

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 그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b) 그자의 개인사와 관련한 정보(사회적 · 경제적 경력 및 범죄 · 비행력을 포함한다)

(c) 다음에 열거하는 법원이 이 형의 선고 또는 송치에 관하여 판시한 모든 이유 및 권고

(ⅰ) 그자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거나 송치한 법원 및

(ⅱ) 유죄인정, 형의 선고 또는 송치에 대한 상소를 심리한 법원

(d) 위 (c)호 (ⅰ) 또는 (ⅱ)에 정해진 법원에 제출된 보고로써 유죄인정, 형의 선고 또는 송치와 관련한 모든 보고

(e) 그 밖의 형 또는 송치의 집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피해자, 범죄로부터 받은 영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형을 선고한 판사가 가석방자격에 관하여 판시한 의견의 등본에서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정보를 포함한다)

**수형자에 의한 열람**

② 수형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정국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수형자는 "프라이버시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는 범위의 정보를 소정의 방식에 의해 열람하는 것이 인정된다.

**연방교정국에의 공개**

③ 프라이버시법 및 정보공개법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 (a)호부터 (e)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연방교정국이 수집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방해하도록 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보의 정확성 등**

**제24조** ① 연방교정국은 동 국이 이용하는 수형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최신이면서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정보의 정정**

②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정국으로부터 정보의 열람을 인정받은 수형자가, 그 정보에 오류 또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a) 정보의 정정을 연방교정국에 청구할 수 있고, 또한

(b) 연방교정국이 당해 청구를 거절하는 때는 수형자로부터 정정청구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된 정정내용을 표시하는 주석을 당해 정보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석방위원회에의 정보제공**

**제25조** ① 연방교정국은 적시에, 전국가석방위원회, 주정부, 주가석방위원회 및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수형자를 감독하는 권한을 연방교정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에 대해서, 석방결정 및 수형자의 감독 또는 감시와 관련하여 연방교정국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석방에 대한 경찰에의 통보**

② 연방교정국은,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수용자를 석방하는 경우, 그 수용자가 거처하는 목적지가 확실한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경찰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일정사안에 있어서 경찰에의 정보제공**

③ 연방교정국은 형기만료에 의해 석방되는 수용자가 석방 후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판단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는, 예측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연방교정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석방 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에의 정보공개**

**제26조** ① 연방교정국장은 수형자가 행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a)호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b)호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수형자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피해자에 공개할 것

(ⅰ) 수형자의 성명

(ⅱ) 수형자가 유죄로 된 죄명 및 수형자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

(ⅲ) 수형자가 복역하고 있는 형의 기산일 및 형기

(ⅳ) 본 법에 의거하여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일시귀휴 또는 가석방자격취득일 및 심사일

(b) 수형자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것. 다만, 그 공개에 의해 피해자가 받을 이익이 수형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명백하게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ⅰ) 수형자의 연령

(ⅱ) 복역하고 있는 연방교도소의 소재지

(ⅱ.1) 그 수형자가 이송되는 경우, 이송의 이유와 그 형을 복역하는 연방교도소의 이름 및 소재지

(ⅱ.2) 그 수형자가 교정국자의 지시에 의하여 완화 또는 개방경비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이송 전에 그 피해자에게 이송의 이유와 그 형을 복역하는 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를 알려줄 수 있다.

(ⅱ.3) 수용자의 신청 또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해 온 프로그램

(ⅱ.4) 그 수용자가 범한 심각한 규율위반

(ⅲ)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수형자가 석방될 예정일

(ⅳ) 제130조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청문이 열리는 날짜

(ⅴ) 수형자의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시에 제시된 준수사항

(ⅵ)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시에 수형자가 머무르는 목적지 및 당해 목적지까지의 여정에서 수형자가 피해자의 근처를 통과할 가능성

(ⅶ) 수형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및 구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

② 연방교정국장은, 어떤 자를 연방교도소에서 주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때에 그 피이송자가 범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주 교정시설이 소재하는 주의 명칭을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는 이익이 피이송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도 명백하게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그 밖의 자에 대한 정보공개**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를 연방교정국장에게 소명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한다.

(a) 수형자가 그 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수형자의 행위의 결과로 그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았고

(b)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또는 검찰관에게 고충을 신청하거나 또는 형법에 의거한 고발을 제기한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를 연방교정국장에게 소명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한다.

(a)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이송자가 당해 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피이송자의 행위의 결과로 그자가 피해 또는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b) 당해 행위와 관련해서 경찰 또는 검찰관에게 고충을 신청하거나 형법에 의거한 고발을 제기한 경우

**수형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

**제27조** ① 수형자와 관련한 연방교정국의 결정에 대하여 본편 또는 규칙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수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때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둠과 동시에,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모든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요지를 수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와 관련한 연방교정국의 결정에 대하여, 본편 또는 규칙이 그 결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를 수형자에 부여하고 있는 때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 후 즉시 결정시에 고려한 모든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요지를 수형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예외**

③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교정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한 정보공개에 의하여

(a) 모든 사람의 안전

(b) 연방교도소의 안전 또는

(c) 모든 적법한 수사의 실시

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a)호, (b)호 또는 (c)호에 열거하는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 있어서 당해 정보를 수형자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통역인을 요구할 권리**

④ 수형자는 어떠한 캐나다공용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때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경우에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본편 또는 규칙이 규정하는 모든 청문

(b) 본 조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 수용자의 수용구분 및 이송

**연방교도소의 선택기준**

**제28조** 연방교정국은 수형자를 연방교도소에 구금하거나 또는 구금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를 참작하고, 그자가 구금되는 연방교도소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제한적이지 아니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a)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속 및 감독의 정도 및 종류

(ⅰ) 일반시민의 안전

(ⅱ) 입소자 및 당해 연방교도소의 다른 수용자의 안전

(iii) 당해 연방교도소의 보안

(b) 접근용이성

(ⅰ) 입소자의 출신지역 및 가족

(ⅱ) 친화적인 문화 환경

(iii) 친화적인 언어 환경

(c) 적절한 처우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당해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입소자의 참가의욕

**이송**

**제29조** 연방교정국장은 형을 선고받고 이송 또는 송치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자에 대해서,

(a) 제28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96조 (d)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연방교도소에 이송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b) 제16조 제1항 (a)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 및 해당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 교정시설 또는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경비분류급

**각 수용자의 분류**

**제30조** ① 연방교정국은 제96조(z.6)호에 제정된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수용자를 중(重)경비, 중(中)경비 또는 경(輕)경비의 각 경비분류급으로 지정한다.

**이유의 고지**

② 연방교정국은 각각의 수용자에게 당해 경비분류급에 지정한 이유 또는 그 경비분류급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고지한다.

**세부분류**

③ 중(重)경비급과 중(中)경비급에 있어서 연방교정국장은 제96조(z.6)호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수용자를 세부분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유의 고지**

④ 연방교정국장 또는 동 국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각각의 수용자에게 세부분류에서 지정한 이유 또는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 처우상 격리

**목적**

**제31조** ① 처우상 격리의 목적은 당해 수용자를 다른 일반수용자 집단과 접촉시키지 않음으로써 시설의 보안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기간**

② 처우상 격리에 처해 있는 수용자는 가능한 한 빠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처우상 격리에 처한 이유**

③ 연방교도소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경우,

처우상 격리 이외의 다른 적당한 조치가 없다고 확신한 때는 수용자를 처우상 격리에 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당해 수용자가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시도 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당해 수용자를 일반수용자의 집단에 계속 두면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b) 당해 수용자를 일반수용자의 집단에 계속 두면 형사상의 고발 또는 제41조 제2항에 의거한 중대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저해될 때

(c) 당해 수용자를 일반수용자의 집단에 계속 두면 당해 수용자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제 시 고려사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c)호에 규정하는 연방교도소장에 대한 조언 및 연방교도소장에 의한 처우상 격리의 해제 결정 또는 불해제 결정은 모두 제31조에서 정하는 고려사항에 의거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처우상 격리의 심사**

**제33조** ① 수용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처우상 격리에 처해 있는 때에는 연방교도소장이 지명한 1명 또는 여러명이

(a) 소정의 시기 및 방식으로, 그 수용자의 처우상 격리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하고

(b) 그 후에도 소정의 시기 및 방식으로, 그 수용자의 처우상 격리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c) 위 (a)호에 정한 청문을 한 후 및 위 (b)호에 정한 각 회의 청문을 한 후, 그 수용자의 처우상 격리의 해제 여부를 연방교도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출석

② 제1항 (a)호에서 정한 청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a) 수용자가 임의로 결석한 때

(b) 청문을 하는 자가 그 수용자의 출석이 청문에 참석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때

(c) 수용자가 청문을 현저히 혼란하게 하는 때

**연방교도소장과의 면담**

**제34조** 연방교도소장은 제33조에 따라 당해 수용자의 처우상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자와 면담하여야 한다.

(a) 신청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이유를 고지하기 위하여

(b)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수용자에게 주기 위하여

**동전**

**제35조** 수용자가 처우상 격리에 처해진 경우 또는 처우상 격리가 계속되는 것을 수용자가 희망한 경우, 연방교도소장이 그 희망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자와 면담하여야 한다.

(a)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이유를 고지하기 위하여

(b)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수용자에게 주기 위하여

**수용자 방문**

**제36조** ① 처우상 격리에 처해져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일 1회, 정규 의료종사자가 방문하여야 한다.

② 연방교도소장은 적어도 매일 1회 처우상 격리구획을 방문하고, 신청이 있을 시 개개의 수용자와 면담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권리 등**

**제37조** 처우상 격리에 처해져 있는 수용자는 다른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권리 및 구금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구금조건

(b)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제공될 수 없는 것

(ⅰ) 처우상 격리구획의 고유한 한계

(ⅱ) 보안상의 필요

## 규율

**징벌제도의 목적**

**제38조**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징벌제도는, 연방교도소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용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절차를 통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른 제도의 제외**

**제39조**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및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에게 징벌을 과해서는 아니된다.

**규율위반행위**

**제40조** 수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규율위반행위가 된다.

(a)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b) 허가를 얻지 않고 수용자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c) 수용자의 개인물건 이외의 재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d) 절도를 하는 행위

(e) 훔친 재물을 소지하는 행위

(f)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유발할 만큼 무례하거나 직원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례한 행위

(g)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 또는 다른 신체적 손상 및 고통을 줄 수 있는 겁을 주는 행위

(h)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행위

(i)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

(j)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연방교정국장통달 또는 연방교도소장의 서면으로의 명령에 의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

(k) 술을 마시는 행위

(l)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소변표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이를 게을리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m)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조직하거나 또는 참가하는 것

(ⅰ) 소요

(ii) 그 밖의 연방교도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

(n) 도주하기 위한 또는 다른 수용자의 도주를 돕기 위한 목적의 행위

(o) 뇌물 또는 보수를 요구, 제공하거나 또는 받는 행위

(p) 상당한 이유 없이 작업 또는 작업정지를 거부하는 행위

(q) 도박에 관여하는 행위

(r) 수용자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는 명문의 규칙에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r.1) 고의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보안에 대한 허위의 청구를 하는 행위

(r.2) 다른사람에게 타액 등 신체이물질을 뱉거나 던지는 행위

(s) 위 (a)호부터 (r)호까지에 규정하는 행동을 계획하거나, 또는 다른 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

**내부적 해결**

**제41조** ① 직원은 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판단한 때에는 가능한 한 그 행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발의 제기

② 내부적 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방교도소장은 그 제기된 행위의 중대성 및 가중경감사유에 따라 이것을 경미한 규율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규율위반행위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에 대한 고지**

**제42조** 규율위반행위로 고발된 수용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고발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고지는 당해 고발이 경미한 규율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규율위반행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43조** ① 규율위반행위의 고발은 소정의 절차(소정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청문을 포함한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출석

② 제1항에 정한 청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를 출석시켜서 실시하여야 한다.

(a) 수용자가 자의로 결석하는 때

(b) 수용자의 출석으로 청문에 출석한 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청문을 하는 자가 판단하는 때

(c) 수용자가 청문을 현저하게 혼란하게 하는 때

결정

③ 청문석상에서 제출된 증거에 입각하여 수용자가 당해 규율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이 서지 아니하는 한, 청문을 하는 자는 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징벌처분**

**제44조** ①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수용자는 제96조 (i)호 및 (j)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하나 이상의 처분에 처한다.

(a) 경고 또는 질책

(b) 우대조치의 박탈

(c) 손해배상명령(규율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d) 벌금

(e) 추가 의무활동의 이행

(f) 중대한 규율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최고 30일의 격리(어떤 민원인과의 접견도 제한한다)

**벌금 또는 손해배상의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해진 벌금 또는 손해배상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제45조**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를 한 것으로 본다.

(a) 연방교도소에 방문자 규제지점보다 안쪽 장소에서 금지물품을 소지한 때

(b) 연방교도소에 방문자 규제지점보다 앞쪽 장소에서, 제2조 중 "금지물품"의 정의의 (b)호 및 (c)호에 규정하는 물건을 소지한 때

(c) 수용자에게 금지물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로부터 이것을 수령한 때

(d) 사전의 허가를 얻지 않고, 수용자에게 보석류를 교부하거나 수용자로부터 그것을 수령한 때

(e) 연방교도소에 불법침입한 때

## 검사 및 압수

### 해석

**정의**

**제46조** 제47조부터 제67조까지에 있어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체강(體腔)"이란 직장 또는 질을 말한다.

"체강검사"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체강을 물리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체검사"이란 제96조 (1)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당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a) 소정의 방식으로 착의한 신체에 대한 촉수검사 또는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한 검사

(b) (ⅰ) 의류, 그 밖에 그자가 휴대하는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

(ⅱ) 탈의하도록 요구된 외투 및 상의에 대한 검사

"비침해적 검사"란 제96조 (1)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당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a) 소정의 방식으로 착의한 신체에 대한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한 비침해적인 성질의 검사

(b) (ⅰ) 의류, 그 밖에 그자가 휴대하는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

(ⅱ) 탈의하도록 요구된 외투 및 상의에 대한 검사

"나체검사"란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a) 소정의 방식으로 행하는 나체에 대한 육안검사

(b) 제96조 (1)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당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의류, 의류에 있는 물건, 그 밖에 그자가 휴대한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

"소변검사"란 분석을 위하여 통상의 배설작용에 의하여 소변표본을 제출하게 하는 소정의 절차를 말한다.

## 수용자에 대한 검사

###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제47조** ① 직원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에 대해 개별의 혐의가 없어도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통상의 의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사유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② 계약에 의거하여 소정범위의 업무를 연방교정국에 제공하고 있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충족하면 제1항에 따라 직원이 검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a) 당해 계약에 의거한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계약이 규정할 때,

(b) 당해 계약에 의거하여 주요업무에 그 검사가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을 때

(c) 그러한 검사를 하기 위한 소정의 연수를 마친 때

###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나체검사

**제48조** 직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혐의가 없어도 자기와 동성인 수용자에 대해 통상의 나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 다만, 이 소정의 사유는 신체에 은닉할 수 있는 금지물품을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수용자가 소재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야 한다.

(b) 수용자가 격리구금의 구획에 출입한 때

### 수용자에 대한 의체검사

**제49조** ① 직원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규율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의심을 가지는 때에는 그 수용자에 대하여 의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의거하여 소정범위의 업무를 연방교정국에 제공하고 있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충족하면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a) 당해 계약에 따른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 계약이 규정할 때

(b) 당해 계약에 따라 주요업무에 그 검사가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을 때

(c) 그러한 검사를 하기 위한 소정의 연수를 마친 때

### 수용자에 대한 나체검사

③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그 수용자와 동성의 직원이 나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규율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고,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품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때

(b) 그러한 판단을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을 연방교도소장에게 확신시킨 때

긴급검사

④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항 (b)호의 요건 또는 제3항의 동성이라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나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제3항 (a)호의 요건을 갖춘 때, 그리고

(b) 제3항 (b)호의 요건 또는 제3항의 동성이라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거물품이 상실 또는 파괴된다고 판단한 때

**직원에 의한 연방교도소장에의 보고**

**제50조** 직원은, 수용자가 체강에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때, 연방교도소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지물품을 압수하거나 또는 압수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X선의 사용, 배관설비가 없는 거실**

**제51조** 연방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섭취하거나 체강에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한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것 또는 쌍방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a) 그 수용자 및 정규 의사의 동의를 얻은 후 금지물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규 X선 기사가 X선 기기를 사용하는 때

(b) 연방교도소의 의료직원에게 알린 뒤 금지물품이 배설되는 것을 예측하고 배관설비가 없는 거실에 그 수용자를 수용하는 때

**체강검사**

**제52조** 연방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체강에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고, 그 금지물품을 발견 또는 압수하기 위해서는 체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규 의사가 체강검사를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검사의 권한**

**제53조** ① 연방교도소장은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검사를 하도록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a) 그 금지물품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및 안전 또는 연방교도소의 보안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b) 당해 금지물품을 압수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연방교도소 또는 동 소의 일정구획에 있는 수용자 전원에 대한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동성의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나체검사는 수용자 각자의 검사마다 당해 수용자와 동성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소변검사**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제1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소변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수용자가 제40조 (k)호에 규정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고, 그 규율위반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소변표본이 필요하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직원이 판단한 경우로 그 직원

이 연방교도소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때

(b) 소정의 무작위추출에 의한 소변검사계획의 일환으로, 개별의 이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연방교정국장 통달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소변검사를 실시하는 때

(c)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에의 참가요건으로 소변검사가 정해져 있는 때

(ⅰ) 사회와의 접촉이 있는 소정의 처우프로그램 또는 활동

(ⅱ) 소정의 약물남용프로그램

**동전**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직원 또는 연방교정국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자는 다음의 이유로 수형자에게 소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a)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해서는 아니되는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수형자가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준수사항을 범죄가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b)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해서는 아니되는 일시귀휴, 외부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 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수형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의무**

**제56조**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에 대하여 소변검사를 요구하는 자는 신속하게 그 요구의 근거 및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 당해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해명을 신청할 권리**

**제57조** ① 제54조 (a)호의 규정에 따라 소변검사를 받도록 요구된 자에게는 소변표본을 제출하기 전에 연방교도소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간격으로 소변검사를 받도록 요구된 자에게는 그 간격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당국자에게 해명할 상당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검사장비**

**제57.1조** ① 연방교정국은 수형자가 그들의 일시귀휴, 외부통근, 법정석방 또는 장기감독기간 동안 일정한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들이 특정지역에 머무를 것이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검사장비를 착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장비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은 수용자에게는 요구된 기간과 관련하여 소정의 당국자에게 해명할 상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거실검사

**거실검사**

**제58조** 직원은 소정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실 및 그 실내의 물건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정의 사유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 방문자에 대한 검사

###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제59조** 직원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혐의가 없어도 방문자에 대해서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통상의 의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소정의 사유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 의체검사

**제60조** ① 직원은 방문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제45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그 밖에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의심을 가진 때에는 그 방문자에 대한 의체검사를 할 수 있다.

나체검사

②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 방문자에게 즉시 임의로 퇴거할 기회를 준 후에, 방문자에 대해서는 동성의 직원이 나체검사를 할 수 있다.

(a) 방문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제45조에 의거한 범죄와 관련한 그 밖의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한 의심을 가진 경우,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b)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방교도소장이 확신하는 때

(ⅰ) 그 방문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제45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그 밖에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

(ⅱ)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

동전

③ 방문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제45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그 밖의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직원이 판단한 때에는,

(a) 직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그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다.

(ⅰ) 나체검사 실시에 대한 허가를 연방교도소장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ⅱ) 경찰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b) 연방교도소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그 방문자와 동성의 직원에 의한 나체검사를 허가할 수 있다.

(ⅰ) 그 방문자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제45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그 밖의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ⅱ)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때

### 유치된 방문자의 권리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방문자에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a) 유치이유를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하고

(b) 검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의뢰 및 통보를 할 상당의 기회를 지체 없이 주고 또한 그 권리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 차량검사

### 통상검사

**제61조** ① 직원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혐의가 없어도 소정의 방식으로 연방교도소에 소재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상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소정의 사유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한정하여야 한다.

### 금지물품 검사

② 직원은 제45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연방교도소에 소재하는 차량의 차내에 금지물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때에는 연방교도소장의 사전의 허가를 얻은 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 긴급검사

③ 직원은 제2항의 사전허가를 얻는 요건을 준수하려다가 생긴 지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금지물품이 파괴된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사에 대한 부가적 권한

④ 연방교도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한 때에는 서면으로 직원에게 연방교도소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a) 연방교도소 내에 금지물품이 있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계획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때

(b) 금지물품 또는 다른 증거를 찾고 압수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검사가 필요한 때

## 경고문의 게시

### 검사에 대한 경고

**제62조** 각 연방교도소에서는 그 시설부지의 입구 및 방문자 출입제한지점에 사람의 눈에 띄기 쉽게 경고문을 게시하고, 모든 방문자 및 연방교도소에 소재하는 차량은 본편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직원에 대한 검사

###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제63조** 직원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혐의가 없어도 다른 직원에 대하여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통상의 의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소정의 사유는 보안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한정하여야 한다.

###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

**제64조** ① 다른 직원이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건을 휴대하고 있고,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직원이 판단한 때에는,

(a) 직원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당해 직원을 유치할 수 있다.

(ⅰ)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에 대한 허가를 연방교도소장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ⅱ) 경찰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b) 연방교도소장은 그 직원이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품을 휴대하고 있고, 또한 그 금지물품 또는 증거물품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ⅰ) 당해 직원에 대한 의체검사를 직원에게 허가하고, 또한

(ⅱ) 당해직원에 대한 나체검사를 당해 직원과 동성의 직원이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유치된 직원의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직원에게는

(a) 그 유치이유를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하고,

(b) 검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의뢰 및 통보를 할 상당의 기회를 지체 없이 주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압수 권한

### 압수 권한

**제65조** ① 제50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은 제4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에서 금지물품 또는 규율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체강검사 또는 제51조 (a)호에 정한 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강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그 검사에서 금지물품 또는 규율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증거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제47조 제2항 또는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에서 금지물품을 발견한 때에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사회내 거주시설의 검사

### 의체검사, 거실검사

**제66조** ① 사회내 거주시설의 근무자로 연방교정국으로부터 그 취지의 권한을 받은 자는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일시귀휴의 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수형자가 현재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하였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심을 가진 경우에 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a) 당해시설에 재소하는 수형자에 대한 의체검사를 할 수 있고, 또한

(b) 그 수형자의 거실 및 거실 내의 물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압수의 권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피용자는 그 검사 시 당해 수형자의 석방기간 중의 준수사항위반과 관련한 증거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것을 압수할 수 있다.

"사회내 거주시설"의 정의

③ 본 조에서 "사회내 거주시설"이란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일시귀휴가 허가된 수형자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검사 및 압수에 관한 보고

**보고서 제출**

**제67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검사 및 그 검사 시의 물품압수에 관해서, 제96조 (o)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생활조건에 관한 통칙

**보호장비**

**제68조** 어떠한 자도 징벌로써 수형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잔혹한 취급 등**

**제69조** 어떠한 자도 수형자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모욕하는 처우 또는 징벌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선동하거나 또는 이것을 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해서는 아니된다.

**생활조건 등**

**제70조** 연방교정국은 모든 연방교도소, 각 연방교도소의 소내 환경 및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작업조건과 직원의 노동조건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부교통 및 접견**

**제71조** ① 수용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용자는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해진 합리적 제한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교도소 밖의 가족, 지인 및 그밖의 자와 접견, 통신, 그 밖의 적당한 외부교통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방문자의 허가물품

② 각 연방교도소에서는 방문자 규제지점에 방문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을 열거한 고지문을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자에 의한 불허가물품의 소지

③ 방문자가 사전에 직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2항에 정한 고지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물품을 방문자 규제지점에서 소지한 때에 직원은 그 접견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 판사**

**제72조** 모든 하원의원, 모든 상원의원 및 캐나다 법원의 모든 판사는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합리적 제한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열거하는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연방교도소의 참관

(b) 연방교도소내의 모든 구역을 방문

(c)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방문

**집회 및 접촉**

**제73조** 수용자는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합리적 제한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평온하게 집회를 하거나 또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위한 합당한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결정책정에 수용자의 참가**

**제74조** 연방교정국은 수용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용자 중 일정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교정국의 결정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교**

**제75조** 수용자는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합리적 제한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종교집회에 참가하거나 신앙을 표현하는 적당한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형자일반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제76조** 연방교정국은 수형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그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제77조** 연방교정국은, 제76조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여성수형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그 처우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a) 여성수형자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된 처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

(b)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ⅰ) 적당한 여성단체

(ⅱ) 그 밖의 적당한 개인 또는 단체

**수형자에의 수당금**

**제78조** ① 연방교정국장은 다음의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허가한 금액에 따라 수형자에게 수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연방교정국이 설치한 처우프로그램에 수형자의 참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b)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할 때

공제

② 연방교정국은 수형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수당금 또는 소정의 수입원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때에는,

(a) 제96조(z.2)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연방교정국장통달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수당금 또는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또한

(b) 수형자가 당해소득 또는 수당금을 받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거주설비비용의 상환으로 또는 연방교정국이 수형자에게 제공한 작업용 의류비용의 상환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당금 총액의 30% 또는 소득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96조(z.2.1)호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칙 및 연방교정국장 통달이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지불하도록 수형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원주민 수형자

### 정의

**제79조**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에 있어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원주민(aboriginal)"이란 인디언, 이뉴잇(Innuit, 에스키모인이 자신들의 민족에 대해 하는 호칭) 또는 프랑스인과 인디언의 혼혈을 말한다.

"원주민사회"란 오로지 원주민이 인솔하는 민족, 민족의회, 공동체, 사회, 조직 또는 그 밖의 집단을 말한다.

"교정업무"란 수형자에 대한 서비스 또는 처우프로그램(수형자의 감호 및 구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처우프로그램

**제80조** 연방교정국은 제76조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원주민 수형자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계획된 처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협정

**제81조** ① 연방법무부 장관 또는 동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원주민수형자에 대한 교정업무의 제공과 이를 위해 연방법무부 장관 또는 동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원주민사회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은 원주민 이외의 수형자에 대한 교정업무의 제공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수형자의 송치

③ 제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교정국장은 그 수형자 및 원주민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주민사회에 의한 감호 및 구속을 위해 그자를 이송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제82조** ① 연방교정국은 전국원주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원주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원주민수형자에 대한 교정업무의 제공에 관하여 연방교정국에 조언한다.

위원회에 의한 협의

② 제1항에 의거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원주민자문위원회는 원주민사회와 그 이외 원주민 문제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종교상의 지도자 및 장로

**제83조** ① 확인을 위하여 규정한다면, 원주민의 신앙 및 원주민 신앙상의 지도자 및 장로는 다른 종교 및 다른 종교상의 지도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연방교정국은 다음에 열거하는 위원회와 협의 후에 원주민 수용자가 원주민의 신앙상의 지도자 또는 장로에 의한 신앙상의 자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제82조에 정한 전국원주민자문위원회

(b)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적당한 지방원주민자문위원회

### 원주민사회로의 석방

**제84조** 수용자가 원주민사회로 석방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연방교정국은 그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원주민

사회에

(a) 당해 수용자의 가석방 평가 또는 법정석방일에 대해서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b) 원주민사회로의 석방 및 사회복귀에 관한 당해 수용자의 계획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기감독에 관한 계획**

**제84.1조** 장기감독명령에 따라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형자가 원주민사회에서 감독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수형자가 동의한 때에는, 연방교정국은 원주민사회에 대하여

(a) 당해 명령에 대해서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b) 원주민사회로의 감독조건부 석방 및 사회복귀에 관한 당해 수용자의 계획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의료

**정의**

**제85조** 제86조 및 제87조에 있어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의료"란 정식 의료종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의학적 치료, 치과치료 및 정신의료를 말한다.

"정신의료"란 판단력, 행동, 현실인식능력 또는 통상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족시키는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한 사고, 정서, 인지, 태도 또는 기억력의 장해에 대한 치료를 말한다.

"치료"란 의료상의 처치를 말한다.

**연방교정국의 의무**

**제86조** ① 연방교정국은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a)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b) 그 수용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의료를 이용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

② 제1항에 의거한 의료의 제공은 전문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합치한 것이어야 한다.

**건강상 고려사항**

**제87조** 연방교정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그 수형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상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수용시설, 이송, 처우상 격리 및 징벌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수형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하는 때

(b) 석방을 위한 수형자의 준비 및 수형자의 감독 시

**치료가 허가된 경우**

**제88조** ①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수용자가 치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사전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미 치료가 개시되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는 아니된다.

(b) 수용자는 언제라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는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

"사전동의"의 의미

② 제1항 (a)호의 적용상, 치료에 대한 수용자의 동의가 사전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 수용자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항이 고지되고, 수용자는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a) 치료의 결과로서의 개선, 회복, 진정 또는 치유의 가능성 및 그 정도

(b) 치료에 따르는 중대한 위험 및 그 정도

(c) 치료에 대신할 수 있는 상당한 선택방법

(d) 치료를 거부한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e) 치료를 언제라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수용자의 권리

**특별한 사안**

③ 제1항 (a)호의 적용상, 치료가 일시귀휴, 외부통근 또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동의를 자의적이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치료실험계획**

④ 수용자에게는 치료실험계획에 의거하여 치료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방교정국으로부터 독립한 위원회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 치료실험계획이 임상적으로 건전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윤리규준에 합치한다고 승인한 경우, 그리고

(b) 그 치료에 대한 수용자의 동의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해 동의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얻은 것으로 인정한 때

**주법의 적용**

⑤ 수용자가 제2항 (a)호부터 (e)호까지에 정한 모든 사항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는 해당 주법에 의해 규율된다.

**강제급양**

**제89조** 연방교정국은 수용자가 단식할 의사를 결정한 때, 단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에 의한 것이든 그 수용자에 대한 강제급양의 실시를 지시해서는 아니된다.

## 불복신청 절차

**불복신청 절차**

**제90조** 연방교정국장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수형자의 불복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절차는 제96조 (u)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불복신청절차의 이용**

**제91조** 불복신청절차는 모든 수형자가 불이익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용자의 석방

**통칙**

**제92조** 수용자는 연방교도소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장소에서 석방할 수 있다.

**연방교도소에서의 석방시간**

**제93조** ①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석방 또는 형기만료에 의한 특정일에 연방교도소로부터 석방되어야하는 수용자는, 특정일의 직전 평일의 통상집무시간대에 석방한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기석방

② 연방교도소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석방일보다도 조기에 석방하는 것이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촉진된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그 수용자를 법정석방 또는 형기만료에 의해 석방되어야 할 해당 날보다도 최대 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되었다고 간주되는 시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수용자는 실제로 석방된 시점에 법정석방에 의해 또는 형기만료에 의해 석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1 (삭제)

**청구에 의한 석방**

④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석방을 청구한 때에는 연방교정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수용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의 통상집무시간대 외에는 석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삭제)

##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제94조** ① 연방교도소장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된 자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자의 개선갱생을 돕기 위하여 연방교도소에 그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체류는 그자의 형기종료일을 초과하여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간주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연방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용자로 간주한다.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효력의 계속**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도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은 그 어느 것이든 유효하며 본 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연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제95조** 연방법무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말의 익월인 1월 31일 이후부터 그 의원의 회기 5일째까지는 당해 회계연도 연반교정국의 운영상황에 대해 기재한 보고서를 연방의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칙

**규칙**

**제96조** 총독은 다음에 열거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b) 본편이 연방교정국장 또는 연방교도소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 책임 또는 업무를 직원 또는 특정계급

의 직원이 행사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수행하는 것을 인가하는 규칙

(c) 제2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ⅰ)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유

(ⅱ) 장애의 정의

(ⅲ) 당사자가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방식 및 장애의 정도

(ⅳ) 인가된 처우프로그램의 범위

(ⅴ)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대방

(ⅵ)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 지불시기, 그것을 지불해야 할 기간 및 조건 그리고 지불방식

(d)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구분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이송에 관한 규칙

(e) 제70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f) 수용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연방교도소를 떠날 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수당금, 의류 그 밖의 필요품에 관한 규칙

(g) 수용자의 처우상 격리에 관한 규칙

(h)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할 시기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i) 제44조에 열거하는 징벌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규칙

(ⅰ) 징벌의 상한(중대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이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그것보다 높아야 한다)

(ⅱ) 징벌을 부과할 시에 참작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사정 또는 지침

(ⅲ) 징벌의 적용범위

(ⅳ) 징벌의 집행, 일시정지 및 철회

(j) 징벌절차로서의 청문을 실시하는 자가 내린 결정에 대한 심사를 정하는 규칙

(k)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ⅰ) 직원 이외의 자로 징벌절차로서의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자 또는 위 (j)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자의 임명

(ⅱ) 위 (ⅰ)에 규정하는 자의 봉급과 여비 및 일당

(l) 다음의 검사실시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ⅰ) 제46조 중 "의체검사"의 정의에 관한 (b)호의 검사

(ⅱ) 제46조 중 "비침해적 검사"의 정의에 관한 (b)호의 검사

(ⅲ) 제46조 중 "나체검사"의 정의에 관한 (b)호의 검사

(m) 소변검사를 할 때에 취해야 할 절차 및 소변검사결과의 처치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m.1) 연방교정국자에게 제57.1조에서 정하는 검사장비를 허가없이 바꾸거나 착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연방교정국장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칙

(n) 방문자가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이 수용자와 접견하거나 또는 연방교도소에 체류하는 방문자의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o)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서 정하는 규칙

(ⅰ) 제67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

(ii) 제65조 또는 제66조 제2항에 따라 압수된 물품 또는 그 이외의 이유에 의거하여 연방교정국의 보유에 속하는 물품의 환부 또는 몰수

(p) 연방교도소에의 출입제한 및 출판물, 시청각기재, 필름 및 수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제한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q) 영치금보지방좌에 보관해야 하는 수용자의 금전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r) 수용자의 작업 및 취업조건에 관한 규칙

(s) 교도작업에 관한 규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에 대한 보수 및 업무수행으로 인한 여비, 일당에 대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t) 수용자에 의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칙

(u) 수형자의 불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v) 연방교정국의 기구, 연수, 복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w) 수용자의 다음의 것의 이용에 관해 정하는 규칙

(i) 법률상담 및 법률도서

(ii) 법률도서 이외의 도서

(iii) 선서진술서작성 입회인

(x) 사법절차에서 수용자의 출석에 관한 규칙

(y)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취해야 할 절차에 관한 규칙(연방교정국이 사망한 수용자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차량, 장례식, 화장 또는 매장비용의 경우를 포함한다)

(z) 도주한 수용자의 재물처분을 규율하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z.1) 사망한 수용자의 재산을 해당 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자의 유산관리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관한 규칙

(z.1.1) 제78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수입원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또는 제78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득에 관한 규칙

(z.2) 제78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제목적 및 공제액 그리고 상한액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이 규칙에서는 공제액 또는 상한액을 연방교정국장통달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교정국장에 수여할 수 있다.

(z.2.1) 제78조 제2항 (b)호에 규정하는 금액의 징수방법(제96조 (q)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영치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을 국고에 이관하거나 이것 이외의 방법으로 한다)에 관해 정하는 규칙. 당해 금액을 연방교정국장 통달로 정할 수 있는 권한(백분율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한다)을 연방교정국장에게 수여하는 것에 관한 규칙 및 당해 금액의 지불면제사유에 관한 규칙

(z.3)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봉급 및 여비 그리고 일당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z.4) 연방교정국의 운영에 일반시민의 참여에 관한 규칙

(z.5) 직원의 실력행사가 있었던 경우에 취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z.6)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수용자의 경비분류급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는 수용자의 경비분류급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z.7)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그 이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연락에 관하여, 연방교도소의 보안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이것을 감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z.8) 동행자를 동반하는 일시귀휴(석방당국이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귀휴에 대한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외부통근에 관한 규칙

(z.9) 제26조에 따라 연방교정국장에 대한 청구방법과 양식 그리고 당해 청구의 처리에 관한 규칙

(z.10) 본편의 어떠한 규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연방교정국에 대하여 의무 또는 금지를 과하는 규칙

(z.11) 본편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

(z.12) 본편의 목적 및 규정을 일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규칙

## 규정

### 규정

**제97조** 본편 및 규칙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교정국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연방교정국 관리

(b) 제4조에 정한 사항

(c) 본편 및 규칙의 목적 및 규정의 일반적인 실시

## 연방교정국장 통달

### 연방교정국장 통달

**제98조** ① 연방교정국장은 제97조에 따라 제정된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방교정국장 통달로써 지정할 수 있다.

### 이용

② 연방교정국장 통달은 이것을 수형자, 직원 및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편 조건부 석방, 수용계속 및 장기감독

## 해석

### 정의

**제99조** ① 본편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전국가석방위원회"란 제103조에 의해 존속하고 있던 전국가석방위원회를 말한다. 또 주(州)가석방위원회가 제11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의해 본편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가석방위원회를 포함한다.

"연방교정국장"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내 거주시설"이란 제66조 제3항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주간가석방"이란 수형자에게 전면적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준비를 위하여 서면에 의해 별단의 허가가 없는 한 매일 밤 연방교도소, 사회내 거주시설 또는 주 교정시설에 도착해야한다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지시한 후에, 그 형기도중에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수형자에게 인정하는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주가석방위원회의 허가를 말한다.

"전면적가석방"이란 그 형기도중에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수형자에게 인정하는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주가석방위원회의 허가를 말한다.

"연방교도소장"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장기감독"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연방법무부 장관"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수형자"란

(a) 본 조의 시행 전 또는 후에, 다음의 형을 받아 집행중인 자를 말한다(소년법에서의 소년은 제외한다).

(ⅰ) 연방법의 규정에 의해 과해진 형 또는 본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주법의 규정에 의해 과해진 형

(ⅱ)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법원 모욕에 의해 유죄로 과해진 형이면서도 당해 법정에 복귀해야할 의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형

(b) 소년법 제76조, 제89조,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소년을 의미한다. 다만 그자의 유일한 형이 형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른 단기구금형인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다.

"가석방"이란 전면적가석방 또는 주간가석방을 말한다.

"연방교도소"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주 가석방위원회"란 주 의회 또는 부총독에 의해 설치된 온타리오주 가석방위원회, 퀘벡주 가석방위원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가석방위원회 그 밖의 가석방위원회를 말한다.

"규칙"이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 총독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형"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중상(重傷)"이란 현저한 육체적 상해 또는 현저한 심리적 장해를 말한다.

"연방교정국"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법정석방"이란 수형자의 형기종료일 전에 감독이 있는 구금으로부터 석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석방에 대해서 수형자가 제127조에 의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정석방일"이란 제12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기일을 말한다.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란 제116조에 따라 허가된, 연방교도소로부터의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말한다.

"피해자"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평일"이란 캐나다의 관공서가 당해 주에서 일반에게 개청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형기종료일이라고 하는 문언**

② 본편의 적용상 수형자의 법률상 형기종료일이라고 하는 문언은 다음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그 형기의 만료기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a) 수형자가 법정석방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간

(b) 본 조의 시행 시에 수형자의 기득점으로 계산되어 있던 감형일수

**권한 등의 행사**

③본편 또는 규칙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a) 본편에 의해 연방교정국장에게 부여된 권한, 직무 및 임무는 연방교정국장만이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연방교정국장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 또는 그 보직이 수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방교정국장을 대리하여 집무하는 자가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또한

(b) 본편에 의해 연방교도소장에게 부여된 권한, 직무 및 임무는 연방교도소장만이 이것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고, 연방교도소장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 또는 그 보직이 수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점으로부터 그 연방교도소를 관리하는 직에 있는 자가 이를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다.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관계**

**제99.1조** 장기감독명령에 의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편의 적용상 이들을 수형자로 간주하고 제100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자 및 그 장기감독에 적용한다.

**소년**

**제99.2조** 본 편에서 소년범죄법 제89조,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같은 법 제42조 제12항에 따라 형의 효력이 개시되는 날에 그자의 형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목적 및 원칙

**조건부 석방의 목적**

**제100조** 조건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준법적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가장 잘 촉진할 것이라는 석방의 시기 및 준수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평온하면서 안전한 사회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우선 고려사항**

**제100.1조** 사회보호는 전국가석방위원회와 주가석방위원회가 심리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가석방위원회의 지도원리**

**제101호** 전국가석방위원회 및 주가석방위원회가 조건부석방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지도해야 할 원리는 다음과 같다.

(a) 가석방위원회는 심리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이것에는 형의 선고를 한 판사가 판시한 이유 및 권고, 심리 또는 양형 시 심문에서 얻은 정보, 교정당국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평가 그리고 피해자 및 수형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포함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

(b) 가석방위원회는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다른 형사사법부문과 적시에 관련 정보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정책 및 처우프로그램을 수형자,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위원회의 율효성 및 공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c) 가석방위원회는 사회보호와 양립하는 범위에 있어서, 오직 필요하고 적당한 만큼만 제한하는 결정을 내

려야 한다.

(d) 가석방위원회는 적절한 정책을 채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직원에게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e) 조건부석방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는 적절한 정보, 결정의 이유 및 결정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석방의 허가기준**

**제102조**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주가석방위원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a) 수형자에게는 그가 복역하고 있는 형의 법률상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재범을 하여 사회에 과도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b) 수형자의 석방이 준법적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보호에 도움이 될 경우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존속**

**제103조**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캐나다가석방위원회로서 계속되고, 동 위원회는 연방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총독이 임명하는 10인을 넘지 아니하는 상근위원과 상당수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 직원은 비리가 없는 한 각각 10년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관직에 취임한다.

**위원장 및 상석부위원장**

**제104호** 총독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 가운데 한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연방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상근위원 가운데 한사람을 상석부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의 적격**

**제105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업무운영에 사회의 가치관 및 의견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 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가석방 및 법정석방에 관한 시민들을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에 임명되는 자에 대해서는 출신계층이 충분히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위원

②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비상근위원은 상근위원과 동일한 권한 및 직무를 가진다.

부국

③ 위원장 및 상석부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은 임명서에 지정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어느 한 부국(部局)에 배치된다.

동전

④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권상 당연히 동 위원회의 모든 部의 위원이며,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위원장이 승인하는 조건 및 기간에는 동 위원회의 어떠한 부의 심리합의체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방침

⑤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책정된 방침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족수

⑥ 제152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종류의 심리사건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 본편에 의거하여 심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한 종류의 심리사건을 위하여서 규칙이 지정하는 최소의 위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리합의체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리위원**

**제106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에는 총독은 연방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당해 위원을 대신하여 집무할 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대리위원은 그 권한 및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시하는 권한 및 직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이 가지는 모든 권한 및 직무를 가진다.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제107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본 법,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 수형자이송법 그리고 형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속 관할권 및 무조건의 재량권을 가진다.

(a)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

(b)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시키거나 취소하는 것. 이 경우에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의 결과로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그 수형자가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c)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종결 또는 취소를 철회하는 것

(d)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된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e) 다음의 어떠한 형으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 또는 허가한 결정을 철회하는 것

(ⅰ) 필요적 양형으로 과해진 종신형 또는 사형에서 감형된 종신형

(ⅱ) 부정기형

(ⅲ)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한 형

주법에 의거한 범죄

② 제1항에 의거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은 주법에 의거하여 과해진 형으로 형법 제743.1조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모든 수형자에게 미친다. 이 경우에 그 형이 복역해야할 유일의 형이든, 그렇지 않으면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거하여 과해진 하나 이상의 다른 형과 동시집행 또는 순차집행으로 복역해야할 형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주가석방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관할권**

**제108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의 주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 제107조 제1항 (a)호부터 (c)호까지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관할권 및 재량권을 가진다.

주법에 의거한 범죄

② 제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의거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은, 주법에 의거하여 과해진 형으로 연방법에 의거하여 과해진 형과의 동시집행에 의하여 또는 순차집행에 의하여 복역해야 할 형을 선고받은 모

든 수형자에게 미친다.

**보충 입법**

③ 제2항의 규정은 동 항에서 규정하는 관할권을 전국가석방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법이 제정되고, 그 제정 후에 발효되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이것을 그 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불적용**

④ 가석방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본 조의 시행 직전까지 적용되고 있던 주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조를 해석한다.

**자동차 등에 관한 금지명령**

**제109조** 전국가석방위원회는 형법 제259조에 의거하여 발해진 금지명령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과 후, 신청에 의거하여 그 잔여기간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 종신의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의 개시부터 10년 경과 후

(b) 5년을 초과하고 종신보다도 짧은 기간의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의 개시부터 5년 경과 후

**특사감형**

**제110조**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연방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취지의 지시가 있은 때에는 동 장관에게 특사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동 장관이 요구하는 조사 또는 조회를 하거나 또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의 보급**

**제111조** 전국가석방위원회는,

(a) 형사사법제도의 다른 부문과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책을 정비하여야 하고, 또한

(b) 수형자, 범죄피해자, 피해자단체 그밖에 본편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해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방침 및 활동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책을 정비하여야 한다.

## 주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제112조** ①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주가석방위원회는 당해 주의 주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의 가석방에 관해서 본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수형자는 제외한다.

(a) 필요적 양형으로서 종신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

(b) 종신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c)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

**주간가석방의 관할권**

② 주가석방위원회는 주간가석방과 관련하여 본 조에 의거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의 인용에 의한 삽입**

**제113조** ①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주에서, 그 주의 부총독은 주가석방위원회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본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주가석방위원회 및 그 관할권에 속하는 수형자에게 적용하기

로 한 취지를 명령으로 고시할 수 있다.

주의 규칙

② 주의 부총독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 총독이 전국가석방위원회 및 그 관할권에 속하는 수형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과 목적으로, 당해 주의 주가석방위원회 및 그 관할권에 속하는 수형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주 주의 변경**

**제114조** ① 본 조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어떤 주에서 가석방된 후에 다른 주에 이동한 수형자는 계속해서 그 가석방을 허가한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연방과 주와의 협정

② 연방법무부 장관은 총독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주의 주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다른 주의 주 교정시설로부터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해 가석방된 후에 당해 주로 이동하는 수형자에 관한 관할권을 이관할 수 있다.

동전

③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주의 주정부는 캐나다연방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주가석방위원회에 의해 가석방된 후에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로 이동하는 수형자에 관한 관할권을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주 상호간의 협정

④ 주정부는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어느 주가석방위원회에 의해 가석방된 후에 다른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이동하는 수형자에 관한 관할권을 이관할 수 있다.

법정석방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은 필요한 상황에 맞게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최저복역기간**

**제115조** ①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형기부분을 복역한 후, 이들을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로 석방할 수 있다.

(a)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로 (a.1)호에 규정하는 수형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이 될 때까지 그자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 3년을 감한 기간

(a.1) 형법 제74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ⅰ) 가석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복역해야 할 구금기간 중 그 5분의 1을 제외한 기간을 그자가 복역한 때를 만료일로 하는 기간

(ⅱ) 제120.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 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달할 때까지 그자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으로부터 3년을 감한 기간

(b) 부정기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로 (b.1)호에서 정하는 수형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기간

(ⅰ) 형법 제76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달할 때까지 그자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 3년을 감한 기간

(ⅱ) 제120.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 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달할 때까지 그자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 3년을 감한 기간

(b.1) 본 호의 시행일에 부정기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ⅰ) 3년

(ⅱ) 제120.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달할 때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 3년을 감한 기간

(c) 상기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ⅰ) 6월

(ⅱ) 전면적 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달할 때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의 2분의 1

**예외**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있고, 긴급의료처치를 하기 위하여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가 필요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중(重)경비급 수형자**

③ 제30조 제1항 및 제96조(z.6)호의 규칙에 따라 중(重)경비분류급의 수형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자격이 없다.

**허가요건**

**제116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07조 제1항(e)호에 규정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a) 수형자에게는 일시귀휴의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사회에 과도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의료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개선갱생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가족교류 또는 인격계몽을 이유로 또는 부모로서의 책무이행 그밖에 참작해야 하는 이유로 연방교도소로부터 일시귀휴를 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유익할 것

(c)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에 비추어 일시귀휴를 허가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점이 없을 것

(d) 일시귀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 있을 것

② 연방교정국장 또는 연방교도소장은 제107조 제1항 (e)호에 규정하는 수형자 이외의 수형자에 대해서 제1항 (a)호부터 (d)호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의료상의 이유**

③ 의료상의 이유에 의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기계발 또는 사회봉사**

④ 제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봉사 또는 자기계발을 이유로 하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중(中)경비분류급의 수형자에게는 연간 3회를 넘지 아니하는 빈도로, 또 경(輕)경비분류급의 수형자에게

는 연간 4회를 넘지 아니하는 빈도로 최대한 15일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간격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유로 허가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다음회의 일시귀휴와의 간격에 적어도 7일의 구금기간을 두어야 한다.

예외

⑥ 특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최대한 60일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회당 60일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밖의 이유에 의한 일시귀휴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에 의해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중(中)경비분류급의 수형자에게는 최대한으로 매월 합계 48시간, 그리고 경(輕)경비분류급의 수형자에게는 최대한으로 매월 합계 72시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규칙

⑧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신청하기 위한 사유, 방식 및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동시간

⑨ 수형자에게,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가 허가된 기간 외에 외출중 체재가 허가된 당해 장소로의 왕복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줄 수 있다.

일시귀휴의 철회

⑩ 전국가석방위원회, 연방교정국장 또는 연방교도소장은 그 누구가 해당 수형자에게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허가한 경우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시귀휴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다.

(a) 일시귀휴기간 중의 준수사항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철회가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때

(b) 일시귀휴를 허가한 근거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c) 일시귀휴를 허가한 당시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그 수형자와 관련한 일시귀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 때

**연방교정국장에의 권한위임**

**제117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일정종류의 수형자 및 일정종류의 일시귀휴에 대해서 동 위원회가 제116조에 따라 가지는 권한을, 기간 및 조건을 지정한 후에 연방교정국장 또는 연방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병원에의 권한위임

② 제16조 제1항 (a)호에 의거한 협정에 의해, 제107조 제1항 (e)호 또는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수형자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전국가석방위원회, 연방교정국장 또는 연방교도소장은 그 수형자에 관해 제116조에 따라 가지는 각자의 권한을, 기간 및 조건을 지정한 후에 당해 병원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방교도소장에 의한 일시정지

③ 전국가석방위원회가 그 수형자 또는 그 일시귀휴에 대해서 제1항에 의거한 권한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

방교도소로부터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가 실시된 때에는, 당해 연방교도소장은 그 일시귀휴를 허가한 당시에는 동 위원회에 제공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그 수형자의 구속을 계속하거나 연행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일시귀휴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위원장에게 일시귀휴의 일시정지위임**

④ 연방교도소장은 수형자에 대해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일시정지하는 때에는, 이것을 심리사건으로 하여 즉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하고 또한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그 일시귀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체포 및 연행을 위한 영장**

**제118조** 제116조 제10항의 규성에 의해 또는 제1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한 권한위임으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철회하는 자 또는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일시정지하는 자는, 그 수형자가 연방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병원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형자를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가석방 자격

**주간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제119조** ① 형법 제746조 제1항,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그리고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수형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형기부분을 복역한 후, 이들을 주간가석방에 의해 석방할 수 있다.

(a) 1997년 10월 15일 이전에 예방구금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1년

(b) 아래 (b.1)호에서 정하는 수형자 이외의 수형자로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중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i) 형법 제76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이를 때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부터 3년을 감한 기간

(ii) 제120.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이를 때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부터 3년을 감한 기간

(b.1) 본 호 시행일부터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i) 3년

(ii) 제120.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에 이를 때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에서부터 3년을 감한 기간

(c) 위 (a)호 또는 (b)호에 규정하는 형 이외의 형으로 2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것이든 긴 기간

(i) 전면적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날부터 6개월 전의 시점을 종기로 하는 형기부분

(ii) 6월

(d) 2년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면적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복역하여

야 하는 형기부분의 2분의 1

주간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①.1 형법 제746.1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0.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746.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수형자 또는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의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에 대해서 제120.2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기일의 3년 전이 될 때까지 이들을 주간가석방으로 석방해서는 아니된다.

주간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 종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수형자

①.2 형법 제746.1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0.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746.1조 제3항에 정한 수형자 또는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형기부분에서 어느 것이든 더 긴 기간을 복역한 후, 그자를 주간가석방으로 석방할 수 있다.

(a) 가석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복역해야 할 구금기간 중 5분의 1을 제외한 기간을 그자가 복역한 때를 만료일로 하는 기간

(b) 제12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전면적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자가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부분으로부터 3년을 감한 기간

단기형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6월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주간가석방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대한 심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형의 정의**

**제119.1조** 제119.2조에서 제120.3조까지의 적용상 그리고 문맥상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이란 제139조 제1항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형을 의미한다.

**소년의 형**

**제119.2조** 제120조에서부터 제120.3조까지의 적용상, 소년범죄법 제42조 제2항 제n호, 제o호, 제q호, 제r호에 의해 형이 부과된 소년범이 같은 법 제89조, 제92조 또는 제93조에 의하여 성인의 주교정시설 또는 연방교도소로 이송되는 소년은 소년범죄의 형으로 구속과 감독받은 총합계의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제120조** ① 형법 제746.1조 및 제761조에 따라, 그리고 동 법 제743.6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제140.4조 그리고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형기의 1/3 또는 7년 중 어느 것이든 단기로써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으로 하여 수형자는 이 결격기간을 복역하여 종료하는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종신형

② 형법 제743.6조 또는 국가방위법 제140.4조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적 양형으로서 과해진 종신형에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7년을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으로 하고, 이 결격기간을 복역하여 종료하는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이 경우에 그 형에 과해진 이유가 된 범죄에 관해서 수형자가 체포 · 구속된 날로부터 그 형이 과해진 날까지의 신병구속기간은 결격기간인 7년에서 감한다.

### 동시의 추가형

**제120.1조** ① 형을 복역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a) 형법 제743.6조 또는 국가방위법 제140.4조에 영향을 받은 제139조 제1항의 형들로 구성된 모든 부분 중에 부적격 기간

(b) 그 형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적격 기간

### 복수형의 연속집행

② 복역 중이거나 또는 제139조 제1항에 의한 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복역하고 있는 형에 연속하여 집행되는 추가형을 받거나 또는 같은 날에 연속 집행되는 둘 이상의 추가형과 현재 복역하고 있는 형에 연속하여 집행되는 추가형을 받는 경우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두 개의 기간을 복역하여 종료하는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a) 추가형을 받을 때에 그자가 복역하고 있던 형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의 잔여부분

(b) 추가형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

### 추가형의 연속집행

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역 중이거나 또는 제139조 제1항에 의한 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추가형 또는 그들이 추가형을 부가받을 당시에 복역하고 있는 형에 연속하여 집행되는 2개 이상의 형을 받거나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추가형을 받은 경우(현재 복역하고 있는 형에 동시집행되는 형과 추가형에 연속하여 집행되는 하나 이상의 형을 포함한다) 추가형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더 장기의 결격잔여기간을 마칠 때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a) 추가형을 포함한 제139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기간과 추가형을 부과받을 방시에 복역하고 있던 형의 기간 사이에서 더 장기의 형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b) 추가형의 결격 기간과 연속집행되는 형의 부적격기간 중 장기의 기간

### 추가형의 동시집행형

**제120.2조** ①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 또는 제139조 제1항에 따라 형에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추가형을 받은 때에 그 추가형을 받을 당시에 복역하고 있던 형의 집행 중부터 그것과 동시집행으로 복역해야 하는 추가형이 있는 때에는, 그자는 다음 중 늦은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a) 추가형을 받을 당시에 그자가 복역하고 있던 형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을 복역하고 종료하는 날

(b) 다음의 두 개의 기간을 복역하고 종료하는 날

(ⅰ) 제1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형을 포함한 형 중, 형법 제743.6조 또는 국가방위법 제140.4조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의 적용을 받는 형기부분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

(ⅱ) 그 나머지 형기부분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

### 종신형과 추가형

② 종신형 또는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하나 또는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정기형인 추가형을 받은 때에는 그자는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두 개의 기간을 복역하고 마치는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a) 그자가 복역하고 있는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의 잔여부분

(b) 추가형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추가형이 둘 이상인 경우, 본 조 제1항과 제120.1조를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가석방 결격기간의 단축**

③ 제2항에 규정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형법 제745.6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또는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석방자격을 얻을 수 없는 구금년수가 단축된 때에는 그자는 추가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두 개의 기간을 복역하고 종료하는 날까지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이 없다.

(a) 그자가 복역하고 있었을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의 잔여부분에서 당해 단축분을 공제한 기간

(b) 추가형에 대한 전면적가석방의 결격기간(추가형이 둘 이상인 경우 본 조 제1항과 제120.1조를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상한기간**

**제120.3조** 형법 제745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제2항 또는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추가형을 받은 경우, 그자의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일은 다음의 날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a) 형을 복역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b) 형 또는 제139조 제1항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가석방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날짜가 변동되는 추가형을 받은 경우,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c) 형 또는 제139조 제1항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같은 날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날짜가 변동되는 2개 이상의 추가형을 받은 경우,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을 복역하고 종료한 날

**예외적인 경우**

**제121조** ① 제102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한 제119조부터 제120.3조까지의 규정 및 형법 제746.1조 및 제761조, 국가방위법 제140.3조 및 전쟁범죄법 제15조 제2항과 형법 제743.6조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수형자에게는 언제라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a) 말기적 질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b) 구금을 계속하면 신체 및 정신상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

(c) 구금을 계속하면 형의 선고 시에는 합리적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과도한 고통을 받게 되는 수형자

(d) "범죄인인도법" 또는 "도주범죄인법"에 의거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그 인도 시까지 수용되어야 하는 자

**예외**

② 제1항 (b)호에부터 (d)호까지의 의 규정은 다음의 수형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필요적 양형으로 과하여진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또는 사형이 감형된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b) 연방교도소에 부정기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 가석방 심리

**주간가석방의 심리**

**제122조** ① 제119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신청에 의거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기

에 제2항에 규정하는 수형자 이외의 모든 수형자와 관련한 주간가석방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건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주간가석방제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거하여 규칙이 정한 시기에 그 주의 주 교정시설에서 2년 이상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와 관련한 주간가석방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연기

③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개시된 심리에 관해서는 주간가석방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인정된 이유로 규칙이 정한 상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기간에 그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년간 재선청 불가

④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주간가석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규칙이 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그것보다도 앞의 시점까지 주간가석방의 신청은 거듭하여 신청할 수 없다.

주간가석방의 상한기간

⑤ 주간가석방은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를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를 거친 뒤에 각 회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갱신기간으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신청의 철회

⑥ 수형자는 주간가석방의 심리개시 전으로부터 14일 내에는 주간가석방의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철회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하에서 그 전에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면적가석방의 심리**

**제123조** ①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시기에 2년 이상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로,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형자와 관련한 전면적가석방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심리의 면제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전면적가석방의 대상자로 고려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동 위원회에 통지한 수형자와 관련한 전면적가석방에 대해서는 그자가 당해 통지를 서면으로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제5항, 또는 제5.1항에 의거한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

③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신청에 의거하여 연방교도소에서 또는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의 주교정시설에서, 2년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모든 수형자와 관련한 전면적가석방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단기형

③.1 전국가석방위원회는 6월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전면적가석방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대해서 심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결정 또는 연기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개시된 심리에 대해서 전면적가석방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인정된 이유에 따라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 상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적당한 기간, 그 심리를 연기할 수 있고 또는 주간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재심리

⑤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22조 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심리를 한 뒤에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때 또는 제2항에 의해 심리를 하지 않았던 때에는, 그 이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까지는 심리가 실시된 날 또는 실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심리하여야 한다.

(a) 수형자가 전면적가석방으로 또는 법정석방으로 석방되는 때

(b)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하는 때

(c) 수형자의 법정석방일까지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4월 미만이 되는 때

⑤.1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을 종료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 종료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까지는 각 심리가 실시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심리를 하여야 한다.

(a) 수형자가 전면적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으로 석방되는 때

(b) 수형자의 형기가 종료하는 때

(c) 수형자의 법정석방일까지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4월 미만인 때

1년간 재신청 불가

⑥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본 조에 따라 심리를 한 후에 전면적가석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규칙이나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때보다 더 앞선 시점까지 전면적가석방에 대해 거듭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의 철회

⑦ 수형자는 주간가석방의 심리개시 전으로부터 14일 내에는 주간가석방의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철회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그 전에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수형자**

**제124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가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심리를 하기 위하여 소정의 시기에 불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수형자가 재차 구속되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던 때에는 즉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석방시한

②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나 그 석방일의 지정이 없는 때에도 가석방은 유효하다. 그리고 당해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한도의 기간이 지난 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취소

③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에 관해서, 가석방을 허가할 당시에는 동 위원회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그 가석방에 대한 재심리를 하여, 그자가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면 그 가석방을 취소하고 그자가 이미 석방되었다면 그 가석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재심리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리를 하여, 원결정을 추인하거나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125조** (삭제)

**제126조** (삭제)

**제126.1조** (삭제)

## 법정석방

### 권리

**제127조** ① 본 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송치 또는 이송되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본 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날에 석방되거나 또는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권리를 가진다.

**본 법 이전의 범죄에 의한 형**

② 본 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992년 11월 1일 이전에 1개 또는 수개의 범죄로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간을 그 형에서 공제하고 법정석방일을 결정한다.

(a) 동일에 그 수형자가 자동적 또는 직접 획득한 감형일수

(b) 동일 직전에, 당시의 규정에 따른 연방교도소법과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에 의하여 그 형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일수

**본 법 이후의 범죄에 의한 형**

③ 본 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992년 11월 1일 이전에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로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날을 법정석방일로 한다.

**본 법 이전 및 이후에 걸친 범죄에 의한 형**

④ 본 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992년 11월 1일 이전에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로 구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1992년 11월 1일 이후에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로 구금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날의 어느 것이든 늦은 날을 법정석방일로 한다.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취소된 경우**

⑤ 제130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취소된 수형자의 법정석방일은,

(a) 제135조에 의거한 일시정지 또는 취소의 결과로서 재구속된 후 남은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날

(b) 제135조에 의거한 일시정지 또는 취소의 결과로서 재구속된 후, 추가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추가형을 포함하여 남은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날(재구속된 날 형이 시작되고 형기종료일에 종료한다)

**추가형**

⑤.1 수형자가 의회법에 의해 추가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자의 법정석방일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로 인하여 재구속된 날과 추가형으로 인하여 재구속된 날 가운데 먼저 재구속된 날로부터

(a) 추가형을 부과받을 당시에 복역하고 있던 형의 남은 기간을 복역하여 종료한 날

(b) 추가형을 포함한 전체 형기와 추가형을 부과받을 당시에 복역하고 있던 형기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기간의 3분의 2를 복역한 날이다.

감형일수의 획득실패 또는 몰수

⑥ 주 교정시설에서 복역해야하는 형을 받을 수형자로,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에 의거하여 감형일수의 획득에 실패하거나 감형일수가 몰수된 자가 연방교도소에 이송(그 이송이 제16조 제1항 (b)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의한 이송인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그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쌍방의 기간을 복역하고 마치는 날까지는 석방될 권리가 없다.

(a) 감형일수의 획득에 실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감형일수가 몰수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자가 본 조에 따라 복역하여야 하는 구금기간

(b) 그자가 획득에 실패하거나 또는 몰수되고,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에 의거하여 재차 기득점으로 계산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감형일수에 상당하는 구금기간

석방 후 감독

⑦ 1970년 8월 1일 이후에 형의 선고를 받고, 송치 또는 이송(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에 의한 이송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해 연방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로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된 자는 본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석방 후 감독을 받는다. 그 밖의 수형자로서 본 조에 따라 석방된 자는 석방 후 감독을 받지 아니하다.

**소년범죄법**

**제127.1조** 본 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년범죄법 제42조 제2항 제n호, 제o호, 제q호, 제r호에 의하여 소년형을 부과받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 제92조 제2항 또는 제93조 제2항에 따라 연방교도소로 이송된 소년은 소년형의 구금이 종료하는 날에 법정석방으로 연방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효과

**형의 계속**

**제128조** ①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에 의하여 석방되어 있는 수형자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그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는 형의 복역을 계속한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권리

② 주간가석방 기간 중의 준수사항에 의해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수형자는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에 의하여 석방되어 있는 동안, 본 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준수사항에 따라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자는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가 일시정지, 철회, 종결되거나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을 이유로 재차 구속되지 아니한다.

간주규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6항, "범죄인인도법" 제64조의 적용상, 전면적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전면적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일시정지, 종결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때까지 캐나다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한, 그 형을 복역하

고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추방명령

④ 본 법,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과 형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 주간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자격이 없다.

전면적가석방 자격취득일에의 가석방부적격

⑤ 전면적가석방 자격취득일 전에 주간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를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주간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수형자는 다시 구금되어야 한다.

예외

⑥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a호, 제66조 제b호 또는 제114조 제1항 제b호에 의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 본조 제4항에서의 범죄자는 주간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자격을 가진다.

예외

⑦ 본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형자의 추방명령이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일에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a호, 제66조 제b호 또는 제114조 제1항 제b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수형자의 주간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는 재개된다.

## 법정석방기간 중 수용계속

연방교정국에 의한 사건의 심사

**제129조** ① 연방교정국장은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하는 범죄를 이유로 과해진 형을 포함하고 있는 2년 이상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법정석방일 전에 그자와 관련한 법정석방에 대해서 연방교정국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의 일정사건의 위임

② 연방교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석방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수형자의 법정석방일의 6개월 전까지는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모든 정보를 첨부하여 이를 심리사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a)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한 형을 포함하고 있는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ⅰ) 그자가 범죄의 실행으로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였고, 그리고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재차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 또는

(ⅱ) 그자의 범죄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이고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재차 아동에 대한 성범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

(b) 제2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

하는 범죄에 의한 형을 포함하는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있어서는, 그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재차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의 사건위임

③ 연방교정국장은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는 범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또는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한 때에는 그 판단을 한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모든 정보를 첨부하여 그자와 관련한 법정석방을 심리사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위임은 수형자의 법정석방일 전 6개월 이내가 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a) 연방교정국장이 법정석방일 전 6개월간 그 수형자의 행동 또는 당해 6개월간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때

(b) 본 법에 의거하여 재차 형기계산을 한 결과로서 그 수형자의 법정석방일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또는 그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어버린 때

(c) (삭제)

위임할 때까지의 유치

③.1 제3항 (b)호가 적용된 때에 이미 법정석방일이 경과해버린 경우, 연방교정국장은 동 호에 따라 재차 형기계산을 한 때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심리사건을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임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가 없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정보청구

④ 연방교정국은 전국가석방위원회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기한

⑤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이 그 수형자의 법정석방일 전 6개월 내에 또는 법정석방일 이후에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된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시기에 당해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

(a) 당해 심리사건이 법정석방일의 4주 전보다 앞서 동 위원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법정석방일 전에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b) 당해 심리사건이 법정석방일전 4주 이내부터 법정석방일의 3일 전보다 앞서 동 위원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ⅰ) 가능하다면 법정석방일 전에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를 하거나 또는

(ⅱ) 법정석방일 전에 잠정적인 심리를 하여야 한다.

(c) 당해심리사건이

(ⅰ) 법정석방일 당일에 또는 법정석방일 전 3일 이내에 동 위원장에 위임된 때, 또는

(ⅱ) 법정석방일이 이미 경과한 후에 제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동 위원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일부터 3일 이내에 잠정적인 심리를 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심리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적인 심리는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결정

⑦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적인 심리를 한 경우, 제공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당해 심리사건이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때로부터 늦어도 4주 이내에 당해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주당국에의 권한위임

⑧ 연방교정국장은 주의 교정당국에 대해서, 그 주의 주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와 관련한 본 조에 따른 연방교정국 및 동 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의

⑨ 본 조, 제130조 및 제132조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중대한 약물범죄"란 제2부록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란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a) 형법의 다음 각 조에 따른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즉,

(ⅰ) 제151조(성적 간섭)

(ⅱ) 제152조(성적접촉의 권유)

(ⅲ) 제153조(성적 착취)

(ⅳ) 제160조 제3항(아동의 면전에서 수간(獸姦) 또는 아동에게 수간하도록 선동하는 것)

(ⅳ.1) 제163.1조(아동포르노)

(ⅴ) 제170조(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성적행위 주선)

(ⅵ) 제171조(아동의 성적행위에 대한 가장의 묵인)

(ⅶ) 제172조(아동을 타락시키는 행위)

(ⅶ.1) 제172.1조(아동유혹)

(ⅷ) 제212조 제2항(아동매춘으로 인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

(ⅸ) 제212조 제4항(아동에 의한 성적 서비스를 받는 행위)

(b) 형법의 다음 각 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ⅰ) 제155조(근친상간)

(ⅱ) 제159조(항문에 의한 성교)

(ⅲ) 제160조 제1항 및 제2항(수간 및 수간을 강요하는 행위)

(ⅳ) 제271조(성적 폭행)

(ⅴ) 제272조(흉기, 제3자에의 협박, 또는 신체가해를 하는 성적폭행) 및

(ⅵ) 제273조(가중유형의 성적폭행)

(c) 1988년 1월 1일 직전에 당시 규정에 따른 형법(1970년 개정캐나다연방법전 제C-34장)의 다음의 각 조에 의거한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ⅰ) 제146조(14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교)

(ⅱ) 제151조(16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의 유괴) 및

(ⅲ) 제167조(능욕에 대한 가장의 묵인)

(d) 1988년 1월 1일 직전에 당시 규정에 따른 형법(1970년 개정캐나다연방법전 제C-34장)의 다음의 각 조에 의거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ⅰ) 제153조(의붓딸과의 성교)

(ⅱ) 제155조(남성의 동성애 또는 수간)

(ⅲ) 제157조(중대한 성희롱행위)

(ⅳ) 제166조(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능욕의 주선)

(e) 1983년 1월 4일 직전에 당시 규정에 따른 형법(1970년 개정캐나다연방법전 제C-34장)의 다음의 각 조에 의거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ⅰ) 제144조(강간)

(ⅱ) 제145조(강간미수)

(ⅲ) 제149조(여성에 대한 강제성추행)

(ⅳ) 제156조(남성에 대한 강제성추행)

**범죄를 범할 우려의 인정**

⑩ 수형자가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는 범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또는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는 그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가까지 판정할 필요는 없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위임사건의 심리**

**제130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와 관련한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이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정국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또는 제129조 제3항 또는 제3.1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교정국장으로부터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위임된 때에는 제129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시기 및 방식에 있어서

(a) 그 위임 및 심리사실을 수형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b) 당해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그 심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의 구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형자는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당해 수형자와 관련하여 본 조에 의거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가 없다.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결정**

③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형자와 관련한 법정석방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형자를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는 석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명령할 수 있다.

(a)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에 의한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이 자를 석방하면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타인에게 사

망 또는 중상을 야기할 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b) 제2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에 의한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이 자를 석방하면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c) 제129조 제3항 또는 제3.1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과 관련한 수형자에 대하여, 이 자를 석방하면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할 범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또는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법정석방 금지명령의 발효시기**

③.1 제3항에 의거한 법정석방 금지명령은 당해 명령이 내려진 날에 효력을 발한다.

**추가형의 경우에 법정석방 금지명령의 효력**

③.2 제3항에 따라 법정석방 금지명령이 내려진 형의 형기종료일 전에 수형자가 추가형을 받은 경우에, 제1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형을 포함한 형에 대한 형기종료일이 당해 추가형을 받기 전에 복역하고 있던 형의 형기종료일보다 뒤가 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추가형의 결과로 법정석방일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법정석방일이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면,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시기 및 방식으로 법정석방 금지명령에 대하여 재심리를 하여야 한다.

(b) 추가형의 결과로서 법정석방일이 추가형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라면 그 법정석방 금지명령은 취소된다.

**재심리에 대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권한**

③.3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3.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리를 한 때에는,

(a) 그 법정석방 금지명령이 내려진 형에 대한 형기종료일까지 수형자를 석방시키지 않기 위하여 당해 명령을 추인하거나, 또는

(b) 제1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형을 포함한 형에 대한 형기종료일까지 수형자를 석방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명령을 수정하여야 한다.

**재심리할 때까지의 구금**

③.4 제3.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리의 대상이 되는 법정석방 금지명령이 내려진 수형자에 대해서는 당해 명령에 관해서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제3.3항에 의거한 결정을 할 때까지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가 없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특별한 명령**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확신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a) 그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이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된 때에 당해 수형자가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에서 정한 범죄에 의한 형으로 복역하고 있고,

(b)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 또는 국가방위법 제130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의 실행으로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했거나 당해 범죄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차 법정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수형자는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는

재차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가 없다는 취지를 명령할 수 있다.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

⑤ 제3항에 의거하여 내려진 법정석방 금지명령 또는 제3.3항에 의거하여 수정된 당해명령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수형자는, 본 법에 의거하여 석방될 권리가 없다. 다만, 제1편에 의거한 의료상의 목적에 의해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석방명령 취소의 경우

⑥ 수형자가 제3항 또는 제3.3항 (b)호에 따라 법정석방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 제131조 제3항 (a)호 (ii) 또는 (iii)에 의거하여 내려진 법정석방명령에 의해 석방된 경우에 그 법정석방이 취소된 때는, 그자는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는 재차 법정석방에 의하여 석방될 권리가 없다.

⑦ (삭제)

**법정석방 금지명령의 매년심리**

**제131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내려진 법정석방 금지명령에 대해서 당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한 그 후는 수형자가 당해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한, 전회심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조사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한 심리와 관련하여, 그 법정석방 금지명령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 또는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하는 근거가 되는 새롭고 충분한 정보가 그 수형자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리와 관련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권한

③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리한 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제130조 제3항 또는 제130조 제3.3항 (b)호에 따라 내려진 법정석방 금지명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당해 명령을 승인할 것

(ii) 사회내 거주시설 또는 정신의료시설에 거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수사항 또는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방교도소에 거주해야 하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지시하고, 법정석방을 명령할 것. 다만, 그 수형자에 대해서 법정석방기간중의 수용계속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사회보호 및 당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하여 이 준수사항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전국가석방위원회에서 확신하는 경우에 한한다.

(iii) 위 거주제한을 할 필요없이 법정석방을 명령할 것

(b) 본 항 (a)호 (ii)에 따라 내려진 법정석방명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당해 명령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것

(ii) 위 거주제한없이 법정석방을 명령할 것

연방교정국장의 동의

④ 제3항 (a)호 (ii)의 규정에 의하고, 제5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연방교도소에 거주해야하는 취지의 준수사항은 연방교정국장 또는 동 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가 서면으로 이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지정

⑤ 연방교정국장은 제3항 (a)호 (ii)에 따라 내려진 법정석방명령을 위하여 연방교도소를 지정할 수 있다.

**수용계속의 심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제132조** ① 연방교정국, 연방교정국장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각각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하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증거에 의거하여 입증된 폭력행동의 고집적 경향. 이 증거로서는

(i) 수형자가 범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피해를 동반한 범죄의 수

(ii) 현재 복역하고 있는 형의 이유가 된 범죄의 중대성

(iii) 수형자에게 폭력충동 또는 성충동의 제어면에서 지장이 있고,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확실한 정보

(iv) 수형자가 범행에 무기를 사용한 경우

(v) 폭력을 행사할 취지의 명시적인 협박을 수형자가 이용한 경우

(vi) 범행시 수형자의 잔인한 습성의 행동

(vii)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수형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b) 수형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해로 인해 재범의 우려를 나타내는 의학적,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증거

(c)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할 범죄를 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정보

(d) 수형자의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 그자가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충분히 보호할 감독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①.1 연방교정국, 연방교정국장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각각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정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증거에 의거하여 입증된, 아동에 대한 성행동의 고집적인 경향. 이 증거로서는

(i) 수형자가 범행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수

(ii) 현재 복역하고 있는 형의 이유가 된 범죄의 중대성

(iii) 수형자에게 아동에 대한 성충동의 제어면에서 지장이 있음을 시사하는 확실한 정보

(iv) 범행 당시 수형자의 성적행동

(v)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수형자가 전혀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b)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하는 그자의 성적기호에 관한 확실한 정보

(c) 수형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재범의 우려를 나타내는 의학적,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증거

(d)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범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

(e) 수형자의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 그자가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충분히 보호할 감독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② 연방교정국, 연방교정국장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각각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석방에 대한 심리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에 될 동안에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증거에 의거하여 입증된 약물범죄에 대한 고집적인 경향. 이 증거로서는,

(ⅰ) 수형자가 범행한 약물범죄의 수

(ⅱ) 현재 복역하고 있는 형의 이유가 된 범죄의 중대성

(ⅲ) 수형자가 저지른 모든 약물범죄와 관련한 당해 약물의 종류 및 양

(ⅳ) 수형자가 약물과 관계한 활동에 계속하여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확실한 정보

(ⅴ)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수형자가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b) 수형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해로 인해 재범의 우려를 나타내는 의학적,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증거

(c)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중대한 약물범죄를 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만한 확실한 정보

(d) 수형자의 법률상의 형기종료일까지 그자가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충분히 보호할 감독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 석방기간 중 준수사항

### "석방당국"의 정의

**제133조** ① 본 조에서 "석방당국"이란,

(a)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가석방위원회를 말한다.

(ⅰ) 가석방

(ⅱ) 법정석방

(ⅲ)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승인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b) 제1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교정국장이 허가하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에 대해서는 연방교정국장을

(c) 제1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교도소장이 허가하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에 대해서는 연방교도소장을 말한다.

### 석방기간 중 준수사항

② 제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로 석방되는

모든 수형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석방당국이 지시하는 준수사항

③ 석방당국은 수형자의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에는 사회보호 및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거주제한

④ 석방당국은 당해 사안과 관련한 사정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준수사항으로 사회내 거주시설에 거주하도록 수형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거주제한

④.1 석방당국은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하여 법정석방의 준수사항으로 사회내 거주시설 또는 정신의료시설에 거주하도록 수형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준수사항을 지시하지 않으면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제1부록에서 정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석방당국이 확신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내 거주시설"의 정의

④.2 제4.1항의 "사회내 거주시설"에는 사회내 교정센터가 포함되지만 그 밖에 연방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범죄의 판정

④.3 제4.1항의 적용상 석방당국은 수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연방교정국장의 동의

④.4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내 교정센터에 거주해야하는 취지의 준수사항은 연방교정국장 또는 동 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준수사항의 계속기간

⑤ 제3항, 제4항 또는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된 준수사항은 석방당국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준수사항의 면제

⑥ 석방당국은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의 석방 전에 또는 그 후에

(a)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형자에게 면제 또는 수형자에의 그 적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b) 제3항, 제4항 또는 제4.1항에 의거하여 지시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지시**

**제134조** ①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로 석방된 수형자는, 그들의 석방기간 중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그 준수사항 위반의 예방 또는 사회보호를 위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내린 지시,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가 내린 지시 또는 연방교도소장 또는 가석방감독관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제134.1조** ① 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장기감독명령에 의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형자에게는 필요한 상황에 맞게 교정 및 조건부석방규칙 제16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정한 준수사항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사회보호 및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감독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준수사항의 계속기간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준수사항은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준수사항의 면제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의 장기감독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a)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수형자에게 면제 또는 그 적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b) 제2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지시

**제134.2조** ① 장기감독명령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 수형자는 장기감독기간중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그 준수사항위반의 예방 또는 사회보호를 위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내린 지시,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가 내린 지시 또는 가석방감독관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종결, 취소 및 실효

###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제135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는,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 또는 준수사항 위반을 예방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일시정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확신하는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a)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일시정지하고,

(b) 수형자를 체포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한

(c) 일시정지가 철회되거나 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종결 또는 취소되거나 법률상의 형기가 만료할 때까지 당해 수형자를 재구속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자동정지

①.1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 중인 범죄자가 사회내에서 집행중인 형법 제742.1조에 의한 조건부 형 또는 형법 제732조에 의한 부정기형을 제외하고 의회법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추가형을 받은 경우, 그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은 추가형을 받은 날 자동정지된다.

체포와 재구속

①.2 본 조 제1.1항에 의해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자동정지된 경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는 영장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기까지 범죄자의 체포와 재구속을 허가할 수 있다.

(a) 정지의 취소

(b)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종결되거나 취소되는 때

(c) 법에 의해 형기가 만료되는 때

수형자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제1.1항에 의한 추가형으로 수형자가 연방교도소 이외의 장소에 재구속된 때에는 이 자를 연방교도소에 이송하도록 영장에 의해 명령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철회 또는 위임

③ 제3.1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장을 서명승인한 자 또는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자는 수형자가 재구속된 후 즉시 당해 수형자와 관련한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수형자가 2년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구속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것보다도 짧게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를 철회하거나 그 일시정지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여 이것을 심리사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할 것

(b)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재구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그것보다도 짧게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를 철회하거나 그 일시정지에 대한 소견(당해수형자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으로 적정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사료되는 준수사항을 기재하고)을 첨부하여 이것을 심리사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할 것

전국가석방위원회로의 위임 – 추가형

③.1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제1.1항에 의해 정지되었거나, 제1항에 의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정지된 수형자가 제1.1항에서의 추가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가 취소될 수 없고 그 사건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적당한 기간 내에 연방교정국장에 의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된 사람에 의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에 그 심리사건을 위임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2년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와 관련한 가석방의 일시정지에 대한 심리사건이 위임된 때에는 당해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규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가석방의 일시정지를 철회하거나 또는 가석방을 종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 – 2년 이상의 형

⑤ 전국가석방위원회는 2년 이상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와 관련한 가석방의 일시정지에 대한 심리사건이 위임된 때에는 당해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규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수형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가 기간의 연기를 허가한 경우는 당해기간 내에)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그 수형자가 법정형기종료일 이전에 재범을 범하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국가석방위원회가 확신하는 때에는,

(ⅰ) 그 심각한 피해가 수형자의 통제능력을 넘어선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하

거나,

(ii)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취소한다(그 이외의 경우).

(b)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위 (a)호에 규정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일시정지를 철회한다.

(c) 수형자가 더 이상 가석방의 자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시키거나 취소한다.

**일시정지의 철회에 있어서의 조건**

⑥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를 철회함에 있어서 사회보호 및 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전국가석방위원회가 그 석방 중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지 아니함을 경고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질책하는 것

(b)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것

(c)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일시정지철회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명령할 것. 다만, 일시정지 시에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형기 중에 과거 1회 이상 준수사항위반으로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일시정지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일시정지철회의 전달**

⑥.1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본 조에 의하여 일시정지를 취소한 때에는 수형자가 속해 있는 시설의 책임자에게 일시정지취소의 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또는 통지의 전송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미래의 가석방자격 취득일**

⑥.2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본 조 제5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일시정지를 취소하고 제119조부터 제120.3조까지에 의하여 계산된 수형자의 가석방자격취득일이 가석방일시정지를 취소한 날보다 늦을 경우, 주간 또는 전면적가석방은 본 조 제6.3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간 또는 전면적가석방 자격취득일에 재개된다.

**가석방의 취소 – 미래의 가석방자격 취득일**

⑥.3 수형자의 가석방이 본 조 제6.2항에 의하여 재개되는 경우,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이 재개되기 전과 가석방의 일시정지가 취소될 당시에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정보에 근거한 사건심리 후에 그 가석방을 취소하거나 또는 그 범죄자가 이미 석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가석방을 종결할 수 있다.

**심리**

⑥.4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청문의 기회없이 본 조 제6.3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을 승인 또는 철회하는 심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보충적 권한**

⑦ 제1항에서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계속한다면, 그 수형자가 법률상의 형기종료일이 될 동안에 재범을 하여 사회에 과도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언제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수형자가 재차 가석방의 자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시키거나 취소할 것

(b) 수형자가 또 그 후에도 가석방의 자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i) 수형자가 사회에 미칠 과도한 위험이 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종결시키고,

(ii) 수형자가 사회에 미칠 과도한 위험이 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을 취소할 것

**전 항의 권한과 새로운 형**

⑧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으로 석방된 후에 새로운 형에 복역하게 된 경우에도 제7항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새로운 형은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한 석방의 전후에 범한 범죄에 의한 형인지를 불문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재심리**

⑨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7항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각 시기에 당해 결정에 대한 재심리를 실시하고, 각 회의 재심리마다 당해 결정을 승인하거나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1.1항의 적용 제외**

⑨.1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주의 부총독이 제1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의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이 있는 수형자에게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제1.1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수형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에 있는 수형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제16조 제1항 (a)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주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

(b)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추가형이 과해진 결과로 형법 제743.1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도소에 복역할 필요가 있는 수형자

**가석방의 실효**

⑨.2 제1.1항의 적용이 없는 수형자로, 취소하거나 종결할 필요가 없는 가석방중인 자가 연방법에 의거한 범죄에 의해 추가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 추가형이 당해 추가형이 과해진 때에 복역하고 있던 형과 순차집행으로 복역해야 하는 추가형인 때에는 가석방은 실효되고, 그 수형자는 추가형이 과해진 날로부터 추가형와 관련한 가석방결격기간의 복역을 마치는 날까지 재수용되어야 한다. 이 가석방결격기간의 복역을 마치는 날까지 가석방이 취소 또는 종결되지 아니하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가석방은 재개한다.

⑨.3 ~ ⑨.5 (삭제)

**형의 계속**

⑩ 본편의 적용상, 본 조에 의해 구속된 수형자는 그 형의 복역을 계속한다.

**일시정지 중의 자유로운 상태가 된 시간**

⑪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가 철회된 때에 일시정지의 영장발부일로부터 그 철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상 수형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과 관련한 당해 형을 복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제135.1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는 수형자가 장기감독명령의 기간 중의 준수사항 또는 제134.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준수사항 위반을 예방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감독을 일시정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합리적이라는 확신

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a) 장기감독을 일시정지하고

(b) 수형자를 체포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한

(c) 일시정지가 철회되고 장기감독의 기간 중에 새로운 준수사항이 지시되거나 형법 제753.3조에 따라 범죄로 고발될 때까지, 당해 수형자를 사회내 거주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수용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연방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수용기간

② 제1항 (c)호에 정하는 수용기간은 90일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수형자가 수용된 경우

③ 수형자가 제1항 (c)호에 따라 수용된 때에는 그 수용기간은 장기감독명령에 의거하여 명령된 감독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수용영장의 발부로부터 수용개시까지의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수형자의 이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자는, 동 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가 연방교도소 이외의 장소에 수용된 때에는 이 자를 연방교도소에 이송하도록 영장에 의해 명령할 수 있다.

일시정지철회 또는 위임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장을 서명승인하는 자 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자는 수형자가 수용된 후 즉시 당해 수형자와 관련한 장기감독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기감독의 일시정지를 철회하거나 또는 그 일시정지에 대해서 소견을 첨부하여 이것을 심리사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심리

⑥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와 관련한 장기감독의 일시정지에 대한 심리사건이 위임된 때에는 당해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감독을 받고 있던 기간 중의 행장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시하여 장기감독을 재개하더라도 그 수형자에게는 장기감독의 기간만료일이 될 동안에 재범을 하여 사회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철회할 것

(b) (삭제)

(c) 그 수형자의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753.3조에 따른 범죄로 해당 수형자를 고발하는 약식기소를 제기하도록 권고할 것

약식기소의 제기

⑦ 제6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약식기소를 제기하도록 권고한 때에는 연방교정국은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있었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장에 대하여, 형법 제753.3조에 의거한 범죄로 그 수형자를 고발하는 약식기소를 제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일시정지철회 시 조건

⑧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의 장기감독명령의 일시정지를 철회하는 때에 사회보호 및 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장기감독을 받고 있던 기간 중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지 않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질책하는 것

(b) 장기감독의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것

(c) 그 수형자의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면서 유익한 처우프로그램에 그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규정하는 90일의 말일보다 전에 만료하는 일정의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은 일시정지철회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명령하는 것

일시정지철회의 통지

⑨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그 누구라도 본 조에 따라 일시정지를 철회한 때에는,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일시정지철회의 통지 또는 당해 통지의 전송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체포 및 구속영장**

**제136조** 전국가석방위원회 위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장 또는 연방교정국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사람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영장에 의하여 수형자의 구금을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승인할 수 있다.

(a) 가석방이 종료 또는 취소되거나 제135조 제9.2항에 의하여 실효된 때

(b) 법정석방이 종결 또는 취소되거나 제127조 제5.1항에 의하여 법정석방일이 변경됨으로써 더 이상 법정석방으로 석방될 자격이 없을 때

**영장의 집행**

**제137조** ①제 11.1조, 제18조, 제118조, 제135조, 제135.1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주가석방위원회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 또는 그들 체포영장의 전송등본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어떠한 장소에서든 그 발부를 받은 경찰관이 이것을 집행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판사 또는 법률상의 당국이, 당초부터 그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그 영장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

② 본 편에 의거하거나 주가석방위원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그자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발효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신을 한 때에는 경찰관은 영장 없이 그자를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다.

체포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그 전송등본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아야 한다. 영장발부가 불가능한 때는 그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잔형의 복역**

**제138조** ① 수형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종결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재구속되어 그 종결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잔형기 부분을 복역하여야 한다.

종결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미치는 효과

②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종결된 수형자는,

(a) 경우에 따라 제120조, 제120.1조, 제120.2조 또는 제120.3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석방 자격을 가지고,

(b) 제12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감형일수의 몰수 제외**

③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종결된 수형자는 다음에 대하여 감형일수가 몰수되지 아니한다.

(a)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의 규정에 의해 그자의 기득점으로 계산되어 있던 감형일수, 또는

(b) "수형자이송법"에 의거한 득점

**취소가 가석방에 미치는 효과**

④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취소된 수형자는 경우에 따라 제120조, 제120.1조, 제120.2조 또는 제120.3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석방의 자격을 가진다.

**예외**

⑤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가석방의 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취소가 법정석방일에 미치는 효과**

⑥ 제130조 제4항 및 동 제6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이 취소된 수형자는 제127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석방에 의하여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 복수형

**추가형**

**제139조** ① 복역하고 있는 자가 형기종료일이 되기 전에 추가형을 받은 경우, 형법,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 국제범죄자이송법 및 본 법의 적용상 그자는 그 수개의 형 중 먼저 복역해야하는 형과 관련한 형기기산일을 시작으로 하고, 마지막에 복역해야하는 형과 관련한 형기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한 개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석

② 본 조는 본 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형이든, 형법 제7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기에 대해서 각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심리를 위한 청문

**필요적 청문**

**제140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종류의 심리사건에 대해서 그 수형자가 선택한 캐나다의 어느 하나의 공용어로 진행하는 청문에 의해,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가 심리를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거나 청문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간가석방에 대한 첫 회 심리. 다만, 2년 미만의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b)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적가석방에 대한 첫 회 심리 및 제123조 제5항 또는 제5.1항의 규정에 따른 그 후의 재심리

(c) 제129조, 제130조 제1항 또는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

(d) 가석방의 일시정지, 철회, 종결, 취소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종결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행해진 심리

(e) 규칙으로 지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모든 심리

재량적 청문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리사건 이외의 심리사건에 대해서도, 청문에 따라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규칙으로 지정하는 범위의 수형자에 대하여, 제1항 (a)호 또는 (b)호에 규정하는 심리 및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그 수형자가 가석방기간 중의 준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b) 결정하기 전에 청문을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출석

④ 제5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자는 방청인으로 청문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준수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의견을 참작한 후에 이를 허가한다. 다만, 동 위원회 또는 지명된 자가 방청인에게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자가 출석하는 것에 의해 또는 이미 당해 청문의 출석을 신청한 다른 자와 함께 그자가 출석하는 것에 의해 청문이 혼란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청문사항에 대한 동 위원회의 판단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b) 그자가 출석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수형자의 가족, 그 밖에 동 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c) 그자가 출석하는 것에 의해 그자 및 일반시민의 알 권리와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의 적절한 조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d) 그자가 출석하는 것에 의해 청문이 열리는 시설의 보안 및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방청인의 배제

⑤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청문의 개최 중에 제4항에서 정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모든 방청인 또는 특정방청인을 배제하고 청문을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보의 이용

⑥ 청문을 할 때 심의되거나 이에 참고가 되는 정보 및 서류에 대해서는, 청문에 방청인이 출석해 있는 경우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그들의 정보 및 서류가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상에도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수형자에 대한 조력

⑦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를 출석시켜 청문에 의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수형자가 자신이 선임한 자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좌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방청인으로서의 출석을 동 위원회로부터 허가되지 않는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역할

⑧ 제7항에 규정하는 보좌인은

(a) 수형자가 청문에 출석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이에 출석할 수 있고,

(b) 청문을 할 때 수형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또한

(c) 청문을 맡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청문의 효과적인 실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대리하여 동 위원에 대한 진술을 할 권리를 가진다.

통역인을 요구할 권리

⑨ 캐나다의 공용어 중 어느 하나의 언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형자는 청문 및 제141조 제1항 및 제143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하여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보공개

### 수형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141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의 심리일의 적어도 15일 전에, 당해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심의될 예정의 정보 또는 당해정보의 요지를 수형자가 선택한 캐나다의 공용어로 기재한 서면으로 수형자에게 제공하거나 수형자가 제공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동전

② 제1항에 정한 기한 후에 동 항에 규정하는 정보를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입수한 때는 그 입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요약을 수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권리포기 및 연기

③ 수형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요지의 제공을 받을 권리 또는 동 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그 제공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수형자가 제1항에서의 기한 내에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때에, 그 정보수령의 지체 때문에 수형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심리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형자는 동 위원회가 정하는 상당 기간 동안 그 심리를 연기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동 위원회는 그 연기를 명령할 수 있다.

예외

④ 전국가석방위원회는,

(a) 당해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개되어야할 것이 아니거나 또는

(b)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의해,

(ⅰ) 사람의 안전

(ⅱ) 교정시설의 보안, 또는

(ⅲ) 적법한 수사의 실시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확신하는 때는, (a)호 또는 (b)호에 규정하는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엄밀히 필요한 한도에서 당해 정보를 수형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142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수형자가 행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a)호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b)호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수형자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것

(ⅰ) 수형자의 성명

(ⅱ) 수형자가 유죄가 된 죄명 및 수형자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

(ⅲ) 수형자가 복역하고 있는 형의 기산일 및 형기

(ⅳ) 본 편에 의거하여 수형자에게 적용된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또는 가석방의 자격취득일 및 심리일

(b) 수형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해 피해자가 받을 이익이 수형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명백히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ⅰ) 수형자의 연령

(ⅱ) 복역하고 있는 연방교도소의 소재지

(ⅲ) 전국가석방위원회가 형법 제746.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그 수형자가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에 의해 석방될 것으로 보는 예정일 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예정일

(ⅳ) 제130조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청문이 이루어진 날

(ⅴ)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있어서 과해진 준수사항

(ⅵ)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될 경우에 수형자가 가는 목적지 및 목적지까지의 여정에서 수형자가 피해자의 근처를 통과할 가능성

(ⅶ) 수형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및 구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

(ⅷ) 제147조에 따라 수형자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했는지 여부 및 당해 불복신청의 결과

(ⅸ) 제140조 제1항에 의해 범죄자가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그 이유

**동전**

②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수형자가 연방교도소에서 주 교정시설에 이송된 경우에 수형자가 행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 교정시설이 소재하는 주의 명칭을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명백히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자에 대한 정보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를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소명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한다.

(a) 수형자가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가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수형자의 행위의 결과로써 그자가 피해를 받거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받고,

(b) 당해 행위에 관해서 경찰 또는 검찰관에게 고충을 신청하거나 형법에 의거한 고발을 제기한 때

**규칙**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하는 청구의 방법 및 양식 그리고 청구의 처리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에 의한 지명

⑤ 본 조의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는 동 위원장이 성명 또는 관직으로 지명한 1명 또는 일정범위의 복수명의 자를 포함한다.

## 심리 및 결정에 관한 기록

### 의사록

**제143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해서 청문에 의한 심리를 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그 의사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결정의 기록 및 송달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수형자와 관련한 심리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수형자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a) 결정 및 결정이유를 기록하고, 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그 등본을 보존하여야 하고, 또한

(b) 수형자가 선택한 캐나다의 공용어로 기록한 결정 및 결정이유의 등본을 규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 수형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결정의 등재부

**제144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는 본 편 또는 형법 제746.1조 제2항 제c호 또는 제3항 제c호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가 내린 결정 및 각 결정이유의 등재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등재부의 열람

② 심리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한 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당해 심리사건과 관련한 등재부의 기재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의해

(a)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b) 비밀리에 획득된 정보의 제공자가 밝혀지게 되거나

(c) 공개되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된 정보는 제외한다.

③ 규칙으로 정한 조건의 범위에서, 어떠한 자도 연구목적으로 등재부의 기재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명, 인물의 특정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에 의해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재부내의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라도, 그것이 방청객이 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청문에서 심의된 정보라면 누구라도 서면으로 신청하면 등재부의 당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심리 및 증거

### 서류의 허용성

**제145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서명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결정, 명령, 영장 또는 증명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허용되고 또한 그것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서명 또는 공인(公印)은 증명을 요할 필요 없이 그 기재내용에 대한 증거가 된다.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기구

### 불복심사부

#### 불복심사부의 구성

**제146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에 불복심사부로 불리우는 부국(部局)을 둔다. 불복심사부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자 중에서, 연방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총독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다수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상임위원 중에 1명을 부위원장(불복심사부담당)으로 지명한다.

#### 결격사유

② 불복심사부의 위원은 자기가 관여한 결정과 관련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그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복사안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하도록 명령한 불복심사부의 심사합의체의 위원은 그 새로운 심리를 맡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심리합의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불복신청에 의거하여 그 새로운 심리사건에 대해서 그 후 재차 심사를 하는 불복심사부의 심리합의체에도 관여할 수 없다.

### 불복심사부에의 불복신청

#### 불복신청의 권리

**제147조** ① 수형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것을 이유로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불복심사부에 신청할 수 있다.

(a) 기본적 정의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

(b) 법률상의 과오가 있었던 때

(c) 제15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책정된 방침에서의 위반이 있었던 때 또는 당해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던 때

(d) 당해결정이 잘못된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에 의거한 때

(e)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권을 넘어서서 심리가 이루어진 때 또는 관할권 행사의 나태가 있었던 때

#### 부위원장(불복심사부담당)의 결정

② 부위원장(불복심사부담당)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복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할 필요없이 그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a) 불복신청이 심사하기에 부족한 내용의 것 또는 심사범위를 넘어선 것인 때

(b) 불복신청이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을 넘어서 구제조치를 요하고 있는 것인 때

(c) 불복신청이 원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정보 또는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대한 새로운 예정을 근거로 한 것인 때

(d) 불복신청의 통지를 불복심사부가 수리한 때에 석방까지 수형자가 복역해야할 기간이 90일 미만인 때

#### 불복신청의 기한 및 방식

③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방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④ 불복심사부는 불복이 신청된 원결정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원결정을 유지할 것

(b) 원결정을 유지하면서 통상의 차회심리일보다도 조기에 해당 심리사건의 심리가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해 실시되도록 명령할 것

(c) 당해 심리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해 실시되도록 명령하고 또한 그 심리 때까지 원결정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명령할 것

(d) 원결정을 파기, 철회, 변경할 것

즉시석방의 조건

⑤ 불복심사부는 수형자를 즉시 구금으로부터 석방하도록 하는 결정을, 제4항에 의거하여 내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a) 불복신청된 원결정이 법률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가 적용해야할 방침에 따른다면, 또는 심리 시 동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고, 그리고

(b) 수형자를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공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부 및 지방

### 본부

**제148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본부는 수도법의 부록에서 정한 수도권에 둔다. 다만,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지시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지방사무소

② 전국가석방위원회는 연방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지방의 지방사무소를 적어도 한 개소를 설치한다. 즉, 각 지방란 대서양지방, 퀘백지방, 온타리오지방, 프레리지방 및 태평양지방이다.

### 지방감독부

**제149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지방감독부를 둔다. 각각의 지방감독부는 지방감독부에 배치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은 각 지방에 대해서 또는 당해 지방에 하나 이상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그 관내의 한 지구에 대해서, 동 위원장이 지정하는 본 법 또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주지

②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감독부에 배치된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은 당해 지방감독부의 사무소에서 적당한 통근거리 내에 거주한다.

추정규정

③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심리합의체가 취한 조치, 행위 또는 동 합의체가 내린 결정은, 본편의 적용상은 동 위원회가 취한 조치 또는 행위 또는 동 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한다.

###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

**제150조** ① 총독은 연방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각각의 지방감독부마다 한 명의 상근위원을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으로 지명한다.

②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은 당해 지방감독부에 배치된 위원의 직무상의 행위, 연수 및 결정책정의 질적 수준

에 대해서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통칙

### 운영위원회

**제151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상석부위원장, 부위원장(불복심사부담당),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연방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업무

② 운영위원회는,

(a)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한 후에, 본 편에 의거한 심리에 관한 방침을 책정

(b)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청구가 있은 때는, 본 법 또는 연방법에 의거한 전국가석방위원회 또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의 업무에 관계하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조언을 하고, 또한

(c) 일정종류의 심리사건에 대하여 그 심리를 맡을 심리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수를 규칙으로 정한 인원수보다도 증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배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책정된 방침은 성, 민족, 문화 및 언어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한 여성 및 원주민의 특별한 수요 및 특별한 요망을 가진 그밖에 각종 수형자의 수요에 배려한 것이어야 한다.

의사의 처리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는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그 의사를 처리한다.

### 수석행정관

**제152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수석행정관이 되고, 그 입장에서 동 위원회의 업무 및 직원을 감독 · 지휘하고 동 위원회총회의 의사를 처리한다.

위원의 제척

②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편향이 생길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심리합의체로부터의 제척을 지시할 수 있다.

심리합의체의 구성

③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어느 특정의 심리사건에 대해서 그 심리를 맡을 심리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수를, 규칙으로 정한 인원수보다도 증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조사

④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보고를 해야 할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조사에는 "행정감찰법" 제7조에서 제13조의 규정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의 당해 각 조 중 "위원"이란 위에 임명된 1명 또는 복수명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권한위임

⑤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본 편에 의거하여 동 위원장의 업무에 대하여 동 위원장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전

국가석방위원회의 어느 한 사람의 상근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결과로써 행해진 업무는 동 위원장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한행사의 방법

⑥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권한을 행사할만한 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본편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자의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부재 등

⑦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 또는 그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석부위원장이 동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동전

⑧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 및 상석부위원장 모두가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 또는 그 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연방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이 동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근위원 및 그 대리위원에 대한 보수**

**제153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 및 그 대리위원은 총독이 정하는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또한 당해 위원이 배치된 청사에서 떨어진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상당액의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공청에서의 휴직의 허가

② 관공청의 직원이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자는 당해 관공청으로부터 무급휴직을 허가받는다.

비상근위원에 대한 보수

③ 전국가석방위원회의 비상근위원은 그 직책에서 집무한 날에 대하여, 총독이 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또한, 해당비상근위원이 통상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상당액의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금

④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상근위원 및 직원은 "공무원퇴직연금법"의 적용상 관공청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의 면책**

**제154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본 법 또는 연방법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또는 그 수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로 성실하게 실행하거나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 또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 또한, 동 위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전국가석방위원회 위원의 증인부적격**

**제154.1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본 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수행한 그들의 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의 자격이 없고, 증인이 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중립성**

**제155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본 법 또는 그 밖의 연방법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관직에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러한 직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참가에 의해 편향이 생길 상당한 우려가 있는 심리사건에 대해서는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 심문

**제155.1조** ①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은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제155.2조 제2항(a)호부터 (d)호까지에서 정한 이유에 의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처분을 받을만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심문을 개최하도록 연방법무부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 심문을 하는 판사

② 본 조에 따라 연방법무부 장관이 심문을 개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본 조 및 제155.2조에서 규정하는 "판사"로서 연방법원의 판사, 예비판사 또는 전임판사가 그 심문을 한다.

#### 권한

③ 본 조에 따라 심문을 하는 판사는 상급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모든 권한, 권능 및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것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소정의 장소로 출두하여 심문에 관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심문에 관계하는 서류, 서적 또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

(b) 선서를 시키고, 선서하에서의 심문을 하는 것

#### 심문의 공개

④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 조에 의거한 심문은 이것을 공개하여 실시한다.

#### 비밀유지

⑤ 본 조에 따른 심문을 하는 판사는 심문과정에서 또는 심문이 공개로 실시되는 결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확신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심문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공공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폭로되는 때

(b) 재정적 문제, 개인적 문제 또는 그밖의 문제가 폭로되거나 또는 해당 문제의 성질상 관계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심문의 공개원칙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바람직한 때

(c)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안전이 위협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 동전

⑥ 본 조에 따라 심문을 한 판사는,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신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청문에 대한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증거법칙

⑦ 본 조에 따라 심문을 하는 판사는 법률상 또는 기술상의 증거법칙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판사는 심문의 어느 절차단계에서든 그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로써,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 또는 정황적으로 신용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증거를 수리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결정의 기초로 이용할 수 있다.

#### 당사자 적격을 용인하는 권리

⑧ 본 조에 따라 심문을 하는 판사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청문을 요구할 당사자 적

격을 용인할 수 있다.

**청문을 받을 권리**

⑨ 본 조에 따라 심문대상이 된 자에게는 심문사항, 심문과 관련한 청문의 시간 및 장소에 대해서 응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또한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에 의해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인을 반대심문하고,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문보고서**

**제155.2조** ① 심문을 한 판사는 제155.1조에 따라 심문을 한 후 심문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

② 심문을 한 판사는 제155.1조에 따라 심문이 개최된 경우에, 그 심문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문보고서에 당해 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정직처분 또는 면직하도록 권고하거나, 또는 동 위원에게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처분 또는 시정처분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a) 쇠약하여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때

(b) 비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c)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때

(d)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지위에, 고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임하고 있었던 때

**총독에 의한 정직 또는 면직**

③ 연방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수령한 때에는 그 부본을 총독에게 송부한다. 총독은 당해 보고서와 관련한 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정직처분, 면직 또는 그 밖의 징계처분 또는 시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규칙

**규칙**

**제156조** ① 총독은 본 법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본 법의 목적 또는 규정의 실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에 있는 수형자

(b) 특정범위의 수형자

**규칙**

③ 총독은 규칙으로 제1부록 또는 제2부록을 개정할 수 있다.

**동전**

④ 총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120조부터 제12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가 가석방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

(b)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가 법정석방의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는 복역하여야 하는 기간

(c) 복수형에 관한 제139조 제1항 규정의 적용방법

# 제3편 교정감사관

## 해석

### 정의

**제157조** 본편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연방교정국장"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교정감사관"이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연방교정감사관을 말한다.

"장기감독"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연방법무부 장관"이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수형자"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가석방"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연방교도소"란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주가석방위원회"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법정석방"이란 제2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

**제157.1조** 장기감독명령에 따라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 편의 적용상 이자를 수형자로 간주한다.

## 교정감사관

### 임명

**제158조** 총독은 연방교정감사관으로 불리우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적격요건

**제159조** 교정감사관으로 임명되거나 그 관직에 계속 재직하기 위하여서는 그자는 캐나다에 통상거주하고 있는 캐나다국민이거나, 캐나다에 통상거주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주자이어야 한다.

### 임기 및 면직

**제160조** ① 교정감사관은 비리행위가 없는 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관직에 재임한다. 다만, 총독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이 자를 정직처분 또는 면직할 수 있다.

### 임기갱신

② 교정감사관은 초회임기 또는 그 후의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차회임기에 대해서 재임명될 자격을 가진다.

**부재, 집무불능 등**

**제161조** 총독은 교정감사관이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때 또는 그 보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그 부재 또는 집무불능인 동안, 또는 보직이 시행될 때까지 동안 교정감사관에 대리하여 그 관직에 취임할 만한 별도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자는 본편에 의거하여 교정감사관이 가지는 것과 동일의 임무를 가지며, 교정감사관으로서의 모든 권한 및 직무를 가진다. 또한, 총독이 정한 금액의 급여 그밖의 봉급 및 경비를 지불받는다.

**직무전념의무**

**제162조** 교정감사관은 교정감사관의 관직과 관련한 임무 및 직무에 전속적으로 종사하여야 하고, 또한 보수를 받는 연방 또는 주, 그 밖의 관직에 취임하거나 보수를 받는 그밖의 일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급여 및 경비**

**제163조** ① 교정감사관은 총독이 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또한 본편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을 하는 때에는 상당액의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금

② "공무원퇴직연금법"의 규정은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교정감사관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자가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공청 이외의 부서에서 교정감사관으로 임명된 자인 때에는 그 임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의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외무공무원(특별)퇴직연금법"에 규정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임명일로부터 "외무공무원(특별)퇴직연금법"의 규정이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교정감사관에게 적용되며, "공무원퇴직연금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다.

그밖의 수당

③ 교정감사관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및 "항공법" 제9조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의 적용상 연방관공청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관리

**관리**

**제164조** 교정감사관은 교정감사관의 관직에 관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한다.

## 직원

**교정감사관의 아래에 속하는 직원**

**제165조** ① 교정감사관이 본편에 의거하여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고용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전문적 원조

② 교정감사관은 교정감사관의 임무에 관계하는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수한 지식을 가지며, 본편에 의거한 임무 및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교정감사관에게 조언 및 원조를 할 수 있는 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들의 봉급 및 경비의 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복무선서

**복무선서**

**제166조** 교정감사관 및 제161조 또는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자는 그 직무에 취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성명)는 (교정감사관, 교정감사관대리 또는 교정감사관의 아래에 속하는 직원 또는 고용직원)로서 나에게 요구된 직무를 능력이 미치는 한 성실하고 공평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 앞에 맹세합니다."

## 임무

**임무**

**제167조** ① 교정감사관은 연방교정국장,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 또는 동 국장에 대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내린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계하는 문제와, 개개의 수형자 또는 집단으로서의 수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한

② 교정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a) 다음에 의한 결정, 권고, 작위 및 부작위

(ⅰ) 전국가석방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의 배타적인 관할권의 행사

(ⅱ) 주가석방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배타적인 관할권의 행사

(b) 주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구금과 관련한 문제. 그 구금이 연방정부와 당해 주 교정시설 소재 주의 주정부 사이에 협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c) 감독 또는 필요적 감독이 붙는 일시귀휴,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의해 석방중의 수형자에 대한 감독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의 협정에 의해 주공무원이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주공무원이 내린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당해 주의 옴부즈만이 이미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는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예외

③ 제2항 (b)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감사관은 주가석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에 있어서 그 주의 주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 연방교정국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 또는 동 국장에 대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행한, 가석방사안에 대한 준비에 관계하는 문제라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의 신청**

**제168조** 교정감사관은 어느 특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관할권이 자기에게 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때에는 연방법원에 선언적 명령으로 그 재정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홍보시책

**홍보시책**

**제169조** 교정감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형자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a) 교정감사관의 임무

(b) 교정감사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

(c) 교정감사관의 독립성

## 조사

### 조사의 개시

**제170조** ① 교정감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a) 수형자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불복신청을 수리한 때

(b) 연방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청구가 있은 때

(c) 직권에 의거한 때

재량

② 교정감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적으로 재량을 가진다.

(a) 특정의 불복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b) 조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부

(c) 조사를 그 완료 전에 종결해야 할지 여부

### 청문을 할 권리

**제171조** ① 교정감사관은 조사과정에 있어서 청문을 하거나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구에게도 교정감사관에 의한 청문을 받는 것이 권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문의 비공개

② 교정감사관이 실시하는 청문은 교정감사관이 별단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로 한다.

### 정보 및 서류의 청구권

**제172조** ① 교정감사관은 조사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a)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그자가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한,

(b)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서면 또는 물품과 그자의 소유 또는 관리와 관련한 것을 교정감사관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류 등의 환부

② 교정감사관은 제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서면 또는 물품에 대해서 그 제출자로부터 환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것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교정감사관이 제1항 (b)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등본을 작성할 권리

③ 교정감사관은 제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서면 또는 물품에 대해서 그 등본 또는 복제를 작성할 수 있다.

### 선서하에서의 심문권

**제173조** ① 교정감사관은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자를 각각 소환하여 선서하에서 심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a) 당해 조사가 불복신청에 의거한 조사라면 그 불복신청인

(b) 조사사항에 관계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변호사에 의한 보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환된 자는 그 소환의 이유가 된 심문을 받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입회권**

**제174조** 본편의 목적을 위하여 교정감사관은 보안상의 요청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서, 연방교정국장이 점유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시설 구내에 언제라도 입회하여 그 시설구내를 사찰할 수 있고, 또한 그 시설구내에서 조사 또는 사찰을 할 수 있다.

## 재결, 보고 및 권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결정**

**제175조** 교정감사관은 불복신청에 대한 또는 연방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또는 그러한 불복신청 또는 청구에 의거한 조사를 그 완료 전에 종결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각 경우에 따라 불복신청인 또는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신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법"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유없는 불복신청**

**제176조** 교정감사관은 불복신청에 의거하여 조사를 한 후 당해 불복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때에는 불복신청인에게 그 결론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론의 이유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신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법"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통지**

**제177조** 교정감사관은 조사를 한 후, 1명 또는 그 이상의 수형자와 관련하여 제167조에서 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해당 문제 및 그 상세한 것을, 다음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연방교정국장

(b) 연방교정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당해 문제가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연방교정국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임한 권한행사에 유래하는 문제라면)

**결정, 권고 등에 대한 판단**

**제178조** ① 교정감사관은 조사를 한 후 제167조에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연방교정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문제에 대한 통지할 때, 그 판단 및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a) 그러한 결정 등이 법률 또는 세워진 방침에 위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때

(b) 그러한 결정 등이 불합리, 불공정, 가혹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이었던 때, 또는 불합리, 불공정, 가혹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법원칙, 법률의 규정, 실무 또는 방침에 따라 행해진 것인 때

(c) 그러한 결정 등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법률적용의 과오 또는 사실인정의 과오에 의거한 것인 때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

② 교정감사관은 조사를 한 후 제167조에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재량권 행사에 의거하여 행해진 것이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연방교정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문제에 대해서 통지를 할 때 그 판단 및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a)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량권 행사를 한 때

(b) 부적절한 근거에 의거하여 그 재량권 행사를 한 때

(c) 부적당한 고려사항을 참작하여 그 재량권 행사를 한 때

(d) 재량권 행사의 이유가 없었던 때

**권고**

**제179조** ① 교정감사관은 연방교정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모든 권고를 할 수 있다.

결정, 권고 등에 관한 권고

② 교정감사관은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제1항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a) 그 결정 또는 권고를 한 이유, 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b) 그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를 재고하기 위하여 적당한 당국에 위임할 것

(c) 그 결정 또는 권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것

(d)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시정할 것

(e) 그 결정, 권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된 법률, 실무 또는 방침을 변경하거나 재고할 것

권고의 비구속성

③ 연방교정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이 본 조에 따라 내린 재결 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무부 장관에 대한 통지 및 보고**

**제180조** 교정감사관은 연방교정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한 때로부터 상당의 기간 내에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또한 연방교정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 국장 및 전국가석방위원회위원장에게 당초에 제공했던 정보를 모두 동 장관에게도 제공한다.

**불복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지**

**제181조** 교정감사관은 불복신청에 의거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방식 및 시기에, 당해 불복신청인에게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신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법"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 비밀유지

**제182조** 본 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정감사관, 교정감사관의 대리자 및 교정감사관의 지휘에 의거하여 집무하는 자는 본편에 의거한 권한의 행사 또는 임무 및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정보공개의 허가

**제183조** ①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교정감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교정감사관의 대리자 또는 교정감사관의 지휘에 따라 집무하는 자에 의한 정보공개를 허가할 수 있다.

(a) 다음의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정감사관이 판단한 때

(ⅰ) 조사를 하기 위하여, 또는

(ⅱ) 본편에 의거하여 내린 재결 및 권고의 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b) 본편에 의거한 범죄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본편에 의거하여 내려진 진술과 관련하여 형법 제131조의 범죄(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 예외

② 교정감사관, 교정감사관의 대리자 및 교정감사관의 지휘에 의거하여 집무를 하는 자는 그 공개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막기 위한 상당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b)호부터 (e)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공개되기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a)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관련하여 적법한 수사의 과정에서 수집되었거나 제공된 정보가 폭로되는 경우

(ⅰ) 범죄의 적발, 예방 또는 진압

(ⅱ) 진행 중인 수사에서 연방법 또는 주법의 집행

(iii) "공안조사청법"의 의미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는 활동

(b) 적법한 조사의 실시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c) 연방법위반의 범죄에 의해 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와 관련하여,

(ⅰ) 그 시설 내의 처우프로그램 또는 조건부석방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거나 또는

(ⅱ) 그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상 또는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d) 정보공개법상의 정부기관 또는 연방 장관이 책정 또는 그들의 기관 또는 장관을 위하여 책정된 자문의견 또는 권고가 폭로되는 경우

(e) 제196조에서 규정하는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the Queen's Privy Council)의 기밀사항이 폭로되는 경우

### "조사"의 정의

③ 제2항 (b)호의 적용상 "조사"란 다음에 열거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a) 연방법 또는 주법의 실시 또는 집행으로써의 조사

(b)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허가되어 있는 조사

### 서신의 개봉금지

**제184조** 법률 또는 규칙에 어떠한 규정이 있더라도 수형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신에 대하여 이것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교정감사관에게 또는 수형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a) 수형자가 교정감사관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서신

(b) 수형자에게 보내는 교정감사관이 작성한 서신

## 권한위임

### 교정감사관에 의한 권한위임

**제185조** ① 교정감사관은 본편에 의거하여 교정감사관의 임무, 권한 및 직무를 자기가 지정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서 수행 또는 행사하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본 조에 따라 위임한 권한

(b) 제192조 또는 제193조에 따라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직무 또는 권한

### 권한위임의 취소

② 본 조에 따라 행한 권한위임은 임의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정감사관은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그 위임한 임무, 권한 및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수행 또는 행사하여도 무방하다.

### 권한위임의 효력의 계속

③ 본 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교정감사관이 퇴임한 경우라도 피위임자가 그 관직에 있는 기간 또는 후임의 교정감사관이 그것을 취소할 때까지는 권한의 위임은 역시 그 효력을 가진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사권한

**제186조** ① 교정감사관은 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이 종국확정되고 그것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리고 해당사항을 다툼, 재심사, 파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교정감사관의 조사권한은 다음의 법률 또는 규칙의 규정으로써,

(a) 어떠한 자를 위한 구제조치에 대해서 또는 불복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

(b) 어느 사항에 대한 심문 또는 조사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규정과는 병존관계에 있다.

## 소송절차

### 교정감사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187조** 관할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감사관이 하는 보고, 권고 그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것을 다툼, 재심사, 파기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제188조** 교정감사관, 교정감사관의 대리인 또는 교정감사관의 지휘에 의거하여 집무하는 자는 교정감사관으로서의 임무, 권한 또는 직무수행, 또는 그러한 임무 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로써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또는

보고하거나 또는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불소환**

**제189조** 교정감사관, 교정감사관의 대리인 또는 교정감사관의 지휘에 의거하여 집무하는 자는 교정감사관으로서의 임무, 권한 또는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러한 임무 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습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인적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강제로 소환될 수 없다. 다만, 본편에 의거한 범죄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본편의 의거하여 한 진술에 관해서, 형법 제131조의 범죄(위증죄)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제190조**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법률의 적용상,

(a) 본 편에 의거하여 교정감사관에 의한 조사 또는 교정감사관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발언된 진술, 제공된 정보 또는 제출된 서류, 서면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또한

(b) 본 편에 의거하여 교정감사관이 성실하게 임한 모든 보고에 대해서, 그리고 신문 그 밖의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서 성실하게 임한 당해 보고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설명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 범죄 및 처벌

**범죄**

**제191조** 누구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약식유죄로 처벌해야 할 범죄로 2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정당한 이유 없이, 교정감사관으로서의 임무, 권한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감사관 그밖의 자에 대해서 고의로 방해, 간섭, 또는 저항을 한 때

(b) 정당한 이유 없이, 교정감사관 그밖의 자가 본편에 의거하여 행한 적법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고의로 이것에 따르지 않는 때, 또는

(c) 교정감사관으로서의 임무, 권한 또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감사관 그밖의 자에 대해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고 또 이들을 속이거나 속이려고 한 때

##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연간보고서**

**제192조** 교정감사관은 각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년도에 교정감사관의 집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 장관은 당해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각 의원의 회기기일 30일 이내에, 당해 보고서를 의회의 각 의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사항**

**제193조** 교정감사관은 교정감사관의 임무, 권한 및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사항이든 그것이 제192조에 따라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연간보고서의 차회 제출기일까지 보고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는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언제라도 당해사항에 대해서 기재한 특별보고서를 의견을 첨부하여 동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 동 장관은 위 특별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각 의원의 회기기일 30일 이내에, 당해 특별보고서를 의회의 각 의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개청문에 대한 보고

**제194조** 교정감사관은 어느 조사에 관해서 공개청문을 개최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제19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당해 조사에 관한 청문을 공개형식으로 개최하도록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의견

**제195조** 교정감사관은 어느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의견 또는 정보를 제192조 또는 제193조에 의거한 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해서 변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당해 개인 또는 조직에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변명은 이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요약하여 당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제196조** ①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4조에 의거한 교정감사관의 권한은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에 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제한할 필요 없이,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으로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a)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에 제안 또는 권고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각서

(b)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에 그 의사결정시의 참고로써 배경정보, 문제분석 또는 정책선택지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견서

(c)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議案 또는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심의 또는 결정을 기재한 기록문서

(d) 정부의 의사결정 또는 정책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방의 모든 장관들 간의 연락 또는 의논을 위하여 사용된 기록문서 또는 그들의 연락 또는 의논을 기재한 기록문서

(e)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에 제시된 사항,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항, 또는 상기 (d)호에 규정하는 연락 또는 의논의 대상인 사항에 관해서 연방의 모든 장관에게 개황설명을 할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문서

(f) 법률안

(g) 상기 (a)호부터 (f)호까지에 규정하는 기록문서의 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기록문서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기록문서

###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정의

② 제1항의 적용상"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이란 연방의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 하에 있는 위원회, 내각 및 내각 하에 있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 예외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으로 20년을 경과한 것

(b) 제1항 (b)호에서 정하는 의견서에 대해,

(ⅰ) 그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ⅱ) 당해 의사결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결정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 규칙

**규칙**

**제197조** 총독은 본편의 목적 및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여왕

**여왕에 대한 구속력**

**제198조** 본 편은 캐나다의 원수인 여왕 각하를 구속한다.

# 제4편 개정, 폐지 및 경과규정 및 시행일

## 형법

**제199조~제203조** (번역생략. 형법의 일부개정규정이다)

**제204조**(1995,c.42,s.61에 의해 삭제되었다)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

**제205조~제207조**(번역생략.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의 일부개정규정이다)

**수형자이송법**

**제208조~제211조**(번역생략. 수형자이송법의 일부개정규정이다)

**연방경찰사법성법**

**제212조**(번역생략. 연방법무부법의 일부개정규정이다)

**폐지**

**제213조~제214조**(번역생략. 제213조는 가석방법을 폐지하고, 제214조는 연방교도소법을 폐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대체(代替)**

**제215조~제216조**(번역생략. 제215조는 관계법 중에 "가석방법"이라는 자구를 "교정 및 조건부석방법 제2편"으로 대체하고, 제216조는 관계법 중"연방교도소법"이라는 자구를 "교정 및 조건부석방법 제1편"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경과조치**

**제217조~제231조**(번역생략)

##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3년 후 재검토**

**제232조**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시행으로부터 3년 후에 각 조의 운용에 대해서, 의회하원이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하거나 또는 설립한 의회하원의 위원회에 의하여 포괄적인 재검토를 실시한다.

의회하원에게의 보고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해 재검토를 한 후 1년 이내에 또는 의회하원이 인정하는 그

후의 시기까지는 그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하원에게 제출한다.

##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제233조** ① 본 법의 시행으로부터 5년 후, 본 법의 규정 및 운용에 대해서 의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하거나 또는 설립한 의회하원 또는 의회양원의 위원회에 의해 포괄적인 재검토를 실시한다.

(의회에의 보고)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위원회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해 재검토를 한 후 1년 이내에 또는 의회가 인정하는 그 후의 시기까지는 개정사항에 대한 동 위원회의 권고성명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 시행일

**시행일**

**제234조** 본 법 또는 본 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 총독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한다.

## 제1부록

(제107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6조 제7항, 제129조 및 제130조)

1. 형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81조 제2항 (a)호(고의에 의한 치상)

(b) 제85조 제1항(범죄수행중의 총기사용)

(b.1) 제85조 제2항(범죄수행중의 모조총기사용)

(c) 제86조 제1항(총기를 겨누는 경우)

(d) 제144조(탈옥)

(e) 제151조(성적 간섭)

(f) 제152조(성적 접촉의 권유)

(g) 제153조(성적 착취)

(h) 제155조(근친상간)

(i) 제159조(항문에 의한 성교)

(j) 제160조(아동의 면전에서 또는 아동에게 수간의 강요)

(k) 제170조(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성적활동의 주선)

(l) 제171조(가장에 의한 아동의 성적활동 또는 아동의 면전에서의 성적활동의 허용)

(m) 제172조(아동매춘)

(n) 제212조 제2항(아동매춘의 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

(o) 제212조 제4항(아동에 의한 성적 서비스의 이용),

(o.1) 제220조(형사상의 과실에 의한 치사)

(o.2) 제221조(형사상의 과실에 의한 신체적 치상)

(p) 제239조(고의적 살인)

(q) 제239조(모의살인미수)

(r) 제244조(고의에 의한 신체적 치상)

(s) 제246조(범죄수행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

(s.1) 제249조 제3항 및 제4항(업무상의 신체적 치상 및 업무상의 치사)

(s.2) 제255조 제2항 및 제3항(미숙한 운전에 의한 신체적 치상 및 미숙한 운전에 의한 치사)

(s.3) 제264조(범죄에 가까운 괴롭힘)

(t) 제266조(폭행)

(u) 제267조(흉기 또는 신체적 치상을 수단으로 하는 폭행)

(v) 제268조(가중폭행)

(w) 제269조(불법한 신체적 치상)

(x) 제270조(경찰관에 대한 폭행)

(y) 제271조(성적 폭행)

(z) 제272조(흉기, 제3사에의 협박 또는 신체적 치상을 수단으로 하는 성적 폭행)

(z.1) 제273조(가중할만한 성적 폭행)

(z.2) 제279조(유괴)

(z.3) 제344조(강도)

(z.4) 제433조(사람의 생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방화)

(z.5) 제431.1조(자기재산에 대한 방화)

(z.6) 제436조(과실에 의한 방화)

(z.7) 제465조 제1항(a)호(살인의 공모)

2. 1990년 7월 1일의 직전 당시의 조문에 의한 형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433조(방화)

(b) 제434조(그밖의 재물에 방화한 행위)

(c) 제436조(과실에 의한 방화행위)

3. 1983년 1월 4일의 직전 당시의 조문에 의한 개정 캐나다제정법 제C-34장의 형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144조(강간)

(b) 제145조(강간미수)

(c) 제149조(여성에 대한 음란폭행)

(d) 제156조(남성에 대한 음란폭행)

(e) 제245조(공동폭행)

(f) 제246조(고의에 의한 폭행)

4. 1988년 1월 1일의직전 당시의 조문에 의한 개정캐나다제정법 제C-34장의 형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146조(14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교)

(b) 제151조(16세 이상 18세미만 여성의 정조유린)

(c) 제153조(의붓딸과의 성교)

(d) 제155조(남성의 동성애 또는 수간)

(e) 제157조(심각한 음란행위)

(f) 제166조(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능욕의 주선)

(g) 제167조(가장에 의한 능욕의 허용)

5. 형법 제248조 제1항(b)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장소에 침입한 뒤에 정식기소범죄를 실행한 죄로 당해 정식기소범죄가 본 부록의 제1항에서 제4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실행이

(a) 송치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b)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를 기재한 소환장, 약식기소장 또는 정식기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c) 당해심리를 담당한 판사의 판결이유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d) 형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써 허용된 사실진술서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

## 제2부록

(제107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2조)

1. 규제약물법 제64조의 시행일의 직전 당시의 조문에 의해, 마약규제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4조(거래)

(b) 제5조(수출입)

(c) 제6조(재배)

(d) 제19.1조(일정범죄로 획득한 재산의 소지)

(e) 제19.2조(일정범죄로 얻은 수익자금의 세탁)

2. 규제약물법 제64조의 시행일 직전 당시의 조문에 의해, 식품 및 약물법의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39조(규제약물의 거래)

(b) 제44.2조(규제약물의 거래로 획득한 재산의 소지)

(c) 제44.3조(규제약물의 거래로 얻은 수익자금의 세탁)

(d) 제48조(제한약물의 거래)

(e) 제50.2조(제한약물의 거래로 획득한 재산의 소지)

(f) 제50.3조(제한약물의 거래로 얻은 수익자금의 세탁)

3. 규제약물법의 다음의 각 조항의 어느 하나의 범죄로 정식기소에 의해 소추된 범죄

(a) 제5조(거래)

(b) 제6조(수출입)

(c) 제7조(제조)

(d) 제8조(일정범죄로 획득한 재산의 소지)

(e) 제9조(일정범죄로 얻은 수익자금의 세탁)

4. 형법 제465조 제1항 (c)에 정한 바에 따라 본 부록 제1항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범죄의 실행에 대해 공모하는 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1)]

**S.C. 1992, c. 20**
**Assented to 1992-06-18**

An Act respecting corrections and the conditional release and detention of offenders and to establish the office of Correctional Investigator Her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of Canada, enacts as follows:

## SHORT TITLE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 PART I
## INSTITUTIONAL AND COMMUNITY CORRECTIONS

### Interpretation

**Definitions**

**2.** **(1)** In this Part,

"Commissioner" means the Commissioner of Corrections appointed pursuant to subsection 6(1);

"contraband" means

(a) an intoxicant,

(b) a weapon or a component thereof, ammunition for a weapon, and anything that is designed to kill, injure or disable a person or that is altered so as to be capable of killing, injuring or disabling a person, when posses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c) an explosive or a bomb or a component thereof,

(d) currency over any applicable prescribed limit, when posses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and

(e) any item not described in paragraphs (a) to (d) that c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a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persons, when that item is posses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day paro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inmate" means

(a) a person who is in a penitentiary pursuant to

(i) a sentence, committal or transfer to penitentiary, or

(ii) a condition imposed by the National Parole Board in connection with day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r

(b) a person who, having been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1)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

(i) is temporarily outside penitentiary by reason of a temporary absence or work release authorized under this Act, or

(ii) is temporarily outside penitentiary for reasons other than a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but is under the direction or supervision of a staff member or of a person authorized by the Service;

"institutional head", in relation to a penitentiary, means the person who is normally in charge of the penitentiary;

"intoxicant" means a substance that, if taken into the body, has the potential to impair or alter judgment, behaviour or the capacity to recognize reality or meet the ordinary demands of life, but does not include caffeine, nicotine or any authorized medication used in accordance with directions given by a staff member or a registered health care professional;

"long-term supervision" means long-term supervision ordered under subsection 753(4), 753.01(5) or (6) or 753.1(3) or subparagraph 759(3)(a)(i) of the Criminal Code;

"Minister" means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offender" means

(a) an inmate, or

(b) a person who, having been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is outside penitentiary

(i) by reas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i) pursuant to an agree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81(1), or

(iii) pursuant to a court order;

"paro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penitentiary" means

(a) a facility of any description, including all lands connected therewith, that is operated, permanently or temporarily, by the Service for the care and custody of inmates, and

(b) any place declared to be a penitentiary pursuant to section 7;

Version anglaise seulement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egulation;

"provincial parole board"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sentence" means a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includes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entity on a Canadian offender who has been transferred to Canada unde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Offenders Act and a youth sentence imposed under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Service" means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described in section 5;

"staff member" means an employee of the Service;

"statutory releas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victim" means a person to whom harm was done or who suffered physical or emotional damage as a result of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nd, if the person is dead, ill or otherwise incapacitated,

(a) the person's spouse or an individual who is — or was at the time of the person's death — cohabiting

with them in a conjugal relationship, having so cohabited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b) a relative or dependant of the person,

(c) anyone who has in law or fact custody, or i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support, of the person, or

(d) anyone who has in law or fact custody, or i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support, of a dependant of the person;

"visitor" means any person other than an inmate or a staff member.

"wor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offices of the federal public administration are generally open in the province in question.

Exercise of powers, etc.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Part or by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b),

(a) powers, duties and functions that this Part assigns to the Commissioner may only be exercised or performed by the Commissioner or, where the Commissioner is absent or incapacitated or where the office is vacant, by the person acting in the place of the Commissioner; and

(b) powers, duties and functions that this Part assigns to the institutional head may only be exercised or performed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absent or incapacitated or where the office is vacant, by the person who, at the relevant time, is in charge of the penitentiary.

1992, c. 20, s. 2; 1995, c. 42, s. 1; 1997, c. 17, s. 11; 2000, c. 12, s. 88; 2002, c. 1, s. 171; 2004, c. 21, s. 39; 2005, c. 10, s. 34; 2008, c. 6, s. 56; 2012, c. 1, s. 52.

**Application to persons subject to long-term supervision order**

**2.1** A person who is required to be supervised by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is deemed to be an offend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d sections 3, 4, 23 to 27, 55 and 56, subsections 57(2) and 66(3), sections 68, 69, 76, 77 and 79 to 82, paragraph 87(b) and sections 90 and 91 apply,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to the person and to the long-term supervision of that person.

1997, c. 17, s. 12.

## Purpose and Principles

**Purpose of correctional system**

**3.** The purpose of the federal correctional system i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a just, peaceful and safe society by

(a) carrying out sentences imposed by courts through the safe and humane custody and supervision of offenders; and

(b) assisting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nd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as law-abiding citizens through the provision of programs in penitentiaries and in the community.

**Paramount consideration**

**3.1** The protection of society i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for the Service in the corrections process.

2012, c. 1, s. 54.

**Principles that guide Service**

**4.** The principles that guide the Service in achieving the purpose referred to in section 3 are as follows:

(a) the sentence is carried out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the stated

reas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ntencing judge,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offence,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information from the trial or sentencing process, the release policies of and comments from the National Parole Board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victims, offender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 the Service enhances its effectiveness and openness through the timely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with victims, offender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rough communication about its correc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o victims, offenders and the public;

(c) the Service uses measur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society, staff members and offenders and that are limited to only what i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attain the purposes of this Act;

(d) offenders retain the rights of all members of society except those that are, as a consequence of the sentence, lawfully and necessarily removed or restricted;

(e) the Service facilitates the involvement of members of the public in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s of the Service;

(f) correctional decisions are made in a forthright and fair manner, with access by the offender to an effective grievance procedure;

(g) correctional policies, programs and practices respect gender, ethnic,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and are responsive to the special needs of women, aboriginal peoples, persons requiring mental health care and other groups;

(h) offenders are expected to obey penitentiary rules and conditions governing temporary absences, work release, parole, statutory release and long-term supervision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ir correctional plans, including by participating in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their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nd

(i) staff members are properly selected and trained and are given

(i) appropriate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ii) goo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a workplace environment that is free of practices that undermine a person's sense of personal dignity, and

(iii)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policies and programs.

1992, c. 20, s. 4; 1995, c. 42, s. 2(F); 2012, c. 1, s. 54.

##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5.** There shall continue to be a correctional service in and for Canada, to be known as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a) the care and custody of inmates;

(b) the provision of programs that contribute to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nd to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c) the preparation of inmates for release;

(d) parole, statutory release supervision and long-term supervision of offenders; and

(e) maintaining a program of public education about the operations of the Service.

1992, c. 20, s. 5; 1997, c. 17, s. 13.

**Commissioner**

**6.**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appoint a person to be known as the Commissioner of Corrections who,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has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Service and all matters connected with the Service.

National headquarters

(2) The national headquarters of the Service and the offices of the Commissioner shall b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described in the schedule to the National Capital Act.

Regional headquarters

(3) The Commissioner may establish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rvice.

**Penitentiaries**

**7.** (1) Subject to subsection (3), the Commissioner may, by order, declare any prison as defined in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or any hospital, to be a penitentiary in respect of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order, declare any place to be a penitentiary.

Provincial approval

(3) No prison, hospital or place administered or supervised under the authority of an Act of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may be declared a penitentiary under subsection (1) or (2) without the approval of an officer designa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that province.

**Lands constituting penitentiary**

**8.** In any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Canada in which a question arises concerning the location or description of lands alleged to constitute a penitentiary, a certificate purporting to be signed by the Commissioner, setting out the location or description of those lands as constituting a penitentiary, is admissible in evidence and, in the absence of any evidence to the contrary, is proof that the lands as located or described in the certificate constitute a penitentiary.

**Lawful custody**

**9.** For greater certainty, a person who is an inmate by virtue of subparagraph (b)(ii) of the definition "inmate" in section 2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awful custody of the Service.

**Peace officer status**

**10.** The Commissioner may in writing designate any staff member, either by name or by class, to be a peace officer, and a staff member so designated has all the powers, authority, protection and privileges that a peace officer has by law in respect of

(a) an offender subject to a warrant or to an order for long-term supervision; and

(b) any person, while the person is in a penitentiary.

1992, c. 20, s. 10; 1995, c. 42, s. 3; 1997, c. 17, s. 14.

## Reception of Inmates

**General**

**11.** A person who is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may be received into any penitentiary, and any designation of a particular penitentiary in the warrant of committal is of no force or effect.

**Recommitment to custody**

**11.1** Where a person who is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is at large without lawful authority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ccording to law and where no alternative means of arrest are available, the institutional head may, by warrant, authorize the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of the person to custody in a penitentiary.

1995, c. 42, s. 4.

**Fifteen day delay**

**12.** In order to better enable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penitentiary or who is required by law to be transferred to penitentiary to file an appeal or attend to personal affairs, such a person shall not be received in penitentiary until the expiration of fifteen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person was sentenced, unless the person agrees to be transferred to a penitentiary before the expiration of those fifteen days.

**Medical certificate**

**13.** The institutional head may refuse to receive a person referred to in section 12 into the penitentiary if there is not a certificate signed by a registered health care professional setting out available health information and stating whether or not the person appears to be suffering from a dangerous,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Confinement in provincial facility**

**14. (1)** A person who, by virtue of section 12 or 13, is not received into a penitentiary shall be confined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2)**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to whom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delivered shall, on being presented with

(a) the warrant of committal to penitentiary, or

(b) a copy of the warrant of committal certified by any judge of a superior or provincial court, by any justice of the peace, or by the clerk of the court in which the person was convicted, confine the person in the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until the person is transferred to penitentiary or released from custody in accordance with law.

1992, c. 20, s. 14; 1995, c. 42, s. 5.

**Newfoundland**

**15. (1)** Notwithstanding any requirement in the Criminal Code or under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that a person be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such a person in the Province of Newfoundland shall not be received in a penitentiary without the approval of an officer designa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of Newfoundland.

Idem

**(2)** A person who, pursuant to subsection (1), is not received in a penitentiary shall be confined in the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n Newfoundland known as Her Majesty's Penitentiary, and is subject to all the statutes, regulations and rules applicable in that facility.

Agreement re cost

**(3)** The Minist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or in Counci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Province of Newfoundland providing for the payment to the Province of the cost of maintaining persons who are confined pursuant to subsection (2).

1992, c. 20, s. 15; 2002, c. 1, s. 172.

## Correctional Plans

**Objectives for offender's behaviour**

**15.1 (1)**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cause a correctional plan to be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the offender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ir reception in a penitentiary. The plan is to contain, among others, the following:

(a) the level of intervention in respect of the offender's needs; and

(b) objectives for

(i) the offender's behaviour, including

(A) to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that demonstrates respect for other persons and property,

(B) to obey penitentiary rules and respect the conditions governing their conditional release, if any,

(ii) their participation in programs, and

(iii) the meeting of their court-ordered obligations, including restitution to victims or child support.

Maintenance of plan

**(2)** The plan is to be maintained in consultation with the offender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receive the most effective programs at the appropriate time in their sentence to rehabilitate them and prepare them fo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n release, as a law-abiding citizen.

Progress towards meeting objectives

**(3)** In making decisions on program selection for — or the transfer or conditional release of — an inmate, the Servic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offender's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ir correctional plan.

2012, c. 1, s. 55.

**Incentive measures**

**15.2** The Commissioner may provide offenders with incentives to encourage them to make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ir correctional plans.

2012, c. 1, s. 55.

## Exchange of Service Agreements

**Agreements with provinces**

**16. (1)** The Minist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or in Counci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for

(a) the confinement in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ies or hospitals in that province of persons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and

(b) the confinement in penitentiary of persons sentenced or committed to imprisonment for less than two years for offences under any Act of Parliamen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Effect of confinement

**(2)** Subject to subsection (3), a person who is confined in a penitentiary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b) is, despite section 743.1 of the Criminal Code, subject to all the statutes, regulations and rules applicable in the penitentiary in which the person is confined.

Release date

**(3)** The release date of an offender who is transferred to penitentiary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b) shall be determined by crediting against the sentence

(a) any remission, statutory or earned, standing to the offender's credit on the day of the transfer; and

(b) the maximum remission that could have been earned 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pursuant to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1992, c. 20, s. 16, 1995, c. 22, s. 13, c. 42, s. 6; 2012, c. 1, s. 56.

## Escorted Temporary Absences

**Temporary absences may be authorized**

**17. (1)** Where, in the opin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a) an inmate will not, by reoffending,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during an absence authorized under this section,

(b) it is desirable for the inmate to be absent from penitentiary, escorted by a staff member or other person authorized by the institutional head, for medical, administrative, community service, family contact, personal development for rehabilitative purposes, or compassionate reasons, includ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c) the inmate's behaviour while under sentence does not preclude authorizing the absence, and

(d) a structured plan for the absence has been prepared, the absence may, subject to section 74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be authorized by the institutional head

(e) for an unlimited period for medical reasons, or

(f) for reasons other than medical,

(i)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days, or

(ii) with the Commissioner's approval, for a period exceeding five days but not exceeding fifteen days.

Conditions

**(2)** The institutional head may impose, in relation to a temporary absence, any conditions that the institutional head consider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ociety.

Cancellation

**(3)** The institutional head may cancel a temporary absence either before or after its commencement.

Reasons to be given

**(4)**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give the inmate written reasons for the authorizing, refusal or cancellation of a temporary absence.

Travel time

**(5)** In addition to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 purposes of a temporary absence, an inmate may be granted the time necessary to travel to and from the place where the absence is authorized to be spent.

Delegation to provincial hospital

**(6)** Where, pursuant to an agreement under paragraph 16(1)(a), an inmate has been admitted to a hospital operated by a provincial government in which the liberty of patients is normally subject to restrictions, the institutional head may confer o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ospital,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institutional head specifies, any of the institutional head's powers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that inmate.

1992, c. 20, s. 17; 1995, c. 22, s. 13, c. 42, s. 7(F); 1998, c. 35, s. 108; 2000, c. 24, s. 34.

## Work Releases

**Definition of "work release"**

**18. (1)** In this section, "work release" means a structured program of release of specified duration for work or community service outside the penitentiary, under the supervision of a staff member or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authorized by the institutional head.

Work releases may be authorized

**(2)** Where an inmate is eligible f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under Part II or pursuant to section 74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or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nd, in the opin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a) the inmate will not, by reoffending,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during a work release,

(b) it is desirable for the inmate to participate in a structured program of work or community service in the community,

(c) the inmate's behaviour while under sentence does not preclude authorizing the work release, and

(d) a structured plan for the work release has been prepared,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a work release, for such duration as is fixed by the institutional head,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if the duration is to exceed sixty days.

Conditions

**(3)** The institutional head may impose, in relation to a work release, any conditions that the institutional head consider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ociety.

Suspension or cancellation

**(4)** The institutional head may suspend or cancel a work release either before or after its commencement.

Reasons to be given

**(5)**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give the inmate written reasons for the authorizing, refusal,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 work release.

Warrant

**(6)** Where a work release is suspended or cancelled after its commencement, the institutional head may cause a warrant in writing to be issued authorizing the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to custody of the inmate.

1992, c. 20, s. 18; 1995, c. 22, s. 13, c. 42, ss. 8, 71(F); 1998, c. 35, s. 109; 2000, c. 24, s. 35.

**Investigations**

**General**

**19. (1)** Where an inmate dies or suffers serious bodily injury, the Service shall,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0, forthwith investigate the matter and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er or to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Copy to Correctional Investigator

**(2)** The Service shall giv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s defined in Part III, a copy of its re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pecial investigations**

**20.** The Commissioner may appoint a person or person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operations of the Service.

**Application of Inquiries Act**

**21.** Sections 7 to 13 of the Inquiries Act apply in respect of investigations carried on under section 20

(a) as if the references to "commissioners" in those sections were references to the person or persons appointed under section 20; and

(b) with such other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 Compensation for Death or Disability

**Minister may pay compensation**

**22.** Th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may,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ay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death or disability of

(a) an inmate, or

(b) a person on day parole that is attributable to the participation of that inmate or person in an approved program.

## Information

**Service to obtain certain information about offender**

**23. (1)** When a person is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obtain, as soon as is practicable,

(a)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offence;

(b)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person's personal history, including the person's social, economic, criminal and young-offender history;

(c) any reason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sentencing or committal that are given or made by

(i) the court that convicts, sentences or commits the person, and

(ii) any court that hears an appeal from the conviction, sentence or committal;

(d) any reports relevant to the conviction, sentence or committal that are submitted to a court mentioned in subparagraph (c)(i) or (ii); and

(e) any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administering the sentence or committal, including existing information from the victim, the victim impact statement and the transcript of any comments made by the sentencing judge regarding parole eligibility.

Access by offender

**(2)** Where access to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Service pursuant to subsection (1) is requested by the offender in writing, the offender shall be provided with access in the prescribed manner to such information as would be disclosed under the Privacy Act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Disclosure to Service

**(3)** No provision in the Privacy Act or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shall operate so as to limit or prevent the Service from obtaining any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a) to (e).

**Accuracy, etc., of information**

**24. (1)**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any information about an offender that it uses is as accurate, up to date and complete as possible.

Correction of information

**(2)** Where an offender who has been given access to information by the Service pursuant to subsection 23(2) believes that there is an error or omission therein,

(a) the offender may request the Service to correct that information; and

(b) where the request is refused, the Service shall attach to the information a notation indicating that the offender has requested a correction and setting out the correction requested.

1992, c. 20, s 24; 1995, c. 42, s. 9(F).

**Service to give information to parole boards, etc.**

**25. (1)** The Service shall give, at the appropriate times, to the National Parole Board, provincial governments, provincial parole boards, police, and any body authorized by the Service to supervise offenders, all information under its control that is relevant to release decision-making or to the supervision or surveillance of offenders.

Police to be notified of releases

**(2)** Before the release of an inmate on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he Service shall notify all police forces that have jurisdiction at the destination of the inmate if that destination is known.

Service to give information to police in some cases

**(3)** Where the Servic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n inmate who is about to be released by reason of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will, on release, pose a threat to any person, the Service shall, prior to the release and on a timely basis,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give the police all information under its control that is relevant to that perceived threat.

1992, c. 20, s. 25; 1995, c. 42, s. 71(F).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victims**

**26. (1)** At the request of a victim of an offence committed by an offender, the Commissioner

(a) shall disclose to the victim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

(i) the offender's name,

(ii) the offence of which the offender was convicted and the court that convicted the offender,

(iii) the date of commencement and length of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is serving, and

(iv) eligibility dates and review dates applicable to the offender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temporary absences or parole; and

(b) may disclose to the victim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 where in the Commissioner's opinion the interest of the victim in such disclosure clearly outweighs any invasion of the offender's privacy that could result from the disclosure:

(i) the offender's age,

(ii)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penitentiary in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1) if the offender is transferred, a summary of the reasons for the transfer and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penitentiary in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2) if the offender is to be transferred to a minimum security institution as designated by Commissioner's Directive and it is possible to notify the victim before the transfer, a summary of the reasons for the transfer and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sentence is to be served,

(ii.3) the programs that were designed to address the needs of the offender and contribute to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in which the offender is participating or has participated,

(ii.4) the serious disciplinary offences that the offender has committed,

(iii) the date, if any, on which the offender is to be released on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v) the date of any hearing for the purposes of a review under section 130,

(v) any of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offender's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vi) the destination of the offender on any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whether the offender will be in the vicinity of the victim while travelling to that destination and the reasons for any temporary absence, and

(vii) whether the offender is in custody and, if not, the reason why the offender is not in custody.

Idem

**(2)** Where a person has been transferred from a penitentiary to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the Commissioner may, at the request of a victim of an offence committed by that person, disclose to the victim the name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s located, if in the Commissioner's opinion the interest of the victim in such disclosure clearly outweighs any invasion of the person's privacy that could result from the disclosure.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other persons

**(3)** Subsection (1) also applies,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to a person who satisfies the Commissioner

(a) that harm was done to the person, or the person suffered physical or emotional damage, as a result of an act of an offender, whether or not the offender was prosecuted or convicted for that act; and

(b) that a complaint was made to the police or the Crown attorney, or an information was laid under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that act.

Idem

**(4)** Subsection (2) also applies,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to a person who satisfies the Commissioner

(a) that harm was done to the person, or the person suffered physical or emotional damage, as a result of an act of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2), whether or not the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2) was prosecuted or convicted for that act; and

(b) that a complaint was made to the police or the Crown attorney, or an information was laid under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that act.

1992, c. 20, s. 26; 2012, c. 1, s. 57.

**Information to be given to offenders**

**27. (1)** Where an offender is entitled by this Part or the regulations to make representations in relation to a decision to be taken by the Service about the offender, the person or body that is to take the decision shall, subject to subsection (3), give the offender, a reasonable period before the decision is to be taken, all the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in the taking of the decision or a summary of that information.

Idem

**(2)** Where an offender is entitled by this Part or the regulations to be given reasons for a decision taken by the Service about the offender, the person or body that takes the decision shall, subject to subsection (3), give the offender, forthwith after the decision is taken,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considered in the taking of the decision or a summary of that information

Exceptions

**(3)** Except in relation to decisions on disciplinary offences, where the Commission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under subsection (1) or (2) would jeopardize

(a) the safety of any person,

(b) the security of a penitentiary, or

(c) the conduct of any lawful investigation, the Commissioner may authorize the withholding from the offender of as much information as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identified in paragraph (a), (b) or (c).

Right to interpreter

**(4)** An offender who does not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at least one of Canada's official languages is entitled to th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a) at any hearing provided for by this Part or the regulations; and

(b) for the purposes of understanding materials provided to the offender pursuant to this section

1992, c. 20, s. 27; 1995, c. 42, s. 10(F).

## Placement and Transfer of Inmates

### Criteria for selection of penitentiary

**28.** If a person is or is to be confined in a penitentiary,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the penitentiary in which they are confined is one that provides them with an environment that contains only the necessary restrictions, taking into account

(a) the degree and kind of custody and control necessary for

(i) the safety of the public,

(ii) the safety of that person and other persons in the penitentiary, and

(iii)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b) accessibility to

(i) the person's home community and family,

(ii) a compatible cultural environment, and

(iii) a compatible linguistic environment; and

(c)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programs and services and the person'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ose programs.

1992, c. 20, s. 28; 2012, c. 1, s. 58.

### Transfers

**29.** The Commissioner may authorize the transfer of a person who is sentenced, transferred or committed to a penitentiary to

(a) another penitentiar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d), subject to section 28; or

(b)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or hospital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6(1)(a) and any applicable regulations.

1992, c. 20, s. 29; 1995, c. 42, s. 11.

## Security Classification

### Service to classify each inmate

**30. (1)** The Service shall assign a security classification of maximum, medium or minimum to each inmat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z.6).

Service to give reasons

**(2)** The Service shall give each inmate reasons, in writing, for assigning a particular security classification or for changing that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3)** Within the maximum and medium security classifications, the Commissioner may assign an inmate to a sub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z.6).

Commissioner to give reasons

**(4)** The Commissioner or the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shall give each inmate reasons, in writing, for assigning them to a subclassification or for changing that subclassification.

1992, c. 20, s. 30; 2012, c. 1, s. 59.

## Administrative Segregation

**Purpose**

**31. (1)**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segregation is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any person by not allowing an inmate to associate with other inmates.

Duration

**(2)** The inmate is to be released from administrative segregation at the earliest appropriate time.

Grounds for confining inmate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3)** The institutional head may order that an inmate be confined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if the institutional head is satisfied that there is no reasonable alternative to administrative segregation and he or she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the inmate has acted, has attempted to act or intends to act in a manner that jeopardizes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any person and allowing the inmate to associate with other inmates w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any person;

(b) allowing the inmate to associate with other inmates would interfere with an investigation that could lead to a criminal charge or a charge under subsection 41(2)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or

(c) allowing the inmate to associate with other inmates would jeopardize the inmate's safety.

1992, c. 20, s. 31; 2012, c. 1, s. 60.

**Considerations governing release**

**32.** All recommendations to the institutional head referred to in paragraph 33(1)(c) and all decisions by the institutional head to release or not to release an inmate from administrative segregation shall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s set out in section 31.

**Case to be reviewed**

**33. (1)** Where an inmate is involuntarily confined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a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a) conduct, at the prescribed time and in the prescribed manner, a hearing to review the inmate's case;

(b) conduct, at prescribed times and in the prescribed manner, further regular hearings to review the inmate's case; and

(c) recommend to the institutional head, after the hearing mentioned in paragraph (a) and after each hearing mentioned in paragraph (b), whether or not the inmate should be released from administrative segregation.

Presence of inmate

**(2)** A hearing mentioned in paragraph (1)(a) shall be conducted with the inmate present unless

(a) the inmate is voluntarily absent;

(b)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the hearing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inmate's presence would jeopardize the safety of any person present at the hearing; or

(c) the inmate seriously disrupts the hearing.

1992, c. 20, s. 33; 1995, c. 42, s. 12.

**Where institutional head must meet with inmate**

**34.**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does not intend to accept a recommendation made under section 33 to

release an inmate from administrative segregation,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as soon as is practicable, meet with the inmate

(a) to explain the reasons for not intending to accept the recommendation; and

(b) to give the inmate an opportunity to make oral or written representations.

**Idem**

**35.** Where an inmate requests to be placed in, or continue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and the institutional head does not intend to grant the request,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as soon as is practicable, meet with the inmate

(a) to explain the reasons for not intending to grant the request; and

(b) to give the inmate an opportunity to make oral or written representations.

**Visits to inmate**

**36. (1)** An inmate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shall be visited at least once every day by a registered health care professional.

**(2)** The institutional head shall visit the administrative segregation area at least once every day and meet with individual inmates on request.

**Inmate rights**

**37.** An inmate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has the same rights and conditions of confinement as other inmates, except for those that

(a) can only be enjoyed in association with other inmates; or

(b) cannot be enjoyed due to

(i) limitations specific to the administrative segregation area, or

(ii) security requirements.

1992, c. 20, s. 37; 2012, c. 1, s. 61.

## Discipline

**Purpose of disciplinary system**

**38.** The purpose of the disciplinary system established by sections 40 to 44 and the regulations is to encourage inmates to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that promotes the good order of the penitentiary, through a process that contributes to the inmates' rehabilitation and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System exclusive**

**39.** Inmates shall not be disciplined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sections 40 to 44 and the regulations.

**Disciplinary offences**

**40.** An inmate commits a disciplinary offence who

(a) disobeys a justifiable order of a staff member;

(b) is, without authorization, in an area prohibited to inmates;

(c) wilfully or recklessly damages or destroys property that is not the inmate's;

(d) commits theft;

(e) is in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f) is disrespectful toward a person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provoke them to be violent or toward a staff member in a manner that could undermine their authority or the authority of staff members in general;

(g) is abusive toward a person or intimidates them by threats that violence or other injury will be done to, or punishment inflicted on, them;

(h) fights with, assaults or threatens to assault another person;

(i)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contraband;

(j) without prior authorization,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an item that is not authorized by a Commissioner's Directive or by a written order of the institutional head;

(k) takes an intoxicant into the inmate's body;

(l) fails or refuses to provide a urine sample when demanded pursuant to section 54 or 55;

(m) creates or participates in

(i) a disturbance, or

(ii) any other activity that is likely to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n) does anything for the purpose of escaping or assisting another inmate to escape;

(o) offers, gives or accepts a bribe or reward;

(p) without reasonable excuse, refuses to work or leaves work;

(q) engages in gambling;

(r) wilfully disobeys a written rule governing the conduct of inmates;

(r.1) knowingly makes a false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 Crown;

(r.2) throws a bodily substance towards another person; or

(s) attempts to do, or assists another person to do, any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r).

1992, c. 20, s. 40; 2012, c. 1, s. 62.

**Informal resolution**

**41. (1)**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inmate has committed or is committing a disciplinary offence, the staff member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resolve the matter informally, where possible.

Charge may be issued

**(2)** Where an informal resolution is not achieved, the institutional head may,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conduct and any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issue a charge of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or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Notice of charge**

**42.** An inmate charged with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given a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the notice must state whether the charge is minor or serious.

**Hearing**

**43. (1)** A charge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procedure, including a hearing conducted in the prescribed manner.

Presence of inmate

**(2)** A hearing mentioned in subsection (1) shall be conducted with the inmate present unless

(a) the inmate is voluntarily absent;

(b) the person conducting the hearing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inmate's presence would jeopardize the safety of any person present at the hearing; or

(c) the inmate seriously disrupts the hearing.

Decision

**(3)** The person conducting the hearing shall not find the inmate guilty unless satisfied beyond a reasonable doubt,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 that the inmate committed the disciplinary offence in question.

**Disciplinary sanctions**

**44. (1)** An inmate who is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s 96(i) and (j),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a warning or reprimand;

(b) a loss of privileges;

(c) an order to make restitu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property that is damaged or destroy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d) a fine;

(e) performance of extra duties; and

(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Collection of fine or restitution

**(2)** A fine or restitution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 (1) may be collected in the prescribed manner.

1992, c. 20, s. 44; 2012, c. 1, s. 63.

## Summary Conviction Offences

**Summary conviction offences**

**45.** Every person commits a summary conviction offence who

(a) is in possession of contraband beyond the visitor control point in a penitentiary;

(b) is in possession of any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 (b) or (c) of the definition "contraband" in section 2 before the visitor control point at a penitentiary;

(c) delivers contraband to, or receives contraband from, an inmate;

(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delivers jewellery to, or receives jewellery from, an inmate; or

(e) trespasses at a penitentiary.

## Search and Seizure

### Interpretation

**Definitions**

**46.** In sections 47 to 67,

"body cavity" means the rectum or vagina;

"body cavity search" means the physical probing of a body cavity, in the prescribed manner;
"frisk search" means

(a) a manual search, or a search by technical means, of the clothed body,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b) a search of

(i) personal possessions, including clothing, that the person may be carrying, and

(ii) any coat or jacket that the person has been requested to remove,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1);

"non-intrusive search" means

(a) a search of a non-intrusive nature of the clothed body by technical means,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b) a search of

(i) personal possessions, including clothing, that the person may be carrying, and

(ii) any coat or jacket that the person has been requested to remove,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1);
"strip search" means

(a) a visual inspection of the naked body,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b) a search,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1), of all clothing, things in the clothing, and other personal possessions that the person may be carrying;

"urinalysis" means a prescribed procedure by which a person provides a urine sample, by the normal excretory process, for analysis.
1992, c. 20, s. 46; 1995, c. 42, s. 13(F).

## Searches of Inmates

**Routine non-intrusive or frisk searches**

**47. (1)** A staff member may conduct routine non-intrusive searches or routine frisk searches of inmates, without individualized suspicion,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Idem
**(2)** A person providing services of a prescribed class to the Service under a contract has the power to search that a staff member is authorized to conduct under subsection (1) if

(a) the conducting of such searches is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but does not constitute the person's principal services under the contract;

(b) the searches are reasonably related to the person's principal services under the contract; and

(c) the person has received the prescribed training to conduct such searches.

1992, c. 20, s. 47; 1995, c. 42, s. 14(F).

**Routine strip search of inmates**

**48.**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inmate may conduct a routine strip search of an inmate, without individualized suspicion,

(a)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the

inmate has been in a place where there was a likelihood of access to contraband that is capable of being hidden on or in the body; or

(b) when the inmate is entering or leaving a segregation area.

**Frisk search of inmate**

**49. (1)** Where a staff member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inmate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evidence relating to a disciplinary or criminal offence, the staff member may conduct a frisk search of the inmate.

Idem

**(2)** A person providing services of a prescribed class to the Service under a contract has the powers of search of a staff member under subsection (1) if

(a) the conducting of such searches is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but does not constitute the person's principal services under the contract;

(b) the searches are reasonably related to the person's principal services under the contract; and

(c) the person has received the prescribed training to conduct such searches.

Strip search of inmate

**(3)** Where a staff member

(a)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inmate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evidence relating to a disciplinary or criminal offence, and that a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and

(b) satisfies the institutional hea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o believe,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inmate may conduct a strip search of the inmate.

Emergency search

**(4)** Where a staff member

(a)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3)(a), and

(b)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delay that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comply with paragraph (3)(b) or with the gender requirement of subsection (3) would result in danger to human life or safety or in loss or destruction of the evidence, the staff member may conduct the strip search without complying with paragraph (3)(b) or the gender requirement of subsection (3).

**Staff member to inform institutional head**

**50.**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inmate is carrying contraband in a body cavity, the staff member may not seize or attempt to seize that contraband, but shall inform the institutional head.

**Use of X-ray, "dry cell"**

**51.**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n inmate has ingested contraband or is carrying contraband in a body cavity,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in writing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a) the use of an X-ray machine by a qualified X-ray technician to find the contraband, if the consent of the inmate and of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is obtained; and

(b) the detention of the inmate in a cell without plumbing fixtures, with notice to the penitentiary's

medical staff, on the expectation that the contraband will be expelled.

**Body cavity search**

**52.**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n inmate is carrying contraband in a body cavity and that a body cavity search is necessary in order to find or seize the contraband,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in writing a body cavity search to be conducted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if the inmate's consent is obtained.

**Exceptional power of search**

**53. (1)**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there exists, because of contraband, a clear and substantial danger to human life or safety or to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and

(b) a frisk search or strip search of all the inmates in the penitentiary or any part thereof is necessary in order to seize the contraband and avert the danger,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in writing such a search, subject to subsection (2).

Gender requirement

**(2)** A strip search authoriz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conducted in each case by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inmate.

**Urinalysis**

**54.** Subject to section 56 and subsection 57(1), a staff member may demand that an inmate submit to urinalysis

(a) where the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inmate has committed or is committing the disciplinary off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40(k) and that a urine sample is necessary to provide evidence of the offence, and the staff member obtains the prior authorizat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b) as part of a prescribed random selection urinalysis program, conducted without individualized grounds on a periodic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any Commissioner's Directives that the regulations may provide for; or

(c) where urinalysis is a prescribed requirement for participation in

(i) a prescribed program or activity involving contact with the community, or

(ii) a prescribed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

**Urinalysis**

**55.** Subject to section 56 and subsection 57(2), a staff member, or any other person so authorized by the Service, may demand that an offender submit to urinalysis

(a) at once, where the staff member or other authorized person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offender has breached any condition of a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hat requires abstention from alcohol or drugs, in order to monitor the offender's compliance with that condition; or

(b) at regular intervals, in order to monitor the offender's compliance with any condition of a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hat requires abstention from alcohol or drugs.

1992, c. 20, s. 55; 1995, c. 42, s. 15.

**Information requirements**

**56.** Where a demand is made of an offender to submit to urinalysis pursuant to section 54 or 55, the person making the demand shall forthwith inform the offender of the basis of the demand and the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Right to make representations**

**57. (1)** An inmate who is required to submit to urinalysis pursuant to paragraph 54(a)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institutional head before submitting the urine sample.

Idem

**(2)** An offender who is required to submit to urinalysis at regular intervals pursuant to section 55 shall be given reasonable opportunities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rescribed official in relation to the length of the intervals.

**Monitoring device**

**57.1 (1)** The Service may demand that an offender wear a monitoring device in order to monitor their compliance with a condition of a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parole, statutory release or long-term supervision that restricts their access to a person or a geographical area or requires them to be in a geographical area

Representations

**(2)** An offender who is required to wear a monitoring device is to be given reasonable opportunities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rescribed official in relation to the duration of the requirement.

2012, c. 1, s. 64.

## Searches of Cells

**Searches of cells**

**58.** A staff member may, in the prescribed manner, conduct searches of cells and their contents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 Searches of Visitors

**Routine non-intrusive or frisk searches**

**59.** A staff member may conduct routine non-intrusive searches or routine frisk searches of visitors, without individualized suspicion,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Frisk search**

**60. (1)** A staff member may conduct a frisk search of a visitor where the staff member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visito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other evidence relating to an offence under section 45.

Strip search

**(2)** Where a staff member

(a)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visito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other evidence

relating to an offence under section 45 and believes that a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and

(b) satisfies the institutional hea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i) to suspect that the visito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other evidence relating to an offence under section 45, and

(ii) to believe that a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visitor may, after giving the visitor the option of voluntarily leaving the penitentiary forthwith, conduct a strip search of the visitor.

Idem

**(3)**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visito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other evidence relating to an offence under section 45 and that a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a) the staff member may detain the visitor in order to

(i) obtain the authorizat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to conduct a strip search, or

(ii) obtain the services of the police; and

(b) where the staff member satisfies the institutional hea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i) that the visito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other evidence relating to an offence under section 45, and

(ii) that a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visitor to conduct a strip search of the visitor.

Rights of detained visitor

**(4)** A visitor who is detained pursuant to subsection (3) shall

(a) be informed promptly of the reasons for the detention; and

(b) before being searched,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tain and instruct counsel without delay and be informed of that right.

## Searches of Vehicles

**Routine searches**

**61. (1)** A staff member may, in the prescribed manner, conduct routine searches of vehicles at a penitentiary, without individualized suspicion,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Searches for contraband

**(2)** A staff member who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contraband is located in a vehicle at a penitentiary in circumstances constituting an offence under section 45 may, with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institutional head, search the vehicle.

Emergency searches

**(3)**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delay that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or authorization requirement of subsection (2) would result in danger to human life or safety or the loss or destruction of the contraband, the staff member may search the vehicle without that

prior authorization.

Exceptional power to search

**(4)** An institutional head may, in writing, authorize a staff member to search the vehicles at a penitentiary if the institutional head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there is a clear and substantial danger to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life or safety of persons because evidence exists that there is contraband at the penitentiary or that a criminal offence is being planned or has been committed at the penitentiary; and

(b) it is necessary to search the vehicles in order to locate and seize the contraband or other evidence and to avert the danger.

1992, c. 20, s. 61; 2012, c. 1, s. 65.

## Warnings to be Posted

**Warnings about searches**

**62.** At each penitentiary, a conspicuous warning shall be posted at the entrance to the lands and at the visitor control point, stating that all visitors and vehicles at the penitentiary are subject to being search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the regulations.

## Searches of Staff Members

**Routine non-intrusive or frisk searches**

**63.** A staff member may conduct routine non-intrusive searches or routine frisk searches of other staff members, without individualized suspicion,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which circumstances must be limited to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Frisk search or strip search**

**64. (1)**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other staff membe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evidence relating to a criminal offence and that a frisk search or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a) the staff member may detain the other staff member in order to

(i) obtain the authorizat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to conduct a frisk search or strip search, or

(ii) obtain the services of the police; and

(b) where the staff member satisfies the institutional hea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ther staff member is carrying contraband or carrying evidence relating to a criminal offence and that a frisk search or strip search is necessary to find the contraband or evidence, the institutional head may

(i) authorize a staff member to conduct a frisk search of the other staff member, or

(ii) authorize a staff member of the same sex as the other staff member to conduct a strip search of that other staff member.

Rights of detained staff member

**(2)** A staff member who is detained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a) be informed promptly of the reasons for the detention; and

(b) before being searched,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tain and instruct counsel without

delay and be informed of that right.

## Power to Seize

**Power to seize**

**65. (1)** Subject to section 50, a staff member may seize contraband, or evidence relating to a disciplinary or criminal offence, found in the course of a search conducted pursuant to sections 47 to 64, except a body cavity search or a search described in paragraph 51(a).

Idem

**(2)** A medical practitioner conducting a body cavity search may seize contraband or evidence relating to a disciplinary or criminal offence found in the course of that search.

Idem

**(3)** A person conducting a search pursuant to subsection 47(2) or 49(2) may seize contraband found in the course of that search.

## Searches in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ies

**Frisk search, room search**

**66. (1)** An employee of a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who is so authorized by the Service may

(a) conduct a frisk search of an offender in that facility, and

(b) search an offender's room and its contents, where the employee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offender is violating or has violated a condition of the offender's parole, statutory release or temporary absence and that such a search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uspected violation.

Power to seize

**(2)** An employee who conducts a search pursuant to subsection (1) may seize any evidence of a violation of the offender's conditions of release found in the course of the search.

Definition of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3)** In this section,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means a place that provides accommodation to offenders who are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temporary absence.

1992, c. 20, s. 66; 1995, c. 42, s. 71(F).

## Reports Relating to Searches and Seizures

**Reports to be submitted**

**67.** Reports in respect of searches conducted pursuant to sections 47 to 66, and in respect of the seizure of items in the course of those searches, must be submitted where required by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o) and in accordance with those regulations.

1992, c. 20, s. 67; 1995, c. 42, s. 16

## General — Living Conditions

**Instruments of restraint**

**68.** No person shall apply an instrument of restraint to an offender as punishment.

**Cruel treatment, etc.**

**69.** No person shall administer, instigate, consent to or acquiesce in any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an offender.

**Living conditions, etc.**

**70.**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penitentiaries, the penitentiary environment,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inmates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staff members are safe, healthful and free of practices that undermine a person's sense of personal dignity.

1992, c. 20, s. 70; 1995, c. 42, s. 17(F).

**Contacts and visits**

**71.** (1) In order to promote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 community, an inmate is entitled to have reasonable contact, including visits and correspondence,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subject to such reasonable limits as are prescribed for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persons.

Visitors' permitted items

(2) At each penitentiary, a conspicuous notice shall be posted at the visitor control point, listing the items that a visitor may have in possession beyond the visitor control point.

Where visitor has non-permitted item

(3) Where a visitor has in possession, beyond the visitor control point, an item not listed on the notice mentioned in subsection (2) without having previously obtained the permission of a staff member, a staff member may terminate or restrict the visit.

**Members of Parliament, judges**

**72.** Every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every Senator and every judge of a court in Canada has the right to

(a) enter any penitentiary,

(b) visit any part of a penitentiary, and

(c) visit any inmate, with the consent of the inmate, subject to such reasonable limits as are prescribed for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persons.

1992, c. 20, s. 72; 1995, c. 42, s. 18(F).

**Assembly and association**

**73.** Inmates are entitled to reasonable opportunities to assemble peacefully and associate with other inmates within the penitentiary, subject to such reasonable limits as are prescribed for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persons

**Inmate input into decisions**

**74.** The Service shall provide inmates with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decisions of the Service affecting the inmate population as a whole, or affecting a group within the inmate population, except decisions relating to security matters.

**Religion**

**75.** An inmate is entitled to reasonable opportunities to freely and openly participate in, and express, religion or spirituality, subject to such reasonable limits as are prescribed for protecting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or the safety of persons.
1992, c. 20, s. 75; 1995, c. 42, s. 19(F).

## Programs for Offenders

**Programs for offenders generally**

**76.** The Service shall provide a range of programs designed to address the needs of offenders and contribute to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Programs for female offenders**

**77.**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ection 76, the Service shall

(a) provide programs designed particularly to address the needs of female offenders; and

(b) consult regularly about programs for female offenders with

(i) appropriate women's groups, and

(ii) other appropriate persons and groups with expertise on, and experience in working with, female offenders.

**Payments to offenders**

**78. (1)** For the purpose of

(a) encouraging offenders to participate in programs provided by the Service, or

(b)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offenders to facilitate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the Commissioner may authorize payments to offenders at rates approved by the Treasury Board.

Deductions

**(2)** Where an offender receives a pay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income from a prescribed source, the Service may

(a) make deductions from that payment or incom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z.2) and any Commissioner's Directive; and

(b) require that the offender pay to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pursuant to paragraph 96(z.2.1) and as set out in a Commissioner's Directive, an amount, not exceeding thirty per cent of the gross pay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gross income, for reimbursement of the costs of the offender's food and accommodation incurred while the offender was receiving that income or payment, or for reimbursement of the costs of work-related clothing provided to the offender by the Service.

1992, c. 20, s. 78; 1995, c. 42, s. 20.

## Aboriginal Offenders

**Definitions**

**79.** In sections 80 to 84,

"aboriginal" means Indian, Inuit or Métis;

"aboriginal community" means a first nation, tribal council, band, community, organization or other group with a predominantly aboriginal leadership;

"correctional services" means services or programs for offenders, including their care and custody.

**Programs**

**80**.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ection 76, the Service shall provide programs designed particularly to address the needs of aboriginal offenders.

**Agreements**

**81. (1)** Th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n aboriginal community for the provision of correctional services to aboriginal offenders and for payment by the Minister, or by a pers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in respect of the provision of those services.

Scope of agreement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that subsection may provide for the provision of correctional services to a non-aboriginal offender.

Placement of offender

**(3)** In accordance with an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1), the Commissioner may transfer an offender to the care and custody of an aboriginal community, with the consent of the offender and of the aboriginal community.

1992, c. 20, s. 81; 1995, c. 42, s. 21(F).

**Advisory committees**

**82. (1)** The Service shall establish a National Aboriginal Advisory Committee, and may establish regional and local aboriginal advisory committees, which shall provide advice to the Service on the provision of correctional services to aboriginal offenders.

Committees to consult

**(2)**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ir function under subsection (1), all committees shall consult regularly with aboriginal communities and other appropriate persons with knowledge of aboriginal matters.

**Spiritual leaders and elders**

**83. (1)** For greater certainty, aboriginal spirituality and aboriginal spiritual leaders and elders have the same status as other religions and other religious leaders.

Idem

**(2)**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ake available to aboriginal inmates the services of an aboriginal spiritual leader or elder after consultation with

(a) the National Aboriginal Advisory Committee mentioned in section 82; and

(b) the appropriate regional and local aboriginal advisory committees, if such committees have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that section.

**Release to aboriginal community**

**84.** If an inmate expresses an interest in being released into an aboriginal community, the Service shall, with the inmate's consent, give the aboriginal community

(a) adequate notice of the inmate's parole review or their statutory release date, as the case may be; and

(b) an opportunity to propose a plan for the inmate's release and integration into that community.

1992, c. 20, s. 84; 2012, c. 1, s. 66.

**Plans with respect to long-term supervision**

**84.1** Where an offender who is required to be supervised by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has expressed

an interest in being supervised in an aboriginal community, the Service shall, if the offender consents, give the aboriginal community

(a) adequate notice of the order; and

(b) an opportunity to propose a plan for the offender's release on supervision, and integration, into the aboriginal community.

1997, c. 17, s. 15.

## Health Care

**Definitions**

**85.** In sections 86 and 87,

"health care" means medical care, dental care and mental health care, provided by registered health care professionals;

"mental health care" means the care of a disorder of thought, mood, perception, orientation or memory that significantly impairs judgment, behaviour, the capacity to recognize reality or the ability to meet the ordinary demands of life;

"treatment" means health care treatment.

**Obligations of Service**

**86. (1)** The Service shall provide every inmate with

(a) essential health care; and

(b) reasonable access to non-essential mental health care that will contribute to the inmate's rehabilitation and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Standards

**(2)**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under subsection (1) shall conform to professionally accepted standards.

**Service to consider health factors**

**87.** The Servic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n offender's state of health and health care needs

(a) in all decisions affecting the offender, including decisions relating to placement, transfer, administrative segregation and disciplinary matters; and

(b) in the preparation of the offender for release and the supervision of the offender.

**When treatment permitted**

**88. (1)**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5),

(a) treatment shall not be given to an inmate, or continued once started, unless the inmate voluntarily gives an informed consent thereto; and

(b) an inmate has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or withdraw from treatment at any time.

Meaning of "informed consent"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a), an inmate's consent to treatment is informed consent only if the inmate has been advised of, and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a) the likelihood and degree of improvement, remission, control or cure as a result of the treatment;

(b) any significant risk, and the degree thereof, associated with the treatment;

(c) any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 treatment;

(d) the likely effects of refusing the treatment; and

(e) the inmate's right to refuse the treatment or withdraw from the treatment at any time.

Special case

**(3)**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a), an inmate's consent to treatment shall not be considered involuntary merely because the treatment is a requirement for a temporary absence, work release or parole.

Treatment demonstration programs

**(4)** Treatment under a treatment demonstration program shall not be given to an inmate unless a committee that is independent of the Service and constituted as prescribed has

(a) approved the treatment demonstration program as clinically sound and in conformity with accepted ethical standards; and

(b) reviewed the inmate's consent to the treatment and determined that it was give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Where provincial law applies

**(5)** Where an inm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understand all the matters described in paragraphs (2)(a) to (e), the giving of treatment to an inmate shall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provincial law.

**Force-feeding**

**89.** The Service shall not direct the force-feeding, by any method, of an inmate who had the capacity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fasting at the time the inmate made the decision to fast.

## Grievance Procedure

**Grievance procedure**

**90.** There shall be a procedure for fairly and expeditiously resolving offenders' grievances on mat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er, and the procedure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u).

**Access to grievance procedure**

**91.** Every offender shall have complete access to the offender grievance procedure without negative consequences.

1992, c. 20, s. 91; 1995, c. 42, s. 22(F).

## Release of Inmates

**General**

**92.** An inmate may be released from a penitentiary or from any other plac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Timing of release from penitentiary**

**93.** **(1)**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2), an inmate who is entitled to be released from penitentiary on a particular day by virtue of statutory release or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shall be released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on the last working day before that day.

Earlier release in some cases

**(2)**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satisfied that an inmate's re-entry into the community will be facilitated

by an earlier release than that provided for by subsection (1), the institutional head may release the inmate up to five days before the day on which the inmate is entitled to be released by virtue of statutory release or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When inmate deemed released

**(3)** An inmate who is released pursuant to subsection (2)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leased by virtue of statutory release or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s the case may be, at the moment of actual release.

**(3.1)** [Repealed, 2011, c. 11, s. 2]

Release on request

**(4)** Where an inmate who is in penitentiary pursuant to subsection 94(1) requests to be released, the Service shall release the inmate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but is not required to release the inmate except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on a working day.

**(5)** [Repealed, 1995, c. 42, s. 23]

1992, c. 20, s. 93; 1995, c. 42, s. 23; 2011, c. 11, s. 2; 2012, c. 1, s. 67(F).

## Temporary Accommodation in Penitentiary

**Temporary stay in penitentiary**

**94. (1)** At the request of a person who has been or is entitled to be released from a penitentiary on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he institutional head may allow them to stay temporarily in the penitentiary in order to assist their rehabilitation, but the temporary stay may not extend beyond the expiration of their sentence.

Person deemed an inmate

**(2)** A person staying temporarily in a penitentiary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be deemed to be an inmate while in the penitentiary.

Continuat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3)**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s the case may be, of a person staying temporarily in a penitentiary pursuant to subsection (1) is deemed to be in force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1992, c. 20, s. 94; 1995, c. 42, s. 24; 2012, c. 1, s. 68.

## Annual Report

**Annual report**

**95.** The Minister shall cause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not later than the fifth sitting day of that House after the 31st day of January next following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 report showing the operations of the Service for that fiscal year.

## Regulations

**Regulations**

**96.**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a) prescribing the duties of staff members;

(b) for authorizing staff members or classes of staff members to exercise powers, perform duties or

carry out functions that this Part assigns to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c) respecting,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2,

(i)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mpensation may be paid,

(ii) what constitutes a disability,

(iii) the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disability, and the extent of the disability,

(iv) what constitutes an approved program,

(v) to whom compensation may be paid, and

(vi) the compensation that may be paid, the time or times at which the compensation is to be pai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which the compensation is to be paid, and the manner of its payment;

(d) respecting the placement of inmates pursuant to section 28 and their transfer pursuant to section 29;

(e) providing for the matters referred to in section 70;

(f) respecting allowances, clothing and other necessities to be given to inmates when leaving penitentiary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g) respecting the administrative segregation of inmates;

(h) prescribing the contents of the notice to be given to an inmate under section 42, and the time when the notice is to be given to the inmate;

(i) in connection with the disciplinary sanctions described in section 44,

(i) prescribing the maximum of each of those sanctions, which maxima shall be higher for serious disciplinary offences than for minor ones,

(ii) prescribing factors and guidelines to be considered or applied in imposing those sanctions,

(iii) prescribing the scope of each of those sanctions, and

(iv) respecting the enforcement,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f those sanctions;

(j) providing for a review of the decis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a disciplinary hearing;

(k) providing for

(i) the appointment of persons other than staff members to conduct disciplinary hearings or to review decisions pursuant to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j), and

(ii) the remuneration and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i);

(l) prescribing the manner in which a search referred to in

(i) paragraph (b) of the definition "frisk search" in section 46,

(ii) paragraph (b) of the definition "non-intrusive search" in section 46, or

(iii) paragraph (b) of the definition "strip search" in section 46 shall be carried out;

(m) prescrib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conducting a urinalysi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results of a urinalysis;

(m.1) authorizing the Commissioner to, by Commissioner's Directive, make rules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tampering with or refusing to wear a monitoring device referred to in section 57.1;

(n) prescribing the effect that a visitor's refusal to undergo a search can have on the visitor's right to visit an inmate or remain at the penitentiary;

(o) respecting

(i) the submission of reports referred to in section 67, and

(ii) the return or forfeiture of items seized under section 65 or subsection 66(2) or otherwise in possession of the Service;

(p) authorizing the institutional head —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or her — to,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restrict or prohibit the entry into and removal from a penitentiary and the use by inmates of publications, video and audio materials, films and computer programs;

(q) providing for inmates' moneys to be held in trust accounts;

(r) respecting inmates' work and working conditions;

(s) respecting penitentiary industry, including regulations authorizing the Minister to establish advisory boards and appoint members to them and regulations providing for the remuneration of those members at rates determined by the Treasury Board and for the reimbursement of any travel and living expenses that are consistent with directives of the Treasury Board and are incurred by those membe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while away from their ordinary place of residence;

(t) respecting the conducting of businesses by inmates;

(u) prescribing an offender grievance procedure;

(v) for the organization, training, discipline, efficiency, administration and good management of the Service;

(w) providing for inmates' access to

(i) legal counsel and legal reading materials,

(ii) non-legal reading materials, and

(iii) a commissioner for taking oaths and affidavits;

(x) respecting inmates' attendance at judicial proceedings;

(y) respecting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on the death of an inmate, inclu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ervice may pay transportation, funeral, cremation or burial expenses for a deceased inmate;

(z) prescribing the procedure governing the disposal of the effects of an escaped inmate;

(z.1) for the delivery of the estate of a deceased inmate to the inmate's personal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ncial law;

(z.1.1) prescribing the sources of income from which a deduction may be made pursuant to paragraph 78(2)(a) or in respect of which a payment may be required pursuant to paragraph 78(2)(b);

(z.2) prescribing the purposes for which deductions may be made pursuant to paragraph 78(2)(a) and prescribing the amount or maximum amount of any deduction, which regulations may authorize the Commissioner to fix the amount or maximum amount of any deduction by Commissioner's Directive;

(z.2.1) providing for the means of collecting the amount referred to in paragraph 78(2)(b), whether by transferring to Her Majesty moneys held in trust accounts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96(q) or otherwise, and authorizing the Commissioner to fix, by percentage or otherwise, that amount by Commissioner's Directive, and respect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ayment of that amount is not required;

(z.3) providing for remuneration and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members of committees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82(1);

(z.4) for the involvement of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z.5) prescribing procedures to be followed after the use of force by a staff member;

(z.6) respecting the assignment to inmates of security classifications and subclassifications under section 30 and setting ou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ecurity classification and subclassification;

(z.7) authorizing the institutional head —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him or her — to, in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monitor, intercept or prevent communications between an inmate and another person;

(z.8) respecting escorted temporary absences — inclu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leasing authority may authorize an absence under section 17 — and work releases;

(z.9) respecting the manner and form of making requests to the Commissioner under section 26 and respecting how those requests are to be dealt with;

(z.10) imposing obligations or prohibitions on the Service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any provision of this Part;

(z.11) prescribing anything that by this Part is to be prescribed; and

(z.12) generally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Part.

1992, c. 20, s. 96; 1995, c. 42, ss. 25, 72(F); 2012, c. 1, s. 69.

### Rules

**Rules**

**97.** Subject to this Part and the regulations, the Commissioner may make rules

(a) for the management of the Service;

(b) for the matters described in section 4; and

(c) generally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Part and the regulations.

### Commissioner's Directives

**Commissioner's Directives**

**98. (1)** The Commissioner may designate as Commissioner's Directives any or all rules made under section 97.

Accessibility

**(2)** The Commissioner's Directives shall be accessible to offenders, staff members and the public.

## PART II
## CONDITIONAL RELEASE, DETENTION AND LONG-TERM SUPERVISION

### Interpretation

**Definitions**

**99. (1)** In this Part,

"Board" means the National Parole Board continued by section 103 and includes a provincial parole board where it exercises jurisdiction in respect of parole as provided by section 112 or in respect of whic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art is, by virtue of section 113, rendered applicable;
"Commission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has the same meaning as in subsection 66(3);
"day parole" means the authority granted to an offender by the Board or a provincial parole board to be at large during the offender's sentence in order to prepare the offender for full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he conditions of which require the offender to return to a penitentiary,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or other location each night or at another specified interval;
"full parole" means the authority granted to an offender by the Board or a provincial parole board to be at large during the offender's sentence;
"institutional head"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long-term supervis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Minist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offender" means

(a) a person, other than a young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who is under a sentence imposed before or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i) pursuant to an Act of Parliament or, to the extent that this Part applies, pursuant to a provincial Act, or

(ii) on conviction for criminal or civil contempt of court if the sentence does not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offender return to that court, or

(b) a young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with respect to whom an order, committal or direction under section 76, 89, 92 or 93 of that Act has been made, but does not include a person whose only sentence is a sentence being served intermittently pursuant to section 732 of the Criminal Code;
"parole" means full parole or day parole;
"parole supervisor" has the meaning assigned by the definition "staff member" in subsection 2(1) or means a person entrusted by the Service with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n offender;
"penitentiary"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provincial parole board" means the Ontario Board of Parole, la Commission québécoise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the Board of Parole for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or any other parole board established by the legislature or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of a province;
"regulations" means regulations made by the Governor in Council pursuant to section 156;
"senten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serious harm" means severe physical injury or severe psychological damage;
"Servic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statutory release" means release from imprisonment subject to supervision before the expiration of an offender's sentence, to which an offender is entitled under section 127;
"statutory release date" means the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7;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means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from penitentiary authorized under section 116;

"victim"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working day"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References to expiration of sentence

**(2)**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reference to the expiration according to law of the sentence of an offender shall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 expire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a) any period during which the offender could be entitled to statutory release; or

(b) any remission that stands to the credit of the offender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Exercise of powers, etc.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Part or by the regulations,

(a) powers, duties and functions assigned to the Commissioner by or pursuant to this Part may only be exercised or performed by the Commissioner or, where the Commissioner is absent or incapacitated or where the office is vacant, by the person acting in the place of the Commissioner; and

(b) powers, duties and functions assigned to the institutional head by or pursuant to this Part may only be exercised or performed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where the institutional head is absent or incapacitated or where the office is vacant, by the person who, at the relevant time, is in charge of the penitentiary.

1992, c. 20, s. 99; 1995, c. 22, s. 13, c. 42, ss. 26, 69(E), 70(E), 71(F); 1997, c. 17, s. 17; 2002, c. 1, s. 173; 2003, c. 22, s. 155; 2012, c. 1, s. 70.

**Application to persons subject to long-term supervision order**

**99.1** A person who is required to be supervised by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is deemed to be an offend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d sections 100, 101, 109 to 111 and 140 to 145 apply,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to the person and to the long-term supervision of that person.

1997, c. 17, s. 18.

**Young persons**

**99.2** In this Part, a young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with respect to whom a committal or direction under section 89, 92 or 93 of that Act has been made begins to serve his or her sentence on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 come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2(12) of that Act.

2002, c. 1, s. 174.

## Purpose and Principles

**Purpose of conditional release**

**100.** The purpose of conditional release i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a just, peaceful and safe society by means of decisions on the timing and conditions of release that will best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nd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as law-abiding citizens.

**Paramount consideration**

**100.1** The protection of society i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for the Board and the provincial parole boards in the determination of all cases.

2012, c. 1, s. 71.

**Principles guiding parole boards**

**101.** The principles that guide the Board and the provincial parole boards in achieving the purpose of conditional release are as follows:

(a) parole boards take into consideration all relevant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the stated reas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ntencing judge,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offence,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information from the trial or sentencing process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victims, offender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assessments provided by correctional authorities;

(b) parole boards enhance their effectiveness and openness through the timely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with victims, offender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rough communication about their policies and programs to victims, offenders and the general public;

(c) parole boards make decis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at are limited to only what i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purpose of conditional release;

(d) parole boards adopt and are guided by appropriate policies and their members are provided with the training necessary to implement those policies; and

(e) offenders are provided with relevant information, reasons for decisions and access to the review of decisions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understandable conditional release process.

1992, c. 20, s. 101; 2012, c. 1, s. 71.

**Criteria for granting parole**

**102.** The Board or a provincial parole board may grant parole to an offender if, in its opinion,

(a) the offender will not, by reoffending,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before the expiration according to law of the sentence the offender is serving; and

(b) the release of the offender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society by facilitating the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into society as a law-abiding citizen.

1992, c. 20, s. 102; 1995, c. 42, s. 27(F).

## Constitution and Jurisdiction of Board

**Board continued**

**103.** The National Parole Board is continued as the Parole Board of Canada and consists of not more than 60 full-time members and a number of part-time members all of whom are appoin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to hold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periods not exceeding 10 years and three years, respectively.

1992, c. 20, s. 103; 1993, c. 34, s. 57(F); 2012, c. 1, s. 73.

**Chairperson and Executive Vice-Chairperson**

**104.** The Governor in Council shall designate one of the full-time members of the Board to be its Chairperson an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ne of the full-time members to be its Executive Vice-Chairperson.

**Membership**

**105. (1)** Members appointed to the Board shall be sufficiently diverse in their backgrounds to be able to collectively represent community values and views in the work of the Board and to inform the community with respect to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arole and statutory release.

Part-time members

**(2)** A part-time member of the Board has the same powers and duties as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Divisions

**(3)** Each member of the Board other than the Chairperson and the Executive Vice-Chairperson shall be assigned to a division of the Board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appointment.

Idem

**(4)** All members of the Board are ex officio members of every division of the Board and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person, sit on a panel of any division of the Boar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during such periods as are approved by the Chairperson.

Policies

**(5)** Members of the Board shall exercise thei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dopted pursuant to subsection 151(2).

Quorum

**(6)** Subject to subsection 152(3), the review under this Part of any case within a particular class of cases shall be made by a panel that consists of at leas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Board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as the minimum number of members for cases of that class.

1992, c. 20, s. 105; 1995, c. 42, s. 71(F).

**Substitute members**

**106. (1)** In the event that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is absent or unable to act, the Governor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may appoint a substitute member to act in the place of that member.

Idem

**(2)** A substitute member appointed pursuant to subsection (1) has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subject to any limitation on those powers and duties that the Chairperson directs.

**Jurisdiction of Board**

**107. (1)** Subject to this Act,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Offenders Act, the National Defence Act,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nd the Criminal Code, the Board has exclusive jurisdiction and absolute discretion

(a) to grant parole to an offender;

(b) to terminate or to revok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f an offender, whether or not the offender is in custody under a warrant of apprehension issued as a result of the suspension of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c) to cancel a decision to grant parole to an offender, or to cancel the suspension, termination or revocation of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f an offender;

(d) to review and to decide the case of an offender referred to it pursuant to section 129; and

(e) to authorize or to cancel a decision to authorize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in a penitentiary,

(i) a life sentence imposed as a minimum punishment or commuted from a sentence of death,

(ii) a sentence for an indeterminate period, or

(iii)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II.

Offences under provincial Acts

**(2)**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under subsection (1) extends to any offender sentenced to a sentence imposed under a provincial Act that is to be served in a penitentiary pursuant to section 743.1 of the Criminal Code, whether that sentence is to be served alone or concurrently with or consecutively to one or more other sentences imposed under an Act of Parliament or a provincial Act.

1992, c. 20, s. 107; 1995, c. 22, s. 13, c. 42, ss. 28(E), 70(E), 71(F); 1998, c. 35, s. 110; 2000, c. 24, s. 36; 2004, c. 21, s. 40.

**Jurisdiction where no provincial board**

**108. (1)** Where a provincial parole board has not been established in a province, the Board has, in respect of offenders serving sentences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n that province, the same jurisdiction and discretion that it has in respect of offenders under paragraphs 107(1)(a) to (c).

Offences under provincial Acts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under subsection (1) extends to any offender sentenced to a sentence imposed under a provincial Act that is to be served concurrently with or consecutively to a sentence imposed under an Act of Parliament.

Complementary legislation

Footnote *(3) Subsection (2) does not apply in a province until a day fixed by order of the Governor in Council made after the enactment of a provincial Act authorizing the Board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Return to footnote *Note: Subsection 108(2) applies in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as of April 19, 2007, see SI/2007-51.]

Where subsection (3) does not apply

**(4)** This section shall be read without reference to subsection (3) with respect to any province in which subsection 14(1) of the Parole Act, as that Act read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w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1992, c. 20, s. 108; 1995, c. 42, ss. 69(E), 70(E).

**Prohibition orders re vehicles, etc.**

**109.** The Board may, on application, cancel or vary the unexpired portion of a prohibition order made under section 259 of the Criminal Code after a period of

(a) ten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order, in the case of a prohibition for life; or

(b) five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order, in the case of a prohibition for more than five years but less than life.

1992, c. 20, s. 109; 2006, c. 14, s. 8.

**Clemency**

**110.** The Board shall, when so directed by the Minister, make or cause to be made any investigation or

inquiry desired by the Minister in connection with any request made to the Minister for the exercise of the royal prerogative of mercy.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111.** The Board shall maintain

(a) a program of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other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b) a program to communicate its policies and programs to offenders, to victims of crime, to victims' groups, to other groups and organizations with a special interest in matters dealt with under this Part, and to the general public.

## Constitution and Jurisdiction of Provincial Boards

**Jurisdiction of boards**

**112. (1)** Subject to subsection (2), a provincial parole board for a province shall exercis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in respect of the parole of offenders serving sentences in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at province, other than

(a) offender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s a minimum punishment;

(b) offenders whose sentence has been commuted to life imprisonment; or

(c) offenders sentenced to detention for an indeterminate period.

Day parole jurisdiction

**(2)** A provincial parole board may, but is not required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day parole.

1992, c. 20, s. 112; 1995, c. 42, ss. 29(F), 69(E).

**Incorporation by reference**

**113. (1)** Where a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for a province,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of the province may, by order, declare that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t that do not otherwise apply in respect of provincial parole board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at provincial parole board and offenders under its jurisdiction.

Provincial regulations

**(2)**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of a province may, in respect of the provincial parole board for the province and offenders under its jurisdiction, make regulations in the same manner and for the same purposes as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pursuant to section 156 in respect of the Board and offenders under its jurisdiction.

1992, c. 20, s. 113; 1995, c. 42, s. 30(F).

**Change of province of residence**

**114. (1)** Subject to any agreement entered into pursuant to this section, an offender who is released on parole in one province and moves to another province remai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that granted the parole.

Federal-provincial agreements

**(2)** The Minister,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or in Council,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for which a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transfer of

jurisdiction in respect of offenders who move to the province after their release by the Board on parole from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n another province for which no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Idem

**(3)**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for which a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Canada for the transfer to the Board of jurisdiction in respect of offenders released on parole by the provincial parole board who move to a province for which no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Interprovincial agreements

**(4)** The governments of provinces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ne another for the transfer of jurisdiction in respect of offenders released on parole by one provincial parole board who move 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another provincial parole board.

Statutory release

**(5)** Subsections (1) to (4) apply,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in respect of offenders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Minimum time to be served**

**115.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portion of a sentence that must be served before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in a penitentiary may be released on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a) in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life sentence, other than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a.1),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less three years;

(a.1) in the case of an offender described in subsection 746 1(3) of the Criminal Code, the longer of

(i) the period that expires when all but one fifth of the period of imprisonment the offender is to serve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has been served, and

(i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b) in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for an indeterminate period, other than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b.1), the longer of

(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761 of the Criminal Code, less three years, and

(i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b.1) in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for an indeterminate period as of the date on which this paragraph comes into force, the longer of

(i) three years, and

(i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and

(c) in any other case, the longer of

(i) six months, and

(ii) one half of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ir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Exceptions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an offender whose life or health is in danger and for whom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required in order to administer emergency medical treatment.

Maximum security

**(3)** Offenders who, pursuant to subsection 30(1) and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 96(z.6), are classified as maximum security offenders are not eligible f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1992, c. 20, s. 115; 1995, c. 42, ss. 31, 71(F); 1997, c. 17, s. 19; 2012, c. 1, s. 74.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116. (1)** The Board may authorize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7(1)(e) where, in the opinion of the Board,

(a) the offender will not, by reoffending,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during the absence;

(b) it is desirable for the offender to be absent from penitentiary for medical, administrative, community service, family contact, personal development for rehabilitative purposes, or compassionate reasons, includ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c) the offender's behaviour while under sentence does not preclude authorizing the absence; and

(d) a structured plan for the absence has been prepared.

Idem

**(2)**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may authorize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other than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7(1)(e), where,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as the case may be,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s (1)(a) to (d) are met.

Medical reasons

**(3)**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for medical reasons may be authorized for an unlimited period.

Personal development or community service

**(4)** Subject to subsection (6),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for reasons of community service or personal development may be authorized for a maximum of fifteen days, at the rate of not more than three times a year for an offender classified by the Service as a medium security offender and not more than four times a year for an offender classified as a minimum security offender.

Intervals

**(5)**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authorized for rea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4) must be followed by a period of custody of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next such absence.

Exception

**(6)**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for purposes of a specific personal development program may be authorized for a maximum of sixty days and may be renewed, for periods of up to sixty days each, for the purposes of the program.

Absences for other reasons

**(7)**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section (3) or (4) may be authorized for a maximum total of forty-eight hours per month for an offender classified by the Service as a medium security offender, and for a maximum total of seventy-two hours per month for an offender classified as a minimum security offender.

Regulations

**(8)** The circumstances and manner in which, and the time at which, an application f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must be made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Travel time

**(9)** In addition to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 purposes of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an offender may be granted the time necessary to travel to and from the place where the absence is authorized to be spent.

Cancellation of absence

**(10)** The Board,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whichever authorized a particula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may cancel that absence, either before or after its commencement,

(a) where the cancell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and reasonable to prevent a breach of a condition of the absence or where such a breach has occurred;

(b) where the grounds for granting the absence have changed or no longer exist; or

(c) after a review of the offender's case based on information tha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provided when the absence was authorized.

1992, c. 20, s. 116; 1993, c. 34, s. 58(F); 1995, c. 42, ss. 32(F), 71(F).

**Delegation to Commissioner**

**117. (1)** The Board may confer on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specifies, any of its powers under section 116 in respect of any class of offenders or class of absences.

Delegation to provincial hospital

**(2)** Where, pursuant to an agreement under paragraph 16(1)(a),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7(1)(e) or subsection 116(2) has been admitted to a hospital operated by a provincial government in which the liberty of persons is normally subject to restrictions, the Board,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as the case may be, may confer o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ospital,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y specify, any of their respective powers under section 116 in relation to that offender.

Suspension by institutional head

**(3)** Where the Board has not authorized the Commissioner or the institutional head under subsection (1) in respect of the offender or in respect of the absence, the institutional head of the penitentiary from which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has been effected may suspend the absence if, in the opinion of the institutional head, the offender's retention in custody or recommitment to custody is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society, on the basis of information tha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provided to the Board when the absence was authorized.

Referral of suspension to Board

**(4)** An institutional head who suspends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shall forthwith refer the offender's case to the Board, and the Board shall decide whether the absence should be cancelled. 1992, c. 20, s. 117; 1995, c. 42, s. 71(F).

**Warrant for arrest and recommittal**

**118.** A person who cancels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ursuant to subsection 116(10) or pursuant to a delegation of power under subsection 117(1) or (2), or who suspends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ursuant to subsection 117(3), shall cause a warrant in writing to be issued authorizing the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to custody of the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137, where the offender is not in custody in a penitentiary or in a hospital referred to in subsection 117(2).
1992, c. 20, s. 118; 1995, c. 42, s. 71(F).

## Eligibility for Parole

**Time when eligible for day parole**

**119. (1)** Subject to section 74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the portion of a sentence that must be served before an offender may be released on day parole is

(a) one year, where the offender was, before October 15, 1977, sentenced to preventive detention;

(b) where the offender is an offender, other than an offender referred to in paragraph (b.1), who was sentenced to detention in a penitentiary for an indeterminate period, the longer of

(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761 of the Criminal Code, less three years, and

(i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b.1) where the offender was sentenced to detention in a penitentiary for an indeterminate period as of the date on which this paragraph comes into force, the longer of

(i) three years, and

(ii) the period required to be served by the offender to reach the offender's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c) where the offender is serving a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other than a sent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b), the greater of

(i) the portion ending six months before the date on which full parole may be granted, and

(ii) six months; or

(d) one half of the portion of the sentence that must be served before full parole may be granted, where the offender is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two years.

Time when eligible for day parole

**(1.1)** Notwithstanding section 74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n offender described in subsection 746.1(1) or (2) of the Criminal Code or to whom those subsections apply pursuant to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or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shall not,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ubsection 120.2(2) or (3), be released on day parole until three years before the day tha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or (3).

When eligible for day parole — young offender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1.2)** Notwithstanding section 74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ubsection 120.2(2), the portion of the sentence of an offender described in subsection 746.1(3) of the Criminal Code or to whom that subsection applies pursuant to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or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that must be served before the offender may be released on day parole is the longer of

(a) the period that expires when all but one fifth of the period of imprisonment the offender is to serve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has been served, and

(b) the portion of the sentence that must be served before full parole may be granted to the offende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0.2(2), less three years.

Short sentences

**(2)** The Board is not required to review the case of an offender who applies for day parole if the offender is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six months.

1992, c. 20, s. 119; 1995, c. 22, ss. 13, 18, c. 42, ss. 33, 69(E); 1997, c. 17, s. 20; 1998, c. 35, s. 111; 2000, c. 24, s. 37.

**Definition of "sentence"**

**119.1**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19.2 to 120.3, and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sentence" means a sentence that is not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1997, c. 17, s. 21; 2011, c. 11, s. 3; 2012, c. 1, s. 75.

**Youth sentence**

**119.2**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20 to 120.3, the eligibility for parole of a young person in respect of whom a youth sentence is imposed under paragraph 42(2)(n), (o), (q) or (r)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and who is transferred to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for adults or a penitentiary under section 89, 92 or 93 of that Act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otal of the custody and supervision periods of the youth sentence.

2012, c. 1, s. 75.

**Time when eligible for full parole**

**120. (1)** Subject to sections 746.1 and 761 of the Criminal Code and to any order made under section 743.6 of that Act, to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to any order made under section 140.4 of that Act, and to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n offender is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has served a period of ineligibility of the lesser of one third of the sentence and seven years.

Life sentence

**(2)** Subject to any order made under section 743.6 of the Criminal Code or section 140.4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life sentence, imposed otherwise than as a minimum punishment, is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has served a period of

ineligibility of seven years less any time spent in custody between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was arrested and taken into custody, in respect of the offence for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and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1992, c. 20, s. 120; 1995, c. 22, s. 13, c. 42, s. 34; 1998, c. 35, s. 112; 2000, c. 24, s. 38.

**Multiple sentences on same day**

**120.1 (1)** A person who is not serving a sentence and who receives more than one sentence on the same day is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a period equal to the total of

(a)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any portion of the sentence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that is subject to an order under section 743.6 of the Criminal Code or section 140.4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b)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any other portion of that sentence.

One or more additional consecutive sentences

**(2)** I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r is serving a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that is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 or receives, on the same day,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to be served consecutively and the additional sentences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s are imposed — the offender is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the total of the following periods:

(a) any remaining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and

(b)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the additional sentence or, in the case of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a period equal to the total of the periods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all of the additional sentences.

Additional sentenc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portion of sentence

**(3)** Despite subsection (2), i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r a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or two or more sentences that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a portion of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 or receives, on the same day,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including a sentence to be served concurrently with the sentence being served and one or more sentences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the additional concurrent sentence — they are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any remaining period of ineligibility to which they are subject and the longer of the following periods:

(a) one third of the period that equal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ngth of the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including the additional sentence or sentences, and the length of the sentence that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or

(b) the period of ineligibility of the additional sentence that is or sentences that are ordered to be served consecutively.

1995, c. 42, s. 34; 1997, c. 17, s. 22(F); 2012, c. 1, s. 76.

**Additional concurrent sentence**

**120.2 (1)** Subject to subsection (2), i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r is serving a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that is to be served concurrently with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they are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that is the later of

(a)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and

(b)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i)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any portion, of the sentence that includes the additional sentence as provided by subsection 139(1), that is subject to an order under section 743.6 of the Criminal Code or section 140.4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ii)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any other portion of that sentence.

One or more sentences in addition to life sentence

**(2)** I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life sentence or a sentence for an indeterminate period receives a sentence for a determinate period — or receives, on the same day, two or more sentences for a determinate period — they are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the total of the following periods:

(a) any remaining period of ineligibility to which they are subject, and

(b)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the additional sentence or, in the case of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the period of ineligibility —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or section 120.1, as the case may be — in respect of the additional sentences.

Reduction of period of ineligibility for parole

**(3)** If there has been a reduction — under section 745.6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or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 in the number of years of imprisonment without eligibility for parole of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the offender is not eligible for full parole until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or sentences are imposed, the total of the following periods:

(a) any remaining period of ineligibility to which they would have been subject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reduction, and

(b)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spect of the additional sentence or, in the case of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the period of ineligibility —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or section 120.1, as the case may be — in respect of the additional sentences.

1995, c. 22, s. 18, c. 42, s. 34; 1997, c. 17, s. 23(F); 1998, c. 35, s. 113; 2000, c. 24, s. 39; 2012, c. 1, s. 76.

**Maximum period**

**120.3** Subject to section 745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1)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1)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the day on which an offender is eligible for full parole shall not be later than

(a) in the case of a person who is not serving a sentence and receives more than one sentence on the same day,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15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s are

imposed;

(b) in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 or is serving a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 and who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that changes the day on which they are eligible for parole,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15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and

(c) in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 or is serving a sentence that was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39(1) — and who receives, on the same day, two or more additional sentences that change the day on which they are eligible for parole,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15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s are imposed.

1995, c. 22, s. 18, c. 42, s. 34; 1998, c. 35, s. 114; 2000, c. 24, s. 40; 2012, c. 1, s. 76.

**Exceptional cases**

**121. (1)** Subject to section 102 — and despite sections 119 to 120.3 of this Act, sections 746.1 and 761 of the Criminal Code, subsection 140.3(2)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subsection 15(2)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nd any order made under section 743.6 of the Criminal Code or section 140.4 of the National Defence Act — parole may be granted at any time to an offender

(a) who is terminally ill;

(b) whose physical or mental health is likely to suffer serious damage if the offender continues to be held in confinement;

(c) for whom continued confinement would constitute an excessive hardship that was not reasonably foreseeable at the time the offender was sentenced; or

(d) who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surrender under the Extradition Act and who is to be detained until surrendered.

Exceptions

**(2)** Paragraphs (1)(b) to (d) do not apply to an offender who is

(a) serving a life sentence imposed as a minimum punishment or commuted from a sentence of death; or

(b) serving, in a penitentiary, a sentence for an indeterminate period.

1992, c. 20, s. 121; 1995, c. 22, s. 13, c. 42, s. 35; 1998, c. 35, s. 115; 1999, c. 18, s. 86; 2012, c. 1, s. 77.

## Parole Reviews

**Day parole review**

**122. (1)** Subject to subsection 119(2), the Board shall, on application, at the tim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view, for the purpose of day parole, the case of every offender other than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Special cases

**(2)** The Board may, on application, at the tim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view, for the purpose of day parole,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n a province in which no program of day parole has been established for that category of offender.

Decision or adjournment

**(3)** With respect to a review commenced under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day parole, or may adjourn the review for a reason authorized by the regulations and for a reasonable period not exceeding the maximum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No application for one year

**(4)** No application for day parole may be made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Board's decision — or until any earlier time that the regulations prescribe or the Board determines — if, following a review, the Board does not grant day parole or cancels or terminates parole.

Maximum duration

**(5)** Day parole may be granted to an offender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nd may be continued for additional periods not exceeding six months each following reviews of the case by the Board.

Withdrawal of application

**(6)** An offender may not withdraw an application for day parole within 14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view unless the withdrawal is necessary and it was not possible to withdraw it earlier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1992, c. 20, s. 122; 1995, c. 42, ss. 36(F), 69(E); 2012, c. 1, s. 78.

**Full parole review**

**123. (1)** The Board shall,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nd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ether to grant full parole, review the case of every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and who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provincial parole board.

Waiver of review

**(2)** The Board is not required under subsection (1), (5) or (5.1) to review the case of an offender who has advised the Board in writing that they do not wish to be considered for full parole and who has not in writing revoked that advice.

Review by Board

**(3)** The Board shall, on applic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view, for the purpose of full parole, the case of every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two years in a penitentiary or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n a province where no provincial parole board has been established.

Short sentences

**(3.1)** The Board is not required to review the case of an offender who applies for full parole if the offender is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six months.

Decision or adjournment

**(4)** With respect to a review commenced under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full parole, or may grant day parole, or may adjourn the review for a reason authorized by the regulations and for a reasonable period not exceeding the maximum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urther review — Board does not grant parole

**(5)** If the Board decides not to grant parole following a review under subsection (1) or section 122 or if a review is not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2), the Board shall conduct another review within two years after the later of the day on which the review took place or was scheduled to take place and thereafter within two years after that day until

(a) the offender is released on full parole or on statutory release;

(b) the offender's sentence expires; or

(c) less than four months remain to be served before the offender's statutory release date.

Further review — Board terminates or cancels parole

**(5.1)** If the Board cancels or terminates parole, it shall conduct another review within two years after the cancellation or termination and, after that date, within two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each preceding review takes place until

(a) the offender is released on full parole or statutory release;

(b) the offender's sentence expires; or

(c) less than four months remain to be served before the offender's statutory release date.

No application for one year

**(6)** No application for full parole may be made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Board's decision — or until any earlier time that the regulations prescribe or the Board determines — if, following a review, the Board does not grant full parole or cancels or terminates parole.

Withdrawal of application

**(7)** An offender may not withdraw an application for full parole within 14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view unless the withdrawal is necessary and it was not possible to withdraw it earlier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1992, c. 20, s. 123; 1995, c. 42, ss. 37, 69(E); 2012, c. 1, s. 79.

**Offenders unlawfully at large**

**124. (1)** The Board is not required to review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unlawfully at large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or a review under section 122 or 123 but it shall review the case as soon as possible after being informed of the offender's return to custody.

Timing of release

**(2)** Where an offender is granted parole but no date is fixed for the offender's release, the parole shall take effect, and the offender shall be released, forthwith after such period as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decision to grant parole.

Cancellation of parole

**(3)** If an offender has been granted parole under section 122 or 123, the Board may, after a review of the case based on information tha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provided to it at the time parole was granted, cancel the parole if the offender has not been released or terminate the parole if the offender has been released.

Review

**(4)** Where the Board exercises its power under subsection (3) in the absence of a hearing, it shall,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view and either confirm or cancel its decision.

1992, c. 20, s. 124; 1995, c. 42, s. 38; 2011, c. 11, s. 4; 2012, c. 1, s. 80.

**125.** [Repealed, 2011, c. 11, s. 5]

**126.** [Repealed, 2011, c. 11, s. 5]

**126.1** [Repealed, 2011, c. 11, s. 5]

## Statutory Release

**Entitlement**

**127.** **(1)** Subject to any provision of this Act, an offender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to penitentiary is entitled to be released on the dat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to remain at larg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ccording to law.

Sentence for past offences

**(2)** Subject to this section,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an offender sentenced before November 1, 1992 to imprisonment for one or more offences shall be determined by crediting against the sentence

(a) any remission, statutory or earned, standing to the offender's credit on that day; and

(b) the maximum remission that could have been earned 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pursuant to the Penitentiary Act or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as those Acts read immediately before that day.

Sentence for future offences

**(3)** Subject to this section,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an offender sentenced on or after November 1, 1992 to imprisonment for one or more offences is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completes two thirds of the sentence.

Sentences for past and future offences

**(4)** Subject to this section,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an offender sentenced before November 1, 1992 to imprisonment for one or more offences and sentenced on or after November 1, 1992 to imprisonment for one or more offences is the later of the dat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2) and (3).

I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revoked

**(5)** Subject to subsections 130(4) and (6),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revoked is

(a)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two thirds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sentence after being recommitted to custody as a result of a suspension or revocation under section 135; or

(b) if an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after the offender is recommitted to custody as a result of a suspension or revocation under section 135,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two thirds of the portion of the sentence — including the additional sentence — that begins on the day on which they are recommitted and ends on the day on which the sentence expires.

If additional sentence

**(5.1)** If an offender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for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and their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not revoked, their statutory release date is the day on which they have served, from the earlier of the day on which they are recommitted to custody as a result of the suspension of their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nd the day on which they are recommitted to custody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sentence,

(a) any time remaining before the statutory release date in respect of the sentence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and

(b) two thirds of the period that equal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ngth of the sentence that includes the additional sentence and the length of the sentence that they are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Failure to earn and forfeiture of remission

**(6)** Where an offender receives a sentence to be served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and fails to earn or forfeits any remission under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and is transferred to penitentiary, otherwise than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6(1)(b), the offender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until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has served

(a) the period of imprisonment that the offender would have been required to serve under this section if the offender had not failed to earn or had not forfeited the remission; and

(b) the period of imprisonment equal to the remission that the offender failed to earn or forfeited and that was not recredited under that Act.

Supervision after release

**(7)** An offender sentenced, committed or transferred (otherwise than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16(1)) to penitentiary on or after August 1, 1970 who is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is subject to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but no other offender released under this section is subject to supervision.

1992, c. 20, s. 127; 1995, c. 42, s. 41; 1999, c. 31, s. 66(E); 2012, c. 1, s. 81.

**Youth Criminal Justice Act**

**127.1** Subject to this Act, a young person in respect of whom a youth sentence is imposed under paragraph 42(2)(n), (o), (q) or (r)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and who is transferred to a penitentiary under subsection 89(2), 92(2) or 93(2) of that Act is entitled to be released from the penitentiary by virtue of statutory release on the day on which the custodial portion of their youth sentence would have expired.

2012, c. 1, s. 82.

## Effect of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Continuation of sentence**

**128. (1)** An offender who is released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continues, while entitled to be at large, to serve the sentence until its expiration according to law.

Freedom to be at large

**(2)**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conditions of any day parole, an offender who is released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entitled, subject to this Part, to remain at larg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and is not liable to be returned to custody by reason of the sentence unless the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suspended, cancelled, terminated or revoked.

Sentence deemed to be completed

**(3)** Despite subsection (1),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50(b)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section 64 of the Extradition Act, the sentence of an offender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deemed to be completed unless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has been suspended, terminated or revoked,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suspended or cancelled or the offender has returned to Canada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ccording to law.

Removal order

**(4)** Despite this Act,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and the Criminal Code, an offender against whom a removal order has been made under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s not eligible for day parole 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until they are eligible for full parole.

Parole inoperative where parole eligibility date in future

**(5)** If, before the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a removal order is made under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gainst an offender who has received day parole 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n the day that the removal order is made, the day parol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becomes inoperative and the offender shall be reincarcerated.

Exception

**(6)**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4) is eligible for day parole or a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f the removal order is stayed under paragraph 50(a), 66(b) or 114(1)(b)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Exception

**(7)** Where the removal order of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5) is stayed under paragraph 50(a), 66(b) or 114(1)(b)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n a day prior to the full parole eligibility of the offender, the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r day parole of that offender is resumed as of the day of the stay.

1992, c. 20, s. 128; 1995, c. 42, ss. 42, 69(E), 71(F); 1999, c. 18, s. 87; 2001, c. 27, s 242; 2012, c. 1, s. 83.

## Detention during Period of Statutory Release

**Review of cases by service**

**129. (1)** Before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that includes a sentence imposed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II 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I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the Commissioner shall cause the offender's case to be reviewed by the Service.

Referral of cases to Board

**(2)** The Service shall, more than six months before the day on which an offender is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refer the case to the Board — and provide the Board with any information that, in the Service's opinion, is relevant to the case — if the Service is of the opinion that

(a) in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that includes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including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i)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caused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and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death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or

(ii) the offence was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and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or an offence causing death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or

(b) in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that includes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I, including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 serious drug offe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Referral of cases to Chairperson of Board

**(3)** If the Commission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offender is likely,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ccording to law,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death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or a serious drug offence, the Commissioner shall refer the case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together with all the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rvice that, in the Commissioner's opinion, is relevant to the case,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forming that belief. The referral must be made more than six months before the offender's statutory release date unless

(a) the Commissioner formed that belief on the basis of the offender's behaviour or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ose six months; or

(b) as a result of a change in the statutory release date due to a recalculation, the statutory release date has passed or the offender is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during those six months.

Detention pending referral

**(3.1)** Where paragraph (3)(b) applies and the statutory release date has passed, the Commissioner shall,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the recalculation under that paragraph, make a determination whether a referral is to be made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pursuant to subsection (3) and, where appropriate, shall make a referral, and the offender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pending the determination.

Request for information by Board

**(4)** At the request of the Board, the Service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ovide the Board with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a case referred pursuant to subsection (2) or (3).

Deadlines for review by Board

**(5)** Where the case of an offender is referred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pursuant to subsection (3) during the six months preceding the statutory release date of the offender, or on or after that date, the Board shall

(a) if the case is referred to the Chairperson more than four weeks before that date, review the case pursuant to subsection 130(1) before that date;

(b) if the case is referred to the Chairperson during the four weeks preceding that date but more than three days before that date,

(i) review the case pursuant to subsection 130(1) before that date, if possible, or

(ii) make an interim review of the case before that date; or

(c) if the case is

(i) referred to the Chairperson on the statutory release date or during the three days preceding that date, or

(ii) referred to the Chairperson pursuant to paragraph (3)(b) after the statutory release date has passed, make an interim review of the case during the three days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case was so referred.

Interim review

**(6)** An interim review required by subsection (5) shall be made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Decision to review

**(7)** On completion of an interim review pursuant to subsection (5), if the Board is of the opinion, on the basis of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that a sufficient case is made for a review pursuant to subsection 130(1), the Board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case as soon as is practicable and not later than four weeks after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Delegation to provincial authorities

**(8)** The Commissioner may delegate to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of a province the powers of the Service and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offenders who are serving their sentences in a correctional facility in that province.

Definitions

**(9)** In this section and sections 130 and 132,

"serious drug offence" means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I;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means

(a)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namely,

(i) section 151 (sexual interference),

(ii) section 152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iii) section 153 (sexual exploitation),

(iv) subsection 160(3) (bestiality in presence of child or inciting child to commit bestiality),

(iv.1) section 163.1 (child pornography),

(v) section 170 (parent or guardian procuring sexual activity by child),

(vi) section 171 (householder permitting sexual activity by child),

(vii) section 172 (corrupting children),

(vii.1) section 172.1 (luring a child),

(viii) subsection 212(2) (living off the avails of prostitution by a child), and

(ix) subsection 212(4) (obtaining sexual services of a child),

(b)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involving a person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namely,

(i) section 155 (incest),

(ii) section 159 (anal intercourse),

(iii) subsections 160(1) and (2) (bestiality and compelling bestiality),

(iv) section 271 (sexual assault),

(v) section 272 (sexual assault with a weapon, threats to a third party or causing bodily harm), and

(vi) section 273 (aggravated sexual assault),

(c)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chapter C-34 of the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70,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anuary 1, 1988,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namely,

(i) section 146 (sexual intercourse with a female under 14),

(ii) section 151 (seduction of a female between 16 and 18), and

(iii) section 167 (householder permitting defilement),

(d) an offence involving a person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chapter C-34 of the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70,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anuary 1, 1988,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namely,

(i) section 153 (sexual intercourse with step-daughter),

(ii) section 155 (buggery or bestiality),

(iii) section 157 (gross indecency), and

(iv) section 166 (parent or guardian procuring defilement), or

(e) an offence involving a person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chapter C-34 of the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70,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anuary 4, 1983,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namely,

(i) section 144 (rape),

(ii) section 145 (attempt to commit rape),

(iii) section 149 (indecent assault on female), and

(iv) section 156 (indecent assault on male).

Determination of likelihood of offence

**(10)**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death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or a serious drug offence,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ny particular offence.

1992, c. 20, s. 129; 1995, c. 42, s. 44; 1998, c. 35, s. 117; 2012, c. 1, s. 84.

**Review by Board of cases referred**

**130. (1)** Where the case of an offender is referred to the Board by the Service pursuant to subsection 129(2) or referred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by the Commissioner pursuant to subsection 129(3) or (3.1), the Board shall, subject to subsections 129(5), (6) and (7), at the times an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 inform the offender of the referral and review, and

(b) review the case, and the Board shall cause all such inquiries to be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review as it considers necessary.

Detention pending review

**(2)**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before the Board renders its decision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the offender.

Decision of Board

**(3)** On completion of the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Board may order that the offender not be released from imprisonmen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5), where the Board is satisfied

(a) in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that includes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that the offender is likely, if released,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b) in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that includes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I, or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that the offender is likely, if released, to commit a serious drug offe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c) in the case of an offender whose case was referred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pursuant to subsection 129(3) or (3.1), that the offender is likely, if released,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or a serious drug offe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When order takes effect

**(3.1)**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3) takes effect on the day on which it is made.

Effect of order where additional sentence

**(3.2)** Where, before the expiration of a sentence in respect of which an order under subsection (3) has been made, an offender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and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that includes the additional sentence as provided by subsection 139(1) is later than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was serving before the additional sentence was imposed,

(a) the Board shall review the order at the time an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here,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sentence, the statutory release date has already passed or is within nine months after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received the additional sentence; and

(b) the order is cancelled where,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sentence, the statutory release date is nine months or more after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received the additional sentence.

Board's powers on review

**(3.3)** The Board shall, on completing a review under paragraph (3.2)(a)

(a) confirm the order to prevent the release of the offende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in respect of which the order was made; or

(b) amend the order to prevent the release of the offende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that includes the additional sentence as provided by subsection 139(1).

Detention pending review

**(3.4)** An offender in respect of whom an order, that is subject to review under paragraph (3.2)(a), has been made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before the Board renders its decision under subsection (3.3) in relation to the order.

Special order by Board

**(4)** Where the Board is not satisfied as provided in subsection (3) but is satisfied that

(a) at the time the case was referred to it, the offender was serving a sentence that included a sentence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II, or f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I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and

(b) in the case of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that is punishable under section 130 of the National Defence Ac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caused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the offence was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it may order that if the statutory release is later revoked, the offender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again on statutory releas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Temporary absence with escort

**(5)** An offender who is in custody pursuant to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3) or amended under paragraph (3.3)(b) is not eligible to be released from imprisonment, except on a temporary absence with escort under Part I for medical or administrative reasons.

Where order for release revoked

**(6)** Where an offender is ordered under subsection (3) or paragraph (3.3)(b) not to be released and is subsequently released pursuant to an order made under subparagraph 131(3)(a)(ii) or (iii) and the statutory release is later revoked, the offender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again on statutory releas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7)** [Repealed, 1995, c. 42, s. 45]

1992, c. 20, s. 130; 1995, c. 42, s. 45; 1997, c. 17, s. 26(F); 1998, c. 35, s. 118; 2012, c. 1, s. 85.

**Annual review of orders**

**131. (1)** The Board shall review every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30(3)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the order was made, and thereafter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each preceding review while the offender remains subject to the order.

Board to inquire

**(2)** The Board shall cause such inquiries to be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each review under subsection (1)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new information concerning the offender to justify modifying the order or making a new order.

Board's powers on review

**(3)** The Board, on completing a review under subsection (1), shall

(a) with respect to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30(3) or paragraph 130(3.3)(b),

(i) confirm the order,

(ii) order the statutory release of the offender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offender reside in a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psychiatric facility or, subject to subsection (4), a penitentiary designated pursuant to subsection (5), where the offender has been detained for a period during statutory release and the Board is satisfied that the condition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ociety and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of the offender, or

(iii) order the statutory release of the offender without such a residence requirement; or

(b) with respect to an order made under subparagraph (3)(a)(ii),

(i) confirm or modify the order, or

(ii) order the statutory release of the offender without such a residence requirement.

Consent of Commissioner

**(4)** A condition under subparagraph (3)(a)(ii) that an offender reside in a penitentiary designated pursuant

to subsection (5) is valid only if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Commissioner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ommissioner.

Designation

**(5)** The Commissioner may designate penitentiaries for the purposes of orders made under subparagraph (3)(a)(ii).

1992, c. 20, s. 131; 1995, c. 42, s. 46; 1997, c. 17, s. 27.

**Relevant factors in detention reviews**

**132. (1)** For the purposes of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of the case of an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129, 130 or 131, the Service, the Commissioner or the Board, as the case may b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factor that is relevant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causing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including

(a) a pattern of persistent violent behaviou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ny evidence, in particular,

(i) the number of offences committed by the offender causing physical or psychological harm,

(ii)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for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i) reliable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 offender has had difficulties controlling violent or sexual impulses to the point of endangering the safety of any other person,

(iv) the use of a weapon in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by the offender,

(v) explicit threats of violence made by the offender,

(vi) behaviour of a brutal nature associated with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by the offender, and

(vii) a substantial degree of indifference on the part of the offender as to the consequences to other persons of the offender's behaviour;

(b)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vidence of such likelihood owing to a physical or mental illness or disorder of the offender;

(c) reliable information compelling the conclusion that the offender is planning to commit an offence causing the death of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and

(d) the availability of supervision programs that would offer adequate protection to the public from the risk the offender might otherwise presen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Idem

**(1.1)** For the purposes of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of the case of an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129, 130 or 131, the Service, the Commissioner or the Board, as the case may b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factor that is relevant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the commission of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including

(a) a pattern of persistent sexual behaviour involving childr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ny evidence, in particular,

(i) the number of sexual offences involving a child committed by the offender,

(ii)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for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i) reliable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 offender has had difficulties controlling sexual

impulses involving children,

(iv) behaviour of a sexual nature associated with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by the offender, and

(v) a substantial degree of indifference on the part of the offender as to the consequences to other persons of the offender's behaviour;

(b)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s sexual preferences indicating that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 sexual offence involving a chil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c)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vidence of the likelihood of the offender committing such an offence owing to a physical or mental illness or disorder of the offender;

(d) reliable information compelling the conclusion that the offender is planning to commit such an offence; and

(e) the availability of supervision programs that would offer adequate protection to the public from the risk the offender might otherwise presen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Idem

**(2)** For the purposes of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of the case of an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129, 130 or 131, the Service, the Commissioner or the Board, as the case may b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factor that is relevant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the commission of a serious drug offe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including

(a) a pattern of persistent involvement in drug-related crim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ny evidence, in particular,

(i) the number of drug-related offences committed by the offender,

(ii)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for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i) the type and quantity of drugs involved in any offence committed by the offender,

(iv) reliable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 offender remains involved in drug-related activities, and

(v) a substantial degree of indifference on the part of the offender as to the consequences to other persons of the offender's behaviour;

(b)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vidence of such likelihood owing to a physical or mental illness or disorder of the offender;

(c) reliable information compelling the conclusion that the offender is planning to commit a serious drug offen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and

(d) the availability of supervision programs that would offer adequate protection to the public from the risk the offender might otherwise presen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offender's sentence according to law.

1992, c. 20, s. 132; 1995, c. 42, s. 47.

## Conditions of Release

**Definition of "releasing authority"**

**133. (1)** In this section, "releasing authority" means

(a) the Board, in respect of

(i) parole,

(ii) statutory release, or

(iii)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authorized by the Board under subsection 116(1);

(b) the Commissioner, in respect of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authorized by the Commissioner under subsection 116(2); or

(c) the institutional head, in respect of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authorized by the institutional head under subsection 116(2).

Conditions of release

**(2)** Subject to subsection (6), every offender released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Conditions set by releasing authority

**(3)** The releasing authority may impose any conditions on the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f an offender that it consider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ociety and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of the offender.

Residence requirement

**(4)** Where, in the opinion of the releasing authority,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so justify, the releasing authority may require an offender, as a condition of parol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to reside in a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Residence requirement

**(4.1)**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of an offender, the releasing authority may, as a condition of statutory release, require that the offender reside in a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or a psychiatric facility if the releasing authority is satisfied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 condition, the offender will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by committ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heir sentence according to law, an offence set out in Schedule I or an offence under section 467.11, 467.12 or 467.13 of the Criminal Code.

Definition of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4.2)** In subsection (4.1),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includes a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 but does not include any other penitentiary.

Not necessary to determine particular offence

**(4.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1), the releas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offender is likely to commit any particular offence.

Consent of commissioner

**(4.4)** A condition under subsection (4.1) that an offender reside in a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 is valid only if consented to in writing by the Commissioner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ommissioner.

Duration of conditions

**(5)** A condition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 (3), (4) or (4.1) is valid for such period as the releasing authority specifies.

Relief from conditions

**(6)** The releasing authority ma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before or after the release of an offender,

(a) in respect of condi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relieve the offender from compliance with any such condition or vary the application to the offender of any such condition; or

(b) in respect of conditions imposed under subsection (3), (4) or (4.1), remove or vary any such condition.

1992, c. 20, s. 133; 1995, c. 42, ss. 48, 71(F); 1997, c. 17, s. 28; 2012, c. 1, s. 86.

**Instructions to released offenders**

**134. (1)** An offender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shall comply with any instructions given by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the Commissioner, or given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by the offender's parole supervisor, respecting any conditions of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in order to prevent a breach of any condition or to protect society.

**(2)** [Repealed, 2012, c. 1, s. 87]

1992, c. 20, s. 134; 1995, c. 42, s. 71(F); 1997, c. 17, s. 29; 2012, c. 1, s. 87.

## Conditions for Long-Term Supervision

**Conditions for long-term supervision**

**134.1 (1)** Subject to subsection (4), every offender who is required to be supervised by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i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subsection 161(1) of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s,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Conditions set by Board

**(2)** The Board may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long-term supervision of the offender that it consider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ociety and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of the offender.

Duration of conditions

**(3)** A condition imposed under subsection (2) is valid for the period that the Board specifies.

Relief from conditions

**(4)** The Board ma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t any time during the long-term supervision of an offender,

(a) in respect of condi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relieve the offender from compliance with any such condition or vary the application to the offender of any such condition; or

(b) in respect of conditions imposed under subsection (2), remove or vary any such condition.

1997, c. 17, s. 30.

**Instructions to offenders subject to long-term supervision order**

**134.2 (1)** An offender who is supervised pursuant to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shall comply with any instructions given by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by the Commissioner, or given by the offender's parole supervisor, respecting

any conditions of long-term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a breach of any condition or to protect society.

**(2)** [Repealed, 2012, c. 1, s. 88]

1997, c. 17, s. 30; 2012, c. 1, s. 88.

## Suspension, Termination, Revocation and Inoperativeness of Parole, Statutory Release or Long-Term Supervision

**Suspens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135. (1)**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by the Commissioner, when an offender breaches a condit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r when the member or person is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suspend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n order to prevent a breach of any condition thereof or to protect society, may, by warrant,

(a) suspend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b) authorize the apprehension of the offender; and

(c) authorize the recommitment of the offender to custody until the suspension is cancelled,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terminated or revoked or the sentence of the offender has expired according to law.

Automatic suspens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1.1)** If an offender who is on parole or statutory release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other than a conditional sentence under section 742.1 of the Criminal Code that is being served in the community or an intermittent sentence under section 732 of that Act, for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their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s the case may be, is suspended on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is imposed.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1.2)** If an offender's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suspended under subsection (1.1),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the Commissioner may, by warrant, authorize the offender's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to custody until

(a) the suspension is cancelled;

(b)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terminated or revoked; or

(c) the sentence expires according to law.

Transfer of offender

**(2)** A person designated under subsection (1) may, by warrant, order the transfer to a penitentiary of an offender who is recommitted to custody under subsection (1) or (1.2) or as a result of an additional senten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1) in a place other than a penitentiary.

Cancellation of suspension or referral

**(3)** Subject to subsection (3.1), the person who signs a warrant under subsection (1) or any other person designated under that subsection shall, immediately after the recommitment of the offender, review the offender's case and

(a) where the offender is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two years, cancel the suspension or refer the case to the Board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 case, within fourteen days after the recommitment or such shorter period as the Board directs; or

(b) in any other case,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ecommitment or such shorter period as the Board directs, cancel the suspension or refer the case to the Board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 case stating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offender could in that person's opinion reasonably be returned to parole or statutory release.

Referral to Board — additional sentence

**(3.1)** If an offender's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suspended under subsection (1.1), or if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suspended under subsection (1)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1), the suspension may not be cancelled and the case is to be referred to the Board by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ommissioner,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 case, within the applicable number of days set out in subsection (3).

Review by Board

**(4)** The Board shall, on the referral to it of the case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two years, review the case an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either cancel the suspension or terminate or revoke the parole.

Review by Board —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5)** The Board shall, on the referral to it of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two years or more, review the case and —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unless the Board, at the offender's request, adjourns the hearing or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hairperson postpones the review —

(a)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the offender will, by reoffend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heir sentence according to law, present an undue risk to society,

(i) terminat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f the undue risk i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offender's control, and

(ii) revoke it in any other case;

(b) if the Board is not satisfied as in paragraph (a), cancel the suspension; and

(c) if the offender is no longer eligible for parole or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cancel the suspension or terminate or revok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Terms of cancellation

**(6)** If in the Board's opinion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do so in order to protect society or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into society, the Board, when it cancels a suspension of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f an offender, may

(a) reprimand the offender in order to warn the offender of the Board's dissatisfaction with the offender's behaviour since release;

(b) alter the conditions of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nd

(c) order the cancellation not to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Board's decision, where the offender violated the conditions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n the occasion of the suspension and on at least one previous occasion that led to a suspens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during the offender's sentence.

Transmission of cancellation of suspension

**(6.1)**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 or the Board cancels a suspension under this section, the person or the Board, as the case may be, shall forward a notific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suspension or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py of the notification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offender is being held.

If parole eligibility date in future

**(6.2)** If the Board cancels a suspension of parole under subsection (5) and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is eligible for parol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ny of sections 119 to 120.3, is later than the day on which the parole suspension is cancelled, the day or full parole is, subject to subsection (6.3), resumed on the day parole eligibility date or the full parole eligibility date, as the case may be.

Cancellation of parole — parole eligibility date in future

**(6.3)** If an offender's parole is to resume under subsection (6.2), the Board may — before the parole resumes and after a review of the case based on information with which i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provided at the time the parole suspension was cancelled — cancel the parole or, if the offender has been released, terminate the parole.

Review

**(6.4)** If the Board exercises its power under subsection (6.3) in the absence of a hearing, it shall,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view — and either confirm or cancel — its decision.

Additional power of the Board

**(7)** Independently of subsections (1) to (6), where the Board is satisfied that the continued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f an offender would constitute an undue risk to society by reason of the offender reoffend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ccording to law, the Board may, at any time,

(a) where the offender is no longer eligible for the parole or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terminate or revok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r

(b) where the offender is still eligible for the parole or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i) terminat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where the undue risk to society i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offender's control, or

(ii) revok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where the undue risk to society is due to circumstances within the offender's control.

Power not affected by new sentence

**(8)** The Board may exercise its power under subsection (7) notwithstanding any new sentence to which the offender becomes subject after being released on parole or statutory release, whether or not the new sentence is in respect of an offence committed before or after the offender's release on parole or statutory release.

Review by Board

**(9)** Where the Board exercises its power under subsection (7), it shall review its decision at time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t which times it shall either confirm or cancel its decision.

Non-application of subsection (1.1)

**(9.1)** Unless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of a province in which there is a provincial parole board makes a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113(1) that subsection (1.1) applies in respect of offend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at provincial parole board, subsection (1.1)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such offenders, other than an offender who

(a) is serving a sentence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pursuant to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6(1)(a); or

(b) as a result of receiving an additional senten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1), is required, under section 743.1 of the Criminal Code, to serve the sentence in a penitentiary.

Parole inoperative

**(9.2)** If an offender to whom subsection (1.1) does not apply, and who is on parole that has not been revoked or terminated,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that is to be served consecutively with the sentence the offender was serving when the additional sentence was imposed, the parole becomes inoperative and the offender shall be reincarcerated until the day on which the offender has served, from the day on which the additional sentence was imposed, the period of ineligibility in relation to the additional sentence. On that day, the parole is resum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unless, before that day, the parole has been revoked or terminated.

(9.3) to (9.5) [Repealed, 2012, c. 1, s. 89]

Continuation of sentence

**(10)**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 offender who is in custody by virtue of this section continues to serve the offender's sentence.

Time at large during suspension

**(1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re a suspension of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cancelled, the offender is deemed, during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y of the issuance of the suspension and ending on the day of the cancellation of the suspension, to have been serving the sentence to which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pplies.

1992, c. 20, s. 135; 1995, c. 22, s. 18, c. 42, ss. 50, 69(E), 70(E); 1997, c. 17, ss. 2(F), 32.1; 2012, c. 1, s. 89.

**Suspension of long-term supervision**

**135.1 (1)**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by the Commissioner, when an offender breaches a condition of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or a condition referred to in section 134.1 or when the member or person is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suspend the long-term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a breach of any condition of it or to protect society, may, by warrant,

(a) suspend the long-term supervision;

(b) authorize the apprehension of the offender; and

(c) authorize the commitment of the offender to a community-based residential facility or a mental health facility or, where the member or person is satisfied that commitment to custody is necessary, to custody until the suspension is cancelled, new conditions for the long-term supervision have been established or the offender is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ection 753.3 of the Criminal Code.

Limit on commitment

**(2)** The period of the commitment of the offender mentioned in paragraph (1)(c) must not exceed ninety

days.

Where offender committed

**(3)** Where an offender is committed under paragraph (1)(c), the period of the commitment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of long-term supervision ordered under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but if there is a period between the issuance of the warrant and the commitment to custody, that period is not included in that calculation.

Transfer of offender

**(4)** A person designated pursuant to subsection (1) may, by warrant, order the transfer to penitentiary of an offender who is committed under paragraph (1)(c) in a place other than a penitentiary.

Cancellation of suspension or referral

**(5)** The person who signs a warrant pursuant to subsection (1), or any other person designated pursuant to that subsection, shall, immediately after the commitment of the offender, review the offender's case and,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no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commitment, cancel the suspension or refer the case to the Board together with an assessment of the case.

Review by Board

**(6)** The Board shall, on the referral to it of the case of an offender, review the case and,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2),

(a) cancel the suspension,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in view of the offender's behaviour while being supervised, the resumption of long-term supervision would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risk to society by reason of the offender reoffend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long-term supervision; or

(b) [Repealed, 2012, c. 1, s. 90]

(c) where the Board is satisfied that no appropriate program of supervision can be established that would adequately protect society from the risk of the offender reoffending, and that it appears that a breach has occurred, recommend that an information be laid charging the offender with an offence under section 753.3 of the Criminal Code.

Laying of information

**(7)** Where the Board recommends that an information be laid pursuant to paragraph (6)(c), the Service shall recommend to the Attorney General who has jurisdiction in the place in which the breach of the condition occurred that an information be laid charging the offender with an offence under section 753.3 of the Criminal Code.

Terms of cancellation

**(8)** If in the Board's opinion it is necessary and reasonable to do so in order to protect society or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into society, the Board, when it cancels a suspension of the long-term supervision order of an offender, may

(a) reprimand the offender in order to warn the offender of the Board's dissatisfaction with the offender's behaviour while being supervised;

(b) alter the conditions of the long-term supervision, and

(c) order the cancellation not to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a specified period that ends on a date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ninety day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n order to allow the offender to

participate in a program that would help ensure that society is protected from the risk of the offender reoffending.

Transmission of cancellation of suspension

**(9)**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4) or the Board cancels a suspension under this section, the person or the Board, as the case may be, shall forward a notific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suspension or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py of the notification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offender is being held.

1997, c. 17, s. 33; 2012, c. 1, s. 90.

**Warrant for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136.**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r the Commissioner may, by warrant, authorize an offender's apprehension and recommitment to custody if

(a) their parole is terminated or revoked or becomes inoperative under subsection 135(9.2); or

(b) their statutory release is terminated or revoked or they are no longer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as a result of a change to their statutory release date under subsection 127(5.1).

1992, c. 20, s. 136; 1995, c. 42, s. 51; 1997, c. 17, s. 33; 2012, c. 1, s. 91.

**Execution of warrant**

**137. (1)** A warrant of apprehension issued under section 11.1, 18, 118, 135, 135.1 or 136 or by a provincial parole board, or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py of such a warrant, shall be executed by any peace officer to whom it is given in any place in Canada as if it had been originally issued or subsequently endorsed by a justice or other lawfu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in that place.

Arrest without warrant

**(2)** A peace officer who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warrant is in force under this Part or under the authority of a provincial parole board for the apprehension of a person may arrest the person without warrant and remand the person in custody.

Where arrest made

**(3)** Where a person has been arrested pursuant to subsection (2), the warrant of apprehension, or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py thereof, shall be executed within forty-eight hours after the arrest is made, failing which the person shall be released.

1992, c. 20, s. 137; 1995, c. 42, s. 52; 1997, c. 17, s. 34.

**Arrest without warrant — breach of conditions**

**137.1** A peace officer may arrest without warrant an offender who has committed a breach of a condition of their parole, statutory release or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or whom the peace officer finds committing such a breach, unless the peace officer

(a)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public interest may be satisfied without arresting the person,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need to

(i)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person, or

(ii) prevent the continuation or repetition of the breach; and

(b) does not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person will fail to report to their parole supervisor in order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law if the peace officer does not arrest the person.

2012, c. 1, s. 92.

**Serving balance of sentence**

**138. (1)** Where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of an offender is terminated or revoked, the offender shall be recommitted to custody and shall serve the portion of the sentence that remained unexpired on the day on which th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was terminated or revoked.

Effect of termination on parole and statutory release

**(2)**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has been terminated is

(a) eligible for paro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 120.1, 120.2 or 120.3, as the case may be; and

(b)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7.

No forfeiture of remission

**(3)**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has been terminated is not liable to forfeit

(a) any remission with which the offender was credited pursuant to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or

(b) any credits unde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Offenders Act.

Effect of revocation on parole

**(4)**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has been revoked is eligible for paro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 120.1, 120.2 or 120.3, as the case may be.

Exception

**(5)** Notwithstanding sections 122 and 123, the Board is not required to conduc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parole of the case of an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4)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offender's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s revoked.

Effect of revocation on statutory release

**(6)** Subject to subsections 130(4) and (6), an offender whos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has been revoked is entitled to be released on statutory releas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27(5).

1992, c. 20, s. 138; 1995, c. 42, ss. 53, 70(E); 2004, c. 21, s. 40; 2012, c. 1, s. 93.

## Merged Sentences

**Multiple sentences**

**139. (1)** For the purposes of the Criminal Code,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Offenders Act and this Act, a person who is subject to two or more sentences is deemed to have been sentenced to one sentence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of those sentences to be served and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last of them to be served.

Interpretation

**(2)**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time of commencement, pursuant to subsection 719(1) of the Criminal Code, of any sentences that are deemed under this section to constitute one sentence.

1992, c. 20, s. 139; 1995, c. 22, s. 18, c. 42, s. 54; 2012, c. 1, s. 95.

## Review Hearings

**Mandatory hearings**

**140. (1)** The Board shall conduct the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by way of a hearing, conducted in

whichever of the two official languages of Canada is requested by the offender, unless the offender waives the right to a hearing in writing or refuses to attend the hearing, in the following classes of cases:

(a) the first review for day parole pursuant to subsection 122(1), except in respect of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of less than two years;

(b) the first review for full parole under subsection 123(1) and subsequent reviews under subsection 123(5) or (5.1);

(c) a review conducted pursuant to section 129 or subsection 130(1) or 131(1);

(d) a review following a suspension, cancellation, termination or revocation of parole or following a suspension, termination or revocation of statutory release; and

(e) any review of a clas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Discretionary hearing

**(2)** The Board may elect to conduct a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by way of a hearing in any case no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Dispensing with hearing

**(3)**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in respect of any class of offender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the Board may conduct a review referred to in paragraph (1)(a) or (b) without a hearing in order to decide whether

(a) to grant parole, subject to the offender's acceptance in writing of the conditions of parole; or

(b) to hold a hearing before the rendering of a decision.

Attendance of observers

**(4)** Subject to subsection (5),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shall,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Board or person considers appropriate an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offender's views, permit a person who applies in writing therefor to attend as an observer at a hearing relating to an offender, unless the Board or person is satisfied that

(a) the hearing is likely to be disrupted or the ability of the Board to consider the matter before it is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presence of that person or of that person in conjunction with other persons who have applied to attend the hearing;

(b) the person's presence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ose who have provided information to the Board, including victims, members of a victim's family or members of the offender's family;

(c) the person's presence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at person's or the public's interest in knowing an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ffective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into society; or

(d)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is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person's presence.

Exclusion of observers

**(5)** Where in the course of a hearing the Board concludes that any of the possible situations described in subsection (4) is likely to exist, it may decide to continue the hearing in the absence of observers or of a particular observer.

Access to information

**(6)** Where an observer has been present during a hearing, any information or documents discussed or referred to during the hearing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publicly available for purposes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or the Privacy Act.

Assistance to offender

**(7)** Where a review by the Board includes a hearing at which the offender is present, the Board shall permit the offender to be assisted by a person of the offender's choice unless the Board would not permit the presence of that person as an observer pursuant to subsection (4).

Role of assistant

**(8)**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7) is entitled

(a) to be present at the hearing at all times when the offender is present;

(b) to advise the offender throughout the hearing; and

(c) to address, on behalf of the offender, the members of the Board conducting the hearing at times they adjudge to be conducive to the effective conduct of the hearing.

Right to interpreter

**(9)** An offender who does not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at least one of Canada's official languages is entitled to th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at the hearing an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materials provided to the offender pursuant to subsection 141(1) and paragraph 143(2)(b).

Presentation of statements

**(10)** If they are attending a hearing as an observer,

(a) a victim may present a statement describing the harm done to them or loss suffered by them as a result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nd the continuing impact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 including any safety concerns — and commenting on the possible release of the offender; and

(b)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42(3) may present a statement describing the harm done to them or loss suffered by them as a result, and the continuing impact, of any act of the offender in respect of which a complaint was made to the police or Crown attorney or an information laid under the Criminal Code — including any safety concerns — and commenting on the possible release of the offender.

Presentation of statements in absence of person

**(11)** If a victim or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42(3) is not attending a hearing, their statement may be presented at the hearing in a format that the Board considers appropriate.

Communication of statement in writing

**(12)** A victim or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42(3) shall, before the hearing, deliver to the Board a transcript of the statement that they plan to present under subsection (10) or (11).

1992, c. 20, s. 140; 1995, c. 42, ss. 55, 69(E); 2011, c. 11, s. 6; 2012, c. 1, s. 96.

## Disclosure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offender**

**141. (1)** At least fifteen days before the day set for the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the Board shall provide or cause to be provided to the offender, in writing, in whichever of the two official languages of Canada is requested by the offender, the information that is to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the case or a

summary of that information.

Idem

**(2)** Wher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comes into the possession of the Board after the time prescribed in that subsection, that information or a summary of it shall be provided to the offender as soon as is practicable thereafter.

Waiver and postponement

**(3)** An offender may waive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or summary or to have it provided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f they waive the latter right and they receive information so late that it is not possible for them to prepare for the review, they are entitled to a postponement and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shall, at the offender's request, postpone the review for the period that the member or person determines. If the Board receives information so late that it is not possible for it to prepare for the review,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name or posi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may postpone the review for any reasonable period that the member or person determines.

Exceptions

**(4)** Where the Board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a) that any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on the grounds of public interest, or

(b) that its disclosure would jeopardize

(i) the safety of any person,

(ii) the security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iii) the conduct of any lawful investigation, the Board may withhold from the offender as much information as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identified in paragraph (a) or (b).

1992, c. 20, s. 141; 1995, c. 42, s. 56(F); 2012, c. 1, s. 97.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victims**

**142. (1)** At the request of a victim of an offence committed by an offender, the Chairperson

(a) shall disclose to the victim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

(i) the offender's name,

(ii) the offence of which the offender was convicted and the court that convicted the offender,

(iii) the date of commencement and length of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is serving, and

(iv) eligibility dates and review dates applicable to the offender under this Part in respect of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 or parole; and

(b) may disclose to the victim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 where in the Chairperson's opinion the interest of the victim in the disclosure clearly outweighs any invasion of the offender's privacy that could result from the disclosure, namely,

(i) the offender's age,

(ii) the location of the penitentiary in which the sentence is being served,

(iii) the date, if any, on which the offender is to be released o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escorted temporary absence where the Board has approved the absence as required by subsection 746.1(2) of the Criminal Cod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iv) the date of any hearing for the purposes of a review under section 130,

(v) any of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offender's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nd the reasons for any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vi) the destination of the offender when released on unescorted temporary absence, parole or statutory release, and whether the offender will be in the vicinity of the victim while travelling to that destination,

(vii) whether the offender is in custody and, if not, the reason that the offender is not in custody,

(viii) whether or not the offender has appealed a decision of the Board under section 147, and the outcome of that appeal, and

(ix) the reason for a waiver of the right to a hearing under subsection 140(1) if the offender gives one.

Idem

**(2)** Where an offender has been transferred from a penitentiary to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may, at the request of a victim of an offence committed by the offender, disclose to the victim the name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provincial facility is located if in the Chairperson's opinion the interest of the victim in such disclosure clearly outweighs any invasion of the offender's privacy that could result from the disclosure.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other persons

**(3)** Subsections (1) and (2) also apply,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to a person who satisfies the Chairperson

(a) that harm was done to the person, or the person suffered physical or emotional damage, as a result of an act of an offender, whether or not the offender was prosecuted or convicted for that act; and

(b) that a complaint was made to the police or the Crown attorney, or an information was laid under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that act.

Regulations

**(4)** The manner and form of making requests to the Chairperson under subsection (1) or (2), and how those requests are to be dealt with, may be provided for by the regulations.

Designation by Chairperson

**(5)** In this section, "Chairperson" includes a person or class of persons designated, by name or by position, by the Chairperson.

1992, c. 20, s. 142; 1995, c. 22, s. 13, c. 42, ss. 57, 71(F), 72(F); 1997, c. 17, s. 35; 2012, c. 1, s. 98.

## Records of Reviews and Decisions

**Records of proceedings**

**143. (1)** Where the Board conducts a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by way of a hearing, it shall maintain a record of the proceedings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Decisions to be recorded and communicated

**(2)** Where the Board renders a decision with respect to an offender following a review of the offender's case, it shall

(a) record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nd maintain a copy of the decision and reasons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nd

(b) provide the offender with a copy of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in whichever of the two official languages of Canada is requested by the offender,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Registry of decisions**

**144. (1)** The Board shall maintain a registry of the decisions rendered by it under this Part or under paragraph 746.1(2)(c) or (3)(c) of the Criminal Code and its reasons for those decisions.

Access to registry

**(2)** A person who demonstrates an interest in a case may, on written application to the Board, have access to the contents of the registry relating to that case, other than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a) to jeopardize the safety of any person;

(b) to reveal a source of information obtained in confidence; or

(c) if released publicly, to adversely affect the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into society.

Idem

**(3)** Subject to any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ny person may have access for research purposes to the contents of the registry, other than the name of any person,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any person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jeopardize any person's safety.

Idem

**(4)**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where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a decision in the registry has been considered in the course of a hearing held in the presence of observers, any person may, on application in writing,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in the registry.

1992, c. 20, s. 144; 2012, c. 1, s. 99.

### Review and Evidence

**Documents admissible**

**145.** A decision, order, warrant or certificate purporting to be signed by a member of the Board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is admissible in any court and is evidence of its contents without proof of the signature or official character of the person appearing to have signed it.

## Organization of the Board

### Appeal Division

**Constitution of Appeal Division**

**146. (1)** There shall be a division of the Board known as the Appeal Division, consisting of not more than six full-time members — one of whom shall be designated Vice-Chairperson, Appeal Division — and a number of part-time members designated in both cases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from among the members appointed under section 103.

Disqualification

**(2)** A member of the Appeal Division may not sit on an appeal from a decision in which the member participated.

Idem

**(3)** A member of a panel of the Appeal Division that orders a new review of a case pursuant to subsection 147(4) may not sit on the panel of the Board that reviews the case or on a panel of the Appeal Division that subsequently reviews the case on an appeal.

1992, c. 20, s. 146; 2012, c. 1, s. 100.

## Appeal to Appeal Division

**Right of appeal**

**147. (1)** An offender may appeal a decision of the Board to the Appeal Division on the ground that the Board, in making its decision,

(a) failed to observe a principle of fundamental justice;

(b) made an error of law;

(c) breached or failed to apply a policy adopted pursuant to subsection 151(2);

(d) based its decision on erroneous or incomplete information; or

(e) acted without jurisdiction or beyond its jurisdiction, or failed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Decision of Vice-Chairperson

**(2)** The Vice-Chairperson, Appeal Division, may refuse to hear an appeal, without causing a full review of the case to be undertaken, where, in the opinion of the Vice-Chairperson,

(a) the appeal is frivolous or vexatious;

(b) the relief sought is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c) the appeal is based on information or on a new parole or statutory release plan that was not before the Board when it rendered the decision appealed from; or

(d) at the time the notice of appeal is received by the Appeal Division, the offender has ninety days or less to serve before being released from imprisonment.

Time and manner of appeal

**(3)** The time within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 decision of the Board may be appealed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Decision on appeal

**(4)** The Appeal Division, on the completion of a review of a decision appealed from, may

(a) affirm the decision;

(b) affirm the decision but order a further review of the case by the Board on a date earlier than the date otherwise provided for the next review;

(c) order a new review of the case by the Board and order the continuation of the decision pending the review; or

(d) reverse, cancel or vary the decision.

Conditions of immediate release

**(5)** The Appeal Division shall not render a decision under subsection (4) that results in the immediate

release of an offender from imprisonmen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a) the decision appealed from cannot reasonably be supported in law, under the applicable policies of the Board, or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Board in its review of the case; and

(b) a delay in releasing the offender from imprisonment would be unfair.

## Head Office and Regions

**Head office**

**148.** (1) The head office of the Board shall be located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s described in the schedule to the National Capital Act, but meetings of the Board o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ard may be held at such times and places as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directs.

Regional offices

(2) The Board shall maintain at least one regional office at a plac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in each of the following regions of Canada, namely, the Atlantic region, Quebec, Ontario, the Prairie region and the Pacific region.

**Regional divisions**

**149.** (1) There shall be regional divisions of the Board consisting of the members assigned to them, who shall exercise such functions of the Board,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s ar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for a region or,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regional office in a region, for the portion of a regi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Residence

(2) Full-time members of the Board assigned to a regional division pursuant to subsection 105(3) shall reside within reasonable commuting distance of the office of that division.

Presumption

(3) Any act or thing done or any decision rendered by a panel of the Board constituted pursuant to subsection 105(6) i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 act or thing done or a decision rendered by the Board.

**Vice-Chairpersons**

**150.** (1) A full-time member shall be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to be Vice-Chairperson for each regional division of the Board.

Idem

(2) A Vice-Chairperson for a division is responsible to the Chairperson for the professional conduct, training, and quality of decision-making of Board members assigned to that division.

## General

**Executive Committee**

**151.** (1) There shall be an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ard consisting of the Chairperson, the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Vice-Chairperson, Appeal Division, the regional Vice-Chairpersons and two other members of the Board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Functions

(2) The Executive Committee

(a) shall, after such consultation with Board member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adopt policies relating to reviews under this Part;

(b) shall, where requested by the Chairperson, advise the Chairperson on any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functions of the Board or of the Chairperson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c) may direct that the number of members required to constitute a panel for the review of any class of cases shall be greater than the number fixed by the regulations.

Respect for diversity

**(3)** Policies adopted under paragraph (2)(a) must respect gender, ethnic,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and be responsive to the special needs of women and aboriginal peoples, as well as to the needs of other groups of offenders with special requirements.

Chair

(4) Meetings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chaired by the Chairperson.

1992, c. 20, s. 151; 1995, c. 42, s. 58(F).

**Chief Executive Officer**

**152. (1)**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is it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as such has supervision over and direction of the work and the staff of the Board, and the Chairperson shall chair general meetings of the Board.

Withdrawal of member

**(2)** The Chairperson may direct that a member of the Board not participate in a review panel where, in the opinion of the Chairperson,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 in the review may result in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bias.

Constitution of review panels

**(3)** The Chairperson may direct that the number of members required to constitute a panel for the review of any particular case shall be greater than the number fixed by the regulations.

Investigations

**(4)** The Chairperson may appoint a person or person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operations of the Board, and sections 7 to 13 of the Inquiries Act apply in respect of such investigations, with such modifications as the circumstances require, as if the references to "commissioners" in those sections were references to the person or persons so appointed.

Delegation

**(5)** The Chairperson may authorize any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to exercise any of the Chairperson's functions under this Part, in accordance with any conditions specified by the Chairperson, and a function so exercis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xercised by the Chairperson.

Manner of exercising

**(6)** Where the Chairperson is authorized by this Part to designate a person to exercise a power, the Chairperson may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at person may exercise the power.

Absence, incapacity or vacancy

**(7)** In the event of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Chairperson or a vacancy in the office of Chairperson, the Executive Vice-Chairperson may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Chairperson.

Idem

**(8)** In the event of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or a vacancy in the offices of, the Chairperson and the Executive Vice-Chairperson,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designated by the Minister may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Chairperson.

**Remuneration of full-time and substitute members**

**153. (1)** Each full-time and substitute member of the Board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s is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nd is entitled to be paid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while performing duties away from the administrative centre to which the member is assigned.

Leave of absence from public service

**(2)** An employee in the public service appointed as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shall be given leave of absence without pay from the public service.

Remuneration of part-time members

**(3)** Each part-time member of the Board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s is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for each day that the member is serving as such, and is entitled to be paid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while performing duties away from the member's ordinary place of residence.

Pension

**(4)** The full-time members and employees of the Board shall be deemed to be employed in the public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1992, c. 20, s. 153; 2003, c. 22, s. 225(E).

**Immunity of members**

**154.** No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lie against a member of the Board for anything done or said in good faith in the exercise or purported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a member of the Board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Board members not to be witnesses**

**154.1** A member of the Board is not a competent or compellable witness in any civil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matter coming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r purported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2012, c. 1, s. 101.

**Impartiality**

**155. (1)** A full-time member of the Board shall not hold any office or engage in any occupation incompatible with the exercise of the member's functions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Idem

**(2)** A member of the Board may not participate in a review of a case in circumstances where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bias may result from the participation of that member.

**Inquiries**

**155.1 (1)** The Chairperson may recommend to the Minister that an inquiry be held to determine whether any member of the Board should be subject to any disciplinary or remedial measures for any reason set out in any of paragraphs 155.2(2)(a) to (d).

Judge to conduct inquiry

**(2)** If the Minister considers it appropriate that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be held, a judge, supernumerary judge or former judge of the Federal Court of Canada, the Federal Court of Appeal or the Federal Court, in this section and section 155.2 referred to as a "judge", shall conduct the inquiry.

Powers

**(3)** A judge conducting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has all the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that are vested in a superior court and,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has the power

(a) to issue to any person a summons requiring the person to appear at the time and place mentioned in the summons to testify with respect to all matters within the person's knowledge relative to the inquiry and to bring and produce any document, book or paper that the person has or controls relative to the inquiry; and

(b) to administer oaths and examine any person on oath.

Inquiry public

**(4)** Subject to subsections (5) and (6),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ducted in public.

Confidentiality

**(5)** A judge conducting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may, on application, take any measures or make any order that the judge considers necessary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quiry where the judge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inquiry or as a result of the inquiry being conducted in public, as the case may be,

(a) matters involving public security may be disclosed;

(b) financial or personal or other matters may be disclosed of such a nature that the desirability of avoiding public disclosures of those matters in the interest of any person affected or in the public interest outweighs the desirability of adher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inquiry be conducted in public; or

(c)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life, liberty or security of a person would be endangered.

Idem

**(6)** Where a judge conducting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the judge may take any measures or make any order that the judge considers necessary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any hearing held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5).

Rules of evidence

**(7)** A judge conducting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is not bound by any legal or technical rules of evidence and, in any proceedings of the inquiry, the judge may receive and base a decision on evidence adduced in the proceedings and considered credible or trustworth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Right to grant standing

**(8)** A judge conducting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may grant standing to the hearing to any party where the judge determines such an order to be appropriate.

Right to be heard

**(9)** Every person in respect of whom an inquiry under this section is conducted shall be given reasonable notic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quiry and of the time and place of any hearing thereof and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in person or by counsel, to be heard at the hearing, to cross-examine witnesses and to adduce evidence.

1995, c. 42, s. 59; 2002, c. 8, s. 132.

**Report of inquiry**

**155.2 (1)** After an inquiry under section 155.1 has been completed, the judge who conducted the inquiry shall prepare a report of the conclusions of the inquiry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Recommendations

**(2)** Where an inquiry under section 155.1 has been held and, in the opinion of the judge who conducted the inquiry, the member of the Board in respect of whom the inquiry was held

(a) has become incapacitated from the due execution of the member's office by reason of infirmity,

(b) is guilty of misconduct,

(c) has failed in the due execution of the member's office, or

(d) has been placed, by conduct or otherwise, in a position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due execution of the member's office, the judge may, in the report of the inquiry, recommend that the member be suspended without pay or be removed from office or may recommend that such disciplinary or remedial measure as the judge considers necessary be taken.

Governor in Council may suspend or remove

**(3)** Where the Minister receives a report under subsection (1), the Minister shall send a copy of the report to the Governor in Council, who may suspend the member of the Board to whom the report relates without pay, remove the member from office or take any other disciplinary or remedial measure.

1995, c. 42, s. 59.

## Regulations

**Regulations**

**156.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providing for anything that by this Part is to be provided for by regulation and, generally,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Part.

Application

**(2)** Regulations may be made pursuant to subsection (1) that are applicable

(a) in respect of offend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provincial parole board; and

(b) in respect of a specified class, or specified classes, of offenders.

Regulations

**(3)**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regulation, amend Schedule I or II.

Idem

**(4)**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respec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a) pursuant to sections 120 to 120.3, the period that an offender must serve before being eligible for parole;

(b) pursuant to section 127, the period that an offender must serve before being entitled to statutory release; and

(c) the manner in which subsection 139(1) applies in respect of sentences.

1992, c. 20, s. 156; 1995, c. 42, s. 60.

# PART III CORRECTIONAL INVESTIGATOR

## Interpretation

**Definitions**

**157.** In this Part,

"Commission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Correctional Investigator" mean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f Canada appointed pursuant to section 158;

"long-term supervis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Minist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offend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paro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penitentiary"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provincial parole board"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statutory releas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I.

1992, c. 20, s. 157; 1997, c. 17, s. 36; 2005, c. 10, s. 17(F); 2012, c. 1, s. 102.

**Application to persons subject to long-term supervision order**

**157.1** A person who is required to be supervised by a long-term supervision order is deemed to be an offend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1997, c. 17, s. 37.

## Correctional Investigator

**Appointment**

**158.** The Governor in Council may appoint a person to be known a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f Canada.

**Eligibility**

**159.** A person is eligible to be appointed as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to continue in that office only if the person is a Canadian citizen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or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1992, c. 20, s. 159; 2001, c. 27, s. 243.

**Tenure of office and removal**

**160. (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but may be suspended or removed for cause at any time by the Governor in Council.

Further terms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n the expiration of a first or any subsequent term of office, is eligible to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term.

**Absence, incapacity or vacancy**

**161.** In the event of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if the office of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vacant, the Governor in Council may appoint another qualified person to

hold office instead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uring the absence, incapacity or vacancy, and that person shall, while holding that office, have the same function as and all of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and be paid such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and expenses as may be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Devotion to duties**

**16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engage exclusively in the function and duties of the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shall not hold any other office under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a province for reward or engage in any other employment for reward.

**Salary and expenses**

**163. (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be paid such salary as may be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nd is entitled to be paid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Part.

Pension benefits

**(2)**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enure of office, apply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except that a person appointed as Correctional Investigator from outside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subsection 3(1)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may, by notice in writing given to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not more than sixty days after the date of appointment, elect to participate in the pension plan provided for in the Diplomatic Service (Special) Superannuation Act, in which case the provisions of that Act,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enure of office, apply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and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do not apply.

Other benefits

**(3)**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deemed to be employed in the federal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any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9 of the Aeronautics Act.

1992, c. 20, s 163; 2003, c. 22, ss. 224(E), 225(E).

## Management

**Management**

**164.**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has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all matters connected with the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 Staff

**Staff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165. (1)** Such officers and employe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perform the function and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Technical assistance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engage on a temporary basis the services of persons having

technical or specialized knowledge of any matter relating to the work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advise and assis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 and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y Board, may fix and pay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those persons.

## Oath of Office

**Oath of office**

**166.**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every person appointed pursuant to section 161 or subsection 165(1) shall, before commencing the duties of office, take the following oath of office:

"I, (name),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and impartially to the best of my abilities perform the duties required of me as (Correctional Investigator, Acting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o help me God."

## Function

**Function**

**167. (1)** It is the fun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conduct investigations into the problems of offenders related to decisions, recommendations, acts or omissions of the Commissioner or any person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or performing services for or on behalf of, the Commissioner that affect offenders either individually or as a group.

Restrictions

**(2)** In performing the fun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not investigate

(a) any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of

(i) the National Parole Board in the exercise of it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this Act, or

(ii) any provincial parole board in the exercise of its exclusive jurisdiction;

(b) any problem of an offender related to the offender's confinement in a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whether or not the confinement is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y is located; and

(c) any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of an official of a province supervising,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rovince, an offender on temporary absence, parole, statutory release subject to supervision or mandatory supervision where the matter has been, is being or is going to be investigated by an ombudsman of that province.

Excep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b),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in any province that has not appointed a provincial parole board, investigate the problems of offenders confined in provincial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at province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cases of parole by any person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or performing services for or on behalf of, the Commissioner.

**Application to Federal Court**

**168.** Where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has jurisdiction to investigate

any particular problem,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apply to the Federal Court for a declaratory order determining the question.

## Information Program

**Information program**

**169.**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maintain a program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to offenders concerning

(a) the fun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b)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investigation may be commenced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c) the independen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 Investigations

**Commencement**

**170. (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a) on the receipt of a complaint by or on behalf of an offender;

(b)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r

(c) on the initiativ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iscretion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has full discretion as to

(a) whether an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any particular complaint or request;

(b) how every investigation is to be carried out; and

(c) whether any investigation should be terminated before its completion.

**Right to hold hearing**

**171. (1)**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hold any hearing and make such inquiries a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siders appropriate, but no person is entitled as of right to be heard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Hearings to be in camera

**(2)** Every hearing held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be in camera unles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ecides otherwise.

**Right to require information and documents**

**172. (1)**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require any person

(a)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at, in the opin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he person may be able to furnish in relation to the matter being investigated; and

(b) subject to subsection (2), to produce, for examination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y document, paper or thing that, in the opin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relates to the matter being investigated and that may be in the possession or under the control of that person.

Return of document, etc.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return any document, paper or thing produced pursuant to paragraph

(1) (b) to the person who produced it within ten days after a request therefor is made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but nothing in this subsection preclude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from again requiring its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Right to make copies

**(3)**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make copies of any document, paper or thing produced pursuant to paragraph (1)(b).

**Right to examine under oath**

**173. (1)**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summon and examine on oath.

(a) where the investigation is in relation to a complaint, the complainant, and

(b) any person who, in the opin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able to furnish an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tter being investigated, and for that purpose may administer an oath.

Representation by counsel

**(2)** Where a person is summoned pursuant to subsection (1), that person may be represented by counsel during the examin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is summoned.

**Right to enter**

**17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on satisfying any applicable security requirements, at any time enter any premises occupied by or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Commissioner and inspect the premises and carry out therein any investigation or inspection.

## Findings, Reports and Recommendations

**Decision not to investigate**

**175.** Wher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ecides not to conduct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a complaint or a request from the Minister or decides to terminate such an investigation before its comple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or the Minister, as the case may be, of that decision and, i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siders it appropriate, the reasons therefor, providing the complainant with only such information as can be disclosed pursuant to the Privacy Act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Complaint not substantiated**

**176.** Where,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a complain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cludes that the complaint has not been substantiated,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of that conclusion and, wher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siders it appropriate, the reasons therefor, providing the complainant with only such information as can be disclosed pursuant to the Privacy Act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Informing of problem**

**177.** Where,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etermines that a problem referred to in section 167 exists in relation to one or more offender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form

(a) the Commissioner, or

(b) where the problem arises out of the exercise of a power deleg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to a person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of the problem and the particulars thereof.

**Opinion re decision, recommendation, etc.**

**178. (1)** Where,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of the opinion that the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to which a problem referred to in section 167 relates

(a) appears to have been contrary to law or to an established policy,

(b) was unreasonable, unjust, oppressive or improperly discriminatory, or was in accordance with a rule of law or a provision of any Act or a practice or policy that is or may be unreasonable, unjust, oppressive or improperly discriminatory, or

(c) was based wholly or partly on a mistake of law or fac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dicate that opinion, and the reasons therefor, when informing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s the case may be, of the problem.

Opinion r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

**(2)** Where,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of the opinion that in the making of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or in the act or omission, to which a problem referred to in section 167 relates a discretionary power has been exercised

(a) for an improper purpose,

(b) on irrelevant grounds,

(c) on the taking into account of irrelevant considerations, or

(d) without reasons having been give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dicate that opinion, and the reasons therefor, when informing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s the case may be, of the problem.

**Recommendations**

**179. (1)** When informing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s the case may be, of a problem,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make any recommendation tha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siders appropriate.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decision, recommendation, etc.

**(2)** In making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a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67(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recommend that

(a) reasons be given to explain why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was made or the act or omission occurred;

(b) the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be referred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for further consideration;

(c)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be cancelled or varied;

(d) the act or omission be rectified; or

(e) the law, practice or policy on which the decision, recommendation, act or omission was based be altered or reconsidered.

Recommendations not binding

**(3)** Neither the Commissioner n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is bound to act on any finding or recommendation made under this section.

**Notice and report to Minister**

**180.** If,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informing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s the case may be, of a problem, no action is taken that seems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be adequate and appropriat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form the Minister of that fact and provide the Minister with whatever information was originally provided to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 and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s the case may be.

**Complainant to be informed of result of investigation**

**181.** Where an investigation is in relation to a complain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 such manner and at such time a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considers appropriate, inform the complaina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providing the complainant with only such information as can be disclosed pursuant to the Privacy Act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 Confidentiality

**Confidentiality**

**182.** Subject to this Par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ever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comes to their knowledge in the exercise of their powers or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and duties under this Part.

**Disclosure authorized**

**183.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disclose or may authorize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disclose information

(a) that, in the opin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necessary to

(i) carry out an investigation, or

(ii) establish the grounds fo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made under this Part; or

(b) in the course of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Part or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131 (perjury) of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a statement made under this Part.

Exceptions

**(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ever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take every reasonable precaution to avoid the disclosure of, and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a) to disclose information obtained or prepared in the course of lawful investigations pertaining to

(i)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crime,

(ii) the enforcement of any law of Canada or a province, where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or

(iii) activities suspected of constituting threats to the security of Canada within the meaning of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if the information came into existence less than twenty years before the anticipated disclosure;

(b) to be injurious to the conduct of any lawful investigation,

(c) in respect of any individual under sentence for an offence against any Act of Parliament, to

(i) lead to a serious disruption of that individual's institutional or conditional release program, or

(ii) result in physical or other harm to that individual or any other person;

(d) to disclose advice or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or for a government institu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or a minister of the Crown; or

(e) to disclose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referred to in section 196.

Definition of "investigation"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b), "investigation" means an investigation that

(a) pertains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an Act of Parliament or of a province; or

(b) is authorized by or pursuant to an Act of Parliament or of a province.

**Letters to be unopened**

**184.**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any Act or regulation, where

(a) a letter written by an offender is addressed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b) a letter written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addressed to an offender, the letter shall immediately be forwarded unopened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to the offender, as the case may be, b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offender is incarcerated.

## Delegation

**Delegation by Correctional Investigator**

**185. (1)**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authorize any person to exercise or perform,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or limitations a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specify, the function, powers and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except

(a) the power to delegate under this section; and

(b) the duty or power to make a report to the Minister under section 192 or 193.

Delegation is revocable

**(2)** Every delegation under this section is revocable at will and no delegation prevents the exercise or performance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f the delegated function, powers and duties.

Continuing effect of delegation

**(3)** In the event tha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who makes a delegation under this section ceases to hold office, the delegation continues in effect so long as the delegate continues in office or until revoked by a succeeding Correctional Investigator

##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s**

**186. (1)** The power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conduct investigations exists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any Act to the effect that the matter being investigated is final and that no appeal lies in respect thereof or that the matter may not be challenged, reviewed, quashed or in any way called into question.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2)** The power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o conduct investigations is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any other Act or rule of law under which

(a) any remedy or right of appeal or objection is provided for any person, or

(b) any procedure is provided for the inquiry into or investigation of any matter, and nothing in this Part limits or affects any such remedy, right of appeal, objection or procedure.

## Legal Proceedings

**Acts not to be questioned or subject to review**

**187.** Except on the ground of lack of jurisdiction, nothing done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ncluding the making of any report or recommendation, is liable to be challenged, reviewed, quashed or called into question in any court.

**Protection of Correctional Investigator**

**188.** No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lie against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against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for anything done, reported or said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r purported exercise or performance of any function, power or duty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No summons**

**189.**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not a competent or compellable witness in respect of any matter coming to the knowledg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that person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r purported exercise or performance of any function, power or duty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n any proceedings other tha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Part or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131 (perjury) of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a statement made under this Part.

**Libel or slander**

**190.** For the purposes of any law relating to libel or slander,

(a) anything said, any information furnished or any document, paper or thing produced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by or on behalf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is privileged; and

(b) any report made in good faith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is Part and any fair and accurate account of the report made in good faith in a newspaper or any other periodical publication or in a broadcast is privileged.

## Offence and Punishment

**Offences**

**191.** Every person who

(a) without lawful justification or excuse, wilfully obstructs, hinders or resists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any other person in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f the function, powers or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b) without lawful justification or excuse, refuses or wilfully fails to comply with any lawful requirement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any other person under this Part, or

(c) wilfully makes any false statement to or misleads or attempts to mislead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r any other person in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f the function, powers or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s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dollars.

## Annual and Special Reports

**Annual reports**

**192.**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submit to the Minister a report of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uring that year, and the Minister shall cause every such report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on any of the first thirty days on which that House is sitting after the day on which the Minister receives it.

**Urgent matters**

**193.**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may, at any time, make a special report to the Minister referring to and commenting on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function, powers and dutie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where, in the opinion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he matter is of such urgency or importance that a report thereon should not be deferred until the time provided for the submission of the next annual report to the Minister under section 192, and the Minister shall cause every such special report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on any of the first thirty days on which that House is sitting after the day on which the Minister receives it.

**Reporting of public hearings**

**194.** Where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ecides to hold hearings in public in relation to any investig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indicate in relation to that investigation, in the report submitted under section 192, the reasons why the hearings were held in public.

**Adverse comments**

**195.** Where it appears to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that there may be sufficient grounds for including in a report under section 192 or 193 any comment or information that reflects or might reflect adversely on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shall give that person or organizatio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respecting the comment or information and shall include in the report a fair and accurate summary of those representations.

##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196. (1)** The powers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sections 172, 173 and 174 do not apply with respect to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 memoranda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sent proposals or recommendations to Council;

(b) discussion papers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sent background explanations, analyses of problems or policy options to Council for consideration by Council in making decisions;

(c) agenda of Council or records recording deliberations or decisions of Council;

(d) records used for or reflecting communications or discussions between ministers of the Crown on matters relating to the making of government decisions or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 policy;

(e) records the purpose of which is to brief ministers of the Crown in relation to matters that are before, or are proposed to be brought before, Council or that are the subject of communications or discus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d),

(f) draft legislation; and

(g) record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any record within a class of record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f).

Definition of "Counci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Council" means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committe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Cabinet and committees of Cabinet.

Exception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twenty years, or

(b) discussion papers described in paragraph (1)(b)

(i) if the decisions to which the discussion papers relate have been made public, or

(ii) where the decisions have not been made public, if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cisions were made.

### Regulations

**Regulations**

**197.**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the Governor in Council deem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Part.

### Her Majesty

**Binding on Her Majesty**

**198.** This Part is binding on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 PART IV
##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REPE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ND COMING INTO FORCE

**Criminal Code**

**199.** to 203. [Amendments]

**204.** [Repealed, 1995, c. 42, s. 61]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205. to 207.** [Amendments]

**Transfer of Offenders Act**

**208. to 211.** [Amendments]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Act**

**212.** [Amendment]

**Repeal**

**213. and 214.** [Repeals]

**References**

**215. and 216.** [Amendments]

## Transitional Provisions

**Commissioner remains in office**

**217.** The person holding office as Commissioner of Corrections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214 continues in office as Commissioner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under Part I of this Act.

**Federal-provincial agreements**

**218. (1)** Any agreements made under the Penitentiary Act or the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and in existence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214,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uthorized to be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15(3) or 16(1)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into under that subsection.

Idem

**(2)** Any agreements made under the Parole Act and in existence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213,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uthorized to be entered into under section 114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into under that section.

**Temporary absences**

**219.** Any temporary absence authorized under section 28 or 29 of the Penitentiary Act shall,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214, be dealt with as if it had been authorized under section 17 of this Act.

**Administrative segregation, discipline**

**220.** All matters relating to administrative segregation and disciplinary offences shall,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214,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Part I of this Act.

**Definitions**

**221.** In this section and sections 222 to 227,

"commencement day" means the day on which section 213 comes into force;

"former Act" means the Parole Act as it rea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day;

"former Board" means the National Parole Board established by section 3 of the former Act.

**Members of former Board**

**222. (1)** A person who,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day, was a full-time or temporary member of the former Boa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on the commencement day pursuant to section 103 to hold that office on the Board for a term equal to the remainder of the term for which the person was appointed.

Former Chairman and Vice-Chairman

**(2)** The persons who,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day, were Chairman and Vice-Chairman of

the former Boa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signated on the commencement day pursuant to section 104 to hold the offices of Chairperson and Executive Vice-Chairperson, respectively.

Continuation of community Board members

**(3)** The repeal of the former Act does not affect the designation of a person who,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day, was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pursuant to section 8 of the former Act, who may continue to conduct, as a regional community representative of the Board, the reviews of the classes of cases of offenders referred to in that section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for which the person was designated.

Remuneration

**(4)**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 shall be paid such remuneration as is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for each day that the person is performing duties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nd is entitled to be paid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while performing those duties away from the person's ordinary place of residence.

**Reviews in progress**

**223.** A review of the case of an offender begun under the former Act shall be continued after the commencement day as if it had been begun under this Act.

**Parole and temporary absences**

**224. (1)** Any parole granted or temporary absence authorized under the former Act shall, on and after the commencement day, be dealt with as if it had been granted or authorized under Part II of this Act.

Mandatory supervision

**(2)** Any person who is at large and subject to mandatory supervision under the former Act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day shall be deemed, after that day, to be on statutory release under Part II of this Act.

**Day parole eligibility of past offenders**

**225. (1)** Subject to subsection (1.1), paragraph 119(1)(c)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imposed before November 1, 1992, bu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former Act and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at Act apply in respect thereof as if they were provisions of this Act.

Where additional sentence

**(1.1)** Paragraph 119(1)(c) applies in respect of an offender who is serving a sentence imposed before November 1, 1992 where the offender receives an additional sentence on or after that day and, as a result, the offender is deemed, pursuant to section 139, to have been sentenced to one sentence.

**(2)** [Repealed, 2011, c. 11, s. 7]

1992, c. 20, s. 225; 1995, c. 42, s. 62; 2011, c. 11, s. 7.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date for parole**

**226. (1)** Where an offender who was serving a sentence before the commencement day is sentenced, before that sentence expires and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743.6 of the Criminal Code, to another sentence for an offence referred to in that section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nd the court determines pursuant to that section that the offender shall serve one half of the sentence imposed by it, that offender may be released on full parole after having served a period of imprisonment equal to the lesser of

one half or ten years of that other sentence and, in addition,

(a) where the two sentences are to be served concurrently, one third of any portion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not served concurrently with the other sentence; or

(b) where the two sentences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he lesser of

(i) one third of the first sentence, and

(ii) the portion of the sentence that would have had to be served before full parole could have been granted in the event that the two sentences were to have been served concurrently.

Maximum period

**(2)** No offen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required to serve more than one half of the offender's sentence before becoming eligible to be released on full parole.

1992, c. 20, s. 226; 1995, c. 22, s. 13, c. 42, ss. 69(E), 70(E).

**Revocation of mandatory supervision**

**227.** Where a person was released before the commencement day subject to mandatory supervision following an order referred to in section 26 1 of the Penitentiary Act and the release subject to mandatory supervision is revoked under Part II of this Act, the offender is not entitled to be released thereafter on statutory release under that Part.

**Remission forfeited under Penitentiary Act**

**227.1** Any remission that was forfeited under subsection 25(6) of the Penitentiary Act, as that Act read immediately before November 1, 1992, is deemed, as of November 1, 1992, to be recredited and the offender continues to be subject to the order under subsection 21.4(4) of the Parole Act, as that Act read immediately before November 1, 1992, as if the order had been made under section 130 of this Act.

1995, c. 42, s. 63.

228. and 229. [Amendments]

**Correctional Investigator**

**230.** The person holding office as Correctional Investigator under the Inquiries Act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continues in office as Correctional Investigator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under Part III of this Act for a term of one year beginning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Staff of Correctional Investigator**

**231. (1)** A person whose services were engaged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n a full-time basis pursuant to the Inquiries Act during any period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unless the person otherwise elects in writing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Probation under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nd section 28 of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a person who is deemed by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to have been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a) is not subject to probation under that Act if the person's services were engaged on a full-time basis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during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or

(b) is subject to probation under that Act for a period equal to one year minu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s services were engaged on a full-time basis b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where the latter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 Review of Detention Provisions

**Review of detention provisions after three years**

**232. (1)** Three year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s 129 to 132,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ose sections shall be undertaken by such committee of the House of Commons as may b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the House of Commons for that purpose.

Report to House of Commons

**(2)**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within one year after a review is undertaken pursuant to that subsection or within such further time as the House of Commons may authorize, submit a report on the review to the House of Commons.

## Review of Whole Act

**Review of whole Act**

**233. (1)** Five year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c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visions and operation of this Act shall be undertaken by such committee of the House of Commons or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as may b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Parliament for that purpose.

Report to Parliament

**(2)**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within a year after a review is undertaken pursuant to that subsection or within such further time as Parliament may authorize, submit a report to Parliament including a statement of any changes the committee recommends.

## Coming into Force

**Coming into force**

Footnote *234. This Act or any provision thereof shall come into force on a day or days to be fixed by order of the Governor in Council.

Return to footnote *[Note: Act, except section 204, in force November 1, 1992, see SI/92-197; section 204 repealed by 1995, c. 42, s. 61, in force January 24, 1996, see SI/96-10.]

## SCHEDULE I

(Subsections 107(1), 129(1) and (2), 130(3) and (4), 133(4.1) and 156(3))

1.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s 46 and 47 (high treason);

(a.01) section 75 (piratical acts);

(a.1) section 76 (hijacking);
(a.2) section 77 (endangering safety of aircraft or airport);
(a.3) section 78.1 (seizing control of ship or fixed platform);
(a.4) paragraph 81(1)(a), (b) or (d) (use of explosives);
(a.5) paragraph 81(2)(a) (causing injury with intent);
(a.6) section 83.18 (participation in activity of terrorist group);
(a.7) section 83.19 (facilitating terrorist activity);
(a.8) section 83.2 (commission of offence for terrorist group);
(a.9) section 83.21 (instructing to carry out activity for terrorist group);
(a.91) section 83.22 (instructing to carry out terrorist activity);
(b) subsection 85(1) (using firearm in commission of offence);
(b.1) subsection 85(2) (using imitation firearm in commission of offence);
(c) section 87 (pointing a firearm);
(c.1) section 98 (breaking and entering to steal firearm);
(c.2) section 98.1 (robbery to steal firearm);
(d) section 144 (prison breach);
(e) section 151 (sexual interference);
(f) section 152 (invitation to sexual touching);
(g) section 153 (sexual exploitation);
(g.1) section 153.1 (sexual exploit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y);
(h) section 155 (incest);
(i) section 159 (anal intercourse);
(j) section 160 (bestiality, compelling, in presence of or by child);
(j.1) section 163.1 (child pornography);
(k) section 170 (parent or guardian procuring sexual activity by child);
(l) section 171 (householder permitting sexual activity by or in presence of child);
(m) section 172 (corrupting children);
(m.1) section 172.1 (luring a child);
(n) subsection 212(2) (living off the avails of prostitution by a child);
(n.1) subsection 212(2.1) (aggravated offence in relation to living on the avails of prostitution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o) subsection 212(4) (obtaining sexual services of a child);
(o.1) section 220 (causing death by criminal negligence);
(o.2) section 221 (causing bodily harm by criminal negligence);
(p) section 236 (manslaughter);
(q) section 239 (attempt to commit murder);
(r) section 244 (discharging firearm with intent);
(r.1) section 244.1 (causing bodily harm with intent — air gun or pistol);
(r.2) section 244.2 (discharging firearm — recklessness);

(r.3) section 245 (administering noxious thing);
(s) section 246 (overcoming resistance to commission of offence);
(s.01) section 247 (trap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s.02) section 248 (interfering with transportation facilities);
(s.1) subsections 249(3) and (4) (dangerous operation causing bodily harm and dangerous operation causing death);
(s.11) subsections 249.1(3) and (4) (flight causing bodily harm or death);
(s.12) section 249.2 (causing death by criminal negligence (street racing));
(s.13) section 249.3 (causing bodily harm by criminal negligence (street racing));
(s.14) section 249.4 (dangerous operation of motor vehicle while street racing);
(s.2) subsections 255(2) and (3) (impaired driving causing bodily harm and impaired driving causing death);
(s.3) section 264 (criminal harassment);
(s.4) section 264.1 (uttering threats);
(t) section 266 (assault);
(u) section 267 (assault with a weapon or causing bodily harm);
(v) section 268 (aggravated assault);
(w) section 269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w.1) section 269.1 (torture);
(x) section 270 (assaulting a peace officer);
(x.1) section 270.01 (assaulting peace officer with weapon or causing bodily harm);
(x.2) section 270.02 (aggravated assault of peace officer);
(y) section 271 (sexual assault);
(z) section 272 (sexual assault with a weapon, threats to a third party or causing bodily harm);
(z.1) section 273 (aggravated sexual assault);
(z.11) section 273.3 (removal of child from Canada),
(z.2) section 279 (kidnapping and forcible confinement);
(z.21) section 279.1 (hostage taking);
(z.3) sections 343 and 344 (robbery);
(z.301) section 346 (extortion);
(z.31) subsection 430(2) (mischief that causes actual danger to life);
(z.32) section 431 (attack on premises, residence or transport of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
(z.33) section 431.1 (attack on premises, accommodation or transport of United Nations or associated personnel);
(z.34) subsection 431.2(2) (explosive or other lethal device);
(z.4) section 433 (arson — disregard for human life);
(z.5) section 434.1 (arson — own property);
(z.6) section 436 (arson by negligence); and
(z.7) paragraph 465(1)(a) (conspiracy to commit murder).

2.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uly 1, 1990,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433 (arson);
(b) section 434 (setting fire to other substance); and
(c) section 436 (setting fire by negligence).
3.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chapter C-34 of the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70,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anuary 4, 1983,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144 (rape);
(b) section 145 (attempt to commit rape);
(c) section 149 (indecent assault on female);
(d) section 156 (indecent assault on male);
(e) section 245 (common assault); and
(f) section 246 (assault with intent).
4.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chapter C-34 of the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70, as they read immediately before January 1, 1988,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146 (sexual intercourse with a female under 14);
(b) section 151 (seduction of a female between 16 and 18);
(c) section 153 (sexual intercourse with step-daughter);
(d) section 155 (buggery or bestiality);
(e) section 157 (gross indecency);
(f) section 166 (parent or guardian procuring defilement); and
(g) section 167 (householder permitting defilement).
5. The offence of breaking and entering a place and committing an indictable offence therein, as provided for by paragraph 348(1)(b) of the Criminal Code, where the indictable offence is an offence set out in sections 1 to 4 of this Schedule and its commission
(a) is specified in the warrant of committal;
(b) is specified in the Summons, Information or Indictment on which the conviction has been registered;
(c) is found in the reasons for judgment of the trial judge; or
(d) is found in a statement of facts admitted into evidence pursuant to section 655 of the Criminal Code.
5.1 If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the offence of pointing a firearm, as provided for by subsection 86(1) of the Criminal Code, as it read immediately before December 1, 1998.
6.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a) section 4 (genocide, etc., committed in Canada);
(b) section 5 (breach of responsibility committed in Canada by military commanders or other superiors);
(c) section 6 (genocide, etc., committed outside Canada); and
(d) section 7 (breach of responsibility committed outside Canada by military commanders or other superiors).

1992, c. 20, Sch. I; 1995, c. 39, s. 165, c. 42, ss. 64 to 67; 2000, c. 24, s. 41; 2001, c. 41, ss. 91 to 93; 2008, c. 6, s. 57; 2011, c. 11, s. 8; 2012, c. 1, ss. 103, 104.

## SCHEDULE II

(Subsections 107(1), 129(1), (2) and (9), 130(3) and (4) and 156(3))

1.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Narcotic Control Act, as it read immediately before the day on which section 64 of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ame into force,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4 (trafficking);

(b) section 5 (importing and exporting);

(c) section 6 (cultivation);

(d) section 19.1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ertain offences); and

(e) section 19.2 (laundering proceeds of certain offences).

2.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Food and Drugs Act, as it read immediately before the day on which section 64 of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ame into force,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39 (trafficking in controlled drugs);

(b) section 44.2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trafficking in controlled drugs);

(c) section 44.3 (laundering proceeds of trafficking in controlled drugs);

(d) section 48 (trafficking in restricted drugs);

(e) section 50.2 (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trafficking in restricted drugs); and

(f) section 50.3 (laundering proceeds of trafficking in restricted drugs).

3. An offenc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that was prosecuted by way of indictment:

(a) section 5 (trafficking);

(b) section 6 (importing and exporting);

(c) section 7 (production).

(d) and (e) [Repealed, 2001, c. 32, s. 57]

4. The offence of conspiring, as provided by paragraph 465(1)(c) of the Criminal Code,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items 1 to 3 of this schedule.

1992, c. 20, Sch. II; 1995, c. 42, s. 68; 1996, c. 19, s. 64; 2001, c. 32, s. 57; 2011, c. 11, s. 9.

일본

09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 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 処遇に関する法律 施行令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 제2조) ····· 729
**제2장 형사시설**(제3조 ~ 제13조) ····· 729
**제3장 유치시설**(제14조 ~ 제24조) ····· 731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제25조 ~ 제29조) ····· 733

**제2편 피수용자 등의 관리**

**제1장 처우의 원칙**(제30조 ~ 제32조) ····· 734
**제2장 형사시설 피수용자의 처우** ····· 734
제1절 수용개시(제33조, 제34조) ····· 734
제2절 처우의 형태(제35조 ~ 제37조) ····· 735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제38조 ~ 제39조) ····· 736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제40조 ~ 제43조) ····· 736
제5절 금품의 취급(제44조 ~ 제55조) ····· 737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제56조 ~ 제66조) ····· 741
제7절 종교상의 행위 등(제67조, 제68조) ····· 743
제8절 서적 등의 열람(제69조 ~ 제72조) ····· 743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제73조 ~ 제83조) ····· 744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제84조 ~ 제109조) ····· 748
제11절 외부교통(제110조 ~ 제148조) ····· 753
제12절 상벌(제149조 ~ 제156조) ····· 762
제13절 불복신청(제157조 ~ 제170조) ····· 764
제14절 석방(제171조 ~ 제175조) ····· 768
제15절 사망(제176조, 제177조) ····· 769
제16절 사형집행(제178조, 제179조) ····· 769

**제3장 유치시설에 있어서 피유치자의 처우** ····· 769
제1절 유치의 개시(제180, 제181조) ····· 769
제2절 처우의 형태 등(제182조, 제183조) ····· 770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제184조, 제185조) ····· 770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제186조 ~ 제190조) ····· 771
제5절 금품의 취급(제191조 ~ 제198조) ····· 772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제199조 ~ 제204조) ····· 775
제7절 종교상의 행위(제205조) ····· 776
제8절 서적 등의 열람(제206조 ~ 제209조) ····· 776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제210조 ~ 제215조) ····· 777
제10절 외부교통(제216조 ~ 제228조) ····· 779
제11절 불복신청(제229조 ~ 제237조) ····· 783
제12절 석방(제238조) ····· 786
제13절 사망(제239조) ····· 786
제14절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제240조) ····· 786

**제4장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처우** ····· 786
제1절 유치의 개시(제241조, 제242조) ····· 786
제2절 처우의 형태(제243조) ····· 787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제244조) ····· 787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제245조) ····· 787
제5절 금품의 취급(제246조 ~ 제253조) ····· 788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제254조 ~ 제256조) ····· 790
제7절 종교상의 행위(제257조) ····· 791
제8절 서적 등의 열람(제258조 ~ 제260조) ····· 791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제261조 ~ 제264조) ····· 791
제10절 외부교통(제265조 ~ 제274조) ····· 793
제11절 불복신청(제275조 ~ 제283조) ····· 796
제12절 석방(제284조) ····· 799
제13절 사망(제285조) ····· 799

**제3편 보칙** ····· 799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등의 적용**(제286조) ····· 799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제287조~제289조) ····· 799
**제3장 사법경찰직원**(제290조) ····· 800
**제4장 조약의 효력**(제291조) ····· 801
**제5장 벌칙**(제292조, 제293조) ····· 801

**부칙** ····· 801

**원문** ····· 807

**시행령** ····· 889
**시행령 원문** ····· 901

**시행규칙** ····· 915
**시행규칙 원문** ····· 948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법률 제50호
최종 개정 2007년 6월 15일 법률 제88호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형사수용시설(형사시설, 유치시설 및 해상보안유치시설을 말한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피수용자, 피유치자 및 해상보안피유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정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피수용자 :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피유치자 :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해상보안피유치자 : 해상보안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형자 : 징역수형자, 금고수형자 또는 구류수형자를 말한다.
5. 징역수형자 : 징역형(「국제수형자이송법」, 2002년 법률 제66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공조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금고수형자 : 금고형(「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조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구류수형자 : 구류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미결구금자 : 피체포자, 피구류자, 그 밖의 미결수로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피체포자 :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피구류자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사형확정자 : 사형의 선고를 받고 구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각종 피수용자 : 피수용자로서 수형자, 미결구금자 및 사형확정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형사시설

**(형사시설)**

**제3조** 형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용하여,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된 사람
2.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유치된 사람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된 사람
4. 사형선고를 받아 구치된 사람
5. 전 각 호의 자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람 및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람

**(피수용자의 분리)**

**제4조** ① 피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서로 분리한다.

1. 성별
2.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제외한다), 미결구금자(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제외한다),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각종 피수용자별
3. 징역형수형자, 금고형수형자 및 구류수형자별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에게 제92조 또는 제93조에 규정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피수용자와 접촉하여 식사의 배급, 그 외의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실(피수용자가 주로 휴식 및 취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거실을 말한다. 다음 편 제2장에 있어서 같다) 외에 한하여 동 항 제3호의 구별에 따른 분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지감사)**

**제5조**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관을 지정하여, 각 형사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지감사를 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제6조**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관계 공무소 및 공사의 단체의 직원과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시설시찰위원회)**

**제7조** ① 형사시설에 형사시설시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속된 형사시설을 시찰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장에 대하여 의견을 말한다.

**(조직 등)**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격식견이 높고 또한 형사시설 운영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전 각항에 정하는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제9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 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② 위원회는 형사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형사시설을 시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에 대하여 위원과 피수용자와의 면담에 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시찰 및 피수용자와의 면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27조(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제138조 및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면은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제10조** 법무부장관은 매년 위원회가 형사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진한 의견 및 이를 받아들여 형사시설의 장이 강구한 조치내용을 종합하여 그 개요를 공표한다.

**(판사 및 검사의 순시)**

**제11조** 판사 및 검사는 형사시설을 순시할 수 있다.

**(참관)**

**제12조**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형무관)**

**제13조** ① 형무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형사시설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형무관의 직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형무관에게는 피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훈련을 실시한다.

## 제3장 유치시설

**(유치시설)**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유치시설을 설치한다.

② 유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유치하여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1.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경찰관이 체포한 사람 또는 인수한 체포된 사람으로서 유치된 사람
2. 전 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구류된 사람
3. 전 2호에 규정하는 사람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사람

**제15조**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고 형사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신하여 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된 사람(이와 같은 형의 집행 이외의 체포, 구류,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금된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제외한다)
2. 사형선고를 받아 구치된 사람
3. 「소년법(1948년 법률 제168호)」 제17조의4 제1항 또는 「소년원법(1948년 법률 제169호)」 제172조의2[동 법 제14조 제4항(동 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수용된 사람

4. 「도주범죄인인도법(1953년 법률 제68호)」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1항 또는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69호)」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하여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에 대한 유치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유치업무관리자 등)**

**제16조** ① 유치시설에 관련된 유치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유치업무관리자"라 한다.)는 경시청,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 또는 자위대의 부대본부(제2조에서 "경찰본부"라 한다.)에 설치된 유치시설에는 경시(警視) 이상의 계급인 경찰관 중에서 경시총감,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장 또는 자위대의 부대본부장(이하 "경찰본부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시설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유치시설에 관계되는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하 "유치담당자"라 한다.)에게는 피유치자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깊게하고 피유치자의 처우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훈련은 실시한다.

③ 유치담당관은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피유치자와 관계되는 범죄의 수사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유치자의 분리)**

**제17조** ① 피유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서로 분리한다.

1. 성별
2. 수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인지의 여부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유치자의 처우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항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지감사)**

**제18조** 경찰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안위원회(경찰본부의 소재지를 포괄하는 자위대의 부대 이외의 자위대의 부대에서는 자위대의 부대 공안위원회. 이하 "공안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정한 시행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 중에서 감사관을 지명하여 각 유치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지감사를 하여야 한다.

**(순찰)**

**제19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의 처우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이 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지명하는 직원에게 유치시설을 순찰하도록 한다.

**(유치시설시찰위원회)**

**제20조** ① 경찰본부에 유치시설시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설치된 경찰본부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유치시설(도경찰본부에는 그 소재지를 포괄하는 자위대 부대의 구역 내에 있는 유치시설, 자위대의 부대 본부에는 당해 자위대 부대의 구역 내에 있는 유치시설)을 시찰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하여 의견을 말한다.

**(조직 등)**

**제21조** ① 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격식견이 높고 또한 유치시설의 운영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공안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전 각 항에 정하는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한 진정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제22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유치시설의 운영상황(제190조 제1항 또는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② 위원회는 유치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유치시설을 시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하여 위원과 피유치자와의 면담에 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시찰 및 피유치자와의 면담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2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유치자가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면은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제23조** 경찰본부장은 매년 위원회가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하여 개진한 의견 및 이를 받아 유치업무관리자가 강구한 조치내용을 종합하여 그 개요를 공포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유치시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조 및 제12조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한다.

##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

**(해상보안유치시설)**

**제25조** ① 지방해상보안본부,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지소 또는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해상보안유치시실을 설치한다.

② 해상보안유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유치하여,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설치된 해상보안유치시설에는 어쩔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방해상보안본부 또는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에 설치된 해상보안유치시설에 신속하게 유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할 수 있다.

1. 「해상보안청법(1948년 법률 제28호)」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안관 또는 해상보안관보가 체포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는 체포된 자로서 유치된 사람
2. 전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해상보안유치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사람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등)**

**제26조** ① 해상보안유치시설에 관계되는 유치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라 한다)는 지방해상보안본부에 설치된 해상보안유치시설에는 지방해상보안본부장이 지명하는 해상보안관으로 하고,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에 설치된 해상보안 유치시설에는 당해 사무소의 장으로 하며,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설치된 해상보안유치시설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으로 한다.

② 해상보안유치시설에 관계되는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이하 "해상보안유치담당관"

이라 한다)에게는 해상보안피유치자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한 해상보안피유치자의 처우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고 또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③ 해상보안유치담당관은 해상보안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해상보안피유치자와 관계되는 범죄의 수사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분리)**

**제27조**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성별에 따라 서로 분리한다.

**(실지감사)**

**제28조** 해상보안청장관은 이 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직원 중에서 감사관을 지명하여 각 해상보안유치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지감사를 하여야 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9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시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조 및 제12조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한다.

# 제2편 피수용자 등의 관리

## 제1장 처우의 원칙

**(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30조** 수형자의 처우는 그자의 자질 및 환경에 따라 그 자각에 호소하고, 개선갱생 의욕의 환기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실시한다.

**(미결구금자 처우의 원칙)**

**제31조** 미결구금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도주 및 죄증인멸 방지 및 방어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

**제32조** ①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그 자가 심적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유의한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그 심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조언, 강연,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제2장 형사시설 피수용자의 처우

### 제1절 수용개시

**(수용개시시 고지)**

**제33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형사시설 수용개시 시, 피수용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그 지위를 달리하는 때에도 같다.

1. 물품대여 및 지급, 자변에 관한 사항
2.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관사물, 그 밖에 금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4. 종교상의 행위, 의식행사 및 교회에 관한 사항
5. 서적 등[서적, 잡지, 신문, 그 밖의 문서도화(서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준수사항
7.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
8. 징벌에 관한 사항
9.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 심사청 및 심사의 신청기간, 그 밖에 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위, 신고처 및 신고기간, 그 밖에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고충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실시한다.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제34조** ① 형무관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형사시설에 수용시 그 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나중에 필요가 생긴 때에도 같다.

② 여성피수용자에 대하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형무관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형무관이 그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이 지명하는 여직원을 남성형무관이 지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절 처우의 형태

**(미결구금자의 처우의 형태)**

**제35조** ① 미결구금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처우(운동, 목욕 또는 접견,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처우를 제외한다. 다음 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같다)는 거실 외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② 미결구금자(사형확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의 거실은 처우상 혼거실에 수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죄증인멸의 방지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거실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라도 가능한 한 독거실로 한다.

③ 미결구금자는 죄증인멸 방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실 외에서도 서로 접촉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의 형태)**

**제36조** ①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는 거실 외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② 사형확정자의 거실은 독거실로 한다.

③ 사형확정자는 거실 외에서도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우의 원칙에 비추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접촉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각종 피수용자의 처우의 형태)**

**제37조** ① 각종 피수용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본 장에서 같다)에 대한 처우는 거실 외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② 각종 피수용자의 거실은 처우상 혼거실에 수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독거실로 한다.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제38조**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정하여 이를 피수용자에게 고지한다.

1. 식사, 취침, 그 밖에 일상생활 동작을 해야 하는 시간
2. 수형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본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제8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정처우 등의 시간 및 여가에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

**(여가활동의 원조 등)**

**제39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여가시간 등(수형자에게는 여가에 충당되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 밖에 피수용자에 있어서는 식사, 취침, 그 외의 일상생활 동작을 해야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자기계약작업(그자가 형사시설 외부의 자와 청부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물품의 제작, 그 밖의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허가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수용자에 대하여 자기계약작업, 지적 ·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 운동경기, 그 밖의 여가시간 등의 활동에 관하여 원조를 한다.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물품대여 등)**

**제40조** ① 피수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물품(서적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형사시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제42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대여 또는 지급한다.

1. 의류 및 침구
2. 식사 및 차류
3. 일용품, 필기구, 그 밖의 물품

② 피수용자에게는 전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실내장식품, 그 밖의 형사시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제42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대여 또는 기호품(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자변물품사용 등)**

**제41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각 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관하여 자변물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하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의류
2. 식료품 및 음료
3. 실내장식품
4. 기호품
5. 일용품, 문방구, 그 밖에 형사시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②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전 항 각 호의 물품 및 침구에 대하여 자변물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하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12절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보정기구 등의 자변 등)**

**제42조** ① 피수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변물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 안경, 그 밖의 보정기구
2. 자기계약작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3. 서신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 그 밖의 물품
4.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 시에 사용하는 의류, 그 밖의 물품
5.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전 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하여 피수용자가 자변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이를 대여 또는 지급한다.

**(물품대여 등의 기준)**

**제43조** 제40조 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또는 지급하는 물품은, 피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고, 국민생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피수용자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제5절 금품의 취급

**(금품검사)**

**제44조** 형사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수용자가 수용될 때에 소지하는 현금 및 물품
2. 피수용자가 수용 중 취득한 현금 및 물품(서신을 제외한다. 각 호에 있어서 같다)으로서 동 호의 현금 및 물품 이외의 것(형사시설의 장으로부터 지급된 물품을 제외한다)
3. 피수용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당해 피수용자 이외의 자가 형사시설에 지참 또는 송부한 현금 및 물품

**(수용시 소지물품 등의 처분)**

**제45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전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친족(혼인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1. 보관에 불편한 것인 때

2. 부패하거나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피수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 한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영치한다. 다만, 매각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차입물의 인수 등)**

**제4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제44조 제3항의 현금 또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 또는 물품을 지참하거나 또는 송부한 자(이하 "차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인수를 요구한다.

1. 피수용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교부의 상대방이 수형자이고 또한 차입인이 친족 이외의 자 인 경우에 그 수형자에게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교부의 상대방이 미결구금자인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가 교부를 받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때
4. 차입인의 성명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5. 자변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석방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자변 물품 등"이라 한다) 이외의 물품인 때
6. 전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때

② 제44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차입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그 취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 규정하는 현금 또는 물품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까지 차입인이 그 현금 또는 물품의 인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금 또는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기간내라도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⑤ 제44조 제3항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서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동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차입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요구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인수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 또는 차입인이 그 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⑥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44조 제3항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피수용자가 교부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차입인에 대하여 그 인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의 인수 및 영치)**

**제47조** ①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할 수 있는 것은 피수용자에게 인도한다.

1. 제4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으로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제44조 제3호의 물품으로 전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피수용자가 교부받기를 거부한 물품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품은 형사시설의 장이 영치한다.

1. 전 항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
2. 제44호 각 호의 현금으로 전 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보관사물 등)**

**제48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물[피수용자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받아 보관하는 물품(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받아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피수용자가 받은 서신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의 보관사물(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량(이하 이 절에서 "보관총량"이라 한다.)이 보관한도량(피수용자의 지위별로 피수용자 1인당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서 형사시설의 장이 정하는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초과할 때 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영치하고 있는 물품(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량(이하 이 절에서 "영치총량"이라 한다)이 영치한도량(피수용자의 지위별로 피수용자 1인당 영치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서 형사시설의 장이 정하는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피수용자의 초과물품량에 대하여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패하거나 또는 멸실할 우려가 생긴 물품에 대해서도 같다.

③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보관사물에 대하여 영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영치총량이 영치한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영치하고 있는 물품에 관하여 피수용자가 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인도한다. 다만, 보관총량이 보관한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치금의 사용)**

**제49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자변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형사시설에서의 일상생활상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현금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현금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자변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에 의하여 보관총량이 보관한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영치총량이 영치한도량을 초과하게 되는 때
2. 피수용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자변물품의 교부를 받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때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제50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제133조(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문서도화(文書圖畵)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자(당해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의 교부(서신의 발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1. 교부(상대방이 친족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피수용자가 수형자인 경우 교부에 의하여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피수용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가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는 때

**(차입 등에 대한 제한)**

**제51조** 형사시설의 장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인에 의한 피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및 피수용자에 의한 자변물품 등의 구입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영치물의 인도)**

**제52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의 석방 시, 영치금품을 그자에게 인도한다.

**(석방자의 유류물)**

**제53조** ① 석방된 피수용자의 유류물(형사사설에 유류된 금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석방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는 날까지 그자로부터 인도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거나 또는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의 제공이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전 항의 기간 내라도 형사시설의 장은 부패하거나 또는 멸실의 우려가 생긴 유류물은 폐기할 수 있다.

**(도주자 등의 유류물)**

**제54조** ①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낭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자로부터 인도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거나 또는 인도에 필요한 비용의 제공이 없는 때에는 그 유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1. 도주한 때 : 도주한 날
2.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경우 동 조 제3항에 규정하는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후 즉시 동 항에 정하는 장소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 :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날
3.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의 경우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 일시까지 형사시설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 지정된 날

②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유류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사망자의 유류물)**

**제55조** ① 사망한 피수용자의 유류물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 등(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유족, 그 밖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인도한다.

② 사망한 피수용자의 유류물이 있는 경우에 유족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그 뜻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유류물은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거나 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까지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류물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제56조** 형사시설에서는 피수용자의 심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피수용자의 건강 및 형사시설 내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일반의 보건위생 및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건위생 및 의료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운동)**

**제57조** 피수용자에게는 일요일이나 그 밖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실외에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운동을 실시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출두,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근무시간 내에 그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수용자의 청결의무)**

**제58조** 피수용자는 신체, 착의 및 소지품 및 거실, 그 밖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목욕)**

**제59조** 피수용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시설의 보건위생상 적절한 목욕을 실시한다.

**(이발 및 면도)**

**제60조** ① 수형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발 및 면도를 실시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자변에 의하여 이발을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그것이 처우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이발 또는 면도를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건강진단)**

**제61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형사시설 수용개시 후 즉시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형사시설의 보건위생상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 피수용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된 채혈, X선촬영, 그 밖의 의학적 처치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 등)**

**제62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 등(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진료(영양보급의 처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자의 생명이 위험에 이르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 질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때 또는 이러한 의심이 있는 때
2. 음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에 이를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병상의 종류 또는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직원이 아닌 의사 등에 의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필요에 따라 피수용자를 형사시설 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 통원시키고 어쩔 수 없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형사시설 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시킬 수 있다.

**(지명의에 의한 진료)**

**제63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피수용자가 형사시설의 직원이 아닌 의사 등을 지명하여 그 진료를 받는 것을 신청한 경우 부상과 질병의 종류 및 정도, 형사시설에 수용되기 전에 그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실,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그 피수용자의 의료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시설 내에서 자변에 의해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한 경우 동 항의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지명의"라 한다.)의 진료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그 후에 피수용자에 대하여 형사시설에서 진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형사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에 입회하거나 또는 진료에 관하여 지명의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진료기록의 복사, 그 밖에 진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명의는 진료시 형사시설의 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한 경우, 지명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그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고, 이후 그 지명의의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상의 조치)**

**제64조**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내의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 그 밖에 필요한 의료상의 조치 외에 예방접종, 당해 질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격리,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양호를 위한 조치 등)**

**제65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노인, 임산부, 신체허약자, 그 밖에 양호를 필요로 하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사정에 따라 부상과 질병자를 위한 조치에 준한 조치를 취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출산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시설 외의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에 입원시킨다.

**(자녀의 양육)**

**제6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여성피수용자가 자녀를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녀가 1세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되어 1세에 달한 자녀에 대하여 계속하여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을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피수용자의 상황에 비추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속하여 6개월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거나 또는 지급한다.

④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피수용자가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자변물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섭취하거나 또는 그 자녀에게 사용시키거나 또는 섭취시키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⑤ 피수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피수용자의 예에 의하여 건강진단, 진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등

### (1인이 실시하는 종교상의 행위)

**제67조** 피수용자가 1인으로 실시하는 예배, 그 밖에 종교상의 행위는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교상의 의식행사 및 교회)

**제68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종교인(민간의 독지가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종교상의 의식행사에 참가하거나 또는 종교인이 실시하는 종교상의 교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에게 전 항에 규정하는 의식행사에 참석시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항에 규정하는 교회를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 (자변서적 등의 열람)

**제69조** 피수용자의 자변서적 등의 열람은 이 절 및 제12절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자변서적 등을 열람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피수용자가 수형자인 경우 그에 대한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피수용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을 금지해야 할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변서적 등의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수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람을 금지한다.

### (신문에 관한 제한)

**제71조**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수용자가 취득할 수 있는 신문의 범위 및 취득방법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시사보도에 접하는 기회의 부여 등)

**제72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의 비치, 보도프로그램,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주요한 시사보도에 접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조치로서 형사시설에 서적 등을 비치한다. 이 경우 비치

된 서적 등의 열람방법은 형사시설의 장이 정한다.

## 제9절 규율 및 질서 유지

###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

**제73조** ①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확보하고 또한 그 처우를 위한 적절한 환경 및 그 안전하고 평온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준수사항 등)

**제7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하 이 장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준수사항은 피수용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1.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2. 다른 사람에게 모욕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3. 자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4.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5. 자신 또는 다른 피유치자의 유치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6. 유치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7. 유치시설 내의 위생 또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8. 금품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 소지, 수수, 그 밖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9. 정당한 이유없이 제92조 또는 제93조에 규정하는 작업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규정하는 지도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사항
10. 전 각 호의 것 외에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전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된 준수사항 또는 제96조 제4항(제106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특별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꾀하거나 선동 또는 원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③ 전 2항 외에 형사시설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직원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신체검사 등)

**제75조** ① 형무관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거실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소지품을 몰수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피수용자의 신체 및 의복의 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형무관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시설 내에서 피수용자 이외의 자[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다]의 의복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또한 그자의 휴대품을 몰수하여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④ 전 항의 검사는 문서도화의 내용 검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수형자의 격리)

**제7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자를 다른 피수용자로부터 격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의 처우는 운동, 목욕 또는 접견,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1. 다른 피수용자와 접촉하는 것이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피수용자로부터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시설의 장은 매1개월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기간 중이라도 격리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격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를 격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3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수형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지 등의 조치)**

**제77조** ① 형무관은 피수용자가 자해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하거나, 형사시설의 직원의 집무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피수용자를 구속하거나, 그 밖에 그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형무관은 피수용자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자를 구속하거나, 그 밖에 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형사시설에 침입하거나, 그 설비를 손괴하거나, 형사시설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
2. 형무관이 요구를 하였음에도 형사시설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
3. 피수용자의 도주 또는 형사시설 직원의 직무집행의 방해를 현장에서 원조, 충동질 또는 부추기는 때
4. 피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하는 때

③ 전 2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용구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사용)**

**제78조** ① 형무관은 피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승 또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망하는 때
2.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때
3.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하는 때

② 형무관은 피수용자가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달리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 또는 수갑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형무관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구속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형사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속의의 사용기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다만, 형사시설의 장은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 3시간마다 그 시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기간 중이더라도 구속의 사용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⑥ 피수용자에게 구속의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신속하게 그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실에의 수용)**

**제79조** ① 형무관은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에 따라 그 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
   가 형무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 또는 소음을 내는 때
   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다.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그 밖에 물건을 손괴하거나 더럽힐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형무관은 그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피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형사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실에의 수용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매 48시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기간 중이라도 보호실에의 수용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수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⑤ 피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또는 그 수용의 기간을 갱신한 경우, 형사시설의 장은 신속하게 그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호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무기휴대 및 사용)**

**제80조** ① 형무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형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형무관은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려고 하는 때
2.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하는 때
3. 형무관이 휴대하거나 또는 형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를 탈취하거나 또는 탈취하려고 하는 때
4. 휴대한 무기를 형무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5. 형무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형무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집단에 의한 위력을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또는 도주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피수용자의 도주를 도울 때

③ 형무관은 피수용자 이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그 현장에서 이에 참가하거나 또는 이를 원조하는 때
2. 피수용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하는 때
3. 형무관이 휴대하거나 또는 형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를 탈취하거나 또는 탈취하려고 하는 때
4. 총기, 폭발물, 그 밖의 흉기를 휴대 또는 사용하여 형사시설에 침입하거나, 설비를 손괴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
5.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수용자를 탈취하거나 또는 도주시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

④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사용 시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1. 형무관에게 달리 피수용자의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단이 없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형무관에게 달리 피수용자 이외의 자의 전 항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단이 없다고 믿기에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다만, 동 항 제2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그자가 형무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하는 때에 한한다.

**(수용을 위한 체포)**

**제81조** 형무관은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착수한 때에 한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다.

1. 도주한 때 : 도주한 시각
2.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의 경우,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 일시까지 형사시설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 그 일시

**(재해시 응급용무)**

**제82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 시 형사시설 내에 있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수용자를 형사시설 또는 이에 접근하는 구역의 화재, 인명의 구조, 그 밖의 응급용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② 제100조에서 제102조까지의 규정은 피수용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용무에 종사하여 사망 ·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준용한다.

**(재해시 피난 및 석방)**

**제83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한 때, 형사시설 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피수용자를 적당한 장소에 호송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 피수용자를 호송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그 자를 형사시설로부터 석방할 수 있다.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한 때, 형사시설 외에 있는 피수용자를 피난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호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후 신속하게 형사시설 또는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여야 한다.

##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

### 제1관 통칙

**(교정처우)**

**제84조** ① 수형자에게는 교정처우로서 제92조 또는 제93조에 규정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 또한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하는 지도를 실시한다.

② 교정처우는 처우요령(교정처우의 목표 및 그 기본적인 내용 및 방법을 수형자별로 정하는 교정처우의 실시요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③ 처우요령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수형자의 자질 및 환경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한다.

④ 처우요령은 필요에 따라 수형자의 희망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도 같다.

⑤ 교정처우는 필요에 따라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형집행개시시 및 석방전 지도 등)**

**제85조** ① 수형자에게는 교정처우를 실시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간,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지도를 실시한다.

1. 형의 집행개시 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수형의 의의, 그 밖에 교정처우 실시의 기초가 되는 사항 및 형사시설에서의 생활 및 행동에 관한 지도
2. 석방 전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석방 후의 사회생활에 즉시 필요로 하는 지식의 부여, 그 밖에 수형자의 귀주 및 석방 후의 생활에 관한 지도

② 전 항 제2호의 기간 동안 피수용자의 처우는 가능한 한 이에 알맞은 설비와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을 허가하고, 그 밖에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지도를 실시하는 날 및 시간을 정한다.

**(집단처우)**

**제86조** ① 교정처우 및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이하 "교정처우 등"이라 한다)는 그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형자를 집단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전 항의 경우,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실 외에 한하여 동 항 제1호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시설 외 처우)**

**제87조** 교정처우 등은 그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형사시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한의 완화)**

**제88조** ① 수형자의 자발성 및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형자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한 제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순차 완화한다.

② 전 항의 경우, 제30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특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의 처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시설(수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설비를 두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형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우대조치)**

**제89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별 수형태도의 평가에 따른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1.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대여하거나 또는 지급하는 것
2.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하는 것
3. 제111조의 접견를 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회수를 정하는 것
4.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처우

**(사회와의 연계)**

**제9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처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친족, 민간의 독지가, 관계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 대하여 협력을 구한다.

② 전 항의 협력을 한 자는 그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알게 된 수형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91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자질 및 환경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관 작업

**(징역수형자의 작업)**

**제92조** 징역수형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징역수형자별로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다.

**(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제93조** 형사시설의 장은 금고수형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구류수형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가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작업을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작업실시)**

**제94조** ① 작업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형자에게 직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시키거나 또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작업으로서 실시한다.

**(작업조건 등)**

**제95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일의 작업시간 및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정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작업을 하는 수형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형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강구하는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의 장이 강구해야 할 조치 및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노동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및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부통근작업)**

**제9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법」 제28조(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에서 대체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년법」 제58조 또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징역수형자 또는 금고수형자가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거나 그 밖에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형사시설 직원의 동행없이 그 수형자를 형사시설 외의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외부사업소"라 한다)에 통근시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이하 "외부통근작업"이라 한다)은 외부사업자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외부사업소가 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③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외부사업소의 사업주(이하 이 절에서 "외부사업주"라 한다)와의 사이에, 수형자가 실시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수형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외부통근작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수형자가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특별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그 수형자에게 고지한다.

⑤ 특별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1. 지정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동하여야 하는 사항
2. 지정된 시각까지 형사시설에 도착하여야 하는 사항
3. 정당한 이유없이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4. 외부사업주의 작업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5.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밖에 접촉함으로써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⑥ 형사시설의 장은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가 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외부통근작업을 부적당으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작업수입)**

**제97조** 작업에 의한 수입은 국고로 한다.

**(작업보장금)**

**제98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작업을 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시(그자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였을 때에는 그 때)에 그 때의 보장금계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작업보장금을 지급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그 달의 전달에 수형자가 실시한 작업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업성적, 그 밖의 작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장금계산액에 가산한다. 다만, 석방일이 속하는 달의 작업에 관련된 가산은 석방 시 실시한다.

③ 전 항의 기준은 작업의 종류 및 내용, 작업에 요하는 지식 및 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석방전에 작업보장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뜻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사용목적이 자변물품 등의 구입, 친족생계의 원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의 충당 등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시의 보장금계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금계산액으로부터 감액한다.

⑤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까지 형사시설에 수용되게 된 때에는 그 자의 보장금계산액을 0으로 한다.

1. 도주한 때 : 도주한 날
2.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경우, 동 조 제3항에 규정하는 피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후 신속하게 동 항에 규정하는 장소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 :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날
3. 외부통근작업 또는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의 경우,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 일시까지 형사시설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 그 날

**(유족 등에의 급부)**

**제99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그때에 석방한다면 그 수형자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보장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수당)**

**제10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작업상 사망한 경우(작업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 된 경우, 그 피수용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사망수당을 지급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작업 중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가 치료된 경우(작업상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 된 경우 그 피수용자가 치료된 때를 포함한다),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게 장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그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액은「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49호)」에 기초하여 재해보상액에 관한 기준을 참작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작업상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작업상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수형자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된 경우 그 피수용작 석방되는 때 아직 치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병상의 성질, 정도,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의 조정)**

**제101조** ① 국가가「국가배상법(1947년 법률 제125호)」,「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경우, 전 조의 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의 책임을 면한다.

②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전 조의 수당지급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일한 사유로「국가배상법」,「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동 조의 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

**(수당의 지급을 받을 권리보호 등)**

**제102조** ① 제100조의 수당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차압할 수 없다.

② 제100조의 수당으로서 지급을 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 그 밖의 공과를 과해서는 아니된다.

## 제3관 각종 지도

**(개선지도)**

**제103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배양하도록 하며 또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생활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전 항의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1. 마약, 각성제, 그 밖에 약물의존이 있는 사실
2.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인 사실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정

**(교과지도)**

**제10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학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과지도[「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학교교육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의 지도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를 실시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학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원활한 사회복귀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그 학력상황에 따른 교과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지도일 및 시간)**

**제105조**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날 및 시간을 정한다.

## 제4관 외출 및 외박

**(외출 및 외박)**

**제10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법」 제28조(「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에서 대체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년법」 제58조 또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징역형 수형자 또는 금고수형자가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 사실,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형사시설 외에서 그 자가 석방 후의 주거 또는 취업의 확보, 그 밖에 일신상의 중요한 용무를 행하거나, 갱생보호에 관계가 있는 자를 방문하거나, 그 밖에 그 석방 후 사회생활에 유용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시설 직원의 동행없이 외출 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박에 관해서는 그 수형자의 형기가 6월 이상 집행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96조 제4항,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6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및 외박에 관하여 준용

한다.

**(형기불산입)**

**제107조**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박을 한 자가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 일시까지 형사시설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박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도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8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수형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형사시설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부담으로 한다.

### 제5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제109조** ①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에 대한 제84조 제1항 및 제89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84조 제1항 중 "교정처우로서"인 것은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구금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정처우를 하고"로, 제89조 제3호 중 "제111조"인 것은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로 한다.

②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에 관해서는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6조 및 전 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절 외부교통

### 제1관 수형자에 관한 유의사항

**제110조** 이 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 대하여 외부교통(접견, 서신의 수발 및 제1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거나 또는 이를 금지, 정지 또는 제한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외부교통이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2관 접견

#### 제1목 수형자

**(접견의 상대방)**

**제111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1. 수형자의 친족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수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이해에 관련된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접견이 필요한 자
3. 수형자의 갱생보호에 관계있는 자, 수형자의 석방 후에 고용하려고 하는 자, 그 밖에 접견에 의하여 수형자의 개선갱생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전 항 각 호의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그자와의 교

우관계의 유지, 그 밖에 접견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접견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접견의 입회 등)**

**제112조**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명하는 직원에게 수형자의 접견에 입회시키거나 또는 접견의 상황을 녹음시키거나 또는 녹화시킬 수 있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자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직원
2. 자기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관한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5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제113조** ① 형사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는 접견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접견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수형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에 대하여 접견장소에서의 퇴출을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형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
   가.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
   나.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
2. 수형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 가부터 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가. 암호의 사용,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이 이해할 수 없는 때
   나.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거나, 충동질 또는 부추기는 때
   다.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라.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마. 특정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된 접견에서, 그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는 때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접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접견를 계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접견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접견에 관한 제한)**

**제11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견상대방의 인원수, 접견장소, 일시, 접견시간 및 횟수, 그 밖에 접견의 양태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회수를 제한하는 때에는 회수는 1월에 2회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목 미결구금자

**(접견의 상대방)**

**제115조** 형사시설의 장은 미결구금자(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견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의 입회 등)**

**제11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지명하는 직원을 미결구금자의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에 입회시키거나 또는 접견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하도록 한다. 다만,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및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회, 녹음 및 녹화(다음 항에서 "입회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의 제112조의 각 호의 자와의 접견에 관해서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회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제117조** 제113조(제1항 제2호 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미결구금자와 접견에 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 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는 "각 호의 어느 하나(변호인 등과의 접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나에 한한다)"로, 동 항 제2호 라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은 "죄증인멸의 결과"로 대체한다.

**(접견에 대한 제한)**

**제118조** ① 미결구금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의 일시는 일요일과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 이외의 날 중 형사시설의 집무시간 내로 한다.

② 전 항의 접견 상대방의 인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변호인 등으로부터 전 2항의 규정함에 의하지 아니하는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제1항의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견장소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제114조의 규정은 미결구금자와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에 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 중 "1월에 2회"인 것은 "1일에 1회"로 대체한다.

제3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제119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6조 및 전 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의 접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11조 제1항 중 "경우"는 "경우 및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동 조 제2항 중 "때에는"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제113조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변호인 등과의 접견의 경우에는 제1호 나에 한한다)"로, 동 항 제2호 라 중 "초래할"은 "초래하거나 또는 죄증

인멸의 결과를 초래할"로, 제114조 제1항 중 "접견에"는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로 대체한다.

### 제4목 사형확정자

**(접견의 상대방)**

**제12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1. 사형확정자의 친족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사형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접견하는 것이 필요한 자
3. 접견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심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전 항 각 호의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자와의 교우관계의 유지, 그 밖에 접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접견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접견의 입회 등)**

**제121조** 형사시설의 장은 그 지명하는 직원을 사형확정자의 접견에 입회시키거나 또는 접견의 상황을 녹음하게 하거나 또는 녹화하게 한다. 다만, 사형확정자의 소송준비,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입회 또는 녹음 또는 녹화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등)**

**제122조** 제113조(제1항 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114조의 규정은 사형확정자의 접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 중 "1월에 2회"는 "1월에 1회"로 대체한다.

### 제5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제123조** 제113조, 제118조,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장자의 접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13조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변호인 등과의 접견의 경우에는 제1호 나에 한한다.)"로, 동 항 제2호 라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은 "죄증인멸의 결과"로, 제120조 제1항 중 "경우"는 "경우 및「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동 조 제2항 중 "때에는"는, "때에는「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제121조 중 "접견에"는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로 대체한다.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접견의 상대방)**

**제124조** 형사시설의 장은 각종 피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제148조 제3항 및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각종 피수용자의 접견 입회 등)**

**제125조** 제112조, 제113조(제1항 제2호 라 및 바를 제외한다) 및 제114조의 규정은 각종 피수용자의 접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2조 제1항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 그 밖의"는 "그 밖의"로, 제114조 제2항 중 "1월에 2회"는 "1월에 1회"로 대체한다.

## 제3관 서신의 수발

### 제1목 수형자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126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와의 서신을 허가한다.

**(서신검사)**

**제127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하는 직원에게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서신에 대한 전 항의 검사는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3호의 서신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형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받는 서신
2. 수형자가 자기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발송하는 서신
3. 수형자가 자기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와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

**(서신수발의 금지)**

**제128조** 형사시설의 장은 범죄성이 있는 자, 그 밖에 수형자가 서신을 수발함으로써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거나 또는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수형자의 친족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수형자가 그자와의 사이에 서신을 수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수형자의 신분상 ·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서신을 수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신의 내용에 의한 정지 등)**

**제129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발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해당 개소를 삭제하거나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동 조 제2항 각 호의 서신에 대해서,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같다.

1. 암호사용,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인 때

2. 수발에 의하여 형벌법령에 저촉하게 되거나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수발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위협과 협박에 이르는 내용 또는 명백하게 허위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신자를 현저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수신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
5. 수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내용이 있는 때
6. 수발에 의하여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으로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수형자가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수발하는 서신으로 그 수형자에 관계되는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그 수발의 정지 또는 그 사항에 관계되는 부분의 삭제 또는 말소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신에 관한 제한)**

**제13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가 발하는 서신의 작성요령, 그 발신의 신청일시 및 시간,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하는 서신통수 및 수형자의 서신수발방법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하는 서신통수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통수는 1월에 4통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발신에 필요로 하는 비용)**

**제131조** 서신의 발신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수형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이 발신의 목적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수발을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

**제132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제128조, 제129조 또는 제1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수발을 금지하거나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그 서신을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일부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삭제한 부분을 보관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내용의 일부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말소한 부분의 복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석방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서신의 전부나 일부 또는 복제부분(이하 이 장에서 "수발금지 등"이라 한다)을 그 자에게 인도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그 신청에 따라 수발금지서신 등을 인도한다.

⑤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인도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같다.

1. 석방된 수형자가 석방 후에 수발금지서신의 인도를 요구한 때
2. 수형자가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를 요구한 때

⑥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형자와 관련되는 수발금지서신 등(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하지 않게 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은 "제132조 제4항의 신청"으로 대체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하지 아니하는 수발금지서신 등은 수형자의 석방 또는 사망일 또는 수형자가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에 국고에 귀속된한다.

**(수형자 작성의 문서도화)**

**제133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자신이 작성한 문서도화(서신을 제외한다)를 다른 자에게 교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형자가 발하는 서신에 준하여 검사,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목 미결구금자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134조** 형사시설의 장은 미결구금자(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와의 사이에 서신을 수발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의 수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신검사)**

**제135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그 지명하는 직원에게 미결구금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신에 대한 전 항의 검사는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3호의 서신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결구금자가 변호인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2. 미결구금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서신
3. 미결구금자가 자기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신

③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및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제136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은 미결구금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9조 제1항 중 "제127조"는 "제135조"로, 동 항 제6호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은 "죄증인멸의 결과"로, 동 조 제2항 중 "제3호까지"는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로, 제130조 제1항 중 "선청하는 서신"은 "신청하는 서신(변호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동 조 제2항 중 "1월에 4통"은 "1일에 1통"으로, 제132조 제1항 중 "제128조, 제129조"는 "제129조"로, 동 조 제5항 제2호 및 제7항 중 "제54조 제1항 각 호"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대체한다.

### 제3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137조** 형사시설의 장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와의 서신수발을 허가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의 수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신수발의 금지 등)**

**제138조**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135조의 규정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9조 제1항 중 "제127조"는 "제138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로, 동 항 제6호 중 "초래하는"은 "초래하거나 또는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하는"으로 동 조 제2항 중 "경우"는 "경우 또는 서신의 수발에 의하여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인 경우"로, 제130조 제1항 중 "신청하는 서신"은 "신청하는 서신(변호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132조 제5항 제2호 및 제7항 중 "제54조 제1항 각 호"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대체한다.

### 제4목 사형확정자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139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신수발을 허가한다.

1. 사형확정자의 친족과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사형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발하는 서신
3. 수발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심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

② 형사시설의 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전 항 각 호의 서신 이외의 서신수발에 대하여 그 수발 상대방과의 교우관계 유지, 그 밖에 그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그 수발에 의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서신검사)**

**제14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그 지명하는 직원에게 사형확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한다.

② 제12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서신내용에 따른 중지 등)**

**제141조** 제129조(제1항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은 사형확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9조 제1항 중 "제127조"는 "제104조"로, 제130조 제2항 중 "1월에 4통"은 "1일에 1통"으로, 제132조 제1항 중 "제128조, 제129조"는 "제129조"로, 동 조 제5항 제2호 및 제7항 중 "제54조 제1항 각 호"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대체한다.

### 제5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제142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의 규정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9조 제1항 중 "제127조"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동 항 제6호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은 "죄증인멸의 결과"로, 동 조 제2항 중 "제3호까지"는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로, 제130조 제1항 중 "신청하는 서신"은 "신청하는 서신(변호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동 조 제2항 중 "1월에 4통"은 "1일에 1통"으로, 제132조 제1항 중 "제128조, 제129조"는 "제129조"로, 동 조 제5항 제2호 및 제7항 중 "제54조 제1항 각 호"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제139조 제1항 중 "이 목"은 "다음 목"으로 "경우"는 "경우 및「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동 조 제2항 중 "때에는"은 "때에는「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대체한다.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143조** 형사시설의 장은 각종 피수용자에 대하여 이 목, 제148조 제3항 또는 다음 절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와의 사이에 서신수발을 허가한다.

**(서신검사 등)**

**제144조** 제127조, 제129조(제1항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은 각종 피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7조 제1항 중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 그 밖의"는 "그 밖의"로, 제130조 제2항 중 "1월에 4통"은 "1일에 1통"으로, 제132조 제1항 중 "제128조, 제129조"는 "제129조"로, 동 조 제5항 제2호 및 제7항 중 "제54조 제1항 각 호"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동 조 제6항 중 "제54조 제1항"인 것은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대체한다.

### 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접견와 서신수발

**제145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가 변호인 등과 접견하거나 또는 변호인 등과 서신을 수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관 제2목 또는 앞의 관 제2목 중의 미결구금자의 변호인 등과의 접견와 서신수발에 관한 규정(제136조에서 준용하는 제129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다)의 예에 의한다.

### 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

**(전화 등에 의한 통신)**

**제14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을 것,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의 개선갱생 또는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화,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기통신 방법에 의한 통신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31조의 규정은 전 항의 통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통신의 확인 등)**

**제147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수형자의 교정처우의 적절한 실시,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하는 직원에게 앞의 조 제1항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통신을 받게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13조 제1항(제1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은 앞의 조 제1항의 통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6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제148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 또는 그 접견 등(접견 또는 제1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대방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대화 또는 통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수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 또는 그 서신수발의 상대방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서신의 수발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서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수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접견나 서신의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2절 상벌

**(포상)**

**제149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 또는 상품의 수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을 구조한 때
2. 제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응급용무에 복무하고, 공로가 있었던 때
3. 전 2호 이외에 상을 줄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한 때

**(징벌요건 등)**

**제15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준수사항 또는 제96조 제4항(제10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이 행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수용자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다.

②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징벌을 과해야 할 행위(이하 이 절에서 "반칙행위"라 한다)를 한 피수용자의 연령, 심신상태 및 상황, 반칙행위의 성질, 경중, 동기 및 형사시설의 운영에 미친 영향, 반칙행위 후 피수용자의 태도, 수형자에게는 징벌이 그자의 개선갱생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징벌은 반칙행위를 억제하기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징벌의 종류)**

**제151조**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10일 이내의 정지
3.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의 일부 또는 전부의 15일 이내의 정지
4. 서적 등(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보호 또는 소송준비,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3항 제3호 및 다음 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의 열람의 일부 또는 전부의 30일 이내의 정지
5. 보장금계산액의 1/3이내의 삭감
6. 30일 이내(징벌을 과하는 때 2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폐거벌

② 전 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징벌은 2종류 이상을 병과하고, 동 항 제6호의 징벌(이하 이 절에서 "폐거벌"이라 한다)은 동 항 제5호의 징벌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③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게 과하는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의 일부 또는 전부의 15일 이내의 정지
3. 서적 등 열람의 일부 또는 전부의 3일 이내의 정지
4. 폐거벌

④ 전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벌은 병과할 수 있다.

**(폐거벌의 내용)**

**제152조** ① 폐거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정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실 내에 근신시킨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변물품(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종교상의 의식행위에 참가하거나 또는 다른 피수용자와 함께 종교상의 교회를 받는 행위
3. 서적 등을 열람하는 행위
4. 자기계약작업을 하는 행위
5. 접견(변호인 등과 접견하는 경우 및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보호 또는 소송준비,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서신을 수발하는 행위(변호인 등과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 및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보호 또는 소송준비,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폐거벌이 부과된 피수용자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동을 제한한다.

③ 폐거벌이 부과된 수형자에게는 근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교정처우 등을 실시한다.

**(반칙행위에 관계되는 물건의 국고귀속)**

**제153조** 형사시설의 장은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반칙행위를 한 피수용자 이외의 자의 물건에 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반칙행위를 조성한 물건
2. 반칙행위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3. 반칙행위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는 반칙행위로 얻어진 물건 또는 반칙행위의 보상으로 얻은 물건

4. 전 호의 물건의 대가로 얻은 물건

**(반칙행위의 조사)**

**제15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반칙행위를 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칙행위의 유무,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정 및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건의 유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무관에게 피수용자의 신체, 착의, 소지품 및 거실을 검사하게 하고 또한 소지품을 몰수하여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③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피수용자의 신체 및 착의의 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관하여 반칙행위를 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피수용자와 격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형자 처우는 운동, 목욕 또는 접견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기간은 2주간으로 한다. 다만, 형사시설의 장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기간 중이라도 격리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격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징벌을 부과하는 절차)**

**제155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청취할 3인 이상의 직원을 지명한 후 피수용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진술을 할 일시 또는 기한 및 징벌(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의 원인이 된 사실의 요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피수용자를 보좌할 자를 형사시설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전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직원은 징벌부과의 적부 및 부과하는 징벌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견 및 피수용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형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벌집행)**

**제15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때에는 징벌의 내용 및 징벌의 원인으로 인정한 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후 즉시 집행한다. 다만, 반성의 정이 현저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폐거벌을 집행할 때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절 불복신청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심사의 신청)**

**제157조** 형사시설의 장의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면으로 해당 형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에 대하여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를 불허하는 처분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금의 사용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를 불허하는 처분
3.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불허한 처분 또는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중지
4. 제67조에 규정한 종교상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5. 제70조 제1항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적 등의 열람금지 또는 제한
6.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7.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
8.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보장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
9. 제100조 제2항(제82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장해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
10. 제100조 제4항(제82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
11. 제128조(제138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또는 제129조,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3조(이러한 규정은 제136조(제145조에 그 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 같다),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신의 수발 또는 문서도화의 교부금지, 정지 또는 제한
12. 제132조 제5항 전단(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된 서신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처분[제132조 제3항(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교부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13. 제1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14.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
15.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
16. 제1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간단히 "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이를 신청하는 자가 스스로 하여야 한다.

**(심사의 신청기간)**

**제158조** ① 심사의 신청은 조치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천재 그 밖에 전 항의 기간 내에 심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한하여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심사의 신청기간계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제159조** 「행정불복심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은 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을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조사)**

**제160조** ① 지방교정청장은 직권으로 심사의 신청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전 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사시설의 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가 지명한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의 신청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유치 또는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재결)**

**제161조** ① 지방교정청장은 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불복심사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심사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한 그 취지를 관보나 그 밖의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의 신청)**

**제162조** ① 심사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간단히 "재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심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및 전 조 제1항 및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재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한 그 취지를 관보 그 밖의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관 사실의 신고

**(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163조** ① 피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시설 직원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었던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당해 형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2. 위법 또는 부당한 포승, 수갑 또는 구속의의 사용
3. 위법 또는 부당한 보호실에의 수용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및 제160조와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을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통지)**

**제164조** ① 지방교정청장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적법한 때에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자가 석방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경우나 그 밖에 부적법한 경우에

는 그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전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61조 제1항 및 「행정불복심사법」 제41조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교정청장은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165조** ① 피수용자는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1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과 전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관 고충의 신청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166조** ① 피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았던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고충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충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처리의 결과를 고충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가 석방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167조** ① 피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기가 받은 처우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관(이하 이 절에서는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고충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감사관은 구두에 의한 고충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형사시설의 직원을 입회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감사관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168조** ① 피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시설의 장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피수용자가 구두로 제1항의 고충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은 그가 지명한 직원에게 그 내용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66조 제3항의 규정은 형사시설의 장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 제4관 기타

**(비밀신청)**

**제169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심사의 신청 등(심사의 신청, 재심사의 신청 또는 제163조 제1항 또는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형사시설의 직원에게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27조(제144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제138조 및 제142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신청 등 또는 고충의 신청을 한 서면은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이익취급의 금지)**

**제170조** 형사시설의 직원은 피수용자가 심사의 신청 등 또는 고충의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그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절 석방

**(수형자 석방)**

**제171조** 수형자 석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한다.

1. 석방해야 할 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그 날의 오전 중
2. 부정기형의 종료에 의한 경우 : 「범죄자예방갱생법(1949년 법률 제142호)」 제48조 제3항의 통지가 형사시설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오전 중
3. 법무부령으로 행하여진 사면에 의한 경우로 당해 사면에 관계되는 법무부령의 규정으로 공포한 날이 석방해야하는 날이 된 경우 : 그날 중
4. 전 3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 석방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형사시설에 도달한 때부터 10시간 이내

**(피구류자의 석방)**

**제172조** 피구류자(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석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즉시 이행한다.

1. 피고인의 구류기간이 만료한 때
2.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장이 효력을 상실한 때(피구류자가 공판정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검사의 석방지휘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그 외 피수용자의 석방)**

**제173조** 전 2조의 규정 외에 피수용자의 석방은 다른 법령에 정한 바 이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즉시 이행한다.

**(질병에 의한 체류)**

**제17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석방해야 할 피수용자가 형사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석방에 의하여 그 생명에 위험이 미치거나 또는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자가 형사

시설에 일시 머무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에 머무르는 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종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귀주여비 등의 지급)**

**제175조** 석방되는 피수용자에 대해서는 그의 귀주를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를 지급한다.

### 제15절 사망

**(사망의 통지)**

**제176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유족 등에게 사망의 원인 및 일시와 교부해야 할 유류물, 지급해야 할 작업보장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망수당과 수발금지된 서신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체에 관한 조치)**

**제177조** ① 피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는 때에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48호)」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장 또는 화장은 형사시설의 장이 한다.

② 전 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수용자의 사체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절 사형집행

**(사형집행)**

**제178조** ① 사형은 형사시설내의 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78호)」에 규정한 휴일, 1월 2일, 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해승)**

**제179조** 사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교수(絞首)된 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부터 5분을 경과한 후에 교승(絞繩)을 풀도록 한다.

## 제3장 유치시설에 있어서 피유치자의 처우

### 제1절 유치의 개시

**(유치개시시의 고지)**

**제180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에게 유치시설에의 유치개시시에 피유치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피유치자가 그 지위를 달리함에 이른 때에도 이와 같다.

1. 물품대여 및 지급과 자변에 관한 사항
2. 제19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관사물 그 밖의 금품취급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4. 종교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서적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제2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준수사항
7.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
8.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 심사청 및 심사의 신청기간, 그 밖에 심사신청에 관한 사항
9. 제2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위, 신고처 및 신고기간, 그 밖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10. 고충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제181조** ① 유치담당관은 피유치자에 대하여 유치시설에의 유치개시 시에 그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그 후 필요가 발생한 때에도 같다.

② 여성피유치자에 대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유치담당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담당관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업무관리자가 지명한 여직원을 남성유치담당관이 지휘하여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절 처우의 형태 등

**(처우의 형태)**

**제182조** ① 피유치자의 처우(운동, 목욕 또는 접견의 경우,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처우를 제외한다)는 거실(피유치자가 주로 휴식 및 취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유치업무관리자가 지정하는 거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2조에서 같다) 밖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 거실에서 실시한다.

② 미결구금자(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죄증인멸의 방지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실에 단독유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미결구금자는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실 외에서도 서로 접촉시켜서는 아니된다.

**(유치시설에서의 교정처우)**

**제183조** 유치시설에서는 수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피유치자(이하 이 장에서 "피유치수형자"라 한다)에 대한 교정처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제184조** 유치업무관리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사, 취침, 그 밖에 동작을 해야 할 시간을 정하고 이를 피유치자에게 고지한다.

**(활동의 원조)**

**제185조** 유치업무관리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에게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 그 밖의 활동에 대하여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물품대여 등)**

**제186조** ① 피유치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물품(서적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유치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제188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대여하거나 지급한다.

1. 의류 및 침구
2. 식사 및 따뜻한 차
3. 일용품, 필기구, 그 밖의 물품

② 피유치자에게는 전 항에서 정한 것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유치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품(제188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대여하거나 기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변물품의 사용 등)**

**제187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다음 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변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섭취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및 피유치수형자에 대한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1. 의류
2. 식료품 및 음료
3. 기호품
4. 일용품, 필기도구, 그 밖에 유치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품

**(보정기구 등의 자변 등)**

**제188조** ① 피유치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변물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 안경, 그 밖의 보정기구
2. 서신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봉투 그 밖의 물품
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전 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피유치자가 자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여하거나 지급한다.

**(물품대여 등의 기준)**

**제189조** 제186조 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거나 지급하는 물품은 피유치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국민생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피유치자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반칙행위를 한 경우 자변물품에 관한 조치)**

**제190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제208조 제1항에서 "반칙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87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3일을 넘지 않은 기간에 한해서 자변물품의 섭취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행위

2. 타인에 대한 모욕 또는 난폭한 언동 또는 타인을 귀찮게 하는 행위
3.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유치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유치시설내의 위생을 해하는 행위

② 제15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3조, 제1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5조와 제156조 제1항의 규정은 피유치자에 대하여 전 항의 조치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5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은 "유치시설"로, 제153조 중 "형사시설의 규율"은 "유치시설의 규율"로, "국고"는 "그 유치시설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154조 제2항 중 "형무관"은 "유치담당관"으로, 동 조 제3항 중 "제34조 제2항"은 "제181조 제2항"으로, 제155조 제1항 중 "법무부령"은 "내각부령"으로, "형사시설의 직원"은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치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하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절 금품의 취급

### (금품검사)

**제191조**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피유치자가 유치될 때 소지한 현금 및 물품
2. 피유치자가 유치중에 취득한 현금 및 물품(편지를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동 호의 현금 및 물품 이외의 물품(유치업무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을 제외한다)
3. 피유치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당해 피유치자 이외의 자가 지참하거나 송부한 현금 및 물품

### (유치시의 소지물품 등의 처분)

**제192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유치자로 하여금 그 물품을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1. 보관에 불편한 물건인 때
2. 부패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때
3.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때

②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업무관리자가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차입물의 인수 등)

**제193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제191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 또는 물품의 차입인에게 인수를 요구한다.

1. 피유치자에게 차입물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때
2. 차입물을 교부받을 사람이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교부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물건인 때
3. 차입물을 교부받을 사람이 피유치수형자이고 차입인이 친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피유치수형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차입인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인 때

5. 자변물품 등 이외의 물품인 때

6. 전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때

② 제191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전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차입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요구할 수 없는 때에는 유치업무관리자가 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서 규정한 현금 또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구하거나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차입인이 그 현금 또는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현금 또는 물품은 유치시설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유치업무관리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 항의 기간 내라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매각되지 않은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⑤ 유치업무관리자는 제191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동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차입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요구할 수 없거나 인수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때 또는 차입인이 인수를 거부한 때에 피유치자에게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⑥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업무관리자가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관해서 준용한다.

⑦ 제191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피유치자가 교부받은 것을 거부한 경우에 유치업무관리자는 차입인에게 인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의 인도 및 영치)**

**제194조** ①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유치자가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것은 피유치자에게 인도한다.

1. 제19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으로 제19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
2. 제191조 제3호의 물품으로 전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피유치자가 교부받는 것을 거부한 물품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유치업무관리자가 영치한다.

1. 전 항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유치자가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물품 이외의 물품
2. 제191조 각 호의 현금으로 전 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

**(보관사물 등)**

**제195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물[피유치자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서 보관하는 물품(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서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피유치자가 받은 서신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관방법에 관해서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의 보관사물(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의 총량(다음 조에서 "보관총량"이라 한다)이 보관한도량(피유치자로서의 지위별로 피유치자 1인당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 유치업무관

리자가 정한 양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을 초과할 때 또는 피유치자가 영치하고 있는 물품(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의 총량(다음 조에서 "영치총량"이라 한다)이 영치한도량(피유치자로서의 지위별로 피유치자 1인당 영치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 유치업무관리자가 정한 양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피유치자에게 초과량에 상당하는 양의 물품을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패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관해서도 같다.

③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보관사물에 대하여 동 조 제5항의 규정은 피유치자에 관계되는 영치물품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 규정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한다.

**(영치금의 사용)**

**제196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자변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유치시설에서 일상생활 중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현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현금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자변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현금사용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입에 의해 보관총량이 보관한도량을 초과하거나 영치총량이 영치한도량을 초과하게 되는 때
2.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자변물품 등의 교부가 허가되지 않은 때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제197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다른 사람(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제227조에서 준용하는 제133조에 규정한 문서도화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교부(서신발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한다.

1. 교부(상대방이 친족인 자를 제외한다. 제3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때
3. 피유치자가 피유치수형자인 경우에 교부에 의하여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8조** 제51조의 규정은 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차입 등에 관한 제한에 대하여, 제52조의 규정은 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영치금품의 인도에 대하여, 제53조, 제54조(제1항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유류품(유치시설에 유류한 금품을 말한다. 제239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1조 중 "이 절"은 "다음 장 제5절"로, 동 조 및 제55조 제1항 중 "법무부령"은 "내각부령"으로, 제51조 및 제52조 중 "피수용자"는 "피유치자"로, 제51조 중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은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3항 중 "국고"는 "그 유치시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제53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제54조 제1항 제2호 중 "제83조 제2항"은 "제215조 제2항"으로,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6조"는 "제239조"로 대체한다.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제199조** 유치시설에서는 피유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피유치자의 건강 및 유치시설 내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일반의 보건위생 및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건위생상 및 의료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건강진단 등)**

**제200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유치담당관에게 유치시설에의 유치개시 시 피유치자로부터 질병, 외상 등의 유무, 그 밖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정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에 대하여 약 1개월에 2회,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치시설의 보건위생상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 피유치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시한 채혈, X선촬영, 그 밖의 의학적 처치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 등)**

**제201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해 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 등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 질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때
2.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그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피유치자를 병원 또는 진료소에 통원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때에는 피유치자를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시킬 수 있다.

**(지명의에 의한 진료)**

**제202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피유치자가 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 이외의 다른 의사를 지명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상의 종류 및 정도, 유치시설에 유치되기 전에 그 의사 등에 의한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피유치자의 의료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시설 내 또는 유치업무관라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자변으로 진료를 받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허가한 경우 동 항의 진료를 할 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지명의"라 한다)의 진료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그 후의 피유치자에 대한 진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 진료에 입회하거나 또는 그 진료에 관하여 지명의에게 질문하거나 진료기록의 복사, 그 밖에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명의는 진료 시에 유치업무관리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유치업무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허가한 경우에 지명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업무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업무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그 밖에 그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고 이후 그 지명의의 진료를 허가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발 및 면도)**

**제203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이발 또는 면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은 피유치자에 대하여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피유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7조, 제59조 및 제64조 중 "법무부령"은 "내각부령"으로, 제57조 단서 및 제59조 중 "형사시설"은 "유치시설"로, 제64조 중 "형사시설 내"는 "유치시설 내"로, "제61조"는 "제20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62조"는 "제201조"로, 제65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외"이라는 것은 "유치시설의 외"으로 대체한다.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제205조** 피유치자가 1인으로 실시하는 예배, 그 밖의 종교상의 행위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자변서적 등의 열람)**

**제206조** 피유치자가 자변으로 서적 등을 열람하는 것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7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자변서적 등을 열람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피유치자가 피유치수형자인 경우 그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금지해야 할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변서적 등의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유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그 열람을 금지한다.

**(반칙행위를 한 경우의 자변서적 등에 관한 조치)**

**제208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반칙행위를 한 경우에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변서적 등(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보호 또는 소송준비 그 밖에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그 열람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9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피유치자에 대한 전 항의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9조** 제71조의 규정은 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한 제한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은 유치업무관리

자에 의한 시사보도에 접할 기회의 부여 등의 조치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1조 중 "법무부령"은 "내각부령"으로, 동 조 및 제72조 제1항 중 "피수용자"는 "피유치자"로, 제71조 중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은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제72조 제2항 중 "제39조 제2항"은 "제85조"로, "형사시설에"는 "유치시설에"로 대체한다.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제210조** ①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져야 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피유치자의 유치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처우를 위한 적절한 환경 및 안전하고 평온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준수사항 등)

**제211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다음 항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준수사항은 피유치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1.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2. 다른 사람에게 모욕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3. 자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4.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5. 자신 또는 다른 피유치자의 유치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6. 유치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7. 유치시설 내의 위생 또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8. 금품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 소지, 수수, 그 밖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9. 전 각 호의 것 외에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꾀하거나 선동 또는 원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③ 전 2항 외에 유치업무관리자 또는 그가 지명한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유치자에 대하여 생활 및 행동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신체검사 등)

**제212조** ① 유치담당관은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유치자에 대하여 그 신체, 의복, 소지품 및 거실을 검사하거나 소지품을 몰수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81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피유치자의 신체 및 의복의 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유치담당관은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시설 내에서 피유치자 이외의 자(변호인 등을 제외한다)의 의복 또는 휴대품을 검사하거나 그자의 휴대품을 몰수하여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④ 전 항의 검사는 도서 등의 내용검사와는 무관하다.

### (포승, 수갑, 구속의 및 방성구의 사용)

**제213조** ① 유치담당관은 피유치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승 또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는 때
2.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때
3. 유치시설의 설비, 기구, 그 밖에 물건을 손괴하는 때

② 유치담당관은 피유치자가 자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달리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때에는 유치업무관리자의 명령에 의하여 구속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 수갑 또는 방성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보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치시설에서는 유치담당관은 피유치자가 유치담당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발하고 유치시설 내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 달리 이를 억지할 수단이 없는 때에는 유치업무관리자의 명령에 의하여 방성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유치자가 방성구를 벗으려 하거나 손괴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성구의 사용과 동시에 포승 또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전2항의 경우 유치업무관리자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유치담당관은 유치업무관리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구속의 또는 방성구(전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포승 또는 수갑을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유치업무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속의 및 방성구의 사용기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속의의 사용에 대하여 유치업무관리자는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해서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시간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기간 중에도 구속의 또는 방성구의 사용이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⑦ 피유치자에게 구속의 또는 방성구를 사용하거나 구속의의 사용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유치업무관리자는 신속하게 피유치자의 건강상태에 관해서 당해 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포승, 수갑, 구속의 및 방성구의 제식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실에의 수용)**

**제214조** ① 유치담당관은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무관리자의 명령에 의하여 그 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
   가. 유치담당관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고성 또는 소음을 발하는 때
   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유치시설의 설비, 기구, 그 밖에 물건을 손괴하거나 더럽힐 우려가 있는 때

② 제7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보호실에의 수용에 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동 조 제2항 중 "형무관"은 "유치담당관"으로, 동 조 제5항 중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는 "당해 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로, 동 조 제6항 중 "법무부령"은 "내각부령"으로 대체한다.

**(재해시의 피난 및 석방)**

**제215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시에 유치시설 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는 때에는 피유치자를 적당한 장소에 호송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피유치자를 호송할 수 없는 때에는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시에 유치시설 밖에 있는 피유치자를 피난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소에 호송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때에는 신속하게 유치시설 또는 유치업무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여야 한다.

## 제10절 외부교통

### 제1관 접견

**(접견의 상대방)**

**제216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다만, 그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견가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피유치수형자의 접견의 상대방)**

**제217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수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에는 전 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피유치수형자의 친족
2.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피유치수형자의 신분상 · 법률상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접견가 필요한 사람
3. 피유치수형자의 갱생보호에 관계하는 자, 피유치수형자의 석방 후에 그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밖에 접견함으로 인하여 피유치수형자의 개선갱생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수형자에 대하여 전 항 각 호의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접견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와의 교우관계 유지, 그 밖에 접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접견에 의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피유치수형자의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인 등 이외의 자의 접견 입회 등)**

**제218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그가 지명한 직원에게 미결구금자의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 입회하도록 하거나 또는 접견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한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업무관리자가 지명한 직원에게 미결구금자 이외의 피유치자의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 입회하도록 하거나 또는 접견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유치업무관리자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유치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미결구금자에 대하여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회 및 녹음, 녹화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1.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기관의 직원
2.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제219조** ①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변호인 등과의 접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 접견를 일시 정시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접견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에게 접견장소로부터의 퇴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
   가. 다음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
   나.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
2.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가. 암호의 사용,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해할 수 없는 때
   나. 범죄의 실행을 공모, 선동하거나 부추기는 때
   다.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미결구금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4. 피유치수형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가. 피유치수형자의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나. 특정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접견에서 그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때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가 일시정지된 경우에 접견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접견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접견에 대한 제한)**

**제220조** ① 피유치자의 변호인 등과의 접견일 및 시간은 일요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날 이외의 날에 유치시설의 집무시간 내로 한다.

② 전 항 접견의 상대방의 인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유치업무관리자는 변호인 등으로부터 전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유치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④ 유치업무관리자는 제1항의 접견에 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접견장소에 관해서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와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에 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견상대방의 수, 접견장소, 일시, 접견시간 및 횟수, 그 밖에 접견의 형태에 관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의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1일 1회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관 서신의 수발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221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에 대하여 이 관 또는 제2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서신의 수발이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서신검사)**

**제222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그가 지명한 직원에게 미결구금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업무관리자가 지명한 직원에게 미결구금자 이외의 피유치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서신에 대한 전 2항의 검사는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1호 다 및 제2호 나의 서신에 관해서는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미결구금자에 대하여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받은 서신
   가. 변호인 등
   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다.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2. 미결구금자 이외의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발하는 서신
   가.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나.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서신의 수발금지)**

**제223조** 유치업무관리자는 범죄성이 있는 자, 그 밖에 피유치수형자가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거나 피유치수형자의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피유치수형자의 친족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피유치수형자가 그 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밖에 피유치수형자의 신분상 · 법률상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이해에 관한 용무의 처리를 위한 서신 수발은 그러지 아니한다.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제224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피유치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의 수발을 정지 또는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동 조 제3항 각 호의 서신에 대하여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같다.

1. 암호의 사용,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인 경우
2. 서신수발에 의하여 형벌법령에 저촉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서신수발에 의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협박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확실한 허위의 기술이 있는 경우에 수신자를 현저히 불안하게 하거나 수신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신자를 현저히 모욕하는 기술이 있는 경우
6. 미결구금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그 수발에 의하여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피유치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그 수발에 의하여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유치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과 주고받는 서신으로,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한 것 및 피유치자가 변호인과의 주고받는 서신으로 그 피유치자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수발의 정지 또는 그 사항에 관한 부분의 삭제나 말소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서신에 관한 제한)**

**제225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작성요령, 발신을 신청한 날짜와 시간, 피유치자가 발신을 신청한 서신(변호인 등에게 발송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통수 및 피유치자의 서신수발방법에 대해서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유치자가 발신을 신청한 서신통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1일 1통 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발을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

**제226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제223조, 제224조 또는 제2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수발을 금지하거나 정지한 경우에 그 서신을,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일부를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한 부분을 보관한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한 부분의 복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의 석방시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서신의 전부, 일부 또는 복사본(이하 이 장에서 "수발금지서신 등"이라 한다)을 석방되는 피유치자에게 인도한다.

④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의 유족 등(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유족 그 밖의 자를 말한다. 제239조에서 같다)에게 신청에 따라 수발금지서신 등을 인도한다.

⑤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계에 의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도에 의하여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같다.

1. 석방된 피유치자가 석방 후에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를 요구하는 때
2. 피유치자가 제198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를 요구하는 때

⑥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피유치자에 관한 수발

금지서신 등(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하지 않도록 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3항 중 "국고"는 "그 유치시설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54조 제1항 제2호 중 "제83조 제2항"은 "제215조 제2항"으로,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6조"는 "제239조"로, 동 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동 조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은 "제226조 제4항의 신청"으로 대체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하지 않도록 한 수발금지서신 등은 피유치자의 석방 또는 사망한 날 또는 피유치자가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에 유치시설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27조** 제131조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서신에 대하여, 제133조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문서도화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제131조 중 "국고"는 "그 유치시설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한다.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제228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견시 외국어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역이 필요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유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 또는 서신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한 서신의 수발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서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에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피유치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접견 또는 서신의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1절 불복신청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심사의 신청)**

**제229조** ① 다음 각 호의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87조 또는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
2. 제190조 제2항(제208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처분
3.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금의 사용 또는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
4.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 또는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중지
5. 제205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상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6. 제207조 제1항 또는 제20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적 등의 열람금지 또는 제한
7.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8. 제223조, 제224조 또는 제225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227조에서 준용하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신수발 또는 문서도화의 교부금지, 정지 또는 제한
9. 제226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를 하지 않는 처분(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10.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간단히 "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조치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및「행정불복심사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경찰본부장"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을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 그 취지를 관보 그 밖의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의 신청)**

**제230조** ① 심사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재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심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및「행정불복심사법」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재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공안위원회"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 그 취지를 관보 그 밖의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관 사실의 신고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231조** ①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의한 행위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2. 위법 또는 부당한 포승, 수갑, 구속의 또는 방성구의 사용
3. 위법 또는 부당한 보호실에의 수용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신고에 관한 사실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경찰본부장"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제164조 제4항 중 "전 조 제1항"은 "제231조 제1항"으로,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의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232조** ① 피유치자는 전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서면으로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 항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공안위원회"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유치업무관리자"로, 제164조 제4항 중 "전 조 제1항"은 "제231조 제1항"으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관 고충의 신청

**(경찰본부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33조** ①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경찰본부장에게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및 제166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찰본부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34조** ①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관(이하 이 절에서 단지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제166조 제3항 및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3항 중 "형사시설의 직원"은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35조** ①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유치업무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제166조 제3항 및 제168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관 기타

**(비밀신청)**

**제236조** ①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심사의 신청 등(심사의 신청, 재심사의 신청 또는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경찰본부장 또는 감사관에 대하여 고충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2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신청 등이나 고충의 신청을 한 서면은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이익 취급의 금지)**

**제237조**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피유치자가 심사의 신청 등이나 고충의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그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절 석방

**제238조** 제171조에서 제173조까지의 규정은 피유치자의 석방에 대하여, 제175조의 규정은 석방되는 피유치자에 대해서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71조 제2호 및 제4호 중 "형사시설"은 "유치시설"로 한다.

### 제13절 사망

**제239조** 유치업무관리자는 피유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유치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사망원인 및 일시와 교부하여야 할 유류품 또는 수발금지서신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절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제240조** 내각총리대신은 피구류자 및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피구류자인 피유치자 및 피유치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내각부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함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다.

## 제4장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처우

### 제1절 유치의 개시

**(유치개시시의 고지)**

**제241조** ①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개시 시 해상보안 피유치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물품대여 및 지급과 자변에 관한 사항
2.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관사물, 그 밖에 물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4. 종교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서적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제2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준수사항
7.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
8.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 심사청 및 심사의 신청기관, 그 밖에 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9. 제2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위, 신고처 및 신고기간, 그 밖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10. 고충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국토교통성령(國土交通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제242조** ①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은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개시 시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그 후 필요가 생긴 때도 같다.

②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여성인 경우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여성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가 지명한 여직원을 남성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이 지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절 처우의 형태

**제243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처우(운동, 목욕 또는 접견의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처우를 제외한다)는 거실(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주로 휴식 및 취침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써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지정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4조에서 같다)밖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야거실에서 실시한다.

② 미결구금자(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죄증인멸의 방지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혼거할 수 있다.

③ 미결구금자는 전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실 밖에서도 상호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제244조**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사, 취침, 그 밖의 동작시간을 정하고 이를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고지한다.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제245조**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의 규정은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대한 물품대여 및 지급과 자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86조 제2항, 제187조 및 제188조 제1항 제3호 중 "내각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제187조 중 "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및 피유치수형자에 대하여 개선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제외하고"로 대체한다.

## 제5절 금품의 취급

**(금품검사)**

**제246조**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금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유치되는 때에 소지한 현금 및 물품
2.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유치 중에 취득한 현금 또는 물품(서신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동 호의 현금 및 물품 이외의 물품(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을 제외한다)
3.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해상보안 피유치자 이외의 자가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영치하거나 송부한 현금 및 물품

**(유치 시의 소지물품 등의 처분)**

**제247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그 물품을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1. 보관에 불편한 물건인 때
2. 부패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때
3.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때

②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차입물의 인수 등)**

**제248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제246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 또는 물품의 차입인에게 인수를 요구한다.

1.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 때
2. 교부의 상대방이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자가 교부를 받는 것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때
3. 차입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물건인 때
4. 자변물품 이외의 물품인 때
5. 전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때

② 제246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전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차입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그 취지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서 규정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구하거나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차입인이 그 현금 또는 물품의 인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으로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⑤ 제246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동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차입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요구할 수 없는 때 또는 인수를 요구함이 상당하지 않은 때 또는 차입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때에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한다.

⑥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 제246조 제3호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교부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차입인에게 그 인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의 교부 및 영치)**

**제249조** ①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물품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교부한다.

1. 제24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으로 제2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
2. 제246조 제3호의 물품으로 전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해상보안 피유치자가 교부받는 것을 거부한 물품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품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영치한다.

1. 전 항 각 호의 물품 중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물품 이외의 것
2. 제246조 각 호의 현금으로 전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보관사물 등)**

**제250조** ①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물[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는 물품(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및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받은 서신으로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관방법에 대하여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보관사물(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량(다음 조에서 "보관총량"이라 한다)이 보관한도량(해상보안 피유치자로서의 지위별로 해상보안 피유치자 1인당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정한 양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을 넘을 때 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영치하고 있는 물품(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제외한다)의 총량(다음 조에서 "영치총량"이라 한다)이 영치한도량(해상보안 피유치자로서의 지위별로 해상보안 피유치자 1인당 영치할 수 있는 물품의 양으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정한 양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초과량에 상당하는 양의 물품을 친족,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의 교부, 그 밖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패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관해서도 같다.

③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물품의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보관사물에 대하여, 동 조 제5항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관계되는 영치물품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 유치업무관

리자"로 대체한다.

**(영치금의 사용)**

**제251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자변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 일상생활상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치되어 있는 현금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현금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자변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현금사용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구입으로 보관총량이 보관한도량을 초과하거나 영치총량이 영치한도량을 초과하게 되는 때
2.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자변물품 등의 교부가 허가되지 아니하는 때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제252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제273조에서 준용하는 제133조에 규정한 문서도화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다른 사람(당해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의 교부(서신의 발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1. 교부(상대방이 친족인 자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때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53조** 제51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차입 등의 제한에 대하여, 제52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영치금품의 교부에 대하여, 제53조, 제54조(제1항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유류물(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류한 물품을 말한다. 제28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1조 중 "이 절"은 "제4장 제5절"로, 동 조 및 제55조 제1항 중 "법무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제51조 및 제52조 중 "피수용자"는 "해상보안피유치자"로, 제53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54조 제1항 제2호 중 "제83조 제2항"은 "제263조 제2항"으로,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6조"는 "제285조"로 대체한다.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제254조**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심신의 상태파악에 노력하고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건강 및 해상보안 유치시설내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일반의 보건위생 및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건위생상 및 의료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운동)**

**제255조**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운동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56조** 제58조, 제59조, 제200조 제1항 및 제201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대하

여,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대한 조치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9조 및 제64조 중 "법무부령"과 제202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203조 중 "내각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제59조 중 "형사시설"과 제200조 제1항 및 제202조 제1항 중 "유치시설"은 "해상보안 유치시설"로, 제64조 중 "형사시설 내"는 "해상보안 유치시설 내"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제62조"는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제201조"로, 제65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밖"은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밖"으로, 제200조 제1항 및 제201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 중 "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200조 제1항 중 "유치담당관"과 제202조 제2항 중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으로 대체한다.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제257조**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1인으로 실시하는 예배, 그 밖의 종교상의 행위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 (자변서적 등의 열람)

**제258조**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자변서적 등을 열람하는 것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9조** ①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자변서적 등의 열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을 금지해야 할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변서적 등의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그 열람을 금지한다.

###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0조** 제71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한 제한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시사보도를 접할 기회의 부여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1조 중 "법무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동 조 및 제72조 제1항 중 "피수용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로, 제71조 중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은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관리운영"으로 대체한다.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제261조** ①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유치를 확보하고 그의 처우를 위한 적정한 환경 및 안전하고 평온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준수사항 등)**

**제262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다음 항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준수사항은 해상보안 피유치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1.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2. 타인에 대하여 모욕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3. 자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4.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5. 자기 또는 다른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유치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6.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7. 해상보안 유치시설내의 위생 또는 풍속을 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8. 금품의 부정한 사용, 소지, 수수, 그 밖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9. 전 각 호의 것 이외에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전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꾀하거나 선동 또는 원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③ 전 2항 외에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또는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은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재해시의 피난 및 석방)**

**제263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 시에 해상보안 유치시설내에서의 피난방법이 없는 때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적당한 장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이송할 수 없는 때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지진, 화재 그 밖의 재해 시에 해상보안 유치시설 밖에 있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를 피난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이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피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진 때에는 신속하게 해상보안 유치시설 또는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여야 한다.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4조** 제75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 의한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거실검사와 소지품의 보관과 해상보안 피유치자 이외의 자의 의복 및 휴대품의 검사와 휴대품의 보관에 대하여, 제78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 의한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사용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5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78조 제1항 제3호 중 "형사시설"은 "해상보안 유치시설"로, 제75조 제2항 중 "제34조 제2항"은 "제242조 제2항"으로, 제78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중 "피수용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로, 동조 제1항 및 제7항 중 "법무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동 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동 항 중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는 "당해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가 위촉한 의사"로 대체한다.

## 제10절 외부교통

### 제1관 접견

**(접견의 상대방)**

**제265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견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2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접견가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에의 입회 등)**

**제266조** ① 해상보안 유치담당관리자는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게 미결구금자의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 입회하도록 하고, 그 접견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게 미결구금자 이외의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접견(변호인 등과의 접견를 제외한다.)에 입회하도록 하고 그 접견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자와의 접견가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미결구금자의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견의 입회 및 녹음 · 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상보안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의 직원
2. 해상보안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제267조** ①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변호사 등과의 접견의 경우에는 제1호 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발언을 제지하거나 접견를 일시정시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접견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해상보안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에게 접견장소에서의 퇴출을 명하고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상보안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
   가.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2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
   나.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
2. 해상보안 피유치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가. 암호의 사용, 그 밖의 이유로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이 이해할 수 없는 때
   나. 범죄의 실행을 공모, 선동 또는 부추기는 때
   다.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미결구금자 또는 접견의 상대방이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때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가 일시정지된 경우에 접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8조** 제220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접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유치시설"은 "해상보안 유치시설"로, 동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동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내각부령(內閣府令)"은 "국토교통성령"으로 한다.

## 제2관 서신의 수발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제269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이 관 또는 제2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그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의 교부발송이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서신검사)**

**제270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게 미결구금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검사를 하도록 한다.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게 미결구금자 이외의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서신에 대한 전 2항의 검사는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1호 다 및 제2호 나의 서신의 경우,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 또는 미결구금자의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받은 서신
   가. 변호인 등
   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다. 해상보안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2. 미결구금자 이외의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송하는 서신
   가. 해상보안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나. 해상보안 피유치자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제271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발의 정지 또는 그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할 수 있다. 제270조 제3항 각 호의 서신이 이러한 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 또는 일

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같다.

1. 암호의 사용, 그 밖의 이유로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인 때
2. 서신수발로 인하여 형벌법령에 저촉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3. 서신수발로 인하여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할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명확한 허위의 내용이 있어서 수신자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들거나 수신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
5. 수신자를 현저히 모욕하는 내용이 있는 때
6. 미결구금자의 서신수발에 의하여 죄증인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과 주고받는 서신으로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 및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변호사와 주고받는 서신으로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관계되는 「변호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수발의 정지 또는 그 사항에 관계하는 부분의 삭제 또는 말소는 그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불허된 서신 등의 취급)**

**제272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조 또는 제2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수발을 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서신을,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의 일부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삭제한 부분을 보관한다.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내용의 일부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말소한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유치자의 석방 시,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신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사본(이하 이 장에서 "불허된 서신 등"이라 한다)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

④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유족 등(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유족 그 밖의 자를 말한다. 제285조에서 같다)이 신청하는 때에 불허된 서신 등을 교부한다.

⑤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허된 서신 등의 교부로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부로 인하여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같다.

1. 석방된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석방 후에 불허된 서신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
2.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제2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허된 서신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

⑥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관계되는 불허된 서신 등(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중 "제83조 제2항"은 "제263조 제2항"으로,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6조"는 "제285조"로, 동 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동 조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은 "제272조 제4항의 신청"으로 대체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지 않기로 한 불허된 서신 등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석방 또는 사망한 날 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전 항에서 준용한 제5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에 국고에 귀속한다.

**(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73조** 제131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서신에 대하여, 제133조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문서도화에 대하여, 제225조의 규정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의한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서신에 관한 제한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1조 및 제133조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225조 제1항 중 "내각부령"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유치시설"은 "해상보안 유치시설"로 대체한다.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제274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 또는 그 접견의 상대방이 국어로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시 외국어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통역이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 또는 서신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국어로 통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한 서신의 수발을 허가한다. 이 경우에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번역이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상보안 피유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접견 또는 서신의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1절 불복신청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심사의 신청)**

**제275조** ① 다음 각 호의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해당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소재지(해당 해상보안 유치시설이 선박에 설치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소속하는 지방의 해상보안본부 또는 지방의 해상보안본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45조에서 준용하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
2.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금의 사용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
3.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 또는 제256조에서 준용하는 제2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중지
4.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상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5. 제259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260조에서 준용하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적 등의 열람금지 또는 제한
6. 제2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7. 제271조의 규정 또는 제273조에서 준용하는 제133조 또는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신수발 또는 문서도화 교부의 중지 또는 제한

8. 제272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된 서신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처분(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에 관계한 것에 한한다)

9.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처분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단지 "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조치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지방 해상보안본부장"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로,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의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 그 취지를 관보 그 밖에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의 신청)**

**제276조** ① 심사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해상보안청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단지 "재심사의 신청"이라 한다)은 심사신청에 대한 결정의 고지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재심사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해상보안청장관"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동 법 제34조 제2항 중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는 "직권으로"로, 동 법 제42조 제3항 중 "게시하고, 또 그 취지를 관보 그 밖에 공보 또는 신문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는 "게시하여"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관 사실의 신고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277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소재지(해당 해상보안 유치시설이 선박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소속하는 지방해상보안본부 또는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신체에 대하여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2. 위법 또는 부당한 포승, 수갑 또는 구속의의 사용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지방 해상보안본부장"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164조 제4항 중 "전 조 제1항"은 "제277조 제1항"으로, 동 법 제18조 제1항 중 "정본 및 부본을 처분청 또는"은 "정본을"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해상보안청 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

**제278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전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청장관에게 서면으로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 항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2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교정청장"은 "해상보안청장관"으로, 제160조 제2항 중 "형사시설의 장"은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로, 제164조 제4항 중 "전 조 제1항"은 "제277조 제1항"으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관 고충의 신청

**(해상보안청 장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79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 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및 제166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80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관(이하 이 절에서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제166조 제3항 및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3항 중 "형사시설의 직원"은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으로 대체한다.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

**제281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는 자신에 대한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조치, 그 밖에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하여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7조 제2항, 제166조 제3항 및 제168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관 기타

**(비밀신청)**

**제282조** ①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심사의 신청 등(심사의 신청, 재심사의 신청 또는 제277조 제1항 또는 제2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해상보안청장관 또는 감사관에게 고충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게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2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신청 등 또는 고충을 신청하는 서면은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이익대우의 금지)**

**제283조**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은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심사 또는 고충을 신청한 이유로 그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절 석방

**제284조** ①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석방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는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실시한다.

② 제175조의 규정은 석방된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3절 사망

**제285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유족 등에게 그 사망의 원인 및 일시와 교부해야 할 유류물 또는 불허된 서신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편 보칙

##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제286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시설에 유치된 자에 관해서는 유치시설을 형사시설로, 유치업무관리자를 형사시설의 장으로, 유치담당관을 형사시설 직원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제70조 제2항, 제73조 제2항, 제78조, 제80조 후단, 제98조 제1항 및 제2항, 제286조의2, 제366조, 제367조 및 제481조 제2항, 「범죄자예방갱생법」 제28조 전단,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제4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의 3 제2항 및 제3항,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2항, 제55조의2 제3항 및 제57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10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

**(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

**제287조** ① 노역장 및 감치장은 각각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사시설에 부설한다.

② 감치의 재판집행을 받은 자는 가까운 장소에 감치장이 없을 때 또는 가까운 장소의 감치장에 유치여력이 없는

때에는 형사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③ 노역장 또는 감치장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형사시설시찰위원회는 형사시설에 부설된 노역장 및 감치장의 운영에 관해서도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시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역장유치자의 처우)**

**제288조** 노역장에 유치된 자(이하 "노역장유치자"라 한다)의 처우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 편 제2장 중 징역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감치자의 처우)**

**제289조** ① 감치장에 유치된 자(이하 "감치장유치자"라 한다)의 처우에 관해서는 전 편 제2장(제41조 제2항 및 제11절 제2관 제6항목 및 제3관 제6항목을 제외한다) 중 각종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치장유치자의 자변물품의 사용 및 섭취에 대해서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중 "(다음 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것은 "(의류, 일용품 및 문구와 다음 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동 조 제2항 중 "전 항 각 호의 물품 및 침구"는 "의류, 일용품 및 문구(다음 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대체한다.

③ 감치장유치자(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 편 제2장 제11절 제2관 제1목 및 제3관 제1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감치장유치자(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 중에 감치의 재판집행을 받은 자에 한한다)의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 편 제2장 제11절 제2관 제3목 및 제3관 제3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치의 재판집행을 위하여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41조 제2항 및 전 편 제2장 제11절 제2관 제6목 및 제3관 제6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치의 재판집행을 위해 제15조 제1항 및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해서는 전 편 제3장 제1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 절 중 피유치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치의 재판집행을 위하여 제15조 제1항 및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류 중에 감치의 재판집행을 받은 자에 한한다)의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해서는 전 편 제3장 제1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 절 중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피유치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사법경찰관리

**제290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에서의 범죄(노역장 및 감치장에서의 범죄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한다.

② 형사시설의 직원(형사시설의 장을 제외한다)으로서 형사시설의 장이 해당 형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정(檢事正)과 협의하여 지명된 자는 형사시설의 범죄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한다.

## 제4장 조약의 효력

**제291조** 이 법에 규정하는 접견 및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조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5장 벌칙

**제292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3조** ① 제83조 제2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수용자(「형법」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노역장유치자 또는 감치장유치자가 제83조 제3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시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1. 외부통근작업의 경우에 통근일을 경과하여 형사시설에 귀소하지 않은 때
2.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의 경우에 외출한 날 또는 외박기간의 말일을 경과하여 형사시설에 귀소하지 않은 때

③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유치자(「형법」 제97조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제2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치시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지 않는 때도 제1항과 같다.

## 부칙[발초(拔抄)]

### (시행기간)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3조의 규정, 부칙 제38조 중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의 개정 규정[「범죄자예방갱생법」을 "및 「범죄자예방갱생법」"으로 고치고, "및 「구조개혁특별구역법(2002년 법률 제189호)」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삭제한 부분에 한한다] 및 부칙 제39조의 규정은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57호)」의 시행일 또는 이 법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 (순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감옥법(1908년 법률 제28호. 이하 "구감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열은 제5조의 규정적용에 관해서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로 간주한다.

### (수용개시시의 고지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5조 제1항의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시에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전단 중 "그 형사시설에의 수용개시에 임하여"라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로 한다.

### (금품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의 시행시 현재 구감옥법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되어 있는 수형자의 금품은 제21조 제2호의 금품으로 간주하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류물의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있는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유류물(수형자 및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의 조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업보장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①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시 현재 구감옥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작업상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보장금계산액에 가산한다.

② 제77조 제2항의 규정은 수형자가 시행일 전에 한 작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① 제79조(제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수형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행일 이후에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② 수형자에게의 시행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감옥법 제28조 제1항(구감옥법 제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된 수당(사망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은 구감옥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신속하게 시행한다.

**(불허된 서신 등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구감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된 서신으로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구감옥법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서신으로 간주한다.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① 제105조에서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수형자가 한 구감옥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받을 만한 행위로, 이 법 시행 시 현재 아직 징벌이 과해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106조 제2항 중 "동 항 제5호"는 "동 항 제4호 및 제5호"로, 제107조 제1항 중 "다음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대체한다.

② 시행일 전에 수형자에게 징벌이 과해졌으나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징벌로 간주하고, 시행일 이후에도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기간은 제1호의 징벌은 30일까지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제3호의 징벌은 60일(징벌을 부과할 때에 20세 미만의 자에 관해서는 3일)부터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감옥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징벌(동 항 제11호의 징벌에 병과된 것을 제외한다)로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이 3일에 미치지 않은 징벌 :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징벌
2. 구감옥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징벌 :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징벌
3. 구감옥법 제60조 제1항 제11호의 징벌로,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이 60일(징벌을 부과할 때에 20세 미만의 자에 관해서는 3일)에 미치지 않은 징벌 :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징벌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 제3호의 징벌집행을 하는 경우에 구감옥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징벌이 병과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조** 제2편 제12장 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은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징벌에 관계되는 불복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13조 제1항 중 "조치의 고지가 있은 날"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 대체한다.

**(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제2편 제12장 제2절의 규정은 수형자에게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형사시설의 직원에 의한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시행일 전에 구감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정원(情願)으로,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에 관계되는 것은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충의 신청으로, 순열관에 관계되는 것은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충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노역장 등에의 준용)**

**제13조**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노역장 또는 감치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중 "제4조 제1항"은 "제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감옥법 제4조 제1항"으로, "제5조"는 "제14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로 대체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와 부칙 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할 경우에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검토)**

**제15조** 정부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의 시행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부칙(2006. 6. 8 법5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용개시 시의 고지에 관한 특례)**

**제2조** ① 이 법에 의하여 개정 후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전단 중 "이 형사시설에서의 수용개시시에"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58호)」의 시행 후 신속하게"로 대체한다.

② 신법 제180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전단 중 "이 유치시설에의 유치의 개시 시에"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로 대체한다.

③ 신법 제241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항 중 "이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의 유치의 개시 시에"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로 대체한다.

**(금품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① 이 법의 시행시 현재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전의 「형사시설에서의 형사피고인의 수용 등에

관한 법률[1908년 법률 제28호. 이하 "구수용등법(旧囚收容等法)"이라 한다]」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 금품은 신법 제44조 제2호의 금품으로 간주하고 신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시 현재 구수용등법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되거나 유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의 금품(서신을 제외한다)은 신법 제191조 제2호의 금품으로 간주하고, 신법 제1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해상보안유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해상보안피유치자의 금품(서신을 제외한다)은 신법 제246조 제2호의 금품으로 간주하고 신법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류품의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① 이 빕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남아있는 사망자 및 도주자의 유류품(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의 조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시 현재 유치시설 또는 해상보안 유치시설에 남아있는 사망자 및 도주자의 유류품(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 또는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의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업보장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구수용등법 제27조 제2항의 작업상여금으로 미지급된 것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시행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① 신법 제8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00조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행일 이후에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수용등법 제28조 제1항(구수용등법 제21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당(사망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미지급된 것의 지급은 구수용등법 제28조 제2항(구수용등법 제21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불허된 서신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①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남아있는 불허된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관계되는 서신은 신법 제136조, 제141조, 제142조 또는 제144조에 준용하는 신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서신으로 간주한다.

②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유치시설에 남아있는 불허된 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에 관계되는 서신은 신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서신으로 간주한다.

③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해상보안유치시설에 남아있는 불허된 해상보안피유치자에 관계되는 서신은 신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서신으로 간주한다.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① 신법 제150조부터 제156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이 법의 시행시 아직 징벌이 과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신법 제151조 제2항 중 "동 항 제5호"은 "동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동 조 제4항 중 "및 제3호"은 "에서 제4호까지"로, 신법 제152조 제1항 중 "다음에"라는 것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대체한다.

1. 이 법률에 의하여 개정 전의「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구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벌을 과해야 할 행위
2. 구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으로 적용된 구수용등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과해야 할 행위
3. 전 호의 것 외에 구수용등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을 과해야 할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징벌의 집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구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적용된 구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법시행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
2. 구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
3. 구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

③ 구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구수용등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은 시행일 이후에도 집행한다.

④ 신법 제15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과 제15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징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구수용등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고 이 법률시행 시 현재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징벌(제2항 제2호의 징벌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징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기간은 제1호의 징벌에 있어서는 30일부터 시행일전에 집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제4호의 징벌에 있어서는 60일(징벌을 부과하는 때에 20세미만의 자에 관해서는 30일)부터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1.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징벌로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은 징벌
2.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징벌
3.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징벌
4.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징벌로 시행일 전에 집행한 기간이 60일(징벌을 부과하는 때에 20세미만인 자에 관해서는 30일)을 넘지 않은 징벌

⑥ 신법 제15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과 제15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으로 집행하는 구수용등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징벌에 대하여 준용한다.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① 신법 제2편 제2장 제13절 제1관 및 제4관의 규정은 전 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는 징벌에 관계한 불복에 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신법 제158조 제1항 중 "조치의 고지가 있은 날"은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시행일"로 한다.

② 구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으로 집행된 징벌(전 조 제2항 제2호의 징벌을 포함한다)에 관계되는 불복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① 신법 제2편 제2장 제13절 제2관의 규정은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있었던 형

사시설의 직원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신법 제2편 제3장 제11절 제2관의 규정은 수형자 이외의 피유치자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있었던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신법 제2편 제4장 제11절 제2관의 규정은 해상보안 피유치자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있었던 해상보안 유치담당관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이 법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구수용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원으로, 이 법의 시행시 현재 아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장관에 관계되는 것은 신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으로, 그 이외의 것은 신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감치장유치자에의 준용)**

**제12조** 부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전 조의 규정은 감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33조"는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33조"로, 부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전 조 중 "신법"은 "신법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신법"으로, 부칙 제5조,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항 및 제6항 및 전 조 중 "구수용등법"은 "구수용등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구수용등법"으로, 부칙 제7조 제1항 중 "제136조, 제141조, 제142조 또는 제144조"는 "제28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신법 제28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138조"로, 부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은 "제14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137조 제1항"으로, 동 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3항 및 부칙 제9조 제2항 중 "구법"은 "구법 제14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구법"으로 대체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2007년 5월 11일 법률 제37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규정이 일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년 6월 15일 법률 제8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1)]

（平成十七年五月二十五日法律第五十号）

最終改正：平成一九年六月一五日法律第八八号

## 第一編　総則

### 第一章　通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刑事収容施設（刑事施設、留置施設及び海上保安留置施設をいう。）の適正な管理運営を図るとともに、被収容者、被留置者及び海上保安被留置者の人権を尊重しつつ、これらの者の状況に応じた適切な処遇を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被収容者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

二　被留置者　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三　海上保安被留置者　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四　受刑者　懲役受刑者、禁錮受刑者又は拘留受刑者をいう。

五　懲役受刑者　懲役の刑（国際受刑者移送法（平成十四年法律第六十六号）第十六条第一項第一号の共助刑を含む。以下同じ。）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六　禁錮受刑者　禁錮の刑（国際受刑者移送法第十六条第一項第二号の共助刑を含む。以下同じ。）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七　拘留受刑者　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八　未決拘禁者　被逮捕者、被勾留者その他未決の者として拘禁されている者をいう。

九　被逮捕者　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の規定により逮捕されて留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十　被勾留者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ている者をいう。

十一　死刑確定者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拘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十二　各種被収容者　被収容者であって、受刑者、未決拘禁者及び死刑確定者以外のものをいう。

### 第二章　刑事施設

**(刑事施設)**

**第三条**　刑事施設は、次に掲げる者を収容し、これらの者に対し必要な処遇を行う施設とする。

一　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る者

1) http://law.e-gov.go.jp/htmldata/H17/H17HO050.html

二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逮捕された者であって、留置されるもの
三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る者
四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拘置される者
五　前各号に掲げる者のほか、法令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収容すべきこととされる者及び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者

**(被収容者の分離)**

**第四条**　被収容者は、次に掲げる別に従い、それぞれ互いに分離するものとする。
一　性別
二　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未決拘禁者（受刑者又は死刑確定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死刑確定者及び各種被収容者の別
三　懲役受刑者、禁錮受刑者及び拘留受刑者の別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に第九十二条又は第九十三条に規定する作業として他の被収容者に接して食事の配給その他の作業を行わせ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同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適当と認めるときは、居室（被収容者が主として休息及び就寝のために使用する場所とし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室をいう。次編第二章において同じ。）外に限り、同項第三号に掲げる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実地監査)**

**第五条**　法務大臣は、この法律の適正な施行を期するため、その職員のうちから監査官を指名し、各刑事施設について、毎年一回以上、これに実地監査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聴取)**

**第六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刑事施設の適正な運営に資するため必要な意見を関係する公務所及び公私の団体の職員並びに学識経験のある者から聴くこと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刑事施設視察委員会)**

**第七条**　刑事施設に、刑事施設視察委員会（以下この章において「委員会」という。）を置く。

2　委員会は、その置かれた刑事施設を視察し、その運営に関し、刑事施設の長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組織等)**

**第八条**　委員会は、委員十人以内で組織する。

2　委員は、人格識見が高く、かつ、刑事施設の運営の改善向上に熱意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法務大臣が任命する。

3　委員の任期は、一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4　委員は、非常勤とする。

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委員会に対する情報の提供及び委員の視察等)**

**第九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運営の状況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的に、又は必要に応じて、委員会に対し、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2 委員会は、刑事施設の運営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委員による刑事施設の視察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の長に対し、委員による被収容者との面接の実施について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視察及び被収容者との面接について、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百二十七条（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三十五条（第百三十八条及び第百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四十一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収容者が委員会に対して提出する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委員会の意見等の公表)**

**第十条** 法務大臣は、毎年、委員会が刑事施設の長に対して述べた意見及びこれを受けて刑事施設の長が講じた措置の内容を取りまとめ、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裁判官及び検察官の巡視)**

**第十一条** 裁判官及び検察官は、刑事施設を巡視することができる。

**(参観)**

**第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刑事施設の参観を申し出る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刑務官)**

**第十三条** 刑務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が刑事施設の職員のうちから指定する。

2 刑務官の階級は、法務省令でこれを定める。

3 刑務官には、被収容者の人権に関する理解を深めさせ、並びに被収容者の処遇を適正かつ効果的に行うため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及び向上させ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訓練を行うものとする。

## 第三章 留置施設

**(留置施設)**

**第十四条** 都道府県警察に、留置施設を設置する。

2 留置施設は、次に掲げる者を留置し、これらの者に対し必要な処遇を行う施設とする。

一 警察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二号）及び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警察の警察官が逮捕する者又は受け取る逮捕された者であって、留置されるもの

二 前号に掲げる者で、次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るもの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法令の規定により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者

**第十五条** 第三条各号に掲げる者は、次に掲げる者を除き、刑事施設に収容することに代えて、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の執行のため拘置される者（これらの刑の執行以外の逮捕、勾留その他の事由により刑事訴訟法その他の法令の規定に基づいて拘禁される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

二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て拘置される者

三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第十七条の四第一項又は少年院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九号）第十七条の二（同法第十四条第四項（同法第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仮に収容される者

四　逃亡犯罪人引渡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六十八号）第五条第一項、第十七条第二項若しくは第二十五条第一項、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五年法律第六十九号）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九年法律第三十七号）第二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拘禁される者

2　法務大臣は、国家公安委員会に対し、前項の規定による留置に関する留置施設の運営の状況について説明を求め、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留置された者の処遇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留置業務管理者等）**

**第十六条**　留置施設に係る留置業務を管理する者（以下「留置業務管理者」という。）は、警視庁、道府県警察本部又は方面本部（第二十条において「警察本部」という。）に置かれる留置施設にあっては警視以上の階級にある警察官のうちから警視総監、道府県警察本部長又は方面本部長（以下「警察本部長」という。）が指名する者とし、警察署に置かれる留置施設にあっては警察署長とする。

2　留置施設に係る留置業務に従事する警察官（以下「留置担当官」という。）には、被留置者の人権に関する理解を深めさせ、並びに被留置者の処遇を適正かつ効果的に行うため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及び向上させ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訓練を行うものとする。

3　留置担当官は、その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被留置者に係る犯罪の捜査に従事してはならない。

**（被留置者の分離）**

**第十七条**　被留置者は、次に掲げる別に従い、それぞれ互いに分離するものとする。

一　性別

二　受刑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者か否かの別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被留置者の処遇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実地監査）**

**第十八条**　警察本部長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道警察本部の所在地を包括する方面以外の方面にあっては、方面公安委員会。以下「公安委員会」という。）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法律の適正な施行を期するため、その職員のうちから監査官を指名し、各留置施設について、毎年一回以上、これに実地監査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巡察）**

**第十九条**　警察庁長官は、国家公安委員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留置者の処遇の斉一を図り、この法律の適正な施行を期するため、その指名する職員に留置施設を巡察させるものとする。

**（留置施設視察委員会）**

**第二十条**　警察本部に、留置施設視察委員会（以下この章において「委員会」という。）を置く。

2　委員会は、その置かれた警察本部に係る都道府県警察の管轄区域内にある留置施設（道警察本部にあって

はその所在地を包括する方面の区域内にある留置施設、方面本部にあっては当該方面の区域内にある留置施設）を視察し、その運営に関し、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組織等)**

**第二十一条** 委員会は、委員十人以内で組織する。

2　委員は、人格識見が高く、かつ、留置施設の運営の改善向上に熱意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公安委員会が任命する。

3　委員の任期は、一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4　委員は、非常勤とする。

5　委員又は委員であった者は、職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6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条例で定める。

**(委員会に対する情報の提供及び委員の視察等)**

**第二十二条** 留置業務管理者は、留置施設の運営の状況（第百九十条第一項又は第二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措置に関する事項を含む。）について、公安委員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的に、又は必要に応じて、委員会に対し、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2　委員会は、留置施設の運営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委員による留置施設の視察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委員による被留置者との面接の実施について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視察及び被留置者との面接について、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百二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留置者が委員会に対して提出する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委員会の意見等の公表)**

**第二十三条** 警察本部長は、毎年、委員会が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て述べた意見及びこれを受けて留置業務管理者が講じた措置の内容を取りまとめ、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十四条** 第六条、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は、留置施設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条及び第十二条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四章　海上保安留置施設

**(海上保安留置施設)**

**第二十五条** 管区海上保安本部、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又は海上保安庁の船舶に、海上保安留置施設を設置する。

2　海上保安留置施設は、次に掲げる者を留置し、これらの者に対し必要な処遇を行う施設とする。ただし、海上保安庁の船舶に置かれる海上保安留置施設には、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管区海上保安本部又は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に置かれる海上保安留置施設に速やか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限り、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海上保安庁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八号）及び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官又は海上保安官補が逮捕する者又は受け取る逮捕された者であって、留置されるもの

二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法令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者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等)**

**第二十六条**　海上保安留置施設に係る留置業務を管理する者（以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いう。）は、管区海上保安本部に置かれる海上保安留置施設にあっては管区海上保安本部長が指名する海上保安官とし、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に置かれる海上保安留置施設にあっては当該事務所の長とし、海上保安庁の船舶に置かれる海上保安留置施設にあっては当該船舶の船長とする。

2　海上保安留置施設に係る留置業務に従事する海上保安官及び海上保安官補（以下「海上保安留置担当官」という。）に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人権に関する理解を深めさせ、並びに海上保安被留置者の処遇を適正かつ効果的に行うため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及び向上させ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訓練を行うものとする。

3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犯罪の捜査に従事してはならない。

**(海上保安被留置者の分離)**

**第二十七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性別に従い、互いに分離するものとする。

**(実地監査)**

**第二十八条**　海上保安庁長官は、この法律の適正な施行を期するため、その職員のうちから監査官を指名し、各海上保安留置施設について、毎年一回以上、これに実地監査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十九条**　第六条、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施設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条及び第十二条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二編　被収容者等の処遇

## 第一章　処遇の原則

**(受刑者の処遇の原則)**

**第三十条**　受刑者の処遇は、その者の資質及び環境に応じ、その自覚に訴え、改善更生の意欲の喚起及び社会生活に適応する能力の育成を図ることを旨として行うものとする。

**(未決拘禁者の処遇の原則)**

**第三十一条**　未決拘禁者の処遇に当たっては、未決の者としての地位を考慮し、その逃走及び罪証の隠滅の防止並びにその防御権の尊重に特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死刑確定者の処遇の原則)**

**第三十二条**　死刑確定者の処遇に当たっては、その者が心情の安定を得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に留意するものとする。

2　死刑確定者に対しては、必要に応じ、民間の篤志家の協力を求め、そ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助言、講話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 第二章　刑事施設における被収容者の処遇

### 第一節　収容の開始

**(収容開始時の告知)**

**第三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開始に際し、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被収容者がその地位を異にするに至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一　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自弁に関する事項

二　第四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管私物その他の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

三　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事項

四　宗教上の行為、儀式行事及び教誨に関する事項

五　書籍等（書籍、雑誌、新聞紙その他の文書図画（信書を除く。）をいう。以下同じ。）の閲覧に関する事項

六　第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遵守事項

七　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

八　懲罰に関する事項

九　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措置、審査庁及び審査の申請期間その他の審査の申請に関する事項

十　第百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行為、申告先及び申告期間その他の同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関する事項

十一　苦情の申出に関する事項

2　前項の規定による告知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行う。

**(識別のための身体検査)**

**第三十四条**　刑務官は、被収容者について、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開始に際し、その者の識別のため必要な限度で、その身体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後必要が生じ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女子の被収容者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う場合には、女子の刑務官が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女子の刑務官がそ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男子の刑務官が刑事施設の長の指名する女子の職員を指揮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第二節　処遇の態様

**(未決拘禁者の処遇の態様)**

**第三十五条**　未決拘禁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処遇(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処遇を除く。次条第一項及び第三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は、居室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未決拘禁者（死刑確定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の居室は、罪証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単独室とし、それ以外の場合にあっても、処遇上共同室に収容する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できる限り、単独室とする。

3　未決拘禁者は、罪証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居室外においても相互に接触さ

せてはならない。

**(死刑確定者の処遇の態様)**

**第三十六条** 死刑確定者の処遇は、居室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死刑確定者の居室は、単独室とする。

3 死刑確定者は、居室外においても、第三十二条第一項に定める処遇の原則に照らして有益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き、相互に接触させてはならない。

**(各種被収容者の処遇の態様)**

**第三十七条** 各種被収容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処遇は、居室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各種被収容者の居室は、処遇上共同室に収容する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できる限り、単独室とする。

## 第三節 起居動作の時間帯等

**(起居動作の時間帯等)**

**第三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時間帯を定め、これを被収容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一 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

二 受刑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第八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矯正処遇等の時間帯及び余暇に充てられるべき時間帯

**(余暇活動の援助等)**

**第三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限り、余暇時間帯等（受刑者にあっては余暇に充てられるべき時間帯をいい、その他の被収容者にあっては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以外の時間帯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自己契約作業（その者が刑事施設の外部の者との請負契約により行う物品の製作その他の作業をいう。以下同じ。）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収容者に対し、自己契約作業、知的、教育的及び娯楽的活動、運動競技その他の余暇時間帯等における活動について、援助を与えるものとする。

## 第四節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物品の貸与等)**

**第四十条** 被収容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書籍等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必要なもの（第四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

一 衣類及び寝具

二 食事及び湯茶

三 日用品、筆記具その他の物品

2　被収容者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に応じ、室内装飾品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第四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嗜好品（酒類を除く。以下同じ。）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自弁の物品の使用等)**

**第四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次に掲げる物品（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処遇上適当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一　衣類

二　食料品及び飲料

三　室内装飾品

四　嗜好品

五　日用品、文房具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

2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及び寝具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並びに第十二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補正器具等の自弁等)**

**第四十二条**　被収容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自弁のものを使用させるものとする。

一　眼鏡その他の補正器具

二　自己契約作業を行うのに必要な物品

三　信書を発するのに必要な封筒その他の物品

四　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外泊の際に使用する衣類その他の物品

五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物品

2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被収容者が自弁のもの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であっ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これ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ものとする。

**(物品の貸与等の基準)**

**第四十三条**　第四十条又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貸与し、又は支給する物品は、被収容者の健康を保持するに足り、かつ、国民生活の実情等を勘案し、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に照らして、適正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五節　金品の取扱い

**(金品の検査)**

**第四十四条**　刑事施設の職員は、次に掲げる金品について、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被収容者が収容される際に所持する現金及び物品

二　被収容者が収容中に取得した現金及び物品（信書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同号に掲

げる現金及び物品以外のもの（刑事施設の長から支給された物品を除く。）

三　被収容者に交付するため当該被収容者以外の者が刑事施設に持参し、又は送付した現金及び物品

**(収容時の所持物品等の処分)**

**第四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物品について、親族（婚姻の届出をしていないが、事実上婚姻関係と同様の事情にある者を含む。以下同じ。）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保管に不便なものであるとき。

二　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三　危険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り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が相当の期間内にその処分をし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領置する。ただし、売却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差入物の引取り等)**

**第四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第四十四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を持参し、又は送付した者（以下「差入人」という。）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被収容者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二　交付の相手方が受刑者であり、かつ、差入人が親族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受刑者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そ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三　交付の相手方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四　差入人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ものであるとき。

五　自弁により使用し、若しく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物品又は釈放の際に必要と認められる物品（以下「自弁物品等」という。）以外の物品であるとき。

六　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物品であるとき。

2　第四十四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前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現金又は物品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差入人がその現金又は物品の引取りをしない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は、国庫に帰属する。

4　第二項に規定する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六号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内でも、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売却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四十四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五号又は第六号に該当するもの（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

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若しくはその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又は差入人がその引取りを拒んだ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6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7　第四十四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について、被収容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物品の引渡し及び領置)**

**第四十七条**　次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は、被収容者に引き渡す。

一　第四十四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第四十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二　第四十四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被収容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物品を除く。）

2　次に掲げる金品は、刑事施設の長が領置する。

一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以外のもの

二　第四十四条各号に掲げる現金であって、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又は第四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保管私物等)**

**第四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管私物（被収容者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を含む。）及び被収容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保管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の保管私物（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以下この節において「保管総量」という。）が保管限度量（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被収容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量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又は受刑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以下この節において「領置総量」という。）が領置限度量（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被収容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量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は、当該被収容者に対し、その超過量に相当する量の物品について、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物品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4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保管私物について領置する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領置総量が領置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5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領置している物品について、被収容者がその引渡しを求めた場合には、

これ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ただし、保管総量が保管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領置金の使用)**

**第四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自弁物品等を購入し、又は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上自ら負担すべき費用に充てるため、領置されている現金を使用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必要な金額の現金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自弁物品等を購入するための現金の使用について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購入により、保管総量が保管限度量を超え、又は領置総量が領置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

二 被収容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購入する自弁物品等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とき。

**(保管私物又は領置金品の交付)**

**第五十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保管私物又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百三十三条（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他の者（当該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除く。）への交付（信書の発信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申請した場合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交付（その相手方が親族であるもの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被収容者が受刑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交付により、そ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被収容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差入れ等に関する制限)**

**第五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差入人による被収容者に対する金品の交付及び被収容者による自弁物品等の購入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領置物の引渡し)**

**第五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の釈放の際、領置している金品をその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釈放者の遺留物)**

**第五十三条** 釈放された被収容者の遺留物（刑事施設に遺留した金品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は、その釈放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からその引渡し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その引渡し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

2 前項の期間内でも、刑事施設の長は、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遺留物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逃走者等の遺留物)**

**第五十四条** 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から引渡し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引渡し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

その遺留物は、国庫に帰属する。

一　逃走したとき　逃走した日

二　第八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同項に規定する場所に出頭しなかったとき　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日

三　第九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作業又は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若しくは外泊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日時までに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ったとき　その日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遺留物について準用する。

**(死亡者の遺留物)**

**第五十五条**　死亡した被収容者の遺留物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引き渡すものとする。

2　死亡した被収容者の遺留物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遺族等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第百七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遺留物は、第百七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第一項の申請が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

4　第五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遺留物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六節　保健衛生及び医療

**(保健衛生及び医療の原則)**

**第五十六条**　刑事施設においては、被収容者の心身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被収容者の健康及び刑事施設内の衛生を保持するため、社会一般の保健衛生及び医療の水準に照らし適切な保健衛生上及び医療上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運動)**

**第五十七条**　被収容者には、日曜日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日を除き、できる限り戸外で、そ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適切な運動を行う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公判期日への出頭その他の事情により刑事施設の執務時間内に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被収容者の清潔義務)**

**第五十八条**　被収容者は、身体、着衣及び所持品並びに居室その他日常使用する場所を清潔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入浴)**

**第五十九条**　被収容者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施設における保健衛生上適切な入浴を行わせる。

**(調髪及びひげそり)**

**第六十条**　受刑者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調髪及びひげそりを行わせる。

2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自弁により調髪を行い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処遇上適当

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3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調髪又はひげそりを行い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健康診断)**

**第六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開始後速やかに、及び毎年一回以上定期的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健康診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刑事施設における保健衛生上必要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被収容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健康診断の実施のため必要な限度内における採血、エックス線撮影その他の医学的処置を拒むことはできない。

**(診療等)**

**第六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速やかに、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等（医師又は歯科医師をいう。以下同じ。）による診療（栄養補給の処置を含む。以下同じ。）を行い、その他必要な医療上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生命に危険が及び、又は他人にその疾病を感染させ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その者の意思に反しない場合に限る。

一　負傷し、若しく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とき、又はこれらの疑いがあるとき。

二　飲食物を摂取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生命に危険が及ぶおそれがあるとき。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又は程度等に応じ必要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でない医師等による診療を行うことができる。

3　刑事施設の長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診療を行う場合において、必要に応じ被収容者を刑事施設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通院させ、やむを得ないときは被収容者を刑事施設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入院させることができる。

**(指名医による診療)**

**第六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被収容者が、刑事施設の職員でない医師等を指名して、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及び程度、刑事施設に収容される前にその医師等による診療を受けていたこと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その被収容者の医療上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自弁により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場合において、同項の診療を行う医師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指名医」という。）の診療方法を確認するため、又はその後にその被収容者に対して刑事施設において診療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をしてその診療に立ち会わせ、若しくはその診療に関して指名医に質問させ、又は診療録の写しその他のその診療に関する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指名医は、その診療に際し、刑事施設の長が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刑事施設の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名医が、第二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行う措置に従わないとき、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いとき、その他その診療を継続することが不適当であるときは、これを中止し、以後、その指名医の診療を

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感染症予防上の措置)**

**第六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内における感染症の発生を予防し、又はそ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対し、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又は第六十二条の規定による診療その他必要な医療上の措置を執るほか、予防接種、当該疾病を感染させるおそれがなくなるまでの間の隔離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養護のための措置等)**

**第六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老人、妊産婦、身体虚弱者その他の養護を必要とする被収容者について、その養護を必要とする事情に応じ、傷病者のための措置に準じた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出産するときは、やむを得ない場合を除き、刑事施設の外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に入院させるものとする。

**(子の養育)**

**第六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女子の被収容者がその子を刑事施設内で養育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子が一歳に達するまで、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養育され一歳に達した子について、引き続いて刑事施設内で養育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の心身の状況に照らして、又はその子を養育する上で、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引き続き六月間に限り、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3 被収容者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子を養育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子の養育に必要な物品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が、その子の養育に必要な物品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若しくは摂取し、又はその子に使用させ、若しくは摂取させ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がない限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5 被収容者が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養育している子については、被収容者の例により、健康診断、診療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 第七節 宗教上の行為等

**(一人で行う宗教上の行為)**

**第六十七条** 被収容者が一人で行う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行為は、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宗教上の儀式行事及び教誨)**

**第六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宗教家(民間の篤志家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行う宗教上の儀式行事に参加し、又は宗教家の行う宗教上の教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設け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前項に規定する儀式行事に参加させず、又は同項に規定する教誨を受け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 第八節　書類等の閲覧

**(自弁の書籍等の閲覧)**

**第六十九条**　被収容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は、この節及び第十二節の規定による場合のほか、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

**第七十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被収容者が受刑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被収容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禁止すべき事由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自弁の書籍等の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収容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が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

**(新聞紙に関する制限)**

**第七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収容者が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新聞紙の範囲及び取得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の付与等)**

**第七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日刊新聞紙の備付け、報道番組の放送その他の方法により、できる限り、主要な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を与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事施設の長は、第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援助の措置として、刑事施設に書籍等を備え付け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備え付けた書籍等の閲覧の方法は、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

## 第九節　規律及び秩序の維持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

**第七十三条**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は、適正に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執る措置は、被収容者の収容を確保し、並びにその処遇のための適切な環境及びその安全かつ平穏な共同生活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遵守事項等)**

**第七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遵守すべき事項（以下この章において「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る。

2　遵守事項は、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犯罪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二　他人に対し、粗野若しくは乱暴な言動をし、又は迷惑を及ぼす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三　自身を傷つけ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四　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五　自己又は他の被収容者の収容の確保を妨げ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六　刑事施設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七　刑事施設内の衛生又は風紀を害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八　金品について、不正な使用、所持、授受その他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九　正当な理由なく、第九十二条若しくは第九十三条に規定する作業を怠り、又は第八十五条第一項各号、第百三条若しくは第百四条に規定する指導を拒んではならないこと。

十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事項

十一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た遵守事項又は第九十六条第四項（第百六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特別遵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を企て、あおり、唆し、又は援助してはならないこと。

3　前二項のほか、刑事施設の長又はその指定する職員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対し、その生活及び行動について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身体の検査等)**

**第七十五条**　刑務官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収容者について、そ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を検査し、並びにその所持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女子の被収容者の身体及び着衣の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3　刑務官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被収容者以外の者（弁護人又は刑事訴訟法第三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以下「弁護人等」という。）を除く。）の着衣及び携帯品を検査し、並びにその者の携帯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検査は、文書図画の内容の検査に及んではならない。

**(受刑者の隔離)**

**第七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者を他の被収容者から隔離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一　他の被収容者と接触す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他の被収容者から危害を加えられ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避けるために他に方法がない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る隔離の期間は、三月とする。ただし、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一月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3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隔離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隔離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受刑者を隔離してい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三月に一回以上定期的に、その受刑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制止等の措置)**

**第七十七条**　刑務官は、被収容者が自身を傷つけ若しくは他人に危害を加え、逃走し、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著しく害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被収容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2　刑務官は、被収容者以外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

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行為をする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刑事施設に侵入し、その設備を損壊し、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執行を妨げ、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二　刑務官の要求を受けたのに刑事施設から退去しないとき。

三　被収容者の逃走又は刑事施設の職員の職務執行の妨害を、現場で、援助し、あおり、又は唆すとき。

四　被収容者に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3　前二項の措置に必要な警備用具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捕縄、手錠及び拘束衣の使用)**

**第七十八条**　刑務官は、被収容者を護送する場合又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捕縄又は手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逃走すること。

二　自身を傷つけ、又は他人に危害を加えること。

三　刑事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こと。

2　刑務官は、被収容者が自身を傷つけ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防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の命令により、拘束衣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捕縄又は手錠と同時に使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は、刑務官は、その命令を待たないで、拘束衣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刑事施設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拘束衣の使用の期間は、三時間とする。ただし、刑事施設の長は、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通じて十二時間を超えない範囲内で、三時間ごとにその期間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5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拘束衣の使用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使用を中止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6　被収容者に拘束衣を使用し、又はその使用の期間を更新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速やかに、そ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捕縄、手錠及び拘束衣の制式は、法務省令で定める。

**(保護室への収容)**

**第七十九条**　刑務官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の命令により、その者を保護室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自身を傷つ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

イ　刑務官の制止に従わず、大声又は騒音を発するとき。

ロ　他人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とき。

ハ　刑事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し、又は汚損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は、刑務官は、その命令を待たないで、その被収容者を保護室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刑事施設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保護室への収容の期間は、七十二時間以内とする。ただし、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四十八時間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4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保護室への収容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収容を中止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被収容者を保護室に収容し、又はその収容の期間を更新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速やかに、そ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6　保護室の構造及び設備の基準は、法務省令で定める。

**(武器の携帯及び使用)**

**第八十条**　刑務官は、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限り、小型武器を携帯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務官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武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暴動を起こし、又はまさに起こそうとするとき。

二　他人に重大な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三　刑務官が携帯し、又は刑事施設に保管されている武器を奪取し、又はまさに奪取しようとするとき。

四　凶器を携帯し、刑務官が放棄を命じたのに、これに従わないとき。

五　刑務官の制止に従わず、又は刑務官に対し暴行若しくは集団による威力を用いて、逃走し、若しくは逃走しようとし、又は他の被収容者の逃走を助けるとき。

3　刑務官は、被収容者以外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武器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被収容者が暴動を起こし、又はまさに起こそ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現場で、これらに参加し、又はこれらを援助するとき。

二　被収容者に重大な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三　刑務官が携帯し、又は刑事施設に保管されている武器を奪取し、又はまさに奪取しようとするとき。

四　銃器、爆発物その他の凶器を携帯し、又は使用して、刑事施設に侵入し、若しくはその設備を損壊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五　暴行又は脅迫を用いて、被収容者を奪取し、若しくは解放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4　前二項の規定による武器の使用に際して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七条に該当する場合又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いては、人に危害を加えてはならない。

一　刑務官において他に被収容者の第二項各号に規定する行為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二　刑務官において他に被収容者以外の者の前項各号に規定する行為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ただし、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あっては、その者が刑務

官の制止に従わないで当該行為を行うときに限る。

**(収容のための連戻し)**

**第八十一条**　刑務官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時から四十八時間以内に着手したときに限り、これを連れ戻すことができる。

一　逃走したとき　逃走の時

二　第九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作業又は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若しくは外泊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日時までに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ったとき　その日時

**(災害時の応急用務)**

**第八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刑事施設内にある者の生命又は身体の保護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被収容者を刑事施設内又はこれに近接する区域における消火、人命の救助その他の応急の用務に就かせ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条から第百二条までの規定は、被収容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応急の用務に就いて死亡し、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災害時の避難及び解放)**

**第八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刑事施設内において避難の方法がないときは、被収容者を適当な場所に護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を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その者を刑事施設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刑事施設の外にある被収容者を避難させるため適当な場所に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は、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刑事施設又は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節　矯正処遇の実施等

### 第一款　通則

**(矯正処遇)**

**第八十四条**　受刑者には、矯正処遇として、第九十二条又は第九十三条に規定する作業を行わせ、並びに第百三条及び第百四条に規定する指導を行う。

2　矯正処遇は、処遇要領（矯正処遇の目標並びにその基本的な内容及び方法を受刑者ごとに定める矯正処遇の実施の要領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基づいて行うものとする。

3　処遇要領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受刑者の資質及び環境の調査の結果に基づき定めるものとする。

4　処遇要領は、必要に応じ、受刑者の希望を参酌して定めるものとする。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5　矯正処遇は、必要に応じ、医学、心理学、教育学、社会学その他の専門的知識及び技術を活用して行うものとする。

**(刑執行開始時及び釈放前の指導等)**

**第八十五条**　受刑者には、矯正処遇を行うほか、次の各号に掲げる期間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指導を行う。

一　刑の執行開始後の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　受刑の意義その他矯正処遇の実施の基礎となる事項並びに刑事施設における生活及び行動に関する指導

二　釈放前におけ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　釈放後の社会生活において直ちに必要となる知識の付与その他受刑者の帰住及び釈放後の生活に関する指導

2　前項第二号に掲げる期間における受刑者の処遇は、できる限り、これにふさわしい設備と環境を備えた場所で行うものとし、必要に応じ、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外泊を許し、その他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第一項各号に定める指導を行う日及び時間を定める。

**(集団処遇)**

**第八十六条**　矯正処遇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導（以下「矯正処遇等」という。）は、その効果的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に応じ、受刑者を集団に編成して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居室外に限り、同項第一号に掲げる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刑事施設外処遇)**

**第八十七条**　矯正処遇等は、その効果的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刑事施設の外の適当な場所で行うことができる。

**(制限の緩和)**

**第八十八条**　受刑者の自発性及び自律性を涵養するため、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受刑者の生活及び行動に対する制限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三十条の目的を達成する見込みが高まるに従い、順次緩和され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三十条の目的を達成する見込みが特に高いと認められる受刑者の処遇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開放的施設（収容を確保するため通常必要とされる設備又は措置の一部を設けず、又は講じない刑事施設の全部又は一部で法務大臣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で行うことができる。

**(優遇措置)**

**第八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改善更生の意欲を喚起するため、次に掲げる処遇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定の期間ごとの受刑態度の評価に応じた優遇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一　第四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物品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こと。

二　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すこと。

三　第百十一条の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間又は回数を定めること。

四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処遇

**(社会との連携)**

**第九十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処遇を行う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受刑者の親族、民間の篤志家、関係行政機関その他の者に対し、協力を求め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協力をした者は、その協力を行うに当たって知り得た受刑者に関する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公務所等への照会)**

**第九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資質及び環境の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第二款　作業

**(懲役受刑者の作業)**

**第九十二条**　懲役受刑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に行わせる作業は、懲役受刑者ごとに、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

**(禁錮受刑者等の作業)**

**第九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禁錮受刑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又は拘留受刑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が刑事施設の長の指定する作業を行い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作業を行う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作業の実施)**

**第九十四条**　作業は、できる限り、受刑者の勤労意欲を高め、これに職業上有用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るように実施するものとする。

2　受刑者に職業に関する免許若しくは資格を取得させ、又は職業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る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らを目的とする訓練を作業として実施する。

**(作業の条件等)**

**第九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一日の作業時間及び作業を行わない日を定める。

2　刑事施設の長は、作業を行う受刑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受刑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講ずる措置に応じて、必要な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長が講ずべき措置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受刑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労働安全衛生法（昭和四十七年法律第五十七号）その他の法令に定める労働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事業者が講ずべき措置及び労働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準じて、法務大臣が定める。

**(外部通勤作業)**

**第九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刑法第二十八条（国際受刑者移送法第二十一条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少年法第五十八条又は国際受刑者移送法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り仮釈放を許すことができる期間を経過した懲役受刑者又は禁錮受刑者が、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その受刑者を刑事施設の外の事業所（以下この条において「外部事業所」という。）に通勤させて作業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作業（以下「外部通勤作業」という。）は、外部事業所の業務に従事し、又は外部事業所が行う職業訓練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行う。

3　受刑者に外部通勤作業を行わせ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外部事業所の事業主（以下この条において「外部事業主」という。）との間において、受刑者の行う作業の種類、作業時間、受刑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措置その他外部通勤作業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

いて、取決め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に外部通勤作業を行わせ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その受刑者が外部通勤作業に関し遵守すべき事項（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別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これをその受刑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5　特別遵守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指定された経路及び方法により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二　指定された時刻までに刑事施設に帰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三　正当な理由なく、外部通勤作業を行う場所以外の場所に立ち入ってはならないこと。

四　外部事業主による作業上の指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五　正当な理由なく、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接触することにより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者と接触してはならないこと。

6　刑事施設の長は、外部通勤作業を行う受刑者が遵守事項又は特別遵守事項を遵守しなかった場合その他外部通勤作業を不適当とす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これ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作業収入)**

**第九十七条**　作業の実施による収入は、国庫に帰属する。

**(作業報奨金)**

**第九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作業を行った受刑者に対しては、釈放の際（その者が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となったときは、その際）に、その時における報奨金計算額に相当する金額の作業報奨金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毎月、その月の前月において受刑者が行った作業に対応する金額として、法務大臣が定める基準に従い、その作業の成績その他就業に関する事項を考慮して算出した金額を報奨金計算額に加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釈放の日の属する月における作業に係る加算は、釈放の時に行う。

3　前項の基準は、作業の種類及び内容、作業に要する知識及び技能の程度等を考慮して定める。

4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その釈放前に作業報奨金の支給を受け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使用の目的が、自弁物品等の購入、親族の生計の援助、被害者に対する損害賠償への充当等相当な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支給の時における報奨金計算額に相当する金額の範囲内で、申出の額の全部又は一部の金額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その支給額に相当する金額を報奨金計算額から減額する。

5　受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なかったときは、その者の報奨金計算額は、零とする。

一　逃走したとき　逃走した日

二　第八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同項に規定する場所に出頭しなかったとき　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日

三　外部通勤作業又は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若しくは外泊の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日時までに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ったとき　その日

**(遺族等への給付)**

**第九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時に釈放したとするならばその受刑者に支給すべき作業報奨金に相当する金額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手当金)**

**第百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作業上死亡した場合（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受刑者が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がその負傷又は疾病により死亡したときを含む。）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死亡手当金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受刑者が治った場合（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受刑者が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が治ったときを含む。）において、身体に障害が残っ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に障害手当金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支給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手当金の額は、労働基準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四十九号）に基づく災害補償の額に関する基準を参酌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算出した金額とする。

4　刑事施設の長は、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受刑者が釈放の時になお治っていない場合（作業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受刑者が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被収容者が釈放の時になお治っていないときを含む。）において、その傷病の性質、程度その他の状況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られ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に特別手当金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損害賠償との調整)**

**第百一条**　国が国家賠償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五号）、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その他の法律による損害賠償の責任を負う場合において、前条の手当金を支給したときは、同一の事由については、国は、そ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その損害賠償の責任を免れる。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前条の手当金の支給を受けるべき者が、同一の事由につき国家賠償法、民法その他の法律による損害賠償を受けたときは、国は、そ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同条の手当金の支給の義務を免れる。

**(手当金の支給を受ける権利の保護等)**

**第百二条**　第百条の手当金の支給を受ける権利は、譲り渡し、担保に供し、又は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百条の手当金として支給を受けた金銭を標準として、租税その他の公課を課してはならない。

## 第三款　各種指導

**(改善指導)**

**第百三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に対し、犯罪の責任を自覚させ、健康な心身を培わせ、並びに社会生活に適応するのに必要な知識及び生活態度を習得させるため必要な指導を行うものとする。

2　次に掲げる事情を有することにより改善更生及び円滑な社会復帰に支障があると認められる受刑者に対し前項の指導を行うに当たっては、その事情の改善に資するよう特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麻薬、覚せい剤その他の薬物に対する依存があること。

二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であること。

三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情

**(教科指導)**

**第百四条**　刑事施設の長は、社会生活の基礎となる学力を欠くことにより改善更生及び円滑な社会復帰に支障があると認められる受刑者に対しては、教科指導（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十六号）による学校教育の内容に準ずる内容の指導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行う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学力の向上を図ることが円滑な社会復帰に特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受刑者に対し、その学力の状況に応じた教科指導を行うことができる。

**(指導の日及び時間)**

**第百五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前二条の規定による指導を行う日及び時間を定める。

## 第四款　外出及び外泊

**(外出及び外泊)**

**第百六条**　刑事施設の長は、刑法第二十八条（国際受刑者移送法第二十一条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少年法第五十八条又は国際受刑者移送法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り仮釈放を許すことができる期間を経過した懲役受刑者又は禁錮受刑者が、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円滑な社会復帰を図るため、刑事施設の外において、その者が、釈放後の住居又は就業先の確保その他の一身上の重要な用務を行い、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を訪問し、その他その釈放後の社会生活に有用な体験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刑事施設の職員の同行なしに、外出し、又は七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外泊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外泊については、その受刑者に係る刑が六月以上執行されている場合に限る。

2　第九十六条第四項、第五項（第四号を除く。）及び第六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外出及び外泊について準用する。

**(刑期不算入)**

**第百七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泊をした者が、刑事施設の長が指定した日時までに刑事施設に帰着しなかった場合には、その外泊の期間は、刑期に算入しない。ただし、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事由によって帰着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外出等に要する費用)**

**第百八条**　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外泊に要する費用については、受刑者が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又は刑事施設の長が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国庫の負担とする。

## 第五款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

**第百九条**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についての第八十四条第一項及び第八十九条の規定の適

用については、第八十四条第一項中「矯正処遇として」とあるのは「未決の者としての地位を損なわない限度で、かつ、その拘禁の期間を考慮して可能な範囲内で、矯正処遇として」と、第八十九条第三号中「第百十一条」とあるのは「第百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十一条」とする。

2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については、第八十六条から第八十八条まで、第九十六条及び前款の規定は、適用しない。

## 第十一節　外部交通

### 第一款　受刑者についての留意事項

**第百十条**　この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に対し、外部交通（面会、信書の発受及び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通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行うことを許し、又はこれを禁止し、差し止め、若しくは制限するに当たっては、適正な外部交通が受刑者の改善更生及び円滑な社会復帰に資するものであ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款　面会

#### 第一目　受刑者

**(面会の相手方)**

**第百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次に掲げる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受刑者の親族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受刑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することが必要な者

三　受刑者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受刑者の釈放後にこれを雇用しようとする者その他の面会により受刑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2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との交友関係の維持その他面会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面会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じ、又は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面会の立会い等)**

**第百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受刑者の面会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受刑者が次に掲げる者と面会する場合に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限りでない。

一　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二　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

二百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第百十三条**　刑事施設の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止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受刑者又は面会の相手方に対し面会の場所からの退出を命じ、その他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受刑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とき。

イ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制限に違反する行為

ロ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

二　受刑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からホ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イ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刑事施設の職員が理解できないもの

ロ　犯罪の実行を共謀し、あおり、又は唆すもの

ハ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ニ　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ホ　特定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許された面会において、そ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な範囲を明らかに逸脱するもの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に関する制限)**

**第百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面会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相手方の人数、面会の場所、日及び時間帯、面会の時間及び回数その他面会の態様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の回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回数は、一月につき二回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 第二目　未決拘禁者

**(面会の相手方)**

**第百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未決拘禁者（受刑者又は死刑確定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の立会い等)**

**第百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の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並びに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次項において「立会い等」という。）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未決拘禁者の第百十二条各号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

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立会い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第百十七条** 第百十三条（第一項第二号ホを除く。）の規定は、未決拘禁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各号のいずれか」とあるのは「各号のいずれか（弁護人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と、同項第二号ニ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とあるのは「罪証の隠滅の結果」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面会に関する制限)**

**第百十八条** 未決拘禁者の弁護人等との面会の日及び時間帯は、日曜日その他政令で定める日以外の日の刑事施設の執務時間内とする。

2 前項の面会の相手方の人数は、三人以内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弁護人等から前二項の定めによらない面会の申出がある場合においても、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支障があるとき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4 刑事施設の長は、第一項の面会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場所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百十四条の規定は、未決拘禁者と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二回」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目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

**第百十九条** 第百十一条、第百十三条、第百十四条、第百十六条及び前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十一条第一項中「場合」とあるのは「場合及び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と、同条第二項中「ときは」とあるのは「ときは、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を除き」と、第百十三条第一項中「各号のいずれか」とあるのは「各号のいずれか（弁護人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と、同項第二号ニ中「生ずる」とあるのは「生じ、又は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と、第百十四条第一項中「面会に」とあるのは「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四目 死刑確定者

**(面会の相手方)**

**第百二十条** 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次に掲げる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死刑確定者の親族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死刑確定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することが必要な者

三 面会により死刑確定者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2　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との交友関係の維持その他面会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面会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面会の立会い等)**

**第百二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死刑確定者の面会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死刑確定者の訴訟の準備その他の正当な利益の保護のためその立会い又は録音若しくは録画をさせないことを適当とする事情があ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等)**

**第百二十二条**　第百十三条（第一項第二号ニを除く。）及び第百十四条の規定は、死刑確定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二回」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五目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死刑確定者

**第百二十三条**　第百十三条、第百十八条、第百二十条及び第百二十一条の規定は、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死刑確定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十三条第一項中「各号のいずれか」とあるのは「各号のいずれか（弁護人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と、同項第二号ニ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とあるのは「罪証の隠滅の結果」と、第百二十条第一項中「場合」とあるのは「場合及び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と、同条第二項中「ときは」とあるのは「ときは、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を除き」と、第百二十一条中「面会に」とあるのは「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六目　各種被収容者

**(面会の相手方)**

**第百二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各種被収容者に対し、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及び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各種被収容者の面会の立会い等)**

**第百二十五条**　第百十二条、第百十三条（第一項第二号ニ及びホを除く。）及び第百十四条の規定は、各種被収容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十二条第一項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その他の」とあるのは「その他の」と、第百十四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二回」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款　信書の発受

### 第一目　受刑者

**(発受を許す信書)**

**第百二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

て同じ。）に対し、この目、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信書の検査)**

**第百二十七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受刑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受刑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

二　受刑者が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て発する信書

三　受刑者が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

**(信書の発受の禁止)**

**第百二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受刑者が信書を発受すること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し、又は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者（受刑者の親族を除く。）については、受刑者がそ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受刑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信書を発受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百二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第百二十七条の規定による検査の結果、受刑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過程にお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一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刑事施設の職員が理解できない内容のものであるとき。

二　発受によって、刑罰法令に触れることとなり、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発受によっ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四　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者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者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五　受信者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六　発受によって、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受刑者が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受刑者に係る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士の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その発受の差止め又はその事項に係

る部分の削除若しくは抹消は、その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信書に関する制限)**

**第百三十条**　刑事施設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要領、その発信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並びに受刑者の信書の発受の方法について、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通数は、一月につき四通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発信に要する費用)**

**第百三十一条**　信書の発信に要する費用については、受刑者が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発信の目的に照ら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国庫の負担とする。

**(発受を禁止した信書等の取扱い)**

**第百三十二条**　刑事施設の長は、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又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信書の発受を禁止し、又は差し止めた場合にはその信書を、第百二十九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一部を削除した場合にはその削除した部分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第百二十九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記述の一部を抹消する場合には、その抹消する部分の複製を作成し、これ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釈放の際、前二項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信書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複製（以下この章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という。）をその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4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発受禁止信書等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これを引き渡さないものとする。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し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一　釈放された受刑者が、釈放後に、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二　受刑者が、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6　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四条第一項並びに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受刑者に係る発受禁止信書等（前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第一項の申請」とあるのは、「第百三十二条第四項の申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7　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した発受禁止信書等は、受刑者の釈放若しくは死亡の日又は受刑者が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日に、国庫に帰属する。

**(受刑者作成の文書図画)**

**第百三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が、その作成した文書図画（信書を除く。）を他の者に交付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その交付につき、受刑者が発する信書に準じて検査その他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 第二目　未決拘禁者

**(発受を許す信書)**

**第百三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未決拘禁者（受刑者又は死刑確定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この目、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書の発受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検査)**

**第百三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未決拘禁者が弁護人等から受ける信書

二　未決拘禁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

三　未決拘禁者が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から受ける信書

3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並びに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検査を行わせないことができる。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百三十六条**　第百二十九条から第百三十三条までの規定は、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九条第一項中「第百二十七条」とあるのは「第百三十五条」と、同項第六号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とあるのは「罪証の隠滅の結果」と、同条第二項中「第三号まで」とあるのは「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と、第百三十条第一項中「申請する信書」とあるのは「申請する信書（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ものを除く。）」と、同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四通」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通」と、第百三十二条第一項中「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とあるのは「第百二十九条」と、同条第五項第二号及び第七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と、同条第六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目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

**(発受を許す信書)**

**第百三十七条**　刑事施設の長は、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に対し、この目、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書の発受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発受の禁止等)**

**第百三十八条**　第百二十八条から第百三十三条まで及び第百三十五条の規定は、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九条第一項中「第百二十七条」

とあるのは「第百三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五条」と、同項第六号中「生ずる」とあるのは「生じ、又は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と、同条第二項中「場合」とあるのは「場合又は信書の発受によっ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場合」と、第百三十条第一項中「申請する信書」とあるのは「申請する信書（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ものを除く。）」と、第百三十二条第五項第二号及び第七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と、同条第六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四目　死刑確定者

**(発受を許す信書)**

**第百三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この目、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次に掲げる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一　死刑確定者の親族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死刑確定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発受する信書

三　発受により死刑確定者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信書

2　刑事施設の長は、死刑確定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信書以外の信書の発受について、その発受の相手方との交友関係の維持その他その発受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その発受により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信書の検査)**

**第百四十条**　刑事施設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死刑確定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第百二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百四十一条**　第百二十九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及び第百三十条から第百三十三条までの規定は、死刑確定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九条第一項中「第百二十七条」とあるのは「第百四十条」と、第百三十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四通」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通」と、第百三十二条第一項中「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とあるのは「第百二十九条」と、同条第五項第二号及び第七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と、同条第六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五目　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死刑確定者

**第百四十二条**　第百二十九条から第百三十三条まで、第百三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百三十九条の規定は、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死刑確定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九条第一項中「第百二十七条」とあるのは「第百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と、同項第六号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に支障」とあるのは「罪証の隠滅の結果」

と、同条第二項中「第三号まで」とあるのは「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と、第百三十条第一項中「申請する信書」とあるのは「申請する信書（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ものを除く。）」と、同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四通」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通」と、第百三十二条第一項中「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とあるのは「第百二十九条」と、同条第五項第二号及び第七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と、同条第六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と、第百三十九条第一項中「、この目」とあるのは「、次目」と、「場合」とあるのは「場合及び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と、同条第二項中「ときは」とあるのは「ときは、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許されない場合を除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六目　各種被収容者

**(発受を許す信書)**

**第百四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各種被収容者に対し、この目、第百四十八条第三項又は次節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信書の検査等)**

**第百四十四条**　第百二十七条、第百二十九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及び第百三十条から第百三十二条までの規定は、各種被収容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七条第一項中「、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その他の」とあるのは「その他の」と、第百三十条第二項中「一月につき四通」とあるのは「一日につき一通」と、第百三十二条第一項中「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とあるのは「第百二十九条」と、同条第五項第二号及び第七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と、同条第六項中「第五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四款　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被収容者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

**第百四十五条**　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被収容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が弁護人等と面会し、又は弁護人等との間において信書の発受をする場合については、第二款第二目又は前款第二目中の未決拘禁者の弁護人等との面会又は信書の発受に関する規定（第百三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九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の例による。

### 第五款　電話等による通信

**(電話等による通信)**

**第百四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に対し、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改善更生又は円滑な社会復帰に資すると認めるときその他相当と認めるときは、電話その他政令で定める電気通信の方法による通信を行う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第百三十一条の規定は、前項の通信について準用する。

**(通信の確認等)**

**第百四十七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受刑者の矯正処遇の適切な実施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前条第一項の通信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その通信を受けさせ、又はその内容を記録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十三条第一項（第一号イを除く。）及び第二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の通信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六款　外国語による面会等

**第百四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又はその面会等（面会又は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通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面会等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発言又は通信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通訳又は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被収容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又はその信書の発受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その他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信書の発受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信書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被収容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被収容者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面会等又は信書の発受を許さない。

## 第十二節　賞罰

**(褒賞)**

**第百四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賞金又は賞品の授与その他の方法により褒賞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人命を救助したとき。

二　第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応急の用務に服して、功労があったとき。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賞揚に値する行為をしたとき。

**(懲罰の要件等)**

**第百五十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遵守事項若しくは第九十六条第四項（第百六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特別遵守事項を遵守せず、又は第七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刑事施設の職員が行った指示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は、その被収容者に懲罰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

2　懲罰を科するに当たっては、懲罰を科せられるべき行為（以下この節において「反則行為」という。）をした被収容者の年齢、心身の状態及び行状、反則行為の性質、軽重、動機及び刑事施設の運営に及ぼした影響、反則行為後におけるその被収容者の態度、受刑者にあっては懲罰がその者の改善更生に及ぼす影響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懲罰は、反則行為を抑制するのに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懲罰の種類)**

**第百五十一条**　受刑者に科する懲罰の種類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戒告

二　第九十三条の規定による作業の十日以内の停止

三　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の一部又は全部の十五日以内の停止

四　書籍等（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としての権利の保護又は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に必要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第三項第三号及び次条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閲覧の一部又は全部の三十日以内の停止

五　報奨金計算額の三分の一以内の削減

六　三十日以内（懲罰を科する時に二十歳以上の者について、特に情状が重い場合には、六十日以内）の閉居

2　前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の懲罰にあっては二種類以上を併せて、同項第六号の懲罰（以下この節において「閉居罰」という。）にあっては同項第五号の懲罰と併せて科することができる。

3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科する懲罰の種類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戒告

二　第四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の一部又は全部の十五日以内の停止

三　書籍等の閲覧の一部又は全部の三十日以内の停止

四　閉居罰

4　前項第二号及び第三号の懲罰は、併せて科することができる。

**(閉居罰の内容)**

**第百五十二条**　閉居罰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行為を停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居室内において謹慎させる。

一　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り自弁の物品（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物品を除く。）を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

二　宗教上の儀式行事に参加し、又は他の被収容者と共に宗教上の教誨を受けること。

三　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

四　自己契約作業を行うこと。

五　面会すること（弁護人等と面会する場合及び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としての権利の保護又は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く。）。

六　信書を発受すること（弁護人等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場合及び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としての権利の保護又は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く。）。

2　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被収容者については、第五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健康の保持に支障を生じない限度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運動を制限する。

3　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謹慎の趣旨に反しない限度において、矯正処遇等を行うものとする。

**(反則行為に係る物の国庫への帰属)**

**第百五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懲罰を科す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物を国庫に帰属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反則行為をした被収容者以外の者に属する物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反則行為を組成した物

二　反則行為の用に供し、又は供しようとした物

三　反則行為によって生じ、若しくはこれによって得た物又は反則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物

四　前号に掲げる物の対価として得た物

**(反則行為の調査)**

**第百五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反則行為をした疑い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は、反則行為の有無及び第百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考慮すべき事情並びに前条の規定による処分の要件の有無について、できる限り速やかに調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調査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刑務官に、被収容者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を検査させ、並びにその所持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女子の被収容者の身体及び着衣の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4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について、反則行為をした疑いがあると思料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他の被収容者から隔離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処遇は、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5　前項の規定による隔離の期間は、二週間とする。ただし、刑事施設の長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二週間に限り、その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6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隔離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隔離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懲罰を科する手続)**

**第百五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懲罰を科そうと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聴取をする三人以上の職員を指名した上、その被収容者に対し、弁解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被収容者に対し、あらかじめ、書面で、弁解をすべき日時又は期限及び懲罰（第百五十三条の規定による処分を含む。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の原因となる事実の要旨を通知するとともに、被収容者を補佐すべき者を刑事施設の職員のうちから指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指名を受けた職員は、懲罰を科することの適否及び科すべき懲罰の内容について協議し、これらの事項についての意見及び被収容者の弁解の内容を記載した報告書を刑事施設の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懲罰の執行)**

**第百五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懲罰を科するときは、被収容者に対し、懲罰の内容及び懲罰の原因として認定した事実の要旨を告知した上、直ちにその執行を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反省の情が著しい場合その他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には、その執行を延期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執行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施設の長は、閉居罰の執行に当たっては、そ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三節　不服申立て

### 第一款　審査の申請及び再審査の申請

**(審査の申請)**

**第百五十七条**　次に掲げ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当該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

る矯正管区の長に対し、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さない処分

二　第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領置されている現金の使用又は第五十条の規定による保管私物若しく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の交付を許さない処分

三　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処分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診療の中止

四　第六十七条に規定する宗教上の行為の禁止又は制限

五　第七十条第一項又は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書籍等の閲覧の禁止又は制限

六　第七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七　第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隔離

八　第九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作業報奨金の支給に関する処分

九　第百条第二項（第八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障害手当金の支給に関する処分

十　第百条第四項（第八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特別手当金の支給に関する処分

十一　第百二十八条（第百三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又は第百二十九条、第百三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百三十三条（これらの規定を第百三十六条（第百四十五条においてその例による場合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信書の発受又は文書図画の交付の禁止、差止め又は制限

十二　第百三十二条第五項前段（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しない処分（第百三十二条第三項（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引渡しに係るものに限る。）

十三　第百四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十四　第百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懲罰

十五　第百五十三条の規定による物を国庫に帰属させる処分

十六　第百五十四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隔離

2　前項の規定による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審査の申請」という。）は、これを行う者が自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審査の申請期間）**

**第百五十八条**　審査の申請は、措置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天災その他前項の期間内に審査の申請を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やんだ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週間以内に限り、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第十四条第四項の規定は、審査の申請期間の計算につい

て準用する。

**(行政不服審査法の準用)**

**第百五十九条**　行政不服審査法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並びに第三十九条の規定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調査)**

**第百六十条**　矯正管区の長は、職権で、審査の申請に関して必要な調査をするものとする。

2　矯正管区の長は、前項の調査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刑事施設の長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指名する職員をして、審査の申請人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質問をさせ、若しくは物件の提出を求めさせ、これらの者が提出した物件を留め置かせ、若しくは検証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裁決)**

**第百六十一条**　矯正管区の長は、審査の申請を受けたときは、できる限り九十日以内に裁決を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2　行政不服審査法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並びに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審査の申請の裁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十二条第三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再審査の申請)**

**第百六十二条**　審査の申請の裁決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法務大臣に対し、再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再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再審査の申請」という。）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及び前条第一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一項、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五十五条の規定は、再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同法第四十二条第三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二款　事実の申告

**(矯正管区の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百六十三条**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行為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があっ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当該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矯正管区の長に対し、その事実

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身体に対する違法な有形力の行使

二　違法又は不当な捕縄、手錠又は拘束衣の使用

三　違法又は不当な保護室への収容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その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百六十条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並びに第三十九条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通知)**

**第百六十四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が適法であるときは、矯正管区の長は、その申告に係る事実の有無について確認し、その結果をその申告をした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者が釈放さ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が法定の期間経過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その他不適法であるときは、矯正管区の長は、その旨をその申告をした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を準用する。

3　第百六十一条第一項及び行政不服審査法第四十一条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4　矯正管区の長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があったことを確認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同様の行為の再発の防止のため必要な措置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法務大臣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百六十五条**　被収容者は、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内容に不服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法務大臣に対し、第百六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前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三款　苦情の申出

**(法務大臣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百六十六条**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書面で、法務大臣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法務大臣は、苦情の申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誠実に処理し、処理の結果を苦情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者が釈放さ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百六十七条**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第五条の規定により実地監査を行う監査官（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監査官」という。）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監査官は、口頭による苦情の申出を受けるに当たっては、刑事施設の職員を立ち会わせてはならない。

4　前条第三項の規定は、監査官が苦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刑事施設の長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百六十八条**　被収容者は、自己に対する刑事施設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刑事施設の長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被収容者が口頭で第一項の苦情の申出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刑事施設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その内容を聴取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第百六十六条第三項の規定は、刑事施設の長が苦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四款　雑則

**(秘密申立て)**

**第百六十九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審査の申請等（審査の申請、再審査の申請又は第百六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百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いう。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をし、又は法務大臣若しくは監査官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に当たり、その内容を刑事施設の職員に秘密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百二十七条（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三十五条（第百三十八条及び第百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四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の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不利益取扱いの禁止)**

**第百七十条**　刑事施設の職員は、被収容者が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者に対し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 第十四節　釈放

**(受刑者の釈放)**

**第百七十一条**　受刑者の釈放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内に、できる限り速やかに行う。

一　釈放すべき日があらかじめ定められている場合　その日の午前中

二　不定期刑の終了による場合　更生保護法（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八号）第四十四条第二項の通知が刑事施設に到達した日の翌日の午前中

三　政令で行われる恩赦による場合であって、当該恩赦に係る政令の規定の公布の日が釈放すべき日となる場合　その日のうち

四　前三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釈放の根拠となる文書が刑事施設に到達した時から十時間以内

**(被勾留者の釈放)**

**第百七十二条**　被勾留者（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釈放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一　被告人の勾留の期間が満了したこと。

二　刑事訴訟法第三百四十五条の規定により勾留状が効力を失ったこと（被勾留者が公判廷にある場合に限る。）。

三　検察官の釈放の指揮又は通知を受けたこと。

**(その他の被収容者の釈放)**

**第百七十三条**　前二条の規定によるもののほか、被収容者の釈放は、他の法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傷病による滞留)**

**第百七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は、釈放すべき被収容者が刑事施設内において医療を受けている場合において、釈放によってその生命に危険が及び、又はその健康に回復し難い重大な障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者が刑事施設に一時とどま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とどまる者の処遇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各種被収容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帰住旅費等の支給)**

**第百七十五条**　釈放される被収容者に対しては、その帰住を助けるため必要な旅費又は衣類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 第十五節　死亡

**(死亡の通知)**

**第百七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死亡の原因及び日時並びに交付すべき遺留物、支給すべき作業報奨金に相当する金額若しくは死亡手当金又は発受禁止信書等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速や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死体に関する措置)**

**第百七十七条**　被収容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死体の埋葬又は火葬を行う者がないときは、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四十八号）第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埋葬又は火葬は、刑事施設の長が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被収容者の死体に関する措置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 第十六節　死刑の執行

(死刑の執行)

**第百七十八条**　死刑は、刑事施設内の刑場において執行する。

2　日曜日、土曜日、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七十八号）に規定する休日、一月二日、一月三日及び十二月二十九日から十二月三十一日までの日には、死刑を執行しない。

(解縄)

**第百七十九条**　死刑を執行するときは、絞首された者の死亡を確認してから五分を経過した後に絞縄を解くものとする。

# 第三章　留置施設における被留置者の処遇

## 第一節　留置の開始

(留置開始時の告知)

**第百八十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に対し、その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被留置者がその地位を異にするに至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一　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自弁に関する事項

二　第百九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管私物その他の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

三　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事項

四　宗教上の行為に関する事項

五　書籍等の閲覧に関する事項

六　第二百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遵守事項

七　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

八　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措置、審査庁及び審査の申請期間その他の審査の申請に関する事項

九　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行為、申告先及び申告期間その他の同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関する事項

十　苦情の申出に関する事項

2　前項の規定による告知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行う。

(識別のための身体検査)

**第百八十一条**　留置担当官は、被留置者について、その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その者の識別のため必要な限度で、その身体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後必要が生じ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女子の被留置者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う場合には、女子の留置担当官が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女子の留置担当官がそ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男子の留置担当官が留置業務管理者の指名する女子の職員を指揮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第二節　処遇の態様等

(処遇の態様)

**第百八十二条**　被留置者の処遇（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処遇を

除く。）は、居室（被留置者が主として休息及び就寝のため使用する場所として留置業務管理者が指定する室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第二百十二条において同じ。）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未決拘禁者（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は、罪証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り、居室において単独の留置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未決拘禁者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でなければ、居室外においても、相互に接触させてはならない。

**(留置施設における矯正処遇)**

**第百八十三条**　留置施設においては、受刑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被留置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被留置受刑者」という。）について、矯正処遇は行わない。

## 第三節　起居動作の時間帯等

**(起居動作の時間帯)**

**第百八十四条**　留置業務管理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を定め、これを被留置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活動の援助)**

**第百八十五条**　留置業務管理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留置者に対し、知的、教育的及び娯楽的活動その他の活動について、援助を与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四節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物品の貸与等)**

**第百八十六条**　被留置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書籍等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留置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必要なもの（第百八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

一　衣類及び寝具

二　食事及び湯茶

三　日用品、筆記具その他の物品

2　被留置者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に応じ、留置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第百八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嗜好品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自弁の物品の使用等)**

**第百八十七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物品（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第百九十条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並びに被留置受刑者について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衣類

二　食料品及び飲料

三　嗜好品

四　日用品、文房具その他の留置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

**(補正器具等の自弁等)**

**第百八十八条**　被留置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自弁のものを使用させるものとする。

一　眼鏡その他の補正器具

二　信書を発するのに必要な封筒その他の物品

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物品

2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被留置者が自弁のもの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であっ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これ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ものとする。

**(物品の貸与等の基準)**

**第百八十九条**　第百八十六条又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貸与し、又は支給する物品は、被留置者の健康を保持するに足り、かつ、国民生活の実情等を勘案し、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に照らして、適正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反則行為があった場合の自弁の物品に関する措置)**

**第百九十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行為（第二百八条第一項において「反則行為」という。）を行った場合にお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第百八十七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三日を超えない期間に限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一　犯罪行為

二　他人に対する粗野若しくは乱暴な言動又は他人に対し迷惑を及ぼす行為

三　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行為

四　留置施設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

五　留置施設内の衛生を害する行為

2　第百五十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百五十三条、第百五十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百五十五条並びに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被留置者に対する前項の措置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五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とあるのは「留置施設」と、第百五十三条中「刑事施設の規律」とあるのは「留置施設の規律」と、「国庫」とあるのは「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と、第百五十四条第二項中「刑務官」とあるのは「留置担当官」と、同条第三項中「第三十四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百八十一条第二項」と、第百五十五条第一項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刑事施設の職員」とあるのは「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措置は、いやしくも都道府県警察がする捜査の目的のためにこれを用いてはならない。

## 第五節　金品の取扱い

**(金品の検査)**

**第百九十一条**　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は、次に掲げる金品について、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被留置者が留置される際に所持する現金及び物品

二　被留置者が留置中に取得した現金及び物品（信書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同号に掲げる現金及び物品以外のもの（留置業務管理者から支給された物品を除く。）

三　被留置者に交付するため当該被留置者以外の者が留置施設に持参し、又は送付した現金及び物品

**(留置時の所持物品等の処分)**

**第百九十二条**　留置業務管理者は、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被留置者に対し、その物品について、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保管に不便なものであるとき。

二　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三　危険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2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留置業務管理者が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差入物の引取り等)**

**第百九十三条**　留置業務管理者は、第百九十一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の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被留置者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二　交付の相手方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三　交付の相手方が被留置受刑者であり、かつ、差入人が親族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被留置受刑者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そ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四　差入人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ものであるとき。

五　自弁物品等以外の物品であるとき。

六　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物品であるとき。

2　第百九十一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前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現金又は物品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差入人がその現金又は物品の引取りをしない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は、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に帰属する。

4　第二項に規定する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六号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期間内でも、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売却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百九十一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五号又は第六号に該当するもの（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若しくはその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又は差入

人がその引取りを拒んだ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に対し、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6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留置業務管理者が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7　第百九十一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について、被留置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場合には、留置業務管理者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物品の引渡し及び領置)**

**第百九十四条**　次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被留置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は、被留置者に引き渡す。

一　第百九十一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第百九十二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二　第百九十一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被留置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物品を除く。）

2　次に掲げる金品は、留置業務管理者が領置する。

一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被留置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以外のもの

二　第百九十一条各号に掲げる現金であって、前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保管私物等)**

**第百九十五条**　留置業務管理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管私物（被留置者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十八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を含む。）及び被留置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保管方法について、留置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の保管私物（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次条において「保管総量」という。）が保管限度量（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被留置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留置業務管理者が定める量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又は被留置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次条において「領置総量」という。）が領置限度量（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被留置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留置業務管理者が定める量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は、当該被留置者に対し、その超過量に相当する量の物品について、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物品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第四十八条第四項の規定は被留置者の保管私物について、同条第五項の規定は被留置者に係る領置物品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領置金の使用)**

**第百九十六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自弁物品等を購入し、又は留置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上自ら負担すべき費用に充てるため、領置されている現金を使用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必要な金額の現金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自弁物品等を購入するための現金の使用の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購入により、保管総量が保管限度量を超え、又は領置総量が領置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

二 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購入する自弁物品等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とき。

**(保管私物又は領置金品の交付)**

**第百九十七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保管私物又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二百二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三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他の者（その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除く。）への交付（信書の発信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申請した場合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交付（その相手方が親族であるものを除く。第三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三 被留置者が被留置受刑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交付により、そ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百九十八条** 第五十一条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差入れ等に関する制限について、第五十二条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領置金品の引渡しについて、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及び第五十五条の規定は被留置者の遺留物（留置施設に遺留した金品をいう。第二百三十九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一条中「この節」とあるのは「次章第五節」と、同条及び第五十五条第一項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第五十一条及び第五十二条中「被収容者」とあるのは「被留置者」と、第五十一条中「刑事施設の管理運営」とあるのは「留置施設の管理運営」と、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四条第一項及び第五十五条第三項中「国庫」とあるのは「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と、第五十三条第二項及び第五十五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第五十四条第一項第二号中「第八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十五条第二項」と、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第百七十六条」とあるのは「第二百三十九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六節 保健衛生及び医療

**(保健衛生及び医療の原則)**

**第百九十九条** 留置施設においては、被留置者の心身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被留置者の健康及び留置施設内の衛生を保持するため、社会一般の保健衛生及び医療の水準に照らし適切な保健衛生上及び医療上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健康診断等)**

**第二百条**　留置業務管理者は、留置担当官に、被留置者から、その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疾病、外傷等の有無その他の健康状態につき事情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に対し、おおむね一月につき二回、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による健康診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留置施設における保健衛生上必要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3　被留置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健康診断の実施のため必要な限度内における採血、エックス線撮影その他の医学的処置を拒むことはできない。

**(診療等)**

**第二百一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速やかに、当該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等による診療を行い、その他必要な医療上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生命に危険が及び、又は他人にその疾病を感染させ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その者の意思に反しない場合に限る。

一　負傷し、若しく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とき、又はこれらの疑いがあるとき。

二　飲食物を摂取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生命に危険が及ぶおそれがあるとき。

2　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診療を行う場合において、被留置者を病院又は診療所に通院させ、やむを得ないときは被留置者を病院又は診療所に入院させることができる。

**(指名医による診療)**

**第二百二条**　留置業務管理者は、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被留置者が、当該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等以外の医師等を指名して、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及び程度、留置施設に留置される前にその医師等による診療を受けていたこと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その被留置者の医療上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留置施設内又は留置業務管理者が適当と認める病院若しくは診療所において、自弁により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場合において、同項の診療を行う医師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指名医」という。）の診療方法を確認するため、又はその後にその被留置者に対して診療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をしてその診療に立ち会わせ、若しくはその診療に関して指名医に質問させ、又は診療録の写しその他のその診療に関する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指名医は、その診療に際し、留置業務管理者が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留置業務管理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名医が、第二項の規定により留置業務管理者が行う措置に従わないとき、前項の規定により留置業務管理者が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いとき、その他その診療を継続することが不適当であるときは、これを中止し、以後、その指名医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調髪及びひげそり)**

**第二百三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調髪又はひげそりを行い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四条**　第五十七条から第五十九条までの規定は被留置者について、第六十四条及び第六十五条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被留置者に対する措置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七条、第五十九条及び第六十四条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第五十七条ただし書及び第五十九条中「刑事施設」とあるのは「留置施設」と、第六十四条中「刑事施設内」とあるのは「留置施設内」と、「第六十一条」とあるのは「第二百条第二項及び第三項」と、「第六十二条」とあるのは「第二百一条」と、第六十五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外」とあるのは「留置施設の外」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七節　宗教上の行為

**第二百五条**　被留置者が一人で行う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行為は、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第八節　書籍等の閲覧

**(自弁の書籍等の閲覧)**

**第二百六条**　被留置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は、この節の規定による場合のほか、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

**第二百七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被留置者が被留置受刑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禁止すべき事由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自弁の書籍等の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被留置者が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

**(反則行為があった場合の自弁の書籍等に関する措置)**

**第二百八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反則行為を行った場合にお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自弁の書籍等（被告人若しくは被疑者としての権利の保護又は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に必要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三日を超えない期間に限り、その閲覧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2　第百九十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被留置者に対する前項の措置について準用する。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九条**　第七十一条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新聞紙に関する制限について、第七十二条の規定は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の付与等の措置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十一条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同条及び第七十二条第一項中「被収容者」とあるのは「被留置者」と、第七十一条中「刑事施設の管理運営」とあるのは「留置施設の管理運営」と、第七十二条第二項中「第三十九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百八十五条」と、「刑事施設に」とあるのは「留置施設に」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九節　規律及び秩序の維持

**(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

**第二百十条**　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は、適正に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執る措置は、被留置者の留置を確保し、並びにその処遇のための適切な環境及びその安全かつ平穏な共同生活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遵守事項等)**

**第二百十一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遵守すべき事項（次項において「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る。

2　遵守事項は、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犯罪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二　他人に対し、粗野若しくは乱暴な言動をし、又は迷惑を及ぼす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三　自身を傷つけ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四　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五　自己又は他の被留置者の留置の確保を妨げ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六　留置施設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七　留置施設内の衛生又は風紀を害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八　金品について、不正な使用、所持、授受その他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事項

十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た遵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を企て、あおり、唆し、又は援助してはならないこと。

3　前二項のほか、留置業務管理者又はその指定する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留置者に対し、その生活及び行動について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身体の検査等)**

**第二百十二条**　留置担当官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被留置者について、そ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を検査し、並びにその所持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八十一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女子の被留置者の身体及び着衣の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3　留置担当官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留置施設内において、被留置者以外の者（弁護人等を除く。）の着衣及び携帯品を検査し、並びにその者の携帯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検査は、文書図画の内容の検査に及んではならない。

**(捕縄、手錠、拘束衣及び防声具の使用)**

**第二百十三条**　留置担当官は、被留置者を護送する場合又は被留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捕縄又は手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逃走すること。

二　自身を傷つけ、又は他人に危害を加えること。

三　留置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こと。

2　留置担当官は、被留置者が自身を傷つけ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防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の命令により、拘束衣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捕縄、手錠又は防声具と同時に使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保護室が設置されていない留置施設においては、留置担当官は、被留置者が留置担当官の制止に従わず大声を発し続けて、留置施設内の平穏な生活を乱す場合において、他にこれを抑止する手段がない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の命令により、防声具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被留置者が防声具を取り外し、又は損壊することを防ぐ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使用と同時に捕縄又は手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留置業務管理者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は、留置担当官は、その命令を待たないで、拘束衣又は防声具（前項後段の規定により使用する捕縄又は手錠を含む。）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留置業務管理者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拘束衣及び防声具の使用の期間は、三時間とする。ただし、拘束衣の使用については、留置業務管理者は、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通じて十二時間を超えない範囲内で、三時間ごとにその期間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6　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拘束衣又は防声具の使用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使用を中止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7　被留置者に拘束衣若しくは防声具を使用し、又は拘束衣の使用の期間を更新した場合には、留置業務管理者は、速やかに、その被留置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当該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8　捕縄、手錠、拘束衣及び防声具の制式は、内閣府令で定める。

**(保護室への収容)**

**第二百十四条**　留置担当官は、被留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留置業務管理者の命令により、その者を保護室に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自身を傷つ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

イ　留置担当官の制止に従わず、大声又は騒音を発するとき。

ロ　他人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とき。

ハ　留置施設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し、又は汚損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第七十九条第二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被留置者の保護室への収容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同条第二項中「刑務官」とあるのは「留置担当官」と、同条第五項中「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とあるのは「当該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と、同条第六項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内閣府令」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災害時の避難及び解放)**

**第二百十五条**　留置業務管理者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留置施設内において避難の方法がない

ときは、被留置者を適当な場所に護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被留置者を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者を留置施設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留置施設の外にある被留置者を避難させるため適当な場所に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は、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留置施設又は留置業務管理者が指定した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節　外部交通

### 第一款　面会

**(面会の相手方)**

**第二百十六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に対し、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二百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被留置受刑者の面会の相手方)**

**第二百十七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受刑者に対し、次に掲げる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二百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条ただし書の規定を準用する。

一　被留置受刑者の親族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被留置受刑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することが必要な者

三　被留置受刑者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被留置受刑者の釈放後にこれを雇用しようとする者その他の面会により被留置受刑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2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受刑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との交友関係の維持その他面会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面会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じ、又はその被留置受刑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条ただし書の規定を準用する。

**(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の立会い等)**

**第二百十八条**　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の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以外の被留置者の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留置業務管理者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留置者の次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未決拘禁者につ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をさせてはならない。

一　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二　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第二百十九条**　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弁護人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止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に対し面会の場所からの退出を命じ、その他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とき。

イ　次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制限に違反する行為

ロ　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

二　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イ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が理解できないもの

ロ　犯罪の実行を共謀し、あおり、又は唆すもの

ハ　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三　未決拘禁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四　被留置受刑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イ　被留置受刑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ロ　特定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許された面会において、そ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な範囲を明らかに逸脱するもの

2　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 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に関する制限)**

**第二百二十条**　被留置者の弁護人等との面会の日及び時間帯は、日曜日その他政令で定める日以外の日の留置施設の執務時間内とする。

2　前項の面会の相手方の人数は、三人以内とする。

3　留置業務管理者は、弁護人等から前二項の定めによらない面会の申出がある場合においても、留置施設の管理運営上支障があるとき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4　留置業務管理者は、第一項の面会に関し、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場所につ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と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に関し、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相手方の人数、面会の場所、日及び時間帯、面会の時間及び回数その他面会の態様につ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の回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回数は、一日につき一回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 第二款　信書の発受

**(発受を許す信書)**

**第二百二十一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に対し、この款又は第二百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書の発受が許さ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検査)**

**第二百二十二条**　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拘禁者以外の被留置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二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ハ及び第二号ロ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未決拘禁者につ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者から受ける信書

イ　弁護人等

ロ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

ハ　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

二　未決拘禁者以外の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者に対して発する信書

イ　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

ロ　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信書の発受の禁止)**

**第二百二十三条**　留置業務管理者は、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被留置受刑者が信書を発受すること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し、又は被留置受刑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者（被留置受刑者の親族を除く。）については、被留置受刑者がそ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被留置受刑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信書を発受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二百二十四条**　留置業務管理者は、第二百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検査の結果、被留置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過程にお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一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が理解できない内容のものであるとき。

二　発受によって、刑罰法令に触れることとなり、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発受によって、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四　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者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者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五　受信者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六　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発受によっ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七　被留置受刑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発受によって、そ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留置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被留置者が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被留置者に係る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士の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その発受の差止め又はその事項に係る部分の削除若しくは抹消は、その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信書に関する制限)**

**第二百二十五条**　留置業務管理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留置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要領、その発信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被留置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ものを除く。）の通数並びに被留置者の信書の発受の方法について、留置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被留置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通数は、一日につき一通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発受を禁止した信書等の取扱い)**

**第二百二十六条**　留置業務管理者は、第二百二十三条、第二百二十四条又は第二百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信書の発受を禁止し、又は差し止めた場合にはその信書を、第二百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一部を削除した場合にはその削除した部分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第二百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記述の一部を抹消する場合には、その抹消する部分の複製を作成し、これ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3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の釈放の際、前二項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信書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複製（以下この章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という。）をその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4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内閣府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をいう。第二百三十九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発受禁止信書等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これを引き渡さないものとする。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しにより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一　釈放された被留置者が、釈放後に、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二　被留置者が、第百九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6　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並びに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被留置者に係る発受禁止信書等（前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四条第一項及び第五十五条第三項中「国庫」とあるのは「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と、第五十四条第一項第二号中「第八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十五条第二項」と、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第百七十六条」とあるのは「第二百三十九条」と、同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の申請」とあるのは「第二百二十六条第四項の申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7　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した発受禁止信書等は、被留置者の釈放若しくは死亡の日又は被留置者が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日に、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に帰属する。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二十七条**　第百三十一条の規定は被留置者の信書について、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被留置者の文書図画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三十一条中「国庫」とあるのは「その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款　外国語による面会等

**第二百二十八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面会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発言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通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又はその信書の発受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その他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信書の発受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信書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被留置者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面会又は信書の発受を許さない。

## 第十一節　不服申立て

### 第一款　審査の申請及び再審査の申請

**(審査の申請)**

**第二百二十九条**　次に掲げ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警察本部長に対し、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百八十七条又は第百九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さない処分

二　第百九十条第二項（第二百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五十三条の規定による物を都道府県に帰属させる処分

三　第百九十六条の規定による領置されている現金の使用又は第百九十七条の規定による保管私物若しく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の交付を許さない処分

四　第二百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処分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診療の中止

五　第二百五条に規定する宗教上の行為の禁止又は制限

六　第二百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条第一項の規定又は第二百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書籍等の閲覧の禁止又は制限

七　第二百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八　第二百二十三条、第二百二十四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又は第二百二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三条の規定による信書の発受又は文書図画の交付の禁止、差止め又は制限

九　第二百二十六条第五項前段の規定による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しない処分（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に係るものに限る。）

十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2　前項の規定による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審査の申請」という。）は、措置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並びに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警察本部長」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同法第四十二条第二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再審査の申請）**

**第二百三十条**　審査の申請の裁決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公安委員会に対し、再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再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再審査の申請」という。）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一項、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五十五条の規定は、再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公安委員会」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

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同法第四十二条第三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二款　事実の申告

**(警察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二百三十一条**　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による行為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があっ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警察本部長に対し、その事実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身体に対する違法な有形力の行使

二　違法又は不当な捕縄、手錠、拘束衣又は防声具の使用

三　違法又は不当な保護室への収容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その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並びに第四十一条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警察本部長」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六十四条第四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と、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公安委員会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二百三十二条**　被留置者は、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内容に不服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公安委員会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同項の通知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公安委員会」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六十四条第四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三款　苦情の申出

**(警察本部長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三十三条**　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書面

で、警察本部長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及び第百六十六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警察本部長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三十四条**　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第十八条の規定により実地監査を行う監査官（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監査官」という。）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六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刑事施設の職員」とあるのは、「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留置業務管理者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三十五条**　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六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六十八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留置業務管理者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四款　雑則

**(秘密申立て)**

**第二百三十六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審査の申請等（審査の申請、再審査の申請又は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いう。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をし、又は警察本部長若しくは監査官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に当たり、その内容を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に秘密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二百二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の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不利益取扱いの禁止)**

**第二百三十七条**　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は、被留置者が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者に対し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 第十二節　釈放

**第二百三十八条**　第百七十一条から第百七十三条までの規定は被留置者の釈放について、第百七十五条の規定は釈放される被留置者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七十一条第二号及び第四号中「刑事施設」とあるのは、「留置施設」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十三節　死亡

**第二百三十九条**　留置業務管理者は、被留置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死亡の原因及び日時並びに交付すべき遺留物又は発受禁止信書等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速や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四節　法務大臣との協議

**第二百四十条**　内閣総理大臣は、被勾留者及び受刑者の処遇の斉一を図るため、被勾留者である被留置者及び被留置受刑者の処遇に関し内閣府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に当たっては、法務大臣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 第四章　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海上保安被留置者の処遇

### 第一節　留置の開始

**(留置開始時の告知)**

**第二百四十一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海上保安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自弁に関する事項

二　第二百五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管私物その他の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

三　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事項

四　宗教上の行為に関する事項

五　書籍等の閲覧に関する事項

六　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遵守事項

七　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

八　審査の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措置、審査庁及び審査の申請期間その他の審査の申請に関する事項

九　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行為、申告先及び申告期間その他の同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関する事項

十　苦情の申出に関する事項

2　前項の規定による告知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行う。

**(識別のための身体検査)**

**第二百四十二条**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その者の識別のため必要な限度で、その身体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後必要が生じ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女子の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う場合には、女子の海上保安留置担当官が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女子の海上保安留置担当官がそ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男子の海上保安留置担当官が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指名する女子の職員を指揮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 第二節　処遇の態様

**第二百四十三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の処遇（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処遇を除く。）は、居室（海上保安被留置者が主として休息及び就寝のため使用する場所として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指定する室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第二百六十四条において同じ。）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未決拘禁者（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は、罪証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り、居室において単独の留置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未決拘禁者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でなければ、居室外においても、相互に接触させてはならない。

## 第三節 起居動作の時間帯

**第二百四十四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を定め、これを海上保安被留置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 第四節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第二百四十五条** 第百八十六条から第百八十九条まで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する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自弁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八十六条第二項、第百八十七条及び第百八十八条第一項第三号中「内閣府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第百八十七条中「留置業務管理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九十条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並びに被留置受刑者について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とあるのは「を除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五節 金品の取扱い

**(金品の検査)**

**第二百四十六条**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次に掲げる金品について、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一 海上保安被留置者が留置される際に所持する現金及び物品

二 海上保安被留置者が留置中に取得した現金及び物品（信書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同号に掲げる現金及び物品以外のもの（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から支給された物品を除く。）

三 海上保安被留置者に交付するため当該海上保安被留置者以外の者が海上保安留置施設に持参し、又は送付した現金及び物品

**(留置時の所持物品等の処分)**

**第二百四十七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その物品について、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保管に不便なものであるとき。

二 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三 危険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2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差入物の引取り等)**

**第二百四十八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第二百四十六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の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海上保安被留置者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二　交付の相手方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三　差入人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ものであるとき。

四　自弁物品等以外の物品であるとき。

五　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物品であるとき。

2　第二百四十六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現金又は物品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差入人がその現金又は物品の引取りをしない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は、国庫に帰属する。

4　第二項に規定する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五号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期間内でも、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売却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二百四十六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に該当するもの（同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若しくはその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又は差入人がその引取りを拒んだとき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6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7　第二百四十六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であって、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について、海上保安被留置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場合に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物品の引渡し及び領置)**

**第二百四十九条**　次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被留置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引き渡す。

一　第二百四十六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第二百四十七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二　第二百四十六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海上保安被留置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物品を除く。）

2　次に掲げる金品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領置する。

一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被留置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以外のもの

二　第二百四十六条各号に掲げる現金であって、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保管私物等)**

**第二百五十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管私物（海上保安被留置者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十八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渡しを受けて保管する物品を含む。）及び海上保安被留置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保管方法について、海上保安留置施設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保管私物（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次条において「保管総量」という。）が保管限度量（海上保安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海上保安被留置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定める量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又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次条において「領置総量」という。）が領置限度量（海上保安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海上保安被留置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定める量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は、当該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その超過量に相当する量の物品について、親族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物品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３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第四十八条第四項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保管私物について、同条第五項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領置物品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領置金の使用)**

**第二百五十一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自弁物品等を購入し、又は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上自ら負担すべき費用に充てるため、領置されている現金を使用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必要な金額の現金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自弁物品等を購入するための現金の使用の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購入により、保管総量が保管限度量を超え、又は領置総量が領置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

二　海上保安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購入する自弁物品等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とき。

**(保管私物又は領置金品の交付)**

**第二百五十二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保管私物又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二百七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三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他の者（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除く。）への交付（信書の発信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申請した場合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交付（その相手方が親族であるものを除く。）により、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海上保安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五十三条**　第五十一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差入れ等に関する制限について、第五十二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領置金品の引渡しについて、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及び第五十五条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遺留物（海上保安留置施設に遺留した金品をいう。第二百八十五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一条中「この節」とあるのは「第四章第五節」と、同条及び第五十五条第一項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第五十一条及び第五十二条中「被収容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被留置者」と、第五十一条中「刑事施設の管理運営」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管理運営」と、第五十三条第二項及び第五十五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五十四条第一項第二号中「第八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六十三条第二項」と、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第百七十六条」とあるのは「第二百八十五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六節　保健衛生及び医療

**(保健衛生及び医療の原則)**

**第二百五十四条**　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いて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心身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海上保安被留置者の健康及び海上保安留置施設内の衛生を保持するため、社会一般の保健衛生及び医療の水準に照らし適切な保健衛生上及び医療上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運動)**

**第二百五十五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に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適切な運動を行う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刑事施設及び留置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五十六条**　第五十八条、第五十九条、第二百条第一項及び第二百一条から第二百三条まで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第六十四条及び第六十五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する措置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九条及び第六十四条中「法務省令」とあり、並びに第二百二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二百三条中「内閣府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第五十九条中「刑事施設」とあり、並びに第二百条第一項及び第二百二条第一項中「留置施設」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と、第六十四条中「刑事施設内」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内」と、「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又は第六十二条」とあるのは「第二百五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一条」と、第六十五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外」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外」と、第二百条第一項及び第二百一条から第二百三条までの規定中「留置業務管理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二百条第一項中「留置担当官」とあり、及び第二百二条第二項中「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七節　宗教上の行為

**第二百五十七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が一人で行う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行為は、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

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第八節　書籍等の閲覧

**(自弁の書籍等の閲覧)**

**第二百五十八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は、この節の規定による場合のほか、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

**第二百五十九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自弁の書籍等を閲覧する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海上保安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禁止すべき事由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自弁の書籍等の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海上保安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海上保安被留置者が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六十条**　第七十一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新聞紙に関する制限について、第七十二条第一項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の付与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十一条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同条及び第七十二条第一項中「被収容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被留置者」と、第七十一条中「刑事施設の管理運営」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管理運営」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九節　規律及び秩序の維持

**(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

**第二百六十一条**　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は、適正に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執る措置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留置を確保し、並びにその処遇のための適切な環境及びその安全かつ平穏な共同生活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遵守事項等)**

**第二百六十二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遵守すべき事項（次項において「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る。

2　遵守事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犯罪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二　他人に対し、粗野若しくは乱暴な言動をし、又は迷惑を及ぼす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三　自身を傷つけ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四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五　自己又は他の海上保安被留置者の留置の確保を妨げ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六　海上保安留置施設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七　海上保安留置施設内の衛生又は風紀を害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八　金品について、不正な使用、所持、授受その他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事項

十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た遵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を企て、あおり、唆し、又は援助してはならないこと。

3　前二項のほ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又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その生活及び行動について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災害時の避難及び解放)**

**第二百六十三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海上保安留置施設内において避難の方法がないときは、海上保安被留置者を適当な場所に護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海上保安被留置者を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その者を海上保安留置施設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海上保安留置施設の外にある海上保安被留置者を避難させるため適当な場所に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は、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海上保安留置施設又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指定した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

**(刑事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六十四条**　第七十五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よる海上保安被留置者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の検査並びに所持品の保管並びに海上保安被留置者以外の者の着衣及び携帯品の検査並びに携帯品の保管について、第七十八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よる捕縄、手錠及び拘束衣の使用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十五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七十八条第一項第三号中「刑事施設」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と、第七十五条第二項中「第三十四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四十二条第二項」と、第七十八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中「被収容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被留置者」と、同条第一項及び第七項中「法務省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同条第二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同項中「刑事施設の職員である医師」とあるのは「当該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が委嘱する医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十節　外部交通

### 第一款　面会

**(面会の相手方)**

**第二百六十五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二百七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海上保安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の立会い等)**

**第二百六十六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未決拘禁者の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

2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未決拘禁者以外の海上保安被留置者の面会（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海上保安被留置者の次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未決拘禁者につ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をさせてはならない。

一　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二　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第二百六十七条**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弁護人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止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海上保安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に対し面会の場所からの退出を命じ、その他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海上保安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とき。

イ　次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二十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制限に違反する行為

ロ　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

二　海上保安被留置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イ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海上保安留置担当官が理解できないもの

ロ　犯罪の実行を共謀し、あおり、又は唆すもの

ハ　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三　未決拘禁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2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留置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六十八条**　第二百二十条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及び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中「留置施設」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と、同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中「留置業務管理者」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中「内閣府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二款　信書の発受

**(発受を許す信書)**

**第二百六十九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この款又は第二百七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海上保安被留置者が未決拘禁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書の発受が許されない

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検査)**

**第二百七十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の理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未決拘禁者以外の海上保安被留置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二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ハ及び第二号ロ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未決拘禁者につい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海上保安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者から受ける信書

イ　弁護人等

ロ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

ハ　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

二　未決拘禁者以外の海上保安被留置者が次に掲げる者に対して発する信書

イ　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

ロ　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二百七十一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条の規定による検査の結果、海上保安被留置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過程にお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一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海上保安留置担当官が理解できない内容のものであるとき。

二　発受によって、刑罰法令に触れることとなり、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三　発受によって、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四　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者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者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五　受信者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六　未決拘禁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発受によって、罪証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海上保安被留置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

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海上保安被留置者が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士の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その発受の差止め又はその事項に係る部分の削除若しくは抹消は、その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発受を禁止した信書等の取扱い)**

**第二百七十二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条又は第二百七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信書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禁止した場合にはその信書を、前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一部を削除した場合にはその削除した部分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2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前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記述の一部を抹消する場合には、その抹消する部分の複製を作成し、これ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3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釈放の際、前二項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信書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複製（以下この章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という。）をその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4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をいう。第二百八十五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発受禁止信書等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により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これを引き渡さないものとする。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しにより海上保安留置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一　釈放された海上保安被留置者が、釈放後に、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二　海上保安被留置者が、第二百五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6　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四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並びに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発受禁止信書等（前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十四条第一項第二号中「第八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六十三条第二項」と、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第百七十六条」とあるのは「第二百八十五条」と、同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同条第三項中「第一項の申請」とあるのは「第二百七十二条第四項の申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7　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した発受禁止信書等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釈放若しくは死亡の日又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日に、国庫に帰属する。

**(刑事施設及び留置施設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百七十三条**　第百三十一条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信書について、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の文書図画について、第二百二十五条の規定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よる海上保安被留置者の信書に関する制限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三十一条及び第百三十三条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中「内閣府令」とあるのは「国土交通省令」と、「留置施設」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施設」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三款　外国語による面会等

**第二百七十四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又はその面会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面会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発言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通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海上保安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又はその信書の発受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その他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信書の発受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信書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海上保安被留置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海上保安被留置者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面会又は信書の発受を許さない。

## 第十一節　不服申立て

### 第一款　審査の申請及び再審査の申請

**(審査の申請)**

**第二百七十五条**　次に掲げ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の所在地（当該海上保安留置施設が船舶に置かれ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船舶の所属する管区海上保安本部又は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し、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二百四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八十七条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さない処分

二　第二百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領置されている現金の使用又は第二百五十二条の規定による保管私物若しくは領置されている金品の交付を許さない処分

三　第二百五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処分又は第二百五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診療の中止

四　第二百五十七条に規定する宗教上の行為の禁止又は制限

五　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又は第二百六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書籍等の閲覧の禁止又は制限

六　第二百五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七　第二百七十一条の規定又は第二百七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三条若しくは第二百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信書の発受又は文書図画の交付の差止め又は制限

八　第二百七十二条第五項前段の規定による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しない処分（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引渡しに係るものに限る。）

九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2　前項の規定による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審査の申請」という。）は、措置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

十四条第四項、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並びに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管区海上保安本部長」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同法第四十二条第三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再審査の申請)**

**第二百七十六条**　審査の申請の裁決に不服がある者は、書面で、海上保安庁長官に対し、再審査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再審査の申請（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再審査の申請」という。）は、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の告知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十五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六項、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七条まで、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四十一条第一項、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五十五条の規定は、再審査の申請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庁長官」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同法第三十四条第二項中「審査請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とあるのは「職権で」と、同法第四十二条第三項中「掲示し、かつ、その旨を官報その他の公報又は新聞紙に少なくとも一回掲載して」とあるのは「掲示し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二款　事実の申告

**(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二百七十七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よる行為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があっ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の所在地（当該海上保安留置施設が船舶に置かれ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船舶の所属する管区海上保安本部又は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し、その事実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身体に対する違法な有形力の行使

二　違法又は不当な捕縄、手錠又は拘束衣の使用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その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十九条、第

二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並びに第四十一条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管区海上保安本部長」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六十四条第四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と、同法第十八条第一項中「正本及び副本を処分庁又は」とあるのは「正本を」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事実の申告)**

**第二百七十八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内容に不服が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海上保安庁長官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実を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告は、同項の通知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並びに行政不服審査法第十四条第四項、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中「矯正管区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庁長官」と、第百六十条第二項中「刑事施設の長」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と、第百六十四条第四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 第三款　苦情の申出

**(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七十九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書面で、海上保安庁長官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及び第百六十六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八十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実地監査を行う監査官（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監査官」という。）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六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刑事施設の職員」とあるのは、「海上保安留置担当官」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二百八十一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は、自己に対する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処遇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五十七条第二項、第百六十六条第三項及び第百六十八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海上保安留置業務管

理者に対する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四款　雑則

**(秘密申立て)**

**第二百八十二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審査の申請等（審査の申請、再審査の申請又は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いう。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をし、又は海上保安庁長官若しくは監査官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に当たり、その内容を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秘密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二百七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の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不利益取扱いの禁止)**

**第二百八十三条**　海上保安留置担当官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審査の申請等又は苦情の申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者に対し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 第十二節　釈放

**第二百八十四条**　海上保安被留置者の釈放は、他の法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のほか、政令で定め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2　第百七十五条の規定は、釈放される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三節　死亡

**第二百八十五条**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は、海上保安被留置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死亡の原因及び日時並びに交付すべき遺留物又は発受禁止信書等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速や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三編　補則

### 第一章　代替収容の場合における刑事訴訟法等の適用

**第二百八十六条**　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留置施設に留置される者については、留置施設を刑事施設と、留置業務管理者を刑事施設の長と、留置担当官を刑事施設職員とみなして、刑事訴訟法第六十四条第一項、第六十五条第三項、第七十条第二項、第七十三条第二項、第七十八条、第八十条後段、第九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三百六十六条、第三百六十七条並びに第四百八十一条第二項、更生保護法第十三条（同法第二十二条、第二十五条第三項、第三十六条第三項(同法第三十九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六十三条第十項及び第七十三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七条第三項、第三十三条、第三十五条第二項、第三十六条第二項（同法第三十七条第三項（同法第四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三十九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九条第四項、第四十四条、第五十四条第二項、第五十五条第二項、第八十二条、第八十六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九十条第二項並びに第九十三条並びに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百二条第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

## 第二章　労役場及び監置場

**(労役場及び監置場の附置等)**

**第二百八十七条**　労役場及び監置場は、それぞれ、法務大臣が指定する刑事施設に附置する。

2　監置の裁判の執行を受ける者は、最寄りの地に監置場がないとき、又は最寄りの監置場に留置の余力がないときは、刑事施設内の特に区別した場所に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

3　労役場及び監置場については、第五条、第六条、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4　刑事施設視察委員会は、刑事施設に附置された労役場及び監置場の運営に関しても、第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事務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九条及び第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労役場留置者の処遇)**

**第二百八十八条**　労役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以下「労役場留置者」という。）の処遇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前編第二章中の懲役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被監置者の処遇)**

**第二百八十九条**　監置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以下「監置場留置者」という。）の処遇については、前編第二章（第四十一条第二項並びに第十一節第二款第六目及び第三款第六目を除く。）中の各種被収容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2　監置場留置者の自弁の物品の使用及び摂取については、第四十一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とあるのは「（衣類、日用品及び文房具並びに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と、同条第二項中「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及び寝具」とあるのは「衣類、日用品及び文房具（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監置場留置者（次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前編第二章第十一節第二款第一目及び第三款第一目の規定を準用する。

4　監置場留置者（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勾留中に監置の裁判の執行を受けたものに限る。）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前編第二章第十一節第二款第三目及び第三款第三目の規定を準用する。

5　監置の裁判の執行のため第二百八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第四十一条第二項並びに前編第二章第十一節第二款第六目及び第三款第六目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6　監置の裁判の執行のため第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百八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次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前編第三章第十節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同節中の被留置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7　監置の裁判の執行のため第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百八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勾留中に監置の裁判の執行を受けたものに限る。）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前編第三章第十節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同節中の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被留置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 第三章　司法警察職員

**第二百九十条**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における犯罪（労役場及び監置場における犯罪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司法警察員としての職務を行う。

2　刑事施設の職員（刑事施設の長を除く。）であって、刑事施設の長がその刑事施設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事正と協議をして指名したものは、刑事施設における犯罪について、法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司法警察職員としての職務を行う。

## 第四章　条約の効力

**第二百九十一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条約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による。

## 第五章　罰則

**第二百九十二条**　第二十一条第五項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百九十三条**　第八十三条第二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被収容者（刑法第九十七条に規定する者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労役場留置者又は監置場留置者が、第八十三条第三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刑事施設又は指定された場所に出頭しない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も、前項と同様とする。

一　外部通勤作業の場合において、そのための通勤の日を過ぎて刑事施設に帰着しないとき。

二　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外泊の場合において、その外出の日又は外泊の期間の末日を過ぎて刑事施設に帰着しないとき。

3　第二百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被留置者（刑法第九十七条に規定する者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が、第二百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留置施設又は指定された場所に出頭しないとき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 附　則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三十三条の規定、附則第三十八条中国際受刑者移送法第二十一条の改正規定（「、犯罪者予防更生法」を「並びに犯罪者予防更生法」に改め、「並びに構造改革特別区域法（平成十四年法律第百八十九号）第十一条及び第十一条の二」を削る部分に限る。）及び附則第三十九条の規定は、構造改革特別区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七号）の施行の日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から施行する。

**（巡閲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の属する年に行われた附則第十五条の規定による

改正前の監獄法（明治四十一年法律第二十八号。以下「旧監獄法」という。）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巡閲は、第五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による実地監査とみなす。

**(収容開始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第三条**　第十五条第一項前段及び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前段中「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開始に際し」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監獄法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ている受刑者の金品は、第二十一条第二号に掲げる金品とみなして、第二十四条の規定を適用する。

**(遺留物の措置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五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存する死亡者及び逃走者の遺留物（受刑者及び労役場留置の言渡しを受けた者に係るものに限る。）の措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作業報奨金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に、旧監獄法第二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未支給の作業賞与金があるときは、その額を報奨金計算額に加算する。

2　第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受刑者が施行日前に行った作業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手当金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七条**　第七十九条（第五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施行日前に受刑者が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場合において、施行日以後に手当金の支給事由が生じたときについても、適用する。

2　受刑者について施行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旧監獄法第二十八条第一項（旧監獄法第二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未支給の手当金（死亡に係るものを除く。）の支給は、旧監獄法第二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行うものとする。

**(発受を禁止した信書等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八条**　旧監獄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受を許されなかった受刑者に係る信書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監獄法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保管されているものは、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管されている信書とみなす。

**(懲罰に関する経過措置)**

**第九条**　第百五条から第百十一条までの規定は、施行日前に受刑者がした旧監獄法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懲罰を科されるべき行為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懲罰が科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六条第二項中「同項第五号」とあるのは「同項第四号及び第五号」と、第百七条第一項中「次に」とあるのは「第一号、第二号及び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とする。

2　施行日前に受刑者に科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に限り、当該各号に定める懲罰とみなして、施行日以後も執行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執行の期間は、第一号に掲げる懲罰にあっては三十日から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第二号に掲げる懲罰にあっては六十日（懲罰を科した時に二十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三十日）から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を超えてはならない。

一　旧監獄法第六十条第一項第四号の懲罰（同項第十一号の懲罰に併科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って、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が三十日に満たないもの　第百六条第一項第四号の懲罰

二　旧監獄法第六十条第一項第五号の懲罰　第百六条第一項第二号の懲罰

三　旧監獄法第六十条第一項第十一号の懲罰であって、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が六十日（懲罰を科した時に二十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三十日）に満たないもの　第百六条第一項第六号の懲罰

3　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第三号に掲げる懲罰の執行をする場合には、これに旧監獄法第六十条第一項第四号の懲罰が併科されていた場合を除き、第百七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停止してはならない。

**(審査の申請等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十条**　第二編第十二章第一節及び第四節の規定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執行する懲罰に係る不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十三条第一項中「措置の告知があった日」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事実の申告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一条**　第二編第十二章第二節の規定は、受刑者に対し施行日前にされた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情願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が施行日前に旧監獄法第七条の規定により行った情願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処理がされていないものは、法務大臣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第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った苦情の申出と、巡閲官吏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第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った苦情の申出とみなす。

**(労役場等への準用)**

**第十三条**　附則第二条の規定は、労役場及び監置場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第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八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監獄法第四条第一項」と、「第五条」とあるのは「第百四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四条**　施行日前にした行為並びに附則第十六条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検討)**

**第四十一条**　政府は、施行日から五年以内に、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附　則 (平成一八年六月八日法律第五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収容開始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以下「新法」という。）第三十三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つい

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前段中「その刑事施設における収容の開始に際し」とあるの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五十八号）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2　新法第百八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前段中「その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とあるの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3　新法第二百四十一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海上保安被留置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その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ける留置の開始に際し」とあるの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附則第十四条の規定による廃止前の刑事施設ニ於ケル刑事被告人ノ収容等ニ関スル法律（明治四十一年法律第二十八号。以下「旧収容等法」という。）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の金品は、新法第四十四条第二号に掲げる金品とみなして、新法第四十七条の規定を適用する。

2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収容等法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又は留置施設において保管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の金品（信書を除く。）は、新法第百九十一条第二号に掲げる金品とみなして、新法第百九十四条の規定を適用する。

3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いて保管されている海上保安被留置者の金品（信書を除く。）は、新法第二百四十六条第二号に掲げる金品とみなして、新法第二百四十九条の規定を適用する。

**(遺留物の措置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存する死亡者及び逃走者の遺留物（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係るものに限る。）の措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留置施設又は海上保安留置施設に存する死亡者及び逃走者の遺留物（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又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ものに限る。）の措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作業報奨金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五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つい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に、旧収容等法第二十七条第二項の作業賞与金で未支給のものがあるときは、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これ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手当金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新法第八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百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場合において、施行日以後に手当金の支給事由が生じたときについても、適用する。

2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ついて施行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旧収容等法第二十八条第一項（旧収容等法第二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手当金（死亡に係るものを除く。）で未支給のものの支給は、旧収容等法第二十八条第二項（旧収容等法第二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

かわらず、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行うものとする。

**(発受を禁止した信書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七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存する発受を許されなかった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係る信書は、新法第百三十六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又は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管されている信書とみなす。

2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留置施設に存する発受を許されなかった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に係る信書は、新法第二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管されている信書とみなす。

3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海上保安留置施設に存する発受を許されなかった海上保安被留置者に係る信書は、新法第二百七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管されている信書とみなす。

**(懲罰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八条**　新法第百五十条から第百五十六条までの規定は、次に掲げる行為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懲罰が科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新法第百五十一条第二項中「同項第五号」とあるのは「同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と、同条第四項中「及び第三号」とあるのは「から第四号まで」と、新法第百五十二条第一項中「次に」とあるのは「第二号及び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とする。

一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以下「旧法」という。）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適用される旧法第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懲罰を科されるべき行為

二　旧法第百三十七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適用される旧収容等法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懲罰を科されるべき行為

三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旧収容等法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懲罰を科されるべき行為

2　次に掲げる懲罰の執行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一　旧法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適用される旧法第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科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

二　旧法第百三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執行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

三　旧法第百三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執行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

3　旧法第百三十七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適用される旧収容等法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科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は、施行日以後も執行するものとする。

4　新法第百五十二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三号を除く。）、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百五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及び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執行する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八号の懲罰について準用する。

5　旧収容等法第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科され、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執行が終わっていない懲罰（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懲罰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懲罰を除く。）は、次に掲げるものに限り、施行日以後も執行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執行の期間は、第一号に掲げる懲罰にあっては三十日から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第四号に掲げる懲罰にあっては六十日（懲罰を科した時に二十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三十日）から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を除いた期間を超えてはならない。

一　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二号の懲罰であって、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が三十日に満たないもの
二　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四号の懲罰
三　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五号の懲罰
四　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八号の懲罰であって、施行日前に執行した期間が六十日（懲罰を科した時に二十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三十日）に満たないもの

6　新法第百五十二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三号を除く。）、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百五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及び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執行する旧収容等法第六十条第一項第八号の懲罰について準用する。

**(審査の申請等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九条**　新法第二編第二章第十三節第一款及び第四款の規定は、前条第三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執行される懲罰に係る不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新法第百五十八条第一項中「措置の告知があった日」とあるの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旧法第百三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執行された懲罰（前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懲罰を含む。）に係る不服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事実の申告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条**　新法第二編第二章第十三節第二款の規定は、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対し施行日前にされた刑事施設の職員によ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新法第二編第三章第十一節第二款の規定は、受刑者以外の被留置者に対し施行日前にされた留置業務に従事する職員によ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新法第二編第四章第十一節第二款の規定は、海上保安被留置者に対し施行日前にされた海上保安留置担当官によ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情願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一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が旧収容等法第七条の規定により行った情願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処理がされていないものは、法務大臣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新法第百六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った苦情の申出と、それ以外のものにあっては新法第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った苦情の申出とみなす。

**(監置場留置者への準用)**

**第十二条**　附則第二条第一項、第三条第一項、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六条、第七条第一項、第八条、第九条、第十条第一項及び前条の規定は、監置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附則第二条第一項中「第三十三条」とあるのは「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三十三条」と、附則第三条第一項、第六条第一項、第八条第一項、第四項及び第六項、第九条第一項、第十条第一項並びに前条中「新法」とあるのは「新法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と、附則第五条、第六条第二項、第八条第一項第三号、第五項及び第六項並びに前条中「旧収容等法」とあるのは「旧収容等法第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旧収容等法」と、附則第七条第一項中「第百三十六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又は第百四十四条」とあるのは「第二百八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又は新法第

二百八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百三十八条」と、附則第八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項第一号中「第百三十七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百四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第百三十七条第一項」と、同条第一項第二号、第二項第二号及び第三号並びに第三項並びに附則第九条第二項中「旧法」とあるのは「旧法第百四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法」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三条**　施行日前にした行為及び附則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附　則 (平成一九年五月一一日法律第三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規程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 (平成一九年六月一五日法律第八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5월 8일 시행령 제192호

최종개정 2008년 5월 25일 시행령 제168호

**(공고의 방법)**

**제1조**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에 적시하는 구분에 따라, 그 공고해야 할 사항을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14일간 게시한다.

1. 법 제46조 제2항[동 조 제7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5조 제2항[법 제132조 제6항(법 제136조(법 제145조(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8조(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4항(동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288조 및 제289조 제3항(동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 : 형사시설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
2. 법 제193조 제2항(동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및 법 제198조 및 제226조 제6항(법 제28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 유치시설이 있는 경시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위대 부대 또는 경찰서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
3. 법 제248조 제2항(동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및 법 제253조 및 제272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 해상보안 유치시설이 설치된 지방해상보안본부 또는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해상보안 유치시설이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소속하는 지방해상보안본부 또는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

**(면회가 제한되는 날)**

**제2조** ① 법 제118조 제1항[법 제119조(법 제289조 제4항(동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및 법 제145조(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그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 및 제26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은 토요일,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78호)」에 규정하는 휴일, 1월 2일, 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로 한다.

② 법 제220조 제1항(법 제288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시설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로 한다.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제3조** 법 제159조(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

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의 규정의 준용에 대한 기술적인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형사시설에 수용되거나 또는 형사시설에 속하여 설치된 노역장 또는 감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형사시설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일 때, 총대표를 호선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대 | 또는 재단일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 대리인 | 또는 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한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가 날인 또는 무인을 찍지아니하면, |
| 제18조 제1항 | 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처분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50호) 제159조(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녹취서 | 정본 |
| 제34조 제2항 |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심사청 | 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에서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자 | 상속인 |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심사신청의 재결에 관한 대체)**

**제4조** 법 제161조 제2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으로 한 경우의 제40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법무대신에 대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체)**

**제5조** ① 법 제162조 제3항(법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법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162조 제2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동 항 | 제162조 제2항 |
| 제160조 및 제161조 제1항 | 교정관구의 장 | 법무대신 |
| 제160조 제2항 | 형사시설의 장 | 형사시설의 장 또는 교정관구의 장 |

② 법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4조 제3항 | 처분(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심사의 신청에 관한 재결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형사시설에 수용되거나 또는 형사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노역장 또는 감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형사시설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인 때, 총대표를 호선 하는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때 | 또는 재단인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대리인 | 또는 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한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가 날인 또는 무인을 찍지아니하면 |
| 제34조 제2항 |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심사청 | 재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에서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사람 | 상속인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한 것인 경우의 제40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어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신고 서면의 기재사항)

**제6조** 법 제163조 제1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면에는 다음에 적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령, 형사시설의 명칭
2. 신고에 관한 사실
3. 신고에 관한 사실이 있었던 연월일
4. 형사시설의 장의 교시(敎示)의 유무 및 그 내용
5. 신고 연월일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 신고에 관한 대체)**

**제7조** ① 법 제163조 제3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163조 제2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의 준용에 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8조 제1항 | 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행위 |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 형사시설의 장 |
| 제18조 제1항 | 심사청이 아닌 행정청을 심사청 | 신고처가 아닌 행정성을 신고처 |
|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심사청에 | 신고처인 행정청에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3조 제3항(동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녹취서 | 정본 |
| 제21조 및 제36조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교정관구의 장에 의한 통지에 관한 대체)**

**제8조** ① 법 제164조 제3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법의 규정의 준용에 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61조 제1항 | 심사의 신청 | 제163조 제1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 |

② 법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41조 제2항 | 심사청은, 재심사청구 | 신고처인 행정청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5조 제1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 |
| | 재결서에 재심사청구 | 통지서에 해당 신고 |
| | 재심사청 및 재심사청구기간 | 신고처 및 신고기간 |

**(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제9조** 법 제165조 제1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면에는 제6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제10조** 법 제165조 제3항(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165조 제2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
| 제160조, 제16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교정관구의 장 | 법무대신 |
| 제160조 제2항 | 형사시설의 장 | 형사시설의 장 또는 교정관구의 장 |
| 제161조 제1항 | 재결 | 제165조 제3항(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② 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의 준용에 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21조, 제36조 및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5조 제3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 (경찰본부장에 대한 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제11조** ① 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29조 제2항 |

② 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유치시설이 설치된 경시청,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 또는 자위대 부대 또는 경찰서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인 때, 총대표를 호선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 | 또는 재단인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 대리인 | 또는 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하는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가 날인 또는 무인을 찍지 아니하면 |
| 제18조 제1항 | 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처분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녹취서 | 정본 |
| 제34조 제2항 |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심사청 | 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에서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른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사람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사람 | 상속인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한 경우의 제40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 (공안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체)

**제12조** ① 법 제2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30조 제2항 |

② 법 제2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행정불복심사법」규정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행정불복심사법」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4조 제3항 | 처분(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심사의 신청에 관한 재결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유치시설이 설치된 경시청,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 또는 자위대의 부대 본부 또는 경찰서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인 때, 총대표를 호선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 | 또는 재단인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 대리인 | 또는 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한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가 날인 또는 무인을 찍지 아니하면 |
| 제34조 제2항 | 제34조 제6항 | 재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에서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자 | 상속인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자가 한 경우의 제40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제13조** 법 제2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면에는 다음에 적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는 자의 성명 및 연령 및 유치시설이 설치된 경시청, 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 또는 자위대의 부대 본부 또는 경찰서의 명칭
2. 신고에 관한 사실
3. 신고에 관한 사실이 있었던 연월일
4. 유치업무관리자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5. 신고 연월일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신고에 관한 대체)**

**제14조** ① 법 제2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31조 제2항 |

| | | |
|---|---|---|
| 제161조 제1항 | 재결 | 제2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② 법 제2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8조 제1항 | 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행위 |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 처분청 | 유치업무관리자 |
| 제18조 제1항 | 심사청이 아닌 행정청을 심사청 | 신고처가 아닌 행정청을 신고처 |
|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심사청에 | 신고처인 행정처에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녹취서 | 정본 |
| 제21조, 제36조 및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2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 제41조 제2항 | 심사청은, 재심사청구 | 신고처인 행정청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
| | 재결을 | 동 법 제2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
| | 재결서에 재심사청구 | 통지서에 당해 신고 |
| | 재심사청 및 재심사청구기간 | 신고 및 신고기간 |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제15조** 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면에는 제13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적시하는 사항외에, 법 제 2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제16조** ① 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32조 제2항 |
| 제161조 제1항 | 재결 | 제23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② 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21조, 제36조 및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심사신청에 관한 대체)

**제17조** ① 법 제2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75조 제2항 |

② 법 제2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에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해상보안 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해상보안유치시설이 설치된 지방해상보안본부,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 또는 해상보안청 선박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인 때, 총대표를 호선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 | 또는 재단인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 대리인 | 또는 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한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가 날인 또는 무인을 찍지 아니하면 |
| 제18조 제1항 | 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처분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녹취서 | 정본 |
| 제34조 제2항 |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심사청 | 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에서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사람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사람 | 상속인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한 것인 경우의 제40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재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제18조** 법 ①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에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76조 제2항 |

② 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행정불복심사법」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행정불복심사법」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4조 제3항 | 처분(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 | 심사신청에 관한 재결 |
| 제15조 제1항 제1호 | 주소 | 주소(해상보안유치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해 해상보안 유치시설이 설치된 지방해상보안본부,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 또는 해상보안청 선박의 명칭) |
| 제15조 제2항 | 또는 재단인 때, 총대표를 호선한 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 | 또는 재단인 때 |
| | 또는 관리인, 총대표 또는대리인 | 또는 관리인 |
| 제15조 제4항 | , 총대표를 호선한 때에는 총대표, 대리인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날인하지 아니하면 | )이 날인 또는 무인하지 아니하면 |
| 제34조 제2항 |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심사청 | 재심사청 |
| 제34조 제6항 |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7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 |
| 제37조 제1항 | 상속인, 그 외의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목적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 | 상속인 |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속인, 그 외의 사람 | 상속인 |
| 제40조 제5항 | 경우에, 심사청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때에는 | 경우에는 |
| 제42조 제1항 | (당해 심사청구가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한 경우의 제4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결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인 및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에게 송달한다. |
| 제42조 제4항 | 참가인 및 처분청 | 처분청 |

###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 신고서면의 기재사항)

**제19조** 법 제2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면에는 다음에 적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는 자의 성명 및 연령, 해상보안 유치설이 설치된 지방해상보안본부, 지방해상보안본부의 사무소 또는 해상보안청의 선박의 명칭
2. 신고에 관한 사실
3. 신고에 관한 사실이 있었던 연월일

4.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5. 신고 연월일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제20조** ① 법 제27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77조 제2항 |
| 제161조 제1항 | 재결 | 제2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② 법 제27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행정불복심사법」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행정불복심사법」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8조 제1항 | 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 행위 |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 처분청 |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
| 제18조 제1항 | 심사청이 아닌 행정청을 심사청 | 신고처가 아닌 행정청을 신고처 |
|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심사청에 | 신고처인 행정청에 |
| 제18조 제4항 | 전 3항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 |
| | 정본 또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녹취서 | 정본 |
| 제21조, 제36조 및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 제41조 제2항 | 심사청은, 재심사청구 | 신고처인 행정청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
| | 재결을 | 동법 제2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
| | 재결서에 재심사청구 | 통지서에 당해 신고 |
| | 재심사청 및 재심사청구 기간 | 신고처 및 신고기간 |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제21조** 법 제2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서면에는 제19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적시하는 사항 외에, 법 제2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제22조** ① 법 제2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158조 제2항 | 전 항 | 제278조 제2항 |
| 제161조 제1항 | 재결 | 제27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② 법 제2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불복심사법」 규정의 준용에 관한 기술적 대체는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하는 「행정불복심사법」 규정 | 대체되는 자구 | 대체하는 자구 |
|---|---|---|
| 제21조, 제36조 및 제41조 제1항 | 심사청 | 신고처인 행정청 |
|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재결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

**(석방의 사유)**

**제23조** 법 제173조(법 제23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제2호 또는 제5호,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피구류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2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적시하는 자에 대해서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그 외 그자의 신체구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자의 석방지휘 또는 통지를 받은 사실
2.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167조 제1항(동 법 제224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유치되어 있는 자에 대해, 미리 정해진 유치기간이 만료한 사실

## 부칙

이 시행령은 법 시행일(200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년 5월 25일 시행령 제168호)

1. 이 시행령은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1)]

(平成十八年五月八日政令第百九十二号)

最終改正：平成一九年五月二五日政令第一六八号

内閣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二十三条第二項（同条第七項（同法第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同法第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三十二条第二項（同法第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第百十四条、第百十六条第二項及び第百十七条第三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百三十八条（同法第百四十三条及び第百四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並びに第百十八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百十九条第三項並びに第百二十条第一項及び第三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百四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公告の方法)**

**第一条**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の規定による公告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その公告すべき事項を当該各号に定める場所に十四日間掲示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法第四十六条第二項（同条第七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五十五条第二項（法第百三十二条第六項（法第百三十六条（法第百四十五条（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そ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を含む。）、第百三十八条（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四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第百四十四条、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公告　刑事施設の公衆の見やすい場所

二　法第百九十三条第二項（同条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並びに法第百九十八条及び第二百二十六条第六項（法第二百八十九条第六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五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　留置施設の置かれる警視庁、道府県警察本部若しくは方面本部又は警察署の公衆の見やすい場所

三　法第二百四十八条第二項（同条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並びに法第二百五十三条及び第二百七十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五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　海上保安留置施設の置かれる管区海上保安本部又は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海上保安留置施設が海上保安庁の船舶に置かれ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船舶の所属する管区海上保安本部又は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の公衆の見やすい場所

1)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SE192.html (2012 10. 15 내려받음)

**(面会が制限される日)**

**第二条** 法第百十八条第一項（法第百十九条（法第二百八十九条第四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二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並びに法第百四十五条（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そ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日及び法第二百六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二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日は、土曜日、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七十八号）に規定する休日、一月二日、一月三日及び十二月二十九日から十二月三十一日までの日とする。

2 法第二百二十条第一項（法第二百八十九条第六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日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条例で定められた留置施設の属する都道府県の休日（日曜日を除く。）とする。

**(矯正管区の長に対する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三条** 法第百五十九条（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刑事施設に収容され、又は刑事施設に附置された労役場若しくは監置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刑事施設の名称）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処分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五十九条（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三十四条第二項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五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 | |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矯正管区の長に対する審査の申請の裁決に関する読替え)**

**第四条** 法第百六十一条第二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法務大臣に対する再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五条** 法第百六十二条第三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百六十二条第二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
| | 同項 | 第百六十二条第二項 |
| 第百六十条及び第百六十一条第一項 | 矯正管区の長 | 法務大臣 |
| 第百六十条第二項 | 刑事施設の長 | 刑事施設の長若しくは矯正管区の長 |

2 法第百六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四条第三項 | 処分（当該処分について異議申立てをしたときは、当該異議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 | 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刑事施設に収容され、又は刑事施設に附置された労役場若しくは監置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刑事施設の名称） |

| | | |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第三十四条第二項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再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六十二条第三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矯正管区の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六条**　法第百六十三条第一項（法第二百八十八条 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申告をする者の氏名及び年齢並びに刑事施設の名称

二　申告に係る事実

三　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年月日

四　刑事施設の長の教示の有無及びその内容

五　申告の年月日

**（矯正管区の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七条**　法第百六十三条第三項（法第二百八十八条 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百六十三条第二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2 法第百六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行為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十九条 | 処分庁 | 刑事施設の長 |
| 第十八条第一項 | 審査庁でない行政庁を審査庁 | 申告先でない行政庁を申告先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 | 審査庁に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に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六十三条第三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二十一条及び第三十六条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通知 |

**(矯正管区の長による通知に関する読替え)**

**第八条** 法第百六十四条第三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審査の申請 | 第百六十三条第一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告 |

2 法第百六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四十一条第二項 | 審査庁は、再審査請求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は、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六十五条第一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告 |
| | 裁決書に再審査請求 | 通知書に当該申告 |
| | 再審査庁及び再審査請求期間 | 申告先及び申告期間 |

**(法務大臣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九条** 法第百六十五条第一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第六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年月日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法務大臣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十条** 法第百六十五条第三項（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百六十五条第二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 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百六十四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 | 矯正管区の長 | 法務大臣 |
| 第百六十条第二項 | 刑事施設の長 | 刑事施設の長若しくは矯正管区の長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裁決 | 第百六十五条第三項（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2 法第百六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六十五条第三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警察本部長に対する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十一条** 法第二百二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二十九条第二項 |

2 法第二百二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

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留置施設の置かれる警視庁、道府県警察本部若しくは方面本部又は警察署の名称）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処分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二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三十四条第二項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二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公安委員会に対する再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十二条**　法第二百三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三十条第二項 |

2　法第二百三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四条第三項 | 処分（当該処分について異議申立てをしたときは、当該異議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 | 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留置施設の置かれる警視庁、道府県警察本部若しくは方面本部又は警察署の名称）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第三十四条第二項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再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三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警察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十三条**　法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申告をする者の氏名及び年齢並びに留置施設の置かれる警視庁、道府県警察本部若しくは方面本部又は警察署の名称

二　申告に係る事実

三　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年月日

四　留置業務管理者の教示の有無及びその内容

五　申告の年月日

**(警察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十四条**　法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三十一条第二項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裁決 | 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2　法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 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行為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十九条 | 処分庁 | 留置業務管理者 |
| 第十八条第一項 | 審査庁でない行政庁を審査庁 | 申告先でない行政庁を申告先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 | 審査庁に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に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 第四十一条第二項 | 審査庁は、再審査請求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は、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 |
| | 裁決を | 同法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 |
| | 裁決書に再審査請求 | 通知書に当該申告 |
| | 再審査庁及び再審査請求期間 | 申告先及び申告期間 |

**(公安委員会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十五条**　法第二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第十三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法第二百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年月日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公安委員会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十六条**　法第二百三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三十二条第二項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裁決 | 第二百三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2　法第二百三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三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する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十七条**　法第二百七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七十五条第二項 |

2　法第二百七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海上保安留置施設の置かれる管区海上保安本部、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又は海上保安庁の船舶の名称）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 | |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処分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三十四条第二項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再審査の申請に関する読替え）**

**第十八条**　法第二百七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七十六条第二項 |

2　法第二百七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四条第三項 | 処分（当該処分について異議申立てをしたときは、当該異議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 | 審査の申請についての裁決 |

| | | |
|---|---|---|
| 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 | 住所 | 住所（海上保安留置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海上保安留置施設の置かれる管区海上保安本部、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又は海上保安庁の船舶の名称） |
| 第十五条第二項 | 若しくは財団であるとき、総代を互選したとき、又は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 | 又は財団であるとき |
| | 若しくは管理人、総代又は代理人 | 又は管理人 |
| 第十五条第四項 | 、総代を互選したときは総代、代理人によつて審査請求をするときは代理人）が押印しなければ | ）が押印し、又は指印しなければ |
| | 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審査庁 | 再審査庁 |
| 第三十四条第六項 |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六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項 |
| 第三十七条第一項 | 相続人その他法令により審査請求の目的である処分に係る権利を承継した者 | 相続人 |
| 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 | 相続人その他の者 | 相続人 |
| 第四十条第五項 | 場合において、審査庁が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るときは | 場合には |
| 第四十二条第一項 | （当該審査請求が処分の相手方以外の者の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裁決にあつては、審査請求人及び処分の相手方）に送達する | に送達する |
| 第四十二条第四項 | 参加人及び処分庁 | 処分庁 |

**（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十九条**　法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申告をする者の氏名及び年齢並びに海上保安留置施設の置かれる管区海上保安本部、管区海上保安本部の事務所又は海上保安庁の船舶の名称

二　申告に係る事実

三　申告に係る事実があった年月日

四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の教示の有無及びその内容

五　申告の年月日

**（管区海上保安本部長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二十条**　法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七十七条第二項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裁決 | 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2　法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十八条第一項 | 処分（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もできる処分を除く。） | 行為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十九条 | 処分庁 | 海上保安留置業務管理者 |
| 第十八条第一項 | 審査庁でない行政庁を審査庁 | 申告先でない行政庁を申告先 |
| 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四項 | 審査庁に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に |
| 第十八条第四項 | 前三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一項 |
| | 正本又は異議申立書若しくは異議申立録取書 | 正本 |
| 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 第四十一条第二項 | 審査庁は、再審査請求 | 申告先である行政庁は、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 |
| | 裁決を | 同法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 |
| | 裁決書に再審査請求 | 通知書に当該申告 |
| | 再審査庁及び再審査請求期間 | 申告先及び申告期間 |

**(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事実の申告の書面の記載事項)**

**第二十一条**　法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の書面には、第十九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法第二百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年月日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海上保安庁長官に対する事実の申告に関する読替え)**

**第二十二条**　法第二百七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

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百五十八条第二項 | 前項 | 第二百七十八条第二項 |
| 第百六十一条第一項 | 裁決 | 第二百七十八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2　法第二百七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準用についての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 読み替え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 | 読み替えられる字句 | 読み替える字句 |
|---|---|---|
| 第二十一条、第三十六条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審査庁 | 申告先である行政庁 |
| 第三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十一条第一項 | 裁決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八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 |

**(釈放の事由)**

**第二十三条**　法第百七十三条（法第二百三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事由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法第三条第二号若しくは第五号、第十四条第二項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被勾留者を除く。）又は第二十五条第二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者について、裁判官、検察官、司法警察員その他のその者の身体の拘束について権限を有する者の釈放の指揮又は通知を受けたこと。

二　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百六十七条第一項（同法第二百二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ずる場合及び他の法律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留置の期間が満了したこと。

## 附　則

この政令は、法の施行の日（平成十八年五月二十四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平成一九年五月二五日政令第一六八号）抄

**(施行期日)**

1　この政令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十九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2007년 5월 23일 법무성령 제57호

##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 이 규칙은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그 외 다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형사시설시찰위원회의 명칭)**

**제2조** 형사시설시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시찰위원회라고 하는 문자에 그 설치된 형사시설의 명칭을 앞에 붙인다.

**(위원장)**

**제3조**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의사)**

**제4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③ 전 2항의 정하는 외에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의 서무)**

**제5조** 위원회의 서무는 그 설치된 형사시설의 총무부 서무과에서 처리한다.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매년, 그 연도의 최초의 위원회에서 형사시설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다.

1. 부지 및 건물의 개황
2. 수용정원 및 수용인원의 추이
3. 직원 정원 및 그 충족상황
4. 참관허부의 상황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여 및 지급,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허부의 상황
6. 피수용자에 대하여 조치한 보건위생상 및 의료상 조치의 상황
7. 종교가에 의한 종교상의 의식행사 및 교회실시의 상황
8. 자변서적 등[서적, 잡지, 신문지, 그 외의 문서도화(서신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의 금지

또는 제한 상황

9.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상황

10. 민간독지가, 관계행정기관, 그 외의 사람에 의한 수형자 처우에 관한 협력상황

11. 교정처우 등(교정처우 및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상황

12. 피수용자에 의한 면회, 서신의 수발 및 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의 허부, 금지, 정지 또는 제한의 상황

13. 징벌의 과벌 상황

14. 심사의 신청, 재심사의 신청, 법 163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고충의 신청상황, 그에 대한 처리 결과

15. 가석방 및 가출장을 허가해야 할 취지의 신청상황

② 형사시설의 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다.

1. 형사시설의 운영상황에 상당정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2. 위원회로부터 형사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 경우

3.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조치를 강구한 경우

**(형무관의 지정)**

**제7조** 형무관은 형사시설의 직원으로써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95호) 별표 제4 나 공안직봉급표(1)의 적용을 받는 법무사무관인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형무관의 계급)**

**제8조** 형무관의 계급은 교정감, 교정장, 교정부장, 간수장, 부간수장, 간수부장 및 간수로 한다.

## 제2장 수용의 개시

**(수용개시시 고지의 방법 등)**

**제9조** ① 법 제33조의 규정의 의한 고지를 행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시설의 직원에 의하여 그 개요를 구두로 설명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의 서면은 거실(피수용자가 주로 휴식 및 취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형사시설이 지정하는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실시한 때 고지한 내용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때마다 피수용자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방법)**

**제10조**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얼굴사진의 촬영

2. 신체특징의 확인

3. 지문채취

4. 손 정맥의 전자계산기용에 제공된 화장정보의 전자적 방법(자기적 방법, 그 외에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채취

## 제3장 처우의 형태

### (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 법 제35조 제1하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한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로 한다.

1. 운동, 목욕 또는 면회의 경우
2. 건강진단 또는 진료의 경우
3. 전 2호에 열거하는 외, 거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처우를 실시하는 경우

## 제4장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 (기거동작의 시간대)

**제12조** ① 법 제38조 제1호에 열거하는 시간대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간대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 외에, 수용자가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시간대에 대하여 정한다.

1. 식사 시간대는 조식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사이에, 중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이에, 석식은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까지 사이로 정할 것
2. 취침시간대는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이에 연속하는 8시간 이상의 시간대를 정할 것
3. 운동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정할 것

② 법 제38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간대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교정처우 등의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의 사이에서 정하고,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시간대가 6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도중에 20분 이상의 휴게시간대를 정할 것
2. 여가에 주어져야 할 시간대(이하 "여가시간대"라 한다.)는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2시간 이상의 시간대를 정할 것

③ 법 제38조 각 호에 열거하는 시간대는 수형자에 대해서 작업의 성질, 제조작업에 관한 제품의 납기기한, 그 외의 사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전 2항 각 호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 (여가활동의 원조)

**제13조**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조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외에, 운동경기, 그 외의 복수의 피수용자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획, 형사시설에 비치된 서적 등, 운동기구, 놀이기구, 그 외의 물품의 대여, 그 외 여가시간대 등(수형자에 있어서는 여가시간대라 하고, 그 외의 피수용자에 있어서는 식사, 취침, 그 외의 기거동작을 해야 할 시간대 이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실시한다.

② 수형자의 여가시간대에서의 교육적 효과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시설의 장이 그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장 물품의 자비부담 등 및 자변

**(실내장식품의 대여 등)**

**제14조** ① 피수용자에게는 실내장식품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로써 대여하는 외에 그 자의 처우상 특히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에게는 기호품은 우대조치로서 지급하는 외에, 수형자의 처우로서 특별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78호) 제2조에 규정하는 국민의 축일, 1월 2일 및 1월 3일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정하는 외에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지급하는 물품의 품명 및 그 대여 또는 지급기준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수형자의 자변물품의 사용 등)**

**제15조** ①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자변의 것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하의(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에 한한다) 및 양말에 대하여 자변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잠옷에 대하여 우대조치로서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외에 그러한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호송하는 경우 및 외부통근작업(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말한다. 아래 같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에 대하여 우대조치로서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하는 외에,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또는 외박을 허가하는 경우, 그 외 법무대신이 정하는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법무대신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대조치로서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외에 그자의 처우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외에 샌달 및 여가시간대의 오락적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우대조치로서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한다.

1. 수건, 비누, 세발제, 세안용구, 조발용구, 구두, 그 외의 일용품
2. 문방구, 그 외의 여가시간대에 지적 및 교육적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장갑, 마스크, 그 외의 신체에 장착하는 물품(의류를 제외한다)으로서 수형자이 건강상태,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⑥ 수형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에 대한 자변의 것의 사용 및 섭취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의 유지, 그 외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 제2편 제2항 제12절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비추어서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도 같다.

⑦ 전 각 항에 규정하는 외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자변물품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하는 기준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자변물품의 사용 등)**

**제16조**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물품 및 침구에 대해서 이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자변의 것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한다.

②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의 것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물품은 담배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한다.

④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에게는 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서 열거하는 물품은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의 것이 한한다.)에 대해서 자변의 것의 사용 또는 섭취를 허가한다.

1. 수건, 비누, 세발제, 세안용구, 조발용구, 샌달, 방석, 행거, 그 외의 일용품
2. 문방구, 놀이기구, 그 외 여가시간대 등에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장갑, 마스크, 그 외 신체에 착의하는 물품(의류를 제외한다)으로써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건강상태,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규정하는 물품)**

**제17조**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인지 및 인감
2. 가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출하거나 또는 외박하는 경우, 재판소에 출두하는 경우,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가발의 착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장 금품의 취급

**(차입신청서의 제출 등)**

**제18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기재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질문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직업
2. 교부의 상대방인 피수용자의 성명 및 그 자와의 관계
3. 교부하려고 하는 현금액 또는 물품의 품명 및 수량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에 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관사물의 보관방법)**

**제19조** ①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관사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보관사물"이라고 한다)은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거실 내 또는 거실 외의 선반, 용기, 그 외 보관설비에 보관하도록 한다.

② 보관사물을 거실외의 보관설비에 보관시킬 때에는 피수용자에게 1이레 1회 이상, 그 설비에 보관사물을 출납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거실동 외의 보관설비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날에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

시설의 관리 운영상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요일
2. 토요일,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휴일, 1월 2일, 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
3. 법무대신이 정하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 전2호에 열거하는 날을 제외하고 연속하는 3일
4. 형사시설의 장이 1월에 4일의 범위 내에서 그 형사시설에서 교정처우 등 가운데 오직 작업[연일작업(취사, 식기의 배급 또는 축산에 관한 작업, 그 외 그 성질상 연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외의 것을 실시하는 날로서 정하는 날

**(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20조** 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관사물 및 피수용자에 영치하고 있는 물품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으로 한다.

1. 피수용자가 당사자인 계속 중의 재판소의 사건에 관한 기록, 그 외 서류 또는 그 사본
2. 안경, 그 외 보정용기

**(차입 등에 관한 제한)**

**제21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피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및 피수용자에 의한 자변물품 등의 구입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제한을 하는 것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제한
   가. 피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의 신청 및 피수용자에 의한 자변물품 등의 구입신청의 날 및 시간대
   나. 1인의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한사람의 피수용자에게 교부하는 물품의 종류별 수량 및 피수용자가 일정 기간내에 구입하는 자변물품 등의 종류별 수량
2. 피수용자에게 교부하려고 하는 물품 또는 피수용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자변물품 등으로써 형사시설의 장이 정하는 종류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제한하는 것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유적, 그 외의 사람)**

**제22조**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유족, 그 외의 사람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피수용자가 지정한 사람(1인에 한정한다)
2. 피수용자의 배우자(혼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피수용자가 그 국적을 가지는 외국의 대사, 공사, 영사관, 그 외의 영사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망자의 유류물의 인도)**

**제23조** 사망한 피수용자의 유류물(형사시설에 유류한 금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 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 중 최초에 그 인도를 신청한 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순서에 따라 그 사람에 의한 선순위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실시한 경우(그 사람이 그 유류물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한다)에 상당기간 내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인도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그 유류물은 그자에게 인도한다.

## 제7장 보건위생 및 의료

**(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 등)**

**제24조** ① 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에 열거하는 날로 한다.

1.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열거하는 날
2. 실외에서 교정처우로서 운동경기를 실시하는 날

② 피수용자에게는 하루에 30분 이상, 가능한 한 장시간 운동기회를 준다.

**(목욕횟수 등)**

**제25조** ① 피수용자에게는 수용개시 후 즉시, 및 일주일에 2회 이상[폐거벌(법 제 151조 제1항 제6호의 징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한다.

② 여성피수용자의 목욕시 입회는 여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이발 및 면도의 회수 등)**

**제26조** ① 남자수형자에게는 형집행개시 후 즉시 및 약 1월에 1회 이발을 실시한다.

② 남성수형자에게는 형집행개시 후 즉시 및 1주일에 2회 이상(폐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주일에 1회 이상) 면도를 실시한다.

③ 여성수형자에게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발 및 얼굴면도를 실시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조발 또는 면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종교, 그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풍속습관, 석방시기,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발 또는 면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이발의 머리형태의 기준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이발 및 면도의 회수 등)**

**제27조** ①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써 남자인 사람에게는 약 2월에 1회 이상 이발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써 여성에게는 약 3월에 1회 이상 조발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③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써 남성에게는 1주간에 2회 이상(폐거벌이 과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주간에 1회 이상) 면도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④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로써 여성에게는 1월에 1회 이상 얼굴면도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⑤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가 실시하는 조발(자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의 머리모양 기준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조발 및 면도의 방법 의 기준)**

**제28조** 피수용자의 실시하는 이발, 면도 및 얼굴면도의 방법의 기준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건강진단 사항)**

**제29조** ① 법 제6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 제3호(체중측정을 제외한다.) 및 제5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가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왕력, 생활력 및 가족의 병력조사
2. 자각병상 및 타가병상의 검사

3. 신장 및 체중측정, 시력 및 청력의 검사
4. 혈압측정
5. 요중의 당 및 단백유무의 검사
6. 흉부X-ray선검사
7. 혈색소량 및 적혈구수의 검사
8. 혈청GOT, 혈청GPT 및 간마GTP의 검사
9. 혈청총콜레스트롤, 고비중리포단백콜레스트롤(HD콜레스트롤) 및 혈청트리크로세이드량의 검사
10. 혈당검사
11. 심전도검사

② 법 제6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전 항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의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지명의의 준수사항)**

**제30조** 형사시설의 장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영양보급처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실시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실
2. 진료에 사용되는 용기, 재료, 약제,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실
3. 피수용자와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실
4. 피수용자와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실
5. 전 각호에 열거하는 사실 외에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4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조치)**

**제31조** 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로 한다.

1. 감염증의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또는 오염되었다고 의심이 있는 음식물, 의류, 그 외의 물품에 대한 소독, 폐기, 그 외 병원체의 번식 및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
2.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3. 목욕 또는 이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의약품의 자변)**

**제32조** ①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형사시설에 있어서는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에 대하여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일반용의약품(법무대신이 정하는 품명의 것에 한한다)으로써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그 건강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것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기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자변의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하가한다.

② 피수용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일반의약품은 필요가 있는 때에 그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에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거실 내 또는 거실 외의 선반, 용기, 그 외 보관설비에 보관시키도록 한다.

## 제8장 서적 등의 열람

**(번역비용의 부담)**

**제33조** 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번역비용은 서적 등의 열람목적 및 피수용자의 부담능력에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피수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어를 독해할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점자에 의하지 아니하면 서적 등을 열람할 수 없는 사람

**(신문지에 관한 제한)**

**제34조**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자가 취득할 수 있는 신문지의 범위의 제한은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간신문지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2가지 이상의 신문지 중 피수용자가 선택하는 1가지 이상의 신문지에 관한 제한하는 것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간신문지 이외의 일간신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자가 취득할 수 있는 신문지의 취득방법의 제한은 일간신문지에 대하여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의 1월 이상의 지속적인 구입에 제한하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장 규율 및 질서의 유지

**(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11조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로 한다.

**(경비용구)**

**제36조** 법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용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봉
2. 호루라기
3. U봉
4. 방패
5. 최류탄, 최류가스통 및 착색탄 및 이들의 발사기
6. 최류스프레이

**(포승 및 수갑의 사용방법)**

**제37조** ① 피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갑은 피수용자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각각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1에 정하는 제1종 수갑으로 한다.

② 피수용자에게 포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액의 순환이 현저하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제식)**

**제38조**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제식은 별표 제1과 같다.

**(보호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39조** 보호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용된 사람의 신체를 해하기 어려운 구조 및 설비를 갖출 것

2. 손괴 또는 더럽히기 어려운 구조 및 설비를 갖출 것
3. 방음상 유효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출 것
4. 실내 시찰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출 것
5.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배수를 위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출 것

**(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 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로 한다.

1. 피수용자가 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또는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시설의 장이 소형무기를 휴대할 것을 명령한 때
2. 전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소형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
3. 형사시설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형무기 사용의 훈련 또는 점검, 정비 또는 운반을 하는 경우

**(포승사용 등의 보고)**

**제41조** 형무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형사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수용자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승 또는 수갑을 사용한 때
2. 전 조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소형무기를 휴대한 때
3. 무기를 사용한 때

**(응급용무에 종사하여 사망한 피수용자에 대한 수당금)**

**제42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피수용자가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용무에 종사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동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0장 교정처우의 실시 등

**(처우요령의 책정 등)**

**제43조** ① 처우요령(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우요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도(이하 "개시 시 지도"라 한다)가 종료하기까지로 정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교정처우의 진전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우요령을 변경한다.

③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외, 처우요령의 책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정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4조** ①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주간으로 한다.

② 형집행개시 후 수형자를 다른 형사시설에 이송하는 경우 이송 전 형사시설에서 개시시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전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은 전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시시 지도의 진전상황, 수형자의 연령, 집행해야 할 형기, 형사시설에의 수용경력,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 시 지도를 실시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5조** ①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주간으로 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기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지도를 실시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날)**

**제46조** ① 법 제85조 제1항,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이하 "교정지도"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은 다음에 열거하는 날 이외의 날을 정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하는 날
2. 수형자가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혈족이 사망한 것을 알고 상복을 희망하는 경우에 그 날부터 1주간 이내에서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날

② 작업(연일작업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날은 전 항 각 호 및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날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지도를 실시하는 장소를 확보, 제조작업에 관한 제품의 납기한, 그 외의 사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날을 교정처우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날에 6시간 이상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에게는 가능한 한 그 날부터 1월 이내 전 항에 규정하는 날 이외의 날을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정한다.

④ 연일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에 관해대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날의 일수 및 1일의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정한다.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시간)**

**제47조** ① 교정지도 및 작업을 실시하는 시간은 이것을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지도를 실시하는 장소를 확보, 제조작업에 관한 제품의 납기한, 그 외의 사정으로부터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정지도 및 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은 이것을 합산하여 1일 12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 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한의 완화)**

**제48조** ①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형자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한 제한은 개시 시 지도가 종료한 수형자에 대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또는 제4종의 구분(이하 "제한구분"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하여 그 제한구분의 지정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순차 완화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개시 시 지도를 종료한 후 즉시 법 제30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제한구분을 지정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정기적으로 및 수시로 전 항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에 따라서 제한구분의 지정을 변경한다.

**(거실 지정 등)**

**제49조** ① 제1종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의 거실은 수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설비 또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강구하지 아니한 거실을 지정한다.

② 제2종 또는 제3종의 제산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의 거실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처우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전 항의 거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종 또는 제2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정처우는 주로 거실동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처우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정처우 등은 형사시설 내에 주로 거실동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제4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정처우 등은 형사시설 내에서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실동 내에서 실시한다.
⑥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법 제11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면회의 입회 또는 그 상황의 녹음 또는 녹화, 그 외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구체의 사정으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시설의 장이 제한구분에 따른 실시의 빈도 및 태양의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방적 시설에서의 처우)**

**제50조**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개방적 시설에서의 처우는 제1종의 제한 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구분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 전3조에서 규정하는 외에 제한구분의 지정 및 그 지정의 변경절차, 그 외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형자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대신이 정한다.

**(법 제8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처우)**

**제52조** 법 제8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처우는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로 한다.

1.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신의 통수를 정하는 것
2. 여가시간대에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또는 형사시설의 장이 기획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정하는 처우

**(우대조치)**

**제53조** 우대조치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 대하여 그 수형태도의 평가에 기초하여 우대구분을 지정하고 그 구분에 따라 처우를 실시하는 것에 따라 강구한다.

1. 우대구분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및 제5류로 구분한다.
2. 형사시설의 장은 4월부터 9월까지 또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초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형사시설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평가기간의 말일에 우대구분의 지정을 받고 있는 수형자로써 그 평가기간내에 1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그 평가기간의 수형태도의 평가에 기초하여 우대구분을 지정한다.
3. 형사시설의 장은 전 호에 규정하는 수형자가 그 평기기간이 경과 한 후에 반칙행위(징벌을 과해야 할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기간의 수형태도에 더하여 그 반칙행위의 성질, 경중 및 동기, 반칙행위 후의 그 사람의 태도, 그 외의 사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

하여 우대구분을 지정하거나 또는 우대구분의 지정을 하위의 우대구분의 지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전 호의 규정에 따라 우대구분을 지정하거나 또는 우대구분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형자가 그 반칙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평가기간에 관한 우대구분의 지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반칙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수형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형집행의 개시일(형사시설에서 잔형의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계속하여 형사시설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로써 우대구분의 지정을 받지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우대구분을 지정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날에 징벌이 과해진 경우에는 제5류의 우대구분을, 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수형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유로 법무대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류의 우대구분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3류의 우대구분을 지정한다.
6. 형사시설의 장은 전 호의 규정에 따라 제3류 또는 제4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징벌을 과한 경우에는 우대구분의 지정을 제5류의 우대구분의 지정으로 변경한다.
7. 우대구분의 지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형사시설의 장이 다음에 우대구분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한 때
   나. 수형자가 형사시설로부터 석방된 때
8. 제1류에서 제4류까지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법 및 이 규칙의 지정범위 내에서 다음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처우를 실시한다.

**(처우내용)**

**제54조** ① 제1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1.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품, 그 외 형사시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을 대여하거나 또는 1월이 1회 이상 기호품을 지급하는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옷, 실내장식품, 샌달 및 여가시간대의 오락적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
3.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료품 및 음료에 대하여 1월에 1회 이상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하는 것
4.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제1류의 우대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 이외의 수형자가 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약 2배로 정하는 것
5. 면회를 할 수 있는 회수를 1월에 7회 이상으로 정하는 것
6.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신의 통수를 1월에 10통 이상으로 정하는 것
7. 형사시설의 장이 제1류의 우대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처우로서 정하는 것

② 제2류의 우대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품 및 샌달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호품에 대하여 1월에 1회 이상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하는 것
3. 면회할 수 있는 회수를 1월에 5회 이상으로 정하는 것
4.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신의 통수를 1월에 7통 이상으로 정하는 것
5. 형사시설의 장이 제2류의 우대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처우로서 정하는 것

③ 제3류의 우대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품 및 샌달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
2.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호품에 대하여 1월에 1회 이상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하는 것
3. 면회를 할 수 있는 회수를 1월에 3회 이상으로 정하는 것
4.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신의 통수를 1월에 5통 이상으로 정하는 것
5. 형사시설의 장이 제3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처우로서 정하는 것

④ 제4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다음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1. 수형자가 발신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신의 통수를 1월에 5통 이상으로 정하는 것
2. 형사시설의 장이 제4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처우로서 정하는 것

**(우대구분의 지정절차 등)**

**제55조** 전3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우대구분의 지정 및 그 지정의 변경절차, 그 외 우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대신이 정한다.

**(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제56조** ① 금고수형자 또는 구류수형자에게는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허가된 사람은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주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57조** 법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한다.

1.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적 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 것
2. 제1종 또는 제2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것
3. 가석방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는 것

**(외부사업주와의 약정)**

**제58조**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사업주와의 사이의 약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외부통근작업을 실시하는 기간
2. 수형자가 실시하는 작업의 종류 및 내용, 작업시간
3. 수형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외부사업주에 의한 수형자 지도감독의 방법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외부통근작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 항의 약정은 서면으로 실시한다.

**(장려금계산액의 가산)**

**제59조** ① 법 제9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가산은 매월 15일까지 실시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가산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산에 관한 금액을 수형자에게 고지한다.

③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석방시 법 제9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가산에 관한 금액을 그자에게 고지한다.

**(석방전 작업장려금의 지급)**

**제60조** 법 제9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 시의 장려금계산액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그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특히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지급)**

**제61조** ① 법 제99조 또는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망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수당금의 지급은 석방시 실시한다.

**(사망수당금 및 장해수당금액 산출 기준)**

**제62조** ① 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수당금 및 장해수당금의 액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망수당금 및 장해수당금의 액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액(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초일액"이라 한다.)은 4,060엔으로 한다.

③ 사망수당금의 액은 지급기초일액에 1,06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수당금의 액은 별표 제2에 정하는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기초일액에 동 표에 정하는 배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별표 제2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무거운 장해에 의한 등급에 따른다.

⑥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의 등급은 다음 각 호 중 가장 유리한 것에 의한다.

1.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1급 상급의 등급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2급 상위의 등급
3.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3급 상위의 등급

⑦ 전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해수당금의 액은 각각의 장해에 따른 등급에 의한 장해수당금의 액을 합산한 액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⑧ 별표 제2에 정하는 각 등급의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해로써 동 표에서 정하는 각 등급의 장해에 상당하는 것은 동 표에 정하는 당해 등급의 장해로 한다.

⑨ 이미 장해가 있는 수형자가 법에 의한 지급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실시하는 장해수당금의 액의 산출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가중 후의 장해의 등급에 따른 장해수담금의 액에서 가중전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수당금의 액을 공제한다.

**(특별수당금의 액 등)**

**제63조** 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수당금의 액은 피수용자가 치료된 경우에 신체에 남는다고 예상되는 장해를 신체에 남은 장해로 간주하고 전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0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정)**

**제64조** 법 제10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 및 그 친족,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낮을 것
2. 「형법(명치40년 법률 제45호)」 제116조에서 제179조까지, 제181조, 제225조(강제추행의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26조의2 제3항(강제추행의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27조 제3항(강제추행의 목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28조(동 법 제225조, 제226조의2 제3항 또는 제22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41조 또는 제243조(동 법 제241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죄의 원인이 되는 인지의 편향 또는 자기통제력의 부족이 있을 것

**(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65조** 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한다.

1.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적 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을 것
2. 제1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을 것
3. 가석방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것

## 제11장 외부교통

**(면회 상대방의 제출)**

**제6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면회신청을 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자기와의 관계
3. 예상되는 면회의 목적
4.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동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면회신청서의 제출)**

**제67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와의 면회의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형자 및 사형확정자 이외의 피수용자와의 면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면회를 희망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그 자와의 관계
3. 면회의 목적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와의 면회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동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면회 상대방의 확인)**

**제68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와의 면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에 대하여 그 신청을 한 자의 성명 및 피수용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면회 상대방의 인원수 제한)**

**제69조** 법 제114조 제1항[법 118조 제5항(법 제1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9조, 제122조 및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의 면회상대방의 인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인수는 3인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면회장소의 제한)**

**제70조** ① 피수용자의 면회장소는 형사시설의 장이 지정한다.

② 피수용자의 면회장소는 피수용자와 면회 상대방과의 사이를 구분하는 설비를 가지는 실(이하 "칸막이 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외의 피수용자의 면회에 있어서는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수용자가 병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외 법무대신이 정하는 경우
2. 친족과 면회하는 경우, 그 외 칸막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면회일의 제한)**

**제71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로서의 지위 별로 그 형사시설에서 면회[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와의 면회를 제외한다]를 허가하는 날(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면회일"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1월에 면회일로서 정하는 일수는 그 달의 일수에서 그 달의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일의 일수를 뺀 일수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월의 면회일은 그 달의 초일의 1개월 전까지 피수용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그 달의 초일의 1개월 전부터 형사시설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그 외 방법에 따라 공고한다.

**(면회시간대의 제한)**

**제72조**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의 면회시간대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시간은 하루에 6시간(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날을 면회일로서 정하는 때에는 4시간)을 하회해서는 아니된다.

**(면회시간의 제한)**

**제73조**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의 면회시간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시간은 30분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면회신청의 상황, 면회장소로서 지정하는 면회실의 수,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어쩔 수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분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30분을 하회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면회회수의 제한)**

**제74조** 법 제114조 제1항(법 제22조 및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로써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면회회수에 대한 제한은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면회회수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면회 상대방의 준수사항의 게시)**

**제75조**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의 면회상대방(변호인 등을 제외한다)이 준수해야 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형사시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1. 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가 또는 나(이러한 규정을 법 제117조, 제119조, 제122조, 제123조 및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사실
2. 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에서 가부터 나까지(이러한 규정을 법 제117조, 제119조, 제122조, 제123조 및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17조, 제119조 및 제1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7조, 제119조 및 제122조 및 제1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신을 해서는 아니되는 사실

**(서신의 수발상대방의 신고서)**

**제76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서신을 수발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자기와의 관계
3. 예상되는 서신수발의 목적
4. 그 외 형사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6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 준용한다.

**(서신의 작성요령의 제한)**

**제77조** ① 법 제130조 제1항(법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자가 발하는 서신의 작성요령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변호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서신에 대하여는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신용지 및 봉투의 규격 및 서신의 작성에 사용되는 필기구의 종류
2. 한 통의 서신에 사용되는 용지의 매수
3. 한 매의 용지에 기재하는 자수, 그 외 서신의 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기재방법

② 피수용자가 발하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지매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매수는 5매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수용자가 발하는 서신 한매의 용지에 기재하는 자수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그 자수는 4백자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신의 발신신청의 날 및 시간대의 제한)**

**제78조** 형사시설의 장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하는 서신수발의 신청일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발신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발신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발신을 신청하는 서신 통수의 제한)**

**제79조**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자가 하는 발신을 신청하는 서신통수의 제한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서신 이외의 서신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면
2. 심사의 신청, 재심사의 신청, 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고정신청 서면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로써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에 관해 변호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서신

**(서신수발방법의 제한)**

**제80조** ①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자가 서신을 발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우편[「우편법(1947년 법률 제165호)」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취급(속달 및 연하장특별우편의 취급을 제외한다)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
2. 전보에 의한 방법(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변호인 등에 대하여 서신을 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수용자가 서신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제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우편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송달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서신편사업자 또는 동 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서신편사업자에 의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신편에 의한 방법
2. 전보에 의한 방법

**(복수의 피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등의 취급)**

**제81조** ① 복수의 피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으로써 피수용자가 받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그 중 1인에게 교부한다.

② 피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으로써 피수용자가 받는 것을 허가하는 것 중, 종이 이외의 물품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 소리를 내는 장치가 딸린 것, 그 외 서신 이외의 물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자에게 인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법 제13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법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자가 이를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에게 그 물품의 제시, 그 외의 방법에 따라 그 내용(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또는 말소해야 할 개소를 제외한다)을 알도록 한다.

**(사망자의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

**제82조** 법 제1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법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서신의 전부 또는 일분 또는 복제[법 제132조 제5항(법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제92조 제1항 및 제98조에서 "수발금지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83조** 법 제1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한다.

1.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적 시설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 사실
2. 제1종 또는 제2종의 제한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사실

3.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지도를 받고 있는 사실

**(번역 등의 비용부담)**

**제84조** 법 제148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통역 또는 번역비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 등(면회 또는 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서신의 수발목적 및 피수용자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피수용자가 그 국적을 가지는 외국의 대사, 공사, 영사관, 그 외 영상임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면회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신의 수발을 하는 경우
2.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때
   가. 피수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과 면회하는 경우
      (1) 피수용자의 친족
      (2) 혼인관계의 정비, 소송의 수행, 사업의 유지, 그 외 피수용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한 용무의 처리를 위하여 면회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
      (3) 수형자에 대하여 그 갱생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석방 후에 이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외 면회 등 또는 서신의 수발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면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피수용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서신의 수발을 하는 경우
      (1) 피수용자의 친족과의 사이에서 수발하는 서신
      (2) 혼인관계의 정비, 소송수행, 사업유지, 그 외 피수용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에 관한 용무처리를 위하여 수발하는 서신
      (3) 수형자에 대하여 그 갱생보호에 관계있는 사람 또는 그 석방후에 이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수발하는 서신, 그 외 서신수발에 의하여 그 개선갱생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
      (4)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서신수발에 의하여 그 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서신

## 제12장 상벌

**(상법)**

**제85조** 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수여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상사(賞詞)
2. 상표
3. 1만 엔 이하의 상금
4. 1만 엔 이하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

**(폐거벌의 집행방법)**

**제86조** ① 폐거벌에 처하여진 수형자의 거실은 독거실로 한다. 다만, 형사시설의 장이 폐거벌의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폐거벌에 처하여진 피수용자에 대하여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외에 근신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한도 내에서 그 생활 및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운동기회의 부여)**

**제87조** 폐거벌에 처하여진 피수용자에게 운동기회를 부여하는 일수는 1주일에 1일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있는 수형자의 격리)**

**제88조** 법 제1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격리는 수형자가 하였다고 의심이 현재 존재하는 반칙행위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반칙행위에 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5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9조** 법 제15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
2.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의 경우
3. 전 2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 거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처우를 실시하는 경우

**(변명의 방법)**

**제90조** 법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변명은 이것을 청취하는 직원의 면전에 출두하여 구두로 실시한다. 다만, 피수용자는 직원면전에 출두하여 구두로 실시하는 것에 대신하여 변명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피수용자를 보좌하는 직원이 변명을 녹취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장 석방 및 사망

**(형 집행정지사유의 통보)**

**제91조** 형사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보한다.

**(사망의 통지)**

**제92조** ①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에 있는 1인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부해야 할 유류물, 지급해야 할 작업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망수당금 또는 수발금지서신 등이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교부 또는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 순서에 따라 그 자와 동 순위 또는 하위 순위에 있는 다른 사람 중 선순위에 있는 한사람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1. 제22조 제1호에 열거하는 사람
2. 배우자
3. 자
4. 부모
5. 손
6. 조부모
7. 형제자매
8. 제22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람

② 외국 국적을 가지는 피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제22조 제3호에 열거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 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시)**

**제93조** ①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검시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은 전 항의 검시결과 변사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및 경찰관에 해당하는 사법경찰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체의 매장 등)**

**제94조** ① 형사시설의 장이 피수용자의 사체의 매장을 하는 때에는 그 사체는 형사시설의 장이 관리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묘지의 분묘에 매장한다.

② 형사시설의 장이 피수용자의 사체의 호장을 하는 때에는 그 유골은 형사시설의 장이 관리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묘지의 분묘 또는 납골당에 매장한다.

## 제14장 노역장 및 감치장

**(노역장 등에의 준용)**

**제95조** 제6조의 규정은 형사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노역장 및 감치장의 운영에 대하여 준용한다.

**(노역장유치자)**

**제96조**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 중 노역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감치자)**

**제97조** ① 감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자(이하 "감치장유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제1장, 제16조 및 제11장을 제외한다) 중 각종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치장유치장의 자변물품의 사용 및 섭취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중 "물품(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이라는 것은 "물품(의류, 일용품 및 문방구 및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 조 제7항 중 "법 제41조 제1항"이라는 것은 "법 28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 제1항"으로, 제16조 제1항 중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 및 침구"라고 하는 것은 "의류, 일용품 및 문방구(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체한다.

③ 감치장유치자(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의 면회 및 서신수발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1장 중의 수형자(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감치장유치자(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구류 중 감치의 재판집행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의 면회 및 서신의 수발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1장 중의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치의 재판집행을 위하여 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1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장 잡칙

**제9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92조 제1항의 규정은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69호)」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요청국의 관리에게 인도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의 유류물, 작업장려금 또는 수발금지서신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규칙은 법 시행일(2006년 5월 24일. 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수용개시 시 고지에 관한 특례)**

**제2조** 제9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처우요령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이 규칙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개시시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후 즉시 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우요령을 정한다.

**(제한구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규칙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파구류수형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시시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에 제한구분을 지정한다.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의 사이의 처우에 관한 특례)**

**제5조** 이 규칙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의 사이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및 제5류의 구분(이하 이 조에서 "경과처우구분"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하여 처우를 실시한다.

1. 경과처우구분의 지정 및 그 지정의 변경은 형사시설의 장이 실시한다.
2. 시행일에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동반하는 관계 시행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2007년 법무성령 제58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행형누진처우령(1933년 사법성령 제35호)」 제16조 제1항의 계급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에서 라까지에 열거하는 편입되어 있는 계급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경과조치구분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형태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과처우구분을 지정한다.
   가. 제1급의 계급 : 제2류의 경과처우구분
   나. 제2급의 계급 : 제3류의 경과처우구분
   다. 제3급의 계급 : 제4류의 경과처우구분
   라. 제4급의 계급 : 제5류의 경과처우구분
3. 수형자의 수형태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과처우구분의 지정을 상위의 경과처우구분의 지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수형자가 반칙행위를 한 경우 그 반칙행위의 성질, 경중 및 동기, 반칙행위후의 그 사람의 태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과처우구분의 지정을 하위의 경과처우구분의 지정으로 변

경할 수 있다.

5. 제1류, 제2류, 제3류 또는 제4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각각 제1류, 제2류, 제3류 또는 제4류의 우대구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로 간주하고, 법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우를 실시한다. 다만, 제2류의 경과처우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하는 외에 잠옷에 대하여 자변의 것의 사용을 허가하고 제4류의 경과처우구분에 지정되어 있는 수형자에게는 제46호 제4항 각 호에 열거하는 처우를 실시하는 외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호품에 대하여 2월에 1회 이상 자변의 것의 섭취를 허가한다.

**(200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 사이의 경과조치에 관한 특례)**

**제6조** ① 이 규칙의 시행시 현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의 사이는 2007년 6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간주하고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제45조 중 "6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로 한다.

② 전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과처우구분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관한 우대구분의 지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반칙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형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선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90호)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2007년 6월 1일)의 전일까지 사이의 제58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호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인 것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서신수발방법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우정민영화법 등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102호)」의 시행일(2008년 10월 1일)의 전일까지의 사이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호 중"제44조"라는 것은 "제57조 제1항"으로 한다.

## 부칙(2007년 3월 30일 법무성령 제26호)

**(시행기일)**

**제1조**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규칙의 시행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50호)」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 법 제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2007년 5월 25일 법무성령 제35호)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58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수용개시시 고지에 관한 특례)**

**제2조** 이 성령에 의한 개정후의「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이하 "신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개정법에 의한 개정후의「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률 제50호. 이하 "신법"이라 한다)」제33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 및 개정법 부칙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신법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33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일반의약품의 자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69호)」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신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항 중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라는 것은 "의료용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하고, 동 조 제2항 중 "일반용 의약품"이라는 것은 "의약품"으로 한다.

## 부칙(2007년 8월 24일 법무성령 제49호)

**(시행기일)**

이 성령은「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7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5호)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의 시행일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법 제82조 제2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2008년 5월 30일 법무성령 제40호)

이 성령은「갱생보호법(2007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3호)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의 시행일 전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 법 제82조 제2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

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2009년 6월 4일 법무성령 제30호)

**(시행기일)**

이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6호)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 법 제82조 제2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의 의한다.

## 부칙(2011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2호)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기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 법 제82조 제2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의 의한다.

**(장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①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장애수당금 또는 특별수당금(「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0조 제2항 또는 제4항(이러한 규정을 동법 제82조 제2항(동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장해수당금 또는 특별수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사유에 관련된 장해에 관한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장해수당금 또는 측별수당금의 지급사유에 관련된 장해로 이 성령에서 의한 개정전의 규칙 별표 제2 제12급의 항 장해의 정도의 난 제14호 및 동표 제14급의 항 장해의 정도의 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2010년 6월 10일 전에 장해수당금 또는 특별수담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장해에 관련된 장해수당금 또는 특별수담금의 지급상유가 발생한 일부터 이 성령에 따른 개정후의 규칙 별표 제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011년 5월 23일 법무성령 제1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대구분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성령에 따른 개정후의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 부칙(2012년 4월 6일 법무성령 제20호)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후의 제62조 제2항 및 다음 항의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 제1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을 동 법 제82조 제2항(동 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수당금 또는 장해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별표 제1(제38조 관계)

| 종 류 | 구 조 | 재 질 | |
|---|---|---|---|
| 포승 | 제1종 | 줄의 직경은 약 6mm로 하고, 길이는 약 3mm 이상 15m 이하로 한다.<br>줄의 한 쪽 끝을 약 12cm의 부분에 접어 반대로 꺾어서 원 포승에 고정하고 원형이 되는 부분을 만든다. | 화학섬유제로 한다.<br>줄의 중심부에는 유연하고 견고한 강철줄을 사용한다. |
| | 제2종 | 줄의 직경은 약 3mm로 하고 길이는 약 m로 한다.<br>끈의 한 쪽 끝을 약 4.5cm의 부분에 접어 반대로 꺾어서 원 포승에 고정하여 원형이 되는 부분을 만든다. | 화학섬유제로 한다. |
| 수갑 | 제1종 | 개폐가능한 팔찌 2개를 사슬로 연결한다.<br>각 팔찌는 브레이크로 멈추게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철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질로 한다. |
| | 제2종 | 개폐가능한 팔찌 2개를 연결판으로 결합한다.<br>연결판은 세로 약 80mm, 윗변 15mm부터 160mm까지, 아랫변 80mm에서 210mm까지의 사각형으로 한다.<br>각 팔찌에는 각각 시정장치를 1개 설치한다.<br>모양은 그림 2와 같이 한다. | 팔찌 및 연결판의 표면에는 화학섬유제의 직물을 팔찌의 안쪽에는 펠트천(felt)을 각각 사용한다.<br>연결판의 심지에는 철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 구속의 | | 가로 100cm부터 170cm까지, 세로 45cm에서 105cm까지의 사각형 네트 2매를 그 양쪽에 부착한 지퍼로 연결한다.<br>전면 네트에 탈착할 수 있는 발벨트 1개를 마련하고 등쪽 네트에 팔벨트 및 손잡이 각 2개를 둔다.<br>전면 네트에 그 한쪽을 고정하고, 등쪽 네트에 그 다른쪽 끝을 접찰할 수 있는 어깨벨트 2개를 둔다.<br>각 어깨벨트에 각각 시정장치 1개를 둔다.<br>모양은 그림 3과 같다. | 네트, 어깨벨트, 발벨트 및 팔벨트는 화학섬유제로 한다.<br>어깨벨트이 시정장치는 철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질로 한다. |

그림 1) 수갑(제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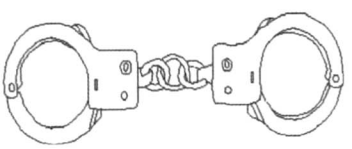

그림 2) 수갑(제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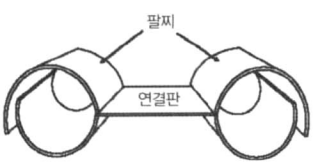


그림 3) 구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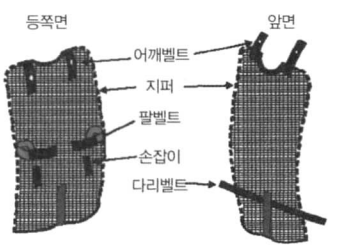

별표 제2(제62조 관계)

| 등 급 | 배 수 | 상해의 정도 |
|---|---|---|
| 제1급 | 1,340 | 1. 양쪽 눈이 실명한 사람 |
| | | 2. 음식물을 씹거나 언어 기능을 못 쓰게 된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소에 계호를 요하는 사람 |
| | | 4. 흉복부 장기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소에 계호를 요하는 사람 |
| | | 5. 양쪽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
| | | 6. 양쪽팔의 사용이 전폐된 사람 |
| | | 7. 양쪽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
| | | 8. 양쪽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사람 |
| 제2급 | 1,190 | 1. 한쪽눈이 실명되거나 다른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
| | | 2. 양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 계호를 요하는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계호를 요하는 사람 |
| | | 5. 양쪽팔의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
| | | 6. 양쪽다리의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
| 제3급 | 1,050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
| | | 2. 음식물을 씹거나 또는 언어기능을 못 쓰게 된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고 종신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기고 종신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5. 양손 양손락의 전부를 상실한 사람 |
| 제4급 | 920 | 1. 양쪽눈의 시력이 0.06이 된 사람 |
| | | 2. 음식물을 씹거나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는 사람 |
| | | 3. 양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 | | 4. 한쪽 팔의 팔꿈치 이상 상실한 사람 |
| | | 5. 한쪽 발의 무릎 이상 상실한 사람 |
| | | 6. 양쪽손 손가락의 전부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사람 |
| | | 7 양쪽다리의 리스프란관절 이상 상실한 사람 |
| 제5급 | 790 | 1. 양쪽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
| | |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하게 장애가 남고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기고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4. 한쪽팔을 손목관절 이상 상실한 사람 |
| | | 5. 한쪽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상실한 사람 |
| | | 6. 한쪽팔의 사용을 전부 상실한 사람 |

| 등 급 | 배 수 | 상해의 정도 |
|---|---|---|
| | | 7. 한쪽다리의 용도를 전부 상실한 사람 |
| | | 8. 양쪽발의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사람 |
| 제6급 | 670 | 1. 양쪽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
| | | 2. 음식물을 씹거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양쪽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아니하면 큰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 |
| | | 4. 한쪽귀의 청력을 전부 상실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된 사람 |
| | | 5.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6. 한쪽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7. 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8. 한쪽손의 5개손가락 또는 엄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
| 제7급 | 560 | 1. 한쪽눈이 실명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 6 이하가 된 사람 |
| | | 2. 양쪽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람 |
| | | 3. 한쪽귀의 청력을 전부 상실하고 다른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람 |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고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고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6. 한쪽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4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쪽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8. 한쪽다리를 리스프란관절 이상 상실한 사람 |
| | | 9. 한쪽팔에 위(僞)관절이 남고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10. 한쪽 다리에 위관절이 남고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11. 양쪽다리의 발가락의 전무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12. 여성의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사람 |
| 제8급 | 450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한쪽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하거나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4. 한쪽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4개의 손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5. 한쪽 다리가 5cm 이상 단축된 사람 |
| | | 6.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한 개 관절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등 급 | 배 수 | 상해의 정도 |
|---|---|---|
| | | 8. 한쪽 팔에 인조관절을 남긴 사람 |
| | | 9. 한쪽 다리에 인조관절을 남긴 사람 |
| | | 10. 한쪽 다리의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사람 |
| 제9급 | 350 | 1. 양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
| | | 3. 양쪽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는 사람 |
| | | 4. 양쪽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는 사람 |
| | | 5. 코가 없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는 사람 |
| | | 6. 음식물 씹기와 언어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 |
| | | 7.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 |
| | | 8. 한쪽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아니하면 큰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가 된 사람 |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전부 상실한 사람 |
| | |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 12. 한쪽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13.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 3개의 손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14. 한쪽발의 제1의 발가락을 호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15. 한족발 발가락의 전부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16.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10급 | 270 | 1. 한쪽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
| | | 2. 정면으로 보아 복시(複視)가 남는 사람 |
| | | 3. 음식물 씹거나 또는 언어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 |
| | | 4. 14개의 치아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5.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인 사람 |
| | | 6.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하니하면 큰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 |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8. 한쪽 다리가 3cm 이상 단축된 사람 |
| | | 9. 한쪽 다리의 엄지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10. 한쪽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는 사람 |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는 사람 |

| 등 급 | 배 수 | 상해의 정도 |
|---|---|---|
| 제11급 | 200 | 1. 양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2. 양쪽 눈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10개 이상의 이빨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5. 양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는 작은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 |
| | | 6. 한쪽귀의 청력이 4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 |
| | | 7. 척추에 변경이 남은 사람 |
| | | 8. 한쪽 손의 두 번째 손가락, 중지 또는 환지를 상실한 사람 |
| | | 9. 한쪽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남겨 노무의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는 사람 |
| 제12급 | 140 | 1 한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를 남긴 사람 |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7개 이빨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쪽 귀의 귓불의 대부분에 결손이 있는 사람 |
| | | 5. 쇄골, 흉골, 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변형이 남는 사람 |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 |
| | | 7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 |
| | | 8. 장관골에 변형이 남는 사람 |
| | | 9.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10. 한쪽 손의 두 번째 손가락, 중지 또는 환지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11. 한쪽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제3의 발가락 이하의 3개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
| | | 12. 한쪽다리의 엄지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 | 13. 국부적으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 14. 남성의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 15. 여성의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제13급 | 90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
| | | 2. 정면시 이외에서 복시가 남는 사람 |
| | | 3.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는 사람 |
| | | 4. 양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 빠짐이 있는 사람 |
| | | 5. 5개 이빨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는 사람 |
| | | 7.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등 급 | 배 수 | 상해의 정도 |
|---|---|---|
| | | 8.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의 뼈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 | | 9. 한쪽 다리를 1cm 이상 단축된 사람 |
| | | 10. 한쪽 다리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상실된 사람 |
| | | 11. 한쪽 다리의 두 번째 발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의 사용이 상실된 사람 |
| 제14급 | 50 | 1. 한쪽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 빠짐이 남는 사람 |
| | | 2. 3개 치아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람 |
| | | 4.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사람 |
| | | 5.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사람 |
| | | 6. 한쪽 손의 엄지 이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을 구부릴수 없게 된 사람 |
| | | 8. 한쪽다리의 세번째 발가락 이하 하나 또는 두 개의 발가락의 사용을 상실한 사람 |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 10 남성의 외모에 흉한 흔적이 남은 사람 |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1)]

(平成十八年五月二十三日法務省令第五十七号)

最終改正：平成二四年四月六日法務省令第二〇号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の規定に基づき、及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定める。

## 第一章　総則

**(趣旨)**

**第一条**　この規則は、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し、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以下「法」という。）の規定による委任に基づく事項その他法の施行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刑事施設視察委員会の名称)**

**第二条**　刑事施設視察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の名称は、視察委員会という文字にその置かれる刑事施設の名称を冠したものとする。

**(委員長)**

**第三条**　委員会に委員長を置き、委員の互選によってこれを定める。

2　委員長は、委員会の会務を総理する。

3　委員長に事故が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指名する委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委員会の議事)**

**第四条**　委員会の会議は、委員長が招集する。

2　委員会は、委員の過半数の出席がなければ、会議を開き、議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委員会の議事に関し必要な事項は、委員会が定める。

**(委員会の庶務)**

**第五条**　委員会の庶務は、その置かれる刑事施設の総務部庶務課において処理する。

**(委員会に対する情報の提供)**

**第六条**　刑事施設の長は、毎年度、その年度における最初の委員会の会議において、刑事施設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刑事施設の運営の状況を把握するのに必要な情報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するものとする。

一　敷地及び建物の概況

二　収容定員及び収容人員の推移

三　職員定員及びその充足の状況

四　参観の許否の状況

---

1)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F12001000057.html (2012. 10. 15 다운로드)

五　法第四十条の規定による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法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の許否の状況

六　被収容者に対して講じた保健衛生上及び医療上の措置の状況

七　宗教家による宗教上の儀式行事及び教誨の実施の状況

八　自弁の書籍等（書籍、雑誌、新聞紙その他の文書図画（信書を除く。）をいう。以下同じ。）の閲覧の禁止又は制限の状況

九　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執った措置の状況

十　民間の篤志家、関係行政機関その他の者による受刑者の処遇に関する協力の状況

十一　矯正処遇等（矯正処遇及び法第八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導をいう。以下同じ。）の実施の状況

十二　被収容者による面会、信書の発受及び法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通信の許否、禁止、差止め又は制限の状況

十三　懲罰の科罰の状況

十四　審査の申請、再審査の申請、法第百六十三条第一項又は第百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及び苦情の申出の状況並びにそれらの処理の結果

十五　仮釈放及び仮出場を許すべき旨の申出の状況

2　刑事施設の長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委員会の会議において、その状況を把握するのに必要な情報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するものとする。

一　刑事施設の運営の状況に相当程度の変更があった場合

二　委員会から刑事施設の運営の状況について説明を求められた場合

三　委員会の意見を受けて措置を講じた場合

**(委員会の意見の反映)**

**第六条の二**　刑事施設の長は、できる限り、委員会が述べた意見を刑事施設の運営に反映させ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刑務官の指定)**

**第七条**　刑務官は、刑事施設の職員であって、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五年法律第九十五号）別表第四イ公安職俸給表（一）の適用を受ける法務事務官であるもののうちから指定する。

**(刑務官の階級)**

**第八条**　刑務官の階級は、矯正監、矯正長、矯正副長、看守長、副看守長、看守部長及び看守とする。

## 第二章　収容の開始

**(収容開始時の告知の方法等)**

**第九条**　法第三十三条の規定による告知を行う際には、同条第一項第六号及び第八号から第十一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職員により、その概要を口頭で説明するものとする。

2　法第三十三条第二項の書面は、居室（被収容者が主として休息及び就寝のために使用する場所とし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室をいう。以下同じ。）に備え付けるもの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法第三十三条の規定による告知を行った後、告知した内容に変更があった場合には、そ

の都度、被収容者に対し、変更された内容を書面で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識別のための身体検査の方法)**

**第十条** 法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一 顔写真の撮影

二 身体の特徴の見分

三 指紋の採取

四 手の静脈の電子計算機の用に供される画像情報の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による採取

## 第三章 処遇の態様

**(法第三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十一条** 法第三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

二 健康診断又は診療の場合

三 前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居室において行うことが困難な処遇を行う場合

## 第四章 起居動作の時間帯等

**(起居動作の時間帯)**

**第十二条** 法第三十八条第一号に掲げる時間帯は、次の各号に規定する時間帯について次に掲げる基準に従い定めるほか、居室に在室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の点検の時間帯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一 食事の時間帯は、朝食については午前六時三十分から午前八時三十分までの間で、昼食については午前十一時から午後一時までの間で、夕食については午後四時から午後七時までの間で定めること。

二 就寝の時間帯は、午後九時から翌日の午前八時までの間で、連続する八時間以上の時間帯を定めること。

三 運動の時間帯は、午前七時から午後五時までの間で定めること。ただし、居室内において運動を行う機会を与えるときは、午前七時から午後七時までの間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四 入浴の時間帯は、午前七時から午後九時までの間で定めること。

2 法第三十八条第二号に掲げる時間帯は、次に掲げる基準に従い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矯正処遇等の時間帯は、午前七時から午後七時までの間で定め、矯正処遇等を行う時間が六時間を超えるときは、その途中に、二十分以上の休憩の時間帯を定めること。

二 余暇に充てられるべき時間帯（以下「余暇時間帯」という。）は、矯正処遇等を行う日においては、二時間以上の時間帯を定めること。

3 法第三十八条各号に掲げる時間帯は、受刑者について、作業の性質、製造作業に係る製品の納期限その他の事情から必要があるときは、前二項各号に掲げる基準によらない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余暇活動の援助)**

**第十三条**　法第三十九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援助は、次項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ほか、運動競技その他の複数の被収容者が共同で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活動の企画、刑事施設に備え付けた書籍等、運動器具、遊具その他の物品の貸与その他余暇時間帯等（受刑者にあっては余暇時間帯をいい、その他の被収容者にあっては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以外の時間帯をいう。以下同じ。）における活動を行うのに必要かつ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2　受刑者の余暇時間帯における教育的活動に要する費用については、刑事施設の長がその活動の内容に照ら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国庫の負担とする。

## 第五章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室内装飾品の貸与等)**

**第十四条**　被収容者には、室内装飾品は、法第八十九条 の規定による優遇措置（以下「優遇措置」という。）として貸与するほか、その者の処遇上特に適当と認める場合に限り、貸与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2　被収容者には、嗜好品は、優遇措置として支給するほか、受刑者の処遇として特別な行事を行う場合並びに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七十八号）第二条 に規定する国民の祝日、一月二日及び一月三日に限り、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第四十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に貸与し、又は支給する物品の品名及びその貸与又は支給の基準は、法務大臣が定める。

**(受刑者の自弁の物品の使用等)**

**第十五条**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物品（第四十二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数量の範囲内で、自弁のものの使用又は摂取を許す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2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 に掲げる物品は、下着（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限る。）及び靴下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し、寝衣について、優遇措置とし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ほか、それら以外の物品については、護送する場合及び外部通勤作業（法第九十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作業をいう。以下同じ。）を行わせる場合において適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3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四号 に掲げる物品は、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ついて、優遇措置として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ほか、外部通勤作業を行わせる場合、法第百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外出又は外泊を許す場合その他法務大臣が定める場合において適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4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三号 に掲げる物品は、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ついて、優遇措置とし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ほか、その者の処遇上適当と認める場合に限り、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5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五号 に掲げる物品は、サンダル、座布団及び余暇時間帯における娯楽的活動に用いる物品（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優遇措置とし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ほか、次に掲げる物品（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

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タオル、石けん、洗髪剤、洗顔用具、調髪用具、靴その他の日用品

二　文房具その他の余暇時間帯における知的及び教育的活動に用いる物品

三　手袋、マスクその他の身体に装着する物品（衣類を除く。）であって、受刑者の健康状態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使用することが必要なもの

6　受刑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の自弁のものの使用及び摂取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並びに法第二編第二章第十二節 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には、これを許さないものとする。受刑者としての地位に照らして使用又は摂取を許すことが適当でない物品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7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第四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受刑者に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す基準は、法務大臣が定める。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の自弁の物品の使用等)**

**第十六条**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物品及び寝具について、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数量の範囲内で、自弁のものの使用又は摂取を許すものとする。

2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三号 に掲げる物品は、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

3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四号 に掲げる物品は、たばこ以外の物品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ものとする。

4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には、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五号 に掲げる物品は、次に掲げる物品（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又は摂取を許すものとする。

一　タオル、石けん、洗髪剤、洗顔用具、調髪用具、サンダル、座布団、ハンガーその他の日用品

二　文房具、遊具その他の余暇時間帯等における知的、教育的及び娯楽的活動に用いる物品

三　手袋、マスクその他の身体に装着する物品（衣類を除く。）であって、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の健康状態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使用することが必要なもの

**(法第四十二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物品)**

**第十七条**　法第四十二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物品は、次に掲げる物品とする。

一　印紙及び印鑑

二　かつら（法第百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外出し、又は外泊する場合、裁判所に出頭する場合その他の刑事施設の長がかつらの着用を許す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に限る。）

## 第六章　金品の取扱い

**(差入れの申出書の提出等)**

**第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金品を交付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これを記載した申出書の提出を求め、又は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生年月日、住所、電話番号及び職業

二　交付の相手方である被収容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の関係

三　交付しようとする現金の額又は物品の品名及び数量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に規定する者に対し、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証明する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又は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保管私物の保管方法)**

**第十九条**　法第四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保管私物（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保管私物」という。）は、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居室内又は居室外の棚、容器その他の保管設備に保管させるものとする。

2　保管私物を居室外の保管設備に保管させるときは、被収容者に、一日に一回以上、その設備に保管私物を出し入れ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居室棟外の保管設備について、次に掲げる日に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が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困難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日曜日

二　土曜日、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休日、一月二日、一月三日及び十二月二十九日から十二月三十一日までの日

三　法務大臣が定める七月から九月までの間の前二号に掲げる日を除いて連続する三日

四　刑事施設の長が、一月につき四日の範囲内で、その刑事施設において矯正処遇等のうち専ら作業（連日作業（炊事、食事の配給又は畜産に関する作業その他その性質上連日行うことが必要な作業をいう。以下同じ。）を除く。）以外のものを行う日として定める日

**(法第四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第二十条**　法第四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保管私物及び被収容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から除く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物品とする。

一　被収容者が当事者である係属中の裁判所の事件に関する記録その他の書類又はその写し

二　眼鏡その他の補正器具

**(差入れ等に関する制限)**

**第二十一条**　法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に対する金品の交付及び被収容者による自弁物品等の購入についての制限は、次に掲げる制限をすること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制限

イ　被収容者に対する金品の交付の申出及び被収容者による自弁物品等の購入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

ロ　一人の者が一定の期間内に一人の被収容者に交付する物品の種類ごとの数量及び被収容者が一定の期間内に購入する自弁物品等の種類ごとの数量

二　被収容者に交付しようとする物品又は被収容者が購入しようとする自弁物品等であって、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種類のものにつ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事業者から購入するものに制限すること。

**(法第五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

**第二十二条**　法第五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一　被収容者が指定した者（一人に限る。）

二　被収容者の配偶者（婚姻の届出をしていないが、事実上婚姻関係と同様の事情にある者を含む。以下同じ。）、子、父母、孫、祖父母及び兄弟姉妹

三　被収容者がその国籍を有する外国の大使、公使、領事官その他領事任務を遂行する者

**(死亡者の遺留物の引渡し)**

**第二十三条**　死亡した被収容者の遺留物（刑事施設に遺留した金品をいう。以下同じ。）は、前条各号に掲げる者のうち、最初にその引渡しを申請した者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ただし、第九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順序に従いその者より先順位の者に対し法第百七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行った場合（その者がその遺留物の交付を申請しない旨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を除く。）において、相当の期間内に、その者からその引渡しの申請があったときは、その遺留物は、その者に引き渡す。

## 第七章　保健衛生及び医療

**(法第五十七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日等)**

**第二十四条**　法第五十七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日は、次に掲げる日とする。

一　第十九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日

二　戸外で矯正処遇として運動競技を行う日

2　被収容者には、一日に三十分以上、かつ、できる限り長時間、運動の機会を与えるものとする。

**(入浴の回数等)**

**第二十五条**　被収容者には、収容の開始後速やかに、及び一週間に二回以上（閉居罰（法第百五十一条第一項第六号の懲罰をいう。以下同じ。）を科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一週間に一回以上）、入浴を行わせる。

2　女子の被収容者の入浴の立会いは、女子の職員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受刑者の調髪及びひげそりの回数等)**

**第二十六条**　男子の受刑者には、刑の執行開始後速やかに、及びおおむね一月に一回、調髪を行わせる。

2　男子の受刑者には、刑の執行開始後速やかに、及び一週間に二回以上（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一週間に一回以上）、ひげそりを行わせる。

3　女子の受刑者には、必要があるときに、調髪及び顔そりを行わせる。

4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が調髪又はひげそりを行わない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宗教、その者が国籍を有する国における風俗慣習、釈放の時期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調髪又はひげそりを行わせないものとする。

5　受刑者に行わせる調髪の髪型の基準は、法務大臣が定める。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の調髪及びひげそりの回数等)**

**第二十七条**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であって男子であるものには、おおむね二月に一回以上、調髪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であって女子であるものには、おおむね三月に一回以上、調髪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3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であって男子であるものには、一週間に二回以上（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一週間に一回以上）、ひげそり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4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であって女子であるものには、一月に一回以上、顔そり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5　受刑者以外の被収容者の行う調髪（自弁により行うものを除く。）の髪型の基準は、法務大臣が定める。

**(調髪及びひげそりの方法の基準)**

**第二十八条**　被収容者の行う調髪、ひげそり及び顔そりの方法の基準は、法務大臣が定める。

**(健康診断の事項)**

**第二十九条**　法第六十一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第三号（体重の測定を除く。）及び第五号から第十一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医師が法務大臣が定める基準に従い必要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健康診断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既往歴、生活歴及び家族の病歴の調査

二　自覚症状及び他覚症状の検査

三　身長及び体重の測定並びに視力及び聴力の検査

四　血圧の測定

五　尿中の糖及び蛋白の有無の検査

六　胸部エックス線検査

七　血色素量及び赤血球数の検査

八　血清グルタミックオキサロアセチックトランスアミナーゼ（ＧＯＴ）、血清グルタミックピルビックトランスアミナーゼ（ＧＰＴ）及びガンマ―グルタミルトランスペプチダーゼ（γ―ＧＴＰ）の検査

九　血清総コレステロール、高比重リポ蛋白コレステロール（ＨＤＬコレステロール）及び血清トリグリセライドの量の検査

十　血糖検査

十一　心電図検査

２　法第六十一条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は、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医師が必要と認める事項について行うものとする。

**(指名医の遵守事項)**

**第三十条**　刑事施設の長は、法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栄養補給の処置を含む。以下同じ。）を受けることを許す場合には、同項の診療を行う医師又は歯科医師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指示するものとする。

一　正当な理由なく、診療を行う場所以外の場所に立ち入ってはならないこと。

二　診療に用いる器具、材料、薬剤その他の物品につ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もの以外のもの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こと。

三　被収容者と金品の授受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四　被収容者と診療のため必要な範囲を明らかに逸脱した会話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事項

**(法第六十四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

**第三十一条**　法第六十四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は、次に掲げる措置とする。

一　感染症の病原体に汚染され、又は汚染された疑いがある飲食物、衣類その他の物品についての消毒、廃棄その他病原体の繁殖及び飛散を防止する措置

二　作業を行わせないこと。

三　入浴又は調髪を行わせないこと。

**(一般用医薬品の自弁)**

**第三十二条** 法務大臣が指定する刑事施設においては、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に対し、薬事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四十五号）第二十五条第一号に規定する一般用医薬品（法務大臣が定める品名のものに限る。)であって、被収容者の健康状態に照らして、使用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可能性があり、かつ、使用することがその健康を害するおそれが少ないものにつ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必要な数量の範囲内で、自弁のものを使用するために保管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2 被収容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一般用医薬品は、必要があるときにその使用を不当に妨げることにならない限り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居室内又は居室外の棚、容器その他の保管設備に保管させるものとする。

## 第八章 書籍等の閲覧

**(翻訳の費用の負担)**

**第三十三条** 法第七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翻訳の費用は、書籍等の閲覧の目的及び被収容者の負担能力に照らしてその者に負担させ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ときに限り、その者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ただし、被収容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場合は、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を除き、この限りでない。

一 国語を読解する能力を有しない者

二 点字によらなければ書籍等を閲覧できない者

**(新聞紙に関する制限)**

**第三十四条** 法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新聞紙の範囲の制限は、時事に関する事項を総合して報道する日刊新聞紙につ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二紙以上の新聞紙のうち、被収容者が選択する一紙以上の新聞紙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時事に関する事項を総合して報道する日刊新聞紙以外の日刊新聞紙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法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新聞紙の取得方法の制限は、日刊新聞紙について、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事業者からの一月以上の継続的な購入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第九章 規律及び秩序の維持

**(法第七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三十五条** 法第七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第十一条各号に掲げる場合とする。

**(警備用具)**

**第三十六条** 法第七十七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措置に必要な警備用具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警棒

二 警じょう

三 さすまた

四 盾

五 催涙弾、催涙ガス筒及び着色弾並びにこれらの発射機

六 催涙スプレー

**(捕縄及び手錠の使用方法)**

**第三十七条** 被収容者を護送する場合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手錠は、被収容者が法第七十八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別表第一に定める第一種の手錠とする。

2 被収容者に捕縄を使用する場合には、血液の循環を著しく妨げることとならないよう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捕縄、手錠及び拘束衣の制式)**

**第三十八条** 捕縄、手錠及び拘束衣の制式は、別表第一のとおりとする。

**(保護室の構造及び設備の基準)**

**第三十九条** 保護室の構造及び設備の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収容された者の身体を傷つけにくい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こと。

二 損壊し、又は汚損しにくい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こと。

三 防音上有効な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こと。

四 室内の視察に支障がない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こと。

五 適当な換気、採光、照明、保温、防湿及び排水のための構造及び設備を有すること。

**(法第八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四十条** 法第八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被収容者が法第八十条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り、又は被収容者以外の者が同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施設の長が小型武器を携帯することを命令したとき。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小型武器を携帯することについて、刑事施設の長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

三 刑事施設の長の命令により、小型武器の使用の訓練又は点検、整備若しくは運搬を行う場合

**(捕縄の使用等の報告)**

**第四十一条** 刑務官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刑事施設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被収容者が法第七十八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捕縄又は手錠を使用したとき。

二 前条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小型武器を携帯したとき。

三 武器を使用したとき。

**(応急の用務に就いて死亡等した被収容者に対する手当金)**

**第四十二条** 第六十一条から第六十三条までの規定は、被収容者が法第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応急の用務に就いて死亡し、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場合に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百条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手当金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章　矯正処遇の実施等

**(処遇要領の策定等)**

**第四十三条**　処遇要領（法第八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処遇要領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一号に定める指導（以下「開始時指導」という。）が終了するまでに定め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矯正処遇の進展状況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処遇要領を変更するものとする。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処遇要領の策定及び変更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大臣が定める。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

**第四十四条**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は、二週間とする。

2　刑の執行開始後、受刑者を他の刑事施設に移送する場合において、移送元の刑事施設において開始時指導を行わないときは、移送元の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期間は、前項の期間に算入しない。

3　刑事施設の長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開始時指導の進展状況、受刑者の年齢、執行すべき刑期、刑事施設への収容歴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開始時指導を行う期間を延長し、又は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

**第四十五条**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期間は、二週間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刑者が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た期間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定める指導を行う期間を延長し、又は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矯正処遇等を行う日)**

**第四十六条**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百三条又は第百四条の規定による指導（以下「矯正指導」という。）を行う日は、次に掲げる日以外の日を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第十九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日

二　受刑者がそ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血族が死亡したことを知り、服喪を希望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日から一週間以内の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日

2　作業（連日作業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を行わない日は、前項各号及び第十九条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日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矯正指導を行う場所の確保、製造作業に係る製品の納期限その他の事情から必要があるときは、第一項第一号及び第十九条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日を矯正指導又は作業を行う日と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日に六時間以上作業を行うときは、その作業を行う受刑者には、できる限り、その日から一月以内の前項に規定する日以外の日を作業を行わない日と定めるものとする。

4　連日作業を行う受刑者については、第二項に規定する日の日数及び一日の作業時間を考慮し、作業を行わない日を定めるものとする。

**(矯正処遇等を行う時間)**

**第四十七条**　矯正指導及び作業を行う時間は、これらを合算して一日につき八時間を超えない範囲内で定め

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矯正指導を行う場所の確保、製造作業に係る製品の納期限その他の事情から必要があるときは、矯正指導及び作業を行う時間は、これらを合算して一日につき十二時間を超えない範囲内で、同項の範囲を超え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

**(制限の緩和)**

**第四十八条**　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受刑者の生活及び行動に対する制限は、開始時指導が終了した受刑者について、第一種、第二種、第三種又は第四種の区分（以下「制限区分」という。）を指定し、又はその指定を変更し、その制限区分の指定に応じ次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処遇を行うことにより、順次緩和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開始時指導を終了した後速やかに、法第三十条の目的を達成する見込みを評価し、その評価に応じて、制限区分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定期的に、及び随時、前項の見込みを評価し、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評価に応じて、制限区分の指定を変更するものとする。

**(居室の指定等)**

**第四十九条**　第一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の居室は、収容を確保するため通常必要とされる設備又は措置の全部又は一部を設けず、又は講じない室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　第二種又は第三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の居室は、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場合において、処遇上適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前項の室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3　第一種又は第二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矯正処遇等は、主として居室棟外の適当な場所で行うものとし、処遇上適当と認めるときは法第八十七条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の外の適当な場所で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4　第三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矯正処遇等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主として居室棟外の適当な場所で行うものとする。

5　第四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矯正処遇等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居室棟内で行うものとする。

6　法第七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法第百十二条本文の規定による面会の立会い又はその状況の録音若しくは録画その他の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措置は、個別具体の事情から実施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を除き、刑事施設の長が制限区分に応じた実施の頻度及び態様の基準として定めるところに従い、実施するものとする。

**(第四種の制限区分に係る留意事項)**

**第四十九条の二**　刑事施設の長は、第四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法の規定により隔離されている者を除く。）に対し、上位の制限区分に指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働きかけを行うとともに、できる限り集団処遇の機会を付与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開放的施設における処遇)**

**第五十条**　法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開放的施設での処遇は、第一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

刑者につ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制限区分の指定の手続等)**

**第五十一条**　前四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制限区分の指定及びその指定の変更の手続その他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受刑者の生活及び行動に対する制限の緩和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大臣が定める。

**(法第八十九条第四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処遇)**

**第五十二条**　法第八十九条第四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処遇は、次に掲げる処遇とする。

一　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を定めること。

二　余暇時間帯において、テレビ若しくはビデオを視聴し、又は刑事施設の長が企画する活動に参加することを許すことその他の刑事施設の長が定める処遇

**(優遇措置)**

**第五十三条**　優遇措置は、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受刑者について、その受刑態度の評価に基づき優遇区分を指定し、その区分に応じて処遇を行うことにより、講ずるものとする。

一　優遇区分は、第一類、第二類、第三類、第四類及び第五類の区分とする。

二　刑事施設の長は、四月から九月まで又は十月から翌年三月までの期間（以下「評価期間」という。）の初日以前から継続して刑事施設において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受刑者又は評価期間の末日に優遇区分の指定を受けている受刑者であって、その評価期間内に一月以上刑の執行を受けたものについて、その評価期間が経過した後十日以内に、その評価期間における受刑態度の評価に基づき、優遇区分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三　刑事施設の長は、前号に規定する受刑者に対しその評価期間が経過した後に法第百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褒賞を行っ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評価期間における受刑態度に加えて、その褒賞に係る行為の内容その他の事情を評価し、その評価に基づき、優遇区分を指定し、又は優遇区分の指定を上位の優遇区分の指定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四　刑事施設の長は、第二号に規定する受刑者がその評価期間が経過した後に反則行為（懲罰を科せられるべき行為をいう。以下同じ。）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評価期間における受刑態度に加えて、その反則行為の性質、軽重及び動機、反則行為後におけるその者の態度その他の事情を評価し、その評価に基づき、優遇区分を指定し、又は優遇区分の指定を下位の優遇区分の指定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五　前二号の規定により優遇区分を指定し、又は優遇区分の指定を変更した場合には、受刑者に対して褒賞を行った日又は受刑者がその反則行為をした日の属する評価期間に係る優遇区分の指定を行うに当たっては、その褒賞を行わず、又はその反則行為をしなかったものとして、受刑態度を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号の規定により優遇区分を指定し、又は優遇区分の指定を変更し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六　刑事施設の長は、刑事施設における刑の執行の開始の日（刑事施設において残刑の執行が開始された場合には、その開始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の属する月の翌月の初日まで継続して刑事施設において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受刑者であって、優遇区分の指定を受け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第二号の規定により優遇区分を指定すべき場合を除き、その日に、懲罰を科されたことがある場合に

は第五類の優遇区分を、懲罰を科されたことがない場合であって受刑態度が不良であることを示す事由として法務大臣が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第四類の優遇区分を、それら以外の場合には第三類の優遇区分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七　刑事施設の長は、前号の規定により第三類又は第四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懲罰を科した場合には、優遇区分の指定を第五類の優遇区分の指定に変更するものとする。

八　優遇区分の指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その効力を失うものとする。

イ　刑事施設の長が次に優遇区分を指定し、又はその指定を変更したとき。

ロ　受刑者が刑事施設から釈放されたとき。

九　第一類から第四類まで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法及びこの規則の規定の範囲内で、次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処遇内容)**

**第五十四条**　第一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次に掲げ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一　法第四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室内装飾品その他の刑事施設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を貸与し、又は一月に一回以上、嗜好品を支給すること。

二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寝衣、室内装飾品、サンダル、座布団及び余暇時間帯における娯楽的活動に用いる物品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

三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食料品及び飲料について一月に一回以上、嗜好品について一月に二回以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こと。

四　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間を第一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以外の受刑者が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間のおおむね二倍に定めること。

五　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回数を一月につき七回以上に定めること。

六　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を一月につき十通以上に定めること。

七　刑事施設の長が第一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行う処遇として定めるもの

2　第二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次に掲げ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一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室内装飾品、サンダル及び座布団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

二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嗜好品について、一月に二回以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こと。

三　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回数を一月につき五回以上に定めること。

四　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を一月につき七通以上に定めること。

五　刑事施設の長が第二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行う処遇として定めるもの

3　第三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次に掲げ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一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室内装飾品、サンダル及び座布団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すこと。

二　法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嗜好品について、一月に一回以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こと。

三　面会をすることができる回数を一月につき三回以上に定めること。

四　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を一月につき五通以上に定めること。

五　刑事施設の長が第三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行う処遇として定めるもの

4　第四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次に掲げ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一　受刑者が発信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を一月につき五通以上に定めること。

二　刑事施設の長が第四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行う処遇として定めるもの

**(優遇区分の指定の手続等)**

**第五十五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優遇区分の指定及びその指定の変更の手続その他優遇措置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大臣が定める。

**(禁錮受刑者等の作業)**

**第五十六条**　禁錮受刑者又は拘留受刑者には、刑事施設の管理運営上支障を生じ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法第九十三条に規定する作業を行う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正当な理由なく、作業を怠ったことがあ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法第九十三条の規定により作業を行うことを許された者は、作業を行わないことを希望する場合には、二週間前までに申し出なければならない。

**(法第九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

**第五十七条**　法第九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は、次に掲げる事由とする。

一　法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

二　第一種又は第二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こと。

三　仮釈放を許す決定がされていること。

**(位置把握装置の携帯又は装着)**

**第五十七条の二**　刑事施設の長は、外部通勤作業を行わせ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外部通勤作業を行う受刑者が位置把握装置（その者の位置を把握できる小型軽量な装置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第六十五条の二において同じ。）を携帯し、又は装着することを条件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外部通勤作業を行っている間の位置を随時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執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二　位置把握装置を携帯し、又は装着することが、外部通勤作業の目的を妨げないこと。

**(外部事業主との取決め)**

**第五十八条**　法第九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外部事業主との間の取決め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行うものとする。

一　外部通勤作業を行わせる期間

二　受刑者の行う作業の種類及び内容並びに作業時間

三　受刑者の安全及び衛生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措置

四　外部事業主による受刑者の指導監督の方法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外部通勤作業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

2　前項の取決めは、書面で行うものとする。

**(報奨金計算額の加算)**

**第五十九条**　法第九十八条第二項本文の規定による加算は、毎月十五日までに行う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加算を行っ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加算に係る金額を受刑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3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の釈放の際、法第九十八条第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加算に係る金額をその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釈放前における作業報奨金の支給)**

**第六十条**　法第九十八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金額は、その支給の時における報奨金計算額の二分の一を超え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範囲を超えた金額を支給することがその使用の目的に照らして適当であると特に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作業報奨金に相当する金額等の支給)**

**第六十一条**　法第九十九条又は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作業報奨金に相当する金額又は死亡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第二十三条の規定を準用する。

2　法第百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障害手当金の支給は、被収容者が治った後遅滞なく行い、法第百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特別手当金の支給は、釈放の際に行うものとする。

**(死亡手当金及び障害手当金の額の算出の基準)**

**第六十二条**　法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死亡手当金及び障害手当金の額は、この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する金額を基準とする。

2　死亡手当金及び障害手当金の額の算出の基礎となる額（以下この条において「支給基礎日額」という。）は、三千九百六十円とする。

3　死亡手当金の額は、支給基礎日額に千六十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

4　障害手当金の額は、別表第二に定める障害の等級に応じ、支給基礎日額に同表に定める倍数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

5　別表第二に定める程度の障害が二以上ある場合の障害の等級は、重い障害に応ずる等級による。

6　次に掲げる場合の等級は、次の各号のうち最も有利なものによる。

一　第十三級以上に該当する障害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等級の一級上位の等級

二　第八級以上に該当する障害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等級の二級上位の等級

三　第五級以上に該当する障害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等級の三級上位の等級

7　前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障害手当金の額は、それぞれの障害に応ずる等級による障害手当金の額を合算した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8　別表第二に定める各等級の障害に該当しない障害であって、同表に定める各等級の障害に相当するものは、同表に定める当該等級の障害とする。

9　既に障害のある受刑者が、法による支給の原因となる負傷又は疾病によって同一部位について障害の程度を加重した場合において行う障害手当金の額の算出については、その者の加重後の障害の等級に応ずる障害手当金の額から、加重前の障害の等級に応ずる障害手当金の額を差し引くものとする。

**(特別手当金の額等)**

**第六十三条**　法第百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支給する特別手当金の額は、被収容者が治った場合において身体に残ると予想される障害を身体に残った障害とみなし、前条第二項及び第四項から第九項までの規定に準じて

算出した金額とする。ただし、受刑者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た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支給しないことができる。

**(法第百三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情)**

**第六十四条**　法第百三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情は、次に掲げる事情とする。

一　人の生命又は身体を害する罪により刑の執行を受けている者について、その被害者及びその親族その他の関係者に対する謝罪の意識が低いこと。

二　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百七十六条から第百七十九条まで、第百八十一条、第二百二十五条（わいせつ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わいせつ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第二百二十七条第三項（わいせつの目的に係る部分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第二百二十八条（同法第二百二十五条、第二百二十六条の二第三項又は第二百二十七条第三項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百四十一条又は第二百四十三条（同法第二百四十一条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の原因となる認知の偏り又は自己統制力の不足があること。

三　自動車の運転に関し刑法第二百八条の二若しくは第二百十一条第二項の罪又は道路交通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五号）第百十六条から第百十七条の二（第一号及び第三号に係る部分に限る。）まで、第百十七条の二の二（第一号及び第五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百十七条の三、第百十七条の四（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百十七条の五（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百十八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二号の二まで、第三号の二、第四号、第五号（自動車を運転する行為に係る部分に限る。）、第七号、第九号から第十号まで、第十二号の二、第十二号の三及び第十五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を犯した者について、交通安全に関する意識が低いこと。

四　職場における人間関係に適応するのに必要な心構え及び行動様式が身に付いていないこと。

**(法第百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

**第六十五条**　法第百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は、次に掲げる事由とする。

一　法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

二　第一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こと。

三　仮釈放を許す決定がされていること。

**(位置把握装置の携帯又は装着)**

**第六十五条の二**　刑事施設の長は、法第百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外出又は外泊を許す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外出又は外泊（以下この条において「外出等」という。）をする受刑者が位置把握装置を携帯し、又は装着することを条件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外出等をしている間の位置を随時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執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二　位置把握装置を携帯し、又は装着することが、外出等の目的を妨げないこと。

## 第十一章　外部交通

**（面会の相手方の届出）**

**第六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及び死刑確定者に対し、面会の申出を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者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生年月日、住所及び職業

二　自己との関係

三　想される面会の目的

四　その他刑事施設の長が必要と認める事項

２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受刑者及び死刑確定者に対し、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証明する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又は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の申出書の提出)**

**第六十七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との面会の申出をする者に対し、次の各号（受刑者及び死刑確定者以外の被収容者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申出書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生年月日、住所及び職業

二　面会を希望する被収容者の氏名及びその者との関係

三　面会の目的

２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被収容者との面会の申出をする者に対し、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証明する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又は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の相手方の確認)**

**第六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との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被収容者に対して、その申出をした者の氏名及び被収容者との関係について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の相手方の人数の制限)**

**第六十九条**　法第百十四条第一項（法第百十八条第五項（法第百二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十九条、第百二十二条及び第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十二条及び第七十三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の面会の相手方の人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人数は、三人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面会の場所の制限)**

**第七十条**　被収容者の面会の場所は、刑事施設の長が指定するものとする。

２　被収容者の面会の場所は、被収容者と面会の相手方との間を仕切る設備を有する室（以下「仕切り室」という。）とする。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外の被収容者の面会にあっては、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刑事施設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被収容者が病室に収容されている場合その他の法務大臣が定める場合

二　親族と面会する場合その他の仕切り室以外の場所で面会することを適当とする事情がある場合

**(面会の日の制限)**

**第七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その刑事施設において面会（弁護人又は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三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以下「弁護人等」という。）との面会を除く。）を許す日（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面会日」という。）を定めるものとする。

２　一月につき面会日として定める日数は、その月の日数からその月の第十九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日の日数を差し引いた日数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３　各月の面会日は、その月の初日の一月前までに被収容者に告知するとともに、その月の初日の一月前から刑事施設の公衆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する方法その他の方法により公告するものとする。

**(面会の時間帯の制限)**

**第七十二条**　法第百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の面会の時間帯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時間は、一日につき六時間（第十九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日を面会日として定めるときは、四時間）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面会の時間の制限)**

**第七十三条**　法第百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の面会の時間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時間は、三十分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ただし、面会の申出の状況、面会の場所として指定する室の数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ときは、五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で、三十分を下回る時間に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の回数の制限)**

**第七十四条**　法第百十四条第一項（法第百二十二条及び第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被収容者であって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しないものの面会の回数についての制限は、弁護人等以外の者との面会の回数につ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面会の相手方の遵守事項の掲示)**

**第七十五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の面会の相手方（弁護人等を除く。）が遵守すべき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て刑事施設内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するものとする。

一　法第百十三条第一項第一号イ又はロ（これらの規定を法第百十七条、第百十九条、第百二十二条、第百二十三条及び第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該当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二　法第百十三条第一項第二号イからハまで（これらの規定を法第百十七条、第百十九条、第百二十二条、第百二十三条及び第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ニ（法第百十七条、第百十九条及び第百二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ホ（法第百十九条、第百二十二条及び第百二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信書の発受の相手方の届出)**

**第七十六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及び死刑確定者に対し、信書を発受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者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届け出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一　氏名、生年月日、住所及び職業

二　自己との関係

三　予想される信書の発受の目的

四　その他刑事施設の長が必要と認める事項

2　第六十六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信書の作成要領の制限)**

**第七十七条**　法第百三十条第一項（法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条から第八十条まで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要領についての制限は、次に掲げる事項（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信書について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につ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信書の用紙及び封筒の規格並びに信書の作成に用いる筆記具の種類

二　一通の信書に用いる用紙の枚数

三　一枚の用紙に記載する字数その他信書の検査を円滑に行うために必要な記載方法

2　被収容者が発する信書に用いる用紙の枚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枚数は、五枚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3　被収容者が発する信書の一枚の用紙に記載する字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字数は、四百字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信書の発信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の制限)**

**第七十八条**　刑事施設の長は、法第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被収容者がする信書の発信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について制限をする場合にも、緊急の発信の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発信の申請を受け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の制限)**

**第七十九条**　法第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についての制限は、次に掲げる信書以外の信書につ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委員会に対して提出する書面

二　審査の申請、再審査の申請、法第百六十三条第一項又は第百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及び苦情の申出の書面

三　被告人又は被疑者である被収容者であって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しないものについて、弁護人等に対して発する信書

**(信書の発受の方法の制限)**

**第八十条**　法第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信書を発する方法についての制限は、次に掲げる方法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郵便（郵便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五号）第四十四条に規定する特殊取扱（速達及び年賀特別郵便の取扱いを除く。）によるものを除く。）による方法

二　電報による方法（緊急の必要がある場合及び弁護人等に対して信書を発する場合に限る。）

2　法第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収容者が信書を受ける方法についての制限は、次に掲げる方法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郵便又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信書便事業者による同条第二項に規定す

る信書便による方法

二　電報による方法

**(複数の被収容者にあてた信書等の取扱い)**

**第八十一条**　複数の被収容者にあてた信書であって、被収容者が受けることを許すものは、そのうちの一人に交付する。

2　被収容者にあてた信書であって、被収容者が受けることを許すもののうち、紙以外の物品にその内容が記載されたもの、音を発する装置の付いたものその他信書以外の物品としての性質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者に引き渡すこととならない場合には、法第百二十八条（法第百三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二十九条（法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第百四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者がこれを受けることを禁止し、又は差し止める場合を除き、その者に、その物品の提示その他の方法によりその内容（法第百二十九条の規定により削除し、又は抹消すべき箇所を除く。）を了知させるものとする。

**(死亡者の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

**第八十二条**　法第百三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法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信書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複製（法第百三十二条第五項（法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八条、第百四十一条、第百四十二条及び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を除く。第九十二条第一項及び第九十八条において「発受禁止信書等」という。）については、第二十三条の規定を準用する。

**(法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

**第八十三条**　法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由は、次に掲げる事由とする。

一　法第八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開放的施設において処遇を受けていること。

二　第一種又は第二種の制限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こと。

三　法第八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定める指導を受けていること。

四　面会することが極めて困難である親族と法第百四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通信を行うことが人道上の観点から特に必要と認められること。

**(翻訳等の費用の負担)**

**第八十四条**　法第百四十八条第一項後段又は第二項後段に規定する通訳又は翻訳の費用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面会等（面会又は法第百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信書の発受の目的及び被収容者の負担能力に照らしてその者に負担させ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に限り、その者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一　被収容者がその国籍を有する外国の大使、公使、領事官その他領事任務を遂行する者と面会し、又はその者との間で信書の発受をする場合

二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被収容者がその費用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イ　被収容者が次に掲げる者と面会する場合

(1) 被収容者の親族

(2)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被収容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等をすることが必要な者

(3) 受刑者について、そ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その釈放後にこれを雇用しようとする者その他の面会等又は信書の発受によりそ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4) 死刑確定者について、面会によりその者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ロ　被収容者が次に掲げる信書の発受をする場合

(1) 被収容者の親族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

(2)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事業の維持その他の被収容者の身分上、法律上又は業務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発受する信書

(3) 受刑者について、そ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又はその釈放後にこれを雇用しようとする者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その他信書の発受によりそ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信書

(4) 死刑確定者について、信書の発受によりその心情の安定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信書

## 第十二章　賞罰

**(褒賞)**

**第八十五条**　法第百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褒賞は、次に掲げるものの授与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一　賞詞

二　賞票

三　一万円以下の賞金

四　一万円以下の金額に相当する賞品

**(閉居罰の執行方法)**

**第八十六条**　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受刑者の居室は、単独室とする。ただし、刑事施設の長が閉居罰の執行に支障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刑事施設の長は、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被収容者について、法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ほか、謹慎させるため必要な限度で、その生活及び行動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運動の機会の付与)**

**第八十七条**　閉居罰を科されている被収容者に運動の機会を与える日数は、一週間につき一日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反則行為をした疑いがある受刑者の隔離)**

**第八十八条**　法第百五十四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隔離は、受刑者がした疑いが現に存する反則行為が二以上ある場合であっても、一回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ただし、それらの反則行為に係る調査を並行して行うことが困難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法第百五十四条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八十九条**　法第百五十四条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第十一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場合

二　反則行為についての取調べの場合

三　前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居室において行うことが困難な処遇を行う場合

**(弁解の方法)**

**第九十条**　法第百五十五条の規定による弁解は、これを聴取する職員の面前に出頭し、口頭で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被収容者は、職員の面前に出頭して口頭で行うことに代えて、弁解を記載した書面を提出し、又は被収容者を補佐する職員が弁解を録取する方法により弁解を行うことができる。

## 第十三章　釈放及び死亡

**(刑の執行停止事由の通報)**

**第九十一条**　刑事施設の長は、受刑者について、刑の執行を停止すべき事由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検察官に対し、その旨を通報するものとする。

**(死亡の通知)**

**第九十二条** 法第百七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は、次に掲げる順序に従い、先順位にある一人の者に対し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交付すべき遺留物、支給すべき作業報奨金に相当する金額若しくは死亡手当金又は発受禁止信書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通知を受けた者がその交付又は支給を申請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同順序に従い、その者と同順位又は下位の順位にある他の者のうち、先順位にある一人の者に対しても行うものとする。

一　第二十二条第一号に掲げる者

二　配偶者

三　子

四　父母

五　孫

六　祖父母

七　兄弟姉妹

八　第二十二条第三号に掲げる者

2　外国の国籍を有する被収容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刑事施設の長は、第二十二条第三号に掲げる者に対し、前項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第百七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行うべき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も、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検視)**

**第九十三条**　刑事施設の長は、被収容者が死亡したときは、その死体を検視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は、前項の検視の結果、変死又は変死の疑い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警察官たる司法警察員に対し、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死体の埋葬等)**

**第九十四条**　刑事施設の長が被収容者の死体の埋葬を行うときは、その死体は、刑事施設の長が管理し、又は使用する墓地の墳墓に埋葬するものとする。

2　刑事施設の長が被収容者の死体の火葬を行うときは、その焼骨は、刑事施設の長が管理し、又は使用する

墓地の墳墓又は納骨堂に埋蔵し、又は収蔵するものとする。

## 第十四章　労役場及び監置場

**(労役場等への準用)**

**第九十五条**　第六条及び第六条の二の規定は、刑事施設に附置された労役場及び監置場の運営について準用する。

**(労役場留置者)**

**第九十六条**　労役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この規則中の懲役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被監置者)**

**第九十七条**　監置場に留置されている者（以下「監置場留置者」という。）については、この規則（第一章、第十六条及び第十一章を除く。）中の各種被収容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2　監置場留置者の自弁の物品の使用及び摂取については、第十五条及び第十六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五条第一項中「物品（法第四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とあるのは「物品（衣類、日用品及び文房具並びに法第四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同条第七項中「法第四十一条第一項」とあるのは「法第二百八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四十一条第一項」と、第十六条第一項中「法第四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及び寝具」とあるのは「衣類、日用品及び文房具（法第四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監置場留置者（次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第十一章中の受刑者（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4　監置場留置者（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勾留中に監置の裁判の執行を受けたものに限る。）の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第十一章中の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受刑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5　監置の裁判の執行のため法第二百八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刑事施設に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第十六条及び第十一章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 第十五章　雑則

**第九十八条**　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及び第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は、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五年法律第六十九号）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同法第一条第二号に定める要請国の官憲に引き渡した受刑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者に係る遺留物、作業報奨金又は発受禁止信書等について準用する。

##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規則は、法の施行の日（平成十八年五月二十四日。以下「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

**(収容開始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第二条**　第九条の規定は、法附則第三条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される法第十五条第一項前段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告知について準用する。

**(処遇要領の策定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三条**　この規則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開始時指導を行うべき場合を除き、この規則の施行後速やかに、法第六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処遇要領を定めるものとする。

**(制限区分の指定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規則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被勾留受刑者を除く。）については、開始時指導を行うべき場合を除き、施行日に、制限区分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最初に優遇区分を指定するまでの間の処遇に関する特例)**

**第五条**　この規則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平成十八年六月一日から最初に優遇区分を指定するまでの間、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類、第二類、第三類、第四類又は第五類の区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経過処遇区分」という。）を指定し、又はその指定を変更し、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

一　経過処遇区分の指定及びその指定の変更は、刑事施設の長が行うものとする。

二　施行日に、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省令の整備に関する省令（平成十八年法務省令第五十八号）第一条の規定による廃止前の行刑累進処遇令（昭和八年司法省令第三十五号）第十六条第一項の階級に編入されていた者については、次の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編入されていた階級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経過処遇区分を指定し、それ以外の者については、受刑態度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経過処遇区分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イ　第一級の階級　第二類の経過処遇区分

ロ　第二級の階級　第三類の経過処遇区分

ハ　第三級の階級　第四類の経過処遇区分

ニ　第四級の階級　第五類の経過処遇区分

三　受刑者の受刑態度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経過処遇区分の指定を上位の経過処遇区分の指定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四　受刑者が反則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反則行為の性質、軽重及び動機、反則行為後におけるその者の態度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経過処遇区分の指定を下位の経過処遇区分の指定に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五　第一類、第二類、第三類又は第四類の経過処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それぞれ、第一類、第二類、第三類又は第四類の優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とみなして、法及びこの規則の規定の範囲内で、第四十六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処遇を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類の経過処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第四十六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処遇を行うほか、寝衣について、自弁のものの使用を許し、第四類の経過処遇区分に指定されている受刑者には、第四十六条第四項各号に掲げる処遇を行うほか、法第十八条の規定により、嗜好品について、二月に一回以上、自弁のものの摂取を許すものとする。

**(平成十九年四月一日以後最初に優遇区分を指定するまでの間の優遇措置に関する特例)**

**第六条**　この規則の施行の際現に刑事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受刑者について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以後

最初に優遇区分を指定するまでの間は、平成十八年六月から同年九月までの期間を評価期間とみなして、第四十五条及び第四十六条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五条中「六月」とあるのは、「四月」とする。

2 前条第四号の規定により経過処遇区分の指定を変更した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り評価期間とみなされる期間に係る優遇区分の指定を行うに当たっては、その反則行為をしなかったものとして、受刑態度を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善指導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七条**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九十号）第三条の規定の施行の日（平成十八年六月一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第五十八条第三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とあるのは、「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とする。

**(信書の発受の方法の制限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八条** 郵政民営化法等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百二号）の施行の日（平成十九年十月一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第八十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第四十四条」とあるのは、「第五十七条第一項」とする。

## 附 則 (平成一九年三月三〇日法務省令第二六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省令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七十九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五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附 則 (平成一九年五月二五日法務省令第三五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省令は、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五十八号。以下「改正法」という。）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収容開始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第二条**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以下「新規則」という。）第九条の規定は、改正法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される改正法による改正後の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以下「新法」という。）第三十三条第一項前段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告知並びに改正法附則第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改正法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される新法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法第三十三条第一項前段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告知について準用する。

**(一般用医薬品の自弁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三条** 薬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六十九号）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新

規則第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薬事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四十五号）第二十五条第一号に規定する一般用医薬品」とあるのは「医療用医薬品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医薬品以外の医薬品」とし、同条第二項中「一般用医薬品」とあるのは「医薬品」とする。

## 附　則（平成一九年八月二四日法務省令第四九号）

**（施行期日）**

この省令は、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九年法律第九十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平成二〇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一五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平成二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附　則（平成二〇年五月三〇日法務省令第四〇号）

この省令は、更生保護法（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八号）の施行の日（平成二十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平成二一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一三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平成二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附　則（平成二一年六月四日法務省令第三〇号）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平成二二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一六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平成二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附　則（平成二三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一二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省令は、平成二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支給基礎日額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条**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額の算出の基礎となる額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障害の等級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三条**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生じた障害手当金又は特別手当金（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第百条第二項又は第四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障害手当金又は特別手当金をいう。以下同じ。）の支給事由に係る障害に関する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以下「規則」という。）別表第二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生じた障害手当金又は特別手当金の支給事由に係る障害であって、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規則別表第二第十二級の項障害の程度の欄第十四号及び同表第十四級の項障害の程度の欄第十号に該当するもの（平成二十二年六月十日前に障害手当金又は特別手当金の支給事由が生じ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障害に係る障害手当金又は特別手当金の支給事由が生じた日から、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規則別表第二の規定を適用する。

## 附　則（平成二三年五月二三日法務省令第一八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省令は、平成二十三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優遇区分の指定又は変更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条**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第五十三条第三号及び第五号の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褒賞を行った場合についても適用する。

## 附　則（平成二四年四月六日法務省令第二〇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改正後の第六十二条第二項及び次項の規定は、平成二十四年四月一日から適用する。

**(経過措置)**

2　平成二十四年三月三十一日以前に支給事由が生じた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百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十二条第二項（同法第二百八十八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死亡手当金又は障害手当金の支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別表第一　（第三十八条関係）**

| 種類 | 構造 | 材質 | |
|---|---|---|---|
| 捕縄 | 第一種 | 縄の直径はおおむね六ミリメートルとし、長さはおおむね三メートル以上十五メートル以下とする。<br>縄の一端をおおむね十二センチメートルのところで折り返して元縄に固定し、輪状になる部分を設ける。 | 化学繊維製とする。<br>縄の中心部には、柔軟かつ堅ろうな鋼索を用いる。 |
| | 第二種 | 縄の直径はおおむね三ミリメートルとし、長さはおおむね六メートルとする。<br>縄の一端をおおむね四・五センチメートルのところで折り返して元縄に固定し、輪状になる部分を設ける。 | 化学繊維製とする。 |
| 手錠 | 第一種 | 開閉可能な腕輪二個を鎖で連結する。<br>各腕輪は、歯止めで止まり、施錠できるものとする。<br>形状は、図一のとおりとする。 | 鉄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を有する材質のものとする。 |
| | 第二種 | 開閉可能な腕輪二個を連結板で結合する。<br>連結板は、縦おおむね八十ミリメートル、上辺十五ミリメートルから百六十ミリメートルまで、下辺八十ミリメートルから二百十ミリメートルまでの台形状のものとする。<br>各腕輪に、それぞれ施錠装置一個を設ける。<br>形状は、図二のとおりとする。 | 腕輪及び連結板の表面には化学繊維製の織物を、腕輪の内側にはフェルトをそれぞれ用いる。<br>連結板の芯地には、鉄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を有する材質のものを用いる。<br>腕輪の施錠装置は、鉄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を有する材質のものとする。 |
| 拘束衣 | | 縦百十センチメートルから百七十センチメートルまで、横四十五センチメートルから百五センチメートルまでの長方形のネット二枚を、その両側に設けたジッパーで連結する。<br>前面のネットに着脱できる足ベルト一個を設け、背面のネットに腕ベルト及び取っ手各二個を設ける。<br>前面のネットにその一端を固定し、背面のネットにその他端を接着できる肩ベルト二個を設ける。<br>各肩ベルトに、それぞれ施錠装置一個を設ける。<br>形状は、図三のとおりとする。 | ネット、肩ベルト、足ベルト及び腕ベルトは、化学繊維製とする。<br>肩ベルトの施錠装置は、鉄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を有する材質のものとする。 |

図一　手錠（第一種）　（略）
図二　手錠（第二種）　（略）
図三　拘束衣　（略）

## 別表第二　（第六十二条関係）

| 等級 | 倍数 | 障害の程度 |
|---|---|---|
| 第一級 | 一、三四〇 | 一　両眼が失明したもの |
| | | 二　咀嚼　及び言語の機能を廃したもの |
| | | 三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著しい障害を残し、常に介護を要するもの |
| | | 四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常に介護を要するもの |
| | | 五　両上肢をひじ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六　両上肢の用を全廃したもの |
| | | 七　両下肢をひざ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八　両下肢の用を全廃したもの |
| 第二級 | 一、一九〇 | 一　一眼が失明し、他眼の視力が〇・〇二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両眼の視力が〇・〇二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三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著しい障害を残し、随時介護を要するもの |
| | | 四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随時介護を要するもの |
| | | 五　両上肢を手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六　両下肢を足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第三級 | 一、〇五〇 | 一　一眼が失明し、他眼の視力が〇・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咀嚼又は言語の機能を廃したもの |
| | | 三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著しい障害を残し、終身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四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終身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五　両手の手指の全部を失ったもの |
| 第四級 | 九二〇 | 一　両眼の視力が〇・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咀嚼及び言語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三　両耳の聴力を全く失ったもの |
| | | 四　一上肢をひじ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五　一下肢をひざ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六　両手の手指の全部の用を廃したもの |
| | | 七　両足をリスフラン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第五級 | 七九〇 | 一　一眼が失明し、他眼の視力が〇・一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著しい障害を残し、特に軽易な労務以外の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三　胸腹部臓器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し、特に軽易な労務以外の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四　一上肢を手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五　一下肢を足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六　一上肢の用を全廃したもの |

| 等級 | 倍数 | 障害の程度 |
|---|---|---|
| | | 七　一下肢の用を全廃したもの |
| | | 八　両足の足指の全部を失ったもの |
| 第六級 | 六七〇 | 一　両眼の視力が〇・一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咀嚼又は言語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三　両耳の聴力が耳に接しなければ大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四　一耳の聴力を全く失い、他耳の聴力が四十センチ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五　脊柱に著しい変形又は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六　一上肢の三大関節中の二関節の用を廃したもの |
| | | 七　一下肢の三大関節中の二関節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八　一手の五の手指又は母指を含み四の手指を失ったもの |
| 第七級 | 五六〇 | 一　一眼が失明し、他眼の視力が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両耳の聴力が四十センチ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三　一耳の聴力を全く失い、他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四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障害を残し、軽易な労務以外の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五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軽易な労務以外の労務に服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
| | | 六　一手の母指を含み三の手指を失ったもの又は母指以外の四の手指を失ったもの |
| | | 七　一手の五の手指又は母指を含み四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八　一足をリスフラン関節以上で失ったもの |
| | | 九　一上肢に偽関節を残し、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十　一下肢に偽関節を残し、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十一　両足の足指の全部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二　外貌に著しい醜状を残すもの |
| | | 十三　両側の睾丸を失ったもの |
| 第八級 | 四五〇 | 一　一眼が失明し、又は一眼の視力が〇・〇二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脊柱に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三　一手の母指を含み二の手指を失ったもの又は母指以外の三の手指を失ったもの |
| | | 四　一手の母指を含み三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又は母指以外の四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五　一下肢を五センチメートル以上短縮したもの |
| | | 六　一上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用を廃したもの |
| | | 七　一下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八　一上肢に偽関節を残すもの |

| 等級 | 倍数 | 障害の程度 |
|---|---|---|
| | | 九　一下肢に偽関節を残すもの |
| | | 十　一足の足指の全部を失ったもの |
| 第九級 | 三五〇 | 一　両眼の視力が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一眼の視力が〇・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三　両眼に半盲症、視野狭窄又は視野変状を残すもの |
| | | 四　両眼のまぶたに著しい欠損を残すもの |
| | | 五　鼻を欠損し、そ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六　咀嚼及び言語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
| | | 七　両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八　一耳の聴力が耳に接しなければ大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り、他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程度になったもの |
| | | 九　一耳の聴力を全く失ったもの |
| | | 十　神経系統の機能又は精神に障害を残し、服することができる労務が相当な程度に制限されるもの |
| | | 十一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服することができる労務が相当な程度に制限されるもの |
| | | 十二　一手の母指又は母指以外の二の手指を失ったもの |
| | | 十三　一手の母指を含み二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又は母指以外の三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四　一足の第一の足指を含み二以上の足指を失ったもの |
| | | 十五　一足の足指の全部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六　生殖器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十七　外貌に相当程度の醜状を残すもの |
| 第十級 | 二七〇 | 一　一眼の視力が〇・一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正面視で複視を残すもの |
| | | 三　咀嚼又は言語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
| | | 四　十四歯以上に対し歯科補綴を加えたもの |
| | | 五　両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六　一耳の聴力が耳に接しなければ大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七　一手の母指又は母指以外の二の手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八　一下肢を三センチメートル以上短縮したもの |
| | | 九　一足の第一の足指又は他の四の足指を失ったもの |

| 等級 | 倍数 | 障害の程度 |
|---|---|---|
| | | 十　一上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 | 十一　一下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機能に著しい障害を残すもの |
| 第十一級 | 二〇〇 | 一　両眼の眼球に著しい調節機能障害又は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二　両眼のまぶたに著しい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三　一眼のまぶたに著しい欠損を残すもの |
| | | 四　十歯以上に対し歯科補綴を加えたもの |
| | | 五　両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小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六　一耳の聴力が四十センチ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普通の話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七　脊柱に変形を残すもの |
| | | 八　一手の示指、中指又は環指を失ったもの |
| | | 九　一足の第一の足指を含み二以上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し労務の遂行に相当な程度の支障があるもの |
| 第十二級 | 一四〇 | 一　一眼の眼球に著しい調節機能障害又は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二　一眼のまぶたに著しい運動障害を残すもの |
| | | 三　七歯以上に対し歯科補綴を加えたもの |
| | | 四　一耳の耳殻の大部分を欠損したもの |
| | | 五　鎖骨、胸骨、肋骨、肩胛骨又は骨盤骨に著しい変形を残すもの |
| | | 六　一上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
| | | 七　一下肢の三大関節中の一関節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
| | | 八　長管骨に変形を残すもの |
| | | 九　一手の小指を失ったもの |
| | | 十　一手の示指、中指又は環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一　一足の第二の足指を失ったもの、第二の足指を含み二の足指を失ったもの又は第三の足指以下の三の足指を失ったもの |
| | | 十二　一足の第一の足指又は他の四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十三　局部に頑固な神経症状を残すもの |
| | | 十四　外貌に著しい醜状を残すもの |
| 第十三級 | 九〇 | 一　一眼の視力が〇・六以下になったもの |
| | | 二　正面視以外で複視を残すもの |
| | | 三　一眼に半盲症、視野狭窄又は視野変状を残すもの |
| | | 四　両眼のまぶたの一部に欠損を残し、又はまつげはげを残すもの |
| | | 五　五歯以上に対し歯科補綴を加えたもの |

| 等級 | 倍数 | 障害の程度 |
|---|---|---|
| 第十三級 | 九〇 | 六　胸腹部臓器の機能に障害を残すもの |
| | | 七　一手の小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八　一手の母指の指骨の一部を失ったもの |
| | | 九　一下肢を一センチメートル以上短縮したもの |
| | | 十　一足の第三の足指以下の一又は二の足指を失ったもの |
| | | 十一　一足の第二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第二の足指を含み二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又は第三の足指以下の三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第十四級 | 五〇 | 一　一眼のまぶたの一部に欠損を残し、又はまつげはげを残すもの |
| | | 二　三歯以上に対し歯科補綴を加えたもの |
| | | 三　一耳の聴力が一メートル以上の距離では小声を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程度になったもの |
| | | 四　上肢の露出面にてのひらの大きさの醜いあとを残すもの |
| | | 五　下肢の露出面にてのひらの大きさの醜いあとを残すもの |
| | | 六　一手の母指以外の手指の指骨の一部を失ったもの |
| | | 七　一手の母指以外の手指の遠位指節間関節を屈伸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もの |
| | | 八　一足の第三の足指以下の一又は二の足指の用を廃したもの |
| | | 九　局部に神経症状を残すもの |

# 여 백

중국

# 10

##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제1장 총칙**(제1조 ~ 제10조) ····· 985

**제2장 감옥**(제11조 ~ 제14조) ····· 986

**제3장 형벌집행**

제1절 수용(제15조 ~ 제20조) ····· 986
제2절 수형자의 청원, 고소, 검거에 대한 처리(제21조 ~ 제24조) ····· 987
제3절 감외집행(제25조 ~ 제28조) ····· 987
제4절 감형 및 가석방(제29조 ~ 제34조) ····· 988
제5절 석방 및 안치(제5조 ~ 제38조) ····· 989

**제4장 교정행정**

제1절 격리수용 및 분류관리(제39조 ~ 제40조) ····· 989
제2절 경계(제41조 ~ 제44조) ····· 989
제3절 보호장비와 무기의 사용(제45조, 제46조) ····· 989
제4절 접견 및 서신(제47조 ~ 제49조) ····· 990
제5절 급여, 위생 및 의료(제50조 ~ 제55조) ····· 990
제6절 장려 및 징벌(제56조 ~ 제58조) ····· 991
제7절 수형자의 수용기간 중 범죄에 대한 처리(제59조, 제60조) ····· 991

**제5장 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조**(제61조 ~ 제73조) ····· 991

**제6장 미성년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조**(제74조 ~ 제77조) ····· 992

**제7장 부칙**(제78조) ····· 992

**원문** ····· 993

#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1]

(1994년 12월 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 공포,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5호)

## 제1장 총칙

**제1조**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수형자를 징벌 · 개조하며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감옥은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②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의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감옥 내에서 그 형벌을 집행한다.

**제3조** 감옥은 수형자에 대하여 징벌과 개조, 교육과 노동을 서로 연계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수형자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공민(公民)으로 교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감옥은 법에 따라 수형자를 감시 · 관리하고 교정의 필요에 따라 그 자를 분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며 적합한 사상, 문화 및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감옥인민경찰[2]은 법에 의거하여 감옥을 관리하고 형벌을 집행하며 수형자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은 형벌집행의 적법여부를 법에 따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① 수형자의 인격은 모욕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신변안전, 합법적 재산, 청원, 고소, 검거 및 그 밖에 법에 의하여 박탈 내지 제한되지 않는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는 반드시 법률[3], 행정법규[4], 감옥 내의 규칙을 엄수하여야 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해당교육을 받으며 일정한 작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국가는 수형자를 교정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감옥인민경찰 업무비용, 수형자 교정비용, 수형자 생활비용, 교정시설 유지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은 국가예산에 포함된다.

② 국가는 수형자의 작업에 필요한 작업시설과 비용을 제공한다.

**제9조** 감옥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광산자원, 그 밖의 자연자원 및 감옥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이를 점유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국무원 사법부는 전국의 교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

1) 참고자료 김화수/ 송태호/ 이영근/ 윤옥경 편역,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법무부 용역과제, 경기대학교, 2003년

2) 중국의 감옥인민경찰은 우리나라의 교도관에 해당함

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및 그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규범

4)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규범

## 제2장 감옥

**제11조** 감옥의 신설, 폐지, 이전 등은 국무원 사법부가 허가한다.

**제12조** ① 감옥에는 감옥장[5] 1명, 부감옥장 약간 명을 두며 필요 시 해당 업무기관을 설치하고, 그 밖에 감옥관리인력을 배치한다.

② 감옥의 관리인원은 바로 인민경찰이다.

**제13조** 감옥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수하며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감옥인민경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형자 및 그 가족의 재물을 강요, 수수, 점유하는 행위

(2) 수형자를 사사로이 풀어주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수형자의 도주를 막지 못하는 행위

(3) 수형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 또는 학대를 하는 행위

(4) 수형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5) 수형자를 구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수형자를 구타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

(6)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이용하여 외부에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7) 규정을 어기고 수형자를 위하여 사사로이 우편물 또는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

(8) 수형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권한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행위

(9) 그 밖의 불법행위

② 감옥인민경찰이 전 항에 따른 행위로 그 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 제3장 형벌의 집행

### 제1절 수용

**제15조** ① 인민법원은 사형집행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행통지서, 판결서 등을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송달하고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 판결서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피고인을 감옥으로 압송한다.

② 피고인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때에는 그 형벌을 공안기관 구치소가 대리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수형자를 감옥으로 압송할 때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 인민법원의 판결서, 집행통지서, 결안등기표(結案登記表) 등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감옥으로 송달한다. 구비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옥에 수형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구비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에 흠이 있을 경우,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속히 보완 · 정정하여야 한다. 부당한 수용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잠시 수용을 연기한다.

**제17조** ① 감옥은 새로 입소한 수형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결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5) 중국의 감옥장은 우리나라의 교도소장에 해당함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용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요하는 수형자

(2) 임신 또는 유아를 포유하는 여자수형자

② 전 항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이 한시적 감외집행결정(監外執行決定)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한시적 감외집행이 사회질서 파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시적 감외집행결정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은 해당 거주지 공안기관이 실시한다. 전 항의 해당 정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기존의 형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수형자를 재수용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① 수용시 수형자의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소지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옥이 대리로 보관하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금지물품에 한해서는 몰수한다.

② 여성수형자에 대한 검사는 여성감옥인민경찰이 담당한다.

**제19조** 수형자는 수용 시 자녀를 대동할 수 없다.

**제20조** 감옥은 수형자를 수용한 후 그 가족에게 통지하며 통지서는 수용한 날부터 5일 내에 송달한다.

### 제2절 수형자의 청원, 고소, 검거에 대한 처리

**제21조** ① 수형자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청원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한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형자가 제출한 고소와 검거자료는 감옥 내부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거나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처리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감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옥은 수형자의 청원, 고소, 검거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하여야 하고 보류하지 못한다.

**제24조** 감옥은 형벌집행 중 판결의 부당성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제청하여 처리받도록 하고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제청서를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해당 처리결과를 감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절 감외 집행(監外 執行)

**제25조**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수형자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감외집행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한시적으로 감옥 외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 ① 한시적 감외집행에 대해서는 감옥이 서면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성(省), 자치구, 직할시 감옥관리국[6]이 허가한다. 감옥관리국은 해당 결정을 수형자의 거주지 공안기관과 원심인민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원에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동급 인민검찰원은 수형자에게 적용한 한시적 감외집행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월내에 서면의견을 감옥관리국에 보내야 하고 감옥관리국은 인민검찰원의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즉시 재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

---

6) 중국의 사법부 감옥관리국은 우리나라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지방성(省), 자치구, 직할시 감옥관리국은 우리나라의 지방교정청에 해당한다.

**제27조** 한시적 감외집행은 수형자의 거주지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실시한다. 감옥은 수형자의 감옥 내에서의 수용생활태도를 즉시 거주지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한시적 감외집행상황이 소멸된 후에도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감옥에 통보하여 수용하도록 하며 형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감옥이 절차에 따라 석방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한시적 감외집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감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절 감형 및 가석방

**제29조**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 중 죄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하고 공을 세우는 등의 표현이 확실할 경우 통상 감옥이 심사하여 감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감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한 때

(2) 감옥 내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검거한 사실이 있는 때

(3) 발명창조 또는 중대한 기술혁신에 성공한 때

(4) 평소의 작업과 생활 중에서 자신을 잊고 남을 도왔을 때

(5) 자연재해나 중대한 사고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특출한 공헌이 있는 때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밖의 공헌이 인정되는 때

**제30조** 감형에 관한 건의는 감옥이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1월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감형재결서 사본은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사형집행 2년유예를 선고받은 수형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에 법률이 정한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의 감형조건에 부합될 경우 2년의 기간만료 후 소재 감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감옥관리국에 감형건의를 하여 심의한 후 고등인민법원에 제청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32조**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법이 정한 가석방조건에 부합될 경우, 감옥은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건의를 하고 인민법원에서는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월 연장할 수 있다. 가석방재정서의 사본은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인민법원이 가석방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옥은 수형자 본인에게 가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감독한다. 수형자가 가석방 기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가 공포한 가석방감독관리규정에 위반하였으나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가석방철회의 건의를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가석방철회건의서를 받은 날부터 1월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미 가석방철회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수형자를 감옥으로 압송하여 수용한다.

**제34조** ① 법이 정한 감형과 가석방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서도 감형 또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

②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감형 및 가석방 심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한 내

에 항소하여야 하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여야한다.

### 제5절 석방 및 안치(安置)

**제35조** 수형자의 형기가 종료되면 즉시 석방하고 해당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6조** 수형자가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서에 따라 본인의 호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형이 종료되어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인민정부가 일정한 생활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만약 본인이 노동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법정부양인과 양육인이 없으며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때에는 거주지 인민정부가 지원을 한다.

**제38조** 형이 종료되어 석방된 자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 제4장 교정행정

### 제1절 격리수용 및 분류관리

**제39조** ① 감옥은 성인남자수형자와 여자수형자 및 미성년수형자를 각각 격리수용하여 관리한다. 여자수형자와 미성년수형자를 수용할 경우에는 그 자의 생리적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옥은 수형자의 범죄유형, 형벌종류, 형기, 개조표현 등 정황에 따라 분리수용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40조** 여자수형자에 한해서는 여성감옥인민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 제2절 경계

**제41조** 감옥의 무장경계는 인민무장경찰부대[7]가 책임지며 구체적 실행방법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수형자의 도주를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저지하고, 수형자가 이미 도주한 때에는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추적하게 하며 감옥은 이에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옥은 감시관리의 수요에 따라 경계시설을 설치한다. 감옥 주위에 경계격리지역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제44조** 감옥 주위에 위치한 국가기관, 사단법인, 회사 및 그 밖의 조직은 감옥의 경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절 보호장비와 무기의 사용

**제45조** ① 감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형자가 도주하는 때

---

7)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반란, 폭동 등 돌발사태에 대처하며 중앙기관, 세관, 각국 대사관, 변방검사소, 감옥 등 국가의 중요시설과 지역의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내 특수한 경찰부대

(2) 수형자가 폭력을 사용하는 때

(3) 수형자가 호송도중에 있는 때

(4) 수형자가 그밖의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방비대책이 필요한 때

② 전 항에 열거한 상황이 소멸된 후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6조** ① 인민경찰과 인민무장경찰부대의 당직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형자가 집단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때

(2) 수형자가 도주를 감행하면서 체포에 저항하는 때

(3) 수형자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물품을 소지하고 폭행 또는 파괴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

(4) 외부의 조폭세력이 수형자를 납치하는 때

(5) 수형자가 무기를 탈취하는 때

② 무기의 사용은 국가의 해당 절차법에 따라야 하고, 그 사용정황은 사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접견 및 서신

**제47조** 수용기간 중 수형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서신교환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을 거쳐 수형자의 교정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압수할 수 있다. 수형자가 상급감옥관리국,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등에 발송하는 서신은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 수용기간 중 수형자는 그 가족 또는 후견인과 만날 수 있다.

**제49조** 수형자가 가족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과 물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5절 급여, 위생 및 의료

**제50조** 수형자의 급식표준은 실물량(實物量)[8]에 따라 계산하며 이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수형자의 의류와 침구는 감옥이 통일적으로 배급한다.

**제52조** 소수민족 수형자의 특수한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우하여야 한다.

**제53조** 수형자가 거주하는 수용거실은 견고하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따뜻하여야 한다.

**제54조** 감옥은 필요한 의료시설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수형자에 대한 의료보건은 감옥소재지역의 의료예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55조** 수형자가 수용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유가족과 해당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료감정을 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위의 의료감정에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자체로 재감정을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유가족이 의의가 있는 때에는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때에는 인민검찰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감정을 하여야 한다.

---

8) 실물량이라 함은 수형자가 한 달에 수요하는 음식물의 양을 뜻하는데 수형자가 한 달에 수요하는 음식물의 량, 종류, 질 등을 우선 확정한 후 계획적으로 사서 급여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수형자의 영양수요를 충족시킬뿐더러 물가상승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 제6절 장려 및 징벌

**제56조** 감옥은 수형자에 대한 일상심사제도를 수립하고 해당심사결과를 장려 또는 처벌의 근거로 한다.

**제57조** 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을 기입할 수 있다.

(1) 감옥 내의 규칙을 엄수하고 공부에 열심하며 작업에 적극 참가하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한 때

(2)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을 저지한 때

(3) 작업임무를 초과 달성한 때

(4) 원자재를 절약하고 공공재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인정되는 때

(5) 기술적 난제의 해결과 작업기술의 전수에 있어서 일정한 공헌이 인정되는 때

(6) 재해 및 각종 사고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중에서 일정한 공헌이 인정되는 때

(7)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밖의 공헌이 인정되는 때

②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위에 열거한 정황이 있고 그 형기의 2분의 1을 이미 경과하였으며, 죄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황을 참작하여 귀가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 ① 수형자가 감옥내의 통상질서를 파괴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고, 과실의 기입 또는 7일~15일 이내의 금치 등으로 징벌한다.

(1) 집단으로 소란을 피워 감옥 내의 통상질서를 파괴한 때

(2) 감옥인민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는 구타한 때

(3) 권세를 믿고 다른 수형자를 괴롭힌 때

(4) 절도, 도박, 싸움질,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있는 때

(5) 작업능력이 있음에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며 교육을 하여도 뉘우치지 아니한 때

(6)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회피한 때

(7) 작업 중에 고의로 조작규정을 어기거나 작업도구를 파손한 때

(8) 감옥 내의 규칙을 위반한 그 밖의 행위가 있는 때

② 수형자가 형 집행 중 위에 열거한 행위가 있어 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7절 수형자의 수용기간 중 범죄에 대한 처리

**제59조** 수형자가 수용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

**제60조** 감옥 내의 형사사건은 감옥인민경찰이 수사하며, 수사종료 후 기소의견서 또는 면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자료를 첨부하여 인민검찰원에 송치한다.

## 제5장 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조

**제61조** 수형자를 교육개조함에 있어 대상에 따른 적정방식을 선택하고 분류하여 교육하며 도리로 설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교육과 개인교육을 연계하고 감옥내의 교육과 사회적 협조교육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을 취한다.

**제62조** 감옥은 수형자를 상대로 법제, 도덕, 시사, 정책 및 장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상교육을 진행한다.

**제63조** 감옥은 수형자의 서로 다른 수준에 따라 문맹퇴치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는 교육행정 부서에서 상응한 학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4조** 감옥은 감옥 내의 작업과 석방 후의 취업수요를 감안하여 수형자를 상대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심사를 거친 합격자에 한해서는 노동행정 부서에서 상응한 기술자격증서를 발급한다.

**제65조** 감옥은 수형자의 독학을 장려하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 부서에서 상응한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제66조** 수형자에 대한 문화함양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내용은 감옥소재 지역의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7조** 감옥은 수형자를 상대로 필요한 운동 및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8조** 국가기관, 사단법인, 군기관, 회사와 사회각계인사 및 수형자의 가족은 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9조** 노동능력이 있는 수형자는 반드시 작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옥은 수형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작업을 배치하여 악습을 고치고 훌륭한 노동습관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며 작업기술을 습득하여 석방 후의 취업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71조** ①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국가의 해당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정하며 계절적 특징이 있는 작업에 한해서는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형자는 명절 및 공휴일에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 작업에 참가하는 수형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의 노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제73조** 수형자가 작업 중 다치거나 불구 및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해당 노동보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장 미성년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조

**제74조** 미성년수형자에 한해서는 소년범관교소(管教所)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제75조** ① 미성년수형자에게 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교육을 위주로 한다. 미성년수형자에게 부가되는 작업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심리특징에 맞아야 하고, 문화소양의 향상과 기능습득에 치중하여야 한다.

② 감옥은 사회의 해당 교육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미성년수형자가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6조** 미성년수형자가 만 18세가 되었을 경우에 남은 형기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소년범교관소에서 나머지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제77조** 미성년수형자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을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장 부칙

**제7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正确执行刑罚,惩罚和改造罪犯,预防和减少犯罪,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监狱是国家的刑罚执行机关。

依照刑法和刑事诉讼法的规定,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在监狱内执行刑罚。

**第三条** 监狱对罪犯实行惩罚和改造相结合、教育和劳动相结合的原则,将罪犯改造成为守法公民。

**第四条** 监狱对罪犯应当依法监管,根据改造罪犯的需要,组织罪犯从事生产劳动,对罪犯进行思想教育、文化教育、技术教育。

**第五条** 监狱的人民警察依法管理监狱、执行刑罚、对罪犯进行教育改造等活动,受法律保护。

**第六条** 人民检察院对监狱执行刑罚的活动是否合法,依法实行监督。

**第七条** 罪犯的人格不受侮辱,其人身安全、合法财产和辩护、申诉、控告、检举以及其他未被依法剥夺或者限制的权利不受侵犯。

罪犯必须严格遵守法律、法规和监规纪律,服从管理,接受教育,参加劳动。

**第八条** 国家保障监狱改造罪犯所需经费。监狱的人民警察经费、罪犯改造经费、罪犯生活费、狱政设施经费及其他专项经费,列入国家预算。

国家提供罪犯劳动必需的生产设施和生产经费。

**第九条** 监狱依法使用的土地、矿产资源和其他自然资源以及监狱的财产,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破坏。

**第十条** 国务院司法行政部门主管全国的监狱工作。

## 第二章 监 狱

**第十一条** 监狱的设置、撤销、迁移,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批准。

**第十二条** 监狱设监狱长一人、副监狱长若干人,并根据实际需要设置必要的工作机构和配备其他监狱管理人员。

监狱的管理人员是人民警察。

**第十三条** 监狱的人民警察应当严格遵守宪法和法律,忠于职守,秉公执法,严守纪律,清正廉洁。

**第十四条** 监狱的人民警察不得有下列行为:

(一)索要、收受、侵占罪犯及其亲属的财物;

(二)私放罪犯或者玩忽职守造成罪犯脱逃;

(三)刑讯逼供或者体罚、虐待罪犯;

(四)侮辱罪犯的人格;

(五)殴打或者纵容他人殴打罪犯;

(六)为谋取私利,利用罪犯提供劳务;

(七)违反规定,私自为罪犯传递信件或者物品;

(八)非法将监管罪犯的职权交予他人行使;

(九)其他违法行为。

监狱的人民警察有前款所列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未构成犯罪的,应当予以行政处分。

## 第三章 刑罚的执行

### 第一节 收 监

**第十五条** 人民法院对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应当将执行通知书、判决书送达羁押该罪犯的公安机关,公安机关应当自收到执行通知书、判决书之日起一个月内将该罪犯送交监狱执行刑罚。

罪犯在被交付执行刑罚前,剩余刑期在一年以下的,由看守所代为执行。

**第十六条** 罪犯被交付执行刑罚时,交付执行的人民法院应当将人民检察院的起诉书副本、人民法院的判决书、执行通知书、结案登记表同时送达监狱。监狱没有收到上述文件的,不得收监;上述文件不齐全或者记载有误的,作出生效判决的人民法院应当及时补充齐全或者作出更正;对其中可能导致错误收监的,不予收监。

**第十七条** 监狱应当对交付执行刑罚的罪犯进行身体检查。经检查,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暂不收监:

(一)有严重疾病需要保外就医的;

(二)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婴儿的妇女。

对前款所列暂不收监的罪犯,应当由交付执行的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对其中暂予监外执行有社会危险性的,应当收监。暂予监外执行的罪犯,由居住地公安机关执行刑罚。前款所列暂不收监的情形消失后,原判刑期尚未执行完毕的罪犯,由公安机关送交监狱收监。

**第十八条** 罪犯收监,应当严格检查其人身和所携带的物品。非生活必需品,由监狱代为保管或者征得罪犯同意退回其家属,违禁品予以没收。

女犯由女性人民警察检查。

**第十九条** 罪犯不得携带子女在监内服刑。

**第二十条** 罪犯收监后,监狱应当通知罪犯家属。通知书应当自收监之日起五日内发出。

### 第二节 对罪犯提出的申诉、控告、检举的处理

**第二十一条** 罪犯对生效的判决不服的,可以提出申诉。

对于罪犯的申诉,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应当及时处理。

**第二十二条** 对罪犯提出的控告、检举材料,监狱应当及时处理或者转送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处理,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应当将处理结果通知监狱。

**第二十三条** 罪犯的申诉、控告、检举材料,监狱应当及时转递,不得扣压。

**第二十四条** 监狱在执行刑罚过程中,根据罪犯的申诉,认为判决可能有错误的,应当提请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处理,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应当自收到监狱提请处理意见书之日起六个月内将处理结果通知监狱。

## 第三节 监外执行

**第二十五条** 对于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在监内服刑的罪犯,符合刑事诉讼法规定的监外执行条件的,可以暂予监外执行。

**第二十六条** 暂予监外执行,由监狱提出书面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监狱管理机关批准。批准机关应当将批准的暂予监外执行决定通知公安机关和原判人民法院,并抄送人民检察院。

人民检察院认为对罪犯适用暂予监外执行不当的,应当自接到通知之日起一个月内将书面意见送交批准暂予监外执行的机关,批准暂予监外执行的机关接到人民检察院的书面意见后,应当立即对该决定进行重新核查。

**第二十七条** 暂予监外执行的罪犯,由居住地公安机关执行。原关押监狱应当及时将罪犯在监内改造情况通报负责执行的公安机关。

**第二十八条** 暂予监外执行的情形消失后,刑期未满的,负责执行的公安机关应当及时通知监狱收监;刑期届满的,由原关押监狱办理释放手续。罪犯在暂予监外执行期间死亡的,公安机关应当及时通知原关押监狱。

## 第四节 减刑、假释

**第二十九条** 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在服刑期间确有悔改或者立功表现的,根据监狱考核的结果,可以减刑。有下列重大立功表现之一的,应当减刑:

(一)阻止他人重大犯罪活动的;

(二)检举监狱内外重大犯罪活动,经查证属实的;

(三)有发明创造或者重大技术革新的;

(四)在日常生产、生活中舍己救人的;

(五)在抗御自然灾害或者排除重大事故中,有突出表现的;

(六)对国家和社会有其他重大贡献的。

**第三十条** 减刑建议由监狱向人民法院提出,人民法院应当自收到减刑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案情复杂或者情况特殊的,可以延长一个月。减刑裁定的副本应当抄送人民检察院。

**第三十一条** 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的罪犯,在死刑缓期执行期间,符合法律规定的减为无期徒刑、有期徒刑条件的,二年期满时,所在监狱应当及时提出减刑建议,报经省、自治区、直辖市监狱管理机关审核后,提请高级人民法院裁定。

**第三十二条** 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符合法律规定的假释条件的,由监狱根据考核结果向人民法院提出假释建议,人民法院应当自收到假释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案情复杂或者情况特殊的,可以延长一个月。假释裁定的副本应当抄送人民检察院。

**第三十三条** 人民法院裁定假释的,监狱应当按期假释并发给假释证明书。

被假释的罪犯由公安机关予以监督。被假释的罪犯,在假释期间有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公安

部门有关假释的监督管理规定的行为,尚未构成新的犯罪的,公安机关可以向人民法院提出撤销假释的建议,人民法院应当自收到撤销假释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人民法院裁定撤销假释的,由公安机关将罪犯送交监狱收监。

**第三十四条** 对不符合法律规定的减刑、假释条件的罪犯,不得以任何理由将其减刑、假释。

人民检察院认为人民法院减刑、假释的裁定不当,应当依照刑事诉讼法规定的期间提出抗诉,对于人民检察院抗诉的案件,人民法院应当重新审理。

### 第五节 释放和安置

**第三十五条** 罪犯服刑期满,监狱应当按期释放并发给释放证明书。

**第三十六条** 罪犯释放后,公安机关凭释放证明书办理户籍登记。

**第三十七条** 对刑满释放人员,当地人民政府帮助其安置生活。

刑满释放人员丧失劳动能力又无法定赡养人、扶养人和基本生活来源的,由当地人民政府予以救济。

**第三十八条** 刑满释放人员依法享有与其他公民平等的权利。

## 第四章 狱政管理

### 第一节 分押分管

**第三十九条** 监狱对成年男犯、女犯和未成年犯实行分开关押和管理,对未成年犯和女犯的改造,应当照顾其生理、心理特点。

监狱根据罪犯的犯罪类型、刑罚种类、刑期、改造表现等情况,对罪犯实行分别关押,采取不同方式管理。

**第四十条** 女犯由女性人民警察直接管理。

### 第二节 警 戒

**第四十一条** 监狱的武装警戒由人民武装警察部队负责,具体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规定。

**第四十二条** 监狱发现在押罪犯脱逃,应当即时将其抓获,不能即时抓获的,应当立即通知公安机关,由公安机关负责追捕,监狱密切配合。

**第四十三条** 监狱根据监管需要,设立警戒设施。监狱周围设警戒隔离带,未经准许,任何人不得进入。

**第四十四条** 监区、作业区周围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基层组织,应当协助监狱做好安全警戒工作。

### 第三节 戒具和武器的使用

**第四十五条** 监狱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使用戒具:

(一)罪犯有脱逃行为的;

(二)罪犯有使用暴力行为的;

(三)罪犯正在押解途中的;

(四)罪犯有其他危险行为需要采取防范措施的。

前款所列情形消失后,应当停止使用戒具。

**第四十六条** 人民警察和人民武装警察部队的执勤人员遇有下列情形之一,非使用武器不能制止的,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使用武器:

(一)罪犯聚众骚乱、暴乱的;

(二)罪犯脱逃或者拒捕的;

(三)罪犯持有凶器或者其他危险物,正在行凶或者破坏,危及他人生命、财产安全的;

(四)劫夺罪犯的;

(五)罪犯抢夺武器的。

使用武器的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情况。

## 第四节 通信、会见

**第四十七条** 罪犯在服刑期间可以与他人通信,但是来往信件应当经过监狱检查。监狱发现有碍罪犯改造内容的信件,可以扣留。罪犯写给监狱的上级机关和司法机关的信件,不受检查。

**第四十八条** 罪犯在监狱服刑期间,按照规定,可以会见亲属、监护人。

**第四十九条** 罪犯收受物品和钱款,应当经监狱批准、检查。

## 第五节 生活、卫生

**第五十条** 罪犯的生活标准按实物量计算,由国家规定。

**第五十一条** 罪犯的被服由监狱统一配发。

**第五十二条** 对少数民族罪犯的特殊生活习惯,应当予以照顾。

**第五十三条** 罪犯居住的监舍应当坚固、通风、透光、清洁、保暖。

**第五十四条** 监狱应当设立医疗机构和生活、卫生设施,建立罪犯生活、卫生制度。罪犯的医疗保健列入监狱所在地区的卫生、防疫计划。

**第五十五条** 罪犯在服刑期间死亡的,监狱应当立即通知罪犯家属和人民检察院、人民法院。罪犯因病死亡的,由监狱作出医疗鉴定。人民检察院对监狱的医疗鉴定有疑义的,可以重新对死亡原因作出鉴定。罪犯家属有疑义的,可以向人民检察院提出。罪犯非正常死亡的,人民检察院应当立即检验,对死亡原因作出鉴定。

## 第六节 奖 惩

**第五十六条** 监狱应当建立罪犯的日常考核制度,考核的结果作为对罪犯奖励和处罚的依据。

**第五十七条** 罪犯有下列情形之一的,监狱可以给予表扬、物质奖励或者记功:

(一)遵守监规纪律,努力学习,积极劳动,有认罪服法表现的;

(二)阻止违法犯罪活动的;

(三)超额完成生产任务的;

(四)节约原材料或者爱护公物,有成绩的;

(五)进行技术革新或者传授生产技术,有一定成效的;

(六)在防止或者消除灾害事故中作出一定贡献的;

(七)对国家和社会有其他贡献的。

被判处有期徒刑的罪犯有前款所列情形之一,执行原判刑期二分之一以上,在服刑期间一贯表现好,离开监狱不致再危害社会的,监狱可以根据情况准其离监探亲。

**第五十八条** 罪犯有下列破坏监管秩序情形之一的,监狱可以给予警告、记过或者禁闭:

(一)聚众哄闹监狱,扰乱正常秩序的;

(二)辱骂或者殴打人民警察的;

(三)欺压其他罪犯的;

(四)偷窃、赌博、打架斗殴、寻衅滋事的;

(五)有劳动能力拒不参加劳动或者消极怠工,经教育不改的;

(六)以自伤、自残手段逃避劳动的;

(七)在生产劳动中故意违反操作规程,或者有意损坏生产工具的;

(八)有违反监规纪律的其他行为的。

依照前款规定对罪犯实行禁闭的期限为七天至十五天。

罪犯在服刑期间有第一款所列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第七节 对罪犯服刑期间犯罪的处理

**第五十九条** 罪犯在服刑期间故意犯罪的,依法从重处罚。

**第六十条** 对罪犯在监狱内犯罪的案件,由监狱进行侦查。侦查终结后,写出起诉意见书或者免予起诉意见书,连同案卷材料、证据一并移送人民检察院。

## 第五章 对罪犯的教育改造

**第六十一条** 教育改造罪犯,实行因人施教、分类教育、以理服人的原则,采取集体教育与个别教育相结合、狱内教育与社会教育相结合的方法。

**第六十二条** 监狱应当对罪犯进行法制、道德、形势、政策、前途等内容的思想教育。

**第六十三条** 监狱应当根据不同情况,对罪犯进行扫盲教育、初等教育和初级中等教育,经考试合格的,由教育部门发给相应的学业证书。

**第六十四条** 监狱应当根据监狱生产和罪犯释放后就业的需要,对罪犯进行职业技术教育,经考核合格的,由劳动部门发给相应的技术等级证书。

**第六十五条** 监狱鼓励罪犯自学,经考试合格的,由有关部门发给相应的证书。

**第六十六条** 罪犯的文化和职业技术教育,应当列入所在地区教育规划。监狱应当设立教室、图书阅览室等必要的教育设施。

**第六十七条** 监狱应当组织罪犯开展适当的体育活动和文化娱乐活动。

**第六十八条** 国家机关、社会团体、部队、企业事业单位和社会各界人士以及罪犯的亲属,应当协助监狱做好对罪犯的教育改造工作。

**第六十九条** 有劳动能力的罪犯,必须参加劳动。

**第七十条** 监狱根据罪犯的个人情况,合理组织劳动,使其矫正恶习,养成劳动习惯,学会生产技能,并为释放后就业创造条件。

**第七十一条** 监狱对罪犯的劳动时间,参照国家有关劳动工时的规定执行;在季节性生产等特殊情况下,可以调整劳动时间。

罪犯有在法定节日和休息日休息的权利。

**第七十二条** 监狱对参加劳动的罪犯,应当按照有关规定给予报酬并执行国家有关劳动保护的规定。

**第七十三条** 罪犯在劳动中致伤、致残或者死亡的,由监狱参照国家劳动保险的有关规定处理。

## 第六章 对未成年犯的教育改造

**第七十四条** 对未成年犯应当在未成年犯管教所执行刑罚。

**第七十五条** 对未成年犯执行刑罚应当以教育改造为主。未成年犯的劳动,应当符合未成年人的特点,以学习文化和生产技能为主。

监狱应当配合国家、社会、学校等教育机构,为未成年犯接受义务教育提供必要的条件。

**第七十六条** 未成年犯年满十八周岁时,剩余刑期不超过二年的,仍可以留在未成年犯管教所执行剩余刑期。

**第七十七条** 对未成年犯的管理和教育改造,本章未作规定的,适用本法的有关规定。

## 第七章 附 则

**第七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 Prison Acts of Other Countries


| | |
|---|---|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 발 행 처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 번역, 편집 및 감수 | 분류심사과장 김 정 선 |
| | 교정관 금 용 명 |
| | 교정관 박 진 열 |
| | 교 감 김 성 률 |
| | 교 감 하 한 수 |
| | 교 위 김 종 원 |
| | 교 위 김 희 선 |
| | 교 위 박 영 상 |
| | 교 위 석 우 찬 |
| | 교 위 신 승 훈 |
| | 교 위 최 은 경 |